

전근대 수원 자료집(4)

비변사등록(국역·원문)

2015. 3. 6

일러두기

1. 수록 지역

행정 구역상 현재의 수원은 역사 전통과 유리된 구획이기 때문에, 본 자료집에서는 수원의 역사 자료를 집성하기 위하여 ‘수원 문화권’ 개념을 설정하여 현 행정 구역상 화성, 오산, 남양 지역까지 포함하였다.

2. 수록 범위

본 자료집은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서비스하는 국역 『비변사등록』의 검색결과를 토대로 정리한 것이다.

3. 수록 방식

- (1) 기사를 내용에 따라 주제별로 분류하였다. 다시 분류 안에서는 시간순서로 배열하였다.
- (2) 기사에 내용에 대하여 2줄 이내로 요약문을 달아 기사의 요점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 (3) 주요 어휘와 구절에 밑줄을 긋고 굵게 표시하였다.
- (4) ‘수원 문화권’ 과 관련 없는 내용은 생략한 뒤 ‘(…)’ 표시하였다.

4. 분류 방식

수집된 자료는 기왕의 연대기 자료 분류 체계를 바탕으로 ‘수원 문화권’의 특성을 감안하여 아래와 같이 분류하였다.

○ 항목 분류표

대분류		중분류	세부내역
1	정치	왕실	국왕 종사 행행(능행·온행·강무) 의식 산릉·천릉
		행정	중앙행정 지방행정 인사(선발, 임면, 관리)
		사법	재판 행형 치안 정변·민란 파면
		군사	군정 중앙군 지방군 특수군 금화(禁火) 군역 병참(兵站) 통신(通信)[봉수] 관방 전쟁.
		인물	수원인, 수원부사(유사)
2	경제	재정	재정일반 전세 공물(貢物) 역(役) 진상 잡세 창고 국용(國用) 군자 상공(上供) 전매(專賣)
		상업	상업일반 상인 시장 상품 무역(貿易)

		교통	육운 수운 마정(목장) 역참 역원
		농수산업	○양전 경영형태 토지매매 권농 농사 ○농업기술 수리 개간 농작 ○임업 목축 양잠 면직 과수원에 특용작물 ○어업 염업
		광공업	○광산 채광 제련 ○관청수공 사영수공 농촌수공 장인 수공업품
		건설	건축 토목 보수
3	사회	가족	가족 친족 가산 성명 호구 호적
		신분	양반 중인 상민 신랑역천 천인 신분변동
		향촌	취락 지방자치 사회조직 장지(葬地)
		의식주	○관복 상복 예복 장신구 ○주부식 주류 기호식품 기명제물 ○가옥 가구 택지 주거
		윤리·풍속	강상 사회기강 예속 풍속 연회 구휼(진휼)
4	문화	사상	유학 불교 교역(서원·향교·과거) 토속신앙
		과학	자연재해(가뭄·홍수) 의학 약학 보건 수레
		지리·경관	산천 여정 역사지리
		예술	음악 미술 문학 서예
5	화성	성문	長安門, 八達門, 蒼龍門, 華西門, 華虹門
		시설	西將臺, 東將臺, 東北角樓(=訪花隨柳亭) 西南角樓(=華陽樓), 東北鋪樓(=角巾臺)
		행궁	○新豐樓(鎮南樓), 左翊門, 中陽門(重鑰門), 奉壽堂(壯南軒)○洛南軒[藏春閣], 得中亭[得閒門], 老來堂[難老門, 歌風門]○長樂堂, 景龍館[3판문 至樂門], 福內堂[동행각 維福門, 서별당의 九如門, 외행각 북쪽 求福門], 維與宅[초명 隱若軒, 拱晨樓, 附舍門. / 向春門(서), 延暉門·維與門(북), 嘉漁門·慶華門(남), 賓曦門(동)] 未老閑亭(일명六面亭). ○于華館(八達館), 講武堂, 華請館(동헌), 祝釐堂(내아) 臥護軒, 內舖舍[미복원], 分奉常寺 ○華寧殿, 壯勇營(壯勇衛) 禦牧軒(영조글씨), 拱樓屢
		원행	○穩穩舍(과천) 萬安橋(안양), 彌勒峴(지지대고개, =遲遲峴, =沙斤峴), 遲遲臺, 槐木亭橋, 만석거, 芰荷洞, 大有坪, 觀吉野 ○梅橋(초명 梅山橋), 上柳川, 萬和峴, 建章洞, 眞木亭(橋), 下柳川, 皇橋, 甕峰, 大皇橋, 迢瞻峴, 安寧里, 迢觀橋, 만년제
		제언	祝萬堤(서호), 萬年堤, 萬石渠, 坤申堤 杵池(=方下池, 남곡면) 南池, 北池

목 차

I. 수원(水原)

2. 경제(經濟)	1
(1) 재정	1
(2) 상업	300
(3) 교통	314
(4) 농수산업	344
(5) 건설	365
3. 사회(社會)	400
(1) 윤리·풍속	400
4. 문화(文化)	514
(1) 사상	514
(2) 과학	525
5. 화성(華城)	527
(1) 시설	527
(2) 행궁	529
(3) 원행	530

2. 경제(經濟)

(1) 재정

경제/재정

南漢山城과 水原·竹山 등의 산성에 저축된 곡식을 摠戎使의 陣營에 운반하길 청하다

아뢰기를, "총융사가 먼저 거느리고 간 아병의 숫자도 적지 않은데 또 한수(漢水) 이남의 군병을 징발하게 되면 먹을 군량이 매우 염려스럽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기 각 읍에 저축된 쌀은 모두 땅을 쓴 듯이 없어졌으니 남한산성의 미곡 1백 석과 콩 30석을 연로에 있는 각 읍의 수령들이 쇠마(刷馬)를 징발하여 차례대로 직접 영솔하여 총융사의 진영에 운반토록 하고, 또 가깝고 편리한 수원(水原) 죽산(竹山) 등 산성에 저축된 곡식을 계속 가져다 써서 군량의 궁핍이 없도록 하라는 뜻을 총융사와 경기감사, 광주부윤(廣州府尹) 등에게 알리는 것이 어떻겠습니까?"하니, "아뢴 대로 하되 수로로도 운반토록 하라"고 답하였다.

啓曰, 摠戎使牙兵先爲帶去者其數不少, 而漢南軍兵, 又爲徵發, 則所食糧餉, 誠極可慮, 卽今畿邑所儲, 竝皆掃如, 南漢米一百石太三十石, 以沿路列邑守令調發刷馬, 次次親領替運軍前, 且便近如水原·竹山等山城所儲穀物, 連續取用, 俾無乏餉之意, 摠戎使及京畿監司·廣州府尹等處知委何如, 答曰, 依啓, 水路亦爲運送.

<비변사등록 10책, 인조 24년 1646년 04월02일(음)>

경제/재정

摠戎使 軍陣에 보낼 예정이었던 江都의 쌀과 콩을 沿海의 경기 각 읍에 나누어 주길 청하다

아뢰기를, "강도(江都)의 미곡 5백 2석과 콩 70석을 총융사 군병의 군량으로 쓰기 위해 벌써 배에 실어 지금 수원(水原)과 진위(振威) 중간에 정박하였습니다. 그런데 선척이 미처 정박하기 전에 군병을 이미 해산시켰으므로 도로 신고 가야 할 형편에 이르렀습니다 전에 본부에서 미곡 4·5천 석을 연해의 경기 각 읍에 나누어 주어 굶주린 백성을 구제할 뜻을 벌써 탑전(榻前)에서 아뢰어 결정하였습니다. 이 쌀과 콩을 우선 수원·남양(南陽)·진위 등의 읍에 나누어 주는 것이 편리할 것 같으니 경기감사로 하여금 별도로 차사원(差使員)을 정해 수량을 감독하여 받은 다음 제때에 나누어 주도록 공문을 보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답하였다.

啓曰, 江都米五百二石·太七十石, 以摠戎軍兵糧餉, 已爲載船, 今番回泊於水原·振威之間矣, 船隻未及到泊之前, 軍兵已罷, 勢將還載以去, 前日本府米四五千石, 分給沿海畿邑, 以賑飢民之意, 曾已榻前稟定, 以此米太, 爲先分給於水原南陽振威等邑, 似爲便當, 令京畿監司別定差使員, 斗量監捧, 趁卽分給事行移何如, 答曰, 依啓.

<비변사등록 10책, 인조 24년 1646년 04월07일(음)>

경제/재정

統營의 벼 3만 석을 각처에 나누어 두기를 청하다

아뢰기를, "이번 12월 15일 인견 때 호조판서 이시방(李時昉)이 아뢰기를 '통영(統營)의 곡물이 이제 마땅히 올라 올 것이니, 비변사로 하여금 나누어 보낼 곳을 지휘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상께서 '묘당으로 하여금 짐작해 나누어 두는 일을 속히 거행하게 하라'라고 전교하셨습니다. 통영의 벼 3만 석을 경기·충청 두 도의 연해 각 읍에 나누어

둘 숫자를 별단에 써 들일 뜻을 감히 아뢰입니다."

하니, 알았다고 당하였다.

비변사의 통영 벼 3만 석을 각처에 나누어 둘 별단(別單)

경기(京畿)

수원(水原) 벼 2천 석 남양(南陽) 벼 1천 5백 석 부평(富平) 벼 1천 석 안산(安山) 벼 5백 석

풍덕(豐德) 벼 5백 석 김포(金浦) 벼 5백 석 통진(通津) 벼 1천 5백 석 교하(交河) 벼 5백 석

영종(永宗) 벼 2천석. 힘을 합쳐 개색(改色)을 담당함, 이상 1만 석임.

충청도(忠淸道)

홍주(洪州) 벼 1천 석 서천(舒川) 벼 5천 석 임천(林川) 벼 5백 석 면천(沔川) 벼 1천 석

남포(藍浦) 벼 7백 석 덕산(德山) 벼 1천 석 결성(結城) 벼 1천 석 해미(海美) 벼 5백 석

아산(牙山) 벼 1천 3백 석 보령(保寧) 벼 1천 석 당진(唐津) 벼 5천 석

안흥진(安興鎭) 1만 석. 서산(瑞山)·태안(泰安)과 힘을 합쳐 개색(改色)을 담당함.

이상 2 만석 이다.

啓曰, 今十二月十五日引見時, 戶曹判書李時昉所啓, 統營穀物, 今當上來, 令備邊司, 指押分送之處何如, 上曰, 令廟堂, 斟酌分置事, 速爲舉行事傳數矣, 統營租三萬石, 京畿·忠淸兩道沿海各邑分置之數, 別單書入之意, 敢啓, 答曰, 知道,

備邊司, 統營租三萬石, 分置各處別單,

京畿, 水原租二千石, 南陽租一千五百石, 富平租一千石, 安山租五百石, 豐德租五百石,

金浦租五百石, 通津租一千五百石, 交河租五百石, 永宗租二千石同力改色次, 以上一萬石,

忠淸道, 洪州租一千石, 舒川租五百石, 林川租五百石, 沔川租一千石, 藍浦租七白石,

德山租一千石, 結城租一千石, 海美租五百石, 牙山租一千三百石, 保寧租一千石,

恩津租五百石, 唐津租一千石, 安興鎭一萬石, 瑞山·泰安同力改色次, 以上二萬石

<비변사등록 17책, 효종 5년 1654년 12월23일(음)>

경제/재정

江華에서 畿邑民과 水原軍兵에게 주는 陳太가 부족하여 戶曹 京倉에 있는 糴으로 주자

아뢰기를, "강화(江華)의 목은 糴 1만석은 경기 고을 백성에게 나누어 주고, 6백석은 특별히 수원(水原)의 군병들에게 나누어 주는 일은 재가를 받아 지시하였습니다. 방금 강화유수의 보고서를 받으니 전에 이미 본부의 백성들에게 나누어 준 외에 창고에 남아 있는 糴은 1만석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량대로 다 주기 어려운 형편이 되었으나 이미 마련하여 각 고을에 알린 수량을 지금 와서 감소시킨다면 목마르게 바라던 백성들은 반드시 실망의 탄식이 있을 것입니다. 원래의 수량 중 1천 6백석을 호조의 경창(京倉)에 있는 糴으로 나누어 주고 가을이 되거든 다시 경창에 받아들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하니, 윤허한다고 답하였다.

啓曰, 江都陳太一萬石, 則分給畿邑之民, 六百石, 則別爲分給水原軍兵事啓下行會矣, 卽接江華留守所報, 則前已分給本府民人之外, 留庫之太, 不滿萬石云, 其勢有難准給, 而已爲磨鍊, 知委各邑之元數, 今若減去, 則渴望之民, 必有落莫之歎, 元數內一千六百石, 則以戶曹京倉太分給, 待秋還捧於京倉何如, 答曰, 允.

<비변사등록 30책, 현종 12년 1671년 05월01일(음)>

경제/재정

知中樞府事 柳赫然 등이 인견하여 水原에 軍木을 支給하는 일에 대해 논의하다

이달 18일에 대신과 비국 당상을 인견하여 입시하였을 때 지중추부사 유혁연(柳赫然)이 아뢰기를, "수원(水原)은 경기의 중요한 곳으로서 군병이 많음은 훈국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나 본부는 힘이 허약하여 탄약과 탄환을 준비할 형편이 못되므로 사격연습뿐만 아니라 시재(試才)도 오래 폐지하여 시행치 않았으며, 위급한 사태가 있을 경우 변에 대비할 기구가 없으니 일이 매우 우려됩니다. 선조(先朝) 때 이러한 뜻을 탑전에서 아뢰니 평안병영에 있는 비국에서 관리하는 무명 20동(同)을 지급하여 준비하게 하라고 하교하셨습니다. 그후 총융사도 본영에서 찾아 지급하겠다고 하였으나 지금까지 거행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찾아서 지급하기를 기다릴 수 없으니 앞서의 결정에 의하여 거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영의정 허적(許積)이 말하기를, "약간의 탄약과 탄환을 본부에서도 준비하겠다고 하였으나 조정에서 편의에 따라 찾아 지급하지 않을 수 없으니 비국 소관의 평안도 군목(軍木) 20동을 지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하니, 상이 아뢴 대로 하라고 하였다.

今正月十八日大臣·備局堂上引見入侍時，知中樞府事柳赫然所啓，水原以畿輔重地，軍兵之多，無異訓局，而本府力綿，藥丸無措備之勢，非徒射放試才，久廢不行，脫有緩急，且無待變之具，事甚可慮，先朝以此意陳達於榻前，則平安兵營所在備局所管木綿二十同題給，使之措備事，下教，而其後，摠戎使自本營亦可覓給云，故至今不爲舉行矣，今則不可等待其覓給，依前定奪舉行何如，領議政許曰，若干藥丸，本府亦已措置云而，自朝家，不可不隨便覓給，以備局所管平安道軍木二十同，劃給何如，上曰，依爲之。

<비변사등록 31책, 숙종 1년 1675년 01월20일(음)>

경제/재정

勅使의 接待을 소홀히 한 揚州 守令 등의 治罪를 청하다

아뢰기를, "방금 영접도감에 계하된 반송사 오시수(吳始壽)와 경기감사 민시중(閔著重) 등이 연명한 장계를 보니, '어제 칙사가 중간에서 말을 교체할 때에 대통관이 앓을 방식 등을 준비하지 않았고 상사(上使)의 접대에 있어서는 수원(水原)에서 소주(燒酒) 1잔 반을 보낸 외에 그 나머지 두 읍은 전혀 준비하지 않아 말썽을 빚게 되었으며, 도차사원(都差使員)과 주목사 정동설(鄭東高)을 잡아들이게 하니 김새를 알고 미리 피하였다' 하였습니다. 말을 교체하는 곳에서 방식·다주(茶酒)를 준비하는 것은 곧 전부터 늘 있어 온 일인데도 각읍의 하인이 거행하지 않아 이러한 일을 빚었으니 매우 놀라운 일입니다. 각 읍 수령은 삼가지 않은 책임을 면하기 어려우며, 잡아들일 때 도피한 폐단에 있어서는 더욱 다스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양주·안성·인천·죽산의 수령 및 도차사원인 파주목사 정동설을 모두 잡아 문초하여 경중을 나누어 처리하고, 수원의 경우는 전혀 보내지 않은 곳에 비하면 비록 차이는 있는 듯 하나 1잔 반만을 보냈으니 지나치게 야박합니다. 단속하지 않은 감사와 같이 종종 추고하고, 각읍 향소와 색리를 본도로 하여금 각별히 엄한 형벌로 치죄하라고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하니, 윤허한다고 답하였다.

啓曰， 卽接迎接都監啓辦伴送使吳始壽·京畿監司閔著重等聯名狀啓， 則昨日勅使中路替馬時，大通官所坐，鋪陳不爲待令，上使支持水原燒酒一盞半外，其餘兩邑則元不待令，以致生梗，而都差使員坡州牧使鄭東高，使之捉入，則知幾姑避云，替馬處鋪陳茶酒待候，自是從前常行之事，而各邑下人，不爲舉行，致有此患，事甚驚駭，各邑守令，難免不謹之責，至於捉入之際，走避

之弊，尤不可不防，楊州，安城·仁川·竹山守令及都差使員坡州牧使鄭東高，竝爲拿問，分輕重處置，**水原**比之全不送者，雖似有間，只送一杯半薄略太甚，竝與不檢飭之監司，從重推考，各邑鄉所色吏，則令本道，各別嚴刑懲治之意，分付何如，答曰，允。

<비변사등록 31책, 숙종 1년 1675년 03월18일(음)>

경제/재정

水原의 屯田 加給과 警報 寺刹 設置의 中止를 청하다

아뢰기를, "'운운'하는 일을 명령하셨습니다. **수원**에서 군수(軍需)의 마련이 어렵다고 말하였으나 그전부터 조정에서 의례적으로 주는 군목(軍木)이 있어 그 수량이 적지 않으니, 지금 다른 아문의 둔전을 떼어서 더해줄 필요는 없습니다. 또 **수원부**는 비록 경기의 중요한 진(鎭)이지만 조석으로 사변에 대비해야 하는 변방과는 같지 않습니다. 산성의 대포소리가 들리지 않는 먼 마을의 군병들도 불과 하루 이틀이면 다 모일 수 있는데, 별도로 경보(警報)를 맡을 사찰을 설치한다는 것은 지나친 염려입니다. 우선은 그만두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하니, 윤허한다고 답하였다.

啓曰，云云命下矣，**水原**軍需雖曰，難辦，自前已有朝家例給之軍木，其數不少，今不必割取他衙門屯田而添給，本府雖係畿輔重鎭，與邊地朝夕待變處不同，山城砲聲所不及之遠村軍兵，亦不過一兩日而可以畢集，別設報警之寺刹，未免爲過慮，今姑置之，何如，答曰，允。

<비변사등록 33책, 숙종 3년 1677년 02월20일(음)>

경제/재정

수원의 환상미 운송을 논하다

(...) 또 아뢰기를, "경기의 기근은 봄이 되어 더욱 심합니다. **수원(水原)** 등 재해를 입은 고을에서는 환상미(還上米)의 상환량이 매우 적어 기민(飢民)들에게 두루 미치지 못하기에 역참(驛站)에 나가 있는 백성은 진휼청에서 낱자를 계산하여 급료를 주고 있습니다. 한편 삼남의 곡물이 경창(京倉)에 도착한 뒤에 각 고을에 나누어 주자면 받아갈 때에 또 폐단이 있겠기에 연해(沿海)의 각 읍은 각각 그 고을에서 배를 보내서 받아오게 하였었습니다. 그런데 방금 수원부사 유명견(柳命堅)의 보고를 보니 감색(監色)을 보내서 배를 가지고 청양(靑陽)에 정박하게 했는데 그 곳에 머무른 지 이미 한 보름이 되었으나 본관(本官)은 내 줄 뜻도 없는 듯하다 하였습니다. 매우 놀라운 일입니다. 논죄하는 조치가 없어서는 안 되겠으나 교체할 무렵에는 반드시 곡물 수송이 지체되는 폐단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 고을이 상납해야 할 곡식 8백석을 즉각 수원 배에 내다 신도록 본 읍과 차사원(差使員)에게 분부하고 청양현에서 즉시 내주지 않은 죄상을 본도로 하여금 사실대로 조사 보고하도록 한 뒤에 처리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하니, 그렇게 하라고 답하였다.

우참찬 목래선(睦來善)이 아뢰기를, "신이 내자시(內資寺) 제조를 맡고 있는데 변통할 일이 있어서 감히 이렇게 아뢰니다. 여러 해가 되어 썩은 장(醬)을 일찍 변통하지 않아 신이 본시(本寺)를 맡은 뒤에 40여석의 썩은 장을 정결한 곳에 묻어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썩은 장과 맛이 변한 장과 김치 30여 독이 있습니다. 그래서 호조에 알려 처분하기를 청했더니 팔아버리라 하였으나 맛이 변한 것을 싫어하여 사가려 하지 않았습니다. 만일 올 봄과 여름을 지내면 못쓰게 될 것이니 진휼청에 옮겨 보내서 진휼의 소용으로 삼고 해조로 하여금 그 수량만 회감(會減)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김석주(金錫胄)가 아뢰기를, "강도에 돈대를 쌓을 때 역부들의 반찬으로 쓰고 해조로

하여금 회감하게 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하니, 그렇게 하라고 답하였다.

(…) 又所啓, 都下飢饉方甚, 訓局及賑廳, 各出米五百石輪回發賣, 一以爲救荒, 一以爲行錢之地, 而市價則一錢米五升, 公家則一錢米七升加定, 故民爭趨之, 紛沓太甚, 非但不能廉買, 還致民怨, 事極可慮矣, 因左議政陳達江都米一萬石取來, 一從戶數, 均一發賣事, 傳教矣, 但當此漁採之時, 江都各浦船隻, 無一餘存, 京江船則以賑廳三南移轉, 及嶺南大同載來事, 亦盡南下, 江都米, 勢將待南下船還來輸運, 而卽今都民事勢, 不可不及時救急, 故先出賑恤廳田米四千石, 太三千石, 大米九百石, 戶曹米三千石, 訓局米一千石, 御營廳米一千石, 每戶三邑穀並七斗式發賣, 以救其極, 而戶曹則南船還來後, 江都米卽爲運來先報, 則可無經費不足之患, 故以此與大臣已爲熟講, 依此舉行之意仰達, 上曰, 依爲之.

又所啓, 畿內飢饉, 入春, 九甚, 水原等被災各邑, 糴米所捧甚少, 不周及於飢民, 故出站之民, 則自賑恤廳, 計日給料, 而三南穀物到京倉後, 分給列邑, 則受去之際, 亦有其弊, 故沿海各邑, 則令各其邑, 送船取來矣, 卽見水原府使柳命堅所報, 則定送監色, 持船到泊青陽, 留住已至一望, 而本官無意出給云, 事極可駭, 不可無論罪之舉, 而遞易之際, 必有運穀遲滯之弊, 其應上納八百石穀, 使之割卽出載於水原船隻事, 分付本邑及差使員, 青陽縣不卽出給之罪狀, 令本道, 從實查覈, 啓聞後稟處何如, 上曰, 依爲之, 右參贊陸來善所啓, 臣待罪內資提調, 有變通之事, 故敢此仰達, 年久敗醬, 曾不變通者甚多, 故臣參本寺之後, 四十餘石敗醬, 埋置潔處矣, 卽今亦有敗醬, 及味變醬菹三十餘甕, 故論報戶曹, 請以區處, 則使之散賣, 人皆厭其味變, 不肯買去, 若經今春夏, 則將爲無用之物, 移送賑廳, 以爲賑飢之資, 而令該曹, 會減其數何如, 金錫胄曰, 若用於江都築墩時役夫之饌, 令該曹, 會減則似好矣, 上曰, 依爲之

<비변사등록 35책, 숙종 5년 1679년 02월20일(음)>

경제/재정

水原에 兵曹 餘丁木 3동과 備邊司에 있는 箭竹 3천 개를 줄 것을 아뢰다

아뢰기를, "총융청 계사에 '수원영(水原營)에 소속된 군병을 신이 내려가서 조련(操鍊)하고 시재(試才)하는 일을 이미 비국에서 복게하여 결정했습니다. 신이 이달 16일에 전례에 따라 조사(朝辭)를 하지 않고 출발하게 되었는데 군병 시사(試射)가 끝난 후 상격(賞格)에 소용되는 무명과 전죽(箭竹)을 비국으로 하여금 주도록 해야 합니다. 또 조련한 후 호궐(犒饋: 군사에게 음식을 접대함)할 값으로 주는 쌀이 1명당 5두씩이니 수원부에 있는 선혜청의 저치미(儲置米)를 예에 따라 우선 꾸어 역시 해청으로 하여금 회감(會減)하게 할 뜻을 감히 아뢰니다' 하니, 전교에 '알았다' 하고 '수원영의 군병을 시재한 후 상격에 쓸 목면과 전죽은 비국으로 하여금 규례를 상고하여 지급해 주라'는 일로 분부하였습니다. 계묘년의 예에 의해 병조 여정목(餘丁木) 3동과 본사에 있는 전죽 3천 개를 줄 뜻을 감히 아뢰니다."하니, 알았다고 답하였다.

啓曰, 摠戎廳啓辭, 所屬水原營軍兵, 臣下去操鍊試才事, 已爲自備局覆啓定奪矣, 臣當今月十六日, 依例前除朝辭發行, 而軍兵試射放後, 賞格所用木綿·箭竹, 令備局考例題給, 且操鍊後犒饋價米, 每名五升式, 以水原府所在宣惠廳儲置米, 依例爲先取用, 亦令該廳會減之意, 敢啓, 傳曰, 知道事命下矣, 水原營軍兵試才後, 賞格所用木綿·箭竹, 令備局考例題給事啓下矣, 依癸卯年例, 兵曹餘丁木三同·本司所在箭竹三千箇題給之意, 敢啓, 答曰, 知道.

<비변사등록 40책, 숙종 12년 1686년 10월09일(음)>

경제/재정

右議政 閔黯 등이 水原과 南陽의 곡물을 永宗鎭 役員의 급료로 劃給하는 문제를 논의하다

이번 6월 초3일 대신과 비국 당상을 인견하여 입시하였을 때 우의정 민암(閔黯)이 아뢰기를, "영종진(永宗鎭)의 부근 고을에서 방출곡 2천 석을 인천부(仁川府)에 옮겨 주어 그 모곡(耗穀)을 취해 역원들의 급료로 주도록 할 것을 일찍이 결정하였습니다. 문서를 갖다 상고하니 각 고을 환상곡의 수량이 얼마 안되고 또 인천에 방출된 곡물이 너무 많아 앞으로 민폐가 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물러가 영종진의 급료로서 1년에 꼭 지급될 수량을 계산해 보니 미태조(米太租)를 합하여 80여 석이었습니다. 부근의 고을 중 수원(水原)과 남양(南陽)이 조금 넉넉하니 이 수량대로 해마다 획급하게 하고 영종진에서 배를 보내 운반해 가도록 하는 것이 마땅할 것 같습니다."하니, 임금이 그렇게 하라고 하였다.

훈련대장 이의징(李義徵)이 아뢰기를 "도감에서 군기를 만드는 장인들이 장기간 군문에 있으므로, 그들을 공제하는 반찬거리의 새우젓 20동이를 교동현(喬桐縣)에서 세를 거두어 상납해 왔는데 그 유래가 오래되었습니다. 요전에 병조판서 민종도(閔宗道)가 탐전에 품달한 일로 인해 이를 영구히 혁파시켰으므로 공제하던 반찬거리가 달리 나올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전에서 세로 거두는 새우젓을 얻어 보충해 쓰려고 하였으나 지금은 소속된 곳도 없고 선척도 아주 없으므로, 현재 역을 서는 장인들에게 식량만을 지급하고 반찬은 지급하지 못하니 참으로 보살펴 주는 도리가 못됩니다. 강화에 성을 쌓을 때 삼남에 배정하여 돌을 운반할 때 30척을 새로 만들어 온 이래로 세 군문에 10척씩 나누어 주었습니다. 지금 성 쌓는 역사가 끝났으니 마땅히 요전에 결정된 대로 모두 강화에 옮겨 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강화에는 그전에 준 선척의 수량이 많으니 30척의 배를 다 주지 않더라도 부족할 근심이 없습니다. 훈련도감에 준 배 10척 내에 4척은 그대로 도감에 두게 하고, 받기를 원하는 어부에게 직접 주어 그 선세의 새우젓을 거두어 장인들에게 주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하였는데, 좌의정 목래선(睦來善)이 아뢰기를, "이 선척을 강화에 이송할 것은 신이 결정했던 것입니다. 훈련대장이 4척의 배를 얻으려는 것은 장인들을 공제할 소용을 위한 것입니다. 이후로는 각 군문에서 잇따라 얻으려는 요청을 하지 못하도록 분부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4척은 훈련원에 소속시키되 각 군문에서 얻으려는 요청을 하지 못하도록 분부하라."하였다.

今六月初三日大臣·備局堂上引見入侍時, 右議政閔所啓, 永宗鎭附近處, 糶穀二千石, 移給仁川府, 取其耗穀, 以爲員役放料事, 曾已定奪矣, 取考文書, 則各邑還穀其數零星, 且仁川糶穀太多, 亦將爲民弊, 故退計永宗料米, 一年應下之數, 則米太租竝八十餘石, 而附近官中, 水原·南陽稍優, 依此石數, 逐年劃給, 使本鎭送船運去, 事涉便當矣, 上曰, 依爲之, 訓練大將李義徵所啓, 都監軍器造成工匠等長立軍門, 其供饋饌物所用白蝦二十甕, 自喬桐縣, 收稅上納, 其來已允矣, 頃因兵曹判書閔宗道, 陳達榻前, 永爲革罷, 故所饋之饌, 他無出處, 欲得漁船收稅蝦, 以爲補用之地, 而此時無屬處船隻絕無, 卽今立役匠人, 只給其糧, 未給其饌, 誠非撫恤之道, 江都築城時, 卜定三南運石船三十隻, 新造以來, 三軍門各十隻分授矣, 今則城役已畢, 所當依前日定奪, 盡數移給江都, 而江都則曾前所授船隻, 其數既多, 三十隻雖不盡得, 亦無不足之慮, 都監所授船十隻內四隻仍存, 都監逢授漁人之願受者, 取其稅蝦, 以給工匠何如, 左議政陸曰, 此船隻移送江都事, 臣曾已定奪矣, 訓將之欲得四隻者, 蓋爲饋餉將士之需, 而此後則各軍門, 勿爲續續請得事, 分付似好矣, 上曰, 四隻則許屬訓局, 各軍門勿爲請得事分付可也.

<비변사등록 46책, 숙종 18년 1692년 06월04일(음)>

경제/재정

收米를 輸納한 畿甸의 각 읍은 곡물을 分賑하거나 稅太를 감면하여 진휼할 것을 청하다

아뢰기를, "얼마 전 대가(大駕)가 주정소(晝停所)에 돌아오셨을 때에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고 수찰(手札)을 내리어 부로들을 위유하였는데 사지(辭旨)가 간절 측달하였으니 모든 생민이 뉘라서 고무하고 감축(感祝)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중에서도 기전(畿甸) 각 읍의 올봄 수미(收米)와 전세(田稅) 미태(米太)는 가을까지 물려서 받고 전세를 이미 납부한 고을은 진휼청의 곡물을 당겨다가 대충(代充)해 주라는 일 등은 한결같이 성상의 하교대로 즉시 거행해야 하겠으나 수원(水原) 등 25읍의 의당 내야할 봄철 수미가 합계 5천 3백 90석이고 작년 능행(陵幸) 때에 수미를 감면해 준 과천(果川) 등 6읍의 전세 미태가 합 1천 40석 13두인데 이를 모두 물려서 받기로 하면 호조와 선혜청에서 가을 이전까지의 수요를 당겨서 쓸 길이 없겠습니다. 그 대신을 모두 진휼청의 비축 중에서 빌려서 쓰고 가을까지 물려서 받기로 한 25읍의 수미와 6읍의 세미태(稅米太)를 모두 진휼청에 넘겨주어야 하겠으나 기타 금천(衿川)·진위(振威)·양천(陽川) 등 3읍은 이미 실어다가 바쳤으니 이 3읍은 진휼청의 곡물을 이미 납부한 수량만큼 당겨다가 나누어 주어야 하겠습니다. 한편 광주부(廣州府)에 있어서는 근래에 매우 조폐(凋弊)하였기 때문에 수미는 5년에 한하여 본부에 떼어주고, 공은 군향의 회안(會案)에 회록(會錄)하도록 이미 결정한 바 있었기 때문에 올 봄의 수미를 본부에서 이미 받았다 합니다. 그러니 임신조(壬申條:숙종 18년 1692)의 세태(稅太)를 특별히 전액 감면하여 조정에서 별도로 돌보아주는 뜻을 베푸는 것이 마땅하겠으니 이렇게 해조(該曹)와 해청(該廳) 및 경기감사에게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하니, 윤허한다고 답하였다.

啓曰, 頃者大駕還御晝停所, 招集民人, 特降手札慰諭父老, 辭旨懇惻, 凡在含生之類, 孰不聳動, 而感祝也, 其中畿甸各邑今春收米及田稅米太, 則待秋退捧, 田稅已納之邑則以該廳穀物移轉代給等事, 一依聖教, 劃卽舉行, 而水原等二十五邑春收米應納之數, 合五千三百九十石零及上年陵幸時, 收米已減之果川等六邑稅米太, 合一千四十石十三斗零, 竝爲退捧則該曹該廳之秋前需用, 實無推移之路, 其代竝以賑廳所儲取用後, 還以待秋退捧之, 二十五邑收米六邑稅米太, 竝移給賑廳, 而其他衿川·振威·陽川三邑, 業已輸納, 此三邑則以賑廳穀物, 依所納之數, 移轉分賑, 至於廣州一府, 以其近甚凋弊, 收米則限五年劃給, 太則以軍餉會錄會案事, 曾已定奪, 故今春收米, 自本府既已收捧云, 壬申條稅太, 特爲全減, 以施朝家別樣顧恤之意宜當, 以此分付該廳該曹及京畿監司處, 何如, 答曰, 允.

<비변사등록 47책, 숙종 19년 1693년 03월08일(음)>

경제/재정

還上을 받아들이는 일에 대해 아뢰다

아뢰기를, "호조의 계사에 '종전에는 각 읍에서 환자곡을 수봉하는 일을 한결같이 당년의 농사 풍흉에 따라 다 받든지 감해 받든지의 여부를 조정에서 품계하고 조례를 정하여 알려 주었었으나 작년에는 전고에 없는 은전으로 인하여 팔도 각 읍의 무진년 이전의 미수 환자곡은 모두 탕척하여 주고 다만 기사년 이후의 5년조 미수와 당년에 새로 나눠준 곡식만이 남았으나 조정에서 분등하여 감해 받으라는 명령이 없어서 본조와 상평청·진휼청에서는 모두 우선 수량대로 다 받으라고 독책(督責)하고 회안(會案)이 도착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각 도의 회안이 이제야 다 도착하여 그 문서를 상고해 보니 신구의 환자를 다 받은 자는 극히 적고 받지 못한 자가 태반입니다. (...) 또 구환자는 신환자에 비하여 받기 어렵다고는 하지만 한 되 한 말도 전연 받은 것이 없는 것으로 보아 애당초 마음조차 쓰지 않았음을 알

수 있으니 팽개치고 하찮게 여긴 실상이 참으로 통악스럽고 해괴합니다. 불가불 엄히 죄책을 물어 버릇을 잡아야 하겠으니 이상의 각 읍 수령은 의당 파직과 나추(拿推)의 벌로 시행하여 징계가 되도록 하여야 하겠으나 이 농사철을 당하여 제도의 허다한 수령을 일시에 교체하면 민폐가 참으로 적지 않을 것이니 모두를 본도로 하여금 영문에 나치하여 결장(決杖)하게 하고, 구환자의 미봉이 3분의 2에 달하고 신환자도 다 받지 못한 고을은 바로 전라도의 남원(南原)·금구(金溝)·순창(淳昌)·무장(茂長)·고부(古阜), 강원도의 강릉(江陵)·삼척(三陟)·양양(襄陽)·춘천(春川)·평창(平昌), 충청도의 아산(牙山)·보은(報恩)·문의(文義)·목천(木川)·온양(溫陽)·진천(鎭川)·보령(保寧)·전의(全義)·진잠(鎭岑), 황해도의 평산(平山)·봉산(鳳山)·신계(新溪)·수안(遂安)·금천(金川), 경기의 적성(積城)·여주(驪州)·용인(龍仁)·장단(長湍)·수원(水原)·양근(楊根)·마전(麻田)·지평(砥平)·포천(抱川)·영평(永平) 등입니다. 종전에 행한 벌로 논하여 중죄를 가함이 마땅하나 수령의 숫자가 많을 뿐더러 구환자를 전연 받지 못한 수령을 결장의 벌로 다스리기로 한다면 그 보다는 차등이 없을 수 없으니 수령들은 무겁게 추고하고 감관과 색리는 감영으로 하여금 착치(捉致)하여 형추(刑推)한 뒤에 계문하게 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종전에는 신·구환자 미봉에 대하여 월등하는 규정이 너무나 현격하게 달랐으나 나라의 규정이 이러하였기 때문에 각 읍에서도 구환자는 가벼이 여기고 신환자는 무겁게 여겨 해마다 포흠(逋欠)이 쌓이는 것이 오로지 여기에 연유한 것이니 변통하는 도리가 없을 수 없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무진년 이전의 누적된 미수를 이미 탕척하였고 영남의 경우는 경오년 이상의 미수마저 영곡(營穀)으로 충당하고 탕감해 주었으니 구환자의 미수로 민간에 남아 있는 수량은 실상 많지 않습니다. 지금 이후로는 미봉에 대하여 월등하는 규정에 왕년과 당년을 구분하지 말고 원수량을 통산하여 똑같이 시행한다면 필시 이렇듯 전연 받지 못할 이치는 없을 것이니 이렇게 조례를 정한다는 뜻으로 팔도에 분부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작년에 월등하여 해유한 것은 개정명령이 있기 전의 일이니 모두 해조로 하여금 종전의 규정대로 시행하게 하여야 합니다. 서북 양도와 황해도의 연안·배천·신천·재령·운율, 경기의 교동·풍덕·교하 등은 이미 재해가 우심한 속에 들었기 때문에 신·구환자의 미봉 수량을 거론하지 않았으니 해유에서 월등에 구애받는 일 등도 역시 거론하지 말라는 뜻으로 해조에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하니, 윤허한다고 답하였다.

啓曰, 戶曹啓辭, 從前各邑還上收捧事, 一從當年事豐歉, 畢捧·減捧與否, 自朝家稟啓, 定式知委, 而上年則因曠蕩之典, 八道各邑, 戊辰以上未收還穀, 竝皆蕩滌, 只餘己巳以下五年未收及當年條新分給之穀, 朝家, 既無分等減捧之令, 本曹與常平·賑恤廳, 竝皆責以准捧, 待其會案來到矣, 各道會案, 今始齊到, 相考文書, 則新舊還上, 准捧者, 絕少, 未捧者, 居多(…)且舊還上, 比之新分給, 雖曰難捧, 至於全無升斗之所捧, 可見其元不致意, 拋棄慢忽之狀, 誠極痛駭, 不可不重加罪責, 以懲其習, 以上各邑守令, 所當施以或罷或拿之罰, 以爲懲戒之地, 而當此農時, 諸道許多守令, 一時遞易, 則民弊, 誠爲不貲, 竝令本道, 拿致營門決杖, 舊還上未捧數, 多至於三分之二, 而新還上, 亦不爲畢捧之邑, 全羅道之南原·金溝·淳昌·茂長·古阜, 江原道之江陵·三陟·襄陽·春川·平昌·忠清道之牙山·報恩·文義·木川·溫陽·鎭川·保寧·全義·鎭岑·黃海道之平山·鳳山·新溪·遂安·金川·京畿之積城·驪州·龍仁·長湍·水原·楊根·麻田·砥平·抱川·永平等邑則論以從前施罰之道, 亦宜重責, 而非但守令數多, 舊還上全未捧之守令, 既施以決杖之罰, 不可無差等, 守令則從重推考, 監色, 令監營捉致刑推後, 啓聞宜當, 從前新舊還上未捧越等之規, 大相懸殊, 朝家定規如此, 故各邑, 亦以舊還上爲輕歇, 而新分給爲歸重, 年年逋欠之相積, 全由於此, 不可無變通之道, 且卽今則戊辰以

上流來未收，既盡蕩滌，而嶺南庚午以上未收，亦令以營穀，充上蠲減，則舊還上未收之在民間者，其數無多，自今以後，未捧越等之規，勿分往年與等內，通計元 元 數，一體施行，則各邑，必無如是全未捧之理，以此定式之意，分付八道宜番，而上年越等·解由，乃是令前之事，竝令該曹，依前規施行，西北兩道及黃海道之延安·白川·信川·載寧·長淵·殷栗·京畿之喬桐·豐德·交河等邑，既入於被災尤甚之中，故新舊還上未捧之數，不爲舉論，則解由·越等拘礙等事，亦爲勿論之意，分付該曹，何如，答曰，允.

<비변사등록 49책, 숙종 21년 1695년 04월16일(음)>

경제/재정

수원부의 미곡 수납에 대해 논의하다.

(…) 행부사직 이인엽(李寅燁)이 아뢰기를, "종전에 강화 이전곡의 미수로서 경기 고을에 산재해 있는 것은 남한산성에 납부토록 할 것을 진달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미수로서 수원(水原)에 있는 것이 5백 40여 석이 되는데, 수원은 경기의 중요한 곳이며 군병들도 거의 8천 명에 달하니 별도로 돌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라감사 민진원(閔鎭遠)의 말을 들으니 수원에는 현재 하루 분의 군량도 없다고 하니, 참으로 한심스럽습니다. 수원에 이전된 곡물로서 응당 남한산성에 납부해야 할 것을, 가을에 가서 수원부에 거둬들여 군량으로 만드는 것이 의당할 듯 하므로 감히 진달합니다."하니, 임금이 그렇게 하라고 일렀다.

(…) 行副司直李寅燁所啓，前以江都移轉未收之散在畿邑者，移納山城之意，仰達矣，其未收之在水原者，當爲五百四十餘石零，而水原，爲畿輔重地，軍兵亦幾至八千名，不可不別爲顧見，而聞全羅監司閔鎭遠之言，則卽今本府無一日之軍餉云，誠爲寒心，本府移轉之當納山城者，待秋收捧，於本府，留作軍餉，似爲得宜，故敢達矣，上曰，依爲之．

<비변사등록 53책, 숙종 29년 1703년 03월07일(음)>

경제/재정

환자곡을 받지 못한 諸道 守令들을 別單에 기록하여 들인다는 계와 그 別單

아뢰기를, "작년 여러 도의 환자곡을 우심(尤甚)하게 받아들이지 못한 수령들을 그전의 결정대로 조사하여 보고토록 하였는데 각 도의 보고서가 지금에야 다 도착되었습니다. 그 중 수어청의 군량도 여러 도의 환자곡 규례에 의하여 일체로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명목에 따라 구별하여 죄를 결정해야 합니다. 근년의 전례대로 말등(末等)인 자는 형장을 치고, 지차(之次)로 받아들이지 못한 자들은 모두 추고하는 것으로 별단에 기록하여 들였습니다. 곤장 치는 죄에 해당된 수령으로서 이미 교체되어 온 자는 의금부로 하여금 거행케 하고, 현직에 있는 자는 각기 감사로 하여금 감영에 잡아다 형장을 치게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심하게 받지 못한 고을의 책임자와 향소(鄕所)와 색리도 각기 도로 하여금 전례에 의하여 엄형으로 다스리라는 뜻을 의금부와 호조 및 여러 도에 아울러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하니, 윤허한다고 답하였다.

여러 도의 환자곡을 다 받아들이지 못한 수령을 등급을 나누어 논죄한 별단

경기

삭녕(朔寧):하등급임으로 형장을 침.

양근(陽根):지차(之次)임.

연천(漣川)·포천(抱川)·적성(積城)·부평(富平)·양천(陽川)·인천(仁川)·영평(永平)·죽산(竹山)·양주(楊州)·풍덕(豐德)·파주(坡州)·안산(安山)·통진(通津)·마전(麻田)·

지평(砥平)·용인(龍仁).

이상 16고을은 새 환자곡을 다 받아들이지 못했음. 해당 수령은 본도로 하여금 지명하여 추고할 것임.

개성부(開城府)·과주(坡州):하등급임으로 형장을 침.

장단(長湍)·평산(平山)

이상 지차(之次)인 두 고을 수령은 본도로 하여금 지명하여 추고함.

수어청

여주(驪州):하등급임으로 형장을 침.

수원(水原)·죽산(竹山)

이상 지차인 두 고을 수령은 본도로 하여금 지명하여 추고함.

(…) 啓曰, 上年諸道還上尤甚未捧守令, 依前定奪, 使之查出啓聞矣, 各道查啓, 今始畢到, 而其中守禦廳軍餉, 亦當依諸道還上之例, 一體施行, 故就其名目, 區別定罪, 依近年例, 居末決杖之次, 未准捧之類, 竝推考別單開錄以入, 而當爲決杖, 守令已遞歸者, 則令禁府舉行, 在官者則令各其道臣, 拿致營門決杖, 尤甚未捧邑, 次知·鄉所色吏, 亦令各其道, 依前嚴刑懲治之意, 該府該曹及諸道, 竝爲分付何如, 答曰, 允. 諸道還上未准捧守令, 分等論罪別單, 京畿, 朔寧, 居末決杖, 楊根之次, 漣川·抱川·積城·富平·陽川·仁川·永平·竹山·楊州·豐德·坡州·安山·通津·麻田·砥平·龍仁·以上十六邑, 新還上皆未准捧, 當該守令, 令本道, 指名推考, 開城府, 坡州, 居末決杖, 長湍·平山·以上之次兩邑守令, 令本道, 指名推考, 守禦廳, 驪州·居末決杖, 水原·竹山·以上之次兩邑守令, 令本道, 指名推考, (…)

<비변사등록 53책, 숙종 29년 1703년 05월25일(음)>

경제/재정

禮曹判書 閔鎮厚가 防禦使에 대한 조례를 통일하는 문제에 대해 논의하다

이번 11월 초6일 청대하여 입시하였을 때에 예조판서 민진후(閔鎮厚)가 아뢰기를, "방어사에 대한 조례가 각각 다릅니다. 수원(水原)과 광주(廣州) 두 고을의 예로 말하더라도 수원은 중군과 군관의 요미(料米)를 호조에서 회감해 주고 있는데, 광주는 선혜청에서 간략하게 중군의 요미를 주고 군관은 본래부터 요미를 주는 일 조차 없었습니다. 다 같은 방어사일 뿐더러 광주의 사체는 수원에 비하여 더욱 유별한데 매물차기가 이와 같으니 변통하는 도리가 있어야 하겠습니까. 묘당으로 하여금 품의하여 처리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하니, 임금이 그렇게 하라고 하였다.

今十一月初六日請對入侍時, 禮曹判書閔鎮厚所啓, 防禦使規制各異, 試以水原·廣州兩邑言之, 水原則中軍軍官之料, 皆自戶曹會減, 廣州則自宣惠廳, 略給中軍之料, 而軍官, 則元無給料之事, 不但同是防禦使, 廣州事體, 比水原尤爲別, 而埋沒如此, 合有變通之道, 令廟堂稟處何如, 上曰, 依爲之.

<비변사등록 55책, 숙종 30년 1704년 11월09일(음)>

경제/재정

수원의 料米를 논하다.

(…) 호조판서 조태채(趙泰采)는 아뢰기를, "현재 본진 군관의 요미(料米)는 다른 곳에서 나올 데가 없어 호조에서 수원(水原)의 회부(會付)곡물에서 그어 지급하여 매년 지출하며 이도 부족하여 또 인천(仁川)의 회부를 그어 지급하고 있으나 불과 수년에 역시 계속될 수

없을 것이니 사정은 매우 어렵습니다. 지금 만약 후하게 지세(地稅)를 거두면 군관의 요미도 이 가운데에서 나올 것입니다. 그러나 서울과 지방의 사대부가 재력을 소비하여 개간한 경우, 상호 매매한 것을 모두 빼앗는다면 백성의 원망은 반드시 많아질 것이니 이를 염려치 않을 수 없습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어영군을 옮겨 소속시키는 문제 및 산산문제는 아뢴 바에 의하여 하되 영종의 둔전문제는 다시 상의하여 여쭙어 처리하는 것이 좋겠다."하였다.

(…) 戶曹判書趙泰采曰, 卽今本鎮軍官料米, 他無出處, 自戶曹割給水原會付穀, 逐年上下, 此亦不足, 又爲割給仁川會付, 而不過數年, 亦不得繼, 事勢誠難, 今若厚捧地稅, 則軍官之料, 亦從此中出, 而第京外士夫之費財耕墾者, 互相買賣者, 一併奪取, 民怨必多, 此不可不慮矣, 上曰, 御營軍移屬事, 及蒜山事, 依所達爲之, 而永宗屯田事, 更加商議稟處可也.

<비변사등록 56책, 숙종 31년 1705년 05월29일(음)>

경제/재정

參贊官 趙泰老 등이 水原의 還上 耗租를 창고에 머물러 두는 문제에 대해 논의하다

이번 9월 초1일 주강 입시 때에 참찬관 조태로(趙泰老)가 아뢰기를, "신이 막 수원부사(水原府使)를 지냈으므로 양달하고자 합니다. 수원은 바로 기보(畿輔)의 중진(重鎭)이어서 아침에 명령하여 저녁 때 동원하는 군사가 거의 6천여 명이나 되며, 잡색군(雜色軍)과 합쳐 계산하면 8천의 군마(軍馬)가 있는 곳입니다. 병란(兵亂) 때 두번이나 근왕(勤王)하여 인조(仁祖)께서 특별히 장려하는 유음(諭音)을 내리기도 하셨습니다. 그후 나라에서 돌보아줌이 갑절이나 되었고 의뢰하는 바가 삼군문(三軍門)의 다음이 됩니다. 그러나 가장 허술한 것은 바로 환자(還子) 가운데 절반을 창고에 머물러 두지 않는 한 가지 일입니다. 큰 길목이고 큰 고을이어서 한 해의 용도가 아주 많은데 군관(軍官)과 중군(中軍)의 요미(料米)에 이르러서는 회부(會付) 환자의 모곡(耗穀)으로 회감(會減)하기 때문에 모미가 부족하면 그 본곡(本穀)을 사용하며, 본곡과 모곡이 모두 떨어진 후에는 상평청(常平廳)의 쌀을 사용하고, 상평청의 쌀이 떨어지면 진청의 쌀을 썼는데, 진청의 쌀이 또 다 되었기 때문에 작년에 지급할 것 역시 부족했습니다. 역시 당년의 환자 모조(耗租)를 쌀로 짊어 둔 것과 전에 남아 있던 것을 합쳐 모두 5백여 석인데 만약 1년이 지나면 역시 주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평시의 수용(受用)은 군관과 중군 등의 요미(料米) 및 직로(直路)의 방하(放下)에 지나지 않는데 혹 변란(變亂)이 있으면 허다한 군사들이 결코 양식을 싸지 못할 형세입니다. 김익훈(金益勳)이 별도로 비축한 곡물이 있어 군수(軍需)라고 이름하였는데, 여러 차례 흉년을 겪어 받아들이지 못한 것이 많아서 항상 남아 있는 것은 5백여 석에 불과합니다. 이밖에도 해마다 받아들이는 곡식이 있으나 군기(軍器)의 보수와 장사(將士)의 상격(賞格)을 모두 이것에 의지하고 있으며, 위급에 임하여 군사를 징집(徵集)할 때에 현재 있는 양식으로는 며칠을 지탱하지 못하게 되니, 양식이 없는 군사를 어디에 쓰겠습니까? 또 삼남(三南)의 큰 길목이어서 여러 도에서 근왕병(勤王兵)이 왕래하는 즈음에 접대할 양식 역시 어려운 형편입니다. 김덕기(金德基)가 아무 쌀이던 얻기를 청하는 일로 상소하였는데 3년 후에야 비로소 회계하기를 '다시 본부 곡물의 다소를 물은 후에 품처하겠다.'고 말하였는데, 신이 체직에 임하여 첩보(牒報)하지 못하였습니다. 신이 재임하고 있을 때 대동미 2천 석을 진청(賑廳)으로 옮겨 바꾸어서 빌려 썼으니, 올 가을에 마땅히 진청에 다시 갚아야만 합니다. 이 2천 석을 본관에 받아두고 평상시에 절반을 창고에 머물러 두어 조적(糶糴)한다면 위급할 때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진청은 여러 차례 흉년을 겪어서 매양 부족할 근심이 있다고는 하나 수

원은 아주 가까운 곳이니 임시로 가져다 쓰는 것이 어려울 것이 무엇이겠습니까?"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수원의 군병은 도감(都監)의 군병과는 다르고 큰 고장이다."하였다.

조태로가 아뢰기를, "연달아 흉년을 만나 군장(軍裝)과 복색(服色)의 잔폐함이 막심한데, 대저 이는 노고(勞苦)에 익힌 군병들이니 오래 가게 되면 서울에서 양성하는 군병보다 나을 것입니다."

하였고, 동지사 이인엽이 아뢰기를, "국가에 기보(畿輔)가 네 곳이 있어 양주(楊州)·장단(長湍)·광주(廣州)·수원 등의 고을이 왕성(王城)을 보호하니, 나라에서 설치한 뜻이 우연한 것이 아닙니다. 수원에 이르러서는 군마(軍馬)가 더욱 많으니, 양향을 조치하라는 말이 참으로 옳습니다. 그러나 2천 석을 받아서 모조리 받아 머물러 두는 것은 형세가 매우 어려우니, 1천 석은 받아서 머물러 두고, 1천 석은 상납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하매, 조태로가 아뢰기를, "유사(有司)인 신하는 경비의 쓰임을 염려해서이겠으나 1천 석은 매우 적으며, 또 1천 석을 만약 상납하게 한다면 한 집 안에서 혹 서울로 바치기도 하고 혹은 본관에 바치기도 하니, 크게 민폐가 됩니다. 만약 면(面)을 나누어서 각기 납부하게 하면 고통스럽고 쉬운 것이 고르지 않아서 반드시 억울하다고 일컬음이 많을 것입니다."하였고, 이인엽이 아뢰기를, "2천 석을 모조리 받아 머물러 두기를 허락하면 어찌 상쾌하지 않겠습니까마는 지금의 형세가 시원한 정사를 베풀기가 어렵습니다."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1천석을 먼저 주도록 하라."하였다.

今九月初一日晝講入侍時，參贊官趙泰老所啓，臣纔經水原府使，欲有所仰達矣，水原，乃畿輔重鎮，朝令夕發之軍，殆至六千名，竝計雜色軍，則八千軍馬所在處也，兵亂時，再次勤王，仁廟特下獎諭之音，其後朝家之顧恤有倍，其所恃賴，亞於三軍門，而最爲疏虞者，卽還上中，無半一節也，孔道巨邑，一年用度浩繁，至於軍官·中軍之料，以會付還上耗會減，故耗米不足則用其本穀，本耗俱罄之後，用常平米，常平米既竭，而用賑廳米矣，賑廳之米又盡，故去年應下，亦患不足，臣以當年還上耗租，作米捧置者，前留竝五百餘石，而若過一年，則亦不給矣，平時需用則不過軍官·中軍等料米，及直路放下，而脫有緩急，許多軍士，斷無裹糧之勢矣，金益勳，有別備穀物，名曰，軍需，屢經凶荒，未捧者多，恒留不過五百餘石，此外亦有逐年所捧之穀，而軍器修補，將士賞格，全靠於此，緩急聚軍之時，則見糧不支數日，無糧之軍，何處用之乎，且當三南孔道，諸道勤王兵往來之際，饋餉亦難矣，金德基，以某樣米請得事，陳疏，三年後，備局，始回啓，以更問本府穀物多少後，稟處爲辭，臣臨遞，不得牒報矣，臣在任時，大同米二千石，移換賑廳取用，今秋當還納賑廳，此二千石捧留本官，常時一半留庫，爲糶糴則緩急可以得力矣，賑廳，累經凶年，每有不足之患云，而水原至近，臨時取用，亦何難乎，上曰，水原軍兵，異於都監軍兵，儘是大處矣，泰老曰，連值凶歲，軍裝服色，殘弊莫甚，而大抵是服勞之軍，致遠則有愈於京師所養之兵矣，同知事李寅燁曰，國家有畿輔四處，楊州·長湍·廣州·水原等邑，夾輔王城，朝家設置，意非偶然，而至於水原，軍馬尤多，糧餉措置之言，誠是，而二千石移轉，盡數捧留，則形勢甚難，一千石捧留，一千石上納，似好矣，泰老曰，有司之臣，以經用爲慮，而一千石甚爲零星，且一千石若令上納，則一家之內，或納京中，或納本官，大爲民弊，若分面各納，則苦歇不均，必多稱冤矣，寅燁曰，二千石，盡許捧留，則豈不快哉，卽今形勢，難施快政矣，上曰，一千石，先給可也。

<비변사등록 57책, 숙종 32년 1706년 09월03일(음)>

경제/재정

特進官 閔鎮厚 등이 水原의 還上 米곡의 숫자가 매우 적어 變通하는 문제에 대해 논의하다

이번 9월 27일 주장 입시 때 특진관(特進官) 민진후(閔鎭厚)가 아뢰기를, "수원(水原)은 바로 기보(畿輔)의 중진(重鎭)으로서 다른 곳과는 다름이 있는데 환자(還子) 미곡의 숫자가 매우 적기 때문에 신이 진청(賑廳)에 봉직하고 있을 때 이전미(移轉米) 2천여 석을 조치해 주어 그대로 군량을 삼고자 하였습니다. 지난번 전(前) 승지(承旨) 조태로(趙泰老)가 이 일을 진달하였는데, 이조판서 이인엽이 '모조리 허락하기는 어려우니 절반은 상납하게 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만약 첩가미(帖價米)와 합쳐서 계산하면 1천 몇 백석을 밀돌지 않게 되는데, 예에 따라서 조적(糶糶)하면 혹 전처럼 허술하게 되는 폐단이 없지 않을 것이니, 청주(淸州)의 예에 의해서 비국미(備局米)라 이름하고 비국에서 주관하도록 하면 착실하게 되는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하였고, 지사(知事) 이인엽이 아뢰기를, "이 일은 비록 미처 품정하지 못했으나 지난번 비국에서 공문을 보낼 때에 역시 말미(末尾)에 적어서 분부하였습니다."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그렇다면 마땅히 일체로 해야 한다."하였다.

또 아뢰기를 "수원은 마땅히 독립된 진(鎭)으로 해야 한다는 의논이 옛날부터 있었으며 요즈음에는 이인엽이 더욱 힘껏 주장해 왔으나 다만 제색(諸色)의 신역(身役)을 갑자기 옮겨 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변통하지 못했었습니다. 이번에 총융청(摠戎廳)의 군병을 이정청(釐正廳)에서 제도를 정한 후에 도고(逃故)가 아주 많아져 장차 다른 군병을 주어야 할 형세입니다. 만약 수원의 군안(軍案)에 든 제역(諸役)을 숫자에 맞추어 조치해 주고, 각기 그 본사(本司)는 여러 군문의 여군(餘軍)이나 혹은 비국의 여정(餘丁)으로서 그 대신을 충당해 준다면 방해됨이 없을 듯하므로 이인엽과 상의했더니, 그의 뜻도 역시 그렇기 때문에 감히 이처럼 양달합니다."

하니, 지사 이인엽이 아뢰기를, "조종조(祖宗朝)에서 기보(畿輔)에 네 진(鎭)을 설치한 것은 대개 왕성(王城)을 보호하기 위해서였는데, 근래에 피폐되어 모두 모양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신이 매양 이를 걱정하여 여러 번 진달해 변통하고자 했으나 선처할 방도가 없었기 때문에 하지 못했습니다. 총융사가 전적으로 수원을 관할하는데 총융청이 탕패(蕩敗)되어 장차 수습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총융청이 모양을 이룬 연후에야 수원 역시 의지할 수가 있습니다. 총융청의 결원을 삼군문의 여군(餘軍)으로서 수원에 있는 자를 조치해 주어 총정하는 것이 마땅할 듯합니다."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아된 바가 참으로 좋으니, 그렇게 하라."하였다.

今九月二十七日晝講入侍時，特進官閔鎭厚所啓，水原，乃是畿輔重鎭，與他有異，而還上米穀，其數甚少，故臣待罪賑廳時，劃給移轉米二千餘石，欲爲仍作軍餉矣，頃者前承旨趙泰老，以此陳達，則吏曹判書李寅燁，難於盡許，使以一半上納，而若竝帖價米計之，則亦不下一千累百石矣，循例糶糶，或不無如前虛疏之弊，依淸州例，名以備局米，自備局主管，則似有着實之效矣，知事李寅燁曰，此事，雖未及稟定，頃日備局行關時，亦已分付於紙尾矣，上曰，然則自當一體爲之矣。

又所啓，水原，宜作獨鎭之議，自古有之，近日李寅燁，尤爲力主，而只以諸色身役，猝難移定之，故不得變通矣，今者，摠戎廳軍兵，自釐正廳定制之後，逃故居多，勢將更給他軍，若以水原案付諸役，準數劃給，而各其本司則以諸軍門餘軍，或備局餘丁，充給其代，似無所妨，與李寅燁相議，則其意亦然，故敢此仰達，知事李寅燁曰，祖宗朝，設置折輔四鎭者，蓋爲夾輔王城，而近來疲弊，俱不成貌樣，臣每以此爲憂，累欲陳達變通，而無善處之道，故未果矣，摠戎使，專管水原，而摠廳蕩敗，將難收拾云，摠廳，能成樣然後，水原，亦可以依賴，摠廳闕額，以三軍門餘軍之在水原者，劃給充定，似宜矣，上曰，所達誠好，依爲之。

<비변사등록 57책, 숙종 32년 1706년 10월01일(음)>

경제/재정

예조참판 閔鎭遠이 수원의 미수 환상곡을 논하다.

(…) 예조참판 민진원은 아뢰기를, "신이 일찍이 수원(水原)과 강화(江華) 두 고을의 수재(守宰)를 지냈는데 수원은 무인년 이전의 미수 환상곡은 문서도 명백하지 않아 아무리 받고 싶어도 받을 데가 없었고 강화는 문서는 명백하였으나 당자는 태반이 도고(逃故)여서 형세가 일족에게 침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년조 수만 석의 환상곡도 매양 12월까지 구급하고 독징하여야만 겨우 다 받을 수 있었으니 오래된 환상곡은 민간 형편은 쟁겨서 낼 길이 없고 관가에서는 재촉하여 받을 겨를이 없습니다. 또 강도에서는 연해 백성을 사역시킬 일이 있으나 작년 시혜(施惠)할 때에도 군향곡이기 때문에 유독 은혜를 입지 못하여 소신이 그때 감히 탕적하자는 뜻으로 계문(啓聞)하였으나 묘당에서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또 듣자니 각 읍 수령들이 구환상(舊還上)을 받으라는 영이 내린 뒤에 백성에게는 사실 받아낼 가망이 없었기 때문에 부득이 자신의 월봉(月俸)과 모곡(耗穀) 약간 석(石)을 넘겨 채워서 갚고 죄를 면하려고 하였으나 원래 민간에서 받아낸 일은 없었다 합니다. 받기가 어려운 실정은 이를 미루어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헛 문서는 버리고 실지 혜택을 베푸는 것이 타당하다고 여기옵니다."(…)

(…) 禮曹參判閔鎭遠曰, 臣曾經水原·江華兩邑, 水原則戊寅以前未收還上, 文書亦不明白, 雖欲徵捧, 指徵無處, 江華則文書明白, 當身太半逃故, 勢將侵徵於一族, 當年條數萬石還上, 每於十二月內, 囚禁徵督, 僅能畢捧, 久遠還上則民間形勢, 實無備納之路, 官家亦無催捧之暇, 且江都, 連有役民之事, 而上年推惠之時, 以軍餉之故, 獨未均霑, 小臣, 敢以蕩滌之意啓請, 而廟堂不許, 且聞各邑守令, 舊還上徵捧令下之後, 民間則實無徵捧之勢, 故不得已以月俸及耗穀若干石, 推移備償, 以爲免罪之地, 而元無徵出民間之事云, 難捧之狀, 推此可知, 臣意則棄虛簿而施實惠, 實爲允當矣. (…)

<비변사등록 58책, 숙종 33년 1707년 09월03일(음)>

경제/재정

領議政 崔錫鼎 등이 수원의 隱結 문제로 해당관리를 사핵할 것을 논하다

(…) 또 아뢰기를, "신이 궐내에 들어와 예조참판 민진원(閔鎭遠)의 상소에 대한 비답을 보니 묘당으로 하여금 품처케 하라는 명이 계셨습니다. 경기도사 심상윤(沈尙尹)이 수원(水原)의 은결(隱結: 양안(量案)에 누락시킨 토지)에 대해서 계문(啓聞)하여 민진원이 상소를 올려 수실(首實: 사실을 자백함)하였는데 상소의 사연을 보면 처음에는 호조에 논보하고 이어 또 탐전에 진달하였으니 그 뜻은 오로지 백성을 위함에 있었고 사사로 쓰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른 결과는 차이가 있으나 이미 재해의 보고와 관련된 것이니 그대로 둘 수는 없으므로 본도로 하여금 사핵하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하니, 부제학 이돈(李墩)이 아뢰기를, "재해의 사목은 극히 중대한 만큼 먼저 추문(推問)한 뒤에 사핵하는 것이 사체에 당연한 일입니다. 어떻게 지레 사핵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우부승지 황일하(黃一夏)는 아뢰기를, "호조에서 이 초기(草記)를 본원에 보냈으나 재해의 보고는 사체가 중대하여 처분이 있기 전에는 앞질러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과연 물리쳤던 것입니다. 먼저 발문(發問)하여 그 함사(緘辭)를 본 뒤에 사핵하는 것이 마땅할 듯합니다."하였다.

최석정이 아뢰기를, "도사의 계문에서 이미 유사(攸司)로 하여금 품처케 하기를 청하였으니

나문하고 사핵하는 것이 법례(法例)에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민진원이 이미 상소하여 수
실하였으니 바로 사핵을 행하는 것도 무방할 듯합니다."

하고, 좌의정 이유는 아뢰기를, "당초에 윤취상(尹就商)을 유임시킨 것은 특별히 관사(官
事)를 위하여 과격적으로 변통하자는 뜻에서 나온 것입니다. 사실 상례적으로 논할 수 없겠
으나 도사를 나문하라는 명이 내린 뒤에 또 이렇듯 치계(馳啓)가 있었으니 자못 부당합니
다. 그러나 일이 이미 탄로되었고 또 민진원의 소로 보면 그것이 백성을 위한 짓임을 알 수
있으니 그 사이의 곡절을 다시 사문한 뒤에 참작하여 처분하는 것이 마땅할 듯합니다."하
니, 임금이 이르기를, "나문한 뒤에 사핵하는 것이 사체로는 당연하나 민진원의 소로 보면
백성을 위하자는 데서 나온 일이니 먼저 사핵하는 것도 불가할 것은 없겠오."하였다.

최석정은 아뢰기를, "전후로 재직한 관장은 거명(擧名)하면서 조사한 연후라야 경중을 구별
할 수 있겠습니까."하니, 임금이 그렇게 하라고 하였다. (…)

(…) 又所啓, 臣來到闕下, 伏見禮曹參判閔鎮遠疏批, 則有令廟堂稟處之命矣, 京畿都事沈尙
尹, 以水原隱結事啓聞, 而閔鎮遠, 陳疏首實, 觀其疏語, 則初既論報戶曹, 繼又陳達榻前, 其
意專在爲民, 而非私用之事, 則與他隱結有異, 而既係災傷所報, 則不可因而置之, 令本道, 行
查何如, 上曰, 當初之事, 出於爲民, 而先令本道行查, 可也, 副提學李整曰, 災傷事目極重,
先爲推問後行查, 事體然也, 何可徑先行查乎, 右副承旨黃一夏曰, 戶曹以此草記, 來到本院,
而災傷啓聞, 事體重大, 未處分之前, 不可徑先捧入, 故果爲退却, 先爲發問, 觀其緘辭後查覈,
似爲得宜矣, 崔曰, 都事啓聞, 既以令攸司稟處爲請, 則拿問行查, 法例然也, 而此則閔鎮遠,
既已陳疏首實, 直爲行查, 似無妨矣, 左議政李曰, 當初尹就商之仍任, 特出於爲官事罷格變通
之意, 則固不可論以常規, 而都事之拿命既下後, 又有此馳啓, 雖涉不當, 事既現發, 且以閔鎮
遠之疏觀之, 可知其爲民, 而其間曲折, 更加查問後, 參酌處分, 似當矣, 上曰, 拿問後行查,
事體則然, 而以閔鎮遠疏觀之, 則事出爲民, 先爲行查, 未爲不可矣, 崔曰, 前後官, 指名查出,
然後輕重, 可以區列矣, 上曰, 依爲之.(…)

<비변사등록 58책, 숙종 33년 1707년 11월22일(음)>

경제/재정

行副護軍 閔鎮遠이 釐正廳의 일에 대해 이인협과 논의할 수 있게 해달라고 청하다

이번 9월 29일 대신과 비국 당상을 인견하여 입시하였을 때에 행부호군 민진원(閔鎮遠)이
아뢰기를, "옛그제 연중(筵中)에서 소신(小臣)은 이정청(釐正廳)의 일을 그대로 살피자는
명을 받들었습니다. 이정청의 일은 이제 이미 1년이 넘었고 전후로 신칙한 바가 한 두번이
아니었으니 의당 진즉 봉행하였어야 하나 다만 난처한 사단이 있기 때문에 감히 이렇게 양
달하옵니다. 작년에 신더러 이익수(李益壽)와 함께 이정청의 일을 구관(句管)하라고 계하하
셨으나 이정청의 그 말은 문서를 당초에 구관한 자가 미처 결말을 짓지 못하였고, 신은 연
달아 외직에 있었기 때문에 그 두서를 알지 못합니다. 비록 구관한 사람도 그 이해와 편부
(便否)를 알지 못하는데 하물며 신처럼 전연 알지 못하는 처지에서이겠습니까? 처음부터 담
당하여 익히 알고 있는 사람은 이조판서 이인엽(李寅燁)이어서 매사를 이인엽에게 물어보아
야만 거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이인엽과 하루 밤을 공해(公廨)에서 만나기로 약속하고 그와
상의하여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였는데, 그때에 이인엽이 사람의 비방을 듣게 되어 여러 달
을 인협하여 들어가 있었고 계속해서 신과 이익수가 모두 수원(水原) 전결(田結)의 일로 연
달아 대죄(待罪) 중에 있다가 결국은 그 일로 파직되었기 때문에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지
금 이인엽이 또 인협하고 들어갔기 때문에 어제 낭청을 보내서 사석(私席)에서 상의하자는

뜻으로 타진하였더니 대답이 본직(本職)을 내놓기 전에는 절대로 공사(公事)에 간섭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인엽의 출사(出仕)가 언제 있을 지는 알 수 없으나 성명(成命)이 내린 처지에서 이토록 지연(遲延)하게 되었기 때문에 황공하여 감히 양달하옵니다."하였고, 영의정 최석정이 아뢰기를

"지난번 두 사람이 함께 구관하라고 결정하여 계하하였으나 민진원이 전관(專管)하기가 어려워 이렇듯 양달하게 된 것입니다. 대체로 이정청에서 여군(餘軍)을 미처 다 조치하지 못한 자들을 여러 관사에서 매우 시급히 얻고자 하므로 지금 먼저 이 일을 처지하려고 가려내서 초(草)를 잡는 중입니다. 이익수는 지금 강 밖에 멀지 않은 곳에 나가 있으니 이는 서신으로 문의해도 어려울 것이 없겠고, 이인엽에 있어서는 비록 전조(銓曹)에 불안한 점이 있어 이 일에 간여하고 싶어 하지 않으나 다른 관사(官司)도 지금 보살피고 있으니 이정청의 일이라고 해서 인협하고 보살피지 않을 수는 없을 듯합니다. 만일 사사로 상의하여 한다면 공석(公席)에서 수응(酬應)하는 것과는 다름이 있으니 함께 구관하여 빨리 처리하게 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하니, 임금이 그렇게 하라고 하였다.

영의정 최석정이 아뢰기를, "금년의 흉황은 비록 을병(乙丙:을유년과 병술년) 양년과는 조금 다르다 하더라도 경기 호서 이외의 다른 도도 면흉(免凶)한 곳이 없습니다. 전에는 흉년이 들면 백성들의 요역(徭役)을 많이 견감해 주었습니다. 금년에는 비록 전처럼 모두 감해 주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그 경중(輕重)을 참작해서 일찍 분부하는 기조가 없을 수 없겠기에 감히 이렇게 양달하는 바입니다. 제도(諸道)의 우심읍(尤甚邑)에는 당년조의 제반 신역(身役)을 특별히 3분의 2를 감하고 지차(之次)와 초실읍(稍實邑)은 다 받도록 하되 구미수(舊未收)의 신포(身布)에 있어서는 다 받기 어려울 것 같으나 작년조는 거의 절반을 받았으니 이는 형편을 보아가면서 받는다 하더라도 병술년<재작년에 해당함> 이전조는 우선 중지하는 것이 어떨런지 모르겠습니다. 신이 여러 대신 및 재신(宰臣)과 상의하여 보니 소견이 대체로 같았고, 몇몇 재신은 말하기를 '만일 감해 주기로 한다면 겨우 3분의 1을 감하게 되니 비록 적다고 할지 모르나 이것도 합산하면 많은 수량이고 타도의 농사는 경기에 비하면 차등이 없을 수 없으니 경기의 우심처 이외에는 감해서 받기 어려울 것 같다.'고 하였습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기왕 우심읍을 분등(分等)하여 계문한 뒤에 경기에만 감해 주고 타도에는 미치지 않는다면 민정(民情)은 틀림없이 고르지 못하다고 할 것인데 조정의 정령(政令)은 마땅히 대체(大體)가 어떠한가를 살펴야 할 것입니다. 또 제도에 비록 우심처가 있다 하더라도 경기는 다른 도와는 자별한 만큼 대동미(大同米)를 양감(量減)하는 조치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지차(之次) 이상은 비록 두루 미치기 어려우나 우심처만은 대동미를 2두씩 감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또 경기감사의 장계를 보건대 인천(仁川)의 답곡(畓穀)은 전연 수확할 것이 없으니 불가불 별도의 견감(蠲減)이 있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또 순력(巡歷)할 때에 신에게 와서 말하기를 '인천·수원(水原)·남양(南陽) 등지가 우심 중에서 가장 우심하나 남양과 수원(水原)은 인천에 비하면 그래도 낫다.'고 하였습니다. 인천이 가장 우심한 것은 이로 미루어 알만 하니 인천은 특별히 3두를 감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입시한 재신(諸臣)에게 하순(下詢)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밖에 있을 때에 필시 상의하였을 것이나 여러 대신도 각각 소견을 말하는 것이 좋겠다."하였다.

행예조판서 조상우(趙相愚)는 아뢰기를, "밖에 있을 때에 원임대신 및 제재(諸宰)가 이미 상의하였는데 대신이 진달한 바가 참으로 좋습니다."하였고, 행형조판서 강현(姜鉉)은 아뢰기를, "밖에 있을 때에 신 역시 상의하였으니 다시 다른 이의(異議)는 없습니다."하였으며, 호조판서 김우항(金宇杭)은 아뢰기를, "밖에 있을 때에 이미 상의하였으니 신도 이의가 없

습니다."하였고, 행부호군 민진원(閔鎭遠)은 아뢰기를, "여러 의논이 모두 금년의 흉황은 경기가 더욱 심하고 다른 도의 우심읍은 경기와 똑같이 견감할 수는 없으므로 마땅히 차등이 있어야 한다고 말하였는데 이 말은 사실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다만 생각컨대 흉년에 백성을 돌보는 정사로는 전세(田稅)를 몇 말 감한다 하더라도 소민(小民)은 그 혜택을 입지 못하고, 신역(身役)을 견감해 주어야 가장 실혜(實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렇듯 비상한 흉황을 당하여 경비가 비록 다하였다 하더라도 구태어 차등하고 구별할 것은 없을 듯합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경기와 타도의 우심읍의 신포는 똑같이 3분의 1을 감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대신이 참작하고 진달한 말이 좋은 것 같은데 제신도 이의가 없으니, 그대로 하는 것이 좋겠다."하였다.

今九月二十九日大臣·備局堂上引見入侍時, 行副護軍閔鎭遠所啓, 日昨筵中, 小臣, 以釐正廳仍察事, 承命矣, 釐正廳事, 今已經年, 前後申飭, 亦非一再, 所當趁卽奉行, 而第有難處之端, 故敢此仰達矣, 上年臣與李益壽, 同爲句管釐正廳事, 啓下, 而釐正廳許多文書, 當初句管者, 米及了當, 臣則連在外職, 故不知其頭緒, 雖句管之人, 猶難知其利害便否, 況如臣之全未曉解者乎, 自初擔當而精練者, 乃吏曹判書李寅燁也, 每事問於寅燁, 然後可以爲之, 故與寅燁, 約以會宿於公廨, 商議停當矣, 其時寅燁, 遭人言, 累朔引入, 繼而臣與益壽, 皆以水原田結事, 連在待罪中, 終至坐罷, 故未果矣, 卽今寅燁, 亦方引入, 故昨送郎廳, 問以私室同議之意, 則答以本職未遞之前, 決難參涉於公事云, 寅燁出仕, 未知當在何時, 而成命之下, 遷就至此, 故惶恐敢達矣, 領議政崔曰, 頃日以兩臣同爲句管事, 定奪啓下, 而鎭遠難於專管, 有此仰達矣, 蓋釐正廳餘軍之未盡區處者, 諸各司請得甚急, 方欲先充此事, 抄出起草, 而益壽方在江外不遠之地, 此則以書札問議非難, 至於李寅燁則雖以不安於銓職, 不欲可否於此事, 而他司亦方察任, 則釐正廳事, 似不可引嫌不察矣, 若私相往復而爲之, 則與公會酬應有異, 使之同爲句管, 從速區處, 似好矣, 上曰, 依爲之, 領議政崔所啓, 今年凶荒, 雖與乙丙, 稍異, 畿湖之外, 他道亦無免凶之處, 在前凶年, 則百姓徭役, 多所蠲減, 今年, 雖難如前劃減, 亦不可無參量^{ㄱㄱ}, 趁早分付之道, 故敢此仰達, 諸道尤甚邑, 則當年條諸般身役, 特減三分之一, 而之次·稍實邑則使之准捧, 至於舊未收身布, 則似難盡捧, 而上年條則幾至一半收捧, 此則雖當觀勢收捧, 而丙戌以上條, 則姑爲停捧, 未知何如, 臣與諸大臣及諸宰相議, 則所見大抵相同, 而數三宰臣, 以爲若以所減言之, 則僅三分之一, 雖若爲少, 而合以計之則亦多矣, 他道年事, 比京畿不無差間, 京畿尤甚處外, 似難減捧云, 而臣之意, 則以爲既以尤甚邑分等啓聞之後, 只減於京畿而不及於他道, 則民情必以爲不均, 朝家政令, 當看大體之如何矣, 且諸道, 雖有尤甚處, 京畿, 則與他道自別, 大同米宜有量減之事, 之次以上, 雖難徧及, 而尤甚處則大同米減二斗, 似好矣, 且見京畿監司狀啓, 則仁川畚穀, 全無所收, 不可不判樣蠲減云, 且於出巡時, 來言于臣曰, 仁川·南陽·水原等邑, 皆是尤甚之最者, 而南陽·水原, 若比於仁川, 則反復爲勝云, 仁川之爲其尤甚, 推此可知, 仁川特減三斗, 似好矣, 下詢于入侍諸臣, 何如, 上曰, 在外時, 必已相議矣, 諸大臣, 各陳所見, 可也, 行禮曹判書趙相愚曰, 在外時, 與原任大臣及諸宰, 已爲商量, 大臣所達, 誠好矣, 行刑曹判書姜錡曰, 在外時, 亦已商確, 更無他議矣, 戶曹判書金字杭曰, 在外時, 既已商確, 臣亦無異議矣, 行副護軍閔鎭遠曰, 諸議, 皆以爲今年凶荒, 京畿尤甚, 他道尤甚邑, 不當與京畿爲一體, 蠲減之政, 宜有差等云, 此言固結矣, 而但念凶歲恤民之政, 田賦雖減數斗, 小民未蒙其澤, 而身役蠲減, 最爲實惠, 當此非常之凶荒經費, 雖曰, 匱竭, 恐不必區別差等, 臣意則京畿及他道尤甚邑身布, 一體減三分之一, 似好矣, 上曰, 大臣參量陳達之言, 似好, 諸臣亦無異辭, 依此爲之可也.

<비변사등록 59책, 숙종 34년 1708년 10월02일(음)>

경제/재정

開城留守 金萬塚 등이 松都 軍額의 변동 문제에 대해 논의하다

이번 정월 20일 대신과 비국 당상을 인견하여 입시하였을 때에 개성유수 김만채(金萬塚)가 아뢰기를, "송도가 조잔한 실상은 조정에서 이미 진념하고 있으나 폐단이 쌓이고 괴로워 백성들이 감내하지 못하고 해마다 도산(逃散)하여 호구가 점점 줄어드니 군액(軍額)을 대정(代定:대신 충정함)할 길이 참으로 없습니다. 대신에게 하문하여 처리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대신의 의견은 어떠한가?"하였다.

좌의정 서종태(徐宗泰)가 아뢰기를, "본부의 민정(民丁)을 이미 전속(全屬)하게 하였으므로 포보(砲保) 기(騎), 보병(步兵) 등 명목의 군액 숫자가 파다(頗多)하나 대정할 길이 심히 어려운 까닭으로 아직도 그대로 둔 곳이 많습니다. 기왕에 보장의 중지가 되었으니 결국에는 본부에 전부 소속되어야 하겠으므로 유사신(有司臣)이 적의하게 변동하여 계속 대정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하고, 우의정 김창집(金昌集)은 아뢰기를, "나라에서 기왕 송도를 보장의 땅으로 삼고 있으니 민정을 본부에 소속시키면 마땅하나 대정할 숫자는 병판 민진후(閔鎭厚)로 하여금 상의하여 조정하게 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하고, 민진후(閔鎭厚)가 아뢰기를, "무릇 전속(全屬)이라 하는 것은 경내의 인민을 전부 구관(句管)하고 여타 역명(役名)은 모조리 없애는 것을 말합니다. 근래에는 전속한 곳이 점차 많아졌기 때문에 일시에 다 넘겨주지 못하고 있는데 수원(水原)의 경우 경영한 지 몇 년 만에 겨우 숫자를 충당할 수 있었습니다. 송도도 먼저 이천(伊川)의 군병을 환정(換定:응역하는 곳을 바꿈)하였으나 미처 넘겨오지 못한 자가 아직도 많습니다. 지금 김만채(金萬塚)의 말을 들으니 본부 소관의 군병으로 다른 고을에 거주하는 자를 환정하려고 한다 하였습시다. 그렇게만 되면 참으로 편리하고 타당하겠으니 우선 그 말대로 허가하고 혹시 부족하면 앞으로 형편을 보아 점차 환정하여 전속의 실효가 있게 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비록 일시에 다 환정하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우선 그렇게 변동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하였다.

今正月二十日大臣・備局堂上引見入侍時，開城留守金萬塚所啓，松都凋殘之狀，朝家既已軫念，而弊端積苦，民不堪忍，逐年逃散，戶口漸減，軍額代定，實無其路，下詢大臣，而處之何如，上曰，大臣之意何如，左議政徐曰，本府民丁，既令全屬，而如砲保騎步等名額，其數頗多，代定之路，甚難之故，尙多仍存矣，既是保障重地，則終當盡屬本府，有司之臣，量宜推移，隨續代定爲當矣，右議政金曰，朝家，既以松都，爲保障之地，民丁，宜屬本府，代定之數，令兵判閔鎭厚，相議爲之似好矣，鎭厚曰，凡全屬云者，一境人民，役數句管，而他餘役名，一併蠲罷之謂也，近來全屬處，漸多之故，不能一時盡爲移給，如水原則經營數年，僅得充數，松都亦先以伊川軍相換，未及推移者尙多，今聞金萬塚之言，則欲以本府所管軍兵居他邑者，換定云，如是則實爲便當，爲先依其言許之，而如或不足，則前頭觀勢，漸次換定，俾有專屬之實效宜矣，上曰，雖不能一時盡換，爲先如是變通似好矣。

<비변사등록 61책, 숙종 37년 1711년 01월23일(음)>

경제/재정

特進官 尹就商이 西關의 환곡을 水原으로 옮겨 흉년을 구제하는 일을 건의하다

지난 초3일 주강에 입시하였을 때에, 특진관(特進官) 윤취상(尹就商)이 아뢰기를, "신이 외람되이 수원유수(水原留守)에 있을 때에, 조정에 여쭙어 군병들에게 연습을 시켰으며 그 후 임직(任職)에 있는 자도 따라 시행하여 중지하지 않았으므로 병사의 기예(技藝)는 정예(精銳)하여 도감(都監)에 뒤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금년에 줄지에 흉년을 맞이하여 연변에는 그 해를 입기까지 하였습니다. 지난번에 부사(府使) 김보택(金普澤)의 말을 들으면 백성으로서 군대에 편입이 된 자가 군장(軍裝)을 관부(官府)에 바치고 다른 곳으로 구걸을 가려고 하므로, 갖가지로 타일러서 우선 머물러 있다고 하니 허둥대고 있는 민사(民事)를 대체로 알 수 있습니다. 엇그제 묘당에서 김보택의 상소로 인하여 진휼청의 쌀을 팔도록 하는 일을 복주(覆奏)한 바가 있습니다. 다만 본부(本府)에는 다른 전포(錢布)가 없으니 그 발매(發賣)하는 값도 또한 마련하기가 어렵고 가령 1천여 석의 곡물을 얻는다 하더라도 5만여 백성들을 두루 구호하기는 어려운 형편입니다. 또 본부의 환곡(還穀)은 본래 수가 적으니 지금 별달리 돌보는 일이 없다면 실로 구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대체로 본부는 경기(京畿)의 중진(重鎭)이니 조가에서 평소 의지하는 일이 다른 곳과는 다릅니다. 이 큰 흉년을 맞이하여 특별히 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신이 일찍이 서관(西關)의 환곡을 보니 다른 도보다 가장 넉넉하였습니다. 지금 1천여 석을 옮겨 주어 구호하게 하여 사방으로 흩어질 우려에서 벗어나게 하면 앞날 위급한 사태가 있을 때에 옷사람을 위하여 죽는 의리를 권장할 수 있습니다. 신이 이러한 뜻으로 대신에게 문의하니 역시 그렇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감히 이를 아뢰니다."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묘당으로 하여금 품처하게 하는 것이 좋다."하였다.

또 아뢰기를, "수원(水原)이 독진(獨鎭)이 된 뒤에 소속 양병(良兵)들에게 여러 신역(身役)을 면제하고 다만 6두(斗)의 쌀만을 수봉하니 그 덕혜에 누구나 감격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과거 흉년 든 해에 군병의 신역 가운데 쌀 12두를 바치는 자는 으레 경감하는 일이 있으나 6두를 바치는 자에게는 그 본역(本役)이 다른 것에 견주어 가벼움으로 인하여 경감을 허용하는 규정이 없었습니다. 지금 이 군병 등이 바치는 6두를 감하여 받는 것은 부당하나 본부는 다른 고을과 다릅니다. 지금 6두를 바치는 자에게 각각 1두의 쌀을 경감하면 감하는 바의 곡물은 비록 많지 않은 듯 싶으나 한 집안 안에서 4~5인이 역에 응하는 부류가 입는 혜택은 적지 않습니다. 신은 본청의 물력이 유지하기 어려움을 돌보지 않고 감히 이를 아뢰니다."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각각 1두를 감하는 것이 좋다."하였다.

今九月初三日晝講入侍時，特進官尹就商所啓，臣待罪水原時，稟于朝廷，鍊習卒伍，而其後蒞任者，遵行不廢，故兵技精利，不亞都監，而不幸今年猝值災荒，至於沿邊，最被其害，頃聞府使金普澤之言，則民人之編於行伍者，請納軍裝於官府，將欲行乞於他境，故多般慰諭，姑爲留存云，其民事之遑急，概可知矣，日昨廟堂，因金普澤疏陳，以賑廳米許賣事，有所覆奏，而但本府無他錢布，其所發賣之價，亦難拮据，藉令貿得千餘石之穀，五萬餘口之民，勢難周救，且本府還穀，本來數少，今若無別樣顧恤之道，則實無濟活之策，大抵本府，以畿輔重鎭，朝家之平日倚重，非如他等，當此大無之歲，不可不另加軫念，臣曾觀西關還穀，最優於他道，今以千餘石許給移轉，使之調賑，俾免流散之患，則他日緩急，可責死長之義，臣以此意，就議於大臣，則亦以爲然，故敢此仰達，上曰，令廟堂稟處，可也，又所啓，水原爲獨鎭之後，所屬良兵，除其諸般身役，只捧六斗米，其爲德惠，孰不感激，在前荒歲軍民身役中納米十二斗者，則例有蠲減之道，而至於納六斗者，以其本役，比他輕歇之故，未嘗有許減之規矣，今此軍兵等所納六斗，不當減捧，而本府與他邑有別，今若以納六斗者，各減一斗之米，則所減之數，雖似不多，一家內四五人應役之類，蒙惠不貲，臣不顧本廳物力之難支，敢此仰達，上曰，各減一斗，可也。

<비변사등록 66책, 숙종 39년 1713년 09월03일(음)>

경제/재정

宣惠廳에서 臨陽君의 喪家에 石物 운반의 役價를 지급할 것을 청하다

비변사에서 아뢰기를, "어제 들으니 죽은 임양군 환(臨陽君 桓)의 상가에 임금의 전교로 인하여 경기감영에서 석물을 운반해 주는데, 그 민정(民丁)이 각 고을에 두루 널려 있다고 하였습니다. 배정한 문서를 갖다보니 대소의 석물 1백 개를 수원(水原)·광주(廣州)·교동(喬桐)의 세 고을 이외에도 한결같이 민호에 따라 33고을에 배정하였습니다. 또한 상당히 큰 석물은 운반하는 일꾼이 수백 명이 쓰이며, 길이 조금 먼 고을에서는 부득이 민호에 돈을 거두어 일꾼을 고용하는데 이는 그럴 수 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그런데 경기의 민력은 본래 피곤하고 현재는 바쁜 농사철입니다. 게다가 한재(旱災)가 혹심하여 파종이 연기되므로 민간은 날마다 비오기를 기다리며 황급한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상여 메고 묘 만들 수많은 일꾼과 각종 말아 대응할 일 이외에, 거둬 광대한 별도의 역사가 생겨 온 도가 소란하다고 합니다. 임금께서 재차로 전교하신 것은 참으로 돈독하고 구휼하시려는 특은에서 나온 것입니다. 또한 석물을 편의에 따라 운반해 주라는 전교도 민력을 돌보시는 훌륭한 뜻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때의 민폐가 이같은 지경에 이르렀으니 마땅히 변통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석물을 운반해 주는 것이 일정한 법률은 아니나 특명의 전교가 내려는데 전연 폐지한다는 것은 온당치 못합니다. 선혜청으로 하여금 본가에 품삯을 헤아려 주게 하여 궁민의 대단한 폐단을 없애는 것이 실로 사리에 합당할 것입니다. 감히 아뢰옵니다."하니, 그렇게 하라고 답하였다.

司啓曰, 昨聞卒臨陽君桓喪家, 自京畿監營, 因傳教輸運石物民丁, 遍及於各邑云, 取見分定文書, 則大小石物一百十餘箇, 水原·廣州·喬桐三邑外, 一從民戶, 分定於三十三邑, 其石物之頗大者, 則曳運民夫, 當用累百名, 而道里稍遠之邑, 不得已斂錢民戶, 以雇其役, 其勢然也, 畿甸民力, 本來疲困, 卽今正當劇農, 旱災孔酷, 播種愆期, 民間日望雨澤, 方在遑急之中, 而數多擔持造墓軍及各樣責應之外, 重有此浩大別役, 一道騷然云, 自上再次傳教, 實出於敦恤之特恩, 而石物隨便運給之教, 亦有以仰見顧恤民力之盛意矣, 此時民弊至於如此, 宜有所變通, 今此石物運給, 雖非常典, 特教之下全然停廢, 似涉未安, 令惠廳量給役價於本家, 以除窮民大段之弊實合事宜敢啓, 答曰, 依爲之.

<비변사등록 68책, 숙종 41년 1715년 04월27일(음)>

경제/재정

領議政 金昌集 등이 南城의 移轉穀을 水原府에 捧留하는 문제에 대해 논의하다

지난달 30일 대신과 비국 당상을 인접하여 입대하였을 때에 영의정 김창집(金昌集)이 진달하기를, "수원부사(水原府使) 이유민(李裕民)의 상소에서 남한산성의 이전곡(移轉穀)을 본부의 읍창(邑倉)에 봉류(捧留)하기를 청하여 묘당으로 하여금 품쳐게 하라신 영이 있었습니다. 그 상소에서 이르기를 '수원에서 남한산성까지는 약 70~80리이나 산비탈을 오르고 내리는 것을 감안하면 거의 백 리가 되니 왕래하는 대가(駄價)만 해도 지출이 너무 많습니다. 대체로 본부의 동계(東界)는 광주(廣州)의 서계(西界)와 가까운 곳은 5~10리이고 멀다고 해야 20~30리가 넘지 않으나 광주의 서계는 남한산성과는 말은 비록 한 고을이라 하더라도 거리가 삼식(三息)에도 갈 수 없는 원거리이기 때문에 매양 조적 때를 당하면 광주 백성들이 괴로움을 호소하여 왔습니다. 그러니 지금 만일 본부의 동계 백성이 받아먹을 쌀을 가을에

가서 본부의 읍창에 봉류한다면 본부 백성이 갑절을 더 내는 폐단은 저절로 없어질 것이고 명년 봄에 가서 풀어 줄 때에 광주 서계의 백성으로 하여금 본부의 읍창에서 쌀을 받아 가게 한다면 광주 백성의 원성과 고통은 저절로 없어질 것이니 참으로 이른바 일거양득이라 할 것입니다' 고 하였습니다. 군향(軍餉)은 중대한 사안이니 제 자리에 도로 바치는 것이 사체로 보아 참으로 마땅한 일인데 일시나마 백성들을 편리하게 하는 도리로는 소청대로 허가해도 무방할 듯합니다."

하였고, 예조판서 민진후(閔鎭厚)가 아뢰기를, "신이 현재 수어사(守禦使)를 맡고 있기 때문에 이 일에 대해서 상세히 알고 있습니다. 전부터 다른 고을에서도 이렇듯 변통한 일이 있어 왔으나 다만 수원의 읍창이 광주 경계에서 얼마나 먼 지를 알 수 없습니다. 또 연전에는 한 고을에서 이전곡을 봉류하여 이듬해 봄에 광주 백성들이 일제히 몰려갔다가 곡식이 조잡하여 받지 않고 돌아와 피차간에 모두 낭패가 심하였습니다. 지금도 혹 이러한 폐단이 있게 된다면 당해 부사는 그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터이니 이 점은 신척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였으며, 김창집이 아뢰기를, "미질(米質)이 좋지 않으면 광주 백성이 필시 받고자 하지 않을 터이니 미리 신척하여 정하게 받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하니, 그렇게 하라고 답하였다.

今八月三十日大臣·備局堂上引接入對時，領議政金所達，**水原府使**李裕民上疏，以南漢移轉捧留本府邑倉爲請，而有令廟堂稟處之命矣，其疏以爲，自**水原**至南漢幾七八十里，上下山坂，可當百里，往來馱價，所費滋多，蓋本府之東界，與廣州之西界，近則十里五里，遠不過二三十里，而廣州西界之於南漢，名雖一州，相距不可三息之遠，故每值糶糴，廣民稱苦，今若以本府東民受食之米，當秋成，捧留本府邑倉，則本府之民，倍納之弊自除，及明春分糶之時，俾廣西之民，來受厥米於本府邑倉，則廣民怨苦之端，自祛，眞所謂一舉而兩得其宜云，軍餉重大，還納本所，事體固宜，而其在一時便民之道，依所請許之，似爲無妨矣，禮曹判書閔鎭厚曰，臣方待罪守禦使，故詳知此事矣，目前他邑，亦有如是變通之事，而但未知**水原**邑倉之距廣境遠近，果如何也，且向年，有一邑捧留移轉，及其翌年春，廣民齊進，以穀其麤劣，不受而來，彼此俱甚狼狽，今或有此弊，則當該府使，亦難免其責，此則不可不申飭也，金曰，米色不好，則廣民必不願受，預爲申飭，精捧可矣，上曰，依爲之。

<비변사등록 70책, 숙종 43년 1717년 09월01일(음)>

경제/재정

提調 閔鎭厚가 守禦廳 등의 巡視를 중단하는 문제에 대해 논의하다

지난 24일 약방에서 입진하여 입시하였을 때에 제조 민진후(閔鎭厚)가 아뢰기를, "수어청(守禦廳)과 충융청(摠戎廳)에서 순시(巡視)하는 문제로 지난 가을에 이미 하교가 계셨으나 곧 칙사의 행차로 인하여 봄에 가서 다시 여쭙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 후 또 칙사의 행차를 치러 경기 백성들의 곤궁은 더욱 심하니 이러한 때에 순시하는 것은 거행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의정 조태채(趙泰采)가 신에게 말을 전하여 정지하시도록 아뢰게 하였으므로 감히 여쭙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형세가 이러하니 정지하는 것이 좋다."하였다. 민진후가 아뢰기를, "충융사 이기하(李基夏)가 이 문제로 방금 장계하였으나 회계(回啓)치 않겠음을 감히 아뢰입니다."

하니, 임금이 좋다고 하였다. 또 아뢰기를, "남한산성(南漢山城)의 이전미(移轉米)로서 미

쳐 실어다 바치지 못한 것 2천 석을 관서(關西)에 보내는 일로써 이미 조정의 명령이 있었으나 수원(水原), 남양(南陽), 안산(安山)에 있는 것을 보낸 것 외에 625석이 그 수에 미치지 않았습니다. 죽산(竹山)은 물가에서 꽤 멀어 더 말할 것이 없고, 비록 여주(驪州)로 말하더라도 두 곳에 나누어 바쳐야 하며 다시 배[船]에 포장(包藏)하여 실을 때에 비단 본 고을에 폐단이 많을 뿐만 아니라 관서에 운송하는 일도 지연될 우려가 없지 않으니 지금 이 625석을 진흥청에서 우선 수송하고, 관서에서 미처 상환(償還)하기 전에 진흥청의 용도에 혹 부족함이 있으면 수어청 경청미(京廳米)로 그 수에 맞추어서 보내는 것도 해로울 바 없습니다. 이와 같이 진흥청에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아뢴 바가 편의할 듯싶으니 이와 같이 분부하는 것이 좋다."하였다.

今正月二十四日藥房入診入侍時，提調閔鎭厚所啓，守禦・摠戎兩廳巡歷爲之事，前秋已有下教，而施因勅行，以待春更稟之意定奪矣，厥後又經勅行，畿民困弊莫甚，此時巡歷，有難舉行，右議政趙送言于臣，欲令陳達停止，故敢稟，上曰，形勢如此，停止可也，鎭厚曰，摠戎使李基夏，以此事纔有狀啓，而不爲回啓之意敢達，上曰，唯，又所啓，南漢移轉米未及輸納者二千石，送于關西事，已有朝命，而水原・南陽・安山所在者割送之外，六百二十五石未准其數，竹山，去水邊頗遠，固無可論，而雖以驪州書之，兩處分納，再次裝船之際，不但在本邑多有弊端，關西運送，亦不無遷就之慮，今此六百二十五石，自賑廳爲先輸送，而關西未及還償之前，賑廳用度如或不足，則以守禦京廳米，准其數移送，亦無所妨，以此分付賑廳何如，上曰，所達似爲便好，以此分付可也。

<비변사등록 71책, 숙종 44년 1718년 01월25일(음)>

경제/재정

領中樞府事 閔鎭遠이 水原 陽也串를 적간하여 경계를 확정하는 문제에 대해 논의하다

이 달 22일 영중추부사 민진원이 뵈기를 청하여 입시하였을 때에 민진원이 아뢰기를, “신은 지극히 황공한 일인 줄 알면서도 감히 진달하옵니다. 지난번 수원 목장(水原牧場)의 일로 회계(回啓)한 사연 때문에 온당치 못하다는 비답을 내리시기에 이르렀으니 황송함을 금(禁)하지 못하겠습니다. 사복시는 비록 중대한 임무를 담당하고 있다고는 하나 지금은 어승마(御乘馬)도 세우지 못하고 있으며, 본래는 넉넉하다고 일컬어져 왔지만 지금은 탕잔(蕩殘)함이 유달리 심한데 이는 모두 신의 잘못이오나 이러한 등등의 회계 공사(回啓公事)도 완곡하게 진달하지 못하여 임금의 하교가 있게 하였으니 신의 죄가 크옵니다. 사복시 제조의 소임을 교체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내가 어찌 잘못이라 했던가? 임금과 신하 사이에는 숨김이 없게 되기를 바랐기 때문에 비답의 내용이 그와 같았던 것이다. 한 번 조사한 뒤에 다시 경계를 조사한다면 이는 본관을 믿지 못하겠다는 뜻이다.

수원부사는 근시(近侍) 중에서 가려서 보냈는데 어찌 믿을 수 없겠는가?” 하였다.

민진원이 아뢰기를 “성상의 하교에서 대체(大體)를 지켜야 한다는 하교는 참으로 좋습니다. 신도 일찍이 먼저 대체를 살피야 한다는 뜻으로 진계(陳戒)한 적이 한 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한갓 대체만 보고 소절(小節)은 살피지 않는다면 역시 허술한 폐단이 있게 됩니다. 더구나 민폐와 상관(上干)이 있는 바에 어떻게 범연히 할 수 있겠습니까? 신이 수원부사를 믿지 못한 까닭은 당초 타량(打量)할 때에 궁차(宮差:궁가에서 보낸 差員)는 양야궐이 [陽也串]의 목장만을 타량한다고 하였으며, 수원부에서는 감색(監色)을 보내서 타량하는데 참관하게 하였을 뿐입니다. 어떻게 경계를 정한지 알았겠습니까? 조사를 행하기로 작정하였을 때에 수원부사로 하여금 조사하게 하였다면 필시 먼저의 타량과는 달라졌을 터이니 어찌

수원부사를 믿지 못하여 그랬겠습니까? 궁장토(宮庄土)와 사복시를 막론하고 둔토(屯土)를 경작하는 사람이 내는 세는 차이가 없지만 궁가(宮家)에 이속(移屬)된 뒤에는 백성들의 원성이 특히 심하니 필시 까닭이 있을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사관(查官)이 이른바 궁가에 속하거나 사복시에 속하거나 그리 큰 차이는 없으나 궁가에 속하면 혹 세를 더 내는 폐단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은 그 말이 사실인 듯하다. 해당 궁가에 신칙해야 하겠다.” 하였다.

민진원이 아뢰기를, “수원목장에 설치한 감목관(監牧官)은 100여 필의 국유마(國有馬)를 보살피고 둔전에서 거둔 곡식으로 감목관 이하의 원역(員役)에 삭수(朔數)를 계산하여 요미(料米)를 지급해 왔습니다. 양야꽃이를 잃은 뒤로는 양성(陽城)의 얼마 되지 않은 둔전(屯田)만이 남았는데 그 수입으로는 반년 동안 요미를 줄 수량도 되지 못합니다. 형편이 감목관을 없애고 국유마를 옮겨야 하겠으나 마정(馬政)의 소중함도 생각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처음에 판부(判付)하고 싶었으나 대신이 필시 다시 말이 있을 것이기에 기다리기로 하였다. 대저 비리(非理)로 낙송(落訟:敗訴)한 자가 매매할 수 있는 물건을 관가에 귀속시키는 일은 심히 불가하기 때문에 곧바로 사복시의 둔전을 궁가에 떼어주게 한 것인데, 지금 타량할 즈음에 어떻게 이병희(李秉禧)의 문기(文記)로써 그 경계를 정할 수 있겠는가? 절반을 사복시에 이속시키라고 분부하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민진원이 아뢰기를, “그러면 양야꽃이[陽也串]는 성상의 하교대로 절반을 분속(分屬)하고 수원부로 하여금 직접 적간하여 경계를 확정 한 후에 비국과 본 사복시에 보고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그렇게 하라. 의당 타량을 해야 할 것이다. 궁차에게 속임을 당하였다고 하니 이번에는 내사(內司:내수사의 약칭)의 관원을 보내서 본관과 합동하여 절반을 떼어주게 하되 이렇게 한 후에도 사복시에서 전처럼 둔민(屯民)에게 침징한다면 둔민들이 양징(兩徵)을 필시 감당하지 못할 것이니 이 점을 각별히 감목관에게 신칙하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今正月二十二日，領中樞府事閱請對入侍時所啓，臣極知惶恐，而敢達矣，頃以水原牧場事回啓事，致勤未安之批，不勝惶悚，太僕雖曰，該司係是重務，而卽今御乘，不能備立，本寺素稱富饒，今則蕩殘特甚，此皆臣罪，而此等回啓公事，亦不能委曲陳達，致勤聖教，臣罪大矣，太僕提舉之任，乞賜遞斥，上曰，予豈非之乎，君臣之間，欲爲有懷無隱，故批旨如此矣，既查之後，更查定界，則是不信本官之意，水原府使，以近侍中差遣，豈可不信乎，閱曰，聖教中當持大體之教誠好，臣嘗以先察大體之意，陳戒者非止一再矣，徒觀大體，而不察小節，則亦有疎略之弊矣，況民弊所關何可泛忽乎，臣之無信水原之意，當初打量時，宮差只稱陽也串牧場打量，則水原府定送監色，眼同打量而已，何以知定界限哉，及定行查之時，若令水原行查，則亦必與前打量有異，臣豈以本府爲不可信而然哉，勿論宮莊及太僕，屯耕者之納稅無異，而移屬宮家之後，民怨特甚，必有所由矣，上曰，查官所謂屬宮家屬太僕，無甚異同，而屬宮則，或有加稅之弊云者，此則其言果然，當申飭該宮，閱曰，水原牧場設置監牧官，看百餘匹國馬，而以屯田所收之穀，牧官以下員役，計朔放料矣，既失陽也串之後，只餘陽城若干屯田，以其所收，不足爲半年放料之資，勢當革罷牧官，移出國馬，而馬政之所重，此亦不可不念矣，上曰，初欲判付，而大臣必更有言，故姑待之矣，大抵以非理落訟者，所賣之物，屬之官家，事甚不可，故直以司僕屯田，割給宮家，則今於打量之際，何可以李秉禧文記，付定其界限乎，直爲折半，屬太僕事分付可也，閱曰，然則陽也串，依聖教折半分屬，而今令水原府，親審摘奸，定其界限後，報備局及本寺何如，上曰，依爲之，當初爲打量，謂之見欺於宮差，今則遣內司官員，與本官眼同分半割給，而如是之後，太僕依前侵徵於屯民，則民人必難堪兩侵，以此各別申飭于監牧官可也。

<비변사등록 79책, 영조 2년 1726년 01월25일(음)>

경제/재정

富平府使 洪禹齊가 摠戎廳의 收米軍을 줄이거나 혁파하는 문제에 대해 논의하다

이 달 12일 의릉(懿陵 : 경종릉)을 전알(展謁)하고 재실(齎室)에 들어간 뒤에 경기감사 이교악(李喬岳) · 수원부사(水原府使) 김려(金礪) · 양주목사(楊州牧使) 홍중주(洪重疇) · 부평부사(富平府使) 홍우제(洪禹齊)를 유대시키고 인견하여 입시하였을 때에 부평부사 홍우제가 아뢰기를, “부평은 강도진무사(江都鎭撫使)의 전영장(前營將)입니다. 속오군(束伍軍) 700명이 있어 위급한 일이 있을 때에 힘을 얻고 있으나 한편으로 충용청의 수미군(收米軍) 600여 명이 있는데 쌀을 거두기 어려움을 염려하여 토착한 자들만 가려 수미군에 채웠기 때문에 속오군에 있어서는 도리어 의지할데 없는 자들로 구차하게 액수를 채워 도산자(逃散者)가 매우 많습니다. 이들은 강도의 대변군(待變軍)이나 조잔하기가 이와 같으니 만일 위급한 일이 있으면 장차 어디에 쓰겠습니까? 이른바 충용청의 수미군을 절반으로 줄이거나 혹 혁파한 연후에야 비로소 속오군에 전력을 다하여 후일 힘을 얻을 수 있는 군병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이 폐단은 지난번 하직하는 수령 장진기(方震夔)의 진달로 인하여 이미 알았다. 이로 미루어보면 경기에 있어서도 이 폐단이 거의 같은 것 같다. 방진기가 진달할 때에 하교한 바대로 일체 거행하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今二月十二日懿陵展謁, 入齎室後, 京畿監司李喬岳 · 水原府使金礪 · 楊州牧使洪重疇 · 富平府使洪禹齊留待引見入侍時, 富平府使洪禹齊所啓, 富平乃江都鎭撫使前營將也, 有束伍軍七百名, 脫有緩急, 可以得力, 而又有摠戎廳收米軍六百餘名, 故慮其收米之難, 有根着者, 悉填於摠戎軍, 至於束伍, 則反以無依者, 苟充額數, 故逃散甚多, 此是江都待變之軍, 而疲殘如此, 脫有不虞, 將焉用哉, 所謂摠戎收米軍, 或半減或革罷然後, 始可專意束伍, 而庶可爲他日得力之軍矣, 上曰, 此弊頃因下直守令方震夔所達, 已知之矣, 以此推之, 則畿邑此弊似同, 方震夔所達時下教, 一體舉行可也.

<비변사등록 79책, 영조 2년 1726년 02월14일(음)>

경제/재정

水原府使 金礪가 환자곡을 軍餉으로 변동하는 문제에 대해 논의하다

같은 날 입시하였을 때에 수원부사 김려가 아뢰기를, “본부는 본래 웅부(雄府)라고 일컬어져 왔으나 군향(軍餉)은 매우 적습니다. 원호(元戶)는 자그마치 1만 2,000여 호에 이르고 있으나 각양 환자곡은 1만 3,000여 석에 지나지 않으니 호수를 따져 나누어 주자면 수량이 극히 적습니다. 혹 흉년이나 만나면 변동할 방도가 없는데 일찍이 신축년(辛丑年 : 경종 1, 1721)에는 진흥청의 쌀 1,000석을 얻어 군민(軍民)들에게 나누어 주었더니 연달아 흉황을 만나 지금까지 받지 못하였습니다. 사세가 올 가을에는 다 받아서 진흥청에 갚아야 하겠는데 경창(京倉)으로 운반할 때에는 오래 선마가(船馬價) 등 잡비가 있어야 합니다. 거둬 기근이 든 뒤라서 원곡도 제대로 채워서 받기 어려운 판에 잡비이겠습니까? 신의 어리석은 생각으로는 본부에 받아두었다가 그대로 군향(軍餉)으로 만들면 잡비는 자연 없어도 되고 본부의 군향도 보탬이 되어 실로 공사간에 편의로움이 많을 듯합니다. 조금 전에 이 일로 대신에게 의견을 물었더니 대신도 그렇게 여겼기 때문에 감히 양달합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일이 매우 순편(順便)한 것 같다. 대신의 의견도 그러하다면 진달한 대로 시행하

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同日入侍時，水原府使金礪所啓，本府素稱雄府，而軍餉甚少，元戶多至一萬二千餘戶，而各樣還穀，不過一萬三千餘石，計戶分給，數甚零星，或當歉歲無路推移，而曾於辛丑年間，請得賑廳米一千石，分給軍民矣，連值凶荒，至今未捧，至於秋成，勢將畢捧，還送賑廳，運納京倉之時，例有船馬價雜費，荐飢之餘，元數尙難準捧，況雜費乎，臣之愚意，莫如捧留本府，仍作軍餉，則雜費自可除減，本府軍餉，亦有所補，公私實爲多便矣，纔以此事，就議于大臣，則亦以爲然，故敢此仰達矣，上曰，事極順便，大臣之意如此，依所達施行可也。

<비변사등록 79책, 영조 2년 1726년 02월14일(음)>

경제/재정

京畿監司 李喬岳이 高陽郡에서 받아간 江都米를 捧留하여 진홀하는 문제에 대해 논의하다 이 달 12일 의릉(懿陵)을 전알하고 재실에 들어간 뒤에 경기감사 이교악(李喬岳)·수원부사(水原府使) 김려(金礪)·양주목사(楊州牧使) 홍중주(洪重疇)·부평부사(富平府使) 홍우제(洪禹齊)를 유대시키고 인견하여 입시하였을 때에 경기감사 이교악이 아뢰기를, “고양군(高陽郡)에서는 강도미(江都米) 330석을 계묘년(癸卯年: 경종 3, 1723)에 받아 와서 아직까지 실어다가 바치지 못하여 모미(耗米)까지 합하면 지금 439석이 되었습니다. 작년 가을에 본 자리에 실어다 바치라는 영이 있었으나 본군에서 만일 이 쌀을 놓친다면 올 봄에 백성을 구제할 길이 없어 한편으론 수봉하면서도, 한편으론 논보하였으나 겨울철이 이미 깊어져 운송이 더욱 어려워 끝내 본 자리에 실어다 바치지 못하였습니다. 군수 김후연(金後衍)은 이 일로 처지가 난처하게 되어 장계하여 파직시켰으나 임금께서 파직하지 말라는 명이 계셔 얼마 전에 환임(還任)하였습니다. 만일 그대로 봉류(捧留)하여 진홀하라는 영이 없으면 지금은 의당 강도에 실어다가 바쳐야 하는데, 대체로 본군의 민호는 3,000에 가까우나 각곡 원환자[元還上]는 1,000석에도 차지 못합니다. 비록 북한산성의 군향 1,000여 석을 봉류한 것이 있기는 하나 민호를 따져보면 오히려 부족하여 앞으로 농량(農糧)을 계속하여 지급할 길이 없습니다. 당초에 강도미를 기어코 봉류하려고 한 것은 사세로 보아 당연합니다. 고양군의 강도미는 우선 봉류하였다가 풀어서 진홀하고 가을에 가서 실어다 바치는 것이 편리하고 옳을 듯합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지난번 전 감사의 장계를 본즉 강화유수(江華留守)는 군향을 중히 여겨서 그러했으나, 본 군수가 기어코 봉류하려고 한 것은 백성을 위하는 뜻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파직하지 말고 환임하게 한 것이다. 지금 진달한 말을 들으니 원 수량이 많지 못하다 하였다. 농사일은 한창 바빠지는데 어떻게 갚겠느냐? 아뢰대로 시행하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今二月十二日懿陵展謁，入齋室後，京畿監司李喬岳·水原府使金礪·楊州牧使洪重疇·富平府使洪禹齊，留待引見入侍時，京畿監司李喬岳所啓，高陽郡江都米三百三十石，癸卯年受來仍未輸納，竝其耗米今爲四百三十九石，上年秋有輸納本所之令，而本郡若失此米，則今春無路救民，一邊收捧一邊論報，冬節已深輸運尤難，終未得輸納於本所，郡守金後衍，以此難安，至於狀聞罷職矣，自上有勿罷之命，纔已還任，若無仍留分賑之令，則今當輸納於江都，而蓋本郡民戶，將近三千，元還各穀未滿千石，雖有北漢軍餉千餘石捧留者，而計其民戶猶患不足，前頭農糧無路繼給，當初必欲捧留江都米者，事勢固然，高陽郡江都米今姑仍留分賑，待秋輸納，恐爲便當矣，上曰，頃見前監司狀啓，則江留雖重軍餉，本郡倖之必欲捧留，乃出於爲民，故使之勿罷還任矣，今聞所達之言，元數不多，春事方殷，豈可還償耶，依所達施行可也。

<비변사등록 79책, 영조 2년 1726년 02월15일(음)>

경제/재정

右參贊 沈宅賢 등이 賑恤廳의 移轉穀을 軍餉에 會錄하는 문제에 대해 논의함

같은 날 입시하였을 때에 우참찬 심택현(沈宅賢)이 아뢰기를, “지난번 의릉(懿陵: 경종의 능침)을 전알(展謁)하셨을 때에 수원부사(水原府使) 김려(金礪)의 계달로 인하여 진흥청의 이전곡(移轉穀) 1,000석을 군향(軍餉)에 회록(會錄)하라고 윤하(允下)하셨습니다. 이번의 이 이전곡은 경자년(庚子年: 숙종 46, 1720)에 수원부의 대동미(大同米)와 교환하여 떼어준 것이니 다른 이전곡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해마다 받지 못하였다고 칭하고 상납하지 않다가 이제와서 군향에 회록하기를 청하니 부당한 일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니 군향에 회록하지 말고 가을에 가서 받아서 상납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임금의 이르기, “그때 대신이 이 일이 옳다고 하였는데 대신이 또한 이 사실을 아는가?” 하였다. 우의정 홍치중(洪致中)이 아뢰기를, “수원부사 김려가 과연 이 말을 하였기에 신도 들었으나 신의 생각으로는 이 곡식을 구태여 군향에 회록할 것이 없이 본부의 원환자곡이 많지 못하니 상진청의 곡식으로 유치하였다가 평상시에 풀었다 거두었다 하여 환자곡을 만들면 이것이 바로 진흥청의 곡식이 되고 긴급이 있으면 군향도 될 수 있는데 하필이면 군향으로 명목을 지을 것이 있겠습니까? 상진청의 곡식이라 칭하고 그대로 본부에 유치하는 것이 편당(便當)할 것 같습니다.” 하니, 임금의 이르기, “그러면 그대로 하라.” 하였다.

同日入侍時, 右參贊沈宅賢所啓, 向於懿陵展謁時, 因水原府使金礪所啓, 賑廳移轉一千石會錄軍餉事允下矣, 今此移轉, 則庚子年以該府大同米, 相換割給, 則與他移轉有異也, 年年稱以未捧, 不爲上納, 而到今以會錄軍餉爲請, 事涉不當, 勿爲會錄於軍餉, 使之待秋收捧上納何如, 上曰, 其時大臣以此事爲可云矣, 大臣其亦知之耶, 右議政洪曰, 水原府使金礪, 果有此言, 故臣亦聞之而臣則以爲, 此穀不必以軍餉會錄, 本府元還穀不多, 以常賑穀留置, 常時斂散, 以爲還穀則便是賑廳之穀, 而有急則可以爲軍餉矣, 何必名之以軍餉乎, 謂之常賑廳穀, 而仍留本府, 似爲便當矣, 上曰, 然則依此爲之.

<비변사등록 79책, 영조 2년 1726년 04월23일(음)>

경제/재정

江華留守 朴師益이 江都에서 나간 移轉米를 갚는 문제에 대해 논의하다

이 달 18일 강화유수 박사익(朴師益)이 뵈기를 청하여 입시하였을 때에 그가 아뢰기를, “국가에서 강도(江都)를 의귀(依歸)할 곳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군량을 많이 적치(積置)하여 완급의 소용으로 삼고 있습니다. 사실 식량이 없다면 어떻게 믿고 귀의하겠습니까? 그런데 종전의 이전미(移轉米)는 나가는 것은 있고 들어오는 것은 없어 해마다 줄어들어 겨우 6만여 석 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금년에 또 3,000석을 경기에 이송하였는데 호조에서 지금 그 절반을 빌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3만 석이 남은 셈이나 이번에 실어갈 때의 축나는 것을 제하면 앞으로 남는 것은 3만 석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강도는 이제 곡식 없는 땅이 되었으니, 어찌 한심하지 않겠습니까? 이번에 서울로 실어갈 즈음 사람들은 모두 신이 방색하지 못하였다고 비난하고 있으나, 호조에서 경비가 바닥이 나서 백관의 녹봉을 주지 못하였다고 들었기에 남의 비난을 아랑곳하지 않고 쟁집(爭執)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호조에서 전후로 빌려간 수량을 합산하면 9만 석이 됩니다. 종전에 빌려간 6만 석은 전량을 갚

아 주기를 바랄 수 없다 하더라도 이번에 빌려간 3만 석은 결코 갚지 않아서는 안됩니다. 신이 올라온 뒤에 이 뜻으로 두 대신과 유사(有司)에게 언급하였더니, 모두 신의 말이 옳다 하고 가을이 되면 즉시 갚아주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성상께서 신칙하는 것만 갚지 못하겠기에 감히 이렇게 진달하오니 바라건대 성상께서 별도로 분부하여 꼭 갚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나는 군량의 이전을 심히 어렵게 여겨왔다. 대체로 평시에 반드시 저축이 있어야만 위급에 이르러 쓸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백성들이 거둢 흉년을 당했는데 차마 서서 보고만 있을 수 없어 부득이 이전을 운허하였던 것이다. 이번에 호조에서 빌린 것은 다른 경비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오로지 백관의 녹봉을 주기 위해서이며, 경이 장계하여 반대하지 않은 뜻을 나도 알고 있다. 대저 빌려 쓰고 제대로 갚지 않은 것은 잘못이다. 전후로 이전한 총계가 9만 석이라 하니 가을에 가서 즉시 갚아주도록 신칙하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박사익이 아뢰기를, “작년에 남도에는 농사가 흉작이 되었기 때문에 빌려준 곡식을 애당초 독촉도 하지 않았으나, 경기는 다소 풍년이 들었기 때문에 연달아 관문(關文)을 발송하여 각별히 독촉하였습니다. 그러나 신이 열읍에서 인정을 받지 못해서인지 결국 받은 것은 극소량에 지나지 않으니 신이 진실로 직책을 다하지 못한 죄를 면치 못하게 되었습니다만 각 읍에서 하는 짓도 매우 잘못입니다. 그 중에서도 수원(水原)은 당초에 이전한 것이 2,000석에 이르는데 끝내 한 섬도 갚지 않으니 더욱 부당한 일입니다. 올 가을에는 반드시 전량을 갚으라는 뜻으로 각별히 신칙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수원도 일체로 신칙하여 가을에 가서 즉시 갚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今五月十八日, 江華留守朴師益請對入侍時所啓, 國家以江都爲依歸之地, 故多積糧餉, 以爲緩急之需矣, 苟無糧餉, 則何所恃以爲依歸乎, 曾前移轉, 有出無入, 逐年耗縮, 僅有六萬餘石矣, 今年又爲移送三千石於京畿, 戶曹方又取上其半, 就其餘存三萬石之中, 除今番輸運時量縮之數, 則將來見存, 亦將不備三萬之數矣, 江都今作無穀之地, 寧不哀痛, 今番京運之際, 人皆謂臣以不能防塞, 而臣聞戶曹匱乏, 百官頒料不得爲之云, 故任其譏責而不能爭執, 然戶曹通前後取去之數, 合爲九萬石, 從先前用六萬石, 則縱難望其盡數還報, 而今番三萬石之數, 則決不可不報, 臣於上來後, 以此語及於兩大臣及有司之臣, 則皆以臣言爲可, 當觀秋成後趁時還報云云, 終不如自上申飭之爲得, 故敢此陳達, 欲望聖上別樣分付, 以爲必償之矣, 上曰, 軍餉移轉, 予意則甚以爲難, 蓋平時必有蓄積然後, 臨急可用而民遭荐飢, 不忍立視, 故不得已許其移轉矣, 今此戶曹所貸, 亦非爲他經費之不足, 而專爲百官頒料, 卿之不爲狀聞爭執之意, 予亦知之矣, 大抵既爲貸用, 而不卽準償者非矣, 前後移轉通計九萬石, 則待秋卽償之道, 申飭可也, 師益曰, 前年南中, 穡事飢荒, 故所貸之穀初不督徵, 而京畿則稍稔, 故連爲行關, 各別催督, 而臣不能見重於列邑, 畢竟所捧, 不免零星, 臣固不免尸職之罪, 而各邑所爲, 亦甚非矣, 其中水原當初移轉, 至於二千石之多, 而終無一石之輸納, 事尤不當, 今秋則必爲準數還報之意, 亦爲各別申飭何如, 上曰, 水原亦爲一體申飭, 使之待秋卽償可也.

<비변사등록 79책, 영조 2년 1726년 05월21일(음)>

경제/재정

水原府의 田稅米를 軍餉으로 사용하게 할 것을 청하다

○비변사의 계사(啓辭)에, “지금 수원부사(水原府使)의 장계(狀啓)를 보니 ‘본부에 회부(會付) 하는 여러 가지 곡식은 다 군향의 수용에 들어갔습니다. 이 수원부에 유진(留陣)이

혹 수일(數日)을 넘기게 되면 사세로 보아 장차 어떤 모양의 곡식을 막론하고 옮겨 써야 하겠습니까. 본부에서 상납할 전세미(田稅米)로 수송하지 않은 것이 아직 1,000여 석이나 있으니, 이것으로 이어 쓰도록 묘당과 해조(該曹)로 하여금 품처하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였습니다. 본부에 진(陣)이 머문지 이미 여러 날이 되어 각종의 군향(軍餉)이 또 모두 부족하니 전세미(田稅米)로서 올려보내지 않고 본부에 있는 것은 정해진 격식에 구애되지 말고, 우선 취해 쓰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이렇게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답하였다.

司啓辭，卽見水原府使狀啓，則以爲本府會付各穀，盡入於饋餉之需，此府留鎮，或過數日，則勢將不計某樣穀，推移取用，本府上納田稅米未輸運者，尙有千餘石，以此繼用之意，令廟堂該曹稟處矣，留鎮本府既致多日，各項軍餉，又皆匱乏，則田稅米未輸納在本府者，勿拘常格，姑先取用宜當，以此分付何如，答曰，允。

<비변사등록 83책, 영조 4년 1728년 03월 22일(음)>

경제/재정

水原의 稅大豆 150석을 會付하게 하고 60석은 醬을 담그도록 특별히 지급할 것을 청하다

○비변사의 계사에, “경기 감사 이정제(李廷濟)의 장계에 ‘수원부사(水原府使) 송진명(宋眞明)의 첩정(牒呈)을 근거로, 본부(本府)에서 군병을 모을 때, 하루에 먹이는 식량이 매우 많아서, 환곡(還穀)이 고갈되었습니다. 지금 춘궁(春窮)이 뼈에 사무치고 있지만 다시 의지할 방법이 없습니다. 본부(本府)의 대동미(大同米)를 1,000석을 한정으로 민간에 나누어주고, 아울러 회부(會付:금전이나 곡물을 회계장부에 회록하고 해당관아에 넘겨 주는 일)하였습니다. 이번 사변에 대비한 감장(甘醬)·군향(軍餉)을 그 숫자대로 취해 사용하였습니다. 세(稅) 대두(大豆)는 210석을 한정으로 그대로 두고 150석은 종자(種子)로 보충해 주고 60석은 때에 이르러 장(醬)을 담가 사변에 대비하는 수용(需用)으로 충당하도록 하겠습니다. 묘당으로 하여금 급속히 품지를 받아 분부하도록 하소서’ 라고 하였습니다. 본부의 일의 형세가 진실로 장계 내의 사연과 같으니, 모두 청원에 따라 시행해야 하겠습니다. 대두(大豆) 150석도 역시 아울러 회부케 하고, 환자[還上] 대두(大豆) 60석을 특별히 지급하여 장(醬)을 담가 사변에 대비하는 수용으로 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답하였다.

司啓辭，京畿監司李廷濟狀啓，水原府使宋眞明牒呈，據本府聚軍時，一日所餉甚多，還穀罄盡，卽今春窮到骨，更無料賴之道，本府大同米，限千石還分於民間，仍作會付，今番待變，甘醬餉軍，沒數取用，稅大豆限二百十石仍留，一百五十石補給種子，六十石及時沈醬，以充待變之需事，令廟堂急速稟旨分付云，本府事勢，誠如狀內辭緣，一併依施，而大豆一百五十石，亦令仍作會付，還上大豆六十石，則特爲劃給，俾作沈醬待變之需何如，答曰，允。

<비변사등록 83책, 영조 4년 1728년 04월 12일(음)>

경제/재정

關西의 무명을 水原府에 획급하는 것은 보류할 것을 청하다

○비변사의 계사에, “수원부사 송진명(宋眞明)이 지난 달 20일 이후 치계하여 장막(帳幕)과 포장(布帳)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포목 32동(同)을 얻기를 청하여 사군목(射軍木)으로 관서의 무명을 획급하게 하려고 하였으나 연달은 국좌(鞫坐)로 인해 미처 아뢰지 못하였습니다. 송진명이 이미 내천(內遷)되어 지금 비록 획급하더라도 반드시 옮겨다가 조성하는데

까지는 미치지 못할 것이며, 또 지금 경외(京外)의 저축이 곳곳마다 고갈되어 관서와 영남의 창고에 남아있는 숫자를 알지 못하여 빠른 시일 안에 획급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은 우선 그대로 두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답하였다.

司啓辭, 水原府使宋眞明, 前月念後馳啓, 請得帳幕布帳所入布木三十二同, 欲令以射軍木關西木劃給, 而連因鞫坐, 未及覈奏矣, 眞明遽已內遷, 今雖劃給, 必不及輸來造成於未之前, 且卽今京外儲積, 到處罄竭, 關西·嶺南, 亦不知留庫數乏, 有難於咄嗟間劃給, 今姑置之, 何如, 答曰, 允.

<비변사등록 84책, 영조 4년 1728년 06월 30일(음)>

경제/재정

咸鏡監司 宋眞明이 水原의 낡은 帳幕과 布帳을 새로 갖추는 문제에 대해 논의하다

21일 이 달 20일 함경감사 송진명(宋眞明)을 유대(留對), 입시하였을 때 함경감사 송진명이 아뢰기를, “소신이 수성(隋城: 水原)의 일에 대해 진달하고자 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감히 아뢰입니다. 수원(水原)은 외도감(外都監)의 군병과 기계(器械)는 많이 구비되어 있으나 장막(帳幕)과 포장(布帳)은 매우 갖추어지지 못하였습니다. 비록 얇은 겹옷이 있기는 하지만 찢어지고 낡아서 진(陣)의 형세를 배포(排布)할 수 없고 바람과 이슬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군병들이 한데서 거처하는 것은 그만두고라도 기계가 습기에 차 쓰지 못하게 되어 비가 온 이튿날은 접전(接戰)할 길이 없음을 이번 결진(結陣) 때 알게 되었습니다. 또 새로 마련한 기계의 수량도 많지 못한테 포장(布帳)이 없으면 이 역시 헛수고가 되고 말 것입니다. 포장을 그만둘 수 없음을 신이 이미 두 번이나 장계로 보고하여 묘당에서 관서와 영남의 무명 각 10동(同)을 주기로 했지만 근래에 각자 자기 관(官)만 생각하여 함께 처리할 생각이 없으니, 꼭 내어줄는지 모르겠습니다. 삼가 들건대 우의정 오명항이 경리청(經理廳) 당상으로 있을 때 누락된 공목(公木) 7, 8십동이 있는데 이는 본청에 있는 공물(公物)이라고 합니다. 수원 역시 가벼운 곳이 아니니 그 가운데 30동만 주라고 임금께서 특별히 명하시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경의 아뢰는 바가 이러하니 경리청의 무명 30동을 내어주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今八月二十日咸鏡監司宋眞明, 留對入侍時, 咸鏡監司宋眞明所啓, 小臣於隋城事, 亦有所欲陳者, 故敢達, 水原以外都監軍兵器械, 則頗多備具, 而帳幕布帳, 甚爲不備, 雖有所存單袂破弊, 陣勢無以排布, 風露無以防備, 軍兵暴露, 猶是餘事, 器械沾濕, 便歸不用, 雨過翌日, 接戰無路, 今番結陣, 既已驗知, 且新備器械, 數亦不貲, 而無布帳則此亦虛勞, 布帳決不可已者, 臣既再次狀聞, 廟堂, 以關西·嶺南木各十同許給, 而近來各私其官, 無意共濟, 其許給未可必, 伏聞右議政吳, 爲經理堂上時, 有漏落屬公木七八十同, 此在本廳, 爲公得, 水原亦非歇後之地, 其中三十同, 自上, 特命許給, 未知何如, 上曰, 卿之所達如此, 經理廳木三十同許給, 可也.

<비변사등록 84책, 영조 4년 1728년 08월 21일(음)>

경제/재정

同知事 宋寅明 등이 水原府에서 經理廳의 무명을 획급해 달라는 문제에 대해 논의하다

또 아뢰기를, “며칠 전 함경감사 송진명(宋眞明)이, 수원부의 포장(鋪帳)을 만들기 위해 경리청(經理廳)의 무명 30동을 획급해 달라고 진달하여 윤허를 받았습니다. 다만 본청(本廳)이 도성 안에 있어서 그곳에 비축된 미포(米布)는 내장(內藏)과 같아서 급한 일이 있으면 가져다 쓸 수가 있으니 마땅히 저축하기를 힘써야 하며, 조금도 허비하지 않고 관서의

요목(遼木 : 遼東으로 건너보내는 木棉)과 영남의 사목(射木 : 射軍木 즉 三手軍의 하나인 射手에게 지급하는 무명)은 이미 저축하고 있습니다. 또 수원은 기구(器具)가 있어서 운반해 오기가 쉬우니 먼 곳에 있는 것을 옮겨다가 획급해서 꾸어다 쓰면 되지 어찌 왕부(王府)에 있는 것과 같은 것을 경솔하게 쓰겠습니까? 마땅히 본청에서 획급하라는 명을 환수(還收)하고, 관서와 영남에 비축된 무명을 대신 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임금의 이르기를, “지난번 북백(北伯)이 진달할 때 특별히 획급을 허락한 것은 대개 수원의 무비(武備)가 허술한 것을 염려해서였다. 그러나 이번 아뢴 바는 의견이 없지 않으니 특별히 중지하고 묘당으로 하여금 조치해 대신 주게 하라.”

又所啓, 頃日咸鏡監司宋眞明, 以水原鋪帳造成次, 經理廳木三十同劃給之意, 陳達, 蒙允矣, 第本廳在都城, 其所儲米布, 無異內藏, 緩急足可取用, 惟當益務儲積, 不宜妄費一毫, 關西遼木, 嶺南射木, 既有所儲, 且水原有器具, 易以運來, 當以此等遠地所在者, 推移劃給, 以爲取用之地, 豈可如在王府者, 費用於閑漫處乎, 宜還收本廳劃給之命, 而以關西·嶺南所儲木代給, 何如, 上曰, 頃於北伯陳達時, 特許劃給者, 蓋慮水原武備之疎虞, 而今此所達, 不無意見, 特爲還寢, 令廟堂, 區劃代給, 可也.

<비변사등록 84책, 영조 4년 1728년 09월 07일(음)>

경제/재정

水原의 還上 本米를 本府에 유치하였다가 내년 가을에 江華로 환납하게 할 것을 청하다

“함경감사 송진명(宋眞明)을 유대(留待)하여 인견하였을 때에 ‘수원의 환자 본미(本米) 숫자가 적어 수만 명의 백성을 구제해 살릴 수가 없습니다. 강화의 쌀 500석을 얻어 운반해다가 위급함을 구해야 합니다. 변란을 겪은 탕갈된 백성들에게서 환자를 다 받아들일 이치가 없으니, 금년을 한정하여 받아 유치(留置)해야 합니다’ 라고 진달하여 묘당으로 하여금 아뢰어 시행하라고 명하셨습니다. 강도의 군향(軍餉)으로서 각읍에 흩어져 있는 것을 받아 유치하고 바치지 않는 것이 하나의 폐습(弊習)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보장(保障)해야 할 중지(重地)의 몇 년 동안 저축이 지금은 모조리 없어져 이보다 더 한심스런 일이 없습니다. 이번에 수원으로 이전한 500석 역시 전 수량을 독촉해 받아들여 열기 전에 강화로 환납(還納)하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본부는 막 변란을 겪어서 민력이 탕진되고 쇠잔해짐이 다른 고을에 비할 바가 아니어서 진휼하는 도리로 보아 참작해 주어야 하니, 우선 함경감사 송진명이 아뢴 대로 금년을 한하여 본부에 받아 유치하였다가 내년 가을을 기다려 즉시 강화로 환납하라고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답하였다.

司啓辭, 咸鏡監司宋眞明, 留對引見時, 水原還上本米數少, 數萬民戶, 無以救活, 江都米五百石請得運來, 以救涸轍之急, 經亂蕩殘之民, 決無准捧還償之理, 限今年捧留事, 陳達, 有令廟堂, 稟施之命矣, 江都軍餉散在各邑者, 輒事捧留, 不爲還納, 成一弊習, 保障重地, 積年儲置, 今則幾盡空虛, 事之寒心, 莫此爲甚, 今此水原府移轉五百石, 亦當准數督捧, 趁凍前使之還納江都, 而本府纔經變亂, 民力之蕩殘, 有非他邑之比, 其在軫恤之道, 宜有參酌之舉, 姑依咸鏡監司宋眞明, 限今年捧留本府, 待明秋卽爲還納江都之意, 分付, 何如, 答曰, 允.

<비변사등록 84책, 영조 4년 1728년 09월 26일(음)>

경제/재정

水原의 鋪帳을 위해 關西의 遼軍木 10동과 嶺南의 射軍木 10동을 보낼 것을 청하다

3일 비변사의 계사에, “지난 9월 5일 주강(晝講) 입시 때 동지사(同知事) 송인명(宋寅明)

의 아뢰므로 인해 수원(水原)의 포장(鋪帳)을 만들기 위해 경리청의 무명 30동(同)을 획급하라고 한 일을 특별히 중지하고 묘당으로 하여금 조치하여 그 대신의 것을 주라고 명하셨습니다. 수원은 기보(畿輔)의 중요한 진(鎭)인데 무비(武備)의 여러 기구가 아주 허술하기 때문에 전 부사 송진명(宋眞明)이 반드시 군막(軍幕)을 조치하려고 한 것은 본디 뜻이 있었던 것입니다. 다만 본부는 다른 잔폐한 고을과는 달라 관의 힘으로 비용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에 일찍이 송진명의 장청(狀請)으로 인해 관서의 요군목(遼軍木) 10동과 영남의 사군목(射軍木) 10동을 참작하여 보태주라고 복계하였습니다. 그 후 송진명이 입대하여 청하자 경리청의 무명 30동을 획급하라는 명이 계셨는데 이제 또 경청(京廳)의 군수(軍需)를 조치해 보내는 것을 염려하여 특별히 정지하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러니 마땅히 전의 복계에 의해 관서의 요군목 10동과 영남의 사군목 10동을 그 대신으로 보내야 합니다. 이런 뜻을 수원 및 두 도의 도신에게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답하였다.

司啓辭，今九月初五日晝講入侍時，因同知事宋寅明所啓，水原鋪帳造成次，經理廳木三十同劃給事，特爲還寢，令廟堂區劃代給，可也事，命下矣，水原，以畿輔重鎭，武備諸具，極爲虛疎，前府使宋眞明之必欲措置軍幕，意固有在，而第本府與他殘邑有別，官力亦可以拮据，故曾因宋眞明狀請，以關西遼軍木十同，嶺南射軍木十同，參酌添補事，有所覆奏矣，後因宋眞明入對陳請，有經理廳木三十同劃給之命，今又爲慮京廳軍需之不可劃送，特命還寢，則惟當依前覆奏，以關西遼軍木十同，嶺南射軍木十同劃給其代而已，以此意，分付水原及兩道道臣，何如，答曰，允。

<비변사등록 84책, 영조 4년 1728년 12월 03일(음)>

경제/재정

工曹判書 李森이 水原軍의 軍裝과 服色이 飢餓한 것에 대해 논의함

이번 2월 25일 대가가 용주(龍舟)에 납시었을 때 임금이 이르기를, “수원군(水原軍)은 선조(先朝)가 ‘경(京)의 도감과 차이가 없어야 한다’ 는 하교가 있었다. 오늘 유진(留陣:행군하던 군대가 도중에 머무름)한 곳을 바라보니 군장(軍裝)과 복색(服色)이 매우 피폐하고 쇠잔하여 도리어 금위 상변군 답지 않으니 무슨 까닭인가?” 하니, 공조판서 이삼이 아뢰기를, “근년 이래로 계속 기근이 들어 군대의 모습이 이와 같이 피폐합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수원이 이와 같다면 다른 읍은 알 만 하다. 전후 부사를 아울러 추고하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今二月二十五日，大駕御龍舟時，上曰，水原軍，先朝有與京都監無異之教矣，今日望見留陣處，則軍裝服色極爲疲殘，反不如禁衛上番軍，是何故也，工曹判書李森曰，近年以來饑饉連仍，軍容若是疲弊矣，上曰，水原若此，他邑可知，前後府使竝推考可也。

<비변사등록 87책, 영조 6년 1730년 02월 26일(음)>

경제/재정

水原府使 尹涉이 재해가 참혹해 賑廳의 쌀을 빌려 賑救하는 문제에 대해 논의하다

같은 날 입시 때 수원부사 윤섭(尹涉)이 아뢰기를, “금년의 흉황은 기전(畿甸)이 대개 같습니다. 그러나 본부는 바닷가의 땅이어서 그 입은 재해가 더욱 참혹합니다. 바야흐로 추수의 절기를 당하여 가난한 집의 백성은 이미 흩어져 유리한 자가 많은데 만약 내년 봄이 되면 비록 그 가운데 조금 실한 호구라도 반드시 유리하여 전련(顛連)하는 근심이 있게 될 것입니다. 진구하는 방도를 마땅히 때맞게 강정(講定)해야 하는데 본부는 땅이 넓고 호수가 1

만 2천 3백여 호며 인구는 거의 6만 명에 이릅니다. 그런데도 본부에는 다른 재력으로 곡물을 마련해 낼 수가 없습니다. 환자를 원래의 숫자가 매우 적어서 창고에 머물러 둔 것과 나누어 준 것을 합친 숫자가 1만 8천여 석에 불과하여 지금 비록 다 받아들이고 창고를 털어 나누어주더라도 한 호구에 돌아가는 것은 피잡곡(皮雜穀) 한 석 남짓하며 인구로 계산하면 4, 5일 양식에 불과합니다. 이처럼 적은 곡물로 허다한 군민(軍民)을 구해 살려 보리가 날 때까지 굶어 죽는 것을 면하게 하려면 실로 계책이 없어 실로 민망함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삼가 보건대 나라에서 항상 본부는 8천 명의 병마가 있는 곳이라 하여 특별히 넉넉히 돌보아 주어서 전에 이런 흉년을 만나면 혹 관서의 무명을 꾸어주기도 하고, 혹은 진청의 돈을 분급해 주기도 했으며 또 진청의 이전미(移轉米)를 대동으로 바꾸어 머물러두어 진구(振救)하게 하는 등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지금 만약 진청의 쌀 2천석을 빌릴 수 있다면 마땅히 그것 가운데서 적당히 덜어내어 잡곡으로 바꾸어 진자(賑資)에 보태겠으며, 그 나누어주어 진구한 곡식을 만약 가난한 백성에게 독촉해 받으면 이 역시 큰 폐단이 되니 내년 가을을 기다려서 그 절반은 민간에서 책임지고 받아들이고 그 반은 관에서 경영하여 전수(全數) 상환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여 진청에는 잃은 바가 없고 본부의 백성은 많은 혜택을 입게 됩니다. 또 총융청의 수미(需米)를 본부에서 1년에 받아들이는 것이 1천 2백석인데 이제 만약 6백 석을 머물러 두어 진구하고 그 대신 경리청의 이전미를 숫자대로 모조리 총융청에 조치해 주되 본부에서 가을을 기다려 본미(本米)를 경리청으로 다시 갚는다면 거의 진구하는 데 한 가지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감히 이처럼 양달합니다.” 하니, 임금의 이르기를 “모두 묘당으로 하여금 아뢰어 처리하게 하라.” 하였다.

同日入侍時，**水原府使**尹涉所啓，今年凶荒，畿甸大抵同然，而本府則以濱海之地，其所被災，尤爲慘切，方當西成之節，窮戶殘氓，已多流散者，若到明春，則雖其中稍實之戶，必不免流離顛連之患矣，賑救之道，所當及時講定，而本府地方闊大，戶數至於一萬二千三百有餘，人口則殆至六萬，而本府無他財力，可以辦出穀物者，還上則元數甚少，合計留庫與分給之數，不過一萬八千餘石，今雖沒數收捧，傾倉分給，一戶所得，只爲皮雜穀一石餘，而以口數計之，則不過四五日糧，以此零星穀物，救活許多軍民，俾免麥前饑死，實無其策，誠不勝悶迫之至，竊觀朝家常以本府，是八千兵馬所在處，特爲優恤，前此若值凶歉，則或許貸關西木，或割給賑廳錢，又或以賑廳移轉米換大同，使之留賑，非止一再，今若貸得賑廳米二千石，則當就其中，量宜除出，換取雜穀，以補賑資，而其所分賑之穀，若又督捧於窮民，則此亦大段弊端，待明年秋成，其半則責納民間，其半則自官料理，准數還償，則其於賑廳，既無所失，而本府之民，受惠多矣，且摠戎廳需米，自本府一年所納，爲一千二百石，今若以六百不留賑，其代以經理廳移轉米，依數割給於摠戎廳，而自本府，待秋還報本米於經理廳，則庶可爲賑救之一助，故敢此仰達矣，上曰，竝令廟堂稟處。

<비변사등록 90책, 영조 7년 1731년 09월 30일(음)>

경제/재정

判敦寧 尹淳 등이 摠戎廳의 소속인 水原은 지탱할 형세가 없는 상황에 대해 논의하다

같은 날 입시하였을 때 판돈녕 윤순이 아뢰기를, “지난 날 신원(新院) 주정소(晝停所)에서 입시하였을 때 **수원부사 윤섭(尹涉)**이 진청의 쌀 2천석을 청해 얻고, 또 총융청의 수미(收米) 6백석을 남겨 진구하고 그 대신은 북한산성의 쌀을 총융청에 나누어서 주라는 일을 전달하여 윤희를 받았다고 하는데 이는 아주 사리에 맞지 않습니다. 총융청의 세입(歲入)이 3천여 석인데 군교(軍校)의 방료(放料)는 1천여 석에 불과하여 1년 경비를 쓰고도 여유가 있

게 됩니다. 수원은 바로 충융청 소속이며 비록 6백석을 머물러 두어 진구하더라도 충융청은 본디 지탱하지 못할 형세가 없으니 마땅히 곧바로 제해 빌려주어야 마땅하며, 북한산성의 군향은 일이 자별하여 결코 충융청에 분급해 줄 수가 없습니다.” 하고,

형조판서 윤유는 아뢰기를, “성상께서 특별히 황정(荒政)을 극진히 진념함이 아님이 없으시어 이전하여 백급(白給)한 숫자가 이미 이처럼 많이 있으니, 도신이 스스로 민호의 다소와 피재(被災)의 경중을 참작하여 논밭의 세를 감해주고 진구하면 됩니다. 수령들이 계속하여 얻기를 청하는 것을 하나하나 다 들어주어서는 안 되니, 이는 방색(防塞)해야 합니다.” 하니, 임금이 아뢴 대로 하라고 일렀다.

同日入侍時, 判敦寧尹淳所啓, 頃日新院晝停所入侍時, 水原府使尹涉, 請得賑廳米二千石, 又以摠戎廳收米六百石留賑, 而其代以北漢米割給摠廳事, 陳達蒙允云, 殊非事宜也, 摠廳歲入, 爲三千餘石, 而軍校放料則不過千餘石, 一年經用, 自有餘裕, 而水原, 乃摠廳所屬, 雖以六百石留賑, 摠廳固無不可支之勢, 事當直爲除貸, 而北漢軍餉, 事體自別, 決難割給摠廳, 刑曹判書尹游曰, 聖上特軫荒政, 靡不用極, 白給移轉之數, 既如是優存, 道臣自當參量民戶多少, 被災輕重, 分俵調賑, 守令之續續請得者, 不可一一應副, 此則一切防塞可也, 上曰, 依爲之.

<비변사등록 90책, 영조 7년 1731년 10월 04일(음)>

경제/재정

海西의 復戶을 折驛에 지급할 것과 支供米를 復舊하여 보낼 것을 京畿와 海西에 청하다

비변사에서 아뢰기를, “지난날 능행(陵幸) 때 주정소(晝停所)에서 양재찰방(良才察訪) 문덕겸(文德謙)의 아뢰므로 인하여 ‘해서(海西)의 복호(復戶)는 기억에 해야려 지급하는 일 및 지공미(支供米)를 관청으로부터 복구(復舊)하여 미리 내려 보내는 일은 묘당(廟堂)에서 병조(兵曹)에 물어 아뢰어 처리하라’ 는 하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근래 기억(畿驛)에서는 사역(使役)이 너무 번거러워 조잔한 폐단으로 지공이 어렵다는 사실을 조정에서 이미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돕는 방법은 확실하게 정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지만 아직까지 선후책(善後策)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서(海西)의 제역(諸驛)에서 12결(結)을 복호(復戶)로 준 것과 경기의 역에서 다만 유세복호(有稅復戶)에게 지급된 1결을 비교해 보면 그 후박(厚薄)의 차가 너무 심하며 삼남(三南)과 관동(關東)에서 5결을 받은 제역(諸驛)에서도 모두 세(貰)를 들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억(畿驛)을 돕는 일에 대하여는 12결을 받은 해서 제역에서는 도와줄 수 있는 힘이 없으므로 경기의 역에서 전후에 걸쳐 원성을 퍼뜨리며 일체 도움을 주라고 한 것은 참으로 이상하게 여길 일이 아닙니다. 다만 해서 제역도 칙사에게 지공이 많이 드는 지역이므로 지금 그 역참(驛站)의 사역(使役)이 고달픔과 험한 것이 어떠한가를 막론하고 수백 년 동안 지급된 복호미(復戶米)를 지금 다른 곳으로 할여(割與)한다는 것도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그 중 금교역(金郊驛) 복호에게 2결을 더 준 것은 작년에 있었던 일이며 본래 오랜 해가 지나도록 가지고 있었던 물건이 아닙니다. 금교의 원복(元復:元來의 復戶) 수량을 혜도(該道)의 제역과 비교할 때 비록 수결(數結)을 감하기는 하였지만 경기의 역에 비하면 10배가 많을 뿐만 아니므로 그 첨가해서 준 2결 가운데 절반만 참작하여 경기의 역으로 이급한다면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는데 좋은 방도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객(使客)의 지공미(支供米)에 대하여 말씀 드린다면 가천역(加川驛)의 경우는 양성본현(陽城本縣)이 본래 사객미(使客米)가 없으므로 매삭(每朔)마다 저치미(貯置米) 2석을 본역(本驛)에 지급하였고 기타 과천(果川)과 용인(龍仁), 죽산(竹山), 수원(水原), 광주(廣州), 양주(楊州) 등 13역은 매삭미(每朔米) 각 1석 11두나

혹은 11석 10두와 태 각 1석 5두를 곧 본읍(本邑)의 사객미 원수(元數) 중에서 마련하여 각 역에 지급하는 일을 이미 분명히 정식화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관문(官門)을 거치지 않고 집행할 작은 건수는 각읍에서 미리 역참으로 지급하여 공궤(供饋)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양성 일읍(一邑) 이외에는 지공미를 미리 보낼 곳이 없으므로 가난하고 천한 역호(驛戶)들이 스스로 공궤를 자담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추후에 값는 일도 착실하게 관리하지 못하여 구걸하거나 빌리거나 흩어지는 폐단을 야기한다면 이것은 매우 해괴(駭怪)한 일이므로 이후에는 감영(監營)에서 각별히 엄한 칙령을 내리어 그 지공미에 대하여는 일일이 전례(前例)를 참고한 후 미리 내려보내어 역졸들이 원망하는 폐단이 없도록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므로 이와 같이 경기, 해서 양도(兩道)에 분부를 내리시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윤희한다고 답하였다.

司啓曰，頃日陵幸晝停時，因良才察訪文德謙所啓，海西復戶量給畿驛事及支供米，自其官復舊預下事，有令廟堂，問于兵曹稟處之命矣，近來畿驛事役至繁，凋弊難支之狀，朝家固已稔知，顧助之道，非不講確，而終未得善策，海西諸驛之給復十二結者，比之畿驛之只給有稅復戶一結者，厚薄懸殊，三南·關東食復五結之諸驛，皆有入居貫把添助畿驛之事，則食復十二結之海西請驛，獨無出力顧助之舉，畿驛之前後稱冤，必欲令一體添補者，誠非異事，而但海西諸驛，亦係支勅重地，毋論見今驛役若歇之如何，累百年流來已給之復，到今割移，亦涉重難，其中金郊驛復二結之加給事，在昨年，元非年久執持之物，金郊元復之數，比之該道諸驛，雖有數結之減，而比之畿驛則猶不啻十倍，加給二結中，參酌折半，移給於畿驛，以爲一分添助之道，恐涉便好，至於使客支供米段，加川驛則以陽城本縣，元無使客米之故，每朔割給儲置米二石於本驛，其他果川·龍仁·竹山·水原·廣州·楊州十三驛則每朔米各一石十一斗，或一石十斗，太各一石五斗，就本邑使客米元數中，磨鍊除給各驛事，明有定式，則小小行公之不由官門者，各邑所當先期支下於驛站，使之供饋，而陽城一邑外，果無支供米預下之事，使貧殘驛戶，自當供饋，追後所償，不能着實，致有丐貨渙散之弊，則事極可駭，此後則令監營，各別嚴飭，支供米一一考例預下，俾無驛卒自當呼冤之弊宜當，以此分付京畿·海西兩道何如，答曰，允。

<비변사등록 90책, 영조 7년 1731년 11월 02일(음)>

경제/재정

領議政 洪致中 등이 南漢山城의 米穀 등을 水原으로 移轉하는 문제에 대해 논의하다

○ 이번 4월 10일 대신과 비국 당상을 인견, 입시하였을 때에 영의정 홍치중이 아뢰기를, “이것은 바로 수원부사 윤섭(尹涉)의 상소인데, 본부(本府)의 주민은 많고 곡식이 적은 폐단을 논하고, 인해서 남한산성의 미곡 1천 석, 벼 2천 석을 이전(移轉)하여 주기를 청원하였습니다. 수원은 민호(民戶)는 가장 많고 환곡(還穀)은 매우 적다는 상황은 바로 조정에서 아는 바이며, 윤섭이 시종(侍從)의 반열에서 지방관으로 나가서 백성들의 참혹한 일을 눈으로 보고 이렇게 소로 청원하였으니 그 일 형세의 절박하고 긴급함을 상상할 수 있으니 참작하여 시행을 허락하는 방도가 있어야 마땅하겠습니다. 다만 경기도 안의 각 고을 환곡이 모두 떨어져 바야흐로 대단히 급박한 가운데 있으며, 이 길이 한 번 열리면 반드시 당장 시끄럽게 얻기를 청원할 터인데 만약 모두 허락한다면 계속할 수 있는 방도가 아니고, 받아들이지 않고 막으려 한다면 균등하게 하지 못한다는 한탄이 있게 되어 이것이 매우 조처하기 어려운데 어떻게 하여야 하겠습니까?”

하고, 우참찬 김재로는 아뢰기를, “광주(廣州)·수원은 똑같이 큰 고을인데 들으니 광주는 민호가 1만(萬)에 차지 못하고 수원은 1만 수천 호입니다. 수원의 민호가 많기는 이와 같은

데도 금년에는 더욱 심한 가운데 더 심한 데로 편입되어 환곡은 매우 적으니 보리 추수가 되기 전에 결단코 잇달아 지급할 수 없다고 합니다. 광주와 수원은 똑같이 중진(重鎭)이며 지역이 서로 잇달았으니 서로 의뢰하는 방도가 있어야 마땅합니다. 그리고 또 광주에서 수원과의 거리는 관아가 2, 30리나 가깝게 있으며, 수원에서 광주까지의 거리와 관아도 그러하니, 지금 만약 참작하여 나누어주었다가 내년 봄이 되기를 기다려 부근의 광주 주민에게 나누어주고, 그렇지 않으면 본부(本府) 부근 광주의 면(面)에 이 숫자를 한정하여 광주에 곧장 바치게 한다면 이는 반년 동안 빌리는데 불과하니 방해롭지 않을 듯합니다.”

하였으며, 예조 판서 송인명은 아뢰기를, “가뭄이 이와 같아 보리 농사는 이미 판결이 났으니 장래에 대한 염려가 더욱 심각합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우선 모두 받아들이지 말고 막았다가 다시 앞으로의 형세를 관찰하여 조처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하고, 형조 판서 이정제가 아뢰기를, “앞으로는 논할 것이 없이 지금 경기도 안의 농사는 조처할 수 없으니 이달 20일 뒤로부터 다음달 10일전까지가 이른바 보리 고개[麥嶺]인데, 곡물이 이른 곳마다 떨어질 것이니 극도로 절박하고 민망합니다. 수원은 지역이 매우 넓고 주민도 매우 많아 다른 곳과는 다르니 제때에 구휼하는 계책이 있어야 마땅합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예조 판서의 말이 옳다. 앞으로의 염려는 오늘날에 미치지 않는다. 수원처럼 스스로 장계로 청원할 수 있는 곳도 오히려 이와 같으니 기타 보고가 없는 고을에 대해서는 장차 어떻게 하여야 하겠는가? 때문에 내가 이 일에 대하여 이미 과단성 있게 처리하지 못하고 미룬 것이다.”

하자, 김재로가 아뢰기를, “광주·수원을 다르게 볼 수 없으며 또 수원은 팔과 다리 구실을 하는 중진으로 8천 병마(兵馬)의 무리가 있으니 더욱 험(歎)하게 할 수 없습니다. 우선 옮겨서 지급하게 하고 내년 봄에는 결단코 용서하지 않고 숫자대로 바치게 하여 본부(本府)에 되돌리도록 하는 것이 적합하겠습니다. 예조 판서의 말이 진실로 의견은 있지만 어떻게 앞으로의 염려를 위하여 눈앞의 급박함을 전혀 구제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홍치중은 아뢰기를, “남한산성의 창고에 유치해둔 것이 많지 않은 듯한데, 만일 또 덜어내기가 어렵다면 광주부에다 나중에 나누어 준 피곡(皮穀) 1만 석을 본주(本州)에서 모든 숫자대로 도로 나눌 터이니, 그 가운데서 수천 석을 옮겨 지급하게 하는 것도 역시 불가함은 없을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아뢰기를, “1만 석의 피곡을 이미 광주부에 나누어 지급한 뒤에 지금 다시 논의하는 것은 부당하며 수원의 형세가 이와 같은 것 또한 전혀 돌보며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 남한산성의 미곡 1천 석을 옮겨 지급하는 것이 마땅한데 다만 보리농사의 풍년과 흉년을 구분하지 못하여 장래 백성의 일이 참으로 염려할 만한 것이 많으니 예조 판서의 진달한 바가 훌륭하다. 우선 회계(回啓)하지 말고 앞으로를 관찰하여 하는 것이 가하다.”

하자, 홍치중이 또 아뢰기를, “소(疏)의 하단(下段)에 강도에서 이전한 1천 석을 가을에 징수하기를 기다려 그대로 본부(本府)에 비치하여 두고 해마다 조적(糶糴)하여 그 모미(耗米：耗穀)를 가져다 장사(將士)들에게 봄·가을로 상(賞)을 주는 비용으로 청원하였습니다. 수원은 경기 안의 중진으로 군향(軍餉)이 매우 적으니 이런 등류를 변통하는 것은 방해됨이 없기는 한데, 강도의 저축이 근래에 매우 줄어들어 형세로 보아 저쪽 것을 배어다 이쪽에 주기가 어려우니 우선 앞으로 강도의 일 형세를 관찰하여 상의하고 확정해서 변통해도 늦지 않으니, 이 것은 그대로 두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아뢴대로 하라고 하였다.

今四月初十日大臣·備局堂上引見入侍時，領議政洪所啓，此乃水原府使尹涉上疏也，論本府民多穀少之弊，仍請南漢米一千石，租二千石移轉矣，水原民戶最多，還穀甚少之狀，卽朝家之所

知，而尹涉以從班出宰，目見民事之慘，有此疏請，可想其事勢之切急，宜有參酌許施之道，而但卽今畿內各邑還穀皆乏絕，方在渴急之中，此路一開，則必當紛然請得，若盡許則非可繼之道，欲防塞則有不均之歎，此甚難處，何以爲之乎，右參贊金在魯曰，廣州·水原同是大邑，而聞廣州則民戶未滿萬，而水原則萬數千戶，水原民戶之多如此，而今年入於尤甚之尤甚，還穀至少，麥前決無以繼給云，廣州·水原以一體重鎮，壤地相接，宜有相資之道，且廣州地距水原，官有二三十里之近，水原地距廣州，官亦然，今若參酌劃給，待來春分給於附近廣州之民，不然則以本府附近廣州之面，限此數，使之直納廣州，則此不過半年假貸，似不妨矣，禮曹判書宋寅明曰，旱乾如此，麥事已判，將來之慮，尤有甚焉，臣意則姑皆防塞，更觀前頭形勢而處之，似好矣，刑曹判書李廷濟曰，勿論來頭，卽今畿內民事罔措，自今月念後，至來月旬前，所謂麥嶺，而穀物到處絕乏，極爲切悶，水原土地甚廣，人民甚衆，與他有異，宜有及時救恤之策矣，上曰，禮判之言，是矣，來頭之慮，將不比於今日，如水原自可狀請之處猶爲如此，則其他無告之處，將若之何哉，故予於此事，已有持難矣，在魯曰，廣州·水原，不可異視，且水原以股肱重鎮，有八千兵馬之衆，尤不可歇也，姑爲移給，來春則斷不饒貸，準數捧之，以還本府，爲宜，禮判之言，固有意見，而何可爲來頭之慮，全不救目前之急乎，洪曰，南漢留庫，似不多，如難又爲除出，則廣州府迫後劃給皮穀一萬石，本州必盡數還分，就其中使之移給數千石，亦無不可矣，上曰，一萬石皮穀則既已劃給廣府之後，今不當更論，而水原形勢如此，亦不可全無顧念，南漢米一千石當爲移給，而但麥農豐歉未分，將來民事，誠多可慮，禮判所達，好矣，姑勿回啓，以觀來頭而爲之，可也，洪又曰，疏中下段，請以江都移轉一千石，待秋收捧，仍置本府，逐歲糶糴，取其耗米，以爲將士等春秋施賞之用云，水原以畿輔重鎮，軍餉甚少，此等變通，固無所妨，而江都蓄積近甚耗縮，勢難割彼與此，姑觀來頭江都事勢，商確推移未晚，此則置之，何如，上曰，依爲之。

<비변사등록 91책, 영조 8년 1732년 04월 12일(음)>

경제/재정

領議政 洪致中 등이 廣州의 下道에 별도로 外倉을 설치하는 문제를 논의하다

이번 윤5월 9일 대신과 비국 당상을 인견, 입시하였을 때에 영의정 홍치중이 아뢰기를, “전라감사 유엄(柳儼)이 머물며 기다리므로 인견하고 입시하게 하였을 때에 광주(廣州)의 하도(下道)에 별도로 외창(外倉)을 설치할 것을 진청(陳請)한 바가 있었는데, 이 일을 일찍이 신에게도 와서 말하기에 신은 거듭 어렵게 여겼습니다. 하도의 주민이 조적(糶籍)으로 왕래하는 폐단은 그전부터 이와 같았는데 전후(前後)의 광주부윤이 일찍이 변통하지 않은 것은 의도가 진실로 있어서이니, 대체로 군향은 성안에 비치하는 것이 마땅하며 성밖에 비치하는 것은 불가한데 사람의 마음과 아전의 풍습이 점차로 그전 같지 않아 만약 외창(外倉)을 설치하여 단지 감색(監色)과 전수(典守)를 부리게 되면 평상시에 반드시 농간을 부리는 폐단이 없지 않고, 또 만약 사변이 있으면 요즈음의 인심으로 성안으로 수송하여 납부할 수 있겠습니까? 외창의 설치는 허락하는 것이 불가한 듯합니다. 그리고 또 이웃 고을에서 갈라 지급하는 것 또한 시행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하도가 남양(南陽)과 수원(水原)에 가까이 닿아있어 그 고을에서 하도의 주민에게 나누어 지급하고 그 대신 산성의 곡식을 또 남양과 수원 부근의 주민에게 나누어 지급하게 한다면, 그 사이에 제지당하고 시행하기 어려운 단서가 말할 수 없을 것이니 이 두건은 가볍게 논의하기 어려우니 그대로 두는 것이 적합할 듯합니다.” 하고, 좌의정 조문명은 아뢰기를, “대체로 가지고 말한다면 외창이 있다 하더라도 성안에 들여야 옳은데 더구나 별도로 외창을 설치하는 것이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외창을 설치하지 않은 것은 그전부터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당초에 더러는 외창을, 더러는 이웃 고을에서 갈라 지급하는 것으로 유시를 하였는데, 대신의 말이 참으로 옳으니 아뢴대로 하도록 하라.” 하였다.

今閏五月初九日大臣·備局堂上引見入侍時, 領議政洪所啓, 全羅監司柳儼, 留待引見入侍時, 以廣州下道, 別設外倉, 有所陳請矣, 此事亦嘗來言于臣, 而臣則以爲重難矣, 下道民人往來糶糴之弊, 自前如此, 而前後廣尹, 曾不變通者, 意固有在, 蓋軍餉宜置於城內, 不可置之城外, 人心吏習, 漸不如前, 若設爲外倉, 只使監色典守, 則常時必不無弄奸之弊, 且脫有事變, 則以近來人心, 其可輸納於城乎, 外倉之設, 似不可許矣, 且隣邑割給, 亦是難行之事矣, 下道近接於南陽·水原, 自其邑, 分給下道之民, 其代山城之穀, 又爲分給於南陽·水原附近之民, 則其間掣肘難行之端, 有不可言矣, 此兩款, 有難輕議, 置之, 似宜矣, 左議政趙曰, 以大體言之, 則雖有外倉, 亦可入於城內, 況可別設外倉乎, 上曰, 不設外倉, 自前有意, 故予初以或外倉, 或隣邑割給, 爲諭矣, 大臣之言, 誠是矣, 依爲之.

<비변사등록 91책, 영조 8년 1732년 윤05월 11일(음)>

경제/재정

領議政 洪致中이 南漢移轉米를 水原에 지급하는 문제 등에 대해 논의하다

또 아뢰기를, “며칠 전 수원부사 윤섭(尹涉)이 남한산성의 이전미[南漢移轉米]을 얻으려 청원하였고, 광주부윤 유엄(柳儼) 역시 군향미의 수를 늘려 도로 나누어주는 일을 아뢴 소(疏)로 진달하였지만 아직 복계(覆啓)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해서(海西)의 미곡과 좁쌀 1만 석을 이미 경기에 특별히 지급하게 하였으니, 이 두 소는 시행하지 말도록 하는 것이 적당할 듯하기에 감히 아뢰입니다.” 하니, 임금의 아뢴대로 하라고 하였다.

又所啓, 頃者水原府使尹涉, 請得南漢移轉米, 廣州府尹柳儼, 亦以軍餉米加數還分事, 竝爲陳疏, 姑未覆啓矣, 今則海西大小米一萬石, 既已特給於畿甸, 則此兩疏, 似當勿施, 故敢達矣, 上曰, 依爲之.

<비변사등록 91책, 영조 8년 1732년 05월 12일(음)>

경제/재정

忠淸監司 柳儼등이 水原의 軍餉으로 摠戎廳의 需米 등을 지급하는 문제에 대해 논의하다

○ 이번 윤 4월 25일 대신과 비변사 당상관을 인견할 때 충청감사 유엄이 함께 아뢰기를, “신이 겨우 기읍(圻邑)에 부임하여 생각하는 바가 있으므로 감히 아뢰겠습니다. 수원(水原)은 경기도의 중진(重鎭)이므로 옛날부터 외도감(外都監)이라고 합니다. 단 군향미로 충당한 환자미가 아쉽게도 2~3백 석에 불과하고 산성(山城)의 군향이 미태(米太)를 합하여 2천 석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혹 어떤 일이 있을 때는 군대는 있고 군량은 없는 꼴이 될 것이니 조정에서 각별히 생각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금 들은 말에 의하면 삼남(三南)에 있는 군전(軍錢)으로 사들인 미곡의 수량은 매우 많다고 합니다. 이 곡물을 만일 3~4천 석만 지급하여 선혜청으로 들여놓고 또 본부로 아직 올라오지 않는 대동미를 유치(留置)해 둔다면 혹 일분이라도 믿을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하므로, 행사직(行司直) 송진명(宋眞明)은 아뢰기를, “수원(水原)의 군향미가 아쉽게만 무신년(1728)에 대동미세(大同米稅)를 선적하여 미처 발송하지 못하고 있을 때를 만나 시급히 그 곡물을 하선하여 대군(大軍)을 구제하였으므로 그 많은 병마(兵馬)들이 겨우 굶주림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이 곡물이 아니었으면 거의 큰 낭패를 당할 뻔하였습니다. 지

금 저축된 군항미는 다만 미곡 7백 석 뿐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8천명의 군병에게 수일간 먹일 양식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혹 무슨 일이 있을 때 어찌 한심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해은부원군(海恩府院君) 오명항(吳命恒)이 그 시급한 상황을 목격하고 그 군병이 돌아온 후에 총융사(摠戎使)가 되어 1년 동안 바친 총수미(摠需米) 1천 3백석을 군항미로 지급하라고 하였으나 그 후임 총융사가 고집을 부리며 지급하지 않아 신이 상소로 논쟁을 벌인 적이 있습니다. 이때 묘당에서는 시행을 허락하였으나 그는 오히려 그 곡물을 놓아두지 않으려고 하였습니다. 수원(水原)은 총융청의 외고(外庫)이므로 그 곡물의 유치(留置)를 허락한다면 본청(本廳)의 구관(句管)이 어찌 방해가 되겠습니까? 본청에서 사용하는 것은 언제나 여유가 있지만 혹 군교(軍校)와 친구들에게 나누어 곡물을 사들이고 있으니 금년조는 모두 놓아두었다가 군항미로 만든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하자, 좌의정 서명균은 아뢰기를, “수원(水原)은 관방(關防)의 중지(重地)이지만 군항미가 극기 허술하므로 별도로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호서군(湖西軍)의 곡물은 6천여 석에 불과합니다. 들은 말에 의하면 해은부원군(海恩府院君) 오명항(吳命恒)이 총융사로 있을 때 본부에서 1년간 소요된 미곡 1천여 석을 모두 지급해 준 것을 신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후 새로 온 총융사가 결국 놓아두기를 허락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지금 수미(需米)가 도착되지 않아 모두 저축해 두면 본청(本廳)에서 계속 대어주기 어려운 걱정이 있을 것이므로 절반은 유치하여 군항미로 만든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라고 하므로, 임금은 이르기를, “수원과 서울의 도감(都監)은 하나이므로 군대는 있고 군항미는 없는 곳으로 하면 안될 것이니 호서(湖西)의 군작미(軍作米) 2천 석을 지급하고 총융청(摠戎廳)의 수미 1천 석은 유치하였다가 금년과 명년에 각기 5백 석을 유치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무신년에 해은부원군이 지급한 후에 거행하지 않았던 총융사에 죄과를 물어 경책하기 바란다. 그리고 남한산성(南漢山城)은 국가를 방어할 중요한 곳인데 12만석이나 있던 군항미가 2만석도 되지 않는다고 하니 이 곳은 당연히 묘당에서 잘 살피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소모를 하고 있으니 참으로 한심한 일이다. 그리고 호남(湖南)에는 군작미 3천 석은 특별히 지급하는 것이 가할 것이다.” 라고 하였다.

今閏四月二十五日大臣·備局堂上引見，忠淸監司柳儼同爲入侍時，忠淸監司柳儼所啓，臣纔經畿邑有所懷，故敢達，水原，以畿輔重鎮，自古稱以外都監，而但軍餉哀痛，還上米不過二三百石，山城軍餉合米太，亦未滿二千石，脫有緩急，將有有軍無糧之歎，自朝家所當各別軫念矣，今聞軍錢作米之在三南者，其數亦多云，若劃給三四千石，使之直納于惠廳，仍以本府大同之未及上來者，仍爲留置，則庶有一分可恃之道矣，行司直宋眞明曰，水原軍餉哀痛，曾於戊申，適值稅大同裝載未發送之時，故汲汲卸下輸入，接濟大軍，萬千兵馬，僅免呼庚之患，非此則幾大狼狽矣，卽今餉儲，只七百石米云，不過爲八千軍兵數日之糧，脫有緩急，寧不寒心，故海恩府院君吳命恒，目見窘急之狀，軍還後爲摠戎使，許給摠需米一年所捧一千三百石，使之留作軍餉，其後代爲摠戎使者，堅執不給，臣上疏爭論，廟堂許施而猶不肯許留，水原乃摠戎廳之外庫，許其留置，自本廳句管，有何所妨乎，本廳需用，每有餘地，或發賣分糶於軍校及親舊，今年條則盡令捧留，以作軍餉似好矣，左議政徐曰，水原爲關防重地，而軍餉極其虛疎，不可不別有措置，而湖西軍，作米不過六千餘石，曾聞海恩府院君吳命恒，爲摠戎使時，本府一年需米一千餘石，盡爲劃給，臣則已知其施行矣，其後代爲摠戎使者，終不許留云矣，卽今需米未及上來，盡爲留儲，則本廳必有難繼之患，折半許留，以作軍餉爲宜矣，上曰，水原與京都監爲一體，不可使有軍無餉，湖西軍作米二千石劃給，摠需米一千石捧留，而今年各五百石式許留，戊申年海恩府院君劃給後，不爲舉行之摠戎使，推考警責，南漢保障之地，十二萬石軍餉，今不滿二萬石云，

此宜廟堂之留意檢察，而耗縮如此，誠爲寒心，湖南軍作米三千石特爲割給，可也。

<비변사등록 97책, 영조 11년 1735년 윤04월 26일(음)>

경제/재정

戶曹判書 李廷濟가 戶曹에서 江都의 軍餉을 상환하는 문제에 대해 논의하다

○ 같은 날 입시할 때 호조판서 이정제(李廷濟)가 아뢰기를, “수원(水原), 남한(南漢) 두 곳에 군향미를 나누어 보낸다면 강도(江都)에도 일률로 보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라고 하자, 임금은 이르기를, “강도의 군향은 호조에서 빌려간 것이 매우 많으나 하나도 갚지 않았으니 전후의 호조판서를 추고하고 이후로는 점차 갚는 것이 가할 것입니다.” 라고 하였다.

同日入侍時，戶曹判書李廷濟所啓，水原南漢兩處，若分送軍餉，則江都不可不一體分送矣，上曰，江都軍餉，戶曹貸來者甚多，而一不還報，前後戶判推考，此後漸次還報，可也。

<비변사등록 97책, 영조 11년 1735년 윤04월 26일(음)>

경제/재정

右尹 金聖應의 上疏에 대해 摠需米를 水原에 지급하게 한 것은 軍餉을 위한 것이라고 하다

○ 우윤(右尹) 김성응(金聖應)이 상소하기를, “...운운(云云)... 들은 말에 의하면 지난 번 연중(筵中)에서 공홍감사(公洪監司) 유엄(柳儼)이 아뢰기를 ‘총수미(摠需米) 1천 석을 수원(水原)으로 지급하여 군향미를 삼도록 하자’ 고 하였습니다. 수원은 신이 관할하는 곳으로 조만간 주재할 곳이며, 조정에서 외도감(外都監)으로 의존하는 곳이므로 군량(軍糧)을 쌓아놓고 병사를 훈련하는 것이 제일 먼저 할 일입니다. 정부의 예산이 이와 같이 넉넉하니 신은 참으로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내외 경중(內外輕重)의 구별도 잘 살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신의 감영(監營)이 이미 경성(京城) 밑에 있으므로 군교(軍校)도 있고 기계(器械)도 비치되어 있어, 그것을 지키는 비용과 수증(修葺)하는 일과 월급(月給) 등이 하루도 없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리고 불시의 수용(需用)과 당연히 시행해야 할 상격(賞格)이 지금은 구비되어 있지 않지만 이것도 그 규정을 만든 후에 외영(外營)에 미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내영(內營)의 형세는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날마다 사용할 비용을 지급할 여가도 없는데 오직 외영(外營)을 위해 군수품(軍需品)을 내어준다면 어찌 본말과 선후에 어긋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일찍 경험한 일로 말씀 들인다면 신해년(1731) 봄에 본도 방백(方伯)의 장계로 인하여 묘당에서 다시 아뢰자 총수미(摠需米) 2백 석과 대동미(大同米) 6백 석 등 모두 8백 석을 본부에 놓아두고 곡물을 내고 들일 때마다 모곡(耗穀)을 취하였습니다. 지금 그 성책(成冊)을 보니 그 성책에 기록된 바치지 못한 환곡(還穀)이 760여 석이나 되고 이때 남아있는 수량은 1백 석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모곡을 취하는 일은 논할 여가도 없이 본 수량마저 거의 소비가 다되었으니 어찌 그 당초의 지급하는 본의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비록 지금 더 지급하더라도 어찌 실효가 없던 전일보다 못하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까? 만일 본청으로 하여금 그 포흠(逋欠)를 따라 채워 준다면 다만 안팎이 모두 곤궁할 뿐만 아니라 잘 알 수 없습니다만 조정에서 어떻게 앞으로 지속할 수 있겠습니까? 신은 어떻게 계획을 짜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비록 해은부원군(海恩府院君) 이명항(李命恒)이 총용사(摠戎使)로 있을 때 수용미(需用米)를 유치(留置)하라고 말하여 신이 그 등록(謄錄)을 상고해 보니 그 때 부사(府使)가 유치할 것을 간청하자 총용사의 제사(題辭: 백성의 소장 또는 청원서에 기입한 관의 지령) 내용에는 ‘본청의 수용미도 너무 많으

므로 그 넉넉하고 부족한 것을 보아서 그 남은 수량을 보류하겠습니다. 그리고 본영(本營)에서 체직(遞職)할 날짜도 멀지 않으므로 새 총융사가 들어오면 다시 상의하여 처리할 것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오명항이 처음에는 지급하지 않으려고 한 것을 미루어 알 수 있습니다. 본영(本營)에서 만일 이 미곡을 유치하기를 허락하였다면 매월 초하루마다 방출하여 이미 계속 지급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지금 가을 곡물이 약간 영글다면 겨울 초하루마다 상번군(上番軍)을 구제할 양곡을 또 어느 곳에서 구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조정에서 거둬 수고롭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수원(水原)의 군향미에 있어서도 본부의 환곡(還穀)의 수량이 얼마나 된지 알 수는 없지만 신의 병영에서 관리하고 있는 독성(禿城)에 저축한 군향미로 말한다면 미태(米太)가 모두 3천여 석이나 되며 신해년 봄에 유전한 군향미는 8백 60여 석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남아있는 수량으로 곡물을 팔고 사들일 때 그 모곡(耗穀)을 취하여 그 법도를 어기지 않으면 얼마 만에 1만여 석은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부터 엄하게 조항을 만들어 전일에 징수하지 못한 것과 함께 가을에 받아내어 실효를 거두면 급할 때 잘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상께서는 잘 살피시어 속히 총수미(攄需米) 1천 석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취소하고 묘당으로 하여금 본부로 칙령을 내려 받지 못한 군향미를 가을에 모두 징수하게 하여 전일처럼 포기하지 않도록 하라고 하였습니다.”

라고 하자, 임금은 이르기를, “상소를 보고 다 알았다. 지난번의 처분은 대개 군향미를 위하여 하는 일인데 경이 어찌 그리 고집을 부리고 일을 행하지 않는가? 지난 해 8백 석을 지급하기로 허락한 것도 군향미를 위해 하는 일이다. 그러나 경이 아된 말을 보면 그 바치지 못한 것이 이와 같이 많으니 극히 한심한 일이다. 지금 비록 더 지급하라는 명령이 또 이와 같으니 어찌 군향미를 소중하게 여기는 명령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비변사로 하여금 별도로 칙령을 내리기 바란다.” 라고 하였다.

右尹金聖應上疏云云，伏聞頃日筵中，因公洪監司柳嚴所陳達，以攄需米一千石，劃給水原仍作軍餉云，水原，實臣所管，而早晚住筵之地，朝家之倚以爲外都監者也，峙糧鍊兵，實爲先務，廟算至此，臣誠幸甚，第其內外輕重之別，亦有不可不察者，臣營之設，既在輦下，有軍校焉，置器械焉，守直之費，修葺之力，餽廩之調，俱不可一日無者，又有不時之需用，應行之賞格，今雖不能備足於此，然猶可以造成規模，然後方可及於外營也，卽今內營形勢，如上所陳，不自暇給於日用，而獨爲外營之地，捐出軍需，則豈不有乖於本末先後之宜乎，且以曾前已驗之事言之，辛亥春間因本道方伯狀聞，廟堂覆啓，許給攄需米二百石・大同米六百石合爲八百石，仍留本府，糶糴取耗，而今見成冊，則以還分未捧懸錄者，至於七百六十餘石之多，時存之數，只是百石零，則取耗一節，固不暇論，竝與本數而幾盡消縮，烏在其當初劃給之本意也哉，今雖加給，安知不如前日之無實效，若使本廳，隨其通縮而充給之，則不但有內外俱困之患，不審朝家，將何以繼之於方來耶，臣竊未知爲得計也，雖以海恩府院君吳命恒，爲攄使時，需米許留事爲言，臣取考謄錄，則其時府使報請留置，而攄使題辭，有曰，本廳需用亦爲浩多，當觀其足不足，以其餘數留置，而本營遞代，亦在不遠待新使更議處之云云，以此觀之，吳命恒之初不劃給，亦可推知矣，本營今若許留此米，則逐朔放下之數，已有不繼之患，今秋穡事稍稔，則冬朔上番之軍，其所接濟之糧，又從何處而責出，獨不重勞朝家之區劃乎，至若水原軍餉，則本府還穀之數，雖未知其幾許，以臣營所管軍餉之儲置於禿城者言之，米太竝計，殆至三千餘石，辛亥春留作軍餉者，八百六十餘石，以此見存之數，糶糴取耗，能不失其法意，則幾何而不作萬餘石乎，自今嚴立科條，併與從前未收，而趁秋準捧，俾有實效，則亦足有補於緩急之需矣，伏乞聖明俯賜睿察，亟寢攄需米一千石劃給之命，仍令廟堂申飭本府，未捧軍餉，待秋盡收，俾無如前拋置之弊云云，答曰，省疏具悉，頃者處分，蓋爲軍餉，卿何持難，頃年許給八百石米，亦爲軍餉則觀卿所陳，

其所未捧，若是夥然，極爲寒心，今雖有加給之命，又復若此，焉有重軍餉之令哉，其令備局，另加飭勵焉。

<비변사등록 97책, 영조 11년 1735년 05월 11일(음)>

경제/재정

吏曹參判 宋眞明등이 該道の 都事에게 軍作米를 摘奸하게 하는 문제에 대해 논의함

○ 이번 7월 초 10일에 대신과 비국 당상을 인견하여 입시하였을 때에 이조 참판 송진명(宋眞明)이 아뢰기를, “갑인년(1734) 조항의 군작미(軍作米)가 삼남(三南)에 있는 것을 수성(隋城：水原)·남한(南漢)에 획급(劃給)한 뒤에도 1만 수천석이 있습니다. 봄 무렵에 발관(發關：공문을 보냄)하여 그들로 하여금 따로 창고 하나를 두게 하고 봉표(封標：표를 하여 봉함)하여 첩보(帖報)하게 하였더니, 마땅히 비변사 낭관을 보내어 적간해야 한다고 말하였습니다. 호서·호남은 즉시 보고가 올라 왔으나, 영남 보고장은 이제 비로소 도착하였습니다. 금년에 또 작미하는 일이 있게 되어 신칙해야 할 방도가 없지 않은데, 비변사 낭관을 나누어 보내면 폐단이 있게 되니, 우선 각각 해당 도(道)의 도사(都事)로 하여금 적간하여 첩보하게 합니다. 이에 이르러 보리가 떨어지고 <가을의> 새 곡식이 아직 익지 않았을 때에 그들로 하여금 환곡을 나누어주고 모곡(耗穀)을 취하게 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감히 진달합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대신들의 뜻은 어떠한가?” 하였다. 우의정 김홍경이 아뢰기를, “밖에 있을 때에 이미 상의하였습니다마는 보리 수확 뒤에 한 번 구식(救食)하였는데 백성들이 모두 받기를 원하니, 환곡을 나누어 주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비변사 낭관에게 폐단이 있을 것은 도사로 하여금 적간하게 하는 것이 좋을 듯한데, 도사 중에 아직 부임하지 않은 자로서 이미 일사(一司)의 서경(署經)을 거친 자는 즉시 재촉하여 발송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그대로 하라고 하였다.

今七月初十日，大臣·備局堂上引見入侍時，吏曹參判宋眞明所啓，甲寅條軍作米三南所在者，隋城·南漢劃給後，尚有一萬數千石矣，春間發關，使之別置一倉，封標牒報，則當送備局郎摘奸爲言矣，湖西·湖南則卽爲報來，而嶺南報狀，今始來到矣，今年又有作米之事，不可無申飭之道，而備局郎分送有弊，爲先令各其道都事，摘奸牒報，而趁此麥絕新穀未登之時，使之還分取耗似好，敢達，上曰，大臣意何如，右議政金曰，在外時已相議，而麥後一巡救食，民皆願受，還分不難，備局郎有弊，令都事摘奸似好，而都事中未赴任者，已經一司署經，則卽爲催促發送何如，上曰，依爲之。

<비변사등록 98책, 영조 11년 1735년 07월 15일(음)>

경제/재정

全光監司 徐宗玉의 上疏에 대해 軍作米 斗數를 備局으로 하여금 酌定하게 하겠다

○ 전광 감사(全光監司：전라감사) 서종옥(徐宗玉)이 상서하기를, “... 조정[朝家]에서 민간에 돈이 귀한 폐단을 깊이 우려하시기를 금년부터 시작하시어 무릇 신포(身布)와 관련되는 것은 반드시 순목(純木：무명으로만 내게 함)으로 수봉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옛날에 곡식을 내어 돈을 바꾸는 자들이 봄·여름 이래로 방적(紡績：실짓기)의 일을 하여 애써 마련하여 납부하러 합니다. 그러나 지금 또 작미(作米)의 명령이 있으니, 진실로 그 도모하는 바를 그르쳤습니다. 비록 그러나 이 작미하는 거조는 실로 내년을 생각하는 것이니, 또한 얼마나 가엽어하는 것입니까마는 다만 묘당에서 정한 쌀값이 너무 높고 또 매우 고르지

않습니다. 대저 금년 농사는 기내(畿內)·호서(湖西)는 가장 결실이 잘 되었고, 남중(南中：南道)이 다음이고, 남중의 영하(嶺下)가 또 그 다음인데, 또한 더욱 심한 곳이 많습니다. 대개 시가(市價)로 말하면 수원(水原)·진위(振威)는 1량(兩)에 7~8두(斗)이고, 천안(天安)·공산(公山：공주)은 8~9두이고, 여산(礪山)·전주(全州)는 6~7두이고, 전주에서 영하에 이르면 점점 감소됩니다. 이것은 신이 귀로 듣고 눈으로 본 것이지 감히 함부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내는 마땅히 넉넉하니 진실로 비교하여 논할 수 없습니다. 호서가 호남보다 풍년인 것은 확실한데 작미의 값이 매우 다르니, 이것은 또한 어찌된 것입니까? 지금 일년 내내 경영한 벼를 시장에 내다 팔아도 1량 4~5전을 얻는 데에 불과한데, 그 1량 4~5전으로 과연 12말의 쌀을 사지 못합니다. 그리고 곤궁한 백성이 관부와 멀리 있는 자는 혹은 백여 리나 되니, 마소의 세넨 값이 또한 몇 말 쌀을 소모하게 되는 것입니까? 이 이외에 머물러 있으면서 소모되는 비용이 또한 반드시 없다고 보장하기 어려우면, 백성에게 은혜를 베풀게 되던 것이 다만 백성을 해치게 되니, 조정의 덕을 베푸는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신이 이미 명령을 발동하였으나, 백성은 모두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 곳에서 호소하는 것이 지극한 원망을 품은 듯하므로, 번거로이 보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였다. 대답하기를, “상소를 살펴 잘 알았다. 진술한 것은 비국으로 하여금 작정(酌定)하게 하리니, 경은 사퇴하지 말고 임무를 살피라.” 하였다.

全光監司徐宗玉上疏云云，朝家，深軫民間錢貴之弊，自今年爲始，凡係身布，必以純木收捧，故昔之出穀貿錢者，自春夏以來，經營紡績之事，艱難造備，將以納上，而今又有作米之令，固已失其所圖矣，雖然惟此作米之舉，實爲嗣歲之慮，則亦復何恤，而但廟堂所定之米價太高，而又甚不均，大抵今年事，畿內湖西則最實，南中次之，南中之嶺下又其次，而亦多尤甚之處，概以市價言之，水原·振威，一兩七八斗，天安·公山，八九斗，礪山·全州，六七斗，自全州至於嶺下漸減，此臣之所耳聞目見，非敢闕語也，畿內則宜優，固不可比論，湖西之豐於湖南審矣，而作米之價懸殊，此又何也，今以終年經營之布，出賣市場，不過得一兩四五錢，以其一兩四五錢果不買十二斗之米，而窮民之遠於官府者或至百餘里，則牛馬之賁，又當費幾斗米耶，此外留連糜費，亦難保其必無，則其所以惠民者，適足以害民，烏在乎朝家之德意耶，臣既發令矣，而民皆不願，處處擁訴，如抱至冤，故不得不煩聞云云，答曰，省疏具悉，所陳事令備局酌定，卿其勿辭察任．

<비변사등록 98책, 영조 11년 1735년 10월 12일(음)>

경제/재정

左議政 金在魯가 摠戎廳의 需用米 1천석 중 반을 내년 몫으로 劃給하는 문제를 논의하다

이번 정월 10일 대신과 비국당상을 인견 입시 때에 좌의정 김재로(金在魯)가 아뢰기를, “총융사 김흡(金滄)의 장계에 ‘본 청에 쓰여지는 수용미(需用米) 1천 석은 공홍감사 유엄(柳儼)의 소달(所達)로 인하여 수원(水原)에 획급(劃給)하기로 임금이 재결하였기 때문에 5백 석은 이미 보관된 채 쌓여 있고 5백 석은 금년 봄에 본부에 받은 수용미로 획급해야 되는데 본 청의 물력(物力)이 본래 보잘것이 없는데다가 받아들이는 것도 근래에는 더욱 감축되고 있으며 금년은 또 아병(牙兵)을 뽑아서 상번(上番)시키는 일과 방료(放料)와 시상(試賞) 등의 비용이 매우 많으며, 궁시총검(弓矢銃劍)의 부서진 것들의 환급(換給)하는 대금도 역시 즉시 비충(備充)해야 하며, 이 밖에 또 염초와 화약 등도 약간을 수미(收米)하고 나면 달리 유지하여 쓸 방도가 없습니다. 수원에 아직 지급하지 못한 5백 석은 다음 해의 몫으로 획급하도록 하여 주십시오’ 라고 장청하고 있습니다.

임직을 맡은 신하가 이런 등속의 방계(防啓)는 늘상 있는 일이겠으나 충융청의 물력이 조잔(凋殘)한 형편에 금년에 지출될 비용이 많은 것은 사실 진술한 바와 같습니다. 5백 석은 금년조(今年條)를 기다리도록 다시 신칙하지 않아도 즉시 획급하라는 뜻으로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말한 것이 역시 그러하니 가을을 기다려서 획급하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今正月初十日大臣·備局堂上引見入侍時，左議政金所啓，摠戎使金滄狀啓中以爲，本廳需米一千石，因公洪監司柳儼所達，劃給水原事定奪，故五百石已爲留儲，五百石則當以今春本府所納需米劃給，而本廳物力本來凋殘，捧入近益減縮，而今年則又有壯抄牙兵上番之事，放料試賞之費甚多，弓矢銃劍破落者換給之代，亦當卽爲備充，此外又有焰硝火藥等役，若干收米外，無他支用之道，水原所未給五百石則以後年條劃給事狀請矣，職掌之臣此等防啓，雖是例事，而摠廳物力之凋殘，今年支用之浩繁，誠如所陳，五百石則待今年條不待更飭，卽爲劃給之意分付何如，上曰，所達亦然，待秋劃給可也。

<비변사등록 99책, 영조 12년 1736년 01월 14일(음)>

경제/재정

左議政 金在魯가 水原 海倉의 곡식 3백석을 摠戎廳에 劃給하는 문제에 대해 논의하다

○ 이번 정월 22일 대신과 비국당상을 인견 입시 때에 좌의정 김재로(金在魯)가 아뢰기를, “지난 번에 충융사의 장계에 따르면 충융청의 수미(需米：수용미)는 국가에서 수원에 획급하여 줄 1천석 내에 5백 석은 먼저 획급하여 주고, 5백 석은 지금 당분간 가져와서 그것을 가지고 군기수보(軍器修補)와 방료(放料)의 밑천으로 하고 내년 봄을 기다려서 획급하여 주도록 허락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들으니 수원부에서 이렇게 임금이 재결한 것을 듣지 못하고 1천 석을 모두 군향고(軍餉庫)에 받아들였다고 말합니다. 1천 석을 만약 모두 수원의 창고에 쌓아두게 되면 충융청의 쌀은 2백 석에 불과하여 듣자하니 그 형세가 참으로 지탱하기가 어렵겠습니다. 수원의 수미(需米)가 이미 읍창(邑倉)으로 들어가 버린 상태에서 지금 만약 상송(上送)을 하게 한다면 이제는 당연히 해창(海倉)에 쌓아 둔 것을 변통하여 보낼 것이니 해창의 쌀은 틀림없이 수원수미 보다는 못합니다. 가져올 5백 석 내에서 2백 석은 남겨놓고 3백 석은 가져오면 원래 남아 있는 2백 석과 합하면 5백 석이 되니 각별하게 아껴서 사용하면 어찌면 내년 봄까지 버틸 수가 있으니 지금 마땅히 3백 석만 획급이 되면 역시 명년의 근심도 풀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미 이렇게 충융사에게 말하였습니다. 이렇게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그렇게 하라고 답하였다.

今正月二十二日大臣·備局堂上引見入侍時，左議政金所啓，頃因摠戎使狀啓，本廳需米因朝令劃給水原一千石內，五百石爲先劃給，五百石則今姑取來，以爲軍器修補及放料之資，而待明春劃給事許施矣，今聞水原府未聞此定奪之前，一千石竝爲捧入於軍餉庫云，一千石若盡留，則摠廳餘米只二百石，聞其形勢，誠爲難支，而水原需米既入邑倉，今若必令上送，則當以海倉所儲推移以送，海倉之米，必不如需米矣，五百石內二百石仍留，三百石取用，而竝與元餘二百石合爲五百石，各別撙節，則猶可支過明春，所當劃留，只爲三百石，則亦可紓明年之憂，已以此言于摠使，依此分付何如，上曰，依爲之。

<비변사등록 99책, 영조 12년 1736년 01월 23일(음)>

경제/재정

水原府使 金泰衍이 本邑에 저장된 콩과 보리 등을 賑恤穀을 쓰는 문제를 논의하다

이번 8월 19일 강릉(康陵)을 참배[展謁]한 뒤에 경기감사 서종급(徐宗汲)과 양주목사 신만(申晩)과 수원부사 김태연(金泰衍)을 인견하여 입시하였을 때에 수원부사 김태연이 아뢰기를, “신이 황송함을 알면서도 감히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을묘년간에 국가에서 재황(災荒)을 염려하여 기영(畿營)에 금단(錦段)을 내려보내어 곡식을 사들여 각읍에 유치(留置)하도록 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본부에서도 콩 700여 석을 사서 유치하였으며 또 첩가(帖價)로 모(牟：麴보리) 600여 석을 사서 유치한 것도 있습니다. 금년에 진자(賑資)로는 사실 조치하여 만들 길이 없사운데 이 두 가지의 곡물은 이미 본부에 유치되어 있는 것이니 조정에서 특별히 분급한다면 진자(賑資)에 다소의 보탬이 될 수가 있겠기에 황공하옵게도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하니, 임금의 이르기를, “묘당에서 아뢰어 처치토록 하겠다.” 하였다.

今八月十九日康陵展謁後，京畿監司徐宗汲·楊州牧使申晩·水原府使金泰衍引見入侍時，水原府使金泰衍所啓，臣極知惶悚，而敢有所仰達者矣，乙卯年間，朝家爲慮災荒，有下送錦段於畿營，使之貿穀留置各邑之事，故本府亦有留置貿太七百餘石，且有帖價貿牟六百餘石之留置者矣，今年賑資，實無措辦之道，而此兩條穀物，既是本府留置者，自朝家特爲劃給，則可得少補於賑資矣，惶恐敢達，上曰，令廟堂稟處。

<비변사등록 104책, 영조 14년 1738년 08월 21일(음)>

경제/재정

右議政 宋寅明이 錦段으로 산 곡식을 水原이 조정에서 받는 것을 금하는 문제를 논의하다

○ 또 아뢰기를, “이는 지난 번 능행(陵幸) 때에 수원부사 김태연(金泰衍)이 아뢴 내용입니다. 금단(錦段)으로 산 곡식은 곧 감영에서 구관(句管：담당)하는 것으로 분등장문(分等狀聞)이 이루어진 뒤에 수원이 우심읍(尤甚邑)에 들어가면 도신(道臣)이 나누어주는 것은 가능하지만 앞질러서 조정[朝家]으로부터 분급하는 속에 들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이 임금께 아뢰는 조항은 지금으로서는 아직 허락하지 않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뢴대로 하라고 답하였다.

又所啓，此乃頃日陵幸時，水原府使金泰衍所啓也，錦段所貿之穀，卽自監營句管者，分等狀聞後，水原入於尤甚，則令道臣分俵可也，而不可徑先，自朝家劃給之中，此舉條，今姑置之何如，上曰，依爲之。

<비변사등록 104책, 영조 14년 1738년 09월 02일(음)>

경제/재정

右議政 俞拓基가 水原의 軍器를 수리하는데 필요한 물력을 變通하는 문제에 대해 논의하다

이번 4월 20일 대신과 비국 당상관을 인견하여 입시하였을 때 우의정 유척기가 아뢰기를, “이것은 경기감사 정석오(鄭錫五)의 장계입니다. 그는 수원부사(水原府使) 이정보(李鼎輔)의 보고를 일일이 열거하여 ‘본부의 군기(軍器)를 지금 수리하고 있다’고 하고 또 ‘본부의 군향미태(軍餉米太)와 양년(兩年)의 모곡 및 사군목(射軍木) 10여동을 달라’고 간청하였습니다. 지난번 그 장계로 인하여 영남의 사군목 5동을 이미 주었으나 물력이 부족하므로 또 이와 같이 간청한 것입니다. 그리고 수원은 경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곳이므로 군향 모곡(耗穀)과 미태(米太)를 지급하는 것이 비록 가볍게 논의하기는 어렵고 사목(射木) 3동을 더 지급하는 것도 총융청에서 각별히 도와주도록 본부를 내린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자, 임금은 이르기를, “총융사에서 하는 말을 들으니 부사가 중수(重修)하는 일에 열중하고 있다고 하니 그렇게 하는 것이 가할 것이다.” 하였다.

今四月二十日，大臣・備局堂上引見入侍時，右議政俞所啓，此卽京畿監司鄭錫五狀啓也，枚舉水原府使李鼎輔所報，以爲本府軍器，方爲修改，而請得本府軍餉米太兩年條耗及射軍木十餘同矣，頃因其狀請，嶺南射軍木五同，已爲劃給，而物力不足，故又如是爲請，第水原雖是畿輔重地，而軍餉耗米太劃給，難可輕議，射木三同加劃給，亦令自摠戎廳，各別顧助事，分付何如，上曰，聞摠戎使所達，則府使頗勤於修改等事云，依爲之可也。

<비변사등록 106책, 영조 16년 1740년 04월 21일(음)>

경제/재정

軍餉未를 제대로 거두지 못한 守令과 邊將을 처벌할 것을 청하다

비변사의 계사에, “각도 군향(軍餉)을 수봉치 못한 수령과 변장(邊將)에 있어 거말(居末 : 가장 말단(末端)을 차지함)은 나문하고 거이(居二)는 결장(決杖)하고 거삼(居三)은 추고하며, 원환상(元還上)을 수봉치 못한 거말은 결장하고 거이는 추고한다고 전에 정탈하였습시다. 평안도 장계를 상고해 보면 군향의 거말은 장자돈 차지(長者屯次知) 청성첨사(淸城僉使) 박도원(朴道元)이요, 거이는 용천부사(龍川府使) 유춘복(柳春馥)이며 거삼은 선사포첨사(宣沙浦僉事) 박도면(朴道勉)입니다. 원환상 거말은 용천부사 유춘복이요, 거이는 양하만호(楊下萬戶) 박지택(朴枝澤)입니다. 경기는 새환상과 군향은 아울러 수에 맞게 수봉하였으나 계해년의 환상으로서 수봉치 못한 경우 남양부사(南陽府使) 유정(柳縉)이 거말이요, 수원부사(水原府使) 홍창한(洪昌漢)이 거이입니다. 아울러 사목에 의하여 감정(勘定)하여 처리하라고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답하였다.

司啓辭，各道軍餉未捧守令邊將，居末拿問，居二決杖，居三推考，元還上未捧居末決杖，居二推考事，自前定奪矣，取考平安道狀啓，則軍餉居末，長者屯次知淸江僉使朴道元，居二，龍川府使柳春馥，居三宣沙浦僉使朴道勉，元還上居末，龍川府使柳春馥，居二楊下萬戶朴枝澤，京畿則新還上軍餉竝準捧，而癸亥條還上未捧，南陽府使柳縉，居末，水原府使洪昌漢，居二矣，竝依事目勘處之意，該府一體分付何如，答曰，允。

<비변사등록 113책, 영조 21년 1745년 03월 14일(음)>

경제/재정

領議政 金在魯가 京畿의 還上를 加分하는 문제에 대해 논의하다

5월 2일 대신·비변사 당상·도신·해서심리사를 같이 인견하여 입시하였을 때에 영의정 김재로(金在魯)가 아뢰기를, “시급한 일이 있어 아뢰입니다. 경기감사 이기진(李箕鎭)이 수원(水原) 등 고을의 절반 유고곡(留庫穀)에서 민간에 분수(分數)를 더 주어 농사 양식으로 하게 할 것을 청한 바 있었고 근일 우상은 연석(筵席)에서 아뢰어 유고곡 가운데에서 절반을 더 분수토록 하기를 청하였으며 여러 신하들에게 약간의 이견이 있자 위에서 다시 헤아려 품처(稟處: 임금에게 아뢰고 처리함)하라는 하교가 계셨습니다. 환자의 절반 유고는 법에 맞는 바가 있어 속속 흔들어 고치는 것은 사실 어려운 일이나 경기 고을에는 본래 곡물이 적습니다. 그러므로 분수를 더하는 일이 해마다 있었는데 금년에 유독 방지가 있어서는 옳지 않겠습니다. 도신으로 하여금 각별히 자세히 헤아려 환자가 가장 적고 더욱 심하게 절급한 고을의 경우 절반을 나누어 주고 그 다음 고을은 3분의 1을 나누어 주며 환자가 적지 않아 사정이 그다지 심하지 않은 고을은 분수를 더해 주지 않는 것이 옳습니다. 이러한 뜻으로 도신에게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였다.

今五月初二日，大臣・備局堂上・道臣・海西審理使同爲引見入侍時，領議政金所啓，有時急事

敢達，京畿監司李箕鎭，以水原等邑折米留庫穀，加分民間，俾作農糧事狀請，而頃日右相筵達，請許留庫中折米加分，則諸臣略有異同之論，自上，以更爲詳量稟處下教矣，還上之折米留庫，法意有在，固難續續撓改，而畿邑，本來穀少，故加分之舉，年年有之，今年不可獨爲防寒，令道臣各別詳量，還上最少尤甚切急之邑，則折半分給，其次邑則三分之一分給，還上不少，形勢不甚爲急之邑，則永勿加分宜當，此意分付道臣何如，上曰，依爲之。

<비변사등록 113책, 영조 21년 1745년 05월 04일(음)>

경제/재정

水原府의 軍布를 감하도록 하라고 전교하다

전교하기를, “지난번에 수원부사 김상복(金相福)의 진달로 인하여 등대(登對)하였을 때에 품처하라고 하교하였는데 오늘의 하문은 어긋남이 없지 않다. 아, 수원은 기보(畿輔)의 중진(重鎭)이라서 옛날에 외도감(外都監)으로 삼는다는 하교가 계셨고 또 감포(減布)를 명하셨습니다. 백성이 곧 군(軍)이요, 군이 곧 백성이니 삼도(三都)와 다른 것이 없다. 옛날에 은혜를 베푸신 일을 본받지 않는다면 어떻게 수성(隋城)의 백성을 위로할 수 있겠느냐? 한결같이 삼도의 예대로 특별히 결전(結錢)을 해주어라.” 하였다.

傳曰，頃因水原府使金相福所奏，有登對時稟處之教矣，今日下詢，不無參差，而噫水原以畿輔重鎭，昔年有外都監之教，又命減布，民乃軍軍乃民也，與三都無異，若無體昔年施惠之事，則何以慰隋城之民乎，一依三都例，特減結錢。

<비변사등록 129책, 영조 31년 1755년 08월 14일(음)>

경제/재정

左議政 金尙魯 등이 水原府의 馬兵을 변통하는 문제에 대해 논의하다

이번 8월 14일 좌의정과 병조판서·호조판서 및 각 군문의 대장이 함께 입시하였을 때에 좌의정 김상로(金尙魯)가 아뢰기를, “엇그제 연석에서 수원부사(水原府使) 김상복(金相福)이 본부(本府)의 마병(馬兵)을 변통할 것을 진달하여 등대하였을 때에 품처하라는 명이 계셨습니다. 지금 이 마병을 변통하는 논의는 고 판서 송진명(宋眞明)에게서 나왔습니다. 본부는 기보(畿輔)의 중진(重鎭)으로 이른바 마병은 명칭은 있으나 사실은 없는 것과 같아서 위급할 때에 힘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김상복이 이를 개연하게 여겨 연석에 나와 진청하였으니 이는 사실 소견이 있다 하겠습니다. 지금 만일 본부의 장교 자손과 기타 무예에 종사하고서 한가로이 놀고 있는 자를 양반·중인·서인을 논할 것 없이 자비로 전마와 군장을 마련하면 그 원에 따라 입속(入屬)을 허락하고, 명칭을 별효위(別驍衛)라 하며 1년에 1차 도시(都試)를 설행하여 거수(居首)는 직부(直赴)하게 하고 그 이하의 여러 조목도 아울러 그가 진달한 바대로 시행하여 마병의 명칭과 액수를 차차 삭감하여 완전히 없게 한 뒤에 그만두라면 확실히 실효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 여러 장신(將臣)이 입시하였으니 하문하여 처리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여러 장신(將臣)들의 의견은 어떠한가?”

하였다. 훈련대장 김성응(金聖應)은 말하기를, “본부 마병의 폐단은 사실 김상복이 아뢴 바와 같습니다. 습조(習操)를 당하면 마필(馬匹)을 여기저기서 세내느라 모양이 아니라고 합니다. 비록 마병이라 해도 보병만도 못하니 위급할 때에 믿을 것이 못됩니다. 지금 만일 변통을 잘한다면 실효가 있을 것입니다.”

하고, 병조판서 홍봉한(洪鳳漢)은 말하기를, “지금 이 마병을 변통하자는 논의는 이번에

처음 나온 것이 아니라 고 판서 송진명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지금 대신이 아뢴 바대로 잘 변통하면 실효가 있을 듯합니다.”

하였으며, 어영대장 정찬술(鄭攢述)은 말하기를, “지금 이 마병의 폐단은 수원뿐만 아니라 외읍(外邑)의 마병도 모두 이와 같습니다. 지금 잘 변통하여 상벌(賞罰)을 명확히 시행하면 격권하는 방책이 될 듯합니다.” 하였고, 금위대장 구선행(具善行)은 말하기를, “수원 마군의 폐단은 신도 들었습니다. 대신이 아뢴 바대로 변통하면 좋겠습니다.”

하였으며, 충용사 이장오(李章吾)는 말하기를, “마군의 폐단은 수원뿐만이 아닙니다. 신이 충청 병사로 있을 때에 보니 조련에 참가하는 마필은 세를 내거나 빌려서 우선 당시만 일이 생기는 것을 면하려고 하였습니다. 이 폐단은 사실 군자(軍資)와 군장(軍裝)이 부족한 데서 나온 것이니 잘 변통하여 실효가 있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였다. 김상로가 말하기를, “여러 장신들의 대답이 모두 이와 같으니 본부의 부사가 아뢴 대로 시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그리하라 하였다. 김상로가 말하기를, “이는 군제(軍制)를 변통하는 일이니 본부에서 절목을 만들어 비변사에 보고한 후에 비변사에서 첨삭(添削)하여 계하(啓下)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그리하라 하였다.

今八月十四日, 左相·騎判·戶判, 各軍門大將, 同爲入侍時, 左議政金所啓, 日昨筵中, **水原府使**金相福, 以本府馬兵變通事陳達, 有登對時稟處之命矣, 今此馬兵變通之議, 出自故判書宋眞明, 而本府以畿輔重鎮, 所謂馬兵, 名雖有而實則與無同, 緩急將無所恃, 金相福之慨然於此, 登筵陳請者, 誠有意見, 今若以本府將校子枝及其他業武閑遊者, 勿論兩班中庶, 自備戰馬軍裝, 許其依願入屬, 而名之以別驍衛, 一年一次設行, 都試·居首·直赴以下諸條, 竝依其所達施行, 使馬兵名額, 次次刪減, 期於全減而後已, 則必有實效矣, 諸將臣今方入侍, 下詢處之何如, 上曰, 諸將臣之意何如, 訓練大將金聖應曰, 本府馬兵之弊, 誠如金相福之所達, 若值習操馬匹, 東西貫借, 不成貌樣云, 雖曰馬兵, 不若步軍, 緩急, 將無所恃, 今若善爲變通, 則宜有實效矣, 兵曹判書洪鳳漢曰, 今此馬兵變通之議, 乃非今番始出之論, 出自故判書宋眞明矣, 今若依大臣所達, 而善爲變通, 則似有實效矣, 御營大將鄭纘述曰, 今此馬兵之弊, 非特**水原**而已, 外邑馬兵, 亦皆如此, 今若善爲變通, 而明施賞罰, 則似爲激勸之道矣, 禁衛大將具善行曰, **水原**馬軍之弊, 臣亦與聞, 而若依大臣所達, 變通則好矣, 摠戎使李章吾曰, 馬軍之弊, 非但**水原**, 臣待罪忠淸兵使時, 參操馬匹, 或貫或借, 姑免臨時生事, 此弊, 實出於資裝不足之致, 善爲變通, 俾有實效好矣, 金曰, 諸將臣所對, 皆如此, 依本府府使所達施行何如, 上曰, 依爲之, 金曰, 事係軍制, 變通, 令本府成節目, 報備局後, 自備局添刪啓下何如, 上曰, 依爲之.

<비변사등록 129책, 영조 31년 1755년 08월 18일(음)>

경제/재정

水原府使 金孝大 등이 丙子年의 舊逋를 탕감하는 문제에 대해 논의하다

이번 1월 27일 경기감사와 각무 차사원(各務差使員)이 함께 입시하였을 때에 수원부사 김효대(金孝大)가 아뢰기를, “을해(1755)·병자(1756) 양년 조(條)의 구포(舊逋)는 조령(朝令)으로 인하여 그 절반만 징봉하도록 하였는데, 그 가운데 병자년 조(丙子年條)의 환자[還上]는 이미 탕감을 허락하였고, 을해년 조 구포는 일체 징봉하였습니다. 병자년 조를 이미 합몰(合沒)한 사람에게 탕감을 해주었다면 을해년조(乙亥年條)가 비록 합몰 전이라 하더라도 지금에 와서 어찌 징봉할 곳이 있겠습니까? 전 감사 신 남태회(南泰會)가 이 일로 장달(狀達)하였는데 묘당에서 막았습니다. 이후 구포를 수봉(收捧)할 때 반드시 이전처럼 억울하게

징수하는 폐단이 있을 것이니 마땅히 분간하여 알려야 할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이것은 특히 수원(水原) 한 고을만 그런 것이 아니므로 도신에게 장문하게 하고 승지가 가져와 아뢰도록 하라.” 하였다.

今正月二十七日京畿監司·各務差使員同爲入侍時, 水原府使金孝大所啓, 乙·丙兩年條舊逋, 因朝令折半懲捧, 而其中, 丙子條還上, 則既許蕩減, 乙亥條舊逋, 則一體懲捧, 丙子條既已合沒蕩減, 則乙亥條雖在合沒之前, 到今亦豈有可懲之處乎, 前監司臣南泰會, 以此狀達, 則廟堂防塞矣, 此後舊逋收捧時, 必有如前混懲之弊, 宜有分揀知委之道矣, 上曰, 此則非特水原一邑而已, 令道臣狀聞, 而承旨持奏.

<비변사등록 134책, 영조 34년 1758년 02월 01일(음)>

경제/재정

京畿監司 趙暎 등이 隣徵族徵의 폐단이 크므로 水原 등에 改量安을 만드는 문제를 논의하다

○ 이번 1월 28일 약방의 입진에 우상(右相)·기백(畿伯)·어사(御史)가 함께 입시하였을 때에 경기감사 조돈(趙墩)이 아뢰기를, “신에게 구구한 소회(所懷)가 있어서 감히 양달합니다. 근래에 백성의 고질적인 폐단은 백지(白地) 징세만 한 것이 없습니다. 기전(畿甸)은 다른 도에 비해 더욱 심하여 이웃과 족속[隣族]에게 침징(侵徵)하는 폐단이 참으로 불쌍합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진전(陳田)이 많은 읍을 택하여 먼저 사실을 조사하여 개량한다면 백성에게 혜택을 주는 정사는 이보다 더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므로, 임금이 말하기를, “만일 잘 하지 못하면 도리어 하지 않는 것만 못하다. 이런 일은 참으로 인재를 얻은 뒤 행할 수 있을 것이다. 도신의 의향은 어느 읍에 있는가?” 하니, 조돈이 아뢰기를, “수원(水原)·장단(長湍), 이 두 읍은 먼저 개량(改量)할 만합니다.” 하여, 임금이 말하기를, “참으로 인재를 얻었다. 이 두 사람은 반드시 잘 할 것이다.” 하였다.

조돈이 아뢰기를, “개량 때의 물력(物力)은 으레 민결(民結)을 징수하였으나 수령이 혹 백성에게 거두어들이는 데로 돌아갈까 염려하여 감히 생각도 못하고 있습니다. 비록 관에서 마련하려고 해도 기읍(畿邑)의 지극히 조잔(凋殘)한 형세로 어찌 마련할 가망이 있겠습니까? 이 때문에 개량을 하고 싶어도 이 한 가지 일에 얽매어 생각도 못하고 있습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이 일은 도신과 수령이 상의하여 좋은 쪽으로 처리하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今正月二十八日藥房入診, 右相·畿伯·御史同爲入侍時, 京畿監司趙暎所啓, 臣有區區所懷, 敢此仰達矣, 近來生民痼弊, 莫如白地徵稅, 而畿甸比他道尤甚, 隣·族侵徵之弊, 實爲哀矜, 臣意以爲, 擇其陳田所多邑, 先爲查實改量, 則其爲惠民之政, 莫過於此矣, 上曰, 如或不善爲之, 則及不如不爲也, 此誠得人然後, 可以行之, 道臣意向, 在於何邑耶, 暎曰, 水原·長湍此兩邑, 爲先改量矣, 上曰, 誠得人矣, 此兩人必善爲之, 暎曰, 改量時物力, 例有民結所收, 而守令, 或慮爲斂民之歸, 故不敢生意, 雖欲自官辦備, 以畿邑至殘之形勢, 寧有辦出望乎, 以此之故, 欲爲改量, 而坐於此一節, 不得生意矣, 上曰, 此則道臣與守令相議, 從長處之可也.

<비변사등록 134책, 영조 34년 1758년 02월 05일(음)>

경제/재정

左議政 申晩 등이 摠戎廳 東伍가 需米를 疊納하는 것을 변통하는 문제에 대해 논의하다

또 아뢰기를, “일찍이 수원부사(水原府使) 김효대(金孝大)가 아뢴바 충융청의 군수보(軍需保)를 종도록 변통하는 일에 대하여 후임 비국과 충융사가 같이 입시하였을 때에 품처하라

는 명이 계셨습니다. 수원은 기보(畿輔)의 중진(重鎭)인데 속오군(東伍軍)이 군수미(軍需米)를 겹쳐 내는 것은 매우 가엾고 민망한 일이므로 이정(釐正)하지 않을 수 없으나 갑자기 좋은 방도로 변통할 길이 없습니다. 총융사가 지금 입시하였으니 하문하여 처리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총융사의 뜻은 어떠한가?” 하였다.

좌참찬 홍봉한(洪鳳漢)이 말하기를, “수원은 옛날에는 외도감(外都監)이라 칭하여 군액은 많고 백성은 적어 온갖 폐단이 함께 생겼습니다. 지금 부사 김효대가 성의를 다하여 시정하려 하나 조정에서 특별히 돌보아 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성과를 올릴 수 있겠습니까? 전번에 재신(宰臣) 김상복(金相福)이 진달하여 본부 결전(結錢)을 면제하기까지 한 것은 대체로 백성을 위한 성의에서 나온 것이나 신의 생각은 오히려 그렇지 않다고 여깁니다. 본부가 비록 관방(關防)의 중지(重地)라 하지만 양주(楊州)와 고양(高陽)에 비유하면 크게 다름이 있습니다. 양주와 고양에서 면하지 못한 역을 수원만 유독 면하였다면 사체에 여하할 뿐더러 장단(長湍)과 남양(南陽)도 삼진(三鎭) 가운데 들었으니 억울하다는 탄식이 없지 않을 것이며 만일 점차로 원례(援例)하여 감면해 준다면 장차 지탱하여 감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조정에서 법을 정함에는 일정하게 하는 것이 소중합니다. 더구나 본부의 토지는 서울 사대부와 토호들의 전답이 대부분이어서 결전을 감면한 혜택이 온전히 백성에게 돌아가는 것도 아니므로 백성이 군역(軍役)을 면하지 못한 원망은 그대로 있습니다. 지금 만일 종도록 변통하려면 결전은 다른 고율과 같이 일체로 징수하고 군보를 겸역(兼役)하는 따위는 모조리 감하거나 없애고 이어 결전으로 받은 것으로 적당히 급대(給代)해 준다면 비로소 군민을 위한 막대한 혜택이 될 것이며 수성(隋城)도 폐해를 없애고 잔폐(殘弊)에서 소생할 희망이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재신에게 말하니 재신도 그와 같이 한다면 그 혜택이 더욱 클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비국의 당상가운데 김선행(金善行)이 또한 수원을 거쳤는데 마침 같이 입시하였으니 하문(下問)하여 처리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재신의 뜻은 어떠한가? 각자 소견을 말하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사직 김상복(金相福)은 말하기를, “신이 연전에 수원을 맡아 능행(陵幸)에 도차원(都差員)으로 입시하였는데 상께서 고율의 폐단을 하문하셨기에 신이 수원의 결전(結錢)에 대하여 앙달한바 있습니다. 수원은 기보의 중진으로 지난 갑술년(甲戌年)에 특별히 1필을 감하고 총융청에 소속된 뒤에는 수미군(需米軍)으로 6두를 냈는데 거의 모두 속오군(東伍軍)을 겸하였습니다. 대개 수미와 속오는 그 수량이 둘 다 많으므로 둘로 나누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번에 제도(諸道)에서 군포를 감면한 뒤에 수원의 군병은 군수미도 내고 속오도 겸한 것은 도리어 치우친 고통이 있으므로 실로 향우(向隅)의 탄식이 있으며, 또한 수원은 경오년(庚午年)의 감포(減布)에 들지 아니하였으므로 급대도 할 수 없는데 수원의 결전으로 다른 고율의 재감한 대충을 주는 것은 실로 원통하고 억울합니다. 신이 이러한 뜻으로 진달하니 상께서 대신과 제신에게 하문하신 뒤에 특교(特敎)로써 수원의 결전을 탕감하였습니다. 총융사 홍봉한은 그때에도 총융사를 겸대(兼帶)하고 있었는데 소견이 오늘 주청한 바와 같았습니다. 지금 만일 다시 결전을 받아들이고 군수미를 감면한다면 반드시 잘 구획하여 백성이 실혜(實惠)를 입게 된 뒤에라야 넉넉히 구휼해 준 덕의가 종시(終始)토록 아랫 백성에게 퍼질 것입니다.”

하고, 사직 김선행(金善行)은 말하기를, “대저 속오의 겸역은 비단 수원뿐만 아니라 모든 고율도 이와 같은데 이는 근래에 군정(軍丁)이 매우 어려움으로 각 고율에서 속오는 내는 것이 없다고 청탁하고 이렇듯 겸역의 침징(侵徵)이 있으나 속오의 1년 소비(所費)는 군포를 내는 무리가 1년에 내는 것에 비하면 도리어 배나 많으니 속오로서 겸역하는 자를 신은 향

상 민망하게 여깁니다. 수원에 있어서는 속오로서 수미를 겸한 자가 매우 많아 3천여 명이 넘으므로 백성이 지탱할 수가 없으며 군용(軍容)이 날로 조잔해지고 도고(逃故)는 날로 증가하는 것이 오로지 여기에 연유하는데 조정에서 중진(重鎭)의 군정(軍情)을 깊이 생각하여 유독 수원에만 결전을 면제해 준 정사가 있기까지 하였으나 결전을 받지 않는다 하여 그것이 반드시 군민(軍民)의 혜택이 되지는 아니합니다. 대개 수원은 거의 서울 사대부가의 전답이므로 결전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서울 사대부가에서 그 이익을 많이 받을 따름이지 원래 거주한 군민에게 무슨 큰 이익이 있겠습니까? 육도(六道)에서 통행하는 역(役)을 유독 수원에만 감면하는 것도 균역의 뜻이 아닐 뿐더러 또 실해라고 말할 것도 없으니 신의 생각으로도 다시 결전을 받아들이고 영구히 속오의 겸역을 없애며 균역청에서 결전을 받아들이는 수량으로 수미(需米)를 없애는 대신으로 출급한다면 비로소 막대한 혜택이 될 것이며 본 읍의 큰 폐단과 보충하기 어려운 군액(軍額)도 구원할 수 있을 것으로 여기옵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과연 주달한 바와 같다면 이는 익하(益下)의 정사(政事)이다. 그러나 일을 시작하는 데에는 반드시 신중해야 한다. 균역청에서 묘당과 상의하여 절목으로 계하하게 하라.” 하였다. 홍봉한이 말하기를, “수원의 금년 결전은 양전(量田)을 하였으므로 마땅히 다른 예대로 감면해 주어야 하는데 군정(軍政)의 변통은 금년부터 하여 수원의 백성에게 속히 혜택을 입게 하여야 하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그리하라 하였다.

又所啓，曾因水原府使金孝大所啓，摠戎廳軍需保，從長變通事，有日後備局摠戎使同爲入侍時，稟處之命矣，水原，卽畿輔重鎭，而束伍之疊納需米，事甚矜悶，不可不釐正，而猝無好樣變通之道，摠戎使方入侍，下詢處之何如，上曰，摠戎使之意何如，左參贊洪鳳漢曰，水原，古稱外都監，軍多民少，百弊俱生，時府使金孝大，雖欲殫誠釐革，朝家若不別爲顧念，則何以責效乎，向來宰臣金相福陳達，至免本府結錢，蓋出爲民之誠意，而臣意則尙以爲不然，本府雖是關防重地，比諸楊州·高陽，大有間焉，而楊高所不免之役，水原之獨免，事體既涉如何，長湍·南陽，亦在三鎭之中，而不無向隅之歎，其若次次援減，將不勝其支當，朝家定法，貴乎一切，況本府土地，多是京士夫與土豪之田畝，結錢所免之惠，未必專歸於小民，而小民軍役難應之冤，固自如也，今若從長變通，結錢則依他邑，一體徵捧，軍保兼役之類，一併減罷，仍以結錢所捧，量宜給代，則始可爲軍民莫大之惠，而隋城，亦可有祛弊蘇殘之望矣，以此言于宰臣，則亦以爲如此，則其惠尤大云，而備堂中金善行，又經水原，俱適入侍，下詢處之何如，上曰，宰臣之意何如，各陳所見，可也，司直金相福曰，臣頃年待罪水原，以陵幸都差員入侍，而自上下詢邑弊，故臣以水原結錢事，有所仰達矣，水原以畿輔重鎭，在昔甲戌，特減一疋，及屬摠廳之後，需米軍納六斗，而幾皆兼束伍，蓋需米束伍，其數兩多，有難分而二之也，今於諸道減疋之後，水原之軍納需米，而兼束伍，反爲偏苦，實有向隅之歎，而且水原，不入於庚午減布，無可給代者，則以水原結錢，給他邑所減之代，實爲冤抑，故臣以此意陳達，而自上詢問大臣·諸臣後，以特教，減水原結錢，摠戎使洪鳳漢，其時亦帶摠戎使，所見如今日所奏矣，今若欲更捧結錢，而減需米，則必須善爲區劃，民蒙實惠，然後優恤之德意，終始下布矣，司直金善行曰，大凡束伍兼役，非但水原，他各邑亦如此，而此乃近來軍丁甚難，故各邑諉以束伍無所納，而有此兼役之侵，然束伍一年所費，比之於收布輩一年所納，則反爲倍多，束伍兼役者，臣常以爲可矜矣，至於水原束伍而兼需米者，其數甚多，殆過三千餘名，故民不能支堪，軍容之日漸凋弊，逃故之日益增加，專由於此，而朝家深念重鎭軍情，至有獨免結錢之政，而結錢之不捧，未必盡爲軍民之惠，蓋水原，近於京故土地太半，是京士夫家田畝也，不捧結錢，則京士夫多蒙其利而已，有何大蓋於原居軍民乎，六道通行之役，獨令水原得免，既非均役之意，而又無實惠之可言，臣意亦以爲今若還捧結錢，永罷束伍兼役，而自均廳，以其結錢所捧之數，出給需米所罷之代，則始可爲莫

大之惠澤，而本邑之大弊，軍額之難充，亦可以揀得矣，上曰，果若所奏，此益下之政也，然作事必愼，令均廳議于廟堂，節目啓下，鳳漢曰，水原今年結錢，以其量田，自當依他例減給，而軍政變通，自當今年爲之，使水原之民，速蒙惠澤矣，上曰，依爲之。

<비변사등록 135책, 영조 34년 1758년 11월 29일(음)>

경제/재정

廣州의 結錢을 收捧하는 문제에 대해 논의하다

또 아뢰기를, “이는 광주유수(廣州留守) 정휘량(鄭翬良)의 장계입니다. 이르기를, ‘본부(本府:광주부)는 〈수어청에서〉 출진(出鎭)한 이후로 한 성안에 세 곳의 관부(官府)가 있어 지방(支放)을 잇기 어려웠기 때문에 당시의 수신(守臣)이 어쩔 수 없이 납미군(納米軍:상번 대신 쌀로 내는 군병) 1천여 명을 가정(加定)하였습니다. 본부의 군액(軍額)은 본래부터 너무 많은 중에 이 수를 더 하자니 심지어 아약(兒弱)·황구(黃口:젖내 나는 아이)까지 구별하지 않게 되고, 거기에 덧붙여 군향(軍餉)을 풀고 거두고 하는 폐단과 유망(流亡)에게 독징(督徵)하는 걱정이 해가 갈수록 더욱 심해집니다. 지금은 비록 납미(納米)하는 법을 다 없지만 지난 경오년에 가정(加定)한 액수(額數)는 하루도 더 그대로 둘 수 없고, 아약도 조금 줄이지 않을 수 없으나 이는 모두 실제 액수가 있으므로 불가불 대신을 충정해야 하는데 달리는 추이(推移)할 형세가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변통(變通)할 수 있는 것은 결전(結錢)은 실로 제도(諸道)에서 통틀어 행하는 규례입니다. 본부(本府:광주부)의 백성이 전대동(田大同)에 응역하는 것이 다른 고을과 똑같으니 결전(結錢)도 본래 홀로 면제받을 이치가 없습니다. 또 이곳 경내(境內)의 전답(田畓)은 모두 토호(土豪)와 서율 사부(士夫)의 토지이니 1결(結)에 5전(錢)씩 받아낸다면 필시 억울함을 호소할 리가 없습니다. 다음에 받는 예대로 균역청으로 하여금 결전을 받아서 가정군(加定軍)을 혁파(革罷)한 대신으로 계산하여 주게 하면 민폐(民弊)를 조금은 덜 수 있고 부폐(府弊)도 조금은 없앨 수 있을 것입니다. 더구나 수원(水原)에서는 결전(結錢)을 중간에 다시 거둬 군보(軍保)를 감(減)한 대신으로 충당하게 하였으니 지금 본부라고 어떻게 구애하겠습니까하고, 묘당으로 하여금 품지(稟旨)하여 지휘(指揮)하게 하소서’ 하였습니다. 수원의 결전도 이미 허락해 주었습니다. 군액(軍額)을 가정(加定)한 폐단을 이로 인하여 변통할 수 있다면 편리하고 좋을 듯하니 결전으로 대충해 주는 일을 균역청당상에게 하순(下詢)하여 처리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균역청당상이 진술하라.” 하였다.

행사직 홍봉한(洪鳳漢)이 말하기를, “당초에 양역(良役)을 절반으로 감할 때에 수어청(守禦廳)에는 본래 급대(給代)를 하지 않고 남한산성(南漢山城)으로 출진(出鎭)하게 하니 당시의 수신(守臣)이 영문(營門)의 경용(經用)이 무면불탁(無麵不托)과 가깝다 하고 군관(軍官)을 가정(加定)하여 지탱해 가도록 하였습니다. 이 때문에 광주(廣州)의 백성들만 균역(均役)의 실제 효과를 알지 못하였는데, 대체로 결전을 면제해준 이익이 군액(軍額)을 가정한 고통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수원은 광주의 예를 원인하여 처음에는 결전을 감면하였으나 곧 해부(該府)의 소청으로 인하여 총융청(摠戎廳)의 수미군(收米軍)의 군액(軍額)을 감하고 다시 결전(結錢)으로 받아 그것으로 급대하였으니 수성(隋城:수원의 옛 이름) 백성들에게 혜택이 막대하였습니다. 지금 이 수신(守臣)이 수원의 예를 원인하여 변통을 청한 것은 실로 관민(官民)이 모두 편리한 정사가 되겠고, 또 결전을 받고 안 받고 하여 일치하지 않은 폐단도 없게 될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군관(軍官)을 감수(減數)한 대신으로 결전을 시행한다면 서로 상당할 수가 있겠는가?” 하였다.

광주유수 정휘량(鄭翬良)이 말하기를, “이는 신이 이미 두 안(案)을 통틀어 수량을 따져보고 비로소 장문(狀聞)한 것입니다. 급대(給代)할 수량은 대체로 부족할 염려가 없습니다.” 하였다.

홍봉한이 말하기를, “본주(本州:광주)의 결전 수량으로 군관을 감(減)하는 군액에 비교해보면 설사 수신의 말과 같이 부족할 염려가 없다고 하더라도 군역청에는 해를 끼치는 것이 적지 않습니다. 대개 급대는 원래 가감(加減)이 없는데, 결전은 간혹 탕감(蕩減)이 있으니 탕감한 해에는 군역청에서 그 손실을 떠맡게 됩니다. 군역청의 이해로 말한다면 방색(防塞:거절)하는 것이 마땅하지마는 본청(本廳:군역청)을 설립한 취지가 기왕에 민역(民役)을 균등하게 하자는 데 있으니 사소한 손익은 돌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수신과 서로 문의하였을 때에 신도 그리하라고 권유한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기왕에 순문(詢問)하였으니 장청(狀請)한 대로 시행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홍봉한이 말하기를, “군관을 감할 액수와 급대로 마련할 수량은 본청에서 왕복하여 작정(酌定)한 뒤에 초기(草記)를 올리고 거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그리하라 하였다.

又所啓, 此廣州留守鄭翬良狀啓也, 以爲本府出鎮以後, 一城之內三處官府, 支放難繼, 故其時守臣, 不得不加定納米軍千餘名, 本府軍額, 本自過多之中, 更添此數, 甚至於兒弱黃口, 無所區別, 又重以軍餉斂散之弊, 流亡督徵之患, 逐歲轉甚, 今雖不能盡罷納米之法, 而至若庚午加定之額, 不可一日留置也, 兒弱亦不可不稍減也, 然此皆有實數, 不可不充代, 而他無推移之勢, 抑有一事變通者, 結錢固是諸道通行之例也, 本府民之應田大同者, 一如他邑, 則結錢本無獨免之義, 且境內田畝, 盡是土豪及京中士夫之土, 一結五錢, 必無招怨之理, 依他邑收捧, 令均廳計給, 加定軍革罷之代, 則民弊可以少紓, 府弊可以少祛, 況水原結錢之中間還徵, 亦爲減軍保充代之地, 則今於本府何可爲拘哉, 令廟堂稟旨, 指揮爲請矣, 水原結錢, 亦已許之矣, 加定軍額之弊, 若因此而可以變通, 則似爲便好, 結錢給代一款, 下詢均堂而處之何如, 上曰, 均堂陳之, 行司直洪鳳漢曰, 當初良役減半時, 守禦廳元不給代, 仍令出鎮山城, 其時守臣, 以其營門需用之近於無麪不托, 加定軍官, 以爲支過之地, 以此之故, 廣州之民, 獨不知均役實效, 蓋其免結錢之益, 半不及於加軍額之苦故也, 水原則引廣州之例, 初減結錢矣, 旋因該府所請, 減其摠戎廳收米, 軍額更捧結錢, 仍爲給代, 隋民之爲惠莫大, 今此守臣之又引水原例, 而請其變通者, 實爲官民俱便之政, 而又可無結錢或捧或不捧參差之弊矣, 上曰, 軍官減數之代, 若行結錢, 則可以相當耶, 廣州留守鄭翬良曰, 此則臣已通融較量, 始敢狀聞, 給代之數, 大體無不足之慮矣, 鳳漢曰, 以本州結錢之數, 較之於軍官當減之額, 則設如守臣之言, 而無不足之患, 均廳則貽害不貲, 蓋給代則元無加減, 結錢則間或蕩減, 蕩減之年, 均廳自當損失, 以均廳利害言之, 所當防塞, 而本廳設立, 既爲均民役之地, 則些少損益, 有不可顧, 故守臣相問時, 臣亦勸成矣, 上曰, 既已詢問, 依狀請施行可也, 鳳漢曰, 軍官所減之額及給代磨鍊之數, 自本廳往復酌定後, 草記舉行何如, 上曰, 依爲之.

<비변사등록 137책, 영조 35년 1759년 08월 23일(음)>

경제/재정

右議政 閔百祥 등이 京畿 各邑의 分等과 舊逋를 停退하는 문제 등에 대해 논의하다

또 아뢰기를, “이는 경기감사 윤급(尹汲)의 재실분등 장계입니다. 수원(水原) 등 14읍을 우심에 두고, 적성(積城) 등 15읍을 지차에 두었으며, 장단(長湍) 등 8읍을 초실에 두고, 이어 이르기를 ‘구환자·구군향·구증미(舊拯米)·구신평(舊身布)와 노비 신평의 구미수

(舊未收)를 초실·지차·우심을 논할 것 없이 명년 가을에 한하여 정퇴(停退)하고, 치패선(致敗船)의 증곡(拯穀)은 신구조(新舊條)를 논할 것 없이 명년 가을에 한하여 정퇴하며, 수어청의 아병(牙兵) 보미(保米)는 3군문(軍門)과 총융청의 예에 따라 쌀이나 돈 중에서 백성의 원에 따라 납부하도록 하고, 추노와 징채는 명년 가을에 한하여 방색(防塞)하며, 우심·지차읍은 봄에 진휼을 실시하지 않을 수 없으니 상진모곡(常賑耗穀) 4천 석과 영진곡(營賑穀) 1만 석을 특별히 획급하도록 청컨대 묘당에서 품처하게 하소서.’ 하였습니다. 분등은 이대로 시행하고, 각 양(各樣) 구미수를 초실·지차·우심을 논할 것 없이 모두 정퇴하기를 청한 것은 너무 지나치니 초실읍은 절반을, 지차읍은 3분의 1을 징수하고, 우심읍은 정퇴하게 하며, 증곡(拯穀)을 모두 정퇴하는 것도 지나치니 신조는 받고 구조는 정봉하며, 수어청의 아병 보미는 당초의 조령(朝令)에는 구별을 한 일이 없는데 해당(該廳)에서 순전히 쌀로 바치게 강제한 것은 지극히 부당하니 한결같이 총융청의 예대로 민원에 따라 징수하라고 청한 대로 분부하며, 추노와 징채는 일체 방색하고 봄에 진휼을 실시하는 것은 비록 그만둘 수 없는 일이나 진휼곡이 많으면 기민(飢民)을 가리는 일 역시 정하지 못할 염려가 있으니 소청한 수량에서 절반에 한하여 먼저 획급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분등이 비록 지나치나 경기도는 다른 도와 다르니 그대로 하게 하라.” 하였다. 좌참찬 홍봉한(洪鳳漢)이 말하기를, “도내의 상진곡(常賑穀)은 매우 적으니 이번의 진휼곡은 전부 영진곡(營賑穀)으로 충당하여 획급하는 것이 마땅할 듯합니다.” 하니, 임금이 그리하라 하였다.

又所啓, 此京畿監司尹汲災實分等狀本也, 水原等十四邑, 置之尤甚, 積城等十五邑, 置之次, 長湍等八邑, 置之稍實, 仍以爲舊還上·舊軍餉·舊拯米·舊身布·奴婢身貢舊未收, 毋論稍實·之次·尤甚, 限明 秋停退, 敗船拯穀, 毋論新舊, 限明秋停退, 守禦廳牙兵保米, 依三軍門及摠廳例, 米錢間從民願以納, 推 奴徵債, 限明秋防塞, 尤甚·之次邑, 不可不待春設賑, 常賑耗四千石, 營賑穀一萬石, 特爲許劃事, 請令廟堂稟處, 分等則依此施行, 各樣舊逋之毋論稍實·之次·尤甚, 竝請停退太過, 稍實邑則折半, 之次邑則 三分一收捧, 只尤甚邑, 使之停退, 拯穀之一竝停亦 過, 使之捧新停舊, 守禦牙兵米, 當初朝令, 既無區別之事, 該廳之勒捧純米, 極爲不當, 一從摠廳例, 從 民願收捧之意, 依請分付, 推奴徵債, 一體防塞, 開春 設賑, 雖是 不可已之事, 而賑穀多則抄飢亦有不精之慮, 於所請之數, 限折半, 先爲劃給, 似好矣, 上曰, 分等雖過畿甸, 異於他道, 依爲之, 左參贊洪鳳漢曰, 道內常賑穀物甚少, 今此賑資, 全以營賑穀, 充數劃給, 似宜矣, 上曰, 依爲之.

<비변사등록 139책, 영조 36년 1760년 10월 20일(음)>

경제/재정

兵曹參判 洪麟漢 등이 江原監營 討捕使의 月廩을 會付穀으로 會減하는 문제 등을 논의하다 또 아뢰기를, “이는 강원감사 김효대의 장본입니다. 신의 영(營) 중군(中軍)은 토포사(討捕使)를 겸하고 있습니다. 월름(月廩)을 다른 도의 예에 의해 회부곡(會付穀)에서 회감(會減)하고, 토포영 소속 군관과 나졸의 요태(料太: 능료로 주는 쿡) 밀천은 아무 모곡(耗穀) 가운데에서 2백 석에 한하여 매년 획급하도록 묘당에서 품처하기를 청한다 하였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전례가 있는가?” 하였다.

홍인한이 말하기를, “수원(水原)과 강화(江華)에는 전례가 있으나 원영(原營: 강원감영)의 중군 요포(料布)를 회감하는 일은 일찍이 대신으로부터 거부되었습니다. 이제 이 군관과 나졸들의 요포는 더욱 시행이 될 수 없습니다.”

하였고, 행사직 홍봉한은 말하기를, “강화와 수원(水原)은 마침 그런 예가 있지만 제도(諸道)에는 없는 것이어서 본영에만 허용될 수 없습니다. 또 약간의 나줄을 접제(接濟)할 밀천을 본영에서 마련할 방도가 없겠습니까?” 하니, 임금(上)이 이르기를, “내버려 두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又所啓, 此江原監司金孝大狀本也, 以爲, 臣營 中軍既兼討捕使, 月廩依他道例, 以會付穀會減, 討捕營所屬軍官·羅卒料米之資, 某樣耗穀中, 限二百 石每歲劃給事, 請令廟堂稟處矣, 上曰, 有前例 乎, 麟漢曰, 水原·江華, 則有前例, 而原營中軍之料布會減事, 曾已見塞於大臣, 則今此軍官·羅卒輩料布, 尤似不可許施矣, 行司直洪鳳漢曰, 江華·水原適有其例, 而諸道所無者, 不可獨許於本營, 且如干羅卒接濟之資, 本營亦無豈無方便之道乎, 上曰, 置之可 也.

<비변사등록 140책, 영조 37년 1761년 03월 17일(음)>

경제/재정

右議政 洪鳳漢 등이 창고에 留置해 둔 水原의 軍餉중 절반을 加分하는 문제를 논의하다

또 아뢰기를, “수원(水原)의 군향(軍餉)은 전부터 기영(畿營)에 관속(管屬)되지 않음으로 해서 비국에 보첩(報牒)하여 가분하기를 청하였습니다. 본부의 유고(留庫)가 매우 적으니 절반을 가분하라고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임금(上)이 그리하라 하였다.

又所啓, 水原軍餉, 自前無管屬畿營之事, 故報牒 於備局, 以請其加分矣, 本府留庫甚少, 折半加分事, 分付何如, 上曰, 依爲之.

<비변사등록 140책, 영조 37년 1761년 06월 01일(음)>

경제/재정

領議政 洪鳳漢 등이 軍餉 및 還上을 未捧한 守令·邊將을 처리하는 문제 등을 논의하다

또 아뢰기를, “이는 각도(各道)의 군향(軍餉) 환자[還上]의 봉미봉(捧未捧) 장계(狀啓)입니다. 군향(軍餉)을 미봉(未捧)한 수령(守令)과 변장(邊將)으로서 거말(居末)은 나문(拿問)하고 거이(居二)는 결장(決杖)하고 거삼(居三)은 추고(推考)하고, 환자[還上]의 미봉에 있어 거말은 결장하고 거이는 추고하는 것이 본래 규식(規式)으로 정해져 있으나, 외방(外方)에서는 결장한 자는 대신 나문하는 것으로 새 규식이 있습니다. 경상도 원회미(元會米)의 거말은 남해현감(南海縣監) 이언휴(李彦休), 거이는 자인현감(慈仁縣監) 김방(金墜)이요, 군향의 거말은 남해현감 이언휴, 거이는 적량첨사(赤梁僉使) 이운홍(李運弘), 거삼은 곤양군수(昆陽郡守) 이명시(李命時)이며, 군포작미(軍布作米)의 거말은 남해현감 이언휴, 거이는 자인현감 김방, 거삼은 김해부사(金海府使) 구승환(具昇煥)이요, 전병선가미(戰兵船價米)의 거말은 남해현감 이언휴, 거이는 기장현감(機張縣監) 신경문(申敬文), 거삼은 김해부사 구승환이며, 사군목작미(射軍木作米)의 거말은 자인현감 김방이요, 별회미의 거말은 남해현감 이언휴입니다. 전라도 신환자[新還上]의 거말은 무안현감(務安縣監) 이보온(李普溫), 거이는 나주목사(羅州牧使) 유언술(兪彦述), 거삼은 고창현감(高敞縣監) 이충국(李忠國)이요, 신군향(新軍餉)의 거말은 나주목사 유언술, 거이는 고창현감 이충국, 거삼은 장성부사(長城府使) 최홍보(崔弘輔)입니다. 충청도 신환자의 거말은 태안군수(泰安郡守) 이광택(李光宅), 거이는 서천군수(舒川郡守) 이찬휘(李繼徽)요, 신군향의 거말은 태안군수 이광택, 거이는 비인현감(庇仁縣監) 김광려(金光礪), 거삼은 남포현감(藍浦縣監) 이몽신(李夢臣)입니다. 경기(京畿) 신환자의 거말은 인천부사(仁川府使) 최경흥(崔景興), 거이는 안성군수(安城郡守) 박호원(朴好源), 거삼은 남양부사(南陽府使) 이명운(李明運)이요, 군향의

거말은 인천부사 최경흥, 거이는 음죽현감(陰竹縣監) 박동최(朴東最), 거삼은 수원부사(水原府使) 정상순(鄭尙淳)이며, 구환자(舊還上)의 거말은 과주목사(坡州牧使) 이명중(李明中), 거이는 가평군수(加平郡守) 이태원(李泰遠), 거삼은 양주목사(楊州牧使) 정광한(鄭光漢)이며, 평안도(平安道) 신군향(新軍餉)에 대해 거말은 상토첨사(上土僉使) 이춘형(李春馨), 거이는 고산리첨사(高山里僉使) 박재대(朴載大), 거삼은 용천부사(龍川府使) 구세인(具世仁)이고, 환자에 대해 거말은 양하만호(楊下萬戶) 이창원(李昌元), 거이는 미곶첨사(彌串僉使) 오도형(吳道亨), 거삼은 위원군수(渭原郡守) 심위(沈緯)이며, 별군향(別軍餉)의 거말은 강계부사(江界府使) 이윤덕(李潤德), 거이는 남평만호(南平萬戶) 민징수(閔徵洙)입니다. 황해도 구환자의 거말은 소이만호(所已萬戶) 김유하(金由河)입니다. 함경도(咸鏡道) 환자와 교제곡(交濟穀)의 거말은 명천부사(明川府使) 민혜수(閔惠洙), 거이는 경성판관(鏡城判官) 임일원(任一源)입니다. 강원도(江原道) 구환자의 거말은 홍천현감(洪川縣監) 홍계우(洪啓祐), 거이는 금성현령(金城縣令) 송재중(宋載中)이요, 통영(統營)의 군향에 대해 거말은 임피현령(臨陂縣令) 송익수(宋翼洙)입니다. 군향(軍餉)과 군작미(軍作米)·교제곡(交濟穀)·사군목작미(射軍木作米)·전병선가미(戰兵船價米)의 미봉(未捧) 거말은 비록 사령(赦令)이 있으나, 일찍이 탕척(蕩滌)한 예가 없습니다. 아울러 사목(事目)에 의해 당해 수령과 변장은 나문(拿問)하여 처리하고, 군향·군작미·교제곡의 거이와 거삼, 환자·원회미·별회미·별군향의 거말·거이·거삼의 수령과 변장은 유지(有旨)가 있기 이전의 일이므로 아울러 전례에 의해 분간(分揀)해야 하겠습니다. 군향과 환자의 봉미봉 장계는 본래 정한 기한이 있으나 전라 도신(全羅道臣)과 통제사(統制使)가 시한을 넘겨 봉계(封啓)한 것은 자못 계완(稽緩)에 해당하니 추고(推考)하여 경책(警責)하고, 당해 도회관(都會官)도 예에 의하여 나문해서 처단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그리하라 하였다. 홍봉한이 말하기를, “나주(羅州)와 남해(南海)는 한 도(道)에서 흥작이 가장 핵심한 곳이므로 그 거말은 형세가 그럴 수 밖에 없으나 법례(法例)가 매우 엄하여 논의될 수 없고, 민혜수에 있어서는 지금 통신사(通信使)를 수행하고 있어 일을 마치고 복명(復命)하기를 기다려야 비로소 거행할 수 있습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유언술은 금년이 상년(常年)과 다르고, 선치(善治)로 가자(加資)되었으니 공과(功過)가 서로 맞아 특별히 분간하고, 민혜수는 일을 마친 뒤에 거행하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又所啓, 此各道軍餉還上捧不捧狀啓也, 軍餉未捧守令·邊將, 居末拿問, 居二決杖, 居三推考, 還上未捧, 居末決杖, 居二推考, 自是定式, 而外方決杖者, 代以拿問事, 新有定式矣, 慶尙道元會米, 居末南海縣監李彦休, 居二慈仁縣監金墜, 軍餉, 居末南海縣監李彦休, 居二赤梁僉使李運弘, 居三昆陽郡守李命時, 軍布作米, 居末南海縣監李彦休, 居二慈仁縣監金墜, 居三金海府使具鼎煥, 戰兵船價米, 居末南海縣監李彦休, 居二機張縣監申敬文, 居三金海府使具鼎煥, 射軍木昨米, 居末慈仁縣監金墜, 別會米, 居末南海縣監李彦休, 全羅道新還上, 居末務安縣監李普溫, 居二羅州牧使俞彦述, 居三高敞縣監李忠國, 新軍餉, 居末羅州牧使俞彦述, 居二高敞縣監李忠國, 居三長城府使崔弘輔, 忠清道新還上, 居末泰安郡守李光宅, 居二舒川郡守李繼徽, 新軍餉, 居末泰安郡守李光宅, 居二庇仁縣監金光礪, 居三藍浦縣監李夢臣, 京畿新還上, 居末仁川府使崔景興, 居二安城郡守朴好源, 居三南陽府使李明運, 軍餉, 居末仁川府使崔景興, 居二陰竹縣監朴東最, 居三水原府使鄭尙淳, 舊還上, 居末坡州牧使李明中, 居二加平郡守李泰遠, 居三楊州牧使鄭光漢, 平安道新軍餉, 居末上土僉使李春馨, 居二高山里僉使朴載大, 居三龍川府使具世仁, 還上, 居末楊下萬戶李昌元, 居二彌串僉使吳道亨, 居三渭原郡守沈緯, 別軍餉, 居末江界府使李潤德, 居二南平萬戶閔徵洙, 黃海道舊還上, 居末所已萬戶金由河, 咸鏡

道還 上及交濟穀，居末明川府使閔惠洙，居二鏡城判官任一源，軍餉，居末鏡城判官任一源，江原道舊還上，居末洪川縣監洪啓祐，居二金城縣令宋載中，統營 軍餉，居末臨陂縣令宋翼洙，而軍餉及軍作米・交濟 穀・射軍木作米・戰兵船價米・未捧居末，雖有赦令，曾無蕩滌之例，竝依事目當該守令・邊將拿問處之， 軍餉軍作米・交濟穀居二居三及還上元會別會米・別軍餉居末居二居三，守令・邊將係是有旨前事，竝依前例分揀，軍餉・還上捧未捧狀啓，自有定限，而全羅道臣及統制使之過時封啓，殊涉稽緩，竝 推考警責，當該都會官，亦依例拿問勘處何如，上曰，依爲之，洪曰，如羅州・南海一道中凶歉最酷處，其所居末，勢所固然，而法例甚嚴，不可容議，至於閔 惠洙，方隨往通信使，待其竣事復命後，始可舉行矣，上曰，俞彥述，今年與常年有異，既以善治加資，功過相準，特爲分揀，閔惠洙竣事後舉行可也。

<비변사등록 144책, 영조 39년 1763년 08월 06일(음)>

경제/재정

기근을 생각하여 六曹와 外方의 物膳을 줄이거나 올리지 말게 하라고 전교하다

또 전교하기를, “지금 경기 감사가 우선 기민(饑民)을 초록한 장문(狀聞)을 보면 수원(水原)이 2천 명에 가깝고 부평(富平)은 1천 명에 가까우며, 남양(南陽)은 1천 50여 명, 광주(廣州)는 2천 30여 명, 그 나머지는 혹 3백 명, 1백 명이 넘기도 하며, 양천(陽川)・과천(果川)과 같이 가난한 고을도 2~3백 명이 넘어 도합 1만 1백 10명에 이른다. 아, 시작이 이러하니 궁핍한 봄철임을 알만하다. 몸소 구제하고 싶어도 비록 경기의 가까운 곳이라 하더라도 궁궐과 오두막집은 마치 하늘과 땅처럼 현격하니 그 어찌 구제할 수 있겠는가? 지금 장문을 보고 기민을 상상할 때 옥식(玉食)이 어찌 달 수 있겠는가? 그리고 경기가 이러하니 삼남(三南)을 미루어 알만하다. 비록 굳은 마음은 없으나 이러한 해에 어찌 풍성하게 할 수 있겠는가? 열 가지 중에서 한 가지만 하유(下諭)하여도 때를 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비록 윤희는 하였으나 하례(賀禮)를 받기에는 계면적이다. 외방(外方)의 방물(方物)과 물선(物膳)을 비록 바치지 말라고 명령하였으나 의정부(議政府)와 육조(六曹)의 물선을 이번에는 절반으로 감축하여 봉진(封進)하도록 하고 장원서(掌苑署)의 물선은 바치지 말게 하여 내가 비록 받기는 하나 절감에 힘쓴다는 뜻을 보이라.” 하였다.

傳曰，今覽畿伯先抄飢民狀聞，水原近二千，富平 近一千，南陽一千五十餘口，廣州二千三十餘口，其 餘或過三百，或過二百，或過一百，以陽・果川之殘邑，過二三百，都合過一萬百十也，噫初頭若此，窮春可知，躬欲濟活，而雖近畿，九重蔀屋，便若霄壤，其何能 爲，觀今狀聞，想像飢民，何甘玉食，且畿甸若此，三南 可知，雖無苦心，此等之歲，豈云豫大，十件中一諭，可 謂知時，然其雖許矣，受賀亦歉然，外方方物物膳，雖 令勿捧，政府六曹物膳，今番減半封進，掌苑署物膳 勿捧，以示予雖受，務爲節省之意。

<비변사등록 148책, 영조 41년 1765년 01월 10일(음)>

경제/재정

領議政 洪鳳漢 등이 水原 등 3군의 倉廩을 修改 필요한 物力을 劃給하는 일을 아뢰다

이번 8월 4일 대신과 비국 당상을 인견하여 입시하였을 때에 영의정 홍봉한(洪鳳漢)이 아뢰기를, “이는 경기감사 이경호(李景祐)의 장계입니다. 수원(水原)・죽산(竹山)・음죽(陰竹) 세 읍의 수령의 첩보(牒報)를 날날이 열거하고 말하기를, ‘3읍에 허다한 창사(倉廩)가 이번 장마에 다수 무너져서 때를 맞춰 개건(改建)하지 않을 수 없는데 들어가는 물력(物力)을 장점을 따라 구획할 것을 묘당에서 품처하게 하기를 청합니다.’ 하였습니다. 창사는 객사

(客舍)와 달라서 수개(修改)하더라도 일찍이 물력을 번거롭게 청한 일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근래에 한 두 곳에 잘못된 예가 있었으니 기읍의 피잔(疲殘)한 형편으로 예를 이끌어 써서 장청(狀請)하는 것은 역시 괴이할 것이 없습니다. 수원과 죽산은 가까운 기묘년의 예에 의거하여 모두 절미(折米)로 획급하고 음죽은 작은 읍이라 두 읍에 획급한 수에 비교하여 3분의 1을 감하고 획급하되 모두 상진곡(常賑穀)으로 거행하도록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임금의 그리하라 하였다.

今八月初四日, 大臣·備局堂上引見入侍時, 領議政洪所啓, 此京畿監司李景祐狀啓也, 枚舉水原·竹山·陰竹三邑守令牒報, 以爲三邑許多 倉舍, 今番潦水, 多數頽壓, 不可不及時改建, 所入物力, 從長區劃事, 請令廟堂, 稟處矣, 倉舍異於客舍, 其雖修改, 曾無物力煩請之事, 而近有一二謬例, 以畿邑疲殘事勢, 援例狀請, 亦無足怪, 水原·竹山就近己卯例, 皆以折半劃給, 陰竹小邑, 比兩邑所給之數, 減三分之一劃給, 而竝以常賑穀舉行事, 分付何如, 上曰, 依爲之.
<비변사등록 148책, 영조 41년 1765년 08월 05일(음)>

경제/재정

領議政 金致仁이 外邑의 別還을 범한 守令을 처벌하는 방법에 대해 논의하다

○ 이번 3월 18일 대신과 비국당상을 인견하여 입시켰을 때, 영의정 김치인(金致仁)이 아뢰기를, “외읍(外邑)의 별환(別還:별도 計定의 환곡)은 본래 조정의 금령이 있고 연전에 특교(特敎)로 신칙하심이 더욱 엄절(嚴截)하셨습니다. 그 때에는 사람들이 감히 범할 수 없음을 알았으나 모든 일이 시일이 오래 되면 해이하기 쉬운 것이라서 요즈음 들으니 외읍에서는 이러한 폐단이 없지 않다고 하니 일의 한심함이 무엇이 이보다 더하겠습니까? 제도(諸道)의 도신에게 분부하여 과연 금령을 범한 수령이 있으면 즉시 치계하여 죄를 청하게 하고, 혹 있어도 덮어두고 장문(狀聞)하지 아니하면 묘당에서도 듣는 대로 도신을 논책해야 하겠으니 이렇게 거조(舉條)에 내고 엄히 신칙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이 일은 일찍이 엄히 금하여 지금은 이런 폐단이 없으리라고 여겼더니 지금 아뢴 바를 듣고 비로소 이러한 폐단이 있다 함을 알았다. 일의 어처구니없음이 이보다 심할 수 없다. 내게는 어사가 있는데 어찌 들을 수 없었을까마는 추생(抽牲:제비를 뽑음)하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때문에 근기(近畿)로 비유하더라도 가령 수원(水原)에서는 신칙이 행해지더라도 진위(振威)에서는 요행히 모면하면 무슨 효과가 있겠는가? 이는 나는 비록 모른다 해도 도신이야 어찌 모르겠느냐? 아, 알알이 신고(辛苦)한 쌀을 수령의 사정(私情) 때문에 낭비를 하니 이런 무리는 아 대부(阿大夫:제(齊)의 아첨 잘하던 지방관)에 비해도 죄가 더 중하다 하겠다. 아 대부는 칭찬을 바란 데에 지나지 않았으나 이는 백성의 물건을 가지고 사정 때문에 함부로 베푼 것이니 제가 먹지 않았다고 말하지 말라. 정히 칼날로 사람을 찌른 것과 다름이 없다. 이미 사정에 따랐다면 제가 취한 것과 무엇이 다르겠느냐? 그대로 하라고 반포할 수는 없다. 임금은 이미 늙고 기강도 해이해졌으니 어찌 치료(治效)가 있겠느냐? 제도에 신칙하여 이러한 자가 있으면 반드시 장문(狀聞)하게 하되 장문할 때에 사람에 따라 활협(濶狹:신축성 있게 봐주다)의 폐단이 있으면 이는 아 대부 중에서도 우두머리이니 내가 비록 늙었으나 법강(法綱)은 쇠하지 않았으므로 장문이 도착한 뒤에 어사를 파견 염찰(廉察)하여 당해 도신은 임금을 기망(欺罔)한 죄로 다스릴 터이니 이렇게 엄칙하고, 수령이 된 자는 비록 범과(犯科)가 있더라도 능히 환실(還實:정상적인 환곡으로 도로 만들다)한 자는 분간(分揀:참작)하되 비록 환산했다 해도 유명무실(有名無實)한 자는 같은 죄율로 감처(勘處)하도록 아울러 제도에 신칙하는 것이 옳다.” 하였다.

今三月十八日大臣·備局堂上引見入侍時，領議政金所啓，外邑別還，本有朝禁，頃年特教 申飭，尤爲嚴截，在其時，則人知其不敢犯，而凡事久則易解，近聞外邑間，不無此弊云，事之寒心，孰甚於此，分付諸道道臣，果有犯禁之守令，則卽爲馳聞請罪，或有之，而掩置不聞，則廟堂亦當隨所聞論責，道臣以此出舉條嚴飭何如，上曰，此事曾已嚴禁，意謂今無此弊，今聞所奏，乃覺有此弊云，事之無據，莫此爲甚，予有繡衣，豈可無得，而然抽柱，故比之近畿，假令水原，雖得已飭，於振威幸免，豈有效哉，此予雖不知，爲道伯其何不知，噫粒粒辛苦之米，因其守令之顏私浪費，此類雖比於阿，亦云重矣，阿則不過求譽，此則取吾民之物，浪施顏私，莫云非己食，正若以刃刺人也，既循顏私，何異自取，不可以依爲之頒布，君已暮矣，綱亦解矣，豈有其效，申飭諸道，若有此者，必也狀聞，而狀聞之時，亦若有隨人闊狹之弊，此阿之首也，予雖衰矣，法綱不衰，狀聞到後，分遣諸繡衣廉問，當該道臣，當施欺君之科，以此嚴飭，爲守令雖有所犯，其能還實者分揀，雖云還實，名存實無者，同律勘處事，亦爲另飭諸道可也。

<비변사등록 154책, 영조 46년 1770년 03월 20일(음)>

경제/재정

平安道の 守令을 還上와 軍餉을 거둬들인 성적에 따라 처벌하는 문제 등을 아뢰다

이번 5월 5일 대신과 비국당상을 인견하여 입시켰을 때 영의정 신회(申晦)가 아뢰기를, “방금 평안감사 채제공(蔡濟恭)의 보고를 보니 ‘환자[還上]의 거말(居末)과 군향(軍餉) 거이(居二)의 결장(決杖)을 지금까지는 연이어 나문(拿問)으로 거행하였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거행할까요.’ 하였습니다. 작년 겨울에 특교(特教)가 계셨기 때문에 본도(本道)의 환자 거말과 군향 거이는 결장하고, 환자 거이와 군향에서 거삼은 추고(推考)하기를 한결같이 사목(事目)대로 시행하기로 전번에 이미 품정(稟定)하였으므로 의당 이대로 거행해야 하나 이번 일은 유지(有旨) 전의 일이니 모두 탕척하라고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그리하라 하였다.

또 아뢰기를, “방금 수원부사(水原府使) 심이지(沈頤之)의 보고를 보니 본부(本府)의 곡물 총 수효가 감축하여 배순(排巡: 순차로 분배해줌)하기에 부족하므로 장차 폐농할 우려가 있으니 쌀과 콩의 유고(留庫) 중에서 3분의 2에 한하여 가분(加分)해 달라고 하였습니다. 춘궁기의 민정(民情)이 비록 걱정스럽긴 하지만 군향의 사체가 중하고 보리 추수도 멀지 않았으니 청한 수량 중에서 절반만 가분하도록 허락하여 목전의 시급함을 구제하라고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내 마음은 백성의 일뿐이니 어떻게 줄인단 말이냐? 청한 대로 허시하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今五月初五日大臣·備局堂上引見入侍時，領議政申所啓，卽見平安監司蔡濟恭所報，則以爲還上居末·軍餉居二決杖，連以拿問舉行矣，今則何以舉行為辭矣，昨冬既有特教，故本道還上居末·軍餉居二決杖，及還上居二·軍餉居三推考，一依本事目施行之意，頃已稟定，固當依此舉行，而今則係是有旨前事，竝依例蕩滌之意，分付何如，上曰，依爲之。

又所啓，卽見水原府使沈頤之所報，則以爲本府穀摠減縮，排巡不足，將有廢農之慮，米太留庫中，限三分二加分事，爲請矣，窮春民情，雖甚可悶，軍餉體重，麥秋不遠，所請中只許折半加分，以爲目下接濟之意，分付何如，上曰，予心民事而已，其何減乎，依請許施可也。

<비변사등록 157책, 영조 51년 1775년 05월 06일(음)>

경제/재정

守禦使 徐命膺 등이 行幸 때 給代米를 區劃하는 것을 논의하다

(…) 또 아뢰기를, “지난번에 선혜청당상이 수어청의 급대미(給代米) 4백 30석을 지금부터 영구히 출급(出給)하지 말도록 진달하여 윤허를 받았습니다. 신이 본청의 사례에 대하여 실로 매우 생소하여 뒷날 몇 차례 등연(登筵)하였으나 감히 제안하여 아뢰지 못하였습니다. 중간에 이 일의 시말을 거슬러 살펴보니 당초에 결전(結錢)을 마련할 때에 수원(水原)과 광주(廣州)는 방영(防營)이므로 결전을 면제하였다가 그 뒤에 수원부(水原府)는 총융청 군액(軍額)의 폐단으로 백성들이 등장(等狀: 연명 진정)하여 군액을 다 없애고 결전을 총융청으로 거둬보내 급대(給代)의 비용으로 삼았습니다. 그것을 시행한 지 몇 년 만에 온갖 폐단이 모두 살아났으므로 광주유수도 이 일을 이끌어 이치를 따져 장문하기를 ‘군관(軍官)의 군보(軍保) 1천 8백 명 태반이 황구(黃口)나 유망(流亡)으로 실로 막대한 고질적 폐단이 되어 부(府) 전체 민정(民情)이 결전을 내어 이 폐단을 고치기를 수원의 예와 같이 하여 주소서.’ 한 것입니다. 비국에 내려 복계(覆啓)하도록 하여 마침내 군역청에서 그 결전을 받아 들여 4백 30석을 본부(本府)에 내주고 장사(壯士)의 지방(支放) 밀천으로 삼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수어청이 환진(還鎭)한 뒤로 1백 45석은 광주부로 보내고 2백 85석은 수어청에 남겨두었습니다. 지금 만일 이 쌀을 영구히 없앤다면 본청은 우선 말할 것도 없고 광주부의 한 달 치 지방이 전부 모자랍니다. 이렇게 해마다 끌어 쓰고 12년이 지나면 1년 지방이 전부 모자라게 될 것이니 그 폐단을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이 이런 뜻으로 선혜청당상과 상의해 보니 역시 수어청이 본색(本色: 결전)을 추심하려는 것은 사리에 당연한 일이라고 하였습니다. 지금 만일 4백 30석의 쌀을 선혜청당상의 말대로 선혜청에 유치해두고 봉납할 결전을 수량에 맞게 수어청으로 도로 넘겨주어 영부(營府: 수어영과 광주부)의 지방을 보충하게 하면 명실이 다 바르게 될 것입니다. 대신에게 하순(下詢)하여 처리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대신의 뜻은 어떠한가?” 하였다. 영의정 김상철이 아뢰기를, “당초 4백여 석의 쌀이 과연 결전의 급대였다면 이제 본미(本米)를 다시 추심한 뒤에 결전과 함께 다 잃은 것은 수어사가 아된 바가 괴이할 것이 없습니다. 이 돈은 다시 추심하게 하여 장사(將士)의 지방에 쓰게 하는 것이 실로 좋겠습니다.”

하였다. 좌의정 서명선이 아뢰기를, “급대미를 선혜청 당상이 이미 추심해갔다면, 수어청은 그 결전을 다시 추심하여 영부(營府)의 지방 밀천으로 삼게 하는 것이 순조롭고 편할 것 같습니다.” 하니, 임금이 그리 하라 하였다.

(…) 又所啓, 向來惠廳堂上, 以守禦廳給代米四百 三十石, 自今永不出給事, 陳達蒙允矣, 臣於本廳 事例, 實甚生疎, 故伊後數次登筵, 未嘗敢提達, 中間溯考本事始末, 則當初結錢磨鍊時, 水原·廣州, 以防營, 獨免結錢, 其後水原府, 以摠廳軍額之有弊, 因民人等狀, 盡罷軍額, 以結錢收送摠廳, 以爲結代 之費, 行之數年, 百弊俱蘇, 故廣州留守, 亦引此事, 論 理狀聞, 以爲軍官軍保一千八百名, 太半黃口流 七, 實爲莫大之痼弊, 一府民情, 願出結錢, 以矯此弊, 如水原之例云云, 下備局覆啓, 遂自均廳, 收納其 結錢, 而以四百三十石, 出給本府, 以爲將士支放之 資, 及夫還鎭之後, 一百四十五石, 送于廣州府, 二百 八十五石, 留之守禦廳, 今若永罷此米, 則本廳姑無 論, 廣州府一朔支放全闕, 逐年引用, 若過十二年, 則 一年支放全闕, 此其爲弊, 不可勝言, 故臣以此意, 酬 酢於惠堂, 則惠堂亦以爲守廳之欲推尋本色, 事理 當然云矣, 今若以四百三十石米, 依惠堂言留置惠廳, 而所捧結錢, 準數還付於守廳, 以補營府之支放, 事 順名正, 下詢大臣處之何如, 上曰, 大臣之意何 如, 領議政金曰, 當初四百餘石米, 果是結錢之代, 則今於本米還推之後, 竝與結錢而都失者, 守禦使所 達無怪, 其如此錢則使之還推, 以爲將士支放之需 誠好矣, 左議政徐曰, 給代米則惠堂, 旣已推去, 守 禦廳則還推其結錢, 以爲

營府支放之資，事甚順便 矣，上曰，依爲之。

<비변사등록 160책, 정조 3년 1779년 07월 10일(음)>

경제/재정

左議政 李福源이 京畿監司 沈頤之 등이 耗穀 조항을 元穀 조항에 보태는 일 등을 청하다

○ 같은 날 입시 때에 좌의정 이복원이 아뢰기를, “이는 경기감사 심이지(沈頤之)의 장계입니다. 금년 봄 강화도의 쌀을 이송할 때에 수원(水原)의 7백 석(石)과 남양(南陽)의 4백 석을 운송하는 데 따른 배와 말의 잡비가 88석이나 되는데, 이것을 원곡(元穀) 중에서 가져다 쓰고는 아직 구처하지 못하였으므로, 이번 두 고을에서 받아갈 1천 1백 석에서 기한 연장치를 제하고 나면 그 모곡(耗穀)이 가파스로 78석이 되는데, 이미 계미년과 을유년의 선례가 있는 만큼, 이번에도 모곡 조항에서 덜어내어 주어서 원곡을 가져다 쓴 수량에 보태는 일을 묘당(廟堂)에 하순(下詢)하여 처리하도록 할 것을 말하였습니다. 원곡은 다시 더 줄일 수도 없고 또 전례가 근거할 수 있는 만큼, 소청대로 시행하라는 뜻으로 분부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상이 그리하라 하였다. (…)

同日入侍時，左議政李所啓，此京畿監司沈 頤之所啓也，以爲今春江都米移運時，水原七百 石，南陽四百石，船馬雜費，爲八十八石，而取用於元穀 中，尙未區處矣，今此兩邑所受一千一百石，除其停 退，則耗條僅爲七十八石，既有癸未·乙酉已例，今番 亦以耗條除給，以補元穀取用之數事，下詢廟堂 處之爲辭矣，元穀不可仍減，前例亦有可據，依所請 施行之意，分付何如，上曰，依爲之. (…)

<비변사등록 166책, 정조 8년 1784년 01월 13일(음)>

경제/재정

水原 軍糧의 應留 조항의 耗穀을 加分하는 일을 허락하기를 청하다

○ 비변사에서 아뢰기를, “지금 경기감사 심이지(沈頤之)가 수원(水原) 군량의 응류(應留) 조항 耗穀을 3분의 2까지만 특별히 가분(加分)하여 줄 것을 장청(狀請)한 일로 인하여 그 비지(批旨)에 묘당에서 오늘 안으로 초기(草記)하여 품처(稟處)하도록 하라는 하명(下命)이 있었습니다. 콩의 종자가 절핍(絶乏)되어 장차 근경(根耕)이 전폐될 우려가 임음에도 종자로 심을 수 있는 콩을 쌓아 두고 경작하기 좋은 밭을 묵히는 일이 참으로 너무 민망하다는 것은 과연 관찰사의 진술한 바와 같습니다. 만약 다 가분(加分)을 하도록 허락한다면 실로 경작을 넓히는 방법이 될 것이나, 군량의 사체(事體)가 중대한 만큼, 창고를 다 기울일 수는 없고 수원 창고에 남겨 둔 耗穀을 소청에 따라 3분의 2까지 특별히 가분을 허락하여 제때에 파종을 할 있는 바탕을 삼게 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답하기를, “초기(草記)대로 시행하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司啓曰，卽因京畿監司沈頤之所啓，水原軍餉應留條新太，限以三分二特許加分事，批旨有 令廟堂今日內草記稟處之命，太種絶乏，根耕將 有陳廢之慮，積峙可播之穀，荒棄宜耕之田，誠甚悶然者，果如道臣所陳，若使盡分，則實爲廣耕之道，而 餉穀體重，不可傾庫，水原留庫新太，依所請限三分 二，特許加分，以爲趁時播種之地何如，答曰，依草 記施行可也。

<비변사등록 166책, 정조 8년 1784년 04월 02일(음)>

경제/재정

京畿監司 沈頤之가 강화도의 쌀을 운반할 때 耗穀 條項에서 劃給할 것을 청하다

이번 4월 2일 비변사 유사당상과 경기감사가 같이 입시하였을 때에 경기감사 심이지(沈頤之)가 아뢰기를, “원주(原州)의 콩을 운반하여 올 때에 배와 말의 잡비를 원곡(元穀)을 가져다 썼습니다. 작년과 금년에 강화도의 쌀을 운반하여 온 사례에 따라 당년의 모곡(耗穀) 조항에서 획급(劃給)하여 보충할 것을 묘당에서 품처(稟處)하도록 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상이 그리하라 하였다.

또 아뢰기를, “콩의 종자가 절핍(絶乏)되어 장차 근경(根耕 : 그루갈이)이 전폐될 우려가 있습니다. 지난날에 장청(狀請)하여 얻어낸 원주의 콩과 남한산성의 콩은 더러 오래 묵어 종자로 쓸 수가 없어서 역시 도내에 널리 보급하지 못하니 수원(水原) 군량의 응류(應留) 조는 모두 헛공입니다. 군량곡의 사체(事體)가 엄중함을 알지 못하는 것은 아니나, 군량을 나누어서 응류하는 법만 고수하고 변통의 도리는 생각하지 않아서 종자로 심을 만한 곡식을 쌓아 두고 경작하기 좋은 밭을 묵힌다는 것은 참으로 너무 민망한 일입니다. 만약 다 가분(加分)을 하도록 허락한다면 실로 경작을 넓히는 방법이 될 것이나, 군량곡을 창고를 다 기울이자고 서둘러 장청한다는 것은 너무 황송하므로, 3분의 2까지만 특별히 가분을 허락하여 줄 것을 묘당에서 품처(稟處)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상이 묘당으로 하여금 오늘 안으로 초기하여 품처하는 것이 옳겠다 하였다.

今四月初二日備局有司堂上·京畿監司, 同爲入侍時, 京畿監司沈頤之所啓, 原州太運來時, 船馬雜費, 以原穀取用矣, 依昨今年江都米例, 以當年耗條劃給充補事, 令廟堂稟處何如, 上曰, 依爲之.

又所啓, 太種絶乏, 根耕將有陳廢之慮矣, 嚮來請得原州太·南漢太, 或陳舊不可作種, 亦不得遍及道內, 而至於水原軍餉應留條, 皆是新太, 餉穀事體, 非不知嚴重, 而膠守分留之法, 不思通變之道, 積置可播之穀, 荒棄宜耕之田, 誠甚悶然, 若許盡分, 則實爲廣耕之方, 而餉穀之遽請傾庫, 殊甚惶悚, 限以三分二, 特許加分事, 令廟堂稟處何如, 上曰, 出舉條, 令廟堂今日內草記稟處可也.

<비변사등록 166책, 정조 8년 1784년 04월 02일(음)>

경제/재정

江華留守 趙鼎鎭이 江都의 太還 중 절반을 벼로 折價에 준하여 代捧하는 일을 논의하다

○ 같은 날 입시하였을 때에 강화유수 조정진(趙鼎鎭)이 아뢰기를, “강도(江都)의 태환(太還 : 콩의 환자)은 모조(耗條)까지 합하여 응당 받아야 할 것이 5천 5백여 석 영(零 : 단수(端數)를 말함)이나 되나 석 달의 긴 장마에 발농사가 실농하여 수량대로 다 받을 길이 없으니 절반에 한하여 벼로 절가(折價 : 책정된 값)에 준하여 대봉(代捧)하였다가 명년 가을에 도로 본색(本色)으로 만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백성의 정원(情願)이 이와 같기 때문에 감히 양달하옵니다.” 하니, 임금의 말하기를, “영상의 의견은 어떠한가?” 하였다.

영의정 김치인이 말하기를, “금년에는 발농사가 흉년이 들어 허다한 태환(太還)을 준봉(準捧)하기 어려움은 사세가 그러하옵니다. 지난번 수성(隋城 : 수원의 고호)에는 약간의 대봉을 허락하였으나 군향(軍餉)은 사체가 중한 만큼 절반은 과다하니 3분의 1에 한하여 절가에 준하여 벼로 받았다가 명년 가을에 도로 본색으로 만들게 하는 것이 마땅할 듯합니다.” 하니, 임금이 그리하라 하였다.

同日入侍時, 江華留守趙鼎鎭所啓, 江都太還並耗當捧, 爲五千五百餘石零, 而三朔長霖, 田農失稔, 準數督捧, 實無其路, 限折半以租準折代捧, 待明秋還作本色似好, 民情如是, 故敢此仰

達矣，上曰，領相之意何如，領議政金曰，今年田農失稔 許多太還準捧之難，其勢似然，頃於隋城，已許略干 代捧，而餉穀體重，折半過多，限三分一依準折，以租 許捧，待明秋使之還作本色，恐宜矣，上曰，依爲之。

<비변사등록 171책, 정조 11년 1787년 09월 20일(음)>

경제/재정

水原에 餉穀의 留庫 가운데서 米 3백 석과 太 9백 석을 加分하게 할 것을 청하다

○ 비변사에서 아뢰기를, “수원부사(水原府使) 김노영(金魯永)이 비변사에 보고한 내용을 보면 ‘본부는 백성은 많고 곡물은 적어 순차의 배정에 늘 구차스런 걱정이 있습니다. 지금 농사가 한창인 때를 맞이하여 순차가 단절되고 폐농할 우려가 있습니다. 향곡(餉穀)의 유고(留庫) 가운데에서 쌀 4백 30석, 콩 1천 5백 석을 특별히 가분(加分)하게 하여 농사 식량을 이어서 지급할 수 있게 하소서.’ 하였습니다. 본부의 환곡과 향곡으로서 나누어 주어야 할 것을 민호(民戶)에 비교해 보면 원래 충분치 못합니다. 한창 농사철을 맞이하여 가분을 청하기까지 하였으니 조가에서 돌보는 도리에 있어 시행토록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향곡의 방출은 일의 체통이 다른 경우와 다르고 유고에 관한 법의 뜻은 본래 엄중하며 이번의 요청은 과다하다고 하겠습니다. 쌀 3백 석 콩 7백 석을 가분토록 하여 순차를 이어 나누어 주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그리하라고 답하였다.

司啓曰，卽見水原府使金魯永報備局辭緣，則 以爲本府民多穀少，排巡每患苟艱，今當農務方殷之時，將有絕巡廢農之慮，餉穀留庫中米四百三十 石・太一千五百石，特許加分，以爲繼給農糧之地爲 辭矣，本府還餉應分，較諸民戶，元來不敷，方值劇農，至請加分，在朝家軫恤之道，不可不許施，而餉還 事體，與他自別，留庫法意，本自嚴重，則今者所請，未 免過多，米三百石・太七百石，許令加分，以爲繼巡分 糶之地何如，答曰，允。

<비변사등록 174책, 정조 13년 1789년 04월 15일(음)>

경제/재정/진상

水原 沿海邑의 生蟹 進上 정지하고 假家에 쓰일 空石은 값을 주라고 전교하다

전교하기를, “이럴 때에 기읍(畿邑)에 어떻게 일호(一毫)라도 폐를 끼치겠느냐? 도감(都監)의 허다한 복정(卜定:강제로 배정함)도 모두 제하고 값을 쳐주라고 하였으니 하물며 상공(上供)의 찬수(饌需)를 어떻게 순례(循例)로 받아 쓸 수 있겠느냐? 연례(年例)로 진상하는 생 게[生蟹]는 일찍이 들으니 연해읍(沿海邑)에서 많이 진상한다 하였다. 연해읍은 모두 수원에서 가까우니 금년의 생 게 진상은 특별히 정지하라. 연전에는 실지 혜택이 아래에까지 미치지 못한 것을 철이 늦게 영(令)을 내렸기 때문이라고 핑계하였다. 지금은 철이 되려면 다소 멀었으니 만일 혼동하는 폐단이 있으면 이는 도백(道伯)의 책임이다. 아울러 잘 알고 명심하라고 묘당에서 엄히 신칙하고 지시하게 하라. 어제 도감 당상의 연주(筵奏)에서 가가(假家)에 쓰일 빈 섬[空石]을 부득이 분정(分定:나누어 배정함)해야 하겠다고 말하였으나 가가는 능행(陵幸) 때의 예대로 해청(該廳:선해청을 지칭함)의 저치미(儲置米)에서 회감(會減)하되 먼저 값을 지불하고 뒤에 진배(進排)하게 하여 소민(小民)으로 하여금 하나도 괴로움을 당하지 않게 하라고 일체로 엄히 신칙하라.” 하였다.

傳曰，此時畿邑，豈或一毫貽弊，都監許多卜定，竝 皆除之，皆令給價，則況上供之需，寧或循例收用乎，年例進供生蟹，曾聞多在沿邑，沿邑亦皆近於水原，今年供蟹，特爲停減年前，則實惠之未究，猶諉節晚 頒令，今則當節稍遠，如有相混之弊，是道伯之責也，竝須知悉惕念事，令

廟堂嚴飭行會，昨因都監堂上 筵奏，假家空石，雖不得不分定云，而假家則依陵 幸例，令該廳儲置米會減，而先給價後進排，使小民 無所干與事，一體嚴飭。

<비변사등록 175책, 정조 13년 1789년 07월 16일(음)>

경제/재정

遠地에서 使役하는 京牌將 등에게 糧饌價를 매달 알맞게 추가하여 지급하라고 전교하다

○ 전교하기를, “이번에 외도감(外都監)에서 경패장(京牌將)과 원역(員役)을 먼 곳으로 데려다가 사역시킨 것은 극히 민망하게 여긴다. 어찌 상례(常例)에 구애하겠는가? 점심 쌀은 너무 적으니 이는 그만두고 양찬가(糧饌價)를 매월 적의(適宜)하게 더 주어 별단으로 진념하는 뜻을 보이게 하라. 원소(園所)에 도감을 설치하고 세운 발장(撥長)과 이졸(吏卒) 및 경기 감영에서 봉사하는 교졸(校卒)과 수원(水原)·과천(果川)에서 장계를 가지고 오는 교리(校吏)는 모두 날짜를 구분하고 종목을 분별하여 어람성책(御覽成冊)으로 작성하여 일이 끝난 뒤에 경기감사로 하여금 장계를 갖추어 상문(上聞)하게 하도록 묘당에서 지시하게 하라.” 하였다.

傳曰，今番外都監京牌將員役之遠地使役，極爲悶念，何拘常例，點心米則太少，此則置之，糧饌價，每朔量宜加給，以示別般軫念之意，園所設都監立 撥將吏卒及畿營舉行校卒及水原·果川狀啓持來 校吏，竝區別日字，分秩修整御覽成冊，畢役後令畿伯，具狀啓登聞事，令廟堂行會。

<비변사등록 175책, 정조 13년 1789년 07월 21일(음)>

경제/재정

園所都監堂上 鄭民始가 水原府의 雇馬 雇價를 會付穀에서 會減하는 문제를 건의하다

이번 7월 28일 도승지와 도감당상이 입시했을 때 도감당상 정민시(鄭民始)가 아뢰기를, “각 군문의 복마(卜馬：짐을 싣는 말)를 먼 곳에서 와서 대령하게 하는 것은 폐단이 있으니 이번에는 제폐(除弊)하고 모든 사역(使役)을 수원부(水原府)의 고마(雇馬：백성한테서 빌려서 쓰는 말)를 쓰고 빌린 값은 회부곡(會付穀)에서 회감(會減)하라고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그리하라 하였다.

今七月二十八日，都承旨與都監堂上入侍時，都監堂上鄭民始所啓，各軍門卜馬，遠地立待有弊，今番則除減，凡干使役，以水原府雇馬取用，而雇 價則以會付穀會減之意，分付何如，上曰，依爲之。

<비변사등록 175책, 정조 13년 1789년 07월 28일(음)>

경제/재정

園所를 옮길 때 斥候兵 등에게 음식을 지급하여 추위에 떨지 않도록 하라고 전교하다

○ 전교하기를, “이번에 원소를 옮길 때에는 과천(果川)과 수원(水原)의 호위군(護衛軍) 및 척후(斥候)와 복병(伏兵)은 때가 한창 추운 겨울인 만큼 비록 양료(糧料)를 준다 해도 밤을 지새울 때에는 죽(粥) 자리를 마련해 주고 입는 것도 각별히 신칙하라. 만약 추위에 떠는 일이 있으면 수어사·총융사와 경기감사는 그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고 지방관도 별단으로 감죄할 터이니 이렇게 엄히 신칙하라.” 하였다.

傳曰，今番遷園時果川·水原扈衛軍及斥候伏兵，時值隆冬，雖給糧料，經夜時給饋粥次，而服着各別申飭，如有呵凍之患，守摠兩使，京畿監司，難免其責，地方官，亦當別般勘罪，以此嚴飭。

<비변사등록 175책, 정조 13년 1789년 08월 16일(음)>

경제/재정

水原府 軍校의 支放 등을 平壤監營의 別備錢으로 區劃하도록 分부할 것을 청하다

비변사에서 아뢰기를, “현용원(顯隆園)의 전답(田畓) 가전(價錢：代金) 3만 냥과 오초 향군(五哨鄉軍)의 지방미(支放米) 1천 석을 취모(取耗：이자를 받음)하기 위한 1만 석의 대전(代錢) 3만 냥 및 수원부(水原府)의 교졸(校卒) 가설료(加設料)를 작곡(作穀)하여 취모하기 위한 돈 1만 냥을 평안감영의 연례 별비조(年例別備條) 중 무신(戊申)·기유(己酉) 양년조(兩年條)에서 각각 3만 5천 냥씩 구획(區劃)하라는 뜻으로 경기·평안 양도신(兩道臣)에게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답하였다.

司啓曰，顯隆園田畓價錢三萬兩，五哨鄉軍支放米一千石取耗次一萬石代錢三萬兩，水原府校卒加設料作穀取耗次錢一萬兩，以平安監營年例 別備條中，戊申·己酉兩年條，各三萬五千兩，區劃之意，分付京畿·平安兩道臣何如，答曰，允。

<비변사등록 175책, 정조 13년 1789년 12월 04일(음)>

경제/재정

園所에 거동할 때 水原 등에서 대령했던 饌供을 없애는 일에 대해 전교하다

전교하기를, “풍덕(豐德)의 제릉(齊陵)·후릉(厚陵)과 여주(驪州)에 있는 영릉(英陵)·영릉(寧陵)의 행행과 온천에 행행할 때에 연로(沿路)의 각 고을에서는 으레 조식의 찬공(饌供)과 주공(晝供) 등의 조비가 있었는데 선조(先朝)께서 여주에 행행할 때와 경자년(庚子年)의 온천 행행 때에는 모두 없애도록 명하고 서울에서 편리한 대로 실어다가 거행하게 하였다. 더구나 본원(本園)의 거동은 매사에 모든 폐단을 줄이려고 함에 있어서라. 이번 거동 때부터 수원과 과천 두 고을에서 대령했던 찬공은 모두 제폐하되 혹시 위배하거나 지방관과 도백은 그 책임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본부(本府)는 새로 창설한 곳으로 모든 것이 아직 두서가 잡히지 않았으니 비록 선비를 시험 보이는 날이라도 어찌 광주(廣州)와 송도(松都)의 규례를 적용할 수 있겠는가? 경신년(庚申年)의 행행 때에는 풍덕부사(豐德府使)가 규례 이상으로 공궤(供饋)한 일로 처분(處分)이 매우 엄중하셨으니 이것 또한 선대의 뜻을 계승하는 일단(一端)이다. 더구나 어공(御供)마저 준비하지 말라고 한 터에 제신(諸臣)의 사궤(私饋)에 있어서는 더욱 어떻게 거론할 수 있겠느냐? 이러한 취지로 묘당에서 당해 도백과 부사에게 엄히 신칙하여 행회(行會)하게 하라.” 하였다.

傳曰，如豐德齊厚陵·驪州英·寧陵行幸及溫 幸時沿路各邑，例有朝夕饌供晝物等措備，自先朝驪州幸行時，庚子溫幸時，皆命除之，自京 從便輸置舉行，況本園舉動，每事皆欲省弊者乎，自今番舉動，水原·果川兩邑待令饌供，一併除之，一 或違越，地方官及道伯難免其責，本府以新創之地，凡百姑未就緒，雖試土日，豈可用南城·松都之例乎，庚申幸行時，以豐德府使之科外供饋，處分至 嚴，此亦仰述之一端，且況御供猶勿措備，至於諸 臣私饋，尤豈可舉論，竝以此意，令廟堂嚴飭行會 該道伯及府使處。

<비변사등록 176책, 정조 14년 1790년 01월 04일(음)>

경제/재정

水原의 民戶 給復 및 畿內와 湖西에 留庫한 牟穀을 나누어 줄 것 등에 대해 전교하다

○ 전교하기를, “원소(園所)에 참배하고 돌아오니 못 다한 회포가 새로워지고 거기에 더하

여 새 읍치(邑治)에 백성을 모으고 살림을 꾸리게 하는 일에 끊임없이 마음이 쏠린다. 현재(縣齋)의 숙소에서 촛불을 켜고 윤음(綸音)을 내린 것은 묘당의 신하들이 반드시 마음을 다하여 강구(講究)함으로써 궁궐의 연석(筵席)에서는 어떠한 조처가 있게 하고자 함이었으나 이 밖에 목하의 두 가지 일로서 곧바로 경영해야 할 것이 있으니 대체로 왕언(王言)은 믿음이 없으면 안 되고 백성의 먹을거리는 여유가 없어서는 안 되므로 첫째는 10년 급복(給復)이 이름만 있고 실상이 없는 일이고 둘째는 올 봄 보리의 식량이 무면불탁(無麵不托:떡가루 없는 떡국. 실물이 없음을 말함)인 일이다. 당초에 급복(給復)을 해주라는 명은 토지에서 상부(常賦)를 견감(蠲減)해주는 것으로서 나의 뜻은 고인(古人)이 이미 세운 정론(定論)을 준용(遵用)하고 겸하여 소민(小民)이 안착(安着)하게 하려는 생각에서 나온 것이나 우리나라의 토세(土稅)는 전주(田主)가 담당하고 있으므로 전토(田土)가 있으면 유달리 혜택을 입고 전토가 없는 자는 혜택에 젖지 못한다. 유사(有司)가 그 고르지 못함을 말하고 연호역(煙戶役)을 제하여 토세의 견감에 대신하기를 청하였는데 이는 급복의 명이 있게 된 까닭이었으나 급복의 실속은 없었다. 이번 행차에 부로(父老)를 불러 두루 베푸는 방식을 물으니 부로의 대답은 몽롱(朦朧)한 바가 많았다. 대저 새 읍치의 거민(居民)은 태반이 교졸(校卒)·이속(吏屬)·하례(下隸)·노비(奴婢) 등속 같았는데 이들은 본래 요역(徭役)이 없으므로 견감해 주려 해도 견감할 것이 없으니 이는 거의 백성을 속인 것이나 다름없으니 어찌 더욱 심히 불성실한 것이 아니겠는가? 이르고서 내 마음에 과연 결연(缺然)하겠는가? 결연하지 않겠는가? 지난 날 **독성(禿城)**에 진(鎭)을 설치할 때에 민호(民戶)를 모으기 위하여 별도로 복호전(復戶田) 몇 백 결(結)을 획급(劃給)하기를 능복(陵復)과 역복(驛復)의 규정과 같이 하여 지금까지도 거민이 길이 힘을 입고 있다. 한 성(城)의 이해(利害)는 한 성에 그치는데도 성조(聖祖)의 처분은 오히려 과감히 단행하셨는데 더구나 본부(本府)는 나의 고굉(股肱:수족(手足)과 같은 뜻)이고 본 고을은 기보(畿輔)의 큰 관방(關防)으로서 독성의 제도에 비교하면 그 경중(輕重)과 대소(大小)가 어떻게 하겠는가? 전례에 없는 예를 처음으로 만들어 예로 삼기도 하는데 더구나 기왕의 예가 이와 같이 분명함에 있어서랴? 수원의 새 읍치의 민호(民戶)에게 10년 한하여 5백 결을 급복하여 임금의 말은 미답다 하는 뜻을 보이게 하라. 먹을거리를 풍족하게 하는 것은 비록 신의(信義)의 다음이지마는 백성들은 먹을거리를 하늘처럼 중하게 여기는데 어찌 모르는 체 하겠는가? 새 읍치 백성들의 반이(搬移)는 지난 가을과 겨울 사이에 있었으니 어느 겨울에 가을보리를 갈았겠으며 해가 바뀐 지금에도 지붕을 이고 담을 쌓는 일에 바쁜데 봄 씨앗을 파종하지 못한 것은 형편이 그러한 것이니 이는 이른바 무면불탁인 것이다. 마침 경술(庚戌)의 해가 다시 돌아와 상서(上瑞)가 내리기를 비는 마음이 자나 깨나 맺혀 있는데 다행히 하늘의 도움을 힘입어 8도(道)에 다 같이 풍년이 든다 하더라도 유독 이 새 읍치의 백성들만이 봄에는 식량의 어려움이 있고 여름에는 폐농(廢農)이 되어 낙세(樂歲)를 다 함께 하지 못하는 탄식을 품는다면 내가 그래도 밥상을 대하고 달게 먹고 또 먹은 것이 목에 넘어 가겠는가? 경기와 호서의 인근 여유 있는 고을의 창고에 유치한 모곡(牟穀)을 새 읍치의 민호(民戶)를 계산하여 매호마다 두어 포씩 나누어주어 환분(還分:환자로 나눠줌)의 예를 적용하되 올 가을에는 받지 않음으로써 백성들의 식량을 여유 있게 해 주려는 나의 소망에 부응하게 하라. 「나는 본부(本府) 보기를 마치 고굉(股肱)처럼 여긴다」는 글제를 내걸고 선비를 시험하였으나 이는 오히려 외면(外面)에 관방(關防)임을 알리기 위하여 그런 것이다. 그러나 선침(先寢)을 모신 뒤로는 이 고을 이 백성은 집안사람이나 부자(父子)와 무엇이 다르겠는가? 백성들이 즐겁게 생활하면 나 역시 즐겁고 백성이 생업에 안도하면 나 또한 편안하다. 백성이 비록 지극히 어리석으나 반

면 신통함이 있으니 그러기에 지성(至誠)이면 신령도 감동시킨다고 하는 것이다. 지방관으로 하여금 이 열 줄의 윤음을 가지고 거둬 민중(民衆)에게 유시(諭示)하여 이번 거조(舉措)가 선침(先寢)을 위하고 미루어 백성에게 미치게 하려는 뜻을 알게끔 하게하고 정원으로 하여금 본도백(本道伯)과 본부사(本府使)에게 하유하라.” 하였다.

傳曰，拜園歸來，餘懷耿耿，重以新治之聚民營產，關念不已，縣齋宿次，呼燭宣綸，廟堂之臣必以盡心講究，擬待宸筵日，當有措處，而外此目下二件事，有趁即拮据者，蓋王言不可不信，民食不可不裕，一曰十年給復之有名無實也，二曰今春麥糧之無麪不托也，原初給復之命，即謂土蠲常賦，予意出於欲用古人已定之論，兼慰小民安土之思，而我國土稅，田主當之，有田則偏蒙，無土者未霑，有司言其不均，請除烟役，以代蠲稅，此所以有給復之命，而無給復之實也，今行，招父老詢及遍施之策，父老所對多朦朧，大抵新治居民，太半是若校·若吏·若隸·若奴之屬，此屬本係無役，欲除無可除，是幾於欺民，尤豈非不誠之甚乎，如是而於予心果慊乎，果不慊乎，昔在禿城之設鎮也，爲募民戶，別劃復戶田幾百結，如陵復·驛復之規，至于今居民永賴，一城之利害，止於一城而聖祖處分，尙且斷然行之，況本府即吾股肱，郡爲畿輔，大關防較，諸禿城之制置輕重大小顧何如，無於例之例，可創而爲例，已例又況若是其斑斑乎，水原新治民戶，限十年給復五百結，以示信王言之意，足食雖居信下，重茲民天，亦豈愬然，新治之民挈搬，在去歲秋冬間，何暇耕秋麥，迨此歲翻，又屹屹於結茅築堵，春種之未播，勢亦所使，此所謂無麪之不托也，際值庚歲之重回，上瑞之祝，寤寐如結，倘賴天庥，使八路同然告豐，獨此新治民庶，春而艱食，夏而廢農，舉懷不咸之歎，則予尙可當飯而甘食，食亦下咽乎，畿內·湖西隣近有裕邑留庫牟穀，支計新治民戶，戶俵數包，用還分例，秋勿更徵，以副裕民食之望，予視本府，如視股肱，揭題試士，此猶指外面關防而言，自奉先寢，是鄉是民何異於家人父子，民之樂生，予亦樂，民之安業，予亦安，民雖至愚，亦自至神，故曰至誠感神，令地方官，將此敷示十行，申諭民衆，俾知此舉之爲先寢，推以及民，仍令政院下諭于本道伯·本府使。

<비변사등록 176책, 정조 14년 1790년 02월 15일(음)>

경제/재정

左議政 蔡濟恭이 平安 前監司 鄭昌聖을 王府에서 供招하는 문제 등에 대해 논의하다

(…) 또 아뢰기를, “지금 전 경기감사가 보고한 것을 보니 수원부사(水原府使)의 첩정(牒呈)을 날날이 들어 이르기를 ‘본부(本府) 소관 및 독성(禿城) 소관의 각종 군보미·전(軍保米錢)을 전량 탕감하거나 3분의 1을 견감하였으나 이는 군교(軍校)들에게 다달이 지급할 물력(物力)이고 연호잡역(煙戶雜役)은 관부(官府)에서 수응(酬應)하는 소용이므로 그대로 덮어두고 논하지 않을 수 없으니 좋은 방편으로 변통하여 지금 급대(給代)해 주십시오’ 하였습시다. 본부와 산성(山城) 소관의 군보미·전과 연호잡역은 혹은 군교에게 지급할 것이거나 혹은 관부의 소용이거나 하기 때문에 이미 견감한 뒤에는 급대하지 않을 수 없으니 본부의 상진모(常賑耗)로 그 수량만큼 대충해주고 혹 부족하면 이웃 고을에서 이획(移劃)하라고 도신에게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그리하라 하였다.

(…) 卽見前京畿監司所報，則枚舉水原府使牒呈以爲，本府所管及禿城所管各樣軍保米錢，或全數蕩減，或三分一蠲減，而此是軍校輩逐朔支放之資，至於烟火雜役，既是官府責應之需，則不可置而不論，從長變通，以爲趁今給代之地爲辭矣，本府及山城所管軍保米錢，烟戶雜役，或係支放，或資需用，則既已蠲減之後，不可不給代以本府常賑耗，充給其數，而若或不足，則移劃於傍近邑之意，分付道臣何如，上曰，依爲之。

<비변사등록 176책, 정조 14년 1790년 03월 28일(음)>

경제/재정

京畿監司 金思穆이 水原府의 軍保米 蕩減條 지급 방법과 區劃條 수렴 방법을 논의하다

○ 이번 4월 10일 경기감사와 수원부사(水原府使)가 입시하였을 때에 경기감사 김사목(金思穆)이 아뢰기를, “수원부의 군보미(軍保米) 탕감조(蕩減條) 6백 42석 영(零) 대신에 벼[租] 1천 6백 6석 영을 본부(本府)와 안성(安城)·용인(龍仁)·양성(陽城) 등읍에 있는 상진조(常賑租)에서 구획(區劃: 떼어냄)하여 급대(給代)하였습니다. 이는 장사(將士)와 군졸(軍卒)에게 다달이 지급할 재원이므로 쌀 대신 벼로 받는 것은 의당 생각해야 합니다. 또 다른 고을에서 1천여 포(包)의 곡물을 받아 올 즈음 한갓 낭비만 될 뿐 아무런 실속이 없는 한탄에 있게 될 것입니다. 쌀 6백 석 영은 먼저 본부의 유고(留庫)와 충융청의 둔향(屯餉) 중에서 지급하고 구획조(區劃條)는 각기 그 고을에서 가을에 작미(作米)하여 내년 봄에 환곡을 나누어 줄 때에 본부 부근 백성이 이전미(移轉米)로 받아오게 하면 이보다 더 편리한 방법이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감히 양달하옵니다.” 하니, 임금이 그리하라 하였다.

今四月初十日, 京畿監司·水原府使入侍時, 京畿監司金思穆所啓, 水原府軍保米, 蕩減條六百四十二石零, 代租一千六百六石零, 以本府及安城·龍仁·陽城等邑所在常賑租, 區劃給代矣, 此是將士軍卒逐朔支放之資, 則米代受租, 在所當念, 且就他邑受來千餘包穀物之際, 徒歸糜費, 將有無實之歎, 米六百石零, 先就本府留庫及摠廳屯餉中支放, 而區劃租則自各其邑待秋作米, 趁明春還分時, 以本府附近民移轉受來, 則方便之道, 恐不外此, 敢此仰 達矣. 上曰, 依爲之.
<비변사등록 176책, 정조 14년 1790년 04월 10일(음)>

경제/재정

右議政 金鍾秀가 水原府에 콩을 加分해 줄 것 등에 대해 논의하다

(…) 또 아뢰기를, “수원부사(水原府使) 조심태(趙心泰)가 환곡으로 나누어 줄 콩이 부족하다고 본사(本司)에 첩보(牒報)하고 군향(軍餉)으로 유고(留庫)한 콩 1천 5백 석을 더 나누어주게 해달라고 청하였습니다. 파종(播種)이 멀지 않았으므로 동료 재상의 등대(登對)를 기다리기 어려우니 특별히 소청대로 시행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그리하라 하였다. (…)

(…) 又所啓, 水原府使趙心泰, 以還分太不足, 牒報 本司, 請軍餉留庫, 太一千五百石加分矣, 播種不遠, 有難等待僚相之登對, 特爲依所請施行何如. 上曰, 依爲之.(…)

<비변사등록 176책, 정조 14년 1790년 04월 11일(음)>

경제/재정

水原府에 바치는 魚鹽과 船稅條를 本府에 소속시켜 三色軍의 支放에 보태도록 하다

○ 전교하기를, “수원부(水原府)의 삼색군(三色軍)에 지급할 수용(需用)은 이미 원행(園行)할 때에 가전(駕前)에서 지급할 것이었다. 비록 거동할 때가 아니더라도 관문(官門)에 오래 서 있으니 어디에 이런 고역이 있겠는가? 반드시 3백 석과 돈 6백여 꾸러미가 있어야만 꾸러나갈 수 있다 한다. 비록 이와 같은 소중함이 없다 할지라도 지급하기 위하여 대동(大同)에서 떼어준 일은 구례(久例)와 근례(近例)가 많이 있다. 더구나 어부미(漁夫米)가 수원(水原) 온 고을 백성들에게 절실히 고통스러운 폐막이 되어 있음은 일찍이 익히 들어온 바다. 1포(包)에 드는 것이 몇 두(斗)가 훨씬 넘으니 그 폐단이 근래 향례(餉饋)와 무엇이 다르겠는가? 지금에 이를 얻어 어깨를 쉴 수 있게 되면 어찌 수원 백성들에게 다행이 아니

겠는가? 해마다 본부(本府)에 바치는 어부미 명색을 전부 지급할 물자에 넣고 부족한 수량은 대동에서 덜어두어 3백 석의 수량에 차게 하되 이렇게 한 뒤에도 어미(漁米)를 받을 때에 사용원에서 침학(侵虐)하는 폐단을 모두 고치지 않는다면 그것을 일거양득(一舉兩得)이라 할 수 있겠는가? 폐단을 고친다는 것은 참으로 쉽지 않음을 알겠으나 수원 백성들을 위하여 다시 이렇게 거듭 신칙하니 경과 지방관은 잘 알아서 각별히 신칙하라. 전조(錢條)는 본부의 사체를 어떻게 통영(統營)에 비교하겠는가마는 관방(關防)은 그곳에 허시(許施)한 예가 있는데 하물며 본부임에랴? 본부에 바치는 어염(魚鹽)·선세조(船稅條)를 특별히 떼어 본부에 소속시켜 지방(支放)에 보태게 하라고 경기감사와 수원부사에게 하유하라.” 하였다. 傳曰, 水原府, 三色軍支放之需, 旣園行時, 駕前所用, 雖非動駕之時, 長立官門, 豈有如許苦役, 須有 三百石錢六百餘緡, 可以拮据云, 雖無似此所重, 爲 支放區劃大同, 旣多久例與近例, 況漁夫米之爲水 原一邑民切苦之瘼, 曾所熟聞, 一包之容, 優過數十斗, 其弊何異於近來餉饋, 及此得以息肩, 豈非水民之 幸乎, 以每年本府所納漁夫米名色, 全屬支放, 不足 之數, 以大同中除留, 以準三百之數. 如是之後, 漁米 之捧也, 若不盡革廚院侵虐之弊, 則其可曰一舉兩 得乎, 蘇弊固知不難, 爲水民更此申申, 卿與地方官 知悉, 各別申飭. 錢條則本府事體, 豈比統關關防, 則 彼有許施之例, 況本府乎, 本府納魚鹽船稅條, 特爲 劃屬本府, 以補支放事, 下諭于畿伯及水原府使.

<비변사등록 176책, 정조 14년 1790년 04월 17일(음)>

경제/재정

嶺營의 射軍木 등을 水原府에 儲置하였다가 試射放의 賞格으로 進排하도록 전교하다

전교하기를, “수원(水原)의 새 읍치(邑治)에는 해마다 원소(園所)에 거동하는 길에 시사·방(試射放)하는 상격(賞格:시상하는 상품)으로 소용되는 것이 많고 또 혹은 격월(隔月)로 혹은 매월로 상사(賞射)하는 새 규식(規式)과 5초(哨)의 새로 만든 초군(哨軍)에 대한 각종 시사·방의 상격이 있는데 전죽(箭竹)과 목면(木綿:솜)을 본부(本府)에서 대령할 즈음 구차하기가 더 없이 심하다. 그러니 금년부터는 영영(嶺營)의 사군목(射軍木) 5동과 양호(兩湖)에서 비국에 바치는 전죽 1백 부(浮)를 본부(本府:수원부)에 떼어주어 저치하였다가 진배(進排:조달)하도록 묘당에서 경기감사와 3도백(道伯)에게 분부하게 하라.” 하였다.

傳曰, 水原新治每歲園幸之路, 自多試射放賞格所用, 又有間月或逐月, 賞射之新式及五哨新作, 哨軍各項射銃賞格, 箭竹·木綿, 本府待令之際, 苟且莫甚, 自今年爲始, 嶺營射軍木五同, 兩湖備局納箭竹一百浮, 區劃本府, 仍令本府, 儲置進排事, 令廟堂分付畿 伯及三道伯.

<비변사등록 176책, 정조 14년 1790년 04월 22일(음)>

경제/재정

水原에 劃付한 軍丁의 給代를 원래 軍餉에서 가분하거나 兩西의 곡물을 加劃할 것을 청하다

○ 수어청(守禦廳)에서 아뢰기를, “광주(廣州)의 양면(兩面)을 수원(水原)에 획부한 뒤에 양면의 군정(軍丁) 4백 67명(名)을 이미 탈면(頗免)을 허락하였는데 각양(各樣)의 신미(身米) 2백 14석(石) 령(零)을 지방(支放)에 들이는 것으로 형편상 당연히 급대(給代)하여야 하나 구획하는 방도를 기백(畿伯) 광윤(廣尹:광주부윤(廣州府尹))과 의논하여 초기하는 일을 신이 이미 연교(筵敎)를 받았습니다. 물러나와 상의하였더니 경기감사 신(臣) 김사목(金思穆)과 광주부윤 신 홍성연(洪聖淵)은 모두 ‘여러 가지로 생각하여도 다른 좋은 방법이

없으니 환모(還耗) 첨향조(添餉條) 3백 석 중에서 혹 추이하여 주거나 그렇지 않으면 원 군향(軍餉) 중에서 2천여 석에 한하여 미루어 충대(充代)하면 혹 폐단을 없게 할 수 있습니다.’ 하였습니다. 신 정창순은 첨향과 가분(加分)이 비록 혹 충대할 수 있더라도 만약 정퇴(停退)할 때를 만나면 첨향이 문득 무면(無麵)하여 의지할 데 없어지고, 폐단을 다스릴 때를 당해서는 가분도 또한 백성의 고질적인 폐막이 되는데 그 유행하는 해로움은 필시 장차 원향(元餉)에서 베어 내어 보충하는 계책으로 삼는 데에 이를 것인데 이와 같다면 군향이 날로 줄어들은 서서 기다려도 될 것이니 아마도 좋은 계책은 아닐 것 같습니다. 양서(兩西)의 소미(小米:좁쌀) 각 1천여 석을 본 청(廳)에 획부(劃付)하여 본 도(道)에서 해마다의 환분(還分)에서 취모(取耗) 2백여 석을 작전(作錢)하여 올리게 하여 대미(大米:쌀)를 이무(移貿)하여 급대의 바탕으로 삼으면 혹 폐단이 없을 듯하나 만약 해서(海西)의 곡부(穀簿)를 원래 헤아리지 않고 또 이렇게 가획(加劃)하면 난편(難便)한 바가 있으니 다만 관서(關西)의 소미를 가분(加分)한 모조(耗條) 중에서 3백 석을 해마다 획급(劃給)하면 공적으로 이미 손해 될 것이 없고, 급대 또한 수를 채울 수 있으니 이러한 여러 가지를 묘당에서 품지하여 분부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답하기를, “원향에서 가분하면 광주 백성에게 다시 많은 폐단을 끼칠 것이고, 양서(兩西)의 곡물을 가획하면 수량을 더해서 발매(發賣)하는 것이니 또한 폐단이 있다. 본청에서 간년(間年:격년) 첨향조 중에서 이 수량에 맞게 제출(除出)하여 급대하는 것만 못하고, 근년에 첨향은 유명무실하니 비록 첨향이 쉽게 미봉(未捧)에 돌아간다 하더라도 이것이나 저것이나 첨향조로 급대하는 것이 두 가지에 모두 편하므로 이대로 거행하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守禦廳啓曰，廣州兩面之劃付水原後，兩面軍 丁四百六十七名，既許頗免，則各樣身米二百十四石零之入於支放者，勢當給代，而區劃之道，與畿伯廣 尹相議草記事，臣既承筵教矣，退而相議則京畿監 司臣金思穆，廣州府尹臣洪聖淵，皆以爲多般商量，無他善策，還耗添餉條三百石中，或推移以給，不然 則元軍餉中限二千餘石加分，以其耗二百餘石推移充代，則或可無弊云，而臣昌順以爲添餉與加分，雖或可以充代，若值停 退之時，則添餉便是無麪之不托，當此軫弊之時，加 分亦涉爲民之痼瘼，而其流之害，必將至於割出元 餉，以爲充補之計，如此則軍餉之日縮，可立而待，恐 非善策，兩西小米各一千餘石，劃付本廳，以爲令本道，逐年還分取耗二百餘石，使之作錢上來，移貿大米，以爲給代之地，則似或無弊，而若以海西穀簿元 來不敷，又此加劃，有所難便，則就關西小米加分耗 條中三百石，年年劃給，則在公既無所損，給代亦可 充數，就此諸條，令廟堂，稟旨分付，何如．答曰，原 餉加分，則貽廣民還多之弊，兩西穀物加劃，則添數發賣，亦有弊焉，莫如本廳間年添餉條中，稱此數除 出給代，近年添餉，有名無實，雖添餉易歸於未捧，以 此以彼，以添餉條給代爲兩便，依此舉行，可也．

<비변사등록 177책, 정조 14년 1790년 08월 17일(음)>

경제/재정

水原에 劃付한 廣州의 軍丁에게 거들 身米를 탕척하여 보살펴주라고 전교하다

○ 전교하기를, “수원(水原)에 새로 획부(劃付)한 광주(廣州) 양면(兩面)에 있는 군액 4백 67명에게 거들 신미(身米) 2백여 석을 아울러 탕척(蕩滌)하고, 양면(兩面)에 있는 백성을 이속(移屬)하기 전과 비교하였더니 얼른 습지(濕地)를 벗어났다고 할만하다. 이 뜻으로 본 부사(府使)에게 알게 하고 백성을 효유(曉諭)하여 모두 안도(安堵)하여 생을 즐길 수 있게 하라. 비록 본 부(府)로 말하더라도 이 허다한 한정(閒丁)을 얻었으니 이 뒤로 사용할 때에

새로 확보한 인원이 원래 거주하던 인원과는 다르다는 것을 깊이 생각하여 각별히 보살피고 돌보면 비록 어쩔 수 없는 충정(充丁)이지만 절대로 이전처럼 많다 말고 특별히 유지하는 실효가 있게 하라고 본 도백과 본 부사에게 하유하라.” 하였다

傳曰, 水原新劃付廣州兩面所在軍額四百六十七名所收身米二百餘石竝蕩滌, 在兩面民, 比未移屬前, 可謂快得脫濕, 此意令本府使知悉, 曉諭民人, 皆得以安堵樂生, 雖以本府言之, 得此許多閒丁, 此 後使用之際, 深念新付之異於元居, 各別顧見撫摩, 雖不得不充丁, 切勿如前夥多, 俾有特諭之實效事, 下諭于本道伯及本府使.

<비변사등록 177책, 정조 14년 1790년 08월 17일(음)>

경제/재정

左議政 蔡濟恭이 守御廳 收米穀 문제에 대해 논의하다

(…) 또 아뢰기를, “광주(廣州)의 양면(兩面)을 수원(水原)에 이속(移屬)한 후에 수어청(守御廳)의 수미(收米) 가운데 축이 난 것을 지난날 연중(筵中)에서 관서(關西)의 소미(小米)로 혹은 본청의 첨향조(添餉條)에서 주이하여 채워 보충하라는 뜻으로 하교한 바가 있었습니다. 관서의 쌀은 계속 이어 옮겨주기에 어려움이 있으나 첨향조를 지방(支放)에 옮겨주는 것은 비록 민망스럽다 하지만 이것을 보충해 쓰는 외에 다시 다른 방법이 없으므로 감히 아뢰옵니다.” 하니, 임금이 그리하라 하였다.

(…) 又所啓, 廣州兩面移屬水原之後, 守廳收米之 見縮者, 頃日筵中, 以關西小米, 或本廳添餉條, 推 移充補之意, 有所下教矣, 關西米則有難續續移 畫, 添餉條之移施於支放, 雖曰可悶, 以此補用之外, 更無他策, 故敢達矣, 上曰, 依爲之.

<비변사등록 177책, 정조 14년 1790년 10월 21일(음)>

경제/재정

司饔院提調 鄭民始가 水原府의 漁夫 復戶米를 면제한 만큼 宣惠廳에서 획급할 것을 청하다
이번 2월 14일 차대에 입시하였을 때에 사옹원(司饔院) 제조 정민시가 아뢰기를, “수원부(水原府)의 어부(漁夫) 복호미(復戶米)를 감해 없애는 대신을 선혜청(宣惠廳)에서 획급하는 일을 규칙으로 정하였습니다. 어부 등은 원래부터 복호 미를 받아먹은 것이 1백 22석(石) 10두(斗)이나 선혜청은 ‘복호 1백 15결(結)에서 매 결의 미 12두씩 도합 미 92석을 마땅히 차하[上下]하겠습니다.’ 했으므로 수원부에 물었더니 ‘복호는 매 결에 대동미 12두 외에 본 부에서 준 작미(作米) 가운데서 내린 것도 또한 30석 10두입니다.’ 하여 합하여 계산했더니 과연 1백 22석 10두였습니다. 지금 이렇게 건감(蠲減)한 것은 이미 급대(給代)하였으니 어부 등이 본래 받은 것은 수를 줄일 수 없으나 관수(官需)로 작미(作米)한 것은 대동(大同)에 관계되므로 일찍이 이전에 해 부에서 내린 쌀 30석 10두도 또한 선혜청에서 일체로 마련하여 출급하는 것이 사의(事宜)에 맞을 듯하여 감히 이렇게 양달하옵니다.” 하니, 임금이 그리하라 하였다.

今十二月十四日, 次對入侍時, 司饔院提調鄭 民始所啓, 水原府漁夫復戶米減罷之代, 自惠廳劃給事, 定式矣, 漁夫等自來受食復戶米爲一百二十二石十斗, 而惠廳以爲復戶一百十五結, 每結米十二斗式, 合米九十二石當上下云, 故問于水原府, 則以 爲復戶每結大同米十二斗外, 本府酬作米中, 所下 亦爲三十石十斗云, 合而計之, 果爲一百二十二石十斗, 今此蠲減者, 旣已給代, 則漁夫等本來所受, 不可減數, 而官需作米, 係是大同則曾前該府所下米 三十石十斗, 亦自惠廳, 一體磨鍊出給, 似合事宜, 敢 此仰達矣, 上曰, 依爲之.

<비변사등록 177책, 정조 14년 1790년 12월 19일(음)>

경제/재정

해마다 御駕를 수행하므로 경기도내의 加分耗 3천 석을 별도로 劃給하라고 전교하다

경기 감사 서정수(徐鼎修)의 계본에 광주(廣州)·용인(龍仁) 등 외창(外倉)을 수원(水原)에 이설하는 것을 편의한대로 논열할 것에 대하여 전교하기를, “본도의 일은 재작년 가을에 연교(筵敎)가 있었는데 아직도 알리지 않았다. 매년 원행(園行)은 정례(定例)를 이미 이루어서 서울의 각 영(營)은 비록 윤차(輪次)로 하지만 본도는 해마다 어가를 따르지 않을 수 없는데, 모든 거행에 역시 나누어 마련하는 등의 일을 없애면 재력을 어디에서 마련해 내겠는가! 늘 공역(公役)을 당할 때마다 조정의 지획(指劃)을 어지러이 하여 사체(事體)를 구차하고 어렵게 하는 것도 역시 심하다. 연전에 호남과 영남 두 변방에 3천 석과 6천 석은 다만 감영의 용도인데 이렇게 특별히 구획함이 있었거늘 더구나 기번(圻藩: 경기 지방)이겠는가! 도내의 가분모(加分耗) 3천 석을 특별히 획급(劃給)을 허락하라. 차후로 이것으로 획급하는 것은 감영의 용도로 한다. 가분(加分)이 없거나 혹 가분을 하더라도 모곡이 이 수효에 차지 않으면 상진모(常賑耗)로 기준에 보충하게 할 것을 회유하라.” 하였다.

以京畿監司徐鼎修啓本, 廣州·龍仁等外倉, 移設於水原, 便宜論列事, 傳曰, 本道事, 再昨秋, 有筵敎而尙未知委矣, 每年園幸, 定例已成, 京各營則雖輪次, 本道則不可不年年隨駕, 凡百舉行, 亦除分辦等事, 則財力從何辦出乎, 每當一番公役, 輒煩朝家指劃, 事面之苟艱, 亦甚矣, 年前湖嶺兩藩之三千六千, 只爲營用, 有此特劃, 則況畿藩乎, 道內加分耗三千石, 特爲許劃, 此後以此所劃, 爲營用, 如值無加分或加分, 而耗不滿此數, 則以常賑耗準充事, 回諭.

<비변사등록 178책, 정조 15년 1791년 03월 29일(음)>

경제/재정

江華島 쌀 560섬을 水原府에 이속시켜 耗條의 값을 높게 책정하는 폐단의 제거를 청하다

○ 비변사에서 아뢰기를, “수원(水原)이 읍을 옮긴 이후로 사체가 소중한 것은 다른 곳과 구별이 있으니, 만일 백성에게 폐단을 제거하며 읍 일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그 시행과 폐기할 것은 의심을 가질 것이 없습니다. 들으니 수원에는 강화도의 쌀을 이전(移轉)해 와서 유치(留置)하여 둔 것을 매년 조적(糶糴)하여 그 모조(耗條)를 작전(作錢)하여 보내는데 값을 정하는 것이 매우 높은 것이 걱정거리이어서 실제로 수원 백성들의 폐단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진실로 조정에서 바로잡아 개혁해야 할 것입니다. 더구나 수원의 관방(關防)의 중요성은 반드시 강화도에 못 미치는 것은 아니니, 수원에 유치하여 머물러 둔 쌀을 작전하여 강화도에 납품하는 것은 일의 적의성으로 헤아려 볼 때 진실로 타당성을 어겼습니다. 지금 이후로 강화도 쌀 5백 6십 석(石)을 수원부에 소속시켜서 폐단을 제거하여 도와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답하였다.

司啓曰, 水原自遷邑以後, 事面之重, 與他有別, 如有可以祛弊於民生, 有補於邑事者, 則其所施罷, 不當持疑, 聞水原, 有沁都米移轉留置者, 每年糶糴, 以其耗條, 作錢以送, 而價直之定, 每患高峻, 實爲水民之弊, 此固朝家所宜矯革, 而況水原關防之重, 未必不及於沁都, 則以水原留置之米, 作錢以納於沁都, 揆以事宜, 實涉乖當, 從今以後, 沁都米五百六十石, 屬之水原府, 以爲祛弊有補之地何如, 答曰, 允.

<비변사등록 178책, 정조 15년 1791년 04월 13일(음)>

경제/재정

江華府의 添餉條와 均役廳, 賑恤廳의 補還穀를 水原府에 속하게 하는 문제를 논의하다

○ 이번 7월 4일 좌승지 입시에 전 수원부사(前水原府使)가 같이 입시하였을 때에 전 수원부사 조심태(趙心泰)가 아뢰기를, “신이 마침 하순(下詢)으로 인하여 수원의 지출문제를 감히 양달하겠습니다. 본부의 지출은 본래 충분치 못하고 또 향군(鄉軍)을 접대할 수용이 늘 구차스러움이 걱정입니다. 강화부(江華府)의 첨향조(添餉條)로서 관서의 소미(小米) 5백 83석 5두를 매년 본부에 옮겨 속하게 하는데 심도(沁都)에 있어서는 구우일모(九牛一毛)에 지나지 않으나 본부에는 자못 긴요합니다. 지금 옮겨 속하게 한다면 5백 83석 5두에 4백 16석 10두를 더 보태주어 1천의 수가 되게 하면 좋겠습니다. 도백의 생각도 신의 뜻과 다름이 없습니다. 대신에게 물어 처리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경은 대신에게 가서 상의하고 이어 묘당에서 초기하여 회계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조심태가 말하기를, “장용영(壯勇營) 5초(哨)의 향군을 본부에 설치한 것은 오로지 매년 행행(幸行) 때에 후상(後廂:후진(後陣))의 배호(陪扈)를 위한 것으로서 경군(京軍)이 거가(車駕)를 따르는 폐단을 덜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각종 군장(軍裝)과 기계를 아직도 조치하지 못하였고 행행 때 어용고(御用庫)에서 대령할 각종 및 수라[水刺]에 올릴 물건도 많이 들어갑니다. 호조 소관의 관서와 영남의 곡물로서 여러 고을의 모곡(耗穀)을 돈으로 바꾼 것 가운데에서 5천 냥에 한하여, 그리고 균역청·진휼청의 보환곡(補還穀)에서 1천 석에 한하여 매년 옮겨 속하게 해서 수용할 수 있도록 하되 지금 이 곡물은 민읍(民邑)의 폐단을 시정하고 변통하기 위한 것으로서 처음부터 경비 가운데에서 염출하는 것이 아니니 이것으로 저것으로 보태는 데 전혀 해로운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감히 이를 양달합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역시 대신에게 상의하고 초기하게 하라. 군수(軍需) 외에 행궁(行宮)에 거행해야 할 것 및 수라에 쓰일 것까지 모두 본부에서 공급한다면 그 구획이 중함은 특별하다. 더구나 기본이 굳게 정해져야만 차차 보탬이 된다. 비록 이 수에 더한다 하더라도 사소한 경비는 돌아볼 겨를이 없다. 그러나 경비를 가져다 사용하지 않으려 하는 것이 역시 나의 본래의 뜻이다. 아울러 이러한 내용으로 가서 전하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今七月初四日左承旨入侍, 前水原府使同爲入侍時, 前水原府使趙心泰所啓, 臣適因下詢水原支放事, 敢此仰達矣, 本府支放, 本自不敷, 且鄉軍接濟之需, 每患苟簡, 江華府添餉條關西小米, 爲五百八十三石五斗, 每年移屬本府, 則在沁都不過九牛一毛, 在本府頗有關緊, 今若移屬, 則就五百八十三石五斗, 添劃四百十六石十斗, 以準千數, 則似好, 道伯之意與臣意無異, 下詢大臣處之何如, 上曰, 卿往議大臣, 仍令廟堂, 草記回啓可也, 心泰曰, 壯勇營五哨鄉軍之設置本府者, 專爲每年幸行時, 爲後廂陪扈, 而除京軍隨駕之弊也, 各樣軍裝器械, 尙未措置, 幸行時御用庫待令各種及水刺進排之物, 亦多所入, 戶曹所關關西·嶺南穀多邑耗條作錢中, 限五千兩, 均賑廳補還穀限一千石, 每年移屬, 以爲需用之地, 而今此穀物, 係是爲民邑釐弊變通者, 初非經費中責出者, 則以此補彼, 少無所妨, 故敢此仰達矣, 上曰, 亦爲就議草記, 而軍需之外, 行宮一應舉行及以至水刺所用, 皆策應於本府, 則其所區劃, 所重自別, 況根基堅定, 然後次次有效益, 雖加於此數, 些少經費, 有不暇顧, 然經費則不欲取用, 亦予自來本意, 竝以此意往傳可也.

<비변사등록 179책, 정조 15년 1791년 07월 15일(음)>

경제/재정

趙心泰가 논의한 水原府의 경비를 충당하는 방법에 대해 요청대로 시행할 것을 청하다

○ 비변사에서 아뢰기를, “**수원 전 부사 조심태(趙心泰)**가 연석(筵席)에서 아뢴 거조(舉條)에 대한 비지(批旨)에 묘당에서 초기하게 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수원은 곧 초창(初創)이나 매한가지여서 지출에 어려움이 있고 군수(軍需)에 구차스러워 조가에서 돌보는 방도에 있어 소홀히 해서는 옳지 않습니다. 강화 첨향조(添餉條)의 관서 소미 5백 83석 5두를 매년 옮겨 속하게 함은 혹 보태 사용할 밀천이 된다고 하겠으나 이 수는 역시 시원치 않아 4백 16석 10두를 더 보태주어 1천의 수에 채울 수 있게 한다면 다소의 보탬이라도 될 듯싶으니 요청에 의하여 시행토록 하는 것이 불가할 것이 없을 듯싶고, **장용영** 5초 향군의 군장과 기계에 있어 조치할 길이 없음은 관심을 가져야 할 바이나 이는 오히려 제2의 일이고, 행궁에 거행해야 할 일 및 수라에 사용할 것도 모두 본부에서 조달해야 하니 사세와 재력에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나라의 체통에 있어 역시 매우 미안스럽습니다. 호조 소관의 관서와 영남의 곡물로서 여러 고을의 모곡(耗穀) 가운데의 쌀에서 1천 석에 한하여 매년 옮겨 그어 주면 본부에 있어 수용의 실이 있고 조가에는 경비에 손이 되는 일이 없으니 역시 요청에 의하여 시행토록 하는 것이 옳을 듯싶습니다. 이와 같이 각 해사 및 해도에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그리하라고 답하였다.

司啓曰, **水原**前府使**趙心泰**筵稟舉條, 批旨有令廟堂草記之命矣, **水原**便同草創, 支放艱乏, 軍需苟簡, 在朝家軫念之道, 不宜泛忽, 江華添餉條關西小米五百八十三石五斗, 每年移屬, 則或可爲補用之資, 而此數亦近零星, 若添劃四百十六石十斗, 俾準千數, 則似爲一隅之補, 依所請許施, 恐無不可, 至若壯勇營五哨鄉軍, 軍裝器械之措置無路, 良足關念, 此猶第二件事, 行宮一應舉行及水刺所用, 亦皆責應本府, 則非徒事力爲難, 其在國體, 亦甚未安, 戶曹所關關西嶺南穀多邑耗條作錢中, 關西三千兩, 嶺南二千兩, 都合限五千兩, 均賑廳補還穀耗條米, 限一千石每年移劃, 則在本府有需用之實, 於朝家無經費之損, 此亦依所請許施, 恐爲得宜, 以此分付各該司及該道何如, 答曰, 允.

<비변사등록 179책, 정조 15년 1791년 07월 15일(음)>

경제/재정

경기 고을의 올해 貢蟹를 중지시키고 수원의 蟹貢은 영원히 면제하라고 전교하다

○ 전교하기를, “경기 고을의 공해(貢蟹)에 대한 폐단은 비록 미세한 듯싶으나 들으면 공물로 응하는 경우가 20읍에 가깝고 2~3읍 외에 모두 백성으로부터 나오며 과거 감면하는 때도 많았다. 더구나 금년 장마는 한 달씩이나 이어져 강가와 바다 가까운 곳의 민사(民事)가 매우 관심이다. 그런데 공해가 있는 고을은 모두 연변(沿邊) 고을이다. 이로 보나 저로 볼 때에 돌보는 일이 있어야 할 듯싶다. 그러나 늘 거둔 뒤에 영을 반포하므로 백성들이 실질 혜택을 입지 못하니 묘당에서 이러한 뜻을 일일이 들어 당해 도에 분부하되 금년에 봉진(封進)할 생해(生蟹)를 특별히 면제하게 하라. 모두 오늘 안으로 여러 고을에 통보하게 하되 그 가운데 고을에서 나와 이 공물에 응하는 경우 금번은 역시 봉진하지 말고 민역(民役)을 돕게 하라. 이로 인하여 하교할 것이 있다. **수원(水原)**의 해공은 아직도 수봉해야 할 것 가운데 있다. 앞으로 본부(本府)의 봉진을 길이 면제시키도록 일체 분부하라.” 하였다.

傳曰, 畿邑貢蟹之弊, 雖似微細, 常聞應貢者近二十邑, 而二三邑外, 皆出於民, 在前多有蠲免之時, 況今年霖雨浹月, 濱江近海處民事甚關心, 則貢蟹之邑, 無非沿邑, 以此以彼, 宜有軫念之舉, 每於既收之後, 頒令之故, 民未蒙實惠, 令廟堂枚舉此意, 分付該道, 今年封進生蟹, 特爲停免, 皆令今日內知委列邑, 其中出於官, 而應此貢者, 今番則亦勿封進, 以補民役, 因此而

有下教者，水原蟹貢，尙在應捧之中，此後本府封進，永爲蠲除事，一體分付。

<비변사등록 179책, 정조 15년 1791년 07월 24일(음)>

경제/재정

水原府의 오래 묵은 田畓에 대해 실제 수만큼 면세해주라고 전교하다

○ 이번 8월 24일 동부승지가 입시하였을 때 전교하기를, “조정에서 본부(本府) 보기를 부(部) 안처럼 하여 고통이 있을 경우 어찌 범연히 볼 수 있겠는가? 해부사의 말을 들으면 오래 묵은 1백여 전결(田結)이 있다고 한다. 설령 금년에 새로이 계산된 재결(災結)이라 하더라도 모두 내려오는 묵은 것으로 돌아가 버려진다. 이른바 오래 묵은 것이라고 애초에 이름을 붙이지 않았다면 백성이 어찌 그 효과를 보며 토지에 어찌 그 세를 감면할 수 있겠는가? 그러면 본부 지방에 비록 배분하는데 들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지나친 말은 아니니 이 어찌 조가에서 본부를 위하는 뜻이겠는가? 수원부(水原府)의 오래 묵은 전답을 실제 숫자에 따라 곧 탈급(頒給:사고처리)하도록 묘당에서 알고 해조와 해도에 분부하라. 본부에서 지출할 수 용도 특별히 구획한 것이 있다. 옛날 거둔 조세는 오늘의 소중함이 있다. 그 부세를 면제시킨 것이 과연 얼마나 되는가? 이 밖에 일정 연한 급복(給復)하는 일 등 각항 조건으로 부의 수용이 감축된 것은 역시 과연 얼마인가? 비록 다른 고을이라 하더라도 오히려 그 대신을 지급해야 하는데 더구나 본부란 말인가? 이러한 일에 처음부터 연석(筵席)의 하교가 있었음에도 전 수령과 현 수령이 번거로움을 혐의하여 모두 아뢰지 않았고 조가에서도 거를이 없어 지금까지 조처가 없으니 좌상(左相)은 이를 알고 당해 부의 전 부사와 현 부사에게 물어 일정시한 대신 지급할 것과 해를 따져 대신 지급할 것 및 길이 대신 지급할 것을 분등 구획해서 초기하라고 비국낭청에게 전유하게 하라.” 하였다.

今八月二十四日同副承旨入侍時，傳曰，朝廷之視本府如部內，凡有疾苦，豈可泛視乎，聞該府使言有舊陳百許結云，設令今年，有新軌之災結，皆當盡歸於流來陳棄之，所謂舊初不名色，民何以食其效，土何能蠲其稅，然則本府地方，雖謂之不入於俵分之列，非過語，是豈朝家爲本府之意乎，水原府舊陳田畓，從實數卽令頒給事，廟堂知悉，分付該曹·該道，本府支應之需，亦有別般區劃者，昔之收稅，必今爲所重，免其賦果幾許乎，外此如限年給復等各項條件府用之減縮，亦果幾許乎，雖在他邑，猶當給其代，況本府乎，以此事自初有筵教，而前倅時倅，嫌於煩屑，皆不提奏，朝家亦未遑，至今無措處，左相知悉，問于該府前府使時府使處，限年給代者，計年追給代者，永爲給代者，分等區劃後草記事，令備郎傳諭。

<비변사등록 179책, 정조 15년 1791년 08월 24일(음)>

경제/재정

水原府의 舊陳은 금년부터 면세하고 給代는 本府의 大同米로 劃給하기를 청하다

○ 비변사에서 아뢰기를, “수원(水原)의 오래 묵은 것의 탈급(頒給:탈로 인정해 줌) 및 일정 연한 대신 지급하는 것과 연수를 따져 대신 지급하는 일 또는 길이 대신 지급하는 것 등을 나누어 구획한 뒤 초기하라고 명하셨습니다. 본부에 과연 처음부터 명목이 없는 오래된 58결(結) 및 내에 개먹어 떨어진 62결 등 도합 1백 21결 9부(負)가 내려오며 탈급지 않음으로 하여 매년 배분된 새로운 재결(災結)이 모두 이에 돌아가 재해 입은 당년의 백성은 실질 혜택을 입지 못하니 가없는 일이 이보다 심한 것이 없습니다. 위 처음부터 개먹어 떨어진 것으로 되지 않은 오래된 세 명목으로서 탈급이 되지 않은 실제의 수를 금년부터 아울러 탈급이 되도록 당해 조(曹)와 도에 분부하고, 수호군(守護軍)의 복호(復戶) 60결, 처음에 정

한 화소(火巢)안 전답 1백 33결, 다시 정한 화소 안 전답 28결, 새 고을의 공해(公廩)가 들어앉은 땅의 전답 21결에 있어서는 1결에 쌀 3두 5승씩으로 계산하면 도합 쌀이 56석이 됩니다. 이는 부(府)의 용도에서 매년 길이 감축되는 것으로서 이주(移住)한 백성의 복호 5백결을 1결에 쌀 3두 5승씩으로 계산하면 합하여 쌀이 1백 16석 10두가 되며 이는 부의 용도 10년 치를 감축한 것입니다. 기유년 국(局)안 전답으로서 먼저 산 곳이 8결, 수호군 복호 60결, 새 고을이 들어앉은 곳의 전답 9결 및 경술년 수호군 복호 60결, 이주민 복호 5백결, 처음에 정한 화소의 전답 1백 33결, 새 고을이 들어앉은 곳의 전답이 19결로서 1결에 쌀 3두 5승으로 계산하면 두 해 도합 쌀이 1백 84석이 됩니다. 이는 해를 따져 대신 지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무릇 이 3건은 모두 대신 지급하지 않을 수 없는 것으로서 그 대신 지급해야 할 것을 굳이 이웃 고을에 비축한 것을 옮겨와 시끄럽게 할 것은 없고 본부의 대동미(大同米)에서 수에 의하여 획급하되 일이 있는 때를 맞이해서 대동미에 부족이 있을 때에는 전세조(田稅條)에서 대신 획급하면 역시 편의할 듯싶으니 이와 같이 당해 조·청·도·부(曹廳道府)에 분부하고 3건 가운데 기유·경술 두 해의 대신 지급할 것 1백 84석을 1차 지급하는데 그치고, 이주민의 복호에 대한 것이 1년에 1백 16석씩으로서 10년의 복호이니 경술년부터 시작하면 경신년까지 마련할 수 없으니 이러한 내용으로 미리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그리하라고 답하였다.

司啓曰, 水原舊陳頃給及限年給代, 計年追給代, 永爲給代者, 分等區劃後草記事命下矣, 本府果有舊初不名色五十八結零及川浦落六十二結零, 都合爲一百二十一結九負, 而以其流來未頃之故, 每年所俵新災, 盡歸於此, 當年災民, 未蒙實惠, 事之可矜, 莫此爲甚, 上項舊初不以浦落三名色未頃實數, 自今年竝爲頃給之意, 分付該曹·該道, 至若守護軍復戶六十結, 初定火巢內田畝一百三十三結零, 再定火巢內田畝二十八結零, 新邑公廩坐地田畝二十一結, 每結作米三斗五升, 則都合米爲五十六石零, 此府用之每年永爲減縮者, 遷徙民復戶五百結, 每結作米三斗五升, 則合米爲一百十六石十斗, 此府用之十年減縮者, 至於己酉局內田畝先買處八結零, 守護軍復戶六十結, 新邑坐地田畝九結零及庚戌守護軍復戶六十結, 遷徙民復戶五百結, 初定火巢田畝一百三十三結零, 新邑坐地田畝十九結, 每結作米三斗五升, 則兩年都合米爲一百八十四石零, 此計年可以追給代者, 凡此三件, 皆係不可不給代者, 而其所給代, 不必移來傍邑儲置, 以致煩擾, 以本府大同米, 依數劃給, 若值有事之時, 大同有所不足, 則以田稅條代劃, 亦合便宜, 以此分付該曹·該廳·該道·該府, 而三件之中, 己庚兩年追給代條一百八十四石零, 當一次追給而止, 遷徙民復戶條每年一百十六石, 既是十年復戶, 自庚戌爲始, 則至庚申, 不當磨鍊, 此意亦預爲分付何如, 答曰, 允.

<비변사등록 179책, 정조 15년 1791년 08월 28일(음)>

경제/재정

이미 分給한 水原의 軍餉 中 2천석을 쌀로 만들 것을 청한 대로 시행하다

○ 수원부(水原府) 군향(軍餉) 中 나누어 준 것 가운데 2천 석에 한하여 쌀로 만들 것을 청한 경기감사 서정수(徐鼎修)의 장계에 전교하기를, “장청(狀請)에 의해 시행하도록 회유하라.” 하였다.

以京畿監司徐鼎修狀啓, 水原府軍餉太, 已分給中, 限二千石作米事, 傳曰, 依狀請施行事回諭.

<비변사등록 179책, 정조 15년 1791년 10월 21일(음)>

경제/재정

水原府의 戶役을 官用條로 給代하기로 한 것 중에 누락된 것도 같이 급대하다

○ 이번 1월 8일에 좌승지와 정례당상(定例堂上)이 입시켰을 때 경기감사 서정수(徐鼎修)가 아뢰기를, “수원부(水原府)의 각양 호역(戶役)에 관용조(官用條)로 급대(給代)하라는 명령은 실로 조정에서 본읍을 생각해주는 성대한 뜻에서 나온 것입니다만 들으니 ‘기유년(己酉年: 정조13, 1789) 호역의 온 경내를 통틀어 탕감하는 수효와 경술년(庚戌年: 정조14, 1790)·신해년(辛亥年: 정조15, 1791) 두 해의 감면하는 조목이 모두 누락되었다.’ 하여, 일이 뒤섞였습니다. 이 또한 한결같이 당초의 하교대로 똑같이 급대하는 것이 좋을 듯하므로 마침 말이 나온 김에 감히 양달합니다.” 하니, 임금의 그리하라 하였다.

今正月初八日左承旨與定例堂上入侍時, 京畿監司徐鼎修所啓, 水原府各樣戶役官用條給代之命, 實出朝家軫念本邑之聖意, 而聞己酉戶役通一境蕩減之數, 及庚戌·辛亥兩年蠲減條, 俱爲見漏云, 事涉斑駁, 此亦一依當初下教, 同爲給代似好, 故適因言端, 敢此仰達矣, 上曰, 依爲之.

<비변사등록 180책, 정조 16년 1792년 01월 10일(음)>

경제/재정

水原府의 結錢을 강화읍에 받아 두라고 전교하다

○ 강화유수 유당(柳戀)의 장계에 급대목(給代木)을 구획하여 결전(結錢)을 독촉해 수봉할 것에 대하여 전교하기를, “수원부(水原府)의 결전을 본 읍에서 수봉해 남겨둘 것을 본도 감사에게 분부하라.” 하였다.

以江華留守柳戀狀啓, 給代木區劃結錢督捧事, 傳曰, 水原府結錢捧留本邑事, 本道監司處分付.

<비변사등록 180책, 정조 16년 1792년 02월 20일(음)>

경제/재정

壯勇營提調 鄭民始가 米租 등을 節目대로 취용할 것을 水原府에 알리자고 하다

이번 2월 초9일 초계문신친시(抄啓文臣親試), 도기유생제술과차(到記儒生製述科次)로 입시하였을 때, 장용영제조(壯勇營提調) 정민시(鄭民始)가 아뢰기를, “수원판관 김노성(金魯成)의 첩보를 보니, 이번 수원부의 유수·판관 두 아문(衙門)에서 쓸 것을 새로 구획한 가운데 유수아문의 각 둔미(屯米) 24석은 혹 이미 상납했거나 혹은 재탈(災頽)에 편입되고, 환모(還耗) 역시 각 아문에서 이미 취해 쓴 까닭에 부족한 것이 5백 2석이고, 판관아문에 획급된 궁결(宮結) 작미(作米) 1백 38석 및 둔미(屯米) 80석을 이미 상납했는데 어찌해야 하느냐고 하였습니다. 미조(米租) 등 곡물을 기왕에 각 아문에서 취용했거나 상납하였으면 형세가 환추(還推)하기 곤란하니 금년에는 불가불 대신 지급해서 숫자를 충당하고, 유수·판관아문의 부족미 2백 42석은 본부에 있는 저치미 중에서 획급하고 유수아문의 환모(還牟) 5백 2석은 부근 고을에 회부(會付)된 상진조(常賑租) 중에서 이 숫자만큼 획급해 보낼 것을 경기감영에 분부하고, 명년부터 비롯해 절목대로 반드시 숫자에 준해 취용할 것 역시 수원부에 알리도록 함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임금의 그리하라 하였다.

또 아뢰기를, “수원부 판관아문에 사역할 노비를 유수아문에서 획송한 것은 노(奴) 7명, 비(婢) 4명으로 이것을 가지고 각 명색으로 나누어 번을 가려 입역(立役)하기란 그 형편이 시행되지 못한다고 합니다. 7명의 노와 4명의 비로 사역하는 것은 과연 매우 구차하고 또 모양도 이루어지지 않는데, 듣자니 수원부의 노비는 본래부터 숫자가 적어 더 획급해 줄 수도 없고, 비록 다른 곳에서 변통하려 해도 요미(料米) 또한 추이(推移)할 길이 없다고 합니다. 이것은 별도로 처리하는 도리가 없어서는 안 되니, 판관아문에 노 9명, 비 6명을 한도

로 모조(某條)에서 책립(責立)토록 하고, 요미는 비변사에서 좋은 방향으로 구획해 새로운 절목에 실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그리하라 하였다.

또 아뢰기를, “수원부의 판관아문은 방금 경영하는데 관서(關西)에서 구획된 돈이 아직 올라오지 않아서 일이 정체를 면하지 못한다고 하니 매우 민망스러워 불가불 다른 곳에서 추이해 제 때 역사를 시작하게 해야 합니다. 외탕고(外帑庫)에 있는 돈 가운데서 우선 마땅하게 요량해 추이해 쓰고, 관서 돈이 올라오는 대로 즉시 되돌려 갚는 뜻으로 분부함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그리하라 하였다.

今二月初九日抄啓文臣親試，到記儒生製述科次入侍時，壯勇提調鄭民始所啓，伏見水原判官金魯成牒報，則今番本府上·貳衙需用新區劃中，上衙之各屯米二十四石，或已上納或入災頃，還耗亦自各衙門已爲取用，故不足爲五百二石，貳衙所劃宮結作米一百三十八石及屯米八十石，已爲上納，何以爲之云矣，米租等穀，既自各衙門已取用或上納，則勢難還推，今年則不可不給代充數，上·貳衙不足米二百四十二石，則本府所在儲置米中劃給，上衙還牟五百二石，則附近邑會付常賑租中，準此數劃送之意，分付畿營，自明年爲始，依節目必準數取用事，亦爲知委該府何如，上曰，依爲之。

又所啓，水原貳衙使役奴婢，自上衙劃送者，奴爲七名，婢爲四名，以此分作各名色，排番立役，其勢末由云，七名奴·四名婢之使役，果甚苟且不成樣，而聞本府奴婢自來數少，無以加劃，雖欲從他變通，而料條亦無推移之道云，此不可無別般區處之道，貳衙奴限九名，婢限六名，使之某條責立，而料米自備局從長區劃，使之載於新節目何如，上曰，依爲之。

又所啓，水原府貳衙今方經紀，而關西區劃錢未及上來，事役未免停滯云，殊甚可悶，不可不從他推移，以爲及時始役之地，外帑庫所在錢中，姑先量宜推移以用，待關西錢上來，卽爲還報之意，分付何如，上曰，依爲之。

<비변사등록 181책, 정조 17년 1793년 02월 10일(음)>

경제/재정

水原府의 留守·判官衙門의 節目을 別單으로 마련하여 들인다고 아뢰다

○ 비변사에서 아뢰기를, “수원부의 유수·판관아문의 절목을 방금 마련해 별단(別單)을 써 들이는데, 수원부 안의 여러 가지 자질구레한 것은 계하하는 절목에 아울러 거론하는 것이 마땅치 않습니다. 이것은 본사에서 개성·강화 양도의 사례를 대략 모방하여 정식으로 삼아 하송할 것을 감히 아뢰입니다.” 하니 알았다고 답하였다.

司啓曰，水原府上·貳衙節目今方磨鍊別單書入，而府中諸般事爲之瑣細者，不當竝舉於啓下節目，此則自本司略倣兩都事例，定式下送之意，敢啓，答曰，知道。

<비변사등록 181책, 정조 17년 1793년 02월 13일(음)>

경제/재정

水原留守 蔡濟恭이 흥년에 大同稅를 거두야 할지 말아야 할지 문제에 대해 논의하다

○ 이번 3월 10일 차대로 입시하였을 때에 수원유수 채제공(蔡濟恭)이 아뢰기를, “흥년에 백성의 형편이 아무리 절박하다고 하더라도 대동세(大同稅)는 받지 않을 수가 없기에 지금도 한창 멈추지 않고 독촉하여 끝마치기를 기약하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 태곡(太穀)은 가장 어려워서 자라 등에 털을 긁는 격입니다. 가령 값이 높더라도 구할 수만 있다면 비록 짐을 팔고 소를 팔아서도 혹시 납부할 수 있겠으나 시장이나 촌락을 따질 것도 없이 태(太)라고 이름 하는 것은 종자가 거의 끊어졌으니, 서글픈 이 궁한 백성은 죽음이 있을 뿐입니다. 이

와 같음을 분명하게 알면서 강제로 납부를 독촉하는 것은 백성을 자신의 아픔처럼 여기시는 덕의(德意)를 본받음이 아닐 것입니다. 비록 그러하나 대동은 바로 유정지공(惟正之供)이라서 늦추거나 줄여 융통할 것을 의논할 수도 없으니 신은 사실 해야 할 바를 알지 못하고 단지 목하 백성의 형편이 만 번이나 절박하고 민망함을 애타할 뿐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본부(本府)를 보는 것이 어찌 타도(他道)에 비교하라. 어찌 전례가 있고 없음을 따지겠는가. 특별히 가을을 기다려 퇴봉(退捧)하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또 아뢰기를, “궁춘(窮春)을 당하여 백성의 굶주림이 날로 심하여 그 접제(接濟)할 방법이란 오로지 민느니 환곡일 뿐인데 본부(本府)의 환곡 수는 예부터 많지 못하였습니다. 금년에는 환호(還戶)가 날마다 추가로 더해진 것이 작년에 비하면 거의 두 배의 숫자에 가까우니 여러 가지 창곡(倉穀)을 절목(節目)에 의거하여 창고를 기울여서 마련하더라도 11순(巡: 순번)을 안배할 수가 없습니다. 부내의 군향 및 산성의 창환(倉還)을 어떤 모양의 명색(名色)을 막론하고 형편상 장차 반유법(半留法)을 지킬 수가 없겠으며 예컨대 그 분수(分數)가 많고 적음은 앞으로 민세(民勢)의 완급(緩急)을 보고 결정할 수 있겠습니다. 신은 마땅히 조심스럽게 최대한 헤아려서 적절하게 하려고 힘쓸 것입니다. 가분(加分)에 관계가 되는 사안이기에 때문에 감히 애타합니다.” 하니 임금이 그리하라 하였다.

또 아뢰기를, “본부의 승보시(陞補詩)는 양도(兩都)의 예에 의거하여 설행(設行)하도록 비국절목에 이미 계하(啓下)되었습니다. 응제과(應製科)는 본부에서 쌓은 공거생(空居生) 이외에 외촌유생(外村儒生)은 응시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승보시와 응제과에 있어서는 다름이 없지 않으니 외촌의 응시 허락 여부에 대하여는 반드시 품지(稟旨)를 한번 거친 뒤에야 거행할 수 있겠기 때문에 감히 애타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일경(一境)을 통틀어 시취(試取)하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또 아뢰기를, “승보시(陞補試)를 일경(一境)을 통틀어 응시를 허락하라는 성교(聖敎)를 지금 받들었습니다. 절목(節目) 중에 제술(製述)과 강경(講經)을 각각 두 사람을 뽑는데 듣자 하니 본부에는 경서(經書) 공부를 과업으로 하는 사람이 매우 적다고 합니다. 가령 외촌(外村)에 간혹 약간의 사람이 있어서 해마다 강경의 방(榜)에 이들로 수를 충당한다고 하더라도 과규(科規)가 그러서는 부당합니다. 송도(松都)에는 승보제술(陞補製述) 원수(元數)가 처음부터 4사람인데 여기서도 역시 강경 두 자리를 제술에 옮겨 줍니다. 한결같이 송도 4사람의 전례에 의거하는 것이 아마도 무방할 듯하기 때문에 감히 애타합니다.” 하니 임금이 그리하라 하였다.

또 아뢰기를, “본부의 환곡이 많지 못함은 환호(還戶)가 날로 증가하여 순번을 안배할 수가 없어서입니다. 그러나 신이 믿는 것은 이미 대동미 1천 5백석을 본부에 받아서 보관하라는 명(命)이 있었으니 앞으로 백성들의 목숨이 절박할 때에 상처 난 사람을 보호하며 갓난 아이를 보호하듯 하는 성상의 심정으로 반드시 별도로 불상하게 여겨줄 단서가 있기 때문에 호분(戶分: 호구에 분급함)이 절순(絶巡: 순번이 끊김)될 것을 염려하지 않습니다. 일전에 혜청(惠廳)으로부터 사복공인(司僕貢人)에게 1천석이 외수(外授)되었으며 공인이 내려왔기에 신이 과연 그 숫자에 의거하여 지급을 허락하였습니다. 며칠을 지난 뒤에 기인(其人)과 공인이 또 외수 5백석을 위하여 내려 왔습니다. 신이 만약 혜청의 지휘를 어기기를 어려워하고 숫자대로 내어 준다면 소위 봉류(捧留)라는 것은 다시 1석도 남은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보리 고개의 긴급할 때에 신이 무엇으로 수족을 움직여서 구령텅이에서 숨을 헐떡이는 생명을 구제할 수가 있겠습니까? 신이 감히 유정지공(惟正之供)의 곡식을 1읍의 사용(私用)에 쓸려는 것이 아니라 원래 그 명색이 처음부터 이미 본부에 봉류되는 물

건이기 때문에 신이 4~5개월을 기한으로 우선 대용(貸用)하고자 하여 감히 이렇게 양달합니다.”

하니 선혜청당상 정민시(鄭民始)가 말하기를, “수원의 환곡이 이미 진분(盡分)이 되었어도 또 산향(山餉)과 군향(軍餉)의 유고조(留庫條) 및 새로 구획된 부근 읍의 환곡 1천석이 있으니 편리한대로 옮겨 쓰면 충분하게 순회를 계속하여 나누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봉류한 곡식은 본시 대동(大同)이며 내영군병(內營軍兵)이 가초(加哨)된 뒤로 부족한 군향의 수가 5천석이나 되기 때문에 이 곡식을 보충하여 사용하여도 아직 수를 채우지 못한 것이 오히려 2~3천석이나 된다면 해부(該府)에 허급(許給)하는 것은 거론할 문제도 아니거니와 또 대동과 군향은 전부터 환분(還分)을 요청하는 예도 없었으니 이번에 대신이 요청하는 것은 수용(需用)의 구처(區處)할 곳이 있음을 자세하게 알지 못하여 그런 듯합니다.

하자 임금이 말하기를, “아뢰 대로 시행하라. 유사(有司)의 말은 이와 같지만 경(卿)의 요청을 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다. 더구나 본부의 백성을 위함에 있어서라. 경의 말대로 시행하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정민시가 말하기를, “대동과 군향은 원래 얻기를 요청하는 예가 없는데 대신이 이런 요청이 있다고 비지(批旨)에 그대로 시행하도록 특별 허락하였습니다. 단지 이 5백석은 이미 군향으로 만들어져서 당연히 금년의 지방(支放)에 수용이 되어야 하니 결코 허급(許給)되기 어렵습니다. 성상께서 만약 특은(特恩)을 베풀고자 하신다면 상납하는 대동(大同) 중에서 3~4백석을 한계로 추대동(秋大同)으로 이작(移作)하여 우선 취용하였다가 가을에 받아서 상납한다면 혹시 옮길 수가 있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가위 조삼모사(朝三暮四)로다. 비록 추대동으로 만든다고 하여도 내년 가을을 기다려서 상납하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또 아뢰기를, “승보시(陞補試)의 식례(式例)는 겨우 이미 품지가 되었으나 단지 지난날 전교(傳敎)한 중의 것을 생각하면 ‘대신과 무장(武將)은 특교의 교지를 기다리라. 차후로 무장이 만약 유수(留守)가 되면 12초승보(十二抄陞補)는 누가 출제하며 누가 고시(考試)하겠느냐? 이는 불가불 한번 품재(稟裁)한 연후에야 때에 임하여 군색하며 다급한 걱정이 없을 것이다’ 라고 하셨기 때문에 감히 이를 양달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일찍이 문임(文任)을 거친 사람이 역시 소견을 진술하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행사직 정창순(鄭昌順)이 말하기를, “무장(武將) 유수(留守)가 고시관(考試官)이 될 수 없으면 혹시 경영(京營)에서 문관 수령 시관(試官)을 별도로 정하는 것이 어찌면 무방 할듯합니다.” 하였고 좌참찬 정민시(鄭民始)는 말하기를, “무장 유수는 이미 고시(考試)하기가 어렵고 문관 수령을 별도로 정함도 역시 방애의 단서가 있을 듯합니다. 이와 같을 때에는 설행(設行)하지 말고 뒤의 문 유수(文留守)를 기다린다면 합설(合設)이 좋을 듯합니다.” 하였다.

예조판서 민중현(閔鍾顯)이 말하기를, “승보시(陞補試)에서 이미 12초(十二抄)를 하게 되면 문관 수령 시취(試取)를 별도로 정하는 것은 반드시 방애와 불편의 단서가 많을 것입니다. 아마도 문 유수의 합설을 기다림만 같지 못할듯합니다.”

하였고, 홍문 제학 이병정(李秉鼎)은 말하기를, “문신 수령을 별도로 정하는 것은 도회시취(都會試取)와 매우 비슷하여 승보시의 골격이 아닌듯합니다. 반상(泮庠: 성균관) 과초(課抄)에도 역시 작년 조와 당년조(當年條)가 합설된 예가 있으니 이번에도 이 예에 의거하여 문 유수의 합설을 기다리는 것이 마땅할 듯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무장(武將)이 차제(差除)되었을 때에는 말을 만들어 장계한 뒤에

퇴행(退行)하여 합설하되 만약 대비(大比)의 시기를 만나면 별도로 장문하여 품지하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민중현이 말하기를, “수원부의 승보시는 마땅히 양도(兩都)의 예에 의거하여 행하고 개성부의 승보시는 달마다 시취(試取)하고 강화부는 승보는 없고 단지 공도회(公都會)가 있어서 3일을 연속 시취하여 양도가 각각 다릅니다. 이번의 수원부의 과시(課試)는 아마도 일정한 법식이 있어야 마땅할 듯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유상(留相)이 내려가서 물정을 탐지하고 추후에 이치에 맞게 장문한 뒤에 본조에서 품처하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今三月初十日次對入侍時, 水原留守蔡所啓, 荒年民勢雖曰切急, 稅大同不可不捧, 今方不住催督, 以期了畢, 而其中太穀, 最是龜背括毛, 設令價直高峻, 若可求得, 則雖至賣舍賣牛, 或可備納, 而無論場市與村閭, 以太爲名者, 殆絕種矣, 哀此窮民, 有死而已, 明知其如此, 而勒使督納, 決非仰體如傷之德意, 雖然大同卽惟正之供, 弛張闊狹, 非可議到, 臣實不知所爲, 只以目下民勢之萬萬切悶仰達矣, 上曰, 視本府豈比他道乎, 何論有例無例, 特爲待秋退捧可也.

又所啓, 當此窮春, 民飢日甚, 其所接濟之方, 惟還穀是恃, 本府穀數自來不敷, 而今年還戶之日日迫付者, 比昨年殆近倍數, 以各樣倉穀, 依節目雖傾庫磨鍊, 而無以排十一巡矣, 府內軍餉及山城倉還, 無論某樣名色, 勢將不得守半留之法, 若其分數之或多或少, 觀前頭民勢緩急, 可以決定, 臣謹當十分商量, 務令適宜, 而事係加分, 故敢此仰達矣, 上曰, 依爲之.

又所啓, 本府陞補依兩都例設行事, 備局節目纔已啓下矣, 應製則府築室居生者外, 外村儒生則不爲許試, 而至於陞補與應製, 不無差殊, 外村之許赴與不許赴, 必一經稟旨然後, 可以舉行, 故敢此仰達矣, 上曰, 通一境試取可也.

又所啓, 陞補之通一境許赴, 纔承聖教矣, 節目中製述講經各取二人, 而聞本府經工爲業者絕少, 設令外村間或有若干人, 年年講經之榜, 以此充數, 科規不當然矣, 松都陞補·製述元數既爲四人, 此亦以講經二窠, 移給製述, 一依松都四人之例, 恐似無妨, 故敢此仰達矣, 上曰, 依爲之.

又所啓, 本府還穀不敷, 還戶日增, 無以排巡, 而臣之所恃者, 既以大同米一千五百石, 有捧留本府之命, 則前頭民命近止之際, 以如傷若保之聖念, 必有所別般矜念之端, 故戶分絕巡, 不以爲慮, 日前自惠廳, 外授一千石於司僕貢人, 貢人下來, 臣果依其數許給矣, 居數日其人貢人, 又爲外授五百石下來, 臣若重違惠廳指揮, 如數出給, 則所謂捧留者, 更無一石餘存矣, 若然則麥嶺緊急之際, 臣何所措其手足, 以濟溝壑嗚嗚之命乎, 臣非敢以惟共之穀, 爲一邑之私, 原其名色, 初既捧留本府之物, 故臣欲限四五朔姑爲貸用, 敢此仰達矣, 宣惠廳堂上鄭民始曰, 水原還穀既以盡分, 又有山餉·軍餉留庫條及新區劃附近邑還穀一千石, 則從便推移, 足以繼巡分給, 且捧留之穀本是大同, 而內營軍兵加哨之後, 軍餉不足之數爲五千石, 故以此穀補用, 而未及充數者, 尙爲數三千石, 則許給該府, 非所可論, 且大同與軍餉, 自前無請得還分之例, 則今此大臣所請, 似未詳知需用之有所區處而然矣, 上曰, 依爲之, 有司之言雖如此, 卿請不可不顧, 況爲本府之民乎, 依卿言爲之可也, 鄭民始曰, 大同軍餉元無請得之例, 而大臣乃有此請, 批旨特許依施, 但此五百石已作軍餉, 當爲今年支放之需, 決難許給, 自上若施特恩, 則上納大同中, 限三四百石移作秋大同, 姑爲取用, 待秋收捧上納, 則或可推移矣, 上曰, 可謂朝三暮四, 雖作秋大同, 待明秋上納可也.

又所啓, 陞補式例, 才已稟旨, 而但念向日傳教中, 有大臣·武將須特教之教, 此後武將若爲留守, 則十二抄陞補, 有誰出題, 有誰考試乎, 此不可不一番稟裁然後, 可無臨時窘急之患, 故敢此仰達矣, 上曰, 曾經文任, 亦陳所見可也, 行司直鄭昌順曰, 武將留守不可爲考試, 則或自京營, 別定文倅試官而爲之, 似或無妨矣, 左參贊鄭民始曰, 武將留守既難考試, 別定文倅, 亦似有掣礙之端, 如此之時, 則勿爲設行, 待後文留守, 則合設似好矣, 禮曹判書閔鍾顯曰, 陞補既

爲十二抄，則別定文倅試取，必多掣礙難便之端，恐不如遲待文留守合設矣，弘文提學李秉鼎曰，別定文倅殆若都會試取，恐非陞補體段，泮庠課抄，亦有昨年條・當年條合設之例，此亦依此例，待文留守合設似宜矣，上曰，武將差除時，則措語狀啓後退行合設，而若值大比之期，別爲狀聞稟旨可也，鍾顯曰，水原府陞補，當依兩都例爲之，而開城府陞補，則逐朔試取，江華府則無陞補，而只有公都會，連三日試取，兩都各異，今此水原府課試，恐當有一定之式矣，上曰，留相下去採探物情，追後論理狀聞後，自本曹稟處可也。

<비변사등록 181책, 정조 17년 1793년 03월 10일(음)>

경제/재정

備局堂上 鄭民始가 가을에 水原 부근 각 읍에 京司의 句管 곡식의 이전 문제를 아뢰다

○ 이번 6월 20일 우승지가 입시하였을 때에 비변사 당상 정민시(鄭民始)가 아뢰기를,

“수원(水原)의 환곡(還穀)은 본래 많지 않은데다 또 본부의 수용의 보충 때문에 진분(盡分)하여 취모(取耗)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막중한 거류(居留:유수)의 곳에 1포도 유고(留庫)된 곡식이 없다면 일의 이치에 맞지 않아서 지금 변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경기(京畿) 내의 곡부(穀簿) 재고가 비록 부족하나 4~5천 포의 곡물을 편리한 대로 많은 곳에서 덜어 부족한 곳에 보태는 것은 매우 어려운 지경에 이르는 않을 듯하니 가을을 기다려서 본부 부근의 여러 고을의 경사(京司) 구관곡(句管穀)을 5천 석에 한하여 우선 본부에 이전하여 추이하여 유고하도록 하는 일을당해 도와 당해 부에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리하라. 경기 내에 곡부 재고가 충분히 마련할 수 있겠는가? 관찰사와 왕복 논의하여 즉시 장점을 따라 구처하고 뒤를 따라 5천 석을 가획(加劃)하여 1천 석에 준하여 공용의 수요로 하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조심태(趙心泰)는 말하기를, “수원부의 어전(御前)의 전배(前排:어가 앞에 늘어서는 궁속)가 원행(園幸)할 때에 영을 기다리는 것을 이미 남한산성의 예를 이끌어서 일의 체면을 높일 뜻으로 거행한 지 불과 몇 해만에 전배의 모양을 점점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외모의 피곤하고 잔약함은 잠시 그대로 두고 근착(根着:근본이 확실함)이 또 다시 분명하지 못하여 도망하는 자가 그 사이에 많이 있습니다. 유수(留守)가 어가 앞에 가까이 하는 것은 마침내 매우 미안하여 우러러 여쭙 바가 있었으니 지금에 이전대로 명령을 기다리는 것이 가벼이 앞선다고 말을 하는데 의리의 분수로 헤아려 보면 아마도 신중히 하는 도리가 아닌 듯합니다. 다만 삼가 생각하건대 본부는 이미 본영외사(本營外使)의 일을 겸하여 군무의 소중함이 전에 비교해 더욱 특별합니다. 그렇다면 근래에 양정(良丁)의 신수(身手)가 좋고 배경이 좋은 자를 비록 얻기 어렵다고 하나 본부의 인민이 많은 중에 널리 더 가려 뽑아서 특별히 연습을 시키면 20쌍의 순뇌(巡牢:순령수(巡令手)와 뇌자(牢子))는 어찌 수를 채우지 못할 리가 있겠습니까? 신의 뜻은 본부로부터 각별히 정하게 뽑아서 이전대로 거행하는 것이 아마도 일의 뜻에 합당할까 합니다.” 하니 임금이 그리하라 하였다.

今六月二十日右承旨入侍時， 備局堂上同爲入侍時， 備局堂上鄭民始所啓， 水原還穀自來不敷， 且因本府需用之添補， 不得不盡分取耗， 以莫重居留之處， 無一包留庫之穀， 不成事理， 不可不趁今變通矣， 畿內穀簿雖曰不足， 四五千包穀物之從便裒益， 似不至其甚難， 待秋以本府附近諸邑京司句管穀， 限五千石爲先移轉本府， 以爲推移留庫之地事， 分付該道該府何如， 上曰， 依爲之， 畿內穀簿足可拮据乎， 往復道伯， 卽爲從長區處， 從後加劃五千石， 以準千石公用之需， 可也， 趙心泰曰， 水原府之以御前前排， 待令於園幸時者， 既援南城之例， 以尊事面之意， 而舉行不過數年， 前排漸不成樣， 外貌之疲殘姑舍之， 根着又復不明， 逃走間多有之， 留守以昵近駕前，

終涉未安，有所仰稟，則今之以依前待令，輕先爲說，揆以義分，恐非慎重道理，而第伏念本府既兼本營外使，軍務所重比前尤別，則近來良丁之好身手有根着者，雖曰難得，本府人民之衆，廣加抄擇，另爲鍊習，則二十雙巡牢，豈有未充數之理乎，臣意則自本府各別精選，依前舉行，恐合事宜矣，上曰，依爲之。

<비변사등록 181책, 정조 17년 1793년 06월 20일(음)>

경제/재정

備局堂上 鄭民始가 水原의 還穀을 이전하는 문제에 대해 논의하다

○ 이번 6월 30일 비변사 품사 당상이 입시하였을 때에 비변사 당상 정민시(鄭民始)가 아뢰기를, “수원(水原)의 환곡을 이전하는 일을 경기감사에게 왕복 논의를 하였더니, 말하기를 ‘먼저 5천 석을 이송하고 가을을 기다려서 미루어 옮길 듯합니다. 각 아문에 분배하는 구관곡은 비변사에서 구관하는 곡식 중에 2천 석을 마땅히 이송해야 하지만 다만 원래 수효가 6천 석이기 때문에 반분한 모곡이 3백 석이 됩니다. 그 중에 절반 1백 50석을 경기 감영에서 매년 청하여 얻어서 지방(支放)의 자료로 보충하여 썼습니다. 지금 만약에 2천 석을 제하여 내면 원래 곡식이 줄어 4천 석이 되니 반분한 모곡은 2백 석에 지나지 않습니다. 경기 감영의 절반을 취하여 쓴 숫자로 저절로 감축을 이루니 이것이 편하지 못합니다.’ 하였습니 다. 해영(該營)의 지방은 이미 염려하지 않을 수 없고, 또한 2천 석을 비록 수원에 이송 하였으나 이는 당연히 유고조(留庫條)로 해야 할 것입니다. 경기도에 있는 4천여 석 중에 비록 이전대로 3천 석을 분급하여 두 곳에 있는 것을 통계하면 반류반분(半留半分)의 수효는 그대로여서 손실이 없습니다. 비변사에서 담당하는 곡식 중에 2천 석을 수원에 이송하여 유고조에 보태고, 경기도에는 3천 석을 분급하여 이전대로 취모하여 사용하도록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그리하라 하였다.

今六月三十日備局稟事堂上入侍時，備局堂上鄭民始所啓，水原還穀移轉事，往復於京畿監司，則以爲，先移送五千石，待秋似可推移，而分排於各衙門，旬管穀則備局旬管穀中，二千石當爲移送，而但元數六千石，故半分耗爲三百石，其中折半一百五十石，自畿營每年請得補用於支放之資，今若除出二千石，而元數減爲四千石，則半分耗不過二百石，畿營之折半取用之數，自致減縮，此爲難便云，該營支放，既不可不念，且二千石雖移送水原，此當爲留庫條，京畿所在四千餘石中，雖依前以三千石分給，通計兩處所在，則半留半分之數，自如而無損矣，備局旬管穀中，二千石移送水原，添補留庫條，京畿則分給三千石，依前取耗以用之意，分付何如，上曰，依爲之。

<비변사등록 181책, 정조 17년 1793년 06월 30일(음)>

경제/재정

水原留守 趙心泰가 平薪鎭 牧場을 없애고 屯田을 설치하는 문제에 대해 논의하다

○ 이번 9월 29일 사복시제조와 수원유수(水原留守)가 입시하였을 때에 수원유수 조심태(趙心泰)가 아뢰기를, “평신진(平薪鎭)의 목장을 파하고 말을 옮겨 외영(外營)에 떼어주고 목장에는 둔전을 설치하는 것으로 일찍이 품정(稟定)한 바가 있습니다. 이제 추수할 때가 닥쳤고 조세를 거둘 때가 멀지 않았으니 이런 때에 한쪽으로 결정한 뒤에야 지장이 없을 듯하기에 감히 이렇게 양달합니다.” 하니, 임금이 그리하라 하였다.

또 아뢰기를, “평신진의 목장을 파하고 말을 옮기고 둔전을 설치하며 말을 외영에 떼어주는 것은 이제 이미 결정하여 윤허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목자(牧子) 5백명 중에서 50명을

창택(倉宅) 목장에 그대로 두는 목자로서 덜어내면 남는 일꾼이 4백 50명이 됩니다. 둔전을 설치한 뒤에는 둔군(屯軍)이 없어서는 안 되니, 이 4백 50명을 파정(把定)하여 둔군으로 삼되, 둔전을 설치한 각처에는 으레 신역(身役)을 바치고 대오(隊伍)를 만들며 농사도 동시에 짓게끔 하는 규정이 있으니, 이곳도 다른 곳의 예에 따라 둔군으로서 초(哨)를 만들고 외영에 떼어 부쳐서 절제를 받도록 하고, 신역은 쌀 6승(升)으로 정식을 마련하여 외영에서 거두어들여 군량을 넉넉하게 하는 것이 사의(事宜)에 합당할 듯하기에 감히 이렇게 양달합니다.” 하니, 임금의 그리하라 하였다.

○ 또 아뢰기를, “지금 이미 목장을 파하기로 하였으니 마필을 옮기는 것이 먼저 해야 할 일입니다. 세 곳 목장의 원래 목마 5백 50필 중에서 창택 목장에서 기를 1백 필을 제하고 남는 말 4백 50필에 대하여 지금 막 사복시제조와 좋은 쪽으로 상의하니, 마필의 수효를 나누어서 수원(水原)과 홍원(洪原)의 목장, 남양(南陽)의 대부(大阜)·영흥(靈興)·이작(伊作)·선감(仙甘) 등 여러 섬 및 강화(江華)의 초지(草芝) 등의 목장에 이송하되, 평신진에 있는 목장을 외영에 전속케 한 뒤에는 창택 목장은 약간의 마필을 방목한다는 이유로 전처럼 사복시에서 구관하는 것은 불가한 일이니, 이것도 일체로 외영에 넘겨주어 말이 길러지는 대로 전마(戰馬)로 가져다 쓰는 것이 임시적인 편의에 합당할 듯합니다. 그리고 제도를 처음 시행할 때에 반드시 과조(科條)를 엄하게 세우고 절목(節目)을 의논해서 정하고 마적(馬籍)을 만들어 두어서 영구히 준행하게 한다면 실효가 있을 듯하기에 감히 이렇게 양달합니다.” 하니, 임금의 그리하라 하였다.

○ 또 아뢰기를, “둔전의 정세(定稅)가 1천포에 가까운 데다가 또 둔군이 역미(役米)로 바치는 것이 있어서 외영에 실어다 바칠 때에 배로 운반해야 할 형편이라 완전하고 튼튼한 배를 빌리는 것은 본래 그만 둘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삼가 생각건대, 각 진병(鎭兵)들의 방선(防船)을 오래도록 항구에 메달아 두고 썩고 좀먹게 내버려 두는 것은 아무래도 주楫(舟楫)을 정리하여 불의의 사태에 대비하는 뜻이 아니니, 차례로 돌아가며 항해하여 실용이 되게 해야 한다는 식자(識者)들의 논의가 있어 온지가 오래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대로 내버려둔 것은 크게 잘못된 일입니다. 이후로는 본진의 병선으로 세곡을 실어다 바치는 것을 금년부터 규칙으로 정하여 거행하는 것이 우선 시험해 본다는 요체에 합당할 듯하여 감히 이렇게 양달합니다.” 하니, 임금의 그리하라 하였다.

○ 또 아뢰기를, “본진(本鎭)의 공해(公廩)가 거의 모두 기우러지고 무너져 지금 곧 고쳐 지을 계획이나 재목이 구간(苟艱)하다고 합니다. 본진의 경내에 있는 의송산(宜松山)의 풍락송 중에서 집짓는 데 들어가는 만큼 수영(水營)에 보고하고 가져다 쓰라는 뜻으로 통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임금의 그리하라 하였다.

○ 또 아뢰기를, “지금 마침 입시한 김에 성역소(城役所)의 일에 대해 양달할 것이 있습니다. 성역소의 지방(支放) 문제로 금년 여름에 호남의 순창(淳昌), 보성(寶城), 창평(昌平), 흥양(興陽) 등 고을에서 쌀을 사들이고 각 고을의 봉류보장(捧留報狀)을 받기까지 하였습니다. 봄이 되기를 기다려 배로 운반하여 오려고 하는데, 관의 힘을 빌리지 않으면 실로 허술해질 우려가 많습니다. 성역소에서 일을 맡아 주선하고 처리할 장교를 정하여 보내기를 기다려 지방관이 별도로 감색(監色)을 정하여 완전하고 튼튼한 배를 빌려서 즉시 실어 보내라는 뜻으로 본도 도신에게 거조(舉條)를 내어 신칙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임금의 그리하라 하였다.

○ 또 아뢰기를, “성역소에서 장모(匠募:모집한 장인)들에게 급료조로 달마다 용하(用下)하는 것이 액수가 많아서 지계(支計)할 길이 없어서 달포 전에 공미(貢米) 3천 3백 30석 남

것을 매입하여 선혜청에서 다른 공인(貢人)에게 적용하는 예에 의하여 30개월까지 창고에 있는 수등저류(隨等儲留)에 따라 미루어 쓸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신이 올라올 때 장모들이 하소연하는 것을 들으니, 지금처럼 바람이 차고 서리가 많이 내리는 때에 단지 베로 만든 저고리와 바지를 입는 것 밖에는 실로 몸을 감쌀 방법이 없으니 다달이 받는 고가(雇價) 대신으로 목면을 마련하여 지급해 주어서 몸을 가리고 일하게 해 달라고 하였습니다. 비록 추운 겨울철이기는 하지만 역사(役事)를 정지하기는 어려우니 벌거벗은 장모들을 진흙해야하겠으나 관비(辦備)할 길이 없습니다. 위에서 말한 성역소에서 매입한 공미 30개월 조 3천 3백 33석 5두를 선혜청에서 창고에 있는 수등저류에 따라 그 대가로 1석당 무명 3필을 상정가(詳定價)에 의하여 마련하여 콩을 무명으로 바꾸는 몫으로 제해둔 것으로 지급한다면 선혜청으로서는 별로 손해나 이익이 없으며 성역소로서는 매우 긴요하게 쓸 수 있기에 감히 이렇게 양달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리하라. 그러나 이번은 특별히 성 쌓는 일이 소중하기 때문에 이렇게 시행하도록 하지만 이것은 계속할 일은 아니다. 앞으로 쌀과 무명을 서로 바꾸지 않을 수 없어서 저류미(儲留米)를 가져다 쓸 일이 있으면 반드시 연품(筵稟)을 거치고 문적(文跡)이 있는 뒤에야 거행하되, 한결같이 각 도에서 벼와 보리를 바꾸는 경우에 장문(狀聞)하거나 비변사에 보고하여 품처(稟處)하는 예에 따라 하라고 묘당에서 해청(該廳)에 알려주게 하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今九月二十九日司僕提調·水原留守入侍時, 水原留守趙心泰所啓, 平薪鎭罷牧移馬, 劃付外營, 設置屯田事, 曾有所稟定矣, 今則秋穫在即, 收稅不遠, 趁此時指一定奪然後, 似無窒礙之端, 故敢此仰達矣, 上曰, 依爲之.

又所啓, 平薪鎭罷牧移馬設屯劃付, 今已定奪蒙允, 而牧子五百名中, 五十名以倉宅場仍存牧子除之, 則餘丁爲四百五十名矣, 設屯之後, 不可無屯軍, 以此四百五十名把定爲屯軍, 而設屯各處, 例有捧身役作隊伍, 以存寓農之規, 此亦依他例, 以屯軍作哨, 劃屬外營, 俾受節制, 身役則以米六升磨鍊定式, 自外營捧上, 以裕兵食, 恐合事宜, 故敢此仰達矣, 上曰, 依爲之.

又所啓, 今既罷牧, 則移其馬匹, 在所先務, 三場原牧馬五百五十四內, 倉宅場所牧一百四除之, 餘馬四百五十四今方與司僕提調從長相議, 分數移送於水原洪原場·南陽大阜·靈興·伊作·仙甘諸島及江華草芝等場, 而平薪一場專屬外營之後, 倉宅場以其若干馬匹之放牧, 自司僕不可如前句管, 此亦一體付之外營, 隨其所養, 取輔戰馬, 恐合權宜, 而設施之初, 必嚴立科條, 議定節目, 成置馬籍, 永久遵行, 則似有實效, 故敢此仰達矣, 上曰, 依爲之.

又所啓, 屯田定稅既近千包, 且有屯軍役米所捧者, 輸納外營之際, 勢將船運, 而賃得完固, 本自不已矣, 仍伏念, 各鎭兵防船之長掛汊港, 任其朽蝕, 終非整理舟楫以備不虞之義, 而輪回駕海, 俾作實用, 識者之議厥惟久矣, 迄今因循大是欠事, 從今以往, 本鎭兵船輸納稅穀事, 自今年定式舉行, 恐合先試之要, 敢此仰達矣, 上曰, 依爲之.

又所啓, 本鎭公廨舉皆傾頽, 方謀改建, 而材木苟艱云, 本境所在宜松山風落松中, 隨其所入, 以爲報水營取用之意, 知委何如, 上曰, 依爲之.

又所啓, 今適入侍, 以城役所事, 有仰達者矣, 爲役所支放, 今年夏間買米於湖南淳昌·寶城·昌平興陽等邑, 至受各邑捧留報狀, 將待開春船運以來, 而若不藉力於官, 實多疎虞之慮, 待役所定, 送幹事將校自地方官別定監色, 賃得完固船隻, 趁則輸送之意, 出舉條申飭本道道臣何如, 上曰, 依爲之.

又所啓, 役所匠募料條逐朔用下者, 厥數夥然, 支計無路, 月前買得貢米三千三百三十石零, 自惠廳依他貢人例, 限三十朔從庫中隨等儲留, 以爲推用之地矣, 臣於上來時, 聞匠募等白活, 則

顧今風高，重單着布衫袴外，實無絲身之策，月受雇價之代，以木綿磨鍊上下，俾得掩體應役云云矣，雖是寒節，有難停役，則赤脫匠募，在所軫恤，而許多木綿辦備無論，上款役所，買得貢米三十朔條三千三百三十三石五斗，自惠廳從庫中隨等除留，其代每石木三疋，依詳定價磨鍊，以太作木條除留者上下，則在惠廳，別無損益，在役所，爲用甚繁，敢此仰達矣，上曰，依爲之，今番則特爲城役所重，有此許施，而此非續續爲之者，此後如值米木不得已互相換色儲留取用之事，必經筵稟，有文跡然後舉行，一依諸道租牟換作狀聞或報司稟處之例爲之事，令廟堂該廳知悉可也。

<비변사등록 182책, 정조 18년 1794년 09월 30일(음)>

경제/재정

將卒들의 給料을 留庫된 몫에서 쓰고 돈으로 대신 남겨 本米로 바꾸는 방도를 아뢰다

○ 총융청에서 아뢰기를, “본청 초기(草記)에 대한 비지(批旨)에서 ‘선혜청에서 방계(防啓)하고 기영(畿營)에서 방보(防報)한다니, 그렇다면 본청 장졸들의 급료는 어떻게 지급할 것인가? 이치를 따져 초기하는 것이 좋겠다.’ 고 명을 내리셨습니다. 금년 봄 이전절목(移轉節目) 중에 만약 봉류(捧留)하거나 돈으로 대봉(代捧)할 때가 있으면 다른 아문의 곡식을 옮겨와서 급대(給代)하도록 이미 계하(啓下)받아 정식을 정했습니다. 월과미(月課米)는 바로 수원(水原)에 급대하는 몫에서 해마다 응당 지급하는 것인데 예하(預下)한다는 이유로 선혜청에서 저지를 당하고, 원곡(元穀)을 봉류할 때에 모조(耗條)를 실어다 바치는 것은 급료가 모자랄까 걱정되고 민간에 폐단을 끼친다는 이유로 기영에서 저지를 당하였습니다. 사세가 이 지경이 되었으니 실로 달리 손 쓸 길이 없고 오직 유고(留庫)한 몫에서 옮겨오는 한 가지 길이 있을 뿐입니다. 남겨둔 향곡(餉穀)은 일의 체통이 지극히 엄중할 뿐만 아니라 그 간의 사정이 전과는 크게 다르니 환곡을 나누어 줄때 돈으로 대신 남겨 두었다가 봄에 환곡을 내주고 가을에 받아들일 때가 되면 도로 본미(本米)로 바꾸는 것입니다. 지금은 향곡을 모두 이전한 뒤라 본영에서 다시 환곡으로 나누어 줄 곡물이 없어서 앞으로 돈을 곡물로 바꾸어 포함을 보충할 길이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감히 진청(陳請)할 계획을 하지 않을 수 없었던 까닭입니다. 이번에 장졸들의 급료가 중지될까 특별히 진념하셔서 이처럼 자상하고도 간곡한 비교(批敎)를 내리시니, 신이 어찌 감히 향곡을 남겨두는 일의 체모가 중하다하여 성상의 훌륭한 뜻을 본받는 도리를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우선 유고되어 있는 1만 6천석 중에서 1년 치 급료를 헤아려 덜어내어서 가져다 쓰고 돈으로 대신 남겨두었다가 도로 본미로 바꾸는 방도는 앞으로 다시 헤아려 처리하는 것이 편의에 합당할 듯하니, 묘당에서 품지(稟旨)하여 분부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답하기를, “일전에 연석에서 경이 아뢰는 말을 듣고 유고한 몫 중에서 가져다 쓰는 것으로 하고한 일이 있는데, 내 생각은 처음부터 이와 같았다. 이 초기한 것을 가지고 묘당에서 전전 총융사에게 물어서 이치를 따져 초기하여 품처(稟處)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摠戎廳啓曰，本廳草記批旨內，惠廳防啓，畿營防報，然則本廳將士何以支放乎，論理草記可也，事命下矣，今春移轉節目中，或有捧留代錢之時，以他衙門穀推移給代事，已爲啓下定式，月課米卽水原給代條之逐年應下者，而以其預下，見阻於惠廳，元穀捧留之時，輸納耗條，爲慮支放不足，而以其民弊，見阻於畿營，事勢到此，實無他措手之道，而惟有留庫條推移一路，非但留餉之事體至爲嚴重，其間事情與前大異，保還分給之時，以錢代留，及當春糶秋糶，還作本米矣，今則餉穀盡爲移轉之後，自臣營更無還分之穀物，前頭之錢化爲穀，充補欠逋將無其路，此所以

不敢爲陳請之計者也，今者特軫將士之停料，批教若是諄復，臣何敢以留餉之體重，不思仰體德意之道乎，姑就留庫一萬六千石中，量其一年料條，除出取用，以錢代留，還作本米之道，從後更商處之似合便宜，令廟堂稟旨分付何如，答曰，日前筵中，聞卿所奏，以留庫條取用，已有下教者矣，予意則自初如此，以此草記，令廟堂問于前前摠使論理草記稟處可也。

<비변사등록 182책, 정조 18년 1794년 10월 22일(음)>

경제/재정

水原留守 趙心泰의 狀啓대로 捧留한 大同米의 劃給을 시행할 것을 청하다

○ 비변사의 계사에, “지금 수원유수 조심태(趙心泰)의 장계를 보니, ‘본부(本府)에서 가장 우심(尤甚)한 고을에 의탁할 곳이 없는 백성 6백 50명[口]에게 어렵게 마련한 곡물로 동절(冬節)까지는 편리에 따라 구제하고, 정월에 배순(排巡)을 시작하는데 굶주린 백성에게 환곡(還穀)과 진휼(賑恤)할 수량을 분류하여 전체의 곡물을 뒤따라 등문(登聞)하여 주진(賙賑)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납미(納米)는 이미 군교(軍校)들의 봉급의 수요에 관계되므로 올해에 장청(狀請)한 원곡(元穀)의 정퇴(停退)와 대전조(代錢條)의 합계 9백 16석(石) 영(零)은 지금 기전(畿甸)의 예에 의거하도록 하고, 지차(之次)와 우심(尤甚)에 대하여서도 또 대전(代錢)을 허락해 주면 부족한 쌀쪽[米邊]의 합이 1천 9백 2석(石) 영이 되는데 5백석(石)은 본영(本營)에서 바친 것으로 지방(支放)에 끌어다가 보충하려고 하나, 그 밖에 부족한 수는 본부(本府)에다가 작년에 봉류(捧留)하였던 대동미 1천 4백석(石)을 특별히 획부(劃付)해 주도록 허락해 준다면 삼가 분배(分排)하여서 지금 계획이 급하게 간핍(艱乏)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전(代錢)은 매석(每石)에 6냥씩으로, 합이 8천 4백 냥 8전을 대류(代留)하도록 묘당에서 품지하여 분부하게 해 주십시오.’ 하였습니다. **본부(本府: 수원부)의 지출**은 모든 납미(納米)에 전부 의존하는데 대전은 이미 많이 있으나 지급할 계획이 없으니, 이번에 봉류한 대동미 1천 4백석(石)을 획급해 달라고 청한 것은, 이 방법밖에 할 수 있는 계획이 없기 때문입니다. 대전(代錢)에 이르러서는 돈으로 봉류하는 것이 앞으로 편리에 따라 작미(作米)도 하게 되고, 혹은 돈을 가지고 수용(需用)하는 방법도 될 터이니, 모두 불가할 것이 없습니다. 아울러 장청대로 시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답하였다.

司啓辭，卽見水原留守趙心泰狀啓，則以爲，本府最尤甚無依之民六百五十口，拮据穀物，趁冬節從便接濟，正月巡爲始，分劈還賑飢口都數穀物，追後登聞，以爲賙賑之地，而至於諸般納米既係軍校支放之需，而今年狀請元停退及代錢條，合爲九百十六石零，今依畿甸例，之次，尤甚又許代錢，則米邊不足合爲一千九百二石零，而五百石則自本營方擬牽補支放，此外不足之數，本府昨年捧留大同米一千四百石特許畫付，則謹當分排，支計不急艱乏，而代錢每石六兩貳合八千四百兩以錢代留事，請令廟堂稟旨分付矣，本府支放全資於諸般納米，而代錢既多，無以支計，則今此捧留大同米一千四百石許劃之請，可謂計無出此，至於代錢，則以錢捧留，以爲來頭從便作米，或以錢需用之地，俱無不可，竝依狀請施行何如，答曰，允。

<비변사등록 182책, 정조 18년 1794년 11월 04일(음)>

경제/재정

水原에 捧留한 大同米를 劃付하는 일의 草記에 대해 允許하다

○ 수원(水原)에 봉류(捧留)한 대동미를 획부(劃付)해 줄 일을 초기(草記)한데 대하여 윤허한다고 답하였다.

以水原捧留大同米劃付事草記, 答曰, 允.

<비변사등록 182책, 정조 18년 1794년 11월 04일(음)>

경제/재정

司僕寺提調 徐有防이 平薪 목장을 罷한 後의 처리에 대해 논의하다

○ 같은 날 입시하였을 때, 사복시제조(司僕寺提調) 서유방(徐有防)이 아뢰기를, “얼마 전에 수원유수(水原留守) 조심태(趙心泰)의 진달로 인하여 ‘평薪(平薪)’에 목장을 파한 뒤로 3개 목장의 말의 원수(原數) 중에 1백 필을 그대로 창택장(倉宅場)에 머물러 두었다가, 그것을 길러 가지고 이식(利息)을 취하도록 하라는 일’을 이미 정탈(定奪)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당해 첨사(僉使) 김취명(金就命)의 첩보(牒報)를 삼가 보니 ‘창택장에는 본래 말 36필이 있는 외에 대산장(大山場)의 말 25필을 먼저 이송(移送)해 왔었습니다. 객마(客馬)와 주마(主馬)가 나누어졌다가 합쳤다가 하면서, 그 무리들이 바다를 건너 목장을 나와 민간에 폐해를 끼치므로 머물러 기를 수 없어서 원마(原馬)를 옮겨 방목할 때 이 말들도 아울러 함께 몰아 보내고, 해당(該場)의 토지는 경작을 허락하여 이익을 얻게 하여 주십시오.’ 하였는데, 이는 이미 수원유수가 진달한 바입니다. 지금에 이르러 목장을 파한 뒤 본시(本寺: 사복시)에서 결정하여 처리할 수 없으니 당해 유수에게 장문(狀聞)하게 하여 품처(稟處)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그리하라고 답하였다.

同日入侍時, 司僕寺提調徐有防所啓, 頃因水原留守趙心泰陳達, 平薪罷牧後, 三場馬原數中, 一百匹仍留倉宅場, 牧養取息事, 已有所定奪矣, 卽伏見該僉使金就明牒報, 則倉宅場本在馬三十六匹外, 大山場馬二十五匹先爲移送矣, 客馬・主馬分合其群, 渡海出場, 作弊民間, 無以留養, 原馬移放時, 並與此馬, 而同爲驅送, 該場土地許耕蒙利爲辭, 而此既水原留守之所陳達者, 到今罷牧之後, 自本寺不可決處, 令該留守狀聞稟處何如, 上曰, 依爲之.

<비변사등록 182책, 정조 18년 1794년 11월 18일(음)>

경제/재정

右議政 李秉模가 華城 城役に 關西 會付折米를 取用하는 것에 대해 논의하다

○ 같은 날 입시하였을 때, 우의정 이병모(李秉模)가 아뢰기를, “화성(華城)의 성역(城役)을 비록 이미 정지시켰으나, 용하(用下: 비용으로 쓰는 것)할 물력(物力) 중에 미처 처리하지 못한 것은 지금이라도 변통해 주지 않으면 아니 되므로 관서(關西)의 회부절미(會付折米) 1만 석을 획급하여 편리한 대로 취용(取用)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그리하라고 답하였다. (…)

同日入侍時, 右議政李所啓, 華城城役雖已姑停, 用下物力之未及區處者, 不可不趁今變通, 關西會付折米一萬石劃給, 使之從便取用何如, 上曰, 依爲之, 五千石補用於城役, 五千石劃給該府, 以爲明年幸行時所用, 可也. (…)

<비변사등록 182책, 정조 18년 1794년 11월 24일(음)>

경제/재정

慰諭使 徐榮輔가 康津, 長興 來德島 宮結稅錢, 興陽 上納穀 등등에 대해 아뢰다

비변사의 계사에, “지금 전라도 강진(康津) 등 6읍의 위유사(慰諭使) 서영보(徐榮輔)의 서계를 보니, 그 하나는 ‘강진의 남당포(南唐浦) 소재 병영(兵營) 외창(外倉)의 곡식 3천여 석을 현내(縣內)의 한 면(面)에 환자로 나누어 주니 거민(居民)들이 지탱하기 어려운 일입

니다.’ 라고 하였는데, 한 집에서 받아야 할 것이 거의 수십여 석이 넘으니 이웃이나 친척에게 강제로 받아내는 폐단은 말하지 않아도 알 만합니다. 비록 병영 소속에게 은혜를 보태려고 하는 밀전은 아직도 시정되지 않았고, 현내의 한 면에는 집의 호수(戶數)를 따져 곡식을 헤아려 간략함을 따라 골고루 나누어 준 뒤 그 나머지 수량을 본관(本官)에 붙여주어 부근의 읍창(邑倉)에 이송(移送)하고 이어서 부근 면리(面里)에 나누어 주고, 색락조(色落條: 色耗條)는 값으로 절정(折定)하여 본관에서 해영(該營)으로 수송(輸送)하면, 혜택을 주는 것은 여전하고 민폐는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먼 외지의 이해(利害)는 진실로 해결하기 어려우니, 도신을 시켜 좋은 쪽을 따라 시정하고 즉시 보고를 보내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그 하나는 ‘병영(兵營)의 부성(附城) 2천 호(戶) 외에 나머지 호수는 모두 본관(本官)에 부속시켜 주라.’ 고 하는 일입니다. 오늘날 같이 백성들이 온갖 방법으로 부역(賦役)을 피하려는 시기를 당하여 현재 성 아래 살면서 영구히 군정(軍丁)으로 뽑히지 않게 한다면 그곳에 달려와 살려고 하는 것은 형세로 보아 반드시 그러할 것입니다. 서계(書啓) 중에 말한바 다른 면(面)들이 장차 텅 비려고 한다고 하는 것이 지나친 말이 아닙니다. 2천 호는 전대로 병영에 소속시키지마는 그 나머지는 본관에 소속시켜 다른 곳의 백성들과 같이 군정에 뽑히게 하는 것이 과연 양쪽으로 편리한 방법입니다. 그러나 그들을 나누어 소속에 편입시킬 때에 반드시 시끄러운 단서가 많을 터이니, 역시 도신에게 곤읍(關邑)에 왕복하며 충분히 상의하여 형편에 맞게 규칙을 정하게 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라고 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그 하나는 ‘병영에 진상하는 가미(價米)는 3백여 석을 한도로 신저치(新儲置)로 획급하게 하여, 환자 쌀을 가지고 다시 방아를 찧는 폐해를 제거해 주라.’ 고 한 일인데, 강진의 이 폐단은 일찍이 수의어사의 계문에도 쓰여 있었습니다. 해청(該廳)으로부터 매년 2백여 석의 새 쌀을 획급하여 저치(儲置)하게 한 것이 오늘날까지 준행되었다면 지금 이와 같이 환자 쌀을 획급하라는 말은 매우 의아하니, 반드시 중간에서 환색(換色)한 소치입니다. 우선 관문(關文)으로 엄중하게 조사 신문한 뒤에 처리하도록 하되, 신저치를 획급하는 한 가지 조항에 대하여서는 그냥 두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그 하나는 ‘진도(珍島)에 목관(牧官)이 소재한 장내면(場內面)은 바로 해남(海南) 땅인데 관아(官衙)에서 90리의 거리에 있으며, 삼촌면(三村面)은 바로 진도 땅으로 진도에서 바다를 건너 1백여 리의 거리에 있지만 해남에서는 불과 10리 거리에 있습니다. 삼촌면에 있는 진도의 외창(外倉)은 거의 버려놓은 것과 같은데, 이 두 면에 편리하고 가까운 데로 따라 바꾸어 부속시키고 아울러 군보(軍保)도 바꾸어 소속시키면 읍과 목(牧)이 모두 편리할 것입니다.’ 고 한 것인데, 그 논계한 것은 실로 편리하고 합당한 것이나, 지방을 나누고 합치는 것은 역시 중요한 정책에 관계되므로 도신을 시켜 사정을 자세히 염탐하고 이치를 따져 장문하게 한 뒤에 품처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그 하나는 ‘장흥(長興)의 내덕도(來德島) 등의 섬에 궁결세전(宮結稅錢)이 임자년(1592, 정조 16)에 정식(定式)이 되어 영저(營邸)의 진상가미(進上價米)와 서로 바꾸었으나, 6읍의 진상은 가을까지 정면(停免)하게 되었으니 둔세(屯稅)를 진상가미로 서로 바꾼 것은 마땅히 조정이 있어야 하고 둔세전(屯稅錢)은 내년 가을까지 절반을 정퇴해 주도록 하라.’ 고 하는 일인데, 도민(島民)들이 재앙을 당한 것이 육지보다 더 심하니, 육지 백성이 입는 은혜와 마땅히 똑같이 받아야 하므로, 소청대로 시행하도록 허락해 주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그 하나는 ‘흥양(興陽)의 정미년조(1787, 정조 11) 상납곡이 영암(靈岩)에 이르러 배가 침몰하자 선인(船人)이 곡물 주인에게 간했다고 관청에서 그 뒤에 사면에 의해 풀려나 돌아갔는데 지금까지 사격(沙格)들은 죽었는지 살았는지를 모릅니다. 도신을 시켜서 봄이 되기를 기다려 사실을 조사하게 하여 징수할 만한 곳이 있으면 징

수하게 하고, 징수할 곳이 없으면 탕감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한 것인데, 배가 전복된 지 벌써 여러 해가 되었으나 곡물(穀物)을 아직까지 결말을 내지 못하였으니 놀라운 일이 이보다 심한 것이 없습니다. 도신을 시켜 몸소 사실을 조사하여 징수하든지 탕감하든지 간에 의견을 갖추어 장문하게 한 뒤에 품처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그 하나는 ‘흥양현(興陽縣)에 경술년조(1790, 정조 14)의 세곡(稅穀)을 훔쳐먹은 선주(船主) 이덕기(李德起)가 아직까지 도피하고 있으니, 포도청과 형조(刑曹)에 분부하여 잡아다가 가둔 뒤에 수량대로 징수해 내게 하십시오.’ 한 일인데, 막중한 세곡을 어렵지 않게 훔쳐먹고 또 감히 도피하였으니 기강(紀綱)을 헤아려 볼 때 매우 한심합니다. 빨리 포도청과 형조에 영을 내려 잡아다가 도로 가두게 하고 수량대로 징수해 내게 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그 하나는 ‘해남(海南)·흥양(興陽)·보성(寶城) 등 고을에 호조와 선혜청에 납부할 패선미(敗船米)를 도신에게 친히 사실을 조사하게 하여 오래 된 증열미(拯劣米)를 정식(定式)의 예에 따라 풍년 든 해를 기다려 징수하게 함으로써 영구히 뿌리를 뽑도록 하여 주십시오.’ 하였는데, 증열미는 오래되며 근래 것을 구별하여 돈으로 3냥 혹은 2냥씩 받아들이도록 한 것은 이미 지난 예가 있습니다. 도신에게 분부하여 연조(年條)를 구분해서 등분의 수를 정하고, 책(冊)을 만들어 호조와 선혜청에 보고한 뒤에 풍년이 들 때를 기다려 책의 기록을 살펴 징수함으로써 영원히 발본색원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그 하나는 ‘흥양현의 계축년조(1793, 정조 17) 세금인 콩[太]을 전생서(典牲署)에서 획급(劃給)해 얻고 외지(外地)에서는 민원(民願)에 따라 콩 1석에 1냥 5전을 대가(代價)로 받기로 하였는데, 추성(秋成)을 기다려서 쌀 1석에 모곡(耗穀)까지 아울러 비납(備納)하였습니다. 이는 화성(華城)에서 공인(貢人)에게 사들였는데, 곡식으로 상납하게 되면 비록 풍년이 든 때라도 민폐가 더욱 심합니다. 관전(官錢)의 10분의 2를 받는 예에 따라 2냥 5전의 본색(本色)에 5전을 더하여 함께 3냥을 받아들여 상송(上送)하게 하고, 도내(道內) 능주(綾州) 등 두어 고을에 역시 이와 같은 명색(名色)의 곡물이 있으니, 똑같이 시행하도록 하여 주십시오.’ 하였는데, 위유사가 기왕에 민정을 염탐하고 이와 같이 돌아와 주달하니 이에 따라 시행하도록 해부(該府)와海道(該道)에 분부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그 하나는 ‘제주(濟州)의 3고을 수령과 사객(使客)이 왕래할 때에 강진(康津)·해남(海南)·영암(靈岩) 3고을에 도회(都會)할 곳을 나누어 정하여서 각각 1년씩 돌아가며 거행하게 하였는데, 사객은 늘 영암의 고달도(古達島)에서 순풍이 불기를 기다리므로 비록 본읍(本邑)에서 도회하는 해가 아니더라도 도민(島民)이 폐를 입게 됩니다. 이다음부터는 영암에서 도회하는 해에는 전과 같이 고달도에서 바람을 기다리게 하고, 강진에서 도회하는 해에는 남당포(南塘浦)에서 바람을 기다리게 하며, 해남에서 도회하는 해에는 관두포(館頭浦)에서 후풍하게 하여, 이에 의해 정식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하는 일인데, 해로(海路)가 편리하고 순조로우면 각각 도회년에 따라 그 고을의 포구에서 바람을 기다리게 하는 것은 실로 편리하고 좋습니다. 이와 같이 정식을 하라는 뜻으로 도신에게 분부하고, 바람을 기다리는 장소가 편리한가의 여부는 역시 불가불 다시 자세히 탐문해 보지 않을 수 없으니 이와 같은 내용으로 일체 분부하되, 만일 조금이라도 살피지 못한 단서가 있으면 사유를 갖추어 보고해 올리도록 하여 다시 품처하게 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그 하나는 ‘제주(濟州)에 이전곡(移轉穀)을 들여보낼 때 각각 그곳의 도회관(都會官)이 바람을 기다리는 장소에 제단(祭壇)을 설치하고 곡식을 실은 배가 모두 도착하기를 기다려 날을 잡아 제사를 지내고 배를 출발시키도록 하여 주십시오.’ 하는 일인데, 신(神)이 이르는 것이 마치 물이 땅에 있는 것과 같이 당연한 것이니 이치와 형편으로 볼 때 의논한 바가 매우 합당합니다. 이다음부터는 이와 같이 거행하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그 하나는 ‘진도

군(珍島郡) 조도창(鳥島倉)을 남도진(南島鎭) 부근에 이설하였는데 본도(本島) 경내(境內)의 연속처(連續處)에는 영구히 폐단을 제거해 주십시오.’ 하는 일인데, 각 고을의 여러 섬에는 일찍이 창고를 설치한 일이 없으나 이 섬에만 홀로 설치한 것은 그 까닭이 없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법을 정해 놓은 지가 오래 된 뒤이라 도리어 섬에 폐단으로 된 것이 이렇게 심한 데까지 이르렀으니, 도신에게 분부하여 좋은 쪽을 따라 이설하게 한 뒤에 보고하게 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그 하나는 ‘연해(沿海) 여러 읍(邑)과 제주(濟州)에 고구마[甘藷]를 널리 심도록 하여 주십시오.’ 하는 일인데, 고구마의 씨가 처음 들어왔을 때 의논하기를 혹은 ‘이것을 심는 것이 풍속으로 이루어지면 곡식이 흙과 같이 천하여질 것이다.’ 하였으나 지금 서계(書啓)의 내용을 보니 심고 가꾸는 일이 점점 처음과 같지 않은 것은 오로지 영읍(營邑)에서 빼앗아 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실로 이와 같다면 참으로 인국(隣國)에 소문이 들리도록 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우선 양남(兩南)의 도신과 제주에 분부하여 관청에서 침어(侵魚)하는 폐단을 지금부터 통렬하게 없애게 하고, 많이 심어서 많이 수확한 자는 연역(煙役)을 감해주어 권면(勸勉)하는 바를 알게 하되 이것이 한번 풍속으로 이루어진 뒤에는 절로 명령을 하지 않아도 행하게 되어 나라 가운데 두루 퍼질 것이니, 우선 이렇게 권장하게 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그 하나는 ‘가리포첨사(加里浦僉使) 진덕리(陳德履)와 발포만호(鉢浦萬戶) 안덕항(安德恒)은 녹봉을 내놓아 성을 쌓기도 하고 또는 물길을 만들어 백성들에게 편리하게 하였다고 하며, 구례현감(求禮縣監) 홍호원(洪浩源)은 성가퀴[城堞]를 새롭게 고쳐 경관을 고치지 않은 것이 없다고 하니, 마땅히 포장(褒獎)해야 합니다.’ 하는 일인데, 2명의 진장(鎭將)과 한 명의 고을 수령이 성심으로 봉공(奉公)하였으니 극히 가상합니다. 즉시 해조(該曹)에 영을 내려 등급을 나누어 품처하게 하시고, 발포(鉢浦)의 전선(戰船)에 대하여서도 역시 도신과 수신(帥臣)에게 사유를 갖추어 장문하게 한 뒤에 새로 파낸 물길로 돌아가서 정박하게 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그 하나는 ‘이항(李恒)의 자손으로 태인(泰仁)에 사는 자를 찾아 내어 녹용(錄用)하여 주십시오.’ 하는 일인데, 연전에 해현(該縣)에서 논보(論報)가 없기 때문에 매우 해괴하다고 하였으나 도신에게 그 사손(祀孫)을 찾아내어 등문(登聞)하게 하여 녹용하는 처지를 만들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그 하나는 ‘강진(康津)의 학생(學生) 장지한(張之翰)의 처 오씨(吳氏)를 정포(旌褒)하여 주십시오.’ 하는 일인데, 절행(節行)이 이와 같이 특별하다면 곧바로 해조에게 품처하도록 하십시오. 그 하나는 ‘장흥(長興)의 진사(進士) 위백규(魏伯珪)와 익산(益山)의 사인(士人) 이득일(李得一)을 별달리 수용(收用)해 주십시오.’ 하는 일인데, 위백규는 경전(經典)을 널리 통하고 종족(宗族)을 두루 잘 보살피서 사람들에게 호모하며 감탄하도록 하였으나 나이 70살이 되도록 숨겨지고 드러나도록 하지 않았으니 이는 실로 유사(有司)의 과실입니다. 이득일과 함께 해조에게 품지(稟旨)하고 권장하여 등용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희한다고 답하였다.

司啓辭，卽見全羅道康津等六邑慰諭使徐榮輔書啓，則其一，康津南唐浦所在兵營外倉穀三千餘石，還分於縣內一面居民難支事也，一戶所受幾過數十餘石，則侵隣徵族之弊，不言可想，雖以營屬沾溉之資，尙未釐正，縣內一面，則計戶量穀，從略均俵，以其餘數，付之本官，移送附近邑倉，仍分於附近面里色落條，則以價折定，自本官輸送該營，則沾溉如前，民弊可祛，而遠外利害有難直決，令道臣從長釐正，卽爲報來爲宜，其一，兵營附城二千戶外，餘戶竝屬本官事也，當此民人百計避役之時，見其居在城底，而永勿籤丁，則其所投托，勢所必至，書啓中所謂他面將空者，不是過語，二千戶則依前屬之兵營，其餘則屬之本官，依他民籤丁，果爲兩便之道，而其所分屬之際，必多紛紜之端，亦令道臣爛熳往復於閩邑，定其成規形止報來爲宜，其一，兵營

進上價米限三百餘石，以新儲置劃給，俾除還米改春之弊事也，康津此弊曾入於繡啓，自該廳每年以二百餘石新米劃給儲置，至今遵行，則今此還米劃給之說，萬萬可訝，必有中間換色之致，爲先嚴關查問後處之，而新劃一款置之爲宜，其一，珍島牧官所在場內面卽海南地，而距官九十里，三村面卽珍島地，而距珍島越海百餘里，距海南不過十里，而三村面·珍島外倉便同等棄，以此兩面從便近互爲換付，竝與軍保換屬，以爲呂牧俱便事也，其所論列實合便宜，而土地分合亦關重政，令道臣詳探事情，論理狀聞後稟處爲宜，其一，長興來德等島，宮結稅錢自壬子定式，與營邸進上價米相換，而六邑進上限秋停免，則屯稅之與進上價米相換者，合有關狹，屯稅錢限明秋折半停退事也，島民被災比陸尤甚，則陸民所被之惠，宜蒙一視之政，依所請許施爲宜，其一，興陽丁未條上納穀到靈巖，致敗船人囚於穀主官，其後因赦放送，而到今沙格不知存沒，令道臣待春查實，如有可懲（徵）處徵捧，無則蕩減可也，臭載今至多年，穀物尙無究竟，事之可駭莫此爲甚，令道臣親執查實，徵捧與蕩減間，具意見狀聞後，稟處爲宜，其一，興陽縣庚戌條稅穀偷食船主李德起尙在逃躲，分付捕廳及刑曹，掩捕還囚如數徵出事也，莫重稅穀無難偷食，又敢逃躲，揆以紀綱，誠極寒心，亟令捕廳秋曹掩捕還囚，如數徵出爲宜，其一，海南·興陽·寶城等邑戶惠廳納敗船米，令道臣親執查實，以久拯劣定式例，待年豐徵捧，永永拔本事也，拯劣米之區別久近，以錢三兩或二兩徵捧，果有已例，分付道臣區別年條，定其分數，修成冊報戶·惠廳，以爲待年豐，按此徵捧，永爲拔本之地爲宜，其一，興陽縣癸丑條稅太，自典牲署劃得外受，從民願，太一石價一兩五錢代，待秋成米一石竝耗備納矣，自華城買得於貢人，而以穀上納，雖在豐登之時，民弊滋甚，依官錢什二例，二兩五錢本色加五錢合三兩收捧上送，道內綾州等數邑亦有此名色穀物，一體施行事也，慰諭使既探民情，而有此歸奏，依此施行之意，分付該府及該道爲宜，其一，濟州三邑守令及使客往來時，康津·海南·靈巖三邑分定都會，各一年輪回舉行，而使客每於靈岩古達島候風，故雖非本邑都會之年，島民受弊，此後則靈岩都會之年，依前從古達島候風，康津都會之年，從南塘浦候風，海南都會之年，從館頭浦候風，依此定式事也，海路便順，則各從都會之年，自其邑浦口候風，實爲便好，依此定式之意，分付道臣，而候風所之或便或否，亦不可不更爲詳探，以此意一體分付，如有一分未審之端，則使之具由報來，更爲稟處爲宜，其一，濟州移轉穀入送時，各其都會官候風處所，設置祭壇，待穀船畢到，卜日行祭發船事也，神之格思如水在地，以理以勢，所論甚當，此後則依此舉行為宜，其一，珍島郡鳥島倉移設於南桃嶺傍近本島境內連續處，永久革弊事也，各邑諸島未嘗設倉，此島獨設非無所以，而今於法久之後，反爲島弊，至於此極，分付道臣，從長移設後，報爲宜，其一，沿海諸邑及濟州甘諸廣種事也，諸種之始來也，議或以爲，此若成俗，穀賤如土，而今見書啓辭意，則樹藝之漸不如初，專由於營邑之求索云，審如是也，則誠不可使聞於隣國，爲先分付兩南道臣及濟州，自官侵索之弊，自今痛革，多種而多收者，減其烟役，俾知所勸，一成俗之後，自當不令，而行遍於國中，姑先以此興勸爲宜，其一，加里浦僉使陳德履·鉢浦萬戶安德恒或捐廩築城，或鑿濠便民，求禮縣監洪浩源一新城堞，無不改觀，合有褒獎事也，二鎮將·一邑倅之誠心奉公，極爲可嘉，卽令該曹分等稟處，鉢浦戰船亦令道·帥臣具由狀聞後，回泊於新鑿之濠爲宜，其一，李恒子孫之在於泰仁者，採訪錄用事也，年前該縣之以無論報，極爲可駭，令道臣採訪其祀孫登聞，以爲錄用之地爲宜，其一，康津學生張之翰妻吳氏旌褒事也，節行若是卓異，卽令該曹稟處，其一，長興進士魏伯珪·益山士人李得一別加收用事也，魏伯珪博通經傳，善周宗族，令人欽歎，而年至七十，泯而不章，此誠有司之過也，竝與李得一，令該曹稟旨獎用何如，答曰，允。

<비변사등록 182책, 정조 18년 1794년 12월25일(음)>

경제/재정

道臣에게 분부하여 水原府에 부근 읍의 三賑穀을 參酌해서 마련하여 傳輸하게 하다

○ 비변사의 계사에, “지금 수원유수 조심태(趙心泰)의 장계를 보니 ‘본부(本府)의 올해 흉년은 근래에 드물어서 재앙을 입은 것이 매우 많으므로 조석(朝夕)을 못 이을 재앙이 있는 자에게는 역시 일찍이 진정(賑政)을 의논해야 하는데 들어갈 곡물(穀物)을 미리 준비한 연후라야 구제하여 살릴 수가 있으니, 임인년(1782, 정조 6년)에 있었던 예에 따라 미곡(米穀)이나 피곡(皮穀)을 서로 섞어 5천 석을 한도로 획급할 것입니다. 본부에는 본래 삼진곡(三賑穀)을 추이(推移)할 것이 없어서 부근 고을에 있는 비황(備荒) 체계(帖價)와 상진(常賑) 등의 곡식을 참량(參量)하여 이획(移劃)하여 주도록 묘당에서 품지하여 분부해 주십시오.’ 하였습니다. 전에는 설진(設賑)할 때에는 본부에 영진곡(營賑穀) 등의 곡식 명색이 있었으므로 오히려 본부에서 획급해 줄 수 있었지마는 지금은 모두 군향(軍餉)에 소속되어 지금 이렇게 이전(移轉)해 달라고 청한 것은 형세가 그렇게 된 것입니다. 도내(道內)의 곡부(穀簿)는 본래 충실하지 못하니 청한 대로 구획(區劃)해 주려고 하나 그 방법이 없을 듯합니다. 또한 진휼해야 할 인구가 비록 많다고 하나 미곡과 피곡을 합하여 3천 석만 있으면 거의 골고루 나누어 준다고 하니, 도신에게 분부하여 부근 읍에 있는 삼진곡 중에 이 수량만큼 참작해 마련하게 하고 이어서 해부(該府:수원부)와 상의하여 편리한 대로 전해 수송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답하였다.

司啓曰, 卽見水原留守趙心泰狀啓, 則以爲, 本府今年歉荒挽近所罕, 被災頗甚, 朝夕近止者, 亦嘗議賑, 則所入穀物預先經紀然後, 可以濟活, 依壬寅已例, 參互米皮, 限五千石許劃, 而本府元無三賑穀之推移者, 以附近邑所在備荒帖價・常賑等穀參量移劃事, 請令廟堂稟旨分付矣, 在前設賑時, 則本府有營賑等穀名色, 故猶可以自本府劃給, 而今則皆屬軍餉, 今此移轉之請, 勢所卽然, 而道內穀簿本自不敷, 準請區劃恐無其路, 且念賑口雖多, 若得米皮合三千石, 則庶可排比, 分付道臣, 附近邑三賑穀中, 限此數酌量磨鍊, 仍令往復該府, 使之從便轉輸何如, 答曰, 允.

<비변사등록 182책, 정조 18년 1794년 12월 23일(음)>

경제/재정

京畿監司의 狀請대로 賑穀을 劃給하여 주되 수원부의 3천 석도 移劃하기를 청하다

비변사의 계사에, “지금 경기감사 서용보(徐龍輔)의 장계를 보니 ‘도내의 우심한 고을 10읍과 6진(鎭)에 진휼할 인구의 다과는 미리 확정지을 수는 없으나, 대강 요량해 본 것은 있는데 들어갈 진곡(賑穀)으로 영진곡(營賑穀) 1만 석과 상진곡(常賑穀) 5천 석을 특별히 허락하여 획급해 주도록 묘당에서 품지하여 분부해 주십시오.’ 하였습니다. 16읍진(邑鎭)이 모두 물건이 많고 땅이 큰 곳이 아니므로 들여와야 할 진곡을 스스로 요량할 수 있는데, 수원부의 진곡도 역시 도내의 곡부(穀簿)에서 내어 주어야 하는데 도신이 이것까지 들일 수량에 포함시켰는지의 여부는 모르겠으나 지금 1만 5천 석으로 가령 16읍진과 수원부에 비율에 따라 나누어 주라고 한다면 넉넉히 여유가 있을 것이니 소청대로 획급해 주되, 수원부의 3천 석도 이 수량 가운데서 이획(移劃)해 주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답하였다.

司啓曰, 卽見京畿監司徐龍輔狀啓, 則以爲, 道內尤甚十邑・六鎭賑口多寡, 雖不可先期硬定, 而粗有所料量者, 所入賑穀・營賑穀一萬石・常賑穀五千石特許劃給事, 請令廟堂稟旨分付矣, 十六邑鎭皆非物衆地大之處, 所入賑穀自可料量, 而水原府賑資, 亦當出於道內穀簿, 未知道臣竝此入量與否, 而今以萬五千石, 假令排比於十六邑鎭及水原府, 則可以綽有餘裕, 依所請準劃,

水原府三千石，使之此數中移劃何如，答曰，允。

<비변사등록 182책, 정조 18년 1794년 12월 24일(음)>

경제/재정

華城留守 趙心泰가 沁都別庫와 湖南庫의 財貨를 推移하여 쓰는 문제에 대해 논의하다

이번 2월 10일에 와서 기다리던 제신(諸臣)이 입시하였을 때 **화성유수 조심태(趙心泰)**가 아뢰기를, “행궁 각고(各庫)에 금년에 차례로 두서가 이루어져 가고 절목도 역시 이미 제하하였으나 저장되는 물종은 군색함을 면할 길이 없습니다. 소중한 바를 생각하면 진실로 작은 근심이 아닙니다. 신의 생각에는 강화 별고(別庫)와 호남고(戶南庫)에 쌓아 둔 재화가 조금 여유가 있으면 이 가운데에서 은자 1만 냥과 목면(木綿) 1백 동 및 건어(乾魚)와 해속(醢屬)을 추이하여 나누어 주는 것이 아마도 사의에 합당할 것입니다. 공화(公貨)의 거래는 그 일의 체통이 가볍지 아니하니 대신에게 하문하여 처리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임금의 그리하라 하였다.

또 아뢰기를, “작년에 장인(匠人)과 모군(募軍) 무리들 삭하(朔下)의 의자(衣資)를 위하여 공목(貢木) 6백 8동(同)을 5년으로 한정하여 미리 무역하여 두었는데 성역(城役)을 장차 금년 내 마치려고 기약하지만 돌아보니 눈앞의 재력이 대단히 구차하여 목조(木條)를 도로 작전한 연후에야 수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편한 대로 변통할 일이 한 가지 있습니다. 연전에 균역청에서 빌려 온 돈에 대하여 이 6백 18동의 무명으로 곳간마다 도로 갚는 바탕을 삼고 목대전(木代錢) 6만 1천 8백 냥을 마땅히 균역청에 도로 갚아야 할 금위영·어영청 두 영의 정번조(停番條) 및 기영(箕營)의 구획조(區劃條)로 삼아 숫자에 준하여 해를 한정하여 역소(役所)에 옮겨 지급하면 균역청에서는 돈으로 무명을 바꾸는 데 지나지 아니하여 곳간에서 받아 두는 것이 극히 편리하고 역소에서도 그것을 쓰는 것이 긴질할 뿐 아니라 공역(工役)도 장차 두서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이로써 거조를 내어 균역청에 알리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임금의 그리하라 하였다.

또 아뢰기를, “본부에 있는 내영의 향무사(鄉武士) 등을 지난번에 연교(筵敎)를 받들어 원에 행행할 때에 성상의 파수장으로 정해 파견하려고 하였는데 이미 이 내영에 관계된 향무사는 정탈이 있기 전에는 마음대로 차임하기 어렵습니다. 지금부터는 외영에 수첩군관(守堞軍官)을 차출할 때 전령을 만들어 주고 그 명함을 받은 뒤 녹안(錄案)을 만들어 수첩군관으로 수행한 달과 날로써 부지런히 애쓴 차례를 정해 벼슬한 날짜를 계산해 천전(遷轉)하는 바탕으로 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임금의 그리하라 하였다.

또 아뢰기를, “**외영**의 사체와 규모(規模)는 내영과 똑 같으며 군색(軍色)이 있고 향색(餉色)이 있는 것도 외영과 내영이 역시 같습니다. 종사관을 군색과 향색으로 부르는 것이 걸맞지 아니하고 명실(名實)에도 부합되지 아니하니 외영겸 종사관을 지금부터 그 하는 일에 따라 군색과 향색과 종사관의 칭호를 절목 가운데에 기재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임금의 그리하라 하였다.

今二月初十日來待諸臣入侍時，**華城留守趙心泰**所啓，行宮各庫今歲次第就緒，節目亦已 啓下，而所貯物種無路拮据，言念所重，誠非細憂，臣 意則沁都別庫·戶南庫留在財貨稍有餘裕，就此中 銀子一萬兩·木綿一百同及乾魚醢屬推移分上，恐 合事宜，而公貨去來事面不輕，下詢大臣處之何 如，上曰，依爲之。

又所啓，昨年爲匠募輩朔下衣資，有貢木六百 十八同限五年預買以置者，而城役將以今年內畢築爲期，顧目下財力萬萬苟艱，以木條還爲作錢，然 後可以需用矣，今有一事從便變通者，年前

自均廳 貸來之錢，以此六百十八同木，以爲從庫中還報之地，而木代錢六萬一千八百兩，以禁・御兩營停番條 及箕營區劃條之當爲還報於均廳者，準此數限年 移劃於役所，則在均廳不過以錢換木，而自庫中奉 留極涉便易，在役所，其所爲用不啻切緊，工役亦將 賴以就緒，以此出舉條知委均廳何如，上曰，依爲 之。

又所啓，本府所在內營鄉武士等，向伏奉筵教，以園行時城上把守將派定舉行，而既是內營 所關鄉武士，則未及定奪之前，有難擅便差任，自今爲始，差出外營守堞軍官，成給傳令，受其投刺之後，因爲錄案，以守堞軍官隨行月日，定其勤苦次第，以爲計仕遷轉之地何如，上曰，依爲之。又所啓，外營事體規度一般於內營，而有軍有 餉外內亦同，則從事官之不稱軍色餉色，名實不副，外營兼從事官，自今隨其事爲，以軍色餉色從事官稱號事，載之節目中何如，上曰，依爲之。

<비변사등록 183책, 정조 20년 1796년 02월11일(음)>

경제/재정

성안에 貯置된 還餉을 각 읍장에 나누어 貯置할 것을 청하다

비변사에서 아뢰기를, “방금 광주유수 서유린(徐有隣)의 장계를 보니 아뢰기를, ‘성안의 환향(還餉)이 각 청(廳)의 각 호(戶) 도수례(都受例)로 받는 절미(折米)가 많게는 90석, 적게는 70석이 되는데 하나같이 외촌(外村)에 보태 나누기 때문에 1호의 절미가 전에 비해 더한 것이 대호(大戶)와 중호(中戶)는 2석 남짓, 소호(小戶)와 잔호(殘戶)는 1석 남짓이 되어 이를 변통하지 않으면 백성이 장차 지탱하기가 어렵습니다. 원군향(原軍餉)과 읍군향(邑軍餉)으로 산성(山城)에 조적(糶糴)한 것은 움직일 수 없으니 종전의 이전거래조(移轉去來條) 절미 3천 석과 징포작입조(徵逋作入條) 수천 석 가운데 절미 4, 5천을 한정하여 현재 산성에 잉류(仍留)하여 전(錢)으로 받아들인 것을 총청(摠廳)의 지방곡(支放穀) 취모조(取耗條)를 각 읍에 흠어주는 예에 따라 본영(本營) 속오(東伍)와 아병(牙兵)이 있는 양주(楊州) 등 13읍 및 아병이 있는 용인(龍仁) 등 3읍에 나누어주어 평상시는 취모하여 지방(支放)하고 급할 때에는 궤량(饋糧)・후량(糶糧)의 밑천을 삼으며 잠시 둔전(屯田)이 조금 넓어져 세액(稅額)이 점차 넉넉해지기를 기다려서 둔곡은 가져다 지방하고 모곡은 가져다 군향에 보태는 일을 일체로 규식을 정해야 합니다. 산성으로 수납(輸納)하는 한 조항을 아울러 면제하며 과천(果川)은 본부(本府) 수원창(水原倉)에서 조적하고 그 나머지 14읍은 각기 그 읍창(邑倉)에서 조적하되 나누어주는 수효는 본도 도신과 왕복 상확(商確)하여 적당히 헤아려 거행하며 시행 조건은 절목(節目)을 만들어 준행하고 계산하게 하십시오. 비록 정감(停減)하는 해를 당하더라도 승(升)・흡(合)을 거론하지 말며 받아들이지 못해 감죄(勘罪)하는 등의 일 역시 원군향의 예로 규식을 정하도록 묘당에서 품지하여 분부하게 하소서.’ 하였습니 다. 남한(南漢)의 군향이 모두 산성 안에 저치(儲置)되어 있는데 백성은 적고 곡식은 많아서 조적하는 즈음에 고통이 심하여 강 연안에 창고를 설치하여 가까운 읍에 이전하자는 의논이 있기까지 했습니다. 지금은 해마다 감축되어 분봉(分奉)하는 것으로 규식을 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외촌까지 더 나누어주면 한 호구가 받는 것이 대호와 중호는 2석, 소호와 잔호는 1석이 된다고 하니 십 수 년 전에 감손된 것을 추계(追計)하면 거의 10분의 1, 2나 됩니다. 성향(城餉)을 비축하는 방책으로 헤아려보면 비록 매우 한심하지만 가난한 백성에게 책납(責納)하는 폐단은 가볍게 될 뿐만이 아닙니다. 넉넉하고 부족한 것은 때에 따라 다르고 이해는 상반됩니다. 그런데도 도리어 백성이 지탱하기 어렵다는 것으로 이처럼 각 읍에 나누어 저치하자는 청이 있게 된 것입니다. 해당 수신(帥臣)이 출진(出鎭)한 이후에는 문득 추목(菟牧)하는 직임이 되고 말아서 백성의 일에 전심하는 것이 서울에 있으면서 멀리

서 지휘하는 때와 같지 않고 단지 관문(關門)만 삼가 지키는 정사를 할 뿐이기 때문입니다. 속오가 있는 13읍 및 아병이 있는 3읍의 환곡 가운데 전조(錢條)로 분류한 것을 숫자를 나누어 옮겨서 나누어주어 모두 각기 그 읍창에서 조적하여 취모하고, 과천과 용인은 부근 민호(民戶)에서 **본부의 사근(肆覲)**, **수원(水原)** 두 창고로 나누어 납부하게 하면 모두 제대로 변통한 것이어서 피차 편리하다고 할 수 있으니, 아울러 장청에 의해 시행해야겠습니다. 본도 도신과 왕복하며 상량하여 알리고 거행하되 비록 흉년을 만나더라도 군향의 예에 따라 정감(停減)에 넣지 말도록 나열하여 절목을 만들어 본사에 보고해 영구히 준행하라고 일체 당해 수신과 경기 도신에게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답하였다.

司啓曰，卽見廣州留守徐有隣狀啓，則以爲城內還餉各廳各戶都受例受折米，多則九千石，少則七千石之數，一位加俵於外村，故一戶折米比前所加，大中爲二石餘，少殘爲一石餘，此不變通，民將難支，原軍餉邑軍餉之糶糴於山城者，不宜擅動，而從前移轉去來條折米三千石及徵逋作入條數千石中折米四五千石爲限，以穀見在仍留山城，以錢收捧者，依摠廳支放穀取耗條散給各邑例，分俵於本營束伍牙兵所在楊州等十三邑及牙兵所在龍仁等三邑，平時則取耗支放，緩急則作饋糧糶糧之需，而姑待屯田稍廣，稅額漸饒，屯穀取而支放，耗穀取而添餉事，一體定式，山城輸納一款竝除之，果川則糶糴於本府，**水原**倉其餘十四邑則糶糴於各其邑倉，分俵數爻，與本道道臣往復商確，量宜舉行，合行條件，成節目遵行計料，而雖值停減之年，升合無得舉論，未捧勘罪等節，亦依原軍餉例定式事，請令廟堂稟旨分付矣，南漢之軍餉儲備盡在山城之內，而民少穀多，糶糴之際疾苦爲甚，至有沿江設倉移轉近邑之議矣，今則年年減縮，分捧定式，而加俵外村者，一戶所受，大中爲二石，小殘爲一石云爾，則追計十數年前所減損，殆爲十之一二，揆以城餉儲留之策，雖極寒心，其於殘民責納之弊，不啻輕歇，豐寡有時，利害相參，然猶以還民難支之慮，有此各邑分峙之請，該守臣出鎮以後，便作芻牧之任，而專心民事，非在京遙制時，只爲謹守筭鑰之政而已故也，束伍所在十三邑及牙兵所在三邑，以還穀中錢條捧留者，分數移俵，皆於各其邑倉，糶糴取耗，而果川·龍仁則以附近民戶，分納於本府之肆覲·**水原**兩倉者，俱可謂變通得宜，彼此兩便，竝依狀請施行，與本道道臣往復商量，知委舉行，雖值歉歲，依軍餉例，毋得入於停減之意，條列成節目報本司，以爲永久遵行之地事，一體分付于該守臣與京畿道臣處何如，答曰，允。

<비변사등록 183책, 정조 20년 1796년 03월 01일(음)>

경제/재정

水原留守 趙心泰가 平薪屯의 稅米를 節目에 의해 실어오는 문제를 논의하다

이번 3월 25일 동부승지와 **수원유수**가 입시하였을 때에 **수원유수 조심태(趙心泰)**가 아뢰기를, “**평신진(平薪鎭)**의 목장을 혁파하고 둔전을 설치한 뒤 보군(保軍) 3백 50명을 좌·우·중 3초(哨)로 정해 둔군(屯軍)을 삼고 농병(農兵)의 뜻을 부쳤으니 그 절제(節制)하는 법을 마땅히 일찍 강구하여 정해야 합니다. 다만 생각하건대 당해 진은 호서의 주사(舟師)가 말으니 비록 외영에 전속시키지 않더라도 1사(司) 3초의 제도로 첨사·평신둔 아병(牙兵)·파총(把摠)으로 호칭을 정하고, 초관(哨官)은 진의 장교 가운데서 부지런하여 감당할 만한 자를 차출해서 외영에서 전령(傳令)을 만들어 주어 급할 때 거느리고 달려가는 바탕을 삼아야 합니다. 파총과 초관을 막론하고 3읍(邑) 협수장(協守將)의 예에 따라 성적을 상고하여 포폄하는 것이 사의에 합당할 듯합니다. 또 3장(場)의 수세미(收稅米)를 결총(結總)에 따라 대략 마련해 잡탈을 제하면 7백여 석이 되고, 둔군의 신역미(身役米) 역시 1백 40석이 되는데 이는 내영(內營)에 상납하는 것입니다. 군수(軍需)와 관계되는 것은 일의 면모가 가

법지 않으니, 금년부터 당초의 절목(節目)에 의하여 본진(本鎭)의 병선(兵船)에 사격(沙格)을 정해 실어 날라 첨사가 영납(領納)하도록 규칙으로 정하여 시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임금의 그리하라 하였다.

또 아뢰기를, “용주사(龍珠寺)에 승통(僧統)을 정해 두어 남한(南漢) 북한(北漢)의 총섭(摠攝)을 총할(摠轄)하여 팔도의 사찰을 전제(專制)하게 한 것은 실로 선침(仙寢)을 공호(供護)하려는 중한 뜻에서 나온 것입니다. 또 승도들의 식료(食料)로 드는 숫자가 적지 않은데도 한결같이 방치해 두고 아직 정제(定制)가 없으니 끝내 설치한 본의가 아닙니다. 지금부터는 한결같이 식료에 드는 숫자를 외영 군안(軍案)에 만들어 두고 봄·가을 한가한 날에 영하(營下)로 불러 모아 훈련을 시켜 방향(方向)을 알게 하고, 인하여 포 쏘기를 시험하여 약간의 상격(賞格)을 시행하면 전적으로 단속해서 격려하는 방도가 될 것이니 이로써 거조를 내어 정식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임금의 그리하라 하였다.

또 아뢰기를, “군기(軍器)에 드는 깃대, 창 자루 및 화전(火箭)을 만드는 공이에 드는 가시목(加時木)이 모두 긴요한데 이는 시장에서 사서 쓰는 것이 아닙니다. 가시목 가운데 깃대나무 50개, 창 자루 나무 50개, 조총(鳥銃)의 몸통나무 1백 개, 화전의 공이 나무 30개를 명년부터 영남·호남 통영(統營)·수영(水營)의 산출되는 곳에 복정(卜定)하여 세전(稅船)편에 실어 올려 보내는 바탕을 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임금의 그리하라 하였다.

또 아뢰기를, “전죽(箭竹)과 화피(樺皮)는 무고(武庫)의 물종(物種) 가운데 긴요한 것입니다. 전죽은 비변사에서 받아들이는 것 가운데 호남의 대 1백 부(浮)와 호서의 대 50부를 매년 이송하도록 거조를 내어 정식으로 감고, 화피는 비국에서 받아들이는 것 가운데서 숫자를 더해 복정하여 해마다 50동(同)을 한정하여 전죽과 일체 이송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임금의 그리하라 하였다.

또 아뢰기를, “외영(外營)을 신설했기 때문에 우비(雨備)·유둔(油苴) 등속이 전혀 모양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데 화전(火箭)을 만드는데 들어가는 것이 적지 않아 이어 쓸 길이 없습니다. 대비(大比)를 실시할 때의 낙폭지(落幅紙)를 영남의 좌도·우도에서 각 30축(軸), 호남의 좌도·우도에서 각 20축, 호서의 좌도·우도에서 각기 20축씩 시소(試所)에서 획송하게 해서 각 도 감영에서 편리할 대로 외영으로 실어다 바치도록 거조를 내어 규칙으로 정해서 영구히 준행하는 바탕을 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임금의 이르기를, “전에는 낙폭지가 쓸모없는 물건이어서 누구든 청해서 가져다 쓰기가 매우 쉬웠는데 근래에는 그렇지 않다고 하니, 어찌 경시관(京試官)과 도사(都事)의 수치가 아니겠는가? 묘당으로 올려 보내라는 것을 만일 허락하면 본부로 수송하는 것도 그렇게 되지 않을 줄을 알겠는가? 매도에 각기 축(軸) 숫자를 정해 가져다 써야 한다.” 하였다.

또 아뢰기를, “외탕고(外帑庫)는 속한 사찰(寺刹)이 없어서는 안 되니, 보성(寶城) 봉갑사(鳳甲寺)를 그 원하는 바에 따라서 허속(許屬)하는 뜻으로 용주사(龍珠寺)가 소속된 사찰의 예에 따라 비국에서 행관(行關)하여 해도 감영에 알려져 절목을 만들어 영구히 준행하는 바탕을 삼고, 바치는 지가전(地價錢) 2백 50냥은 지소(紙所)에 부쳐 각종 종이의 권(卷) 수를 약정해서 외탕고에 떠다 바치게 하는 것이 사의에 합당할 듯합니다. 이미 속한 사찰이 있게 된 후에는 마땅히 승통(僧統)이 거행해야 하니, 장흥(長興) 보림사(寶林寺)의 예에 따라 인신(印信)을 만들어 주고, 절은 곤양(昆陽) 다솔사(多率寺) 승통에게 소속시켜 역시 일체 인신을 만들어 주도록 거조를 내어 예조에 알리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임금의 그리하라 하였다.

또 아뢰기를, “행영에 이미 내탕(內帑)을 설치했습니다. 외별고(外別庫)·외정리고(外整理

庫)·내용고(內用庫)의 소중함은 다른 곳에 비해 자별하니, 그 안에 군기(軍器) 물종 역시 차제에 비치해야 하는데 장차 어떻게 경영하겠습니까? 무고(武庫) 고사(庫舍)는 방금 유흥택(維興宅) 북황(北遑)에다 영건하고 있으나 군기 물종에 이르러서는 재력을 모을 길이 없어 아직 장만하지 못하였습니다. 그 소중함을 생각하면 매우 송구하고 민망하기 때문에 감히 이처럼 아웁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심도(沁都) 내무고(內武庫)에 별도로 둔 군물(軍物)이 있는데 병신년 이후에도 별도로 만들어 수송해 둔 것이 많으니, 그걸 가져다 써도 불가할 것이 없다. 갑주(甲冑) 1백 부(部), 조총(鳥銃) 3백 부, 환도(環刀) 2백 자루, 각종 활 1천 장(張), 장전죽(長箭竹) 6백 부(浮), 통개(筒介) 2백 부를 화성으로 수송하되 연례로 하는 포쇄(曝曬)를 오래 하지 않았으니 가까운 시일 안에 별군직(別軍職)을 보내 수신(守臣)과 안동하여 포쇄한 뒤 수송한 물건은 차사원을 별도로 정해 편리할 대로 운반하도록 강화유수에게 분부하라. 친군위(親軍衛) 2백 인이 입을 갑주 1백여 건은 그것으로도 부족하니 연전 통영의 예에 따라 경이 만들되 들어가는 물력(物力)은 통영의 예에 따르도록 묘당에서 즉시 행회하게 하라.” 하였다.

또 아뢰기를, “평신둔(平薪屯)의 세미(稅米) 작년조를 작전하였다가 작곡한 것을 외내영겸제곡(外內營兼濟穀)이라 이름 하여 본부 및 부근 기읍(畿邑)에 분산시켜 두고 금년 춘환(春還)부터 나누어주어 취모(取耗)하되 외영 무고는 평소 재력이 부족하여 갖추거나 수보(修補)하는 것을 조치할 길이 없어 참으로 작은 근심이 아닙니다. 모조를 금년부터 영원히 군기색(軍器色)에 부쳐 수용(需用)하도록 거조를 내어 정식으로 하는 것이 사의에 합당할 듯 하여 감히 이처럼 아웁니다.” 하니, 임금이 그리하라 하였다.

또 아뢰기를, “행궁(行宮)의 수리는 외정리소(外整理所)에서 거행하는 것으로 이제 막 절목을 제하하였습니다. 수리소에 들어가는 종이는 즉시 마련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소(紙所)를 이미 창설하여 승역(僧役)을 모집해 모아 이미 지역(地役)을 시작했습니다. 외정리소의 수리 재력이 해마다 응봉(應捧)하는 3천 냥 가운데 1천 냥을 우선 미리 내려주어 떠내는 정리지(整理紙)를 창고에 보관하여 때에 맞추어 수용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그리하라 하였다.

今三月二十五日同副承旨·水原留守入侍時, 水原留守趙心泰所啓, 平薪鎮罷牧設屯之後, 保軍三百五十名, 以左右中三哨定爲屯軍, 仍作寓農之兵, 其所節制, 宜早講定, 而第伏念該鎮, 既是湖西舟師之任, 則雖不可專屬外營, 以一司三哨之制, 僉使平薪屯牙兵把總定號, 而哨官則鎮校中勤幹可堪者差出, 自外營成給傳令, 以爲緩急領赴之地, 而無論把總·哨官, 依三邑協守將例, 考績褒貶, 恐合事宜, 而且三場收稅米, 以結總略綽磨鍊, 除雜頃當爲七百餘石, 屯軍身米亦爲一百四十石, 而係是內營上納者, 則軍需所關, 事面不輕, 自今年爲始, 依當初節目, 以本鎮兵船定沙格載運, 僉使領納之意, 定式施行何如, 上曰, 依爲之.

又所啓, 龍珠寺定置僧統, 總轄南北漢摠攝, 專制八路寺刹者, 寔出於供護仙寢之重, 而且僧徒之食料者爲數不些, 則一任拋置, 尙無定制, 終非制置本意, 自今爲始, 一從食料數爰, 成置軍案於外營, 而亦於春秋暇日, 招聚營下, 隸習金鼓進退, 俾知方向, 仍試炮射, 略施賞格, 亶合團東激勸之方, 以此出舉條定式何如, 上曰, 依爲之.

又所啓, 軍器所用旗桿槍柄及火箭打造杵所入加時木, 無非緊要, 而此非市肆間貿用者, 加時木中旗桿木五十箇, 槍柄木五十箇, 鳥銃家木一百箇, 火箭杵木三十箇, 自明年卜定於嶺·湖兩南統水營所產處, 以爲稅船便添載上送之地何如, 上曰, 依爲之.

又所啓, 箭竹樺皮, 武庫物種中爲用亦緊, 箭竹則備邊司所捧中湖南竹一百浮·湖西竹五十浮每

年移送之意，出舉條定式，樺皮，備局所捧中加數卜定，年年限五十同，箭竹一體移送何如，上曰，依爲之。

又所啓，外營以新設之故，雨備油范等屬，專不成樣，火箭打造所入不些，而無路繼用，大比設科之時，落幅紙嶺南左右道各三十軸，湖南左右道各二十軸，湖西左右道各二十軸，自試所劃送，各其道監營，自監營從便輸納于外營之意，出舉條定式，以爲永久遵行之地何如，上曰，在前則落幅紙爲等閑之物，凡有請得，取用甚易，近來則不然云，豈非京試官都事羞恥事乎，廟堂之上送如許，則本府輸送，安知亦然乎，每道各定軸數取用可也。

又所啓，外帑庫不可無屬寺，寶城鳳甲寺，從其所願許屬之意，依龍珠寺屬寺例，自備局行關知委於該道監營，以爲成節目永久遵行之地，而所納紙價錢二百五十兩，付之紙所，各色紙酌定卷數，使之浮納於外帑庫，恐合事宜，而既爲屬寺之後，當有僧統舉行者，考據長興寶林寺已例，造給印信，寺屬昆陽多率寺僧統，亦一體造印以給之意，出舉條知委禮曹何如，上曰，依爲之。

又所啓，行宮既置外帑，外別·外整理·內用等庫，所重比他自別，則內軍器物種亦當次第備置，而其將何以經紀，武庫庫舍則今方營建於維與宅北邊，而至於軍器物種，以財力之無路拮据，姑未措備，言念所重，萬萬悚悶，故敢此仰達矣，上曰，沁都內武庫有別置之軍物，而丙申以後亦多別造輸置者，就此取用無所不可，甲冑一百部·鳥銃三百部·環刀二百柄·各色弓一千張·長箭竹六百浮·筒介二百部，輸送于華城，而年例曝曬久未爲之，從近遣別軍職與守臣，眼同曝曬後，輸送物件，別定差員，從便船運事，分付沁留，至於親軍衛二百人所着甲冑百餘件，猶不足，依年前統營例，卿其造成，所入物力亦依統營例，令廟堂卽爲行會可也。

又所啓，平薪屯稅米昨年條作錢作穀名以外內營兼濟穀，散置本府及附近畿邑，自今春還分取耗，而外營武庫素乏財力，備或修補者無路措施，誠非細憂，耗條自今年爲始，永付軍器色，以爲需用之意，出舉條定式，恐合事宜，故敢此仰達矣，上曰，依爲之。

又所啓，行宮修理，自外整理所舉行事，才已節目啓下，而修理所入紙地非所立辦者，故紙所業已創設，募聚僧徒，已始紙役矣，外整理所修理財力，年例應捧三千兩中一千兩姑先預下，以爲浮出整理紙，留儲庫中，及時需用之地何如，上曰，依爲之。

<비변사등록 183책, 정조 20년 1796년 03월 28일(음)>

경제/재정

摠戎使 徐有다가 本廳에서 支放하는 華城의 需米 宣惠廳에서 防塞한 문제를 아뢰다

○ 이번 5월12일 대신(大臣)과 비국당상 품사당상이 입시하였을 때에 총융사 서유대가 아뢰기를, “본청이 지방(支放)하던 조목인 화성(華城) 수미(需米) 1천석을 임자년(정조 16, 1792)에 제감하고 선혜청의 월과미(月課米) 1천석으로 배비(排比)하여 급대(給代)하였으며 월과물력(月課物力)은 양서(兩西)의 보리를 첨향(添餉)으로 작전하여 취해 쓰지 말도록 이미 묘당에서 초기하여 정식으로 정하였으니 이 쌀은 본청에서 새해에 응당 내려주는 세입으로 하여 선혜청에서는 ‘연전(年前)에 분기를 앞당겨 미리 내려주고 처음부터 끝까지 방색(防塞)을 하였다’ 하였습니다. 이미 급대한 뒤로 마땅히 보낼 물건으로 삼았다면 급대와 월과는 명색이 각각 다르고, 또 본청의 한 달 급료(給料)가 2백 80석 영인데 선혜청에서 끝내 만약 보내주지 않는다면 군교의 접제는 달리 변통할 길이 없습니다. 장차 목전의 급료를 정지해야 할 걱정이 있게 되었는데 어디에 정식을 정하여 급대하는 뜻이 있다 하겠습니까? 황공하여 감히 아뢰니 대신에게 물어서 처리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여, 임금의 이르기를, “대신의 뜻은 어떠한가?”

하니, 우의정 윤시동(尹潯東)이 아뢰기를, “선혜청에 이미 분기를 앞당겨 상환하도록 한

물건이 있으니 해당(該堂)이 어렵다고 고집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충용청이 해마다 취해 사용하는 것이 곧 응례(應例)가 되었는데 이것이 아니면 또한 달마다 분배하여 내줄 것이 없습니다. 피차 완급(緩急)의 형편을 참작해서 마땅히 서로 함께 구제할 의리가 있으니 해당(該廳)에 분부하여 우선 수송을 허락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하니, 임금이 그리하라 하였다.

今五月十二日大臣備局稟事堂上入侍時，摠戎使徐有大所啓，本廳支放條華城需米一千石，壬子除減，以惠廳月課米一千石排比給代，而月課物力，以兩西小米，勿爲添餉作錢取用事，已自廟堂草記定式，則此米在本廳，爲歲入應下之需，惠廳謂有年前引等預下，終始防塞，既自給代之後，作爲當送之物，則給代與月課，名色各異，且本廳一朔料條爲二百八十石零，而自惠廳終若不送，則軍校接濟他無變通，將有目前停料之患，烏在其定式給代之意乎，惶恐敢達，下詢大臣處之何如，上曰大臣之意何如，右議政尹曰，惠廳既有引等責償之物，則該堂之執言持難，不是異事，然摠廳之年年取用，便成應例，非此則又無排朔放下，參以彼此緩急之勢，宜有相便共濟之義，分付該廳，姑許輸送，似好矣，上曰，依爲之。

<비변사등록 183책, 정조 20년 1796년 05월12일(음)>

경제/재정

右議政 尹蓍東이 華城 城役의 落成宴 비용 지출에 대해 논의하다

○ 이번 8월 3일 과차(科次)를 정하여 입시하였을 때, 우의정 윤시동이 아뢰기를, “화성(華城)의 성역(城役)이 9월내에 준공된다고 하니, 이어 낙성연을 행해야 할 것입니다. 유수 조심태의 말을 들어보니 현재의 재력으로는 부족할 염려가 없지 않다고 합니다. 관서목(關西木) 4백 동(同)은 바로 금년 2월 비변사에서 관문을 보내 마련해서 대비한 것 1백 50 동(同)을 우선 먼저 취용(取用)하고, 영남감영의 남창전(南倉錢) 1만냥, 해서감영의 장부에 별비전(別備錢)으로 기록된 5천 냥을 모두 빌려서 취용하고 관서목은 수효가 많고 승척(升尺)이 반드시 모두 척도에 맞는 것이 아니니, 그 사정을 듣고 돈으로 대신하기를 바란다고 합니다. 일하는 곳에 지출하는 것은 돈이 목(木)보다 낫습니다. 이것은 그가 바라는 대로 돈으로 대납하도록 분부고 남창전은 선혜청의 무미조(貿米條)와 서로 바꿔 취용하는 것이 일이 매우 편리합니다. 이것으로 각각 알려 시행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하니, 임금이 그리하라 하였다.

今八月初三日科次入侍時，右議政尹所啓，華城城役，九月內當告竣，仍行落成之宴矣，聞留守趙心泰言，則目下財力，不無不足之慮云，關西木四百同，卽今年二月自備局行關，使之措備以待者，一百五十同，姑先取用，嶺南監營南倉錢一萬兩，海西監營記簿別備錢五千兩，竝爲貸下取用，而關西木則數乏既多，升尺未必皆準，聞其事情，願以錢代云，役處用下，錢又勝於木，此則從其願以錢代納之意分付，南倉錢則與惠廳貿米條，相換取用，事甚便當，以此各各知委施行何如，上曰，依爲之。

<비변사등록 184책, 정조 20년 1796년 08월03일(음)>

경제/재정

水原留守 趙心泰가 舊還條 등에 대해 논의하다

이번 11월 11일 좌직 승지와 수원유수(水原留守)가 함께 입시하였을 때에 수원유수 조심태(趙心泰)가 아뢰기를, “본부(本府)의 구환조(舊還條)를 비국에서 분배한 수효에 의해 지금 막 독촉해 징봉하려는 찰나에 또 비국의 관문을 받았는데, ‘정퇴조(停退條)와 구환(舊還)

은 명색이 다르고, 정퇴조는 내년과 내후년을 막론하고 모두 징봉해야 할 몫이니 구환으로 논하지 말라. 조정에서는 허락하지 않았으나, 그 해에 모조리 징봉하지 못한 환곡을 구환이라고 부를 수 있으니 이 뜻을 잘 알고, 구환에 관한 문서를 하나도 빠짐없이 책으로 만들어 올려 보내라.’ 고 하였습니다. 이 관문의 내용을 가지고 본부를 보면 다른 구환은 없으나, 미봉조(未奉條)라고 하는 것은 바로 갑인년과 을묘년의 것으로, 혹 장계로 정퇴(停退)를 청하였거나 혹 조령(朝令)으로 인해 그대로 정지한 양이 쌀과 콩 모두해서 5천80섬 남짓뿐인데, 올해 풍년이 들지 않았는데도 5천포의 쌀과 콩을 거둬들인 기근 끝의 곤궁한 민호에게 모조리 징봉한다면 민정에 크게 관계됩니다. 게다가 작년에 그대로 정지한 것은 이미 특은(特恩)에서 나왔는데, 한 가지 예로 혼동하여 징봉하는 것 또한 불쌍하고 걱정스러워 이 뜻으로 대신께 상의하였더니 대신이 ‘당초 비국에서 구환조(舊還條)를 분배하여 통지하였을 때 구환과 정퇴를 미처 구분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나중에 알려 책자로 만들어 보고하라고 한 것은 실로 이 때문입니다. 지금 들으니 본부에는 이미 구환 명색이 없고 모두 정퇴조라 하는데, 비록 모조리 징봉하고 만다 하더라도 돌보는 뜻에 있어서 헤아리는 방도가 있어야 합당하니 한 번 제기하여 아뢰겠습니다.’ 고 하였습니다. 민정이 이처럼 심히 걱정스럽고 대신의 의향 또한 이와 같으니 감히 아웁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본부(本府)의 사체는 남다르고 일이 백성의 괴로움에 관계되니 어루만지고 돌보는 데 있어 더욱 다른 도와는 달라야 한다. 구환을 분배한 것 외에 두 해의 미봉조(未奉條)는 그대로 정지하라고 특별히 허락하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또 아뢰기를, “내영(內營)의 비단 갑옷 20부(部)를 외영(外營)으로 올려 보낸 뒤 그 대신으로 새로 만드는 데 드는 물품을 마련해 달라고 아뢰어 일찍이 명을 받았습니다. 장인을 불러 자세히 마련해 값으로 치니 겹옷의 비단 등속 및 철엽(鐵葉)을 제하고도 들어가는 각종 물품이 1천 2백 20냥쯤 되므로 감히 이를 아웁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갑옷의 비단은 당연히 대내에서 내려주어야 하나, 드는 물품은 선혜청에 있는 어갑주미(御甲胄米) 중에서 호남(湖南)에서 1부를, 해서(海西)에서 1부를 내영에 떼어주게 하라. 내영에서 이를 가지고 마련하여 준비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또 아뢰기를, “영화역(迎華驛)을 설치할 재원을 2만 냥에 한해 구획(區劃)하는 일로 전후로 여러 차례 연교(筵敎)를 받았으므로 신이 대신께 왔다 갔다 하며 마련할 방도를 상의하자 대신은 북관(北關)·관동(關東)·호서(湖西) 등의 여러 도에서 돈과 곡물을 막론하고 모두 손을 쓸 곳이 없고, 또 상진곡(常賑穀)은 새로 조령(朝令)을 내려 감히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하므로 금년 가분곡(加分穀)의 모조(耗條)인 호남의 쌀 3천섬과 영남의 쌀 3천섬을 떼어주는 외에는 다른 방도가 없을 듯 하다고 하였습니다. 대신의 생각이 이와 같으므로 감하 아웁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대신의 말이 좋다. 그대로 하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또 아뢰기를, “호조 소관인 구환선(舊還船)을 각 군문에서 모두 차례대로 나누어 보내는 예가 있는데, 신의 병영은 중앙 병영의 외영(外營)이므로 다른 군문의 예에 의해 순서를 기입한 패선에 첨가해 넣어 똑같이 나누어 보내라고 규칙으로 정해 시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그리하라 하였다.

또 아뢰기를, “중앙 군문은 많은 집사 무리가 항오를 따라 발탁되기 때문에 군무에 일찍 눈을 뜨고 병학(兵學)을 익숙하게 익혀 금고(金鼓)와 진퇴에 거의 다 법도가 있습니다만, 신의 영(營)은 영으로 오른 지 얼마 되지 않아 소용되는 것을 기르지 못해 허다한 장교가 군무를 알지 못하므로 닿는 곳마다 생소하니 실로 작은 근심이 아웁니다. 아무리 권장한다

하더라도 갑자기 성과를 보기 어려워 이를 걱정하다가 장교의 자손 중 10여세 이상 되는 자 3, 40명을 뽑아 아기패관(兒旗牌官)으로 정해 병조에 주어 교관이 지금 막 모아놓고 과목을 익히고 있는데, 계속 게으름을 피우지 않는다면 효과를 거두어 중앙 군문의 향오에서 발탁 되는 부류에 손색이 없을까 합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규칙으로 정해놓지 않으면 영구히 좇아 실행한다고 기약할 수 없으므로 이 거행조건을 절목에 실어 감히 폐지하지 못하게 하여야 실로 실질에 힘쓰는 정책에 합당하겠으므로 감히 아뢰입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그리하라. 내영(內營)의 예에 의해 매년 6월과 12월에 고강(考講)하여 집계하고 등급을 매긴 뒤 수석을 차지한 자는 외탕고(外帑庫)에 있는 쌀과 비단을 시상하고 나서 별단(別單)으로 보고하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또 아뢰기를, “대내에서 사용하는 각고(各庫)와 외탕고(外帑庫)·정리고(整理庫) 등을 설치한 뒤 유달리 소중하고 관계됨이 가볍지 않으므로 평소 맡아 지키는 도리를 수원부(水原府)에서 엄중 신칙해야 하는데, 교체할 때가 되면 담당 내시감(內侍監)은 수행하는 막비(幕裨)로서 역시 한꺼번에 따라 돌아가 버리니 곡물이 축나 줄어드는 일이 신구(新舊) 내시감이 교체할 무렵에 많이 일어나 전례대로만 전장(傳掌)할 수 없을까 합니다. 앞으로는 반드시 교체하는 날에 신구 내시감이 창고를 열고 물품을 자세히 조사하여 수에 맞춰 회계문서에 기록하여 전달한 뒤 새 유수는 그 상황을 내영에 보고하는 것이 실로 일의 체면을 존중하고 공금을 소중히 하는 의리에 합당하므로 이 거행조건을 분명히 정식으로 삼아 절목에 첨가하여 영구히 준수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그리하라 하였다.

今十一月十一日坐直承旨水原留守同爲入侍時, 水原留守趙心泰所啓, 本府舊還條, 依備局分排數爻, 今方督捧之際, 又接備關, 則以爲, 停退條與舊還名色各異, 停退條, 無論翌年再翌年, 係是當捧條, 不可以舊還論, 非朝家所許, 而當年未盡捧之還, 方可謂舊還, 知悉此意, 舊還文書, 無一遺漏, 修成冊上送云矣, 以此關辭, 推之本府, 無他舊還, 而所謂未捧條, 卽是甲寅·乙卯兩年, 或狀請停退, 或因朝令仍停者, 而米太都數, 只爲五千八十石零, 則今年雖無豐登, 沒捧此半萬包米太於荐饑餘窮戶者, 非但大關民情, 且昨年仍停, 既出特恩, 則一例混捧, 又涉矜悶, 以此意就議大臣, 則大臣以爲, 當初自備局舊還條分排行會時, 舊還與停退, 果未及分概之致, 故追後知委, 使之修成冊以報者, 良有以也, 今聞本府, 既無舊還名色, 俱是停退條, 則雖云沒捧乃已者, 其在軫恤之意, 合有商量之道, 一番提稟, 在所不可已云矣, 民情既若是切悶, 大臣之意, 又復如此, 敢此仰達, 上曰, 本府事體自別, 事係民隱, 其所撫恤, 尤當別異於他道, 舊還分排外兩年未捧條, 特許仍停可也.

又所啓, 內營緞甲冑二十部, 移上外營後, 其代新造次所入物力, 磨鍊以稟事, 曾已承命矣, 招致匠手, 詳細磨鍊, 折價則除外衣緞屬及鐵葉, 而各樣所入, 至爲一千二百二十兩零, 故敢此仰達矣, 上曰, 甲衣緞品, 當內下, 而所入物力, 惠廳所在御甲冑米中, 湖南一部, 海西一部, 使之劃給內營, 令內營以此措備可也.

又所啓, 迎華驛設施財力, 限二萬兩區劃事, 前後屢承筵教, 故臣往復大臣, 議其拮据之道, 則大臣以爲, 北關·關東·湖西諸道, 無論錢穀, 俱無着手處, 且常賑穀, 新有朝令, 不敢擅用, 以今年加分耗條湖南大米三千石, 嶺南大米三千石劃給之外, 似無他道云矣, 大臣之意如此, 敢此仰達, 上曰, 大臣之言好矣, 依此爲之可也.

又所啓, 戶曹所關舊退船, 京各軍門皆有次第分送之例, 而臣營, 卽是京營之外營, 依他軍門例, 添入井間, 一體分送之意, 定式施行何如, 上曰, 依爲之.

又所啓, 京軍門執事輩, 多從行伍而拔擢, 故早服戎務, 熟習兵學, 金鼓進退, 舉有穀率, 而至於臣營, 陞營既屬耳, 所用非所養, 則許多將校, 不閑軍務, 觸處生疎, 誠非細憂, 雖令勸獎,

卒難責效，庸是之懼，將校子枝，十餘歲已上，抄得三四十名，以兒旗牌官，定給兵書，教官方今聚會課習，其若一直不怠，其所收效，恐不讓於京軍門行伍拔擢之類，而倘不著爲定式，則其所永久遵行，未可必，以此舉條，載之節目，無敢廢墜，宣合懋實之政，故敢此仰達，上曰，依爲之，依內營例，每年六·臘月，以考講計畫，居首者，外帑庫所在米綿，施賞後，別單可也。又所啓，內用各庫，及外帑整理等庫設置之後，所重自別，關係不輕，常時典守之道，自臣府當嚴飭，而若當遞易之時，句管內監，以帶去幕裨，亦當一時隨還，公物虧欠，多在新舊之際，恐不可循例傳掌，從今以後，必於交遞之日，新舊內監，開庫反閱，準數會錄，傳授後新留守，報其形止於內營者，宣合尊事面重公貨之義，以此舉條，著爲定式，添入節目，以爲永久遵行之地，何如，上曰，依爲之。

<비변사등록 184책, 정조 20년 1796년 11월 13일(음)>

경제/재정

戶曹判書 李時秀가 荏子島의 牧場을 脩기고 耕作하는 일 등에 대해 논의하다

○ 이번 8월 1일 예조판서·호조판서·화성유수가 입시하였을 때, 호조판서 이시수(李時秀)가 아뢰기를, “지난번 내사(內司:내수사)의 계목(啓目)으로 인하여 임자도(荏子島)의 목장을 脩기고 개간을 허락하는 편부(便否)를 도신(道臣)에게 알려 조사하여 보고하게 한 후 품처하라는 일로 연교(筵敎)를 받들고 신의 호조에서 전라감사 서정수(徐鼎修)에게 관문으로 물었습니다. 도신의 조사 보고가 이제야 비로소 도착하였는데, 말하기를 ‘본도(本島)는 1백 여필의 병든 말 때문에 전체 섬이 생업을 잃고 있어서, 목장을 脩기는 일은 백성들의 심정이 모두 같습니다. 신해년(1791년)에 내수사의 보고로 인하여 말을 압해도(狎海島)에 脩기고 선희궁(宣禧宮)에 토지를 소속시킬 것을 비변사에서 관문을 발송하였고, 읍진(邑鎭)에서 보고한 바도 한결같은 말로 편하다고 일컬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마필 이송(移送)을 다른 목장에서 원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까지 결정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좋아라고 바라는 백성들의 심정을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닌데, 한광(閑曠)한 토지는 황폐하여 애석하기만 합니다. 사소하게 말을 脩기는 폐단 때문에 어렵게 여겨 마침내 개간을 허락하여 옥토로 만들자는 논의가 그치고 말았습니다. 현재 본 목장의 마필이 그 수가 많지 않으니, 부근의 각 목장에 간략하게 분배하고, 많은 수를 목장에 더하지 않게 하면 여러 목장에서도 또한 병폐가 옮겨져 생기는 폐단을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지금에는 말을 脩기고 개간을 허락하여 묵은 폐단을 덜어주는 것이 실로 백성들의 소망을 달래고 빈 땅을 개간하는 방도가 될 것입니다. 해진(該鎭)에서 보고하기를 병영의 비장이 네 번 알린 바가 대저 똑같다고 하였습니다. 본도(本島)와 본도(本島) 소속의 영광(靈光) 함평(咸平) 두 읍 경계의 진하산(珍下山)에 있는 전답(田畓)의 시기전(時起田) 2백결 영(領)과 개간할 수 있는 곳 거의 3백결을 아울러 성책(成冊)을 만들어 보고합니다.” 하였습니다. 이번 도신이 보고한 바와 내사의 계목의 사의가 별로 차이가 없으니 한 섬의 폐막을 마땅히 변통해야 함이 진실로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민정(民情)의 바라는 바는 토지를 개간하는 것을 다시 의심할 것이 없습니다. 금년에 본도(本道)의 여러 읍의 분양마(分養馬)는 목장말로 많이 충당시켜서 현재 남아 있는 것은 불과 1백여 필의 암 말 뿐입니다. 이것으로 분배하여 도내(道內)의 여러 목장에 이송하면 한 목장에 이송되는 바가 많아도 열 마리를 넘지 않으니 크게 폐단이 되는 단서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해시(該寺)의 1년 세납이 그 수량이 그리 많지 않으니, 비록 숫자에 준하여 급대하여도 그다지 어려운 곳은 없습니다. 평신진(平薪鎭)에서 이미 행한 예에 의하여 마땅히 편리하게 마땅히 구처(區處)하는 방도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금년부터 시작하여

임자도의 목장을 혁파하고 그 목장의 말을 옮겨 개간하고 경작하는 것을 허락하시는 것이 그만 둘 수 없는 정사인 것 같습니다. 이미 목장을 옮기고 개간을 허락한 후에 토지에서 나오는 조세는 마땅히 내수사의 계목에 의해 시행하고 화성(華城)의 내용고(內用庫)의 중요성이 더욱 각별하니 본도(本島)의 세입을 모두 화성의 내용고에 속하게 하소서. 화성에서 별도로 일을 주관하는 사람을 정하여 본도(本島)에 내려가서 시기(時起) 전답을 다시 상세히 타량(打量:측량)하고 매 결(結)의 세총(稅總)은 백성들이 마음속으로 원하는 것을 캐내어 작량(酌量)해서 수량을 정하소서. 그 외에 제방이나 마장(馬場) 등 가히 개간할 수 있는 곳은 백성들에게 경작하기를 권하여 점차 개간한 땅으로 만들되, 해당 도의 감영(監營)에서 별도로 편비(編裨)를 정하여 해진(該鎭)의 첨사와 더불어 입회하여 거행하소서. 어람성책(御覽成冊) 1건은 우선 만들어 올릴 것을 해시(該寺)에 분부하소서. 해도(該島)와 화성부(華城府)에 분부하는 것이 사의(事宜)에 합당한 것 같기에 감히 우러러 아웁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미 화성에 소속되어 있으니, 적간하는 사람을 내려 보내 해당 첨사와 입회하여 거행하라. 또한 도신으로 하여금 유의하여 살펴 신칙해서 그 실제 숫자대로 장계로 아뢰도록 해도에 분부하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今八月初一日禮曹判書·戶曹判書·華城留守入侍時，戶曹判書李時秀所啓，頃因內司啓目，荏子島移牧許墾便否，知委道臣，使之查報後，稟處事奉承筵教，自臣曹關問于全羅監司徐鼎修處矣，道臣查報，今始來到以爲，本島因百餘匹病馬，全島失業，移牧一事，民情所同，辛亥年因內司所報，移馬於押海島，屬土於宣禧宮事，自備局發關，邑鎭所報，一辭稱便，而特因馬匹移送，他牧場之所不願，故至今在未決之中，而樂願之民情，有不可遏閑曠之土地，荒廢可惜，難以些少移馬之弊，終寢許墾沃土之議，目今本牧馬匹，其數無多，從略分排於附近各場，勿令多數添牧，則在諸牧場，亦無移疾生弊之慮，趁今移馬許墾，俾除積(?)實爲慰民望闢閑土之道，該鎭所報營裨回告，大抵同然云，本島及本島所屬靈光·咸平兩邑界珍下山田畓，時起二百結零，可墾處近三百結，竝爲修成冊報來矣，今此道臣所報與內司啓目，辭意別無異同，一島痼瘼，合有變通，固已久矣，民情之所願，土地之可墾，更無可疑，而今年本道諸邑分養馬，多以場馬充送，見今餘在者，不過百餘匹牝馬兒而已，以此分排，移送於道內諸牧場，則一場所送，多不滿十，似無大段爲弊之端，該寺一年稅納，其數不甚夥然，雖欲准數給代，無甚難處，依平薪已例，從當有從便區處之道，自今年爲始，荏子島牧場革罷，移其場馬，許令耕墾，似是不得已之政，既已移牧許墾之後，土地所出之稅，當依內司啓目施行，而華城內用庫，所重尤別，本島稅入，一竝屬之華城內用庫，自華城別定幹事人，下往本島，時起田畓，更爲詳細打量，每結稅摠，採探民情願，酌量定數其外堰防及馬場可墾處，勸民起耕，以爲次次墾闢之地，而自該道監營，別定編裨，與該鎭僉使，眼同舉行，御覽成冊一件，爲先修正上送事，分付于該寺，該道及華城府，似合事宜，故敢此仰達矣，上曰，既屬華城，下送摘奸，與該僉使眼同舉行，亦令道臣着意察飭，以其實數狀聞事，分付該道可也。

<비변사등록 184책, 정조 20년 1796년 08월08일(음)>

경제/재정

前 承旨 金祖淳이 華城 城役의 石手에게 施賞을 하는 것 등에 대해 논의하다

○ 이번 8월 21일 좌승지가 입시하고 봉명승지(奉命承旨)가 함께 입시하였을 때 전 승지(前承旨) 김조순(金祖淳)이 아뢰기를, “신이 삼가 성교에 의해 화성(華城)에 나아가서 성역(城役)의 감동(監董)이하 여러 장교(將校)·원역(員役)·장모(匠募) 등에게 호궤(犒饋)를 설행하고 이어 장모 등을 위문하였으며, 외방(外方)의 석수(石手) 70명은 또한 연석에서 하

교하신 대로 그날로 해산하여 돌아가게 하였으며, 별도로 양식과 상격(賞格)을 내려주었습니다. 신이 면전(面前)에서 일일이 나누어 주었으나, 성역(城役)이 끝나기 전에 먼저 내려간 각도(各道)의 석수는 한결같이 어질게 보살피는 은택을 입지 못하였습니다. 정리 의궤청(整理儀軌廳)에서 행회(行會)할 때, 이 부류는 해당 도(道)에서 각각 해당 소재 읍에 알려 일체 시상하는 것이 사의(事宜)에 합당할 것 같습니다. 호궤(犒饋) 용도로 구획된 물력(物力) 7백 냥 중에서 남은 것이 1백 냥이라고 합니다. 수신(守臣)이 신에게 조정에 돌아간 후 연석에서 품의하여 구처(區處)해 줄 것을 요청하였기 때문에 마침 말이 난 김에 아울러 우러러 아웁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먼저 보낸 장수(匠手)를 일체 시상하는 것이 과연 좋겠다. 곧바로 정리의궤청으로 하여금 이것을 알리게 하라. 이번 호궤에 쓰고 남은 물력은 외탕고(外帑庫)의 회록(會錄)에 속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今八月二十一日左承旨入侍, 奉命承旨同 爲入侍時, 前承旨金祖淳所啓, 臣謹依聖教 進詣華城, 城役監董以下將校・員役・匠募等, 犒饋設 行, 仍又勞問匠募等, 外方石手七十名, 則亦依筵教即日使之解送, 別下糧資及賞格, 臣於面前一一 分給, 而畢役前各道石手之先爲下去者, 未蒙一視 之澤, 整理儀軌廳行會時, 此類自該道知委各該所 在邑, 一體施賞, 恐合事宜, 犒饋所用, 區劃物力, 七百 兩中所剩, 爲一百兩云, 守臣要令臣還朝後, 筵稟 區處, 故適因言端, 竝此仰達矣, 上曰, 先送匠手之 一體施賞事, 果好, 卽令整釐儀軌廳, 以此知委, 而今 番犒饋用餘物力, 屬之外帑庫會錄可也.

<비변사등록 184책, 정조 20년 1796년 08월21일(음)>

경제/재정

華城留守 趙心泰의 狀啓에 廣州의 還穀案에서 빼라고 전교하다

일용면(日用面)·송동면(松洞面)을 전에 광주(廣州)로 이속할 때 구환(舊還) 가운데 전부터 내려오던 것으로 아직 징봉하지 못한 수가 6백섬이라고 보고한 화성유수(華城留守) 조심태(趙心泰)의 장계에 대해 전교하기를, “두 면을 화성부로 이속한 뒤 요역과 세금의 건감을 원하는 대로 해주어 사람마다 화성부민이 되기를 원하게 한 것은 첫째도 소중해서이고 둘째도 소중하기 때문이다. 사소한 구환을 어찌 속면(屬面)이 조금 늦다는 이유로 똑같이 대하는 예로 베풀지 않고 고반양역(高飯揚役)의 괴로움을 주겠는가? 장문(狀聞)한 수를 우선 탕감하고, 그 밖에 무마할 방도를 원래의 주민과 같이 시행해서, 피차를 구별함이 없이 예전대로 돌아가는 것이 낫게 하지 말라. 전에 내린 신칙 하교를 정말로 준수하여 애써 거행하였는가? 경이 다시 화성유수에게 마음에 새기라고 유시(諭示)하라. 광주의 환곡안(還穀案)에서 빼라고 역시 묘당에서 광주유수에게 분부하게 하라.” 하였다.

以華城留守趙心泰狀啓, 日用・松洞兩面, 移屬前廣州, 舊還流來未捧石數, 爲六百石事, 傳曰, 兩面移屬本府之後, 蠲徭省賦, 從願循欲, 欲令人人, 皆爲本府之民者, 一則爲所重, 二則爲所重, 些少舊還, 豈可以屬面之差後, 不與於一視之列, 而以貽高飯楊役之苦乎, 狀聞石數, 爲先蕩減, 外此撫摩之道, 與本府原居之民, 無甚彼此, 而反復勝焉, 果遵前下飭教, 着意奉行乎, 卿更須銘念事, 下諭于華城留守, 廣州糴案拔去之意, 亦令廟堂分付廣留.

<비변사등록 184책, 정조 20년 1796년 11월 24일(음)>

경제/재정

華城에 추가 소속된 두 마을의 還穀 蕩減 與否를 水原留守에게 狀聞하라고 전교하다

○ 전교하기를, “광주(廣州)의 일용면(日用面)·송동면(松洞面) 양면을 화성(華城)에 추가로 소속시키게 되었는데, 구환(舊還)과 최근에 정지한 것이 화성면과 더불어 탕감하는 데 들지 못했다고 어떤 경연관이 말했다. 과연 그런지의 여부와 연도·섬수를 모두 자세히 뒤쪽에 기록하여 장문(狀聞)하도록 수원유수에게 유시를 내리라. 납부를 독촉할 때 일단 혼동해서 받지 말라고 아울러 분부하여 파발에 부쳐 알리라. 이어서 이 뜻을 광주유수에게 문의하고 역시 즉시 장문(狀聞)하라.” 하였다.

傳曰, 廣州之日用·松洞兩面, 追屬於華城之致, 久糴近停, 不與華民共在蕩滌之中, 筵臣有言之者, 其然與否及年條石數, 皆令詳細後錄狀聞事, 下諭于華留, 催科伊時, 姑勿混捧事, 一體分付, 付撥知委, 仍以此意, 問于廣留, 亦卽狀聞.

<비변사등록 184책, 정조 20년 1796년 11월 19일(음)>

경제/재정

華城留守 趙心泰가 일용면에서 납부한 舊還의 出給을 청하다

화성유수 조심태(趙心泰)의 장계에 일용면(日用面) 9호(戶)가 납부한 구환(舊還)을 도로 내주기를 청한데 대하여 판부하기를, “비변사에 계하(啓下)하라. 이미 납부한 3포의 곡물을 도로 찾을 경우 얼어붙은 길과 돌부리에 왕래하면서 은혜가 도리어 폐해가 될 터이니 경은 그것을 우선 충당해서 주라고 정원에서 회유(回諭)하게 하라. 광주부(廣州府)에는 본부(本府:화성부)에서 알리라.” 하였다.

以華城留守趙心泰狀啓, 日用面九戶所納舊還米, 還爲出給事, 判付內, 啓下備邊司爲旆, 爲其已納三包穀物之還推, 往來於冰程石角, 惠反爲弊, 卿其先爲從便充給事, 令政院回諭爲旆, 廣州府段, 自本府知委爲良如教.

<비변사등록 184책, 정조 20년 1796년 11월 26일(음)>

경제/재정

華城留守 趙心泰에게 田民을 하사하고 백성에게 軍餉穀과 還穀의 耗穀의 면제를 전교하다

○ 이달 29일에 전교하기를, “화성(華城) 서장대(西將臺)에서 오늘 밤 훈련은 생략하고 연거(演炬:횃불 연습)만 시행하면 별도로 호령을 하여 응접(應接)함이 격식에 맞고 구율(穀率:알맞은 법도)에 어긋남이 없을 것이다. 더구나 이들은 모두 성정군(城丁軍)으로 단속이 잘 된 입방군(入防軍)과는 더욱 다른데도 이처럼 익숙히 훈련된 것이겠는가! 장수에 적임자를 얻은 효과를 보게 되어 매우 가상하나 이것은 오히려 여벌 일에 속한다. 그리고 조련 이외에 새 성을 두루 둘러보았는데 공로가 많고 일이 크니, 어찌 말을 달려 전쟁한 공로보다 되지겠는가! 화성유수 조심태(趙心泰)에게 특별히 농지와 백성을 떼어준다. 성첩이 완성 되었으므로 지금 제일 급한 것은 ‘집집마다 부유하게 하고 사람마다 화락하게 하는 것[戶戶富實人人和樂]’의 여덟 글자이다. 부유하도록 하는 방법을 지금 묘당의 여러 신하들과 강구하여 마련하는 중이다. 그리고 감면하여 은혜로이 하는 방법 또한 사람을 화락하게 하는 한 가지 일에 속하니, 성 안팎에 거주하는 백성들에게 당년의 군향곡(軍餉穀)과 환곡(還穀)에 대한 모곡(耗穀)을 특별히 면제해 주어 그들의 기대하는 마음에 부응토록 할 것을 유수에게 하유(下諭)하라.” 하였다.

今正月二十九日傳曰, 華城西將臺, 今日夜操, 爲其省略, 只行演炬, 則別號令而應接若式, 穀率不 差, 況此類皆是城丁軍, 尤異於入防軍團束, 而其能 如是鍊熟, 可見將得其人之效, 雖甚可嘉, 猶屬餘事, 且於操外, 遍觀新城, 勢多工鉅, 豈讓汗馬, 華城留守 趙心泰, 特賜田民, 城

堞既完，目今第一，方即戶戶富實人人和樂八箇字，富之之術，方與廟堂諸臣講磨，而蠲惠之方，亦屬人中和一事，城內外居民當年餉與還，特竝除耗，以副渠輩望幸之情事，下諭于留守。
<비변사등록 185책, 정조 21년 1797년 01월30일(음)>

경제/재정

華城留守 趙心泰가 迎華驛의 설치 예산은 還分하여 시기를 기다리자고 하다

정월 30일에 거동(學動)에 입시하였을 때 화성유수 조심태(趙心泰)가 아뢰기를, “영화역(迎華驛)을 창설하는 물력(物力)으로 2만 냥을 구획(區劃)하라는 명령을 받고, 비국에서 호남·영남의 작년 가분모조(加分耗條)를 각 3천석씩 이미 구획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시장의 값이 내리고 계절이 점점 늦어져서 우선 작전(作錢)하지 말고 환분(還分)에 취모(取耗)하여 때를 기다려 판매하여 원가(元價)에 준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그리하라 하였다.

今正月三十日舉動入侍時，華城留守趙心泰所啓，迎華驛創設物力，伏奉二萬兩區劃之命，自備局，以湖南·嶺南昨年加分耗條，各三千石式已爲區劃，而顧今市直低下，節序漸晚，姑勿作錢，使之還分取耗，以爲待時發賣，俾準元價之地何如，上曰，依爲之。

<비변사등록 185책, 정조 21년 1797년 02월01일(음)>

경제/재정

華城을 富實하게 만들기 위하여 帽穴과 家蔘을 華城에서 매매할 것을 청하다

○ 비변사에서 아뢰기를, “세초(歲初)에 원행(園行)을 하실 때 화성(華城)의 성안을 부실(富實)하게 하라는 일로 전교를 내렸는데, 간곡하고 자세하였습니다. 명을 받들어 장점을 따라 기획하여 성상의 뜻을 선양하는 일은 낭묘(廊廟)의 책임인데, 아직 조치하지 못하여 밤낮으로 두려워하다가 지금 시행할 만한 한두 가지 계책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 하나는 모혈(帽穴)에 관한 일이며 또 하나는 가삼(家蔘)에 관한 일입니다. 모자(帽子)는 비록 공물(公物)이기는 하나 근년 이래로 개인 장사꾼에게 내어 주어서 그들이 마음대로 산매(散賣)하게끔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을 화성에 부여하여 연경(燕京)의 시장에서 사오거나 의주(義州)의 점포에서 사들여 한결같이 당시 가격에 따라 비싸거나 싸거나 할 것이 없이 모두 모아서 화성에서 팔방으로 나누어 파급시키면 이것은 전일의 혈법(穴法)은 아니지만 각처의 장사꾼들이 저절로 모여들 것입니다. 가삼은 비록 사사로운 물화이기는 하나 본래부터 부호(富戶)들이 물주(物主)가 되어 그 흥정과 판매를 독점하고 있는데, 또한 다시 화성에 부쳐주어 만약 화성 시장에 모이지 않고는 매매할 수 없도록 할 경우 이윤이 생기는 곳 이므로 물주와 부호들이 틀림없이 앞 다투어 모여들 것입니다. 이것은 옛날에 말한바 각리(權利:이익 독점)가 아니고 지금 말하는바 도매(都買)입니다. 다만 앓아 파는 상인과 걸어 다니는 상인들에게 화성으로 옮겨서 그 일을 전념하게 할 뿐입니다. 이것으로 미루어보면 모자이거나 삼이거나 매우 지장이 될 것은 없어서 마을 거리가 저절로 들어차는 효과가 있게 되고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자연히 혜택이 스며들게 될 것입니다. 목하에 시행할 것은 모자와 삼 두 가지 행정에 벗어나지 않을 듯하니, 이것으로 구획을 허락하는 것이 아마 마땅할 듯합니다. 그 나머지 시행할 조건은 비국과 유수가 충분히 논의하여 절목(節目)을 만들어 영구히 준행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였다.

司啓曰，歲初園幸時，以華城城內富實事，十行絲綸，丁寧諄複，祇奉成命，從長經紀，圖所以對揚，即廊廟之策，而迄未措劃，夙宵惶懼，今有一二可行之策，其一，帽穴事也，其一，家

蓼事也，帽子雖云公物，近年以來，出給私商，任其散賣者，今若付之華城，或貿燕市，或買灣肆，一從時價，無高無下，而都聚之，以爲自華城，分派八方，則此雖非前日穴法，而各處商賈，自當駢填，家蓼雖是私貨，自來富戶作爲物主，全其興販者，又復劃屬華城，若不聚會於華市，俾不得賣買，則利之所在，物主·富戶輩，必將應募而爭趨，此非古所云權利，今所云都賈，特不過使坐賈行商，移於華，專其業而已，以此推之，若帽若蓼，無甚窒礙，而井閭自然有櫛比之效，居民自然獲滲漉之惠，目下設施，似不外乎帽蓼兩政，以此許劃，恐合事宜，其餘合行條件，自備局與留守，爛加商確，成出節目，使之永久遵行何如。

<비변사등록 185책, 정조 21년 1797년 02월20일(음)>

경제/재정

帽穴, 尾蓼을 華城에 소속하는 草記에 대해 먼저 八包蓼의 舊例를 회복하는 것이 좋을 것이며 四方의 富戶가 자연히 모이게 하라고 전교하다

○ 모용(帽穴)과 미삼(尾蓼)을 화성(華城)에 속하게 하는 일의 초기(草記)에 대하여 답하기를, “윤허한다. 이 초기(草記)를 보면 반드시 경과 여러 당상들의 뜻에 적합한 의견이 있을 것이다. 참으로 시험하여 보고자 한다면 먼저 팔포삼(八包蓼)부터 구례(舊例)를 회복하여 중신(重臣)의 말대로 하는 것이 좋겠다. 대체로 화성에 성을 쌓은 것이 소중하기 때문이다. 한(漢)나라 때 부호가(富豪家)를 무릉(茂陵)에 이주시켰는데, 더구나 이 성의 소중함은 선침(仙寢:능원(陵園))을 호위하고 행궁(行宮)을 옹호하는 데에 있는 것이겠는가! 그 체모(體貌)의 존엄하기는 무릉에 비하여 더욱 다른 바가 있는 것이다. 경외(京外) 사방의 부호(富戶)에게 소문을 듣고 앞 다투어 모여들게끔 하되, 마치 물이 아래로 내리흐러 밤낮으로 쉴 틈이 없는 것처럼 부르지 않아도 저절로 찾아오고 구하지 않아도 저절로 이르게 해야 할 것이다. 교역하는 물건은 어느 일이건 논할 것이 없이 어떤 항목이건 구해질 것이 없이 각각 그 하려는 바를 통하게 하며 서로 앞 다투어 그 직업을 권면하게 하고 그 일을 즐기며 그 사는 곳을 편안히 여기고 그 이득을 이롭게 여기도록 하면 이는 이른바 천금(千金)의 집이고 한 도시의 소봉(素封:큰 부자)에 비할 수 있어서 비로소 소중함으로 인해 이 성을 쌓은 효과가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그들의 공효가 얼마나 큰지 성실하고 근실함이 어떠하였는지를 살펴서 차례로 특별히 발탁하여 임금의 말을 신뢰할 수 있다는 도리를 보여주어야 할 것이니, 경들은 잘 알아서 분부하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以帽穴尾蓼屬之華城事草記，答曰，允，觀此草記，卿與諸堂之議，必有的確之見得，苟欲試之，則先從八包蓼復舊例，如重臣言爲可，大抵城于華，爲所重也，漢時徙豪富戶於茂陵，況此城之所重，在於拱衛仙寢，環護行宮，其體貌之尊嚴，比茂陵，尤有別焉，使京外四方之富戶，聞風爭集，若水趨下，日夜無休時，不召而自來，不求而自至，交易之物，無論某事，不拘何項，各令通得其所欲，爭相勸其業，樂其事，安其土，利其利，則是所謂千金之家，可比一都之素封，而始可言爲所重築斯城之功效，於是乎渠輩之功甚鉅，當觀誠實勤恪之如何，次第拔例擢用，以示信王言之義，卿等知悉分付可也。

<비변사등록 185책, 정조 21년 1797년 02월 22일(음)>

경제/재정

常平會錄 및 留庫條와 華山 築城條 환미 등을 華城의 예산으로 區劃을 아뢰다

○ 같은 날 입시하였을 때에 좌의정 채제공(蔡濟恭)이 아뢰기를, “화성(華城)의 성곽과 해자는 지금 이미 완공되었습니다. 다만 성에 비치할 것을 생각하면 이것은 성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이니, 반드시 공화(公貨)를 얻어서 십만의 숫자에 준한 뒤에야 거의 때에 따라 편의한 방도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경외(京外)의 공화는 현재 저축된 곳이 없으니, 반드시 경외(京外)의 각 군영에서 나누어 정하여서 한 곳에만 괴롭게 하는 폐단이 없게 한 후에 이루게 할 수 있고, 별다른 폐단이 일어날 우려가 없을 것입니다. 일전에 우상이 안악(安岳)의 직환(稷還)을 작전(作錢)하는 거조를 시행하지 말도록 진달하여 윤허를 받았습니다. 묘당의 논의가 참으로 사체를 얻었고 직환이 안악의 폐단이 되는 것은 신 역시 알고 있습니다. 필경에는 이미 변통하지 않은 수 없을 것이니, 상평회록(常平會錄) 및 유고조(留庫條) 도합 1만 8천 3백 86석을 모두 화성에 붙여주고 영남의 화산 축성조(築城條) 환미(還米) 1만 1천 7백여 석을 전 도신이 이미 가을을 기다려서 구획하여 처리할 것으로 진달하여 거조를 내었습니다. 그가 구처한 것을 화성에 돌리면 영남에 있어서는 폐단을 없앨 수 있고, 화성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외에 영남 남창(南倉)의 금전 2만냥과 전 도신의 자비전(自備錢) 1만냥, 조창전(漕倉錢) 2만냥, 기영(箕營) 별비전(別備錢) 1만냥, 어영청(御營廳)·금위영(禁衛營) 2영(營)의 회외전(會外錢) 각 5천냥을 화성에 획급하여 편리한 대로 구처하면 큰 성부(城府)에 일후에 소홀하게 될 우려가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국가의 원대한 도모가 되는 것이니, 완할(忤悞:무사안일함)함으로 지낼 수는 없는 것이므로 명목이 비록 번잡한 듯하지만 우리러 진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니, 임금의 그리하라 하였다. 同日入侍時, 左議政蔡所啓, 華城城池, 今 已告完矣, 但念有城而無修城之具, 則此與無城同, 必得公貨 準十萬之數, 然後庶可有隨時方便之道, 而第京外 公貨, 見方無積貯處, 必分定京外各營, 俾無偏苦之 弊, 然後事得以濟, 而無生得別弊之慮矣, 俄者右相 以安岳稷還作錢舉條勿施之意, 陳達蒙允, 廟 堂之論, 誠爲得體, 而稷還之爲安岳之弊, 臣亦知之, 畢竟既不可不變通, 則常平會錄及留庫條, 合一萬 八千三百八十六石, 並付華城, 嶺南之華山築城條 還米一萬一千七百餘石, 內各邑所在條, 廣留纔已請得左兵營所在五千餘石前道臣既以待秋區處, 陳 達出舉條, 其所區處, 歸之華城, 則在嶺民可以除弊, 於華城可以有補, 此外嶺南南倉錢二萬兩及前道 臣自備錢一萬兩, 漕倉錢二萬兩, 箕營別備錢一萬 兩, 御營禁衛兩營會外錢各五千兩, 劃給華城, 使之 徒便區處, 則大城府, 庶無日後疎虞之慮, 此是爲國 家長遠之謀, 不可以忤悞以度, 故名目雖似煩屑, 不 得不仰陳矣, 上曰, 依爲之.

<비변사등록 185책, 정조 21년 1797년 06월 19일(음)>

경제/재정

水原留守 趙心泰가 城 건축과 迎華驛 설치 비용 문제와 園所 位田의 획급에 대해 아뢰다

21일 좌직승지가 와서 기다리고 여러 신하들이 입시하였을 때에 수원유수 조심태(趙心泰)가 아뢰기를, “본부 성의 공사에 재정이 부족하여 호남 가분모미(加分耗米) 7천석을 취하여 쓰고자 하는 뜻을 이미 연품(筵稟)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선 작년 가분모미가 몇 석이나 되는지 당해 도신에게 관문으로 물었는데, 회첩에 말하기를 ‘작년 가분모미는 상진곡(常賑穀)과 각 아문곡(衙門穀)을 물론하고 응하(應下)할 것을 제하고 남은 것은 다만 3천 6백 74석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으로 우선 수효에 충당합니다.’ 하였습니다. 실제 수효가 이미 이와 같으니 우선 이것을 가져다 쓰고 그 나머지 부족한 수효는 이후에 가분모조(加分耗條)로 차차 채워 상납하여 7천석에 준한다는 뜻으로 조항으로 만들어 내어 비국에서 본도에 행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임금의 그리하라 하였다.

또 아뢰기를, “본부의 성첩(城堞)을 수리하는 재정은 대신이 이미 연품하여 거조를 내어 구획하였습니다. 그런데 성을 수리할 도구는 지금 조치하여 마련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화산미조(華山米條)와 안악군(安岳郡)의 직환(稷還)은 형편이 가을을 기다려 봉납한 후에 작전(作錢)하면 지금 쓸 수 없으니, 우선 먼저 균청(均廳) 돈 2만냥과 어영청·금위영 2군영의 돈 각 5천냥을 합한 3만 냥을 옮겨서 빌려 쓴 후에 연말을 기다려 화산미와 안악의 직환을 작전한 것으로 다시 갚으면 진실로 서로 필요로 하는 뜻에 합치될 것입니다. 아래에서 감히 마음대로 편하게 하지는 못하여 감히 이것을 양달합니다.”

하니 임금이 그리하라 하였다.

또 아뢰기를, “영화역(迎華驛)을 설치하는 재정은 작년 겨울에 연고를 받들어, 대신에게 가서 논의하여 영남·호남의 작년 가분모미 각 3천석으로 거조를 내어 구획하였습니다. 영남은 수효대로 취하여 사용하였으나 호남은 가분모가 부족하기 때문에 채워 올릴 수가 없다고 합니다. 이것이 비록 구획에 어긋나지만 그만둘 수 없는 것이니, 이 뜻을 다시 대신과 의논하여 호남의 가분모미 3천석의 대용을 다른 데서 마련하여 수효에 준하여 구획하는 것이 일에 적절할까 하여 감히 이것을 양달합니다.” 하니 임금이 그리하라 하였다.

또 아뢰기를, “원소(園所)의 원역(員役) 및 수호군(守護軍)들에게 획급해주는 위전(位田)은 임금의 특별한 은혜에서 나왔는데 전고(田庫)가 금년 식목의 속에 들어간 것은 그 수가 작지 않습니다. 또 답(畓)으로 급대(給代)하라는 명령을 받드니, 이것은 실로 처음부터 끝까지의 은택이라, 신은 감탄을 견디지 못합니다. 다만 생각건대 해마다 심는 것은 그만둘 수 없는 것이고, 계속 대급해 주는 것은 지나친 조항으로 귀결될 것입니다. 지금 한 가지 조목으로 방편을 할 수 있는 것은 원속(園屬)의 위전을 받는 자에게 화소(火巢) 밖에 한광처(閑曠處)에서 전답을 구해서 대략 위전(位田)의 마지기를 넉넉히 하여 관천고(筦千庫)에 있는 회부전(會付錢)으로 당시 가격으로 신의 군영에서 결정하여 사서 주고 경작을 하여 스스로 의지하여 살 수 있게 한다면 그들에 있어서는 실제 혜택을 받게 될 것이고 본 창고에 있어서는 역시 세수미(歲收米) 1천포가 위전에서 나오는 것은 이것으로 보나 저것으로 보나 진실로 창설에 합치되니, 금년부터 시작하여 차근차근 사서 유이(流伊)하여 거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그리하라 하였다.

또 아뢰기를, “제언(堤堰)을 설치하는 것은 실제 농사를 힘쓰는 데에서 나와서 백성으로 보나 읍으로 보나 관련된 것이 매우 큼니다. 그런데 근년 이래로 막힘이 많아서 이익을 받음이 매우 적으니 생각해 보면 법의 뜻은 진실로 애석해 할 만합니다. 올 봄으로 말하면 몇 달이 가물었습니다. 본부 북성(北城) 바깥의 만석거(萬石渠)의 저수는 1백석(石) 지기 큰 들에 마음대로 물을 대어 그 이익이 큼니다. 이것으로 미루어 보건대 경내에 소재한 제언의 막힌 것을 모두 아울러 소통시키며 준설하여 가을과 겨울에 물을 저장하여 봄과 여름에 이익을 얻는 방도로 삼는 것이 참으로 실리에 힘쓰는 방도일 것입니다. 이미 여러 사람의 이익에 관련되어 스스로 백성의 힘을 빌려서 각각 그 부근의 면리(面里)에 따라 가을을 기다린 후에 소통시키며 파내서 물을 저장하는 것이 농사를 권면시키는 큰 정무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히 이것으로 양달합니다.” 하니 임금이 그리하라 하였다.

또 아뢰기를, “경내에 제언(堤堰)을 소통시키고 준설하는 또 한 가지 절목은 이미 양품하여 윤택을 받았습니다. 만년제(萬年堤) 처소와 원소동구(園所洞口)는 일반 제언에 견줄 것이 아닙니다. 제방 아래에 있는 논이 또한 적지 않으므로 소통시키고 준설시켜 물을 저장하는 것은 더욱 조금도 늦출 수가 없습니다. 논에 김매기가 조금 험거워진 후를 기다려 수확을 시작하기 전에 부근 민정(民丁)이 둔답(屯畓)을 짓는 자와 원에 속한 중들에게 날을 배정하여 부역시키는 것은 그만둘 수 없습니다. 마땅히 별도로 넉넉히 구휼하는 방도를 두어서 공사가 끝날 때까지 1장정 당 매일 2승(升)의 식량 쌀을 지급하는 것이 일에 합치될까

합니다. 이것으로 거조를 내어 시행토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임금의 그리하라 하였다.

또 아뢰기를, “용주사(龍珠寺)를 설치한 것이 지금 8년이나 되었는데 중들이 들어와 사는 것은 그 수가 50명을 넘고 화소(火巢) 안에 나무를 심어 보호하는 등의 절목은 그 효력도 또한 많다고 하였습니다. 비록 위전을 획득하며 요조(料條)를 분배하여 주었지만 매양 먹기 어려운 근심을 면하지 못하여 진실로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중들의 지극한 소원은 남한산성(南漢山城)·북한산성(北漢山城)의 총섭(摠攝)을 한 번 호칭을 빌리는 데에 있는데 본사(本寺)의 중들과 남한산성·북한산성의 중들을 차례를 걸러 윤번으로 차임하는 것이 노고에 보답하는 방법에 맞을 것이며 또한 은혜를 짓게 하는 방도가 될 듯합니다. 이것으로 거조를 내어 광류(廣留:광주유수)·총수(摠帥:총융사)와 상의하여 법을 정해 영구히 준행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임금의 그리하라 하였다.

今六月二十一日坐直承旨來待, 諸臣入侍時, 水原留守趙心泰所啓, 本府城役不足物力, 以湖南加分耗米限七千石取用之意, 曾有所筵稟者, 故先以去年加分耗米爲幾許石, 關問該道道臣矣, 回牒以爲去年加分耗米, 毋論常賑穀, 各衙門穀, 除應下所餘, 只爲三千六百七十四石, 故以此先爲充數云, 實數既如此, 則先以此取用, 其餘不足之數, 以此後加分耗條, 次次充上, 以準七千石之意, 成出舉條, 自備局行會本道何如, 上曰, 依爲之.

又所啓, 本府城堞修補物力, 大臣才已筵稟, 出舉條區劃, 而修城之具, 有不可不及今措備者, 但華山米條, 安岳稷還, 勢將待秋捧後作錢, 則恐無以目下需用, 姑先以均廳錢二萬兩, 禁御兩營錢各五千兩合三萬兩, 推移貸用後, 待歲末, 以華山米, 安岳稷作錢者還報, 宣合相須之義, 而自下有不敢擅便, 敢此仰達矣, 上曰, 依爲之.

又所啓, 迎華驛設始物力, 昨冬伏奉筵教, 就議大臣, 以嶺南·湖南去年加分耗米各三千石出舉條區劃矣, 嶺南則依數取用, 湖南則以加分耗不足, 無以充上云, 此雖違劃, 係是不可已者, 以此意更議大臣, 湖南加分耗米三千石代, 從他拮据, 以爲準數區劃之地, 恐合事宜, 敢此仰達矣, 上曰, 依爲之.

又所啓, 園所員役及守護軍輩劃給位田, 既出特恩, 而田庫之入於今年植木之中者, 厥數不些, 又伏奉以畚給代之命, 此實終始之惠澤, 臣不勝欽頌, 而第伏念年年種植, 係是不可已之事, 續續代給, 恐歸屑越之科, 今有一條, 可以方便者, 使園屬之受位田者, 從火巢外閑曠處, 求得田畓, 略綽其位田斗落, 以筭千庫所在會付錢, 從時價自臣營折定買給, 俾得以耕墾資生, 則在渠輩將受實惠, 在本庫亦當歲收米千包位田之所出, 以此以彼, 稟合創設, 今年爲始, 次次買得, 流伊舉行何如, 上曰, 依爲之.

又所啓, 設築堤堰, 寔出於務本, 以民以邑, 所關甚大, 而近年以來, 湮塞居多, 蒙利甚尠, 言念法意, 固已可惜, 以今春言之, 數朔嘆乾, 而本府北城外萬石渠貯水, 百石落大坪, 惟意灌溉, 其利普博, 以此推之, 境內所在堤堰之湮塞者, 一竝疏濬, 以爲秋冬藏水, 春夏獲利之方者, 允合懋實之道, 而既係衆民蒙利, 自當借用民力, 各隨其附近面里, 使之待秋後疏鑿貯水, 足以爲勸農之大政, 故敢此仰達, 上曰, 依爲之.

又所啓, 境內堤堰疏濬一款, 才已仰稟蒙允矣, 萬年堤處所園所洞口, 非尋常堤堰之比, 而堤下之畓, 亦爲不些, 其所疏濬貯水, 尤不容少緩, 待鉏役稍歇之後, 收穫伊始之前, 附近民丁屯畓作者及園屬僧徒, 排日付役, 在所不可已, 而宜有別般優恤之道, 限畢役, 每丁每日給二升糧米, 恐合事宜, 以此出舉條舉行何如, 上曰, 依爲之.

又所啓, 龍珠寺設置, 八年于茲, 僧徒之入居, 數過半百, 而火巢內植木守護等節, 其所效力, 亦云多矣, 雖有位田之劃給, 料條之分排, 每未免艱食之患, 固已可矜, 而且緇徒之至願, 實在

於南北漢摠攝之一番借號，本寺僧徒，與南北漢僧徒，間次輪差，恐合酬勞之方，亦爲沾溉之道，以此成出舉條，與廣留摠帥，相議定式，永久遵行何如，上曰，依爲之。

<비변사등록 185책, 정조 21년 1797년 06월 22일(음)>

경제/재정

華城 修城 物力으로 보내야 할 禁衛營의 封不動 중에서 推移하도록 하다

○ 같은 날 입시하였을 때에 금위대장 서유대(徐有大)가 아뢰기를, “화성(華城)을 수성(修城)하는 물력은 금위영과 어영청 두 군영의 회계 외의 돈 각각 5천냥으로 구획하게 하였는데, 신의 군영은 본래 회계 외의 명색(名色)이 없으니, 봉부동(封不動) 중에서 옮겨서 보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임금의 그리하라 하였다.

同日入侍時，禁將徐有大所啓，華城修城物 力，以禁御兩營會外錢各五千兩區劃，而臣營本無會外名色，封不動中推移以送何如，上曰，依爲之。

<비변사등록 185책, 정조 21년 1797년 06월 24일(음)>

경제/재정

右議政 李秉模가 華城校吏의 料米를 廣州倉穀의 耗條로 마련하는 문제를 논의하다

○ 이번 7월 12일 약방에서 입진하고, 대신과 비국당상을 인견하여 입시하였을 때에 우의정 이병모(李秉模)가 아뢰기를, (….) 또 아뢰기를, “경기감사 이재학(李在學)이 비국에 보고한 내용을 보니, ‘화성(華城)의 교리(校吏)의 매년 요미(料米) 2백 석 영(零)을 안성(安城) 등 7개 읍 소재 군역청의 군작미(軍作米)에서 모조(耗條)를 취해 운반해 오는데, 운반비용을 마련하지 못해 작년의 모조를 아직 수송하지 않았으니 공곡(公穀)에 회부하는 것을 정식으로 삼아 회감하겠습니다.’ 하였습니다. 운반비용의 회감은 과연 그만둘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다만 이 곡물이 7개 읍에 분산되어 있어 운반해 보낼 즈음에 폐해가 생길 단서가 없지 않을 듯하니, 화성 성내 소재 광주(廣州) 창곡(倉穀)의 모조를 종전대로 화성에 도로 소속시켜 편리한 대로 취용해 교리에게 지급할 급료의 수요로 쓰게 한다면 매우 편하고 좋겠습니다. 이를海道臣(該道臣) 및 화성유수, 광주유수에게 분부하고, 전에 안성 등에 떼어주었던 군역청 군작미는 그대로 두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임금의 이르기를, “그리하라. 당초 허획한 것은 남한산성이 보장(保障)이기 때문인데, 지금 이미 화성에 다시 소속되었으니 대신 지급할 방도를 수신(守臣)에게 물어 연석에서 물러난 뒤 초기하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今七月十二日，藥房入診大臣·備局堂上引見 入侍時，右議政李所啓，(…) 又所啓，即見京畿監司李在學，報備局辭緣，則 以爲華城校吏，每年料米二百石零，以安城等七邑 所在均廳軍作米取耗輸送，而馱價不爲磨鍊，昨年耗條，尚未輸送，以會付公穀，定式會減爲辭矣，馱價 會減，果是不可已之事，而第念此穀，分在七邑，輸送 之際，似不無爲弊之端，華城城內所在廣州倉穀耗 條，依前還屬於華城，使之從便取用於校吏支放之 需，則事甚便好，以此分付於該道臣及華城留守·廣州留守處，前劃安城等邑均廳軍作米，置之，何如，上曰，依爲之，當初許劃，爲南城保障也，今既還屬於 華城，其給代之方，問于守臣，筵退後草記，可也。

<비변사등록 186책, 정조 21년 1797년 07월 12일(음)>

경제/재정

安城 등 7읍에 있는 均廳 軍作米 耗條를 廣州府에 移劃할 것을 청하다

○ 비변사에서 아뢰기를, “화성(華城)의 교리(校吏)의 매년 요미(料米) 2백 석 영(零)을, 화성 소재 광주 창곡의 모조(耗條)를 종전대로 화성에 도로 소속시켜 급료의 수요로 가져다 쓰게 하고, 전에 안성 등 7개 읍에 떼어주었던 균역청 군작미는 그대로 두자는 거조에 비치에서 ‘그리 하라. 당초 허획했던 것은 남한산성이 보장(保障)이기 때문인데, 지금 이미 화성에 소속되었으니 대신 지급할 방도를 수신에게 물어 연석에서 물러난 뒤 초기하는 것이 좋겠다.’고 명하셨습니다. 삼가 비치에 따라 광주유수 서유린(徐有隣)에게 물었더니 이르기, ‘조정에서 특별히 남한산성의 보장을 위한 지방(支放)의 수요였는데 이렇게 대신 지급하라는 명을 내리셨으니 참으로 감격과 다행스러움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대신 지급할 것으로 어느 지방 어느 곡물을 써야 할지는 오직 묘당에서 구획(區劃)해야 할 일이라 실로 어떻게 해야 좋을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수신에게 물으라고 명하셨으므로 또한 감히 대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안성 등 7개 읍 소재 균역청 군작미의 모조로서 일찍이 화성에 획급한 만큼 허획한다면 편한 대로 이무(移貿)하여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하였습니다. 균역청의 군작미를 그대로 두자고 청하자마자 수신이 또 이 쌀을 청한 것은 7개 읍의 폐단을 없애는 뜻과는 거리가 아주 멍니다. 그러나 광주부에서 편한 대로 이무한다면 각 읍에서 화성으로 운반해 보내는 것에 비해 폐해가 적을 듯합니다. 게다가 운반비용은 거론하지 말라고 한 일에도 역시 들어맞으므로 우선 이대로 시행하도록 분부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화성에 보내야 할 안성 등 7개 읍의 모조는 병진년(丙辰年)의 모조인데 지금 광주로 소속시키면 화성 소재 광주창(廣州倉)의 작년 모조를 화성에서 가져다 쓰고 난 뒤에는 피차 상당하게 됩니다. 이 일은 화성유수와 광주유수가 서로 상의하여 편한 대로 처리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답하였다.

司啓曰, 華城校吏, 每年料米二百石零, 以華城所在廣州倉穀耗條, 依前還屬於華城, 取用於支放之需, 前劃安城等七邑均廳軍作米置之事, 舉條批旨內, 依爲之, 當初許劃, 爲南城保障也, 今既還屬於華城, 其給代之方, 問于守臣, 筵退後草記, 可也事, 命下矣, 謹依批旨, 問于廣州留守徐有隣處, 則以爲自朝家, 特軫南城保障支放之需, 有此給代之命, 誠不勝感幸, 而給代之當用何地方何穀物, 惟在 廟堂區劃, 實不知如何爲好, 而問于守臣, 既有成命, 亦不敢不對, 若以安城等七邑所在均廳軍作米耗條之曾劃華城者, 稱其數許劃, 則從便移貿, 庶可支用云矣, 均廳軍作米, 纔請置之, 守臣所請, 又在此米, 殊非七邑除弊之意, 而自該府, 從便移貿, 則比諸各邑之輸送華城, 爲弊似少, 至於駄價則勿爲舉論事, 亦已停當, 姑爲依此施行之意分付, 而安城等七邑耗條之當送華城者, 卽丙辰條也, 今若屬之廣州, 則華城所在廣州倉昨年耗條, 自華城取用, 然後可以彼此相當, 此則令華城留守及廣州留守, 往復相議, 從便區處, 何如, 答曰, 允.

<비변사등록 186책, 정조 21년 1797년 07월13일(음)>

경제/재정

水原 鷗浦의 舊還 文券을 불사르고 新還 耗條를 면제하는 일에 대해 전교하다

전교하기를, “수원(水原) 구포(鷗浦) 주민의 구환(舊還) 문권을 불사르고 신환(新還)의 모조를 면제해주는 일을 거동 행차가 지나는 제읍의 예에 따라 하라고 했는데, 그동안 어떻게 거행했는가? 거행 상황과 탕감한 수에 대해 아직 장문하지 않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이런 뜻으로 하유하라. 구환 향곡(餉穀)과 환곡을 아울러 거행할지에 대해서는 광주유수(廣州留守)가 역시 연석에서 아뢰어 아울러 거행하라고 하였으니 본부 역시 이에 따라 하라고 모두 하유하되, 문권을 태울 때 주민을 불러오고 판관(判官)을 내보내 물어 편한 대로 거행하라고 역시 수원유수에게 하유하라.” 하였다.

傳曰, 水原鷗浦民人舊還焚券, 新還除耗, 當依輦路諸邑例爲之, 其間何以舉行, 而舉行形止, 蕩減數爰, 姑無狀聞何也, 此意下諭, 舊還之餉與還竝舉與否, 廣留, 亦有筵稟, 使之竝舉矣, 本府亦依此爲之事, 一體下諭, 而焚券時招致民人, 與出送判官, 問從便舉行, 亦爲下諭于華留.
<비변사등록 186책, 정조 21년 1797년 09월 04일(음)>

경제/재정

右議政 李秉模 등이 각 道의 舊還 分定 문제와 海西의 水災民을 救恤하는 문제를 논의하다

○ 같은 날 입시하였을 때에 우의정 이병모(李秉模)가 아뢰기를, “제도의 구환을 지금 분배해야 하는데 올해 농사가 골고루 잘 되지 않아 영남과 호남은 이미 연교(筵敎)를 받았는데, 해서 역시 재해를 입은 읍이 많으니 아울러 그냥 두겠습니다. 작년에 고 재상이 가장 오래된 몫부터 먼저 거둬들이자고 연석에서 아뢰었는데, 이는 실로 정도를 지킨 논의이지만, 민정으로 보아서 끝내 편치 않는 점이 많으니 올해는 근래의 예에 따라 가까운 연도부터 거슬러 올라가야 하겠습니다. 경기도는 수원(水原)·광주(廣州)·강화(江華)의 갑인조를, 관서는 병진조부터 임자조까지를, 북관은 갑인조부터 무신조까지를, 호남은 을묘조 2천 5백여 섬과 갑인조 가운데 1만 섬을 한정해 함께 16만여 섬을 분배해 정하되, 모조리 다 징봉한 연조(年條)는 주민이 보는 곳에서 즉시 장부를 불살라 아전의 농간을 영구히 끊어 민폐를 깨끗이 없애고 나서 예로 삼도록 각 해도에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그리하라. 수원은 써서 들인 수를 보고 갑인년의 구환을 특별히 논하지 말라고 하였다. 이로 말미암아 생각하니 북관의 무술년조를 60섬이라고 기록했던데 이는 탕감하도록 분부하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

同日入侍時, 右議政李所啓, 諸道舊還, 今當分排, 而今年年事, 未得均登, 嶺南·湖南既奉筵敎, 海西亦多災邑, 竝置之, 昨年故相, 以先從最久條收捧之意, 有所筵稟, 此固守經之論, 而揆以民情, 終多難便, 今年則依近例, 自近年條溯而上之, 京畿水原·廣州·江華甲寅條, 關西自丙辰至壬子條, 北關自甲寅至戊申條, 湖西則乙卯條二千五百餘石及甲寅條中, 限萬石, 合十六萬餘石分定, 而沒數收捧之年條, 則民人所見處, 卽焚其簿, 永絕吏奸, 洞除民弊, 仍以爲例事, 分付各該道, 何如, 上曰, 依爲之, 水原則見石數謄入者, 甲寅舊還, 特爲勿論, 因此思之, 北關有戊戌年條六十石載錄者, 此則蕩減事, 分付, 可也.(…)

<비변사등록 186책, 정조 21년 1797년 09월 19일(음)>

경제/재정

右參贊 沈煥之가 整理穀을 돈으로 나눠주고 쌀로 거두는 폐단 등에 대해 논의하다

○ 이번 10월 7일 대신과 비국당상을 인견하여 입시하였을 때에 의정부우참찬 심환지(沈煥之)가 아뢰기를, “신이 바깥 읍에 둔 정리곡(整理穀)을 나누어주고 거둬들이는 일에 관한 소문을 듣고 놀랍고 통탄스러움을 이기지 못해 감히 아립니다. 정리(整理)라는 명칭은 능행 때 호조 판서를 정리사(整理使)로 삼은 예에서 비롯되었는데, 전하께서 아버이를 사랑하시는 효심으로 천만 년에 한 번 오는 경사를 맞아 어머님의 수레를 받들고 화성(華城)에 나아가 탄신을 축하하고 만세를 부르는 성대한 의식을 치르면서 내부(內府) 잔치 비용에서부터 아래로 수행 관료의 군마(軍馬)와 노자 및 양식에 드는 자본까지 호조의 재정과 영읍(營邑)의 공급을 번거롭게 하지 않고 가만히 성지(聖智)를 운용하셔서 별도로 구획하셨습니다. 이를 정리라는 이름으로 여러 신하들이 받들어 거행하였는데, 의식을 거행하던 날에 이미 많은 노인들을 봉양하고 또 사민(四民)을 구제하였습니다. 경사를 넓히고 은혜가 오래도록 뻗

치게 하신 성념(聖念)을 온 나라의 백성에게까지 미치게 하시며 하교하시기를, ‘이 해 이 날을 맞아 이 땅에서 이 예를 행하였다. 백성은 내 적자인데도 집집마다 쇠고기와 술을 주어 모두 마시고 취하게 하지 못하였으니 내 마음이 어찌 서운하지 않겠는가? 백성은 질박하여 내 마음을 자기 마음처럼 생각할 것이니 어찌 나라와 더불어 즐기고 기뻐하지 않겠는가?’ 하셨습니다. 그러고는 마침내 정리소에서 쓰고 남은 돈 2만 냥을 세 도와 팔도에 나누어주고 한 냥의 돈을 피곡(皮穀) 한 포(包)로 바꾸어 다음해부터 봄에 나누어주고 가을에 거두어들이게 하였는데, 혹 종자로 삼기도 하고 혹 농량(農糧)으로 삼기도 하여 우리의 좋은 종자를 유구히 전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어머니의 은혜를 널리 베풀려는 성상의 효심에서 나와, 넉넉하여 다하지 않는 혜택을 남겨두어 많은 백성에게 미치는 자본으로 삼았으므로, 아무리 어리석고 미친한 백성이라도 역시 한 알 한 알이 모두 성상의 은혜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과 함께 경축하고자 하는 성대한 덕과 지극한 선은 돈어(豚魚)처럼 미련한 사람도 믿게 하고 목석처럼 감정이 없는 사람도 감화시킬 것입니다. 이 또한 을묘년에 정리곡을 설치해 둔 까닭입니다. 감사나 수령의 반열에 있는 자와 농사짓는 무리가 그것을 처음 만든 본 뜻을 체득하고 큰 은혜를 입었다는 점을 생각하면 누군들 가슴 벅차게 느끼지 않고, 누군들 숙연히 효심이 일지 않겠습니까? 누구나 파종할 때면 송축하고 밭상을 대할 때면 춤을 출 것입니다. 감영과 읍을 맡은 신하가 농간을 일삼는 간사한 무리에게 내맡겨둔 채 성상의 뜻을 선양하는 방법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이는 참으로 사람의 마음이 없는 자입니다. 더구나 재작년에 호서에서의 거행이 해피하여 비변사에서 아뢰고 신척하는 하교까지 내리셨으니 듣고 본 사람들은 모두 경각심을 가지고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할 터인데도, 지금 들으니 남쪽 지방 여러 읍에서는 아직도 혹 돈으로 나누어 주고 정미(正米)를 강제로 받는 곳이 있으며, 돈으로 수십 문(文)을 나누어주고 쌀 7, 8말을 받으며 그것을 정리곡이라 한다고 합니다. 그 밖의 제도에서도 봄이면 수십 냇을 뿌려주고 가을이면 3, 4배를 거둬들이는데, 전환(錢還)이 습관으로 굳어 이문을 얻는 소굴로 간주한다는 민간의 소문을 들으니 놀랍고 어지럽습니다. 대체로 이 곡물은 한 번 돈을 곡물로 바꾼 뒤로는 본래 거래할 수 있는 전변(錢邊)이 없습니다. 더구나 피곡과 잡곡을 사버려 애초에 가져오지도 않았는데, 돈으로 나누어주면서 정리라 하고 쌀로 받으면서 정리라고 핑계 대니 도대체 무슨 뜻이란 말입니까? 성상께서 먼 지방과 가까운 곳을 똑같이 대하고 어머니의 은덕을 널리 베풀려는 지성과 고심(苦心)을 가로막아 행해지지 못하게 하고, 도리어 백성에게 폐해를 끼치는 실마리를 제공하게 하다니, 생각이 여기에 미치면 어찌 통탄스럽지 않겠습니까? 묘당에서 엄히 조사하고 적발하게 해서 당해 수령을 의금부에 잡아들여 합당한 율을 적용해 다스리고, 제대로 검찰하지 못한 도신 역시 즉시 엄중히 처벌하여 후일을 징계하는 발판으로 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정리곡을 설치해 시행한 것은 을묘년에 회갑연을 치른 끝에 어머니의 은혜를 널리 오래도록 미치게 하고자 하는 지성과 고심에서 나왔다. 필히 피곡으로 나누어주게 한 것은 봄에 한 알을 심어 가을이면 만 알을 거둬들여 천년만년 낳고 또 낳아 다하지 않고 영구히 드리우려는 뜻을 견해 붙였기 때문이다. 설사 불량하고 염치없는 아전이 있다 하더라도 어찌 차마 이문을 먹으려는 죄를 낸단 말인가? 돈으로 나누어주고 쌀로 받아들이는 짓의 놀랍고 밋살스러움은 일단 따지지 않더라도, 감히 여기에서 벗겨내고 감히 여기에서 거둬 모으다니, 그 죄는 장오죄(贓汚罪)로만 논해서는 안 된다. 일이 이미 발각되었는데도 엄한 법으로 중히 다스리지 않으면 어떻게 소민에게 사죄하겠는가? 또한 어찌 이와 같이 덕을 퍼는 일을 반대로 하도록 내버려 둘 수 있겠는가? 오늘 여기 와서 이 일을 듣는

자는 건도(乾道)가 매우 밝음을 볼 수 있을 것이다. 감사의 신칙하지 못한 죄는 드러나는 대로 등급을 나누어 처벌하겠으니, 먼저 각기 관하 열읍(列邑)에서 죄를 범한 사람부터 일일이 적발해 장문하라. 하나라도 부지런히 하지 않다가 혹 어사가 나갔을 때 발각되리라도 하면 그 도백을 먼저 의금부에 잡아다가 문에 나가 친히 신문하여 중히 여기는 뜻을 보이겠다고 먼저 엄하고 분명하게 분부하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今十月初七日，大臣·備局堂上引見入侍時，議 政府右參贊沈煥之所啓，臣於外邑所置整理穀分斂之事，有所聞不勝駭惋者，敢此仰達矣，整理之 名，昉於陵幸時，戶曹判書爲整理使之例，而以 殿下愛日之聖孝，頃當萬千年一遇之慶會，奉慈 駕而詣華城，誕舉呼嵩之盛典，上自內府供億之費，下至從官軍馬盤纏糗糧之資，不煩大農之經用，營 邑之供給，而默運聖智，別爲區劃，此以整理，諸臣之 奉而舉行者也，及當觀華之日，既養群老矣，又濟四 民矣，廣慶覃恩之聖念，至及於環海億兆之衆，而 聖教若曰當是年是日，行是地是禮，而民吾赤子，既 無以家給牛酒，人皆醉飲，則於予心，豈不欲然，民之 質矣，以予心爲心，亦豈不思與國家同樂而共歡乎，遂以整理用餘錢二萬兩，分送三都八道，俾以一兩 之錢，作爲皮穀一包，自其明年，春以散而秋以斂，或 爲種子，或爲農糧，貽我嘉種，傳之攸久，出自聖孝，覃以慈惠，留有餘不盡之澤，爲用敷厥庶之本，則 雖愚夫愚婦之微，亦當知其粒粒皆恩，人人同慶之 盛德至善，可以孚豚魚而感木石，此又所以乙卯整 理穀之建置者也，凡在按藩守土之列者，服田緣畝 之類，體其創始之本意，念其蒙被之洪私，其孰不油 然而觀感，惕然而興孝，頌祝於播種之時，而鼓舞於對飯之際乎，若營邑之臣，一任舞弄之奸，不思對颺(揚)之方，則是眞無人心者，況於再昨年，以湖西舉行之 駭然，至登籌啓，仰煩飭教，則瞻聆所及，庶皆警動 而知懼，而今聞南中諸邑，尙或有以錢分給勒捧正 米之處，錢分數十文，米捧七八斗，謂之整理之穀，其 外諸道春散數十葉，秋斂三四倍，錢還成習，而看作利寶，民間傳說，聽聞駭惑，大抵此穀，一自以錢作穀 之後，本無錢邊之可賈者，且況皮雜之質，本不取米，則錢分之謂以整理米捧之，托以整理，抑何意也，以 聖上均視遐邇廣布慈德之至誠苦心，闕而不行，反爲貽弊民間之端，思之及此，寧不痛惋，請令廟堂，嚴覈摘發，當該守令，拿致王府，繩以當施之律，不能 檢察之道臣，亦卽嚴勘，以爲徵後之地，何如，上曰， 整理穀之設施，乙卯奉觴上壽之餘，出於廣慈惠 覃慈恩之至誠苦心，而必以皮穀派分，兼寓春種 一粒，秋收萬顆，生生不窮於千永垂之義，設有不良 無恥之吏，寧忍萌計於賭利，而錢分米捧之駭惡，姑 無論，敢於此剝割，敢於此聚斂者，其罪不可但以贓汚論，事既發覺，若不嚴法重繩，則何以謝小民乎，亦豈可使此布德之舉，一任其相反乎，今日來此而聞 此者，可見乾道之孔昭，按道者不飭之罪，從當隨現 分等勘處，先從各其管下列邑，犯科之人一一摘發狀聞，一有不謹，致或現發於按廉之行，則其道伯，爲先拿致王府，臨門親問，以示爲所重之意，爲先嚴明 分付，可也。

<비변사등록 186책, 정조 21년 1797년 10월07일(음)>

경제/재정

水原留守 徐有隣이 吏卒料布의 재원을 마련 등의 문제에 대해 논의하다

이번 11월 18일 우승지가 입시하고 와서 기다리던 여러 신하가 함께 입시하였을 때에 수원 유수 서유린(徐有隣)이 아뢰기를, “유수의 직책은 주·부·군·현(州府郡縣)과 다르므로 조정에서 한 부(府)의 토지와 인민을 모두 다 소속시켜 혹 관리하는 자본으로 삼기도 하고 혹 보장의 재원으로 삼기도 하였는데, 개성(開城)·강화(江華)·남한산성(南漢山城)이 바로 이들입니다. 이번에 화성(華城)을 유수부로 승격시킨 뒤로 체례(體例)와 지위와 명망이 어떨습니까? 각종 상납은 여전히 그대로여서 부사(府使) 모양을 하고 있으니 직책을 물으면

삼도(三都)의 위에 있지만 그 속을 보면 삼도의 아래로 나와 명실이 들어맞지 않습니다. 또한 외영의 규모와 제도는 내영을 본떴으므로 해 관리와 병졸의 명색은 자연히 많지만, 요포(料布)를 마련해 두는 문제에 대해 아직까지 가닥을 잡지 못하여 성안이 준비하지 못한 것 역시 이 때문입니다. 지금의 재력이 이미 옛날의 재력에 미치지 못하니 전체를 소속시킨 삼도의 예를 다 적용할 수 없는 점이 있고 호조의 세입(歲入)이 되는 세를 아직 거론할 수는 없겠지만, 이미 많지 않은 대동세 상납은 그 수가 이미 많지 않고 대신 지급하는 것으로 마련해 그대로 받아 두기까지 하였으니, 결전(結錢)은 삼도의 예에 따라 구획하여 일의 면모를 존중하고 급료의 재원을 마련하게 하는 것이 사리에 합당할 듯하므로 감히 아뢰입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그리하라. 삼도에 이미 그 예가 있고 더구나 본부이랴? 대동미의 여조(餘條)로 상납하는 것은 급대(給代)로 하지 말고 특별히 떼어 내주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또 아뢰기를, “본부는 새로 창설한 곳이므로 향곡과 지출에 필요한 재원이 매번 부족함을 염려하게 되어 똑같은 보장으로서도 넉넉함과 부족함에 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강도(江都)에 구획한 태안(泰安)의 전세(田稅)에 대해 10년 동안의 총수를 살펴보니, 절미가 풍년이 들면 거의 4백 섬에 가깝고 흉년이 이라도 2백여 섬인데, 본부에 둔전을 설치하여 향곡의 재원이 넉넉해질 동안 우선 떼어 넘겨주도록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그리하라 하였다.

또 아뢰기를, “광주부(廣州府)의 창고에 들였다가 바치는 것을 상납하지 않는 것은 본래 사례에 기재되어 있는 바인데, 일찍이 일용면(一用面)과 송동면(松洞面)의 대동세 결전은 광주에 있을 때는 상납하지 않던 것을 본부로 온 뒤로는 상납하게 하니 일의 체모로 보아 얼마나 다른지? 광주의 예에 따라 그대로 본부에 두고 향곡에 첨가하거나 혹 경비로 쓰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그리하라 하였다.

今十一月十八日，右承旨入侍，來待諸臣同爲入侍時，水原留守徐有隣所啓，居留之職，與州府郡縣有異，自朝家，舉一府土地人民而全屬之，或以爲管理之資，或以爲保障之需，松京·沁都·南城是也，今此華城陞留之後，體例地望，顧何如也，而各項上納之自在依舊是府使貌樣，問其職則居於三都之上，而考其中則出於三都之下，名實之不副，有如是矣，且外營規度，取倣內營，核吏卒隸，名色自多，而料布設置，尙不就緒，城內之未能櫛比，亦由於此，今之財力，既不及古之財力，三都全屬之例，有不可盡用，度支歲入之稅，姑不爲舉論，而至於大同上納，數既不多，磨鍊給代，仍爲捧留結錢，則依三都例區劃，以爲尊事面需支放之地，恐合事宜，故敢此仰達矣，上曰，依爲之，三都既有其例，況本府乎，以大同米餘條上納者，勿爲給代，特爲劃付，可也。

又所啓，本府以新創之地，餉需支放，每患不足，同是保障，優乏懸殊，江都區劃泰安田稅，取考十年摠則折米，豐則爲近四百石，歉則爲二百餘石，本府設置屯田，餉需有裕間，姑令移劃，何如，上曰，依爲之。

又所啓，廣州之府倉入上，無所上納，自是事例所載，曾前移屬一用松洞兩面稅大同結錢，在廣州時則不爲上納，來本府後，使之上納，揆以事面，殊涉如何，依廣州例，仍留本府，以爲添餉或支放之地，何如，上曰，依爲之。

<비변사등록 186책, 정조 21년 1797년 11월 23일(음)>

경제/재정

行幸 治道 때 田夫에게 給復하는 일에 대해 하교하다

○ 이달 4일에 동부승지가 입시하고 와서 기다리던 여러 신하들도 함께 입시하였을 때에 임금이 말하기를, “행행(行幸)을 위한 길을 닦을 때 전부(田夫)에게 급복(給復)하는 일에 관한 장계를 비록 이미 보았지만 경들이 모두 경연에 나와 각자 소견을 진술하는 것이 좋겠다.”

하니, 수원유수(水原留守) 서유린(徐有隣)이 말하기를, “신의 얕은 소견은 이미 장문(狀聞) 가운데 다 들어 있으나 값을 지불하는 조항은 끝내 구차스러운데 관계됩니다. 보수(步數)를 계산하여 급복함으로써 고르게 미쳐서 영원히 폐단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제일 좋을 듯합니다.” 하였다.

광주유수(廣州留守) 홍억(洪億)이 말하기를, “본부(本府)에 마침 치도전(治道錢)으로 조치한 것이 매년 1년의 잉여가 있으므로 그 보수(步數)를 계산하여 이 전(錢)을 나누어 지급하여 그들이 노역을 면하게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화성(華城)과 시흥(始興)·과천(果川) 2현이 모두 급복하기로 정하였다면 일의 형편이 달라서는 안되므로 다시 전부(田夫)에게 급복하는 방향으로 통일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하였다. 경기감사(京畿監司) 이재학(李在學)이 말하기를, “시흥과 과천의 전부에게 급복하는 일에 대하여 신도 장본(狀本) 속에 어리석은 견해를 모두 진술하였으나 화성에서 이미 원결(元結)로 획급(劃給)하였다면 양 읍도 반드시 별도로 구획하여 화성의 예에 따라 원결로 획급하여야 하며, 15보(步)마다 1부(負)의 조세를 면제해 주기로 이미 수원유수와 의견을 주고받아 결정하였습니다. 지금 은혜로우신 전하의 마음으로 나누어주는 액수가 혹 적을 것을 특별히 진념하시어 열심히 하문하셨으니, 신 등이 감히 만에 하나라도 대양(對揚)하지 않겠습니까? 10보마다 1부의 조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정하고 전부를 계산하여 나누어주는 것을 영원한 법식으로 삼는 것이 고르게 베풀고 영원히 혜택을 주는 방법인 듯합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급복은 일체로 마련하고 과천과 시흥은 궁결(宮結) 가운데에서 제급(除給)하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今正月初四日同副承旨入侍，來待諸臣同爲入侍時，上曰，幸行治道時，田夫給復事狀啓，雖已見之，卿等皆登筵各陳所見可也，水原留守徐有隣曰，臣之淺見已悉於狀聞中，而給價一款終涉苟簡，恐不如計步給復之平均派及，永久無弊矣，廣州留守洪億曰，本府則適有治道錢措置者，每有一年餘剩，故計其步數，分給此錢，使之防其身力矣，今則華城及始·果二縣皆以給復爲定，則事勢不可異同，更爲給復田夫，以爲歸一之地似好矣，京畿監司李在學曰，始興·果川田夫給復事，臣亦悉陳愚見於狀本中，而華城既以原結劃給，則兩邑亦必別爲區劃，依華城例，就元結劃給，而十五步一負已與華留往復酌定矣，今以優惠之聖念，特軫分給之或少，至勤下詢，臣等敢不對揚萬一乎，若以十步定爲一負，計夫分給仍爲恒式，則恐爲均施永惠之道矣，上曰，以給復一竝磨鍊，果川·始興則宮結中除給可也。

<비변사등록 187책, 정조 22년 1798년 01월 04일(음)>

경제/재정

華城의 免稅 받지 못한 곳 등의 세금을 모두 면제해 준 후 狀聞하라고 전교하다

○ 전교하기를, “화성 성내의 성지(城址)와 집터 가운데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데 세금을 내면서 면세를 받지 못한 곳과 화소(火巢)에 추가로 편입된 전토(田土)로서 관천고(筭千庫)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도지(賭地)도 납부하고 세금도 내어야 하는 곳으로 면세를 받지 못한 곳에 대하여 모두 세금을 면제해 준 후에 장문(狀聞)하라고 수령에게 분부하라.” 하였다.

傳曰, 華城城內如城址·家基等不納稅, 而出稅未及免稅者及迫定界, 火巢田土之屬於筦千庫者, 既 納賭地, 又應公稅, 而未及免稅處, 竝免稅後狀聞事, 分付守臣.

<비변사등록 187책, 정조 22년 1798년 02월04일(음)>

경제/재정

華城의 耗穀을 免除해 주고 萬年堤 공사 등 園寢을 호위하는 방도에 대해 전교하다

전교하기를, “원침(園寢)을 본부(本府)에 모신 지가 지금 10년이 되었다. 나 소자(小子)는 오를 수도 없고 따라가지도 못할 애통함을 안고서도 날마다 몸소 쇄소(灑掃)를 점검하고 아침저녁으로 살피는 정성을 펴지 못하였다. 오직 부(府)의 여러 백성들이 이 지역에 살면서 원침의 나무를 길이 바라보고 원침을 함께 보호하니 내가 어찌 이 부(府)를 제향(帝鄉)처럼 보지 않을 수 있으며 이 백성들을 친구처럼 대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러나 10년 동안 세월만 보내면서 구태를 벗지 못하였으니 어느 일이 인정(仁政)에 가까웠으며 어느 정치가 백성들을 편하게 하였는가. 조세를 감면하는 정책은 빈자와 부자에게 함께 시행하기 어려우며, 백성들에게 요역을 면제해주는 일은 옛날과 오늘날이 각각 그 사정을 달리한다. 오직 조적(糶糴)할 때 모곡(耗穀)을 면제해주는 일은 인화(人和)의 정책이다. 을묘년 정리곡(整理穀)을 모두 화성(華城)에 유치하여 모곡을 면제하고 조적을 행하는 것이 당초 나의 본뜻이었으나 그렇게 시행하지는 못하였다. 듣자하니 그 곡식의 총 수량이 분배할 만하다고 한다. 지금부터 화성의 환향(還餉)은 모두 정리곡이라고 부르고 인하여 그 모곡을 면제해 주라. 그런데 이곳이 유사(留司)로 승격된 이후 백성들이 곡식이 많이 출납되는 것을 괴로워하고 있으니 수령으로 하여금 이러한 뜻을 잘 알아서 나누어주고 거두도록 하라. 원침 아래의 토지 중에 화소(火巢)로 들어간 곳에 대하여 처음에는 10배로 가격을 쳐서 주었으며 2차도 역시 그렇게 하였다. 그러나 제 3차와 4차로 경계를 획정할 때는 1차나 2차와는 상반되었으니 이 부분도 적절하게 헤아려서 더 지급하라. 크게 둔전을 개설하고 마음대로 동막이를 쌓는 것 또한 백성들의 식량을 풍부하게 하려는 뜻에서 나온 것이지만 근래에 들으니 부세가 번거롭고 요역이 무겁다고 한다. 이것도 아래 백성들을 보태어 주는 정치가 되어야 하므로 즉시 좋은 방향으로 조치하도록 하라. 친군위(親軍衛)를 특별히 설치한 것은 우림위(羽林衛)의 전례를 모방한 것이다. 그런데 장수는 제대로 살피지 못하고 이에(吏隸)들은 이로 인하여 농간을 부리니 이 또한 연교(筵敎)에 따라 특별히 바로잡아라. 만년제(萬年堤)의 공사는 중요하다. 이는 위로는 원침을 위하고 아래로는 민생을 위하는 것이므로 준설비용은 대내(大內)에서 내려주어야 할 것이다. 환궁한 뒤에 날짜를 정해서 공사를 시작하고 반드시 농사일이 시작되기 전에 준공하라. 이들 몇 가지 조항은 원침을 호위하는 방법이며, 이를 연장하면 백성들이 생업을 즐기게 할 수 있다. 나머지 거행할 것들은 묘당에 부치니 조목을 열거하여 지위(知委)하라.” 하였다.

傳曰, 自奉園寢於本府, 今焉爲十年, 予小子抱 莫攀靡泊之慟, 而不能日日躬檢灑掃, 以展晨昏之 誠, 惟府之群黎百姓居是地, 長瞻宰樹, 共護珠丘, 予安得不視是府如視帝鄉, 待是民如待故人, 然於 十年之間, 荏苒因循, 何事近於仁政, 何政可以便民, 減租 之政, 貧富難以竝施, 賜復於民, 古今各異其宜, 惟糶 糴之除耗, 爲人和之策, 乙卯整理穀之竝置華城, 除 耗糶糴卽予當初本意, 而未果爲者, 聞其穀摠庶可 排比, 自今華城還餉竝稱整理穀, 仍除耗穀, 而陞爲 留司以後, 民以穀多爲苦, 令守臣知此意斂散, 園 底田土之入於火巢處, 初准十倍之直, 再亦如之, 三 四次定界也, 與初·再相反, 此亦量宜加給, 而大有設 屯, 如意築垌, 亦出爲民足食之意, 近聞賦繁役重, 此 亦當爲益下之政, 俾卽從長措處, 親軍衛之特置, 實 倣羽林衛之例, 而

將不致察，吏緣爲奸，亦依筵教，別一般釐正，至於萬年堤役所重，上爲園寢，下爲民生，疏導之費當有內下，回鑾後卜日經始，必趁農作前告竣，凡此數條爲園寢拱衛之道，推以及於民生之樂業，自餘舉行，付之廟堂條列知委。

<비변사등록 187책, 정조 22년 1798년 02월04일(음)>

경제/재정

整理穀은 華城에만 留置하고 각 道의 整理穀은 該廳에서 糶糴하게 할 것을 청하다

○ 비변사에서 아뢰기를, “전교하기를, ‘원침(園寢)을 본부(本府)에 모신 지가 지금 10년이 되었다. 나 소자(小子)는 오를 수도 없고 따라가지도 못할 애통함을 안고서도 날마다 몸소 쇄소(灑掃)를 점검하고 아침저녁으로 살피는 정성을 펴지 못하였다. 오직 부(府)의 여러 백성들이 이 지역에 살면서 원침의 나무를 길이 바라보고 원침을 함께 보호하니 내가 어찌 이 부(府)를 제향(帝鄉)처럼 보지 않을 수 있으며 이 백성들을 친구처럼 대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러나 10년 동안 세월만 보내면서 구태를 벗지 못하였으니 어느 일이 인정(仁政)에 가까웠으며 어느 정치가 백성들을 편하게 하였던가. 조세를 감면하는 정책은 빈자와 부자에게 함께 시행하기 어려우며, 백성들에게 요역을 면제해주는 일은 옛날과 오늘날이 각각 그 사정을 달리한다. 오직 조적(糶糴)할 때 모곡(耗穀)을 면제해주는 일은 인화(人和)의 정책이다. 을묘년 정리곡(整理穀)을 모두 화성(華城)에 유치하여 모곡을 면제하고 조적을 행하는 것이 당초 나의 본뜻이었으나 그렇게 시행하지는 못하였다. 듣자하니 그 곡식의 총 수량이 분배할 만하다고 한다. 지금부터 화성의 환향(還餉)은 모두 정리곡이라고 부르고 인하여 그 모곡을 면제해주라. 그런데 이곳이 유사(留司)로 승격된 이후 백성들이 곡식이 많이 출납되는 것을 괴로워하고 있으니 수령으로 하여금 이러한 뜻을 잘 알아서 나누어주고 거두도록 하라. 원침 아래의 토지 중에 화소(火巢)로 들어간 곳에 대하여 처음에는 10배로 가격을 쳐서 주었으며 2차도 역시 그렇게 하였다. 그러나 제 3차와 4차로 경계를 확정할 때는 1차나 2차와는 상반되었으니 이 부분도 적절하게 헤아려서 더 지급하라. 크게 둔전을 개설하고 마음대로 동막이를 쌓는 것 또한 백성들의 식량을 풍부하게 하려는 뜻에서 나온 것이지만 근래에 들으니 부세가 번거롭고 요역이 무겁다고 한다. 이것도 아래 백성들을 보태어 주는 정치가 되어야 하므로 즉시 좋은 방향으로 조치하도록 하라. 친군위(親軍衛)를 특별히 설치한 것은 우림위(羽林衛)의 전례를 모방한 것이다. 그런데 장수는 제대로 살피지 못하고 이에(吏隸)들은 이로 인하여 농간을 부리니 이 또한 연교(筵教)에 따라 특별히 바로잡아라. 만년제(萬年堤)의 공사는 중요하다. 이는 위로는 원침을 위하고 아래로는 민생을 위하는 것이므로 준설비용은 대내(大內)에서 내려주어야 할 것이다. 환궁한 뒤에 날짜를 정해서 공사를 시작하고 반드시 농사일이 시작되기 전에 준공하라. 이들 몇 가지 조항은 원침을 호위하는 방법이며, 이를 연장하면 백성들이 생업을 즐기게 할 수 있다. 나머지 거행할 것들은 묘당에 부치니 조목을 열거하여 지위(知委)하라’고 명하였습니다. 지금 이 정리곡을 모두 화성에 유치하고 모곡을 면제하여 조적하는 것은 화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또 이 곡명(穀名)을 붙인 것은 곡명이 본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특별히 모곡을 면제하였으니 비단 화성의 백성들이 고무하고 기뻐할 뿐만 아니라 중외(中外)의 사람들이 이를 보고 듣는다면 누가 흠양하고 칭송하지 않겠습니까. 오늘부터 정리(整理)라는 이름이 붙은 곡식을 단지 화성에만 유치하고 더 이상 1포(包)라도 다른 도(道)에 흩어놓지 않는다면 각 도에서 유치하고 있는 정리곡을 현시점에서 조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것들을 모두 상진곡(常賑穀)으로 통합하여 해청(該廳)으로 하여금 규례에 따라 조적하도록 하십시오. 화성의 모곡

면제를 대신할 것에 대하여는 이미 도신 및 수신과 상의한 바가 있으니 추후에 품처(稟處)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희한다고 답하였다.

司啓曰，傳曰，自奉園寢於本府，今焉爲十年，予小子抱莫攀靡泊之慟，而不能日日躬檢灑掃，以展晨昏之誠，惟府之群黎百姓居是地，長瞻宰樹，共護珠丘，予安得不視是府如視帝鄉，待是民如待故人，然於十年之間，荏苒因循，何事近於仁政，何政可以便民，減租之政貧富難以並施，賜復於民，古今各異其宜，惟糶糴之除耗爲人和之策，乙卯整理穀之並置華城，除耗糶糴卽予當初本意，而未果爲者，聞其穀摠庶可排比，自今華城還餉並稱整理穀，仍除耗穀，而陞爲留司以後，民以穀多爲苦，令守臣知此意斂散，園底田土之入於火巢處，初准十倍之直，再亦如之，三四次定界也，與初·再相反，此亦量宜加給，而大有設屯，如意築垆亦出爲民足食之意，近聞賦繁役重，此亦當爲益下之政，俾卽從長措處，親軍衛之特置，實倣羽林衛之例，而將不致察，吏緣爲奸，亦依筵教，別般釐正，至於萬年堤役所重，上爲園寢，下爲民生，疏導之費當有內下，回鑾後卜日經始，必趁農作前告竣，凡此數條爲園寢拱衛之道，推以及於民生之樂業，自餘舉行，付之廟堂條列知委事命下矣，今此整理穀之並置華城，除耗糶糴，有以仰華城之故，置此穀名，穀名之自有所重，故特除其耗，不但華城民庶鼓舞歡欣，抑亦中外瞻矚，孰不欽頌，從今以後整理爲名之只在華城，更無一包之散在他道者，則諸道所置整理穀，不可不及今區處，一並屬之常賑穀，令該廳依例糶糴，華城除耗之代，已與道守臣有所商確，從後稟處何如，答曰，允。

<비변사등록 187책, 정조 22년 1798년 02월04일(음)>

경제/재정

修城整理穀은 備局的 句管穀으로 옮기고 八道와 道帥臣에게 알릴 것을 청하다

○ 비변사에서 아뢰기를, “제도(諸道)의 정리곡(整理穀)은 지금 이미 화성(華城)의 향곡(餉穀)으로 이환(移換)하였습니다. 이른바 수성정리곡(修城整理穀)의 명색도 좋을 대로 조치하라고 연교(筵敎)를 받았습니다. 처음 실시할 때 아래에서 거행하면서 성지(聖旨)를 잘 알지 못하여 억지로 명색을 만들었기 때문에 각 읍에서는 어느 곡(穀)이 어느 곡인지를 혼동하였으며 이를 빙자하여 피해를 끼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지금 이 성교(聖敎)는 혼잡한 곡명(穀名)을 없애어 침범하고 속이는 간악한 폐단을 영원히 막기 위한 것입니다. 지금부터 제도에 있는 수성정리곡을 비국(備局)의 구관곡(句管穀)으로 옮기십시오. 그리고 비국에서 구관(句管)하는 것도 명색이 일정하지 않으므로 이것은 그것이 소재한 도(道)에 따라 구관곡의 명색을 본사(本司)에서 소상하게 행회(行會)하도록 하십시오. 수성정리곡은 없는 읍이 없지만 비국의 구관곡은 읍마다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 지역은 명색을 바꾸어 비국의 구관곡이 있는 읍에 합하여 기록하도록 하여 수성정리곡의 명색이 더 이상 각 도(道)와 각 읍(邑)에 존재하지 않는 것이 적절하다는 사실을 제도로 하여금 분명하게 알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글을 작성하여 팔도(八道)와 삼도(三都)의 도신(道臣)과 수령에게 분부하십시오. 제도 가운데 북관(北關)은 본래 정곡(正穀)이 적어 일이 불편한 점이 많으므로 그 곡수(穀數)를 다른 도와 바꾼다면 편리할 것입니다. 이 점도 함께 분부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희한다고 답하였다.

司啓曰，諸道整理穀今既移換於華城餉穀，所謂修城整理穀名色，亦卽從長區處事，伏奉筵敎矣，此穀設始時在下舉行，未能諳悉聖旨，強作名色，不但各邑眩於某穀之爲何穀，藉此貽弊不一其端，今此聖敎寔出於祛其混雜之穀名，永杜侵欺之奸弊，自今爲始，諸道所在修城整理穀，移作備局句管穀，而備局句管中名色亦自不一，此則隨其道之所在，句管穀名，自本司消詳行會，

修城整理穀，則無邑不在，而備局句管穀，則非是邑皆有者，此等處則換 名合錄於備局句管穀所在邑，使諸道曉然知修城整理穀名色之更無所在於各道各邑爲宜，以此措辭 分付於八道及三都·道守臣處，諸道中北關正穀本 少，事多難便，以其穀數換置他道，實合方便，亦以此 意一體分付何如，答曰，允．

<비변사등록 187책, 정조 22년 1798년 02월04일(음)>

경제/재정

화성행궁에 거동했을 때 廣州의 城餉 5千石을 畿內에 移轉에 대해 하문하다

이달 3일에 화성행궁(華城行宮)에 거동하여 입시하였을 때에 임금이 말하기를, “광주(廣州)를 분사(分司)한 뒤에 성향(城餉) 5,000석을 기내(畿內)의 20개 읍으로 이전한 일은 비록 부득이한 조처였다. 근래에 들으니 이전한 각 읍의 모곡(耗穀)을 돈으로 만들 때 폐단이 없지 않다고 하니 즉시 바로잡지 않을 수 없다.”

하니, 좌의정 채제공(蔡濟恭)이 아뢰기를, “광주의 향곡(餉穀)을 각 읍으로 이전한 일이 폐단이 됨은 과연 북한성향(北漢城餉)의 폐단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저는 성교(聖敎)를 듣고 우러러 칭송함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지금 변통한다면 기내의 백성들에게 혜택이 됨이 이보다 큰 것은 없을 것입니다.” 하였다.

우의정 이병모(李秉模)가 아뢰기를, “이 곡식을 각 읍에 나누어 두고 모곡을 받아 돈을 만드는 것은 대개 곡식이 축이 나는 해목은 폐단을 방지하고 지방(支放)의 수요를 보충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나누어주고 거둘 때에 백성들에게 많은 피해를 끼치며 돈으로 바꿀 적에 간사한 짓들이 잇따라 발생합니다. 성상께서도 이미 그 사실을 자세히 알고 계신 것으로 압니다. 지금 바로잡는 일은 그만둘 수 없습니다. 지금부터 원곡(元穀)의 절미(折米) 5,000여 석을 도내(道內)의 유고(留庫)에 소속시키고 기영(畿營)의 아무 곡식 가운데서 매년 모곡 300석을 상정가(詳定價) 900냥으로 환산하여 편의에 따라 광주로 이송하고, 부족한 200석의 대금은 연전에 진(鎭)이 나갔을 때 쓰고 남은 쌀 200석을 우선 수령에게 붙여둔 것이 있으니 이것으로 보충하면 넉넉할 것입니다. 폐단을 바로잡는 방도는 이보다 나은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도신과 수령으로 하여금 왕복하며 거행하도록 하는 것이 사의에 합당할 듯합니다. 근자에 들으니 남한산성의 향곡(餉穀) 5,000여 석을 호서(湖西)에 바꾸어 둔 것이 있는데 그 폐단도 기읍(畿邑)과 다르지 않다고 합니다. 이 또한 앞의 예에 따라 함께 바로잡는 것이 성상의 생각을 더욱 우러러 본받는 도리에 합당합니다. 그래서 함께 아뢰니다.” 하니, 임금이 그리하라고 하였다.

今二月初三日華城行宮舉動入侍時，上曰，廣州，分司後，城餉五千石之移轉畿內二十邑者，雖出於不得已之舉，而近聞移轉各邑耗條作錢之際，不無受弊之端云，不可不趁卽釐正矣，左議政蔡曰，廣州餉穀之移轉各邑者，其所爲弊，果無異於北 漢城餉之弊，伏聞聖敎不勝欽頌，及今變通，則畿民惠，恐無大於此矣，右議政李曰，此穀之分置各 邑取耗作錢者，蓋出於杜反哺之宿弊，補支放之需用，而斂散之際，民弊已多，執錢之時，奸竇層生，伏奉聖敎已入俯燭矣，及今釐正在所不已，自今以後，元穀折米五千餘石屬之道內留庫，自畿營某樣穀中，耗條三百石每年以詳定價九百兩，從便移送於廣州二百石不足之代，則年前出鎭時，有用餘米二百 石之姑付守臣者，以此充補，綽有餘裕，矯揉之道恐無出此，令道守臣往復舉行，似合事宜，近聞南城餉米五千餘石之換在湖西者，其所爲弊與畿邑無異云，亦依右例一體釐正，尤有合於仰體聖念之道，故竝此仰達矣，上曰，依爲之．

<비변사등록 187책, 정조 22년 1798년 02월 06일(음)>

경제/재정

右議政 李秉模가 臺論 때문에 行公하지 않은 備局堂上 李書九의 推考를 청하다

○ 이번 3월 16일 대신과 비국당상을 인견하여 입시하였을 때에 우의정 이병모(李秉模)가 아뢰기를, (….) 또 아뢰기를, “화성(華城)의 정리곡(整理穀)에서 모곡을 제(除)한 대충(代充)을 구획할 방도에 대해서 이 뒤에 품처하겠다는 뜻으로 저번에 이미 초기(草記)하여 윤허를 받았습니다. 마땅히 급대(給代)해야 할 수용(需用)을 상고해 보니 매년 쌀 3천 8백2석 영(零)과 각곡(各穀) 2천 석이 되었습니다. 상진곡(常賑穀)과 비국구관곡(備局句管穀)의 모조(耗條) 중에서 매년 쌀 2천 2석 영과 각곡 2천 석을 양남(兩南)과 해서(海西)에 분배하고 혹시 부족하면 어떤 아문의 곡식이든지 논하지 말고 추이(推移) 안배하고 준절(准折)하여 시행하며, 쌀 1천 8백 석은 기읍(畿邑)의 칙수미(勅需米)가 점점 불어나 민폐가 적지 않다고 하니 매년 모조를 이 수량에 준하여 일체 회급(劃給)하고 아울러 작전해서 편리한 대로 취해 쓰게 하며 ‘을묘년(乙卯年)의 작미조(作米條) 2백 6석과 작년 구포(鵠浦) 백성에게 모(耗)를 제해 준 각곡(各穀) 절미(折米) 1백 91석 영을 지금 당장 조치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니, 이 역시 기읍(畿邑)의 환미(還米)로 금년에만 회급하라는 뜻으로 아울러 각기 그도의 도신(道臣)과 화성유수(華城留守)에게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그리하라 하였다. (….)

今三月十六日大臣備局堂上引見入侍時，右 議政李所啓，(…) 又所啓，華城整理穀除耗之代，區劃之方，從後 稟處之意，頃已草記蒙允矣，取考其當爲給代之 需，則每年米爲三千八百二石餘，各穀爲二千石，就 常賑穀與備局句管穀耗條中，每年米二千二石餘，各穀二千石分排於兩南及海西，如或不足，則無論 某衙門穀，推移排比，准折施行，米一千八百石，則畿 邑勅米數漸滋多，民弊不少云，以每年耗條准此數，一體劃給，竝令作錢從便取用，乙卯作米條二百六 石及昨年鵠浦民除耗各穀折米一百九十一石餘，不可不及今措處云，此亦以畿邑還米，只今年劃給 之意，竝爲分付於各該道臣及華城留守何如，上 曰，依爲之.(….)

<비변사등록 187책, 정조 22년 1798년 03월16일(음)>

경제/재정

本府의 還穀이 種糧에 이롭다면 적당히 加分 하도록 廟堂에서 水原留守에게 전교하다

○ 전교하기를, “본부(本府)의 환곡을 절반은 나누어 주고 절반은 유고(留庫)한 뒤에 백성들의 먹을거리가 어렵다고 말하지는 않았던가? 참으로 종자와 식량에 이롭다면 적당히 헤아려 가분(加分)하는 것도 괜찮으니 묘당에서 수원유수(水原留守)에게 분부하게 하라.” 하였다.

傳曰，本府還穀半分半留之後，民食不至奏艱乎，苟有利於種糧，量宜加分，亦可令廟堂分付水原留守.

<비변사등록 187책, 정조 22년 1798년 05월 07일(음)>

경제/재정

右議政 李秉模가 作錢의 規定 및 정리곡 문제 등을 논의하다

○ 같은 날 입시하였을 때에 우의정 이병모(李秉模)가 아뢰기를, “황해감사 이의준(李義駿)의 상소에 대한 비지(批旨)에 ‘군향(軍餉)도 아니고 또 백성의 식량과도 다르며 교서관(校書館)의 이폐조(釐弊條)로서 임진년(壬辰年)에 관서(關西)의 곡식으로 떼어 부친 것은

특별히 임시 편의를 위하는 일에서 나왔으며 그 사이 본도로 이속(移屬)됨으로 인하여 근자에는 또 내각(內閣)과 오가면서 갈등을 빚었으니 경(卿)이 불안해 함은 마땅하다. 한 마디로 말해서 그 곡식이 없었다면 이런 부끄러움이 없었을 것이다. 그러니 경이 청원한대로 특별히 혁파(革罷)되 도로 분류조(分留條)로 넘겨주어 조정을 해와 달위에 더 높혀야 한다는 경의 말은 참으로 옳다. 경이 주연(胄筵)의 옛날 신료로 이와 같이 숨김이 없으니 특별히 맡겨준 은혜를 저버리지 않았다고 말할 만하다. 영향(營餉)의 절반을 나누어 주는 일과 상채곡(償債穀)은 나누어주지 않는 일과 곡식이 많은 곳에는 골고루 나누는 일 역시 말이 떨어지면 즉각 허시(許施)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그래도 사세를 알지 못하니 아울러 묘당에서 해당 당상과 일찍이 도백(道伯)을 지낸 사람에게 주좌(籌坐)에서 상세히 물어서 뒷날 빈대(賓對)에서 회계(回啓)하여 폐단에서 소생시키고 병폐를 구제하도록 하라 부진(附陳)한 작전(作錢)의 폐단은 재물을 손상시키고 백성을 병들게 하는 것이 무엇이 이보다 심하겠느냐? 역시 묘당에서 강구하여 확정하여 그 폐단을 고치고 대신을 충당하는 방도를 아뢰게하라'고 명을 내리셨습니다. 그 소본(疏本)을 가져다 보니

그 하나는 갑인(甲寅)·정사(丁巳) 양 년에 획급한 **장영조(壯營條)**가 4만 6천 석인데 을묘년(乙卯年)에만 작전을 하였고 그 외에는 해마다 모두 나누어주어, 모조(耗條)를 키웠으니 그것이 지방(支放)하는 시급한 수요가 아님을 알 수 있으나 마침내 목하 백성의 폐단이 되고 있는데, 그 이획(移劃)은 사실 상평(常平)·관향(管餉)·자비(自備) 등의 곡식에서 온 것이니 만약 원래의 규정대로 절반은 유고(留庫)하고 절반은 분급(分給)한다면 감영에는 저축이 되고 백성에게는 폐단을 덜게 된다는 일이고,

그 하나는 계축년(癸丑年) 큰 흉년이 든 뒤로 정퇴(停退)가 많아 지방(支放)이 그로 인해 감축(減縮) 되었으므로 을묘년(乙卯年)에 장계로 청하여 가분(加分)한 것이 4만 4백 석 영(零)인데, 병진년(丙辰年)에 조령(朝令)으로 인하여 정퇴조(停退條) 중에서 4분의 3을 이미 받아올렸으니 지방(支放)에 보충해 준 외에도 오히려 남은 수효가 많았으므로 빚을 갚을 때에 이것으로 더러는 폐단을 구제하고 더러는 방역(防役)을 하였는데 지금에 와서는 온 도의 큰 병폐가 가분보다 더한 것이 없으므로 그 폐단을 구제하고 방역한 것 중에서 가장 긴요하여 폐지할 수 없는 것은 전례대로 그대로 둔다 하더라도 지금은 그 절반인 3만 2백 석은 도로 유고조(留庫條)로 만들어야 한다는 일이며,

그 하나는 환곡이 많은 폐단은 해주(海州) 등 여섯 고을이 가장 심한데 해주는 지난해 겨울에 각종 곡식 수만 포(包)를 곡식이 적은 고을에 나누어 보냈고, 안악(安岳)은 전 군수(前郡守)가 연중에서 아뢰어 감소시킨 것만도 2만 포에 가까우며, 황주(黃州)·봉산(鳳山) 두 고을은 폐단을 구제하는 대책을 시험하려 하였으나 구애되는 일이 많아 마침내 시행하지 못하였고 은율(殷栗)은 영곡(營穀)의 가분조(加分條) 중에서 1천여 석을 유고조로 이작(移作)하였지만 풍족한 실혜는 되지 못하였으며 신천(信川)은 아직 좋은 계책이 없으니 만약 유고조에서 넉넉히 얻어 여러 고을에 분배(分排)하면 족히 영원토록 백성들의 폐단을 제거하게 되겠다는 일이고,

그 하나는 환곡(還穀)을 작전(作錢)함에 있어서 아무리 곡식이 천한 때라도 반드시 높은 값으로 강제 징수하여 잡비(雜費)를 계산하는데 가령 좁쌀 1석의 값이 3냥이면 강제로 5냥을 받고 있으니 이 뒤로는 작전(作錢)하여 공용(公用)으로 삼는 것은 한결같이 상정례(詳定例)에 의거하여 거행해야 한다는 일입니다. 영향(營餉)을 절반은 분급하고 절반은 유고하는 일은 굳이 백성에게 이익이 된다면 어찌 조금이라도 유보(留保)하거나 지난(持難)하겠습니까 마는 올해는 절서(節序)가 이미 늦었으므로 생각하건대 이미 그전대로 거행하였을 것이니

우선 후일을 기다렸다가 좋을 도리로 품쳐해야 하겠습니다. 을묘년(乙卯年)에 장청(狀淸)한 가분곡(加分穀)의 일은 당해 감영의 정퇴조(停退條)를 이미 받아 올려 지방(支放)에 채워준 외에도 오히려 남은 곡식이 많아 빚을 갚을 때에 이 곡식을 끌어다 썼다는 것은 극히 의아롭습니다. 지금에 와서 절미(折米)하여 유고시키는 것은 자래로 당연히 행해온 일이기 때문에 이미 비국에서 관문을 보내어 법에 의거하여 분급하고 유고하게 하였으므로 황주·봉산·은율·신천 고을 등의 환곡이 많은 폐단은 바로잡아 구제할 수 있으니 별도로 품쳐할 것이 없겠습니다. 환곡의 작전을 한결같이 상정례에 의거하는 일은 팔도의 각 아문(衙門)을 통틀어 한 가지로 규정을 정하기 전에는 당장에 피차(彼此)를 가리키는 어렵고 또 관서의 전 도신이 아뢰는 내용 가운데 한결같이 도신에게 일임해야 한다고 한 것은 참으로 득당(得當)한 말이므로 양서(兩西)를 달리할 수 없으니 여기에 의거하여 시행하라는 뜻으로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그리하라 하였다.

또 아뢰기를, “팔도(八道)와 사도(四都)에서 정리곡(整理穀)을 빙자하여 농간을 부리는 곡절에 대하여 그 실상을 조사한 장계를 본사에 봉(封)해 두었다가 맥추(麥秋)를 기다려 품쳐하라는 명을 내리셨는데 지금은 맥추가 지났으니 오늘 차대에서 품쳐해야 하겠습니다. 그 장본(狀本)을 가져다 보니 경상감사 이형원(李亨元)은 그가 거행한 바가 가장 극히 만홀(漫忽)하였습니다. 이른바 적발(摘發)하였다는 몇 몇 고을도 억지로 잘못을 찾아 조리(條理)를 이루지 못하였고 장사(狀辭)의 논열(論列)도 대충대충 미봉하여 마치 엄외(嚴畏)를 모르는 것처럼 하였습니다. 본곡(本穀)의 소중한 바가 과연 어떠한고 중신(重臣)이 아뢰는 바가 과연 어떠한으며, 열 줄의 비지(批旨)가 지극히 절엄(截嚴)하셔 받들어 읽고 나면 모골(毛骨)이 송연(竦然)하였으니 도신이 된 자는 비록 진장(眞贓: 참된 장물)을 찾아내서 패히 해당하는 율문으로 시행하지는 못했다 하더라도, 봉행(奉行)하는 바는 진실로 놀랍고 두렵게 여겨 몸 둘 바를 알지 못하도록 해야 하는데 당해 도신이 이와 같이 무엄(無嚴)한 것은 참으로 생각이 미치지 못한 바입니다. 신이 놀랍고 의아하게 여긴 것은 죄인을 사출(查出)하지 못한 데에 있지 않고 사실은 조사하는 체통이 전혀 근실하고 엄외하지 않는데 있으며, 당소(堂疏: 옥당(玉堂)의 상소)의 논책도 먼저 이미 엄준(嚴峻)하였고, 암행어사의 서계에서 적발한 것이 또 다른 일에 미쳐 바야흐로 나문(拿問)하라는 엄명이 계셨으므로, 해부(該府)에서는 응당 형물을 상고하여 처단해야지 감히 율명(律名)을 양청할 수는 없습니다. 전라감사 이득신(李得臣)은 거행하는데 급해 심지어 자질구레하여 번거롭게 상문(上聞)할 수 없는 일까지 모아 등철(登徹)하였으니, 조사하는 체통으로 논한다면 만만 온당치 못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실정을 추구하면 오로지 극진함을 다하려다가 도리어 상격(常格)을 잃은 소치이니 우선 중중추고해야 하겠습니다. 충청감사 한용화(韓用和)는 조그마한 서리의 농간을 너무 장황(張皇)하게 말하였는데 실정은 비록 황급(慌急)한 데서 나왔다 하더라도 그 형적은 도리어 산만(散慢)으로 흘렀으니 추고(推考) 경책(警責)해야 하겠으며, 그 나머지 5도(道)와 4도(都)는 특별히 논책(論責)할 것이 없겠습니다. 이제 와서는 본곡은 모두 화성(華城)에 소속되었으니 다른 도의 민읍(民邑)과는 더는 관련이 없으므로 이 도나 저 도를 막론하고 원장계를 감히 모람되게 향안(香案) 앞에 등철시킬 수 없으니 모조리 물시(勿施)하되, 그 가운데 이번 조사하는 일로 인하여 다른 죄가 드러난 고을은 원장계를 물시한다고 해서 그 일까지 그대로 덮어둘 수 없으니 이는 각해 도신으로 하여금 별도로 장계를 갖추어 죄상을 조열(條列)하게 하고 해부(該府)에서 나처(拿處)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아뢰는 대로 하라 지금은 정리곡이란 것은 모두 화성에 소속되었으니 마치 ‘가죽이 없는데 털이 어디에 붙겠는가?’ 하는 말과 같으나, 중신이 아뢰는 바는 전

문(傳聞)의 착오가 없지 않다. 이는 도리어 다행스럽게 여길 만하나 열읍(列邑)에서 죄과를 범한 것이 있고 없음은 우선 덮어두고 라도 그때 거조(舉條)에 대한 비지(批旨)가 얼마나 절엄(截嚴)하였관데 도신이 된 자는 분의(分義)와 도리로 헤아리더라도 의당 두렵게 여기고 몸 둘 바를 몰라 하며 죽기를 각오해도 죽지 못한 것처럼 해야 하는데 이른바 이형원(李亨元)이란 자는 은권(恩眷)을 후하게 입어 여러 차례 외람되이 감사의 직임을 맡았으니 그 두려워하고 근신할 바가 어찌 전라감사·경기감사·충청감사만 못하겠는가마는 그 거행을 상고해 보면 두려워하고 겁내는 것이 전혀 없고 장계내용의 보잘 것 없음과 사건 조사의 부실함은 곧 팔도 도신이 감히 하지 못하는 바였다. 감영의 막료를 풀어 열읍을 침학(侵虐)함으로서 백성들이 비명을 지르지 않는 이가 없어 도리어 이 막중한 정리곡을 골치를 앓고 이마를 찌푸리는 거리로 간주하게 하였으니 참으로 이른바 죄 위에 죄를 더한 것이라 하겠다. 그간에 경연의 신하가 이을 논주(論奏)하는 자가 있었으나 금년 보리 추수를 기다린 뒤에 처분(處分)하자는 말이 이미 백성을 위하는 뜻에서 나왔으니 가볍게 먼저 잡아다 조사할 수 없으므로 우선은 이달이 지나기를 기다렸었다. 이제는 새 도백이 사조(辭朝)하고 봉해 둔 장계도 뜯어보았는데 만약 이형원을 혹시라도 너그럽게 용서한다면 지난해 절엄했던 하교가 한 번의 희극(戲劇)으로 돌아가게 될 터이니 나라가 있고 법이 있는 바에 어찌 그럴 수가 있겠는가? 지금 사람은 나약하고 기력(氣力)이 없기 때문에 순수하게 촉(蜀)나라를 다스리던 정사를 적용할 수 없는 것은 육군자탕(六君子湯)의 증세에다 대승기탕(大承氣湯)을 투하(投下)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었으나, 이로 인하여 모든 일이 시들부들하고 사람들이 법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는데 목하의 일 역시 여기에서 연유하였다. 그를 잡아오기를 기다려 엄중히 가두고 엄히 신문하여 구조(口招)를 받되 만에 하나 납공(納供)할 즈음에 호도(糊塗)하려 한다면 의당 경연에서의 하교대로 조처할 것이니 우선 해부(該府)에 이렇게 분부하여 옥에 가두기를 기다려 즉시 개좌(開坐)하여 거행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同日入侍時，右議政李所啓，黃海監司李義駿上疏，批旨，既非軍餉又異民食，而枝書館釐弊條，壬辰劃屬關西穀特出權宜之舉，間因移屬本道，近又內閣之往復葛藤，宜乎卿之難安，蔽一言曰，無其穀則無是恥，依卿所請，特爲革罷還付分留條，尊朝廷於日月之上云者，卿言誠是矣，卿以胄筵舊僚，有此無隱，亦可謂不負特畀，至於營餉之半分事，償債穀勿分事，穀多處均分事，亦當言下卽施，猶未知其事勢，竝令廟堂詳問該堂及曾經道伯人於壽坐時，後日賓對回啓，以爲蘇弊揀瘼之地，附陳作錢之弊，其爲傷財病民孰甚於是，亦令廟堂講確，革其弊而充其代之方，以聞事，命下矣，取見其疏本，則其一，甲寅·丁巳兩年所劃壯營條，爲四萬六千石零，乙卯只有作錢，而逐年盡分，以長耗條，則其非支放之急需可知，而遂爲目下民弊，其所移劃實日(自脫?)常平管餉自備等穀而來者，若依原式半留半分，則於營爲積貯，於民爲除弊事也，其一，癸丑大歉後，停退夥然，支放因以減縮，故乙卯狀請加分爲四萬四百石零，而丙辰因朝令停退條中，四分之三既已捧上，則支放充給之外，猶多剩數，故償債時以此，或救弊或防役，而到今一道巨瘼無過於加分，故就其揀弊防役條中，最緊而不可廢者，雖仍舊貫，而方以折半二萬二百石，還作留庫條事也，其一，還多之弊海州等六邑最其甚者，海州則昨冬各穀數萬包分送於穀少邑，安岳則前郡守筵奏減却者，亦近二萬包，黃·鳳兩邑欲試揀弊之策，以多掣礙，竟未果焉，殷栗則營穀加分條中，千餘石移作留庫條，而不足爲實惠，信川則姑乏善策，若優得留庫條分排諸邑，則足以永除民弊事也，其一，還穀執錢雖當穀賤之時，必以高價勒徵，計其雜費，假使小米一石價爲三兩者，勒捧五兩，從今以後，凡于作錢之爲公用者，一依詳定例舉行事也，營餉半分半留事，苟利於民，豈或留難，而今年則節序已晚，想已依前舉行，姑待來頭從長稟處，乙卯狀請加分穀事，該營停退條，既以捧上支放充給之外，猶多剩穀，則償債時

拖及此已極 可訝，到今折米留庫自是應行之事，故已自備局發 關，使之依法分留，則黃·鳳·殷·信等邑還多之弊，優可 矯揉，別無可以稟處者，還穀執錢一依詳定事，通 八道各衙門一通定式之前，姑難彼此，且關西前道 臣所奏中，一付之道臣云云，誠得其宜，兩西不可異 同，依此施行之意，分付何如，上曰，依爲之。

又所啓，八道·四都憑藉整理穀幻弄委折查實 狀啓，封置本司待麥秋稟處事，命下，而今則 麥秋已過，今日次對當爲稟處矣，取見其狀本，則 慶尙監司李亨元其所舉行，最極慢忽，所謂摘發之 若而邑，亦是強覓，而不成條理，狀辭論列草草彌縫，有若不知嚴畏者，然本穀所重果何如，重臣所奏果 何如，十行批旨至嚴且截，奉讀以來，毛骨竦然爲 道臣者，縱未能覈出眞贓，快施當律，其所奉行，固當 驚惶震慄，罔知攸措，而該道臣之若是無嚴，誠亦意 慮之所不到，臣之駭惑，非在於罪人之不能查得，實 在於查體之全不謹畏，而堂疏論劾前既嚴峻，繡啓 按發又及他事，方有拿問之嚴命，該府自當考律 處斷，姑不敢仰請律名，全羅監司李得臣急於舉行，至以零零瑣瑣不足上煩之事，鳩合登徹，論以查 體，萬萬未安，而原其情，則宣出於靡不用極，反失常 格之致，姑先從重推考，忠清監司韓用和玄麼吏奸，說太張皇，情雖出於慌急，迹反歸於屑越，推考警責，其餘五道·四都別無可以論責者，到今本穀都屬華 城，更無關於他道民邑，無論此道彼道，原狀啓，有不 敢冒徹於香案之前，一竝勿施，其中因此查事，而 他罪現發之邑，不可以原啓之勿施，仍以置之，此 則令各該道臣另具狀聞，條列罪狀，以爲令該府 拿處之地何如，上曰，依爲之，今則以整理穀爲名者，都屬華城，便同毛將焉付，而重臣所奏，不無傳聞之 差乖，此則還爲可幸，而列邑犯科之有無姑無論，其 時舉條批旨，何等嚴截，則爲道臣者，揆以分義道理，宜乎震剝罔措，求死不得，而所謂李亨元者，厚蒙恩眷，屢叨藩臬，其所畏愼，豈下於完伯·畿伯·錦伯，而夷考 舉行全沒懼怯，狀辭之無狀，查事之無實，卽八道道 臣所未敢爲者，縱其營裨，侵虐列邑，民莫不嗷嗷，反 以莫重穀名，看作疾首蹙頞之資者，眞所謂罪上添 罪，間有筵臣以此論奏者，而待今年麥秋後處分，既 出爲民之意，則不可輕先拿覈，姑待此朔之將晦矣，今則新伯辭朝，封狀開坼，若於亨元一或寬假，昨年 嚴截之教歸於一番戲劇，有國有法，寧有是乎，今人 脆疲無氣力，故不得純用治蜀之政者，六君子湯症，不欲以大承氣湯投下也，以是百事委靡，人不畏法，目下事亦由於是，待其拿來嚴囚嚴問，捧口招，萬一漫 漶於納供之際，當依筵教處之，以此爲先分付該府，待就囚使之卽爲開坐舉行可也。

<비변사등록 187책, 정조 22년 1798년 05월29일(음)>

경제/재정

황해도 수안군의 금광의 현황을 호조에서 조사한 뒤 화성부로 관문을 보내다

○ 여러 승지가 공사(公事)를 가지고 입시하고 대신과 비국당상을 인견하여 입시하였을 때에 우의정 이병모(李秉模)가 (...) 또 아뢰기를, “지난번에 여러 도에 금·은점(金銀店)을 설치한 곳은 장문(狀聞)하여 품쳐하라고 연석에서 아뢰어 통지하였습니다. 황해감사 이의준(李義駿)의 장계를 보니, ‘수안군(遂安郡)의 금혈(金穴)은 갑인년 호조에서 적간한 뒤 화성부(華城府)로 관문을 보내 금점을 옴겼는데, 금점 5곳 가운데 두 곳의 금맥은 이미 다 되어 거의 철폐하기에 이르렀고, 세 곳의 금맥은 넉넉하고 많아 올 여름에 새로 뚫은 혈이 39개이고 비가 와서 사역을 정지한 혈이 99개입니다. 현재 광부는 5백50여 명이고, 도내 무뢰배뿐만 아니라 농사에 실패하여 투입하였거나 사방에서 이익을 좇는 무리가 소문을 듣고 몰려들었다가 올 여름 장마를 만나 태반이 뿔뿔이 흩어졌는데 현재 막사 수는 아직도 7백여 개이고 사람 수 역시 1천5백쯤 됩니다. 총 인원수는 일정하지 않아 세금을 걷는 수 역시 그에 따라 늘었다 줄었다 하는데, 가장 왕성하게 점을 설치할 때는 하루아침에 받는 세금이

수 천여 냥이나 되며, 그 중 7백 냥은 **화성부**에 상납하고 50여 냥은 점 안의 소임(所任) 등의 급료 값으로 제하고, 남은 1천 냥은 차인(差人)이 차지합니다. 이밖에 막세(幕稅)·토세(土稅)·전세(塵稅) 등의 명색이 하나둘이 아닌데, 혹 차인에게 속하기도 하고 혹 본관(本官)에 속하기도 하여 깊은 산 험한 골짜기가 포탈하고 도망가는 소굴이 되어 상민(常民)조차도 이익에 의해 요동치게 되었으므로 앞으로 깊이 우려할 만한 점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미 눈앞의 커다란 폐단이 되었습니다. 지금으로서의 방책은 모두 금지하는 것이 상책이겠습니 다만, 점을 설치한 지 이미 여러 해가 된 자리에는 촌락이 즐비하고 상인이 물품을 유통시켜 문득 하나의 큰 도회지를 이루고 있는데, 차츰차츰 하지 않고 지금 갑자기 해서 하루아침에 뿔뿔이 흩어지면 이익을 잃고 의지할 곳을 잃은 무리는 이미 거처할 방도가 없게 되어 도리어 소요가 일어나는 단서가 되니 갑자기 철거해 없애는 일 역시 가볍게 논의하기 어려운 점입니다. 그리고 이른바 차인(差人)이란 물을 건너는 데 급급한 무리로서, 엄중히 단속해서 간교를 부리지 못하게 할 수 없어서 관청에 납부하는 것은 적은 반면 개인 비용은 많이 되어 버렸습니다. 지금 어쩔 수 없어 그대로 둔다면 단연코 보통과 달리 조치해야 하므로 별도로 더욱 경계하고 단속하여 폐단을 없애고 원대하게 다스리는 방책이 되도록 피하는 일이야말로 실로 당장의 급선무이니 묘당에서 품처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였습니다. 금 채굴은 본래 법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만, 이는 몰래 캐는 것과는 다르고, 또 허다한 점민(店民)을 생각할 때 하루아침에 흩어져 가게 하면 도리어 간사함이 생기기 쉬우므로 우선은 종전대로 그대로 두게 하여야겠습니다. 검속하는 방도는, 호조에서 차출해 보내든 감영에서 차출해 보내든지 막론하고 계사(計士)아니면 막비(幕婢)이니 어찌 피차 우열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화성(華城)**에서 비속(裨屬)을 선택해 검속에 전념하는 것만 못하겠고, 혹 폐해를 끼치는 단서가 있으면 도신은 드러나는 대로 **화성**에 자세히 따져 이문(移文)해서 서로 규찰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렇게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그리하시오. 이렇게 했는데도 장차 안렴(按廉)할 때 폐단이 드러나면 먼저 도신부터 살피지 못한 책임을 면키 어려우니 이렇게 엄중 신칙하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今七月二十七日諸承旨持公事入侍, 大臣備 局堂上引見入侍時, 右議政李所啓, (….) 又所啓, 頃以諸道金銀設店處狀聞稟處之 意, 筵稟行會矣, 卽見黃海監司李義駿狀啓, 則 以爲遂安郡金穴, 甲寅自戶曹摘奸後, **華城府**移關 移店, 而金店五處中, 兩庫金脈既盡, 幾至撤店, 三庫 金脈豐盛, 今夏新鑿之穴, 爲三十九, 值雨停役之穴, 爲九十九, 目下鉛軍, 爲五百五十餘名, 非但道內無 賴之輩, 廢農投入四方逐利之類, 聞風還至, 值今夏 潦, 太半零散, 而見在幕數, 猶爲七百餘, 人口亦爲一 千五百零, 人摠多寡無常, 收稅之數, 亦隨以贏縮, 而 店設最盛時, 一朝捧稅數千餘兩內七百兩, **華城府** 上納五十餘兩, 店中所任等料價除下一千餘兩, 差 人次知外, 此幕稅·土稅·塵稅等名色, 非止一二, 或屬 於差人, 或屬於本官, 而深山絕峽, 成一逋逃之藪, 致 使常民, 動於聲利, 非但有將來之深慮, 已爲目下之 巨弊, 爲今之策, 莫如一切防禁, 而設店已多年所, 村 落櫛比, 商賈通貨, 便成一大都會, 今若猝遽無漸, 一 朝渙散, 則失利失所之輩, 既無奠接之方, 反爲騷擾 之端, 猝地撤罷, 亦難率爾議到, 而所謂差人, 急於濟 水, 不能嚴束防奸, 乃至公納少而私費多, 今若不得 已而有仍存之舉, 則斷當別般措置, 另加拘檢, 以圖 其杜弊經遠之策, 實爲目下急務, 請令廟堂稟處 矣, 採金固是法禁, 而此則與潛採有異, 且念許多店 民, 欲令一朝散去, 則反易生奸, 姑令依前置之, 而若 其勾檢之道, 則無論自戶曹差送與自監營差送, 非 計士則幕婢有何彼此優劣可言乎, 莫如自**華城**擇 定裨屬, 專意檢飭, 而如或有貽弊之端, 道臣隨所現 發, 論移**華城**, 互相糾察爲宜, 以此分付何如, 上曰, 依爲之, 如

是之後，弊端現發於來頭按廉之行，則先 自道臣，難免不察之責，以此嚴飭可也。

<비변사등록 188책, 정조 22년 1798년 07월 27일(음)>

경제/재정

戶曹判書 趙鎮寬 등이 華城에서 빌려간 돈으로 均役廳의 쌀을 맞바꾸는 일을 논의하다

○ 같은 날 입시하였을 때에 호조판서 조진관(趙鎭寬)이 아뢰기를, “호조에는 이미 균역청의 쌀을 살 만한 다른 몫의 돈이 없고, 다만 몇 년 전에 華城(華城)에서 빌려간 8만 냥만 있는데, 이는 칙사를 접대하기 위한 재원으로 비축해 두긴 하였지만, 돈이든 쌀이든 비축해 둔다는 점에서는 같으므로 이 돈으로 산다면 호조와 선혜청은 다만 돈과 쌀을 맞바꿀 뿐이니 양쪽 다 편한 방도일까 합니다. 남쪽의 쌀로 또 서쪽의 쌀을 바꿀 경우 앞으로 있을 이해를 아직 알 수는 없지만, 본래 정해진 값에 서로 다름이 없지 않으므로 잠시 맞바꾸지 말게 하고 그대로 호남에 두었다가 나중에 다시 본색(本色)으로 만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임금의 대답이 그리하라 하였다.

또 아뢰기를, “금위영군의 정번(停番)에 관한 일은 저번에 대략 아뢰었는데, 본조(本曹: 호조)의 재정 때문만이 아니라 흉년에 이렇게 하는 것이야말로 실로 역시 백성을 위해서이며, 더구나 근년에 그런 예가 한 두 번이 아닙니다. 한 영문(營門)에서 1년 동안 정번하면 본조의 형편과 지방 읍의 민정(民情)으로 보아 해가 없고 양쪽 다 편한 방도인데, 다만 이번 9월 담당은 거의 다 길을 떠났으므로 11월 담당부터 내년 10월 당번까지 정지하는 것이 사리에 합당할까 하니 대신에게 하문하여 처리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대신의 생각은 어떠시오?”

하자, 우의정 이병모(李秉模)가 말하기를, “호조판서가 전에 이에 대해 말한 적이 있었는데, 신은 사체가 매우 곤란하다고 대답하였습니다. 지금 아뢴 바를 들으니 본조의 형편 때문만 아니라 실은 백성을 편하게 하기 위한 정책이라고 하고, 정말로 백성을 편하게 한다면 우러러 본받는 도리로 보아 역시 모두 막기 어렵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금위영의 상번군(上番軍)을 내년 가을까지 정번하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同日入侍時，戶曹判書趙鎭寬所啓，臣曹既 無他條錢可以貿取均質米者，獨於年前有華城貸 去八萬之數，此雖勅需所儲，而以錢以米，其爲儲留，一也，若以此錢貿之，則戶惠廳，特以錢米相換而已，恐爲兩便之道，如以南米，又換西米，則前頭利害，既 未可知，自來定價，不無相懸，姑勿相換，仍置湖南，以 待日後還作本色何如，上曰，依爲之。

又所啓，禁衛軍停番事，頃已略陳，非獨爲本曹 之經用，荒年此舉，實亦爲民，況於近歲，其例非一，如 得一營之周年停番，則本曹事勢，與外邑民情，不害 爲兩便之道，而但今九月當幾皆發程，自十一月至 明年十月當停之，恐合便宜，下詢大臣處之何如，上曰，大臣之意何如，右議政李曰，戶判曾以此爲 言，而臣則以事體重難答之矣，今聞所奏，不但爲本 曹事勢，實爲便民之政云，苟便於民，其在仰體之道，亦難一切防塞矣，上曰，禁衛營上番軍，限明秋停 番可也。

<비변사등록 188책, 정조 22년 1798년 08월12일(음)>

경제/재정

湖西 句管堂上 趙鎭寬 등이 貨錢과 質穀의 폐단, 兩營의 軍米 代錢 등의 停退를 청하다

○ 같은 날 도승지의 입시에 華城留守(華城留守) · 선혜청 당상(宣惠廳堂上) · 비변사 당상 · 유사 당상 · 호서 구관당상 · 호서 봉명승지가 같이 입시하였을 때에 상이 말하기를, “호서 봉명승지의 거조(舉條)를 경들이 대신과 수의하여 왔는가.”

하니, 호서 구관당상 조진관(趙鎭寬)과 유사당상 이서구(李書九)가 아뢰기를,

“신들이 삼가 하교에 의하여 대신에게 수의한즉 좌의정 이병모(李秉模)는 경사(京司)의 공화(公貨)와 타도의 곡물을 적당히 더 획급(劃給)하는 일은 당초 관찰사가 경사의 돈을 대여할 것을 장청(狀請)한 것이 본래 경법(經法)이 아닌 데다 또 구황 정책의 심분 양책(良策)이 아니므로, 만약 이 돈을 얻어대게 된다면 해서(海西)의 곡물을 이송하자던 논의는 저절로 말 할 것도 없는 일에 붙여질 것이기 때문에 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경사의 사세(事勢)가 준수(準數)대로 획급을 하고 나서 이제 와서 더 대여하려면 곡물을 조달할 길이 전혀 없고, 곡물을 이송하는 일에 있어서도 가깝고 편리하기로는 해서만한 곳이 없으나, 해서의 곡물이 본래부터 넉넉지 못한 데다 그 품질 또한 좋지 않으므로, 감사가 처음부터 원하지 않은 것도 참으로 이 때문입니다. 그러나 승선(承宣)의 아뢰이 이제 이와 같으니, 비록 처음 생각과는 다르더라도 1만 석(石), 2만 석을 막론하고 편리할 대로 획급하여 수송하도록 하는 것도 역시 아니 될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다시 생각하여 볼 때 수만 석의 거친 곡물을 운반하느라 허다한 노역을 허비하여도 필경에 가서는 한 곳의 환곡과 진휼곡을 감당하기에 부족한 채 이로 인하여 영읍(營邑)의 민심과 백성들의 정만 해이되기를 바라자 않아도 저절로 해이되어 환곡의 정책 실패가 장차 얼마나 될지도 모릅니다. 어찌 분수를 벗어나서 먹여주기를 바라는 생각을 접어두고 각자 경내(境內)에서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할 대책을 다하는 것만 하겠습니까. 금년에 호서의 흉작이 아무리 삼남(三南)에서 가장 심하더라도 논농사는 잘 되고 밭농사는 못 된 해와 비교할 때 민간의 이해가 서로 참작됨이 없지 않습니다. 대봉(代捧)하라는 명령 역시 이미 미리 내려진 이상, 만약 대대적으로 힘을 쏟지 않는다면 대전(貸錢)과 무곡(貿穀)을 추가하는 따위의 일은 반드시 모두 허투(虛套)로 돌아가고 말 것입니다. 신이 밤낮 생각은 오직 이와 같으므로, 곡물을 이송하는 한 가지 일은 아직 제처 두고 환곡을 봉납(奉納)하는 정책에 각별히 생각을 가다듬는 것이 사의(事宜)에 합당할 것이라고 여깁니다.”

하니, 상이 말하기를, “전임 선혜청 당상 및 시임 선혜청 당상도 각기 소견을 진술하는 것이 좋겠다.” 하였는데, 전임 선혜청 당상 서유린(徐有隣)은 아뢰기를, “충청감사가 공전(公錢)을 얻어내어서 곡물을 사들이려 하는 것은 장차 이익을 남기어 진휼곡에 보태려는 의도라고 하나, 이미 사들인 것을 다시 팔고 이미 판 것을 다시 사들이는 과정에서 반드시 폐단을 끼칠 단서가 있을 것이므로, 곡물의 본 아문(衙門)에게 그것을 돈으로 받아들여서 다시 그 곡물은 사들이게 한다는 것은 형편상 참으로 어렵습니다. 지금 만약 돈을 꾸어준 아문에게 우선 기한을 조금 물리어 모곡(耗穀) 조항에서 상당한 충당이 될 때까지 기다려서 그 이전의 것을 상환하도록 한 다음, 이어서 더 상환하도록 한다면 백성을 여유 있게 하는 방편도 되고 사의(事宜)에도 맞을 듯합니다.”

하였고, 선혜청 당상 정민시(鄭民始)는 아뢰기를, “신의 소견 역시 전임 당상이 아뢴 바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곡물을 모은다는 명목으로 다시 발매를 명령하여 돈으로 곡물을 만들었다가 다시 곡물로 돈을 만든다면 필경에 가서 폐해를 입는 자는 소민(小民)일 것이다. 지금 만약 화성유수(華城留守)가 아뢴 대로 한다면 일의 체면도 바로 잡히고 또한 어제 상량(商量)한 바와도 잘 들어맞는다. 이것으로 행회(行會)하라. 현재 호서의 진휼 정책으로는 환곡을 더 내주어서 먹을 것을 족하게 하는 것보다 더 급한 일이 없으니, 이것이 화성유수의 아뢰이 옳다고 하는 이유이다. 진휼곡에 있어서는 별도의 구획(區劃)이 있고 나서야 더 내어주는 환곡과 뒤섞이는 일을 면할 수 있을 것이니, 해서의 곡물 2만 석(石)을 특별히 획급(劃給)하여 호서 한 지방의 기민(饑民)을 구제하도록 하라. 이 고

율이 계미년에 북도의 곡물을 이획(移劃)한 이후 처음 있는 일인 만큼, 사안이 마땅히 운송을 통괄할 독운어사(督運御史)를 차출하여 보내어야 하나, 이것이 도리어 민읍(民邑)에 폐를 끼칠 것이 두려우니, 호서의 도신(道臣)에게 편리할 대로 수송하도록 하라. 이와 같이 한다면 더 얻어낸 6만 냥은 환곡이 되고 별도로 획급한 2만 석은 진휼곡이 될 터이니, 이라고 나서도 호서의 백성들을 굶주리고 먹고살기 어렵게 한다면 이는 도신의 책임이다. 이러한 뜻으로 엄중히 신칙하여 분부하라.” 하였다.

조진관(趙鎭寬) 등이 아뢰기를, “환곡(還穀)과 신포(身布)를 미리 분수(分數)대로 정퇴(停退)를 하고 양영(兩營)의 번미(番米) 대전(代錢)·악공(樂工)의 보미(保米)·의승(義僧)의 번전(番錢)·노비의 신공(身貢)·증렬미(拯劣米) 등을 정퇴(停退)하는 일을 그저께 영남의 연분(年分)을 아뢰는 자리에서 특별히 환곡의 분수만을 정퇴하라고 하명하셨습니다마는, 해당 도의 연사(年事)가 영남에 비하여 조금 더 심하고 보면, 똑 같은 혜택을 베푸는 것이 사의(事宜)에 맞을 듯합니다. 신포인즉 면화(棉花)의 농사가 흉작 아닌 곳이 없으므로, 아직 논하지 말더라도 양영의 군미(軍米) 대전·악공의 보미·의승의 번전·노비의 신공·증렬미의 정퇴는 이러한 해일수록 참작하여 융통성을 발휘하는 도리가 있어야 될 듯합니다. 연분의 장계가 멀지 않아서 올라올 것이므로, 그 때를 기다려 품처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환곡은 대소의 신민(臣民)이 겨울을 나고 새해를 맞을 양식이기는 하나, 호서의 곡물이 본래부터 넉넉하지 못하다면 봉납(奉納)하지 않기도 어려우나, 그렇다고 이미 듣고 난 뒤에 어떻게 환곡을 더 내어준 것으로써 이미 조치가 있어서 전혀 부족하지 않다고 한다면 이것이 곧 정퇴의 도리라는 말인가.? 도신(道臣)이 이미 면리(面里)별로 분등(分等)을 하고자 한다고 하니, 봉납하여야 할 새 환곡 조항에서 매우 극심하여 가장 봉납하기 어려운 곳은 올해년의 선례에 따라 특별히 3분의 1을 정퇴하고 그 나머지 3등의 고을은 근례(近例)에 따라 몇 분까지만을 분등(分等)하여 정퇴할 것을 도신에게 분부하여 참작하여 배정하도록 하고, 묵은 환곡에 향곡(餉穀)에 있어서는 비록 되[升]와 흡[合]은 논할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한 도를 통틀어서 환곡은 봉납하지 말고 창고에 남아 있는 것 중에서 본사(本司)와 왕복하여 석수(石數)를 한정하여 편리할 대로 더 나누어주되, 역시 계묘년과 인자년의 선례에 따라 군보(軍保)의 신공(身貢) 미(米)·포(布)·전(錢)인즉 가장 심한 곳은 절반을, 그 다음은 3분의 1을 또 그 다음은 4분의 1을 정퇴하도록 하고, 도내 각 고을의 보미 및 신공미를 정퇴한 것 이외에는 모두 상정(詳定)의 값으로 대봉(代奉)하도록 하되, 훈련원(訓練院)의 포보(砲保)는 비록 사체(事體)가 중대하기는 하나, 따로이 시행한 사례가 많이 있으니, 역시 양영(兩營)의 군보(軍保)의 예에 따라 시행할 것이며, 증렬미(拯劣米)는 햇곡과 묵은 곡식을 모두 함께 정퇴하라. 이 밖에 백성을 동요시킬 정책에서 의례적으로 신칙하는 방채(防債)에 이르기까지 본사에서 엄중히 신칙하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조진관 등이 아뢰기를, “대파(代播)한 논을 면세의 규례에 따라 결전(結錢)을 납부하는 일은 대파의 명령이 내려진 뒤에 민력(民力)이 더러는 많이 모자라는 데다 읍재(邑宰)가 거행하기를 제대로 못해서 성상께서 매번 그 혜택이 오히려 끝까지 미치지 않을까 염려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승선(承宣)이 아뢴 내용 중에 더러는 납세한다고 하니, 먹을거리가 넉넉하게 된 효과를 경험할 수는 있으나, 결전을 받아들이는 일이 백성에게 이로움을 주려는 조정의 본뜻을 잃게 될까 걱정스럽습니다. 그만 두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하니, 상이 그리하라고 하였다.

조진관 등이 또 아뢰기를, “곡물을 원납(願納)하여 진휼(賑恤)에 보조하는 일이 흉년의 의례적인 정책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마는, 근래에 금지하도록 신칙(申飭)한 것은 대개 명분은

비록 백성을 돕는다고 하여도 사실은 백성에게 해를 끼치게 되고 보면, 감히 다시 거론하지 못할 여지가 있습니다. 공명첩(空名帖)을 온 도(道)에 거행하는 대규모의 진휼이 아닐 경우 시행을 허락하지 않는 것은 바로 법전(法典)인데, 본도의 진휼 대상 고을이 몇 고을이나 될 지도 아직 모릅니다. 그만두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 규정을 근래에 방지한 의도는 너무 심할 경우에 금지하자는 것이었으나, 이를테면 금년의 호서(湖西)의 경우는 줄곧 미를 수만은 없으니, 도신(道臣)에게 별도로 조절하도록 하여 반드시 원납(願納)하고자 하는 무리에게만 허락하되, 공명첩(空名帖)은 5백 장(張)까지만 발급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하고, 또 이르기를, “호서의 농사를 위하여 봄여름을 거쳐 늦가을까지 한 시각도 마음을 놓지 못하여 잠을 설치고 식음을 끊기까지 하였다. 지금 부세(賦稅)를 건감(蠲減)하거나 정퇴(停退)한 뒤에 와서 일을 신기하게 잘 처리하였다는 핑계로 마음을 놓아서 되겠는가. 삼남(三南) 중에서도 호서가 가장 심하다고 하여 특별히 승선(承宣)에게 명하여 길을 우회하면서 민막(民瘼)을 알아보라고 한 이상, 마땅히 헌어(獻御)의 물품도 절약하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 해당 도의 방물(方物) 물선(物膳) 및 조선(朝膳)을 보리 가을까지 모두 함께 정면(停免)하고 백성에게서 나온 것은 탕감을 하고 남는 것은 진휼의 수요에 보태어 쓰도록 분부하는 것이 좋겠다.”

하고 전교하기를, “이미 자교(慈教)를 받들어 전궁(殿宮)의 진헌(進獻)을 특별히 정면(停免)하여 진휼의 수요에 보태어 쓰도록 허락한 것은 이것이 곧 뜻에 순종하는 도리이니, 묘당(廟堂)에서 말을 만들어서 행회(行會)하도록 하였다.

同日都承旨入侍, 華城留守·宣惠廳堂上·備局 堂上·有司堂上·湖西句管堂上·湖西奉命承旨入 侍時, 上曰, 湖西奉命承旨舉條, 卿等就議大臣 以來乎, 湖西句管堂上趙鎮寬·有司堂上李書九曰, 臣等謹依下教, 就議大臣, 則左議政李, 以爲京 司公貨他道穀物, 量宜加劃事, 當初道臣之請貸京 司之錢, 本非經法, 又非荒政中十分良策, 而若得此 錢, 則海西移粟之議, 自在勿論, 故不願, 京司之事勢, 準數許劃, 到今加貸, 萬無其路, 至於穀物事, 移轉之 便近, 莫如海西, 而海西穀簿, 本自不敷, 亦其麤荒道 臣之自初不願, 良以此也, 而承宣所奏, 今乃如此, 雖與初料有異, 無論一二萬石, 從便劃給, 使之往復輸 去, 亦何不可, 而第念數萬麤穀, 費得許多勞弊, 畢竟 不足當賑糴之一隅, 而因此營邑之心, 民人之情, 不 期弛而自弛, 還政所失, 將不知幾萬計, 曷若新置分 外望哺之意, 各盡境內自強之策乎, 今年湖西之歉, 雖曰三南之最, 比諸 畚登田歉之歲, 民間利害, 不無 相參, 代捧之命, 亦既預下, 若不大加着力, 則加貸 錢質穀等事, 必當都歸虛套, 臣之晝宵料量, 斷斷如 此, 移粟一款, 今姑置之, 使之別加惕念於捧還今政, 實合事宜云矣, 上曰, 前惠堂及時惠堂, 各陳所見 可也, 前宣惠廳堂上徐有隣曰, 錦伯請得公錢, 質取 穀物之舉, 將欲故剩補賑云, 既質還賣, 既賣還質之 際, 必有貽弊之端, 穀物本衙門之還其錢許其穀, 其 勢誠難, 今若於貸錢衙門, 姑令差退, 期限待其耗條 相當後, 還報其前, 則仍令添還, 以爲裕民之方, 恐合事宜矣, 宣惠堂上鄭民始曰, 臣見亦與前惠堂所奏 無異矣, 上曰, 名以鳩穀, 還令發賣, 以錢爲穀, 以穀爲錢, 畢竟受弊者, 小民, 今若依華留所奏爲之, 則事 面既正, 亦與昨所商量者, 沕合, 以此行會, 目今湖西 賑恤之策, 莫先於添還而足食, 此所以示可於華留 所奏也, 至於賑穀, 別有區劃, 然後可免混淆於還穀 之添給矣, 海西穀二萬石, 特爲許劃, 以濟湖西一方之饑, 此邑癸未北穀移劃後, 初行之舉, 事當差遣領 運督運御史, 而反恐貽弊於民邑, 令湖西道臣, 從便 輸致, 若此則添得六萬兩爲還穀, 別劃二萬石爲賑穀, 然而使湖民阻饑艱食, 是道臣之責, 以此意嚴飭 分付, 鎮寬等曰, 還餉身布, 預爲分數停退, 兩營番米代錢·樂工保米·義僧番錢·奴婢貢·拯劣米停退事, 向 於嶺南年分之啓, 特下還餉分數停退之

命, 該 道年事, 比嶺南差甚, 則施以一視之澤, 恐合事宜, 身 布則綿農無處不登, 姑爲勿論, 兩營軍米之代錢·樂 工保米·義僧番錢·奴婢貢·拯劣米停退, 如此之歲, 似 有參量闊狹之道, 而年分狀啓, 當於非久上來, 待 其時稟處爲宜云矣, 上曰, 還穀爲小大民人經 冬嗣歲之糧, 而湖西穀簿, 自來不敷, 則不捧亦難, 然 而既聞之後, 豈可以添還, 已有措處, 愬然不乏, 則停退之道乎, 道臣既欲分等面里云, 新還當捧條, 尤甚 邑最難捧處, 依乙亥已例, 特許三分一停退, 其餘三 等邑, 依近例限幾分, 分等停退, 付之道臣, 參量排比, 至於舊還餉穀, 雖升合, 非所可論, 通一道勿捧還餉, 留庫中往復本司, 限石數使之從便加分, 亦用癸卯 壬子已例, 而軍保身貢米布錢, 則最尤甚處折半, 其 次三分一, 又其次四分一停退, 道內各邑保米及身 貢米停退外, 皆以詳定價代捧, 而訓局砲保, 雖體重, 多有另施之例, 亦依兩營保例爲之, 拯劣米新舊, 一 竝停退, 外此撓民之政, 以至例飭之防債, 自本司嚴 飭可也, 鎮寬等曰, 代播番, 依免稅, 例納結錢事, 代播 命下之後, 以民力之或多愆期, 邑宰之不善舉行, 聖念每憂其惠猶未究, 而今此承宣所奏中, 或云納 稅云者, 可驗食實之效, 而結錢收捧, 恐患朝家寧 失之本意, 置之爲宜云矣, 上曰, 依爲之, 鎮寬等曰, 願納補賑事, 非不是荒年例政, 而年來飭禁, 蓋爲其 名雖補民, 實歸厲民, 則有不敢更爲舉論, 空名帖之 非一道大賑, 不得許施者, 乃是法典, 而本道賑邑, 姑 未知當爲幾何, 置之爲宜云矣, 上曰, 此規之年來 防塞, 意在禁其大甚, 如今年湖西不可一味靳持, 令 道臣別般操切, 只許必欲願納之類, 空名帖限五百 張成給可也, 上曰, 爲湖西穡事, 自春徂夏, 至于暮 秋, 而一念不遑, 忌寢廢食, 今於蠲賦停稅之後, 諉以 能事之奇, 其可弛心乎, 三南之中, 湖西爲甚, 特命承 宣, 迂路往詢民瘼, 則當自獻御之物, 有所節損, 該道方物膳朝膳, 限麥秋, 一竝停免, 而出於民者蕩滌 餘補賑需事, 分付可也, 傳曰, 既承慈教, 殿宮進 獻, 特許停免, 以補賑需, 此乃順志之一道, 令廟堂措辭 行會.

<비변사등록 188책, 정조 22년 1798년 09월21일(음)>

경제/재정

華城 外營의 屬邑에서 바치는 미곡의 名色을 軍校에게 돈으로 대신 바치도록 허락하다

전교하기를, “**화성(華城)**은 곧 탕목(湯沐)의 고을이자 고굉(股肱)의 고을이므로, 병식(兵食)이 아무리 중요하다 하여도 인화(人和)가 우선되어야 한다. 금년에는 논의 수확이 밭의 수확에 미치지 못하는 것은 곳곳이 다 마찬가지인데, 더구나 본 고을은 바닷가를 많이 개간하여 민간의 저장이 넉넉하지 못함을 알 수 있다. 외영(外營) 영속(營屬)의 납미(納米) 명색(名色)과 군교(軍校)에게 함께 대전(代錢)을 허락하여 한편으로는 소중한 곳에 은혜를 베풀고 한편으로 그들의 힘을 펴 줄 것을 묘당에서 행회(行會)를 발송하여 즉시 방방곡곡에 두루 하유(下諭)하되, 혹시라도 중간의 농간이 없이 혜택이 실제로 미치게 하라.” 하였다. 傳曰, **華城**卽湯沐之邑, 股肱之郡也, 兵食雖重, 人 和當先, 今年水田所收之不及旱田, 在在同然, 況本 府濱海廣斥, 民間蓋藏, 不贍可知, 外營屬納米名色, 軍校倣許代錢, 一以爲所重施惠, 一以爲渠輩紓力 事, 令廟堂付撥行會, 俾卽遍諭坊曲, 奸或莫售, 惠有 實究.

<비변사등록 188책, 정조 22년 1798년 09월24일(음)>

경제/재정

京畿監司 徐鼎修의 年分狀啓에 대해 청한 대로 시행한 뒤 啓聞하라고 전교하다

○ 도내의 연분(年分)을 계문하는 경기감사 서정수(徐鼎修)의 장계에 전교하기를, “우선 장청(狀請)에 의하여 시행하라. 경기 고을의 새 것과 묵은 것을 애초에 명색을 붙이지 아니하고 특례로 연분을 장문한 것은 곧 여러 도에서 감히 하지 못한 예이다. 대체로 경기는 백

성들이 사는 곳이다. 그 보는 바에 있어 실은 특별함이 있다. 일찍이 들으면 당해 도에서 처음부터 명색을 붙이지 아니한 것이 그 수가 많다. 이른바 병진년 좀 풍년이 들었다는 해에 배분한 것이 1천 결이 넘는다. 더구나 금년이 병진년에 미치지 못한단 말인가? 또 처음에는 가물어 모를 심지 못하다가 늦게 바람으로 이삭이 패지 못하였고 겹하여 해변에는 해수(海水)의 손해가 있었으니 더 청한 수는 아마도 백징(白徵)의 우려가 있음을 안 것이다. 만일 이러하다면 이는 백성을 속이는 일이다. 조가에서 어찌 이렇게 할 수 있겠는가? 경은 신칙하는 이 뜻을 받들어 이미 봉해 아뢰었다고 하지 마라. 마감을 하였더라도 진정 위에서 신칙한 조건이 있다면 여유 있게 추가 배정한 뒤에 사실에 따라 다시 계문하라. **화성(華城)**·광주(廣州)·강화(江華) 3도(都)도 유사의 소임을 겸하였으니 이러한 뜻으로 곧 통보 하라고 회유하라.” 하였다.

以京畿監司徐鼎修狀啓，道內年分馳啓事，傳曰，爲先依狀請施行，而畿邑之新舊，初不名色，拔例登聞於年分者，卽諸道所不敢爲之例，蓋以邦畿惟民所止，其所視之實有自別也，曾聞該道初不名色，厥數夥然，所以丙辰稍熟之歲，俵過千結，而況今年之不及丙辰乎，又況始嘆而未移，晚風之不穎，兼之以海邊鹹損，則加請之數，必知有白徵之慮，萬一如此，是罔民也，朝家寧爲是乎，卿其體此申飭之意，毋曰已封啓，既磨勘，苟有涉於右所申飭條件，約綽加俵後，從實更爲啓聞，而**華城**·廣州·江華三都亦兼有司之任，以此有旨，須卽知委事回諭。

<비변사등록 189책, 정조 23년 1799년 10월 04일(음)>

경제/재정

水原留守 徐有隣이 南漢山城으로 이전할 16읍의 곡물 처리 방법에 대해 논의하다

이번 10월 16일 여러 대신이 입시하였을 때에 **수원유수(水原留守)** 서유린(徐有隣)이 아뢰기를, “신이 남한산성에 재임할 적에 성안의 환자(還上)를 모두 정지함으로 인하여 지출할 모곡(耗穀) 조항을 충당할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묘당(廟堂)에게 논의하여 군병이 주둔하고 있는 16읍(邑)에 곡물을 사다 두고 모곡을 받아서 수용(需用)에 쓴바, 시행한 지 두어 해에 폐단이 없지 않았습니다. 이제 듣자니 조정에서 그 절반은 남겨 두고 절반을 나누어서 상정가(詳定價)로 가져다 쓴다는 정책을 특별히 시행한다고 하는데, 만약 발본색원을 하여 별도의 개혁을 하고 싶다면 그 곡물을 없애는 것보다 더 편당(便當)한 방법은 없습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16읍에 있는, 남한산성으로 이전할 곡물을 광주부로 하여금 경기감영과 왕복 논의하여 본곡(本穀)과 함께 다시 산매(散賣)를 한 다음, 그 가전(價錢)으로 감영에 둔전(屯田)을 설치(設置)하여 한편으로는 지출의 수용으로 한편으로 경기도 고을들의 폐단을 제거하는 것이 사의(事宜)에 맞을 듯합니다. 지금 구관(句管)이 비록 각각 다르기는 하나, 신은 곧 처음 설치한 사람이기 때문에 마침 말할 기회를 통하여 감히 이처럼 양달(仰達)하는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총 상환할 포(布)가 기읍(畿邑)에 있어 경기 백성들의 절실한 고통을 주는 병폐가 되고 있는데, 게다가 총 상환할 곳도 알지 못할 종전에 없던 남한산성의 환곡을 더 보태어서 마음속으로 늘 민망스러워하다가, 지난 봄께 먼저 절반을 나누도록 하였으나, 그것도 나누지 않는 편리함만은 못하였다. 다시 산매를 하자고 하는 경의 소청은 매우 온당하다. 이대로 시행하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今十月十六日來待諸臣入侍時，**水原留守**徐有隣所啓，臣待罪南漢時，因城內還上之一竝停止，支放耗條，無以充數，故不得不議于廟堂，貿置穀物於軍兵所在十六邑，取耗需用矣，行之數年，不無弊端，及聞於朝家，特行半留半分，詳定價取用之政，而如欲拔本，另加矯揉，莫如去其穀

之爲便當，臣意則十六邑所在南漢移轉穀物，令廣州府，往復畿營，竝本穀還爲散賣，以其價錢，營置屯田，一以作支放之需，一以除畿邑之弊，恐合事宜，而句管今雖各異，臣是設始之人，故適因言端，敢此仰達矣，上曰，摠還之布，在畿邑爲畿民切苦之瘼，加之以無前之南城還穀於不知摠還之處，心常悶之，春間先令半分，猶不若不分之爲便，卿之還賣之請甚當，依此爲之可也。
<비변사등록 188책, 정조 22년 1798년 10월 17일(음)>

경제/재정

左議政 李秉模가 華城에 소속된 始興 5邑의 軍摠에게 받은 身布의 저치에 대해 논의하다

이번 10월 18일 모든 승지가 공사(公事)를 가지고 입시(入侍)하는데, 대신(大臣) 및 비변사 유사당상과 호서 구관당상 및 선혜청 당상과 장용영(壯勇營)의 내, 외사(內外使)가 같이 입시하였을 때에 좌의정 이병모(李秉模)가 아뢰기를,

“시흥(始興)의 다섯 고을의 군총(軍摠)이 이미 모두 화성(華城)에 소속되었으므로, 다섯 고을의 현재의 정군(正軍)과 양보(良保)로 외영(外營)의 입방군(入坊軍) 12초(哨)를 더 뽑고 그 나머지인즉 모두 향보(餉保)에 충정(充定)한 다음, 매년 신포(身布)를 수봉(收捧)하여 도합 5천 8백 12량(兩)을 모두 화성에 소속시켜서 별도로 저치(儲置)하여 불시의 수용(需用)에 대비하고 각사(各司)와 각 군문(軍門)의 여러 명색(名色)의 군보(軍保)가 바치는 것들은 모두 급대(給代)를 하여야 하나, 병조 유청군(有廳軍) 군관 및 충훈부(忠勳府)의 충익위(忠翊衛)는 증감 유무가 본시 무상하고 내수사(內需司) 및 각사(各司)의 노비는 그 수가 또한 영성(零星)하므로, 모두 화성에 소속시켜서 급대를 하지 말며, 병조의 상번(上番) 기병(騎兵)은 5, 60명도 넘지 않은 데다 매년 여섯 번씩 상번할 적에 한만(閑漫)하게 각처(各處)에서 수효를 줄여서 적당히 분배하므로, 급대를 하지 말며, 경기도 감영의 순찰 아병(牙兵) 및 각색(各色)의 보(保)라는 명색(名色)이 그리 많지 않아서 경사(京司)에서 외아문(外衙門)에 급대를 한 데다 사체(事體)에 관계가 있고 경기도 역시 편리한 쪽을 따라 구처할 도리가 있다고 하므로, 모두 급대를 하지 말며, 금위영(禁衛營)과 어영청(御營廳) 두 군영의 상번군은 매초(哨)마다 각각 두어 사람씩 수를 줄여서 번을 배치한다면 역시 급대를 하지 않아도 되므로, 두 군영을 똑 같이 줄이도록 할 필요는 없이 경기도 내의 다른 고을에 있는 금위영의 군병을 어영청의 오색군(五色軍)의 수효에 준하여 어영청의 군병으로 이작(移作)한 다음, 금위청은 매초마다 각각 3명씩을 줄여서 그 대임을 채우고 남는 수 2백 38명을 다시 금위영으로 환속시켜서 신포를 받아 수용(需用)의 재원을 삼도록 이렇게 마련할 경우 급대의 실제 수효가 마땅히 5천 5백 12량이 될 것이나, 이것은 병조의 겸사금군(兼仕禁軍)의 비마(裨馬) 대가(駄價) 및 관서(關西)의 소미(小米) 작전(作錢) 조항이 경비와 조금의 차이가 있으므로, 그 중에서 2천 7백 56량을 덜어내어 군역청의 돈 2천 7백 56량과 함께 이 수효에 준하여 채워 주며, 아별무사(兒別武士) 1천 명의 감액(減額)은 6두(斗)의 군정은 5두로 견감(鑷減)하고 4두의 군정은 3두로 견감하되, 그 대신에 경기도의 가까운 고을 강화(江華)의 쌀 3천 석과 칙수(勅需)의 쌀 5천 석의 도합 8천 석에서 매년 받는 모곡(耗穀) 8백 석을 이획(移劃)하여 급대하라는 뜻으로 외영(外營) 및 각 해당 군문(軍門)과 아문(衙門), 그리고 경기도에 분부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상이 그리하라고 하였다.

今十月十八日諸承旨持公事入侍，大臣·備局 有司堂上·湖西句管堂上·惠堂·壯勇內外使，同爲入侍時，左議政李所啓，始興五邑軍摠，今既竝屬 華城矣，以五邑時在正軍良保，加抄外營入坊軍十二哨，其餘則竝充餉保，每年收布，合五千八百十二兩，竝屬華城，別爲儲置，以備不時之需，各司各軍門 諸色軍保所納，竝當給代，而兵曹之有廳軍官及忠勳府之忠翊衛增減有

無，本自無常，內司及各司奴婢，數亦零星，竝屬華城，勿爲給代，兵曹上番騎兵，不過爲五十六名，每年六當上番時，閑漫各處減數，量宜分排，勿爲給代，畿營巡牙兵及各色保名色，不甚夥多，自京司給代於外衙門，有關事體，該道亦有從便區處之道云，竝勿給代，禁御兩營上番軍，每哨各數人式減數排番，則亦不當給代，而不必使兩營俱減，以畿內他邑所在禁營軍，準御廳五色軍數，移作御廳軍，禁營每哨，各減三名，以充其代，餘數二百三十八名，還屬禁營，以爲收布需用之地，如是磨鍊，則給代實數，當爲五千五百十二兩，此則兵曹兼仕禁軍裨馬太價及關西小米作錢條，與經費稍間，就其中除出二千七百五十六兩，竝均廳錢二千七百五十六兩，準此數充給，兒別武士一千名減額，六斗軍減爲五斗，四斗軍減爲三斗，代以畿內傍近邑江都米三千石，勅需米五千石，合八千石，每年耗條，八百石，移劃給代，竝以此意，分付於外營及各該軍門·衙門·京畿道，何如，上曰，依爲之。

<비변사등록 188책, 정조 22년 1798년 10월19일(음)>

경제/재정

水原判官 金思義 등이 水原의 小麥 還上 3분의 2를 作租하는 문제에 대해 논의하다

이번 8월 20일 화성 행궁(華城行宮)의 거동에 입시하였을 때에 수원판관 김사희(金思義)가 아뢰기를, “본부의 민폐는 여러 번 배려되어 앞뒤 혜택은 하늘처럼 한이 없습니다. 굶어 물으시니 별로 양달할 것은 없으나 다만 환자에 소맥(小麥)이란 명목이 9백여 석이나 됩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모두 불편하다고 말하여 모곡(耗穀)을 감하는 특별은혜가 있는 뒤에도 환자 받기를 기피하는 폐단이 있음은 이에서 말미암지 않는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이를 변통해야만 길이 폐단이 없겠습니다. 감히 이를 양달합니다.”

하니, 임금이 유수의 뜻은 어떠한가? 하였다. 수원유수 서유린(徐有隣)이 아뢰기를, “작년 이후 비록 어리석은 백성이라 하더라도 본부의 환곡에 어찌 폐단이 있다고 하겠습니까? 유독 이 소맥 한 가지는 모두 시정을 원하고 있습니다. 지방관의 뜻은 모두 벼로 만드는데 있으나 내려오는 곡부(穀簿)에서 일체 제거하는 문제도 생각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3분의 2 한하여 특별히 벼로 만들도록 하면 백성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역시 적지 않다고 하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그리하라 하였다.

今八月二十日華城行宮舉動入侍時, 水原判官金思義所啓, 本府民弊屢蒙軫念, 前後惠澤與天無極, 俯詢之下, 別無可以仰達者, 而第還上中, 有小麥名色數爲九百餘石, 而民皆言不便, 減耗特恩之後, 猶有圖避受還之弊者, 未必不由於此, 此而變通, 可以永久無弊, 敢此仰達矣, 上曰, 留守之意何如, 水原留守徐有隣曰, 去年以後, 雖愚蠢之民, 本府還穀豈曰有弊, 而獨此小麥一種皆願釐正, 地方官之意, 在於盡數作租, 而流來穀簿之一切除去, 亦所當念, 限三分二特許作租, 民惠亦云不些矣, 上曰, 依爲之.

<비변사등록 189책, 정조 23년 1799년 08월 22일(음)>

경제/재정

行水原留守 徐有隣이 迎華驛에도 일체 免稅를 청하다

○ 이번 9월 20일 우부승지의 입시에 나와 대기하던 여러 신하가 추후 입시하였을 때에 행수원유수(行水原留守) 서유린(徐有隣)이 아뢰기를, “각 역(驛)의 기지(基址)에 모두 면세하는 예가 있고 또 성안 백성이 거주하는 기지에 모두 면세의 특별 은혜를 입고 있습니다. 영화역(迎華驛)의 관(官)을 설치하고 백성을 모집해 들인 곳에도 일체 면세하는 조치가 있어야 옳겠습니다. 그러므로 감히 이를 양달합니다.” 하니 임금이 그리하라 하였다.

今九月二十日右副承旨入侍，來待諸臣追後入侍時，行水原留守徐有隣所啓，各驛基址皆有免稅之例，且城內民居基址，皆蒙免稅之特恩，則迎華驛設官募民之地，宜有一體免稅之舉，故敢此仰達矣，上曰，依爲之。

<비변사등록 189책, 정조 23년 1799년 09월 21일(음)>

경제/재정

戶曹로 稅穀을 바치는 문제 등에 대한 泰安郡守 玄重祚의 上疏에 대해 回啓하다

○ 운운(云云)… 태안군수(泰安郡守) 현중조(玄重祚)의 상소의 비지(批旨) 안에 그대가 법종(法從:가까이 모시던 신하)으로서 나아가 목민(牧民)의 직책을 맡았고 물음을 기다리지 않고 고을의 폐단과 백성의 병폐를 소로 말하였으니 오늘 수응(酬應)이 비록 번거로우나 보는 즉시 비답을 내리어 가당하게 여기는 뜻을 보인다. 조세를 바침에 있어 옛날은 저러하고 지금은 이러함에 아직도 오리와 학의 다리를 길게하고 짧게 한 탄식이 있는데 더구나 서울에 바치는 비용이 섬에서 수송하는 것보다 심하다고 하지 않았는가? 호서에서 세곡(稅穀)의 운송에 있어 기한을 어김은 아마도 주사(舟司)의 뱃사람이 머뭇거린 데에서 말미암았을 것이다. 일전 신칙하는 유시는 과연 어긋남이 없다. 사유환(蛇油丸)의 폐단도 그러했을 것이다. 평신진(平薪鎭) 문제는 목장을 폐지하고 둔전(屯田)을 설치한 것은 폐단이 도리어 심하니 당해 지방의 세총(稅總)을 경감한 뜻이 어디에 있단 말인가? 아울러 묘당에서 곧 회계하되 그 가운데 자세히 검토해야 할 것은 역시 특례로 거행해서 폐단이 제거될 수 있도록 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이 소본(疏本)을 보면 그 하나는 본고을의 세미(稅米)를 강도(江都)로 실어다 바쳤는데 무오년 봄에 비로소 경사(京司)로 옮겨 바치게 되므로 인정(人情)과 잡비가 전에 견주어 부족한 것이 70석이나 됩니다. 그러므로 1결(結)에 추가로 거두는 것이 6승 5홉으로 정식을 정하였습시다. 처음에 화성유수(華城留守)의 아뢰므로 인하여 본부 군향(軍餉)의 수요 지출에 여유가 있을 때까지 옮겨 획급하도록 하였는데 이어 지부(地部)의 아뢰므로 인하여 화성(華城)으로부터 또 옮겨 경사로 바치게 하였습니다. 지금 『대전(大典)』에 의하여 강도로 실어다 바친다면 제일 좋은 일이고, 그렇지 않으면 우선 화성에 옮겨 획급하는 것이 그 다음이며 그렇지 않으면 경사의 잡비를 적의하게 감축하여 강도에 견주어 그다지 지나친 추가가 없게 하는 것이 또 그 다음입니다. 세곡을 지부에 바침은 일정한 법입니다. 중간에 강도로 실어다 바치는 일은 역시 임시변통에서 나왔습시다. 지금 비록 지부로 옮겨 바친다 하더라도 실은 새로운 정식을 새로이 제정하는 것이 아니요, 옛 규례로 돌아가는 것에 지나지 않으며 지부에 바치는 경우 『통편(通編)』에 기재되어 있는 잡비는 곧 유정지부(惟正之賦)로서 삼남 각 읍에 통행되고 있는 일이므로 유독 태안(泰安) 한 고을에만 면제되어서는 옳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면 강도(江都)로 실어다 바칠 때에 잡비로 들어가는 것은 다른 곳에 견주어 좀 수월하고 역시 오래되었습니다. 지금 통행하는 예만을 근거로 하여 부족한 수에 맞추어 징수한다면 저 어리석은 백성은 당해 조(曹)의 잡비가 본래 바쳐야 할 세임은 모르고 곧 더 거둔다 하니 소문에 관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70석의 쌀과 콩은 당해 조에 있어 그다지 득실이 되지 않으나 소민에 있어서는 역시 혜택이 됩니다. 당해 조를 분부하여 강도로 실어다 바칠 때의 잡비의 실제 수를 상고하여 이에 의하여 수봉하고, 그 밖의 더 들어오는 수를 아울러 감축해서 바닷가 백성들이 모두 조가에서 부세와 요역(徭役)을 경감시키려는 본 뜻을 알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 하나는 각 읍의 세곡(稅穀)을 반드시 3월 안에 실어 보내는 것은 곧 법전에 규정된 정식임에도 주교선(舟橋船)이 재운(再運)·삼운(三運) 하면서부터 가까우면 6~7월이 경과하고, 먼 경우 혹 8~9월에 이르므로 일

짝이 바쳐 먼저 수봉한 경우는 쌓아놓고 기다려야 하므로 묵은 곡물이나 다름이 없으니 감
 색(監色)인 자가 상납에 부족함이 있을까 두려워하여 미리 후하게 거두어들입니다. 그런데
 주교사(舟橋司)의 선한(船漢)이 재운·삼운에 있어 시한이 이미 늦어지므로 뱃길을 서둘러
 치패(致敗)하는 우환은 이에서 말미암지 않는다고 할 수 없습니다. 또 물가 고을에서 호송
 하는 일이 재운·삼운이 있으므로 하여 3월에서 9월까지 그 비용과 폐단은 어찌 전보다 곱
 이나 되지 않겠습니까? 『대전통편(大典通編)』에 훈련도감의 배 재운을 5월 초순으로 한하
 였고 시한이 경과하는 경우 당해 읍에서 사선(私船)을 모아 실어보내게 한다는 글이 있으나
 이번 주교선에는 처음부터 일정시한이 없고 주교선은 그 고을의 수를 정하여 다만 한번을
 실어 보내도록 하고 재운·삼운의 고을은 아울러 전처럼 지토선(地土船:그 지역의 배)으로
 3월 시한 안에 실어 보내야 하며 재운·삼운을 허용하지 않을 수 없는 경우에는 훈련도감
 배의 예에 의하여 시한을 정하는 일입니다. 지토선으로 실어보낼 때에 각 읍에서는 곧 세넬
 만 한 배가 없다고 하니 배를 구하기가 어렵고 실어 보내는데 지연이 됨은 오늘날이 백배나
 더합니다. 그런데 주교선을 나누어 보낸 뒤로부터 찌를 뽑아 실어가고 머무름에 있어 모두
 일정한 제도가 있어 진정 조절에 술수가 있고 제때에 신게 하여 도착하는 대로 출발하게 하
 여 조금도 머무름이 없게 하면 종전의 폐단은 아마도 10에 7~8은 제거되고 말하지 않은 이
 익은 자연 민읍(民邑)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 이후 폐단을 말하는 것은 또 도리어 주교선
 이 그 구실이 되었으니 이것이 어찌 유독 뱃사람의 죄이겠습니까? 그 책임은 대부분 수령에
 게 있습니다. 그러나 재운을 폐지하고 다시 배를 세내게 하면 눈앞에서 말하기는 비록 쉬운
 듯 싶으나 앞날의 폐단은 아마도 전보다 곱이나 될 것이므로 이는 가벼이 논의될 일이 아니
 니 뱃사람들이 머뭇거리며 가고 돌아오는 폐단은 경사(京司)에서 바로 엄격히 단속해야 합
 니다. 더구나 지난날의 신칙하는 전교가 지극히 엄중하고 주교사와 지부에서 현재 당해 도
 에 조사하여 사리를 논하여 품처하겠으며 조례(條例)를 의정하고 특별히 일체의 법을 제정
 하여 영구히 시행하도록 해야겠습니다. 그 하나는 연해읍(沿海邑)에는 으레 내의원에서 복
 정(卜定)한 사유환(蛇油丸)을 제조하여 바치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에 들어가는 약사(藥蛇)
 는 거의 4~5백 개가 되는데 민인들에게 잡게 하되 고을의 가호(家戶)를 따져 혹 1통(統)에
 1개, 혹 3통에 2개이며 잡아 바치는 시기는 언제나 8~9월 사이이므로 뱀이 대부분 구멍에
 있을 때입니다. 그러므로 마침내 잡기가 어렵고 값을 모아 널리 구해 사들이므로 뱀 한 마
 리의 값은 자그마치 3~4냥에 달합니다. 혹 감제조관(監製官)의 하예(下隸) 및 읍리(邑吏)들이
 중간에서 그 크고 작음에 따라 퇴짜를 놓는 경우에는 또 인정(人情)으로 쓰이는 비용이 없
 지 않습니다. 가령 1통 1개에, 가호에서 거두어 바치는 것은 거의 한 냥 돈이 되고 통틀어
 논하면 한번 환약을 제조하는데 불과 10여 두를 봉해 올리고 있으나 백성의 돈 소비는 거의
 1천여 금(金)이나 됩니다. 대체로 국가에서 백성들로부터 징수하는 것은 비록 토산(土產)으
 로 늘 바치는 물건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그 본값은 지급해야 하고 혹 다른 요역(徭役)을 감
 면해야 하겠으나 지금 이 뱀을 잡는 일은 일찍이 값을 지급하거나 요역을 감면하는 혜택이
 없습니다. 앞으로 사유환을 바쳐야 할 차례가 된 고을의 경우 그 상당한 민역(民役)을 감면
 하도록 하여 치우친 괴로움을 받는 폐단이 없게 하는 일입니다. 비록 이는 수십년 돌려가며
 하는 역(役)이긴 하나 그 민폐가 됨이 이러하니 고려하는 방도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내의
 원에 봉해 올리는 일이 체통은 지극히 중하여 감히 가벼이 논의하여 재정할 수는 없으나 도
 신에게 분부하여 당년의 요역을 경감하고 다른 고을이 차례가 될 때에도 이를 예로 삼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그 하나는 평신진(平薪鎭)은 옛날 감목관(監牧官)이 있었던 곳으로서 갑
 인년에 목장이 폐지되고 영(營)의 둔전(屯田)이 설치되었으며 이어 두 세 고을의 토지로 분

할되고 진(鎭)이 개설되면서 경계가 나뉘어 본영에 소속되었습니다. 여러 고을의 경우 1결(結)에서 거두는 쌀은 23두를 벗어남이 없으나 당해 진의 경내(境內)는 밭과 논을 막론하고 1결에 자그마치 50여 두에 이르며 여러 고을의 경우 양정(良丁)의 백성은 각각 나누어 예측한 곳이 있고 고되고 수월함에 따라 역(役)이 다르며 번(番)을 서고 바치는 것이 시기가 다르나 당해 진의 군오(軍伍)는 비단 군액(軍額)은 많고 민정(民丁)이 적을 뿐만 아니라 한영(營)에 치우치게 소속되어 혹 한 가호에 3~4정(丁)이 되기도 하여 배를 거둘 때를 맞이해서 수십 금(金)을 일시에 아울러 징수합니다. 또 세선(稅船)을 기다리고 호송함에 있어 비록 큰 고을이라 하더라도 그 폐단이 없지 않으나 당해 진에 있어서는 감교(監校)의 차출에 수가 적은 백성들에게 돌려가며 책임을 지웁니다. 이따로 백성들은 모두 여러 고을에 도로 소속되기를 원합니다. 그 설치와 배치는 군현(郡縣)과 다름이 없어 별로 구획할 일은 없으나 백성들에게 거두는 일이 절도가 없음은 역시 필지의 형세입니다. 그러므로 그 폐단은 백성들이 편히 안주할 수 없게 되므로 둔장(屯將)은 오래잖아 폐지되고 진(鎭) 역시 믿을 수 없이 됩니다. 외방고을에 영(營)의 둔전이 있는 경우는 혹 영에서 사람을 차출해 보내거나 혹 고을에서 수봉하여 바치므로 백성들이 괴로움을 말하지 않고 조세 역시 손실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진의 설치에 한갓 유해무익하기만 하나 이미 설치한 진을 갑자기 그 폐지를 말하는 것은 옳지 않으니 속히 묘당에게 그 폐단을 제거하는 방도를 강구하도록 하는 일입니다. 당해 진의 토지는 목장이든 영의 둔전이든 막론하고 공전(公田)임은 매일반입니다. 사전(私田)은 공세(公稅)만을 바치고 공전은 공세가 있습니다. 이는 곧 바꿀 수 없는 일반 법전입니다. 다만 어리석은 백성이 갈아먹은 지 오래이므로 하여 제 물건으로 인정하여 늘 토세조(土稅條)를 바쳐서는 아니 될 세금으로 보아 곧 공세만을 내는 사전에 견주어 많고 적음을 논하려 합니다. 그러나 관장(官長)인 자도 이의 한계를 분명히 하였을 것으로 생각되나 이번의 상소가 다시 이러함은 그 이면을 자세히 모른 데에서 말미암은 듯 싶습니다. 목장을 폐지하고 둔전을 설치함은 조가에서 백성을 위한 지극한 뜻입니다. 더구나 1결의 세총(稅總:세액)은 목장 때에 거두어들이는 바의 숫자에 견주어 보면 거의 3분의 1이 감해져 45두 뿐이라고 하는데 지금 이 50여 두를 수봉한다 함은 비록 그 곡질이 어떠한 지는 알 수 없으나 규정을 위반하고 있음은 사실 매우 놀라운 일입니다. 진장(鎭將) 등이 원납(元納)을 빙자하여 과외로 부당하게 징수하는 것이 아니라면 아마도 이럴 리가 없습니다. 우선 도신에게 분부하여 각별히 조사하되 죄를 범한 일이 있을 경우에는 곧 장문하여 법에 의하여 중벌토록 할 것이며 군역에 고되고 수월함이 다름은 본래 아름다운 제도가 아니고, 교활한 이서(吏胥)가 그 조종하는 권한을 잡고 허약한 백성이 치우치게 그 해를 받는 것은 바로 이에서 말미암습니다. 한 영에 전속되어 한 규례를 통행함은 실은 백성에게 편의하고 역을 고르게 하는 방도입니다. 세선(稅船)의 호송도 역시 연해(沿海) 공통의 역입니다. 읍이나 진에 있어 사실 편하나 여부를 말할 만한 것이 없으나 군액은 많고 민정이 적은 폐단이 과연 소의 내용과 같다면 지금 사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역시 도신에게 호총(戶總:가호 수)과 군총(軍總)을 자세히 상고하게 하여 좋은 방도로 시정하게 할 것이며 당해 진이 목장을 폐지한 뒤에 새로이 설치한 진이 아니니 진장(鎭將)의 봉급과 공역(公役)의 수요에 옛 제도가 있을 것입니다. 경계를 분할하여 둔전을 설치한 뒤에 여러 공비(公費)도 역시 구획하였을 것이니 지금 이 백성들로부터 거두는 것이 절도가 없다는 말은 더욱 놀라운 일입니다. 그 말이 비록 후일을 우려하는 듯 싶으나 앞날에 반드시 없으리라고 보장하기 어려우니 역시 도신에게 엄중 신칙하여 특별히 검찰(檢察)하여 드러나는 대로 논죄하라고 일체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아뢰니 그리하라 하였다.

云云，泰安郡守玄重祚上疏，批旨內，爾以法從，出典芻牧，不待勤諮之舉，能以邑弊民瘼，有此疏陳，今日酬應雖煩覽，卽賜批，以示嘉尚之意，而稅納之 昔彼今此，尚有鳬鶴之歎，況京納所費甚於島輸云 乎，湖西稅運之愆期，必由舟司·船人之逗遛，日前飭 諭果然不錯，蛇油丸之弊亦必然矣，平薪鎮事，罷牧 設屯，弊反甚焉，則烏在其蠲減該寺稅總之意乎，竝 令廟堂割卽回啓，其中可以詳覈者，亦卽拔例舉行，以爲期於蘇弊之地事，命下教是白如乎，觀此疏 本，則其一，本郡稅米輸納江都矣，戊午春始爲移納 於京司，則人情雜費之比前不足，爲七十石零，故每 結加斂定式爲六升五合，初因華城留守所奏，本府 餉需支放之有裕間移割矣，繼因地部所啓，自華 城又移爲京納，今若依大典輸納江都，上也，不然則 姑爲移割於華城，次也，不然則京司雜費量宜裁減，比江都無甚過加者，又其次事也，稅穀之納于地部，常法也，中間之輸納江都亦出權宜，今雖移納地部，實非創立新式，不過還復舊規，而既納地部，則通編 所載之雜費，便是惟正之賦，三南各邑之所通行，不 可獨蠲於泰安一邑是白乎矣，第念江都輸納時，雜 費容入之比他稍歇，亦已年久，今若只據通行之例，準徵不足之數，則惟彼愚民，不知該曹雜費，本爲應納 之稅，輒稱加斂，有關聽聞是白忿除良，七十石米太，在該曹無甚得失，在小民則亦足爲惠是白如乎，分 付該曹，取考江都輸納時雜費實數，依此捧上，其外 加入之數竝爲蠲減，俾海曲民庶，咸知朝家薄賦輕 徭之本意爲白乎旆，其一，各邑稅穀之必於三月內 裝發，乃是法典定式，而一自舟橋船再運·三運之後，近則過六七月，遠或至八九月，而早納先捧者，則留 積等待，無異陳穀，爲監色者，恐其虧欠於上納，預先 加厚於斂捧，而舟橋船漢之於再·三運也，期限已晚，貪程趨進，致敗之患，未必不由於是且沿邑護送之 節，以其有再·三運之故，自三月至九月，其爲費爲弊 豈不倍蓰於前乎，大典通編，有訓局船再運，限以五 月初旬，過限則令該邑募私船裝發之文，而今此舟 橋船，則初無定限，舟橋船定其邑數，只許一番裝載，再運·三運之邑，竝令依前，以地土船裝發於三月限 內，而再運·三運如不可不許，則依訓局船例定限事 也，地土船載運之時，各邑輒稱無船可賃，搜覓之艱 辛，裝發之稽滯，百倍今日，而一自舟橋船分送之後，抽籤運泊具有定制，苟使操切有術，裝載及時，隨到 隨發，無或少留，則從前弊端，庶幾十祛七八，而不言 之利自歸於民邑是白去乙，邇來說弊，又反以舟橋 船爲其口實，此豈獨船人之罪也，其責多在於守令，然而革罷再運，復令賃船，則目前爲言，雖似容易，來 頭受弊，必倍前日，此不可輕議是白乎則，船人輩逗 遛往回之弊，自京司正宜嚴加戢束，況旆，向日飭 教至爲嚴截，舟司·地部今方查問該道，論理稟處，待其條制之議定，另用一切之法，以爲永久施行之 地爲白乎旆，其一，沿海邑例有內醫院卜定蛇油丸 製納之規，其所入藥蛇幾爲四五百箇，而使民人捕 捉，計邑之戶或一統一箇，或三統一箇，而捕納之期 每在八九月之間，蛇多穴處，故終不能捕捉，收聚價 錢，旁求以質則一蛇之價多至三四兩，如或監製官 下隸及邑吏輩，從中點退其大小，則又不無人情之 費，假使一統一箇，每戶徵納幾爲一兩錢，通而論之，一劑丸不過十餘斗封進，而費民錢殆千有餘金，夫國家之責徵於民者，雖土產常獻之物，必給其本 價，或蠲減他徭，而今此捕蛇，則曾無所給價蠲徭之 惠，此後蛇油丸當次邑，則許減其相當民役，俾無偏苦之弊事也，雖是數十年輪次之役，其爲民弊既如 此，則宜有軫恤之道，而內局封進，事體至重，有不 敢輕議裁定，分付道臣，量減其當年徭役，他邑當次 之時，亦令視此爲例爲白乎旆，其一，平薪鎮卽古之 監牧，而自甲寅，罷牧場設營屯，仍割數三邑土地，開 鎮分界，屬之本營者也，列邑則一結所收之米，無過 二十三斗，而該鎮境內則不問田與畝，一結多至五 十餘斗，列邑則良丁之民各有分隸，苦歇異役，番納 殊時，而該鎮軍伍，則非但額多丁少，所屬偏於一營或有一室三四丁，則每當收布之際，數十餘金一時 竝徵，且稅船候望護送之節，雖雄州大縣，不無其弊，而至於該鎮，則監校差立，輪責於數少之民，以此民 皆願還屬於諸邑，其設置排布與郡縣無異，而別無 區劃之資，則其斂民無節，固亦必至之勢，其弊乃至 於民不奠安，則屯將不久

自廢，而鎮亦無所恃矣，外 邑之有營屯者，或自營差遣人員，或自邑收捧上納，民不言苦，稅亦無損，然則此鎮之設，徒見其無益有 害，而既設之鎮不可遽言其罷，亟令廟堂講究其祛 弊之方事也，該鎮土地勿論爲牧場・爲營屯，其爲公 田則一也，私田只納公稅，公田則有公稅焉，此是不 易之常典，而祇緣愚民輩，耕食既久，認爲己物，每以 土稅條，看作不當納之稅，輒欲與私田之只納公稅 者，比論其多寡是白乎乃，爲官長者，想必曉然於此 箇界分，而今者疏陳乃復如此，似由於未詳裏面而 然是白乎矣，罷牧設屯莫非朝家爲民之至意教 是乎所，況跡，每結稅摠，較諸牧場時所捧之數，則殆 減三分之一，而只爲四十五斗云爾，則今此五十餘 斗之收捧，雖未知委折之何如，而違越定規，誠極驚 駭，若非鎮將輩憑藉元納，科外濫徵，必無此理，爲先 分付道臣，各別嚴查，如有所犯，劃卽狀聞，以爲照 法重勘之地爲白乎跡，軍役之苦歇不同，本非美制，猾胥得操其權，疲氓偏受其害者，職由於此，專屬一 營，通行一規，實爲便民均役之道，稅船護送，亦是沿 海通同之役，在邑在鎮，固無便否之可言，而第其額 多丁少之弊，果如疏陳，則不可不趁今查正，亦令道 臣詳考，戶摠軍摠從長矯揉爲白乎跡，該鎮既非罷 牧後新設之鎮，則鎮將俸廩，公役需用，應有舊制，割 界設屯之後，諸般公費亦已區劃，則今此斂民無節 之說，尤爲駭然，其言雖似慮後，既往難保，必無亦爲，嚴飭道臣，另加糾察，隨現論勘之意，一體分付何如，啓，依允。

<비변사등록 189책, 정조 23년 1799년 11월 29일(음)>

경제/재정

左議政 沈煥之가 안산 수진궁 노비의 신공을 화성에 소속시킨 일에 대해 논의하다

○ 이번 12월 25일 약방의 입진에 대신과 비변사 당상을 인견하여 입시하였을 때에 좌의정 심환지(沈煥之)가 아뢰기를, (….) 또 아뢰기를, “지난번 내수사의 보고로 인하여 안산(安山)의 작포(作浦)에 있는 수진궁(壽進宮) 노비 57구(口)는 애초부터 원총(元摠)에 들지 않았고 신공(身貢)을 면제시킨 뒤에 작자(作者:소작인)로 보충하였으며 전답에서 나오는 참쌀을 찢어서 상납하였는데 갑자기 금년에 본 고을에서 옮겨 화성(華城)에 소속시켰고 이 노비의 신공과 잡역(雜役)은 전처럼 물침(勿侵:면제)토록 한 일의 판부(判付)에, 당해 읍에 보충하면 소요스런 일이 있을 것 같으니 그 경위를 묘당에 보고하여 관문(關文)으로 물어서 사리를 논하여 초기하라고 명하셨습니다. 경기감사 서정수(徐鼎修)의 보고를 보면 안산군수(安山郡守)의 첩정(牒呈)을 하나하나 들며 수진궁 노비의 총수를 상고해 보면 노가 94구, 비가 38구이며 당해 궁의 이른바 작포의 노비는 모두 원총 안에 있고 원총 외에 더는 남은 인구(人口)가 없습니다. 비변사에서 반포한 절목 가운데의 원총 숫자에 의하여 사실을 조사, 공물을 거둘 생각이라고 하였습니다. 당해 읍에 있는 내수사 노비를 전에 화성으로 옮겨 속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57구를 유독 도로 당해 궁에 속하게 하는 것은 당초 절목 가운데의 본 뜻이 아닙니다. 차라리 다른 도의 남은 노비를 이 수에 맞추어 획급하여 당해 궁에서 편의에 따라 구처하도록 해야 하겠음을 감히 여쭙니다.” 하니 임금이 그리하라 하였다.

今十二月二十五日，藥房入診，大臣備局堂上 引見入侍時，左議政沈所啓，(…) 又所啓，頃因內需司所報，安山作浦所在壽 進宮奴婢五十七口，自初不入元摠，除減身貢後充 定作者，田畝所出粘白米春精上納，忽於今年自本 官移屬華城，同奴婢身貢雜役依前勿侵事，判下 內，該邑充定似有所擾，其委折報廟堂，關問論理草 記事，命下矣．卽見京畿監司徐鼎修所報，則枚舉安山郡守牒呈以爲，取考壽進宮奴婢摠數，則奴 爲九十四口，婢爲三十八口，而該宮所謂作浦奴婢，俱在元摠之內，摠外更無餘口，一依備局頒下節目 中，元摠數爰，查實收貢計料云矣．該邑所在內奴婢，前既移屬華城，則今此五十七口，獨爲還屬於該宮，殊非當初節目中本意，寧以他

道餘奴婢，準此數劃 給，以爲自該宮從便區處之地乎，敢此仰稟矣．上曰，依爲之．

<비변사등록 189책, 정조 23년 1799년 12월25일(음)>

경제/재정

迎華察訪 李元膺이 예산 중당 문제와 驛屬 復戶米의 이동 문제에 대해 논의하다

이달 정월 17일 화성행궁(華城行宮)의 거동(舉動)에 입시 때 영화찰방(迎華察訪) 이원웅(李元膺)의 소회(所懷)에, “본 역이 신설한 뒤에 토지가 적어서 생리가 맑고 박함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비록 작년부터 조령(朝令)으로 인하여 북쪽의 둔전 약간의 전답에 경작을 하여 먹고 있으나 마침내는 구차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각양의 공화(公貨) 중에 3천 냥을 10년을 기한으로 대출을 허락주어 매년 300냥 씩 도로 갚게 한다면 10년 안에 모두 갚을 수 있어서 거의 안심하고 의지되는 방도가 될 것입니다. 역속(驛屬)들이 받아 먹고사는 복호미(復戶米)가 먼 읍에 많이 있기 때문에 또한 실어다가 식양에 보충하기가 어려우니 가장 먼 읍은 좀 가까운 읍에 옮겨 붙여 놓으면 원수(元數)있어서도 별로 가감될 것이 없고 저들에게 있어서는 실로 이익이 될 것인데 이는 선혜청이 편리한 대로 옮겨 붙여 두는가의 여하에 달려 있을 뿐입니다. 남양(南陽)의 해문참(海門站)과 안성(安城)의 강복참(康福站)은 모두 궁벽한 길이라서 별로 사신[使星]의 왕래가 없으니 두 역참의 마호(馬戶)를 옮겨다가 본역에 붙인 뒤에도 남아 있는 것이 또 5호가 되니 이를 우선 임시로 혁파하고 위전(位田)은 세금을 받아 본 역에 붙여서 공용(公用)에 보충하게 하고 양성(陽城)의 개천참(開川站)에 이르러서는 진위읍내(振威邑內)로 옮겨 설치할 것이나 먼저 마위답(馬位畓)을 정하여 서로 바뀌야 비로소 옮겨 설치할 수가 있으니 해지방관(該地方官)과 더불어 옮겨 설치하는 것에 대한 편의를 비교하여 난상토론을 한 뒤에 다시 본부 및 순영(巡營)에 논의하여 품달하여 처리할 자리로 삼았는데 이미 었드려 물으심을 받들었기에 아울러 양달합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묘당으로 하여금 품달하여 처리하도록 하라.” 하였다.

今正月十七日華城行宮舉動入侍時，迎華察訪李元膺所懷，本驛新設之後，坐於土地之尠 少，生理未免澹薄，雖自昨年因朝令，耕食北屯若干田畓，而終涉苟艱，各樣公貨中三千兩，限十年許貸，每年三百兩式還報，則十年內可以盡報，而庶爲 聊賴之道，驛屬所受食·復戶米，多在遠邑，亦難輸來 補糧，就其最遠邑，移付稍近邑，則在元數，別無加減，在渠輩實爲資益，此在惠廳從便移付之如何而已，南陽海門站·安城康福站俱是僻路，別無使星往來，兩站馬戶移付本驛之後，餘在尤爲五戶，此姑權罷，位田則收稅，付之本驛，以補公用，至於陽城開川站，移設振威邑內事，先定馬位畓相換，始可以移設，擬 與該地方官爛商便宜後，更議於本府及巡營，以爲稟處之地，而既伏承下詢，竝此仰達矣，上曰，令 廟堂稟處可也．

<비변사등록 190책, 정조 24년 1800년 01월18일(음)>

경제/재정

領議政 李秉模가 영화역의 공화 문제에 대해 논의하다

○ 이달 27일 제승지(諸承旨)가 공사를 가지고 입시하고 대신·비국당상을 추후인견에 입시켰을 때 영의정(領議政) 이병모(李秉模)가 아뢰기를, (….) 또 아뢰기를, “영화찰방(迎華察訪) 이원웅(李元膺)이 올린 소회(所懷)에 대한 비지(批旨)안에 ‘묘당으로 하여금 여쭙어 처치하게 하라’ 고 명(命)하셨습니다. 그 소회를 취해 보니 ‘본역(本驛)을 신설한 뒤로 토지가 작아 생리가 맑고 박하니 각양의 공화(公貨) 중에서 3천 냥을 한계로 10년간 꾸어주고 매년 300냥씩을 도로 갚게 하면 거의 의지해 힘입는 방도가 될 것입니다. 역속(驛屬)이 받

아먹는 복호미(復戶米)가 먼 고을에 많이 있는데 그것을 가까운 고을에 옮겨 부속 시킨다면 실로 자익(資益)이 될 것이니 이는 선혜청(宣惠廳)에서 편리한대로 옮겨 붙이느냐의 여하에 달려 있습니다. 남양(南陽)의 해문참(海門站)과 안성(安城)의 강복참(康福站)의 마호(馬戶)를 본 역에 옮겨 붙인 뒤에 남아있는 것이 5호인데 이것은 우선 임시 과하고 위전(位田)의 수세(收稅)는 본 역에 붙이고 공용(公用)으로 보충하게 하소서. 양성(陽城)의 개천참(開川站)을 진위(振威)읍내에 이설하는 것에 이르러서는 지방관과 본부의 순영(巡營)과 더불어 난만히 토론을 하여 여쭙어 처리하라는 것은 이미 엎드려 하순(下詢)을 받들었으므로 아울러 이렇게 양달합니다.’ 고 하였습니다. 해역(該驛)을 신설한 뒤에 온갖 일들이 아직 실마리를 잡지 못했는데 토지(土地)가 적은 것에 더욱 마음을 써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3천 냥을 꾸주고 해마다 300냥을 갚게 해달라는 청은 당장의 폐단을 구제할 정책은 될 수 있습니다. 화성(華城)의 공화가 5천여 냥에 해마다 저축하는 돈이 있는데 여기에서 3천 냥을 꾸 주고 10년을 기한으로 본전을 다 갚게[准報]하는 바탕으로 만들고 역속이 받아먹는 복호미를 가까운 고을로 옮겨 획급하는 일은 선혜청에도 별로 손익이 없으며 각 해읍에도 또한 큰 이해가 없으니 부근으로 옮겨 붙이라는 뜻에 따라 선혜청에 분부하소서. 남양의 해문참과 안성의 강복참의 마호는 이미 벌써 본역(本驛) 옮겨 붙였으니 남아 있는 5호는 임시 혁파하고 위전 세를 보충해 쓰는 것은 사리에 당연하니 또한 그대로 시행하게 하소서. 개천 참을 옮겨 설치하는 일은 위토를 상환하기 전에는 가볍게 논의하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작년 암행어사가 서계(書啓)로 복주(覆奏)할 때에도 또한 이미 양달하였는데 지금 우선 그대로 두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임금의 이르기를, “그리 하도록 하라.” 하였다. (…)

今二十七日諸承旨持公事入侍，大臣·備局堂 上追後引見入侍時，領議政李所啓，(…) 又所啓，迎華察訪李元膺所懷，批旨內，有令 廟堂稟處之命矣，取見其所懷，則以爲，本驛新 設之後，土地尠少，生理淡薄，各樣公貨中，三千兩限 十年許貸，每年三百兩還報，則庶爲聊賴之道，驛屬 所受食·復戶米，多在遠邑，移付稍近邑，則實爲資益，此在惠廳從便移付之如何，南陽海門站·安城康福站馬戶，移付本驛之後，餘在爲五戶，此姑權罷，位田 收稅，付之本驛，以補公用，至於陽城開川站，移設振 威邑內事，擬與地方官及本府巡營爛商稟處，而 既伏承下詢，竝此仰達云矣，該驛新設之後，凡百尙未就緒，土地之鮮少，尤宜軫念，而今此三千兩許 貸，歲報三百兩之請，足爲目下救弊之策，華城公貨 有五千餘兩，歲儲之錢，就此以三千兩許貸，限以十年，以爲準報之地，驛屬所受復戶米之移劃近邑事，在惠廳，別無損益，各該邑似亦無大利害，從附近移 付之意，分付惠廳，南陽海門站·安城康福站馬戶，既已移付本驛，則餘在五戶之權罷，位稅之補用，事理 當然，亦爲依施，開川站移設事，位土相換之前，有難 輕議，故昨年繡啓覆奏時，亦已仰陳，今姑置之何 如，上曰，依爲之。(…)

<비변사등록 190책, 정조 24년 1800년 02월27일(음)>

경제/재정

水原留守 徐有隣가 春牟 留庫 중에서 4백석의 加分을 청한 대로 시행하라고 전교하다

○ **수원유수(水原留守)** 서유린(徐有隣)이 장계하기를, “창고에 머물러 둔 봄보리 400석을 특별히 가분(加分)을 허락할 것을 묘당으로 하여금 여쭙어 처리하게 하소서.” 라고 한데 대해 전교하기를, “장청(狀請)에 따라 시행하도록 하라고 회유(回諭)토록 하라.” 하였다.

以**水原留守**徐有隣狀啓，春牟留庫中四百石特許加分，令廟堂稟處事，傳曰，依狀請施行事回諭。

<비변사등록 190책, 정조 24년 1800년 02월 29일(음)>

경제/재정

水原留守 徐有隣이 요청한 대로 果川 등 5邑에 餉租의 加分을 허락하다

비변사 계사에, “수원유수(水原留守) 서유린(徐有隣)의 장계를 보니 본부의 소속 과천(果川)등 다섯 고을이 보고한 것을 낱알이 거론하면서 ‘응분의 환곡이 본래 많지 않아 호수(戶數)를 계산하여 순회하며 배분하자면 계속해서 지급할 길이 없으니, 다섯 고을의 군향 조[餉租]의 유고조(留庫條) 7천60석 중에서 5천415석을 한정으로 특별히 가분(加分: 환곡을 더 대출함)을 허락해 달라고 한 것을 청하건대 묘당으로 하여금 품지해서 분부하게 하소서.’ 하였습니다. 때에 조금 풍년이 들었으므로 백성이 조미(糶米: 내다 주는 쌀)를 원하지 않고 있는데 수신(守臣)의 소청이 이와 같으니, 다섯 고을의 사정으로 보아 분·유(分留)의 상법(常法)을 사용하기가 어려울 듯합니다. 이 수에 따라 가분(加分)하라는 뜻으로 분부하게 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답하였다.

司啓辭，卽見水原留守徐有隣狀啓，則枚舉本府屬果川等五邑所報以爲，應分還穀，自來不敷，計戶排巡，無以繼給，五邑餉租留庫條七千六十石中，限五千四百十五石特許加分事，請令廟堂稟旨分付矣，時當稍豐，民不願糶，而守臣所請如此，則五邑事情，似難用分留常法，依此數加分之意，分付何如，答曰，允。

<비변사등록 190책, 정조 24년 1800년 04월 04일(음)>

경제/재정

水原留守 徐有隣의 요청대로 整理穀 3천 3백석의 加分을 시행하라고 전교하다

수원유수(水原留守) 서유린(徐有隣)이 올린, “정리소(整理所)의 각곡(各穀) 3천3백석을 특별히 가분으로 허락해 주실 것을 청하건대 묘당으로 하여금 품지하여 분부 하게 하소서.”라는 장계에 판부(判付)하기를, “비변사에 계하한다. 장청(狀請)에 따라 시행 하라.” 하였다.

以水原留守徐有隣狀啓，整理各穀三千三百石特許加分事，令廟堂稟旨分付事，判付內，啓下備邊司爲跡，依狀請施行爲良如教。

<비변사등록 190책, 정조 24년 1800년 04월 11일(음)>

경제/재정

奉常寺 判官 金熙華가 祭享 物種 封進 때의 架子 및 皮筒과 雨備를 修改를 논의하다

오늘 제승지(諸承旨)가 공사(公事: 국가에 관계된 일)를 가지고 입시했는데 윤대관(輪對官)이 함께 입시 때 봉상시판관(奉常寺判官) 김희화(金熙華)가 소회(所懷)하기를, “제향(祭享)에 쓸 물종(物種)을 봉진(封進)할 때 가자(架子) 및 피통(皮筒)·우비(雨備)를 계축년(정조 17, 1793)부터 비로소 구획한 것입니다. 비국랑(備局郎)을 초치(招致)하여 영상(領相)에게 말을 하고, 이어 이 뜻으로 화성유수(華城留守)에게 하유(下諭)하게 하소서. 이와 같이 하면 해부(該府)가 해마다 바치는 전수(典守)에 대하여 마땅히 다른 예를 참조하여 모방함이 있어야 하니 서울에서 어사(御史)를 내려 보내어 반열(反閱)하게 하고 해부의 구관당상(句管堂上)이 올라오기를 기다려서 한가지로 지시하여 초기(草記)해서 품달하여 처리하게 하소서.” 하였다.

今日諸承旨持公事入侍，輪對官同爲入侍時，奉常寺判官金熙華所懷，祭享物種封進時，架子及皮筒·雨備自癸丑年始區劃之事，招致備郎，言于領相，仍以此意，下諭華留，如是則該府歲捧

之典 守，宜有照倣他例，自京下送御史，反閱爲可，待該府 旬管有司堂上上來，指一草記稟處。
<비변사등록 190책, 정조 24년 1800년 04월 11일(음)>

경제/재정

迎華驛에 公貨를 빌려주는 것은 均役廳의 給代條 중에서 年限을 정해 區劃하라고 전교하다 전교하기를, ‘저번 영화역(迎華驛)에 公貨(公貨)를 꾸주도록 허락함으로 인하여 화성(華城)에서 해마다 바치는 돈으로 帑給하라는 뜻으로 領相(領相)의 거조에 시행하도록 허락을 하였으나 다시 생각하니 해부(該府)의 公貨는 아직 실마리를 펴지 못했고, 해당 역은 均청 帑大 조 중에서 均理에 따라 한해에 10냥을 한계로 하되 이름을 「첨해전(添海錢)」이라 하여 예리(禮吏)에 내어주어서 進上할 물선(物膳)을 사서 올리는 자료로 삼게 하라’ 고 했는데 작년에 신질목에 정채를 마련에 509냥 2전 5푼을 만들었습니다. 이는 해부(海夫)에게서 징수해 낸 것이며 대개 이 물선은 이 해부(海夫)가 스스로 잡은 것입니다. 그런데 저들로 하여금 담당하게 하는 것은 사실 각 읍이 통행하는 예인데, 유독 통천에만 예리(禮吏)에게 사서 바치게 하는 것은 매우 마땅하지 않습니다. 또 어떻게 그사이에 폐단이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까? 이미 이식으로 키운 돈이 있으니 이것으로 그 절목의 정채를 감당하게 하고 만약 그 물선은 해부에게 가미(價米)를 내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조치하여 마련하는 자료로 삼게 하는 것이 마땅할 듯합니다. 歙谷(歙谷)의 곡식장부 중에 벼의 환곡[租還] 3백 47석이고 甯의 환곡은 925석인데 본 읍은 논이 많고 밭이 적어서 그 때문에 매양 甯 환곡을 奉納(捧納)할 때를 당하면 백성들이 다 타경(他境)에서 전무(轉貿)하자면 소요를 면치 못할 것이고 절반을 한계로 색을 바꾸어 벼로 만들면 그 민정(民情)에 있어 매우 편리하여 좋아할 것입니다. 신이 두 고을의 민정을 비록 몸소 살피지는 못하였으나 마침 들어와 보고 하는 자가 있기에 이미 굶어 물으심을 만들었기에 감히 이렇게 양달하나이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진달한바 두 조목은 네가 임지로 돌아가는 길에 방백(方伯)과 직접 논의하여 장점을 좇아 바로잡은 뒤에 장계로 보고하도록 하라.” 하였다.

傳曰，向因迎華驛許貸公貨事，以華城歲捧之錢 劃給之意，許施於領相舉條，而更思該府公貨姑未 就緒，該驛則均廳給代條中，從便限年十兩，而名曰 添海錢，出給禮吏，俾爲進上物膳貿納之地，而昨年 新節目情債磨鍊爲五百九兩二錢五分，此則徵出 於海夫，蓋物膳爲是海夫之所自捉，而使渠擔當，則 實爲各邑通行之例，而獨於通川，使禮吏貿納，甚是 不當，又安知其間，不有弊端乎，既有生殖之錢，則以 此當其節目情債，而若其物膳，則出給價米於海夫，以爲使渠措備之地，似爲得當， 歙谷穀簿中，租還則 爲三百四十七石零，太還則爲九百二十五石零，而本邑自是畚多田少，故每當太還捧納之時，民皆轉 貿他境，不免於騷擾，限折半換色爲租，則其於民情，甚爲便好，臣於兩邑民情，雖未躬審，適有入聞者，既 承下詢，敢此仰達矣，上曰，兩條所陳，爾於還任 之路，面議方伯，從長釐正後，使之狀聞可也。

<비변사등록 190책, 정조 24년 1800년 04월 12일(음)>

경제/재정

安山 등의 곡물을 戶曹와 常平倉의 곡물로 換作하여 耗穀을 公費로 쓰는 문제를 논의하다

○ 이번 윤4월 17일 좌부승지가 입시하고 와서 기다리던 제신(諸臣)들이 함께 입시했을 때 장용외사(壯勇外使) 서유린(徐有隣)이 아뢰기를, “안산(安山)·시흥(始興)·진위(振威)·용인(龍仁)·과천(果川)등 5읍(邑)의 각양 군병을 이동 소속시키고 관할(管轄)한 뒤 문서에 서명된 액수가 줄어들고 잡비(雜費)가 축소되어 이름이 졸오(卒伍)에 편성된 자들이 아울러

그 혜택을 받게 될 것입니다. 또 각 아문의 신역(身役)을 모두 화성(華城)에 바침으로 읍폐(邑弊)와 민막(民瘼)이 10에서 8~9는 제거되었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런데 탈(頔)을 대신하여 마감하여 부속시킴으로 점열할 때 장리(將吏)와 관례(官隸)의 왕래가 거의 서로 이어졌으며 또 작년 남양(南陽)의 향·조(餉租)를 이속시키면서부터 곡물의 거취가 스스로 흘러지고 형클어진 것이 많아서 부서(簿書)의 기회가 순영과 다름이 없습니다. 군병의 수렵에 이미 금하는 조항이 있어서 관문(關文)으로 전한 돈과 벼가 거의 상당하지 않은데 이에 매인 전에 없는 부역을 오로지 하숙들에게만 책임지울 수 없으니 많고 적음과 성글고 자주임을 논할 것 없이 이른바 고가(雇價)의 양자(糧資)를 모두 관청(官廳)에서부터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장(衛將)의 가지가지 공행(公行)은 그 속에 들어 있지 않고 쓸데없는 비용이 옛날에는 없었는데 지금에 있는 것을 날마다 계산하면 비록 영성한 것 같지만 해로 모아보면 많을 뿐만이 아닙니다. 5읍이 화성에 와서 붙은 것이 앞으로 감싸주는 은혜와 돌봐주는 혜택을 받을 것처럼 여겼으나, 지금 곧 서로 상반됨을 면치 못하고 있으니 그 대강령(大綱領)이 졸오(卒伍)가 받고 민읍(民邑)이 폐단을 제거하는 데에서 나와야 합니다. 수령된 자가 그 즐거움을 말하고 그 괴로움은 말하지 않고 있으나 그 이면을 자세히 캐보면 박하고 빈약한 녹봉은 참으로 이어가기 어려운 염려가 있습니다. 일의 면모로 헤아려 보면 변통이 있어야 합당하나 유대(留臺) 외영(外營)에는 실로 재화를 파급해 줄 방도가 없습니다. 가만히 엮드려 상각하건데 5읍은 다함께 백성은 많고 곡식은 적은 고을이므로 환곡(還穀)할 때 가분(加分)을 장청(狀請)하지 않는 해가 없는데 그 가분한 모조(耗條)로 분수(分數)를 헤아려서 관의 용도를 넉넉하게 하려 군무(軍務)의 거래(去來)와 곡부(穀簿)의 관유(關由: 관청에서 명령하는 공문서)에 자잘한 비용 중에 관에서 나오는 것은 거의 균색하여 떨어지는 않을 것이고, 그 법을 유구(悠久)하게 전하여 준비가 있어 어긋남이 없게 한다면 군병에게 거두어들이는 폐단은 영영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전해 들으니 돈과 벼의 용도에 있어는 재차 징수는 면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 만약 작다 하여 경홀히 하거나 번거롭다하여 내버려 두었다가 한해두해 지나 폐단이 생기게 된다면 매우 우리 성상께서 일이 화성에 관계된 것이면 힘써 편리하게 하시는 덕의(德意)를 본받는 것이 아닙니다. 옛사람이 법을 제정할 때는 반드시 호조(戶曹)의 곡식과 상평청(常平廳)과 진휼청(賑恤廳) 곡식 기본(幾分)의 모곡을 본관(本官)에 붙여 둔 것은 오로지 이런 곳을 위하여 마음 두신 것이니 수용(需用)함에 청렴을 기르는 뜻을 실로 그 사이에 붙여 둔 것입니다. 또 더구나 가분(加分)은 원분(原分)과 동일하지 않고 공용(公用)은 사용(私用)과 다르니 적당히 헤아려 과분해서 뒤섞이지 않게 해야 합니다. 안산 등 5읍에 소재한 가분 모곡 중에서 벼는 1백석을 한하여 특별히 지급하는 것이 아마도 사리에 맞을 듯합니다. 그러나 환곡은 사체가 중대하여 감히 마음대로 편하게 할 수 없으니 묘당에 물어서 처리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임금의 이르기, “구관당상(句管堂上)도 의견을 진달하도록 하라.”

하자, 화성구관당상 이서구(李書九)가 아뢰기를, “가분해서 모곡에서 취하는 것은 본래 경법(經法)이 아니나 5읍의 곡식 총수가 많지 않아서 아직 통틀어 반분하기를 화성의 예와 같이 하지 못했습니다. 성상의 전교에 매양 한 구역에 정전(井田)을 시험한다는 뜻으로써 반드시 차제에로 바로잡아서 사방이 준칙(準則)으로 만들려 하시는데 지금 만약 가분 모곡의 명색으로 또한 수용하는 자본으로 삼는다면 비록 베풀어 조처하는 본의에 어긋남이 있더라도 5읍의 사정이 이미 이와 같으니 달리 변통하려 해도 그 길이 없어서 형세가 장차 임시방편의 방도를 우선 또 행해야 하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지금 화성유수(華城留守)의 말을 들으니 5읍의 사세가 반드시 이

렇게 해야 마땅하겠으나 군민(軍民)을 위하는 일은 도리어 고을의 수령과 고을의 아전으로 하여금 바뀌서 그 폐단을 받게 했으니 이것이 어찌 군총(軍摠)을 합하여 일통(一統)을 만들고 환국은 다만 반으로 나누어 정전(井田)을 먼저 시험하여 한 구역에 붙이고자 한 본뜻이겠는가? 5읍의 곡물을 환작하고 호조와 상평 등 곡식에서 모곡을 취하는 규례는 일체 『대전통편』의 규례에 따라 행한다면 가분 모곡을 번거롭게 하지 않아도 저절로 폐단을 구제할 수 있을 것이니 근래 거조 중에 정당한 것 같다. 이것이 비록 작은 일이나 그 이름은 크다. 이것을 알아서 거행하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今閏四月十七日左副承旨入侍，來待諸臣同爲入侍時，壯勇外使徐有隣所啓，安山·始興·振威·龍仁·果川等五邑各樣軍兵移屬管轄之後，簽額之除減，襍費之蠲革，名編卒伍者，並受其賜，且因各衙門身役之都納華城，邑弊民瘼十祛八九，而第緣代頗磨勘，領付點閱之時，將吏官隸之往來幾乎相續，又自昨年移屬南陽餉租，穀物去就自多泮渙，簿書期會無異巡營，軍兵收斂，既有禁條，傳關錢租殆不相當，而係是無前之役，不可專責於下屬，則無論多少疎數，所謂雇價·糧資，舉皆自官助給，而衛將之種種公行，不在其中，冗費之昔無今有者，日計雖似零星，歲會不啻夥多，五邑之來付華城，若將蒙幄幃之惠沾潤之澤，而今乃未免於相反，以其大綱領之出於卒伍受賜，民邑祛弊，爲守令者，言其樂，不言其苦，而細究裏面，則薄俸殘廩，誠有難繼之慮，揆以事(面)，合有通變，而留臺外營，實無財貨派及之道，竊伏念，五邑俱以民多穀少之邑，還穀之狀請加分，無歲無之，就其加分耗條，參量分數，以贍官用，則軍務之去來，穀簿之關由，冗費之自官出者，庶不窘乏，而垂之悠久，有備無違，則軍兵收斂之弊，可期永杜矣，傳關錢租之用，可免再徵矣，今若以微細而忽之，煩瀆而置之，一年二年轉至生弊，則甚非所以仰體我聖上，事關華城，務從便好之德意，古人制法，必將戶曹穀·常賑穀幾分耗付之本官者，實在於軫念此等處，需用養廉之意，實寓其間矣，又況加分不同於原分，公用亦異於私用，酌量派分不至猥屑，安山等五邑所在加分耗中，租限一百式特爲許劃，恐合事宜，而還穀體重，不敢擅便，下詢廟堂處之，何如，上曰，句管堂上亦陳意見，可也，華城句管堂上李書九曰，加分取耗，本非經法，五邑穀摠不敷，姑未及通作半分，如華城之例，而聖教每以一區井田之義，必欲次第釐正，俾作四方之準則，今若以加分耗名色，又爲需用之資，則雖有違於施措之本意，五邑事情既如此，從他變通，亦無其路，勢將以權宜之道，姑且行之矣，上曰，今聞華留之言，五邑事勢必當如此，爲軍民之舉，反使邑倖邑吏，替受其弊，此豈軍摠合爲一統，還穀只欲半分，以寓井田先試一區之本意乎，五邑穀物換作，戶曹常平等穀取耗規例，一依通編施行，則不煩加分耗，而自可掾弊，近來舉措中，似正當，此雖小事，其號則大矣，以此知悉舉行，可也。

<비변사등록 190책, 정조 24년 1800년 04월18일(윤)>

경제/재정

湖南左右水營의 쌀 3천석을 水原에 劃付하여 軍器 수선 物力을 보상해 줄 것을 청하다

○ 비변사에서 아뢰기를, “즉시 수원유수 서유린(徐有隣)의 장계를 보면 ‘본부에 군기(軍器)가 본래 적어서 실로 대비에 소홀함이 많습니다. 지금 좋은 점을 따라 추이하여 속히 수선해서 만들라는 명을 받들고 한창 성을 수리하고 있습니다. 창고에 머물러 있는 돈과 곡물로 봄이 되면 즉시 공사를 시작하겠는데 들어갈 물력이 9천 냡을 내려가지 않으니 묘당으로 하여금 품지(稟旨)하여 구획(區劃)하게 해서 제때에 보상(報償)해 주는 방도로 삼아야 합니다. 적간(摘奸)하고 번고(反庫)를 정식(定式)으로 하는 것에 이르러서는 내영(內營)의 예에 의하여 거행하고 남한산성(南漢山城)과 강화도[泌都]의 예에 의하여 거행하되 처분을 기다려 정식해서 시행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일찍이 연전에 본부에

서 군기를 수리와 제조로 인하여 호남선박에 저장해 둔 4천석을 내어 취해 사용한 뒤에 매년 가분(加分)과 모조(耗條)로 병진년(정조 20, 1796)부터 기미년(정조 23, 1799)에 이르기까지 <본색의> 수량에 맞춰 보충하였습니다. 지금도 이 예에 의하여 호남의 좌수영(左水營)의 쌀 2천석과 우수영(右水營)의 쌀 1천석 합 3천석을 획부(劃付)하여 편리한 대로 구처(區處)한 뒤에 3년을 기한으로 가분(加分)하여 원곡의 수를 채우게 하기를 일체 연전에 한 것처럼 하고, 적간과 번고 등의 절목은 내영과 외영이 의당 다르지 않을 것이니 내영의 예에 의하여 거행하도록 정식으로 시행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그리 하라고 답하였다.

司啓辭，卽見水原留守徐有隣狀啓，則以爲，本府軍器本來鮮少，實多疎虞，今伏奉從長推移，趁速繕造之命，方以修城庫，留在錢物，開春卽時始役，而所入物力不下九千兩，令廟堂稟旨區劃，以爲及時報償之地，至於摘奸反庫定式事，依內營例舉行，與依南城·沁都例舉行，待處分，定式施行計料爲辭矣，曾於年前，因本府軍器修造，劃出湖南船，儲置四千石取用後，每年加分耗，自丙辰至己未準充矣，今亦依此例，湖南左水營米二千石·右水營米一千石合三千石劃付，從便區處後，限三年加分，俾充元穀之數，一如年前之爲，摘奸反庫等節，內·外營宜無異同，依內營例舉行事，定式施行何如，答曰，允。

<비변사등록 190책, 정조 24년 1800년 04월 25일(음)>

경제/재정

華城府의 歲捧 公貨에 대해 2년에 한번 조사하는 것으로 定式을 삼기를 청하다

○ 비변사 계사에, “전교하기를 ‘지난번 영화역(迎華驛)에 공화(公貨)의 대출을 허락하는 일로 인하여 화성(華城)의 세봉전(稅捧錢)으로 우선 획급해 준다는 뜻으로 영상의 거조에 시행을 허락하였는데 다시 생각해보니 해부(該府)의 공화는 형편이 아직 실마리가 잡히지 않아 해역(該驛)은 규청(均廳)의 급대 조(給代條) 속에서 편리한대로 연수를 제한하여 구획할 일로 비랑(備郎)을 초치하여 영상에게 말을 하게하고, 이어 이런 뜻으로 화성유수에게 하유(下諭)토록 했다. 이렇게 하면 해부(該府)의 세봉(歲捧)을 맡아 관리하는 것이니 마땅히 다른 예를 참조 모방하여 서울에서 어사를 내려 보내어 반열(反閱)하게 해야 한다. 해부의 구관유사당상(句管有司堂上)이 올라오기를 기다려서 하나로 지적하여 초기하고 품달하여 처리하게 하라’ 고 명하(命下)하였습니다. 삼가 강도 호남고(戶南庫)를 번열(反閱)한 예를 상고해보니, 어떤 때는 어사(御史)를 내려 보내기도 하였고 어떤 때는 중사(中使)를 내려 보내기도 하였으며 어떤 때는 선전관(宣傳官)을 보내기도하였는데 성글고 자주인 것이 일정하지 않아서 별로 일정한 연한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5년은 너무 뜨고 한해를 간격으로 하면 너무 잣으니 2년을 간격으로 번열을 하는 것이 아마도 합당할 듯합니다. 어사(御史)·중사(中使)·선전관(宣傳官)은 오직 임금이 명하실 것이나 그 연한(年限)의 세수(歲首)를 당하여 본사(本司)로부터 초기하여 품지하고 본부(本府)의 공화저유(公貨儲留)는 작년부터 시작했으니, 작년부터 계산을 하면 재명년에는 마땅히 번열을 해야 할 것인데, 일후 연조(年條)의 시한을 정하되 이것에 준하여 시한을 삼을 것을 들어내 정식으로 삼게 하고 이어 즉시 내영(內營)과 화성유수(華城留守)에게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답하였다.

司啓辭，傳曰，向因迎華驛許貸公貨事，以華城歲捧之錢劃給之意，許施於領相舉條，而更思該府公貨，姑未就緒，該驛則均廳給代條中，從便限年區劃之事，招致備郎，言于領相，仍以此意，下諭華留，如是則該府歲捧之典守，宜有照倣他例，自京下送 御史反閱爲可，待該府句管有司堂

上上來，指一草記稟處事，命下矣，謹稽江都戶南庫反闕之例，或遣御史，或遣中使，或遣宣傳官，疎數不一，別無一定之年限，而五年太疎，間年太頻，間二年反闕，恐似合宜，御史·中使·宣傳官，惟上所命，而當其年限，歲首，自本司草記稟旨，本府公貨儲留，始自昨年，則自昨年計之，再明年當爲反闕之，限日後年條，視此爲限事，著爲定式，仍卽分付於內營及華城留守處，何如，答曰，允.

<비변사등록 190책, 정조 24년 1800년 04월30일(음)>

경제/재정

平壤監營의 留庫木 別備條는 定式을 준수하고 새로 받는 것은 곧 바로잡을 것을 청하다

비변사에서 아뢰기를, “행대호군 한용귀(韓用龜)가 아뢴 바를 보니, ‘평양(平壤) 감영에 별도로 유치해 두는 무명은 몇 년 동안 비변사에서 매분기마다 별비조로 준비하는 몫이나 혹은 당해 연도에 새로 받은 몫에서 3, 4백동을 골라서 두라고 관문으로 신칙하였습시다만, 이른바 유고목(留庫木)이라고 하는 것이 조악하고 부패해서 수요를 감당하지 못해 매번 새로 받은 것으로 사용하는 바탕을 삼기 때문에 어떤 모양으로든 회부(會付)하는 돈으로 대신 지급한 뒤 바꾸어 유치해 두게 되어, 납부해야 할 사람이 원망하는 폐단이 없지 않습니다. 우선 정사년 분을 가지고 말하면, 이미 골라서 유치해 둔 뒤에 선혜청에서 사람을 보내 내다 팔고, 또다시 거기서 관북(關北)에 팔아 마치 재화를 옮겨 이익을 노리는 것처럼 하였으니 참으로 개탄스러우며, 재작년에는 본색(本色)으로 선혜청에 가져다 납부하였으나 수십 여동을 또 퇴짜 놓아 허다한 폐단이 끝내 소민(小民)에게 돌아갔습시다. 본영(本營:평양 감영)의 유고목(留庫木)은 매년 바꾸어 유치해 둘 필요가 없으므로 점차 바로잡되, 작년에 받아 유치해 둔 몫은 도로 본영에 갚아 전례대로 사용하도록 묘당에 하문하여 처리해 주십시오.’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비지(批旨) 안에, ‘묘당에서 어찌 아뢰지 않고 별도로 유치해 두게 할 리가 있겠는가? 이미 별도로 유치해 두었다면 또 어찌 내다 판단 말인가? 묘당에 곡절을 묘당에 묻고,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 말라는 뜻으로 해도(該道)에 엄중 신칙하되, 역시 묘당에서 하나를 지적해 초기(草記)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 고 명하셨습니다. 해영(該營:평양감영)의 유고목(留庫木)은 평소 외탁지(外度支)의 만약을 대비한 물자라고 부르는데, 근래 지키는 법이 점차 예전만 못해 오래된 저축은 그저 빈 장부만 끼고 있고 새로 받는 것은 어렵지 않게 다른 물품으로 바꾸어 각종 농간을 부리는 폐단이 해피하게 들립시다만, 경사(京司)의 수요는 매번 대부분 긴급하고 때에 다다라서 구획(區劃)하여 낭패하기 쉽기 때문에 병진년·무오년·기미년에 본사(本司)에서 혹은 말을 만들어 통지하거나 혹은 연석에서 아뢰고 신칙하여 3, 4백 동에 한해 별도로 택해 두게 되었는데, 병진년에는 4백 동 가운데 1백 5십 동을 화성(華城)에 떼어주고 2백 5십 동을 선혜청에서 청해 가져가 해도(該道)에 있는 상진청(常賑廳)의 곡물 8천 3백여 섬을 환산하여 값으로 지급하였고, 무오년에는 3백 동 가운데 6십 동을 중순목(中旬木)으로 훈국(訓局)에 떼어주고 1백 4십동은 유저조(留貯條)로 선혜청에 떼어주고, 남은 수 1백 동과 기미년의 3백 동이 지금 해영(該營:평양감영)에 유치되어 있습니다. 병진년의 몫을 선혜청에서 청해 가져간 것은 선혜청의 쌀이 부족해서인데, 이 무명으로 서울의 쌀과 바꾸고자 했으니 본색(本色)으로 실어와 종을 대로 조치해야 했는데도, 사람을 보내 내다 판 것은 일의 체면으로 보아 매우 정당하지 못했습니다. 이미 지난 일이라 이제와 바로잡을 수는 없다 하더라도 후일의 폐단은 의당 신칙하고 단속해야 하므로 비지(批旨)에 의해 특별히 더 엄중 신칙하겠습니다. 대체로 무명을 택해 두는 일에 있어서 묘당의 본의는 다만 유고목(留庫木) 중 오래된 것은 쓰고 새것을 저축하

고자 하여 조금 더 택해 두므로 병진년에는 그대로 거행하였습니다. 무오년에는 선혜청에 지급한 무명 값으로 상진청의 곡물을 내다 팔아 원래 수효 외의 기부목(記付木)으로 사들었는데, 본사(本司) 역시 허락하였고, 기미년에는 또 돈을 주고 무명으로 바꾸기 위해 이런 사유를 모두 본사에 보고하고 나서 값을 구획해달라고 청하였으므로 지난번에 제사(題辭)로 논하여 물려 보냈습니다. 무오년에 상진청의 곡물을 팔도록 허락한 일은 이미 당초 통지한 뜻과는 심한 차이가 있어 신등이 황송함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만, 해영(該營)의 사체로 말하더라도 3천동이 다 되는 기부목이 필시 다 썩고 상했을 리 없고, 더구나 경비로 사용하는 외에도 매년 더 들어오는 것 또한 백여 동을 밀돌지 않으니 편할 대로 추이(推移)하여 약간 택해 두는 것은 당초 어렵지 않은 일이며, 수많은 저축을 모두 무용지물로 놓고 다시 수만 금을 허비하여 정한 액수 이외의 수요라고 별도로 칭하여 군민(軍民)이 폐해를 받게 한다면 매우 온당치 않습니다. 작년의 몫을 해영(該營)에 도로 소속시키는 일이 불가하지 않다 하더라도 이미 회부한 돈으로 대신 지급해 바꾸어 두었으니 이 무명을 다시 사용 경비에 들이는 것은 부당하므로 우선 예전대로 유지해 두게 하고, 기부목 3백 동을 떼어주어 회부한 돈으로 추이(推移)한 수를 충당하게 하며, 이밖에 유고목(留庫木) 역시 유명무실하도록 맡겨 둘 수 없으니 역시 사정을 참작하여 별도로 준비하는 것은 기필코 규칙대로 취하고, 새로 받는 것은 정당하게 바꾸어 들어 1년, 2년 차례대로 바로잡아 교졸(校卒)은 원망하지 않게 하고 창고의 저축은 점차 가득 차게 하라고 모두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답하였다.

司啓曰，卽見行大護軍韓用龜所啓，則以爲 箕營別置木，年來自籌司，以每等別備條，或當年新捧條，限三四百同擇置之意關飭，而所謂留木，麤劣 腐傷，不堪需用，每以新捧，爲支放之資，故以某樣會 付錢，給代換置，不無當納者呼冤之弊，且以丁巳條 言之，既已擇置之後，自惠廳送人發賣，又復轉販關 北，有若遷貨射利者然，誠極慨惋．再昨年則以本色 輸納惠廳，而數十餘同，又爲見退，許多弊端，終歸少民，本營留木，不必每年換置，漸次釐正，昨年捧置條，還報本營，依例支放事，下詢廟堂，處之爲辭，而 批旨內，廟堂豈有不稟，而使之別置之理乎，既別置，又何以發賣乎，其委折問于廟堂，仍以後勿若是之 意，嚴飭該道，而亦令廟堂，指一草記可也事，命下矣．該營留庫木，素稱外度支不虞之需，而近來典守 之法，漸不如古，舊儲則徒擁虛簿，新捧則無難換作，種種奸弊，有駭聽聞，而京司需用，每多緊急，臨時區 劃，易致狼狽，故丙辰·戊午·己未，自本司或措辭行會，或筵稟申飭，使之限三四百同，別爲擇置，而丙辰 四百同中一百五十同劃給，**華城**二百五十同，自惠 廳請得，而以該道所在常賑穀八千三百餘石，準折 給價，戊午三百同中六十同，以中甸木劃給訓局，一 百四十同，以留貯條劃給惠廳，餘數一百同及己未 三百同，今方留在該營矣．丙辰條之自惠廳請得，蓋 因本廳米條之苟簡，欲以此木，換作京米，則所當以 本色輸來，從長措置，而乃有此送人發賣之舉，事面 殊欠正當，既往雖難追理，後弊政宜申禁，謹依批 旨，另加嚴飭，蓋此擇置木事，廟堂本意，只欲就留庫 中，用舊蓄新，稍加擇置，故丙辰則依此舉行，戊午則 乃以惠廳所給木價，常賑穀發賣，貿入於記付元數 之外，而本司亦爲許施，及至己未，又爲給錢換木，而以此由，枚報本司，仍請區劃價錢，故頃以論題退送 矣．戊午常賑穀之許賣，已與當初行會之意，有所徑 庭，臣等不勝惶悚，而雖以該營事體言之，近三千同 記付，必無盡爲腐傷之理，況支放外每年加入，又不 下百餘同，方便推移，若干擇置，初非難事，乃以許多積貯，都屬無用之物，更費累萬錢貨，別稱額外之需，而至使軍民受弊者，殊甚未穩．昨年條還屬該營，雖 無不可，既以會付錢，給代換置，則此木不當更入於 支放，姑令依前留置，以記付木三百同劃給，俾充會 付錢推移之數，此外留庫木，亦不可一任其有名無實，亦爲參量事情，別備則必取準式，新捧則隨宜換入，一年二年，次第釐正，使

校卒無怨庫貯漸實之意，一體分付何如．答曰，允．

<비변사등록 191책, 정조 24년 1800년 05월25일(음)>

경제/재정

壯勇營 提調 尹行恉이 湖南의 別備錢 3만냥을 均役廳이 가져다 쓰는 문제를 논의하다

○ 같은 날 입시하였을 때에 장용영제조 윤행임(尹行恉)이 아뢰기를, “화성(華城)의 성역(城役)에 드는 물력은 균역청의 돈으로 기한을 정해 보상(補償)하는데, 그 수가 많은데다 헛수가 조금 오래 되어 균역청의 형세가 실로 걱정스러우므로 호남(湖南)의 별비전(別備錢) 3만 냥을 균역청에서 가져다 써서 그 수를 충당하게 하고 그 대신을 장용영에 넘겨주어 장용영의 비용을 보충하는 것이 좋을 듯하여 감히 아뢰니다.” 하니, 임금의 대답이 그리하라 하였다. 同日入侍時，壯勇營提調尹行恉所啓，華城城役 物力，以均廳錢，限年補償者，厥數夥然，而年條稍遠，均廳 事勢誠可悶，湖南別備錢三萬兩，自均廳取用，以充其數，其 代則付之壯營，以補營費似好，故敢此仰達矣．上曰，依爲之．

<비변사등록 191책, 정조 24년 1800년 09월25일(음)>

경제/재정

出站 마을의 민폐, 소금에 절인 송어, 平壤 外城의 犯耕 등에 대한 방안을 보고하다

비변사에서 아뢰기를, “평안도암행어사 오한원(吳翰源)의 서계 별단(書啓別單)에 대해 초기(草記)로 회계(回啓)하라고 명하셔서 별단을 가져다 보니, 하나는, 각 고을에서 출참(出站: 접대를 위해 역참에 나감)하는 마을은 본래부터 통호(洞戶)의 요역을 영원히 탈로 인정해 주고, 관속의 음식 접대를 담당하게 하였기 때문에 칙사의 행차가 드물면 백성에게는 편했으나 사신이 계속 이어지면 해가 됨이 없지 않고, 혹 관속이 유별나게 소란을 일으켜 민간에 폐해를 주는 경우가 없지 않다는 것입니다. 민역(民役)의 심함과 험거움은 오로지 사신의 빈도로부터 말미암으므로 이는 일의 형세에 따라 면할 수 없지만, 관속이 소란을 일으켜 폐해를 주는 것은 도신과 수령이 유념하여 경계하고 신칙해서 평소에 더욱 단속하면 어찌 이렇게 되겠습니까? 지금 양서(兩西)에 사성(使星)이 혼잡하여 더욱 백성과 고을이 받는 폐해를 염려해야 하니 도신에게 분부하되, 이와 같이 신칙한 뒤에도 민간에 폐해를 주는 근심이 있으면 위로는 도신부터 책임을 면하기 어려우니 다시 더 엄중 신칙하여야 하겠습니다. 하나는, 각 고을의 정례(定例) 가운데 송어는 큰 것의 값이 1냥이고 중간과 적은 것은 8전과 6전으로서, 본래의 값을 시가와 비교하면 두 배에서 다섯 배만 되는 것이 아니니, 앞으로 칙사를 접대할 때 여름철이어서 부패하고 상한 것이 많거나 또 잔치가 있는데 물품이 희귀하면, 각 고을에서 다과와 식사를 받들 때 모두 절인 송어로 대신 쓰도록 묘당에서 미리 관문으로 신칙하자는 문제입니다. 칙사를 접대하는 각종 물품은 때가 되어 급하게 되면 값이 뛰는데, 이는 바로 3도의 공통된 근심으로, 송어 한 종류만 그런 것이 아니라서 이미 을묘년에 묘당에서 전해오던 정례를 따라 식사 대접에 드는 물품과 바닥에 까는 기구는 그때 생산되는 토산품이 아니라면 모두 편할 대로 대용하라고 통지한 바 있고, 작년과 올봄 두 번의 칙사 행차 때 역시 모두 이에 따라 사용하였으므로, 지금 이렇게 어사가 계에서 논한 곡절을 알 수 없으나, 다시 더욱 3도의 도신에게 신칙하여 잘못된 예를 고수하지만 말고 모두 새로 반포한 정식에 따라 여러 고을에서 구하기 어려운 폐단을 없애게 하여야 하겠습니다. 하나는, 생선·과일·청밀 등은 혹 시민(市民) 중에서 감관(監官) 명색을 차출하는 경우도 있고 혹 각 상점에서 돌아가며 사다 바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전해오는 잘못된 예

이고, 본래의 값이 매년 부족할까 걱정인데다, 관예(官隸)는 물건을 점검하여 퇴짜를 놓고 심하게 요구하니, 피해서 도망가 뿔뿔이 흩어지는 지경에 이르렀는데, 8월에 신칙하는 하교를 내리신 뒤 잘못을 답습하는 몇몇 고을을 이미 원래의 장계 중에 자세히 논하여 칙사가 돌아갈 때는 모두 칙고(勅庫)의 감색(監色)을 시켜 사서 쓰게 하였습니다만, 앞으로 단연코 그렇지 않으리라고 보장하기 어려우므로 별도로 관문으로 신칙하여 모두 금지하자는 문제입니다. 생선·과일·청밀을 혹 시민 감관에게 사서 바치게 하는 일은 비록 강매한 흔적이 없다 하더라도 강매나 다름없고, 부감(富監)이라는 이름을 붙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감입니다. 전후로 조정에서 신칙을 내렸는데도 아직도 잘못을 답습하는 것은 기강으로 보아 실로 극히 놀라우니 법을 어긴 수령은 어사의 서계에 이미 자세히 논하였으므로 다시 처벌을 청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나중에 이와 같은 폐습이 다시 조정에 보고되면 신칙하지 않은 도신은 어찌 중한 처벌을 면하겠습니까? 먼저 이런 뜻으로 엄중 신칙하여야 하겠습니다. 하나는, 각 고을에 누락된 호(戶)가 너무 많은데 청북(淸北)이 심하니 일일이 적발하여 사실대로 호적에 첨가하되, 다시 혹 여전하면 도신과 수령을 중하게 논하여 처리하자는 문제입니다. 호를 누락시키는 데 관한 율은 법전에 실려 있는 바가 본래부터 지엄하여 식년(式年)이 되면 한성부에서 사목(事目)을 분명히 밝히는데, 지금 이와 같이 누락된 호가 너무 많다고 하는 말은 실로 극히 놀랍습니다. 마침 내년에 호적을 수정하도록 되어 있으니 만약 1호 1구(口)라도 허위로 기록하고 누락하는 폐단이 있으면 법에 의해 일을 처리하여 단연코 너그럽게 용서해서는 안 된다고 사목에 첨가해 넣어 당해 도에 알리라고 한성부에 분부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는, 평양부(平壤府)에 있는 화성(華城) 향군의 접제미(接濟米)가 2천 5백 섬으로, 이미 경술년부터 비국에 계하(啓下)한 관문으로 인해 영문(營門) 별향고전(別餉庫)의 돈 3만 냥을 각 고을에 뿌려주어 1섬당 3냥의 값으로 쌀 1만 섬을 사는데, 평양에 떼어 준 돈은 7천 5백 냥으로, 성내 민호(民戶)에게 나누어 주어 가을에 쌀로 만들도록 하였지만, 받은 민호들이 영읍에 호소하여 돈으로 납부하도록 허락하였고, 모조(耗條)는 쌀을 받아 돈으로 만들어 상납한 지 이미 10년이 되었는데, 경사(京司)는 이익이 없고 향민은 폐해를 받으니 전후로 고의로 죄를 범한 도신과 수령을 경계하고 책망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전환(錢還)을 금지한 법의 취지가 어떠한데 잘못을 그대로 답습하여 10년이나 되었다니 사체로 보아 전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기왕에 보고가 올라온 뒤이니 전후의 도신을 처벌하도록 청해야 하지만, 이제 와서 추구할 필요는 없으므로 지금의 도신을 우선 중중추고(從重推考)하고 당해 수령은 현고전지(現告傳旨)를 봉입(捧入)한 뒤 해부(該府:의금부)에서 잡아다 처리하게 하여야 하겠습니다. 하나는, 병영 각 창고의 환자[還上]를 받아들일 때 감색(監色) 무리가 색락(色落)을 지나치게 받는 일이 끝이 없고, 멀리 떨어진 면의 환자를 받은 백성은 수납할 무렵에 노고와 비용이 매우 많이 들며, 1섬의 쌀에 1냥의 정채(情債:뇌물)를 받고서 그대로 번질[反作:허위문서를 꾸밈]을 하고서 이듬해 가을에 또다시 돈을 받고 그대로 번질을 하여 5년, 10년이 지나고 나면 영원히 허류(虛留:장부만 있고 실체는 없음)하여 환곡이라는 이름만 있게 되는데, 이와 같은 불법을 그대로 둘 수 없으니 묘당에서 도신과 수신(帥臣)을 엄중 신칙하여 지금부터 더욱더 금단하게 하되, 다시 혹 법을 어기면 당해 수신은 장문(狀聞)하여 엄중히 처벌하자는 일입니다. 번질과 허류 모두 커다란 불법에 관계되지만, 더구나 1섬을 와환(臥還:이자만 받음)하면서 의례히 1냥을 받는다는 말은 더욱 놀랍고 해괴합니다. 이미 드러난 뒤이니 지난 일이라 하여 그냥 두고 따지지 않을 수 없으니 전후로 죄를 범한 수신을 중하게 처벌하여야 하겠으나, 영읍(營邑)에 폐해가 있을까 염려하여 도신을 이미 가볍게 처벌하였으니 수신 역시 이 예를 사용하여야 하므로 전후의

수신을 모두 우선 중중추고(從重推考)하여야 하겠습니까. 하나는, 의주부(義州府)에서 칙사와 사신 행차를 접대하는 등의 일과, 삼강(三江)의 파수, 각 참(站)의 사역은 모두 군병으로 거행합니다만, 작년 겨울부터 보군고(補軍庫)를 창설하여 방역(防役)의 품삯을 1명당 6 말로 하여 봄가을로 나누어 받아 돈으로 만들어 한정(閑丁)을 고립(雇立)하고, 원래 인원인 군병의 총수는 영원히 역(役)에 응하지 않도록 되어 있어, 이미 단속하는 방향을 잃은 데다 또한 통제하는 법도가 아니므로 부유한 백성은 혹 편하다고 여기지만 가난한 백성은 대부분 원치 않고, 또 쌀을 바치면 감색(監色)이 농간을 부리며 멋대로 받으므로 앞으로 필시 폐해가 되어 이른다고는 말하기 어려우나 혁신하여 예전대로 두는 것만 못하다는 것입니다. 신역을 혁파하고 쌀을 징수해 한정을 고용하는 것은 본래 경법(經法)이 아닙니다. 더구나 통제의 소홀과 두곡(斗斛)의 지나침은 반드시 있게 될 형세입니다. 부유한 백성은 편하다고 하고 가난한 백성은 원하지 않음으로 보아 거기에 다소의 폐단이 있다는 점을 알 만하니 다시 도신에게 편리 여부를 자세히 탐문하여 사리를 따져서 장문(狀聞)하게 한 뒤 품처하여야 하겠습니까. 하나는, 청천강(淸川江)의 물길이 근래 대부분 무너지고 터져 안주(安州) 등 여러 고을의 강변 전답이 폐기된 곳이 많지만, 하나도 탈로 인정받지 못하여 흑 이생(泥生)을 다시 개간하더라도 모두 아전의 호주머니로 돌아가 백징(白徵)의 폐단이 갈수록 더해져 농민을 전혀 보호할 수 없으니 도신이 조사해 내어 탈로 인정해 주게 하되, 탈로 인정해 줄 때 중간의 농간 역시 엄중 신척하자는 문제입니다. 이쪽 주변이 포락(浦落: 냇물에 휩쓸려 무너짐)이면 저쪽 주변은 이생(泥生)임은 바로 필연의 형세입니다만, 지금 포락을 탈로 인정해 주지 않아 이생이 다만 아전의 호주머니로 돌아가는 것은 법의 취지로 보아 너무나 해괴하니, 도신을 엄중 신척하여 일일이 조사하고 바로잡아 백성은 백징을 원망하지 않게 하고 아전은 농간을 부리는 폐단이 없도록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는, 평양(平壤) 외성(外城)의 정전(井田) 기지가 완연하여 눈으로 볼 수 있는데도, 근래 수령이 살피고 신척함을 엄중하게 하지 않아 시골 백성의 어리석고 완고함이 더욱 심해져 사방의 경계표를 절반이나 들어 개간하였으니 신척하지 않은 수령을 법으로 논하여 처벌하자는 문제입니다. 정전의 구역(區洫: 구역 표시를 위한 도랑)을 침범해 경작할 경우 저수지를 함부로 경작한 율로 논한다고 법전에 흔히 실려 있는데, 지금 간악한 백성이 함부로 경작하여 수천 년 전 선성(先聖)의 유적이 장차 물에 휩쓸려 없어지도록 만들었으니 일의 놀라움이 무엇이 이보다 심하겠습니까? 우선 도신을 엄중 신척하여 법을 어긴 간악한 백성을 일일이 적발하여 법에 의해 처벌한 뒤, 침범해 경작한 정전은 모두 사방의 경계표에 의해 경계를 분명히 바로잡고 도랑을 넓혀 수리하게 하며, 전후로 신척하지 않은 수령 역시 현고전지(現告傳旨)를 봉입(捧入)하고 나처(拿處)한 뒤, 여전히 함부로 경작하는 폐단이 있으면 당해 수령은 배로 더하는 율을 시행한다고 거듭 분명히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희한다고 답하였다.

司啓曰, 平安道暗行御史吳翰源書啓別單, 有草記回啓之命矣, 取見其別單, 則其一, 各邑 出站之里, 自前洞戶徭役, 永爲頗給, 而官屬支供, 使之辦當, 故罕有勅行, 則於民爲便, 使价連絡, 則不無 爲害, 或有官屬之別般作挈, 貽弊村間事也. 民役之 劇歇, 專由使客之疎數, 雖是事勢之所不免, 而至於 官屬之作挈貽弊者, 道臣邑倅, 苟能惕念警飭, 常加 操束, 則豈有是也, 見今兩西使星旁午, 民邑受弊, 尤 宜軫念, 分付道臣, 如是申飭之後, 若有貽弊民間之 患, 則上自道臣, 難免其責, 更加嚴飭. 其一, 各邑定例 中, 秀魚之大者, 價爲一兩, 中小則爲八錢六錢, 以其 本價, 較其時價, 不啻倍蓰, 此後支勅時, 若值夏節而 腐傷過多, 且有宴享而物種稀貴, 則各邑茶啖飯捧, 皆以鹽秀魚代用, 而自廟堂預爲關飭事也. 支勅各 種之臨急踊貴, 卽是三道通患, 而不獨秀魚一種之 爲然, 故已於乙卯年間, 自廟堂就流來定例, 凡於飯 供之需, 舖陳

之具，除非時產土種者，竝許從便代用之意，有所行會，昨年今春兩勅行時，亦皆遵用，則今此繡啓所論，未知其委折，更加申飭于三道道臣，無徒膠守謬例，一遵新頒定式，俾除列邑難質之弊。其一，魚果・清蜜等屬，或有市民中差出監官名色者，或有各塵之輪回質納者，自是流來謬例，而本價每患不足，官隸點退誅求，至有逃避渙散之境，八月飭教之後，因循襲謬之數邑，已有論列於原啓中，而至於回勅時，則皆使勅庫監色質用，而此後難保其必無，別爲關飭，一切禁斷事也。魚果清蜜之或令市民，監官質納者，雖無勒買之跡，而無異勒買，雖無富監之名，而便是富監，前後朝飭之下，尙今襲謬者，揆以紀綱，誠極駭然，犯科守令繡啓，既有論列，雖不更爲請勘，後若以此等弊習，更爲及聞於朝家，則不飭之道臣，焉道重勘，先以此意嚴飭，其一，各邑漏戶太多，而清北爲甚，一一摘發，從實添籍，而更或如前，則道臣・守令，從重論勘事也。漏戶之律，法典所載，本自至嚴，及當式年，京兆事日，尤爲申明，則今此漏戶太多之說，誠極駭然，見今修籍，適在明年，若有一戶一口冒錄漏落之弊，則依法從事，斷不饒貸事，添入事目，知委該道之意，分付京兆，其一，平壤府所 在華城鄉軍接濟米二千五百石，已自庚戌，因備局啓下關文，以營門別餉庫錢三萬兩，散給各邑，以每石三兩價，質米一萬石，而平壤所割錢則爲七千五百兩，分給城內民戶，以爲待秋作米之地矣，所受民戶，分訴營邑，許以錢納，而耗條則捧米作錢上納，已爲十年之久，京司則既無所益，鄉民則潛受其弊，其前後故犯之道臣・守令，不可無警責事也。錢還之禁，法意何如，則因循襲謬，至於十年之久者，事體所在，萬不成說，既已登聞之後，前後道臣，所當請勘，而到今不必追究，時道臣姑先從重推考，當該守令捧現告，令該府拿處。其一，兵營各庫還上，當其捧糴之時，監色輩色落濫捧，罔有紀極，遠面還民輸納之際，勞費甚多，一石米例捧一兩情錢，仍爲反作，明秋又爲捧錢仍反，五年十年，永爲虛留，名曰還穀，如此不法之事，不可仍置，令廟堂嚴飭道帥臣，從今以往，別加禁斷，更或犯科，該帥臣狀聞重勘事也。反作虛留，俱係不法之大者，而況一石臥還，例捧一兩之說，尤極驚駭，既已現發之後，不可以事屬既往，置而不論，前後犯科之帥臣，固當重勘，而爲念營邑之有弊，道臣既從輕勘，則帥臣亦宜用此例，前後帥臣，竝姑先從重推考。其一，灣府之支勅使行等節，三江把守與各站使役，皆以軍兵舉行，而自去年冬，創設補軍庫，稱以防役雇價，每名六斗米，春秋分捧作錢，雇立閑丁，元額軍摠，永不應役，既失檢束之方，又無節制之法，富民則或以爲便，貧民則舉皆不願，且納米則監色作奸濫捧，前頭爲弊，必至難言，不如革新仍舊事也。罷身役而徵米雇丁，本非經法，而況節制之疎虞，斗斛之濫觴，乃是必至之勢，富民則稱便，貧民則不願，可知其多少弊端，更令道臣，詳探便否，論理狀聞後稟處。其一，清川江水道，近多潰決，安州等諸邑沿江，田土陳廢者多，一未蒙頃，雖或有泥生還起，皆歸吏橐白徵之弊，愈往愈甚，農民莫保，令道臣查出頃給，而頃給之際，中間奸弄，亦爲嚴飭事也。此邊浦落，彼邊泥生，即是理勢之所必然，而今乃浦落則未嘗許頃，泥生則徒歸吏橐者，揆以法意，萬萬駭然，嚴飭道臣，一一查正，俾民無白徵之冤，吏無售奸之弊。其一，平壤外城井田基址，宛然可觀，而近來守令之察飭不嚴，村民之愚頑滋甚，四標半入耕墾，不飭之守令，法當論勘事也。井田區洫犯耕者，以堤堰冒耕律論，昭載法典，而今因奸民之冒耕，致使幾千年先聖遺跡，將至湮廢，事之可駭，孰甚於此，爲先嚴飭道臣，所犯奸民，一一摘發，依法勘處後，犯耕井田，一依四標，明定其經界，增修其溝洫，前後不飭之守令，亦爲捧現告拿處後，若有如前冒耕之弊，則當該守令，施以加倍之律事，申明分付何如。答曰，允。

<비변사등록 191책, 순조 즉위년 1800년 12월22일(음)>

경제/재정

장용영제조가 水原 등에 독을 쌓는 水桶木을 마련하는 일에 관해 보고하다

3월 3일 권강(勸講)에 입시하였을 때에 장용영제조(壯勇營提調) 윤행임(尹行恁)이 아뢰기를, “본영의 둔토(屯土)로서 수원(水原)과 진위에 있는 것을 이제 독을 막아 쌓으려고 하는데, 수통목(水筒木)을 얻어 쓸 수 없다고 합니다. 충청수영(忠淸水營)의 바람에 쓰러진 소나무를 열 그루에 한하여 허급하도록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임금의 그리하라고 하였다.

今三月初三日勸講入侍時，壯勇營提調尹行恁所啓，本營屯土之在水原振威者，今方築垆，而水筒木無以得用云，忠淸水營風落松限十株許給事，分付何如，上曰，依爲之。

<비변사등록 192책, 순조 1년 1801년 03월 03일(음)>

경제/재정

비변사에서 水原留守 이만수가 加分을 狀請대로 하기를 청하다

비변사에서 아뢰기를, “수원유수 이만수(李晩秀)의 장계를 보니, ‘농삿일이 갈수록 바쁜 데 종자와 식량을 구하기가 어려우니, 정리소(整理所) 추각곡(秋各穀)의 유고(留庫) 중에서 벼[租] 1천 석, 콩[太] 1천 5백 석과 다섯 고을 향조(餉租)의 유고 중에서 4천 6백 59석을 특별히 가분(加分)을 허락하도록 묘당에서 품지하여 분부하게 하소서.’ 하였습니다. 본부의 가분은 마치 연례가 되다시피 하였는데 청한 숫자가 마치 많지 않으니, 다섯 고을의 가분과 함께 허락하여 때에 미쳐 균등하게 나눠주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답하였다.

司啓曰，卽見水原留守李晩秀狀啓，則以爲農務轉殷，種糧苟艱，整理秋各穀留庫中租一千石・太一千五百石及五邑餉租留庫中四千六百五十九石，特許加分事，請令廟堂稟旨分付矣，本府加分，便成年例，所請之數，亦不過多，與五邑加分，竝爲許施，使之及時均糶何如，答曰，允。

<비변사등록 192책, 순조 1년 1801년 04월 14일(음)>

경제/재정

비변사가 秋操를 취품하다

비변사에서 아뢰기를, “지금 총융사(摠戎使) 김조순(金祖淳)·수원유수(水原留守) 서정수(徐鼎修)·광주유수(廣州留守) 서매수(徐邁修)·강화유수(江華留守) 한만유(韓晩裕)·경기수사(京畿水使) 유문식(柳文植)·영종방어사(永宗防禦使) 김수기(金守基)·평안감사 김면주(金勉柱)·병사 윤득규(尹得逵)·황해병사 안숙(安櫺)·강원감사 이노춘(李魯春)·통제사(統制使) 이인수(李仁秀)·경상좌병사 이철운(李喆運)·우병사 민광승(閔光昇)·충청병사 김익빈(金益彬)·전라병사 조명즙(曹命楫)·남병사 이백연(李栢然)·북병사 박기풍(朴基豐)이 추조(秋操)를 취품(取稟)하는 장계에 이르기를, ‘이번 가을 수·륙조(水陸操)의 합조(合操), 성조(城操)·순조(巡操)·면조(面操), 순력(巡歷)·순점(巡點) 및 조련을 행하지 않은 곳의 관·진문(官鎭門)에서 취점(聚點)하도록 모두 묘당에서 품지하여 분부하게 하고, 재상(災傷)의 복심(覆審)·교생(校生)의 고강(考講)·향기사(鄉騎士)의 권별무(勸別武)·무학(武學)의 도시(都試)를 전례대로 설행하도록 하소서.’ 하였습니다. 경기와 양서는 칙사의 잦은 왕래를 진념하여 습조와 행부(行部)를 근래에 모두 융통성있게 하였으니 이번에도 달리할 수 없습니다. 금년 봄의 예에 의하여 삼도(三道) 총청(摠廳)·교동(喬桐)·영종(永宗)의 여러 조련, 순력·순점을 모두 정지하도록 하고 삼남(三南)·북관(北關)·관동(關東) 등 여러 도의 농사가 모두 구메농사[穴農]를 면치 못하고 작년 이래 연달아 국역(國役)을 맞이해 백성들의 힘이 또 퍼질 방도가 없습니다. 삼남은 금년 봄의 수조를 역시 이미 설행

하였고, 5도(道) 수·륙조의 합조, 성조·순조, 순력·순점을 아울러 정지하도록 하며, 관·진문에서 취점하는 일에 있어서는 백성들을 동요시킨다는 이름이 없으면서 군사를 실행하게 하는 실효가 있어, 전일하게 하는 것이 도리어 조련을 행할 때보다 나은 바가 있으니, 이는 전처럼 마음을 두어서 거행하도록 여러 도에 분부하고, 재상의 복심·교생의 고강·향기사·권별무·무학의 도시 역시 전례에 의하여 하도록 일체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답하였다.

司啓曰, 卽見摠戎使金祖淳·水原留守徐鼎修·廣州留守徐邁修·江華留守韓晚裕·京畿水使柳文植·永宗防禦使金守基·平安監司金勉柱·兵使尹得達·黃海兵使安櫺·江原監司李魯春·統制使李仁秀·慶尙左兵使李喆運·右兵使閔光昇·忠清兵使金益彬·全羅兵使曹命楫·南兵使李栢然·北兵使朴基豐秋操取稟狀啓, 則以爲今秋水陸操·合操·城操·巡操·面操·巡歷·巡點及未行操處, 官鎮門聚點, 竝請令廟堂稟旨分付, 災傷覆審·校生考講·鄉騎士勸別武·武學都試, 依例設行爲辭矣, 京畿·兩西則爲軫使勅之旁午, 習操行部, 近皆闊狹, 今番宜無異同, 依今春例, 與三都摠廳·喬桐·永宗諸操巡歷·巡點, 竝爲停止, 三南·北關·關東等諸道, 年事俱未免穴農, 昨年以來, 連值國役, 民力又無可紓之道, 而三南則今春水操亦已設行, 五道水陸操·合操·城操·巡操·巡歷·巡點竝停止, 至於官鎮門聚點, 無擾民之名, 而有詰戎之實, 其所專一, 反有勝於行操之時, 此則依前着意舉行之意, 分付諸道, 災傷覆審·校生考講·鄉騎士勸別武·武學都試, 亦爲依例爲之事, 一體分付何如, 答曰, 允.

<비변사등록 192책, 순조 1년 1801년 07월 19일(음)>

경제/재정

舊還 捧上이 아전의弊端만 늘리는 일을 바로잡는 방안에 대해 아뢰다

비변사에서 아뢰기를, “제도의 구환(舊還)을 받아들이지 못한 것이 49만여 석에 이릅니다. 이처럼 계속 풍년이 든 나머지 숫자대로 받아들여도 안 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것은 아전의 폐단만 늘리기 쉽고 숫자에 맞추어 받아들여지게 되면 아마도 민력(民力)에 방해됨이 있을 것입니다. 근례에 의해 근년조(近年條)부터 거슬러 올라가서, 경기(京畿) 강화(江華) 충융청(摠戎廳)의 갑인조(甲寅條:정조18, 1794), 호남·호서의 정사(丁巳:정조21, 1797)·무오조(戊午條:정조22, 1798), 통영(統營)의 무오조, 관서의 갑인·을묘(乙卯:정조19, 1795)·무오조는 수량을 전부 받아들이고, 영남의 정사조, 수원(水原)·광주(廣州)의 갑인조는 모두 절반을 받아들이면 합계가 12만 6천 6백여 석이니, 분배하여 마련하되 이에 준하여 받아들이도록 제도에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답하였다.

司啓曰, 諸道舊還未捧, 至於四十九萬餘石, 當此屢豐之餘, 準數收捧, 未爲不可, 而最久則易滋吏弊, 準捧則必妨民力, 依近例自近年條溯而上之, 京畿江華摠戎廳甲寅條, 湖南·湖西丁巳·戊午條, 統營戊午條, 關西甲寅·乙卯·戊午條, 沒數收捧, 嶺南丁巳條, 水原·廣州甲寅條, 竝折半收捧, 合十二萬六千六百餘石, 分排磨鍊, 準此收捧之意, 分付諸道何如, 答曰, 允.

<비변사등록 192책, 순조 1년 1801년 10월 02일(음)>

경제/재정

平安監司가 安州 등의 災結로 인해 劃給을 청한 狀啓에 대해 狀請대로 시행하기를 청하다

○ 10월 15일 대신과 비국당상을 인견하여 입시하였을 때에 영의정 심환지(沈煥之)가 아뢰기를, (….) 또 아뢰기를, “이는 수원유수 한용구(韓用龜)의 장계입니다. ‘본부의 대장에 들어있는 전결(田結) 가운데 5백 결을 10년을 기한으로 급복(給復:호역(戶役)을 면제함)하

였는데 그 후에 특명으로 1년을 더 주었습니다. 경술년(庚戌年:정조14, 1790)부터 경신년(庚申年:정조24, 1800)에 이르기까지 이미 11년의 기한이 찼으므로 금년에는 숫자에 준하여 세금을 내어야 합니다. 본부의 전결은 이미 조정에서 본부에 전속시켰으니, 지금 이 기한이 만료된 복호(復戶) 5백 결은 본부에서 일체 세금을 받아들이고, 현재 지용(支用)이 부족한 숫자는 달리 융통할 방법이 없으니, 이에서 대략 분배하여 소용되는 바에 보충하도록 묘당에서 품처하기를 청한다. 하였습니다. 1년을 더 준 것은 특은(特恩)에 관계되는 일로서 기한이 만료된 후에는 당연히 예에 의해 세금을 내야 하는데, 화성(華城:수원)의 전결을 이미 본부에 전속시키도록 하였으니, 지금 이 세금을 내는 5백결도 달리 할 수 없습니다. 장계에서 청한 대로 시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그리하라 하였다. (…)

今十月十五日大臣備局堂上引見入侍時, 領議政沈所啓, (…) 又所啓, 此水原留守韓用龜狀啓也, 以爲本 府帳付田結中五百結, 限十年給復, 而伊後特命 加給一年, 自庚戌至庚申, 已滿十一年之限, 今年當 爲準數出稅, 而本府田結, 既自朝家專屬本府, 則 今此限滿復戶五百結, 自本府一體奉稅, 而見今支 用不足之數, 無他拮据之道, 就此略綽分排, 以補需用事, 請令廟堂稟處矣, 一年加給, 係是特恩, 限 滿之後, 自當依例出稅, 而華城田結, 既許專屬本府, 則今此出稅之五百結, 亦不可異同, 依狀請施行何 如, 上曰, 依爲之. (…)

<비변사등록 192책, 순조 1년 1801년 10월15일(음)>

경제/재정

領議政 沈煥之가 華城府에 儲留한 公貨를 反閱하는 문제에 대해 논의하다

○ 같은 날 입시하였을 때에 영의정 심환지(沈煥之)가 아뢰기를, “화성(華城)의 공화(公貨) 저류조(公貨儲留條)는 2년 간격으로 번열(反閱)하고 어사(御史)·중사(中使)·선전관(宣傳官)은 오직 상께서 명하도록 되어 있으며, 그 연한이 되는 세수(歲首)를 당하면 본사에서 초기(草記)로 품지하도록 일찍이 정식이 있었습니다. 본부에서 공화를 저류한 후로는 금년이 처음 당한 번열하는 기한이기에 감히 이와 같이 양달합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선전관을 내려 보내라.” 하였다. (…)

同日入侍時, 領議政沈所啓, 華城公貨儲 留條, 間二年反閱, 御史·中使·宣傳官, 惟上所命, 而 當其年限歲首, 自本司草記稟旨事, 曾有定式矣, 本府公貨儲留後, 今年初當反閱之限, 故敢此仰 達矣, 上曰, 宣傳官下送. (…)

<비변사등록 193책, 순조 2년 1802년 01월20일(음)>

경제/재정

壯勇營의 錢·穀·木·布 내력 및 區處別單

장용영(壯勇營)의 전곡(錢穀) 목포(木布) 내력 및 구처 별단

미(米:쌀) 1백 42석(石) 8두(斗)

내무고(內武庫)의 갑주(甲冑) 값을 선혜청(宣惠廳)으로부터 매년 군기시(軍器寺)에 내려 주었었다가, 병오년(丙午年:정조10, 1786)에 임시로 2부(部)를 감해서 그 값을 장용영에 이송(移送)하였는데, 올해부터는 균역청(均役廳)에 이획(移劃)하여 급대(給代)하는 밀천으로 삼는다.

미 1천 석

계축년(癸丑年:정조17, 1793)에 호남선(湖南船) 저치미(儲置米)의 모조(耗條) 1천 석을 해도(該道)의 균역청 군작미(軍作米)에 첨부(添付)하고 호서(湖西)의 군작미를 이 수량대로

환록(換錄)해서 저치하고 경청 상납미(京廳上納米)로 장용영에 이송하였는데, 금년부터는 환록하지 말고 원곡(元穀)을 본아문(本衙門)에 환부(還付 : 도로 회부함) 한다.

미 48석 11두 3승(升) 2홉(合) 8작(勺)

병오년에 국출신(局出身) 30인을 감액(減額)하고 패두(牌頭) 2인까지 아울러 요전미(料田米)를 가설(加設)하였으므로 의당 호조(戶曹)에서 보내주어야 하나 선혜청의 대미(大米)로 장용영에 바꾸어 보냈는데 올해부터는 선혜청에 환속(還屬)하게 하고 전미(田米)는 선혜청에서 종전대로 호조에 환부한다.

미 3백 48석 9두 5승

정미년(丁末年 : 정조11, 1787)에 양호(兩湖)의 군작미 4천 석을 가분(加分)하여 모조(耗條)를 취해서 환록하여 저치하고 경청 상납미로 장용영에 이송하였는데 올해부터는 환록하지 말고 원곡은 본아문에 환부한다.

미 8백 71석 6두

정미년에 진휼청(賑恤廳)에서 호남의 미 1만 석을 사들여 진분(盡分)하고 모조를 취해서 환록하여 저치 하고 경청 상납미로 장용영에 이송하였는데 올해부터는 환록하지 말고 원곡은 본아문에 환부한다.

미 2천 5백 석

기유년(己酉年 : 정조13, 1789)에 진휼청에서 호남의 미 2만 5천 석을 무취(貿取)하여 진분하여 모조를 취해서 환록하여 저치하고 경청 상납미로 장용영에 이송하였는데 올해부터는 환록하지 말고 하며 원곡은 본아문에 환부한다.

미 2천 석

기유년에 삼남(三南)의 군작미 가운데 호남의 1만 석, 호서의 4천 석, 영남(嶺南)의 6천 석을 가분하여 모조를 취해서 환록하여 저치하고 경청 상납미로 장용영에 이송하였는데 올해부터는 환록하지 말고 원곡은 본아문에 환부한다.

미 81석 10두

기유년에 균역청 소관의 영남 별회록미(別會錄米) 1만 석을 가분하여 모조를 취해서 삼남의 무미(貿米) 및 군작미를 상납한 선가(船價)를 제해 주고 그 남은 수는 환록하여 저치하고 경청 상납미로 장용영에 이송하였는데 올해부터는 환록하지 말고 원곡은 본아문에 환부한다.

미 1천 6백 36석 6두

경술년(庚戌年 : 정조14, 1790)에 호서 상진곡(常賑穀)의 모조 미 1천 석 및 조(租) 절미(折米)하여 8백 석을 매년 환록하여 저치하고 경청 상납미로 장용영에 이송하였는데 올해부터는 환록하지 말고 원곡은 본아문에 환부한다.

미 1천 5백 석

계축년에 수원(水原)의 대동미(大同米) 1천 5백 석을 본부(本府)에 봉류(捧留)하였다가 다시 장용영에 이속하고 경청 상납미로 바꾸어 가져다 썼는데 올해부터는 경청미를 이송하지 말고 수원의 대동미는 그대로 해부(該府)에 소속시킨다.

미 1천 석

계축년에 균역청에서 구관하는 호조의 무미 및 본청 별검미(別檢米)의 모조 1천 석을 매년 환록하여 저치하고 경청 상납미로 장용영에 이송하였는데, 올해부터는 환록하지 말고 원곡은 모두 균역청에 소속시킨다.

미 1천 석

계축년에 오부(五部)의 이례(吏隸)를 접제(接濟)하기 위하여 호남 별회록미의 모조 1천 석을 경조(京兆：한성부)에 획급하고 장용영에서 관서(關西)의 별비전(別備錢) 3천 냥을 매년 선혜청에 이송하여 경조에 내어 주고 모미(耗米)는 환록하여 저지하고 경청 상납미로 장용영에 이송하였는데 올해부터는 모미는 군역청에서 작전(作錢)하여 경조에 내어 주고 관서의 전(錢)은 본영에 유치한다.

미 1천 석

계축년에 삼남에서 진상하는 약재(藥材)를 분수(分數)하여 권감(權減)하고 호남에서 4백 석, 영남·호서에서 각 3백 석을 그 본값으로 제해서 각 해도에 보관하고 경청 상납미로 이수대로 장용영에 이송하였는데 올해부터는 약재는 종전대로 권감하고 이송미는 군역청에 소속시켜 급대하게 한다.

미 1천 2백 7석 10두 4홉 8작

계축년에 진율청 소관의 영남곡과 양읍의 모조를 매년 바꾸어 취하고 각읍진의 포량미(砲糧米)를 조창(漕倉)에서 첨가하여 실어 상납하였는데 올해부터는 포량을 대동 신미(大同新米)로 전례에 따라 획급하고 상진곡(常賑穀)은 본아문에 환부한다.

미 2천 석

갑인년(甲寅年：정조18, 1794)에 영남의 상진태(常賑太) 2만 석을 영남청의 대동전(大同錢) 6만 냥과 바꾸어서 10년에 한하여 매년 6천 냥씩 해도에 획급하고 삼조창(三漕倉)의 응하미(應下米) 2천 석을 바꾸어 취하여 덧붙여 실어서 상납하게 하였는데 올해부터는 미는 전례대로 제해서 유치하여 조창의 수용(需用)으로 삼게 하고 선혜청의 전(錢)은 전례대로 상납하며 상진태는 본아문에 환부한다.

미 73석 2두 4승 무예청(武藝廳) 소속 군사 20명의 감액(減額) 겸요조(兼料條)

미 48석 11두 6승 무예청 우구직(雨具直) 20명의 감액 겸요조

미 48석 11두 6승 무예청 대전군(大箭軍) 20명의 감액 겸요조

미 1백 17석 8두 4홉 훈국(訓局) 겸내취(兼內吹) 30명의 감액 겸요조

미 3백 11석 9두 4승 5홉 금영(禁營) 겸내취(兼內吹) 30명의 감액 겸요조

미 1백 73석 3두 9승 4홉 5작 금군(禁軍) 1번(番) 감액 후 소속 기수(旗手) 등을 감액한 요조

미 5백 16석 10두 훈국의 겸료여조(兼料餘條) 가운데 이획조(移劃條)

미 6백 12석 12두 8승 1홉 금영 아병(牙兵) 70명의 감액 요조

미 3백 11석 13두 4승 1홉 어영(御營) 겸내취 30명의 감액 요조

이상 여러 항목은 훈국의 겸료 및 각 영문의 급대조(給代條)를 가지고 군역청에서 내려 준 것으로 각 항목의 명색을 감액한 후 모두 장용영에 이송하였었는데, 올해부터는 도로 군역청에 소속시켜서 훈국에 소속된 군병(軍兵)을 접제하는 비용으로 삼는다. 금·어영(禁御營) 겸내취의 요조 및 금영 아병의 요조는 내취와 아병이 이미 두 군영에 도로 소속되었으므로 모두 전례에 따라 내려 준다.

미 1천 6백 21석

을사년(乙巳年：정조9, 1785)에 진휼청에서 무취(貿取)한 관서의 세(稅) 가운데 소미(小米) 1만 석 및 군역청의 신회록(新會錄) 소미 1만 석을 진분하여 모조를 취해서 작전하여 군역청에 수송하고 경청에 상납하는 대미(大米)로 장용영에 이송하였었는데, 올해부터는 경청미는 그만두고 원곡은 본아문에 환부한다.

미 1백 석

임자년(壬子年：정조16, 1792)에 군역청 보완곡(補還穀)의 모조를 청하여 얻은 후 모조는 매년 군역청에서 작전하고 경청 상납미로 장용영에 이송하였는데 올해부터는 중단한다.

미 5백 20석

임인년(壬寅年：정조6, 1782)에 군역청의 돈으로 무취한 관서의 소미 2만 석을 진분하여 모조를 취해서 작은(作銀)한 것을 심도(沁都：강화도)의 내고(內庫)에 별도로 두다가, 을사년(乙巳年)에 장용영에 획부(劃付)하여 작전해서 상납하였었는데, 그 가운데 1천 8백 9냥을 덜어 내어 진흥청의 미와 태(太)를 사던 것을 올해부터는 중단하고 원곡은 군역청에 도로 소속시킨다.

미 3백 석

진흥청에서 내려 주는 각 영의 월과미(月課米) 가운데 훈련도감·금어영·어영청 각 30석, 수어청(守禦廳) 각 2백 석, 충융청 10석을 장용영에 획부하였었는데 올해부터는 각 영의 월과인 약환(藥丸)을 우선 전례대로 권감하고 미(쌀)은 진흥청에 환부하여 훈련도감에 이속된 군병을 접제하는 밀천으로 삼도록 한다. 이상 선혜청

미 2백 74석 8두 4승 국(局) 출신 30인의 감액 및 패두(牌頭) 2인을 더 설치한 요조

미 49석 13두 8승 무예청 5인의 감액 요조

미 2백 23석 10두 9승 2흡 무예청 소속군 30명의 감액 요조

미 1백 49석 2두 2승 8흡 무예청 우구직 20명의 감액 요조

미 1백 49석 2두 2승 8흡 무예청 화전군(火箭軍) 20명의 감액 요조

미 91석 7두 8승 별파진(別破陣) 11명의 감액 요조

미 75석 12두 6승 훈국 승호군(陞戶軍) 10명의 감액 요조

미 1백 78석 14두 7승 3흡 6작 훈국 겸내취 24명의 감액 요조

미 1천 10석 13두 2승 삼내금군(三內禁軍) 1번의 감액 요조

미 3백 4석 6승 6흡 6작 호위청(扈衛廳) 군교(軍校) 85명의 감액 요조

미 1백 14석 12두 2승 4흡 겸사금군(兼仕禁軍) 10과(窠)의 감액 요조

이상의 여러 조항은 각 항목 명색을 감액한 후 모두 장용영에 이송하였는데, 감액한 군병은 훈국(訓局)에서 차례로 대정(大定)하고 무예청의 액수가 전에 비해 증가하여 요조를 증첩해서 내려주는 것을 면치 못하니, 올해부터는 모두 호조에 도로 소속시키고 호위군 30명의 요조는 해조에서 전례대로 지급한다.

미 9백 석

정처(鄭妻：화완옹주를 이르는 말)의 면세(免稅)를 임시로 내수사(內需司)에 소속시켰다가, 무신년(戊申年：정조12, 1788)에 장용영에 획부하였는데, 올해부터는 호조에 도로 소속시킨다.

미 2천 5백 석

육진(六鎭)의 노비공(奴婢貢) 전미(田米) 2천 4백 94석을 내수사에 납부해야 할 것을 주창(州倉)에 납입하고 호조에서 대미(大米) 2천 4백 8석을 미(米)와 전(錢)을 참반(參半)하여 내수사에 급대하였으며, 신해년(辛亥年：정조15, 1791)부터는 급대미 가운데 2천 석을 매년 장용영에 획송하고, 임자년(壬子年)에는 또 5백 석을 더 주었는데 내수사의 급대를 전대로 수송하는 것은 증첩하여 내려 주는 것을 면치 못하고, 노비를 혁파한 후에는 주창에 받아 올린 전미가 또 탕감이 되었으니, 올해부터는 내수사는 전례대로 급대하고 장용영의 수송조는 그만 두며 주창의 전미는 별도로 급대한다.

미 8백 7석 11두

호남 삼조창(三漕倉)의 조선(漕船)은 1천 석을 싣도록 정식한 후에 그 배의 숫자를 감하여 조졸(漕卒)의 복호미(復戶米)를 매년 첨가해 실어서 호조에 상납하여 장용영에 이송하였는데 올해부터는 균역청에 소속시켜 급대하게 한다. 이상 호조

태(太) 4백 석

신해년에 균역청 소관의 호남 진상 첨가미(添價米)의 모조 2백 석을 매년 선혜청에 획부하고 경청에 상납하는 태 4백 석으로 준절(準折: 비준하여 정함)하여 장용영에 이송하였는데 올해부터는 그만두고 원곡은 본아문에 도로 소속시킨다.

태 6백 석

정사년(丁巳年: 정조21, 1797)에 영남의 상진태(常賑太) 2만 석의 3년간의 모조 6천 석으로 다시 원곡을 만들어서 진분하고 취한 모조를 조선(漕船)에 덧붙여 실어 장용영에 상납 하였는데, 올해부터는 납부를 정지하고 원곡은 본아문에 환부한다.

태 1백 66석

임인년에 관서 소미의 모조를 작전한 것 중에서 덜어내어 진흥청의 태를 사들인 것인데 <상세한 것은 미조(米條)에 나타나 있다.> 올해부터는 중단한다.

태 1천 석

임자년에 진흥청에서 구관한 삼남의 상진태 모조를 매년 이획하였으나 수송하기에 어려움이 있어 경청에서 이 숫자대로 장용영에 획송하였었는데, 올해부터는 중단하고 원곡은 본아문에 환부한다. 이상 선혜청

태 2백 42석 7두 9승 2홉 국 출신 30인의 감액 및 패두 2인을 더 설치한 요조

태 1천 2백 65석 7두 8홉 삼내금군 1번의 요(料) 및 마태조(馬太條)

태 9석 2두 2승 8홉 호위청 장막군(帳幕軍) 20명을 감액한 요조

태 1백 26석 13두 2승 겸사금군(兼仕禁軍) 10과(窠)의 감액 요조

이상 여러 조항은 각 항목의 명색을 감액한 후 모두 장용영에 이송하였었는데 올해부터는 호조에 도로 소속시킨다.

태 1천 석

신해년부터 장용영의 전 2천 냥을 매년 호조에서 바꾸어 취하였었는데 올해부터는 중단한다.

태 50석 12두

호남의 3조창의 조선을 감액한 후 조졸의 복호조를 덧붙여 실어서 상납하였었는데 올해부터는 균역청에 소속시켜 급대하게 한다. 이상 호조

목(木: 무명) 30동

정미년에 관서의 별향(別餉) 요동목(遼東木) 20동과 호남의 좌우 수영의 휴번목(休番木) 각 5동을 각 영에서 대전(代錢) 3천 냥으로 선혜청에 올려 보내고 선혜청목으로 이 숫자대로 장용영에 이송하였으며, 기미년(己未年: 정조23, 1799)에 호남의 우수영 휴번목이 다하고 남음이 없어 본도에 있는 비국의 군작미(軍作米) 모조 1천 석을 매년 해영에 획급하고 작전하여 균역청에 올려 보내서 각양목(各樣木)의 대전으로 삼았었는데, 올해부터는 선혜청목은 중단하고 비국의 군작미는 본아문에 도로 소속시키며 관서의 요동목은 올려 보내지 말게 한다.

목 40동

계축년에 관서의 별비목 80동을 얻어서 매년 대전으로 8천 냥을 상송하고 4천 냥은 선혜청에 이송하여 경청목으로 바꾸어 쓰게 하였었는데, 올해부터는 중단하고 관서의 전은 본도의

감영에 유치한다.

목 30동

정사년에 해서에 있는 균역청 별회록의 목 30동을 청하여 얻어서 경청목으로 바꾸어 썼는데 올해부터는 중단한다.

목 50동

무신년에 진휼청에서 사온 목의 잉여조(剩餘條)를 장용영에 이획하였는데 진휼청목의 저치가 모자라서 전혀 남는 바가 없으므로 올해부터는 중단한다.

목 5동 20필

병오년에 진휼청에서 새로 받은 목으로 매년 장용영에 획급하였는데 올해부터는 중단한다.

목 50동

무신년에 관서의 요군목 30동과 별향목 20동을 청하여 얻어서 매년 대전 5천 냡을 선혜청에 올려 보내고 경청의 목으로 장용영에 옮겨 보냈었는데 올해부터는 중단하고 관서의 전을 본도의 감영에 머물러 둔다.

목 10동

계축년에 호남 우수영의 휴변목 10동을 청하여 얻어서 대전을 매년 선혜청에 올려 보내고 경청 목으로 장용영에 옮겨 보냈으며, 기미년에 해영(該營)의 목을 비축한 것이 고갈됨으로 인하여 군작모(軍作耗)를 획급하여 작전해서 올려 보냈었는데 <위 항목에 자세히 보인다.> 올해부터는 중단한다. 이상 선혜청

목 10필 무예청(武藝廳) 10인의 감액 연말 상격조(賞格條)

을사년에 감액하고 장용영에 옮겨 보냈는데 올해부터는 중단한다.

목 1백 동

경술년에 관서와 영남 각 고을에서 곡식이 많아서 폐단이 된 곳은 매년 모조를 작전하여 호조에 올려 보내면 그 가운데 1만 냡을 장용영에 옮겨 보내고 장용영에서 이어 호조에 주어서 해조의 목 1백 동으로 바꾸어 썼는데, 곡식이 많은 고을은 작전한 것이 1만 냡에 차지 않아서 목을 해마다 이송하였는데, 올해부터는 중단한다.

목 40동

계축년에 관서의 별비목 80동을 청하여 얻어서 매년 대전 8천 냡을 올려 보내되 4천 냡은 호조에 옮겨 보내어서 해조의 목으로 바꾸어 썼는데 올해부터는 중단한다. 관서의 목은 본도의 감영에 머물러 둔다. 이상 호조

목 3동 2필 호위청의 군교 85인을 감액한 의자조(衣資條 : 옷값조)

목 1동 10필 겸사금군 10과(窠)의 감액 초가조(草價條 : 짚값조)

이상 두 조항은 각 항목의 명색을 감액한 후 병조에서 장용영에 이송하였는데 올해부터는 모두 균역청에 소속시켜서 훈국에 이속된 군병을 접제하는 밀천으로 삼는다. 이상 병조

목 2동 28필 국 출신의 30과(窠) 감액과 패두 2인을 더 설치한 의자·초가조

목 1동 5필 무예청의 5인 감액과 봉족(奉足)의 초가조

목 5동 20필 무예청 소속군 30명의 감액 봉족조

목 3동 30필 무예청의 우구직 20명의 감액 봉족조

목 3동 30필 무예청의 화전군 20명의 감액 봉족조

목 9동 30필 겸내취 30명의 감액 봉족조 및 행행(行幸) 습각(習角) 상격조

목 1동 40필 경기 승호군(陞戶軍) 10명을 이속시킨 봉족조

이상의 여러 조항은 각 항목 명색을 감액하거나 이속시킨 후 훈국에서 장용영에 옮겨 보냈

었는데 올해부터는 해영에 도로 소속시켜서 취고수(吹鼓手)와 아병(牙兵)을 접제하는 밀천으로 삼는다. 이상 금영(禁營)

목 8동 30필 겸내취 30명의 감액 봉족 및 행행 습각 상격조

감액한 후에 어영청에서 장용영에 이송하였는데 올해부터는 해영에 도로 소속시켜 취고수를 접제하는 밀천으로 삼는다. 이상 어영청

목 20동

정사년에 영남의 사군목(射軍木)을 장용영에 이획(移劃)하여 상납하였는데 올해부터는 10동은 그만두고 10동은 균역청에 올려 보내어 급대하게 한다. 이상 영남

포(布) 5동

정미년부터 제용감(濟用監)의 정포(正布)를 매년 장용영에 이송하였는데 올해부터는 중단한다.

포 15동

계축년부터 제용감의 정포를 매년 장용영에 이송하고 그 값어치의 전 7백 50냥을 북관의 방포(防布)의 대전으로 호조에 수송하였는데 올해부터는 중단하고 방포의 대전은 두 본궁(本宮)에 급대한다.

포 4동

무신년부터 호조의 삼포(蔘布)를 매년 장용영에 이송하였는데 올해부터는 중단한다. 이상 호조

포 5동

계축년부터 병조의 포를 장용영에 이송하고 북관의 방포 대전 2백 50냥을 병조에 수송하였는데 올해부터는 중단하고 방포의 대전은 그대로 두 본궁의 급대로 삼는다.

포 10동

계축년부터 장용영의 전 5백 냥을 매년 병조에서 무취(貿取)하였는데 올해부터는 중단한다. 이상 병조

포 20필 아병 70명을 감액한 군복조(軍服條)

감액한 후에 금위영에서 장용영에 이송하였는데, 올해부터는 해영(該營)에 도로 소속시켜서 아병을 접제하는 밀천으로 삼는다. 이상 금위영

전(錢) 3천 6백 냥

기유년에 어영청 부사(部司)의 표하군(標下軍)이 금위영에 비해 배나 많다하여 원군(元軍) 4백 50명을 줄이고 그 삼보(三保)와 함께 도합 1천 8백 명을 모두 관보(官保)에 충당하고 해영에서 보전(保錢)을 거두고 균역청의 해영 급대조를 이 숫자대로 장용영에 이송하였는데, 올해부터는 균역청에 이속시키고 이어 본청에 북관(北關)에서 상납하는 것 가운데 두 본궁에 급대하는 대신으로 삼는다.

전 1천 냥

을묘년(乙卯年 : 정조19, 1795)에 호남의 우수영 휴번목(休番木) 10동을 화성(華城)의 외정리소(外整理所)에 획급하였고, 기미년에는 해영의 목을 비축한 것이 다 없어져서 군작미의 모조로 작전하여 수송하였다가 <상세한 것은 본조(本條)에 보인다.> 외정리소를 혁파한 후에는 장용영에 이속시켰는데, 올해부터는 중단한다. 이상 선혜청

전 6백 40냥 국 출신 30인을 감액하고 패두 2인을 더 설치한 의자조(衣資條)

전 15냥 8전 4푼 훈국의 겸내취 30명을 감액한 후의 춘추(春秋) 호궤조(稿饋條)

이상 두 조항은 감액한 후에 호조에서 장용영에 이송하였는데, 올해부터는 중단한다.

전 1천 5백 냥

정처(鄭妻)의 면세를 임시로 내수사(內需司)에 소속시켰다가 무신년에 호조에서 장용영에 이송하였는데, 올해부터는 호조에 도로 소속시킨다. 이상 호조

전 8냥 4전 겸내취 30명을 감액한 군복조

감액한 후 훈국에서 장용영에 이송하였는데 올해부터는 해영에 도로 소속시켜서 최고수를 접제하는 밀천으로 삼는다. 이상 훈국

전 2백 54냥 7전 7푼 겸내취 30명을 감액한 군복 호궤조

전 44냥 2전 아병 70명을 감액한 군복 호궤조

전 1백 55냥 4전 8푼 균역청에서 급대할 때의 부비조(浮費條 : 무슨 일을 하는데 써서 없어지는 비용)

이상 세 조항은 각 항목의 명색을 감액한 후 균역청에서 금위영의 급대조로 장용영에 이송하였는데, 올해부터는 해영에 도로 소속시켜서 최고수와 아병을 접제하는 밀천으로 삼는다.

이상 금위영

전 2백 61냥 4전 7푼 겸내취 30명을 감액한 군복 호궤조

전 52냥 4전 5푼 균역청에서 급대할 때의 부비조

이상의 두 조항은 각 항목의 명색을 감액한 후 균역청에서 어영청의 급대조를 장용영에 이송하였는데, 올해부터는 해영에 도로 소속시켜 최고수를 접제하는 비용으로 삼는다. 이상 어영청

전 44냥 별과진(別破陣) 11명을 감액한 의자조

감액한 후에 군기시(軍器寺)에서 장용영에 이송하였는데, 올해부터는 균역청에 소속시켜서 급대하게 한다. 이상 군기시

전 4백 60냥 무예청(武藝廳)의 5인을 감액한 의자조

전 2천 4백 28냥 삼내금군(三內禁軍) 1번을 감액한 초가(草價) 군물(軍物) 물력조(物力條)

이상 두 조항은 각 항목의 명색을 감액한 후에 병조에서 장용영에 이송하였는데, 올해부터는 균역청에 이송하고 급대하게 한다. 이상 병조

전 1천 4백 냥

경술년에 가평(加平)에서 곡식을 사고 남은 돈과 호조에서 조(租 : 벼)를 사고 남은 돈 1만 3천 냥과 기영(畿營)에서 조를 산 1만 석을 진분(盡分)하여 모조를 취해서 매년 절미(折米) 4백석을 매 석당 3냥 5전씩 작전하여 상납하였는데, 올해부터는 원곡을 균역청에 이속시킨다.

전 4백 냥 4전

수어청(守禦廳)에서 출진(出鎭)한 후 서울의 표하군과 아병을 감액하고 그 기읍(畿邑) 보군의 신전(身錢)으로 용인(龍仁)·안산(安山)에 더 설치한 향군(鄉軍)에게 급대하였으며 나머지 수량 4백 냥 4전은 기영에서 장용영에 상납하였는데, 올해부터는 균역청에 이납(移納)하여 급대하게 한다. 이상 경기

전 1천 1백 냥

신해년에 황해 병영에 비축한 소미(小米) 6천 석을 이획하고 진분하여 모조를 취해서 작전하여 장용영에 상납하였는데, 올해부터는 원곡을 균역청에 이속시킨다.

전 4천 4백 62냥 5전

갑인년에 장용영의 전으로 사서 총융청에 둔 것과 해서의 소미 1만 2천 7백 50석을 청해 얻어 진분해서 모조를 취하여 작전해서 장용영에 상납하였는데, 올해부터는 원곡을 균역청에

이속시킨다.

전 3천 5백 냥

신해년에 주교사(舟橋司) 소관의 영남 별회록(別會錄) 모미(耗米) 2천 석을 장용영에 이속하였으나 별회록의 원곡이 부족하였기 때문에 단지 1만 석만 주고서 별균미(別均米) 1만 석과 합하여 원곡 2만 석을 만들어 진분해서 모조를 취하다가 병진년에 해도 <경상도>에서 작전하는 것이 폐단이 있음으로 인하여 1만 석은 해서 준천사(漣川司)의 대미(大米) 1천 3백 42석 영, 소미(小米) 6천 3백 89석 영, 상평창(常平倉)의 소미 2천 2백 68석 영을 서로 바꾸어 모조를 취해서 작전하여 장용영에 상납하였는데, 올해부터는 원곡을 균역청에 이속시킨다.

전 3천 45냥

정사년에 청해서 얻은 호서의 첨환(添還) 2천 2백 석, 균역청에서 산 쌀 3천 82석, 또 장용영의 돈으로 사들인 곡산(谷山)의 이전미(移轉米) 3천 4백 18석, 도합 8천 7백 석을 모두 해서의 수영곡(水營穀)·상평곡(常平穀)으로 연해(沿海)에 있는 것과 서로 바꾸어서 진분하고 모조를 취해서 작전하여 장용영에 상납하였는데, 올해부터는 원곡을 균역청에 이속시킨다.

전 1천 50냥

정미년에 양남(兩南) 양서(兩西)의 군향(軍餉) 모조 각 3백 석을 이획하여 한 해 걸러 작전하였다가, 병진년(丙辰年: 정조20, 1796)에 영남에서 작전하는 것에 폐단이 있었기 때문에 해서의 관향(管餉) 소미 3천 석을 원곡으로 만들어서 진분하여 모조를 취하고 매년 작전하여 장용영에 상납하였는데, 올해부터는 원곡을 균역청에 이속시킨다. 이상 해서(海西)

전 4천 1백 91냥

을사년에 균역청 소관의 심도(沁都) 작은(作銀) 소미 2만 석을 장용영에 획급하고 진분하여 모조를 취해서 작전한 1천 8백 9냥으로 진흥청의 미·태를 사서 취하고 <상세한 것은 미태조(米太條)에 보인다.> 남은 돈은 장용영에 상납하였는데, 올해부터는 원곡은 균역청에 이속시킨다.

전 3만 1천 2백 12냥 8푼

무신년부터 장용영에서 사들인 호남의 미 7만 4천 40석을 진분하여 취모하고 또 선혜청선(宣惠廳船)의 저치미 모조 2천 석과 보완미(補還米)의 모조 1천 석을 청해서 얻어 매년 작전하다가 임자년에 호남에서 작전하는 것에 폐단이 있어 상향(上項)의 무취미와 선저치미·보환미의 모조를 균역청에 이부(移府)하고 균역청 소관의 관서 회록 소미와 준천사의 소미 5만 1천 4백 42석과 면세결(免稅結)에서 매년 받아들이는 소미 3천 6백 95석과 관동 삼계(蔘契)의 소미 1천 5백 65석의 연례로 작전하는 것을 장용영에 획급하고 작전하여 상납하였는데, 올해부터는 모두 본아문에 도로 소속시킨다.

전 2천 1백 냥

임자년에 평안 병영 소관의 갈마창(渴馬倉) 회외(會外)의 대미 7천 석을 장용영에 이부하여 진분해서 모조를 취하고 작전하여 상납하고 병영 소용의 2분모(二分耗)를 해영 각 창고의 기부전(記簿錢) 3만 냥으로 나누어서 빌려 주고 이자를 받아서 매년 급대하였는데, 올해부터 원곡을 해병영에 환속시키고 나누어서 빌려 준 기부전은 즉시 받아들여서 종전대로 회록한다.

전 1천 2백 77냥 2전

계축년에 장용영의 돈으로 기영(箕營)에서 산 소미 4천 2백 57석 영을 사들여 진분해서 모

조를 취하여 작전해서 상납하였는데, 올해부터는 원곡을 균역청에 이속시킨다.

전 1만 2천 냥

신해년에 균역청 소관의 영남 별회록미 1만 석을 장용영에 획급하고 임자년에 또 영남에 있는 통영(統營) 및 좌병영의 별향미 각 1만 5천 석을 청해 얻어 모조를 취해서 작전하였다가 병진년에 영남의 운수(運輸)에 폐단이 있었기 때문에 관서에 있는 균역청의 보민사(保民司) 소미 2만 석과 서로 바꾸어 진분해서 모조를 취하여 작전해서 상납하였는데, 올해부터는 원곡을 모두 균역청에 이속시키고 통영의 별향미와 관리영의 소미는 도로 바꾸고 통영곡은 도로 통영에 소속시킨다.

전 8천 2백 8냥 2전 4푼

계축년에 관서에 있는 진흥청의 별회록 소미 가운데 각 연도의 정퇴조(停退條) 2만 7천 3백 60석을 장용영에 이속시키고 그 해에 받아들인 것을 그대로 원곡으로 만들어서 진분하여 모조를 취해서 작전하여 상납하였으나 그 가운데 2천 1백 냥은 화성의 외탕고(外帑庫)에 이송하였는데, 올해부터는 원곡은 균역청에 이속시키고 외탕고 수송조(輸送條)는 품지(稟旨)하여 거행한다.

전 3천 냥

을묘년에 균역청에서 청하여 얻은 상진청 소관의 호서 경리곡(經理穀) 절미 4천 5백 59석 영을 병진년에 장용영에 이속시켰다가 신유년(辛酉年 : 순조1, 1801)에 충용청에 도로 소속시키고 그 대신에 관서의 상진 소미의 모조 1천 석을 매년 작전해서 장용영에 상납하였는데, 올해부터는 중단하고 원곡은 진흥청에 도로 소속시킨다.

전 3천 냥

기유년에 화성(華城)에 바칠 관서의 돈으로 사들인 본도의 소미 1만 석을 진분하고 모조를 취해서 매년 작전하여 1천 5백 냥은 화성에 이송하고 남은 수는 화성에서 구관하여 장용영에 상납하였는데, 올해부터는 그대로 화성에 소속시키고 장용영 상납조는 균역청에 옮겨서 납부한다.

전 4백 50냥

정미년에 관서의 군향 소미의 모조 3백 석을 한 해 걸러 작전해서 장용영에 상납하였는데 매년으로 분배하면 받아들인 돈이 이 수량이 되나, 올해부터는 중단한다.

전 6백 냥

관서의 별비전(別備錢)으로 매년 장용영에 상납하였는데, 올해부터는 중단한다. 이상 관서(關西)

전 4천 4백 25냥

병진년에 주자소전(鑄字所錢)으로 호남의 미 1만 4천 7백 50석을 사들여서 본소에서 수용하는 밀천으로 삼았다가 신유년에 장용영에 이속시켜서 진분하여 모조를 취해서 작전하여 상납하였는데, 올해부터는 원곡을 균역청에 이속시킨다.

전 1천 3백 38냥 5전 3푼

병진년에 진흥청 소관의 호남 계후(啓後) 가분의 모조 절미 4천 4백 61석 영을 장용영에 이획(移劃)하여 그대로 원곡을 만들어서 진분하여 모조를 취해서 작전하여 상납하였는데, 올해부터는 원곡을 진흥청에 이속시킨다.

전 4천 2백 냥

을미년(乙末年 : 영조51, 1775)에 장용영의 군기(軍器)를 만들어 갖추고자 호남 군작미(軍作米)의 매년 모조 1천 4백 석을 묘당(廟堂)에서 획급하여 작전해서 장용영에 상납하였는데,

올해부터는 중단한다.

전 3천 7백 냥

을묘년에 호서에 있는 비국곡(備局穀) 가운데 미 1만 석과 각곡(各穀) 7천 석을 화성(華城)에 이획하여 수정 정리곡(修城整理穀)으로 삼아 진분하여 모조를 취해서 작전하여 외정리소(外整理所)에 상납하다가 임술년(壬戌年: 순조2, 1802)에 외정리소를 혁파한 후 장용영에 이속시켰는데, 올해부터는 원곡을 수원부(水原府)에 도로 소속시킨다.

전 2천 1백 냥

신해년과 병진년에 균역청 소관의 호남에서 진상하는 첨가미(添價米)의 모조 7백 석을 매년 이획해서 작전하여 장용영에 상납하였는데, 올해부터는 중단한다.

전 4백 50냥

정미년에 호남 군향미의 모조 3백 석을 한 해 걸러 작전해서 장용영에 상납하였는데 매년으로 분배하면 바친 돈이 이 수량이 되나, 올해부터는 중단한다. 이상 호남

전 1천 5백 70냥 7전 4푼

병진년에 주자소 돈으로 영남미 5천 2백 35석 영을 사들여서 본소에서 수용하는 밀천으로 삼았다가 신유년에 장용영에 이속시켜서 진분하여 모조를 취해서 작전하여 상납하였는데, 올해부터는 원곡을 균역청에 이속시킨다.

전 4천 8백 냥

기미년에 장용영의 군기를 조비하기 위하여 영남 전미(錢米)의 매년 모조 1천 6백 석을 묘당에서 획급하여 작전해서 장용영에 상납하였는데, 올해부터는 중단한다.

전 1천 3백 냥

을묘년에 영남에 있는 비국곡 가운데 각곡 1만 3천 석을 화성에 이획시켜 수정정리곡으로 삼아 진분하여 모조를 취하고 작전하여 외정리소에 상납하다가, 임술년에 외정리소가 혁파된 뒤에는 장용영에 이속하였는데, 올해부터는 원곡을 균역청에 이부시킨다. 이상 영남

전 6백 79냥 1전 1푼

병진년에 진휼청 소관의 호서 계후 가분모(啓後加分耗) 절미하여 2천 2백 63석 영을 장용영에 이획하여 진분하고 모조를 취해서 작전하여 상납하였는데, 올해부터는 원곡을 진휼청에 이속시킨다.

전 1천 5백 냥

경술년에 진휼청 소관 호서 보환곡 절미하여 5천 석을 장용영에 이획하여 진분하고 모조를 취해서 작전하여 상납하였는데, 올해부터는 원곡을 균역청에 도로 소속시킨다.

전 1천 5백 냥

정사년에 진휼청 소관의, 호서에서 경술년에 사온 쌀 5천 석을 장용영에 이획하여 진분하고 모조를 취해 작전해서 상납하였는데, 올해부터는 원곡을 진휼청에 도로 소속시킨다.

전 6천 냥

을묘년에 균역청 돈을 가지고 호서의 첨환미 2만 석을 무취하여 진분하고 모조를 취해서 작전하여 화성의 외정리소에 상납하다가, 임술년에 외정리소가 혁파된 뒤에는 장용영에 이속하였는데, 올해부터는 원곡을 균역청에 이속시킨다. 이상 호서

전 3천 냥

병진년에 균역청 소관의 관동(關東) 보환곡의 모조 절미하여 1천 석을 매년 이획하고 작전하여 장용영에 상납하였는데, 올해부터는 중단한다. 이상 관동

전 1천 냥

임자년에 함경 감영의 방포(防布) 20동(同)을 이획하여 대전(代錢)으로 상납하고 1천 냥은 포(布)를 사기 위하여 호조와 병조에 이송하고 남은 수는 장용영에서 바쳤는데, 올해부터 2천 냥을 모두 두 본궁의 급대로 삼는다. 이상 북관(北關)

전 9천 냥

을묘년에 수어청에서 출진(出鎭)한 후 경청(京廳) 때의 지방조미(支放條米) 1천 석의 대전 6천 냥 및 전 3천 냥을 장용영에 이부하고 광주(廣州)에서 받아들여 상납하였는데, 올해부터는 쌀의 대전 6천 냥은 군역청에 옮겨 납부하여 그대로 급대로 삼으며 3천 냥은 광주의 환곡이 너무 많아서 자못 민폐를 끼치므로 그대로 본부(本府)에 주어서 지방으로 삼도록 하고 향곡(餉穀)은 수량을 줄인다. 이상 광주(廣州)

壯勇營錢穀木布來歷及區處別單

米一百四十二石八斗

丙午, 內武庫甲冑價, 自惠廳每年上下於軍器寺, 丙午權減二部, 以其價移送壯營, 自今年移付均廳, 仍作給代之資.

米一千石

癸丑, 以湖南船儲置米耗條一千石, 添付於該道均廳軍作米, 以湖西軍作米, 依此數換錄儲置, 以京廳上納米, 移送壯營, 自今年勿爲換錄, 元穀還付本衙門.

米四十八石十一斗三升二合八夕

丙午, 局出身三十人減額, 竝與牌頭二人加設料田米, 當自戶曹輸送, 而以惠廳大米, 換送壯營, 自今年還屬惠廳, 田米自惠廳, 依前還送戶曹.

米三百四十八石九斗五升

丁未, 以兩湖軍作米四千石, 加分取耗, 換錄儲置, 以京廳上納米, 移送壯營, 自今年勿爲換錄, 元穀還付本衙門.

米八百七十一石六斗

丁未, 自賑廳買取湖南米一萬石, 盡分取耗, 換錄儲置, 以京廳上納米, 移送壯營, 自今年勿爲換錄, 元穀還付本衙門.

米二千五百石

己酉, 自賑廳買取湖南湖西米二萬五千石, 盡分取耗, 換錄儲置, 以京廳上納米, 移送壯營, 自今年勿爲換錄, 元穀還付本衙門.

米二千石

己酉, 三南軍作米中, 湖南一萬石, 湖西四千石, 嶺南六千石, 加分取耗, 換錄儲置, 以京廳上納米, 移送壯營, 自今年勿爲換錄, 元穀還付本衙門.

米八十一石十斗

己酉, 以均廳所管嶺南別會錄米一萬石, 加分取耗, 除給三南買米及軍作米上納船價, 以其餘數, 換錄儲置, 以京廳上納米, 移送壯營, 自今年勿爲換錄, 元穀還付本衙門.

米一千六百三十六石六斗

庚戌, 以湖西常賑穀耗條米一千石, 及租折米八百石, 每年換錄儲置, 以京廳上納米, 移送壯營, 自今年勿爲換錄, 元穀還付本衙門.

米一千五百石

癸丑, 水原大同米一千五百石, 捧留本府, 尋復移屬壯營, 以京廳上納米, 相換取用, 自今年京廳米, 勿爲移送水原, 大同米仍屬該府.

米一千石

癸丑，以均廳勾管戶曹貿米，及本廳別檢米耗條一千石，每年換錄儲置，以京廳上納米，移送壯營，自今年勿爲換錄，元穀竝屬均廳。

米一千石

癸丑，五部吏隸接濟次，湖南別會錄米耗條一千石，劃給京兆，而自壯營以關西別備錢三千兩，每年移送惠廳出給，京兆耗米則換錄儲置，以京廳上納米，移送壯營，自今年耗米則自均廳作錢出給，京兆關西錢，留置本營。

米一千石

癸丑，三南進上藥材，分數權減，湖南四百石，嶺南湖西各三百石，以其本價除留各該道，以京廳上納米，依此數移送壯營，自今年藥材，則依前權減移送米，屬之均廳，仍作給代。

米一千二百七石十斗四合八夕

癸丑，以賑廳所管嶺南穀兩邑耗條，每年換取，各邑鎮砲糧米，自漕倉添載上納，自今年砲糧，以大同新米，依前劃給，常賑穀，還付本衙門。

米二千石

甲寅，以嶺南常賑太二萬石，換嶺南廳大同錢六萬兩，限十年每年六千兩式劃給，該道換取，三漕倉應下米二千石，添載上納，自今年米則依前除留，俾作漕需，惠廳錢則依前上納，常賑太還付本衙門。

米七十三石二斗四升 武藝廳所屬軍二十名減額兼料條

米四十八石十一斗六升 武藝廳雨具直二十名減額兼料條

米四十八石十一斗六升 武藝廳火箭軍二十名減額兼料條

米一百十七石八升四合 訓局兼內吹三十名減額兼料條

米三百十一石九斗四升五合 禁營兼內吹三十名減額料條

米一百七十三石三斗九升四合五夕 禁軍一番減額後所屬旗手等減額料條

米五百十六石十斗 訓局兼料餘條中移劃條

米六百十二石十二斗八升一合 禁營牙兵七十名減額料條

米三百十一石十三斗四升一合 御營兼內吹三十名減額料條

以上諸條，以訓局兼料及各營門給代條，自均廳上下者，而各項名色減額後，竝爲移送壯營，自今年還屬均廳，以爲訓局移屬軍兵接濟之資，禁御營兼內吹料條，及禁營牙兵料條，內吹牙兵，既已還屬兩營，竝爲依前上下。

米一千六百二十一石

乙巳，自賑廳貿取關西稅小米一萬石，及均廳新會錄小米一萬石，盡分取耗，作錢輸送於均廳，以京廳上納大米，移送壯營，自今年京廳米置之，元穀還付本衙門。

米一百石

壬子，以均廳補還穀耗條請得後，耗條則每年自均廳作錢，以京廳上納米，移送壯營，自今年置之。

米五百二十石

壬寅，以均廳錢貿取關西小米二萬石，盡分取耗作銀，別置於沁都內庫，乙巳，劃付壯營作錢上納，其中除出一千八百九兩貿取，賑廳米太自今年置之，元穀還屬均廳。

米三百石

以賑廳所下各營月課米中，訓·禁·御各三十石，守廳二百石，摠廳十石，劃付壯營，自今年各營月課藥丸，姑爲依前權減，米則還付賑廳，以爲訓局移屬軍兵接濟之資，以上惠廳。

米二百七十四石八斗四升 局出身三十人減額及牌頭二人加設料條

米四十九石十三斗八升 武藝廳五人減額料條

米二百二十三石十斗九升二合 武藝廳所屬軍三十名減額料條

米一百四十九石二斗二升八合 武藝廳雨具直二十名減額料條

米一百四十九石二斗二升八合 武藝廳火箭軍二十名減額料條

米九十一石七斗八升 別破陣十一名減額料條

米七十五石十二斗六升 訓局陞戶軍十名減額料條

米一百七十八石十四斗七升三合六夕 訓局兼內吹二十四名減額料條

米一千十石十三斗二升 三內禁軍一番減額料條

米三百四石六升六合六夕 扈衛廳軍校八十五名減額料條

米一百四石十二斗二升四合 兼仕禁軍十窠減額料條

以上諸條，各項名色減額後，竝爲移送壯營，而減額軍兵，自訓局次第填代，武藝廳額數，比前增加，料條未免疊下，自今年竝還屬戶曹，而扈衛軍三十名料條，自該曹依前上下。

米九百石

以鄭妻免稅，權屬內司，戊申，劃付壯營，自今年還屬戶曹。

米二千五百石

六鎮奴婢貢田米二千四百九十四石之當納內司者，入上州倉，自戶曹以大米二千四百八石，米錢參半給代于內司，辛亥爲始，給代米中二千石，每年劃送壯營，壬子，又以五百石加劃，而內司給代，依前輸送，未免疊下，奴婢革罷後，州倉入上之田米，又歸蕩減，自今年內司，則依前給代，壯營輸送條置之，州倉田米，別爲給代。

米八百七石十一斗

湖南三滄（漕？）倉漕船，以千石容載定式後，減其船額，漕卒復戶米每年添載，上納于戶曹，移送壯營，自今年屬之均廳，仍作給代，以上戶曹。

太四百石

辛亥，以均廳所管湖南進上添價米耗條二百石，每年劃付惠廳，以京廳上納太四百石，準折移送壯營，自今年置之，元穀還屬本衙門。

太六百石

丁巳，以嶺南常賑太二萬石，三年耗六千石，還作元穀，盡分取耗，添載漕船上納壯營，自今年停納，元穀還付本衙門。

太一百六十六石

壬寅，以關西小米耗條作錢中，除出貿取賑廳太，詳見米條 自今年置之。

太一千石

壬子，以賑廳句管三南常賑太耗條，每年移劃，而難於運輸，自京廳依此數劃送壯營，自今年置之，元穀還付本衙門，以上惠廳。

太二百四十二石七斗九升二合 局出身三十人減額及牌頭二人加設料條

太一千二百六十五石七斗八合 三內禁軍一番料及馬太條

太九石二斗二升八合 扈衛廳帳幕軍二十名減額料條

太一百二十六石十三斗二升 兼仕禁軍十窠減額料條

以上諸條，各項名色減額後，竝爲移送壯營，自今年還屬戶曹。

太一千石

辛亥爲始，以壯營錢二千兩，每年換取於戶曹，自今年置之。

太五十石十二斗

湖南三漕倉漕船減額後，以漕卒復戶條，添載上納，自今年屬之均廳，仍作給代，以上戶曹。
木三十同

丁未，請得關西別餉遼東木二十同，湖南左右水營休番木各五同，自各營以代錢三千兩上送惠廳，以惠廳木依此數移送壯營，己未，因湖南右水營休番木之罄竭無餘，以本道所在備局軍作米耗條一千石，每年劃給於該營，作錢上送於均廳，以爲各樣木代錢，自今年惠廳木置之，備局軍作米，還屬本衙門，關西遼東木，勿爲上送。

木四十同

癸丑，請得關西別備木八十同，每年以代錢八千兩上送，而四千兩移送惠廳，以京廳木換用，自今年置之，關西錢，留置本道監營。

木三十同

丁巳，請得海西所在均廳別會錄木三十同，以京廳木換用，自今年置之。

木五十同

戊申，以賑廳質木餘剩條，移劃壯營，而賑廳木儲匱乏，全無餘剩，自今年置之。

木五同二十疋

丙午，以賑廳新捧木，每年劃送壯營，自今年置之。

木五十同

戊申，請得關西遼軍木三十同，別餉木二十同，每年以代錢五千兩，上送惠廳，以京廳木移送壯營，自今年置之，關西錢，留置本道監營。

木十同

癸丑，請得湖南右水營休番木十同，以代錢每年上送於惠廳，以京廳木移送壯營，己未，因該營木儲之罄竭，劃給軍作耗，作錢上送，詳見上項 自今年置之，以上惠廳。

木十疋 武藝廳十人減額年終賞格條

乙巳，減額移送壯營，自今年置之。

木一百同

庚戌，以關西嶺南各邑穀多爲弊，每年耗條，作錢上送于戶曹，而就其中一萬兩移劃壯營，仍給戶曹，以該曹木一百同換用，穀多邑作錢，今不滿萬兩，木則年年移送，自今年置之。

木四十同

癸丑，請得關西別備木八十同，每年以代錢八千兩上送，而四千兩移送戶曹，以該曹木換用，自今年置之，關西木留置本道監營，以上戶曹。

木三同二疋 扈衛廳軍校八十五人減額衣資條

木一同十疋 兼仕禁軍十窠減額草價條

以上二條，各項名色減額後，自兵曹移送壯營，自今年竝屬均廳，以爲訓局移屬軍兵接濟之資，以上兵曹。

木二同二十八疋 局出身三十窠減額牌頭二人加設衣資草價條

木一同五疋 武藝廳五人減額奉足草價條

木五同二十疋 武藝廳所屬軍三十名減額奉足條

木三同三十疋 武藝廳兩具直二十名減額奉足條

木三同三十疋 武藝廳火箭軍二十名減額奉足條

木九同三十疋 兼內吹三十名減額奉足及幸行習角賞格條

木一同四十疋 京畿陞戶軍十名移屬奉足條

以上諸條，各項名色減額或移屬後，自訓局移送壯營，自今年還屬該營，以爲移屬軍兵接濟之

資，以上訓局。

木九同四十疋 兼內吹三十名減額奉足及幸行習角賞格條

木十三同三十一疋一尺八寸 牙兵七十名減額奉足及號衣條

以上二條，各項名色減額後，自禁營移送壯營，自今年還屬該營，以爲吹鼓手牙兵接濟之資，以上禁營。

木八同三十疋 兼內吹三十名減額奉足及幸行習角賞格條

減額後，自御營移送壯營，自今年還屬該營，以爲吹鼓手接濟之資，以上御營。

木二十同

丁巳，以嶺南射軍木，移割上納壯營，自今年十同置之，十同上送均廳，俾作給代，以上嶺南。

布五同

丁未爲始，濟用監正布，每年移送壯營，自今年置之。

布十五同

癸丑爲始，以濟用監正布，每年移送壯營，而價錢七百五十兩，以北關防布代錢，輸送戶曹，自今年置之，防布代錢，仍作兩本宮給代。

布四同

戊申爲始，以戶曹蓼布，每年移送壯營，自今年置之，以上戶曹。

布五同

癸丑爲始，以兵曹布，移送壯營，以北關防布代錢二百五十兩，輸送兵曹，自今年置之，防布代錢，仍作兩本宮給代。

布十同

癸丑爲始，以壯營錢五百兩，每年貿取於兵曹，自今年置之，以上兵曹。

布二十疋 牙兵七十名減額軍服條

減額後，自禁營移送壯營，自今年還屬該營，以爲牙兵接濟之資，以上禁營。

錢三千六百兩

己酉，以御營廳部司標下，比禁營倍多，減其元軍四百五十名，並其三保，合一千八百名，盡充官保，自該營收捧保錢，以均廳該營給代條，依此數移送壯營，自今年移屬均廳，仍作本廳北關上納中，兩本宮給代之代。

錢一千兩

乙卯，以湖南右水營休番木十同，割付華城外整理所，己未，因該營木儲之罄竭，以軍作米耗條作錢輸送，詳見本條 外整理所革罷後，移付壯營，自今年置之，以上惠廳。

錢六百四十兩 局出身三十人減額牌頭二人加設衣資條

錢十五兩八錢四分 訓局兼內吹三十名減額後春秋犒饋條

以上二條，減額後自戶曹移送壯營，自今年置之。

錢一千五百兩

以鄭妻免稅，權屬內司，戊申，自戶曹移送壯營，自今年還屬戶曹，以上戶曹。

錢八兩四錢 兼內吹三十名減額軍服條

減額後，自訓局移送壯營，自今年還屬該營，以爲吹鼓手接濟之資，以上訓局。

錢二百五十四兩七錢七分 兼內吹三十名減額軍服犒饋條

錢四十四兩二錢 牙兵七十名減額軍服犒饋條 錢一百五十五兩四錢八分 均廳給代時浮費條

以上三條，各項名色減額後，以均廳禁營給代條，移送壯營，自今年還屬該營，以爲吹鼓手牙兵接濟之資，以上禁營。

錢二百六十一兩四錢七分 兼內吹三十名減額軍服犒饋條

錢五十二兩四錢五分 均廳給代時浮費條

以上兩條，各項名色減額後，以均廳御營給代條，移送壯營，自今年還屬該營，以爲吹鼓手接濟之資，以上御營。

錢四十四兩 別破陣十一名減額衣資條

減額後，自軍器寺移送壯營，自今年屬之均廳，仍作給代，以上軍器寺。

錢四百六十兩 武藝廳五人減額衣資條 錢二千四百二十八兩 三內禁軍一番減額草價軍物物力條

以上兩條，各項名色減額後，自兵曹移送壯營，自今年移送均廳，仍作給代，以上兵曹。

錢一千四百兩

庚戌，以加平買穀餘錢，戶曹買租餘錢一萬三千兩，自畿營買租一萬石，盡分取耗，以每年折米四百石，每石三兩五錢式，作錢上納，自今年元穀，移屬均廳。

錢四百兩四錢

守禦廳出鎮後，京標下及牙兵減額，以其畿邑保軍身錢，給代於龍仁·安山加設鄉軍，餘數四百兩四錢，自畿營上納壯營，自今年移納均廳，仍作給代，以上京畿。

錢一千一百兩

辛亥，以黃海兵營儲置小米六千石移割，盡分取耗，作錢上納于壯營，自今年元穀，移屬均廳。

錢四千四百六十二兩五錢

甲寅，以壯營錢買置摠廳，請得海西小米一萬二千七百五十石，盡分取耗，作錢上納，壯營自今年，元穀移屬均廳。

錢三千五百兩

辛亥，以舟橋司所管嶺南別會錄耗米二千石，移屬壯營，而別會錄元穀不足，故只割一萬石，與別均米一萬石合作元穀二萬石，盡分取耗，丙辰，因該道作錢之有弊，一萬石則與海西濬川司大米一千三百四十二石零，小米六千三百八十九石零，常平小米二千二百六十八石零，相換取耗，作錢上納壯營，自今年，元穀移屬均廳。

錢三千四十五兩

丁巳，請得湖西添還二千二百石，均廳買米三千八十二石，又以壯營錢買取谷山移轉米三千四百十八石，合八千七百石，竝以海西水營穀常平穀之在沿海者，相換，盡分取耗，作錢上納于壯營，自今年，元穀移屬均廳。

錢一千五十兩

丁未，以兩南兩西軍餉耗各三百石移割，間年作錢，丙辰，因嶺南作錢之有弊，以海西管餉小米三千石，作爲元穀，盡分取耗，每年作錢上納于壯營，自今年，元穀移屬均廳，以上海西。

錢四千一百九十一兩

乙巳，以均廳所管，沁都作銀小米二萬石，割付壯營，盡分取耗，作錢一千八百九兩，買取賑廳米太，詳見米太條 餘錢上納壯營，自今年，元穀已屬均廳。

錢三萬一千二百十二兩八分戊申爲始，自壯營買取湖南米七萬四千四十石，盡分取耗，又爲請得惠廳船儲置米耗條二千石，補還米耗條一千石，每年作錢，壬子，因湖南作錢之有弊，以上項買置米及船儲置補還耗條，移付均廳，以均廳所管關西會錄小米，濬川司小米五萬一千四百四十二石，免稅結每年所捧小米三千六百九十五石，關東蔘契小米一千五百六十五石之年例作錢者，割付壯營，作錢上納，自今年竝還屬本衙門。

錢二千一百兩

壬子，以平安兵營所管渴馬倉，會外大米七千石，移付壯營，盡分取耗，作錢上納，兵營所用

二分耗，以該營各庫記簿錢三萬兩分債取殖，每年給代，自今年元穀還付該兵營，分債之記簿錢，即爲收捧，依前會錄。

錢一千二百七十七兩二錢

癸丑，以壯營錢，貿取箕營質小米四千二百五十七石零，盡分取耗，作錢上納，自今年元穀移屬均廳。

錢一萬二千兩

辛亥，以均廳所管嶺南別會錄米一萬石，劃付壯營，壬子，又請嶺南所在統營及左兵營別餉米各一萬五千石，取耗作錢，丙辰因嶺南運輸之有弊，與關西所在均廳保民司小米二萬石相換，盡分取耗，作錢上納，自今年元穀，並移屬均廳，統營別餉米及管理營小米，還爲相換，統營穀則還屬統營。

錢八千二百八兩二錢四分

癸丑，以關西所在賑廳別會錄小米各年停退條二萬七千三百六十石，移屬壯營，當年收捧，仍作元穀，盡分取耗作錢上納，而其中二千一百兩，移送華城外帑庫，自今年元穀，移屬均廳，外帑庫輸送條，稟旨舉行。

錢三千兩

乙卯，自摠廳請得常賑廳所管湖西經理穀折米四千五百五十九石零，丙辰，移屬壯營，辛酉，還屬摠廳，其代，以關西常賑小米耗條一千石，每年作錢上納壯營，自今年置之，元穀還屬賑廳。

錢三千兩

己酉，以華城所納關西錢，貿取本道小米一萬石，盡分取耗，每年作錢一千五百兩，移送華城，餘數自華城句管，上納壯營，自今年仍屬華城，壯營上納條，移納均廳。

錢四百五十兩

丁未，以關西軍餉小米耗條三百石，間年作錢上納壯營，而分排每年則所納錢，當爲此數，自今年置之。

錢六百兩

以關西別備錢每年上納壯營，自今年置之，以上關西。

錢四千四百二十五兩

丙辰，以鑄字所錢，貿取湖南米一萬四千七百五十石，以爲本所需用之資，辛酉，移屬壯營，盡分取耗，作錢上納，自今年元穀，移屬均廳。

錢一千三百三十八兩五錢三分

丙辰，以賑廳所管湖南啓後加分耗，折米四千四百六十一石零，移劃壯營，仍作元數，盡分取耗，作錢上納，自今年元穀，移屬賑廳。

錢四千二百兩

乙未，以壯營軍器措備次，湖南軍作米每年耗條一千四百石，自廟堂劃給，作錢上納于壯營，自今年置之。

錢三千七百兩 乙卯，以湖南所在備局穀中米一萬石，各穀七千石，移劃華城，爲修城整理穀，盡分取耗，作錢上納外整理所，壬戌外整理所革罷後，移付壯營，自今年元穀，還屬水原府。

錢二千一百兩

辛亥·丙辰，以均廳所管湖南進上添價米耗條七百石，每年移劃，作錢上納于壯營，自今年置之。

錢四百五十兩

丁未，以湖南軍餉米耗條三百石，間年作錢上納壯營，而分排每年則所納錢，當爲此數，自今

年置之，以上湖南．

錢一千五百七十兩七錢四分

丙辰，以鑄字所錢，質取嶺南米五千二百三十五石零，以爲本所需用之資，辛酉，移屬壯營，盡分取耗，作錢上納，自今年元穀，移屬均廳．

錢四千八百兩

己未，以壯營軍器措備次，嶺南南(?)錢米每年耗條一千六百石，自廟堂劃給，作錢上納于壯營，自今年置之．

錢一千三百兩

乙卯，以嶺南所在備局穀中，各穀一萬三千石，移劃華城，爲修城整理穀，盡分取耗，作錢上納于外整理所，壬戌外整理所革罷後，移付壯營，自今年元穀，移屬均廳，以上嶺南．

錢六百七十九兩一錢一分

丙辰，以賑廳所管湖西啓後加分耗，折米二千二百六十三石零，移劃壯營，盡分取耗，作錢上納，自今年元穀，移屬賑廳．

錢一千五百兩

庚戌，以賑廳所管湖西補還穀，折米五千石，移劃壯營，盡分取耗，作錢上納，自今年元穀，還屬均廳．

錢一千五百兩

丁巳，以賑廳所管湖西庚戌質米五千石，移劃壯營，盡分取耗，作錢上納，自今年元穀，還屬賑廳．

錢六千兩

乙卯，以均廳錢，質取湖西添還米二萬石，盡分取耗，作錢上納于華城外整理所，壬戌外整理所革罷後，移付壯營，自今年元穀，移屬均廳，以上湖西．

錢三千兩

丙辰，以均廳所管關東補還穀耗條，折米一千石，每年移劃，作錢上納于壯營，自今年置之，以上關東．

錢一千兩

壬子，以咸鏡監營防布二十同移劃，以代錢上納，而一千兩質布次，移送戶兵曹，餘數自壯營捧上，自今年二千兩，竝作兩本宮給代，以上北關．

錢九千兩

乙卯，守禦廳出鎮後，京廳時支放條米一千石代錢六千兩，及錢三千兩，移付壯營，自廣州收捧上納，自今年米代錢六千兩，移納均廳，仍作給代，三千兩，廣州分糶過多，頗貽民弊，仍給本府，俾作支放，餉穀則減糶，以上廣州．

<비변사등록 193책, 순조 2년 1802년 09월 02일(음)>

경제/재정

別庫 소관 및 鄉色 환곡을 그대로 나눠주고 耗條를 취한 秩

별고(別庫) 소관 및 향색(餉色) 환곡을 그대로 나누어 주고 모조를 취하는 질(秩)

임자년의 무조(賃租) 2만 6천 석

임자년에 영남의 곡식이 많은 고을에서 작전한 3만 냥 및 금위영·어영청 두 영의 돈 5천 8백 냥을 비국에서 기영(畿營)에 획급하여 조(租:벼)를 사서 진분하고 모조를 취해서 작전하

여 원행(園幸)할 때 연로(沿路)의 행궁(行宮) 수리와 포진(鋪陳)·기명(器皿)·시초(柴草)·교량(橋梁) 등에 사용하는 비용으로 삼았다가 기미년에 장용영에 이속시켜서 작전하여 상납하였는데, 올해부터 원곡을 균역청에 이속시킨다.

상진조(常賑租) 4백 석

임자년에 가평(加平)의 상진곡 모조를 매년 이획해서 작전하여 탄(炭)을 사서 장용영에 상납하였는데, 올해부터는 모조를 본아문에 회록하고 탄을 사는 것은 중단한다.

경신년의 무조(賃租) 3만 7천 2백 85석 6두 3승 7홉 6작과 소미 1백 11석

경신년에 장용영전으로 각 고을에 사서 두고 진분하여 모조를 취해서 시가[市直]에 따라 작전하였는데, 올해부터는 균역청에 이속시킨다. 이상 경기(京畿)

동(洞)을 쌓는 물력(物力)으로 비치한 소미 8천 석

임자년과 계축년에 관서의 당년(當年) 가분(加分) 모조 5천 석을 청하여 얻고, 무오년(戊午年:정조22, 1798)에 또 각 아문의 곡식 3천 석을 이획하여 모두 원곡으로 만들어서 진분하고 모조를 취해서 작전하여 평안 병영에 봉류(捧留)하였는데, 올해부터는 원곡을 균역청에 이획한다.

군향으로 산 소미 4천 석

을묘년에 균역청 돈으로 성역소(城役所)에서 청하여 얻은 관서의 당년도(當年度) 가분 모조를 사들여서 그대로 원곡으로 만들어 진분해서 모조를 취하였는데, 올해부터는 균역청에 도로 소속시킨다.

외고(外庫)에서 접제하는 소미 1천 석

을묘년에 관서의 당년도 가분 모조 가운데 1천 석을 떼어서 병영에 소속시키고 그대로 원곡으로 만들어 진분하고 모조를 취해서 외고 감색(監色)을 접제하는 비용으로 삼았는데, 올해부터는 원곡을 균역청에 이속시키고 외고는 철폐(撤罷)한다.

심도(沁都:강화도)의 첨향(添餉) 소미 1천 석

신해년에 관서에 있는 강화도의 첨향 소미 5백 83석 영을 화성(華城)에서 청하여 얻고 또 다른 아문 곡식의 모조 4백 16석 영을 매년 더 획급해서 작전하여 화성 외탕고(外帑庫)에 상납하였는데, 올해부터는 그대로 화성에 소속시킨다. 이상 관서

군향으로 산 소미

을묘년에 균역청전으로 성역소에서 청하여 얻은 해서의 당년도 가분 모조를 사들여서 그대로 원곡으로 만들어서 진분하고 모조를 취하였는데, 올해부터는 균역청에 도로 소속시킨다. 이상 해서

상진조(常賑租) 8천 석

신해년에 충주(忠州)·연풍(延豐)의 상진곡 응분조(應分條) 가운데에서 이획하여 그대로 원곡으로 만들고 진분하여 모조를 취해서 작전하여 철(鐵)을 사서 장용영에 상납하였는데, 올해부터는 원곡을 본아문에 도로 소속시키고 철을 사는 것은 중단한다.

군향 무미(賃米) 8백 94석

을묘년에 균역청 돈으로 성역소에서 청하여 얻은 호서의 당년도 가분의 모조를 사들여서 그

대로 원곡으로 만들어서 진분하고 모조를 취하였는데, 올해부터는 균역청에 도로 소속시킨다.

상진미 3백 석

갑인년에 호서 상진미의 모조를 매년 이획해서 작전하여 종이를 사서 장용영에 상납하였는데, 올해부터는 모조를 본아문에 회록하고 종이를 사는 것은 중단한다. 이상 호서

균향 무미 2백 6석

을묘년에 균역청 돈으로 성역소에서 청하여 얻은 호남의 당년 가분 모조를 사들여서 그대로 원곡으로 만들어서 진분하고 모조를 취하였는데, 올해부터는 균역청에 도로 소속시킨다.

회록 외 별검미(別檢米) 80석

계축년에 호남에 있는 비국 구관의 별검미 모조를 매년 이획해서 작전하여 종이를 사서 장용영에 상납하였는데, 올해부터는 모조를 본아문에 회록하고 종이를 사는 것은 중단한다. 이상 호남

균향 무미 4천 석

을묘년에 균역청 돈으로 성역소에서 청하여 얻은 영남의 당해 가분 모조를 사들여서 그대로 원곡으로 만들어서 진분하고 모조를 취하였는데, 올해부터는 균역청에 도로 소속시킨다. 이상 영남

상진미 7백 석

임자년에 관동의 상진미 모조를 매년 이획해서 작전하여 썩 · 청(淸:꿀) · 마(麻) · 밀랍 등속을 사들여서 장용영에 상납하였는데, 올해부터는 모조를 본아문에 회록하고 각종 물건을 사오는 것은 모두 중단한다.

둔(屯) 환곡(還穀) 2천 8백 석

정사년에 관동 홍천(洪川)의 환곡 1천 3백 석과 횡성(橫城)의 환곡 1천 5백 석을 이획하여 그대로 원곡으로 만들어서 진분하여 모조를 취하여 시가에 따라 작전해서 장용영에 상납하였는데, 올해부터는 원곡을 균역청에 이속시킨다. 이상 관동

배봉(拜峰)의 환미(還米) 2백 70석과 조(租:벼) 2천 석

기유년에 충융청의 평창(平倉) 향미(餉米) 1천 석, 경술년에 기영(畿營)의 무미 1천 석, 양주(楊州)의 환조(還租) 1천 5백 석, 계축년에 북한미(北漢米) 2백 석, 을묘년에 광주(廣州)의 향미 5백 석, 양주 · 고양(高陽)의 환조 5백 석을 이획하여 모두 진환(鎭還)으로 만들어서 매년 조적(糶糴)하였는데, 올해부터는 그대로 목환(牧還)으로 만든다.

노량(鰲梁) 환미 1천 20석

갑인년에 금위영미(禁衛營米) 5백 20석, 계축년에 수어청미(守禦廳米) 5백 석을 이획하여 모두 진환(鎭還)으로 만들어서 매년 조적하였는데, 올해부터는 중단한다.

고성(古城) 환미 1천 석과 조 3천 2백 28석 12두 3승

임자년에 해진(該鎭)의 원환(元還) 황조(荒租:털 있는 겉벼) 7천 8백 석을 정조(正租:조세로 받는 벼)로 환산한 3천 2백 28석, 정사년에 정주(定州)의 환미 1천 석을 이획하여 모두 원곡으로 만들어서 매년 유고조(留庫租) 2백 28석 이외에는 모두 나누어 주어서 모조를 취

하여 해진 교졸(校卒)의 지방의 밀천으로 삼았는데, 올해부터는 중단한다. 이상 각진(各鎭) 別庫所管及餉色還穀仍分取耗秩

壬子, 貿租二萬六千石.

壬子, 以嶺南穀多邑作錢三萬兩, 及禁·御兩營 錢五千八百兩, 自備局劃給於畿營貿租, 盡分取耗作錢, 以爲園幸時沿路行宮修理, 鋪 陳器皿, 柴草橋梁等需用之資, 己未, 移屬壯營, 作錢上納, 自今年元穀, 移屬均廳.

常賑租四百石

壬子, 以加平常賑穀耗條, 每年移劃作錢, 貿炭 上納壯營, 自今年耗條, 會錄本衙門貿炭, 置之. 庚申貿租三萬七千二百八十五石六斗三升七 合六夕

小米一百一十一石

庚申, 以壯營錢, 貿置各邑, 盡分取耗, 從市直作 錢, 自今年移屬均廳, 以上京畿.

築垆物力小米八千石

壬子·癸丑, 以關西當年加分耗五千石請得, 戊 午, 又以各衙門穀三千石移劃, 竝作元穀, 盡分 取耗作錢, 捧留於平安兵營, 自今年元穀, 移劃 均廳.

軍餉貿小米四千石

乙卯, 以均廳錢, 貿取城役所請得關西當年加 分耗, 仍作元穀, 盡分取耗, 自今年還屬均廳.

外庫接濟小米一千石

乙卯, 以關西當年加分耗中一千石, 劃屬兵營, 仍作元穀, 盡分取耗, 以爲外庫監色接濟之資, 自今年元穀, 移屬均廳, 外庫則撤罷.

沁都添餉小米一千石

辛亥, 以關西所在江都添餉小米五百八十三 石零, 自華城請得, 又以他衙門穀耗條四百十 六石零, 每年加劃作錢, 上納于華城外帑庫, 自 今年仍屬華城, 以上關西.

軍餉貿小米九百石

乙卯, 以均廳錢貿取城役所請得海西當年加 分耗, 仍作元穀, 盡分取耗, 自今年還屬均廳, 以 上海西.

常賑租八千石

辛亥, 以忠州·延豐常賑穀應分條中移劃, 仍作 元穀, 盡分取耗, 作錢貿鐵, 上納壯營, 自今 年元 穀, 還屬本衙門, 貿鐵置之.

軍餉貿米八百九十四石

乙卯, 以均廳錢, 貿取城役所請得湖西當年加 分耗, 仍作元穀, 盡分取耗, 自今年還屬均廳.

常賑米三百石

甲寅, 以湖西常賑米耗條每年移劃, 作錢貿紙, 上納壯營, 自今年耗條, 會錄本衙門, 貿紙置 之, 以上湖西.

軍餉貿米二百六石

乙卯, 以均廳錢, 貿取城役所請得湖南當年加分 耗, 仍作元穀, 盡分取耗, 自今年還屬均廳.

會外別檢米八十石

癸丑, 以湖南所在備局句管別檢米耗條, 每年 移劃, 作錢質紙, 上納壯營, 自今年耗條, 會錄本 衙門, 質紙置之, 以上湖南.

軍餉質米四千石

乙卯, 以均廳錢, 質取城役所請得嶺南當年加 分耗, 仍作元穀, 盡分取耗, 自今年還屬均廳, 以上嶺南.

常賑米七百石

壬子, 以關東常賑米耗條, 每年移劃, 作錢質取 雉·淸·麻·蠟等屬, 上納壯營, 自今年耗條會錄本 衙門, 貿易各種, 竝置之.

屯還穀二千八百石

丁巳, 以關東洪川還穀一千三百石, 橫城還穀 一千五百石移劃, 仍作元穀, 盡分取耗, 從市直作錢, 上納于壯營, 自今年元穀, 移屬均廳, 以 上關東.

拜峯還米二千七百石

租二千石

己酉, 摠廳平倉餉米一千石, 庚戌, 畿營質米一 千石, 楊州還租一千五百石, 癸丑, 北漢米二百 石, 乙卯, 廣州餉米五百石, 楊州·高陽還租五百 石移劃, 竝作鎮還, 每年糶糴, 自今年仍作牧還.

鷺梁還米一千二十石

甲寅, 禁營米五百二十石, 癸丑, 守廳米五百石 移劃, 竝作鎮還, 每年糶糴, 自今年仍置.

古城還米一千石

租三千二百二十八石十二斗三升

壬子, 以該鎮元還荒租七千八百石, 折作正租 三千二百二十八石, 丁巳, 定州還米一千石移劃, 竝作元穀, 每年留庫租二百二十八石外, 竝 爲分給取耗, 以爲該鎮校卒支放之資, 自今年仍置, 以上各鎮.

<비변사등록 193책, 순조 2년 1802년 09월02일(음)>

경제/재정

壯勇營의 廩宇·器械·軍物 區處別單

장용영(壯勇營)의 해우(廩宇)·기계(器械)·군물(軍物) 구처 별단

해우질(廩宇秩)

본영(本營)

아직 적당히 쓸 곳이 없으나 고사(庫舍)가 완전하고 양호하며 선혜청의 곡물 또한 비축한 것이 있으니 임시로 선혜청에 소속시킨다.

직방(直房) 2

선인문(宣仁門) 밖에 있는 곳은 야소(治所)와 통하므로 무예청(武藝廳)에서 입접(入接)하는 장소로 삼고 돈화문(敦化門) 밖에 있는 곳은 도감(都監)에 붙인다.

북창(北倉)

선혜청에 도로 소속시킨다.

기계 · 군물질

내하(內下)한 물건을 성책(成冊)에 있는 대로 도로 거두어들인다.

각색단 갑주(各色緞甲冑) 15건 훈련도감

20건 금위영

10건 어영청

두석 갑주(豆錫甲冑) 2건 화성

각색 인문목 갑주(各色印紋木甲冑) 4건

흑삼승 갑주(黑三升甲冑) 1백 92건 이상 도감

1백 건 금위영

50건 어영청

48건 화성(華城)

철두구(鐵頭口) 38부

구두구(舊頭口) 4부

각색 단호의(緞號衣) 20건

목호의(木號衣) 8백 55건

두석 징자(豆錫徵子) 23개(箇)

흑삼승협수(黑三升挾袖) 70령(領)

목협수(木挾袖) 7백 52령

홍목협수(紅木挾袖) 8령

괘자(掛子) 4백 35령

청삼승괘자(靑三升掛子) 70령

목괘자(木掛子) 6백 76령 이상 훈련도감

장궁(長弓) 3백 장(張) 용호영(龍虎營)

7백 92장 훈련도감

1천 장 금위영

6백 장 어영청

후궁(幬弓) 36장 용호영

2백 장 훈련도감

5백 장 금위영

2백 장 어영청

죽궁(竹弓) 5백 1장 훈련도감

2백 장 어영청
 교자궁(校子弓) 1백 장 용호영
 3백 70장 훈련도감
 3백 장 금위영
 3백 장 어영청
 육냥궁(六兩弓) 5장 용호영
 수노궁(手弩弓) 2장 훈련도감
 2장 금위영
 1장 어영청
 현(弦) 1백 13개
 통개(筒箇) 38부(部) 이상 훈련도감
 20부 금위영
 육냥전(六兩箭) 1부(浮) 42개 무촉(無鏃) 용호영
 별체전(別體箭) 84부 7개 훈련도감
 50부 어영청
 자관장전(自管長箭) 20부 용호영
 20부 훈련도감
 20부 어영청
 편전(片箭) 20부 용호영
 21부
 무우장전(無羽長箭) 60부
 무우편전(無羽片箭) 30부
 영전(令箭) 2부(部) 1개
 관이전(貫耳箭) 2부
 별관장전(別管長箭) 45부 1개 이상 도감
 통아(筒兒) 58개 금위영
 전죽(箭竹) 3백 47부(浮) 93개 도감
 1천 부 금위영
 편전죽(片箭竹) 1백 32부
 편죽(片竹) 2백 17장
 사호모포(四號母砲) 5문(門)
 오호모포(五號母砲) 5문
 호준포(虎蹲砲) 3위(位)

조총(鳥銃) 1천 4백 86병(柄) 이상 훈련도감

1천 병 금위영

5백 병 어영청

2백 병 화성

1백 병 강화(江華) 내탕고(內帑庫)의 군기를 옮겨 온 것을 도로 보냄

마상조총(馬上鳥銃) 2백 7병

동소총(銅小銃) 11병

철삼혈총(鐵三穴銃) 33병 이상 훈련도감

화약(火藥) 2만 7천 6백 7근(斤) 6냥 5전 5푼 금위영에서 옮겨 온 것을 도로 보냄

연환(鉛丸) 31만 6천 7백 35개 훈련도감

50만 개 금위영

20만 개 어영청

자포대연환(子砲大鉛丸) 6백 개

중연환(中鉛丸) 6백 개

기화(起火) 3백 56지(枝) 이상 훈련도감

1백 50지 금위영

1백 50지 어영청

중약선(中藥線) 3천 8백 82조(條)

부결승(付結繩) 8백 99과(把)

화승(火繩) 1천 9백 94원(圓)

충죽(衝竹) 53개

이약통(耳藥筒) 3개

환낭(丸囊) 3개

연화삽(鉛火插) 30개

화거(火車) 20승(乘) 체철(體鐵) 기(旗) 피낭(皮囊) 우비(雨備)를 아울러 갖추 이상 훈련도감

11승 체철 기 피낭 우비를 아울러 갖추 금위영

11승 체철 기 피낭 우비를 아울러 갖추 어영청

유황(硫黃) 1천 2백 근

남비개(南飛筒) 3백 60개

거마쟁(拒馬鎗) 1백 8총(叢)

동갑정(銅甲釘) 1천 개

두석갑정(豆錫甲釘) 1천 6백 60개

동갑엽(銅甲葉) 3백 35편(片)
 피갑엽(皮甲葉) 40편
 화피(樺皮) 53동(同) 35장(張) 이상 훈련도감
 50동 금위영
 조두(刁斗) 3백 70타(朶) 훈련도감
 갑주피롱(甲冑皮籠) 1백 39건(件)
 피개(皮蓋) 1백 5건
 조우(雕羽) 56개 이상 금위영
 치우(雉羽) 2만 4천 6백 90개 훈련도감
 4만 개 금위영
 가시목(枷時木) 5백 개 훈련도감
 1천 개 금위영
 4백 20개 어영청
 4백 20개 총융청
 창병목(槍柄木) 4백 20개 훈련도감
 5백 50개 금위영
 4백 개 어영청
 편곤목(鞭棍木) 2백 60개
 궁삭목(弓槊木) 1천 2백 30개
 거차(車子) 3량(輛) 이상 훈련도감
 2량 금위영
 선(船) 2척(隻)
 보편곤(步鞭棍) 1쌍(雙)
 피검(皮劔) 11쌍
 목기창(木旗槍) 16병(柄)
 월도(月刀) 10병
 쌍구(雙鉤) 10쌍
 기창(旗槍) 10병
 교전창(交戰槍) 10병
 목월도(木月刀) 25병
 목쌍검(木雙劔) 16쌍
 목검(木劔) 10쌍
 목교전창(木交戰槍) 16병

주락(朱絡) 60쌍
 편곤(鞭棍) 2백 19개 이상 훈련도감
 1백 50개 용호영
 주장(朱杖) 1백 개
 곤장(棍杖) 2백 24개
 곤봉(棍棒) 8쌍
 호적(號笛) 4쌍 이상 훈련도감
 7쌍 금위영
 3쌍 어영청
 나팔(喇叭) 3쌍 1척(隻) 훈련도감
 6쌍 금위영
 3쌍 어영청
 목대각(木大角) 10쌍
 나(羅) 1좌(坐)
 장고(長鼓) 2좌
 술발(撻鉢) 15개
 작도(斫刀) 7개
 마안(馬鞍) 92부
 목포대(木布岱) 1천 93건
 상모(象毛) 5백 85개
 편담(扁擔) 45개
 전건(戰巾) 3백 11정(頂)
 남화주전대(藍禾紬戰帶) 7백 96건
 청목전대(靑木戰帶) 1백 81건
 행전(行纏) 6백 35개
 전립(戰笠) 6개
 자모자(紫帽子) 12립(立)
 목말(木襪) 24척
 주립(朱笠) 79개
 화약통(火藥筒) 1개
 기화기(起火機) 10개
 화전통(火箭筒) 10개 우비를 갖추
 기화승(起火升) 1백 25개

수자기(帥字旗) 1

대고(大鼓) 1좌 이상 훈련도감

2좌 금위영

1좌 어영청

고(鼓) 11좌 훈련도감

6좌 금위영

10좌 어영청

정(鉦) 6좌 훈련도감

6좌 금위영

5좌 어영청

환도(環刀) 2백 병 용호영

5백 병 훈련도감

1천 병 금위영

5백 병 어영청

41병 호위청(扈衛廳)

1백 병 충융청

2백 병 화성

1백 병 강화 내탕고의 군기를 옮겨온 것을 도로 보냄

부자(斧子) 12개 훈련도감

10개 금위영

10개 어영청

동대각(銅大角) 1쌍 훈련도감

2쌍 금위영

1쌍 어영청

곡나팔(曲喇叭) 1쌍

좌독(坐纛) 1좌 이상 금위영

대기치(大旗幟) 1건 38면(面) 훈련도감

1건 금위영

1건 화성

각 초색(哨色)에 있는 방색기치(方色旗幟) 및 전배기치(前排旗幟)는 모두 삼영(三營)에 나누어 소속시키고 기계(器械)·의갑(衣甲)·기치 등 물건 이외에 각 항목의 잡물 명색이 매우 많으나 긴요하지 않으니, 이는 형편에 따라 각 영에 나누어 준다.

책판질(冊板秩)

병학지남판(兵學指南板) 63립(立)

진도판(陣圖板) 81립

무예통지판(武藝通志板) 2백 13립 이상 금위영

壯勇營廨宇器械軍物區處別單

廨宇秩

本營

姑無適用之處，而庫舍完好，惠廳穀物，亦有儲峙者，權屬惠廳．

直房二

宣仁門外所在，則與冶所通，爲武藝廳入接之所，敦化門外所在，則付之都監．

北倉

還屬惠廳

器械軍物秩

內下物件依成冊還入

各色緞甲冑十五件都監

二十件禁營

十件御營

豆錫甲冑二件華城

各色印紋木甲冑四件

黑三升甲冑一百九十二件以上都監

一百件禁營

五十件御營

四十八件華城

鐵頭口三十八部

舊頭口四部

各色緞號衣二十件

木號衣八百五十五件

豆錫徽子二十三箇

黑三升挾袖七十領

木挾袖七百五十二領

紅木挾袖八領

掛子四百三十五領

靑三升掛子七十領

木掛子六百七十六領以上都監

長弓三百張龍虎營

七百九十二張都監

一千張禁營

六百張御營

幘弓三十六張龍虎營

二百張都監

五百張禁營

二百張御營

竹弓五百一張都監

二百張御營

校子弓一百張龍虎營

三百七十張都監

三百張禁營

三百張御營

六兩弓五張龍虎營

手弩弓二張都監

二張禁營

一張御營

弦一百十三箇

箇箇三十八部以上都監

二十部禁營

六兩箭一浮四十二箇 無鏃 龍虎營

別體箭八十四浮七箇都監

五十部御營

自筈長箭二十浮龍虎營

二十浮都監

二十浮御營

片箭二十浮龍虎營

二十一浮

無羽長箭六十浮

無羽片箭三十浮

令箭二浮一箇

貫耳箭二部

別筈長箭四十五浮一箇以上都監

筒兒五十八箇禁營

箭竹三百四十七浮九十三箇都監

一千浮禁營

片箭竹一百三十二浮

片竹二百十七張

四號母砲五門

五號母砲五門

虎蹲砲三位

鳥銃一千四百八十六柄以上都監

一千柄禁營

五百柄御營

二百柄華城

一百柄江華內帑庫軍器移來者還送

馬上鳥銃二百七柄

銅小銃十一柄

鐵三穴銃三十三柄以上都監

火藥二萬七千六百七斤六兩五錢五分禁營移來者還送

鉛丸三十一萬六千七百三十五箇都監

五十萬箇禁營

二十萬箇御營

子砲大鉛丸六百箇

中鉛丸六百箇

起火三百五十六枝以上都監

一百五十枝禁營

一百五十枝御營

中藥線三千八百八十二條

付結繩八百九十九把

火繩一千九百九十四圓

衝竹五十三箇

耳藥筒三箇

丸囊三箇

鉛火挿三十箇

火車二十乘 體鐵旗皮囊雨備竝具

以上都監

十一乘 體鐵旗皮囊雨備竝具

禁營

十一乘 體鐵旗皮囊雨備竝具

御營

硫黃一千二百斤

南飛筒三百六十箇

拒馬鎗一百八叢

銅甲釘一千箇

豆錫甲釘一千六百六十箇

銅甲葉三百三十五片

皮甲葉四十片

樺皮五十三同三十五張以上都監

五十同禁營

刁斗三百七十朶都監

甲冑皮籠一百三十九件

皮蓋一百五件

雕羽五十六箇以上禁營

雉羽二萬四千六百九十箇都監

四萬箇禁營

枷時木五百箇都監

一千箇禁營

四百二十箇御營

四百二十箇摠廳

槍柄木四百二十箇都監

五百五十箇禁營

四百箇御營

鞭棍木二百六十箇

弓槩木一千二百三十箇

車子三輛以上都監

二輛禁營

船二隻

步鞭棍一雙
皮劍十一雙
木旗槍十六柄
月刀十柄
雙鉤十雙
旗槍十柄
交戰槍十柄
木月刀二十五柄
木雙劍十六雙
木劍十雙
木交戰槍十六柄
朱絡六十雙
鞭棍二百十九箇以上都監
 一百五十箇龍虎營
朱杖一百箇
棍杖二百二十四箇
棍棒八雙
號笛四雙以上都監
 七雙禁營
 三雙御營
喇叭三雙一隻都監
 六雙禁營
 三雙御營
木大角十雙
鑼一坐
長鼓二坐
摔鎗十五箇
斫刀七箇
馬鞍九十二部
木布帛一千九十三件
象毛五百八十五箇
扁擔四十五箇
戰巾三百十一頂

藍禾紬戰帶七百九十六件

青木戰帶一百八十一件

行纏六百三十五箇

戰笠六箇

紫帽子十二立

木襪二十四隻

朱笠七十九箇

火藥筒一箇

起火機十箇

火箭筒十箇 雨備具

起火升一百二十五箇

帥字旗一

大鼓一坐以上都監

二坐禁營

一坐御營

鼓十一坐都監

六坐禁營

十坐御營

鉦六坐都監

六坐禁營

五坐御營

環刀二百柄龍虎營

五百柄都監

一千柄禁營

五百柄御營

四十一柄扈衛廳

一百柄摠廳

二百柄華城

一百柄江華內帑庫軍器移來者還送

斧子十二箇都監

十箇禁營

十箇御營

銅火角一雙都監

二雙禁營

一雙御營

曲喇叭一雙

坐纛一坐以上禁營

大旗幟一件三十八面都監

一件禁營

一件華城

各哨色所在，方色旗幟，及前排旗幟，竝分屬三營．

器械・衣甲・旗幟等件外，各項雜物名色甚多，亦無

關緊，此則從便分給各營．

冊板秩

兵學指南板六十三立

陣圖板八十一立

武藝通志板二百十三立以上禁營

<비변사등록 193책, 순조 2년 1802년 09월02일(음)>

경제/재정

壯勇營의 屯土 區處別單

장용영 둔토(屯土) 구처 별단

부안(扶安)·고부(古阜) 둔(屯) 세전(稅錢) 1천 6백 냥

고성(固城) 둔 세미(稅米) 1백 5석

김해(金海) 둔 세전(稅錢) 8백 냥

창원(昌原) 둔 세전 2백 냥

횡성(橫城) 둔 세전 1천 3백 냥

포 8동

홍천(洪川) 둔 세전 2천 8백 냥

이상은 본래 수어청에서 급대한 땅으로 장용영에 이속된 후 값을 주고서 더 사기도 하고 측량하여 이정(釐正)하기도 하였는데, 매년 총액을 정하여 세금을 거둔 것이 도합 8천 1백 30 냥이다. 장용영이 지금 이미 혁파되어 수어청에서 거둔 쌀의 대전 6천 냥을 일찍이 장용영에 납부해 오던 것을 호조에 이속시켜서 급대의 수요로 삼게 하였기 때문에 위 항목의 둔토를 도로 광주(廣州)에 내어 주었는데 이것을 가지고 저것에 견주면 가위 큰 것을 가지고 작은 것으로 바꾸었다고 할 만하나, 토지의 소출은 간혹 남거나 모자라는 근심이 없지 않고 해부의 교리(校吏)가 세를 거둘 때 혜택을 입는 도리 역시 생각하지 않을 수 없으니, 손익(損益)의 의의에 있어서 비교하여 계산할 필요는 없다. 전체 숫자를 도로 소속시켜서 본부 1만 석의 감조(減糶) 축모(縮耗)의 폐단을 구체하게 한다.

어지(於支) 둔 세전 4천 냥

본래 어영청의 둔전을 연천(漣川) 등 네 둔의 급대로 장용영에 이속된 것인데, 올해부터는

도로 서로 바꾼다.

진위(振威) 둔 세조(稅租) 2백 73석

음죽(陰竹) 둔 세조 1백 50석

연천(連川) 둔 세전 4백 냥

시흥(始興) 둔 세전 2백 냥

이상은 본래 장용영의 둔전으로 어영청의 어지 둔과 서로 바꾼 것인데, 지금은 이미 도로 서로 바꾸었으므로 올해부터는 모두 균역청에 소속시켜 각기 그 소재한 고을로 하여금 세를 거두어서 상납하게 하여 경사(京司)에서 급대하는 수요로 삼는다.

봉산(鳳山) 둔 세전 2만 3천 냥

황주(黃州) 둔 세전 3백 냥

옹진(瓮津) 둔 세전 8백 58냥

안주(安州) 둔 세전 1천 냥

박천(博川) 둔 세전 4천 냥

장흥(長興) 둔 세미 1천 석

정주(定州) 둔 세전 4천 냥

진위(振威) 둔 세조 4백 50석

고양(高陽) 둔 세전 3백 냥

김포(金浦) 둔 세전 2백 냥

지평(砥平) 둔 세미 50석

태 9석

전 1천 1백 37냥

양근(楊根) 둔 세전 4백 57냥

가모(加毛) 둔 세전 6백 냥

전관(箭貫) 채전(菜田) 세전 19냥

흥덕동(興德洞) 포전(圃田) 세전 5백 냥

도저동(桃楮洞) 포전 세전 22냥

연곡사(鰲谷寺) 백지(白紙) 7백 권

이상은 내수사(內需司) · 군향청(軍餉廳) · 수진궁(壽進宮) · 명례궁(明禮宮) · 육상궁(毓祥宮) 및 각 궁방 토지의 급대토(給代土)로서 장용영에 이속시키고, 또 값을 주고 더 사서 보태고 비충(比攄)하여 세를 거둔 것인데 장용영이 혁파된 후에는 일일이 본처(本處)로 도로 환속시켜 마땅한 일이나 노비공(奴婢貢)의 급대를 달리 구획할 방법이 없으므로 위 항목의 각 둔을 모두 내수사(內需司)에 소속시키고 내수사에서 담당하여 세를 거두어, 본사(本司)의 급대와 각 궁의 급대를 모두 이 가운데에서 마련해 내어 해사에서 급대하도록 한다. 연곡사의 백지에 있어서는 세를 납부하는 것 이외에 또한 값을 주고 더 뜯는 것이 그 수량이 7백 권이나, 값을 주고 더 뜯는 것은 지금 논할 것이 없으므로 내수사로 하여금 다른 속사(屬寺)의 예에 따라 단지 응당 납부해야 할 세지(稅紙)만 받게 한다. 장흥의 세미는 호남 영주인(營主人)의 역가(役價)를 가지고 환록하여 저치(儲置)해서 경청(京廳)에서 곧바로 장용영에 수송하던 것인데 금년부터는 환록하여 저치하는 것은 중단하고 곧바로 해사에서 다른 예에 따라 세를 거둔다.

수원(水原) 둔 세조(稅租) 3백 80석

전(錢) 48냥

안산(安山) 둔 세전 1백 80냥

시흥(始興) 둔 세전 2백 80냥

용인(龍仁) 둔 세전 2백 53냥

이상은 값을 주고 사서 둔전으로 만들어 세를 거두던 것이나, 외영(外營)을 혁파한 후에 화성(華城)의 사세(事勢)가 실로 어려움이 많은데 위 항목의 여러 둔은 모두 화성의 속읍(屬邑)에 있는 토지이기에 모두 수원부(水原府)에 이속시켜 공용에 보태 쓰게 한다.

장연(長淵) 둔 세전 6백 냥

광주(廣州) 둔 세전 6백 냥

가산(嘉山) 둔 세전 1천 4백 냥

고성(古城) 둔 세전 1천 5백 냥

영유(永柔) 둔 세전 60냥

공주(公州) 둔 세전 8백 4냥

이천(伊川) 둔 세전 1천 6백 75냥

용강(龍岡) 둔 세전 1천 냥

음죽(陰竹) 둔 세조 8백 석

전 80냥

파주(坡州) 둔 세미 1백 43석

전 5백 냥

이상은 본래 텅빈 이생지(泥生地:토사가 쌓여서 새로 생긴 땅)를 측량하거나 경외 각 아문에서 토지를 급대로 이속하거나 값을 주고 더 사들여 세를 거두던 것인데 이들은 올해부터는 모두 균역청(均役廳)에 소속시켜 각기 그 소재읍에서 세를 거두어 상납하게 해서 경사(京司)에서 급대하는 수요에 보태게 한다.

과천(果川) 둔 세전 2백 85냥

본래 값을 주고 사들인 밭으로 둔전을 만들어서 세를 거둔 것이다. 노량진(鷺梁鎭) 행궁(行宮)의 점화목(點火木)을 무녀(巫女)의 포세(布稅)로 구하여 썼는데, 무녀의 포는 과천에 환속 시키고 그 대신에 이 둔전을 해진(該鎭:노량진)에 획급하여 점화하고 청소하는 비용으로 삼는다.

배봉(拜峰) 둔 세미 40석

본래 값을 주고 사들인 밭으로 둔전을 만들어서 세를 거두던 것인데, 본둔(本屯)이 지금 이미 혁파되었고 목관(牧官)의 모든 접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으니 이를 해목(該牧)에 소속시켜 공용으로 삼는다.

외별고(外別庫) 소관의 유천(柳川)·평산(平山)·신천(信川) 둔 세조 작전(作錢) 1천 4백 30냥

장수사(長水寺) 세전 2백 냥

수성고(修城庫) 소관의 대유(大有) 둔 도지조(賭地租) 6백 90석

무오년(戊午年) 매득답(買得畓) 도지조 72석

완천고(莞千庫) 소관의 화소(火巢) 내 세조 작전 2천 1백 냥

연산(連山) 둔 세조 작전 1천 냥

평신(平薪) 둔 세곡 9백 석

아병(牙兵) 수포(收布) 7백 냥

이상은 본래 외영 소관으로 그대로 수원부에 소속시킨다.

壯勇營屯土區處別單

扶安・古阜屯 稅錢一千六百兩

固城屯 稅米一百五十石

金海屯 稅錢八百兩

昌原屯 稅錢二百兩

橫城屯 稅錢一千三百兩 布八同

洪川屯 稅錢二千八百兩

以上，本以守禦廳給代土，移屬壯營後，或給價 添買，或打量釐正，每年定摠收稅，合爲八千一百三十兩矣，壯營今既革罷，而守禦廳收米代 錢六千兩之曾納於壯營者，移屬戶曹，以爲給代之需，故右項屯土，還爲出給於廣州，以此較 彼，可謂以大易小，而土地所出，或不無贏縮之患，該府校吏收稅之際，沾溉之道，亦不可不念，其在損益之義，不必較計，全數還屬，俾掾本府 一萬石減糶縮耗之弊。

於支屯 稅錢四千兩

本以御營廳屯，以漣川等四屯給代，移屬壯營，自今年爲始，還爲相換。

振威屯 稅租二百七十三石

陰竹屯 稅租一百五十石

漣川屯 稅錢四百兩

始興屯 稅錢二百兩

以上，本以壯營屯與御廳於支屯相換，今既還爲 相換，自今年竝屬之均廳，令各其所在邑，收稅 上納，以補京師給代之需。

鳳山屯 稅錢二萬三千兩

黃州屯 稅錢三百兩

瓮津屯 稅錢八百五十八兩

安州屯 稅錢一千兩

博川屯 稅錢四千兩

長興屯 稅米一千石

定州屯 稅錢四千兩

振威屯 稅租四百五十石

高陽屯 稅錢三百兩

金浦屯 稅錢二百兩

砥平屯 稅米五十石 太九石 錢一千一百三十七兩

楊根屯 稅錢四百五十七兩

加平屯 稅錢六百兩

箭串菜田 稅錢十九兩

興德洞圃田 稅錢五百兩

桃楮洞圃田 稅錢二十二兩

薦谷寺白紙七百卷

以上，以內司・餉廳・壽進・明禮・毓祥宮，及各宮房 土地給代土，移屬壯營，又給價添買，比摠收稅 者，罷營之後，事當一一還屬本處，而婢貢給代，既無從他區劃之道，則右項各屯，皆屬內需司，自內需司句管收稅，本司給代，與各宮給代，皆 從此中辦出，以爲自該司給代之地，至於薦谷 寺白紙，則稅納之外，亦有給價添浮者，其數爲 七百卷，而給價添浮，今無可論，令內司依他屬 寺例，只收應納稅紙，長興稅米，則以湖南營主 人役價，換錄儲置，自京廳直爲輸送壯營矣，今 年爲始，換錄儲置，置之，直自該司，依他例收稅。

水原屯 稅租三百八十石錢四十八兩

安山屯 稅錢一百八十兩

始興屯 稅錢二百八十兩

龍仁屯 稅錢二百五十三兩

以上，給價買得，作屯收稅者，而外營革罷之後，華城事勢，實多苟艱，右項諸屯，俱是華城屬邑 所在之土地，竝爲移屬水原府，以補公用之地。

長淵屯 稅錢六百兩

廣州屯 稅錢六百兩

嘉山屯 稅錢一千四百兩

古城屯 稅錢一千五百兩

永柔屯 稅錢六十兩

公州屯 稅錢八百四兩

伊川屯 稅錢一千六百七十五兩

龍岡屯 稅錢一千兩

陰竹屯 稅租八百石錢八十兩

坡州屯 稅米一百四十三石錢五百兩

以上，本以泥生空曠處打量，及京外各衙門土 地之給代移屬，與給價添買收稅者，此則自今年竝屬之均役廳，令各其所在邑，收稅上納，以 補京司給代之需。

果川屯 稅錢二百八十五兩

本以給價買得之田，作屯收稅者，鷺梁鎮行 宮點火木，以巫女布稅需用矣，巫女布，則還屬 果川，其代以此屯劃給該鎮，以爲點火修掃之 資。

拜峯屯 稅米四十石

本以給價買得之田，作屯收稅者，本屯今既罷，爲牧官凡百接濟，不可不念，以此屬之該牧，以 爲公用之地。

外別庫所管，柳川・平山・信川屯 稅租作錢一千四百三十兩

長水寺 稅錢二百兩

修城庫所管大有屯 賭地租六百九十石

戊午買畝 賭地租七十二石

筓千庫所管火巢內 稅租作錢二千一百兩

連山屯 稅租作錢一千兩

平薪屯 稅穀九百石 牙兵收布七百兩

以上, 本是外營所管, 仍屬水原府.

<비변사등록 193책, 순조 2년 1802년 09월02일(음)>

경제/재정

壯勇營 前提調 金祖淳이 本營에서 빌려준 돈을 華城府의 公用으로 쓰는 문제를 논의하다

○ 같은 날 입시하였을 때에 장용영 전 제조(壯勇營前提調) 김조순(金祖淳)이 아뢰기를, “본영의 전곡(錢穀) 둔토(屯土)의 구처(區處)를 이제 막 별단(別單)으로 갖추어 입계(入啓)하였습니다. 화성부(華城府)에 내하(內下)한 것과 본영의 돈으로 나누어 빌려 준 것이 있어 수량이 4~5만 냥에 가까운데, 그 가운데에도 혹 받아들여야 할 것이 있으나 본영이 이미 혁파되고 급대(給代) 또한 이미 배비(排比)하였으니, 이 돈이 귀속될 곳이 없습니다. 지금 화성의 형세는 진념(軫念)해야 할 도리가 있고 또 대황교(大黃橋)를 새로 건설하는 일을 유수(留守)가 바야흐로 경영하고 있는데 물력(物力)이 매우 어렵다고 합니다. 신의 생각에는 이 돈을 모두 본부에 소속시켜서 유수로 하여금 문부(文簿)를 상세히 열람하여 탕감할 수 있는 것은 탕감하고 징수할 수 있는 것은 징수하여 해마다 안배하여 본부의 공용에 보태 쓰게 하는 것이 좋을 듯하기에 감히 이처럼 우러러 아뢰옵니다.” 하니, 임금의 그리하라 하였다.

同日入侍時, 壯勇營前提調金祖淳所啓, 本 營錢穀屯土區處, 纔已具別單入啓矣, 華城府有 內下及本營錢之散貸者, 數近四五萬兩, 而其中或有指徵無處者, 或 有可以收捧者, 而本營既罷, 給代亦已排備, 則此錢 無所歸屬, 見今華城事勢, 合有軫念之道, 且大皇橋 新建之役, 留守方爲經紀, 而物力甚艱云, 臣意則此 錢都屬本府, 使留守詳閱文簿, 可以蕩減者蕩減, 可 以徵捧者徵捧, 排年充補, 用於本付公用, 似好, 故敢 此仰達矣, 上曰, 依爲之.

<비변사등록 193책, 순조 2년 1802년 09월05일(음)>

경제/재정

華城留守 鄭大容이 華寧殿의 部將 이하 員役 등의 朔料와 衣資를 마련하는 문제를 논의하다

9월 15일 약방(藥房)의 입진(入診)에 대신과 비국당상을 인견하여 입시하였을 때에 화성유수(華城留守) 정대용(鄭大容)이 아뢰기를, “화녕전(華寧殿)의 부장(部將) 이하 원역(員役) 등의 삭료(朔料)와 의자(衣資)를 미처 마련하지 못하여, 신유년(辛酉年:순조1, 1801) 5월부터 금년 9월까지의 모두 본부의 창고에 비축된 것으로 변통하여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달은 내외영(內外營)의 전곡(錢穀) 별단을 이미 계하(啓下)하였으므로 구획한 것에서 분배하고, 이미 빌려 쓴 것은 각 창고의 수용(需用)이 각각 귀속된 곳이 있으므로 줄곧 허류(虛留)하게 할 수 없습니다. 경신년조(庚申年條:순조 즉위년, 1800)로 봉류(捧留)한 대동미(大同米) 가운데 남아 있는 5백 15석 영으로 빌려 쓴 수량을 충당해 갚을 수 있으니, 대신에게 하문하여 처리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임금의 말하기를, “대신의 뜻은 어떠한가?” 하였다.

영의정 심환지(沈煥之)가 말하기를, “내외영의 전곡을 별단으로 구처(區處)한 것 가운데 해부(該府)에 획부(劃付)해준 수가 넉넉히 여유가 있으니 대동미의 여유분에서 가져다 쓸 필요가 없이 구획한 것 가운데에서 변통하여 두 해의 식료와 의자에 빌려서 지급한 것을 충당해서 갚는 것도 무방하겠습니다.” 하니, 임금의 그리하라 하였다.

또 아뢰기를, “능소(陵所)에 나무를 심는 물력(物力)을 저치미(儲置米)로 회감(會減)하고 부족한 수는 본부의 외탕고(外帑庫)에서 내려 주도록 이미 성명(成命)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해고(該庫)에 남아 있는 것이 이미 다하여 본부의 부족한 수는 대신이 연품(筵稟)하여 저치고(儲置庫)의 돈으로 회감(會減)하였습니다. 다섯 속읍(屬邑)의 부족한 수는 달리 변통할 길이 없는데 시흥(始興)·과천(果川)에도 외탕고가 있어 쌀과 돈이 남아 있으므로 본읍과 다른 속읍의 부족한 수량을 비교해서 분배하여 구획한다면 넉넉히 여유가 있을 것이니, 대신에게 하문하여 처리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임금의 말하기를, “대신의 뜻은 어떠한가?” 하였다.

영의정 심환지가 아뢰기를, “두 고을의 외탕고에 쌀과 돈의 여유분 비축이 있어 분배하여 구획하기에 넉넉하니, 아뢴 바에 따라 시행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하니, 임금의 그리하라 하였다.

今九月十五日藥房入診, 大臣·備局堂上引見入侍時, **華城留守**鄭大容所啓, 華寧殿部 將以下, 員役等朔料衣資, 未及磨鍊, 自辛酉五月, 今年九月至, 皆以本府庫儲, 推移上下矣, 來朔則內外 營錢穀別單, 既已啓下, 就區劃中分排, 而至於已貸用者, 各庫需用, 各有歸屬, 不可一向虛留, 庚申條 捧留大同米, 餘在五百十五石零, 庶可以充報貸下之數, 下詢大臣處之何如, 上曰, 大臣之意何如, 領議政沈曰, 內外營錢穀別單區處之中, 該府劃付之數, 綽有餘裕, 則不必取用於大同餘米, 就其區劃中, 推移充報於兩年朔料衣資之貸下者, 亦無妨矣, 上曰, 依爲之.

又所啓, 陵所植木物力, 以儲置米會減, 不足之數, 則自本府外帑庫上下事, 既有成命, 而該庫遺在已盡, 本府不足之數, 則以貯置庫錢, 大臣筵稟會減矣, 至於五屬邑不足之數, 他無變通之道, 始 興·果川, 亦有外帑庫, 而米錢遺在, 較量於本邑, 與他屬邑不足之數, 分排區劃, 綽有餘裕, 下詢大臣處之何如, 上曰, 大臣之意何如, 領議政沈曰, 兩邑外帑庫, 有米錢餘儲, 足以分排區劃, 則依其所奏施行似好矣, 上曰, 依爲之.

<비변사등록 193책, 순조 2년 1802년 09월16일(음)>

경제/재정

壯勇營에 현재 있는 銀·錢·米·木·布를 구처하는 別單을 써서 올리다

비변사에서 아뢰기를, “장용영(壯勇營)에 현재 있는 은(銀)·전(錢)·미(米)·목(木)·포(布)를 구처(區處)하는 별단(別單)을 써서 올립니다. 감히 아웁니다.” 하니, 알았다고 답하였다.

장용영(壯勇營)에 현재 있는 은(銀)·전(錢)·미(米)·목(木)·포(布)를 구처(區處)하는 별단(別單)

천은(天銀) 8천 5백 41냥 9전

정은(丁銀) 3천 8백 9냥 9전

전문(錢文) 13만 7천 1백 66냥 7전 9푼

미(米) 1만 1천 2백 80석 2두 4승 2홉 9작

목(木) 4백 27동 21필 14척 9촌 5푼

포(布) 62동 40필 32척 4촌

노비공(奴婢貢)을 양년조(兩年條)에 마련한 수

호조(戶曹) 공전(貢錢) 9만 4천 2백 2냥 7전 2푼 급대 외공(外貢)도 모두 포함됨

전 4만 82냥 8푼 본영(本營)의 돈으로서 진휼청(賑恤廳)에 남아 있는 것을 차례대로 수송할 것임

미 1만 1천 2백 80석 2두 4승 2홉 9작 별고(別庫)에서 사온 쌀 3천 석이 모두 포함됨. 본영에 있는 절전(折錢)은 4만 5천 1백 20냥 6전 4푼임

목 90동 본영에 있는 절전이 9천 냥임.

봉상시(奉常寺)의 공전 60냥 급대

목 30필 본영에 있음.

성균관(成均館)의 공전 16냥 급대

목 8필 본영에 있음.

내수사(內需司)의 공전 2만 6백 78냥 9전 6푼 급대

목 2백 6동 39필 17척 본영에 있음.

육상궁(毓祥宮)의 공전 7백 97냥 9전 4푼 급대

목 7동 48필 34척 본영에 있음.

선희궁(宣禧宮)의 공전 2백 96냥 8전 급대

목 2동 41필 14척 본영에 있음.

명례궁(明禮宮)의 공전 1천 3백 18냥 1전 8푼 급대

목 13동 9필 3척 본영에 있음.

수진궁(壽進宮)의 공전 3천 4백 20냥 4전 급대

목 34동 10필 7척 본영에 있음.

어의궁(於義宮)의 공전 5백 95냥 7전 6푼 급대

목 5동 47필 31척 본영에 있음.

용동궁(龍洞宮)의 공전 1천 6백 23냥 4전 급대

목 16동 11필 25척 본영에 있음.

영빈방(寧嬪房)의 공전 2백 24냥 급대

목 2동 12필 본영에 있음.

이상 전 4만 82냥 8푼

미 1만 1천 2백 80석 2두 4승 2홉 9작

목 3백 80동 15필 26척

이 전·미·목은 각사(各司) 및 내수사(內需司), 각 궁방(宮房)의 신유년(辛酉年:순조1, 1801)·임술년(壬戌年:순조2, 1802) 두 해의 노비공을 이대로 마련하여 급대(給代)할 것임. 급대한 이외의 나머지 수

천은(天銀) 3천 3백 41냥 9전 2푼 본영에 있음.

5천 2백 냥 평안 병영(平安兵營)에 있음.

정은(丁銀) 3천 8백 9냥 9전 본영에 있음.

전문(錢文) 5백 44냥 3전 6푼 본영의 전으로서 진휼청에 있는 것을 차례로 수송할 것임.

8천 21냥 3전 2푼 본영의 모곡(耗穀)을 작전(作錢)한 것 가운데 선혜청(宣惠廳)과 서로 바꾼 것으로 내년(來年)에 수송할 것임.

2만 8천 냥 영남감영·평안감영·통영(統營)의 별비전(別備錢) 및 호조와 선혜청에서 옮겨온 돈 합계 2만 5천 2백 냥을 화성(華城)의 성역(城役)에 꾸어 주었다가 다시 갚는 조목으

로서 갑자년(甲子年:순조4, 1804)까지 해마다 배분해서 수송하되 부족한 돈 2천 8백 냥은 금위영(禁衛營)·어영청(御營廳) 두 영의 정번전(停番錢)에서 전에 떼어 준 것으로 계산에서 제할 것임.

5천 냥 영남감영에 있음.

4천 84냥 7전 1푼 본영에 돈으로 유지한 백자판(栢子板) 6백 90립(立)과 사절판(四折板) 2백 30립을 모두 포함한 것으로 호조에서 편의대로 구처할 것임.

5만 1천 4백 34냥 3전 2푼 화성의 경신년(庚申年:순조 즉위년, 1800) 모곡으로 화성에서 시기를 기다려 발매해서 수송할 것임.

목 47동 5필 28척 9촌 5푼 본영에 있음.

포 22동 40필 32척 4촌 본영에 있음.

40동 선혜청에 있음.

이상 천은 8천 5백 41냥 9전 2푼

정은 3천 8백 9냥 9전

전 9만 7천 84냥 7전 1푼

목 47동 5필 28척 9촌 5푼

포 62동 40필 32척 4촌

이는 노공(奴貢) 양년조를 급대하고 남은 수의 전조(錢條)인데 이 가운데에는 비록 마땅히 받아야 하는 연조(年條)에 도착하지 않은 것이 있기는 하나 모두 호조에 획급하고 각 아문에서 받는 바에 따라 차례로 수송해서 훈국(訓局)에 이속된 군병(軍兵)을 접제하는 비용으로 삼는다.

司啓曰, 壯勇營時在銀·錢·米·木·布區處別單書 入之意, 敢啓, 答曰, 知道.

壯勇營時在銀錢米木布區處別單

天銀八千五百四十一兩九錢

丁銀三千八百九兩九錢

錢文十三萬七千一百六十六兩七錢九分

米一萬一千二百八十石二斗四升二合九夕

木四百二十七同二十一疋十四尺九寸五分

布六十二同四十疋三十二尺四寸

奴婢貢兩年條磨鍊數

戶曹貢錢九萬四千二百二兩七錢二分代 外貢竝入

錢四萬八十二兩八分 以本營錢之留在賑廳者鱗次輸送次

米一萬一千二百八十石二斗四升二合九夕 別庫買米三千石竝入本營在折錢四萬五千一百二十兩六錢四分

木九十同 本營在折錢九千兩

奉常寺貢錢六十兩代

木三十疋 本營在

成均館貢錢十六兩代

木八疋 本營在

內需司貢錢二萬六百七十八兩九錢六分代

木二百六同三十九疋十七尺 本營在

毓祥宮貢錢七百九十七兩九錢四分代

木七同四十八疋三十四尺 本營在
 宣禧宮貢錢二百九十六兩八錢代
 木二同四十一疋十四尺 本營在
 明禮宮貢錢一千三百十八兩一錢八分代
 木十三同九疋三尺 本營在
 壽進宮貢錢三千四百二十兩四錢代
 木三十四同十疋七尺 本營在
 於義宮貢錢五百九十五兩七錢六分代
 木五同四十七疋三十一尺 本營在
 龍洞宮貢錢一千六百二十三兩四錢代
 木十六同十一疋二十五尺 本營在
 寧嬪房貢錢二百二十四兩代
 木二同十二疋 本營在
 以上錢四萬八十二兩八分
 米一萬一千二百八十石二斗四升二合九夕
 木三百八十同十五疋二十六尺
 以此錢・米・木，各司及內需司各宮房辛酉・壬戌兩年奴婢貢，依此磨鍊給代次。
 給代外餘數
 天銀三千三百四十一兩九錢二分 本營在
 五千二百兩 平安兵營在
 丁銀三千八百九兩九錢 本營在
 錢文五百四十四兩三錢六分 以本營錢之留在 賑廳者鱗次輸送次
 八千二十一兩三錢二分 以本營耗穀作錢 之與惠廳互換者待明年輸送次
 二萬八千兩 以嶺營箕營統營別備錢及戶 惠廳移來錢合二萬五千二百兩之華城城 役貸下還報
 條限甲子排年輸送而不足錢 二千八百兩以禁御兩營停番錢前已劃付 者計除次
 五千兩 嶺營在
 四千八十四兩七錢一分 以本營錢留置栢 子板六百九十立四折板二百三十立竝入 自戶曹從便
 區處次
 五萬一千四百三十四兩三錢二分 華城庚 申耗穀價自華城待時發賣輸送次
 木四十七同五疋二十八尺九寸五分 本營在
 布二十二同四十疋三十二尺四寸 本營在
 四十同 惠廳在
 以上天銀八千五百四十一兩九錢二分
 丁銀三千八百九兩九錢
 錢九萬七千八十四兩七錢一分
 木四十七同五疋二十八尺九寸五分
 布六十二同四十疋三十二尺四寸
 此是奴貢兩年條，給代餘數錢條中，雖有當捧年 條之未屆者，而竝爲劃付戶曹，自各衙門隨所
 捧，鱗次輸送，以爲訓局移屬軍兵接濟之資。
 <미변사등록 193책, 순조 2년 1802년 10월01일(음)>

경제/재정

宣惠廳堂上 趙鎮寬이 이번 陵幸에 들어가는 物力을 마련하는 문제에 대해 논의하다

6월 19일 대신과 비국당상을 인견하여 입시하였을 때에 선혜청당상(宣惠廳堂上) 조진관(趙鎮寬)이 아뢰기를, “저번에 경기감사 서영보(徐榮輔)가 아뢰는 바로 인하여 시흥(始興)과 과천(果川)의 연로(輦路:거동길)의 교량(橋梁)에 사용되는 물력(物力)을 처음에는 장용영(壯勇營)의 곡식으로 지급하였다가, 장용영이 철폐(撤罷)된 뒤에는 물력이 나올 곳이 우선 확실하게 정해지지 않아 선혜청(宣惠廳)에서 마련하여 지급하도록 묘당에서 전에 이미 연품(筵稟)하여 윤허를 받았으나 전부터 행행(行幸)할 때에 들어가는 물력은 모두 저치미(儲置米)로 회감(會減)하기 때문에 저치미 7천 석을 병진년(丙辰年:정조20, 1796)부터 시작하여 매년 경기감영에 획급(劃給)해 주고, 크고 작은 일을 물론하고 경기감영에서 헤아려 회감하도록 정식(定式)하였습니다. 그러나 화성(華城)의 원행(園行:원소의 행차)을 선조(先朝:정조) 때에는 매년 거동하였기 때문에 경기감영에서 회감하게 하지 않고 특별히 장용영에서 구획하게 하였으나, 지금은 능행(陵幸:능소의 행차)의 사체가 자별하고 경기감영에는 전부터 능행 때에 회감하는 저치미가 있으므로 아마도 별도로 경청(京廳:선혜청의 경청임)에서 구획할 필요는 없을 듯하니 대신(大臣)에게 하순(下詢)하여 처리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대신의 뜻은 어떠한가? 하였다. 좌의정 이시수(李時秀)는 말하기를, “원행할 때에 교량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일들을 모두 장용영의 내·외영(內外營)에서 거행한 것은, 대체로 백성의 힘을 수고롭게 하지 않고 경비를 번거롭게 하지 않으시려는 성상(聖上)의 뜻에서 나온 것이나 지금은 사체가 전과는 다른 바가 있으니 경기감사가 이전대로 획급하기를 청한 것은 사실 사체가 그래서이나 해청(該廳)에 있어서는 7천 석의 정식(定式) 외에 더 획급하는 것은 어려울 듯합니다.”

하고, 우의정 김관주(金觀柱)는 말하기를, “예전에 원행할 때에는 이미 별반으로 획하(劃下)한 수(數)가 있었으니 지금 경기감영에서 예(例)대로 획급을 청한 것은 참으로 괴이할 것이 없겠으나 다만 지금은 사체가 전과는 다름이 있으니 해청에서 원래의 정식 외에 허시(許施)하지 않고자 하는 것은 사리(事理)에 당연합니다. 신의 뜻은 좌상(左相)이 아뢰는 바와 다름이 없습니다.” 하니, 임금이 그리하라 하였다.

今六月十九日大臣備局堂上引見入侍時, 宣惠廳堂上趙鎮寬所啓, 頃因京畿監司徐榮輔所啓, 始興·果川輦路橋梁物力, 初以壯營穀上下, 壯營撤罷後, 物力出處, 姑無指的, 令惠廳磨鍊上下事, 廟堂前已筵稟蒙允矣, 從前幸行時, 所入物力, 皆以儲置米會減, 故儲置米七千石, 丙辰爲始, 每年劃付畿營, 毋論巨細, 自畿營酌量會減事定式, 然而華城園幸, 在先朝時, 以每年動駕之故, 不令畿營會減, 而特以壯營區劃, 今則陵幸事體自別, 而畿營自有陵幸會減之儲置米, 恐不必別以京廳區劃, 下詢大臣處之何如, 上曰, 大臣之意何如, 左議政李曰, 園幸時不但橋梁而已, 凡諸等事, 皆自內·外營舉行, 蓋出於不勞民力, 不煩經費之聖意, 而今則事體與前有異, 畿伯之依前請劃, 固其勢也, 而在該廳則七千石定式之外, 似難加劃矣, 右議政金曰, 昔在園幸時, 既有別般劃下之數, 則到今畿營之依例費給, 誠亦無怪, 而但今事體與前有異, 則該廳之不欲原式外許施, 事理當然, 臣意與左相所達無異矣, 上曰, 依爲之.

<비변사등록 195책, 순조 4년 1804년 06월23일(음)>

경제/재정

강화유수가 화성에 이속된 관서의 소미와 태안의 미태를 도로 강화에 부쳐주길 청하다

8월 4일 대신과 비국당상을 인견하여 입시하였을 때에 좌의정 서매수(徐邁修)가 아뢰기를, (….) 또 아뢰기를, “이것은 강화유수(江華留守) 오재소(吳載紹)의 장계입니다. 본부(本府)의 수문(水門) 등 여러 곳이 수해를 입어 무너져 내린 상황을 갖추 아뢰고, 이어 이르기를 ‘당장 보기에 그지없이 절박하므로 결코 시간을 늦출 수 없으나 사역(事役)이 본래 방대하여 들어가는 물력(物力)이 1만여 금(金)을 밑돌지 않으니, 지금 본부의 형편으로는 사실 마련할 방도가 없으므로 경중(京中)의 어떤 아문(衙門)의 돈이든지 5천 냥을 얼른 빌려 주게 하시고 이에 앞서 본부에서 관리하던 관서(關西)의 소미(小米:좁쌀) 5백 석과 태안(泰安)의 미태(米太:쌀과 콩) 5백 석을 **화성(華城)**에 이속(移屬)했던 것도 금년 가을부터 본부에 도로 부쳐주면, 수문과 부성(府城)과 돈대(墩臺) 등처(等處)를 차례로 수리 완성할 수 있으니 아울러 묘당에서 품지하여 분부하게 하소서.’ 하였습니다. 보장(保障)의 땅은 사체가 지극히 중한데 이번에 재해를 입은 것이 이와 같이 극히 심합니다. 수문 등을 수축(修築)하는 일을 지금 경영하지 않을 수 없으나 다만 본부의 사력(事力)이 원래부터 넉넉하지 못하니 사체가 별도로 구획(區劃)하여야 하겠는데 경아문(京衙門)에서는 추이(推移)하여 빌려줄 방도가 없습니다. 본부에서 전에 구관하였던 관서의 소미조(小米條)는 이미 **화성**이 속하였으며, 태안의 전세조(田稅條)는 이미 **화성**으로부터 지부(地部:호조)에 귀속(歸屬)되었으므로 지금은 논할 것이 없고 오직 **화성** 속읍(屬邑)의 둔세(屯稅)는 **장용영(壯勇營)**이 철폐(撤罷)된 뒤부터 달리 귀속된 곳이 없어 우선 비국(備局)에서 구관(句管)하는데, 그 수가 매년 2천 냥 영(零)이 되고 이보다 앞서 남겨 저축한 것도 3천이 넘으니 이 현전(見錢:현금)과 본돈(本屯)을 아울러 본부에 귀속시켜 한편으론 목전의 공비(工費)로 쓰게 하고, 한편으론 연후의 첨향(添餉)할 밑천으로 삼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임금의 그리하라 하였다. (….)

今八月初四日大臣備局堂上引見入侍時, 左 議政徐所啓, (….) 又所啓, 此江華留守吳載紹狀啓也, 備陳本 府水門等諸處被水頽圯之狀, 仍以爲, 目下所見萬萬悶迫, 決不可玩愒時日, 而事役本是浩大, 所入物力不下萬餘金, 以今本府事勢, 實(無脫?) 措辦之路, 京中某 衙門錢五千兩, 亟令貸下, 前此本府所管關西小米 五百石及泰安米太五百石之移屬**華城**者, 亦令自 今秋還付本府, 則水門・府城及墩臺等處, 自可次第 繕完, 竝請令廟堂稟旨分付矣, 保障之地, 事體至 重, 而今此被災若是孔酷, 水門等修築之役, 不可不及今經紀, 但本府事力自來不敷, 勢當別爲區劃, 而 京衙門則既無推貸之道, 本府曾前所管關西小米 條, 既屬**華城**, 泰安田稅條, 已自**華城**歸屬地部, 今無 可論, 而惟是**華城**屬邑屯稅, 自壯營撤罷後, 無他歸屬, 姑自備局句管者, 其數每年爲二千兩零, 而前此 留儲亦過三千, 以此見錢及本屯, 竝屬本府, 一以爲 目下工役之費, 一以爲來後添餉之資何如, 上曰, 依爲之. (….)

<비변사등록 195책, 순조 4년 1804년 08월05일(음)>

경제/재정

華城에 남겨둔 勅需米를 勅需라 부르지 말고 **華城**의 互換米라 부를 것을 청하다

비변사에서 아뢰기를, “작년 겨울 대왕대비전(大王大妃殿)의 하교(下敎)로 인하여, 유래한 공상(供上)을 줄이고 없앤 수(數)를 묘당에 내주시면서 환곡(還穀)의 폐단을 시정하는 대책으로 삼으라고 하신, 전교를 받들었습니다. 우리 대행 대왕대비전(大行大王大妃殿)께서 백성을 위하시는 오직 한 마음은 지극하지 않으신 것이 없어서 애처로워하신 사교(辭敎)를 누차 염유(簾帷:수렴(垂簾))에서 하셨고, 심지어 공미(供米)를 제감(除減)하여 백성의 폐단을 시정하게 하셨습니다. 신 등(等)이 칭송하고 흠양하여, 조금이나마 대양(對揚)할 수 있는

방도를 생각하였지만 그 대책을 강구하지 못하고 그러저럭 지금에 이르렀으니, 황공하고 부끄러운 생각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다만 삼가 생각하건데 유정지공(惟政之供: 토지에서 나오는 기본적인 조세)은 민간(民間)에서 나오는 것이어서 아문(衙門)의 급대(給代)소용으로 삼을 수 없는 것인데 감공단자(減供單子)를 가져다 보니 매년의 수효(數爻)가 2천 3백여 석이나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수효로는 비록 환곡의 폐단을 시정하고자 한다 해도 사실 맞추어서 배비(排比)할 도리가 없습니다. 지난번에 본사(本司)에서 모두 모였을 때에 제도(諸道)의 곡부(穀簿)를 가져다 대조하면서, 충분히 논의하고 검토해 보니, 그 중에서 경기(京畿) 칙수곡(勅需穀)의 일이 실로 걱정스러운 바가 있었습니다. 당초에 수효가 너무 많아 흑지부(地部: 호조)에 획급하여 작전(作錢)하여 쓰도록 하기도 하고, 혹 화성(華城: 수원)에 넘겨주어 여러 가지 급대(給代)에 쓰게 하기도 하여 남은 수가 많지 않은데 그나마도 연전(年前)에 칙사(勅使)를 맞는 비용으로 몽땅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기미년(己未年: 정조23, 1799) 이후로는 칙행이 줄을 이어 없는 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칙수(勅需)에 쓰이는 비용을 비록 상진청(常賑廳)에서 획급(劃給)하였지만, 백지(白地: 재원이 없이)로 조비(措備)하고 공사(公私)로 나이(挪移: 당겨다가 씀)하고 사후에 회감(會減)하고 하였으나 마침내는 무실(無實)하여 민읍(民邑)에 폐단을 끼치는 사단이 없을 수 있어서 전후(前後)의 도신(道臣)의 장계가 이어졌는데, 절미(折米)하여 수 만여 석을 청해 얻어야 만 지탱하여 쓸 수 있겠다 하였습니다. 이럴 즈음에 칙행이 뜻밖에 또 나왔으니 지금의 사세로는 부득불 장계에서 청한 대로 구획(區劃)하지 않을 수 없겠으나 본도(本道)의 곡부가 넉넉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것으로 환곡에 보태는 것은 폐단을 시정하려다 다른 폐단을 생기게 하기에 알맞으니, 우러러 본받는 본뜻이 아니므로 부득불 다른 데에서 변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칙수미(勅需米)를 화성에 넘겨줄 조(條) 2만 3천 석 안에서 1만 8천 석은 호조에 이획(移劃)하고, 남아있는 2천여 석은 모(耗)까지 아울러 경기감영에 환속(還屬)시켜 이전대로 칙수로 쓰게 하고 그 대충은 전역(殿役)할 때에 호조에서 청해 얻은 양남(兩南: 호남과 영남)의 곡식 절미하여 2만 석을 화성에 이획하게 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양남의 곡식 가격이 경기 고을과 높고 낮음이 같지 않아서 본부(本府)의 지방(支放)에 부족할 우려가 다분히 있으므로, 강도(江都)에 획급한 5읍의 둔세(屯稅) 군포(軍布)를 아울러 환속시켜 보태 쓰게 해야 하겠습니다. 양남의 곡식 2만 석은 기왕 경비(經費)로 청해 얻은 것이니, 그 대신은 감공미(減供米)로 우선 해조(該曹)에 획급하고, 2만 2천 석을 한년(限年)하여 다 갚은 뒤에는 해청(該廳)에 저축해 두라고 분부하며, 칙수미 중에서 화성에 그대로 있는 5천 석은 칙수(勅需)라고 칭할 수 없으니 화성의 호환미(互換米)라고 칭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희한다고 답하였다.

司啓曰, 昨冬因大王大妃殿下教, 移來供上 減罷之數, 出付廟堂, 以爲還弊釐正之策事, 奉承傳教矣, 惟我大行大王大妃殿爲民一念, 靡不用 極, 惻怛之辭教, 屢發於簾帷, 至有除減供米, 使之釐正民弊, 臣等莊誦欽仰, 思所以一分對揚之道, 而未究其策, 因循至今, 臣等不勝惶慙之至, 第伏念 惟正之供, 出自民間, 不可爲衙門給代之用, 而取見 減供單子, 則每年數爻爲二千三百餘石, 雖欲釐正 穀弊, 以此數爻, 實無相當排比之道矣, 頃於本司齊 會時, 取考諸道穀簿, 爛加商確, 則其中京畿勅需穀 事, 實有所可悶者, 以其當初數爻之夥然, 或劃給地 部, 以爲作錢取用, 或移付華城, 以爲諸般給代, 餘數 無多, 盡入於年前迎勅之需, 而自己未以後, 勅行頻仍, 無歲無之, 勅需所用, 雖自常賑廳劃給, 白地措備, 公私挪移, 後時會減, 畢竟無實, 不能無民邑貽弊之 端, 前後道臣狀報連續, 請得折米數萬餘石, 以爲支 用云, 此際勅行, 又出不意, 到今事勢, 不得不依狀請 區劃, 而本道穀簿, 非但不敷, 以此添還, 適足爲釐弊 生弊, 有非仰

體之本意，不得不從他變通，勅需米之 華城移付條二萬三千石內，一萬八千石戶曹移割，餘在二千餘石，竝耗還屬畿營，使之依前需用，其代，殿役時戶曹請得兩南穀折米二萬石，移割華城，而兩南穀價，與畿邑，多寡不侔，本府支放，多有不足之慮，以江都割給五邑屯稅軍布，竝還屬，以爲添補之地，兩南穀二萬石，既是爲經費請得之物，則其代，以減供米，姑爲割給於該曹，二萬二千石，限年準給之後，使之儲留於該廳之意分付，勅需米中華城仍在五千石，不可稱以勅需，以華城互換米稱名，何如，答曰，允。

<비변사등록 196책, 순조 5년 1805년 06월25일(음)>

경제/재정

매년 경기도의 儲置米 7千石에 대해 名色을 바꾸어 쓰지 못하게 할 것 등을 청하다

○ 비변사에서 아뢰기를, “전 경기감사 서형수(徐潁修)의 장계를 보니, 아뢰기를 ‘본도에 구획한 저치미 7천 석은 이전의 빚을 갚는 데 소비한 것이 거의 3분의 2를 넘었으므로 앞으로의 공용은 백지(白地)의 책응을 면하지 못합니다. 본도에서 갑진년(甲辰年:정조8, 1784)에 빌어 온 강도미(江都米) 1만 석에서 해마다 모조(耗條)를 취하여 금년에 이르러 갚아야 할 것이 8천 9백 38석 영(零)이며, 각 고을에 분산된 원곡은 8천 4백 80석 영이고, 그 모조에서 화성(華城)·시흥(始興)·과천(果川)에 획급하여 보낸 것이 6백 50석입니다. 지금 만약 세 고을에서 모조로 취한 6천 5백 석을 아무 고을의 구획곡(區劃穀)으로 명목을 바꾸고 그대로 회록(會錄)의 실수로 하며, 그 밖의 1천 60여 석은 강도로 이송하여 빌어 온 본곡 1만 석을 모두 갚고, 나머지 8백 40여 석은 취하여 본도의 저치미 가운데 쌓인 흙축을 보충한다면 거의 4분의 1을 마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도에 있는 장용영의 무조(賃租) 7만 석은 종전에 모두 나누었습니다. 임술년(壬戌年:순조2, 1802)에 장용영을 혁파한 뒤에 반분하도록 개작하였으나, 본도의 곡식 장부는 본래부터 넉넉하지 않아 해마다 가분하는 것이 수만 석을 밀돌지 않으니, 만약 이 곡식을 진분(盡分)할 수 있으면 번거롭게 장청하는 일을 제할 수 있습니다. 임술년 이후의 유고조(留庫條) 3만 5천 석을 내년부터 특별히 다 나누도록 하고, 그 모조를 본도에 획부(劃付)하여 넉넉하지 못한 저치미 대신 쓰는 밀천으로 삼도록 아울러 묘당에서 품지하여 분부하게 하소서.’ 하였습니다. 대체로 매년 본도에 구획하는 저치미 7천 석은 실로 한 해의 비용을 참작하여 넉넉하게 마련한 것이니, 족하든 부족하든 다시 선혜청을 번거롭게 하는 폐해가 없도록 한 것인데, 지금 이전의 빚을 갚는 데 다 썼다고 한 것은 전일에 모두 획급한 뜻과 아주 어긋납니다. 어찌 다른 곡식으로 별도의 명색을 삼아 점점 써서 없어지는 밀천으로 쓸 수 있겠습니까? 청한 바는 시행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갑진년에 빌어 온 강도미에서 갚지 않은 1천 60여 석은 바로 이송하도록 하고, 빌어 온 1만 석의 원곡을 이미 모두 갚았다면 본곡의 명칭을 바꾸는 것은 그만 둘 수 없으니, 청한 대로 시행해야 하겠습니다. 그 나머지 8백 40여 석은 우선 달리 부쳐둘 만한 아문이 없으니 비국의 구관곡(句管穀)에 첨부하고, 계묘년(癸卯年:정조7, 1783)에 기영(畿營)에서 강도미를 빌어와 갚지 않은 6백 69석 영을 강화부에서 도로 추심하는 일을 비국에 보고하였습니다. 기영에서는 수원에 획급했다 하여 도로 갚지 않으려고 하지만, 보장(保障)의 중요한 곳에 향곡(餉穀)이 점차 줄어드니 참으로 지극히 걱정스럽습니다. 이 가운데에서 수에 맞춰 강도에 도로 갚게 하고 장용영의 무조와 임술년 이후의 유고조 3만여 석을 모두 나누겠다는 청은 간편할 듯하나, 가분(加分)하는 법의 뜻이 본래 엄중하다 하더라도 수시로 청하는 것을 번거롭다고 꺼릴 필요는 없습니다. 또 저치미를 보충하여 쓰는 일은 지금 이미 막았으니 모조를 본도에 획부하는 일은 별로 논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가분하는 해가 되면 이

곡식, 저 곡식 할 것 없이 몇 석을 가분하든 전례에 의해 장청하여 윤허를 받은 뒤에 시행하도록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답하였다.

司啓曰, 卽見前京畿監司徐滢修狀啓則以 爲, 本道區劃儲置七千石, 消融於前債之報者, 幾過三分二, 來頭公用, 仍不免白地責應, 本道甲辰貸來 江都米一萬石, 逐年取耗, 至今年還報者, 爲八千九 百三十八石零, 而其元穀之散在各邑者, 爲八千四 百八石零, 其耗條之華城·始興·果川劃送者, 爲六百 五十石, 今若以三邑取耗條六千五百石, 改名以某 邑區劃穀, 仍作此穀會錄之實數, 其外一千六十餘 石, 移送江都, 盡報萬石貸來之本數, 其餘八百四十 餘石, 取補本道儲置之積欠, 則庶勘四分之一, 本道 所在壯勇營賃租七萬石, 從前盡分矣, 壬戌壯營罷 後, 改作半分, 而本道穀簿, 自來不敷, 逐年加分, 不下 數萬石, 若得此穀之盡分, 可除狀請之煩屑, 壬戌以 後, 留庫條三萬五千石, 明年爲始, 特許盡分, 以其耗 條, 劃付本道, 以資儲置不贍之用事, 竝請令廟堂稟 旨分付矣, 蓋此儲置七千石之每年區劃於本道者, 實出於參量一年之用下, 優數磨鍊, 俾無足不足之 更煩惠廳之弊, 則今此消融於前債之報云云, 大非 前日都劃之意, 豈可以他穀別出名色, 以資尾閭之 用乎, 所請勿施, 甲辰貸來江都米未報條一千六十 餘石, 卽令移送, 而今既盡報萬石貸來之元數, 則本 穀之改其名稱, 在所不已, 此則依請許施, 其餘八百四十餘石, 姑無他可付之衙門, 添付於備局勾管穀, 癸卯畿營貸來江都米未報條六百六十九石零, 自 江華府還推事, 報備局矣, 畿營則以既劃水原, 不欲 還報, 而保障重地餉穀之漸縮, 誠極可悶, 就此中準 數還報於江都, 至於壯營賃租, 壬戌以後留庫條三 萬餘石盡分之請, 雖似簡便, 加分法意, 本自嚴重, 隨 時仰請, 不必以煩屑爲嫌, 且儲置補用一事, 今既防 塞, 則耗條之劃付本道, 別無可論, 如值加分之年, 則 勿論此穀彼穀, 以幾石加分, 依例狀請蒙允後, 施 行之意, 分付何如, 答曰, 允.

<비변사등록 197책, 순조 6년 1806년 02월24일(음)>

경제/재정

水原留守 趙鎮寬이 戊午年에 公貨로 養蔘의 실패로 생긴 부채의 蕩滅을 청하다

○ 2월 19일 수원유수와 관관이 입시하였을 때에 수원유수 조진관(趙鎮寬)이 아뢰기를

“무오년(戊午年: 정조22, 1798) 간에 관(官)에서 영남의 양삼인(養蔘人)을 불러와 공화(公貨)를 획급하고 삼을 사서, 성중(城中)에 심게 한 것은 거주민이 살림에 보탬이 되는 밑천으로 삼게 하려는 것입니다. 수년 사이에 그 조금 큰 것은 캐서 발매하여, 약간의 값을 바쳤는데 영남 사람들이 돌아가자 삼전(蔘田)도 변하였습니다. 그 뒤부터 점차 썩고 상하여 7천 본(本)을 심은 것 가운데 작년 겨울까지 남은 것은 백여 본에 불과하고, 모양도 제대로 갖추지 못했으며, 채권(債券)만 남아있는데, 참으로 지적하여 징봉을 독촉할 곳이 없습니다. 신의 생각에는 이것은 진짜 부채와는 다릅니다. 관가에서 처음 설치하여 시행하다가 끝에 가서 예상을 어겼으므로, 바로 관가에서 본전에 밀진 것이요, 삼호(蔘戶)에게는 책임지울 수 없습니다. 본전을 징봉하는 한 가지 일은 다시 거론하지 말고, 현존하는 약간 본은 우선 성장하기를 기다려 공고(公庫)에 소속시키는 것이 일을 말끔히 처리하는 방도가 될 것입니다. 본부의 공화에 있어서는 각 사람에게 미봉(未奉)한 것이 거의 5만 여 냥인데, 비록 연조(年條)에는 오래되고 가까운 것이 있어 징봉하기에 쉽고 어려운 일이 없지 않다 하더라도, 채주(債主)가 있으니 독촉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도가 없습니다. 그 가운데 부호(富戶)로서 모집에 응하였다가 죽고 가산은 흩어지고 자식은 구금된 자가 있고, 성역(城役)을 할 때에 무역을 한, 교속(校屬)으로서 포함(逋欠)을 진 뒤에 죽고 자식은 구금된 자의 몫이 포함 3천여 냥이나 됩니다. 부내(府內)에서 못사람들이 불쌍하고 가없다고 여기는데, 준봉할

방법도 없이 하릴없이 오랫동안 잡아두는 것보다 옥문을 열고 내보내, 넉넉히 연한을 두고 마련하여 편리한 대로 수봉하게 한다면, 옛 사람의 이른바 ‘세금을 독촉하던 중에 혜택을 준다[催科中字恤].’ 는 것에 거의 가까울 것입니다. 이밖에 성역을 할 때에 교리(校吏)와 공장(工匠)이 자잘하게 포함진 것은 죽었건 살아 있건 간에 그 수가 많지 않으니 마땅히 감세해주는 방도가 있어야 하겠는데, 막중한 공화를 빠른 시일 안에 봉납하도록 독촉하지 않고, 너그럽게 하자는 의논이 있는 것은 비록 매우 황송하지만, 혹시라도 덕스러운 뜻을 만에 하나 펴는 일이 될듯하여 감히 이렇게 아웁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미 들었으니 차라리 나라에서 손해를 본다는 뜻에 있어 아울러 탕감하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今二月十九日水原留守·判官入侍時, 水原留守趙鎭寬所啓, 戊午年間, 自官招來嶺南養蔘人, 而劃給公貨, 使之貿蔘, 而來種於城中, 以爲居民聊賴之資矣, 數年之間, 採其稍大者發賣, 若干納價, 而嶺人既歸, 蔘田亦移, 一自其後, 漸次朽傷, 如種七千本者, 昨冬見存, 不過百餘本, 亦不成樣, 而債券徒在, 實無指的督捧之所, 臣意則此與眞箇負債有異, 自官初既設施, 未遑所料, 則便是自官落本, 無以責於蔘戶, 本錢之徵捧一款, 更不舉論, 見存若干本, 則姑待其養成, 屬之公庫, 互爲了事之道, 至若本府公貨之各人處未捧者, 殆過五萬餘兩, 年條雖有久近, 懲捧不無難易, 而債主既存, 則董督之外, 更無他道, 其中有以富戶應募, 身沒家敗, 而子囚者, 有以城役時貿易, 校屬負逋身死而子囚者, 合爲三千餘兩, 府內群情, 爲之矜惻, 與其徒爾久繫, 無路準捧, 恐不如放出獄門, 使之營辦, 優定年限, 從便收捧, 則昔人所謂催科中字恤, 庶幾近之, 此外城役時校吏工匠之小小見負, 無論身故生存, 數既不多, 宜有蠲減之道, 而莫重公貨, 不爲刻日督捧, 有此寬假之議者, 雖甚惶悚, 恐或爲流布德意之萬一, 故敢此仰達矣, 上曰, 既聞之, 其在寧失之義, 竝蕩減可也.

<비변사등록 197책, 순조 6년 1806년 02월 28일(음)>

경제/재정

京畿監司 金履도가 儲置米를 變通하는 문제에 대해 논의하다

8월 16일 원릉(元陵)에 행행할 때에, 경기감사가 각무차사원(各務差使員)을 거느리고 입시하였을 때에 경기감사 김이도(金履度)가 아뢰기를, “저치(儲置)한 곡식을 경기감영에 이획하도록 한 것은 당초 제도를 정한 뜻이, 실은 지출과 수입을 헤아려서 반드시 절약하는 이익이 있게 하고, 많고 적음을 마름질하여 장차 낭비하는 근심이 없게 하려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이획하도록 정한 총수(總數)가 비록 일정하게 정하여 책임지고 응할 일이라 하더라도, 수원(水原)·송도(松都)·광주(廣州) 등 세 곳에 갈 것을 덜어내면 원래 수가 6천여 석을 겨우 넘는데 특히 엄격히 조절한 것이 비록 충분하지는 않지만, 그러저럭 손을 쓸 수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근년 이래 점점 지탱하기 어려워지는 실상은 여러 사람들이 모두 아는 바입니다. 곳에 따라 분배할 곳이 아침저녁으로 거둬 나와 여러 고을에 더 내어주게 되고, 세월이 갈수록 더하여 바로잡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는 모두 특별히 지출하는 비용이 전에는 없었으나 지금 생긴 것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수원 행행 때로 말씀드리면, 전에 장용영(壯勇營)에서 구관(句管)을 오로지 담당하였던 것을 영을 철폐한 이후에는 저치한 곡식에서 회감하였으나, 산릉의 진배(進排) 명색이 심히 많고 역시 저치곡식에서 회감하였으며, 회감은 늘 원래의 수효 안에서 요구하고, 진배는 대부분 정해진 제도 밖에 두기 때문에 열읍이 구차해지고 백성이 곤궁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지금 변통하지 않는다면 다음번 시정할 때 갑자기 좋은 계책이 나올 수는 없습니다. 당초에 편리하게 하려고 한 계책이

도리어 구체해지고 어려운 폐단을 끼치니, 어찌 알맞게 헤아려 규식을 정한 본뜻이겠습니까? 규식을 정하던 초기에 비변사와 선혜청의 의논은 모두 뜻밖의 별다른 지출을 참작하여 더 획급하기로, 그 때에 이미 행회하였습니다. 지금의 형세와 재력으로는 그대로 따라서 넘어갈 사세가 전혀 아닙니다. 만일 저치미를 3천 석에 한하여 돈으로 대신 더 획급하여 긴급한 곳에 분배하여 쓰도록 하되, 내년 봄부터 시작하여 1만석을 기준으로 구획하도록 영구히 규식으로 정하면, 이왕에 더 지출한 것을 가장 많은 곳부터 줄여서 보태주고, 앞으로 별달리 지출하는 것은 거둬 나온 곳에 따라 회감하면, 거의 조금이나마 지탱하는 방도가 될 것이기에 감히 이를 양달합니다.” 하니, 임금이 그리하라 하였다.

今八月十六日元陵行幸時，京畿監司，率各務差使員入侍時，京畿監司金履度所啓，儲置之移割畿營，當初定制之意，實在於量其出入，必有限節之益，裁其多寡，將無濫費之患，而以其移割定摠之數，雖當恒定責應之事，除出水原・松都・廣州三處所去者，則原數纔過六千餘石，而特以操切之嚴，雖未贍足，猶可措手，挽近年來，漸難抵當之實，衆所共知，隨處分排，朝暮疊出，列邑加下，歲月加添，莫可矯揉之境，全由於別下之費，前無而今有者，多故耳，至於水原行幸時言之，在前壯勇營之專當句管者，撤營以後，則會減於儲置，山陵進排，名色甚多，而亦爲會減於儲置，會減，常責於原數之內，進排，多在於定制之外，故所以列邑之苟艱，自致小民之困悴，若不及今變通，來頭釐正，猝無好策，當初方便之計，反貽難揉之弊，豈有量宜定式之本意哉，定式之初，籌司惠廳之議，皆以意外別下，參量加割，既有伊時行會矣，見今事力，萬無因循挨過之勢，如以儲置米，限三千石代錢加割，以爲排用緊急之地，自明春爲始，準萬石區割，永爲定式，則已往加下，隨其最多處，蠲補將來，別下，隨其疊出處會減，則庶爲一支撐之道，故敢此仰達矣，上曰，依爲之。

<비변사등록 197책, 순조 6년 1806년 08월 17일(음)>

경제/재정

水原의 還餉을 加分하도록 할 것을 청하다

비변사에서 아뢰기를, “수원유수 홍명호(洪明浩)의 장계를 보니 판관 이희(李熾)의 첩정을 날날이 들어 말하기를, ‘수원부의 환향(還餉: 환곡 군향)은 본래 넉넉지 않은데다 또 이번 해일로 인해 특별 환자를 지급했으므로 마지막 순차까지 분급하려면 태반이 부족합니다. 보리는 아직 타작할 때가 아니고 농사지을 식량은 바닥나고 있으니 회부된 환향의 유고(留庫) 몫 중 벼 5백 50섬을 특별히 가분하도록 묘당에서 품지하여 분부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였습니다. 수원부는 다른 곳보다 특별히 소중한데다, 가뭄 끝에 비가 내려 종자와 식량이 그야말로 다급할 테니 전례가 있든 없든 비교해 따질 것 없이 장계에서 청한 대로 분급하라고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답하였다.

司啓曰，卽見水原留守洪明浩狀啓，則枚舉判官李熾牒呈以爲，本府還餉，元來不敷，又因今番海溢，別還題給，則終巡分給，太半不足，麥未登場，農糧告罄，會付還餉留庫條中租五百五十石，特許加分事，請令廟堂稟旨分付矣，本府，所重自別，而旱餘得雨，種糧政急，有例無例，不須較論，依狀請許分事，分付何如，答曰，允。

<비변사등록 198책, 순조 7년 1807년 04월 26일(음)>

경제/재정

京畿暗行御史 洪儀泳의 別單에 대해 回啓하다

비변사에서 아뢰기를, “경기 암행어사 홍의영(洪儀泳)의 별단을 보면 그 하나는, 양주(楊

州)에서 연전에 진전(陳田)을 조사할 때 공을 빙자하여 사를 경영하여 백성이 억울함을 호소하게 하였고, 부평(富平)의 구초불(久初不) 명색이 3백여 결인데, 신해년(辛亥年:정조15, 1791)의 개량 때에 집복(執卜)이 크게 지나쳐 겨우 40결만 남아 있으므로 한 읍의 전결(田結)이 더하지 않은 곳이 없으니 묘당에서 폐단을 개혁할 방도를 상세하게 강구하게 해야 하며, 여주(驪州)의 방역초조(防役草租)를 매 결에 벼 18두(斗)를 받아들이고 벼 1두의 가격으로는 혹 2전(錢) 3, 4푼(分)을 받아들이기도 하는데 도신에게 관문을 보내 이천(利川)의 예에 따라 역조(役租) 가운데 10두는 벼로 받아들이고 8두는 돈 8전으로 환산하여 받아들이도록 규칙으로 정하며, 포천(抱川)에서 상납하는 것은 소미(小米)가 반이나 되는데 경창(京倉)의 주인이 마음대로 값을 환산하여 소미가 흉년에는 매 석 7, 8냥, 풍년에는 5, 6냥이 되니 해도에 행회(行會)하여 상정례(詳定例) 외에 인정(人情) 잡비와 함께 알맞게 해야 할 값을 정하는 일입니다. 전정(田政)의 문란은 기전(畿甸)에서만 그러할 뿐만이 아닌데 아직도 개량하지 못하는 것은 실은 개량이 그 방도를 잃게 되면 폐단은 도리어 개량하지 않은 것보다 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번에 호서(湖西) 암행어사가 서계에 양전을 청하면서 먼저 수령의 복주(覆奏)를 얻으려고 한 것은 대체로 이 때문입니다. 지금 양주로 말씀드리자면 명분은 개량이나 도리어 사를 경영하는 단서가 되어 한갓 억울함을 호소하는 폐단을 더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 이른바 연전에 멋대로 개량한 것이 현재 폐단이 생겼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좋은 쪽으로 고치는 방법에 대해 먼저 도신에게 행회하여 읍취(邑倅)와 함께 충분히 의논하여 아뢰도록 하겠습니다. 각 고을의 재정(災政)에 그 이름이 매우 많은데 이른바 구초불(久初不) 명색은 더욱 문란해지기 쉬워 실상을 얻기가 가장 어렵습니다. 부평(富平)의 3백여 결이 지금 40결이 된 것은 과연 신해년부터인지는 모르겠으나 아마도 개량할 때 진전을 기정전으로, 허(虛)를 실(實)로 잡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즉 형세가 백성에게 더 분표(分俵)하여 백성에게서 이중으로 징수하여 결국 해마다 유정지세(惟正之稅)가 되고 백성은 건딜 수 없게 될 것임은 필연의 이치입니다. 도신에게 신해년 전후 본읍의 전안(田案)을 상세히 고찰하여 개량하게 된 까닭과 민폐를 구제한 내용을 조사하여 사실대로 논계(論啓)하며, 여주에서 초조(草租)로 징수하는 돈과 포천(抱川)에서 상납하는 소미(小米)의 폐단도 아울러 상세히 조사하여 민정에 따라 일일이 바로잡은 뒤 장문(狀聞)하라고 분부하겠습니다. 그 하나는, 양호(養戶), 방결(防結)의 폐단은 없는 고을이 없는데, 여주·이천·음죽(陰竹)이 특히 가장 심하니 묘당에서 엄한 관문으로 강력히 개혁하는 일입니다. 양호, 방결은 본래 조정의 영(令)으로 금한 것이나 여주·이천·음죽 세 고을이 이와 같이 어지러워서 백성에게 해가 돌아가고 부호(富戶)에 이익이 속하게 된 것은 기강에 크게 관련되어 너무나 놀랍습니다. 이천은 우선 시정하게 하였으나 여주와 음죽에서 강력히 금할 것을 생각지 않고 그렇게 되도록 한 것은 모두 수령이 살피지 않은 죄입니다. 도신을 엄중 신칙하여 별달리 조사하여 법을 엄신여기고 금령을 범한 호부(豪富)를 아울러 형배(刑配)하여 앞으로 간사한 습성을 끊도록 해야겠습니다. 그 하나는, 제언(堤堰)의 경계가 불분명하고 제언과 못이 메워져서 물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었으니 묘당에서 별달리 더 신칙하는 일입니다. 제언은 농정(農政)에 크게 관련됩니다. 묘당에 별도로 사(司) 하나를 설치하여 매년 엄격하게 행회하고 신칙하였으나 지금 어사의 서계를 보면 여러 고을이 애초에 수축하지 않았고 막히도록 내버려두었는데 근래에 더욱 심합니다. 한결같이 어사가 논한 대로 하되 먼저 도신에게 별달리 적간하고 올봄부터 일제히 동척(董勅)하여 실효가 있게 하되, 가장 많이 황폐한 곳이 있으면 수령을 장문하여 논감하라고 분부하겠습니다. 그 하나는, 조적(糶糴)의 여러 폐단이 가장 심한 것을 말씀드리자면 여주에는 통분(統分)의 폐를 백성이 견디

지 못하는데 봄에 빈 쪽정이를 나눠주고 가을에는 정실곡(精實穀)을 징수하고, 음죽에서는 환곡은 전부 아전의 포흠에 들어가고 가을에 관리의 방환(防還)·방채(放債)·구청(求請) 등의 명색으로 백성에게 징봉하며 여주 반호(班戶)의 포흠으로 징수하지 못한 각 곡식이 1천 3백여 석에 이르는데, 쌀이 90여 석이나 되고, 연천(漣川)은 백성은 적고 곡식은 많아서 대단히 균형이 맞지 않으니 아울러 묘당에서 특별히 시정하게 하며, 기내(畿內) 여러 고을의 환곡도 도신이 분배하여 이전하게 해서 백성의 곡식이 서로 알맞게 하고, 영문(營門)의 나이(那移)하여 작전(作錢)하는 폐단을 묘당에서 도신에게 엄중 신칙하여 모두 본읍에서 작전하여 나이하는 문제를 영구히 그 폐단이 끊어지게 해야 하겠습니다. 근래에 무조전(賃租錢) 명색을 영읍(營邑)에서 열읍에 분포하여 거둬 민폐가 되고 있는데 무조를 영구히 막아야 하겠습니다. 용인(龍仁)의 시가(柴價)로 매 결에 징수하는 것이 쌀 3두인데 근래에는 벼 20두를 창고 곡식 가운데에서 내주고 있으며 경신년(庚申年:정조24, 1800)에 어사의 서계에 이 내용이 들어가 벼 5두만을 감하고 쌀로 만들어 6두로 하였는데 임술년(壬戌年:순조2, 1802)에 당시 수령이 대동가(大同價)의 예로 집전(執錢)하였으나 겨울에도 그대로 내주었으니 당년에 납부하는 것이 실은 두 번째가 됩니다. 본도에서 두번 징수하는 것을 실태를 조사하여 추급(推給)하고 전처럼 3두의 쌀로 작성하되 다시 환곡에서 내어주지 말며, 곡부(穀簿)에 단서가 많아 아전이 농간을 부리게 되니 묘당에서 곡부의 긴요하지 않은 명색을 일체 제거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여러 고을에 산재해 있는 균형에 폐단이 없는 곳이 없는데 남한산성과 북한산성의 폐단이 더욱 걱정스럽습니다. 곡수(斛數)가 비는 것으로 말씀드리자면 남한산성에서 겪는 병폐가 더욱 심하고, 조치가 타당치 못한 점으로 말씀드리자면 북한산성의 폐단을 끼치는 일이 너무 혹심하여 지금 즉시 개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묘당에서 상의하여 변통하게 하는 일입니다. 거친 것을 나눠주고 반드시 정실한 것을 징수하는 것은 바로 어느 읍에나 있는 환곡의 폐단인데 여주가 특히 심하여 도거리와 나누는 폐단뿐만 아니라 백징(白徵)의 근심까지 있습니다. 음죽은 아전의 포흠이 많아서 백성에게 나누는 것이 거의 없고 방환(防還), 구청(求請) 등의 제반 명색까지 더해져서 그지 없이 많습니다. 고을에서는 급한 형편을 살피려는 뜻이 없고 백성에게는 뼈에 사무치는 원망이 있습니다. 지금 조적(糶糴)이 온갖 방법으로 백성을 확대하는 것이 참으로 없는 곳이 없습니다. 하물며 여주의 사족(士族)은 세력을 믿고 어려워하지 않고 와환(臥還)을 하고 대민(大民)은 멋대로 농간을 일삼으며 소민(小民)은 치우치게 착취를 당합니다. 조금이라도 법과 기강이 있다면 어찌 이럴 수 있습니까? 도신에게 엄중 신칙하여 두 고을 환곡의 폐단을 아울러 살살이 조사해내어 기어이 개혁하고 반호(班戶)의 묵은 포흠은 날짜를 정하여 다 징수하고 이후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드러나는 대로 수령부터 그 죄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연천의 환곡이 많은 폐단을 그대로 둘 수는 없습니다. 백성의 곡식을 헤아려 부근 곡식이 적은 고을에 이전하여 반드시 많은 데에서 덜어 모자라는 데 보태주는 효과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에서 작전한 것을 한 섬이라도 나이하지 못하게 한 것에 있어서는 전에 다른 도 어사의 서계로 인하여 각 해도신(該道臣)에게 관칙(關飭)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어서 거의 앞 일을 징계하여 뒷일을 경계하는 효과가 있으므로 지금 다시 번거롭게 칙유(飭諭)할 것이 없습니다. 이른바 무조(賃租)에 있어서는 이미 다른 도에 이전하였으니 다른 도에서 작전하고 본도에서 무조해야 하는데 지금 돈을 나눠주고 돈을 징수하되 몇 전의 이자를 첨가하는 것은 색락(色落)과 잡비의 수요에서 말미암은 것인 듯하나 분수를 헤아려보면 끝내 너무 지나칩니다. 하물며 돈을 흠어주고 돈을 거두어 들이면서 해마다 작전조(作錢條)를 따른다면 무조하는 뜻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금년 가을부터 특별히 무조를 해서 돈으로 징수하는 폐단을 막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또 도내의 곡창(穀摠)을 고찰하여 비록 무조가 아니라도 충분히 안배하여 쓸 수 있다면 그대로 영구히 혁파하는 것이 폐단을 뿌리뽑는 길입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도신에게 관문(關問)하겠습니다. 남한산성의 향환(餉還)은 근년에 과연 전보다 조금 줄어들어 민호(民戶)에서 받는 것이 우선은 너무 많은 근심이 없으나 북한산성은 연전에 11개 읍에 나눠주었는데 대개 부득이해서 그렇게 했던 것인데 산향(山餉)이 먼 백성에게 미치게 하면 폐단이 절실하게 딱하지 않은 것은 아니나 변통하려고 해도 우선은 좋은 계책이 없어 고치는 것을 갑자기 의논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니 다시 충분히 헤아려 영구히 폐단이 없는 방도를 정한 뒤에 다시 품처하겠습니다. 그 하나는, 저치미(儲置米)를 병진년(丙辰年:정조20, 1796)에 선혜청 당상이 조절하여 분배하되 매년 7천 석을 감영에 획송하여 열읍에 헤아려서 주게 하였는데 양주(楊州)·고양(高陽)의 경우 2천여 석으로서 백지(白地)에 역사(役事)를 하여 더 내어주는 수를 헤아려서 주지 않을 수 없으니, 본읍에서 허다한 지출을 상세히 고찰하여 줄이거나 혹 백성 몇 명을 복(復)하여 편의에 따라 역에 응하게 해서 저치미의 용처를 줄이고, 또 본읍의 환모(還耗) 가운데에서 1년에 몇 석을 용도에 보충하도록 하되 역시 묘당에서 그 가부(可否)를 상의하여 시행하는 일입니다. 저치의 폐단은 장차 백성과 고을이 지탱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대개 도내의 크고 작은 나라 역사와 제반 공용(公用)을 모두 저치미에서 회감하는데 옛날에는 선혜청에서 수입에 따라 곧바로 지출하였습니다. 병진년(丙辰年)에 낭비가 너무 심하고 회감에 절도가 없는 폐단을 연품하여 변통하였는데 매년 7천 석을 본도에 획부하여서 본도에서 이 7천 석의 총액을 각색 용도에 배표(排俵)하되 혜청에서는 다시 관리하지 않았습니다. 규식을 정할 때에는 7천의 수로 충분히 1년의 수요에 충당할 수 있을 것 같았으나 시행한 지 오래지 않아 읍의 보고가 매년 지나치기 쉽고 감영의 마감은 마침내 타당을 잃어서 매년 해마다 더 내어주는 것을 면치 못하고 더구나 **화성(華城)**의 행행 때에 소용되는 것은 처음에는 **장용영(壯勇營)**에서 거행하였고 기영(畿營)에서는 애초에 관여하는 바가 없었으나 장용영이 혁파된 뒤부터 비로소 장용영에서 거행하던 것을 기영에 모두 붙였고 7천 석 안에서 이러한 까닭으로 세용(歲用)이 해마다 크게 줄어들어 한해 한해가 심하고 새로이 첨가된 것이 전에 첨가된 것보다 많아 지금은 각 읍 통틀어 더 내어주는 것이 많게도 1만여 석에 이릅니다. 이로부터 능침(陵寢)의 역사는 일의 체모가 지극히 중한데도 백성에게 백징(白徵)하면서 값을 지불할 수가 없고, 행행 때에는 책응(責應)이 극히 번거로우나 오로지 아전에게 맡기고는 이어 환보(還報)하지 않으므로 매년 진배할 때를 당하면 손쓸 곳이 없어 부득이 혹 환곡을 나이(那移)하게 되고 군향이 빈장부라는 탄식이 있게 됩니다. 부호에게는 임시 대여하고 있으나 평민은 값을 받을 가망이 없어 아전과 백성이 호소하는 소장(訴狀)이 쌓여 권축(卷軸)을 이루게 되었으나 도신 역시 손을 댈 물건이 없어 핑계로 삼는 말이 해마다 심해지고 아전과 백성이 장차 지탱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를 것이라는 어사의 서계에서 설명한 바가 실은 지나친 말이 아니니 나라의 체모로 보아 어찌 능력에 필요한 경비와 필로(蹕路)에 쓰이는 것을 오로지 아전과 백성에게 책임지우고 즉시 내어주지 않아 경향(京鄕)의 상사(上司)에 원망을 품고 호소하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어사의 서계 가운데 선혜청에 도로 속하게 하고 읍의 모조에서 보탠다고 한 것은 비록 성급히 의논할 수는 없으나 지금의 계책으로는 도로 값고 더 내어주는 것이 일시가 급하고 나라 곡식이 족하고 부족한 것은 논할 바가 아닙니다. 아무 곡식이나 가리지 말고 즉시 구획하여 더 내어줄 수를 갚아야 합니다. 지금부터는 **화성** 행행 때의 책응에 관한 것은 7천 석 안에서 계산하지 말고 특별히 다른 곡식에서 회감하고 이어 정례로 삼도록 혜청 및 해도에 분부하며, 이와 같이 한 뒤 읍의 보고와 감영의 마감에 혹시라도 사실에 지나쳐 다

시 더 내어달라는 말이 조정에 올라온다면 도신과 수령을 엄하게 처벌하며 아울러 이와 같이 일체 신척하겠습니다. 그 하나는, 군정(軍政) 가운데 시정을 늦출 수 없는 폐단은 바로 관리(官吏)들과 각 청의 모속(募屬)이 계방(契房)을 설립하는 것입니다. 그 밖에 향교와 서원의 모속과 사대부가의 묘지기 명색(名色)이 청탁하여 면하려 하니 묘당에서 제도(諸道)에 행회하여 일체 혁파하여 실효가 있게 해야 하겠습니다. 용인의 창룡대(蒼龍隊) 명색은 애초에 본읍 군역을 개정한 것이었으나 정우태(丁遇泰)가 수령으로 있을 때 처음으로 창룡보(蒼龍保) 5백여 명을 보충하였는데, 당년에 태어난 신생아로부터 사노(私奴)까지 수에 채워넣어 보전(保錢) 8백여 냥을 징수하여 7백여 냥은 제 주머니에 넣었는데 지금의 수령이 군기보(軍器保)라고 개명하고 돈을 징수하여 사사로이 썼으니 도신에게 즉시 혁파하게 하는 일입니다. 한정(閑丁)이 저마다 벗어나기를 도모하여 잔악한 백성만 치우치게 고초를 겪고 있는 것은 곧 팔도의 군폐(軍弊)입니다. 전에 없는 명색을 많이 만들어내어 유한한 양정(良丁)을 감춰두는 것은 모든 도가 같이 그러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 읍이 없습니다. 전후 어사의 서계로 인하여 이미 관문을 내어 엄중 신척하여 저마다 강력히 금하게 하였으나 용인의 5백 창룡보에 있어서는 실로 탐욕스러운 수령이 자기를 살찌우는 계책이요, 황구(黃口)의 뼈에 사무치는 원한입니다. 당해 현령 정우태는 보답을 도모하기를 다른 사람보다 백 배는 더 해야 할 것인데 근거없이 백성을 학대하기를 이와 같이 하니 이 자를 엄히 징계하지 않으면 어떻게 다른 사람을 두렵게 하겠습니까? 해부에서 잡아들여 조사하여 법에 따라 중하게 처벌하고, 그 뒤 명색을 바꿔 돈을 거두고 이어 읍의 예로 만든자 역시 극히 놀라운 일입니다. 전후 수령을 아울러 잡아들여 심문하여 엄히 처벌하겠습니다. 이른바 창룡보를 군기보(軍器保)로 바꾼 것은 즉시 혁파하도록 도신에게 분부하겠습니다. 그 하나는, 각 읍의 용기(戎器)를 묘당에서 도신에게 신척하여 보수하고 점열(點閱)하게 하는 일입니다. 각 읍의 군기를 좋게 보수하여 수시로 점열하게 하자는 논의는 과연 합당한 일이니 이와 같이 도신에게 관척하겠습니다. 그 하나는, 토포(討捕)하는 교졸(校卒)이 백성을 침학하는 일이 양주(楊州)에서 더욱 심하니 양주에서 토포하는 일을 도로 광주(廣州)에 속하게 하는 일입니다. 교활한 장교와 사나운 포졸을 단속하지 않으면 광주가 반드시 양주보다 낫지는 않고 위엄으로 두렵게 한다면 문관 수령이 아마도 무관 수령보다 못하지는 않습니다. 토포를 이설하는 일은 관제(官制)에 관련된 것이니 지금 우선 그대로 두겠습니다만 장교와 포졸이 멋대로 침학하는 폐단은 양주나 광주가 다름이 없습니다. 각별히 엄중 단속하여 평민을 침해하지 못하게 하도록 해부, 해읍에 각별히 신척하겠습니다. 그 하나는, 원유봉(元有朋)의 살옥(殺獄)에 관한 일입니다. 원유봉이 범한 제조항은 더 말할 것이 없으나 인명을 살상한 것은 법에 용서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해부에서 잡아들여 조사하여 죄를 다스리게 하겠습니다. 그 하나는, 영화(迎華:양재역)의 여러 참(站)은 삼남의 대로이고 화성(華城) 이남에는 설치된 참이 적는데, 본참에서 가천(加川)까지는 80리로서 마필(馬匹)의 병이 매번 이 사이에서 생기니 본참과 가천 사이에 청호(菁好)의 옛 참이 있으니, 해도에서 자세히 조사하여 복구하게 하는 일입니다. 각 역 입마(立馬)의 궤역과 사객(使客)이 함부로 법을 위반하여 말을 타는 것은 모두 우관(郵官)이 직책을 다하지 않은 죄입니다. 본도 및 본부에 분부하여 일일이 규찰하여 저마다 강력히 금하게 하겠습니다. 영화의 중간 역참의 부설이 합당한지 여부는 수신(守臣)에게 좋은 쪽으로 변통하라고 하겠습니다. 그 하나는, 궁방(宮房)의 면세전은 본래 읍마다 돌아가며 붙이는데 통진(通津)은 해마다 정해져서 수납할 때에 억울하다는 호소가 길에 깔렸으며, 그 가운데 조(租)가 있는 면세는 궁차(宮差)가 내려와서 결마다 정조(正租) 1백 두(斗)를 대두(大斗)로 징수하니 묘당에서 도신을 신척하여 알맞게 해아려 이송

하되 남징하는 폐단을 엄히 금해야겠으며, 장단(長湍)·양성(陽城) 충융청 둔전의 폐단은 다른 곳보다 가장 심하여 집복(執卜)할 때 마구 더하여서 백성이 고초를 견딜 수 없으니 해군문에서 단속하고 폐단을 고치는 일입니다. 5백의 궁결(宮結)을 한 읍에 치우치게 정하고 매결 1백 두를 궁차가 남징하는 것은 바로 읍 백성의 절실한 원망인데도 치우치게 정하고 돌아가며 정하지 않는 것은 과연 무엇 때문이며 남징하여도 금지하지 않는 것은 어느 때부터인지 아울러 도신에게 해읍에 조사하여 치우치게 정한 것은 돌아가면서 정하게 하고 남징하는 것은 시정하게 하여서 전체 백성이 어깨를 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군문에서 둔세를 더 매겨 남징하는 것은 형세상 반드시 있는 일이나 백성의 병폐가 궁세와 다름이 없으니 해영(該營)의 장신에게 별달리 조사하게 하여 이 폐단을 영구히 혁파하겠습니다. 그 하나는, 사옹원(司饔院)의 분원(分院) 소속이 빙자하여 침학하는데, 광주(廣州)의 경우 산면(山面)에서 납부하는 소두(小豆)를 지난 가을에 너무 심하게 남징하였습니다. 광주와 안산(安山)의 송리(松里) 곡성곶(谷城串)이 지금 다 쇠잔한 것은 모두 소어소(蘇魚所)에서 침학했기 때문이며, 대개 말목(抹木)을 운반하는 것은 본래 백성을 부리는 것이 아니었으나 수년 이래 배를 징발하여 수납하고, 물고기 18종을 올리는 것은 공전(公箭)에서 충분히 취하는데 공전의 물고기를 몰래 팔고서 소어(蘇魚)를 무역한다 일컫고 민선(民船)은 척마다 돈 10냥을 주고 소어 1천 2백 급(級)을 거둬들이며 사선(私船)은 척마다 세전(稅錢)이 18냥이 되어 주민이 생업을 잃고 있습니다. 사선세(私船稅) 18냥에서 10냥을 즉시 제급(除給)하여 소어를 무역하는 폐단을 알맞게 해아려 제감(除減)하고, 말목의 운수는 그들에게 담당하게 하며, 또 안산 어부미(漁夫米)의 복호(復戶)가 있어 읍의 큰 폐단이 되는데, 대동의 예에 따라 선혜청에 납부하는 것을 사옹원에 획급하면 저절로 능봉(勒捧)하는 일이 없을 것이니 묘당에서 신칙하여 개혁하게 하는 일입니다. 지난 을묘년(乙卯年:정조19, 1795)에 분원의 폐단 때문에 본원과 도신 및 수신에게 명하여 묵은 폐단을 말끔히 제거하게 하고 새로운 규식을 정하였으며 이어서 전후 성상의 전교를 사목에 실어서 바꿀 수 없는 제도로 삼았는데, 겨우 10년이 지나 폐단이 여전하여 어사의 장계에 오르기까지 된 것은 오로지 본원 및 어소(魚所)의 관원이 하속들과 결탁하여 오직 착취를 일삼은 결과입니다. 이른바 소두(小豆)를 남징하고 말목을 수납(輸納)하는 것, 소어를 억지로 파는 것, 민선을 징발하는 것과 어부의 복호(復戶) 등 폐단을 본원과 도신, 수신들이 엄격히 조사하여 사목에 있으면 사목을 거듭 밝히고, 관리가 범한 것은 별달리 관리를 처벌하여 을묘년에 개정한 규식에 따르도록 분부하겠습니다. 그 하나는, 인재를 발탁하여 쓰고 효자와 열녀를 표장하는 일인데 각 해조에 품처하게 하겠습니다. 그 하나는, 향곡(鄉曲)의 상민이 교자(轎子)를 타는 것을 법사(法司)에서 해도에 행회하여 엄금하게 하는 일입니다. 상민과 천민이 교자를 타는 것은 서울과 지방이 다름이 없으니 법과 기강이 어지러움을 알 수 있습니다. 법사와 본도에서 각별히 더욱 엄금하고 범한 자는 법률에 따라 죄를 정하게 하겠습니다. 그 하나는, 숭의전(崇義殿) 제기를 3년에 한 차례씩 주원(廚院:사옹원)에서 내려 보내는 것을 영구히 정식으로 삼고, 안성(安城) 홍우원(洪宇遠)의 사원(私院)은 즉시 획철하게 하며, 봉은사(奉恩寺)에서 받드는 순회세자(順懷世子)의 사우(祠宇)는 해부에서 적간하여 중수하게 하고, 성녕대군(誠寧大君) 부인 성씨(成氏)는 안평대군(安平大君)의 신원(伸冤) 뒤에 부사(附祀)할 수 없어 예조에 명하여 부사하도록 청하는 일입니다. 숭의전의 제기를 해원(該院)에서 3년에 한 차례씩 읍보(邑報)에 따라 숫자에 맞춰 내려 보내게 하겠고 홍우원의 사원은 본도에서 즉시 획철하게 하겠으며, 순회세자의 사우는 본부에서 봉심하여 수보(修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녕대군 부인의 부사는 해조에서 품처하게 하겠습니다. 그 하나는, 강화(江華)는 바다로 둘러 있는

지역인데 연전에 수신이 외성(外城)을 잘못 쌓아 연해의 갯벌이 오래지 않아 허물어졌고, 길상면(吉祥面)은 섬 가운데 가장 토지가 비옥한 곳이나 지세가 낮고 습해서 말의 번식이 되지 않으므로 기유년(乙酉年:영조5, 1729)에 백성을 모집하여 갈아 먹게 하도록 소를 올려 묘당에서 행회하였고 판부(判付)로 인하여 시행하였는데 초지(草芝)의 감목(監牧)하는 자가 횡방을 놓아 아직도 목장을 이전하지 못하였는데 이미 축조한 외성은 비록 횡철하기 어려우나 길상목장을 즉시 경작하도록 하되, 둔전으로 정하며, 본주(本州)의 어세(漁稅)는 다른 읍보다 여러 갑절인데, 별고(別庫)의 무역, 아문의 공상(供上) 등 그 번다함을 견디기 어렵고, 그 밖의 침학하는 정사가 끝이 없으며, 시계호역(柴鷄戶役)은 없는 읍이 없으나 9천여 호 가운데 이 역에 응하는 자가 3천여 호나 되어 많게는 1년에 들어가는 것이 6, 7냥, 적어도 3, 4냥을 밀돌지 않으며, 면임(面任), 관예(官隸)의 인정(人情)이 하도 많아 환자 가운데 옮겨가고 옮겨오는 명목으로 한 호구에서 쓰는 것이 혹 1, 2석에서 3, 4석에 이르러 집이 기울고 파산하여 지탱할 수 없습니다. 묘당에서 관문을 보내고 행회하게 해서 이 네 조항을 수신이 논열(論列)하여 보고하게 하여 빨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군향은 일찍이 17만 석이었는데 연달아 각 아문에 이전하고 남은 것은 1만 7천 석입니다. 매년 나눠주는 것이 1만 2천 4백 석이고 유고(留庫)가 4천 5백여 석인데 장사(將士)의 녹봉 지급에도 매번 부족을 근심하니 관방의 중요한 지역이 보기에 애처롭습니다. 아무 곡식이든 구획하여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삼포(三浦) 백성의 능로(能槽) 명색은 지금 뼈에 사무치는 폐막이요, 12개 진(鎭)의 진선(津船) 역시 없을 수 없습니다. 역시 유신(留臣:유수)에게 비국에 상세히 보고하여 매듭을 지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성(京城)의 방어는 통진(通津)이 믿을 만하고 문수산성(文殊山城)의 성곽이 견실하여 통진의 읍치(邑治)를 문수에 이설하면 7리의 사이에 불과합니다. 공해(公廩)를 옮겨 짓는데 드는 것은 공가(公家)에서 획급하되 묘당에 물어서 널리 수신(守臣)과 의논하여 한 번의 노고로 영구히 편한 계책으로 삼는 일입니다. 강화 외성의 축조는 과연 실착으로서 선배의 논의에서 유래한 것인데 축성한 지 이미 오래되어 지금 갑자기 정지할 수 없습니다. 길상목장에 백성이 들어가 경작하도록 하는 것은 비록 기유년에 행회한 일이나 목장을 설치한 지 이미 백 년이 지난 지금 이설하는 것을 가버리 의논하기 어렵습니다. 향곡이 2만에 차지 않는 것은 대단히 소홀할 뿐만 아니라 현재의 지방(支放)도 오히려 이어지지 못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전하여 향곡을 첨가하는 일은 가장 급선무인데 기내(畿內)의 곡총(穀摠)이 근래 점점 넉넉지 못하니 우선 좋은 쪽으로 상의하여 다시 품처하겠습니다. 통진의 읍을 옮기는 일은 실로 관방을 중시하는 계책이나 읍의 사정과 백성의 소원이 과연 어떠한지 상세히 알지 못하니 추후 널리 물어서 하나를 지목하여 아뢰겠습니다. 별고의 무역, 아문의 공상, 시계의 호역 등 폐단과 삼포 노군의 폐막을 소생시키는 계책, 12개 진의 진선을 건조하는 방도를 수신에게 관문(關問)하여 보고를 기다려 다시 품처하겠습니다. 그 하나는, 송도(松都) 전 전적(典籍) 박사혁(朴師赫)이 30년 전의 일로 찬배되었다가 방면이 되었는데 죄명이 아직 적안(謫案)에 있고, 출신(出身) 김현일(金顯一)은 힘이 남을 능가하는데 아직 녹용(錄用)되지 못하고 있으며, 유생으로서 독서에 힘을 쏟는 사람을 별달리 소통하여 쓰고, 유안(儒案)을 유신에게 신칙하여 판부에 따라 시행하게 하며, 호구의 부채가 현재 고질의 폐단이 되고 있고, 대소남면(大小南面)의 민포(民布)와 결역(結役), 군병의 조세 납부, 주민이 겪는 폐막, 대흥산성(大興山城) 환곡의 폐단, 청석(靑石) 새 진(鎭)의 송금(松禁), 청교(靑郊)와 자론(自論) 두 발참(撥站)의 지탱하기 어려움에 관해 묘당에서 유신에게 행회하게 하여 실상을 진술하는 소를 올리게 해서 시행하도록 기하는 일입니다. 박사혁은 이미 방면을 입었고 또 탕척되었으나 죄명이 아직 적안에

있는 것은 어떤 일의 단서에서 연유한 것인지 알지 못하나 들을 때 매우 의아스럽습니다. 해부에서 문안(文案)을 상세히 조사하게 했더니 과연 어사의 서계와 같아 즉시 효주(效周)하게 했습니다. 김현일에 관해서는 수신에게 직접 취재(取才)하게 하여 신체나 기예가 과연 수용(收用)에 합당하면 해조에 알려 즉시 녹용하게 하겠습니다. 유안에 관해서는 유래한 지 이미 오래이니 불에 태울 필요는 없습니다. 앞으로는 특별히 조정하여 반드시 간결하고 신중함을 보이고 비록 부득불 첨가하여 기록할 때에는 해부에서 먼저 엄중 단속하여 이전과 같이 혼란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빛의 폐단, 환곡의 폐단, 대소남면의 민폐, 청석 송금의 폐단, 두 참 파발의 폐단은 수신에게 하나하나 상세히 헤아려서 사실대로 보고하게 하여 바로잡는 방도로 삼겠습니다. 그 하나는, 양주(楊州) 안백순(安百順) 집안의 산송(山訟)을 영읍(營邑)에서 사실을 조사하여 처결을 청하는 일입니다. 산을 다투는 이 심상한 소송을 번거롭게 위에 들리도록 한 것은 영읍에서 잘 처결하지 못한 실수에서 말미암은 것입니다. 즉시 공결(公決)하게 하여 질질 끌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어사가 이를 번거롭게 진달한 것도 온당치 못하니 추고하겠습니다. 그 하나는, 우금(牛禁)이 소홀해져 광주(廣州) 경내에 푸죽간을 설치한 곳이 아홉 군데, 과천(果川)이 여섯 군데이며 양주는 없는 면이 없고 그 밖의 열읍(列邑)과 촌락 사이에서 도살이 함부로 행해지고 있으니 더욱 엄격히 사실을 조사하고 과조(科條)를 세워 금하는 일입니다. 비록 등문하지는 않았으나 이는 수신과 읍위 사이의 일에 지나지 않으니 해부, 해도에 분부하여 각별히 금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하나는, 열읍의 폐단이 모두 이원(吏員)의 수가 많은 데에서 나온 결과입니다. 묘당에서 행회하여 조사하여 정리하도록 하였으나 혹 행하기도 하고 하지 않기도 하였으며 심지어 이름을 바꿔 인원을 써넣기도 하였으니 다시 묘당에서 엄격히 신칙하게 하는 일입니다. 이액(吏額)을 잘라내 도태시키는 일은 두 번씩이나 번거롭게 품정하여 연달아 엄중 신칙하였으니 지금 계속하여 행회하여 도리어 번거롭다는 탄식에 있게 해서는 옳지 않습니다. 지금 우선 그대로 두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희한다고 답하였다.

司啓曰，卽見京畿暗行御史洪儀泳別單，則其 一，楊州之年前查陳，憑公營私，使民稱冤，富平之久 初不名色，爲三百餘結，辛亥改量時，執卜太濫，只餘 四十結，故一邑田結，無處不加，令廟堂詳究革弊之 道，驪州之防役草租，每結捧租十八斗，租一斗價錢，或捧二錢三四分，行關道臣，依利川例，役租中十斗，以租捧納八斗，以錢八錢，折捧定式，抱川上納，小米 居半，而京倉主人，任自折價，小米每石，凶年爲七八兩，豐年爲五六兩，行會該道，詳定例外，竝與人情雜 費，量宜定價事也，田政之紊，不但畿甸爲然，而尙不 得改量者，實以若使量失其方，則弊反甚於未量，故 前此湖西繡啓之請量也，乃以先得守令覆奏者，蓋以是耳，今以楊州言之，名以改量，反爲營私之端，徒添號冤之弊，其所謂年前擅量，目今生弊及何以 則可，以從長釐改之方，先爲行會道臣，使之與邑倅，爛商以啓，各邑災政，其名甚多，而所謂久初不名 色，尤爲易紊，最難得實，富平之三百餘結，今爲四十 結者，未知其果自辛亥，而必是改量之時，以陳爲起，幻虛執實之致也，然則勢不得不加俵於民，疊徵於 民，遂爲連年惟正之稅，而民無以支堪，理所必至，令 道臣詳考辛亥前後本邑田案，查得改量之所以然，民弊之所以救者，從實論啓，至於驪州之草租捧 錢，抱川之上納小米之爲弊者，竝爲詳覈，從民情一 一矯救後，狀聞之意分付，其一，養戶防結之弊，無 邑無之，而驪州·利川·陰竹，尤爲最甚，令廟堂嚴關痛 革事也，養戶防結，本是朝令之所切禁，而驪·利·竹 三邑之若是狼藉，以致害歸小民，利屬富戶，大關紀綱，萬萬驚駭，利川雖使姑且釐革，而驪·竹之不念洞 禁，任他作用者，都是守令不察之罪也，嚴飭道臣，使 之另加查發豪富之蔑法冒禁者，竝爲刑配，俾絕嗣 後容奸之習，其一，堤堰之界限未明，堰池填塞，受水 絕罕，令廟堂另加申飭事也，堤堰大關農政，廟堂別 設一司，行會申

飭，每年申嚴，而卽見繡啓，則列邑之初不修舉，一任湮塞，近尤爲甚，一依繡衣所論，先令道臣，別加摘奸，自今春一齊董飭，俾有實效，若有廢荒最多者，守令狀聞論勘之意分付，其一，糴糴諸弊，以最甚者言之，驪州則統分之弊，民既不堪，春給空穀，秋捧精實，陰竹則還穀，全入於吏逋，而秋後乃以官吏防還放債求請等名色，徵捧於民，驪州之班逋未捧，至於各穀一千三百餘石，米九十餘石之多，漣川民小穀多，太不相當，竝令廟堂，別般釐革，畿內諸邑還穀，亦令道臣，分排移轉，使民穀相稱，營門之挪移作錢之弊，令廟堂嚴飭道臣，皆於本邑作錢，挪移一款，永絕其弊，近來質租錢名色，自營門分布列邑，重爲民弊，質租永爲防塞，龍仁柴價，每結所捧三斗米，近以租二十斗出秩倉穀中，而庚申入於繡啓，但減租五斗，作米爲六斗，壬戌年時倖，以大同價例執錢，而冬亦依例出秩，則當年所納，實爲再次，令本道其再徵者查實，推給依前以三斗米酌定，勿復出秩於還穀而穀簿多端，吏緣爲奸，令廟堂穀簿之不緊名色，一切除去，軍餉之散在列邑者，無處無弊，而南北兩漢之弊，尤爲可悶，以其斛數空虛言之，則南漢之受病尤甚，以其措置失宜言之，則北漢之貽弊太酷，不可不及今釐革，令廟堂商量通變事也，分以廳荒，捧必精實，卽還弊之無邑不然者，而驪州則尤甚，不但統分之弊，至有白徵之患，陰竹則吏逋居多，民分無幾，加之以防還求請等諸般名色，不勝其多，官無察眉之意，民有切骨之冤，卽今糴糴之百道虐民，誠無所不有，而況驪州士族之怙勢臥還，若是無難，大民則恣行把弄，小民則偏受椎剝，如有一分法紀，寧容乃爾，嚴飭道臣，兩邑還弊，竝加查櫛，期於釐革，班戶宿逋，刻日畢捧，而後若復踵，有所現發，則自守令先勘其罪，漣川還多之弊，不可仍置，較量民穀，移轉於附近穀少邑，必圖裒益之效，至於營作錢之無得一石挪移，前因他道繡啓，關飭各該道臣，非止一再，庶期有懲前戒後之效，今不必更煩飭諭，所謂質租一款，既自他道移轉，則事當作錢於他道，質租於本道，而今若錢分錢捧，而却添以幾錢利條，似由於色落及雜費所需，而計以分數，終涉太濫，況散以錢，斂以錢，年復年仍作錢條，則烏在爲質租之義哉，自今秋另爲質租，以杜錢捧之弊，且考道內穀摠，雖非質租，足可排用，則仍爲永罷，是爲拔本之道，以此意關問道臣，南漢餉還，近年則果爲比前稍減，民戶所受，姑無太多之患，而北漢則年前十一邑分授，蓋出於不得不爾，而山餉及於遠民，則爲弊非不切悶，然而通變，姑沒良策，有難遽議釐改，更加十分商量，以定永久無弊之方，然後更爲稟處，其一，儲置米，丙辰年惠堂操節分排，以每年七千石，劃送監營，使之計給於列邑，而若楊州·高陽，則二千餘石白地役力，其加下之數，不得不計給，令本邑許多支用，詳考除減，或復民幾名，從宜應役，以減儲置米用處，又以本邑還耗中，以一年幾石，爲添補之用，而亦令廟堂，商其可否施行事也，儲置之弊，將至於民邑之難支矣，蓋道內大小國役及諸般公用，皆以儲置會減，昔則自惠廳，從所入直爲上下矣，丙辰年以糜費太過，會減無節之弊，筵稟變通，每年以七千石，劃付本道，使本道以此七千石之摠，排俵於各邑用下，而惠廳則不復句管，當其定式之初，若可以七千之數，足能當一年之需矣，行之未久，邑報每易濫觴，營勘終欠稱停，每不免年年加下，而況華城幸行時所用，始則自壯勇營舉行，而畿營初無所關，自壯營罷後，乃以壯營舉行者，全付於畿營七千石之內，以此之故，歲用逐歲大縮，一年甚於一年，新加多於前加，今則通各邑加下，已至萬餘石之多，自是以來，陵寢之役，事體至重，而白徵於民，無以受價，幸行之時，策應極繁，而專委於吏，仍未還報，故每當進排之時，措手無處，不得不或挪移還穀，而軍餉有虛簿之數，權貸富戶，而平民無受價之望，以至吏民呼訴之狀，積成券軸，而道臣亦無着手之物，藉口之言，年深歲加，吏與民將至於莫可支保，繡啓所陳，實非過語，而揆以國體，寧或以陵役所需，蹕路所用，專責於吏民，而不爲之隨卽上下，以致懷冤呼號於京鄉上司者哉，繡啓中還屬惠廳邑耗添補云者，雖不可遽議，而在今之策，還報加下，一時爲急，國穀之足與不足，在所不論，無計某樣穀，卽爲區劃，以報加下之數，自今以後，華城幸行時，凡干策應，

勿計於七千石之內，另以他穀會減，仍爲定例之意，分付惠廳及該道，如是之後，若使邑報營勘，一或過實，復以加下之說，推上朝家，則道臣守令，從重嚴勘，竝以是一體申飭，其一，軍政中不可容徐之弊，卽官吏輩各廳募屬，設立契房者也，其外校院募屬及士夫家墓直名色，稱托逃免，令廟堂行會諸道，一切革罷，期有實效，龍仁之蒼龍隊名色，初以本邑軍額改定者，而丁遇泰爲倅時，創出添補蒼龍保五百餘名，自當年新生兒，竝與私奴充數，捧其保錢八百餘兩，而七百餘兩，盡入囊橐，今倅改名爲軍器保，捧錢私用，令道臣卽速革罷事也，閑丁各自圖脫，殘民偏受其苦者，卽八道軍弊也，多創無前之名色，潛藏有限之良丁，諸路同然，無邑不爾，因前後繡啓，已爲行關嚴飭，俾各痛禁，至於龍仁之五百蒼龍保，實是墨倅肥己之計，黃口次骨之冤，該縣令丁遇泰，其所圖報，固當百倍他人，而白地虐民，至於如此，此不嚴懲，何以戢他，令該府拿覈，照法重勘，伊後之換名收錢，仍作邑例者，亦極痛駭，前後守令，竝拿問嚴處，所謂蒼龍保之變爲軍器修補者，卽令革罷之意，分付道臣，其一，各邑戎器，自廟堂申飭道臣，使之修補點閱事也，各邑軍器，使之從長修補，以時點閱之論，果爲得宜，以此關飭道臣，其一，討捕校卒，虐害平民楊州尤甚，楊州討捕，還屬廣州事也，猾校悍卒，若失操束，則廣州未必勝於楊州，若能威戢，則文倅不必讓於武倅，移設討捕，事係官制，今姑置之，而校卒肆虐之弊，楊·廣無異，各別嚴束，俾無得侵害平民之意，另飭該府該邑，其一，元有朋殺獄事也，元有朋之諸條所犯，已無可言，而至於殺越人命，在法罔赦，令該府拿覈正罪，其一，迎華諸站，爲三南之劇路，華城以南置站少，自本站至加川，爲八十里，故馬匹之病，每在此間，本站與加川之間，有菁好舊站，令該道審悉復舊事也，各驛之立馬闕額，使客之濫騎冒法，俱係郵官不職之罪，分付本道及本府，這這糾察，俾各洞禁，迎華間站之復設當否，使守臣從長變通，其一，宮房免稅，本爲邑邑輪回，而通津則年年來付，收納之際，呼冤載路，其中有租免稅，宮差下來，每結正租百斗，大斗徵捧，令廟堂申飭道臣，量宜移送，嚴禁濫捧之弊，長湍·陽城摠戎屯弊，比他爲最，執卜加濫，民不堪苦，令該軍門，禁戢革弊事也，五百宮結之偏定一邑，每結百斗之宮差濫捧，卽是邑民切至之怨，而偏定而不爲輪回，果由何故，濫捧而莫可禁止，亦自何時，竝令道臣查問該邑，偏定則使之輪回，濫捧則使之釐改，以爲通民息肩之地，軍門屯稅之加執濫徵，勢所必至，而爲民痼瘼，無異於宮稅，令該營將臣，另加查正，永革此弊，其一，司饗院分院所屬，憑藉侵虐，如廣州山面所納小豆，前秋濫捧太甚，廣州·安山之松里谷城串，今皆凋殘，俱是蘇魚所侵虐之故，而蓋抹木輸運，本不役民，而數年以來，捉船輸納，供上魚十八種，足取於公箭，而公箭之魚竊賣，稱以蘇魚貿易，民船每隻給錢十兩，捧蘇魚一千二百級，私船每隻稅錢爲十八兩，居民失業，私稅十八兩，卽爲除結十兩，貿蘇魚之弊，量宜除減，抹木輸運，使渠自當，又有安山漁夫米復戶，大爲邑弊，依大同例，納于惠廳，劃給於司饗院，則自無勒捧之事，令廟堂申飭釐革事也，往在乙卯，以分院之弊，命本院及道守臣，洞祛宿弊，既定新式，而仍以前後聖教，載在事目，作爲不易之制，纔過十年，爲弊如舊，至登繡啓者，專由於分院及魚所官員之締結下屬，惟事剖克之致也，所謂小豆濫捧，抹木輸納，蘇魚勒買，調發民船，漁夫復戶等弊，使本院及道臣守臣，嚴加查發，事目所在則申明事目，官吏所犯則另勘官吏，一遵乙卯改式之意分付，其一，人才取用，孝烈嘉獎事也，令各該曹稟處，其一，鄉曲常漢之乘轎，令法司行會該道，使之嚴禁事也，常賤乘轎，京外無異，可見法網之蕩然，令法司及本道，各加嚴禁，犯者依律定罪，其一，崇義殿祭器，三年一次，自廚院下送，永爲定式，安城洪宇遠私院，卽令毀撤，奉恩寺所奉順懷世子祠宇，令該府摘奸，重修，誠寧大君夫人成氏，安平大君仲冤後，不得附祀，請命禮曹，許令附祀事也，崇義殿祭器，令該院三年一次，隨邑報準數下送，洪宇遠私院，令本道卽爲毀撤，順懷世子祠宇，使本府奉審修補，誠寧大君夫人附祀，令該曹稟處，其一，江華以環海之地，年前守臣，誤築外城，沿海斥鹵，不久頽圯，而

吉祥面最是一島中肥土，地勢卑濕，馬蓄不繁，故己酉以募民耕食事上疏，自廟堂行會，因判付施行，而以草芝監牧者，沮戲，尙未移牧，已築之外城，雖難毀撤，吉祥牧場，卽爲許耕，定爲屯田，本府魚稅，倍蓰於他邑，如別庫貿易衙門供上，不勝其繁，其他侵虐之政，浩無紀極，柴鷄戶役，何邑無之，而九千餘戶應此役者，三千餘戶，多者一年所入六七兩，少不下三四兩，面任官隸之人情夥多，還上中名爲移去移來，一戶所費，或至一二石，或至三四石，傾家破產，莫能支保，令廟堂發關行會，凡茲四條，令守臣論列以聞，亟令施行，軍餉曾爲十七萬石，連爲移轉於各衙門，所餘一萬七千石，每年分給一萬二千四百石，留庫四千五百餘石，將士支放，每患不足，關防重地，所見哀嗟，以某樣穀，區劃以給，三浦民能槽名色，今爲切骨之瘼，十二鎮津船，亦是不可無者，亦令留臣，詳報備局，以爲究竟之地，京城防禦，通津可恃，而文殊山城城郭堅實，通津邑治，移設於文殊，則不過七里之間，運建公廩之所入，自公家劃給，下詢廟堂，博議守臣，以爲一勞永逸之策事也，江華外城之築，果爲失着，卽是自來先輩之論，而築之已久，今不可遽停，吉祥牧場之許民入耕，雖有己酉行會，設牧已過百年，到今移設，有難輕議，餉穀之不滿二萬，不但萬萬疎虞，日下支放，尙患不繼，移轉添餉，最爲先務，而畿內穀摠，近漸不敷，姑待從長商確，更爲稟處，通津移邑，實是重關防之策，而邑情民願之果爲如何，未得詳悉，從後博詢，以爲指一之稟，至於別庫貿易衙門，供上柴鷄戶役等弊，三浦糧軍蘇瘼之策，十二鎮船造設之方，關問守臣，待所報更爲稟處，其一，松都前典籍朴師燦，以三十年前事，竄配蒙放，而罪名尙在謫案，出身金顯一膂力過人，尙未錄用，儒生之讀書飭躬之人，另加疏用，儒案則申飭留臣，判付施行，戶債方爲痼弊，大小南面民布結役，軍兵稅納，居民受弊，大興山城還弊，青石新鎮松禁，青郊·自論兩撥站之難支，令廟堂行會留臣，使之疏陳事狀，期於施行事也，朴師燦則既蒙放又蕩滌，而罪名則尙在謫案者，未知緣何事端，而聞甚可訝，令該府詳考文案，果如繡啓，則卽令爻周，金顯一則令守臣親執取才，身手技藝，果合收用，則報于該曹，隨即錄用，儒案則流來已久，不必付丙，自今以後，別加調停，必示簡慎，雖或有不得不添錄之時，自該府先爲嚴束，俾不得如前淆亂，債弊還弊及大小南面民弊，青石松弊，兩站撥弊，令守臣一一詳量，從實陳聞，以爲矯揉之方，其一，楊州安百順家山訟，請令營邑，覈實處決事也，使此尋常爭山之訟，致煩上徹，卽由於營邑不善決折之失也，使之卽爲公決，俾勿延拖，御史之以此煩陳，亦爲未安推考，其一，牛禁慢忽，廣州一境，設庖九處，果川六處，楊州則無面無之，其餘列邑，村坊之間屠殺狼藉，嚴加覈實，明立條禁事也，雖不至登聞，而此不過守臣邑倅轉移間事耳，分付該府該道，使之各別禁斷，其一，列邑之弊，皆出於吏員數多之致，廟堂行會查汰，而或行或否，甚至換名書員，更令廟堂，嚴加申飭事也，吏額刊汰，再煩稟定，連加嚴飭，今不可續續行會，反致煩屑之歎，今姑置之何如，答曰，允。

<비변사등록 199책, 순조 9년 1809년 01월10일(음) >

경제/재정

水原府 沿海 尤甚戶의 身布를 停退하도록 할 것을 청하다

비변사에서 아뢰기를, “수원유수 김이익(金履翼)의 장계를 보니 본부 연해(沿海) 7개 면 우심호(尤甚戶)의 민정이 황급한 상황을 갖추 설명하고 이어서 우심으로 뽑힌 호구의 신포전(身布錢)이 4백 10냥인데 이 수에 의해 정되하되, 신포의 징수는 지방(支放)의 수요에 관련된 것이므로 급대(給代)하지 않을 수 없으니 본부 성역전(城役錢)의 남은 것 가운데서 마련하여 구획하도록 묘당에서 품지하여 분부하기를 청한다 하였습니다. 연해 7개 면의 민정이 황급함은 그 형세가 참으로 그러합니다만 신포전을 준공기에 징수를 독촉한다는 것은 실은 걱정스런 일입니다. 작년 가을에 전 수신(守臣)이 비록 견감을 청하였으나 격식 외의 일

이라 시행하도록 할 수 없었으나 지금 누차 청하는 것은 만부득이한 일임을 알 수 있어 계속 머뭇거리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지방의 수요는 급대하지 않을 수 없으나 달리 구획할 방도가 없습니다. 우선 성역에서 남은 돈을 편리한 대로 마련하는 것도 과연 변통하는 방도이니 장청에 의해 시행하도록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답하였다.

司啓曰，卽見水原留守金履翼狀啓，則備陳本府沿海七面尤甚戶民情遑急之狀，仍以爲尤甚抄戶身布錢，爲四百十兩，依此數停退，而身布之捧，係是支放之需，則不可不給代，就本府城役錢餘在條中，推移區劃事，請令廟堂稟旨分付矣，沿海七面之民情遑急，其勢固然，而身布錢之窮春督捧，實屬可悶，昨秋前守臣雖請蠲減，事係格外，不得許施，而今此屢請，可見其萬不得已，有難一向靳持，第此支放之需，不可不給代，而他無區劃之道，姑以城役餘錢，從便推移，果爲通變之方，依狀請施行之意，分付何如，答曰，允．

<비변사등록 199책, 순조 9년 1809년 01월 27일(음)>

경제/재정

水原의 還餉을 加分하도록 할 것을 청하다

비변사에서 아뢰기를, “수원유수(水原留守) 김이익(金履翼)의 장계를 보면 본부(本府)의 환향(還餉)은 원래 넉넉지 않아서 농사철에 굶주릴 우려가 있습니다. 유고조(留庫條) 가운데서 벼 3천 5백 석과 쌀 3백 석, 콩 1백 석과 소속 다섯 읍에 있는 남한산성의 군향 조(租) 5천 1백 25석을 특별히 더 나눠주도록 모두 묘당에서 품지하여 분부하기를 청한다 하였습니다. 본부의 작년 농사는 연해(沿海)가 흉년을 면치 못해 춘궁기에 먹고 살기 어려운 것은 사정이 원래 그렇습니다. 수신이 더 나눠달라고 청한 것이 작년보다 1천 석 많지만 이는 필시 헤아린 바가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다섯 읍 백성의 사정 역시 염두에 두어야 하니 모두 장청대로 시행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답하였다.

司啓曰，卽見水原留守金履翼狀啓，則以爲本府還餉，元來不敷，將有臨農阻饑之慮，留庫條中租三千五百石・米三百石・太一百石及屬五邑所在南漢餉租五千一百二十五石，特許加分事，並請令廟堂稟旨分付矣，本府昨年之農，沿海未免荐歉，窮春艱食，其勢固然，守臣所請加分，比昨年雖有千石之加，而此必有商量而然，五邑民情，亦所當念，並依狀請許施何如，答曰，允．

<비변사등록 199책, 순조 9년 1809년 04월 02일(음)>

경제/재정

行護軍 朴宗慶이 富平과 楊州의 保軍을 始興과 果川에 充當하는 문제 등에 대해 논의하다

○ 같은 날 입시하였을 때에 행호군 박종경(朴宗慶)이 아뢰기를, “무오년(戊午年: 정조22, 1798)에 시흥(始興)과 과천(果川) 등 고을을 화성(華城)에 이부(移付)할 때 본청 소속의 향표하군(鄉標下軍)으로 시흥 74명, 과천 52명이 획부 가운데 포함되어 있었는데, 아직 충정하지 못한 채 질질 끌며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군액(軍額)이 비는 것은 실로 매우 걱정이니 기미년(己未年: 정조23, 1799)에 진위(振威) 장초(壯抄)의 대신으로 양성(陽城)의 군수보(軍需保)를 승원(陞元)하는 예에 의하고 또 부평(富平)과 양주(楊州)의 보군에서 덜어내 액수를 채우고 그 대신을 부근 각 고을에 옮겨다 충정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그리하라 하였다.

또 아뢰기를, “신이 외람되게도 이 임무를 맡은 지 며칠밖에 되지 않아 본청의 사정을 두루 살피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경영의 모양이 날로 더욱 쇠잔하고 피폐하여 수습할 수 없게

된 상황은 일찍부터 들은 바가 있었으나 그래도 국외자(局外者)가 전하는 말이 분수에 너무 지나치다고 여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이 직접 맡게 되고 보니 그 지탱하기 어려운 단서는 교리(校吏)의 지방(支放)보다 심하고 군졸의 접제(接濟)에 많이 부족하며 그 밖의 갖가지 경비도 손 쓸 길이 없으니 실로 지금 바로잡지 않으면 자립할 길이 없게 될 형편입니다. 5, 6천금의 세입(歲入)이 있어야 메워 지탱할 수 있을 터인데, 이제 나라의 저축이 텅 비어 달리 조처할 방도가 없습니다. 오직 해서에 있는 호서의 환침곡(還寢穀)은 본디 다른 데로 구획한 것이었고, 지금 이미 수에 맞춰 값은 각곡이 도합 1만 4천 1백 66석입니다. 관서의 별향곡은 수효가 조금 여유가 있고, 또 원군향(元軍餉)과 다르므로 평년에 분급하는 것 가운데 대미(大米) 5천 석과 소미(小米) 5천 석을 모두 본청에 이속(移屬)하여 모곡을 취하여 경비에 보탬 밀천으로 삼게 하였는데 비록 이획이라고는 해도 원곡은 본처에 그대로 있고 본청은 크게 힘을 펴게 될 것이니 이 두 항목의 곡물을 획부하고 본청의 월과(月課) 경비에 있어서는 양서(兩西)의 소미 1천 5백 석으로 돌아가며 작전(作錢)하고 있는데 서울에서 쌀을 살 때에 값이 등귀하여 사들인 것으로는 비용을 감당할 수 없으니 실로 매우 걱정입니다. 임자년(壬子年: 정조16, 1792)에 황해병영에서 구관(句管)하는 저치소미(儲置小米) 6천 5백여 석을 장용영(壯勇營)에 이속하고 그 대신 황주(黃州)의 저치소미 2천 1백 12석과 상진소미(常賑小米) 1천 석, 정방창(正方倉) 소미 4백 석, 도합 3천 5백여 석을 병영에 획부하여 매년 모곡 3백 석을 경비로 쓰고 나머지 모곡 50여 석을 원곡에 덧붙여 숫자가 차기를 기다려 본곡에 갚도록 하는 것입니다. 무진년(戊辰年: 순조8, 1808)에 마감한 것이 도합 5천 3백 40여 석인데 이제는 **장용영**이 혁파되었으니 당초에 이속한 저치미를 선혜청에 돌려주면 지금 다시 갚을 일이 없습니다. 병영에 획부한 3천여 석 외의를 본청에 획부하여 해마다 모곡을 취하여 월과 경비에 보태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그리하라 하였다.

또 아뢰기를, “위의 세 항목의 곡물을 이제 본청에 획부하여 수어청(守禦廳)의 예에 따라 총융청지방곡(摠戎廳支放穀)이라 하고 본청에 마감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환침곡(還寢穀)은 곧 반분곡(半分穀)이라 명년부터는 진분(盡分)해야 합니다. 따라서 숫자가 많지는 않지만 첨환(添還: 환자를 보충함)의 폐단도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海道(該道)에서 매년 가분(加分)하는 것은 수만 석뿐만이 아니고, 이 가운데 들어가는 것은 그 자체로 첨환의 염려가 없으니 일이 매우 편하고 좋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일체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그리하라 하였다.

또 아뢰기를, “성향(城餉)은 만일에 대비하는 것이어서 많이 남기고 적게 나눠주도록 법을 세운 뜻이 지극히 엄중합니다. 그런데 근래에는 본읍에 받아두는 것을 상례(常例)로 여겨 어려움 없이 청합니다. 이는 비록 흉년 든 해에 민력을 편다는 뜻에서 나왔으나 사실은 환민(還民)이 실어다 납부한다는 점에서는 같습니다. 이는 먼데를 버리고 가까운 데에서 취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백리 안에서 그 거리를 비교하면, 얻는 것은 백리 가운데 수십 리에 지나지 않으니 오십 보 백보와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이 수십 리 왕래하는 수고 때문에 2만 석을 허류(虛留)하는 폐단을 생각지 않으니 막중한 성향을 한갓 허부(虛簿)만을 안고 있습니다. 이밖에 더욱 걱정스러운 것이 있습니다. 한번 받아두면 다음해의 분류(分留)는 형편상 옛 것을 쓰고 새 것을 저축할 수 없게 되어 쌓아놓은 것이 손상되고 가장 오래된 것은 티끌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이렇든 저렇든 어디에 만일에 대비하는 일이 있으며, 위급한 일이라도 생기면 장차 무엇을 믿을 것입니까? 갑인년(甲寅年: 정조18, 1794)에 새로 정한 절목(節目)에 따라 특교가 아니면 감히 아래에서 장청할 수 없도록 미리 분부하는 것이 어

땡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그리하라 하였다.

同日入侍時，行護軍朴宗慶所啓，戊午始興・果川等邑，移付華城時，本廳屬鄉標下軍，始興七十四名・果川五十二名，自在劃付中，而姑未充定，因循至今矣，軍額虛伍，誠甚可悶，一依己未年振威壯抄代，以陽城軍需保陞元例，亦以富平・楊州保軍，除出充額，其代移定於附近各邑何如，上曰，依爲之。

又所啓，臣之猥叨是任，纔有日矣，本廳事勢，雖未周察，第其營樣之日益凋弊，莫可收拾之狀，曾或入耳，而猶謂局外傳道之太過分數，今臣身親當之，則其所難支之端，殆甚於所聞，校吏支放，軍卒接濟，既多不足，外此各樣所需，着手沒策，苟不及今矯揉，其勢無以自立，須有五六千金歲入之物，然後庶可塗抹支存，而見今國儲朽然，無他措處之道，惟有海西所在湖西還寢穀，本是區劃他處，而今既准報者，各穀合一萬四千一百六十六石，關西別餉穀，數爰稍裕，且與元軍餉有異，常年分給中大米五千石・小米五千石，竝移劃本廳，以爲取耗補用之地，而雖曰移劃，元穀則自在本處，本廳則大爲紓力，以此兩項穀物劃付，至於本廳月課物力，卽兩西小米一千五百石，輪回作錢，自京貿米之際，價直踊貴，則所貿不能當所用，誠甚可悶，壬子黃海兵營旬管儲置小米六千五百餘石，移屬壯勇營，其代以黃州儲置小米二千一百十二石，常賑小米一千石，正方倉小米四百石，合三千五百餘石，劃付兵營，每年耗三百石，使之取用，餘耗五十餘石，添付元穀，待滿數還報本穀者也，戊辰磨勘，合爲五千三百四十餘石，而今則壯營已罷，當初移屬儲置，還歸惠廳，則今無更報之事，兵營劃付三千石外餘數，則劃付本廳，以爲年年取耗，添補月課物力何如，上曰，依爲之。

又所啓，三項穀物，今既移劃本廳，依守禦廳例，以摠戎廳支放穀稱名，使之磨勘本廳，而其中還寢穀，卽半分之穀，自明年當爲盡分，而數雖不多，添還之弊，亦不可不念，該道每年加分，不啻累萬石，入於此中，則自無添還之慮，事甚便好，以此意一體分付何如，上曰，依爲之。

又所啓，城餉自是陰雨之備，留多分小，法意至爲嚴重，而近來捧留本邑，視若常例，無難仰請，此雖出於歉歲紓民力之意，其實還民之輸納則一也，而此不過捨遠就近，較其道里於百里之內，所得不過數十里，則何異於五十步百步之間，爲此數十里往來之勞，不念二萬石虛留之弊，莫重城餉，徒擁虛簿，此外尤有可悶者，一番捧留，則翌年分留，勢不得用舊蓄新，所儲陳腐，最久者無異塵土，以此以彼，烏在其陰雨之備，而脫有緩急，則將何所恃乎，一依甲寅新定節目，除非特教，則自下無敢狀請之意，預先分付何如，上曰，依爲之。

<비변사등록 199책, 순조 9년 1809년 08월25일(음) >

경제/재정

右議政 金思穆 등이 湖南과 湖西에 還穀을 區劃하는 문제 등에 대해 논의하다

1월 14일 대신과 비국당상을 인견하여 입시하였을 때에 우의정 김사목(金思穆)이 아뢰기를 “호남과 호서 양도 도신(道臣)의 상소로 인하여 환곡의 구획(區劃)을 소상하게 품처하겠다는 초기(草記)에 대해 윤택을 받았습니다. 흥년에 민정(民情)이 황급함은 양도가 거의 다들 게 없지만 새 환곡은 이미 책정한 수량대로 거두지 못했고 유고(留庫)도 그다지 많지 않으며, 그 중에서 진흙 물자를 계산해서 제하고 나면 환호(還戶)에게 순차(巡次) 차례로 돌리 기에도 태반이 부족합니다. 이와 같은 사정은 양도가 마찬가지로여서 호남은 절미(折米) 10만 석을 청하였고, 호서는 각곡(各穀) 6만 석을 청하였는데 본도(本道)에 기왕 구제할 만한 곡식이 없으니 사세가 다른 도에서 획급하여 그 소청에 부응해 주어야 하겠습니다. 호남은 관서(關西)에 있는 곡식 중에서 별군향(別軍餉) 대미(大米) 1만 5천 석, 소미(小米) 1만 5천 석, 순전곡(巡錢穀) 소미 5천 석, 태(太) 1만 석, 수원향군접제조(水原鄉軍接濟條) 소미 5

천 석, 한성부 소미 6천 9백 12석을, 호서는 해서(海西)에 있는 곡식 중에서 충융청지방미(攄戎廳支放米) 각곡 1만 6천 5백 6석, 비변사자비조(備邊司自備條) 각곡 2만 4천 석을 구획하여 그들에게 형편대로 가져다 쓰도록 양호(兩湖)와 양서(兩西)의 도신에게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유사당상(有司堂上)과 선혜청당상의 소견도 그러한가?” 하였다.

선혜청당상 박종경(朴宗慶)은 말하기를, “어제 회의할 때 비록 어쩔 수 없이 이처럼 구획하기는 하였지만 근래 곡부(穀簿)에 이름은 있는데 실제로는 없는 것이 있고 이렇듯 춘궁기를 당하여 창고에 저장된 것으로 내 준다면 두량(斗量)이 필시 감축된 것이 많을 것이고 곡명(穀名)도 문란함이 있을 것이므로 실어 보낼 수 없을까 염려되고 또 연읍(沿邑)의 허실 역시 정확하게 알기가 어려우니, 참으로 매우 걱정입니다.”

하고, 유사당상 김희순(金義淳)은 말하기를, “양호의 곡부가 이미 손을 쓸 도리가 없기 때문에 양서에 있는 곡식으로 이처럼 안배한 것이나 다만 생각건대 양서에서는 이미 받아들인 곡식을 남에게 내주면 허다한 폐가 된다는 것은 미루어 알 수가 있고, 창고를 열어 돈으로 바꾸는 것 또한 반드시 어려울 것이므로 양서를 위하여 참으로 걱정입니다. 그렇지만 형세상 양서에서 구획하지 않을 수 없었기에 이와 같이 한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그리하라 하였다. (…)

今正月十四日大臣備局堂上引見入侍時, 右 議政金所啓, 因湖南·湖西兩道道臣上疏, 還穀 區劃消詳稟處事, 草記蒙允矣, 歉歲民情之遑 急, 兩道殆無異同, 而新糴既未準捧, 留庫又甚不多, 計除賑資於其中, 則還戶排巡, 太半不足, 如此事情, 兩道一般, 而湖南請折米十萬石, 湖西請各穀六萬 石, 從其本道, 既無可濟之穀, 則勢將從他道許劃, 以 副其請矣, 湖南則就關西所在穀中, 別軍餉大米一 萬五千石·小米一萬五千石·巡錢穀小米五千石·太 一萬石·水原鄉軍接濟條小米五千石·漢城府小米 六千九百十二石, 湖西則就海西所在穀中, 攄戎廳 支放米各穀一萬六千五百六石·備邊司自備米各 穀二萬四千石區劃, 使之從便取用之意, 分付兩湖·兩西道臣何如, 上曰, 有司堂上·惠堂所見亦然乎, 宣惠廳堂上朴宗慶曰, 昨日會議時, 雖不得不如是 區劃, 而近來穀簿, 名存實無, 當此窮春, 以庫儲出給, 斗斛想多減縮, 穀名必有紊亂, 恐無以轉輸, 而沿邑 之虛實, 亦難的知, 誠甚可悶, 有司堂上金義淳曰, 兩 湖穀簿, 既無着手之道, 故就兩西所在穀, 如是排比, 而第念兩西, 以既捧之穀, 出付於人, 許多爲弊, 可推 而知, 開倉作錢, 又必爲難, 爲兩西誠悶, 然而勢不可 不從兩西區劃, 故如是矣, 上曰, 依爲之.(…)

<비변사등록 200책, 순조 10년 1810년 01월 15일(음)>

경제/재정

水原留守 金履翼이 청한 대로 空名帖 100장을 내려 보낼 것을 청하다

○ 비변사에서 아뢰기를, “수원유수 김이익(金履翼)이 본사에 보고한 내용을 보니, ‘본부는 진흥곡에 보태기 위한 공명첩(空名帖) 2백 장을 전에 이미 발매(發賣)하여 순차(巡次)를 이어 안배하여 써 왔지만 곡물 외의 염곽(鹽藿) 등의 물종을 사세가 돈으로 사 와야 하는데 비용이 이미 다하고 추이(推移)할 계획도 없으니 3백 장에 한하여 속히 더 획급해 주소서.’ 하였습니니다. 본부에는 공명첩을 전에 이미 2백 장이나 허시하였으나 지금 청한 것이 또 이와 같으니 1백 장을 더해서 내려 보내 진흥에 보태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답하였다.

司啓曰, 卽見水原留守金履翼報本司辭緣, 則以爲本府補賑空名帖二百張, 前已發賣, 繼巡排用, 而穀物外鹽藿等種, 勢將以錢換質, 而用既艱乏, 計無推移, 限三百張亟許加劃爲辭矣, 本府空

名帖，前既以二百張許施，而今請又如此，一百張加數下送，以爲補賑之地何如，答曰，允。

<비변사등록 200책, 순조 10년 1810년 03월 19일(음)>

경제/재정

水原의 舊還 중 戊辰年條는 절반 己巳年條는 3분의 1을 停捧하도록 할 것을 청하다

○ 비변사에서 아뢰기를, “방금 수원유수 김이익(金履翼)의 장계를 보니, ‘올해 농사는 작년에 비해서는 낫지만 신환(新還)과 구환(舊還)을 아울러 독촉한다면 백성들의 실정이 배나 어려워질 것이니, 구환의 당봉조(當捧條)를 모두 정봉하도록 묘당에서 품지하여 분부하게 해 주소서.’ 하였습니다. 본부의 3개 년 구환 가운데 정묘조(丁卯條:순조7, 1807)는 이미 전량을 정퇴하고, 단지 무진조(戊辰條:순조8, 1808)와 기사조(己巳條:순조9, 1809)를 각각 분수하여 나누어 받게 하였으니 지금은 2개년에 지나지 않은데도 누차 장계로 정퇴를 청하여 재차 삼차에 이르니, 백성들의 형세에 어쩔 수 없는 점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무진조는 절반을, 기사조는 3분의 1을 아울러 정봉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답하였다.

司啓曰，卽見水原留守金履翼狀啓，則以爲今年穡事，比昨雖勝，新舊並督，民情倍艱，舊還當捧條一並停捧事，請令廟堂稟旨分付矣，本府三年 舊還中，丁卯條已爲全數停退，只以戊辰·己巳條，各 爲分數分捧，則今不過爲二年條，而屢啓請停，至 再至三，可知民勢之有不獲已，戊辰條折半，己巳條 三分一，並許停捧何如，答曰，允。

<비변사등록 200책, 순조 10년 1810년 12월 10일(음)>

경제/재정

水原留守 金履翼을 推考하고 거둬들이지 못한 還餉을 收捧하게 하라고 전교하다

○ 수원유수 김이익(金履翼)이 장계에서, 환향(還餉)을 아직 거두지 못하였으므로 황공하여 대죄(待罪)한다고 한 일과 관련하여 전교하기를, “이 장계의 내용을 보건대 아직 거두지 못한 수량이 이처럼 많으니 백성들의 실정은 걱정되지만 나라의 체모는 참으로 해괴하게 되었다. 경은 추고하고 아직 거두어들이지 못한 각곡은 새로 제수된 유수에게 되도록 편리하고 합당한 방법으로 조용히 거두어들여 나라의 곡식이 낭패에 이르는 일이 없도록 하고 민사 역시 낙망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묘당에서 별도로 신칙하여 분부하게 하고, 대죄하지 말라고 회유(回諭)하라.” 하였다.

以水原留守金履翼狀啓，還餉未捧，惶恐待罪事，傳曰，觀此狀辭，未捧之數，若是夥多，民情則可悶，而國體則良覺駭然，卿則推考，未捧各穀，令新留守，務念便當，從容收捧，使國穀無至狼狽，民事亦無 落莫之歎事，令廟堂另飭分付，勿待罪事回諭。

<비변사등록 200책, 순조 10년 1810년 12월 29일(음)>

경제/재정

左議政 金載瓚이 화성에 이속시킨 칙수전의 폐단에 대해 논의하다

○ 1월 22일 대신과 비국 당상을 인견하여 입시하였을 때 좌의정 김재찬(金載瓚)이 아뢰기를, (….) 또 아뢰기를, “근래 경기(京畿)의 칙수전(勅需錢)을 빚을 놓아 이웃까지 징수하고 종족까지 징수하여 도민(都民)들이 산업을 탕진케 하는 지경에 이른 것은 서로 바라볼 정도로 많으니 매해 연말에 백성의 사정이 시끄럽고 근심스럽습니다. 그래서 빚을 놓은 내력을 물어보니 본도(本道)의 칙수(勅需) 원곡(元穀)이 2만석인데 이를 화성(華城)으로 이속

시켜 모곡(耗穀)을 취하여 집전(執錢) 할 때에 비단 백성의 폐단이 여러 가지일 뿐 아니라 본도의 지척(支勅) 또한 예비해 두는 수요가 없을 수가 없었습니다. 을축년(乙丑年: 순조5, 1805)에 영남곡(嶺南穀)을 화성에 급대(給代: 값을 쳐서 다른 물건으로 대신 줌)하고 본곡(本穀)은 본도로 환속시켜 이전대로 모곡을 취하여 보충해 넣도록 하였습니다. 그 다음 해에 한 도신(道臣)이 모조(耗條)를 해마다 집전하여 빚을 놓아 이자를 취하니 수년이 못되는 동안 크게 민폐를 끼치는 것이 이상에서 진술한 것과 같아 실로 매우 근심스럽고 한탄스럽습니다. 금년부터 시작하여 집전하여 빚을 놓는 것을 영원히 혁파하고 이미 빚을 놓은 돈은 이자를 면제하고 본래의 수로 징봉(徵捧)하며 편리한 대로 작곡(作穀)하여 원곡과 아울러 본사에 마감(磨勘)하라고 해도(該道)에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그리하라 하였다.

今正月二十二日，大臣備局堂上，引見入侍時，左議政金所啓，(…)又所啓，近以京畿勅需錢放債事，隣徵族徵，至有都民蕩敗產業之境者，項背相望，每當歲末，民情嗷嗷，故叩問其放債來歷，則本道勅需元穀，爲二萬石，而移屬華城，取耗執錢之際，非但民弊多端，本道支勅，亦不可無備預之需，乙丑年以嶺南穀，給代於華城，而本穀則還屬本道，使之依前取耗添補矣，其翌年一道臣，以耗條逐年執錢，散債取息，不數年大貽民弊者，如右所陳，誠極悶歎，自今年爲始，執錢放債，永爲革罷，已放債錢，除息以本數徵捧，從便作穀並元穀，使之磨勘於本司之意，分付該道何如，上曰，依爲之。

<비변사등록 202책, 순조 12년 1812년 01월22일(음)>

경제/재정

倭譯에게 내주는 質蓼價는 華城이 관할하는 互換米 중에서 劃給할 것을 청하다

○ 비변사에서 아뢰기를, “예무(例貿)하는 삼값의 돈 3만 5천 5백 20냥은 본래 관서의 삼을 무역하는 곡식을 작전(作錢)한 것으로서 매년 왜역(倭譯)에게 내어 줍니다. 지금 관서에 병란이 있는 나머지 저축이 텅 비어 허다한 작전은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또 내년에 진흙한 자원도 미리 유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느 아문(衙門)의 곡식을 막론하고 이제 변통해야 합니다. 삼을 무역할 값으로 우선 양남(兩南)에 있는 화성(華城) 소관의 호환미(互換米) 가운데 1만 2천 석을 분배하여 획급(劃給)하되 화성 호환곡에서 취한 모곡에서 2천 석을 관서의 삼을 무역하는 곡식 가운데에서 작전하여 보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답하였다.

司啓曰，例貿蓼價錢三萬五千五百二十兩，本以關西質蓼穀作錢，每年出給於倭譯矣，見今關西兵荒之餘，蓄儲枵然，許多作錢，在所難愼，且嗣歲賑賑之資，亦不可不預先留意，無論某衙門穀，當及今變通，質蓼價，姑以兩南所在華城所管互換米中，一萬二千石，分排劃給，而華城互換穀，取耗二千石，以關西質蓼穀中，作錢以送，何如，答曰，允。

<비변사등록 202책, 순조 12년 1812년 09월30일(음)>

경제/재정

嶺南 右兵營의 軍餉米 1500석을 水原에 劃給할 것을 청하다

○ 비변사에서 아뢰기를, “수원유수 김이도(金履度)가 보고한 바를 보면 본부 분봉상시(分奉常寺) 소관의 관서 연례 작전 소미(作錢小米) 1천 5백 석을 해도(該道)에서 각읍에 수봉을 정지한 것이 지나치게 많아 전황(錢荒)이 곡황(穀荒)보다 더 심하여 돈으로 바꿀 수가 없으므로 다른 방도로 구획하기를 청한다 하였습니다. 제수(祭需)의 중요함은 그 관계가 저

절로 구별되고 관서의 상황은 예처럼 취용하기가 어려우니 다른 도로부터 옮겨 획급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영남(嶺南) 우병영(右兵營)의 군향미 가운데 1천 5백 석을 해부(該府)에 획급하여 편의에 따라 취용하라고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희한다고 답하였다.

司啓曰，卽見水原留守金履度所報，則以爲本府分奉常寺所管關西年例作錢小米一千五百石，該道以各邑停捧夥多，錢荒甚於穀荒，不得作錢，從他區劃爲辭矣，享需所重，關係自別，而關西事勢，難於如例取用，則不可不從他道移劃，嶺南右兵營 軍餉米中一千五百石，劃給該府，使之從便取用之意，分付何如，答曰，允.

<비변사등록 202책, 순조 12년 1812년 11월 22일(음)>

경제/재정

水原留守 金履度の 요청대로 稍實面の 戊辰年 등의 停退條를 停捧하도록 할 것을 청하다

○ 비변사에서 아뢰기를, “지난 번 연분(年分) 장청으로 인하여 수원(水原) 초실면(稍實面)의 작년 묵은 환향(還餉) 3분의 2를 수봉(收捧)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당해 유수 김이도(金履度)의 장계를 보면 해는 다 저물어가고 창고를 봉하는 일은 묵전에 다가왔는데 백성의 상황은 궁핍하여 봉납할 길이 없습니다. 각 초실면에 소재한 무진년(戊辰年)·기사년(己巳年)에 정퇴한 것은 봉납해야 할 각 곡식이 도합 5천 55석 5두 영이고 기사년에 그대로 봉납하지 못하여 봉납해야 할 것은 각 곡식이 5백 14석 12두 영인데 우심면의 예에 의하여 전수량을 그대로 정퇴하도록 묘당에서 품지하여 분부하기를 청한다 하였습니다. 초실의 면리(面里)도 묵은 환곡을 전부 정퇴하기를 청했으니 앞으로 수봉할 수 있는 날이 없게 되어 한갓 봉납을 거부하는 버릇만을 터주어 후일의 폐단과 관련되므로 길을 열어주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지금 창고를 봉하는 일은 한도가 있고 선달 그믐날도 며칠 남지 않았으니 5천 여석을 이 때 독려하여 수봉한다는 것은 거론할 것이 없습니다. 장청에 의해 우선 그대로 정퇴하게 하고 수신(守臣)을 추고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희한다고 답하였다.

司啓曰，頃因年分狀請，水原稍實面各年舊還餉三分二，使之收捧矣，卽見該留守金履度狀啓，則以爲歲律垂盡，封倉在卽，而民勢窮乏，捧納無路，稍實各面所在戊辰·己巳停退條中，當捧各穀，合五千五十五石五斗零，己巳仍未捧當捧條，各穀五百 十四石十二斗零，依尤甚面例，並許全數仍停事，請令廟堂，稟旨分付矣，既以稍實之面里，亦請舊還 之全停，則將無可捧之日，徒啓拒納之習，後弊所關，切難開路，而第今封倉有限，歲除隔日，五千餘石之此時督捧，已無可論，依所請姑令仍停，守臣推考，何 如，答曰，允.

<비변사등록 202책, 순조 12년 1812년 12월 23일(음)>

경제/재정

分奉常寺의 支供條를 嶺南의 軍餉米로 水原府에 劃給하게 할 것을 청하다

비변사에서 아뢰기를, “수원유수 이익운(李益運)이 보고한 바를 보니 본부의 분봉상시(分奉常寺) 지공조(支供條)로 관서에 있는 소미(小米) 1천 석을 매년 돈으로 만들어 취용하였는데 지금 본도의 전황(錢荒)으로 인해 예처럼 돈으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향군(鄉軍)의 접제(接濟：도와줌) 소미(小米：좁쌀) 원곡(元穀) 5천 석이 신미년(辛未年：순조11, 1811)과 임신년(壬申年：순조12, 1812) 두 해의 정봉(停捧)·탕감(蕩減) 및 진자(賑資)에 보충되어 쓰였고 남은 것이 3백 47석 영이며 5백 석의 모조(耗條)는 가족이 없는 털이 되었습니다. 위 지공조 1천 석의 대전(代錢) 3천 냥을 경외(京外)의 아무 돈이나 곡식에서 대신 지

급하고 향군 접제조 5백 석을 올해부터 영원히 대신 지급하기를 바란다고 하였습니다. 제사에 쓰일 것은 관계가 자별하고 향군의 접제 역시 본부의 경용(經用)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인데 관서의 사세가 예처럼 취용할 수 없게 되었으니 다른 도에서 구획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영남(嶺南) 우병영(右兵營)의 군향미 가운데에서 1천 5백 석을 해부(該府)에 획급하여 편의에 따라 취용하고 향군의 급대조에 있어서는 영구히 바꾸어 획급하되 다시 앞으로 관서곡의 정퇴와 미봉조의 수납 실제 수를 보아서 품처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택한다고 답하였다.

司啓曰，卽見水原留守李益運所報，則以爲本 府分奉常寺支供條，關西所在小米一千石，每年作錢取用，而今因本道之錢荒，不得如例作錢，鄉軍接濟小米元穀五千石，入於辛·壬兩年停捧蕩減及賑資補用，所餘爲三百四十七石零，則五百石耗條已 是皮不存之毛，上項支供條一千石代錢三千兩，以 京外某樣錢穀姑爲給代，鄉軍接濟條五百石，自今年永爲給代爲辭矣，享需所用關係自別，鄉軍接濟亦是本府經用之不可闕者，而關西事勢既無以如 例取用，不可不從他道區劃，嶺南右兵營軍餉米中 一千五百石劃給該府，使之從便取用，而至於鄉軍 給代條之永爲換劃，則更觀來頭關西穀停退及未捧條之收納實數，從後稟處何如，答曰，允.

<비변사등록 203책, 순조 13년 1813년 11월 18일(음)>

경제/재정

忠淸道에 嶺南의 備局軍作米 등 1萬石을 劃給하고 空名帖 550장을 작성해 보낼 것을 청하다 비변사에서 아뢰기를, “충청 감사 조정철(趙貞喆)의 장계를 보니 우심의 서천(舒川) 등 16읍진과 지차읍 가운데 전의(全義) 등 11읍에 진홀을 설치하지 않을 수 없으니 북곡(北穀:함경도에 보낼 곡물)을 절미하여 2천 석, 영남곡(嶺南穀)을 절미하여 5백 석, 원산곡(元山穀)을 절미하여 6천 석, 군역청의 군작곡(軍作穀)을 절미하여 5백 석과 보환곡(補還穀)을 절미하여 4천 석 도합 절미하여 1만 3천 석을 획급하도록 하고, 공명첩 6백 50장을 만들어 보낼 것이며 본도의 곡총(穀總)이 해마다 감소하여 환곡을 분급(分給)하는 데에 배비(排比)할 수 없어 곡식이 적은 곳에 환곡을 풀고 진홀을 한다는 것은 밀가루 없이 수제비를 만드는 격이니 도내 곡식으로서 환곡과 군향곡을 막론하고 알맞게 이전하고 다른 도의 곡식을 절미하여 3만 석에 한정하여 획급하여 환곡에 보태도록 묘당에서 품지하여 분부하기를 청한다 하였습니다. 본도 백성의 사정은 우심과 지차읍을 막론하고 작년에 비하여 배로 힘들뿐이 아닌데 작년에도 진홀을 설치했으니 지금 진홀을 경영한다는 것은 더욱 조금도 늦출 수는 없는 일입니다. 도신이 굶주린 가구를 추리지 않고 먼저 곡식을 청한 것은 조치가 시급하고 늦출 길이 없기 때문에 우선 들어갈 가상치를 들어 이러한 진청이 있게 된 것인데 연말이 이미 다되었고 진홀할 시기가 멀지 않았으니 누차 번거롭게 협의하여 시일을 허비할 수 없습니다. 본도에 있는 북곡을 절미하여 2천 석, 영남곡을 절미하여 5백 석, 원산곡을 절미하여 3천 석, 군역청의 군작곡을 절미하여 5백 석과 보환곡을 절미하여 4천 석 도합 1만 석을 획급하게 하면 청한 것에 비하여 비록 3천 석이 줄었으나 이 1만 석으로 정밀하게 추리고 정밀하게 분배하면 읍진에 고루 분배할 수 있어 보리건이 때까지 생활할 수 있으니 좋은 쪽으로 변통하여 즉시 거행하게 해서 한 사람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탄식이 없게 하고 진홀을 마친 후의 남은 곡식은 예에 의해 도로 기록하며 환정(還政)이 중대함은 진정(賑政)보다 못하지 않은데 도내 곡총이 계순(繼巡)할 수 없으면 곡식의 이전 요청은 형세 상 말할 수 없는 일입니다. 다만 지금 곡식이 고갈되는 폐단은 각도가 동일한데 해마다 정퇴와 견감이 있고 계속해서 이전이 있습니다. 비록 이는 넉넉하게 하는 방도이긴 하나 역시 용납이 되지 못하

는 탄식이 있는데 더구나 흉년에 백성을 부려 곡식을 옮기는 일이 가장 심합니다. 지금 이 3만 석의 요청은 청한 바가 너무 지나칠 뿐 아니라 그대로 시행하려고 해도 형편상 그리할 수 없습니다. 영남 비국(備局)의 군작미와 남창(南倉)의 전작미(錢作米) 가운데 4천 석, 호남과 화성(華城)의 호환미(互換米) 3천 석, 해서(海西)의 원진곡(元賑穀) 3천 석 도합 1만 석을 획하여 제때에 운송해서 정밀하고 절약해서 사용토록 하고 공명첩 5백 50장 역시 만들어 보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답하였다.

司啓曰，卽見忠淸監司趙貞喆狀啓，則以爲 尤甚舒川等十六邑鎮之次邑中全義等十一邑，不可不設賑，北穀折米二千石，嶺南穀折米五百石，元山穀折米六千石，均廳軍作穀折米五百石，補還穀折米四千石，合折米一萬三千石許劃，空名帖六百五十張成送，而本道穀摠逐歲減縮，還穀分給無以排比，穀少處還賑，殆甚無麪之托，道內穀，毋論還·軍餉，量宜移轉，而他道穀，折米限三萬石劃下添糶事，請令廟堂稟旨分付矣，本道民情，無論尤甚·之次邑，比昨年不啻倍棘，而昨年亦已設賑，則及今營賑，尤不宜少緩，道臣之不待抄飢，先此請穀，蓋其設施是急，遲延無路，故姑舉容入之假令，有此陳請，而歲色已窮，賑期不遠，不可屢煩往復，虛費時日，以本道所在北穀折米二千石，嶺南穀折米五百石，元山穀折米三千石，均廳軍作穀折米五百石，補還穀折米四千石合一萬石許劃，則比所請雖減三千石，而以此一萬石精抄精依，則可以均排邑鎮，麥前資活，使之從長塗抹，趁卽舉行，俾無一夫不獲之歎，畢賑後餘穀，依例還錄，至於還政之重，不下於賑政，而道內穀摠，無以繼巡，則移粟之請，勢所不已，第今穀渴之弊，各道同然，停蠲連年，轉移相續，雖是有裕之道，亦有不闕之歎，而況歉歲役民，移穀最甚，今此三萬石之請，不但所請太過，設欲從施，其勢末由，以嶺南備局軍作米，南倉錢作米中四千石，湖南華城互換米三千石，海西元賑穀三千石，合折米一萬石劃下，以爲及期運來精約需用之地，空名帖五百五十張，亦爲成送何如，答曰，允。

<비변사등록 203책, 순조 13년 1813년 12월16일(음)>

경제/재정

舊還을 거둘 수 없어 待罪한다는 水原留守 李益運의 장계에 대해 待罪하지 말라는 전교하다
○ 수원유수(水原留守) 이익운(李益運)이, 본부(本府)의 구환(舊還)을 징수하지 못하였으니 황공한 마음으로 대죄(待罪)한다는 일로 장계한 데 대해 전교하기를, “대죄하지 말라고 회유(回諭)하라.” 하였다.

以水原留守李益運狀啓，本府舊還末由徵捧，惶恐待罪事，傳曰，勿待罪事回諭。

<비변사등록 204책, 순조 14년 1814년 02월 21일(음)>

경제/재정

舊還을 거두지 못한 水原留守 李益運을 推考하고 가을을 기다려 징수할 것을 청하다

비변사에서 아뢰기를, “수원유수 이익운(李益運)의 장계를 보니, ‘구환 가운데 거두어야 할 몫은 거두지 않아서는 안 되지만, 농사가 거듭 흉년이 들어 백성들의 형세가 극도로 궁핍하므로 마련해 낼 가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만약 이 일을 엄하게 독촉한다면 실로 백성과 곡식 두 가지를 잃을까 염려되니 묘당에서 품처하게 해 주소서.’ 하였습니다. 구환 중에서 거두어야 할 것은 이미 묘당에서 품처하여 분수(分數)를 정해 행회(行會)하였으니 신환(新還)과 더불어 제때에 준봉(準捧)해야 할 일인데, 미봉(未捧)한 수량이 이와 같이 많으므로 적법(糶法)으로 헤아려볼 때 매우 온당치 못합니다. 다만 작년에 경기 연읍(沿邑)이 특히 심하게 흉년이 들었는데 연말에 세금 납부를 독촉하는 것은 형세가 매우 곤궁합니다.

신환을 겨우 다 납부하였기에 구환은 필시 준봉하기가 어려울 것이니 유수가 사실을 자백해서 계문(啓聞)한 것은 아마 형세가 그러했을 것입니다. 우선 먼저 추고하고 추수하거든 일이 준봉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희한다고 답하였다.

司啓曰，卽見水原留守李益運狀啓，則以爲，舊還當捧條，係是不可不捧者，而穡事荐歉，民勢赤立，辦出無望，而今若一事嚴督，則實有民穀兩失之慮，請令廟堂稟處矣，舊還當捧，既已自廟堂稟處定分數行會，則事當與新還及期準捧，而未捧之數，若是夥多，揆以糴法，極涉未安，第昨年歉荒，畿沿尤甚，臨歲催科，勢同弩末，新還纔得畢納，舊還必難準捧，守臣之首實啓聞，容或爲然，姑先推考，使之待秋成一準捧何如，答曰，允。

<비변사등록 204책, 순조 14년 1814년 02월 22일(음)>

경제/재정

廣州留守 趙尙鎭이 賑資 쌀 5천석 등을 요청한대로 本府의 보유 穀物을 사용을 청하다

비변사에서 아뢰기를, “지금 광주유수(廣州留守) 조상진(趙尙鎭)의 장계를 보니, ‘추수가 이미 큰 흉년으로 판가름 났으니 앞으로 닥칠 진자(賑資)를 마련해야 하는데 진곡(賑穀)의 수량이 본래 넉넉하지 않고 향환(餉還)이 근자에 점차 줄어들었으니, 미(米) 5천 석과 전(錢) 1천 5백 냥을 특별히 획하(劃下)하도록 묘당에서 품처하게 해 주소서.’ 하였습니다. 본부(本府)의 곡부(穀簿)는 강화(江華)와 수원(水原)과 다르게 성향(城餉)의 유고(留庫)가 아직 다 없어지지 않았으니 환향의 사체가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진곡이 혹 부족하게 되면 먼저 성향의 유고곡을 편리할 대로 가져다 쓰는 것이 불가하지 않으며 지금 각 도(道)에서 진곡을 구비해야 할 때에 어떻게 다른 도에 이속(移粟)할 수 있겠습니까. 또 연분(年分)하기 전에 먼저 곡물을 청하는 것은 일이 너무 이르니, 기민(饑民)을 뵈은 다음에 본부에 있는 곡물로 장문(狀聞)하여 가져다 쓰도록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희한다고 답하였다.

司啓曰，卽見廣州留守趙尙鎭狀啓，則以爲，穡事已判大無，來頭賑資預當措辦，而賑穀數本不敷，餉還近漸見縮，米五千石・錢一千五百兩特許劃下事，請令廟堂稟處矣，本府穀簿與江華・水原有異，城餉留庫姑且不置，餉體非不爲重，而賑穀如或不足，則先就餉留，從便取用，未爲不可，今於各道俱賑之時，何可移粟他道乎，且年分之前，先爲請穀，事涉太早，待抄飢後，以本府所在穀狀聞取用之意，分付何如，答曰，允。

<비변사등록 204책, 순조 14년 1814년 09월 08일(음)>

경제/재정

水原留守 李益運의 요청대로 將士의 支放 용도로 外帑庫米와 貯置庫錢의 사용을 허락하다

○ 비변사에서 아뢰기를, “수원유수 이익운의 장계를 보니, ‘본부 장사(將士)의 지방(支放)은 모두 결역(結役)과신포(身布)에서 나오는데, 금년은 흉년을 만나 정감(停減)하여 미(米) 4천 5백여 석과, 전(錢) 2천 7백여 냥이 부족하지만 달리 변통할 방도가 없습니다. 본부 외탕고(外帑庫)의 미 6백 석과 저치고(貯置庫)의 전 2만 냥을 전례에 따라 특별히 획급을 허락한다면 돈으로 미를 사들여 충분히 쓸 수 있고, 지금 이 미와 전은 몇 년 지나지 않아 마땅히 수량을 채워 감손(減損)이 없게 할 것이니, 묘당에서 품처하게 해 주소서.’ 하였습니다. 본부 지방의 재원이 만약 결세(結稅)에서 나오지 않는다면 달리 마련할 방도가 없으므로 지난 기사년(己巳年:순조9, 1809)에도 외탕고의 미와 저치고의 전을 획하하고, 이어 나중에 채워 넣도록 하였습니다. 지금 또 진자에 대해 비록 겨우 조치하였으나 지방은

처리할 수가 없어 이렇게 전례대로 청해 얻는 장계가 있기까지 하였으니, 우선 시행하도록 허락하고 채워 넣거든 즉시 형지(形止)를 계문(啓聞)하도록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답하였다.

司啓曰，卽見水原留守李益運狀啓，則以爲，本府將士支放，皆出於結役身布，而今年則遇歉停減，其所不足，米爲四千五百餘石，錢爲二千七百餘兩，而他無變通之道，以本府外帑庫米六百石，貯置庫錢二萬兩，依已例特爲許劃，則以錢質米，足可支用，而今此米錢，不過數年，自當充數，無所減損，請令廟堂稟處矣，本府支放之需，若非結稅所出，則他無拮据之道，故往在己巳，亦以外帑米・貯置錢劃下，仍令從後充補矣，今又賑資，雖才措處，支放無以區處，至有此依已例請得之啓，姑爲許施，待充補卽爲形止啓聞之意，分付何如，答曰，允。

<비변사등록 204책, 순조 14년 1814년 11월 24일(음)>

경제/재정

水原留守 李益運이 劃下해 줄 것을 청한 대로 施行하도록 하다

○ 비변사에서 아뢰기를, “수원(水原)의 진자에 남한산성의 향조(餉租) 3천 석과 별치미(別置米) 7백 석을 획급하였는데, 경기감사의 장청(狀請)으로 인하여 향조 1천석과 별치미 2백 석을 더 획하하였습니다. 수원유수(水原留守) 이익운(李益運)의 장계를 보니, ‘본부에 속한 5개 읍의 향곡은 본래 기영(畿營)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 수요는 향조 1만 6천 3백여 석과 별치미도 천석이나 됩니다. 전날에 획급을 청한 것은 실로 가능한 한 수량을 적게 하려는 데에서 나온 것이므로 묘당에서 전례대로 획하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하였습니다. 수신(守臣)은 조적(糶糴)을 옮길 것을 청하고 도신은 조적을 막을 것을 청하였으니, 옮길 것을 청하고 막을 것을 청한 것이 각각 같지 않지만 민사(民事)를 위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지금 관리한 곳이 여기든 저기든 따질 필요가 없고, 5개 읍의 향곡을 헤아려 수원에 획급하는 일은 요체가 사세를 참고하여 양쪽이 서로 치우침이 없게 하는 뜻에서 나오지 않았으니, 더욱 많고 적음과 증감(增減)을 가지고 의심할 필요 없으니, 한결같이 주사(壽司: 비변사)에서 아뢴 대로 행회하여 시행하라는 뜻으로 해부(該府)와海道(該道)에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답하였다.

司啓曰，水原賑資所劃南漢餉租三千石，別置米七百石，因京畿監司狀請，更以餉租一千石，別置米二百石劃下矣，卽見水原留守李益運狀啓，則以爲，本府屬五邑餉穀，本非畿營之所管，而實數則餉租爲一萬六千三百餘石，別置米亦滿千石，則前日請劃，實出於十分從略，請令廟堂依前劃下，爲辭矣，守臣請移糶，道臣請防糶，請移請防，雖各不同，而爲民事則一也，今不必以所管之在此在彼，有所較擊，至於五邑餉之量劃水原，要不出於參互事勢，兩相無偏之意，尤不必以多少增減爲嫌，一依壽司，行會施行之意，分付該府・該道何如，答曰，允。

<비변사등록 204책, 순조 14년 1814년 12월 07일(음)>

경제/재정

摠護使 金義淳이 園所都監에 米穀을 輸納하지 않은 守令의 처벌에 대해 논의하다

1월 10일 약방(藥房)의 입진(入診)에 대신(大臣)과 각신(閣臣)이 함께 입시(入侍)하였을 때에 총호사(摠護使) 김희순(金義淳)이 아뢰기를, “세도감(都監)에서 쓸 전(錢)과 미(米)는 지난번에 이미 분배(分排)하였는데 원소도감(園所都監)의 미와 전은 화성(華城) 부근의 각 읍(邑)에 분수(分數)하여 배정해 주었습니다만, 지금 근 1개월이 되었는데도 실어다 바친 것은 수 십 석도 되지 않아 장인(匠人)과 모군(募軍)의 급료(給料)도 마련할 길이 없다고

하니, 외읍(外邑)에서 게을리 거행하지 않는 것이 너무도 놀랍습니다. 가장 늦게까지 준납(準納)하지 않은 수령은 도감에서 지명(指名)해서 장문(狀聞)하여, 엄하게 감죄(勘罪)하고 더욱 독촉해서 밥을 새워 수송(輸送)하게 하라고 도신에게 신칙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그리하라 하였다.

今正月初十日藥房入診，大臣・閣臣同爲入侍 時，摠護使金所啓，三都監所用錢米，頃已分排，而園所都監米穀，則以華城附近各邑分數分俵，而今近一朔而所輸納者，不滿數十石，匠募給料，亦 無其路云，外邑之慢不舉行，萬萬駭然，最後時不準 納之守令，自都監指名狀聞，從重勘罪，嚴加催督，星夜輸送之意，申飭道臣何如，上曰，依爲之．

<비변사등록 205책, 순조 16년 1816년 01월11일(음)>

경제/재정

輿士軍을 供饋하는 방법에 대해 진달하다

비변사에서 이퇴기를, “일전(日前)에 여사군(輿士軍)에게 밥을 먹이는 일로 연석(筵席)에서 아뢰어 정탈(定奪)한 일이 있었는데 들어갈 물력(物力)을 개산(概算)해서 구획(區劃)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번에 대내(大內)에서 내린 은대전(銀代錢) 가운데 5천 냥과 도감(都監)에 획하한 것 가운데 미 3백 석과 전 2천 3백 냥을 가져다 쓰게 하고, 그 나머지 부족한 수량은 진흥청의 미 2백 석, 광주(廣州)의 미 1백 석, 화성(華城)의 미 1백 석, 호조의 전 7백 냥, 진흥청의 봉수장(逢授醬) 60석을 별도로 구획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참(站)에서 밥을 먹이는 일은 각 영문(營門)에서 힘을 합쳐 나누어 먹여 한 사람도 굶주리는 자가 없도록 하라고 사영(四營)의 장신(將臣)에게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답하였다.

司啓曰，日前以輿士軍饋飯事，有所筵稟定 奪矣，所入物財，不可不假量區劃，就向日內下銀代錢中，五千兩，及都監所劃中，米三百石，錢二千三百兩，使之取用，其餘不足之數，以賑廳米二百石，廣 州米一百石，華城米一百石，戶曹錢七百兩，賑廳逢 授醬六十石，別爲區劃，而各站饋飯之節，自各營門 合力分饋，無有一夫飢餒之意，分付四營將臣處，何 如，答曰，允．

<비변사등록 205책, 순조 16년 1816년 02월02일(음)>

경제/재정

兼水原留守 徐榮輔가 새 園所의 祭享 등에 필요한 경비를 마련하는 방법에 대해 논의하다

○ 같은 날 입시하였을 때에 겸수원유수(兼水原留守) 서영보(徐英輔)가 아뢰기를, “구(舊) 원소(園所)의 1년 6차 제향(祭享) 때의 사환군(使喚軍)과 원역(員役)의 지공(支供)을 다섯 번 제향할 때의 매번 이틀과 기신(忌辰) 때의 사환의 수렴조(收斂條)를 관천고(筦千庫)에서 급대(給代)하여 지급하도록 하는 절목(節目)이 있습니다. 신(新) 원소의 3년 이내의 여섯 번 제향 때에는 마련하지 않아서는 안 되는데 달리 마련할 방도가 없으니, 역시 관천고의 회부미(會付米)와 회부전(會付錢)으로 일체로 지급하게 하고 3년 이후에는 기신 때 외에 다섯 번 제향 때에는 지급하지 말도록 하는 것이 사리에 합당하고 편리할 것입니다. 그리고 3년 내에 가정(加定)한 수호군 10명은 구 원소의 수호군 예에 따라 위전(位田)과 위답(位畓)을 떼어 주어야 하는데, 만년제(萬年堤) 아래는 거론할 수 없다 하더라도 화소(火巢) 안의 관천고에 소속된 도지 전답(賭地田畓) 중에서 올봄부터 시작하여 획급해서 갈아 먹게 하고 3년이 지난 뒤에는 도지안(賭地案)에 환속(還屬)시키는 것이 실로 편리하고 마땅할 것입니다. 그러나 본고(本庫)를 설시(設始)한 것은 사체가 자별(自別)하고 화소의 전답을 떼어 주

는 것 역시 사체가 중하므로 한번 품처(稟處)를 거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감히 이렇게 아웁니다.” 하니, 임금이 그리하라 하였다.

同日入侍時，兼水原留守徐榮輔所啓，舊園所一年六次祭享時，使喚軍員役支供，五享時 每次二日，忌辰時三日，收斂條，自筦千庫給代上下事，有節目矣，新園所三年內六祭享時，不可不磨鍊，而他無拮据之方，亦以筦千庫會付米錢，一體上下，而三年後，則忌辰時外，五享時，則勿爲上下，事合便宜，三年內加定守護軍十名，依舊園所 守護軍例，位田畝當爲劃給，萬年堤下，雖不可舉論，以火巢內筦千庫所屬賭地田畝中，自今春爲始，劃給耕食，過三年後，還屬賭地案，實爲便當，而本庫設 始，事體自別，火巢田畝之劃給，亦係體重，不可不一番經稟，故敢此仰達矣，上曰，依爲之。

<비변사등록 205책, 순조 16년 1816년 04월 05일(음)>

경제/재정

水原府의 還餉과 屬邑의 餉租를 加分해 줄 것을 청하다

비변사에서 아뢰기를, “수원유수(水原留守) 서영보(徐榮輔)의 장계를 보니, ‘본부(本府) 및 속읍(屬邑)의 곡부(穀簿)가 어디에나 넉넉하지 못하여 순차(巡次)를 안배할 길이 없어 민정(民情)이 황급하므로 본부(本府) 환향(還餉)의 유고곡(留庫穀) 중에서 조(租)·미(米)·태(太) 합계 6천 4백 16석과 속읍의 향조(餉租) 4천 7백 26석을 특별히 가분(加分)하도록 묘당에서 품지하여 분부하게 해 주소서.’ 하였습니다. 환곡을 순차를 안배하지 못하고 농사철에 농사지를 양식을 대어갈 수 없으니, 현재 민정이 이와 같이 걱정스럽습니다. 분류(分留)하는 법의(法意)를 형세상 고집하기 어려우니 본부의 환향과 속읍의 향조를 장계에서 청한 수효대로 특별히 가분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답하였다.

司啓曰，卽見水原留守徐榮輔狀啓則以爲，本府及屬邑穀簿，到處不敷，排巡無路，民情遑汲，本府還餉留庫中，租·米·太合六千四百十六石，屬邑餉 租四千七百二十六石，特許加分事，請令廟堂稟 旨分付矣，還未排巡，農不繼糧，目今民情，若是渴悶，分留法意，勢難膠守，本府還餉，屬邑餉租，依狀請數爰，特許加分何如，答曰，允。

<비변사등록 205책, 순조 16년 1816년 05월 23일(음)>

경제/재정

水原府의 경비가 부족하므로 海西의 元賑 등의 곡식 중 折米를 劃送할 것을 청하다

○ 비변사에서 아뢰기를, “수원유수(水原留守) 서영보(徐榮輔)가 보고한 것을 보니, ‘본부(本府)의 구관곡(句管穀) 중에 줄어든 모조(耗條) 2천 60석을 작년 가을에 양서(兩西)에 옮겨 떼어 주었는데, 금년에는 각 연도에 미봉(未捧)한 것 중에 거둬들인 곡물과 작년에 옮겨 떼어 준 곡물을 환자로 분급하고 모조를 취한 것이 합하여 1천 1백 96석입니다. 을해년(乙亥年:순조15, 1815)의 부족한 모조를 계산해서 감하면 실제 부족한 모조는 8백 70석 영이 되니, 작년의 예에 따라 대신 떼어 주도록 해주소서.’ 하였습니다. 본부에서 제수(祭需)에 쓰이는 것과 지방(支放)에 들어갈 재원이 이와 같이 부족하니, 보고한 대로 대신 떼어 보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해서(海西)의 원진(元賑)과 사진(私賑)·자비곡(自備穀) 중에서 절미(折米) 8백 70석 영을 정해진 기준 숫자대로 떼어 보내도록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답하였다.

司啓曰，卽見水原留守徐榮輔所報則以爲，本府句管穀之見縮耗條二千六十六石，昨秋移劃於兩西，而今年則各年未捧中，所捧穀與昨年移劃穀，還 分取耗，合一千一百九十六石，計減於乙亥

不足耗，則實不足耗，爲八百七十石零，依昨年例代劃爲辭矣，本府享需所用，支放所入之資，若是不足，不可不依所報代劃以送，就海西元賑私賑自備穀中，折米八百七十石零，準數劃送之意，分付何如，答曰，允．

<비변사등록 205책, 순조 16년 1816년 10월 10일(음)>

경제/재정

平安道の 지출 名色에 대해 道臣이 商量하여 다시 보고하게 할 것을 청하다

비변사에서 아뢰기를, “지난번에 평안감사 이상항(李相瓚)이 보고한 것을 보니, ‘본도(本道) 군향(軍餉)의 모조(耗條)로 지급해야 할 부족조(不足條) 1만 9천 석 중에 1만 석은 도내(道內)의 은전(銀錢)으로 작곡(作穀)해서 첨부(添付)하고 또 혜민서(惠民署) 등의 곡물로 옮겨 떼어 주었으며, 그 나머지 9천 석은 다른 도에 이송(移送)하게 해 주소서.’ 하였습니다. 그러나 9천 석의 모조를 취하려면 반드시 9만 석의 원곡(元穀)이 있어야 합니다. 이처럼 곡부(穀簿)가 고갈된 때에 이송(移送)하는 일은 대번에 의논하지 못하므로 다시 왕복하며 충분히 상의하고 나서 이후에 품처하도록 초기(草記)로 윤허를 받아 본도에 행회(行會) 하였습니다. 모든 지급해야 할 명색(名色), 연례 세입, 현재 남아 있는 향모(餉耗)와 각 창고에 있는 전(錢)과 곡(穀)에 대해 1통의 성책(成冊)을 만들어 오게 하였는데, 지급해야 할 총수는 5만 2천 8백여 석이고, 세입(歲入)의 실제 수량은 3만 2천 9백여 석이며, 향곡(餉穀)으로 성(城)에 평소에 유지해 둔 새로 받은 모조와 옛날에 받은 모조가 4천 9백여 석입니다. 지급해야 할 총 수량 중에 이 세입과 향모 양조(兩條)를 계산해서 제한 뒤에 부족한 것을 보충해야 하는데, 지급해야 할 것 중에 군역청에 바쳐서 독을 쌓는데 드는 물력조(物力條) 5백 석은 본래 장용영(壯勇營)의 둔토(屯土)에 독을 쌓을 재원으로 임술년(壬戌年: 순조2, 1802)에 군역청(均役廳)에 떼어 준 것인데, 지금 이미 독을 쌓는 데에 쓰지 않고서도 오히려 이미 고갈된 향모에서 취하려 하므로 매우 명분이 없는 일이니, 금년부터 그만 두어야 할 것입니다. 화성(華城)에 보낼 1천 석은 본래 강도(江都)의 첨향조(添餉條)로서 화성에서 청해서 얻은 것인데, 원곡이 이미 다하여 모조를 취할 길이 없으니 이는 내년에 시작해서 관서(關西)에 요구하지 말고 그 대신에 다른 도에서 가분곡(加分穀)의 모조 중에서 분배(分排)해서 옮겨 떼어 주게 해야 할 것입니다. 본도에 있는 준천사(濬川司)의 미(米) 2천 1백여 석 또한 장용영의 곡물 중에서 상환하고 남은 수량으로 군역청에 옮겨 떼어 준 것이니, 본래 해청(該廳)의 곡물이 아닙니다. 금년부터 향총(餉摠)에 첨부하고, 혜민서의 곡물 중에 봄에 감군(減軍)의 급대조(給代條)에 획속(劃屬)시킨 것 외에 남아 있는 절미(折米) 1만 1천 8백여 석과 소신목(燒燼木)에 보충한 미 4천 7백여 석 또한 첨향해야 할 것입니다. 각 창고의 은전 중에 변통해서 작미(作米)할 만한 것은 칙고(勅庫)의 무은전(貿銀錢) 2만 5천 냥, 선천(宣川)의 은가전(銀價錢) 2만 5천 냥, 본영(本營) 각 창고의 기류전(記留錢) 2만 냥, 칙고의 세입 무은전 병자년(丙子年: 순조16, 1816)조(條) 1만 2천 5백 냥, 별향고(別餉庫)의 세입전(歲入錢) 을해년(乙亥年: 순조15, 1815)조와 병자년조 2만 1천 냥, 수첩 신전(守堞身錢) 을해년과 병자년 두 해의 세입조(歲入條) 5천 4백 냥이 있는데, 도합 전 10만 8천 9백 냥이고, 이것을 작미하면 3만 6천 3백 석이 됩니다. 이상 여러 곡물 중에 모조를 미리 지급한 것이 있기 때문에 모조는 4천여 석이 되며, 이것은 모두 본도에서 전에 보고해서 청한 것 및 이번에 상의해서 결정한 것이고, 이 밖의 것은 다시 착수할 곳이 없습니다. 해서의 칙수전(勅需錢) 중에 6만 냥을 임시로 빌려주어 해서에서 작미 2만 석의 모조를 취하게 하고, 관서의 경작전(京作錢) 중에 2천 석은 해서에 옮기며, 이와 같이 하면 지급해야

할 곡물을 제하고 이송하여 줄어든 것이 4만 9천 3백여 석이고, 세입의 수량을 곡물의 모조로 덧붙여서 늘어난 것이 4만 1천 8백여 석입니다. 이 세입으로 지급해야 할 것에 비교하면 부족한 것이 7천 5백여 석이 되지만, 해마다 들어올 전을 보태어 작곡(作穀)하면 8천 5백여 석이 되니 그 이듬해부터 해마다 남는 것이 천여 석이 될 것입니다. 10년을 기한으로 점차 이자를 불러가고, 또 별향전(別餉錢)과 별비전(別備錢) 중에 을유년부터 더 사들인 것이 있는데 원곡 중에 남은 것이 4만 석이 되고, 모조는 4천 석이 됩니다. 이것은 그대로 본총(本摠)에 붙여 유고하고 남은 것은 이자를 불리는 밀전으로 삼는 것이 실로 먼 앞날을 대비하는 방도에 합당할 것입니다. 먼저 갚아야 할 해서의 전(錢) 및 각 창고의 전은 달리 손쓸 길이 없으니, 본도와 본영의 별비곡(別備穀) 구환(舊還) 중에 금년에 도로 거둘 것이 만여 석을 밀돌지 않을 것이니, 본곡 중에 연전에 정퇴(停退)하고 미봉(未捧)한 것에 대해 떼어 주어 충당할 때 역시 진여곡(賑餘穀) 만여 석을 아울러 들인 것이 있으니, 이번엔 정퇴하고 미봉한 것을 도로 거두고 도로 회안(會案)에 넣어 향곡에 옮겨 붙이면 실로 사의에 합당할 것입니다. 또 본도의 유고곡(留庫穀) 중에 간략하게 가분(加分)하여 모두 모조를 취해 내년 부터 차츰 각양의 대전(貸錢)에 채워 갚게 하되, 그 옮겨 붙인 것 및 가분한 석수(石數)와 연한(年限)은 도신으로 하여금 헤아려 다시 보고하게 해서 참작하여 정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운허한다고 답하였다.

司啓曰, 頃見平安監司李相璜所報以爲, 本道 軍餉耗應下不足條, 一萬九千石中一萬石, 以道內銀錢作穀添付, 又以惠民等穀移割, 其餘九千石, 移 送他道爲請, 而欲取九千石之耗, 則須有九萬石之 元穀, 當此穀簿枵然之時, 移送一款, 未可遽議, 故更 爲往復爛商, 從後稟處之意, 草記蒙允, 行會本 道, 凡應下名色, 年例歲入, 時存餉耗, 與各庫所在錢 穀, 使之一通修成冊以來, 則應下都數, 爲五萬二千 八百餘石, 歲入實數爲三萬二千九百餘石, 餉穀城 在平留新舊所捧之耗條, 爲四千九百餘石, 就應下 都數中計除此歲入與餉耗兩條後, 所不足者, 當爲 充補, 而應下中均廳所納, 築垆物力條五百石, 本以 壯營屯土築垆之資, 壬戌割付均廳者, 而今既不爲築垆之用, 則猶取於已竭之餉耗, 事甚無義, 自今年 置之, 華城所送一千石, 本以江都添餉條, 自華城請 得者, 而元穀既盡, 取耗無路, 此則明年爲始, 勿責於 關西, 而其代就他道加分耗中分排移割, 本道所在 濬川司米二千一百餘石, 亦以壯營穀之相換餘數, 移屬均廳者, 則本非該廳之穀, 自今年添付餉摠, 惠民穀之春間割屬減軍給代條外, 餘在折米一萬一 千八百餘石, 燒燼木充補米四千七百餘石, 亦爲添 餉, 各庫銀錢之可合推移而作米者, 有勅庫買銀錢 二萬五千兩, 宣川銀價錢二萬五千兩, 營各庫記留 錢二萬兩, 勅庫歲入買銀錢丙子條一萬二千五百 兩, 別餉庫歲入錢乙亥·丙子兩年條二萬一千兩, 守 堞身錢乙·丙兩年歲入條五千四百兩, 合錢十萬八千九百兩, 作米爲三萬六千三百石, 右項諸穀中, 有 耗前用下者, 故耗條則爲四千餘石, 此皆本道前報 所請, 及今番往復, 而停當者, 此外更無着手之處, 海 西勅需錢中, 六萬兩許令權貸, 自海西作米二萬石 取耗, 而關西京作錢中二千石, 移之海西, 如是則應 下之穀, 除却移送, 而減爲四萬九千三百餘石, 歲入 之數, 添以穀耗, 而增爲四萬一千八百餘石, 以此歲 入, 較諸應下, 則不足爲七千五百餘石, 而每歲添入 錢作穀爲八千五百餘石, 則自其翌年, 年年所贏, 爲千餘石, 期以十年, 漸次殖耗, 又有別餉別備錢之自 乙酉添質者, 則元穀之剩, 爲四萬石, 耗爲四千石, 此 則仍付本摠, 留存餘地, 以資生殖之源, 實合經遠之 圖, 至於海西錢及各庫錢之不可不先報者, 無他措 手, 本道營別備穀舊還之今年還捧, 當不下萬餘石, 本穀之年前停未捧割充時, 亦有賑餘穀萬餘石之 竝入者, 則今此停未捧之還捧還之會內, 移付餉穀, 儘 合事宜, 又就本道留穀中, 從略加分竝取耗, 自明年 次次充報於各樣貸錢, 而其移付及加分之石數與 年限, 令道臣商量更報, 以爲酌定之地何如, 答曰, 允.

<비변사등록 205책, 순조 16년 1816년 12월 16일(음)>

경제/재정

비변사에서 各道穀의 停未捧 등을 劃給하는 일에 대해 아뢰다

○ 비변사에서 아뢰기를, “수원유수(水原留守) 임한호(林漢浩)가 보고한 것을 보니, ‘본영(本營)에서 구관(句管)하는 각도(各道)의 곡물 중에 정퇴(停退)하여 미봉(未捧)한 것 및 무삼가(貿蔘價)를 대신 지급함으로써 줄어든 모조(耗條) 1천 2백 81석과 관서(關西)에 옮겨 떼어 준 강도(江都)의 첨향미(添餉米) 중에 모조로 줄어든 1천 석을 합하면 2천 2백 81석이니, 작년의 예에 따라 준수(準數)해서 대신 떼어 주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하였습니다. 정퇴하여 미봉한 것 및 무삼가를 대신 지급함으로써 줄어든 것은 해마다 모양곡(某樣穀)이라고 보고가 들어오는 대로 떼어 준 것이니, 금년에는 영남(嶺南)의 우병영(右兵營)의 군향미(軍餉米) 모조 중에 5백 석과 좌병영(左兵營)의 산성곡(山城穀) 모조 중에 절미(折米) 7백 82석을 떼어 주고, 관서에 옮겨 떼어 줌으로써 줄어든 것은 각도(各道)의 가분곡(加分穀)의 모조 중에서 떼어 주도록 이전에 이미 품정(稟定)하였습니다. 그러나 수량을 보태서 가분한 것이 도처(到處)에 폐단이 되었으니, 호남(湖南)에서 사비미(私備米)에 회록(會錄)된 모조 중에 1천 석을 해마다 떼어 주어 작전(作錢)하여 지급하도록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답하였다.

司啓曰, 卽見水原留守林漢浩所報, 則以爲本 營句管各道穀停未捧及貿蔘給代見縮耗一千二百八十一石及關西移劃江都添餉米耗一千石見 縮條, 合二千二百八十一石, 依昨年例, 準數代劃爲辭矣, 停未捧及貿蔘代之見縮者, 此是逐年以某樣 穀, 隨報劃給者也, 今年則以嶺南右兵營軍餉米耗 中五百石, 左兵營山城穀耗中折米七百八十二石 劃給, 而關西移劃之見縮者, 以各道加分耗中劃給 之意, 前已稟定, 而加分之添數, 到處爲弊, 以湖南 私備米會錄耗中一千石, 逐年劃給, 使之作錢支用 事, 分付何如, 答曰, 允.

<비변사등록 206책, 순조 17년 1817년 09월 18일(음)>

경제/재정

康津縣 古今島 鎭의 防軍 給代를 區劃하는 일에 대해 아뢰다

○ 비변사에서 아뢰기를, “전라감사(全羅監司) 김교근(金敎根)이 보고한 것을 보니, ‘강진현(康津縣)의 고금도(古今島)는 해안 방어의 요충지로서 진(鎭)을 설치한 이후로 방군(防軍)에게 급대(給代)한 것이 없었는데, 부쳐진 두 도(島)를 읍(邑)에 소속시킨 뒤로 더욱 백성은 적고 군사는 많아져서 앞으로 진(鎭)이 역할을 하지 못함을 보게 될까 걱정입니다. 그러니 다른 진의 예에 따라 전선(戰船)의 방군과 수군(水軍)의 양식을 특별히 구획(區劃)하게 해 주소서.’ 하였습니다. 본읍의 사세(事勢)를 지금 바로잡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은 참으로 본사에 보고한 대로인데, 방군에게 급대할 결전(結錢)을 구획하는 것은 지금 선뜻 허락하기 어렵습니다. 본도의 사비곡(私備穀) 모조 중에 관서(關西)의 향모(餉耗)를 대신 화성(華城)에 옮겨 떼어 준 뒤에 남아 있는 것 중에서 절미 1백 90석을 특별히 떼어 주어 영구히 폐단을 바로잡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답하였다.

司啓曰, 卽見全羅監司金敎根所報, 則以爲康 津縣古今島, 以海防重地, 設鎭以來, 未有防軍給代, 而所附兩島屬邑之後, 尤患民少軍多, 將見鎭不爲 鎭, 依他鎭例, 戰船防軍水軍糧, 特爲區劃爲請矣, 本 鎭事勢之不可不及今矯揉, 誠如報辭, 而防軍給代 之結錢區劃, 今難遽許, 本道私備穀耗之以關西餉 耗, 代移劃華城後, 餘在者中, 折米一百九十石, 特爲 劃給, 以爲永久揉

弊之地，何如，答曰，允．

<비변사등록 206책, 순조 17년 1817년 09월 18일(음)>

경제/재정

宣惠廳堂上 李存秀 등이 諸道の 收租가 줄어 儲置米를 還米로 帑給하는 문제 등을 논의하다

○ 같은 날 입시하였을 때, 선혜청 당상 이존수(李存秀)가 아뢰기를, “근래 여러 도의 수조(收租)가 점점 줄어들어 저치미(儲置米)를 매년 환미(還米)로帑給(劃給)하였고, 호서 지방은 상진곡(常賑穀)을 수용(需用)하였는데 지금은 상진곡조차 이미 비게 되어 실로 수용할 방도가 없습니다. 저치미에 상진곡을帑給할 수 없으면 신결미(新結米:그해에 새로 받은 결미)로帑給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신결미로帑給하면 상납하는 것이 크게 줄어들어 공물(貢物)의 값을 계속 지급할 수 없으니 저치미 문제를 지금 변통한 뒤에야 상납이 줄어드는 걱정이 없을 수 있고, 반드시 4만석의 쌀에서 취모(取耗) 4천석이 있는 뒤에 1년의 수용이 될 수 있습니다. 호서의 곡부(穀簿)는 매우 영세하여 본청에서 관장하는 환곡으로는 절미(折米) 4만석의 수량을 다 충당할 수 없습니다. 본청이 관장하는 임술년(壬戌年:순조2, 1802) 곡물의 절미 2만 6천 9백 80석과 군작미 보완(軍作米補還) 등 각종 곡식의 절미 2천 4백 27석과 비변사에서 관장하는 북곡(北穀:함경도 쌀)의 절미 1천 1백 10석과 영남 곡식의 절미 3백 70석과 수어청에서 관장하는 곡식의 절미 5천 8백 23석과 화성(華城)에서 관장하는 곡식의 절미 3천 2백 90석의 합계 4만석을 다 구획하여 진분(盡分:모두 분급함)하여 취모해서 저치미의 수요에 쓰되, 모곡을 받아들인 것이 만약 이 수량보다 적으면 1년의 용도로 삼을 수 없습니다. 저치미는 수용을 모든 지방의 지방(支放:관아의 일꾼들에게 봉급을 내어줌)에 비하여 더욱 긴요하고 중요하므로 부족하게 할 수 없습니다. 비록 흉년을 만나더라도 절대로 정퇴(停退)하여 수봉(收捧)하지 않는 것으로 거론하지 말아야 합니다. 영읍(營邑)에서 지방(支放)하는 곡물은 차라리 정퇴하여 수봉하지 않을 수 있으나, 이 곡물은 정퇴하여 수봉하지 않는 것에 둘 수 없습니다. 곡물의 명칭은 저치이록곡(儲置移錄穀)으로 일컫고 연말에 본청에서 마감하되 용하(用下)한 수를 4등(等)으로 마감합니다. 금년에는 현존하는 상진곡으로 저치(儲置)미를 방하(放下)하는데 씁니다. 본청의 임술년 곡물과 수어청·화성의 곡물은 취모하여 지방하는 것에 관계되니, 그 대신을帑給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영남에 소재한 본청에서 관장하는 어떤 종류의 곡물에서 이 숫자에 준해서 이획(移劃)하여 그것을 취모해서 수용하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뜻을 대신에게 의논하였더니 대신의 뜻도 옳다고 하였기 때문에 감히 이를 우러러 상달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임금의 그리하라 하였다.

또 아뢰기를, “영남 양산(梁山)의 대동미는 상납하지 않고 사포량(射砲糧)으로帑給하고 있지만 양산은 작은 고을이고 대동미도 많지 않아서, 매년 다른 읍에서 신결(新結)의 저치미(儲置米)에서 본 도 감영으로부터 추이(推移)하여帑給합니다. 본청에서 반강(頒降)할 때 이 숫자도 신결 저치미로 마련한 것 가운데 들어가기 때문에 상납하는 숫자가 감축됩니다. 경비가 매우 어려울 때를 당해서는 이 또한 마땅히 변통하는 방도가 있어야 합니다. 사포량을 환미로帑給하는 것은 조금도 안될 것이 없습니다. 내년부터 사포량을 본청에서 관장하는 곡물에서 절미(折米)로帑給하고 신결미 가운데에서 사포량은 거론하지 말게 할 것이며, 양산의 대동미를 상납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임금의 그리하라 하였다.

또 아뢰기를, “조적(糶糶:환곡을 방출하고 수납함)은 반류반분(半留半分)하는 것이 본래 정상적인 법이지만 근래에 환곡을 정퇴(停退)한 것과 바치지 않은 것이 대부분이니, 실제로

바쳐서 마감한 숫자는 간혹 원래 숫자의 절반도 되지 않고 심한 경우는 3분의 1이나 4분의 1이 됩니다. 또 상부에 바쳐서 마감한 실제 숫자 가운데서 반분을 하기 때문에 경비로 쓰는 모조(耗條)가 크게 줄어들어 점점 원곡(元穀)을 범용(犯用)한 것이 10여 년 전 곡부(穀簿)의 전체 수량에 비하면 겨우 그 절반이 되니, 거의 환곡이 없어지고 마는 데에 이르지 않겠습니까? 반류는 수해와 가뭄에 대비하는 것인데, 환곡이 없으면 어떻게 반분하는 것의 여부를 의의(擬議)할 수 있으며, 또 어떻게 수해와 가뭄에 대비하는 일을 논의할 수 있겠습니까? 신의 뜻은 본청이 관할하는 각종 환곡을 원래 정한대로 진분하는 것 외에 신규 환곡의 원래 수량 가운데 절반을 나누어 주면 모곡(耗穀)을 취하여 경비로 쓸 때에 원곡을 범용하는 폐단이 조금은 구원될 수 있을 것입니다. 외면만으로 갑자기 보면 원래의 수량 가운데 절반을 나누어 주는 것은 거두고 푸는 것이 지나치게 많다는 폐단이 있는 것 같지만, 정퇴하여 거두어들이지 못하는 것은 본래 항상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일정한 기준으로 받아들이는 본래의 수량으로 말하면 이것은 절반을 나누어 주는 것에 지나지 않으니, 조적법(糶糶法)을 어긴다고 할 수 없으며 또한 나누어 주는 것이 지나치게 많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금년부터 나누어 주는 것을 이와 같이 한다는 것을 각도에 알려주고 작년 겨울에 마감한 실제로 받아들인 것이 절반을 넘어서는 읍은 절반 이외의 것은 마땅히 창고에 남겨두어야 하고, 실제로 받아들인 것이 절반 미만인 읍은 또한 아직 받아들이지 못한 수량을 나누어 주는 것 가운데에 돌려서는 안 됩니다. 나누어 주는 수량이 비록 원래 수량의 절반에 미만일지라도 다만 받아들인 것은 진분하는 것이 좋은 것 같지만, 조적법에 관련된 일이니 대신에게 하순(下詢)하여 처리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대신의 뜻은 어떠한가?” 하였다.

우의정 남공철(南公轍)이 말하기를, “이와 같이 하면 창고에 남겨두는 것이 감축되어 비록 안타까울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은 점이 있으며 원곡을 범용하는 폐단 또한 조금은 구원될 수 있을 것입니다. 선혜청 당상의 상주에 의하여 시행하되 마감에 받아들이지 못한 것으로 장부에 기록해 두는 것은 근간의 일입니다. 조적법은 매우 중요하니 비록 흉년을 만난다 하더라도 이미 정감(停減)을 시행한 뒤에 도신(道臣)과 수령이 어찌 감히 ‘미봉(未捧)’이라는 두 글자를 조정에 등문(登聞)하겠습니까? 선혜청 당상에게 거듭 엄중히 신칙하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그리하라 하였다.

同日入侍時，宣惠廳堂上李存秀所啓，近來 諸道收租漸縮，儲置米，每以還米劃給，湖西則以常賑穀需用，今則常賑穀，亦已告罄，實無需用之道，儲置既不得以常賑穀劃給，則不可不以新結米劃給 矣，若以新米劃給，則上納大縮，貢價無以支繼，儲置 一款，及今變通，然後上納，可無見縮之患，須有四萬 石米取耗四千石，然後可以爲一年之用，湖西穀簿，極其零星，以本廳句管穀，無以盡充，折米四萬之數，本廳句管壬戌穀折米二萬六千九百八十石，軍作 補還等各穀折米二千四百二十七石，備局句管北 穀折米一千一百十石，嶺南穀折米三百七十石，守 禦廳句管穀折米五千八百二十三石，**華城句管**穀 折米三千二百九十石，合四萬石，竝爲區劃盡分取 耗，用於儲置之需，而取耗若減此數，則無以爲一年 之用，儲置需用，比之外方支放，尤爲繁重，不可闕乏 者也，雖值歉歲，切勿舉論於停未捧中，營邑支放之 穀，寧可停未捧，此穀則不可置之於停未捧中，穀 名則以儲置移錄穀爲稱，歲末磨勘于本廳用下之 數，四等磨勘，而今年則以見穀常賑穀，用於儲置放下，本廳壬戌穀，及守禦廳**華城**穀則係是取耗支放者 也，不可不劃給其代矣，嶺南所在本廳句管某樣穀，準此數移劃，使之取耗需用似好，以此意，議于大臣，則大臣之意，亦以爲然，故敢此仰達，依此爲之，何 如，上曰，依爲之。

又所啓，嶺南之梁山大同米，不爲上納，劃給射 砲糧，而梁山，斗邑也，大同米無多，每以他邑

新結儲 置米，自本道監營，推移劃給矣，本廳頒降時，此數亦 入於新結儲置磨鍊中，故上納之數減縮，當此經費 極艱之時，此亦合有變通之道，射砲糧之以還米劃 給，少無不可，自明年射砲糧，則以本廳句管穀折米 劃給，新結米中射砲糧，勿爲舉論，梁山大同，使之上 納，何如，上曰，依爲之。

又所啓，糶糴之半留半分，自是經法，而近來還 穀停退與未捧居多，實捧磨勘之數，或未滿元數之 折半，甚者爲三分一四分一，又就其捧上磨勘之實 數中，爲半分，故經用之耗條大縮，漸漸犯用元穀，比 之十餘年前穀簿都數，僅爲其半，幾何而不至於無 穀乃已乎，半留者，所以備水旱也，而無穀則有何半 分與否之擬議，又有何備水旱之可論也，臣意則本 廳所管各穀元定盡分者外，以新舊還元數中折半 分給，則取耗經用之際，元穀犯用之弊，可以少揀矣，以外面驟看，則就元數中折半分給，似若有斂散過 多之弊，而停未捧，本非常有之事，以準捧之本數言 之，此不過折半分給也，未可謂之有違糶法，亦未謂 之分給過多，自今年分給如是爲之之意，知委各道，而昨冬磨勘之實捧過半之邑，折半以外，自當爲留 庫，實捧未滿折半之邑，則亦不可以未捧之數，歸之 於分給之中矣，分給之數，雖未滿元數之折半，只以 所捧者盡分似好，而事係糶法，下詢大臣處之，何 如，上曰，大臣之意何如，右議政南曰，如此則留 庫見縮，雖似可悶，而其實有不然者，元穀犯用之弊，亦可以少揀，依惠堂所奏施行，而磨勘之以未捧懸 錄，此乃近年事也，糶法至重，雖遇歉荒，既施停減之 後，道臣·守令，豈敢以未捧二字，登聞朝廷乎，令惠堂，申加嚴飭好矣，上曰，依爲之。

<비변사등록 207책, 순조 18년 1818년 04월 05일(음)>

경제/재정

還穀 등의 사항을 慶尙監司 金魯敬의 狀啓대로 시행하기를 청하다

비변사의 계사(啓辭)에, “경상감사 김노경(金魯敬)의 장계를 보니, ‘본 도의 환곡으로서 각종 분급해야 할 것과 지출해야 할 것 및 연례적으로 더 나누어 줄 것 등 조목을 제외하면, 나머지 유고(留庫)는 13만여 석이 되어야 하지만, 금번 선혜청(宣惠廳)의 관문(關文) 가운데 수어청(守禦廳)·화성(華城)·균역청(均役廳)으로 옮겨 기록한 임술년(壬戌年: 순조 2, 1802)의 곡물 및 당해 청(廳)의 저치곡(儲置穀)으로 옮겨 기록한 조목과 정퇴하고 수봉치 못한 쌀의 대신으로 원분조(元分條)로 옮겨 만든 것이 함께 9만 여석인데 또 이 가운데에서 제하면 실제 유고는 3만 8천여석에 지나지 않아 불시의 수요를 장차 손 댈 수 없습니다. 사포량(射砲糧)을 별치미(別置米)에서 획급하고 양산(梁山)의 대동(大同)을 상납하는 일에 있어 좌연(左沿)은 신결미(新結米)에서 획급하고, 우연(右沿)은 창고 있는 곳이 매우 멀어 별회미(別會米)에서 편의에 따라 바꾸어 주었는데, 이제 바꾸어 주는 그릇된 사례 때문에 굳이 상납하게 하지 않고 통영(統營)과 좌수영(左水營)은 으레 각 읍에서 사포량을 수납하는데 쌀의 품질이 결미(結米)만 못하여 반드시 점퇴(點退)할 폐단이 있습니다. 위 3조목을 모두 환침(還寢: 취소함)하고, 우연(右沿) 각 진(鎭)의 사포량도 부근 연읍(沿邑)의 신결미에서 획급하도록 아울러 묘당에서 품지하여 분부하도록 하소서.’ 하였습니다. 균역청의 곡물을 이번에 변통하는 것은 대개 경상비를 위한 하나의 부득이한 일입니다. 다른 도는 매년 더 나누는 수량이 그리 많지 않으나, 영남의 경우는 연례로 폐지할 수 없이 더 나누어 주어야 할 것이 거의 14만석에 가깝고 또 정퇴하고 수봉치 못한 원래의 총량에 숫자를 헤아려 보태어 나누어 주면 유고는 거의 없어 사면(事面)이 구차스럽습니다. 도신(道臣)이 논한 것은 과연 근거하는 바가 있으니 장계에서 청한 대로 시행하고, 수어청과 화성부(華城府)의 곡부(穀簿)를 옮겨 기록하는 일은 호서(湖西) 곡물의 총량이 근래에 더욱 탕갈(蕩竭)하여

당해 도의 곡물 총량으로는 대신 획급할 수 없으므로 영남(嶺南) 소재의 당해 청(廳)의 곡물을 옮겨 기록하게 하였습니다. 일이 부득이 한 곳에는 비록 이전(移轉)이라 하더라도 오히려 할 수 있는데, 하물며 곡식의 이름만 바꾸어 기록하고 곡식은 그대로이니 당해 청(廳)의 통보에 의해 시행하며 호서의 입술년 곡물이 줄어든 것을 보충하는 대신에 영남의 입술년 곡물을 더 나누어 주는 일은 유고가 너무 적어 역시 매우 걱정스럽습니다. 이는 도(道)의 장계에 따라 시행하고 줄어든 것을 보충하는 방도는 나중에 구획(區劃)하도록 하고, 사포량의 경우는 통영과 좌수영은 각 읍에서 수납할 때 점퇴(點退)하여 고쳐 수봉하는 폐단은 실로 도(道)의 장계와 같습니다. 대개 양산(梁山) 한 읍은 대동곡에서 사포량을 획급하는 것은 이미 법전에 실려 있습니다만 이 밖의 여러 읍은 본래 이 법이 없으니, 설사 다른 읍의 신결미를 주선하여 내어주는 일이나 이는 잘못된 사례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것 역시 당해 청(廳)의 통보에 의하여 별치곡(別置穀)의 모조(耗條)에서 나누어 쓰며 두 영(營)의 사포량은 양산의 대동곡에서 취해 사용하고 상납하지 말게 하며 점퇴하는 백성들의 폐해를 진념(軫念)하였다면 특별한 사례를 써야 할 것입니다. 재결(災結)이 많은 때를 맞이할 경우 양산의 결미(結米)가 두 영(營)에서 나누어 보내는 수량에 차지 않으면, 당해 청(廳)에서 조세를 거두어들여 마련할 때 어느 읍의 결미든지 막론하고 반드시 두 영(營)에서 나누어 주는 수량에 준하여 양산의 저치미에서 나누어 옮기라고 당해 도(道)와 청(廳)에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답하였다.

司啓辭，卽見慶尙監司金魯敬狀啓，則以爲 本道還穀，除却各樣應分應下及年例加分等條，則餘在留庫，當爲十三萬餘石，而今番惠廳關中，移錄 守禦華城均廳壬戌穀，及該廳儲置移錄條，與停未 捧半代之移作元分條，合九萬餘石，又除於此中，則 實留庫，不過三萬八千餘石，不虞之需用，將無以着手，至於射砲糧之以別置米劃給，梁山大同上納事，左沿則以新結米劃給，右沿則因倉所踈遠，以別會 米從便換給，而今因換給之謬例，不必使之上納，統 營左水營則例自各邑輸納砲糧，而米品不如結米，則必有點退之弊，上項三條竝還寢，右沿各鎮砲糧，亦以附近沿邑新結米劃給事，竝請令廟堂，稟 旨分付矣，均廳穀之今番變通，蓋是爲經用一不得已之舉也，他道則每年加分之穀，不甚夥多，而至於 嶺南則年例不可廢之應加分，殆近十四萬石，又以停未捧元摠，計數添分，則留庫無幾，事面苟難，道臣 所論，果有所據，依狀請施行，守禦廳華府穀簿移錄 事，湖西穀摠，近益蕩竭，以該道穀摠，無以代劃，故以 嶺南所在該廳之穀，使之移錄矣，事到不得已處，雖 移轉，猶可爲也，況換錄穀名，穀則自在者乎，依該廳 知委施行，湖西壬戌穀補縮代，嶺南壬戌穀加分事，留庫之太些，亦甚可悶，此則依道啓施行，補縮之 道，以爲從後區劃之地，至於射砲糧事，如統營左水 營則各邑輸納之際，點退改捧之弊，誠如道啓，蓋 梁山一邑，則大同之以砲糧劃給，既載法典，外此諸 邑，本無是法，設或有他邑新結米推移放下之事，此 不過謬例也，此亦依該廳知委，以別置耗劃用，兩營 砲糧，以梁山大同取用，勿令上納，而既軫點退之民 弊，則當用別例，如值災結夥多，梁山結米，不滿兩營 劃送之數，則該廳收租磨鍊時，無論某邑結米，必準 兩營所劃之數，移劃於梁山儲置之意，分付該道該廳，何如，答曰允。

<비변사등록 207책, 순조 18년 1818년 07월11일(음)>

경제/재정

수원유수 한치웅이 수원에서 구관하는 양남곡과 양서곡 등 2천여석을 획급해달라고 하다

(…) 또 아뢰기를, “수원유수(水原留守) 한치웅(韓致應)이 보고한 것을 보면, ‘본영(本營)이 구관(句管)하는 양남곡(兩南穀)과 양서곡(兩西穀)을 정퇴(停退)하여 받지 못한 것 및

무삼(貿蔘)에 급대(給代)하여 줄어든 모조(耗條)의 합계 1천 2백 71석 영(零)과 관서(關西)에 옮겨 획급한 강도(江都)의 추가된 군량미의 모조 1천석이 줄어든 것 합계 2천 2백 71석 영을 작년의 예에 따라 수량에 맞추어 대신 획급하소서.’ 하였습니다. 당해 부(府)의 수용(需用)은 오로지 이 모조에 의지하고 있으므로 매년 급대하는 일이 있는데 그 가운데 관서에 옮겨 획급한 것 1천석은 이미 작년에 호남 사진곡(私賑穀)의 모조 가운데에서 이 수량에 따라 해마다 취해서 쓰게 하였으니, 비록 알려주지는 않더라도 당해 도(道)에서 매년 획급해 주어야 합니다. 이와 같이 분부하고 그 나머지 1천 2백 71석은 각 도에 회록(會錄)한 모조 가운데에서 획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그리하라 하였다. (…)

(…) 又所啓, 卽見水原留守韓致應所報, 則以爲本營句管兩南兩西穀, 停未捧及貿蔘給代見縮耗, 合一千二百七十一石零, 及關西移劃江都添餉米耗一千石見縮條, 合二千二百七十一石零, 依昨年例, 準數代劃, 爲辭矣, 該府需用, 專靠此耗, 故每有給代之舉, 而其中關西移劃條一千石, 則已於昨年, 以湖南私賑穀耗條中依此數, 使之逐年取用, 則雖無知委, 該道, 自當每年劃送, 以此分付, 其餘一千二百七十一石, 以各道會錄耗中劃給, 何如, 上曰, 依爲之.(…)

<비변사등록 207책, 순조 18년 1818년 09월 10일(음)>

경제/재정

右議政 南公轍이 華城의 농사가 결실이 있으니 公納을 물려서 받는 문제를 논의하다

○ 10월 20일 약방의 입진에 대신과 비국 당상을 인견하여 입시하였을 때에 우의정 남공철(南公轍)이 아뢰기를, “접때 수원유수(水原留守) 한치응(韓致應)의 연분(年分) 장계로 인하여, 기사년과 갑술년에 수봉치 못한 것을 전량 징수하고, 갑술년에 정퇴한 것은 절반을 그대로 정퇴하도록 복계(覆啓)하고 행회(行會)하였습니다. 당해 유수의 장계를 보면 묵은 환자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을 갖추 진술하고 이어서 기사년에 수봉치 못한 것의 전량과 갑술년에 정퇴하고 수봉치 못한 것의 3분의 2를 아울러 전에 청한 그대로 정퇴하기를 청한 일에 의하여 묘당에서 품지하여 분부하기를 청한다 하였습니다. 화성(華城)의 농사가 금년에 다행히 조금 풍년이 들었으나 공납(公納)을 물리어 수봉하는 것은 실로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묵은 환자를 정퇴하거나 받아들이는 것은 실로 참작한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장계의 내용은 또 백성들의 실상으로 진청(陳請)하였고, 또 본부(本府)는 다른 곳과 달라 전부터 매년 넉넉한 홀전(恤典)을 베풀어 왔으니, 기사년에 수봉치 못한 것을 그대로 전량 정퇴하고 갑술년에 정퇴한 것과 수봉치 못한 것은 절반을 징수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그리하라 하였다. (…)

今十月二十日, 藥房入診, 大臣·備局堂上引見 入侍時, 右議政南所啓, 頃因水原留守韓致應, 年分狀啓, 己巳甲戌未捧條, 全數收捧, 甲戌停退條, 折半仍停之意, 覆啓行會矣, 卽見該留守狀啓, 則備陳舊還難捧之狀, 仍以爲己巳未捧全數, 甲戌停退未捧三分二, 竝依前請仍停事, 請令廟堂, 稟旨分付矣, 華城年事, 今幸稍登, 公納退捧, 實係難鎮, 故舊還之或停或捧, 實有參量者存, 而今此狀辭, 又以民情陳請, 且本府與他有異, 自前每施優恤之典, 己巳未捧, 全數仍停, 甲戌停退與未捧, 使之折半收捧, 何如, 上曰, 依爲之.(…)

<비변사등록 207책, 순조 18년 1818년 10월 20일(음)>

경제/재정

統營左水營의 砲糧米를 華城府에 劃下하여 불인 조목은 서둘러 區劃하기를 청하다

비변사의 계사에, “접때 경상감사 김노경(金魯敬)이 장계로 청한 것으로 인하여, 통영좌수

영(統營左水營)의 포량미(砲糧米)를 양산(梁山)의 대동미에서 취해 쓰고 있으나 이 밖의 여러 읍에서는 따로 둔 모조(耗條)에서 획급해 사용하고 있으며 선혜청에서 관리하는 곡식 가운데 정무(丁貿) 등 곡식을 옮겨 적어 저축해 두고, 통전(統錢) 등 쌀을 수어청(守禦廳)에 획급하여 화성(華城)의 곡식으로 하는 일을 모두 당해 청(廳)의 통보에 의하여 시행하도록 복계(覆啓)하고 행회(行會)하였습니다. 당해 감사의 장계를 보면, 오른 쪽 연안 각 영(營)과 진(鎭)의 포량미를 강변 고을의 햅쌀로 획급하고 선혜청에서 관리하는 곡식을 옮겨 적어 저축해 두는 일은 지금의 곡물 총량으로는 결코 다 나누어 줄 수 없고 수어청의 화성에 획급할 것은 유지해 이어나갈 수요에 관련되는 것이므로 줄곧 주저할 것은 없으나 분급(分給)과 유고(留庫)를 수계(修啓)하였으니 지금 변통할 방도는 없습니다. 내년을 시작으로 두 아문(衙門)에 획급하여 모두 다 나누어주고 모조를 취하도록 아울러 묘당에서 품지하여 분부하기를 청한다 하였습니다. 포량미는 곧 저치미(儲置米) 가운데에서 회감(會減)합니다. 본도의 저치미는 으레 결미(結米)와 환미(還米:환상미(還上米))에서 참작하여 수용하므로 이는 회감할 때 결미와 환미를 구별하는 것에 지나지 않을 뿐입니다. 이는 당해 청(廳)에 보고하게 하여 정무 등 곡식을 옮겨 적는 일을 적절하게 처리하는 것은 당해 도의 저치미가 넉넉지 못한 폐단을 염려해서 입니다. 그러나 본도는 유고(留庫)의 감축이 곤란하므로 굳이 억지로 옮겨 적게 할 것은 없으므로 내버려 두겠습니다. 수어청의 화성부에 획급하는 것은 지방(支放)의 수요에 관련되는 것이므로 금년에 수용할 모조는 지금 구획(區劃)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도의 금년에 가분(加分)된 모조를 회록(會錄)한 것에서 알맞게 획급되 지장이 생길 경우에는 해당(該道)에서 연례로 균역청에 회록한 것 가운데에서 획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택하다고 답하였다.

司啓辭，頃因慶尙監司金魯敬狀請，統營左水 營砲糧米，以梁山大同取用，而外此諸邑，以別置耗 劃用，惠廳句管穀中丁貿等穀，移錄儲置事，統錢等 米，劃付守禦華城穀事，並依該廳知委施行之意，覆啓行會矣，卽見該監司狀啓，則以爲右沿各營鎭 砲糧，以沿江邑新米劃給，惠廳句管穀之移錄儲置 事，以今穀摠，決不可盡分，守禦華城劃付條，係是支 繼之需，不可一向靳持，而分留已經修啓，今無變 通之道，自明年爲始，劃付兩衙門，盡分取耗事，並請 令廟堂，稟旨分付矣，砲糧，卽儲置中會減者也，本道儲置，例以結米還米，參互需用，此不過會減之際，結與還之 區別而已，此則使之報該廳，停當丁貿等穀之移錄 事，爲念該道儲置不敷之弊，而本道既以留庫之減 縮爲難，則不必強令移錄，置之，守禦廳華城府劃付 條，係是支放之需，今年需用之耗，不可不趁今區劃，以本道今年加分耗會錄者，準折劃給，而如有掣礙 之端，以該道年例會錄均廳條中劃給，何如，答曰 允。

<비변사등록 207책, 순조 18년 1818년 11월27일(음)>

경제/재정

右議政 南公轍이 華城의 南漢餉米租 등의 각종 곡식이 流通되어 給代하는 문제를 논의하다
○ 12월 20일 약방의 입진에 대신과 비국 당상을 인견하여 입시하였을 때에 우의정 남공철(南公轍)이 아뢰기를, “경기감사 홍우섭(洪遇燮)의 보고를 보면, 화성(華城)과 남한(南漢)의 향미조(餉米租) 및 본영(本營)의 순아병(巡牙兵) 등 각종 곡식이 유포(流布)되거나 포흠(逋欠)되어 줄어든 모조가 조(租)로 환산하여 합계 7백 3석 영(零)인데 작년의 사례에 따라 본도의 금년 가분(加分)된 모조(耗租)에서 3백 39석 영을 획급하고, 이 외에 부족한 것 3백 63석 영을 아무 아문의 곡식에서 대신 지급해 주소서 하였습니다. 본도 곡식의 총량은 본래 넉넉지 않은 가운데 정되하고 포흠된 것이 많고 모조가 감축된 것은 매년 획급을 청하여 대

신 지급하게 되었으니 실로 몹시 걱정입니다. 금년에 줄어든 수량을 가분된 모조에서 획급하고, 그 나머지 부족한 것을 본도에 소재한 비국에서 관리하는 별회곡(別會穀)의 모조 가운데에서 이 수량에 따라 취해 쓰고, 이후에는 각 읍에 유포되고 포함된 곡물을 엄중히 신칙하여 징수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그리하라 하였다. (…)

今十二月二十日，藥房入診，大臣·備局堂上 引見入侍時，右議政南所啓，卽見京畿監司 洪遇燮所報，則以爲華城·南漢餉米租，及本營巡牙 兵等各樣穀，流逋見縮耗，折租合爲七百三十石零，依 昨年例，以本道今年加分耗租三百三十九石零劃 給，外此不足條三百六十三石零，以某衙門穀給代，爲辭矣，本道穀摠，本自不敷之中，停逋既多，耗條減 縮，致有給代之每年請劃，誠甚悶然，今年見縮之數，以加分耗劃給，其餘不足，就本道所在備局句管別 會穀耗條中，依此數取用，此後則各邑流逋之穀，使 之嚴飭收捧，何如，上曰，依爲之. (…)

<비변사등록 207책, 순조 18년 1818년 12월 20일(음)>

경제/재정

水原留守 韓致應의 요청대로 甲戌年 未捧還餉의 계속 연기를 허락할 것을 청하다

비변사에서 아뢰기를, “접때 수원유수의 연분(年分) 장계의 요청으로 인하여 받아들이지 못한 환곡과 향곡의 기사년(己巳年:순조9, 1809) 것은 그대로 정퇴하고 갑술년(甲戌年:순조 14, 1814) 것은 전체의 수량을 거두어들이도록 복계하고 행회 하였습니다. 수원유수 한치웅 (韓致應)의 보고를 보면, ‘갑술년에 받아들이지 못한 것은 모두 유망(流亡)이나 절호(絶戶)의 지명 징수할 곳이 없는 경우로서 형세가 장차 이웃이나 친족에게 나누어 징수해야겠는데, 당면한 백성들의 형편은 더욱 궁핍해지므로 구환(舊還)을 아울러 독촉할 길이 없으니 특별히 그대로 정퇴하기를 청한다 하였습니다. 갑술년 것을 아울러 할 수 없음은 대개 환곡과 향곡을 중요시하는 뜻에서 나왔으나 수신이 또 이를 정퇴하도록 청한 것은 백성들의 형세가 급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진념하여 구휼하는 방도에 있어 줄곧 망설이기만 할 수 없으니 요청한 대로 특별히 그대로 정퇴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답하였다.

司啓曰，頃因水原年分狀請，未捧還餉，己巳條仍停，甲戌條全數收捧之意，覆啓行會矣，卽見留守韓致應所報，則以爲甲戌未捧，皆是流絶戶之指徵無處者，勢將分徵於隣族，而目下民勢，轉益窮艱，舊還竝督，實無其路，特爲仍停爲請矣，甲戌條之不許竝停，蓋出於重還餉之意，而守臣之又此請停，可見民勢之切急，其在軫恤之道，不可一向靳持，依所請，特許仍停何如，答曰，允.

<비변사등록 208책, 순조 19년 1819년 11월 13일(음)>

경제/재정

各營支放穀의 給代에 대해 各營이 區處하고 해당 읍에 責納하지 말도록 할 것을 청하다

비변사에서 아뢰기를, “경기감사 조종영(趙鐘永)의 보고를 보면, ‘장단(長湍)에 있는 송도 유영미(松都留營米) 및 북한산성미(北漢山城米)는 신미년(辛未年:순조11, 1811)에 받아들이지 못한 것에 들어가 금년부터 모조를 제하고 배년(排年)하여 받아들이고 남양(南陽)에 있는 충융청미(悤戎廳米) 및 화성(華城)의 겸제조(兼濟租)와 교동(喬桐)의 수영조(水營租)는 기사년(己巳年:순조9, 1809)의 정퇴와 탕감에 들어갔으나 모조는 지방(支放)에 쓰이는 것이기 때문에 각 당해 영에서 전처럼 독촉하여 납부하게 하였습니다. 장단의 배년하여 받아들이는 것과 송도 유영미의 모조는 3백 29석 영(零)이요, 북한산성의 모조는 24석 영(零)

이며, 남양의 정퇴와 탕감한 총용청미는 금년의 모조와 아울러 1백 86석 영(零)이요, 겸제조는 금년의 모조와 아울러 1백 79석 영(零)이며, 수영조는 금년의 모조와 아울러 19석 영(零)인데 다른 고을의 전례에 따라 모두 아무 아문의 곡식으로 준절하여 급대(給代)하기를 청한다 하였습니다. 두 고을에 있는 각 영(營)의 곡식은 모두 모조를 취하여 지방(支放)하는 것인데, 원래 곡식이 혹 탕감에 줄어들고 모조가 혹 배년 수봉에 감축되어 급대의 획급을 청하는 것은 그럴 수밖에 없는 형세이나 지금 본도의 곡식 장부로 실로 좋은 방도로 구획(區劃)할 수 없습니다. 송도 유영곡은 금년부터 시작하여 본 곡식을 수에 맞게 받아들이 때까지 본부의 가분(加分)된 모조 가운데에서 매년 가져다 쓰도록 하고, 총용청 및 화성·교동에서 관리하는 모조에 있어서는 수량이 미미하니 각 당해 영에서 형편에 따라 구처하고 아직 당해 고을에 납부하도록 요구하지 말라고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답하였다.

司啓曰，卽見京畿監司趙鐘永所報，則以爲長 湍所在松營米及北漢米，入於辛未未捧，自今年除耗排捧，南陽所在摠廳米及華城兼濟租，喬桐水營 租，入於己巳停退蕩減，而耗條，皆是支放所需，故自 各該營，依前責納，長湍排捧松營米耗一百二十九 石零，北漢米耗二十四石零，南陽停減摠廳米，竝今年耗一百八十六石零，兼濟租竝今年耗一百七十九石零，水營租竝今年耗十九石零，依他邑已例，竝 以某衙門穀，準折給代爲辭矣，兩邑所在各營穀，皆 是取耗支放者，而元穀，或縮於蠲蕩，耗條，或減於排 捧，給代請劃，勢所固然，而以今本道穀簿，實無以從長區劃，松營則自今年爲始，本穀準捧間，就本府加 分耗中，使之每年取用，至於摠廳及華城，喬桐所管 耗條，數既零星，自各該營，方便區處，姑勿責納於該 邑之意，分付何如，答曰，允。
<비변사등록 208책, 순조 19년 1819년 12월 02일(음)>

경제/재정

京畿監司 趙鐘永이 今年見縮耗의 給代를 전례대로 加分耗를 劃給할 것을 청하다

○ 비변사에서 아뢰기를, “경기감사 조종영(趙鐘永)의 보고를 보면 본영에서 관리하는 영의 환곡과 순청(巡廳)·고마청(雇馬廳) 두 청(廳)의 곡식과 광주(廣州)에서 납부하는 화성(華城) 교리(校吏)의 요미(料米)와 방영(防營)에서 관리하는 군향곡 등이 아울러 파주(坡州) 등 고을의 배년(排年)하는 것 가운데 들어갔는데, 이는 모조를 취하여 지방(支放)에 쓰이는 것으로 금년에 줄어든 모조를 버로 환산하면 함께 4백 65석 영(零)입니다. 전례에 의하여 아무 아문의 곡식으로 구획하여 급대하고, 장단에 있는 방영에서 관리하는 쌀 5백 6석도 역시 모조를 제하고 배년 수봉하는 것 가운데 들어갔으니 모조를 일체 급대하기를 청한다 하였습니다. 이는 각 영의 지방(支放)에 쓰이는 것으로 급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례에 따라 가분모(加分耗)에서 획급하되 부족한 경우 본도에 있는 비변사에서 관장하는 별회곡(別會穀)의 모조 가운데에서 가져다 쓰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답하였다.

司啓曰，卽見京畿監司趙鐘永所報，則以爲本 營句管，營還巡雇穀廣州所納華城校吏料米，防營所管軍餉等穀，竝入於坡州等邑排捧中，而此係取 耗支放者，今年見縮耗折租合四百六十五石零，依 已例，以某衙門穀，區劃給代，長湍所在防營句管米 五百六石，亦入於除耗排捧中，耗條，一體給代爲辭 矣，此是各營支放之需，不可不給代，依已例，以加分 耗劃給，而如有不足，就本道所在備局句管別會穀 耗條中，使之取用何如，答曰，允。

<비변사등록 208책, 순조 19년 1819년 12월 02일(음)>

경제/재정

水原에서 捧納하지 못한 곡물 중 收捧할 것과 停捧하게 할 것을 아뢰다

○ 비변사에서 아뢰기를, “저번에 수원(水原)의 연분장계로 인하여 기사년과 갑술년에 받지 못한 곡식을 전수량을 받아들이게 하겠다는 뜻으로 복계(覆啓)하고 행회(行會)하였습니다. 지금 당해 유수(留守) 김시근(金蓍根)이 본사에 보고한 사연을 보니, ‘이것은 모두 유망(流亡)과 절호(絶戶)의 지목하여 징수할 수 없는 것이므로 사세가 장차洞里에서 나누어 징수하게 될 것이니, 전수량의 출질(出秩)은 만에 하나도 가망이 없으니 두 해의 미봉조(未捧條) 중에서 갑술년조만 3분의 1을 받아들이도록 이전의 장계에서 청한 대로 허시해 주소서.’ 하였습니다. 유망(流亡)하여 징수할 곳이 없는 것은 풍년과 흉년의 차이가 없고 온 경내가 혹독한 수탈로 곤욕을 치르는 것은 풍년이 도리어 더 고통스런 것입니다. 결국 모두 다 받아들일 수 없을 바에는 차라리 약소하게 분수(分數)하는 것만 못하다고 한 수신의 보사(報辭)는 필시 백성의 형편을 요량하여 그러한 것일 터이니, 기왕 들은 뒤에는 한갓 경법(經法)만을 지키고 다시 진휼하지 않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갑술년은 연조(年條)가 조금 가까우니 이와 같이 풍년이 들 때에는 융통성을 부려서는 안 되므로 전수량을 받아들이게 하고, 기사년의 것을 요청한 대로 우선 인정하라고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답하였다.

司啓曰，頃因水原年分狀啓，己巳·甲戌未捧穀，全數收捧之意，覆啓行會矣，卽見該留守金蓍根，報本司辭緣，則此皆流亡絶戶之指徵無處者，勢將分徵於洞里，而全數出秩，萬無其望，兩年未捧條中，只以甲戌條，三分一收捧事，依前狀請，許施爲辭矣，流亡之無處指徵，豐歉無間，闔境之困於推剝，樂歲反苦，與其畢竟之不得盡捧，毋寧略綽分數云者，守臣報辭，必有料量民勢而然，既聞之後，有難徒守經法，不復軫恤，而甲戌則年條稍近，似此豐登之時，不宜闊狹，使之全數收捧，己巳條依所請，姑爲仍停之意，分付何如，答曰，允。

<비변사등록 209책, 순조 20년 1820년 10월 25일(음)>

경제/재정

각 읍의 公納을 監色에게 맡기지 말고 詳定에 따라 作錢하여 京司에 상납할 것 등을 청하다

○ 비변사에서 아뢰기를, “지난번 각 아문(衙門)에서 작전(作錢)한 곡식의 모조(耗條)를 각 해읍(該邑)에서 상정(詳定)에 의해 작전하여, 곧바로 경사(京司)에 납부하도록 연품(筵稟)하고 제도(諸道)에 행회(行會)하였습니다. 전라감사 이서구(李書九)의 보고를 보면, 외읍(外邑)의 각종 상납을 하나 같이 감색(監色)에게 맡겨 제멋대로 농간을 부리니, 이것이 큰 고질적인 폐단입니다. 무릇 작전하여 상납하는 일은 외읍에 맡기지 말고 감영에서 모두 거두었다가, 해마다 정월이면 규정에 따라 각 당해 아문에 수송하여 보내고 태가(駄價)는 옛 규칙에 따라 원 수량 중에서 계산하여 감하는데, 수원(水原)·강화(江華) 두 곳의 연례적인 작전은 경사와 달라 전날 그대로 사람을 보내 받아 간다고 하였습니다. 각 고을의 공납(公納)이 모두 이서(吏胥)와 향직(鄉職)의 농간에 들어가 지금 서울과 지방의 절급한 폐단이 되고 있는데 상정가(詳定價)로 집전(執錢: 돈으로 받아들이м)하는 일은 비록 백성들의 비용을 줄이기 위한 뜻에서 나온 것이지만, 이와 같이 풍년이 들어 곡식이 넉넉한 때에도 상정가는 오히려 높은 가격입니다. 더구나 또 정채(情債) 및 태가까지 아울러 과외로 백성들로부터 징수한다면 백성을 여유롭게 하려는 방법은 백성을 괴롭히는 일이 되기에 충분합니다. 이제 각 읍에서 기한을 정하여 감영에 실어다 바치고 감영에서 진성(陳省)을 작성하여 곧바로 경사에 바치면, 아전은 농간을 부릴 수 없고 백성들에게는 더 거두는 일이 없게

될 것이며 매년 연초에 기한까지 수량대로 바치게 되어 백성과 고을은 힘을 늦출 수 있고 서울과 지방에는 농간을 크게 막을 수 있으며, 태가를 원곡(元穀)에서 회감(會減)하는 일에 있어서는 본래 구레이니 아울러 보고에 따라 시행하라고 각 당해 아문 및 작전하는 제도에 분부하고, 강화와 수원^{수원}의 연례적인 작전은 아울러 전처럼 받아 가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답하였다.

司啓曰，頃以各衙門作錢穀耗條，自各該邑依 詳定作錢，直納京司之意，筵稟行會諸道矣，卽見全羅監司李書九所報，則以爲外邑之各樣上納，一 委監色，任其偷弄，大是痼弊，凡作錢上納之節，勿委 外邑，自監營都聚收捧，每年正月，定式輸納於各該 衙門，而駄價則依舊規就元數中計減，水原·江華兩 都年例作錢，與京司有異，依前送人受去爲辭矣，各 邑公納之竝入吏鄉偷弄，今爲京外切痼之弊，而至於詳定執錢，雖出於爲民省費之意，若是遇豐穀裕之時，則詳定猶爲高價，況又以情債及駄價，竝爲科 外徵民，則凡所以裕民者，適足爲厲民矣，今若自各 邑定期輸納於監營，自監營成陳省直納京司，則吏 莫容奸，民無加斂，而每於歲首，自當趁限準納，大爲 民邑之紓力，京鄉之防奸，至於駄價之元穀會減，自 是舊例，竝依所報施行之意，分付各該衙門及作錢 諸道，江華·水原之年例作錢，則併使之依前受去何 如，答曰，允．

<비변사등록 210책, 순조 22년 1822년 03월 20일(음)>

경제/재정

關西와 호서의 곡물의 見縮條에 대해 아뢰다

○ 비변사에서 아뢰기를, “수원(水原)에서 관리하는 각 도 곡물의 흠축조(欠縮條)로소 금년의 모미(耗米)가 1천 2백 27석 영(零)이요, 각 고 탕채전(蕩債錢)의 급대곡(給代穀)이 6백 석이며, 광주(廣州)에서 관리하는 관서와 호서 곡물의 흠축조로서 신사년(辛巳年:순조 21, 1821)의 모조가 3백 20석 영(零)이요, 송도(松都)에서 관리하는 관서 소미(小米)의 금년 모미가 2천 석인데, 각 해부에서 보고를 통해 대신 획급할 것을 청하였습니다. 각 영(營)의 지방(支放)에 대한 부족조를 다른 곳에서 대신 획급하는 것이 근례의 규례가 되었습니다. 화성(華城)과 송도(松都)는 영남의 금년 가분 모조(耗條) 중에서 준절(準折)하여 획급하고, 광주(廣州)는 호남의 금년 회록(會錄) 모조 중에서 준절하여 획급해서 쓰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답하였다.

司啓曰，水原句管各道穀見縮條，今年耗米一 千二百二十七石零，各庫蕩債錢給代穀六百石，廣州句管關西·湖西穀見縮條辛巳耗條三百二十石零，松都句管關西小米今年耗米二千石，自各該府 報請代劃矣，各營支放不足條之從他代劃，便成近例，華城·松都則以嶺南今年加分耗中准折劃給，廣州則以湖南今年會錄耗中准折劃給，使之取用何如，答曰，允．

<비변사등록 210책, 순조 22년 1822년 09월25일(음)>

경제/재정

開城의 부족한 經用은畿邑의 田結 중 1500結을 有土免稅의 例에 따라 劃給할 것을 청하다

비변사에서 아뢰기를, “지난번 개성 유수(開城留守) 김이재(金履載)의 장계로 인하여 본부(本府)의 경비로 쓰는 채식전(債殖錢)을 기한을 정해 거둬들여 폐단 없이 빚을 놓고 거둬들이는 일을 전처럼 하도록 복계하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당해 유수의 장계를 보면, 오래된 채전(債錢) 중에 받아들인 것과 받을 수 있는 것이 대략 7만여 냥인데, 칙고(勅庫)에 들어갈 것 및 각처의 향교와 서원에 환급(還給)할 것, 가하(加下) 환보(還報) 및 올해 지출해야 할 것의 부족분에 보충할 것을 제하면 더는 남는 것이 없습니다. 매년 지출해야 할 것에 원

래 부족한 것이 3만여 냥인데 별달리 마련해야만 배분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세(商稅)·전부(田賦)·호역(戶役)을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수를 대략 늘린다면 한 해의 수입이 1만 4천 냥인데, 이외에 부족한 1만 8천 냥은 마련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 가까운 몇몇 고을의 전결 중 2천 4백 결에 한해 화성(華城)의 예처럼 특별히 획급하거나, 여러 도의 환모(還耗)로서 임오년(壬午年:순조22, 1822)에 회록(會錄)된 것 중에서 쌀로 환산하여 6만석을 송도(松都)영의 보폐곡(補弊穀)으로 만들어, 해마다 6천 석의 모곡을 얻어 돈으로 만들어 경비에 보태도록 묘당에서 품지하여 분부하기를 청한다 하였습니다. 지난달에 복계하고 신칙한 후에 당해 수신(守臣)이 엄히 독려하였으므로 아마도 있는 힘을 다했을 것으로 여겨 집니다만 받아들이는 것이 이에 불과하니 그 나머지는 징수할 곳이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계속 독촉하여 다그치면 한갓 백성만 힘들게 할 뿐이요, 빚을 놓고 받으면서 이자를 불리는 것은 곧 밀가루 없이 수제비를 만드는 격이니, 지방(支放)의 수요에 부족한 것의 급대(給代)가 있어야 하겠고, 많은 백성들이 자원하여 물력(物力)을 낸 것이 넉넉히 그 반수(半數)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조정에서 아무 조치 없이 전적으로 개성부에 책임을 지우는 것은 도리어 사체를 손상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전결(田結)은 호조의 경비와 관계되는데 어찌 갑자기 부세(賦稅)에서 떼어내어 폐단을 바로잡자는 의논을 내놓을 수가 있습니까? 경외의 전곡(錢穀)이 도처에 고갈되어 손쓸 방도가 없으니, 지금 정세(正稅)의 중요성에만 얽매어 변통할 방도를 생각지 않아서는 안 됩니다. 호조와 선혜청에 분부하여 본부(本府:개성부) 근처 경기 고을과 황해 고을의 전결 중에서 1천 5백결을 경각사(京各司)의 유토면세(有土免稅)의 예(例)에 의하여 편의에 따라 획급되 본부에서 보탬 것과 조정에서 획급할 것을 통틀어 계산하면 매년의 지계(支計)에 반드시 잉여분이 있을 것입니다. 많고 적고 간에 해마다 비변사에 보고하고 각도의 환곡으로 만들고 겸하여 모곡을 취하여 가면 10여 년이 지나지 않아 4~5만 석의 곡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때에 가서 획급한 결세(結稅)를 도로 바치고 대신 환모(還耗)를 사용하도록 하며 일정 연한의 절목을 만들어 준행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답하였다.

司啓曰、頃因開城留守金履載狀啓、本府經 用債殖錢、刻期收殺、無弊斂散、依舊放下之意、覆啓行會矣、卽見該留守狀啓、則以爲久債中已捧 與可捧者、約爲七萬餘兩、而除却勅庫所付及校院 各處還給者加下還報及今年應下補縮者、則更無餘存矣、每年應下元不足三萬餘兩、別爲措辦、然後可以排比、故商稅及田賦戶役、從民願、略增其數、則歲入爲一萬四千兩、而此外不足條一萬八千兩、拮据無路、便近數邑田結中、限二千四百結、依華城例、特爲劃給、或以諸道還耗壬午會錄條中、折米六萬石、劃作松營補弊穀、歲取六千石耗、作錢補用事、請令廟堂、稟旨分付矣、月前覆啓申飭之後、該守臣之嚴加徵督、想必不遺餘力、而所捧不過如斯、其餘之無處指徵、可知、到今一向督迫、徒增其撓民而已、斂散取殖、便成無麪之不托、則支放所需、宜有不足之給代、而衆民既願出力、優當其半、朝家之仍無措劃、而專責本府者、豈非反損事體之甚乎、田結卽大農經費之所關、其何可遽議於割賦揀瘼、而京外錢穀、到處枵竭、無計着手、今不可徒拘正稅之重、而不思闊狹之方、分付戶惠廳、就本府近處畿邑海 邑田結中、限一千五百結、依京各司有土免稅例、從便劃給、而通計本府所補及朝家所劃、則每年支計、必有剩餘、無論多少、逐年報本司、移作還穀於各道、兼又取耗添去、則不出十餘年、可得四五萬石穀、待其時還納所劃之結代、以還耗支用之意、使之成 出限年節目、以爲遵行之地、何如、答曰、允。

<비변사등록 211책, 순조 23년 1823년 06월18일(음)>

경제/재정

開城留守營에 劃給하기로 했던 畿邑 등의 田結 1500結은 중지할 것을 청하다

호조에서 아뢰기를, “앞서 개성부 유수(開城府留守)의 장계로 인하여 ‘본부(本府)의 폐해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경기(京畿)읍과 해서(海西)읍의 전결(田結) 중에서, 1천 5백 결에 한해 경사(京司)의 유토면세례(有土免稅例)에 의하여 편의에 따라 획급(劃給)하도록 묘당(廟堂)에서 복계(覆啓)하여 윤허를 받았습니다. 이번 이 대농(大農)의 정부(正賦)를 베어서 송영(松營: 개성부(開城府))의 채폐(債弊)를 바로잡자는 논의는 실로 어찌할 수 없는 조처임을 알지만, 경상비(經常費)로 쓰이는 재곡(財穀)이 모두 토전(土田)의 상세(常稅)에서 나오니 국계(國計)의 넉넉함과 부족함이 오직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경각사(京各司)의 면세라고 말하는 것은 곧 국초의 늪전(廩田), 직전(職田), 둔전(屯田), 채전(菜田)으로 내려오는 옛 규례요, 또 혹 가경전(加耕田)으로 입안(立案)한 것 등에 그대로 면세된 것도 있습니다. 이 외에는 애초에 특별히 유토면세로 획급(劃給)한 것이 없으니 지금 어찌 그 예로 인용하여 논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수신(守臣)의 장계에 비록 가까운 고을의 전결을 화성(華城)의 사례에 의하여 획급하는 말이 있지만, 화성이 유수부(留守府)로 승격된 후에도 세결(稅結)을 획급한 일은 없고 단지 태안(泰安)의 전세를 강도(江都)로 실어다 바치던 것을 본부로 이획(移劃)하였고, 본부의 전세는 호조에 상납하였습니다. 태안의 전세를 본부로 옮겨 바치는 것은 일이 불편하여 서로 바꾸어 가져다가 사용하도록 할 뿐이라면 지금 이 획급은 생각해 보면 역시 예로 삼을만한 것이 없고, 그때 화성유수부의 거조(舉條)에도 지금의 재력은 예전의 재력에 미치지 못하여 삼도(三都)에 전속(全屬)시킨 예를 모두 쓸 수가 없어 호조 세입의 세를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府)의 분사(分司)를 처음 설치하였을 때 비로소 기획(規劃)하였으니 돌아보면 어떠하겠습니까. 그러나 호조의 세는 거론하지 않았으니 개성의 폐해를 바로 잡는 일은 화성의 신설(新設)에 다시 긴장해서는 부당하나 화성 본부의 세를 아직도 획속(劃屬)시키지 않았으며 지금 송영에 전속된 곳에 또 근처의 전결을 가획(加劃)하는 것은 왕토(王土)의 소중함으로 보아 유독 신의 조(曹)에서만 난감하게 여길 일이 아닐 듯합니다. 비록 비축된 것이 넉넉한 때라 하더라도 정세(正稅) 전결을 대농으로부터 받아들이는 것을 혹 경비 외에 내고 들이는 것을 논의할 수 없고 더구나 지금 전총(田總)이 점차 감소되어 조세가 늘 모자랄까 걱정입니다. 밖으로는 군읍(郡邑)에 영구한 재결(災結)은 지나치게 많으나 도로 기경(起耕)하는 일은 매우 적고, 안으로는 궁방(宮房)의 구결(舊結)은 거두지 못하면서 신결(新結)은 따라서 획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경인년(庚寅年: 영조46, 1770)의 세총(稅總)은 67만여 결로서 작년의 실결(實結)을 계산하여 비교하니 계산하니 감소된 것은 1만 결이 넘습니다. 또 경신년(庚申年: 순조 원년, 1800) 이후의 중년(中年)의 세입의 미곡을 중년의 지출을 계산하여 비교하면 그 부족은 8만여 결에서 거두는 것이 됩니다. 이는 특히 중년의 세입과 중년의 지출이 세입은 하년(下年)인데 지출은 상년(上年)과 같습니다. 지금 23년 동안에 역시 자주 있는 일이요, 부족은 더욱 많아 항상 다른 곳에서 융통하여 빌어다 근근이 지탱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이러하므로 갈수록 더욱 군색해지고 있으니 호조의 형편은 거의 여지가 없다고 하겠습니다. 8만여 결이 늘 부족하다고 한다면 1천 5백 결 등 본조에는 보탬이 되지 않으나 송영에는 구제가 될 수 있음은 실로 그러합니다. 그러나 신의조에서 고수하는 것은 특히 이전에는 이와 같은 사례가 없습니다. 성명(成命)이 계신 때에 거행할 수 없어 지극히 황공한 마음을 감히 아뢰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묘당과 상의 처리하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戶曹啓曰, 前因開城留守狀啓, 本府掾弊, 取 畿邑海邑田結中, 限一千五百結, 依京司有土免稅例, 從便劃給事, 自廟堂覆啓蒙允矣, 今此議割 大農之正賦, 以掾松營之債弊, 固知其甚不獲已

之 舉，而經用財穀，皆出於土田常稅，國計羸絀，專係於 此，今所謂京各司免稅，卽國初廩田職田屯田菜 田之流來舊規，而又或有加耕立案等處之仍免稅 者，此外初無別劃有土免稅之事，今豈有援例其例 之可論，而且守臣狀啓，雖有便近邑田結，依華城 例劃給之語，華城陞留之後，亦未嘗劃給稅結，只有 泰安田稅之輸納江都者，移劃本府，而以本府田稅 則上納地部，泰安田稅則移納本府，事涉不便，許其 互換取用而已，則今茲劃給，究亦無例可依，而其時 華留學條，亦以爲今之財力，既不及古之財力，三都 全屬之例，有不可盡用，度支歲入之稅，姑不爲舉論，此府分司之初，設始規劃，顧何如，而度支之稅，不爲 舉論，則松之掾弊，不當更繫於華之新設，而以華城 本府之稅，尙不劃屬，今以松營全屬之處，又爲加劃 傍近之結，王土所重，恐非獨臣曹之所宜持難也，雖 在積儲存羸之時，正稅田結之領于大農者，固未或 議其出入於經費之外，矧今田摠，漸致耗減，租稅常 患匱乏，外而郡邑，永災猥多，而還起絕少，內而宮房，舊結未收，而新結隨劃，試以庚申稅摠六十七萬餘 結，計比昨年實結，所減已過萬結，而又以庚申以後 之中年歲入米穀，計比中年用下，則其所不足，爲八 萬餘結之所收，此特中年之入與中年之用，若其入 爲下年，用爲上年，于今二十三年之間，亦屢有之，而 不足益多，每每挪借折買，僅以支捱，年年如此，轉益 窘艱，地部事勢，可謂殆無餘地，若曰八萬餘結，既常 不足，則千五百結等，無補於本曹，可有掾於松營，固 亦然矣，而臣曹之今所執守者，特以曾無如此之例，成命之下，無以舉行，不勝惶恐之意，敢啓，傳曰，與 廟堂，商處可也。

<비변사등록 211책, 순조 23년 1823년 07월01일(음)>

경제/재정

水原의 會付還穀 중 小麥 314석은 가을에 大米로 換作해서 捧上하게 할 것을 청하다

비변사에서 아뢰기를, “지금 수원유수(水原留守) 이희갑(李羲甲)의 장계를 보니 본부의 관관(判官) 김영(金鏐)의 청정을 세세히 거론하면서 말하기를 ‘회부(會付)된 환곡(還穀) 중에서 보리의 원총(元總)이 3백 14석 영(零)으로 분급할 때마다 받는 것은 한 말에도 차지 못합니다. 이 적은 수량을 농사짓는 시기에 실어다 바치고 받아간다는 것은 해만 있고 이익은 없으니, 백성들의 소원대로 가을에 가서 쌀로 바꾸어 바치도록 해서 폐해를 없애도록 묘당으로 하여금 품지해서 분부하게 하소서.’ 라고 하였습니다. 보리 환자의 수량이 매우 부족하여 백성들의 형편에 보탬이 되지 못하고 도리어 농사철에 해만 끼치니 지금 쌀로 바꾸도록 하여 백성의 바람에 따라서 환자의 폐해를 없애는 방법으로 삼는 것이 해롭지 않겠습니다. 장계의 내용대로 시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답하였다.

司啓曰，卽見水原留守李羲甲狀啓，則枚舉 本府判官金鏐牒呈，以爲會付還穀中，小麥元摠爲三百十四石零，而每當分給，所受不盈一斗，以此零星之數，輸納受出於農作之時，有害無益，從民願待 秋換作大米捧上，以爲除弊事，請令廟堂，稟旨分付矣，牟還數甚零星，無足有補於民勢，而反爲貽害 於農節，到今勝穀換作，不害爲從民願除還弊之方，許令依狀辭，施行何如，答曰，允．

<비변사등록 211책, 순조 23년 1823년 07월 18일(음)>

경제/재정

水原 등 3都에서 句管하는 각 道 곡물의 見縮條를 劃給해서 取用하게 할 것을 청하다

비변사에서 아뢰기를, “수원(水原)에서 구관(句管)하는 각도의 곡물로서 흠축(欠縮:줄어든 것)된 것을 금년의 모미(耗米:모곡으로 받아들인 쌀) 1천 2백 25석 영(零)과 각 창고의 채전(債錢)을 탕감하고 급대(給代)한 곡식 6백 석, 광주(廣州)에서 구관하는 관서곡(關西穀)

과 호서곡(湖西穀)의 흙축된 것을 임오년(壬午年:순조22, 1822)의 모미 3백 20석 영, 송도(松都)에서 구관하는 관서곡의 금년 모조(耗條)를 대신한 것과 작년에 구획(區劃)한 것 중에서 채워주지 못한 것을 합하여 2천 4백 석, 이번에 채전을 탕감하고 급대한 것 2천 석을 각 해부(該府)에서 구획해주기를 청하였습니다. 각 영(營)의 지방(支放)에 부족한 것을 다른 곳에서 대신 획급해 주는 것은 근년의 예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화성(華城)과 광주(廣州)는 호서의 가분모(加分耗)와 비국에서 구관하는 각 명목의 곡식에 회록(會錄)한 모조 중에서 절미(折米:다른 물종을 쌀의 가치로 계산함)하여 획급하고, 송도는 관서곡의 금년 모조를 대신한 것과 작년에 구획한 것 중에서 채워주지 못한 것을 영남의 가분모 및 비국 구관의 각 명목의 곡식에 회록한 모조 가운데 절미하여 획급하며, 이번에 채전을 탕감하고 급대한 것은 호남의 가분모와 비국에서 구관하는 각 명목의 곡식에 회록한 모조에 절미하여 획급해서 가져다 쓰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답하였다.

司啓曰, 水原句管各道穀見縮條, 今年耗米一千二百二十五石零, 各庫蕩債錢給代穀六百石, 廣州句管關西·湖西穀見縮條, 壬午耗米三百二十石 零, 松都句管關西穀今年耗代條及昨年區劃中未 充給條, 合二千四百石, 今番蕩債給代條二千石, 自 各該府, 報請區劃矣, 各營支放不足條之從他代劃, 便成近例, 華城·廣州則以湖西加分耗及備局句管 各名穀會錄耗中折米劃給, 松都則關西穀今年耗 代條及昨年區劃中未充給條, 以嶺南加分耗及備 局句管各名穀會錄耗中折米劃給, 今番蕩債給代 條, 以湖南加分耗及備局句管各名穀會錄耗中折 米劃給, 使之取用, 何如, 答曰, 允.

<비변사등록 211책, 순조 23년 1823년 10월03일(음)>

경제/재정

水原留守 李義甲이 청한 대로 本府의 還餉 留庫穀을 加分해 줄 것을 청하다

비변사에서 아뢰기를, “수원유수 이희갑(李義甲)의 장계를 보니 ‘회부(會付)한 환향(還餉)의 수효가 본래 넉넉하지 않아 이와 같은 농번기에 계속해서 나누어주기가 어렵습니다. 본부의 환향 유고(留庫) 가운데 조미(租米)와 태(太) 도합 3천 4백 23석 영(零) 및 속읍(屬邑)에 있는 남한 향조(南漢餉租) 3천 8백 9석 영을 특별히 가분(加分)하도록 묘당에서 품지하여 분부하게 하소서.’ 하였습니다. 본부의 가분은 이미 연례(年例)가 되었고 농사철에 계속해서 나누어주는 일도 유념해야 하므로 장계에서 청한 석수(石數)대로 가분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답하였다.

司啓曰, 卽見水原留守李義甲狀啓則以爲, 會付還餉數本不敷, 當此農殷, 巡分難繼, 本府還餉留庫中, 租米·太合三千四百二十三石零, 及屬邑所在南漢餉租三千八百九石零, 特許加分事, 請令廟堂稟旨分付矣, 本府加分, 已成年例, 農節繼巡, 在所當念, 依狀請石數, 許令加分何如, 答曰, 允.

<비변사등록 212책, 순조 24년 1824년 05월 17일(음)>

경제/재정

華城 등지에 湖西의 加分耗를 劃給하고 松都에 嶺南의 加分耗 등을 劃給할 것 등을 청하다

비변사에서 아뢰기를, “수원(水原) 구관 각 도 곡물 건축조(見縮條)의 금년 모미(耗米) 1천 2백 25석 영(零), 각고(各庫) 탕채전(蕩債錢)의 급대곡(給代穀) 6백 석, 광주(廣州) 구관 관서·호서곡 건축조의 계미모(癸未耗) 3백 20석 영, 송도(松都) 구관 관서곡 금년의 모대조(耗代條) 2천 석, 탕채 급대조(蕩債給代條) 2천 석을 각 해부(該府)에서 보고하여 구획

(區劃)하기를 청하였습시다. 각 영의 지방 부족조(支放不足條)를 다른 데에서 대획(代劃)하는 것이 근래의 예가 되었습니다. **화성(華城)**과 광주(廣州)는 호서의 가분모(加分耗) 및 비변사구관 각명곡(各名穀) 회록모(會錄耗) 가운데에서 절미(折米)하여 획하하고, 송도는 관서곡 금년의 모대조는 영남의 가분모(加分耗) 및 비변사구관 각명곡 회록모(會錄耗) 가운데에서 절미하여 획하하고, 탕채 급대조는 호남의 가분모 및 비변사구관 각명곡의 회록모 가운데에서 절미하여 획하해서 가져다 쓰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답하였다.

司啓曰, **水原**句管各道穀見縮條, 今年耗米一千二百二十五石零, 各庫蕩債錢給代穀六百石, 廣州句管關西湖西穀見縮條, 癸未耗三百二十石零, 松都句管關西穀今年耗代條二千石, 蕩債給代條二千石, 自各該府報請區劃矣, 各營支放不足條之從他代劃, 便成近例, **華城·廣州**, 則以湖西加分耗及備局句管各名穀會錄耗中, 折米劃給, 松都則關西穀今年耗代條, 以嶺南加分耗及備局句管各名穀會錄耗中, 折米劃給, 蕩債給代條, 以湖南加分耗及備局句管各名穀會錄耗中, 折米劃給, 使之取用何如, 答曰, 允.

<비변사등록 212책, 순조 24년 1824년 09월 19일(음)>

경제/재정

水原留守의 요청대로 本府의 還餉 留庫 중 2494石 및 南漢 餉租 957石을 加分해준다

비변사에서 아뢰기를, “지금 **수원유수 김이양(金履陽)**의 장계를 보니, ‘회부된 환향(還餉)이 본래 넉넉하지 못하여 이처럼 농사가 한창인 때에 배순을 잇대기 어려우니, 본부 환향(還餉)의 유고(留庫) 가운데 조·미·태(租米太:벼, 쌀, 콩) 함께 2천 4백 94석 영(零)과 속읍(屬邑)에 소재한 남한산성(南漢山城)의 향조(餉租) 9백 57석 영을 특별히 가분(加分)해 주도록 묘당에서 품지하여 분부하게 하소서.’ 하였습니다. 보릿고개에는 먹을 것이 어려우므로 백성의 사정은 생각해야 하고 적법(糶法)이 비록 엄하다 하더라도 융통성이 있는 정사가 없을 수 없으니 장계에서 청한 수효대로 가분해 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답하였다.

司啓曰, 卽見**水原留守**金履陽狀啓, 則以爲會付還餉, 自來不敷, 當此農殷, 巡分難繼, 本府還餉留庫中租米太合二千四百九十四石零及屬邑所在南漢餉租九百五十七石零, 特許加分事, 請令廟堂, 稟旨分付矣, 麥嶺艱食, 民事當念, 糶法雖嚴, 不容無闊狹之政, 依狀請數爰許令加分, 何如, 答曰, 允.

<비변사등록 213책, 순조 25년 1825년 05월 21일(음)>

경제/재정

홍년이 든 水原府에 畿營에서 빌려간 關東의 곡물을 移劃하게 할 것을 청하다

○ 비변사에서 아뢰기를, “지금 **수원유수 홍희신(洪羲臣)**이 아뢰 바를 보니, 농사 형편의 재손(災損)과 백성들의 사정이 황급한 상황을 갖추어 아뢰고 이어서 이르기, ‘구제할 방도를 미리 강구하지 않을 수 없으니, 갑술년(甲戌年:순조14, 1814)의 전례에 따라 관동과 해서 가운데 대미(大米:쌀)와 소미(小米:좁쌀)를 막론하고 6천 석에 한하여 특별히 이획하게 하소서.’ 하였습니다. 금년 재해의 형편은 기호(畿湖)의 연해에 편중되어 있어서 서로 돕는 방도로 얼마 전에 서(西)와 남(南)의 도신(道臣)에게 알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본부는 경기와 호서 지방이 교차된 곳에 있어서 바다에 면한 부분이 많아 재해를 입은 것이 심한데, 창고의 곡식이 고갈되어 환곡의 진흥에 배비(排比)하기에도 어려움이 있으니 이듬해의 사정은 참으로 수신(守臣)이 보고한 바와 같습니다. 고르게 돌보아 주는 정사에 있어서 읍

겨서 구제하는 일이 없을 수 없겠으나 배를 띄우는 것은 큰 일이어서 서남 지방에 거둬 요구할 수도 없는데, 이밖에 가까운 도는 오직 관동이 있을 뿐입니다. 관동에서 구관하는 별회곡(別會穀)과 별군향곡(別軍餉穀) 가운데에서 의논해서 구획해 주어야 하겠는데, 연전에 경기 감영에서 본사에 보고하고 빌려다 쓴 본부의 쌀 1천 90여 석이 있으나 본도의 환곡 총수가 넉넉하지 못하여 아직도 도로 갚지 못하고 있으니, 만약 지금 획송하는 것을 이 수량에 준하여 준절(準折)해서 각곡(各穀)으로 만들어 기영에서 전에 빌려간 곡식을 옮겨 갚게 한다면, 기영에는 진휼(賑恤)에 모자람이 없게 되고 본부에는 구제가 실제로 적용되어서 양쪽에 모두 마땅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각 해도(各該道)의 도신과 수신(守臣)에게 분부하고, 운반하는 절차는 왕복하여 형편대로 정하여 시기에 미쳐 가져다 쓰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답하였다.

司啓曰，卽見水原留守洪義臣所報，則備陳農形災損，民情遑汲之狀，仍以爲接濟之方，不可不預先經紀，依甲戌己例，就關東海西中，無論大小米，限六千石，特許移劃爲辭矣，今年災形，偏在於畿湖沿海，互資之方，纔有知委於西南道臣者，而本府處畿湖之交，多沿海之面，被災爲甚，而倉簿耗竭，有難排比於還賑，嗣歲事情，誠有如守臣所報者，其在均視之政，亦不可無移濟之舉，然，汎舟巨役也，既不可疊責於西南，則外此近道，惟有關東而已，就關東本司勾管別會及別軍餉穀中，當議區劃，而年前自畿營，有報司貸用本府米一千九十餘石者，因本道糴摠之不敷，尙未還報矣，若以今此劃送者，準此數準折作各穀，移報畿營前貸之穀，則畿營之無欠賑，本府之濟實用，兩皆便宜，以此分付於各該道守臣處，而轉輸之節，仍令往復從便，以爲及期取用之地，何如，答曰，允。

<비변사등록 213책, 순조 25년 1825년 09월 01일(음)>

경제/재정

江華留守 申絢이 청한 대로 本府의 還餉 및 三軍門 留還 停代 分數를 시행할 것을 청하다

○ 비변사에서 아뢰기를, “지금 강화유수 신현(申絢)의 장계를 보니, 백성들의 사정이 황급한 상황을 다시 아뢰고 이어서 청하기를, ‘본부의 환향과 삼군문(三軍門: 훈련도감·금위영·어영청)의 유향(留餉: 삼군문에서 강화에 비축해둔 군향)을 모두 전에 청한 대로, 우심호(尤甚戶)는 절반에 한하고, 지차호는 3분의 1에 한하여 정퇴(停退)하며, 당봉조(當捧條)도 이 분등(分等)대로 그에 상당하는 곡식으로 준절(準折)하여 대봉(代捧)하도록 묘당에서 품지하여 분부하게 하소서.’ 하였습니다. 본부의 재해를 입은 형편이 매우 심해서 백성들의 형편이 극에 달한 것은 수원(水原) 광주(廣州) 양도(兩都)와 차이가 없는데, 양도의 정퇴와 대봉을 이제 막 우심호는 절반, 지차호는 3분의 1로 품복(稟覆)하고 허시(許施)하였습니다. 일시(一視)의 정사에 있어서 양도에 이미 시행한 것을 본부에만 난색을 표할 수 없으니 부향(府餉)과 삼군문의 유향을 정퇴하고 대봉하는 분수(分數)를 모두 장계에서 청한 대로 시행하여 재해를 입은 해에 백성들의 형편을 펴 주는 효과가 있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답하였다.

司啓曰，卽見江華留守申絢狀啓，則復陳民情遑急之狀，仍請本府還餉及三營留還，並依前請，尤甚戶限折半，之次戶三分一停退，當捧條亦依此分等，以相當穀準折代捧事，令廟堂稟旨分付矣，本府災形之孔酷，民勢之到極，既無間於華·廣兩都，而兩都停代，纔以尤甚折半之次三分一，稟覆許施矣，其在一視之政，有不可以已施於兩都者，斬之於本府，府餉及三軍門留還停代分數，並依狀請施行，俾有災歲紓民之效，何如，答曰，允。

<비변사등록 213책, 순조 25년 1825년 10월 06일(음)>

경제/재정

水原留守 洪義臣이 청한 餉租 4千石 중 2千石을 劃給할 것 등을 청하다

○ 비변사에서 아뢰기를, “지금 수원유수 홍희신(洪義臣)의 장계를 보니, ‘본부에서 재해를 입은 면리(面里) 가운데 가장 빈궁하여 의탁할 곳이 없는 부류를 장부를 대조하면서 세밀하게 가려 보니, 진휼해야 할 인구가 7천 6백 35구(口)이고 들어가는 쌀이 4천여 석입니다. 그 가운데 경기감영에서 빌린 쌀을 관동의 곡식으로 획하(劃下)한 것 1천 96석과, 본부의 수용조(需用條)로 해서의 쌀 가운데에서 떼어 오는 것 1천 5백 석을, 아울러 옮겨서 쓰고 그 나머지는 진위(振威)·용인(龍仁)에 있는 본부 향조(餉租) 가운데에서 4천 석을 가져다 쓰게 하며, 공명첩(空名帖) 3백 장도 내려 주어서 진휼하는 비용에 보태게 하고 또 본부는 금년의 재감(災減)이 많을 뿐더러 전결(田結)의 수입도 크게 감축된 만큼, 세입 가운데 지방조(支放條)가 부족한 수를 외탕고(外帑庫)의 쌀 3백 석과 과천(果川)의 별치미(別置米) 3백 석 및 저치고(貯置庫)의 돈 3천 냥을 특별히 떼어 주도록 아울러 묘당에서 품지하여 분부하게 하소서.’ 하였습니다. 본부의 재해는 참으로 앞으로 구제하는 정사가 없을 수 없는 데, 진휼할 비용의 구획을 이처럼 수신(守臣)이 아뢰는 바가 있으나, 해서와 관동의 곡식 2천 6백 석 이외에 달리 변통할 자원이 없으므로 본부의 향조로서 가까이 두 고을에 있는 것을 또 획하하기를 청하였습니다. 본부에서 구관하는 것으로 본부의 진휼 밀천에 보태는 것은 기왕에 재해를 입은 해에 이미 허락하였던 바이나 그 고을도 재해를 면치 못하였고 환곡의 총수가 본래 여유가 있지 않은데 만약 이 가운데에서 4천 석의 곡물을 책출하게 되면 형세가 균색하여 백성들이 필시 피해를 입을 것이니 반을 감하여 획급해야 하겠습니다. 재결이 많아 세수가 감축되어 지방을 잇대기가 어려우면, 각 창고의 어떠한 돈이 되었든지 간에 해아려서 옮겨 주어야 함은 일의 형세가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그대로 시행하게 해야 하겠습니다. 공명첩을 청해 얻어서 진휼에 보태는 것은 비록 전례가 있지만 폐단이 되는 것도 많으니, 2백 장을 만들어 보내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답하였다. 司啓曰, 卽見水原留守洪義臣狀啓, 則以爲本府被災面里最貧窮無依之類, 按簿精抄, 則應賑之口, 爲七千六百三十五口, 所入米爲四千餘石, 而其中移貸畿營米之以關東穀劃下者, 一千九十六石, 本府需用條之劃來於海西米中一千五百石, 竝爲移用, 其餘則振威·龍仁所在本府餉粗中, 以四千石, 許令取用, 空名帖三百張, 亦爲頒下, 俾補賑需, 且本府今年災減既多, 結收大縮, 稅入中支放條不足之數, 以外帑庫米三百石, 果川別置米三百石, 貯置庫錢三千兩, 特許劃下事, 竝請令廟堂稟旨分付矣, 本府災憂, 誠不可無來頭接濟之政, 賑需區劃, 有此守臣陳啓, 而海西·關東穀二千六百石許外, 無他推移之資, 以本府餉粗之近在兩邑者, 又請劃下以本府句管, 而補本府賑資, 此固已往災歲之所已許, 然該邑亦未免災, 還摠本非有裕, 若於此中, 責出四千石穀物, 則勢有窘絀, 民必受病, 減半許劃, 災多稅縮, 支放不繼, 則就各庫某樣錢穀中, 量宜移劃, 事勢不得不然, 依施, 空名帖之請得補賑, 雖有已例, 多亦爲弊, 二百張, 許令成送何如, 答曰, 允.

<비변사등록 213책, 순조 25년 1825년 10월 30일(음)>

경제/재정

水原에 留庫穀을 加分할 것을 청하다

○ 비변사에서 아뢰기를, “수원유수(水原留守) 김상휴(金相休)의 장계를 보니, ‘회부(會付)된 환향(還餉)이 원래부터 넉넉하지 않아 이렇게 농사가 한창인 때에 순분(巡分: 排巡)

을 잇기 어려우니, 본부(本府)에서 유고(留庫)한 환향 중에서 조·미·태(租米太) 도합 4천 4백 9석 영(零：端數)과 속읍(屬邑)에 있는 남한산성(南漢山城)의 향조(餉租) 4천 3백 31석 영을 특별히 가분(加分)하도록 묘당에서 품지하여 분부하게 하소서.’ 하였습니다. 이렇듯 보릿고개를 당하여 의당 곡식이 어려운 걱정이 있을 터이니 본부의 가분은 수(數)에 준하여 허시(許施)하며, 속읍 다섯 고을에 있어서도 역시 일시(一視：똑같이 대우함)하는 은택(恩澤)으로 시행하여야 하겠지만, 다만 생각건대 과천(果川) 고을은 1포(包)도 유고한 것이 없고, 시흥(始興)·진위(振威)는 유고한 것이 1백 석에 차지 않는 것은 환향을 유고하는 법의(法意)로 논하자면 살피지 못한 잘못이 있습니다. 과천 5백 석, 시흥 4백 석, 진위 1천 5백 석, 안산(安山) 4백 석, 용인(龍仁) 1천 5백석을 가분하게 하되 다섯 고을의 향조(餉租)는 청한 도수(都數)가 모두 합하여 4천 8백 31석 영인데 장본(狀本) 중에서 5백 석을 착오한 것은 자세히 살피는 데에 흠이 있으므로 당해(當該) 수신(守臣)을 추고(推考)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답하였다.

司啓曰，卽見水原留守金相休狀啓則以爲，會付還餉，自來不敷，當此農殷，巡分難繼，本府還餉 留庫中租米太合四千四百九石零及屬邑所在南 漢餉租四千三百三十一石零，特許加分事，請令 廟堂稟旨分付矣，當此麥嶺之交，宜有穀艱之患，本府加分，準數許施，至於所屬五邑，亦當施以一視 之澤，而第念果川一邑之無一包留庫，始興·振威留庫之未滿百石者，論以餉留，法意極甚疎虞，果川五 百石·始興四百石·振威一千五百石·安山四百石·龍 仁一千五百石，許令加分，五邑餉租狀請都數，共合 四千八百三十一石零，而狀本中，出以上至爲五百 石減錯者，有欠詳審，該守臣推考何如，答曰，允．

<비변사등록 214책, 순조 26년 1826년 05월 20일(음)>

경제/재정

水原 등에서 句管하는 見縮條에 대해 아뢰다

비변사에서 아뢰기를, “수원(水原)에서 구관(句管)하는 각도곡(各道穀) 건축조(見縮條)의 금년(今年) 모미(耗米) 1천 2백 25석 영(零)과 각고(各庫) 탕채전(蕩債錢)의 금대곡(給代穀) 6백 석과 송도(松都)에서 구관하는 관서곡(關西穀)의 금년 모대조(耗代條) 2천 석과 광주(廣州)에서 구관하는 관서·호서곡(湖西穀)의 건축조로 을유년(乙酉年：순조 25, 1825)의 모(耗) 3백 20석 영을 각 해부(該府)에서 구획(區劃)해 주기를 보청(報請)하였습니다. 각영(各營) 지방(支放)의 부족조(不足條)를 다른 것으로 대신 획급(劃給)하는 것은 이미 근례(近例)가 되었으니, 화성(華城)은 영남(嶺南)의 가분모(加分耗)와 비국(備局)에서 구관하는 각명곡(各名穀)의 회록모(會錄耗) 중에서 절미(折米)하여 획급하고, 송도는 호남의 가분모와 비국에서 구관하는 각명곡의 회록모 중에서 절미하여 획급하며, 광주는 해서(海西)의 가분모와 비국에서 구관하는 각명곡의 회록모 중에서 절미하여 획급해서 가져다 쓰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답하였다.

司啓曰，水原句管各道穀見縮條，今年耗米一 千二百二十五石零，各庫蕩債錢給代穀六百石，松都句管關西穀今年耗代條二千石，廣州句管關西·湖西穀見縮條，乙酉耗三百二十石零，自各該府報 請區劃矣，各營支放不足條之從他代劃，已成近例，華城則以嶺南加分耗及備局句管各名穀會錄耗 中折米劃給，松都則以湖南加分耗及備局句管各 名穀會錄耗中折米劃給，廣州則以海西加分耗及 備局句管各名穀會錄耗中折米劃給，使之取用何 如，答曰，允．

<비변사등록 214책, 순조 26년 1826년 09월 17일(음)>

경제/재정

水原留守 金相休이 還餉부족으로 本府 留庫穀 3천4백68석 등의 加分을 요청대로 허락하다
비변사에서 달하기를, “수원유수(水原留守) 김상휴(金相休)의 장달을 보니, ‘회부(會付)된 환향(還餉)이 본래 넉넉하지 못하여 이 같이 농사가 한창인 때를 당해서는 순차(巡次)를 잇대서 분급(分給)하기 어려우니, 본부(本府)의 환향 유고곡(留庫穀) 중에서 조(租)·미(米)·태(太) 도합 3천 4백 68석 및 속읍(屬邑)에 있는 남한산성의 성향(城餉)인 조 2천 4백 57석 영(零)을 특별히 가분해 주도록 묘당에서 품령하여 분부하게 해 주소서.’ 하였습니 다. 보릿고개에는 먹고살기가 어려우므로 민사(民事)를 염려해야 하고 또 금년에 청한 것은 작년에 비해 다소 정약(精約:여유를 두지 않음)하니, 본부와 속읍의 가분은 모두 장달에서 청한 곡식의 수효대로 시행하게 하되, 지나친 가분의 폐단은 삼가 지난번 내린 예지(睿旨)에 따라 이번에도 신칙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그리하라고 답하였다.

司達曰, 卽見水原留守金相休狀達則以爲, 會付還餉, 自來不敷, 當此農殷, 巡分難繼, 本府還餉 留庫中, 租米太合三千四百六十八石, 及屬邑所在 南漢餉租二千四百五十七石零, 特許加分事, 請令 廟堂稟令分付矣, 麥嶺艱食, 民事宜念, 且今年所 請, 比昨年稍爲精約, 本府及屬邑加分, 竝依狀請數 爰許施, 而加濫之弊, 謹依向下睿旨, 亦爲申飭何 如, 答曰, 依.

<비변사등록 215책, 순조 27년 1827년 05월 16일(음)>

경제/재정

水原의 句管穀見縮條 劃給 요청에 대해 湖南의 加分耗를 劃給해 줄 것을 청하다

○ 비변사에서 달하기를, “수원(水原)에서 구관(句管)하는 각도 곡식 건축조(見縮條)의 올해 모미(耗米) 1천 2백 25석 영(零), 탕채급대곡(蕩債給代穀) 6백 석과 광주(廣州)에서 구관하는 관서와 호서 곡식 건축조의 병술년(丙戌年:순조26, 1826) 모곡 3백 20석 영과 송도(松都)에서 구관하는 관서 곡식의 올해 모대조(耗代條) 2천 석을 각각 해부(該府)에서 구획해 달라고 청하였습니다. 각영(各營) 지방(支放)의 부족조(不足條)를 다른 데서 대신 획급하는 것은 이미 연례(年例)가 된 것이니, 화성(華城)은 호남의 가분모(加分耗)와 비국에서 구관하는 각명목(各名穀) 회록모(會錄耗) 중에서 절미(折米)하여 획급하고, 송도(松都)는 영남의 가분모와 비국에서 구관하는 각명곡의 회록모 가운데 중에서 절미하여 획급하며, 광주는 호서의 가분모와 비국에서 구관하는 각명곡의 회록모 중에서 절미해서 획급하여 가져다 쓰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그리하라고 답하였다.

司達曰, 水原句管各道穀見縮條, 今年耗米一 千二百二十五石零, 蕩債給代穀六百石, 廣州句管關西·湖西穀見縮條丙戌耗三百二十石零, 松都句 管關西穀今年耗代條二千石, 自各該府, 報請區劃 矣, 各營支放不足條之從他代劃, 已成年例, 華城則 以湖南加分耗, 及備局句管各名穀, 會錄耗中, 折米 劃給, 松都則以嶺南加分耗, 及備局句管各名穀, 會 錄耗中, 折米劃給, 廣州則以湖西加分耗, 及備局句 管各名穀, 會錄耗中, 折米劃給, 使之取用何如, 答 曰, 依.

<비변사등록 215책, 순조 27년 1827년 10월08일(음) >

경제/재정

水原留守 朴周壽가 청한 대로 南漢 餉條 留庫穀 중 1957石을 加分해 줄 것을 청하다

비변사에서 달(達)하기를, “방금 수원부유수 박주수(朴周壽)의 장달을 보니, ‘본부에 소속된 안산(安山) 등 3개 읍은 원환곡이 적어서 배순(排巡)하여 나누어줄 길이 없으니 본부에서 관리하는 남한산성 향조(餉組:벼로 가지고 있는 군향)의 유고조(留庫條) 중에서 1천

9백 57석 영(零)을 특별히 가분하도록 묘당에서 품령(稟令)하여 분부하게 하소서.’ 하였습니다. 농사철에 배순하여 나누어 주는 백성들의 식량은 유념(留念)해야 하고, 요청한 수량도 그리 많지 않으니 장계의 내용대로 가분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그리하라고 답하였다.

司達曰，卽見水原留守朴周壽狀達，則以爲 本府所屬安山等三邑，元還尠少，排巡無路，本府所管南漢餉租留庫條中一千九百五十七石零，特許加 分事，請令廟堂稟令分付矣，農節排巡，民食宜念，而所請數爰，不至過多，依狀辭許令加分，何如，答 曰，依。

<비변사등록 216책, 순조 28년 1828년 05월 24일(음)>

경제/재정

各營의 支放이 부족하므로 華城에 關西 慈城補城穀 중 절반을 劃給할 것 등을 청하다

○ 비변사에서 달(達)하기를, “수원(水原)에서 관장하는 각도곡(各道穀)의 건축조(見縮條)의 금년 모미(耗米) 1천 2백 25석 영(零) 및 빗을 탕감하고 급대(給代)한 곡식 6백 석과 광주(廣州)에서 구관하는 관서(關西)·호서(湖西) 곡식의 건축조의 정해년(丁亥年: 순조27, 1827) 모미 3백 20석 영(零)과 송도(松都)에서 구관하는 관서곡의 금년 모대조(耗代條) 2천 석을 각해부(各該府)에서 보고하고 구획하기를 요청하였습니다. 각영(各營) 지방(支放)의 부족조를 다른 것에서 대신 획급하는 것은 본래 연례입니다. 화성(華城)은 관서 자성(慈城)의 보성곡(補城穀) 중에서 쌀로 환산하여 획급하고, 광주(廣州)는 호남의 비변사에서 구관하는 곡식의 회록모(會錄耗) 중에서 쌀로 환산하여 획급하며, 송도는 해서(海西) 칙수곡(勅需穀)의 모작조(耗作條) 중에서 쌀로 환산하여 획급하여 가져다 쓰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그리하라고 답하였다.

司達曰，水原句管各道穀見縮條，今年耗米一 千二百二十五石零，蕩債給代穀六百石，廣州句管關西·湖西穀見縮條，丁亥耗米三百二十石零，松都 句管關西穀，今年耗代條二千石，自各該府，報請區 劃矣，各營支放不足條之從他代劃，自是年例，華城 則以關西慈城補城穀中折米劃給，廣州則以湖南 備局句管穀會錄耗中折米劃給，松都則以海西勅 需穀耗作條中折米劃給，使之取用，何如，答曰，依。

<비변사등록 216책, 순조 28년 1828년 10월 26일(음)>

경제/재정

水原留守 朴周壽가 청한 대로 留庫條 중 租太 3682석을 加分해 줄 것을 청하다

○ 비변사에서 달하기를, “수원유수 박주수(朴周壽)의 장달(狀達)을 보니 이르기를, ‘본부의 환향(還餉)은 본래 넉넉하지 않은데, 이 농사일이 한창인 때를 당하여 나누어 주어야 할 것이 이미 다해서 백성들의 사정이 황급하니, 유고조(留庫條) 가운데 조·태(租太: 벼와 콩) 합계 3천 6백 82석 영(零)을 특별히 가분(加分)하도록 묘당에서 품령(稟令)하여 분부하도록 하소서.’ 하였습니다. 나누어 주어야 할 것이 이미 다하였고 보리가 익는 것도 아직 멀었으니, 가난한 백성들의 농사 양식이 부족한 것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장달에서 청한 수효대로 가분하도록 허락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그리하라고 답하였다.

司達曰，卽見水原留守朴周壽狀達，則以爲 本府還餉，自來不敷，而當此農務方殷之時，應分已畢，民情遑汲，留庫條中租太合三千六百八十二石 零特許加分事，請令廟堂稟令分付矣，應分既畢，麥熟尙遠，菰屋農糧之艱乏，不可不念，依狀請數爰，許令加分何如，答曰，依。

<비변사등록 217책, 순조 29년 1829년 04월 20일(음)>

경제/재정

水原留守 朴周壽의 요청대로 安山 등 5邑에 있는 南漢餉租 4569石을 加分해 줄 것을 청하다
비변사에서 달하기를, “지금 수원유수 박주수(朴周壽)의 장달(狀達)을 보니 이르기를,
‘본영에 소속된 안산(安山) 등 다섯 고을의 원래 환곡이 매우 적어서 배분할 길이 없는데,
이 같은 보릿고개를 맞아 백성들의 사정이 황급하니, 다섯 고을에 있는 남한산성(南漢山城)
의 향조(餉租)로 창고에 비축된 것 가운데 4천 5백 69석 영(零)을 특별히 가분(加分)하도록
묘당에서 품령하여 분부하도록 하소서.’ 하였습니다. 보릿고개에 먹을 것이 어려우므로 백
성들의 사정을 유념해야 마땅하고, 또 속읍(屬邑)에 가분하여 주는 것이 곧바로 연례가 되
었으니, 장계에서 청한 대로 시행을 허락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그리하라고 답하
였다.

司達曰, 卽見水原留守朴周壽狀達, 則以爲 本營屬安山等五邑, 元還尠少, 排巡無路, 當此麥
嶺, 民情遑汲, 五邑所在南漢餉租留庫中, 四千五百六十九石零特許加分事, 請令廟堂稟令分付
矣, 麥嶺艱食, 民情宜念, 且屬邑加分, 便成年例, 依狀請許 施何如, 答曰, 依.

<비변사등록 217책, 순조 29년 1829년 05월 08일(음)>

경제/재정

全羅監司 趙寅永이 還餉 1만石을 加分해 주고 分留와 磨勘에 懸錄하게 할 것을 청하다

비변사에서 달하기를, “지금 전라감사 조인영(趙寅永)의 장달(狀達)을 보니 이르기를,
‘본도에서 응당 가분(加分)해야 할 절미(折米) 7천 석은 바로 연례로서, 모조(耗條)를 취
하여 화성(華城)과 병영(兵營)에 떼어 보내어서 지방(支放)을 급대(給代)하는 비용으로 삼
을 것이니, 환향(還餉)의 유고(留庫) 가운데 각 곡식을 1만 석에 한하여 특별히 가분을 허
락하도록 묘당에서 품령하여 분부하게 하소서.’ 하였습니다. 연례로 모조를 취하여 비용으
로 쓰는 것이므로, 장달에서 청한 대로 시행하되, 비록 가분이라고 하지만 이미 응당 주는
관례가 되었으므로 매년 품처하도록 청하는 것은 번거로우니, 이후에는 곧바로 가분하고 단
지 분·류(分留:분급(分給)과 유고(留庫))를 마감(磨勘)하는 가운데 현록(懸錄)하게 분부하
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그리하라고 답하였다.

司達曰, 卽見全羅監司趙寅永狀達, 則以爲 本道應加分折米七千石, 乃是年例, 取耗劃送於華
城及兵營, 以爲支放給代之需者, 還餉留庫中各穀 限一萬石特許加分事, 請令廟堂稟令分付矣,
係 是年例取耗需用者, 依狀請施行, 雖曰加分, 已成應 式, 每請稟處, 還涉煩屑, 此後則直爲
加分, 只令分 留磨勘中懸錄事分付何如, 答曰, 依.

<비변사등록 217책, 순조 29년 1829년 07월05일(음)>

경제/재정

水原 등의 支放이 부족하므로 穀物을 劃給해 줄 것을 청하다

비변사에서 달하기를, “수원(水原)에서 담당하는 각 도 곡식의 건축조(見縮條) 가운데 금
년의 모미(耗米) 1천 2백 25석 영(零)과 채무를 탕감하기 위한 급대곡(給代穀) 6백 석, 광
주(廣州)에서 담당하는 관서·호서의 곡식 건축조 가운데 무자년(戊子年:순조28, 1828)의
모미 3백 20석 영, 송도(松都)에서 담당하는 관서의 곡식 가운데 금년의 모대조(耗代條) 2
천 석을 각 해부(該府)에서 보고하여 급대하도록 청하였습니다. 각 영의 지방(支放) 부족조
를 다른 예에 따라 대신 주는 것은 이미 연례가 되었으니, 화성(華城)은 호남에 있는 본사

담당의 곡식을 회록(會錄)한 것의 모조(耗條) 가운데에서 절미(折米)하여 획급하고, 광주(廣州)는 영남의 가분모(加分耗) 회록조(會錄條) 가운데에서 절미하여 획급하며, 송도는 해서의 칙사 비용으로 쓰는 곡식의 모작조(耗作條) 가운데에서 절미하여 획급해서 가져다 쓰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그리하라고 답하였다.

司達曰, 水原句管各道穀見縮條今年耗米一千二百二十五石零, 蕩債給代穀六百石, 廣州句管關西·湖西穀見縮條戊子耗米三百二十石零, 松都句管關西穀今年耗代條二千石, 自各該府報請給代矣, 各營支放不足條之從他代劃, 已成年例, 華城則以湖南所在本司句管穀會錄耗中折米劃給, 廣州則以嶺南加分耗會錄條中折米劃給, 松都則以海西勅需穀耗作條中折米劃給, 使之取用何如, 答曰, 依.

<비변사등록 217책, 순조 29년 1829년 09월 22일(음)>

경제/재정

賑穀 등 水原의 弊虞에 대해 진달하고 그 대책을 아뢰다

○ 비변사에서 달하기를, “지금 수원유수 박주수(朴周壽)의 장달을 보니 이르기를, ‘본부에서 시행하는 규모와 전수(典守)하는 방략(方略)이 상세하고 세밀하지 않은 바가 아닌데, 헛수가 오래 되어 폐단이 생겨서 간혹 예전에는 편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기도 하고, 이쪽은 가득한데 저쪽은 감축되기도 하였으니, 비록 일일이 구체할 수는 없지만 진휼하는 곡식의 명색에 대해서는 고을에 없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부는 본래 진휼할 곡식이 없어서 만약 진휼할 때를 만나면 구차스러운 폐단이 없을 수 없습니다. 또 별효사(別驍士)의 말값[馬價]을 매년 내려 주는 것도 실로 지탱하기 어려운 단서이므로 바로잡아 고치지 않을 수 없고, 이 밖에도 약간의 변통할 것들이 있어 뒤에 조목별로 열거하였으니, 아울러 묘당에서 품령(稟令)하여 분부하게 하소서. 그 하나는, 호남에 있는 본영의 쌀 2백 56석 영(零)은 바로 병술년(丙戌年:순조26, 1826)에 내하(內下)한 진자전(賑資錢)을 서로 바꾸어 작곡(作穀)한 것으로 해도(該道)에 그대로 비축하고 있는데, 명색이 화성(華城)의 진곡(賑穀)이니, 이전대로 모조(耗條)를 취하는 일입니다. 그 하나는, 과천현(果川縣)의 탕미(帑米)로서 남아 있는 조목이 31석 영인데, 해현(該縣)에 있는 별치미(別置米)에 첨부하면 별치본미(別置本米)와 아울러 1천 1백 98석 영이 되니, 내년 봄부터 시작해서 일체 모조를 취하여 진곡으로 옮기는 일입니다. 그 하나는, 별치미 1백 석, 조(租) 1백 75석, 태(太) 2백 석이 매년 환향(還餉)에 첨부되는 것은 금년부터 시작해서 진곡으로 옮겨 혹시라도 환향이 감축될 때를 만나면, 진곡 가운데 몇 석을 덜어내어서 다시 환향에 첨부하고 비변사에 보고하여 거행하는 일입니다. 그 하나는, 외탕고(外帑庫)의 쌀로 한 해에 들어오는 것이 비록 풍년과 흉년에 따라 가감이 있기는 하지만, 응당 내려 주어야 할 것과 행행(幸行)할 때 군병(軍兵)의 여비 및 상자(賞資)를 제외하고는 오히려 남는 것이 많아, 묵어서 썩게 되어 환색(換色)하는 데 폐단이 없을 수 없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해서 3백 석을 숫자로 정해서 항상 비축하고 그 나머지는 진곡으로 옮기는 일입니다. 그 하나는, 내시(內侍)의 복호결(復戶結)에서 나오는 쌀을 신사년(辛巳年:순조21, 1821) 이후에 비축한 것이 도합 1백 20석 영이므로 또한 진곡으로 옮기되, 매해 받아들이는 15석을 해마다 첨부하는 일입니다. 그 하나는, 진곡으로 옮긴 후에 만약 환곡을 나누는 예대로 민간에 나누어 주게 되면 재해를 입은 해에 탕감해 주어야 할 우려가 없지 않으니, 매년 절반씩 각 창고에서 새로 받아들이는 쌀 가운데 서로 바꾸어 개색(改色)해서 비록 잠시라도 허위로 비축되지 않게 하는 일입니다. 그 하나는, 진곡은 바로 재해를 입은 해에 백성들을 구제하기 위한 용도인데, 만약 정퇴(停退)하거나 탕감

하는 가운데 들어가게 되면 반드시 감축이 될 것입니다. 호남과 과천 소재의 쌀을 모두 정퇴하거나 탕감하는 데에서 거론하지 말도록 두 도의 도신(道臣)에게 관문(關文)을 보내고, 본부 소재의 쌀도 일체 이에 의거하여 정식으로 삼는 일입니다. 그 하나는, 외탕고에 해마다 들어오는 전조(錢條)를 내려 주는 것과 비교하면 매년 부족한 것을 근심하게 되는데, 수성고(修城庫)와 저치고(貯置庫)의 두 창고에 해마다 들어오는 것이 조금 넉넉하니, 지금 이후로 행행할 때 군병의 여비 및 호궤조(犒饋條)를 저치고에서 옮겨다 쓰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저치고에서 받아들이는 가운데 2천 냥과 수성고에서 받아들이는 가운데 1천 냥, 도합 3천 냥을 매년 10월에 외탕고에 옮겨 보내어서 해마다 봉부동(封不動)으로 하게하며, 만약 특교(特敎)가 아니고서는 본고에서 함부로 쓸 수 없도록 영구히 정식으로 삼아, 매 정월마다 성책(成冊)으로 만들어 1건은 승정원에 올려 보내고 1건은 비변사에 올려 보내는 일입니다. 그 하나는, 별효사의 말값은 매년 친군위(親軍衛)의 번(番)을 감축한 보전(保錢)을 급대(給代)하여 내려 주는데, 받아들이는 것을 내려 주는 것과 비교하면 너무도 서로 맞지 않으니, 지금부터 말값을 내려 주는 규정을 영구히 혁파하고 공마(貢馬)가 올라올 때 매년 20 필 씩을 이전의 장문(狀聞)대로 머물러 두었다가 내어 줄 수 있게 하는 일입니다. 그 하나는, 견보고(鑄補庫)의 방채전(放債錢)은 지금 이미 햇수가 오래 되어 이웃에게서 징수하거나 친족에게서 징수하여 교리(校吏)들의 고질적인 폐단이 되었으니, 위 항목의 방채전 2천 냥을 특별히 탕감하고, 이조(利條)를 본고에서 쓰던 것은 본부에서 궁결(宮結)에 떼어 소속 시키며, 환곡에서 내어주는 세조(稅條) 가운데에서 매년 2백여 냥씩 급대하는 일입니다.’ 하였습니다. 각종 쌀을 진곡에 합해서 기록하고 두 창고의 돈을 봉장(封樁)으로 옮겨 두었다가 홍수나 가뭄에 대비하거나 급할 때의 용도로 쓰면, 장차 앞으로 효과가 있고 장애가 되는 단서가 없을 것이니, 모두 그대로 시행하되, 정퇴하거나 탕감하는 것은 허락하지 말도록 하소서. 성책을 마감(磨勘)하는 것과 매년 절반을 개색(改色)하는 것은 아울러 장달에서 청한 대로 시행하도록 하소서. 별효사의 말값으로 받아들이어 부당하게 내어주는 것은 해마다 저치고의 재화에 피해를 끼침을 면할 수 없으니, 일 년이 되고 이 년이 되어 참으로 이어가기 어려운 탄식이 있게 됩니다. 공마가 올라올 때 만약 숫자를 정해서 머물러 두게 허락한다면 거의 보충하고 구제하는 정책이 될 수 있습니다. 공채(公債)를 포함하는 대로 탕감하는 것은 갑자기 의논할 수 없다고 이보다 앞서 회달(回達)하였었는데, 지금 아뢴 바에서는 지목하여 징수할 곳이 없어 피해가 이웃과 친족에게 미친다고 하였으며, 이어서 본전을 탕감하고 급대하기를 청하였습니다. 이는 본부의 재화를 가지고 본부의 폐단을 구제하는 것이어서 또한 미를 필요가 없으니, 일체 시행을 허락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그리하라고 답하였다.

司達曰，卽見水原留守朴周壽狀達，則以爲 本府設施規模，典守方略，非不詳蜜，而歲久弊生，或有昔便今否，此贏彼縮，雖不可一一矯揉，至於賑穀 名色，有邑之不可無者，而本府則本無賑穀，若值設 賑，不無苟艱之弊，且別驍士馬價之每年上下，實是 難支之端，不可不釐正，而外此亦有略加變通者，條 列于後，竝請令廟堂稟令分付矣，其一，湖南所在 本營米二百五十六石零，卽丙戌內下賑資錢相換 作穀者，仍置該道，名以華城賑穀，依前取耗事也，其 一，果川縣帑米餘在條三十一石零，添付於該縣 所在別置米，竝與別置本米一千一百九十八石零，自明春爲始，一體取耗，移作賑穀事也，其一別置米 一百石，租一百七十五石，太二百石之每年添付還餉者，自今爲始，移作賑穀，或值還餉減縮之時，則就 賑穀中除出幾石，還付還餉，而報備局舉行事也，其 一，外帑庫米歲入，雖有豐歉加減，而除却應下與 幸行時，軍兵盤纏及賞資，則猶多剩餘，陳腐換色，不 無爲弊，自今爲始，以三百石定數恒留，其餘則移作 賑穀事也，其一，

內侍復戶結所出米辛巳以後儲蓄，合一百二十石零，亦爲移作賑穀，而每歲所捧十五石，逐年添付事也，其一，移作賑穀之後，若以還分例分給民間，則不無災歲蕩減之慮，每年折半式以各庫新捧米中相換改色，雖暫時不得虛留事也，其一，賑穀卽災歲救民之需，而若入停蕩，必致減縮，湖南及果川所在米，竝勿舉論於停蕩之意，發關兩道道臣處，本府所在米，一體依此定式事也，其一，外帑庫歲入錢條，較之用下，每患不足，而修城・貯置兩庫，歲入稍裕，自今以後，幸行時軍兵盤纏及犒饋條，移用於貯置庫，且就貯置庫捧上中二千兩，修城庫捧上中一千兩合三千兩，每年十月，移送外帑庫，以爲逐年封不動，而如非特教，無得擅用於本庫之意，永爲定式，每於正月修成冊，一件上送承政院，一件上送備邊司事也，其一，別驍士馬價，每以親軍衛減番保錢，給代上下，而所捧較所下，太不相當，自今馬價上下之規，永爲革罷，貢馬上來時，每年二十四，依前狀聞執留，以爲出給之地事也，其一，蠲補庫放債錢，今已年久，徵隣徵族，爲校吏痼瘼，上項放債錢二千兩，特爲蕩減，利條之需用於本庫者，以本府劃屬宮結，還出稅條中，每年二百餘兩給代事也，各樣米之合錄賑穀，兩庫錢之移作封椿，備水旱而需緩急，將有來後之效，見無窒礙之端，竝依施而勿許停蕩，成冊磨勘與每年折半改色，竝依狀請施行，別驍士馬價之入不當出者，歲不免貽害於貯置庫貨，一年二年，誠有難繼之歎，貢馬上來時，若許定數執留，則庶可爲直補矯揉之政，公債之隨連隨蕩，有不可遽議，所以有前此回達，而今此所陳，以指徵無處，害及隣族爲辭，仍請蕩本給代，而此是以本府之貨，救本府之瘼者，亦不必靳持，一體許施何如，答曰，依。

<비변사등록 217책, 순조 29년 1829년 12월 20일(음)>

경제/재정

水原留守 洪義俊이 요청한 대로 還餉留庫 중에서 4781石을 加分할 것을 청하다

○ 비변사에서 아뢰기를, “수원유수(水原留守) 홍희준(洪義俊)의 장계를 보니 이르기를, 회부(會付)된 환향(還餉)이 본래 넉넉지 않아서 매년 환곡을 나누어 줄 때를 당하면 배분하기가 구차스러운데, 금년의 보리와 밀이 흉년을 면하기 어려우므로 농사철 백성들의 사정이 전에 비해 황급합니다. 본부의 환향으로서 유고곡(留庫穀) 가운데서 조(租)・미(米)・태(太) 합해서 4천 7백 81석 영(零)과 속읍(屬邑)의 향조(餉租) 3천 5백 57석 영을 특별히 가분하도록 묘당에서 품지하여 분부하기를 청한다 하였습니다. 원래의 환곡으로는 이를 수 없고 농사의 식량을 생각해야 하니, 장계에서 청한 수효대로 가분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답하였다.

司啓曰，卽見水原留守洪義俊狀啓則以爲，會付還餉，自來不敷，每當還分，排巡苟艱，而今年兩麥，猶未免歉，農節民情，比前遑汲，本府還餉留庫中 租・米・太合四千七百八十一石零，屬邑餉租三 千五百五十七石零，特許加分事，請令廟堂稟 旨分付矣，元還不繼，農食宜念，依狀請數爰，許令加 分何如，答曰，允。

<비변사등록 218책, 순조 30년 1830년 06월 13일(음)>

경제/재정

宜惠廳과 華城의 錢 8000냥과 兵曹 등의 木 40同을 區劃해 들이겠다고 墓所都監이 아뢰다

○ 묘소도감의 경낭청이 도제조의 뜻으로 아뢰기를, “본 도감의 재력(財力)이 고갈되었습니다. 무명 40동(同)과 돈 8천 냥을 여유 있는 아문(衙門)에서 구획하도록 전에 이미 초기(草記)하여 윤허를 받았습니다. 선혜청의 돈 2천 냥, 화성(華城)의 돈 6천 냥, 병조의 무영 20동, 금위영의 무명 10동, 어영청의 무명 10동을 구획하여 들이겠음을 감히 아뢰입니다.” 하

니, 알았다고 답하였다.

幕所都監京郎廳，以都提調意啓曰，本都監財力絶乏，木四十同・錢八千兩，以有裕衙門區劃事，前已草記蒙允矣，宜惠廳錢二千兩・華城錢六千兩・兵曹木二十同，禁衛營木十同，御營廳木十同，區劃以入之意，敢啓，答曰，知道。

<비변사등록 218책, 순조 30년 1830년 07월21일(음)>

경제/재정

水原 등 3都의 부족한 支放을 本司에서 句管하는 會錄耗 중 折米해서 劃給할 것을 청하다
비변사에서 아뢰기를, “수원(水原)에서 관리하는 각 도 곡식의 건축조(見縮條)는 금년의 모미(耗米) 1천 2백 25석 영(零)과 빗을 당감하고 급대(給代)하는 곡물 6백 석을, 광주(廣州)에서 관리하는 관서·호서 곡식의 건축조는 기축년(己丑年:순조29, 1829)의 모미 3백 20석 영을, 송도(松都)에서 관리하는 관서의 곡식은 금년의 모대조(耗代條) 2천 석을 각 해부(該府)에서 보고하여 달라고 청하였습니다. 각 영(營) 지방(支放)의 부족조(不足條)를 다른 곳에서 대신 주는 것은 이미 연례가 되었습니다. 화성(華城)은 해서에 있는 본사가 관리하는 각 명칭의 곡식을 회록(會錄)된 모조(耗條) 가운데에서 절미(折米)하여 획급하고, 광주는 관서에 있는 본사가 관리하는 각 명칭의 곡식을 회록된 모조 가운데에서 절미하여 획급하며, 송도는 호남에 있는 본사가 관리하는 각 명칭의 곡식을 회록된 모조 가운데에서 절미하여 획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답하였다.

司啓曰，水原句管各道穀見縮條今年耗米一千二百二十五石零，蕩債給代穀六百石，廣州句管關西・湖西穀見縮條己丑耗米三百二十石零，松都 句管關西穀今年耗代條二千石，自各該府，報請給付矣，各營支放不足條之從他代劃，已成年例，華城則以海西所在本司句管各名穀會錄耗中，折米劃給，廣州則以關西所在本司句管各名穀會錄耗中，折米劃給，松都則以湖南所在本司句管各名穀會錄耗中，折米劃給何如，答曰，允。

<비변사등록 218책, 순조 30년 1830년 09월 28일(음)>

경제/재정

左議政 李相璜이 水原府에 加分하는 문제에 대해 논의하다

(…) 또 아뢰기를, “수원유수 박기수(朴綺壽)의 장계를 보면 회부(會付)된 환향(還餉)이 원래 넉넉지 않고 농사가 한창인 시기에 순분(巡分)을 계속하기가 어려워 백성의 사정이 절급합니다. 본부의 환향 유고조(留庫條) 가운데에서 벼, 쌀, 콩 도합 5천 3백 71석 영(零)과 속읍(屬邑)의 환향 벼 3천 3백 97석 영을 특별히 가분(加分)하도록 묘당에서 품지하여 분부기를 청한다 하였습니다. 분(分)과 유(留)는 법식이 있어서 변통하는 것이 어렵기는 하지만 농사철에 백성이 먹을 식량을 잊지 못하기 때문에 이미 여러 도에 시행하도록 하였으니 이곳 역시 장계에서 청한 대로 시행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그리하라 하였다. (…)

(…) 又所啓，即見水原留守朴綺壽狀啓則以爲，會付還餉，自來不敷，而當此農務方殷之時，巡分難繼，民情切急，本府還餉留庫中，租・米・太合五千三百七十一石零，屬邑餉租三千三百九十七石零，特許加分事，請令廟堂稟旨分付矣，分留有式，有難闊狹，而以農時民食之不繼，已有許施於諸道者，此亦 依狀請施行何如，上曰，依爲之。(…)

<비변사등록 219책, 순조 31년 1831년 06월 10일(음)>

경제/재정

水原 등에서 요청한 支放 부족조를 다른 도에 있는 곡물로 劃給해 줄 것을 청하다

비변사에서 아뢰기를, “수원(水原)에서 구관(句管)하는 각도 곡식의 견축조(見縮條)를 금년 모조(耗條)에서 1천 2백 25석 영(零)과, 탕채급대곡(蕩債給代穀)에서 6백 석을, 광주(廣州)에서 구관하는 관서와 호서 곡식의 견축조는 경인년(庚寅年: 순조30, 1830)의 모미(耗米)에서 3백 20석 영을, 송도(松都)에서 구관하는 관서 곡식의 금년 모대조(耗代條)에서 2천 석을 각각 해부(該府)에서 급대하기를 청하였습니다. 각영(各營)의 지방(支放) 부족조(不足條)를 다른 것에서 대신 획급하는 것은 이미 연례가 되었습니다. 화성(華城)은 본부에서 구관하는 호남 소재 각종 명색의 곡식 회록모(會錄耗) 가운데에서 절미하여 획급하고, 광주는 본사에서 구관하는 관서 소재 각종 명색의 곡식 회록모 가운데에서 절미하여 획급하며, 송도는 본사에서 구관하는 해서 소재 각종 명색의 곡식 회록모 가운데에서 절미하여 획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답하였다.

司啓曰, 水原句管各道穀見縮條, 今年耗米一千二百二十五石零, 蕩債給代穀六百石, 廣州句管關西·湖西穀見縮條, 庚寅耗米三百二十石零, 松都 句管關西穀今年耗代條二千石, 自各該府報請給 代矣, 各營支放不足條之從他代劃, 已作年例, 華城 則以湖南所在本府句管各名穀, 會錄耗中, 折米劃 給, 廣州則以關西所在本司句管各名穀, 會錄耗中, 折米劃給, 松都則以海西所在本司句管各名穀, 會 錄耗中, 折米劃給何如, 答曰, 允.

<비변사등록 219책, 순조 31년 1831년 09월 04일(음)>

경제/재정

水原留守 徐俊輔의 요청대로 還餉留庫中米太와 屬邑餉租의 加分을 청하다

○ 비변사의 계사에, “수원유수 서준보(徐俊輔)의 장계를 보니, 아뢰기를, ‘회부한 환향이 본래 넉넉하지 않아서 매번 환곡을 나누어 주게 되면 배분하기 어려운데 지금 보리가 나오지 않아서 양식을 잇대기 어렵습니다. 본부의 환향으로서 유고조(留庫條) 가운데 미(米)·태(太) 포함 8백 77석 영(零) 및 소속 고을의 향조(餉租) 3천 6백 47석 영을 특별히 가분하도록 묘당에서 품지하여 분부하게 하소서.’ 하였습니다. 분류(分留)에 대한 법의 뜻이 지극히 엄중하지만, 이미 농사지를 시기에 식량이 어렵다는 말이 있고 또 근년의 전례에 관계되니, 장계에서 청한 대로 시행을 허락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답하였다.

司啓辭, 卽見水原留守徐俊輔狀啓, 則以爲 會付還餉, 自來不敷, 每當還分, 排巡苟艱, 而見今麥 未登場, 農糧難繼, 本府還餉留庫中米太合八百七 十七石零, 及屬邑餉租三千六百四十七石零特許 加分事, 請令廟堂稟旨分付矣, 分留法意至爲 嚴重, 而既以農時艱食爲辭, 且係近年已例, 依狀請 許施何如, 答曰, 允.

<비변사등록 220책, 순조 32년 1832년 05월 07일(음)>

경제/재정

支放穀 부족분의 지급을 청한 水原 등의 보고에 따라 湖南과 海西穀을 劃給할 것을 청하다

비변사의 계사에, “수원(水原) 구관 각 도의 곡식 가운데 견축조인 금년의 모미(耗米) 1천 2백 25석 영(零), 탕채급대곡(蕩債給代穀) 6백 석, 광주(廣州) 구관 관서·호서의 곡식 견축조인 신미년(辛未年: 순조11년, 1811)의 모미 3백 20석 영, 송도(松都) 구관 관서의 곡식 금년의 모대 조(耗代條) 2천 석을 각 해부에서 보고하여 급대하기를 청하였습니다. 각 영의

지방곡(支放穀) 모조의 부족분을 다른 것에서 대신 주는 것이 연례가 되었습니다. 광주·화성(華城)은 호남에 있는 본사 구관 각 명색의 곡식 회록모(會錄耗) 가운데에서 절미를 획급하고, 송도는 해서의 칙수곡(勅需穀)에서 올해의 모조 가운데 절미하여 획급해서 가져다 쓰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답하였다.

司啓辭，水原句管各道穀見縮條今年耗米一千二百二十五石零，蕩債給代穀六百石，廣州句管關西·湖西穀見縮條辛卯耗米三百二十石零，松都句管關西穀今年耗代條二千石，自各該府報請給代矣，各營支放穀耗不足之從他代劃，係是年例，廣州華城則以湖南所在本司句管各名穀會錄耗中折米劃給，松都則以海西勅需穀當年耗中折米劃給，使之取用何如，答曰，允。

<비변사등록 220책, 순조 32년 1832년 10월 02일(음)>

경제/재정

度支의 經用이 부족하니 惠廳錢 1만냥, 華城外帑庫錢 5천냥 등을 加劃해 줄 것을 청하다

○ 비변사에서 아뢰기를, “지난번에 호조의 경비가 부족하여 이미 각 도에서 절미 3만 석을 획급한 적이 있는데, 이 수효로도 오히려 충당하지 못해서 다시 더 준비해 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만 지금 경외(京外)의 여러 비축이 텅 비지 않은 곳이 없으니, 우선 선혜청의 돈 1만 냥과 화성(華城) 외탕고의 돈 5천 냥, 금위영·어영청 두 영의 돈 각 2천 5백 냥 및 호조의 봉부동전(封不動錢) 1만 냥을 내려 주어서 1만 석의 값에 준하는 3만 켤미의 수효를 해아려서 분배하소서. 선혜청의 태(太)를 옮겨 주는 일에 대해서는 듣기에 해청의 남은 것도 여유가 없다고 하니, 호조와 선혜청의 당상이 충분히 더 상의해서 편한 대로 변통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답하였다.

司啓曰，向以度支經用不足，已有各道折米三萬石劃給者，而此數猶未相當，不可不更加措劃，第今京外餘儲，無不枵然，姑以惠廳錢一萬兩，華城外帑庫錢五千兩，禁·御兩營錢各二千五百兩，及戶曹封不動錢一萬兩劃下，以準萬石價三萬緡之數，參量分排，至於惠廳太移劃事，聞該廳贏餘，亦未有裕云，使戶·惠堂爛加商確，從便推移何如，答曰，允。

<비변사등록 220책, 순조 32년 1832년 11월 30일(음)>

경제/재정

水原留守 徐俊輔의 요청대로 還餉부족으로 留庫租米太 1만5천6백여석 등의 加分을 청하다

○ 비변사에서 아뢰기를, “수원 전 유수(水原前留守) 서준보(徐俊輔)의 장계를 보면 본부의 환향(還餉)은 본래 넉넉지 않아 비록 평년이라 하더라도 매번 가분(加分)을 청하는데, 작년 가을에 흉년이 들어 바치는 것을 정퇴(停退)한 바가 많고, 또 춘궁기를 당하여 환호(還戶)가 배로 증가하였습니다. 농사일이 한창 바쁘고 재해를 입은 백성들의 식량이 어려워니, 본부의 유고(留庫) 가운데에서 조(租)·미(米)·태(太) 합하여 1만 5천 6백 12석 영(零) 및 속읍(屬邑)에 있는 남한산성(南漢山城)의 향조(餉租) 5천 5백 79석 영은 특별히 가분하도록 묘당에서 품지(稟旨)하여 분부하기를 청한다 하였습니다. 유고의 가분을 청한 것은 곧 연례(年例)가 되기는 하였으나, 역시 이와 같이 과다하지는 않았습니다. 적법(糶法)을 생각해 보면 극히 신중을 기해야 하나, 다만 금년 기내(畿內) 백성들의 사정을 항례(恒例)로 논할 수는 없으니, 모두 장계에서 청한 대로 시행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답하였다.

司啓曰，卽見水原前留守徐俊輔狀啓則以爲，本府還餉，自來不敷，雖在常年，每請加分，而昨秋失稔，停捧既多，又當窮春，還戶倍加，農務方殷，災民艱食，本府留庫中租米太合一萬五

千六百十二石 零, 及屬邑所在南漢餉租五千五百七十九石零, 特 許加分事, 請令廟堂稟旨分付矣, 留庫請分, 便成 年例, 而亦未有若是之過多也, 揆以糴法, 極涉難慎, 第今年畿內民情, 有不可以恒例論, 竝依狀請許施 何如, 答曰, 允.

<비변사등록 221책, 순조 33년 1833년 04월 30일(음)>

경제/재정

水原의 見縮條 給代요청에 대해 嶺南의 會錄耗 등을 劃給해 줄 것을 청하다

○ 비변사에서 아뢰기를, “수원(水原)에서 관리하는 각 도 곡식의 건축 조(見縮條) 가운데 금년의 모미(耗米) 1천 2백 25석 영(零)과 탕감한 빛의 급대 곡(給代穀) 6백 석, 광주(廣州)에서 관리하는 관서(關西)와 호서(湖西) 곡식의 건축 조 가운데 임진년(壬辰年: 순조32, 1832)의 모미 3백 20석 영을 각 해부(該府)에서 보고하여 급대하기를 청하였습니다. 지방(支放)에 부족한 모미를 다른 것에서 대신 구획하는 것은 곧 연례가 되었습니다. 화성(華城)은 영남에 있는 본사(本司)에서 관리하는 각 명색의 곡식으로 회록(會錄)된 것 및 가분(加分)한 모미 가운데에서 절미(折米)하여 획급(劃給)하고, 광주는 호서에 있는 본사 관리의 각 명색의 곡식으로 회록된 것 가운데에서 절미하여 획급해서 가져다 쓰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답하였다.

司啓曰, 水原句管各道穀見縮條, 今年耗米一 千二百二十五石零, 蕩債給代穀六百石, 廣州句管關西·湖西穀見縮條, 壬辰耗米三百二十石零, 自 各該府, 報請給代矣, 支放不足耗之從他代劃, 便成 年例, 華城則以嶺南所在本司句管各名穀會錄耗, 及 加分耗中, 折米劃給, 廣州則以湖西所在本司句管 各名穀會錄耗中, 折米劃給, 使之取用何如, 答曰, 允.

<비변사등록 221책, 순조 33년 1833년 09월 30일(음)>

경제/재정

營建物力로 惠廳錢 7만냥, 兵曹錢 1만5천냥 등을 우선 貸下하여 사용할 것을 청하다

비변사에서 아뢰기를, “지난번에 영건(營建)할 물력(物力)을 구획(區劃)할 때 우선 경외(京外)의 전곡(錢穀)을 빌려 주었다가 원래 떼어 준 것을 기다려서 기한 안에 갚추어 갚도록 입품(入稟)하여 윤허를 받았습니다. 영건당상(營建堂上)에게 이미 계하(啓下)하였으므로 지금 조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선혜청(宣惠廳)의 돈 7만 냥, 병조의 돈 1만 5천 냥, 금위영(禁衛營)·어영청(御營廳) 두 영 및 화성(華城)의 탕전(帑錢) 각 5천 냥, 강화(江華)의 호고목(戶庫木) 1백 동(同), 영남과 관서의 각 곡식 가운데 절미(折米)하여 각 1만 석을 빌려 주어 가져다 쓰게 하고, 내년부터 시작해서 우선 원래 떼어 준 것을 갚추어 두 도에서 빌린 곡식을 갚아 환곡으로 만들어 기록하며, 경사(京司)와 양도(兩都)의 전목(錢木)은 차차 수에 맞추어 갚은 후 본사에 보고하도록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답하였다.

司啓曰, 向於營建物力區劃時, 姑以京外錢穀貸下, 待元劃趁限備報之意, 入稟蒙允矣, 營建堂上, 已爲啓下, 不可不及今措處, 就惠廳錢七萬兩, 兵曹錢一萬五千兩, 禁·御兩營及華城帑錢, 各五千兩, 江華戶庫木一百同, 嶺南關西各名穀中, 折米各一萬石貸下, 使之取用, 而自明年爲始, 先以元劃條, 備報兩道貸穀, 還作入錄, 京司與兩都錢木, 次次準報後, 報司之意, 分付何如, 答曰, 允.

<비변사등록 221책, 순조 33년 1833년 10월28일(음) >

경제/재정

領議政 沈象奎 등이 수원에서 구관하는 각도의 곡식 문제에 대해 논의하다

○ 9월 10일 약방의 입진에 대신과 비국당상을 인견하여 입시하였을 때에 영의정 심상규(沈象奎)가 아뢰기를 (….) 또 아뢰기를, “수원(水原)에서 구관(句管)하는 각도(各道) 곡식의 건축조(見縮條)와 금년 모미(耗米) 1천 2백 25석 영(零) 및 빗을 탕감하고 급대(給代)한 곡식이 6백 석과 광주(廣州)에서 구관하는 관서(關西)·호서(湖西) 곡식의 건축조 및 계사년(癸巳年: 순조33, 1833)의 모미 3백 20석 영과 송도(松都)에서 구관하는 관서 곡식의 금년 모의 급대조(給代條) 2천 석을 각 해부(各該府)에서 급대하기를 청하였습니다. 각영(各營)의 지방(支放)에 부족한 모(耗)를 다른 데에서 대신 획급하는 것은 연례(年例)가 된 일이니 수원은 영남(嶺南)으로, 광주는 호서로, 송도는 해서(海西)로 하여 아울러 본사(本司)에서 구관하는 각색(各色) 곡식의 회록모(會錄耗)과 가분모(加分耗) 중에서 절미(折米)하여 획급하여 가져다 쓰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임금의 그리하라 하였다. (….)

今九月初十日藥房入診, 大臣備局堂上引見 入侍時, 領議政沈所啓, (….) 又所啓, 水原句管各道穀見縮條, 今年耗米一千二百二十五石零, 蕩債給代穀六百石, 廣州句管 關西·湖西穀見縮條, 癸巳耗米三百二十石零, 松都句管關西穀今年耗代條二千石, 自各該府, 報請給代矣, 各營支放不足耗之從他代劃, 係是年例, 水原則以嶺南, 廣州則以湖西, 松都則以海西, 而竝以本司句管各名穀會錄耗及加分耗中折米劃給, 使之取用何如, 上曰, 依爲之.(….)

<비변사등록 222책, 순조 34년 1834년 09월 10일(음)>

경제/재정

3都監의物力이 부족하므로 華城의 帑錢 5000兩 등을 劃給할 것을 청하다

비변사의 계사에, “산릉도감의 초기를 보니, ‘삼도감에 쓰이는 물력을 비록 이미 청해 얻어 분배하였으나, 지금 쌀과 돈은 태반(太半)이 부족하여 장인을 모집하여 고용한 값을 이어 쓸 수가 없으니 묘당에서 알맞게 헤아려 더 획급하게 하소서.’ 하였습니다. 지금에 와서 이미 물력이 부족하다는 것 때문에 획급을 청하는 일이 있기까지 하였으나, 다만 화성(華城)의 탕전(帑錢) 5천 냥, 영영(嶺營)의 갑자년(甲子年: 순조4, 1804) 별비전(別備錢) 1만 냥, 강화(江華)의 향미(餉米) 3백 석, 송도(松都)의 향미 5백 석, 충융청(摠戎廳)에서 관리하는 임진(臨津)·장산(長山) 양진(兩鎭)의 향미 2백 석을 획급해 보내어 가져다 쓰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답하였다.

司啓辭, 卽見山陵都監草記, 則以爲三都監所用物力, 雖已請得分排, 而見今米與錢, 太半不足, 匠募雇價, 無以繼用, 請令廟堂, 量宜加劃矣, 到今既以物力之不足, 至有請劃之舉, 第以華城帑錢五千兩, 嶺營甲午別備錢一萬兩, 江華餉米三百石, 松都餉米五百石, 摠廳所管臨津·長山兩鎭餉米二百石劃送, 使之取用, 何如, 答曰, 允.

<비변사등록 223책, 헌종 1년 1835년 01월09일(음)>

경제/재정

水原留守 李光文이 청한 還餉 留庫穀 중 8000石을 加分해 줄 것을 청하다

비변사의 계사에, “수원유수(水原留守) 이광문(李光文)의 장계를 보니, ‘회부(會付)한 환향(還餉)은 본래 넉넉하지 않아서 매번 환곡을 나눌 때에 배순(排巡)이 어려운데다가, 지금 농사일이 한창 바쁘는데 종자(種子)와 양식(糧食)이 모두 모자라서 민정(民情)이 매우 급하니, 본부(本府)의 환향으로 유고(留庫)한 것 중에서 조·미·태(租米太) 도합 1만 5천 5백

67석 영(零)과 속읍(屬邑)의 향조(餉租) 5천 5백 79석 영을 특별히 가분(加分)하기를 허락 하라고 묘당에서 품지하여 분부하게 하소서.’ 하였습니다. 분류(分留:분급과 유고)하는 법 의(法意)가 본래 가볍지가 않고, 게다가 금년 여름철이 늦어져서 새 보리가 한창 익고 있으므로 분적(分糶) 하는 정사(政事) 또한 장차 시기가 평년의 시기를 지날 것이지만, 장청(狀請)한 것이 2만여 석이 넘는 데에 이르러서는 참으로 분수(分數)를 너무 지나치게 하였음을 면치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수신(守臣)의 장계에 이미 민정을 말하였는데 또한 전혀 허락을 하지 않을 수 없으니, 본부에서 유고한 것 중에서 조·미·태 도합 5천 석과 속읍의 향조(餉租) 중에서 3천 석을 특별히 가분하라고 허락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답하였다.

司啓辭，即見水原留守李光文狀啓，則以爲 會付還餉，本自不敷，每當還分，排巡苟艱，見今農務 方殷，種糧俱乏，民情切急，本府還餉留庫中租米太 合一萬五千五百六十七石零，屬邑餉租五千五百 七十九石零，特許加分事，請令廟堂稟旨分付矣，分留法意，本自不輕，況今夏序垂晚，新麥方登，分糶 之政，亦將過時，狀請之至逾二萬餘石，誠未免太過 分數，而守臣之啓，既以民情爲言，亦不容全然靳 許，本府留庫中租米太合五千石，屬邑餉租中三千 石，特許加分何如，答曰，允。

<비변사등록 223책, 헌종 1년 1835년 06월 11일(음)>

경제/재정

本司가 各道에 句管하고 있는 곡물을 水原 등지에 劃給할 것을 청하다

비변사의 계사에, “수원(水原)에서 구관(句管)하는 각도(各道) 곡식의 견축조(見縮條)인 금년의 모미(耗米) 1천 2백 25석 영(零), 빗을 탕감하여 급대(給代)한 곡식 6백 석, 광주(廣州)에서 구관하는 관서(關西)·호서(湖西)의 곡식 견축조인 갑오년(甲午年:순조34, 1834)의 모미 3백 20석 영, 송도(松都)에서 구관하는 관서 곡식의 금년 모대조(耗代條) 2천 석을 각 해부(該府)에서 보고하여 급대(給代)를 청하였습니다. 각영(各營)의 지방(支放) 곡식에서 모(耗)의 부족조(不足條)를 다른 데에서 대신 획급하는 것은 연례(年例)에 관계되니, 수원은 영남(嶺南)에 있는 본사(本司)에서 구관하는 각종 명색(名色)의 곡식을 회록(會錄)한 모 중에서 절미(折米)하여 획급하고, 광주는 호남(湖南)에 있는 본사에서 구관하는 각종 명색의 곡식을 회록한 모 중에서 절미하여 획급하고, 송도는 호서에 있는 본사에서 구관하는 각종 명색의 곡식을 회록한 모 중에서 절미하여 획급하여 가져다 쓰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답하였다.

司啓辭，水原句管各道穀見縮條，今年耗米一 千二百二十五石零，蕩債給代穀六百石，廣州句管 關西·湖西穀見縮條甲午耗米三百二十石零，松都 句管關西穀今年耗代條二千石，自各該府報請給 代矣，各營支放穀耗不足條之從他代劃，係是年例，水原則以嶺南所在，本司句管各名穀會錄耗中，折米 劃給，廣州則以湖南所在，本司句管各名穀會錄耗 中，折米劃給，松都則以湖西所在，本司句管各名穀 會錄耗中，折米劃給，使之取用，何如，答曰，允。

<비변사등록 223책, 헌종 1년 1835년 08월 17일(음)>

경제/재정

宗廟를 增建하기 위해 宣惠廳의 무명 100同 등을 戶曹에 劃給할 것을 청하다

○ 비변사의 계사에, “호조(戶曹)에서 보고한 바를 보니, ‘내년 봄에 종묘(宗廟)를 증건(增建)하는 역사(役事)를 장차 거행하게 하여야 하나 지금 조(曹)의 형세가 전혀 추이하여

마련할 방도가 없으니, 이전에 청한 미 구획조(未區劃條)와 이번에 사용되는 비용을 경아문(京衙門)과 외아문(外衙門)의 전곡(錢穀)을 물론하고 15만 냥에 한하여 즉시 품(稟)하여 획급하여 가져다 쓰도록 하겠습니다.’ 하였습니다. 지금 탁지(度支:호조)의 사세(事勢)로는 사실 막중하고도 막대한 역사를 오로지 맡기기가 어렵고, 경외의 전곡이 모두 텅 비었는데 수효에 맞추어 획급하라고 하는 것 역시 그 길이 없으니, 다만 선혜청(宣惠廳)의 목(木) 1백 동(同), 금위영(禁衛營)의 전(錢) 1만 냥, 화성(華城) 외탕고(外帑庫)의 봉부동(封不動) 전 5천 냥, 영남(嶺南)에 있는 호조(戶曹)에서 구관하는 금정산성(金井山城)의 곡식을 절미(折米)하여 1천 석, 본사(本司)에서 구관하는 사진곡(私賑穀)을 절미하여 1천 석, 가산(架山) 외성(外城)의 약환곡(藥丸穀)을 절미하여 1천 석, 좌병영(左兵營)의 산성곡(山城穀)을 절미하여 2천 석, 호남(湖南)에 있는 본사에서 구관하는 산성의 군향곡(軍餉穀)을 절미하여 2천 석, 남은 군포(軍布)를 작미(作米)하여 1천 석, 진청(賑廳)에서 구관하는 나포곡(羅鋪穀)을 절미하여 2천 석, 호서(湖西)에 있는 본사에서 구관하는 각종 명색(名色)의 곡식을 회록(會錄)한 모(耗) 중에서 절미하여 5천 석을 획급해 보내 가져다 쓰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희한다고 답하였다.

司啓辭，卽見戶曹所報，則明春宗廟增建之役，將爲舉行，而以今曹勢，萬無推移措備之道，前請 未區劃條及今番所用之需，無論京外衙門錢穀，限十五萬兩，趁卽稟劃，以爲取用之地爲辭矣，以今度支事勢，實難專責，以莫重莫大之役，而京外錢穀，舉皆枵然，準數許劃，亦無其路，第以惠廳木一百同，禁衛營錢一萬兩，華城外帑庫封不動錢五千兩，嶺南所在戶曹句管金井山城穀折米一千石，本司句管私賑穀折米一千石，架山外城藥丸穀折米一千石，左兵營山城穀折米二千石，湖南所在，本司句管山城軍餉穀折米二千石，餘軍布作米一千石，賑廳句管羅鋪穀折米二千石，湖西所在本司句管各名穀會錄耗中折米五千石劃送，使之取用，何如，答曰，允。

<비변사등록 223책, 헌종 1년 1835년 08월 17일(음)>

경제/재정

水原府의 留庫 租米太 5천섬 등을 加分하게 할 것을 청하다

비변사의 계사에, “수원유수(水原留守) 서유구(徐有渠)의 장계를 보니 ‘회부(會付)한 환향(還餉)이 원래 넉넉하지 않은데다가 작년 가을에 흉년이 들어 정봉(停捧)한 것이 너무 많아서 지금 농사 일이 한창 바쁜 때에 배순(排巡)할 길이 없어 민정(民情)이 황급하니, 본부(本府)의 환향 유고(留庫) 중에서 조·미·태(租米太) 도합 1만 1천 2백 81석 영(零)과 속읍(屬邑)의 향조(餉租) 5천 5백 79석 영을 특별히 가분하도록 허락하는 일을 묘당에서 품지하여 분부하게 하소서.’ 하였습니다. 흉년이 든 뒤의 백성 형세는 의당 진념해야 하는데, 모내기철에 농사지를 양식(糧食)은 더욱 보조(補助)가 급하나 청한 바의 석수(石數)가 아무래도 과다한 듯하니, 본부의 유고 중에서 조·미·태 도합 5천 석과 속읍의 향조 중에서 3천 석을 특별히 가분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희한다고 답하였다.

司啓辭，卽見水原留守徐有渠狀啓，則以爲會付還餉，自來不敷，昨秋失稔，停捧既多，今當農務方殷之時，排巡無路，民情遑急，本府還餉留庫中租·米·太合一萬一千二百八十一石零，屬邑餉租五千五百七十九石零特許加分事，請令廟堂稟旨分付矣，歎餘民勢，在所軫念，秧節農糧，尤急補助，而所請石數，終涉過多，本府留庫中租米太合五千石，屬邑餉租中三千石，特許加分，何如，答曰，允。

<비변사등록 224책, 헌종 2년 1836년 05월 19일(음)>

경제/재정

左議政 洪奭周가 부족한 戶曹의 經費를 마련할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다

9월 5일 약방(藥房)의 입진(入診)에 대신과 비국당상을 인견하여 입시하였을 때에 좌의정 홍석주(洪奭周)가 아뢰기를, “호조(戶曹)에서 보고한 바를 보니, ‘몇 년 이래로 여러 번 커다란 역사(役事)를 거쳤으므로 눈앞의 경비도 안배할 수 없는데, 각 도감(都監)의 진배(進排)를 또 앞으로 차례로 거행하여야 하니 은·전·미·목(銀錢米木)을 물론하고 절전(折錢)하여 20만 냥에 한하여 계품(啓稟)하고 구획(區劃)하여 지금 가져다 쓰게 해 주소서.’ 하였습니다. 대농(大農: 호조의 별칭)의 경비는 본래부터 넉넉지가 않은데다가 앞으로의 수용(需用)을 더욱 긴중하므로 참으로 미리 경영하는 방도가 없어서는 안 되겠으니, 선혜청의 전(錢) 2만 냥, 금위영(禁衛營)의 전 1만 냥, 병조(兵曹)의 은(銀) 1만 5천 냥, 사복시(司僕寺)의 전 6천 냥, 화성(華城)의 탕전(帑錢) 5천 냥, 영남(嶺南)의 신수곡(信需穀)을 절미(折米)하여 2천 석, 갑오년(甲午年: 순조34, 1834)의 신수미 2천 석, 남창전(南倉錢)을 작미(作米)하여 2천 석, 좌수영(左水營)의 별향미(別餉米) 2천 석, 좌병영(左兵營)의 산성곡(山城穀)을 절미하여 3천 석, 금오산성(金烏山城)의 수성곡(修城穀)을 절미하여 1천 석, 가산(架山) 외성(外城)의 약환곡(藥丸穀)을 절미하여 1천 석, 첨가곡(帖價穀)을 절미하여 1천 석, 사전곡(私賑穀)을 절미하여 1천 석, 호남(湖南)의 수성창곡(守城倉穀)을 절미하여 2천 석, 산성(山城)의 군향곡(軍餉穀)을 절미하여 2천 석, 여군포(餘軍布)를 작미하여 1천 석, 휴번(休番) 피모(皮牟)를 절미하여 1천 석, 상진청(常賑廳)의 구관곡(句管穀)의 모곡(耗穀)을 절미하여 3천 석을 획급하여 가져다 쓰게 하고, 낭천현(狼川縣)의 환곡 중에서 절직(折稷)하여 대전(代錢)한 7천 1백 44냥 영(零)을 지난번에 일찍이 알맞게 헤아려서 다른 도(道)의 곡식이 적은 곳에 옮겨 보내자고 청하였지만 아직 거행하지 못하였는데, 이것도 일체로 해조(該曹)에 획급하게 하여 15만 민(緡)의 수(數)에 맞추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대왕대비 전에서 그리하라고 답하였다. (…)

今九月初五日, 藥房入診, 大臣備局堂上引見入侍時, 左議政洪所啓, 卽見戶曹所報, 則以爲數年以來, 屢經大役, 目下支調, 無以排比, 而各都監進排, 又將次第舉行, 母論銀錢米木折錢, 限二十萬兩啓稟區劃, 以爲及今取用之地爲辭矣, 大農經費, 本自不敷, 來頭需用, 尤係緊重, 誠不容無預先經紀之方, 惠廳錢二萬兩, 禁衛營錢一萬兩, 兵曹銀一萬五千兩, 司僕寺錢六千兩, 華城帑錢五千兩, 嶺南信需穀折米二千石, 甲午信需米二千石, 南倉錢作米二千石, 左水營別餉米二千石, 左兵營山城穀折米三千石, 金烏山城修城穀折米一千石, 架山外城藥丸穀折米一千石, 帖價穀折米一千石, 私賑穀折米一千石, 湖南守城倉穀折米二千石, 山城軍餉穀折米二千石, 餘軍布作米一千石, 休番皮牟折米一千石, 常賑廳句管穀耗折米三千石劃給, 使之取用, 狼川縣還穀中折稷代錢七千一百四十四兩零, 頃嘗以量宜移送他道穀少之處爲請, 而姑未及舉行矣, 此亦一體許劃於該曹, 以準十五萬緡之數, 何如, 大王大妃殿答曰, 依爲之.(…)

<비변사등록 224책, 헌종 2년 1836년 09월06일(음)>

경제/재정

水原에 嶺南의 加分耗 등을 劃給할 것 등을 청하다

비변사의 계사에, “수원(水原)에서 구관(句管)하는 각도의 곡식 견축조(見縮條)의 금년 모미(耗米) 1천 2백 25석 영(零)과 밧을 당감해준 급대곡(給代穀) 6백 석, 광주(廣州)에서 구관하는 관서(關西)·호서(湖西)의 곡식 견축조의 을미년(乙未年: 헌종1, 1835)의 모미 3백 20석 영, 송도(松都)에서 구관하는 관서 곡식의 금년 모대조(耗代條) 2천 석을 각 해부(該

府)에서 급대해 달라고 보청(報請)하였습니다. 이는 연례(年例)로 대신 획급해온 것인 만큼 **수원**은 영남(嶺南)의 가분(加分)한 모(耗)와 본사(本司)에서 구관하는 각종 명색의 곡식의 회록모(會錄耗)한 모 중에서 절미(折米)하여 획급하고, 광주(光州)는 해서(海西)에 있는 본사에서 구관하는 각종 명색의 곡식의 회록모 중에서 절미하여 획급하며, 송도는 호서(湖西)에 있는 본사에서 구관하는 각종 명색의 곡식의 회록모 중에서 절미하여 획급하여 가져다 쓰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답하였다.

司啓辭, **水原**句管各道穀見縮條今年耗米一千二百二十五石零, 蕩債給代穀六百石, 廣州句管關西湖西穀見縮條乙未耗米三百二十石零, 松都句管關西穀今年耗代條二千石, 自各該府報請給代矣, 係是年例代劃, **水原**則以嶺南加分耗及本司句管各名穀會錄耗中折米劃給, 廣州則以海西所在本司句管各名穀會錄耗中折米劃給, 松都則以湖西所在本司句管各名穀會錄耗中折米劃給, 使之取用, 何如, 答曰, 允.

<비변사등록 224책, 현종 2년 1836년 10월 13일(음)>

경제/재정

水原府의 還餉을 加分할 것을 청하다

○ 비변사에서 아뢰기를, “**수원유수** 서유구(徐有渠)의 장계를 보니 아뢰기를 ‘회부한 환향은 원래 넉넉지 않아서 배순(排巡)을 잇기 어렵습니다. 게다가 지금 양맥(兩麥)이 흉작을 면치 못하여 농사철에 민정(民情)이 더욱 황급하니, 본부의 환향 조·미·태(租米太) 도합 5천 1백 3석과 속읍(屬邑)의 향곡 조(租) 3천 9백 47석을 특별히 가분을 허락하도록 묘당에서 품지하여 분부하게 하소서.’ 하였습니다. 분류(分留)의 법의(法意)는 비록 매우 가볍지 않으나 원래의 환곡이 넉넉하지 않아서 농사지를 양식을 잇기 어렵습니다. 흉년이 든 나머지 민정이 유념해야 할 바가 있고, 청한 수효(數爻)도 가까운 예에 비하여 너무 지나치게 많지는 않으니, 장계에서 청한 대로 가분하도록 허락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답하였다.

司啓曰, 卽見**水原留守徐有渠**狀啓, 則以爲會付還餉, 自來不敷, 排巡難繼, 況今兩麥, 未免失稔, 農節民情, 轉益遑汲, 本府還餉租米太合五千一百三石, 屬邑餉租三千九百四十七石, 特許加分事, 請令廟堂稟旨分付矣, 分留法意, 雖甚不輕, 元還不敷, 農糧難繼, 歉餘民情, 在所當念, 所請數爻, 視近例不甚過多, 依狀請許令加分, 何如, 答曰, 允.

<비변사등록 225책, 현종 3년 1837년 05월 20일(음)>

경제/재정

水原句管 各穀 耗條가 부족하므로 本司句管 各穀 會錄耗 등으로 給代하게 할 것을 청하다

비변사에서 아뢰기를, “**수원(水原)**에서 구관하는 각 도의 곡식 건축조(見縮條)인 금년의 모미(耗米) 1천 2백 25석 영(零)과 탕채(蕩債) 급대 미 6백 석을 해부에서 아뢰어 급대하기를 청하였습니다. 지방(支放)의 부족한 모(耗)를 다른 것에서 대신 획급함은 연례가 되다시피 하였으니, 영남에 있는 본사 구관 각종 명색의 곡식 회록모(會錄耗) 및 가분모(加分耗) 중에서 절미하여 획급하여 가져다 쓰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司啓曰, **水原**句管各道穀見縮條, 今年耗米一千二百二十五石零, 蕩債給代米六百石, 自該府報請給代矣, 支放不足耗之從他代劃, 便成年例, 以嶺南所在本司句管各名穀, 會錄耗及加分耗中, 折米劃給, 使之取用, 何如, 答曰, 允.

<비변사등록 225책, 현종 3년 1837년 09월 09일(음)>

경제/재정

右議政 朴宗薰 등이 외탕고의 관리 문제 등에 대해 논의하다

○ 9월 25일 약방의 입진에 대신과 비국당상을 인견하여 입시하였을 때에 우의정 박종훈(朴宗薰)이 아뢰기를 (….) 또 아뢰기를, “수원유수 서유구(徐有渠)가 본사에 보고한 사연을 보니 ‘외탕고(外帑庫) 장부에 있는 전(錢)은 1만 2천 8백여 냥입니다. 전수(典守)하는 방도로는 전이 곡식만 못하므로 1만 냥을 빼내어 상정(詳定)으로 외도(外道)에서 작곡(作穀)하여 절미(折米) 3천 3백여 석을 얻어 모(耗)를 가져와서 회록(會錄)할 수 있으나, 본고의 1년 수입 3천 냥은 4년에 의당 1만 2천 냥이 되므로 위의 예에 따라 빼내어 더 만들면 10년이 되지 않아서 몇 만여 석이 될 수 있고, 본부에도 크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우선 현재의 1만 냥으로 영·호남(嶺湖南)에 분배하여 화성 외탕곡(華城外帑穀)으로 이름을 지어서 내년 부터 염산(斂散)하여 모를 가져와서 원래 획급한 곡식과 함께 본부에서 마감하며, 비록 흉년이 되더라도 정감(停減)에 들어가게 하지 말도록 영구히 준행해야 하겠습니다.’ 하였습니다. 첨환(添還)은 비록 어렵고도 신중한 일에 속하나 양남에 이미 본부에서 구관하는 곡식이 있으니, 지금 이 수를 양도에 분배하면 수도 많지 않고 본부에서 봉하고 찢는 정사에도 참으로 적은 도움이 아닙니다. 보고한 대로 시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대왕대비전에서 그리하라고 답하였다. (….)

今九月二十五日, 藥房入診, 大臣備局堂上引見入侍時, 右議政朴所啓, (….) 又所啓, 卽見水原留守徐有渠, 報本司辭緣, 則外帑庫記簿所在錢爲一萬二千八百餘兩, 典守之方, 錢不如穀, 除出一萬兩, 以詳定作穀於外道, 則可得折米三千三百餘石, 取耗會錄, 而本庫歲入三千兩, 至四年當爲一萬二千兩, 依右例, 除出添作則不出十年, 可得數萬餘石, 在本府, 大有裨益, 爲先以見在萬兩, 分排於嶺湖南, 以華城外帑穀作名, 自明年斂散取耗, 與元劃穀, 同爲磨勘於本府, 雖值歉歲, 勿入停減, 永久遵行, 爲辭矣, 添還雖屬難愼, 而兩南既有本府句管穀, 今以此數, 分排兩道, 則數亦不多, 在本府封樁之政, 誠非少補, 依所報施行, 何如, 大王大妃殿答曰, 依爲之 (….)

<비변사등록 225책, 현종 3년 1837년 09월25일(음)>

경제/재정

水原의 災結을 加劃하고 乙未年 還餉을 全數 계속 정지하게 할 것을 청하다

○ 비변사에서 아뢰기를, “지난번 수원유수 서유구(徐有渠)의 재실장계로 인하여 가청재(加請災) 5백 결을 획급하고, 을미년(乙未年: 현종1, 1835)에 정퇴한 환향을 절반에 한하여 수봉하라고 복계하여 행회하였습니다. 지금 당해 유수의 장계를 보니 농사의 형편과 백성의 형세를 다시 아뢰고, 이어서 감축재 4백 62결 57부 2속을 특별히 준획(準劃)하고, 을미년의 환향 역시 전수를 그대로 정지하도록 하는 일을 묘당에서 품지하여 분부하기를 청하였습니다. 재(災)의 획급은 처음에 재량하지 않은 적이 없지만 더 청함이 또 이와 같으니, 어찌 안배하여 나눠줄 것이 부족하여 백지(白地)에서 징수할 것을 우려하겠습니까? 차라리 나라에서 잃는다는 뜻에서 특별히 2백 결을 더 획급하소서. 을미년에 정퇴한 것은 민정을 낚낚이 들었는데 그 부지런히 함이 여기에 이르렀으니, 역시 그대로 정지하도록 허락하여 백성의 힘을 펴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운허한다고 답하였다.

司啓曰, 頃因水原府留守徐有渠, 災實狀啓, 加請災五百結許劃, 乙未停退還餉, 限折半收捧之

意，覆啓行會矣，卽見該留守狀啓，則復陳年形民勢，仍請見減災四百六十二結五十七負二束，特許準劃，乙未還餉，亦許全數仍停事，令廟堂稟旨分付矣，災劃始未嘗無裁量，而加請又如是，豈排俵不足，尙有白徵之慮乎，以寧失之義，特許二百結加劃，乙未停退，枚舉民情，勤渠至此，亦許仍停，俾紓民力，何如，答曰，允。

<비변사등록 225책, 헌종 3년 1837년 11월 04일(음)>

경제/재정

領議政 李相璜이 松都 구관 관서 곡식 문제에 대해 논의하다

11월 10일 대신과 비국당상을 인견하여 입시하였을 때에 영의정 이상황(李相璜)이 아뢰기를 (….) 또 아뢰기를, “송도(松都) 구관 관서 곡식의 견축 조(見縮條)에서 금년의 모미(耗米) 2천 석을 해부에서 급대하기를 아뢰어 청하였습니다. 지방(支放)이 부족하여 모를 대신 획급하는 것은 연례가 되다시피 하였고 이미 수원(水原)에서 시행한 것이라 달리할 수 없으니, 호서에 있는 본사 구관 각종 명색의 곡식을 회록한 모 중에서 절미(折米)하여 획급하여 가져다 쓰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대왕대비전에서 그리하라고 답하였다. (….) 今十一月初十日，大臣備局堂上引見八侍時，領議政李所啓，(…) 又所啓，松都句管關西穀見縮條今年耗米二千石，自該府，報請給代矣，支放不足耗代劃，便成年例，而此是已施於水原者，不可異同，湖西所在本司句管各名穀會錄耗中，折米劃給，使之取用，何如，大王大妃殿答曰，依爲之。(….)

<비변사등록 225책, 헌종 3년 1837년 11월 11일(음)>

경제/재정

水原留守 李紀淵이 水原 別驍士에게 지급하는 官馬를 貢馬가 올 때 남겨주길 청하다

○ 같은 날 입시하였을 때에 수원유수(水原留守) 이기연(李紀淵)이 아뢰기를, “본영(本營)의 별효사(別驍士)에게 지급하는 관마(官馬)를 무자년(戊子年: 순조28, 1828)부터 10필(匹)을 청해 얻어 매번 공마(貢馬)가 올라올 때에 집류(執留: 잡아둠)하고 있으나 마액(馬額)이 걸맞지 않을뿐더러 본전(本錢)도 잇대기 어렵습니다. 만약 해마다 혹 5필로 하거나 식년(式年)에 혹 10필로 하거나 하여 다시 더 집류하게 하면 해시(該寺)에 있어서는 지난(持難)할 것이 없을 듯하고 본영에 있어서는 꽤히 힘을 펴게 될 것이니 사복시(司僕寺)에서 품처하여 시행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대왕대비전에서 그리하라고 답하였다.

同日入侍時，水原留守李紀淵所啓，本營別驍士所給官馬，自戊子請得十四，每於貢馬上來時執留，而馬額既不相當，本錢猶患難繼，若得每年或以五匹，式年或以十匹，更許加留，則在該寺，似不足持難，在本營，快可爲紓力，令司僕寺，稟處施行何如，大王大妃殿答曰，依爲之。

<비변사등록 226책, 헌종 4년 1838년 03월 01일(음)>

경제/재정

領議政 李相璜이 水原의 還穀 중 일부를 湖南으로 옮겨 보내는 문제 등에 대해 논의하다

○ 2월 30일 약방의 입진에 대신과 비국당상을 인견하여 입시하였을 때에 영의정 이상황(李相璜)이 아뢰기를, “수원유수(水原留守) 이기연(李紀淵)이 보고한 바를 보면 ‘본부(本府)는 민호(民戶)는 줄고 환곡은 많아지며 포흠은 갈수록 불어나고, 지방(支放)은 잇대기 어려워 구차함이 막심하니 회부곡(會付穀) 중에서 절미(折米) 2천 석의 값 6천 냥을 다른 도(道)에 옮겨 보내고 봄에 환자[還上]풀어 금년 가을부터 모(耗)를 취하여 안배하여 쓰되 정

퇴(停退)와 탕감에 넣지 않는다면 폐단을 구제하고 지출하여 씬에 효과가 있을 것인데 호조(戶曹)의 경비로 구획한 호남(湖南)의 곡식 중에서 이 수(數)만큼 서로 바꾸면 또한 매우 좋은 방편(方便)이 되겠습니다.’ 하였습니다. 이것은 해부(該府)와 해도(該道)의 곡식을 형편대로 환작(換作)하는 것으로 해부에 있어서는 환곡을 줄이는 이로움이 있고 저기에서 가져와 여기에 채우니 조달에 손해가 없으며, 해도에 있어서는 환곡으로 만들어서 그대로 봉류(奉留)하는 것이므로 새롭게 만들어 환곡을 늘이는 것과는 다르고 호조에서 가져다 쓰는 데에도 매우 순편(順便)하니 이대로 허시(許施)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대왕대비전에서 그리하라고 답하였다. (…)

今二月三十日，藥房入診，大臣備局堂上引見入侍時，領議政李所啓，卽見水原留守李紀淵所報，則以爲本府戶縮還多，逋負轉滋，且支放難繼，苟艱莫甚，就會簿穀中折米二千石價六千兩，移送他道，趁春作還，自今秋取耗排用，勿入停蕩，則救弊支調，庶幾有效，而戶曹經費，區劃湖南穀中，以此數相換，亦甚方便爲辭矣，此不過該府該道穀之從便換作者，在該府則有減還之益，而取彼充此，無損於支調，在該道則是當作而仍留者，異於創新增還之有弊，戶曹之取用則甚順便，依此許施，何如，大王大妃殿答曰，依爲之。(…)

<비변사등록 226책, 헌종 4년 1838년 03월 01일(음)>

경제/재정

水原留守 李紀淵이 청한 대로 加分을 허락해 줄 것을 청하다

비변사에서 아뢰기를, “수원유수(水原留守) 이기연(李紀淵)의 장계를 보니 ‘회부(會付)한 환향(還餉)을 정봉(停捧)한 것이 이미 많은데다가 환호(還戶)가 갑절이나 많아 배순(排巡)할 길이 없어 민정(民情)이 매우 급하니 본부(本府) 환향의 조·미·태(租米太) 도합 5천 6백 94석 령(零)과 속읍(屬邑)의 향조(餉租) 3천 27석 령을 특별히 가분(加分)하도록 묘당에서 품지하여 분부하게 하소서.’ 하였습니다. 가분이 마치 근래의 규례가 되다시피 하였고, 민정은 염려해야 할 바에 있으니 장계에서 청한 수효(數交)대로 허시(許施)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답하였다.

司啓曰，卽見水原留守李紀淵狀啓，則以爲會付還餉，停捧既多，還戶倍蓰，排巡無路，民情切急，本府還餉租米太合五千六百九十四石零，屬邑餉租三千二十七石零，特許加分事，請令廟堂，稟旨分付矣，加分便成近例，民情在所當念，依狀請數交，許施何如，答曰，允。

<비변사등록 226책, 헌종 4년 1838년 05월 24일(음)>

경제/재정

水原의 부족한 穀物을 關西 慈城의 補城穀 折米 등으로 劃給할 것을 청하다

○ 비변사에서 아뢰기를, “수원(水原)에서 구관하는 각도(各道)의 곡식에서 축(縮)이 난 금년의 모미(耗米) 1천 2백 25석 영(零)과 빗을 탕감하기 위해 급대(給代)할 쌀[米] 6백 석을 해부(該府)에서 급대(給代)하기를 청하였는데, 이는 연례(年例)로 구획하는 것입니다. 다만 해부에서 외탕고(外帑庫)의 돈 1만 냥으로 작년 겨울에 양남(兩南)에서 작곡(作穀)한 바가 있는데 금년의 모조(耗條)가 응당 3백 33석 영이 됩니다. 이것은 회록(會錄)하지 말고 그대로 금년부터 가져다 쓰게 하고, 그 나머지 모미의 부족 8백 91석 영은 관서(關西)의 자성(慈城) 곡식으로 절미(折米)하여 획급하고, 빗을 탕감하기 위해 급대할 쌀 6백 석은 해서(海西)의 자비곡(自備穀)에서 절미해서 획급하여 가져다 쓰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답하였다.

司啓曰, 水原句管各道穀見縮條, 今年耗米一千二百二十五石零, 蕩債給代米六百石, 自該府報請給代矣, 係是年例區劃, 而第該府, 以外帑庫錢一萬兩, 昨冬有所作穀於兩南者, 今年耗條, 當爲三百三十三石零, 此則勿令會錄, 仍自今年取用, 而其餘耗不足八百九十一石零, 以關西慈城穀折米劃給, 蕩債給代米六百石, 以海西自備穀折米劃給, 使之取用, 何如, 答曰, 允.

<비변사등록 226책, 헌종 4년 1838년 08월 10일(음)>

경제/재정

右議政 李止淵이 진위현의 백성들의 이산과 군전의 활용 문제 등에 대해 논의하다

○ 11월 20일 약방의 입진에 대신과 비국당상을 인견하여 입시하였을 때에 우의정 이지연(李止淵)이 아뢰기를, (….) 또 아뢰기를, “경기감사 홍학연(洪學淵)의 장계를 보니 진위현(振威縣)의 백성이 흩어져 조잔한 상황을 갖추 아뢰고, 이어 해읍(該邑)의 갑오년(甲午年: 순조34, 1834)부터 병신년(丙申年: 헌종2, 1836)까지 상납하지 못한 양세(兩稅)인 쌀 5백 72 석 영(零)과 콩 27석 영을 상정례(詳定例)로 대신 상납하고, 화영(華營: 수원)에서 관리하는 군전(軍錢) 1천 4백 냥을 특별히 연한을 정하여 배납(排納)하도록 묘당에서 품처하게 하기를 청하고, 포흠을 범한 이노(吏奴)는 본영(本營)에서 무거운 쪽으로 감처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근래에 기읍(畿邑)에서 양세를 제대로 내지 않는 것이 마치 항례(恒例)가 되다시피 하였는데, 비록 거듭 흉년이 들었다고는 하더라도 수령(守令)된 자가 참으로 세법(稅法)이 엄중함을 알았다면 어떻게 이와 같을 수 있겠습니까? 지난번 양지(陽智)·죽산(竹山) 양 읍에서 특별히 융통을 시행한 것은 곧 전고에 없던 격외(格外)의 은전인데 도신이 이것을 보고 예(例)로 삼아 또 번거롭게 청하였으니, 비록 백성을 위하는 뜻에서 나왔다고 하지만 사실 경법(經法)을 지키는 도리는 아니니 당해 도신을 추고하여 경책하며, 진위의 사세가 지탱하여 보존할 수 없음은 참으로 양지와 죽산이 일반인데, 지금 만약 본색(本色)으로 책납(責納)하게 한다면 비단 받을 기약이 없을 뿐 아니라 또 장차 남은 백성마저 다 잃을 것입니다. 조정(朝廷)에서 이미 그 실상을 알았다면 어디에서는 시행하고 어디에서는 시행하지 않을 수 없으니, 해읍(該邑) 양세의 각 년의 구 미수(舊未收)는 장계의 사연대로 돈으로 대봉(代捧)하여 상납하게 허락하되, 이 길이 한번 열려 덩달아 요행을 바란다면 은혜를 잊델 도리는 없고 법이 영원히 해이해질 근심이 있으니 앞으로는 일체 엄히 막고 다시는 번거롭게 진달하지 말라고 엄히 신칙하며, 화성(華城: 수원)에서 관리하는 군전을 연한을 정하여 배납하게 해달라는 청은 세납(稅納)에 비하면 그리 관중(關重: 요긴하고 중요함)한 것이 아니니, 어찌 근지(靳持: 선뜻 마음이 내키지 아니하여 미룸)하겠습니까? 일체로 허시(許施)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대왕대비전에서 답하기를, “그리하라. 화성에서 관리하는 군전은 수량이 많지 않으니 특별히 건감(蠲減)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

今十一月二十日, 藥房入診, 大臣備局堂上引見入侍時, 右議政李所啓, (….) 又所啓, 卽見京畿監司洪學淵狀啓, 則備陳振威縣民散凋弊之狀, 仍請該邑甲午至丙申未納兩稅米五百七十二石零, 太二十七石零, 以詳定例代納, 華營所管軍錢一千四百兩, 特許限年排納事, 令廟堂稟處, 而犯逋吏奴, 自本營從重勘處爲辭矣, 近來畿邑之兩稅愆納, 便成恒習, 雖曰菹值歉荒, 爲守令者, 苟知稅法之嚴重, 則豈容如是乎, 向來陽智竹山兩邑之特施闊狹, 乃是格外之曠典, 則道臣之視此爲例, 又有煩請, 雖出爲民之意, 實非守經之道, 該道臣, 推考警責, 振威事勢之莫可支存, 誠與陽·竹一般, 今若責納本色, 非但無期可捧, 又將盡失餘民, 朝家既知其狀, 則似不當彼施此否, 該邑兩稅各年舊未收, 依狀辭, 許令代錢上納, 此路既開, 轉相望倖, 則恩無可繼之道, 法有永弛之患, 來後則一切嚴防, 更無煩陳之意, 嚴飭, 華城所管軍錢排年之請, 比諸稅納, 無

甚關重，何足靳持，一體許施，何如，大王大妃殿答曰，依爲之。華城所管軍錢，數既不多，特爲蠲減，可也。(…)

<비변사등록 226책, 헌종 4년 1838년 11월 20일(음)>

경제/재정

賑資로 내준 內帑 天銀 등을 分排하여 보고하다

○ 비변사에서 아뢰기를, “대왕대비 전에서 전교하기를 ‘기호(畿湖)의 진휼 밀천은 묘당에서 이미 구획(區劃)하였으나, 내년 봄의 민정(民情)을 생각하면 자고 먹는 것이 사실 편안하지 못하다. 내탕고(內帑庫)의 천은(天銀:순은) 2천 냥과 단목(丹木) 3천 근(斤), 백반(白礬) 3천근을 특별히 내어주니 묘당에서 진휼을 실행하는 각처에 알맞게 나눠보내서 진휼 밀천에 더 보태게 하라.’ 고 명(命)을 내리셨습니다. 양도(兩道)에서 흉년이 든 형편은 심히 다름이 없으나 진휼 밀천의 구획은 약간 차등(差等)이 있었습니다. 지금 내하(內下)하신 진휼 밀천 역시 참작하여 분배함이 있어야 하겠으니 경기(京畿)는 천은 1천 냥, 단목 1천 2백 근, 백반 1천 2백 근, 호서(湖西)는 천은 7백 냥, 단목 1천 2백 근, 백반 1천 2백 근, 수원(水原)과 광주(廣州)는 각각 천은 1백 냥, 단목 1백 50근, 백반 1백 50근, 강화(江華)와 송도(松都)는 각각 천은 50냥, 단목 1백 50근, 백반 1백 50근을 나누어 획급하되, 이전에 진휼 밀천을 별하(別下)할 때에는 매년 호조에서 본값을 절전(折錢)하여 형편대로 내려보냈으니, 지금 역시 그대로 거행하라고 해조(該曹)에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답하였다.

司啓曰，大王大妃殿傳曰，畿湖賑資，自廟堂已爲區劃，而言念明春民情，寢食實爲靡甘，內帑天銀二千兩，丹木三千斤，白礬三千斤，特爲出給，廟堂量宜分送，設賑各處，添補賑資事，命下矣，兩道歉形，無甚彼此，而賑資區劃，略有差等，今此內下賑資，亦當有參量分排，京畿天銀一千兩，丹木一千二百斤，白礬一千二百斤，湖西天銀七百兩，丹木一千二百斤，白礬一千二百斤，水原廣州各天銀一百兩，丹木一百五十斤，白礬一百五十斤，江華松都各天銀五十兩，丹木一百五十斤，白礬一百五十斤分劃，而在前賑資別下時，每自戶曹，折本價從便下送，今亦依此舉行之意，分付該曹，何如，答曰，允。

<비변사등록 226책, 헌종 4년 1838년 12월 03일(음)>

경제/재정

右議政 李止淵이 광주의 지방이 부족해 화성의 재원을 획급한 문제 등을 아뢰다

○ 12월 10일 대신과 비국당상을 인견하여 입시하였을 때에 우의정 이지연(李止淵)이 아뢰기를, (…) 또 아뢰기를, “지난번 광주(廣州)에서 지방(支放)이 부족하여 화성(華城:수원)의 군미(軍米)·군전(軍錢)·신미(身米)·신전(身錢) 중에서 4천 냥을 획급하였습니다. 지금 광주유수 서희순(徐憲淳)이 보고한 바를 보니, ‘이는 화성에서 작곡(作穀)한 것이므로 즉시 갚지 않을 수 없으나 바로 지금의 사세로는 달리 변통할 수 없습니다. 다만 본부(本府)에서 구관하는 영남(嶺南)에 있는 통영(統營)의 전(錢)을 쌀로 대신 한 것 중에서 1천 3백 33석 영(零)을 털어내어 4천 석에 맞추어서 해부(該府)에 갚아주고, 본부(本府)에서 연례(年例)로 작미(作米)한 영남(嶺南)의 모(耗) 1천 3백 4석 영을 내년 가을에는 유치(留置)하고 회록(會錄)하여 원곡에 충당하겠습니다.’ 하였습니다. 화성부(華城府)의 환곡을 다른 도(道)에 바꿔 두어도 만일 방해되는 점이 없다면, 광주에서 곡식으로 갚아주는 것은 일이 매우 양편(兩便)하겠으니 보고한 바대로 시행하게 하고, 영남의 도신에게 일체로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하니, 대왕대비 전에서 그리하라고 답하였다. (…)

今十二月初十日，大臣備局堂上引見入侍時，右議政李所啓，(…)又所啓，頃以廣州支放不足，就華城軍身米代錢中，四千兩劃給矣，即見廣州留守徐憲淳所報，則此係華城作穀者，不可不趁即還報，而目下事勢，無他變通，第以本府勾管嶺南所在統營錢代米中，除出一千三百三十三石零，以準四千兩，移報該府，本府年例作來嶺南耗一千三百四石零，明秋則留置會錄，以充元穀爲辭矣，華城府還之換置於他道，如無妨礙，則廣州之以穀還報，事甚兩便，使之依所報施行，嶺南道臣處，一體分付，何如，大王大妃殿答曰，依爲之 (…)

<비변사등록 226책, 헌종 4년 1838년 12월10일(음)>

경제/재정

右議政 李止淵이 水原留守 沈能岳의 狀啓대로 水原에 加分해 주는 문제 등을 논의하다

○ 5월 25일 약방의 입진에 대신과 비국당상을 인견하고 평안감사가 함께 입시하였을 때, 우의정 이지연(李止淵)이 아뢰기를, “수원유수 심능악(沈能岳)의 장계(狀啓)를 보니, ‘회부(會付)한 환곡(還穀)과 향곡(餉穀)이 원래 넉넉지 못하여 농사일이 한창인 때를 당하여 환호(還戶)가 곱이 되어 백성들의 사정이 황급(惶急)합니다. 본부의 유고(留庫) 가운데 벼·쌀·콩 합계 1만 2백 20석 영(零)과 속읍(屬邑)의 군향(軍餉)인 벼 4천 2백 25석 영을 특별히 가분(加分)하도록 묘당에서 품지하여 분부하기를 청한다 하였습니다. 가분은 곧 연례(年例)가 되었으나 청한 바가 지나치게 많습니다. 조적(糶糶)의 법으로 헤아려 볼 때 신중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진홀이 있는 나머지 백성들의 사정은 상례(常例)로 논할 수 없으니 아울러 장계에서 청한 대로 시행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그리하라 하였다.(…)

今五月二十五日，藥房入診，大臣備局堂上引見，平安監司，同爲入侍時，右議政李所啓，即見水原留守沈能岳狀啓，以爲會付還餉，自來不敷，而當此農務方殷之時，還戶倍蓰，民情遑急，本府留庫中租米太合一萬二百二十石零，屬邑餉租四千二百二十五石零，特許加分事，請令廟堂，稟旨分付矣，加分便成年例，而所請稍涉過多，揆以糶法，在所難愼，第今賑餘民情，有不可以恒例論，竝依狀請，許施何如，上曰，依爲之.(…)

<비변사등록 227책, 헌종 5년 1839년 05월 25일(음)>

경제/재정

水原과 松都의 耗條가 줄었으니 劃給하도록 청하다

○ 비변사에서 아뢰기를, “수원(水原) 구관의 각도곡에서 감축된 것의 금년 모미(耗米) 6백 58석 영(零), 송도(松都)구관의 관서곡(關西穀)에서 감축된 것의 금년 모미 2천석, 호남(湖南) 유작곡(留作穀)에서 모미를 대신한 것 1천석을 각 해부(該府)에서 급대(給代)하기를 청하였습니다. 감축된 모조(耗條)를 해마다 대신 획급하는 것은 곧 전례가 되었고, 호남의 유작곡에 있어서는 송도(松都)의 유수영(留守營)에서 이미 지칙(支勅)의 수용(需用)에 다 썼기 때문에 작년 봄에 본부의 태안(泰安) 향곡(餉穀)을 연석에서 아뢰어 대여하게 하였습니다. 지금 매년 구획하는 것은 실로 계속 이어가기 어려운 방도입니다만, 다만 현재의 사세(事勢)가 실로 막하고 급박하므로 금년에는 우선 조절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수원은 관서 자성(慈城)의 보성곡(補城穀)에서 쌀로 환산하여 획급하고, 송도는 호남에 있는 나리포 곡(羅里鋪穀)에서 쌀로 환산하여 2천석, 그리고 본사(本司) 구관 각종 명색 곡식의 회록된 모곡 가운데에서 쌀로 환산하여 1천석을 획급하여 취용(取用)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까?” 하니, 윤희한다고 답하였다.

司啓辭，水原句管各道穀見縮條，今年耗米六百五十八石零，松都句管關西穀見縮條，今年耗米二千石，湖南留作穀耗代條一千石，自各該府，報請給代矣，耗條見縮之逐年代劃，便成已例，而至於湖南留作穀，則自松營，已盡需用於支勅，故昨春以本府泰安餉穀，筵奏許貸，到今每每區劃，誠是難繼之道，而第其目下事勢，實係悶迫，今年則不容無姑且闊狹，水原則以關西慈城補城穀，折米劃給，松都則以湖南所在羅鋪穀折米二千石，本司句管各名穀，會錄耗中折米一千石劃給，使之取用，何如，答曰，允。

<비변사등록 227책, 헌종 5년 1839년 09월 08일(음)>

경제/재정

水原留守 沈能岳이 청한 대로 留庫條의 租米太를 加分하게 할 것을 청하다

○ 비변사에서 아뢰기를, “수원유수 심능악(沈能惡)의 장계를 보니, 회부한 환향(還餉)이 본래 넉넉하지 못하여 흉년이 든 뒤의 농사철에는 환곡을 계속 배순하기가 어려우니 본부의 유고(留庫)된 것 중에 조(租)·미(米)·태(太) 함께 1만 1천 5백 28석 7두와 소속 읍의 향조(餉租) 4천 2백 18석을 특별히 가분해 주도록 묘당에서 품지하고 분부해주기를 청하였습니니다. 본부의 가분은 연례가 되다시피 하였는데 작년과 금년에 청한 바가 갈수록 많아지니 환향의 법으로 헤아려볼 때 어렵게 여기고 신중해야 할 바가 있습니다. 다만 그 허다한 사세를 변통하지 않을 수 없으니 아울러 우선 청한 대로 시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희한다고 답하였다.

司啓曰，卽見水原留守沈能岳狀啓，則以爲會付還餉，自來不敷，歉餘農節，巡還難繼，本府留庫中，租米太合一萬一千五百二十八石七斗，屬邑餉租四千二百十八石，特許加分事，請令廟堂，稟旨分付矣，本府加分，便成年例，而昨今年所請，漸益夥多，揆以還餉法意，在所難愼，而第其許多事勢，不容不有此變通，竝姑依請許施，何如，答曰，允。

<비변사등록 228책, 헌종 6년 1840년 05월 29일(음)>

경제/재정

水原에서 句管하는 各道 穀物의 見縮條를 關西 慈城의 補城穀으로 劃給할 것 등을 청하다

○ 비변사에서 아뢰기를, “수원(水原) 구관(句管)의 각도곡(各道穀)의 감축된 것에서 금년의 모미(耗米) 5백 5십 8석 영, 송도(松都) 구관의 관서곡(關西穀)의 감축된 것에서 금년의 모미 2천석을 각 해부(該府)에서 보고하고 급대해주기를 청했는데, 양도(兩都)에서 급대를 매년 획급해주기를 청하는 것은 이미 전례가 되다시피 하였습니다. 수원은 관서의 자성(慈城)의 보성곡(補城穀)을 쌀로 환산하여 획급하고, 송도는 영남에 있는 본사(本司:비변사) 구관의 각 명칭의 곡식의 회록모(會錄耗) 중에 쌀로 환산하여 획급하여 취용토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희한다고 답하였다.

司啓曰，水原句管各道穀見縮條，今年耗米五百五十八石零，松都句管關西穀見縮條，今年耗米二千石，自各該府，報請給代矣，兩都給代之每年請劃，便成已例，水原則以關西慈城補城穀折米劃給，松都則以嶺南所在本司句管各名穀會錄耗中折米劃給，使之取用，何如，答曰，允。

<비변사등록 228책, 헌종 6년 1840년 08월 23일(음)>

경제/재정

水原留守 李翊會가 청한 대로 水原의 舊還餉을 嶺南으로 移作할 것을 청하다

○ 비변사의 계사에, “방금 수원유수(水原留守) 이익회(李翊會)의 보고를 보니, 본부(本府)의 구환향(舊還餉) 가운데 이무(移貿)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있으니, 전(錢) 6천 냥을 영남에서 작곡(作穀)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본부의 환향을 다른 도에서 이작(移作)하는 것은 일찍이 전례가 많은데 이번에 청한 것 또한 모곡을 취하여 지방(支放)에 쓰려는 뜻에서 나온 것입니다. 보고한 내용대로 영남에서 작곡하게 하되 해마다 연말에 규례대로 마감하도록 해도에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답하였다.

司啓辭，即見水原留守李翊會所報則以爲，本府舊還餉中，有不得不移貿者，錢六千兩，作穀於嶺南中云矣，本府還餉之移作他道，曾多已例，今此所請，又出於取耗支放之意，依報辭作穀於嶺南，每於年終，依例磨勘之意，分付該道何如，答曰，允。

<비변사등록 229책, 현종 7년 1841년 02월 01일(음)>

경제/재정

領議政 趙寅永이 湖南에서 배 3척을 만들어 戰船과 漕船으로 通用할 수 있는지를 논의하다

○ 5월 29일 약방(藥房)의 입진에 대신과 비국당상을 인견하여 입시하였을 때에 영의정 조인영(趙寅永)이 아뢰기를, “수원유수(水原留守) 이익회(李翊會)의 장계를 보니, 아뢰기를 ‘본부 소속 안산(安山) 등 5개 고을의 곡식 장부가 원래 넉넉지 않은데, 매년 이런 시기를 당하면 순차를 안배하기가 곤란합니다. 각 해읍에 소재하는 남한산성 향조(餉租)의 유고곡(留庫穀) 가운데 4천 2백 26석 영(零)을 특별히 가분해 주도록 묘당에서 품지하여 분부하게 하소서.’ 하였습니다. 본부의 가분은 연례가 되었고 이번에 청한 것 또한 그다지 많지 않으니, 장계의 내용대로 시행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그리하라 하였다. (…)

今五月二十九日藥房入診大臣備局堂上引見入侍時，領議政趙所啓，即見水原留守李翊會狀啓則以爲，本府所屬安山等五邑穀簿，原來不敷，每當此時，排巡苟艱，各該邑所在南漢餉租留庫中四千二百二十六石零，特許加分事，請令廟堂稟旨分付矣，本府加分，便成年例，今此所請，又不甚多，依狀辭施行何如，上曰，依爲之。(…)

<비변사등록 229책, 현종 7년 1841년 05월 29일(음)>

경제/재정

左議政 金弘根이 수원 句管의 各道穀 문제에 대해 논의하다

○ 10월 5일에 비국당상을 인견할 때 좌의정 김홍근(金弘根)이 아뢰기를 (…) 또 아뢰기를, “수원(水原)에서 구관(句管)하는 각도곡(各道穀)의 건축조(見縮條)에 대한 모미(耗米) 4백 58석 영(零)과 죽산(竹山)에 소재하는 본부곡(本府穀)의 탕감조(蕩減條)에 대한 모미 68석 영, 송도(松都)에서 구관하는 관서곡(關西穀)의 건축조에 대한 올해 모미 2천 석을 각각의 해부(該府)에서 보고하고 구획(區劃)해 줄 것을 청하였습니다. 모미의 부족분을 구획해 주는 것이 연례(年例)가 되었고 탕감한 곡식으로 인해 건축된 것 역시 급대(給代)해 주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수원에 대해서는 해서(海西)에 소재하는 본사(本司) 구관의 보진곡(補賑穀)과 사진곡(私賑穀)의 회록모(會錄耗) 가운데 절미(折米) 5백 26석 영을 획급하고, 송도에 대해서는 호서(湖西)에 소재하는 본사 구관의 수영획득군향곡(水營劃得軍餉穀)의 회록모 가운데 절미 2천 석을 획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그리하라 하였다.

今十月初五日大臣備局堂上引見入侍時，左議政金所啓，(…) 又所啓，水原句管各道穀見縮條，今年耗米四百五十八石零，竹山所在本府穀蕩減條，耗米六十八石零，松都句管關西穀見縮條，

今年耗米二千石，自各該府，報請區劃矣，耗不足區劃，便成年例，蕩減穀見縮，亦不容不給代，**水原**則海西所在本司句管補賑穀・私賑穀會錄耗中，折米五百二十六石零劃給，松都則湖西所在本司句管水營劃得軍餉穀會錄耗中，折米二千石劃給何如，上曰，依爲之。

<비변사등록 229책, 헌종 7년 1841년 10월 05일(음)>

경제/재정

行工曹判書 權敦仁이 날로 줄어드는 嶺南의 常賑穀을 變通하는 문제 등에 대해 논의하다

○ 같은 날 입시하였을 때 행공조판서(行工曹判書) 권돈인(權敦仁)이 아뢰기를, “본청(本廳)에서 구관(句管)하는 제도(諸道)의 곡총(穀摠)이 곳곳에서 바닥이 날 정도이고 영남(嶺南)의 수용(需用)에 있어서는 다른 곳에 비해 매우 많이 들어가는 상황인데도 회안(會案)에 서는 해마다 더욱 감축을 합니다. 상진곡(常賑穀)으로 말하면 이는 미리 대비하는 재원인데 근래 정퇴와 탕감이 이미 여러 차례 있었고 옮겨 획급한 것도 많았으므로 예전의 수십만 곡 총이 지금은 2만 3천여 석에 지나지 않습니다. 올해의 경우로 말하더라도 그 반분모(半分耗) 9백여 석으로 응하조(應下條) 3천에 가까운 수량을 감당하고자 하니, 형세로 보건대 본곡(本穀)에서 때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작년이 이와 같은데 올해도 이와 같으니 또 몇 년이 지나면 본곡이 모두 소진되기에 이르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때에 이르러 만약 절미(折米) 3만 석을 별도로 획급하여 變通해서 모곡을 취해 비용을 지급한다면 앞으로 군색해질 우려는 없게 될 것입니다. 상진청(常賑廳)에서 구관하는 첨가곡(帖價穀) 절미 2천 4백 71석 영(零), 훈국미(訓局米) 5백 38석, 계사년(癸巳年:순조33, 1833) 이록곡(移錄穀)의 절미 3천 8백 97석 영, 균역청(均役廳) 구관의 기묘년(己卯年:순조19, 1819) 합록곡(合錄穀)의 절미 1만 1천 5백 16석 영, 무술년(戊戌年:헌종4, 1838) 이록곡의 절미 1만 1천 5백 76석 도합 3만 석을 옮겨 상진별획곡(常賑別劃穀)으로 만들어 내년부터 전부 분급해서 모곡을 취하고 전체 수량을 회록(會錄)하되 상진(常賑)으로 응하(應下)하는 것 중에서 노비공(奴婢貢)의 급대미(給代米) 1천 6백 22석과 **수원(水原)**의 급대미(給代米) 7백 석은 여기에서 가져다 쓰게 하되 상진 원곡(常賑元穀)은 홀전(恤典)으로 응하하는 것 이외에 다시 다른 용도로 옮겨 획급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조(耗條)의 출입을 헤아려 남음이 있으면 별획곡으로 옮겨 회록하고 부족하면 별획곡에서 가져다 쓰면 될 것입니다. 모조는 수량이 남더라도 그 용도를 절약해서 해마다 첨부(添付)한다면 점차 불어나겠지만 정퇴와 탕감, 이획에 대해 엄히 막지 못한다면 그 폐단은 이전과 같아질 것이니, 어찌 폐단을 잡으려는 원대한 경략의 본래 뜻이겠습니까. 이는 옛날 중신(重臣) 이명식(李命植)이 병진년(丙辰年:정조20, 1796)에 상소로 청한 것에 의거해서 거듭 밝혀 시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균역청의 곡식으로 말하면 급대(給代)에 들어가는 수용(需用)과 관계되니 變通하여 써버릴 수 없는 것인데 매번 왜공(倭供)을 위해 특별히 내려 저치(儲置)한 것이 부족하여 해마다 옮겨 획급하는 바람에 점차 모곡이 고갈되었으므로 앞으로의 수용에 대해 손을 쓸 곳이 없게 되어 장차 이쪽 저쪽 모두 곤궁해지는 탄식이 있는 데서 면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 또한 모름지기 불시에 들어갈 수용에 대해 별도로 획급하는 일이 있어야 균역청의 곡식을 옮겨 획급하는 폐단이 없게 될 것입니다. 이에 절미(折米) 2만 1천 6백 71석 영은 신축년(辛丑年:헌종7, 1841) 별치미(別置米)로 옮겨 내고, 병인년(丙寅年:순조6, 1806) 별치미 가운데 연례모작(年例耗作) 2천 85석 영은 내년부터 그대로 유치(留置)하여 이부(移付)했다가 아울러 전부 분급하여 회록(會錄)하되 정퇴나 탕감하는 데에 들어가는 일이 없게 하기를 한결같이 병인년 별치곡의 예에 따라 시행하도록 하소서. 임술년(壬戌年:순조2, 1802)의 곡식은 바로 신유년(辛酉年:순

조1, 1801) 노비공(奴婢貢)의 급대를 위해 연례(年例)로 응작(應作)하던 것이고, 별균곡(別均穀)과 군작곡(軍作穀) 등은 처음부터 연례 응작하는 것에 들이지 않고 급대의 부족에 대비하던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남아있는 본곡(本穀)이 모두 매우 적습니다. 이에 임술년의 곡식은 내년부터 우선 작전(作錢)하지 말고, 삼사곡(三司穀)의 모조(耗條)로 응작하던 것 또한 아울러 그대로 유지하여 해마다 임술년의 곡식에 첨가시켜 기록하며, 별균미(別均米)와 군작미(軍作米) 및 통영전미(統營錢米)와 선혜청(宣惠廳)에서 구관하는 청득이록미(請得移錄米) 도합 4만 6천 8백 8석 영을 균군미(均軍米)로 만들어 내년부터 규례대로 모곡을 취해 전체 수량을 회록하도록 하되 경비와 크게 관련된 일이 아니면 다시는 전과 같이 작전하지 말도록 하여 점차 구충(舊摠)을 채우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경상비용에서 줄어든 것을 채워 넣을 수가 있을 것이고 복잡하고 쓸데없는 곡명(穀名)에 대해서도 응당 바로잡게 될 것입니다. 이런 내용으로 거듭 밝혀 정식(定式)으로 삼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그리하라 하였다. (…)

同日入侍時，行工曹判書權敦仁所啓，本廳句管諸道穀摠，在在朽然，而至於嶺南需用，則比他浩多，會案則歲益減縮，以言乎常賑穀，則此是備豫之資，而近來停蕩既屢，移劃亦多，昔之屢十萬摠，今不過二萬三千餘石，雖以今年言之，以其半分耗九百餘石，欲當應下條近三千數，則其勢不得不割本，昨年如此，今年如此，又幾何而不至於本穀俱盡乎，及此時若以折米三萬石，別劃變通，取耗支用，則可無來頭窘蹙之慮，常賑句管帖價穀折米二千四百七十一石零，訓局米五百三十八石，癸巳移錄穀折米三千八百九十七石零，均廳句管己卯合錄穀折米一萬一千五百十六石零，戊戌移錄穀折米一萬一千五百七十六石零，合三萬石，移作常賑，別劃穀自明年盡分取耗，全數會錄，而常賑應下中奴婢貢給代米一千六百二十二石，水原給代米七百石，就此取用，常賑元穀，則恤典應下外，更無得移劃他用，量其耗條出入，有餘則移錄於別劃穀，不足則取用於別劃穀，耗條餘數，樽節其用，年年添付，則可以漸次滋息，而停蕩與移劃，若不嚴防，則其弊猶前，是豈釐救經遠之本意哉，此則一依古重臣李命植丙辰疏請，而申明施行，以言乎均廳穀，則此係給代所需，不容推移闊狹，而每以倭供別下儲置不足，年年移劃漸致耗竭，來頭需用，着手無處，將不免有彼此俱困之歎，此亦須有別劃不時之需，然後可無移割均穀之弊，折米二萬一千六百七十一石零，移出辛丑別置米，丙寅別置米中年例耗作二千八十五石零，自明年仍留移付，竝盡分會錄，勿入停蕩，一依丙寅別置穀例施行，壬戌穀則乃是辛酉奴婢貢給代之年例應作者也，別均軍作等穀，則初不入於年例應作用備給代不足者也，而見在本穀，俱極零星，壬戌穀則自明年姑勿作錢，三司穀耗條之應作者，亦竝仍留，年年添錄於壬戌穀，別均軍作米及統營錢代米惠廳句管請得移錄米，合四萬六千八百八石零，作為均軍米，自明年如例取耗，全數會錄，如非大關經費之事，更勿如前作錢，漸充舊摠，則經用之耗蝕者，可以補完，而穀名之繁冗者，亦當釐正，以此申明定式何如，上曰，依爲之。(…)

<비변사등록 229책, 헌종 7년 1841년 11월 26일(음)>

경제/재정

水原留守 朴永元이 水原府의 幕은 賑濟米를 應分條의 還穀과 바꿔 改色하는 문제를 논의하다

3월 16일 경기감사가 각무차사원(各務差使員)과 수원유수(水原留守)를 거느리고 함께 입시하였을 때 수원유수 박영원(朴永元)이 아뢰기를, “본부(本府)에서 관장하는 진제미(賑濟米)는 호남 및 과천현(果川縣)에 산재해 있는 것을 제외하면 본부에 현재 남아있는 것이 미(米)는 1천 9백 49석 1두(斗) 6승(升)이고 태(太)는 7백 34석 8두입니다. 그 설치한 시초를

따져보면 해마다 저축(儲蓄)에 보태어 수재나 한재를 대비하려는 것이었는데 그것을 환곡으로 나누어 주고 거두는 일이 없었으므로 창고 안에 쌓여서 묵은 곡식이 되고 있습니다. 간혹 용하(用下)하는 일이 있으면 또 묵은 곡식은 버려두고 새 곡식을 쓰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이와 같기 때문에 창고 안에 현재 남아있는 미태(米太)는 모두 10여 년 이전에 쌓아두었던 것입니다. 이에 심하게 썩거나 상하여 진토(塵土)가 되기도 하고 새나 쥐가 먹어서 줄어드는 바람에 거의 완석(完石)이 없습니다. 지금 만약 그대로 답습하여 방치 한다면 저축해 놓는 것이 명분만 있고 실체는 없어져 새로 거두어들이는 것까지 뒤섞여 피해를 입게 될 것이니, 결국에는 모두 무용지물이 될 뿐입니다. 지금부터는 창환(倉還)의 응분곡(應分穀) 중에서 수량을 정하여 서로 맞바꾸고 돌아가면서 개색(改色)을 한 뒤에야 썩어가는 곡식을 새 곡식으로 바꾸어 영구히 폐단이 없기를 도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개색을 하고자 하면 개량(改量)을 하지 않을 수 없는데 개량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곡량(斛量)이 줄어드는 일이 있게 되고 줄어든 뒤에는 또한 채워 완전하게 할 방도가 없습니다. 공곡(公穀)의 소중함에 대해 신이 어찌 전혀 모르겠습니까마는 이미 폐단을 알고 있으면서 변통할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은 실체에 힘쓰는 뜻이 전혀 아닐 것입니다. 지금의 개량에 있어서는 수량을 줄여서 회감(會減)하고, 개색하는 일과 맡아 지키는 방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절목(節目)을 만들어 영구히 준행하는 것이 사의(事宜)에 합당할 듯합니다. 그러므로 감히 이렇게 우려러 아됩니다.” 하니, 임금의 그리하라 하였다.

今三月十六日京畿監司率各務差使員水原留守同爲入侍時, 水原留守朴永元所啓, 本府所管賑濟米, 湖南及果川縣散在者外, 本府時在米爲一千九百四十九石一斗六升, 太爲七百三十四石八斗, 原其設始, 卽所以逐年添補儲蓄, 以備水旱者, 而以其無斂散之故, 積在庫中, 陳陳相因, 或有用下, 則又不得不捨舊用新, 以是之故, 庫中見在之米·太, 皆是十餘年以前所序者, 腐傷之甚, 或成塵土, 雀鼠之縮, 殆無完石, 今若因循拋置, 則非但已儲之名存, 實無竝與新捧, 而混被其害, 畢竟都爲無用之物而已, 自今爲始, 就倉還應分中, 定數相換, 輪回改色然後, 可以化腐爲新, 永圖無弊, 而如欲改色, 不可不改量, 如其改量, 必當有斛縮, 而致縮之後, 亦無充完之道, 公穀所重, 臣豈全昧, 而既知其弊, 不思通變, 殊非懋實之意, 及今改量, 執縮會減, 改色之節與典守之方, 另成節目, 永久遵行, 似合事宜, 故敢此仰達矣, 上曰, 依爲之.

<비변사등록 230책, 헌종 9년 1843년 03월 17일(음)>

경제/재정

水原留守 朴永元이 狀啓에서 청한 대로 加分할 것을 청하다

○ 비변사에서 아뢰기를, “수원유수 박영원(朴永元)의 장계를 보니, ‘회부(會付)의 환향(還餉)은 본래 넉넉하지 못하고 작년 가을의 농사는 흉년을 면치 못하였으므로 이렇게 농사가 한창인 때를 당하여 환호(還戶)의 증가에 배충(排摠)할 수 없으니, 본부의 유고조(留庫條) 중에서 조, 미, 태 도합 7천 1백 4석과 속읍(屬邑)의 향조(餉租) 도합 3천 6백 37석 영을 특별히 가분해 주도록 묘당에서 품지하여 분부하게 하소서.’ 하였습니다. 가분이 연례가 되었고 수효는 그다지 많지 않으니, 모두 장계에서 청한 대로 시행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답하였다.

司啓曰, 卽見水原留守朴永元狀啓, 則以爲會付還餉, 自來不敷, 昨秋穡事未免失稔當此農務方殷之時, 還戶加增, 無以排摠, 本府留庫條中, 租·米·太合七千一百四石, 屬邑餉租合三千六百三十七石零, 特許加分事, 請令廟堂稟旨分付矣, 加分便成年例, 數爰不至過多, 竝依狀請許施何如, 答曰, 允.

<비변사등록 230책, 현종 9년 1843년 06월 08일(음)>

경제/재정

水原 및 松都 句管穀 耗米不足條를 本司의 會錄耗로 區劃하여 시행하기를 청하다

○ 비변사에서 아뢰기를, “수원(水原)에서 구관(句管)하는 각도 곡(各道穀)의 건축 조(見縮條)에 해당하는 올해의 모미(耗米) 2백 58석 영(零), 죽산(竹山)에 소재하는 본부 곡(本府穀)의 탕감 조(蕩減條) 68석 영, 송도(松都)에서 구관하는 관서 곡(關西穀)의 건축 조에 해당하는 올해의 모미 2천 석을 각각 해부에서 보고하여 구획해 달라고 청하였습니다. 지방(支放)의 부족분에 대해서는 구획해 주어야 하고 모조의 급대(給代)는 이미 연례가 되었으니, 영남에 소재하는 본사 곡(本司穀)의 회록모(會錄耗) 중에서 절미 3백 26석은 수원에 획급해 주고, 호서에 있는 본사 곡 회록모 중에서 절미 2천 석은 송도에 획급해 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답하였다.

司啓曰, 水原句管各道穀見縮條今年耗米二百五十八石零, 竹山所在本府穀蕩減條六十八石零, 松都句管關西穀見縮條今年耗米二千石, 自各該府, 報請區劃矣, 支放不足, 在所區劃, 耗條給代, 已成年例, 就嶺南所在本司穀會錄耗中, 折米三百二十六石, 劃給華城, 湖西本司穀會錄耗中折米二千石, 劃給松都何如, 答曰, 允.

<비변사등록 230책, 현종 9년 1843년 09월 10일(음)>

경제/재정

水原府留守 李光正의 狀啓에서 청한 대로 加分해 줄 것을 청하다

비변사에서 아뢰기를, “수원유수(水原留守) 이광정(李光正)의 장계를 보니, ‘회부(會付)된 환향(還餉)이 본래 넉넉하지 못하여 환곡을 분급할 때마다 종자와 양식이 부족하니, 본부(本府)의 유고곡(留庫穀) 중에서 조(租), 미(米), 태(太) 도합 6천 7백 86석 영(零)과 속읍(屬邑)의 향조(餉租) 3천 6백 37석 영(零)을 특별히 가분(加分)하도록 묘당에서 품지하여 분부하게 해 주소서.’ 하였습니다. 농사철에 먹을 것이 어려운 점에 대해서는 진념해야 하고 본부의 가분은 연례가 되었으니, 장계에서 청한 대로 시행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답하였다.

司啓曰, 卽見水原留守李光正狀啓則以爲, 會付還餉, 本自不敷, 每當還分, 種糧艱乏, 本府留庫中, 租米太合六千七百八十六石零, 屬邑餉租三千六百三十七石零, 特許加分事, 請令廟堂稟旨分付矣, 農節艱食, 在所軫念, 本府加分, 便成年例, 依狀請許施, 何如, 答曰, 允.

<비변사등록 231책, 현종 10년 1844년 06월 03일(음)>

경제/재정

水原과 松都의 支放穀 不足條를 本司의 會錄耗로 劃給해 주기를 청하다

비변사에서 아뢰기를, “수원(水原)에서 구관(句管)하는 각도 곡식의 건축 조(見縮條)는 올해의 모미(耗米)가 1백 58석 영(零)이고, 죽산(竹山)에 소재하는 본부 곡식의 탕감 조(蕩減條)는 68석 영이며, 송도(松都)에서 구관하는 관서 곡식의 건축 조는 올해의 모미가 2천 석이 되는데, 각각 해부(該府)에서 보고하여 급대(給代)하기를 청하였습니다. 양도(兩都)의 지방(支放)이 늘 부족한 것이 걱정이고 해마다 대획(代劃)하는 것이 항례(恒例)가 되었습니다. 영남에 있는 본사(本司)의 곡식으로 회록(會錄)된 모곡 중에서 절미(折米)하여 2백 26석을 화성(華城)에 획급하고, 2천 석을 송도(松都)에 획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희한다고 답하였다.

司啓曰, 水原句管各道穀見縮條, 今年耗米一百五十八石零, 竹山所在本府穀蕩減條, 六十八石零, 松都句管關西穀見縮條, 今年耗米二千石, 自各該府, 報請給代矣, 兩都支放, 常患不足, 每年代劃, 便成恒例, 就嶺南本司穀會錄耗中, 折米二百二十六石劃給華城, 二千石劃給松都何如, 答曰, 允.

<비변사등록 231책, 현종 10년 1844년 10월 14일(음)>

경제/재정

水原留守 李光正이 청한 대로 留庫穀 등을 加分할 것을 청하다

비변사에서 아뢰기를, “수원유수(水原留守) 이광정(李光正)의 장계를 보니, ‘회부(會付)의 환향(還餉)이 본래 넉넉하지 못하므로 매년 환곡을 분급하게 되면 순차에 따라 분배하기가 구차하고 어렵습니다. 본부(本府)의 유고(留庫) 중에서 조(租)·미(米)·태(太) 도합 2천 2백 35석 영(零)과 속읍(屬邑)의 향조(餉租) 3천 6백 37석 영을 특별히 가분(加分)하도록 묘당에서 품지하여 분부하게 해 주소서.’ 하였습니다. 농사철에 먹고 살기 어려운 점에 대해서는 염려해야 하고 본부에서 가분하는 것은 이미 근래의 예가 많으니, 장계에서 청한 대로 시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희한다고 답하였다.

司啓曰, 卽見水原留守李光正狀啓, 則以爲會付還餉, 本自不敷, 每當還分, 排巡苟艱, 就本府留庫中租米太合二千二百三十五石零, 屬邑餉租三千六百三十七石零特許加分事, 請令廟堂稟旨分付矣, 農節艱食, 在所當念, 本府加分, 已多近例, 依狀請許施, 何如, 答曰, 允.

<비변사등록 232책, 현종 11년 1845년 05월 22일(음)>

경제/재정

水原에 本司 소관 嶺南의 折米 1백 26섬을 劃給할 것을 청하다

○ 비변사에서 아뢰기를, “수원(水原)에서 구관하는 각도 곡식의 견축조(見縮條)는 올해의 모미(耗米)가 58석 영(零)이고 죽산(竹山)에 소재하는 본부(本府) 곡식의 탕감 조(蕩減條)가 6천 8석 영인데, 해부(該府)에서 보고하여 급대(給代)해 줄 것을 청하였습니다. 지방(支放)의 대획(代劃)은 항례(恒例)가 되었으니, 영남(嶺南)에 있는 본사(本司) 곡식의 회록 모(會錄耗) 중에서 절미(折米) 1백 26석을 획급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희한다고 답하였다.

司啓曰, 水原句管各道穀見縮條, 今年耗米五十八石零, 竹山所在本府穀蕩減條六十八石零, 自該府報請給代矣, 支放代劃, 便成恒例, 就嶺南本司穀會錄耗中折米一百二十六石, 許令劃給, 何如, 答曰, 允.

<비변사등록 232책, 현종 11년 1845년 09월 16일(음)>

경제/재정

水原留守 李若愚가 청한 대로 本府 留庫 중 각곡 4천 7백 18섬 등을 가분할 것을 청하다

비변사에서 아뢰기를, “수원유수(水原留守) 이약우(李若愚)의 장계를 보니 ‘회부(會付)한 환향(還餉)은 본래 넉넉지 않아 매년 환분(還分)할 때마다 배순이 어려우니, 본부의 유고조 중에서 조·미·태(租米太) 도합 4천 7백 18석 영(零)과 속읍(屬邑)의 향조(餉租) 3천 6백 37석 영(零)을 특별히 가분을 허락하라고 묘당에서 품지하여 분부하게 하소서.’ 하였습니다. 종자와 양식이 모자람은 사실 진념할 바이고 본부에서 가분함은 연례가 되다시피 하였

으니, 장계에서 청한 대로 허시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택한다고 답하였다.

司啓曰, 卽見水原留守李若愚狀啓, 則以爲會付還餉, 本自不敷, 每當還分, 排巡苟艱, 就本府留庫中租米太合四千七百十八石零, 屬邑餉租三千六百三十七石零, 特許加分事, 請令廟堂, 稟旨分付矣, 種糧艱乏, 實所軫念, 本府加分, 便成年例, 依狀請許施, 何如, 答曰, 允.

<비변사등록 233책, 헌종 12년 1846년 05월 02일(윤)>

경제/재정

水原에 湖西의 本司穀 會錄耗 中 折米 94석을 劃給할 것을 청하다

○ 비변사에서 아뢰기를, “수원(水原)에서 구관하는 죽산(竹山)에 있는 곡식의 탕감 조(蕩減條) 68석 영(零)과 양성(陽城)에 있는 곡식의 배봉 모조(排捧耗條) 26석 영을 해부(該府)에서 보고하여 급대(給代)하기를 청하였습니다. 지방(支放)의 부족을 다른 것을 따라서 급대함은 가까운 예(例)가 되다시피 하였으니, 호서(湖西) 본사(本司)의 곡식 회록모(會錄耗) 중에서 절미(折米)하여 94석을 획급하게 허락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택한다고 답하였다.

司啓曰, 水原句管竹山所在穀蕩減條六十八石零, 陽城所在穀排捧耗條二十六石零, 自該府報請給代矣, 支放不足之從他給代, 便成近例, 就湖西本司穀會錄耗中, 折米九十四石, 許令劃給, 何如, 答曰, 允.

<비변사등록 233책, 헌종 12년 1846년 09월 30일(음)>

경제/재정

水原留守 金左根이 청한 대로 加分할 것을 청하다

비변사에서 아뢰기를, “수원유수 김재근(金在根)의 장계를 보니 회부(會付)된 환향곡(還餉穀)이 원래 넉넉하지 못하여 매번 환곡을 나눠줄 때를 당하면 배순(排巡)이 구차하니 본부의 유고곡(留庫穀) 가운데 콩과 쌀 도합 5천 4백 8석 영과 속읍(屬邑)의 군향조(軍餉租) 3천 6백 36석을 특별히 가분(加分)하도록 묘당에서 품지하여 분부하게 하기를 청하였습니다. 본부의 가분은 이미 연례(年例)가 되었고 농절기의 배순은 백성의 사정과 관계되니 장청한 대로 허시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택한다고 답하였다.

司啓曰, 卽見水原留守金左根狀啓則以爲, 會付還餉, 自來不敷, 每當還分, 排巡苟艱, 本府留庫中米太合五千四百八石零, 屬邑餉租三千六百三十六石, 特許加分事, 請令廟堂稟旨分付矣, 本府加分, 已成年例, 農節排巡, 有關民情, 依狀請特爲許施, 何如, 答曰, 允.

<비변사등록 235책, 헌종 14년 1848년 05월 19일(음)>

경제/재정

領議政 鄭元容이 수원부가 구관하는 미곡에 대해 논의하다

9월 10일 대신과 비국 당상을 인견하여 입시하였을 때에 영의정 정원용(鄭元容)이 아뢰기를 (….) 또 아뢰기를, “수원부(水原府)에서 구관(句管)하는 죽산(竹山)의 탕감 된 모미(耗米) 68석 영과 양성(陽城)의 배봉(排捧)하기로 된 모미 26석 영과 송도(松都)에서 구관하는 관서(關西)의 소미(小米) 모조(耗條) 2천 석을 각 해부(該府)에서 급대(給代)해 달라고 보청(報請)하였습니다. 모조(耗條)가 부족하여 획급해달라는 청은 마치 연례(年例)처럼 되었으니 영남(嶺南)에 있는 본사의 구관곡(句管穀) 모조 가운데에서 화성(華城)에 획급하고 해서(海西)에 있는 본사의 구관곡 모조 가운데에서 송도(松都)에 획급하여 가져다가 쓰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그리하라 하였다. (…)

今九月初十日大臣備局堂上引見入侍時，領議政鄭所啓，(…)又所啓，水原句管竹山蕩減耗米六十八石零，陽城排捧耗米二十六石零，松都句管關西小米耗條二千石，自各該府，報請給代矣，耗條不足之請劃，便成年例，嶺南本司句管穀耗中劃給華城，海西本司句管穀耗中劃給松都，以爲取用之地，何如，上曰，依爲之.(…)

<비변사등록 235책, 현종 14년 1848년 09월 11일(음)>

경제/재정

水原留守 金左根이 청한 대로 加分할 것을 청하다

비변사에서 아뢰기를, “수원유수 김좌근(金左根)의 장계를 보니 아뢰기를 ‘회부(會付)한 환향곡이 본래 넉넉하지 못하여 매번 도로 나누어줄 때 배순하는 데에 부족하니 본부 유고곡 가운데서 조·미·태(租米太) 도합 6천 5백 92 석 영과 속읍 향조(餉租) 3천 6백 37 석 영을 더 나누어 주도록 묘당에서 품지하여 분부하게 하소서.’ 하였습니다. 더 나누어주는 것은 연례가 되었고 종량(種糧)은 백성의 실정과 관계되는 것이니 장청대로 시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답하였다.

司啓曰，卽見水原留守金左根狀啓，則以爲會付還餉，本自不敷，每當還分，排巡不足，本府留庫中租米太合六千五百九十二石零，屬邑餉租三千六百三十七石零，特許加分事，請令廟堂稟旨分付矣，加分已成年例，種糧亦關民情，依狀請許施何如，答曰，允.

<비변사등록 236책, 현종 15년 1849년 05월 24일(음)>

경제/재정

水原留守 金蘭淳의 狀啓에서 청한 대로 加分해 줄 것을 청하다

비변사에서 아뢰기를, “수원유수 김난순(金蘭淳)의 장계를 보니 회부된 환향(還餉)이 본래 넉넉지 못하여 매번 환분(還分)을 당하여 배순(排巡)이 부족하니 본부 유고(留庫) 가운데 벼·쌀·콩 도합 3천 1백 80석 영과 속읍(屬邑)의 향조(餉租) 3천 6백 37석을 특별히 가분하도록 묘당에서 품지하여 분부하기를 청한다 하였습니다. 농량(農糧)은 민정(民情)과 관련 되고 가분은 연례적인 것으로 이루어졌으니 장청대로 시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답하였다.

司啓曰，卽見水原留守金蘭淳狀啓則以爲，會付還餉，本自不敷，每當還分，排巡不足，本府留庫中租米太合三千一百八十石零，屬邑餉租三千六百三十七石，特許加分事，請令廟堂稟旨分付矣，農糧果係民情，加分便成年例，依狀請施行何如，答曰，允.

<비변사등록 237책, 철종 1년 1850년 06월 01일(음)>

경제/재정

水原의 耗米 蕩減條 및 不足條를 本司句管穀 會錄耗로 給代할 것을 청하다

○ 비변사에서 아뢰기를, “수원유수 김난순(金蘭淳)이 보고한 바를 보니 죽산(竹山)에 있는 모미탕감조(耗米蕩減條) 68석 영 및 맹산(孟山)의 모미부족조(耗米不足條) 2석 영, 도합 71석 영을 되도록 곡식으로 다른 곳으로부터 획하하여 지방(支放)으로 할 수 있도록 청한다 하였습니다. 지방의 급대는 연례적인 것이 되었습니다. 영남에 있는 본사 구관곡 회록모(會錄耗) 가운데 취용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답하였다.

司啓曰，卽見水原留守金蘭淳所報，則以爲竹山所在耗米蕩減條六十八石零及孟山耗米不足條二

石零合七十一石零，以某樣穀，從他劃下，以爲支放之地爲辭矣，支放給代，便成年例，以嶺南所在本司句管穀會錄耗中，許令取用何如，答曰，允．

<비변사등록 237책, 철종 1년 1850년 09월 26일(음)>

경제/재정

水原留守 趙秉駿의 狀啓에서 청한 대로 加分해 줄 것을 청하다

○ 비변사에서 아뢰기를, “지금 수원유수(水原留守) 조병준(趙秉駿)의 장계를 보니, ‘회부(會付)된 환·향(還餉)이 본래 넉넉하지 못하여, 환곡(還穀)을 분급(分給)할 때마다 순차를 안배하기 곤란하니 본부(本府)의 유고 중에서 쌀과 콩 함께 2천 8백 90석 영(零)과 속읍(屬邑)의 향조(餉租) 3천 6백 37석 영을 특별히 가분하도록 묘당에서 품지하여 분부하게 해 주소서.’ 하였습니다. 농사짓는 동안 필요한 양식이 이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데 가분은 이미 연례(年例)가 되었으니, 장계에서 청한 대로 시행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답하였다.

司啓曰，卽見水原留守趙秉駿狀啓，則以爲會付還餉，自來不敷，每當還分，排巡苟艱，本府留庫中米太合二千八百九十石零，屬邑餉租三千六百三十七石零，特許加分事，請令廟堂，稟旨分付矣，農糧不可不繼，加分已成年例，依狀請施行，何如，答曰，允．

<비변사등록 238책, 철종 2년 1851년 06월 01일(음)>

경제/재정

水原의 耗米 不足條를 嶺南 所在 本司句管 會錄耗로 給代하게 할 것을 청하다

○ 비변사에서 아뢰기를, “수원유수 조병준(趙秉駿)이 보고한 것을 보니, 죽산(竹山)에 있는 모미(耗米)의 탕감조(蕩減條) 68석(石) 영(零)과 맹산(孟山)의 부족한 모미 2석 영을 합한 71석 영을 전례대로 떼어 주어 지방(支放)에 쓰도록 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지방의 급대(給代)는 이미 연례(年例)가 되었으니, 영남(嶺南)에 있는 본사 구관곡(句管穀)의 회록모(會錄耗) 중에서 이 수량대로 가져다 쓰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답하였다.

司啓曰，卽見水原留守趙秉駿所報，則竹山所在耗米蕩減條六十八石零，及孟山不足耗米二石零，合七十一石零，依例劃下，以爲支放之地，爲辭矣，支放給代，已成年例，以嶺南所在本司句管穀會錄耗中，依此數，許令取用，何如，答曰，允．

<비변사등록 238책, 철종 2년 1851년 09월 08일(음)>

경제/재정

水原句管 湖南所在 賑餘穀耗條를 還餉에 添付하게 할 것을 청하다

○ 비변사에서 아뢰기를, “수원유수(水原留守) 조병준(趙秉駿)의 장계를 보니, ‘본부(本府)의 환향(還餉)은 본래 넉넉하지 않아 매번 순차(巡次)의 안배에 어려움이 있으니 본영(本營)에 회부(會付)된 진제곡(賑濟穀) 중에서 호남(湖南)에 있는 진여미(賑餘米)의 모조(耗條) 2백 8석 영(零)을 금년부터 가져와 환향에 보태도록 묘당에서 품지(稟旨)하여 분부(分付)하게 해 주소서.’ 하였습니다. 이미 해부(該府)에서 구관(句管)하는 것인데 환총(還摠)에 보태겠다고 하니, 지난할 것이 없으므로 이 수량대로 가져다 쓰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답하였다.

司啓曰，卽見水原留守趙秉駿狀啓，則以爲本府還餉，自來不敷，每患排巡之苟艱，就本營賑濟

穀會付中，湖南所在賑餘米耗條二百八石零，今年爲始，取來添付於還餉事，請令廟堂稟旨分付矣，既係該府勾管，而欲爲添付還摠，則不必靳持，依此數許令取用，何如，答曰，允。

<비변사등록 238책, 철종 2년 1851년 10월 05일(음)>

경제/재정

京畿監司 曹錫雨의 陳弊 狀啓에 대해 回啓하다

○ 비변사에서 아뢰기를, “경기감사 조석우(曹錫雨)의 장계를 보니, 민읍의 폐단을 조목조목 진달하고, 이어서 묘당에서 품쳐해 주기를 청하셨습니다. (….) 그 하나는, 저치미(儲置米)와 저치전(儲置錢) 중에 본도에 떼어 줄 것을 매년 부당하게 응입한 수효에 대해 올봄에 추가로 지급한 것이 4천 2백여 석이고, 여름·가을·겨울에 필요한 것이 또 장차 1만 수효에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전에 추가로 지급했을 때 조정에서도 확보(劃報)한 예가 있는데, 화성(華城) 및 인릉(仁陵)에 행행(幸行)할 때의 응용(應用)은 또한 실시(設施)했을 때 의의(擬議)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해마다 누적되어 보상(報償)할 길이 없으니, 선혜청에서 떼어 보낼 미(米) 5천 석 가운데 수원과 광주에 각각 3백 석 및 본영의 지방(支放) 6백 석은 이것을 가져다 제감(除減)하고, 전(錢) 역시 공가(貢價)를 직접 받았거나 여러 해 동안 계속 빌린 것을 배제(排除)할 것이 있다면 응입할 수량은 갈수록 더욱 증가되고 구획할 수량은 도리어 감축될 것이니, 모양곡(某樣穀)을 막론하고 2천 석에 한정하여 먼저 구획해서 그동안 추가로 지급했던 것을 갚게 하고, 매년 6백 석을 더 마련하여 하나같이 원래의 수량에 따라 복구(復舊)해서 맞추어 지급하는 일입니다. 당초에 미와 전의 수량을 정해서 마련할 때 일찍이 각 읍의 필요한 수량을 헤아리지 않은 적이 없었고, 또 연전에 별획(別劃)한 것은 특별히 기읍(畿邑)의 사세(事勢)를 진념해서 융통한 것인데, 이번에 번거롭게 청한 것은 한정 없이 요구하는 것이라고 할 만합니다. 어떻게 청할 때마다 번번이 허락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빌린 것 중에 누적된 것을 보상하게 하는 것과 공역(公役)이 의외로 지급된 것은 모두 응당 떼어 줄 것이 감축되는 단서이며, 또 원래 정한 항식(恒式)을 벗어난 것이 많다면 역시 상례(常例)를 고수(固守)할 수 없어 점점 끝내 큰 포흠을 불러들이게 되고 말 것입니다. 선혜청에 있는 본사의 별치미(別置米) 중에 1천 석을 특별히 떼어 주어 추가로 지급한 수량을 갚게 하고, 6백 석을 더 마련해 달라는 청은 실로 의논할 수 없으니, 그대로 두소서. 이와 같이 마련한 뒤에 또 혹 가하(加下) 두 글자로 번거롭게 청하는 일이 있으면 도신 역시 잘못 검칙한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엄히 신칙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택하다고 답하였다.

司啓曰，卽見京畿監司曹錫雨狀啓，則條陳民邑弊瘼，仍請令廟堂稟處矣，(…) 其一，儲置米錢之劃付本道者，每不當應入之數，今春加下，爲四千二百餘石，夏秋冬需用，又將不止於萬數矣，在前加下時，朝家亦有劃報之例，而華城及仁陵幸行時應用，又非設施時擬議，故頻年積累，報償無路，惠廳劃送米五千石內，水原·廣州各三百石，及本營支放六百石，就此除減，而錢亦有貢價直受，流貸排除者，則應入之數，去益加增，區劃之數，乃反減縮，無論某樣穀，限二千石，先爲區劃，俾報前後加下，每年六百石加磨鍊，一依元數，復舊準下事也，當初米錢之定數磨鍊，未嘗非較量各邑需用，且年前別劃，特軫畿邑事勢，而有所闊狹者，則今此煩請，可謂無已之求也，何可隨請輒許，而第其假貸之積累報償，與公役之意外用下，俱係應劃減縮之端，而又多元定恒式之外，則亦不可膠守常例，駸駸然終致巨逋而止矣，以惠廳所在本司別置米中一千石，特爲劃給，俾報加下之數，而六百石加磨鍊之請，實無以議到，置之，如是措劃之後，又或以加下二字，有所煩請，則道臣亦難免失檢之責，以此嚴飭，何如，答曰，允。

<비변사등록 239책, 철종 3년 1852년 08월10일(음)>

경제/재정

水原의 耗米 蕩減條와 不足條를 給代하기를 청하다

○ 비변사에서 아뢰기를, “수원유수 서영순(徐英淳)의 보고를 보니, ‘죽산(竹山)에 있는 모미(耗米) 탕감조 68석 영(零) 및 맹산(孟山)의 부족한 모미 2석 영을 예에 따라 떼어 주어 지방(支放)하도록 해 주소서.’ 하였습니다. 지방의 급대(給代)는 이미 연례가 되었으니, 영남에 있는 본사의 구관곡을 회록한 모조 중에서 이 수량대로 가져다 쓰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답하였다.

司啓曰, 卽見水原留守徐英淳所報, 則竹山所在耗米蕩減條六十八石零, 及孟山不足耗米二石零, 依例劃下以爲, 支放之地爲辭矣, 支放給代, 既成年例, 以嶺南所在, 本司句管穀會錄耗中, 依此數許令取用, 何如, 答曰, 允.

<비변사등록 239책, 철종 3년 1852년 09월 15일(음)>

경제/재정

水原留守 徐英淳의 狀啓에 대해 加分하도록 回啓하다

비변사에서 아뢰기를, “수원유수(水原留守) 서영순(徐英淳)의 장계를 보니, ‘작년 가을 농사가 흉년을 면치 못하였기에 궁핍한 여름의 민정(民情)을 염려해야 하는데, 환호(還戶)가 배나 많아 배순(排巡)할 길이 없습니다. 본부(本府)의 환향(還餉)으로 유고(留庫) 중인 조(租)·미(米)·태(太)를 합한 9천 4백 14석 영과 속읍(屬邑)의 향조(餉租) 3천 6백 37석 영을 특별히 가분(加分)하도록 묘당에서 품지하여 분부하게 해 주소서.’ 하였습니다. 유고곡의 가분을 청하는 것은 연례(年例)가 되다시피 하였고 종자와 양식이 부족한 것 역시 민정에 관계되니, 장계의 내용대로 시행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답하였다.

司啓曰, 卽見水原留守徐英淳狀啓則以爲, 昨秋年事, 未免失稔, 窮夏民情, 在所當念, 而還戶倍多, 排巡無路, 本府還餉留庫中, 租米太合九千四百十四石零, 屬邑餉租三千六百三十七石零, 特許加分事, 請令廟堂稟旨分付矣, 留庫請分, 便成年例, 種糧艱乏, 亦關民情, 依狀辭許施, 何如, 答曰, 允.

<비변사등록 240책, 철종 4년 1853년 05월 12일(음)>

경제/재정

水原의 支放不足條를 給代하게 하기를 청하다

비변사에서 아뢰기를, “수원유수(水原留守) 서영순(徐英淳)이 보고한 것을 보니, ‘죽산(竹山)에 있는 모미(耗米)에 대한 탕감조(蕩減條) 68석 영(零) 및 맹산(孟山)의 부족모미(不足耗米) 2석 영을 합한 71석 영을 전례에 따라 떼어 주어 지방(支放)으로 하겠다.’ 고 하였습니다. 지방을 급대(給代)하는 것이 이미 연례(年例)로 이루어졌으니, 호서(湖西)에 있는 본사(本司)에서 구관(句管)하는 곡물의 회록(會錄)된 모곡(耗穀) 중에서 이 수량만큼을 가져다 쓰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답하였다.

司啓曰, 卽見水原留守徐英淳所報, 則竹山所在耗米蕩減條六十八石零, 及孟山不足耗米二石零, 合七十一石零, 依例劃下, 以爲支放之地爲辭矣, 支放給代, 已成年例, 以湖西所在本司句管穀

會錄耗中，依此數許令取用，何如，答曰，允

<비변사등록 240책, 철종 4년 1853년 08월 17일(음)>

경제/재정

水原留守 李鶴秀의 狀啓에서 청한 加分을 시행하지 말기를 청하다

비변사에서 아뢰기를, “수원유수 이학수(李鶴秀)의 장계를 보니, 아뢰기를 ‘본부 소속 안산(安山) 등 네 고을의 환곡이 원래 많지 않으므로 배순(排巡)할 길이 없습니다. 각 해읍에 있는 남한산성 향조(餉租) 유고조(留庫條) 가운데 3천 6백 37석 영(零)을 특별히 가분(加分)하도록 묘당에서 품지하여 분부하게 하소서.’ 하였습니다. 본부의 가분은 이미 연례적인 일이 되었고 청한 수효가 비록 심하게 많지는 않으나, 분류(分留)의 법의(法意)는 본래 이와 같지 않고, 연석에서 아뢰어 못하도록 막은 것이 얼마 되지 않았고 이미 해서(海西)에서 허락하지 않았으니, 한 곳은 시행하고 한 곳은 시행하지 않아서는 안 됩니다. 내버려 두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답하였다.

司啓曰，卽見水原留守李鶴秀狀啓則以爲，本府所屬安山等四邑還穀，自來不敷，排巡無路，各該邑所在南漢餉租留庫中三千六百三十七石零，特許加分事，請令廟堂稟旨分付矣，本府加分，已成年例，所請數爰，雖不甚多，然分留法意，本不如是，筵奏防禁，事係屬耳，而既不許於海西，則亦不可一施一否，置之何如，答曰，允。

<비변사등록 241책, 철종 5년 1854년 05월 06일(음)>

경제/재정

배에 물이 들어 부패한 興陽과 順天의 稅穀을 民論에 따라 發賣하기를 청하다

○ 비변사에서 아뢰기를, “수원유수(水原留守) 서영순(徐英淳)의 장계를 보니, 흥양(興陽)의 대동미(大同米) 9백 70석(石) 영(零), 순천(順天)의 첨재미(添載米) 1백 57석 영, 잡비미(雜費米) 58석 영을 합한 미 1천 1백 87석을 실은 배 1척(隻)이 수침(水沈)되어 본부(本府)의 풍도(楓島)에 멈춰있는데 곡물이 거의 다 썩었습니다. 그리하여 그 곡절을 사문(查問)하였더니, 군산진(群山鎭)에서부터 배 밑에 물이 스며들어 겨우 전진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해도(該島)는 본부(本府)와는 아주 멀리 떨어져 있고 민호(民戶)가 매우 적어 습미(濕米)를 나누어 주기가 몹시 어렵습니다. 또 증미(拯米)가 썩어서 먹을 수 없는 것을 분급(分給)하지 못하는 것은 법전(法典)에 기재되어 있기에 감히 마음대로 할 수 없으니, 묘당에서 품지하여 분부하기를 청한다 하였습니다. 이는 치패(致敗)된 곳의 증미와 다르고 배에 물이 스며들어 곡물이 썩게 된 것이며 조그마한 먼 섬에 멈춰있으니 증미의 예(例)로 민간(民間)에 분급(分給)해서는 옳지 않습니다. 부러 놓은 곡물을 다시 해부(該府)에서 완전히 썩고 곡수(斛數)의 다과(多寡)를 구별하여 백성들의 여론에 따라 값을 정해 발매(發賣)하고, 감색(監色)·선주(船主)·사격(沙格)에 대해서는 격식을 갖추 등문(登聞)하는 일이 해청(該廳)에서 있기를 기다려 복계(覆啓)하겠다고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답하였다.

司啓曰，卽見水原留守徐英淳狀啓則以爲，興陽大同米九百七十石零，順天添載米一百五十七石零，雜費米五十八石零，合米一千一百八十七石所載船一隻，水沈止泊於本府楓島，而穀物舉皆腐爛，故查問其委折，則已自群山鎭，船底滲漏，僅得前進云，而該島，處本府絕遠，民戶甚少，濕米分俵，極爲難便，且拯米之腐爛，不可食者，勿爲分給，載在法典，不敢擅便，請令廟堂稟旨分付矣，此與致敗處拯米有異，以船之滲漏，致穀之腐爛，而止泊於叢爾遠島，則不可以拯米

例, 分給於民間, 卸下穀物, 更令該府, 區別完腐斛數之多寡, 從民論定價發賣, 至於監色船主沙格, 待具格登聞, 自當有該廳覆啓之意, 分付, 何如, 答曰, 允.

<비변사등록 240책, 철종 4년 1853년 10월 20일(음)>

경제/재정

水原의 支放 不足條를 給代하기를 청하다

○ 비변사에서 아뢰기를, “수원유수 이학수(李鶴秀)가 보고한 것을 보니, 죽산(竹山) 소재 모미(耗米) 탕감조(蕩減條) 68석 영(零)과 맹산(孟山) 모미 부족조(不足條) 3석 영, 본영 소속 5개 고을의 남한산성 향조(餉租)에 해마다 가분(加分)하여 지방(支放)에 입용(入用)하는 것의 금년 감축미 1백 45석 영, 호남 상진곡에서 연례로 추이해 오는 모미 7백 10석은 구포(舊逋)를 새로 준비하기 전에는 금년 조를 마련해 보낼 방법이 없다고 하면서 위항의 부족 모미 도합 9백 77석 영을 숫자대로 획하하여 지방을 보충하게 해 달라고 하였습니다. 지방을 급대(給代)하는 것이 비록 연례가 되어 획급하지 않을 수는 없더라도 죽산과 맹산에서 탕감하여 부족하게 된 모조 71석 영은 매년 획급하는 것이므로 호서에 소재한 본사의 회록곡(會錄穀) 모조에서 취용하게 하소서. 5개 고을의 가분모 부족조는 여러 도에 대해 이미 금지하였으니 어찌 일일이 급대할 수 있겠습니까? 호남의 상진곡은 금년의 추용모(推用耗)로 이 곡식을 대신하기를 청하여 이미 변통하였으므로 더더욱 시행을 허락해서는 안 됩니다. 내버려 두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답하였다.

司啓曰, 卽見水原留守李鶴秀所報則以爲, 竹山所在耗米蕩減條六十八石零, 孟山不足耗米三石零, 本營屬五邑南漢餉租, 逐年加分, 入用支放者, 而今年減縮米一百四十五石零, 湖南常賑穀年例推來耗米, 爲七百十石, 而舊逋新備之前, 今年條則無以作送云, 上項不足耗米, 合九百七十七石零, 準數劃下, 充補支放爲辭矣, 支放給代, 雖成年例, 不可不劃給, 而竹山孟山蕩減, 不足耗七十一石零, 係是每年劃給者, 以湖西所在本司穀會錄耗中, 許令取用, 至於五邑加分耗不足, 則諸路既已防塞, 何可一一給代, 而湖南常賑穀, 只以今年推用耗, 請代此穀, 入於變通之後, 尤無以許施, 置之何如, 答曰, 允.

<비변사등록 241책, 철종 5년 1854년 09월 05일(음)>

경제/재정

京畿監司 李埈가 청한 대로 京畿道 大同米 2천섬을 劃下할 것 등을 청하다

○ 비변사에서 아뢰기를, “경기감사 이우(李埈)의 장계에 이르기를 ‘본영의 저치미(儲置米)는 선혜청에서 연례로 획급한 5천 석 안에서 6백 석은 수원(水原)과 광주(廣州)에 연례대로 획급하고, 6백 석은 본영의 장사(將士)들의 급여로 획급하며, 양주(楊州) 등 세 고을은 그 고을의 대동(大同)을 영구히 전량을 획급하기로 한 것이 또 1천 여 석이 있으니, 남은 수량은 2천 6~7백 석에 지나지 않는데, 이것으로 여러 고을에 분배하면 매년 부족하여 걸핍하면 추가로 내려주게 되는데 작년 가을까지 추가로 내려준 것이 이미 3천 7백 60여 석이 되고 또 겨울 석 달 동안 응당 내려주어야 할 것이 있으므로, 추가로 내려주는 것을 합계하면 거의 5천 석에 가깝습니다. 저치전(儲置錢)으로 말하면, 5천 냥을 계축년(癸丑年: 철종 4, 1853)부터 호조에서 이부(移付: 넘겨줌)하였으니 본영의 세입(歲入)은 겨우 5천 냥이 될 뿐인데 금년 것 가운데 4천 냥은 이미 미리 내려주었으므로 지금 추심할 수 있는 것은 1천 냥뿐이고 또 본영에서 추가로 내려줄 것이 있으므로 마땅히 갚아야 할 것을 제하면 거의 남는 것이 없으니 앞으로 영읍(營邑)의 허다한 수용(需用)에 손을 댈 것이 없습니다. 그러

니 본도의 대동미 가운데에서 2천 석 한하고 별도로 획하하고 또 저치전 5천 냥을 빌려주어 안배해서 경비로 들어가야 할 것을 갚고 저치전을 추가로 내려준 것을 갚도록 묘당에서 품처하게 하소서.’ 하였습니다. 저축미를 걸땃하면 추가로 내려달라고 하고, 저치전을 걸땃하면 빌려달라고 하는 것은 기보 <삼보[三鎭]>가 지탱하기 어려운 폐단이고 선혜청에서 곤란을 받는 단서입니다. 진실로 방백으로 하여금 자신의 일로 간주하고 몸소 장부를 들고서 철저하게 조사하게 한다면 어찌 이와 같을 리가 있겠습니까? 완전히 남의 일 보듯이 하고 영읍(營邑)의 아전들이 농간을 부리는 데에 맡겨 두고 끝내 한다는 일은 다만 우러러 경비를 번거롭게 청하는 것뿐입니다. 지금 이 장계에서 청한 것은 의당 엄히 거절해야 하지만, 다만 도신이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당면한 사세가 진실로 급급하므로 비록 한결같이 요청한 대로 시행하게 하지 않을 수 없으나 이는 계속 잇대기 어려운 정사(政事)일 뿐 아니라 사체로 헤아려 보더라도 결코 매번 이것만 믿고 바로잡을 생각하지 않아서는 안 되니 조사(措辭)하여 신칙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답하였다.

司啓曰，卽見京畿監司李埈狀啓，則以爲本營儲置米，自惠局，年例所劃五千石內，六百石，水原廣州例劃六百石，本營將土支放劃給楊州等三邑之以該邑大同恒定沒劃者又爲一千餘石，則餘數不過爲二千六七百石，而以此分排於列邑，每患不足，輒致加下，至去年秋等加下，已爲三千七百六十餘石，又有冬三朔應下者，則合計加下，殆近五千石，以儲置錢言之，五千兩自癸丑移付戶曹，則本營歲入，只爲五千兩，而今年條中四千兩，已爲預下，今所當推者，止於一千兩，又有本營加下，除其當報，殆無餘存，將無以藉手於營邑之許多應用，就本道大同米中限二千石，別爲劃下，又以儲置錢五千兩挪貸排用，以報經費應用，以報儲置加下事，請令廟堂稟處矣，儲置之輒稱加下，輒請挪貸，此爲畿輔難支之弊，惠廳受困之端也，苟使方伯，看作已事，親執文簿，到底查櫛，則安有如是之理也，全然越視，一任營邑吏輩所奸弄，而畢竟能事，只是仰煩經費而已，今此狀請，固當嚴防，而第道臣按莅，屬耳目下事勢，則誠汲汲，雖不得不一依所請許施，而又不但爲難繼之政，揆以事體，決不當每每恃此，而不思所以矯革之方，措辭提飭，何如，答曰，允．

<비변사등록 242책, 철종 6년 1855년 01월 12일(음)>

경제/재정

湖西에 있는 備邊司관할 會錄耗 71섬을 水原에 劃給할 것을 청하다

○ 비변사에서 아뢰기를, “수원판관(水原判官) 김병집(金炳湊)이 보고한 것을 보니, ‘죽산(竹山)에 있는 모조의 쌀로서 탕감한 것 68석 영(零) 및 맹산(孟山)의 부족한 모조의 쌀 3석 영(零) 도합 71석 영을 전례에 따라 획급하여 급여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소서.’ 하였습니다. 급여할 것을 대신 지급하는 것은 이미 연례가 되었으니, 호서에 있는 본사에서 관리하는 곡식으로서 회록(會錄)한 모조 가운데에서 이 수량에 의하여 가져다 쓰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답하였다.

司啓曰，卽見水原判官金炳湊所報，則竹山所在耗米蕩減條六十八石零，及孟山不足耗米二石零，合七十一石零，依例劃下，以爲支放之地，爲辭矣，支放給代，已成年例，以湖西所在本司句管穀會錄耗中，依此數，許令取用，何如，答曰，允．

<비변사등록 242책, 철종 6년 1855년 09월 02일(음)>

경제/재정

外帑庫의 封不動錢을 兩南에 作穀하여 두고 水原에서 耗條를 가져다 쓰게 할 것을 청하다

비변사에서 아뢰기를, “수원유수 김도희(金道喜)의 장계를 보니, ‘본부에서 비용으로 내려주는 것이 나날이 다달이 증가하여 각 창고에 남아있는 것이 명목과 실체가 부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외탕고(外帑庫)의 봉부동(封不動) 돈은 곧 감영의 각 창고 가운데 해마다 3천 냥을 가져와 누적한 것인데, 근래에 간사한 습관이 점점 불어나서 남은 저축이 3천 냥을 채우지 못하기 때문에 기한을 정해서 숫자에 맞추어 거두어들여 이미 봉해두었습니다. 정유년(丁酉年:현종3, 1837)과 기유년(己酉年:현종15, 1849)의 사례에 따라 1만 냥을 한도로 양남(兩南)에서 환곡으로 만들어 전부 나누어주고 모조를 취하여 정퇴와 탕감하는 것에 들어가지 말도록 하면, 매년 잉여로 들어가는 1천 냥을 얻을 수 있으니, 이것으로 공용(公用)에 나누어 배정하는 일을 묘당에서 글을 지어 행회(行會)하도록 하십시오.’ 하였습니다. 양남에는 이미 본부에서 관장하는 곡식이 있고, 지금도 역시 이 수량으로 절반을 나누어주고 양도(兩道)에 상정가(詳定價)로 곡식을 만들어서 화성(華城)의 병진년(丙辰年:철종7, 1856) 외탕곡(外帑穀)으로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 전부 나누어주고 모조를 취하되 정퇴와 탕감하는 것에 들어가지 말도록 하여 매년 모조를 만드는 절차를 본부에서 의견을 교환하여 시행하도록 할 내용을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답하였다.

司啓曰, 卽見水原留守金狀啓, 則以爲本府用下, 日加月增, 各庫留在, 名實不符, 而外帑庫封不動錢, 卽營各庫中歲取三千兩積累者, 而挽近奸習漸滋, 餘儲不滿三千, 故刻期準捧, 已爲封置, 依丁酉己酉例, 限一萬兩作還於兩南, 盡分取耗, 勿入停蕩, 則每歲剩入, 可得一千兩, 以此分排公用事, 請令廟堂措辭行會爲辭矣, 兩南既有本府句管穀, 今亦以此數分半, 詳定作穀於兩道, 以華城丙辰外帑穀作名, 而自今年盡分取耗, 勿入停蕩, 每歲耗作之節, 自本府往復施行之意, 竝爲分付何如, 答曰, 允.

<비변사등록 243책, 철종 7년 1856년 01월 18일(음)>

경제/재정

廣州의 還耗 절반을 蕩減하고 부족한 支放은 달리 措處하게 할 것을 청하다

비변사에서 아뢰기를, “전교하기를, ‘인릉(仁陵)을 옮겨 장사지내어 아주 편안하게 하였으니 슬픈 마음과 다행스러운 생각이 번갈아 간절합니다. 해마다의 큰 역사(役事)에 경기 백성들이 힘을 다하여 부지런하였으니 이미 가없는 생각이 그지없는데, 게다가 이 교하(交河)·광주(廣州)의 두 곳에서는 그 피곤한 것이 다시 어떠했겠는가? 금년의 환곡의 모조는 절반을 탕감하고, 상여가 지나가는 길에 있는 파주(坡州)·고양(高陽)·양주(楊州)·시흥(始興)·과천(果川)의 5개 고을은 5분의 2를 탕감하며, 그 나머지 여러 고을은 3분의 1을 탕감하여 조정에서 민휼(憫恤)히 여기는 뜻을 보이도록 할 것을 도신에게 분부하여 서둘러서 통지하도록 하라.’ 고 명령하셨습니다. 이번에 내린 은혜로운 윤음은 실로 경기도 백성을 진념(軫念)하는 전례 없는 성념(聖念)에서 나왔으니, 덕의(德意)가 이른 것을 그 누구인들 삼가 우리러 찬송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방금 당해 감사 이원명(李源命)이 보고한 것을 보니, ‘모조를 취하여 급여를 주는 곡식의 수량이 본래 적지 않은데 지금 만약 일체로 탕감하면, 줄어든 수량은 형세상 장차 다른 것을 대신 지급하는 것으로 채워서 보태야 할 것입니다. 전에 정퇴할 때에 급여로 지급한 모조는 거론하지 않았지만, 정퇴와 탕감은 다름이 있으니 감히 함부로 하지 못하겠습니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환곡의 모조를 탕감하는 석수(石數)와 모조를 취하여 급여를 주는 석수를 구별하여 보고하도록 하였으니, 각 고을에 탕감하는 모조가 벼를 합해서 8천 55석 영(零)이면 그 가운데에서 급여 조목이 5천 2백 12석 영(零)이 되었습니다. 근래에 경기도 고을의 곡식장부가 포핍한 것이 잇달고

매년(排年)으로 탕감하는 것이 많이 불어나서, 매년 양주(楊州) 등 고을에서 포함한 모조에 들어가는 것을 원래의 곡식으로 본전을 깎아서 다른 것으로 대신 지급한 것이 4천 3백 여석이나 되도록 많으니, 몇 년 지나지 않아 경기도 내의 곡식장부는 형세상 장차 텅 비어서 나머지가 없게 될 것입니다. 일의 형세를 생각하면 그지없이 걱정되고 한탄스러운데, 지금 만약 또 급여로 가져다 쓸 조목을 탕감한 것 가운데에서 마련하도록 섞어 넣으면, 다른 것으로 대신 지급할 것은 과연 손을 써서 조치할 곡식이 없을 것입니다. 또 급여 조목은 비록 정퇴할 때에 애초부터 거론하지 않았지만 이미 그 전례가 있었으니, 충융청의 군향곡과 환곡 및 각 고을에서 급여로 가져다 쓸 것 이외의 모조는 하교(下敎)에 의하여 수량을 나누어 탕감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성(華城)**의 곡식을 정퇴나 탕감하는 것에 넣지 말도록 한 것은 본래 정조(正祖)의 교지를 받은 것이 있었고, 이 밖의 송도유영(松都留營)과 강화(江華)와 교동(喬桐)도 역시 상여가 지나가는 길에 가까운 고을과는 다름이 있으니, 모두 그대로 두겠습니다. 광주(廣州) 환곡의 모조 경우는 비록 급여의 수요에 모두 다 쓰는 것이지만, 이것은 절반을 탕감한 뒤에 급여의 부족을 다른 곳에서 조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경기 감영 및 각 당해 영(營)에 분부하여 의심스러워 마음이 어지럽지 않게 거행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답하였다.

司啓曰, 傳曰, 仁寢緬奉萬安, 愴幸交切, 連年大役, 畿民之竭力奔走, 已極矜念, 況此交廣兩境, 其所被困, 當復如何, 今年還耗, 折半蕩減, 靚路所經坡州·高陽·楊州·始興·果川五邑, 五分二, 其餘諸邑, 三分一蕩減, 以示朝家憫恤之意事, 分付道臣, 使之星火知委事, 命下矣, 今下恩綸, 寔出於軫畿民曠絕之聖念, 德意所暨, 孰不欽仰攢頌, 而卽見該監司李源命所報, 則以爲取耗支放之穀, 其數本自不少, 今若一體蕩減, 則見減之數, 勢將給代充補, 在前停退之時, 支放耗條, 不爲舉論, 而停蕩有異, 不敢擅便爲辭, 故更以還耗蕩減, 石數與取耗支放石數, 使之區別報來, 則各邑蕩減耗, 合租爲八千五十五石零, 就其中支放條爲五千二百十二石零矣, 近來畿邑穀簿, 欠逋相續排蕩滋多, 每年楊州等邑入逋耗, 以元穀割本給代者, 而至爲四千三百餘石之多, 則不出幾年, 畿內穀簿, 勢將罄盡無餘, 言念事勢, 萬萬悶歎, 而今若又以支放取用條, 混入磨鍊於蕩減之中, 則其所給代, 果無着手措劃之穀, 且支放條, 雖在停退時, 初不舉論, 已有其例, 摠廳餉還及各邑支放取用者外, 耗條使之依下敎分數蕩減, **華城**穀之勿入停蕩, 本有正廟受敎, 而外此松營江華喬桐, 亦有異於靚路近邑, 竝置之, 至於廣州還耗, 雖係盡是支放之需, 然此則折半蕩減後, 支放不足, 從他措處之意, 分付畿營及各該營, 俾無疑眩舉行之地何如, 答曰, 允.

<비변사등록 243책, 철종 7년 1856년 10월 27일(음)>

경제/재정

左議政 金道喜가 화성의 외탕고 문제 등에 대해 논의하다

○ 오늘 7월 29일 대신과 비변사 당상을 인견하여 입시하였을 때에, 좌의정 김도희(金道喜)가 아뢰기를, (….) 또 아뢰기를, “신이 **화성(華城)**에서 갈려 돌아온 지 얼마 안 되어 아뢴 것이 있습니다. **화성** 한 관청의 제도와 시설은 비록 작은 글의 말단적인 것이지만 자주 임금의 결재를 거쳐서 후일 준수하는 도리는 진실로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정조(正祖) 병진년(丙辰年:정조20, 1796)에 **화성**이 유수영(留守營)으로 승격된 이후 땅을 사서 황해도 평산(平山) 지역에 둔토(屯土)를 두고 백성을 모집하여 부역을 면제하고 외탕고(外帑庫)에 부쳐 세금을 거두었습니다. 신유년(辛酉年:순조1, 1801)에 분봉상시(分奉常寺)로 이속시켜서 화녕전(華寧殿) 및 능(陵)·원(園)에 제사하는 물품을 거행하는 수요와 부역을 경감하며 탈

(頃)이 난 것을 되돌리는 등의 절도는 한결같이 연품(筵稟)에 따라 법식을 정하였습니다. 정해년(丁亥年:순조27, 1827)에 또 본영의 소관 소미(小米) 1백석을 환곡으로 하여 본 둔토에 부쳤습니다. 이번 봄에 전 해백(前海伯:전 황해감사)의 장청으로 인하여 **화성**으로 모두 되돌려 보내고 둔토 역시 그 속에 들어갔는데 둔민(屯民:둔토 백성)은 이미 본토(本土)의 환곡을 받고 또 본읍(本邑)의 환곡을 받으니, 이는 겹쳐 받음이고 겹쳐 부역하는 것이어서 형세가 장차 이산되고야 말 것입니다. 신이 영에 있을 적에 당해 도에 관문으로 신척하였으나 일이 판하(判下)에 관계되어 새 법식으로는 마음대로 편하게 하기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데 사세가 혹은 그러합니다. 오궁(五宮)의 소속을 생각해 보면 이미 제향 수요의 물품을 소중히 하여 이전대로 탈면(頃免)하였으니 화녕전과 능·원에 제사하는 물품을 거행하는 소중함은 오궁과 다를 것이 없으나, 이 둔토가 응탈(應頃)을 받지 못한 것은 마땅히 홀로 탄식함이 있을 것입니다. **화성**의 궁 또한 오궁의 규례로 하여 이전처럼 침탈하지 말 것을 도신에게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그리하라 하였다. (…)

今七月二十九日大臣備局堂上引見入侍時, 左議政金所啓, (…)
又所啓, 臣於**華城**遞歸屬耳, 有仰達事矣, **華城**一府之制置施設, 雖微文末節, 動經睿裁, 在後遵守之道, 固不敢放忽矣, 正廟丙辰**華城**陞營之後, 買土設屯於黃海道平山地, 募民除役, 付之外帑庫收稅, 辛酉, 移屬分奉常寺, 以爲華寧殿及陵園所祭品舉行之需, 鑄役頃還等節, 一遵筵稟定式, 丁亥, 又以本營句管小米一百石作還, 付之本屯矣, 今春因前海伯狀請, 均還**華城**屯, 亦入其中, 屯民既受本屯之還, 又受本邑之還, 則是疊受也, 疊役也, 勢將離散而後已, 臣於在營時, 關飭該道, 則以事係判下, 新式有難擅便云, 事勢容或然矣, 第念五宮所屬, 既以享需膳物所重, 依舊頃免, 則華寧殿與陵園祭品舉行之所重, 與五宮無異, 此屯之未蒙應頃, 宜有向隅之歎, **華城**屯亦爲五宮例, 如前勿侵之意, 分付道臣何如, 上曰, 依爲之. (…)

<비변사등록 243책, 철종 7년 1856년 07월 29일(음)>

경제/재정

水原의 屬邑에 분산되어 있는 南漢餉租를 모두 분급해서 耗條를 취하게 할 것을 청하다

비변사에서 아뢰기를, “**수원판관(水原判官)** 이인설(李寅高)이 보고한 것을 보니, ‘남한산성의 향조(餉租) 1만 3천 3백 70여 석은 급여로 부족하니 추가로 나누어 주어 모곡을 취하였습니다. 갑인년(甲寅年:철종5, 1854)까지 각 도(道)에서 군향곡을 추가로 나누어 주지 못하게 한 일을 행회(行會)한 것이 있었으니, 모곡을 가져다 쓰는 것이 이어서 감축되어 어쩔 수 없이 탕고(帑庫)에 봉부동(封不動) 가운데에서 보수로 지급하는 것은 진실로 걱정이 됩니다. 남한산성의 향조를 속읍(屬邑)에 나누어 준 것을 전례에 따라 모두 다 나누어 주고 모조를 취하여 급여의 부족을 채우도록 해주십시오.’ 하였습니다. 나누어 주고 남겨두는 법률의 뜻이 근래에 점점 줄어들어 없어져서 각 도(道)의 영(營)과 고을에서 법식을 따르지 않는 것이 많기 때문에, 추가로 만들고 추가로 나누어 주는 등의 폐단을 연전(年前)에 거듭 밝혀서 막아서 금지하였습니다. 그런데 당해 부(府)에서 매년 추가로 나누어 주기를 요청하는 경우는 수량이 그리 많지 않고 급여에 보충해 쓰는 것이니, 원래의 모조와 같은 것으로 보아 여러 해 동안 시행한 것을 달리 조처를 취할 수 없습니다. 그 때에 연석에서 아뢰는 것을 보니, 혹은 참으로 급박하여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었고 또한 전혀 융통성을 부리지 않기도 어렵다고 하였는데, 바로 당해 부(府)에서 준비한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탕고를 이것으로 인하여 가져다 쓰는 것은 더욱 매우 걱정스러우니, 지금부터 남한산성의 향조는 예전처럼 시행하는 내용을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답하였다.

司啓曰, 卽見水原判官李寅高所報, 則以爲南漢餉租一萬三千三百七十餘石, 以支放不足, 加分取耗矣, 至甲寅, 各道餉穀不得加分事, 有所行會, 則耗穀取用, 仍爲減縮, 不得已以帑庫封不動中, 給代酬用, 誠爲可悶, 南漢餉租, 分在屬邑者, 依已例盡分取耗, 以充支放不足爲辭矣, 分留法意, 近漸掃如, 各道營邑, 多不遵式, 故所以加作加分等弊, 年前有申明防禁, 而至於該府每年加分之請, 數甚不多, 支放補用則視同元耗, 行之多年, 他無容措矣, 觀於其時筵奏, 或有眞箇迫不得已之事情, 亦難全無闊狹云者, 正爲該府準備語, 而帑藏之因此取用, 尤極可悶, 自今南漢餉租則依前施行之意, 分付何如, 答曰, 允.

<비변사등록 243책, 철종 7년 1856년 08월 21일(음)>

경제/재정

備邊司 관할 湖西穀 會錄耗 68섬을 水原에 劃給할 것을 청하다

비변사에서 아뢰기를, “수원판관(水原判官) 이인설(李寅高)이 보고한 것을 보니, ‘죽산(竹山)에 있는 모미(耗米)를 탕감한 조목 68석 영(零)을 규례에 따라 획급하여 급여로 쓰도록 해주십시오.’ 하였습니다. 급여를 다른 것으로 지급하는 것은 이미 연례가 되었으니, 호서(湖西)에 있는 본사(本司)에서 관장하는 곡식의 회록(會錄)한 모조 가운데에서 이 수량에 의거하여 가져다 쓰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답하였다.

司啓曰, 卽見水原判官李寅高所報, 則竹山所在耗米蕩減條六十八石零, 依例劃下, 以爲支放之地爲辭矣, 支放給代, 已成年例, 以湖西所在本司句管穀會錄耗中, 依此數許令取用何如, 答曰, 允.

<비변사등록 243책, 철종 7년 1856년 09월 02일(음)>

경제/재정

左議政 金道喜가 老衰하여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자신을 遞差하는 문제 등을 논의하다

오늘 11월 20일 대신과 비변사 당상을 인견하여 입시하였을 때에, 좌의정 김도희(金道喜)가 아뢰기를, (….) 또 아뢰기를, “광주유수(廣州留守) 이돈영(李敦榮)이 보고한 것을 보니, ‘이번에 인릉(仁陵)을 천봉(遷奉)할 때에 본부(本府)의 군향곡을 보관하여 비축한 것 가운데, 결소(結所)에 빌려준 조목의 돈이 6천 1백 79냥이고, 환곡의 모조를 쌀로 환산하여 탕감한 것과 급료 조목의 돈이 3천 5백 79냥이니, 즉시 획급하여 군향곡이 빠져서 모자람이 없게 하고 급료도 역시 규례에 따라 지급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하였습니다. 두 조목의 요청은 지금 다른 것으로 지급하지 않을 수 없는데, 달리 방편으로 쓸 대책이 없습니다. 연전(年前)에 호조에서 주전소(鑄錢所)를 설치할 때에 화성(華城)의 외탕고(外帑庫)의 봉부동(封不動 돈 1만 냥을 빌려간 것은 즉시 갚아야 할 조목입니다. 외탕고의 돈의 소중함은 다른 것과는 각별하니 본래 마땅히 수량대로 도로 갚도록 해야 하지만, 갑오년(甲午年: 순조 34, 1834)의 인산(因山)과 병오년(丙午年: 헌종 12, 1846)의 천봉 때에 이미 이 돈을 옮겨서 획급한 전례가 있으니, 그 가운데에서 8천 냥은 광주(廣州)에 획급하고, 6천 냥은 군향전(軍餉錢)을 도로 보충하며, 빌려준 조목 2천 냥은 환곡의 모조를 탕감한 조목으로 옮겨서 보충하되, 부족한 1천 5백 여 냥은 다시 본부(本府)의 진여곡(賑餘穀) 가운데에서 이 수량에 따라 돈으로 잡아서 가져다 쓰도록 하고, 나머지 2천 냥은 화성에 도로 부쳐서 즉시 봉부동에 수량을 보태도록 하는 내용을 함께 각 영(營) 및 각 아문에 아울러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그리하라 하였다. (….)

今十一月二十日大臣備局堂上引見入侍時, 左議政金所啓, (….) 又所啓, 卽見廣州留守李敦榮所

報，則以爲今番仁陵遷奉時，本府餉穀留儲中結所挪貸條錢，爲六千一百七十九兩，還耗折米蕩減支放條錢，爲三千五百七兩，請卽劃下，俾餉穀無虧欠，而支放亦爲如例上下爲辭矣，兩條所請，不可不趁今給代，而他無方便之策，年前戶曹設鑄時，**華城**外帑庫封不動錢貸去一萬兩，卽當報條也，帑錢所重，與他自別，固當使之如數還報，而甲午因山，丙午遷奉時，已有此錢移劃之例，就其中八千兩劃給廣州，六千兩則還充餉錢，挪貸條二千兩則移補還耗蕩減條，其不足一千五百餘兩，更以本府賑餘穀中，依此數，使之執錢取用，所餘二千兩，還付**華城**，卽令添數於封不動之意，竝爲分付於各營及各該衙門何如，上曰，依爲之（…）

<비변사등록 243책, 철종 7년 1856년 11월 21일(음)>

경제/재정

備邊司 管轄 嶺南 會錄耗 68섬을 水原에 劃給할 것을 청하다

○ 비변사에서 아뢰기를, “**수원관관(水原判官)** 이인설(李寅高)이 보고한 것을 보니, 죽산(竹山)에 있는 모조의 쌀을 당감한 것 68석 영(零)을 예에 따라 획급하여 지방(支放)으로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지방을 대신 지급하는 것은 연례(年例)가 되었으니, 영남에 있는 본사(本司)에서 관리하는 곡식으로서 회록(會錄)된 모조 가운데에서 이 숫자에 맞게 획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답하였다.

司啓曰，卽見**水原判官**李寅高所報，則以爲竹山所在耗米蕩減條六十八石零依例劃下，以爲支放之地爲辭矣，支放給代便成年例，以嶺南所在本司句管穀會錄耗中，準此數劃給，何如，答曰，允.

<비변사등록 244책, 철종 8년 1857년 09월 06일(음)>

경제/재정

嶺南의 常賑穀이 부족하므로 宜惠廳 除留穀을 分給하고 耗條를 會錄하게 할 것 등을 청하다

○ 비변사에서 아뢰기를, “경상감사 조병준(趙秉駿)이 보고한 것을 보니, 상평청과 진휼청의 각종 곡식은 본래 넉넉하지 않아 각종 지출에 점차 본전을 깎아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물에 떠내려가고 빠져죽은 사람에 대한 홀전(恤典)이 거의 1만 여 석에 이르러 여름 분 회안(會案) 가운데 번포(反浦)와 수봉 정지 등 명목을 제외하면 실제 남아있는 상평청과 진휼청의 각종 곡식은 3천 9백 72석이고, 별획미(別劃米)는 7백 66석입니다. 다만 지출해야 할 것을 들어 말하면, 물에 떠내려가고 빠져죽은 사람에게 준 원획(元劃)과 별획(別劃)의 홀전을 합계하면 겉곡식이 7~8천 석이요, 노비공(奴婢貢)의 급대미(給代米)가 1천 8백 21석이며, **수원(水原)**의 모조를 제외하고 대신한 쌀 7백 석을 매년 상평청과 진휼청의 곡식을 돈으로 바꾸는 것은 연례로 되었습니다. 비록 곡식을 회부(會付)하였다 하더라도 전혀 남은 수가 없고, 많고 적음이 현저히 달라 배정할 길이 없으니, 신수곡(信需穀) 가운데에서 쌀로 환산하여 2만 5천 석을 특별히 옮겨 붙이도록 하여 별획을 모두 나누어 주고 회록하기를 청한다 하였습니다. 환곡의 명칭에 각기 의의가 있어 쓰이는 곳에 따라 구별하는데, 근래 뒤섞임이 막심하고 문부(文簿)가 혼란스럽습니다. 지금 상평청과 진휼청의 한 가지 일로 말하면, 번포와 수봉을 정지한 것을 모두 이 곡식을 유용하여 사용해야 할 때에 들여 다 쓰지 못하게 하니, 일이 허술함은 극심합니다. 다만 현재 원획과 별획의 홀전 및 앞으로 늘 사용할 것이 아닌 것을 예비하는 자원이 없을 수 없는데, 신수곡을 또 상평청과 진휼청이 쓸어버린 것처럼 전혀 방지함이 없다면 더욱 말이 되지 않습니다. 선혜청에서 관리하는 제류곡(除留穀) 가운데에서 2만 석 한도로 마련하게 하여 전부를 나누어 주고 모든 모조를 회록하

며, 곡식 장부 가운데 상평청과 진흥청처럼 잘못된 것은 금년 연말의 책자부터 비롯하여 일일이 바로잡으라고 행회(行會)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희한다고 답하였다.

司啓曰, 卽見慶尙監司趙秉駿所報, 則以爲, 常賑各穀自來不敷, 各樣上下漸致割本, 而昨年漂澣恤典殆至一萬餘石, 夏等會案中, 除却反逋停捧等名色, 則實留常賑各穀, 爲三千九百七十二石, 別劃米爲七百六十六石, 就以當下條言之, 漂澣元別恤典, 通計皮穀爲七八千石, 婢貢給代米一千八百二十一石, 水原除耗代米七百石, 每以常賑穀作錢, 年例已成, 雖使會付之穀, 蕩其餘數, 多寡懸殊, 排比無路, 就信需穀中折米二萬五千石, 特許移付, 別劃盡分會錄爲辭矣, 穀名各有意義, 所用從以區別, 而挽近混穀莫甚, 文簿錯亂, 今以常賑一事言之, 反逋停捧之竝以此穀攪挪, 以致無以入用於當用之時, 事之疎虞極矣, 第念目下元別恤典及來頭不恒之用, 不可無備豫之資, 而信需穀若又如常賑之蕩無防限, 則益不成說, 以惠廳勾管除留穀中, 限二萬石許令推移, 盡分全耗會錄, 凡穀簿中, 混錯如常賑者, 自今年歲末成冊爲始, 一一釐正之意, 行會, 何如, 答曰, 允.

<비변사등록 244책, 철종 8년 1857년 10월 29일(음)>

경제/재정

西關을 修理할 物力으로 北關의 差需穀 8천섬 등을 사용하게 할 것을 청하다

비변사에서 아뢰기를, “서궐(西關)을 수리하는 데 드는 재력(財力)을 구획(區劃)하는 일에 대해 지난번 연석에서 아뢰었습니다. 삼세은(蔘稅銀) 1만 2천 냥을 작전(作錢)한 6만 냥을 이번 행차의 세전(稅錢) 2만 7천 냥, 백사(白絲) 양년(兩年) 정무전(停貿錢) 1만 2천 4백 여냥, 화성(華城)의 탕전(帑錢) 2만 냥과 함께 지금 연속하여 호조의 수리소(修理所)로 수송(輸送)하고 있으나, 북관곡(北關穀) 중에서 차수곡(差需穀) 8천 석, 구치곡(久置穀) 3천 석의 절미(折米) 도합 1만 1천 석을 획송(劃送)하여 추봉(秋捧) 때 집전(執錢)하여 취용(取用)하게 하라고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희한다고 답하였다.

司啓曰, 西關修理財力區劃, 前筵有仰達者矣, 蔘稅銀一萬二千兩, 作錢爲六萬兩, 竝與今行稅錢二萬七千兩, 白絲兩年停貿錢一萬二千四百餘兩, 華城帑錢二萬兩, 今方連續輸送戶曹修理所, 而北關穀中差需穀八千石, 久置穀三千石, 折米合一萬一千石劃送, 趁秋捧時執錢取用之意, 分付何如, 答曰, 允.

<비변사등록 246책, 철종 10년 1859년 09월 11일(음)>

경제/재정

龍仁 所在 華城 校吏의 料米를 加下하여 劃給하도록 청하다

비변사에서 아뢰기를, “경기감사 홍재철(洪在喆)이 보고한 바를 보니 용인현령(龍仁縣令) 홍봉주(洪鳳周)의 첩정을 낱알이 열거하면서 ‘화성 교리(校吏)의 요미(料米)를 으레 본현 균역청곡(均役廳穀) 가운데에서 해마다 수송했는데 원래 곡식이 넉넉하지 못하여 갑인년(甲寅年: 철종5, 1854)에서 지금까지 가하(加下)한 것이 모두 6백 29석 영입니다. 만약 지금 변통하지 못하면 반드시 고을이 없어진 다음에야 그칠 것입니다. 상항의 가하미(加下米)를 도내에 있는 균청곡(均廳穀) 가운데 준절(準折)하여 획보(劃報)한 후에 또한 7백 석에 한하여 해현(該縣)에 더 보내주어 모곡을 취하여 응납(應納)하는 자원으로 삼게 하겠습니다.’ 고 하였습니다. 화성의 지방(支放)을 균곡의 모곡으로 수송하여 납부하는 것은 정식(定式)에 있어 지금 폐하여 없앨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갑인년에 가하한 처음부터 만약 청하여 얻었다면 모곡을 취하여 배용(排用)하는 데에 어찌 가하할 리가 있겠습니까. 도내의 균곡 가운데

데 6백 석 영을 준보(準報)한 후에 또 7백 석을 본현에 획부하도록 해도 및 해청에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희한다고 답하였다.

司啓曰, 卽見京畿監司洪在喆所報, 則枚舉龍仁縣令洪鳳周牒呈以爲, 華城校吏料米, 例以本縣均穀中逐年輸送, 而原穀本來不敷, 自甲寅到今加下, 合爲六百二十九石零, 若不及今變通, 畢竟無邑乃上項加下米, 以道內所在均廳穀中, 準折劃報後, 亦爲限七百石加送該縣, 俾作取耗應納之資爲辭矣, 華城支放之均耗輸納, 既有定式矣, 今不可廢却, 然而甲寅加下之初, 若爲請得, 則取耗排用, 豈有加下之理乎, 就道內均穀中六百石零, 準報後, 又以七百石劃付本縣之意, 分付該道及該廳, 何如, 答曰, 允.

<비변사등록 248책, 철종 12년 1861년 08월 26일(음)>

경제/재정

華城의 부족한 軍錢을 帑錢을 作穀하여 이자를 취해 補用하게 하기를 청하다

비변사에서 아뢰기를, “수원유수(水原留守) 김영근(金泳根)의 장계를 보니, ‘본부(本府)는 군정(軍丁)이 유리(流離)되어 절호(絶戶)가 되었거나 응탈(應頃)의 경우를 제외하면 남은 자가 거의 없습니다. 군포(軍布)를 대신 징수하는 것이 능봉(勒捧: 강제 수납)에 해당하는 것이지만 지방(支放)으로 쓰이는 것이므로 탕감해 주기도 어렵습니다. 이에 백성들의 실정을 참작해 헤아려서 1결 당 단지 1냥 씩 고르게 배정해서 거두어들여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족한 수량이 여전히 1천 6백여 냥이나 되니, 외탕고(外帑庫)의 봉부동전(封不動錢)을 1만 5천 냥에 한정해서 양호(兩湖)에서 환곡으로 만들어 전부 분급하여 모곡을 취하되 정탕(停蕩)하는 데에 넣지 말고 해마다 세입(歲入)으로 잡으면 1천 5백 냥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군전(軍錢)에 보충하도록 묘당(廟堂)에서 품처(稟處)해 주소서.’ 하였습니다. 민호(民戶)가 날로 빨빨이 흩어지는데 군액(軍額)은 그대로 있으므로 징수하는 것을 유독 원망하고 고통스럽게 여기는 것은 실로 당연한 형세입니다. 탕고전(帑庫錢)을 해마다 납입하고 해마다 분급하는 것이 한갓 빈 장부만 끼고 있는 지가 이미 오래되었으니, 이것을 환곡으로 만들어 저기에 함부로 거두어들이는 것을 보충하게 한다면 참으로 임시방편으로 시행하는 행정이 될 것입니다. 장계에서 청한 대로 시행하소서. 전결로 배정하는 한 가지 조항에 있어서는 갑자기 논의할 일이 아니니, 그대로 두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희한다고 답하였다.

司啓曰, 卽見水原留守金泳根狀啓, 則以爲本府軍丁, 除却流絶與應頃, 餘者無幾, 軍布替徵, 便是勒捧, 支放所需, 有難蠲減, 參量民情, 每結只以一兩式均排以捧, 而不足猶爲一千六百餘兩, 以外帑庫封不動錢限一萬五千兩, 作還於兩湖, 盡分取耗, 勿入停蕩, 每年歲入, 可爲一千五百兩, 以此充補於軍錢事, 請令廟堂稟處矣, 民戶日渙, 而軍額, 則自在, 偏苦冤徵, 勢所固然, 帑庫錢之歲入歲散, 徒擁虛簿, 其來已久, 以此作還, 補彼橫斂, 誠爲權宜之政, 依狀請許施, 至於結排一款, 此非遽爾議到之事, 置之何如, 答曰, 允.

<비변사등록 249책, 철종 13년 1862년 03월 23일(음)>

경제/재정

宗廟 薦新 鮎魚를 水原府에서 封進하도록 定式을 삼아 行會하겠다

○ 비변사에서 아뢰기를, “종묘에 천신(薦新) 하는 봉어를 봉진(封進)하는 곳을 옮겨 정하는 일을 삼가 연석에서의 교시를 받든 다음에 잘 생산되는 곳을 널리 찾아서 내년 월령(月令)부터 시작하여 수원부(水原府)에서 봉진하는 일을 정식(定式)으로 행회(行會)하는 내용

을 감히 아립니다.” 하니, 알았다고 답하였다.

司啓曰，宗廟薦新鮒魚封進所移定事，伏承筵教之後，廣探宜產處，自明年月令爲始，令水原府封進事，定式行會之意，敢啓答曰，知道.

<비변사등록 249책, 철종 13년 1862년 09월 10일(음)>

경제/재정

부족한 華城의 支放穀을 餉穀으로 移補하기를 청하다

○ 비변사의 계사에, “방금 수원유수 남병길(南秉吉)의 장계를 보니, ‘본부의 번미(番米)를 본색으로 도로 거두고, 거둘 이자를 모두 탕감해 준다면 어떤 형식으로든 채워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외탕고(外帑庫)의 세입(歲入) 3천 냡을 작년 겨울에 바로잡을 때 영남(嶺南)에 이획(移劃)하였으니 이 수효대로 급대(給代)해 주도록 묘당에서 품지하여 처리하게 해 주소서.’ 하였습니다. 군미(軍米)의 수를 나누고 돈으로 대신 내게 한 것만도 이미 백성을 편하게 해 주려는 정사에서 나온 것인데, 영속(營屬)들이 이런 흉년을 만나 돈으로 대신한다면 점점 오르는 곡물의 값을 수효대로 맞추지 못하는 것은 사세가 실로 그럴 것입니다. 그리고 영남에 이획해 준 봉장고(封樁庫)의 모조를 지금 갑자기 당장 도로 추이해 오게 하기는 어려우니 우선 본영의 향곡(餉穀) 중 1천 석을 방료(放料)에서 옮겨오게 하소서. 이 곡식은 해마다 보충하는 것이니 몇 해 안 되어 1천 석의 수를 채울 것입니다. 이렇게 행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답하였다.

司啓曰，卽見水原留守南秉吉狀啓則以爲，本府番米，本色還捧，所捧錢邊，一竝蕩滅，則不可不某樣充補，而外帑庫歲入錢三千兩，昨冬釐正時，移劃嶺南，準此數給代事，請令廟堂稟處矣，軍米之分數代錢，既出於便民之政，而營屬之值此歉歲代錢，无以準漸踊之穀，事勢良然，而封樁耗之移劃嶺南者，今難猝乍間還推以來，姑先以本營餉穀中一千石，移補於放料，此穀卽逐年添補者，不幾年當充千石之數，以此意行會，何如，答曰，允.

<비변사등록 250책, 철종 14년 1863년 10월01일(음)>

경제/재정

水原前留守 趙得林의 건의대로 庫封條는 廟堂을 거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다

전 수원유수(水原留守) 조득림(趙得林)이 장계(狀啓)를 올리기를, "포함을 조사해서 받아들이는 돈과 창고에 봉인해 넣은 향작미(餉作米)의 관리는 조정의 명령 없이 감히 마음대로 쓰지 못하는 것을 정식으로 삼아 밝힐 일입니다."하니,

전교하기를,"이번 계획은 참으로 원대한 계획이다. 그러나 다만 창고에 봉해 둔 돈에 대한 조항은 만일 본영에서 이리저리 빌려주어 마음대로 사용한다면 반드시 예전과 같이 텅 비고 말 것이다. 한결같이 서울에 있는 영문(營門)들의 예에 따라, 묘당(廟堂)을 거치지 않고서는 감히 이리저리 사용할 수 없도록 정식으로 삼고, 의정부에서 문서를 만들어 고지하도록 하라."하였다.

以水原前留守趙得林狀啓，查逋錢庫封餉作米典守，如非朝令，無敢擅用，著爲定式事，傳曰，今此措劃，實爲經遠之策，而但庫封條，若自本營，挪貸擅用，則必將如前朽蕩，一依京營門例，不由廟堂，則毋敢挪用，著爲定式之意，自政府，措辭知委.

<비변사등록 251책, 고종 3년 1866년 01월 03일(음)>

경제/재정

支勅 때의 出站을 영구히 廣州로 정하기를 청하다

○ 의정부에서 아뢰기를, “경기의 열읍이 칙사의 지공(支供)을 나누어 담당하는 것은 전식(典式)에 있습니다. 광주(廣州)도 그 가운데 하나인데, 10여 년 동안 혹 면제하기도 하고 환속하기도 하였습니다. 때에 따라 변동하는 정사로 인하여 매번 옮겨 정하는 때에 경기 내 역참을 배정할 읍이 모자라는 근심이 없지 않았습니다. 이번의 칙사 행차로부터 광주부(廣州府)에서 역참을 내는 것을 영원히 정식으로 삼아 시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답하기를, “화성(華城)과 광주에서 반씩 나누어 거행하는 것으로 정식을 삼도록 하라.” 하였다.

府啓曰,畿邑之分當支勅,典式攸在,而廣州亦其一也十許年來,或停免或還屬,概因隨時通變之政,而每於移定之時,畿內排站,不無窘絀之患,自今勅行爲始,廣州府出站,永爲定式施行,何如,答曰, 華城廣州,分半舉行事定式.

<비변사등록 251책, 고종 3년 1866년 08월 03일(음)>

경제/재정

水原의 查得結을 새로 모집한 正軍의 接濟 財源으로 사용하게 할 것 등을 청하다

의정부에서 아뢰기를, “방금 수원유수(水原留守) 이재원(李載元)의 장계를 보니, ‘본부에서 앞서 조사해 낸 전결이 7백 79결 영인데 지난 해 겨울에 장계로 아뢰었고, 그 후 조사해 낸 것이 또 11결 영인데 이는 옛 진전(陳田)에 보충해 넣었습니다. 나머지 1백 11결 영 가운데 잇따라 상세히 조사하여 개간하는 것에 따라 세금을 매겨 모두 결수의 계산에 채워 넣고, 여기서 거두는 전미(錢米)는 새로 모집하는 정군(正軍)의 각항의 지방(支放)이고, 쓰고 남은 전미는 매년 12월에 쌀은 작전(作錢)하고 나머지 돈과 함께 외탕고(外帑庫)로 이송하여 봉부동(封不動)으로 만들었습니다. 조사해 낸 전결에서 나온 세금의 전미는 이 예에 따라 차차 봉부동에 투입하는 것으로 영원히 정식을 삼는 것이 사의에 합당할 듯합니다. 모두 묘당에서 품처하게 하소서.’ 하였습니다. 앞서 조사에서 누락된 전결이 이미 이렇게 많은데 추후에 빠짐없이 조사해 내어 세금을 매겼으니 또한 매우 다행한 일입니다. 접제(接濟) 비용에 보태는 것과 쓰고 남은 것은 작전하는 것과 이후 차차 창고에 봉해 비축해 두는 것은 모두 장계에서 청한 바대로 시행하도록 허락하여 이를 정식으로 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답하였다.

府啓曰, 卽見水原留守李載元狀啓, 則本府先查得結, 爲七百七十九結零, 已於昨冬狀聞, 而伊後查執, 又爲十一結零, 充補於舊陳, 餘在一百一十一結零中, 而連加詳覈, 隨起執稅, 盡充計料, 所捧錢米, 則亦爲劃下添補於新募正軍接濟之需, 前後查結錢米, 新募正軍, 各項支放, 用餘錢米, 每年終, 朔米則作錢, 竝與零餘錢, 移送外帑庫, 作爲封不動, 查結出稅之錢米, 依此例次次添入封不動, 永爲定式, 恐合事宜, 竝令廟堂稟處矣, 先查漏結, 既至此多, 追櫛執稅, 亦甚可幸, 接濟之添補, 用餘之作錢, 繼此而次次封樁, 竝依狀請許施, 以爲定式之地, 何如, 答曰, 允.

<비변사등록 252책, 고종 7년 1870년 05월 26일(음)>

경제/재정

水原留守 송근수가 칙사에 대한 지공은 富平으로 還屬시키자고 하다

○ 수원유수(水原留守) 송근수(宋近洙)가, 칙사를 지공(支供)하는 일을 원래 정해진 고을인 부평(富平)에 환속(還屬)시켜 거행하도록 묘당에서 품처하게 하는 일로 장계한 데 대해 전

교하기를, “계축년(癸丑年:철종4, 1853) 절목(節目)의 예(例)에 의거해서 시행하라.” 하였다.

以水原留守宋近洙狀啓, 支勅一款, 還屬於元定邑富平, 以爲舉行事, 令廟堂稟處事, 傳曰, 依癸丑節目例施行.

<비변사등록 256책, 고종 12년 1875년 01월 20일(음)>

경제/재정

江華留守 趙秉式이 청한 대로 濟州貢馬 24필을 水原에서 江華로 劃送하게 할 것을 청하다

○ 의정부에서 아뢰기를, “강화유수(江華留守) 조병식(趙秉式)이 보고한 것을 보니, ‘본영에 있는 마필(馬匹)은 매우 부족하고 또 모두 노둔(駑鈍)해서 사용할 수가 없으니, 올가을 제주(濟州)의 공마(貢馬) 중에서 20필에 한하여 수원부(水原府)에서 직접 떼어 주게 해 주소서.’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심도(沁都:강화도)에서 뜻밖의 사태를 대비하는 것에 대해 조정에서도 다른 곳에 비해 아주 각별하게 염려하고 있습니다. 물에서는 비록 배를 부린다고 하더라도 육지에서는 말이 없어서는 안 되니, 특별히 보고한 내용대로 이 숫자에 맞춰 떼어 보내도록 태복시(太僕寺)에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답하기를, “윤희한다. 보장(保障)의 지역인 만큼 영원히 보살피 주어야 할 것이다. 그러니 식년(式年)에는 10필, 항년(恒年)에는 5필씩 떼어 보내도록 하라.” 하였다.

府啓曰, 卽見江華留守趙秉式所報, 則本營所存馬匹, 極爲艱乏, 且皆駑駘, 不堪使用, 今秋濟州貢馬中, 限二十四, 自水原府直爲劃給爲辭矣, 沁都陰雨之備, 朝家深念, 比他迥別, 而於水雖曰使船, 在陸不可無馬, 特依報辭, 準此數劃送之意, 分付太僕寺何如, 答曰, 允.保障之地, 永加顧念, 式年則十四, 恒年則五匹式劃送.

<비변사등록 256책, 고종 12년 1875년 08월 06일(음)>

경제/재정

水原의 남은 淸錢 3만 냥을 華城城廩를 修繕하는 데 사용하게 할 것을 청하다

○ 의정부에서 아뢰기를, “지난번에 화성(華城)의 성곽과 관청 건물을 수리할 때 들어갈 물력(物力)으로 본영(本營)에 있는 청전(淸錢) 가운데 2만 냥을 떼어 주었습니다. 방금 화성유수 송근수(宋近洙)가 보고한 것을 보니, ‘이전에 떼어 준 것은 지금 다 써버려서 공사가 이로 인해 중단되었으니, 특별히 더 떼어 주어 공사를 완성시킬 수 있도록 해 주소서.’ 하였습니다. 공사가 이제 막 시작되었는데 공사비용은 벌써 고갈되어버렸으니, 사세가 급하게 된 점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해영(該營)에 남아 있는 청전 3만 냥을 공사비에 들어가는 대로 떼어 쓰라고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희한다고 답하였다.

府啓曰, 向以華城城廩修繕物力, 以本營所在, 淸錢中二萬兩劃給矣, 卽見該留守宋近洙所報, 則前劃今爲盡用, 工役因此中撤, 特許更劃, 以爲完役之地爲辭矣, 力役纔始, 工費已罄, 事勢之悶急, 有不可不念, 以該營餘在淸錢三萬兩, 隨所入劃用事分付何如, 答曰, 允.

<비변사등록 256책, 고종 12년 1875년 09월 18일(음)>

경제/재정

海西의 社倉穀을 畿營 등지에 나누어 줄 것을 청하다

의정부에서 아뢰기를, “봄철 이후로 도하(都下)에서는 식량이 떨어질 근심이 날이 갈수록 심하고 경기 지방의 여러 곳에서도 기근을 구제할 물자를 마련할 길이 없다고 번갈아가며

답답한 사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난번에 이미 황해도에 관문을 보내어 사창의 곡식 가운데 절미 2만 석을 배로 운반하여 오도록 하였습니다. 그 배가 도착하기를 기다려 경기 감영에는 5천 석에 한하여 더 획급하고, 수원(水原), 광주(廣州), 강화(江華)에는 각각 5백 석씩을 나누어 획급하여 보내도록 하고, 그 나머지 1만 3천 5백 석 내에서 선박 운임을 계산하여 덜어 내고 모두 선혜청에 소속시켜 공가(貢價)의 오르고 내리는 것을 참작하여 배급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곳에 나누어 획급하는 일도 역시 해청에서 맡아서 거행하도록 하고, 후에 입본(立本)할 6만 냥은 본청에 상납되는 돈에서 우선 덜어 내어 남겨두도록 하고 해도에서 명에 따라 거행한 상황에 대해서도 의정부에 보고하라는 뜻으로 일체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답하였다.

府啓曰，開春以後，都下艱食之憂，日甚一日，且畿內諸處賑救之資，末由措辦，迭相告悶，故向已發關海西，就社倉穀折米二萬石，使之船運，以來矣，待其到泊畿營，限五千石加劃，水原廣州江華各五百石分劃以送，其餘一萬三千五百石內，計減船價，竝屬惠廳參酌排給於貢價上下，而諸處分劃之節，亦令該廳句檢舉行，嗣後立本條六萬兩，以本廳上納錢中，姑令除留，該道形止，報府之意，一體分付，何如，答曰，允。

<비변사등록 258책, 고종 14년 1877년 02월 29일(음)>

경제/재정

水原留守 鄭基世의 年分 狀啓에 대해 보고하고 그 대책을 논하다

의정부에서 아뢰기를, “수원유수 정기세(鄭基世)의 연분장계를 보니, 전해 내려온 구진(舊陳)의 아직 보충하지 못한 99결 46부 6속은 반드시 기경(起耕)을 조사하여 모두 보충할 계획이지만, 노비 추쇄와 징채를 내년 가을까지 막는 일을 묘당에서 품지하여 분부하게 해달라고 청하였습니다. 장마를 겪은 곳은 약간의 손해를 면하지 못하였으나 뒤늦게 기후가 매우 적절하여 이에 고르게 풍년이 들어서 재해 정책에 대해 논의하지 않아도 되었으니, 실로 민사(民事)에 있어 큰 다행입니다. 구진을 기경한 바에 대한 조사와 노비 추쇄와 징채를 막는 일을 모두 장계에서 청한 대로 시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답하였다.

府啓曰，卽見水原留守鄭基世年分狀啓，則流來舊陳未及充補之九十九結四十六負六束，期於查起盡充計料，而推奴徵債，限明秋防塞事，請令廟堂稟旨分付矣，霖潦所經，未免少損，晚候甚適迺占均熟，至有災政之不論，實爲民事之大幸，舊陳之查起，推徵之防塞，竝依狀請施行何如，答曰，允。

<비변사등록 262책, 고종 18년 1881년 10월 02일(음)>

경제/재정

의정부가 京畿 暗行御史 李建昌의 別單에 대해 보고하고 그 대책을 묻다

의정부에서 아뢰기를 (….) 그 하나는 수원(水原)의 호포(戶布) 미변(米邊)을 1곡(斛)으로 받지 않고 별반으로 대두(大斗)를 만들고, 집집마다 나눠 받는 것은 관두(官斗)를 곡대로 꼼꼼히 받으며, 남은 결수(結數)와 중첩된 결수 및 고전(庫錢)이 남아서 지급한 여러 조항을 조사해 찾아서 잔호(殘戶)의 호포를 탕감한 것에 급대(給代)하였는데 이는 해마다 들어오는 것에 관계되니 금년 가을부터는 이것을 각 호포에서 안배하여 줄여주고 본부에서 요(料)를 받는 각인의 명색이 번다하여 쓸데없는 것을 줄여야 하니 아울러 수신이 조처하게 하며, 전정(田政)은 매결(每結)에 2푼 미(米)와 1푼 전(錢)이나 반촌에서의 계방이 심하게

불어나고 아전의 간사함이 층층이 생겨났으니 이제부터 반은 쌀로 반은 돈으로 분배하고 돈은 풍년과 흉년을 참고하여 바뀌지 않는 수를 확정하는 일입니다. 호미(戶米)를 곡으로 받고 호포를 급대하는 것은 이미 수단에서 조처한 바가 있으나 결마다 쌀과 돈으로 수봉할 때에 반촌의 계방과 아전의 간사함으로 이랬다저랬다 고르지 않으니 쌀과 돈을 반씩 섞어서 하고, 돈의 수를 고정으로 정하는 일은 규모를 확립하고, 해부의 부곡(部曲)에서 요를 받는 것이 번다한 것 역시 꼼꼼하게 주려서 번지지 않게 하소서. (…)

府啓曰，卽見京畿暗行御史李建昌別單，(…)其一，水原戶布米邊之不以斛捧，別造大斗，戶戶分捧者，以官斗依斛精捧，查得剩結疊結及庫錢剩下諸條，以爲殘戶蕩布之給代，而此係逐年所入，則自今秋，以此排減於各戶布，而本府受料各人名色煩多，合減冗，竝令守臣措處，田政則每結二分米一分錢，而班契滋甚，吏奸層生，自今以半米半錢分排，而錢則參互豐歉，確定不易之數事也，戶米之斛捧，戶布之給代，已有繡單措處，而每結米錢收捧之際，班契吏奸，低昂不均，錢米參半，錢數恒定之節，確立規模，該府部曲之受料煩多，亦令精核，俾勿濫觴。(…)

<비변사등록 264책, 고종 20년 1883년 06월 02일(음)>

경제/재정

水原 前 留守 尹榮信의 年分 狀啓에 대해 보고하고 그 대책을 묻다

○ 의정부에서 아뢰기를, “수원 전 유수 윤영신(尹榮信)의 연분 장계를 보니, 추포(抽俵)는 거론하지 않고, 전부터 내려오는 구진(舊陳) 가운데 아직 보충하지 못한 99결 46부 6속은 기경(起耕) 여부를 조사하여 모두 채우고, 도망간 노비를 추쇄하여 빚을 받아내는 것을 내년 가을까지 금지하도록 묘당에서 품지하여 분부하기를 청하였습니다. 비가 오다 날이 개고 경사스런 징후가 모두 화순하여 언덕이나 습한 곳이나 농사가 풍작을 이루었습니다. 이와 같은 풍년에 어찌 재충(災摠)을 논하겠습니까. 구진(舊陳)을 조사하는 것과 노비를 추쇄하여 빚을 징수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모두 장계에서 청한 대로 시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답하였다.

府啓曰，卽見水原前留守尹榮信年分狀啓，則抽俵一款，不爲舉論，流來舊陳未及充補之九十九結四十六負六束，期於查起盡充，推奴徵債，限明秋防塞事，請令廟堂稟旨分付矣，曰雨曰暘，休徵咸若，于原于隰，穡事豐登，似此康年，奚論災摠，至若舊陳之查括，推徵之防塞，竝依狀請，施行何如，答曰，允。

<비변사등록 272책, 고종 28년 1891년 10월 23일(음)>

(2) 상업

경제/상업

烙印하지 않은 斛을 쓰지 않도록 廉問하고 嚴飭하라고 전교하다

이번 12월 17일 약방에서 입진하였을 때에 전교하기를, “이미 하교했기 때문에 기전(畿甸)은 먼저 어사를 보내 염탐하게 했다. 수원(水原)에는 탈이 없고, 포천(抱川)에는 대소를 따질 것 없이 낙인(烙印)이 없는 곡(斛)을 사용했으니 사리가 아니다. 게다가 3승 남짓을 더 받기까지 했으니, 1곡이 이렇다면 모든 곡을 다 계산하면 그 수가 얼마란 말인가? 일이 한심스러움은 이보다 더할 순 없다. 해부(該府)에서 즉시 나문(拿問)하여 구초(口招)해서 등대(登對)해 아뢰게 하라. 아, 이는 곧 하나를 징계해서 백을 일깨우려는 뜻이다. 다른 도의 어리석은 수령과 불법과 탐욕의 부류를 어찌 다 말할 수 있겠는가? 차례로 찌를 뽑아 염문(廉問)할 것이나 도신에게 미리 엄중 신칙하게 하여 모두 먼저 경계하고 삼가게 하라. 낙인이 없는 곡을 사용하는 수령이 있을 경우에는 도신에게 듣는 대로 장문(狀聞)하게 하라.” 하였다.

今十二月十七日藥房入診時，傳曰，既已下 敎，故畿甸先遣御史廉問，水原無頃，抱川勿論大・小，以不烙印之斛用之，已涉無狀，而至於加三升餘，一 斛雖若此，計諸斛，其數幾何，事之寒心，莫此爲甚，令 該府卽爲拿問，口招登對以奏，噫此乃懲一儆百之 意，他道昏暗守令，不法貪婪之類，可勝言哉，當鱗次 抽牒廉問，令道臣預爲嚴飭，皆令先爲戒謹，若有不 烙印用斛守令，亦令道臣隨聞狀聞．

<비변사등록 150책, 영조 43년 1767년 12월 17일(음)>

경제/상업

使行이 갈 때 전처럼 蓼包의 방식을 화성모부민절목에도 포함시키도록 하다

○ 비변사에서 아뢰기를, “유사 당상 정민시(鄭民始)가 아뢰어 구례에 의하여 삼으로 팔포(八包)를 채울 일의 비지(批旨) 내용에 ‘초기에 대한 비답에 말하였다. 늘 생각하기를 은이 귀하면 삼을 가져가고 삼이 귀하면 다시 은을 가져가게 하여 무역의 권한이 우리나라에 있게 하는 것은 도모의 좋은 계책이다. 더구나 근래 역관이 구차하게 삼으로 포를 채워 사람마다 각각 가지고 가니, 설혹 채집에 다소가 있고 값에 고저가 있더라도 크게 다르게 되지는 않을 것 같다. 그리고 약조(約條) 중의 금제(禁制)와도 무관하니, 이것으로 보나 저것으로 보나 올해부터 사행(使行)이 갈 때 다시 삼포(蓼包)의 방식을 쓰더라도 불가할 것을 모르겠다. 경 등은 계급이 높으며 일을 아는 역관을 불러서 그 편의 여부를 묻고 또 시임·원임의 여러 대신에게 물어 오늘 초기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일로 명령하였습니다. 하교대로 시임·원임 대신에게 물으니, 영의정 홍낙성(洪樂性)이 말하기를 ‘병으로 흐릿한 중에 이해를 자세히 따지지 못해 지적하여 대답할 수 없습니다.’ 하였고, 좌의정 채제공(蔡濟恭)이 말하기를 ‘은화(銀貨)가 부족하여 삼으로 수효를 보충하는 것은 이미 옛 규정을 따르는 것이어서 빈 포(包)를 면할 수 있어 실로 양쪽으로 편리한 방도가 됩니다.’ 하였고, 영돈녕부사 김이소(金履素)가 말하기를 ‘역관들의 이해는 아직 상량하지 않았으나 은으로 삼을 대신하며 삼으로 은을 대신하는 것은 이미 오래된 규정이고 또 몰래 국경을 넘어오는 폐단이 있어도 포를 채우도록 허락하는 것은 진실로 마땅함을 얻은 것입니다.’ 하였고, 판중추부사 이병모(李秉模)가 말하기를 ‘이와 같이 변통한 뒤에 역관들이 이익을 받는 여부는 비록 예측하지 못하지만 이미 오래된 규레이니, 사면(事面)으로 헤아려보면 장애될 것이

없을 듯합니다.’ 하였습니다. 수역(首譯) 및 계급이 높은 역관들에게 물어보니, 모두 말하기를 ‘역관의 폐단은 실로 바로잡을 좋은 계책이 없습니다. 삼포(蔘包) 한 가지는 사사로이 함께 상의한 지 이미 오래 되었으나 감히 청하지 못하였습니다. 지금 가삼으로만 포를 만든다면 팔포의 원래 수효를 채울 수가 없고 은과 삼을 통용하여 포를 채우면 이익이 매우 커서 거의 의뢰할 방도가 되겠습니다.’ 하였으니, 감히 아웁니다.” 하니, 답하기를, “알았다. 대신의 뜻이 이미 이와 같고 저들의 소원도 저와 같아서 은과 삼을 통용하는 것이 또한 매우 편리할 듯하다. 이것을 화성모부민절목(華城募富民節目)에 더해 넣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司啓曰，有司堂上鄭民始所啓，依舊例以蔘充包事，批旨內草記批答言之矣，每以爲銀貴則用蔘，蔘貴則還用銀，使貨遷之權，在於我國，爲籌謀之長策，而況近來象譯，無不苟且，以蔘充包，人各齎行，則設或採有多少，價有高低，似不至大相懸殊，且不關於約條中禁制，以彼以此，自今年使行後，用蔘包之式，未知其不可，卿等招致秩高解事之譯官，問其便否，仍又問于時·原任諸大臣，今日草記可也事，命下矣，依下教，問于時·原任大臣，則領議政洪，以爲病昏之中，未詳利害，無以指的仰對云，左議政蔡，以爲銀貨不足，以蔘充數，則既遵舊規，可免空包，實爲兩便之道云，領敦寧金，以爲譯官輩之利害，姑未商量，而以銀代蔘，以蔘代銀，既是古規，且有潛越之弊，許令充包，誠爲得宜云，判府事李，以爲如是變通之後，象譯輩之蒙利與否，雖未預料，而既是古規，則揆以事面，似無所礙云，問于首譯及秩高譯官等處，則皆以爲譯官之弊，實無矯揉之好策，蔘包一款，私與商議已久，而不敢仰請矣，今若只以家蔘作包，則無以充八包元數，若以銀蔘通同充包，則利益甚大，庶爲聊賴之道云矣，敢啓，答曰，知道，大臣之意，既如此，渠輩之願，又如彼，而銀蔘通用，亦甚便好，以此添入於華城募富民節目可也。

<비변사등록 185책, 정조 21년 1797년 02월22일(음)>

경제/상업

行水原留守 徐有隣이 燕行 때 貿易別將 1窠를 華城人으로 差送하는 문제를 논의하다

○ 이번 7월 26일 군사방(軍士房) 승지가 나와 대기하고 여러 신하가 같이 입시하였을 때에 행수원유수(行水原留守) 서유린(徐有隣)이 아뢰기를, “화성부(華城府) 안 백성의 산업(産業)·제방(堤防)의 축조·둔전(屯田)의 설치 등 일체는 근본에 힘쓰는 일입니다. 있고 없는 것에 따라 모아 옮겨주고 공장(工匠)을 통하여 물화(物貨)를 유통시키는 일도 왕정(王政)에 있어 없어서는 안될 일이요, 도회(都會)에 없어서는 아니 될 일입니다. 본부는 삼남(三南)의 요충(要衝)에 처해 있으나 해문(海門)이 멀고 물길이 넓지 않아 주거(舟車)가 폭주하는 이익이 없고 전사(塵肆)에 교역하는 자산이 궁핍하여 원래 거주하는 공상(工商)이 생활하기가 어렵고 응모(應募)한 민인이 안주하기가 어렵습니다. 크게 변동하고 크게 경장(更張)하는 일은 비록 가뭄이 논의하기 어려우나 시정하고 지원하는 방도를 지금 조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신의 생각에는 매년의 연경(燕京) 길에 오영(五營)의 옛 예에 의하여 무역별장(貿易別將) 한 자리를 설치하여 화성 사람을 차출해 보내되 해대(海帶:다시마) 5백 척(隻), 해삼(海蔘) 5백 칭(稱)을 입전(立塵) 청포전(靑布塵) 예에 의하여 포(包)를 감하여 들여보내고 쇠가죽 2천 장도 매문(每門)에 포를 감하여 들여보내게 하여 원래 거주하는 공상과 응모한 민인에게 이를 힘입어 생활하고 업에 안주할 수 있도록 하고 약간의 조세를 알맞게 거두어 군물(軍物)과 공해(公廩)를 보수하는 수용으로 삼게 하소서. 해삼과 쇠가죽은 연경 길의 교역에 본래 일정한 수가 없으나 해대 한 가지를 들어 말씀드리면 만상(灣商:의주 상인)에는 일정 수 외에도 있으므로 조금도 장애가 될 실마리가 없습니다. 이번 역행(曆行:역서

를 가지러 가는 행차)부터 사행하여 이와 같이 규례로 정하여 시행하는 것이 아마도 사리에 맞을 듯 싶습니다. 묘당에서 뜻을 여쭙어 분부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그리하라 하였다.

今七月二十六日軍士房承旨來待，諸臣同爲入侍時，行水原留守徐有隣所啓，華城府內，民產・築堤・置屯一切以務本爲歸，而若其貿遷有無，通工居貨亦是王政之不可闕，都會之不可無者也，本府處在三南要衝，而海門既遠，泉路不廣，舟車無輻湊之利，塵肆乏交易之資，原居工商難以聊生，應募民人莫之奠業，大變通大更張，雖難輕議，而矯揉接濟之道，不可不及今施措，臣意則每年燕行，倣五營舊例，設置貿易別將一窠，以華城人差遣，海帶五百隻・海蔘五百稱，依立塵・青布塵例，減包入送，牛皮二千張式亦令每門減包入送，使原居工商・應募民人，俾得賴此而聊生奠業，略干稅條量宜取用，以爲軍物・公廨修補之需，而海蔘・牛皮，則燕行交市，本無定數，雖以海帶一種言之，又在灣府定數之外，故少無掣礙之端，自今曆行爲始，以此定式施行，恐合事宜，令廟堂稟旨分付何如，上曰，依爲之。

<비변사등록 189책, 정조 23년 1799년 07월26일(음)>

경제/상업

毎年燕行 때 貿易別將 1窠를 華城人으로 差送하는 것은 우선 시행하지 말 것을 청하다

○ 비변사에서 아뢰기를, “수원유수 서유린(徐有隣)의 거조(舉條)를 보면 본부는 해문(海門)이 멀고 물길이 넓지 않아 주거(舟車)가 폭주하는 이익이 없고 전사(塵肆)의 교역하는 자산이 궁핍하여 원래 거주하는 공상(工商)과 응모(應募)한 민인이 업에 안주할 수 없습니다. 신의 생각에는 매년 연경(燕京)에 가는 길에 오영(五營)의 옛 예에 의하여 무역별장 한 자리를 설치하여 화성(華城) 사람을 차출해 보내되 해대 5백 척, 해삼 5백 칭을 입전・청포 전 예에 의하여 포(包)를 감하여 들여보내고 쇠가죽 2천 장도 매문(每門)에 포를 감하여 들여보내 이를 힘입어 생활할 수 있게 하고 약간의 조세를 거두어 군물과 공해의 수리에 수용할 수 있게 할 것이며 해삼과 쇠가죽은 연경 길 교역에서 본래 일정한 수가 없으나 해대 한 종류는 또 만상(灣商)의 일정 수 외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조금도 장애가 될 실마리가 없습니다. 이번 역행(曆行)부터 규식으로 정하여 시행하도록 묘당에서 뜻을 여쭙어 분부하기를 청하였습니다. 지금 이 논의는 의견이 없는 것은 아니나 그 효과가 영구할 지는 보장하기 어렵습니다. 또 생각하면 해삼과 쇠가죽은 비록 본래 일정수가 없다고는 하나 이에게 이로우면 저에게 손해가 됨은 사물의 정(情)입니다. 사망의 상인들이 영을 듣고 억울하다 할 우려가 있고, 해대 한 가지에 있어서 요즘 만상(灣商)들이 사행(使行)의 공용(公用)을 담당하므로 그들에게 맡겨 자못 힘입고 있습니다. 공용도 이로 인하여 도움이 되는 방도가 없지 않다고 하는데 지금 5백 척 해대를 포(包) 외에 들여보내면 저곳에 도착하여 값싸게 팔릴 것임은 미루어 알 수 있습니다. 만상이 그 이익을 잃고 부민(府民)이 또 이익이 되는 바가 없다면 어찌 양실(兩失)의 정책이 아니겠습니까? 부(府)의 아래에서 생활을 할 수 있고 업에 안주할 수 있는 방도에 중앙과 지방의 신하가 실로 지혜를 다해야 합니다. 거듭 생각해 보았으나 손이 되는 바는 많고 이익이 되는 바는 적으니 지금 우선 내버려두고 다시 양책(良策)을 별달리 강구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그리하라고 답하였다.

司啓曰，卽見水原留守徐有隣舉條，則以爲，本府海門既遠，泉路不廣，舟車無輻湊之利，塵肆乏交易之資，原居工商・應募民人莫之奠業，臣意，則每年燕行依五營舊例，設置貿易別將一窠，以華城人差遣，海帶五百隻・海蔘五百稱，依立塵・青布塵例，減包入送，牛皮二千張亦令每門減包入送，俾得賴此聊生，略干稅條量宜取用，以爲軍物・公廨修補之需，而海蔘・牛

皮, 則燕行交易, 本無定數, 海帶一種又在灣 商定數之外, 故少無掣礙之端, 自今曆行定式施行事, 請令廟堂稟旨分付矣, 今此所論非無意見, 而 難保其永久有效, 且念海蔘·牛皮雖曰本無定數, 利 於此則損於彼, 物之情也, 四方商賈, 恐有聞令抑鬱 之慮, 至於海帶一種, 近因灣商之擔當, 行中公用, 付 之渠輩, 頗得聊賴, 公用亦不無因此資益之道云, 今 以五百隻海帶包外入送, 則到彼賤售可以推知, 灣 商既失其利, 府民又無所利, 則豈非兩失之策乎, 凡 係府底聊生奠業之方, 中外之臣固當竭智貢愚, 而 反覆思惟, 所損者多, 所益者少, 今姑置之, 更令別究良策何如, 答曰, 允.

<비변사등록 189책, 정조 23년 1799년 07월26일(음)>

경제/상업

有司堂上 鄭民始가 使行시 八包의 복구와 尾蔘契를 華城에 소속시키는 문제 등을 논의하다

○ 이달 22일 비국의 유사당상, 품사 당상이 입시하였을 때 유사당상 정민시(鄭民始)가 아뢰기를, “근래에는 은화가 점점 품귀해져 연경(燕京)의 화물 교역이 따라서 감축되어 이것으로 역관들이 그들의 포대를 채울 수 없어서 빈손으로 왕래하고 맙니다. 그러므로 형세가 점점 곤궁해져서 지탱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여러 번 변통할 방도를 요청하였으나 줄지에 바로잡을 계책이 없어서 역관의 형세는 진실로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사이에 혹은 한 두 번 요청한 것이 있으나 모두 장애에 걸려 시행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신의 의견으로는 사행(使行) 중에 이른바 팔포(八包)라는 것은 늘 인삼으로 정해 주어 그에게 포(包)의 값을 거두어들이게 하여 반전(盤纏:노자)을 채우는데, 이는 『통문관지(通門館志)』에 실려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간에 은으로 삼을 바꾼 것은 오로지 인삼은 귀하고 은화는 점점 넉넉하였기 때문입니다. 근래에는 가삼(家蔘)을 숨겨 가지고 가는 것이 점점 많아졌는데, 금법을 무릅쓰고 숨겨 가지고 가게 하느니보다는 차라리 옛날의 예에 따라 가지고 들어가도록 허락하는 것이 양쪽 다 편리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삼이 귀하여 은으로 대신하였는데 지금은 은이 귀하여 다시 인삼으로 복구되었습니다. 적당량을 헤아려 역관의 곤궁함을 구원한다면 변통하는 계책은 이보다 나은 것이 없습니다. **화성**을 부유하며 인구가 많게 할 계책을 가삼으로 할 일로 인하여 묘당에서 초기(草記)하여 변통할 것이 있는데, 이때를 이용하여 역시 삼포(蔘包)의 변통을 허락하면 역관들도 **화성**의 힘으로 인하여 의뢰하는 효과를 함께 입게 될 것이니, 대신에게 하순하여 처리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초기에 대한 비답에 그것을 말하였다. 늘 생각하기를 은이 귀하면 삼을 가져가고 삼이 귀하면 다시 은을 가져가게 하여 무역의 권한이 우리나라에 있게 하는 것은 도모의 좋은 계책이다. 더구나 근래 역관이 구차하게 삼으로 포를 채워 사람마다 각각 가지고 가니, 설혹 채집에 다소가 있고 값에 고저가 있더라도 크게 다르게 되지는 않을 것 같다. 그리고 향조(餉條) 중의 금제(禁制)와도 무관하니, 이것으로 보나 저것으로 보나 올해부터 사행(使行)이 갈 때 다시 삼포(蔘包)의 방식을 쓰더라도 불가할 것을 모르겠다. 경 등은 계급이 높으며 일을 아는 역관을 불러서 그 편의 여부를 묻고 또 시임·원임의 여러 대신에게 물어 오늘 초기하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또 아뢰기를, “**화성(華城)**을 부유하며 인구가 많게 할 계책을 묘당에서 강구하여 방금 옛법에 의하여 부유한 집을 모집해 옮겨 그 생업을 도와 그것으로 취락을 이루는 것을 의지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당장에 집을 지어 이접(移接)할 때에 재력을 소비할 일이 없지 않고 또 일정한 산업의 기반을 만들 것이 없으므로, 조금 부유한 집은 즐겨 나아오려는 부류들이 없습니다. 소중히 여겨 모집해 들이는 인호(人戶)는 먼저 그 마음을 기쁘게 하고 그 생활을

풍족히 해주어서 여러 사람들의 마음을 집으로 돌아가는 것과 같이 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미삼계(尾蔘契)를 만든 뒤에 이속(移屬)이 일정함이 없어 별로 긴하게 여기는 곳이 없으니, 지금 미삼계를 화성에 예속시키되, 집을 짓는 부류는 20인으로 계를 만들어 그들의 항업(恒業)을 삼게 하고, 혹 옮겨가는 자가 있으면 계중에서 빼어버리고 집을 지은 다른 사람으로 대신 보충하게 하면 완전한 방도가 될 듯합니다. 그리고 약간의 공화(公貨)를 얻어서 빌려주기를 허락한 뒤에야 재물의 밀천을 늘려 보충할 수 있으니, 경상감영의 소관인 남창(南倉)의 돈 5만 냥과 평안 병영에 있는 비국의 소관과 해영(該營) 소관의 돈 중에 5만 냥을 한도로 모두 화성에 이속(移屬)시켜 편의에 따라 구처하게 하는 것이 좋을 듯하므로, 감히 이를 양달합니다.”

하니 임금이 그리하라 하였다.

또 아뢰기를, “이것은 충청 감사 임제원(林濟遠)의 장계인데, 말하기를 ‘도내 각읍의 모환(牟還:보리 환곡)은 많고 적음이 한결같지 않아 가장 적은 곳이라 하더라도 다만 응분(應分)의 수효도 배비(排比)할 길이 없습니다. 늘 봄갈이를 당할 때마다 종자가 모자라는 것이 근심이니, 각 아문에 유고(留庫)된 보리 중에 약간씩 가분(加分)할 것을 묘당에게 품지하여 분부하도록 하기를 청합니다.’ 하였습니다. 하교하신대로 좌의정 채제공(蔡濟恭)에게 문의하였더니, 말하기를 ‘본도의 모환은 본래 넉넉하지 못했는데 지금 봄갈이 할 때를 당하여 다만 응분의 수효도 배비할 길이 없다고 말한 것은 진실로 장계의 말과 같습니다. 다른 도의 가분 요청은 이미 시행을 허락하였으니, 여기도 또한 장청대로 하여 그에게 적당함을 헤아려 가분해 줄 뜻으로 분부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하였습니다.” 하니, 임금이 그리하라 하였다.

또 아뢰기를, “이것은 평안감사 박종갑(朴宗甲)의 장계인데, 강계 부사(江界府使) 이인수(李仁秀)의 첩정(牒呈)을 낱낱이 들고 말하기를 ‘상토진 첨사(上土鎭僉使)를 방어영(防禦營)의 별중군(別中軍)을 겸하여 관할하게 하는 절목(節目)을 절도사 임률(任崐)과 왕복 논의하여 적당하게 한 후에 성책(成冊)하여 비변사에 상송할 것을 묘당에게 품쳐하도록 하기를 청합니다.’ 하였습니다. 하교하신대로 좌의정 채제공(蔡濟恭)에게 문의하였더니, 말하기를 ‘상토진을 승격시켜 방어영의 별중군으로 한 뒤에는 사체가 이전과 자별합니다. 지금 이 절목을 해부(該府)·해진(該鎭)과 상확하여 강정(講定)한 것을 절목에 의하여 준행할 뜻으로 분부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였습니다.” 하니, 임금이 그리하라 하였다.

今二月二十二日備局有司堂上·稟事堂上入 侍時, 有司堂上鄭民始所啓, 年來因銀路之漸貴, 燕貨交易, 隨而減縮, 以此譯官輩, 無以充其包數, 未 免空手往來, 故形勢漸至凋殘, 將不得支保, 渠輩屢 請變通之道, 猝無矯揉之策, 而譯官之事勢, 誠不可 不念矣, 其間或有一二所請者, 而皆是掣肘, 不可行 之事, 臣之愚見, 則使行中所謂八包者, 每以人蔘定 給, 使之收包價, 以充盤纏, 乃是通文館志所載者, 而 中間以銀代蔘, 職由於人蔘之漸貴, 而銀貨之稍裕 故也, 近來家蔘之潛越漸多, 與其冒禁而潛越, 無寧 遵舊而許入之爲兩便也, 初因蔘貴而以銀代 之, 今因銀貴而後以人蔘, 量宜充包, 以掄 譯官之凋弊, 則變通之策, 無過於此, 方因華 城富庶之策以家蔘事, 自廟堂有草記變通者, 因此 時亦許蔘包之變通, 則譯官輩, 亦因華城之力, 而同 被聊賴之效矣, 下詢大臣處之何如, 上曰, 草記 批答言之矣, 每以爲銀貴則用蔘, 蔘貴則還用銀, 使 貨遷之權, 在於我國, 爲籌謀之長策, 況近來象譯, 無 不苟且, 以蔘充包, 人各齎行, 則設或採有多少, 價有 高低, 似不至大相懸殊, 且不關於餉條中禁制, 以彼 以此, 自今年使行, 復用蔘包之式, 未知其不可, 卿等 招致秩高解事之譯官, 問其便否, 仍又問于時前任 諸大臣, 今日草記可也.

又所啓, **華城**富庶之策, 自廟堂講究, 方以依古 法募移富實戶, 資其生業, 以爲聊賴成聚之地, 而目 下築室移接之際, 不無費力之事, 且無恒業之可作 根基者, 故稍實之戶, 姑無樂赴之類, 爲所重而募入 人戶, 則宜先悅其意, 而厚其生, 使衆心如歸, 尾蔘作 契之後, 移屬無常, 別無緊關處, 今以尾蔘契, 屬之華 城, 築室之類, 以二十人作契, 以爲渠輩之恒業, 而或 有遷去者, 拔之契中, 以他築室者代充, 則似爲完固 之道, 且得若干公貨, 許以假貸, 然後可以添補貨本, 以慶尙監營所管南倉錢五萬兩, 平安兵營所在備 局句管及該營錢中, 限五萬兩, 竝爲移屬**華城**, 以爲 從便區處之地似好, 故敢此仰達矣, 上曰, 依爲 之.

又所啓, 此忠清監司林濟遠狀啓也, 以爲道 內各邑牟還, 多寡不一, 若其最少處, 只以應分之數, 無路排比, 每當春耕之時, 輒患乏種, 各衙門留庫牟 中, 從略加分事, 請令廟堂稟旨分付 矣, 依下教問 議于左議政蔡, 則以爲本道牟還, 本自不敷, 今當 春耕之時, 只以應分之數, 無路排比云者, 誠如狀辭, 而他道加分之請, 旣蒙許施, 此亦依狀請, 使之量 宜加分之意, 分付爲宜云矣, 上曰, 依爲之.

又所啓, 此平安監司朴宗甲狀啓也, 枚舉江 界府使李仁秀牒呈, 以爲上土鎭僉使兼帶防禦營 別中軍節目與節度使任崐, 往復停當後, 成冊上送 備邊司, 請令廟堂稟處, 依下教問議于左議政蔡, 則以爲上土鎭, 陞爲防禦營別中軍之後, 事體與前 自別, 今此節目, 乃是該府該鎭商確講定者, 使之依 節目遵行之意, 分付爲宜云矣, 上曰, 依爲之.

<비변사등록 185책, 정조 21년 1797년 02월22일(음)>

경제/상업

華城府 新接 富實戶의 家蔘, 官帽의 區劃에 關해 節目을 만들어 들이다

○ 비변사에서 아뢰기를, “**화성부(華城府)**의 신접(新接) 부실호(富實戶)의 가삼(家蔘)과 관모(官帽)를 구획할 일을 초기(草記)하여 운하하였습니다. 절목 별단을 이루어 써서 들이는 뜻을 감히 아뢰입니다.” 하니, 알았다고 답하였다.

○ **화성부(華城府)** 경내의 신접(新接) 부실호(富實戶)의 가삼(家蔘)과 관모(官帽)를 구획할 절목

위의 절목은 이 **화성부** 한 부(府)는 바로 옛날에 일컫는바 하나의 대도회(大都會)이어서 남북 여행객이 나다니는 곳이고 육지 수레와 바다 배가 모이는 곳이다. 더구나 원침(園寢)을 모신 이후로 주구(珠丘:선왕의 능침)를 호위하며 행궁(行宮)을 보호하여 체모의 높음은 더욱 특별함이 있다. 우리 성상께서는 효도를 생각하시어 묵묵히 신책(神策)을 운용하시어 성을 쌓는 데에 백성의 힘을 피로케 하지 않고 나무 돌의 자재를 경비에 번거로이 하지 않고서 3년 동안에 백 치(雉)나 되는 성이 완공되었다. 처음에 삼보(三輔:서울 부근 지역)의 소중함이러니, 지금 오릉(五陵)만큼 성대함을 이루었다. 창시한 지 오래지 않아서 민가가 아직 준비하지 못하고 백성들이 혹은 풍족하지 못해 도시를 이루며 취락을 이룬 효과가 아직 지지부진하다. 일전에 임금께서 납시었을 때 수레를 멈추시고 온 성을 두루 살펴보시고 혜택을 여러 백성들에게 두루 미치게 하고 이어서 또 특별 전교를 내리셨는데 애쓰고 간절하시어 부유하며 인구가 많게 할 방도를 깊이 생각하시고 낭묘의 신하들에게 널리 물으셨다. 마침내 여러 사람의 논의가 이미 같았고 여론을 채택하여 우선 서울의 부실(富實)한 집 20 호(戶)를 소원에 따라 계(契)를 만들어 재물을 넉넉히 할 방도로 이롭게 하며 재물을 유통할 방도를 허락하여 논의를 충분히 하여 절목(節目) 1통과 시행에 합당한 조건을 만들어 내어 하방(下方)에 기록해 두고 본사에서 계하(啓下)한 후에 1건은 본사에 올리고 1건은 **화성부**에 보관하고 1건은 계인(契人)에게 내어 주어 영구히 준행하게 한다.

1. 지금 여기에 모집해 들인 자들이 비록 부실(富實)하다고는 하지만 새로 옮겨 전거(奠居)할 때 절로 비용이 많이 들 것이니, 먼저 그 일정한 산업을 제정하여 근본 터전으로 하게 해야 한다. 미삼(尾蔘)의 무역은 아직 영구히 예측된 곳이 없으니, 부실하여 합당한 자 20인을 선발하여 계를 만들어서 계에 들은 사람을 화성에 이주하여 집을 짓고 살게 하고, 성심으로 근실하여 능히 번성하게 된 자는 이것을 사업을 하게하고 자손에게 물려주어 그 마음을 기쁘게 하며 그 삶을 온후하게 할 방도로 하도록 한다.

1. 관모(官帽)는 한번 산매(散賣)하게 된 뒤로 별달리 주관하는 사람이 없으니, 지금 화성에 이주할 부실한 가호에게 주관하도록 하여 혹은 연경(燕京)의 시장에서 무역하거나 의주(義州)의 시장에서 사오게 하되, 청포전(靑布廛)의 면세분(免稅分) 1백 척(隻)은 이전처럼 전인(廛人)에게 내주고 그 나머지는 물주가 주관하여 각처에 분산해 팔아 유통하게 한다. 그 교역은 한결같이 시장 가격을 따라서 조종하여 폐단이 일어나는 근심이 없도록 한다.

1. 양남(兩南) 지방의 집에서 심는 삼은 근래에 점차 풍성해져서 교역과 매매가 하나의 생업이 되고 있다. 이번에 이거하는 자들은 대부분 전에 물주(物主) 노릇을 하던 자들인데, 또 미삼계(尾蔘契)를 그들에게 맡기면 그대로 그들로 물주를 삼아서 교역을 주관하게 하여 양쪽으로 편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관모와 가삼을 막론하고 화성의 물주와 차인(差人)이 아니면 본지(本地)에서 직접 사지 못하도록 하고 각처의 장사꾼들도 모두 화성 물주와 교역하게 하여 난잡한 폐단을 막아 의뢰할 곳으로 하도록 한다.

1. 연경에 가는 자들이 가지고 가는 팔포(八包)는 원래 인삼으로 채워 주었는데, 근래에 삼이 귀하게 되자 은포(銀包)로 대신하였다. 그런데 이제 가삼으로 옛 제도를 복구하여 원포(元包)로 정하였으니, 들여보내는 삼은 집에서 심은 것이므로 사서 모아 채워 넣는 절차는 가삼의 물주가 저절로 주관하게 된다. 이 역시 화성의 미삼계인(尾蔘契人)에게 맡아서 거행하게 한다.

1. 계인이 그 생업이 넉넉하여 화성에 사는 자는 성내의 인호가 아직 번성하지 못해 집들이 즐비하게 되는 데에는 늦어지고 있으나, 집을 짓고 전거할 사람들이 영구히 자손들을 기를 계책을 하게 하기 위하여는 결코 구차하며 거칠게 함으로써 바꾸어 살피게 하는 효과가 없게 해서는 안 되니, 20호 계인들에게 대로(大路)의 남북 쪽에다 각각 기와집을 지어서 골목을 마련하여 이웃이 이어지도록 나열하여 성취(成聚)의 효과를 거두도록 한다.

1. 20호는 대부분 부실한 물주인데 삼과 모자를 무역하는 일은 일이 매우 번다하여 물주 한 사람이 처리할 수 있는 일이 아니므로 반드시 차인(差人)과 수종(隨從)의 협조를 받도록 한다. 한 물주의 차인이나 수종은 많으면 5~6인, 적어도 2~3인을 밑돌지 않게 한다. 각처에 있는 자들을 마음대로 차출하여 고용하게 한다면 20인 이외에는 다시 가호(家戶)를 늘릴 방도가 없어서 물주를 이접시키는 본의가 아니다. 20인의 계인(契人)이 각자 차인과 수종을 함께 데리고 가서 모두 물주 집 곁의 근처에 그 일과 물력의 다과에 따라 또한 물주에게 도와주도록 하여 각각 집을 짓게 하여 호구를 늘리는 방편으로 삼는다. 차인을 데려가지 않고 집을 마련해 두었다가 몰래 다른 차인을 쓰는 자는 유수부(留守府)에서 적발하여 논죄한다.

1. 삼과 모자가 비록 원래 정한 주관하는 물화(物貨)이지만, 서남으로 오가는 사이에 진실로 무역하여 판매할 물건이 있으면 어느 종류에 구애될 것이 없이 마음대로 매매하는 것을 허가하되 이익을 남기는 것이 없도록 한다.

1. 계인은 대부분 부실한 사람이지만 새로 옮겨서 전거할 즈음에 물화를 크게 무역할 때에 개인의 힘으로는 미치지 못할 우려가 있을 듯하여 약간 관전(官錢)을 편의에 따라 빌려준

뒤에 거의 전집하는 방도를 이룰 것이다. 경상 감영 소관의 남창(南倉)에 있는 돈 5만 냥과 평안 병영의 유고(留庫)한 돈 5만 냥 도합 10만 냥을 **화성부**에 이속하여 기한 연도를 정하여 계인에게 빌려주어서 밀전을 삼도록 하고 그 이자를 받아서 성을 수리하는 비용으로 쓰도록 한다.

1. 새로 옮겨 집을 지을 때 재목을 갑자기 구하기 어려울 것은 사세가 진실로 그러하여 별도로 조치하지 않을 수 없다. 경기(京畿) 경내의 선재(船材)로 지정되지 않은 송전(松田)과 사적으로 나무를 기르는 산에서 팔기를 원하는 곳은 편의를 따라 벌채를 허가하여 때에 미처 마련할 수 있도록 한다.

1. 지금 응모하는 자는 모두 서울에 사는 자들이기 때문에 갑자기 가산(家産)을 버리고 온 가족이 이사하게 된다면 불편하며 장애되는 일이 없지 않을 것이니, 그 아들이나 아우들 중에서 신중하여 합당한 자는 원하는 바를 따라 대신 보낸다. 계안(契案)의 성명은 당사자를 현록(懸錄)하여 대신 보내고 누구라는 이름 아래에 현주(懸註)하되, 아들과 아우 이외에는 숙질(叔姪)과 4촌이라도 모두 대신을 허락하지 않는다.

1. 계인(契人)이 혹은 가삼을 무역하며 혹은 관모를 사기 위하여 서남으로 나갈 때에 공문(公文)을 발급해 준 것이 없으면 외도(外道)의 여러 고을이 마음을 써서 돌보아주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사상(私商)이나 잡살뱅이들이 또한 쉽게 그 사이에 침탈하게 될 것이니, 늘 차인을 출송할 때에 **화성부**에서 각각 공문을 만들어 주어 여러 도와 여러 읍에 증빙하게 한다.

1. 응모하는 자들 중에서 혹은 의원(醫員)이나 역관을 직업으로 하는 자, 또는 공물(貢物)을 바치는 일로 먹고 사는 자들은 **화성**으로 옮겨 사는 까닭으로 해서 본업을 폐지해서는 안 된다. **화성**에서 서울과의 거리는 반일(半日) 일정으로 할 수 없으니, 의원이나 역관은 본업을 전과 같이 수행하고 공물을 바치는 자들은 그 자제들에게 이를 맡아서 점검하도록 한다.

1. 지금 부실한 가호를 옮겨 살도록 하는 조치는 실로 **화성**이 소중한 바가 있기 때문이니, 이와 같이 절목을 정하여 각향을 구획하는 것은 어찌 그들의 살아갈 도리만 위할 뿐이겠는가! 요컨대 한 성 안의 민호(民戶)가 많도록 하기 위한 것인바, 달라진 모습을 보게 되는 효과는 하루가 안 되어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성취의 속도는 오직 성실한 뜻의 근면에 달려 있는 것이다. 그들은 모두 의술과 통역을 대물려 직업으로 한 사람들이어서 또한 덕의(德意)를 받드는 방도를 알아서 이익만 추구하려는 마음을 먹지 않아서 서로 권면하며 경계할 것이다. 성실하고 각근(恪勤)한 자는 특별히 뽑아서 등용하겠다고 이미 초기(草記)의 비지(批旨)에 말하였다. 만약 후회하며 게으른 부류로서 부랑(浮浪)하고 어긋난 습관에다 또한 사람을 속이고 이익을 독점하며 조종하여 폐단을 만드는 자가 있을 경우는 계중(契中)에서 적발하여 관청에 알리도록 하고, 관청에서 사실을 조사하여 적발 되는대로 엄히 다스려 결단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1. 부호의 응모는 이미 20호로 정원을 정하여 이름을 기록하여 문서를 만들고 하나는 본사에 두며 하나는 부(府)에 남겨 둔다. 후일 만약 숫자가 점차 늘어날 경우 이익을 나누어 감소할 뿐만 아니라 살아가기에도 부족할 것이고, 인원이 많으면 반드시 잡란함을 가리지 않는 폐단이 생길 것이므로, 20인 이외에는 1인도 더 정하지 못하게 한다. 혹시 탈이 생기든가 죄를 짓든가 하여 명단에서 삭제되었을 경우 그들에게 부지런하며 성실하여 합당한 자를 가려서 유부(留府)에 고하게 하고 그것을 돌려서 본사(本司)에 보고하여 문안에 기록하고 인장을 찍도록 한다.

1. 지금 이 부호를 모집해 들어 모자와 삼을 구획하게 하는 것은 사실 성안에 사람이 많이

살게 하기 위한 방편이다. 그러나 성안에 원래 살던 사람들도 혜택을 받은 뒤에야 조정에서 한결같이 보는 정무가 될 수 있다. 그러므로 모자나 삼의 이익 조항을 막론하고 도중(都中)에서 매년 1천냥씩 반분(半分)하여 본부(本府)의 교리청(校吏廳)에 떼어주어서 혜택이 고루 미치도록 한다.

1. 관전(官錢) 10만을 이미 대여를 허락하였고 미삼계(尾蔘契)를 만든 것도 이속하여 관모(官帽)와 가삼(家蔘)을 전적으로 관리하여 구획하되, 분배할 때에 출납하는 방도는 일일이 소상하게 하여 별도로 법식을 이루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은 그들에게 편의 여부를 상량하여 충분히 상의하게 하여 추후에 절목을 이룩하고 본부(本府)에서 본사(本司)로 돌려 보고하여 첩(貼)을 만들어 준행(遵行)하게 한다.

1. 다하지 못한 조건은 추후에 마련한다.

司啓曰, 華城府新接富實戶家蔘官帽區劃事, 草記允下矣, 成節目別單書入之意, 敢啓, 答曰, 知道.

華城府內新接富實戶蔘帽區劃節目

右節目, 惟茲華城一府, 卽古所稱一大都會, 南北行旅之所出, 陸海舟車之所湊, 又況自奉園寢之後, 拱衛珠丘, 環護行宮, 體貌之尊, 尤有別焉是如乎, 惟我聖上, 爰惟孝思, 默運神策, 築鑿不勞於民力, 木石不煩於經費, 三載之間, 百雉告完, 始焉三輔之重, 今成五陵之盛是白乎矣, 創始未久, 生業無恒, 閭閻猶未櫛比, 人民或欠饒足, 成都成聚之效, 尙此遲遲, 向於幸行時, 清蹕周覽於一城, 惠澤遍及於群黎, 繼又特降恩綸, 勤勤懇懇, 深軫富庶之術, 博詢廊廟之臣教是白如乎, 遂乃僉議既同, 輿情是採, 先以京城富實戶二十戶, 從願作契, 利其裕財之方, 許以通貨之道, 爛加商確, 成出節目一通, 合行條件, 錄在下方, 自本司啓下後, 一件本司上, 一件藏於華城府, 一件出給契人, 以爲永久遵行爲白齊.

一, 今此募入之類, 雖是富實之戶, 新移奠居之際, 自多費用之事, 宜先制其恒產, 以爲根基之地是白如乎, 尾蔘貿易, 姑無永屬處, 抄擇當實可合者, 二十人作契, 以契中人移居華城, 使之築室居生爲白乎矣, 誠心勤實, 能致繁庶者, 以此作爲永業, 傳之子孫, 以爲悅其心厚其生之道爲白齊.

一, 官帽一自散賣之後, 別無主管之人, 今以華城移居富實戶, 作爲主管, 或買燕市, 或買得灣肆, 青布塵免稅一百隻, 如前出給塵人, 其餘則物主主管, 散賣各處, 以爲流通之地爲白乎矣, 其所交易, 一從市價, 俾無操縱生弊之患爲白齊.

一, 兩南家植之蔘, 近漸豐盛, 交易買賣, 作一生業, 而今此移居之人, 多是自前爲物主者, 且以尾蔘契, 屬之渠輩, 則仍以渠輩作爲物主, 使之主管貿易, 可謂兩便, 而無論官帽與家蔘, 非華城物主與差人, 則毋得直買於本地爲白遣, 各處商賈, 必皆交易於華城物主, 俾無亂雜之弊, 以爲聊賴之地爲白齊.

一, 赴燕人八包, 本以人蔘充給者, 而間因蔘貴, 代以銀包是白如尼, 今又以家蔘復舊例, 而定元包, 則入送之蔘, 乃是家植者, 貿聚充入之節, 家蔘物主, 自當句管是白如乎, 亦令華城尾蔘契人, 次知舉行為白齊.

一, 契人之優其生業, 居之華城者, 蓋因城內人戶之未及殷盛, 屋廬之尙櫛比是白乎, 則其所築室奠居者, 將爲永久長子孫之計, 決不可苟且草率, 竟無改觀之是白如乎, 使二十戶契人, 構瓦屋於大路南北, 修治巷區, 列置隣比, 俾有成聚之效爲白齊.

一, 二十戶多是富實物主, 而蔘帽之貿遷去來, 事甚繁多, 則有非一物主之所能獨辦, 必待差人隨從之夾助, 一物主之差人隨從, 多或至五六人, 少不下數三人, 若或以各處所在者, 任其差雇, 則二十人外, 更無增戶之道, 殊非移接物主之本意是白如乎, 二十契人, 各其差人隨從,

俱爲率去，皆於物主 家傍近之處，隨其事力之多寡，亦令物主助給，各 成屋子，以爲戶口增益之道爲白乎矣，不爲帶去 差人成置家舍，而潛用他處之差人者，自留府摘 發論罪爲白齊。

一，蓼帽雖是元定主管物貨，而西南去來之際，苟有 可以質遷料販之物，則不拘某種，許其隨意買賣，俾爲利益之地爲白齊。

一，契人雖多富實者，而新移奠接之際，廣貿物貨之 時，以其私力，似有不逮之患，以略干官錢，從便假 貸，然後庶爲接濟之道，以慶尙監營所管南倉錢 五萬兩，平安兵營留庫錢五萬兩，合十萬兩，移屬 **華城府**，使之限年許貸於契人處，以爲資賴之地，收其利殖，俾作修城之需爲白齊。

一，新移築室之際，材木之卒難辦得，事勢固然，不可 不別般措處，畿內無船材松田及私養山願賣人 處，從便許斫，以爲及時拮据之爲白齊。

一，今此應募者皆是世居京城之人，若使之遽捨家產，盡 室移徙，則亦不無難便窒礙之端，以其子與弟中 謹慎可合者，從所願代送爲有矣，契案姓名，則以 當者懸錄以代送，誰某名下懸注爲白乎矣，子與 弟外，雖叔侄與四寸，竝勿許代爲白齊。

一，契人之或買家蓼，或買官帽，散出西南之際，若無 公文成給，則外道諸邑，未必着意看顧，私商雜類，亦易從中侵奪，每於出送差人之際，自**華城府**各 各成給關文，以爲憑考於諸道諸邑之地爲白齊。

一，應募人中，或以醫譯爲業，貢物資生者，有不可以 移居**華城**之故，遂廢本業是白如乎，**華城**之距京城，不可半日程，醫譯本業，依前隨行是白遣，貢物則 使其子弟，次知看檢爲白齊。

一，今此實戶移接之舉，實爲**華城**所重之有在，則如 是成節目，各項區劃，豈但爲渠輩之生理而已乎，要使一城之內，民戶殷庶，改觀之效，不日可期是 白如乎，若其成就之遲速，惟在誠意之勤慢，渠輩 俱以世業醫譯之人，亦知奉承德意之道，毋但 以利不利爲心，交相勸戒爲白乎矣，誠實勤恪者，拔例擢用，既有草記批旨教是白如乎，如或有 追悔怠忽之類，浮浪乖亂之習，又或欺人專利，操 縱生弊者，則自契中摘發告官，自官家廉察查實，隨現嚴繩，斷不饒貸爲白齊。

一，富戶應募，既以二十戶定額，錄名成案，一置本司，一置留府，而日後若或漸次加數，則不但分利減 少，不足資生，人數多則必有不擇雜亂之弊，二十 人外，更勿加定一人，如或有頗有罪，至於除案者，則必使渠輩，更擇勤實可合人，告于留府，以爲轉 報本司錄案踏印之地爲白齊。

一，今此富戶募入帽蓼區劃，實爲城內人民殷庶之 方，則城內原居之人，亦得霑溉之利，然後可爲 朝家一視之政，無論帽蓼利條，自都中每年一千 兩式分半劃給於本府校吏廳，以爲均被惠澤之地爲白齊。

一，官錢十萬，既已許貸，尾蓼作契，亦爲移屬，官帽家 蓼，專管區劃是白乎，則分排之際，出納之道，不可 不一一消詳，別有成式，此則使渠輩，商量便否，爛 熯相議，迫成節目，自本府轉報本司，以爲成貼遵 行之地爲白齊。

一，未盡條件，追後磨鍊爲白齊。

<비변사등록 185책, 정조 21년 1797년 02월22일(음)>

경제/상업

貢市人이 전달한弊端을 바로 잡을 方策에 대해 보고하다

비변사에서 아뢰기를, “공시인(貢市人)에게 물은 폐막에 대한 소회(所懷)를 묘당에서 초기(草記)하라고 명하셨습니다. 그 소회를 보면, 입전(立塵) 시민(市民)들은 군수단(軍需緞)은 각영에서 별도로 사오는 것이 고례(古例)인데, 근래에는 본전(本塵)에만 부담시키는 바람에

이로 인해 국용(國用)의 진배가 어려워졌습니다. 그 영문(營門)에서 전과 같이 특별히 사게 하는 일입니다. 군수에 필요한 것은 사체가 중대하므로 입전에서 가져다 쓰는 것이 전례가 된 지 오래입니다. 국용의 진배를 핑계로 영문에서 무취(貿取)하는 일을 면하고자 하는 것은 행위가 속임수를 쓰는 것이고, 말 역시 외람된 일이니 내버려 두도록 하겠습니다. 내외 어물전(魚物廩) 시민들은 정묘년 폐막을 물을 때 광주(廣州)의 도고인(都賈人)을 묘당에서 적발하여 엄히 다스렸습니다. 모리배가 북상(北商)과 결탁하여 서울로 올라오는 어물을 값을 서로 올리려고 도고에 쌓아두니 전처럼 엄히 신칙하는 일입니다. 광주는 서울 가까운 곳이라 어물을 모두 독점하여 본전(本廩)이 이익을 잃게 하는 것은 조정의 금법을 어기는 것일 뿐만이 아닙니다. 본사에서 전에 이미 관문으로 신칙하고 엄히 다스린 것이 한 두 번이 아닌데 조금도 수그러들 줄 모르고 전처럼 폐단이 되고 있으니 백성의 습성은 매우 놀랍습니다. 경조(京兆)에 감결을 받고 해부(該府)에 관문(關文)을 보내 엄히 금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생선전 시민들은 내국에 봉납하는 생 계의 값이 1마리 당 2푼 5리인데 어부계(漁夫契)에서 주원(廚院)에 납부하는 값은 1마리 당 쌀로 3되입니다. 어부계의 예에 따라 지불하도록 하는 일입니다. 당초에 규식을 정할 때에 해아린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어부계의 수가(受價)에 따르려고 이 청원이 있는 것은 역시 경솔하고 분수를 넘는 일입니다. 전에 이미 본사에서 초기하여 그냥 두도록 하였으니 지금 논할 것이 없습니다. 현방(懸房) 시민들은 현방을 지탱하기 어려운 폐단이 둘인데, 하나는 여염의 사도(私屠:사사로운 도살)가 날로 더욱 치성하므로 속수무책으로 이익을 잃고 흠어질 지경을 면치 못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각 궁의 하례(下隸)들이 무역이라고 칭하면서 왕래하며 폐단을 끼치는 것을 묘당에서 초기(草記)하고 금단하였으나 시행한 지 오래지 않아 전날과 다름없으니 엄히 금단하고, 혜화문(惠化門) 밖의 안감천(安甘川) 등지에 사는 사람이 만 명이 넘으므로 서호(西湖)의 예에 따라 포(庖)를 설치하는 일입니다. 사사로운 도축을 금하는 것은 현방의 법이 지엄한데 여항에서 법을 범하는 일이 이어져 전민(塵民)이 이익을 잃는 지경에 이른 것은 전민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조정의 금법을 밝히는 데 있어서도 엄히 금단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신칙하지 않은 법사당상(法司堂上)을 우선 중중추고(從重推考)하고 더욱 마음 써서 살피고 신칙하되 발견되는 대로 엄히 다스리도록 하겠습니다. 궁속(宮屬)이 무역할 때에 현방에 폐단을 끼치는 것을 조정의 신칙이 전후로 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금하지 않아서 폐단이 다시 전과 같이 된 것은 법과 기강으로 헤아려보아도 그지없이 해괴합니다. 내사(內司)에 분부하여 각별히 엄히 금하되 혹 고치지 않았다가 다시 소문이 들리는 일이 있으면 신칙하지 않은 당해 중관(中官)을 엄히 다스리겠다고 일체 신칙하겠습니다. 포를 설치하는 일에 있어서는 현방의 수를 정한 법의(法意)가 있는데, 더 설치하고자 하는 것은 매우 경솔하고 분수를 넘는 일이니 내버려 두도록 하겠습니다. 사재감(司宰監) 공인들은 본공(本貢) 가운데 흰 새우와 소어(蘇魚)는 대신 소금을 봉납하는데 소백대염(蘇白代鹽)이라고 하며 그 쓰이는 인정(人情)은 원 소금 주인과 반씩 부담한 지 이미 1백 여 년에 이르렀습니다. 갑자기 정묘년(丁卯年:순조7, 1807)에 폐막을 물을 때에 원 소금은 4분의 1을 부담하고 소백염은 4분의 3을 부담하게 하였는데 이전의 예에 따라 반씩 부담하게 하는 일입니다. 소어와 흰 새우를 소금으로 바꾼 것은 원소금을 바치는 명색이 각기 달랐습니다. 그러므로 그 진배의 다소에 따라서 정비(情費)가 차이가 나게 된 것은 전번의 작정이 아마도 의의가 있겠습니까만, 지금 소백염의 지출비용이 원 소금과 거의 다름이 없으므로 이 청원이 있는 것은 괴이할 것이 없습니다. 주원(廚院)에서 그 진배를 헤아려서 정채를 감하여 한 쪽에만 많이 부담하는 근심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내국의 사향계인(麝香契人)들은 본원의 별무사항(別貿麝

香)은 적어도 2백 여 부(部)가 못되지 않고 많을 경우 혹 4백여 부에 이릅니다. 그런데 받는 값은 1부당 2냥인데 시가는 4~5냥이라서 해마다 본전을 잃고 있습니다. 이후로는 매년 별제(別製)에 쓰이는 사항은 산지 각읍에 별복정(別卜定)하는 일입니다. 별무(別貿)로 받는 값은 시가(市直)를 당하지 못하는 것은 형편이 참으로 그러합니다만 각읍에 새로 복정하는 일은 필시 민읍에 폐단을 끼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갑자기 논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으니 그대로 두도록 하겠습니다. 지의계(地衣契) 공인들은 본공인이 지탱하기 어려운 폐단은 넷입니다. 그 하나는, 호조의 도하식자(都下席子:한꺼번에 값을 지불하는 돛자리) 8천 장 가운데 1천 5백 장을 신축년(辛丑年:정조5, 1781)에 이유 없이 삭감하여 6천 5백 장의 값만 지출하였는데 그 돈으로 지의를 마련하려면 7백 20여 부(浮)에 지나지 않으니, 어찌 1년에 수천 부의 진배를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 하나는, 내입(內入)하는 지의는 도하(都下) 외의 것으로 경술년(庚戌年:정조14, 1790)에 특별히 공폐(貢弊)를 진념하여 매월 말에 들어간 바의 성책(成冊)에 따라 배설방(排設房)에서 호조에 계하(啓下)하여 별도로 값을 받도록 정식이 되어 있으나 근래 성책의 계하가 폐하고 시행되지 않으니 진배는 있고 값을 받는 일은 없습니다. 그 하나는, 수원(水原)에 행행할 때 용양봉저정(龍驤鳳翥亭)은 본공인이 거행하고, 그 밖의 여러 참은 그 읍에서 거행하였습니다. 근래에는 본공인이 진배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는, 궐 내외 여러 상사(上司)의 하례(下隸)들이 빼앗아가거나 빌려가는 폐단을 칙교(勅敎)로 금단하고 묘당에서 엄감(嚴甘)하였으나 이 폐단이 다시 생겨나 손해를 보는 것이 무수히 많습니다. 모두 옛 정식으로 바로잡는 일입니다. 1년에 진배하는 것이 수천 부(浮)인데 본조에서 도하(都下)하는 것은 7백 여 부에 지나지 않으므로 공인이 청원하는 것도 괴이할 것이 없습니다. 이미 그 실상이 이와 같음을 들었으니 바로잡아 고칠 방도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해조에 분부하여 별달리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내입하는 지의는 성책 계하하여 값을 받게 하는 것이 정식에 있는데도 성책을 폐기하고 시행하지 않는 것은 필시 중간에서 조종하는 소치입니다. 액정서(掖庭署)에 엄히 신칙하여 정식에 따라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원에 행행할 때 외읍 여러 참(站)의 공인이 담당하는 것은 필시 일의 형편으로 인해 참작하여 정한 것인데 진배만 있고 값을 받는 일이 없다면 그들이 원망하는 단서가 됩니다. 해조에서 좋은 쪽으로 구처(區處)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사 하례들이 빼앗거나 빌려가는 폐단을 조정에서 신칙하고 금하였는데도 전후에 어떻게 하였기에 폐단이 전과 같다니 매우 놀라운 일입니다. 이는 엄히 금하지 않으면 실로 공인이 지탱하기 어려운 단서가 될 것입니다. 각사에 감결을 받고 엄히 신칙하도록 하겠습니다. 화피전(樺皮塵)·혜전(鞋塵)·청밀전(淸蜜塵)·장목전(長木塵)·면자전(綿子塵)·진사전(眞絲塵)·상전(床塵)·연초전(煙草塵)·치계전(雉鷄塵)·내외시전(內外匙塵)·우전(隅塵)·내세기전(內貫器塵)·의전(衣塵)·거자전(炬子塵) 시민들은 통공(通共)한 뒤 장차 흩어질 지경이니 난전(亂塵)의 금법을 다시 밝히는 일입니다. 통공을 금하면 실로 그들이 이익을 얻는 방법이 되겠지만, 도고의 법은 실은 많은 백성의 공공(共公)의 이익이 아닙니다. 당초 작정할 때 육의전(六矣塵)의 도고만 허용하고 나머지는 모두 통공한 것은 실로 조정에서 법을 정한 뜻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행한 지 오래되었으므로 고쳐서는 옳지 않습니다. 지금 이 전 사람들이 어지럽게 호소하는 것은 오로지 바라는 바를 이루겠다는 탐욕스런 마음에서 나온 것이니 백성의 습성이 해괴합니다. 모두 그냥 두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답하였다.

司啓曰，貢市人詢瘼所懷，有令廟堂草記之命矣，取見其所懷，則立塵市民等以爲，軍需綴屬，各營別付貿來，乃是古例，而近來專策於本塵，國用進排，因此窘遁，自其營門，如前別貿事也，軍需所用，事體既重，立塵執用，爲例亦久，而欲藉國用之進排，得免營門之貿取者，跡涉騙巧，

言亦猥屑，置之，內外魚物廛市民等以爲，丁卯詢瘼時，廣州都賈人，廟堂摘發嚴繩矣，牟利之輩，締結北商，上京魚物，互相增價，積峙都賈，依前嚴飭事也，廣州以近京之地，都執魚物，使本廛失利，不但有違於朝禁，自本司前已關飭嚴繩，非止一再，而少不知戢，爲弊如舊，民習極爲痛駭，捧甘京兆，發關該府，使之嚴加禁斷，生鮮廛市民等以爲，內局封納生蟹，每箇價爲二分五厘，而漁夫契廚院所納，每箇價米爲三升，一依漁夫契例上下事也，當初定式，自有斟量，而必欲一遵漁夫契受價，有此稱冤，亦涉屑越，前已自本司草記，置之，今無可論，懸房市民等以爲，懸房難支之弊有二，一則閭閻之私屠，日益熾盛，故束手失利，不免渙散之境，一則各宮奴屬，稱以貿易，往來貽弊之端，自廟堂草記禁斷矣，行之未久，無異前日，竝嚴加禁斷，且惠化門外安甘川等地，居民不下萬數，依西湖例設庖事也，私屠之禁，懸法至嚴，而閭巷之間，犯科相續，至有廛民失利之境，不但爲廛民地，其在申朝禁之道，不可不嚴加禁斷，不飭之法司堂上，爲先從重推考，使之加意察飭，隨現痛繩，官屬貿易之時，貽弊懸房，朝家申飭，前後截嚴，而不有飭禁，弊復如前，揆以法綱，萬萬駭然，分付內司，各別嚴禁，如或不悛，復有所聞，則當該不飭之中官，斷當重勘之意，一體申飭，至於設庖一事，懸房定數，法意有在，更欲添設，極涉屑越，置之，司宰監貢人等以爲，本貢中白蝦蘇魚，以鹽代封，名之曰蘇白代鹽，而所用人情，與元鹽主人，折半舉行，已至百餘年，忽於丁卯詢瘼時，改以元鹽，則爲四分一，蘇白鹽則爲四分三，一從已例，分半舉行事也，蘇白之換鹽，與元鹽貢名色各異，故隨其進排之多少，有此情費之參差者，前此酌定，必有意義，而今則蘇白鹽用下，與元鹽殆無異焉，故有此稱冤，似或無怪，令廚院量其進排，減其情債，俾無偏多之患，內局麝香契人等以爲，本院別貿麝香，少不下二百餘部，多或至四百餘部，受價每部爲二兩，而市價爲四五兩，年年落本，此後則每年別製所用麝香，別卜定於所產各邑事也，別貿受價之不能當市直，事勢固然，而各邑之創出新卜定，必有貽弊民邑之患，有難遽議，置之，地衣契貢人等以爲，本貢難支之弊有四，其一，戶曹都下席子八千張內，一千五百張，辛丑無端見減，只以六千五百張上下，而以地衣磨鍊，則不過七百二十餘浮，豈能當一年數千浮進排，其一，內入地衣，係是都下外，庚戌特軫貢弊，每月終隨所入成冊，自排設房，啓下戶曹，別受價定式，而近來成冊啓下，廢而不行，有進排無受價，其一，**水原**幸行時，龍驤鳳翥亭，本貢舉行，其外諸站，自其邑舉行矣，近來本貢，專當進排，其一，闕內外諸上司下隸輩，奪去借去之弊，飭教禁斷，廟堂嚴甘矣，此弊復生，見失無數，竝依舊式釐正事也，一年進排，當爲數千浮，而本曹都下不過爲七百餘浮，則貢人稱冤，無或爲怪，既聞其實狀如此，則不可無矯革之道，分付該曹，另加矯揉，內入地衣，成冊啓下，使之受價，既有定式，而成冊之廢而不行，必是中間操縱之致，嚴飭掖庭署，一遵定式舉行，**水原**幸行時，外邑諸站之貢人擔當，必是因事勢酌定者，而有進排無受價，爲渠輩稱冤之端，令該曹從長區處，各司下隸或奪或借之弊，朝家飭禁，前後何如，而爲弊如前，事甚駭然，此不痛禁，實爲貢人難支之端，捧甘各司，更加嚴飭，樺皮廛·鞋廛·清蜜廛·長木廛·綿子廛·眞絲廛·牀廛·烟草廛·雉鷄廛·內外匙廛·隅廛·內貫器廛·衣廛·炬子廛市民等以爲，通共之後，將至渙散之境，欲申亂廛之禁事也，若禁通共，則誠爲渠輩專利之道，而都賈之法，實非衆民共公之利，當初酌定，只許六矣廛之都賈，餘皆通共，朝家法意，固有在矣，行之已久，不可變改，今此廛人輩紛紜呼訴，專出於希覬之濫想，民習可駭，竝置之何如，答曰，允。

<비변사등록 199책, 순조 9년 1809년 03월 14일(음)>

경제/상업

貿穀을 防禦하거나 執留하는 폐단이 없도록 各道와 3都에 嚴飭할 것을 청하다

○ 비변사에서 아뢰기를, “삼가 하교(下敎)에 의하여 강상(江商)과 시장 백성들을 본사(本

司)에 불러 유사당상(有司堂上)과 평시서제조(平市署提調)·한성부당상(漢城府堂上)이 전후하여 비지(批旨) 안의 내용을 상세히 효유(曉諭)해서, 각기 조정의 법례(法例)는 원래 곡식을 무역하는 일이 죄가 되지 않는다는 본래의 뜻을 환히 알도록 하고, 다시 각기 생업에 안주해서 혹시라도 놀라고 겁먹어 배로 곡식을 무역하는 일을 관망하면서 진행시키지 않거나 시장의 판매가 막혀 통하지 않는 일이 없도록 하면, 거의 모두가 기뻐하며 돌보아 어루만져주시는 덕의(德意)를 칭송할 것입니다. 생각하건대, 근래 도성의 곡물이 품귀한 것은 오로지 각 도에서 막고 중도에서 잡아 두는 데에서 연유하는 폐단이라고 합니다. 일찍이 이 일로 초기(草記)하고 행회(行會)하여 제칙(提飭)하기가 엄중하였습니다. 영읍(營邑)의 신하가 조정의 명령을 엄중하게 여겼다면 어찌 쓸모없는 것으로 내버려 털끝만큼이라도 용납하였겠습니까. 다시 말을 만들어 엄하게 신칙하되 여러 도의 도신(道臣) 및 화성(華城)·강화(江華)·개성(開城) 유수(留守)에게 삼현령(三懸鈴)으로 알리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답하였다.

司啓曰，謹依下敎，招致江商市民等於本司，有司堂上與平市提調京兆堂上，將前後，批旨內 事意，詳細曉諭，俾各洞然知朝家法例，元無以貿穀 爲罪之本意，更令各安其業，毋或驚怯，以致船貿之 觀望不進，市賣之壅闕不通，則舉皆歡欣攢祝，莫不 頌軫恤撫摩之德意，而惟以近日都下穀物之 踊貴，專由於各道之防塞，中路之執留爲弊云，曾以 此事草記行會，提飭申嚴矣，營邑之臣，若以朝令 爲重，則寧容弁髦乃爾，更爲措辭嚴飭，三懸鈴知委 於諸道道臣及華城·江華·開城留守處，何如，答曰，允．

<비변사등록 221책, 순조 33년 1833년 03월19일(음) >

(3) 교통

경제/교통

편리한 糧穀의 放出을 위해 大路에 곡물을 비축하는 일에 대해 아뢰다

아뢰기를, "호조에서 아뢰, 전 현감(縣監) 여작(呂焯)의 상소에 관한 비변사의 회계에 대하여 전교하시기를 '소(疏)에 이른바 대로(大路)에 곡물을 비축하면 양곡의 방출이 편리하다는 말은 진정 소견이 있다. 해조로 하여금 헤아려 거행하게 하라'고 전교하셨습니다. 호·영(湖嶺) 각읍의 비축은 충분한 듯하나, 힘이 넉넉하지 못하여 돌아볼 겨를이 없습니다. 은진(恩津)·니산(尼山)·공산(公山)·천안(天安)·직산(稷山) 등은 양호(兩湖)의 대로에 해당하고 충원현(忠原縣)은 영남의 처음 들어서는 길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위급한 일이 발생할 경우 모든 책응에 있어 여러 다른 고을에 비해 소용되고 소용되지 못함이 현격히 다르니, 곡물의 비축은 진정 매우 급한 일입니다.

신들이 하교를 받은 이후 반복해 여러모로 헤아려 보았습니다. 결포(結布)에서 서량(西糧)을 줄여준 이후 해조에서 관리하여 징수하는 것은 전세(田稅)와 삼수량(三手糧)뿐입니다. 이는 항상 이어 나가기에도 어려움을 걱정하는 형편이므로 덜어내어 남겨 둘 수 없는 일이니 더는 손댈 곳이 없습니다. 다만 우읍(右邑) 등지에서 구관청(句管廳)을 위해 징수하여 쌀로 바꾼 것 및 기축조(己丑條)의 세폐(歲幣)를 위한 무명 등의 물건을 시세(市勢)에 따라 쌀로 바꾸어 구관미(句管米)와 함께 그대로 해읍(該邑)에 남겨두면, 본읍(本邑)에서는 상납의 병폐에서 벗어 날 수 있어 실로 공사(公私)가 모두 편의합니다. 이 밖에 또 상평청에 공물을 바꾸어 납부하는 일이 있으므로, 값으로 내는 무명의 수를 계산하여 한결같이 대동상정(大同詳定: 공물 등을 일정한 액수의 쌀로 받는 것)에 따라 이를 참작해 쌀로 바꾸면, 그 수량도 적지 않을 듯합니다. 이들 쌀로 바꾼 것을 모두 나누어 남겨 두어 조적(糶糴)하게 하되, 한편으로는 흉년에 진출하고 구호하는 곡물로 삼고 한편으로는 앞으로의 불우에 대비하면 사기(事機)에 맞습니다. 상평청의 경우는 주관자가 있으니 신조(臣曹)에서 임의로 할 수 없습니다. 묘당으로 하여금 헤아려 여쭙어 처리하게 하소서.

또 기전(畿甸)의 진위(振威)·수원(水原)·과천(果川)·죽산(竹山)·양지(陽智)·용인(龍仁) 등의 읍 역시 직로(直路)의 요충지입니다. 마땅히 한결같이 거행되어야 할 듯하나, 모든 역(役)의 가미(價米)가 모두 선혜청에 들어가므로 해조에서 감히 의논할 수 없습니다. 충원 등 6읍의 원회부(元會付)에서 잡곡을 쌀로 바꾼 것 및 상평청의 공물을 쌀로 바꾼 것과 구관청에서 쌀로 바꾼 것 등에서 우선 그 대략의 수를 들어 별단으로 서계(書啓)하여 예람에 대비함을 감히 아뢰니, 전교하시기를 아뢰 대로 하라. 이 숫자도 적으니 다시 헤아려 비축하라'고 전교하셨습니다. 본청의 당상 이시방이 명을 받아 지방에 나가 있습니다. 그가 조정에 돌아오기를 기다려 그 수를 자세히 조사하여 거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하니, 윤허한다고 답하였다.

啓曰, 以戶曹啓辭, 以前縣監呂焯上疏備邊司回啓, 傳曰, 疏中所謂大路儲穀, 以便放糧之說, 誠有所見, 令該曹, 料理舉行事, 傳教矣, 湖嶺各邑, 所儲似優, 力且不贍, 無暇顧念, 而恩津·尼山·公山·天安·稷山等處, 則當兩湖大路, 忠原縣, 則當嶺南初程, 脫有緩急, 凡干策應, 視諸他邑, 緊歇懸殊, 儲峙糧餉, 誠爲切急之務也, 臣等, 伏承下教以來, 反覆料理, 非不至矣, 一自結布西糧蠲減之後, 該曹照管所捧, 只田稅三手糧, 而此則常患難繼, 不可除出留置, 更無下手之地, 但於右邑等處, 爲句管廳, 應捧作米, 及己丑條歲幣次木等物, 以此從市直作米, 與其句管米, 而仍留該邑, 則本邑得免上納之弊, 公私實爲兩便, 此外又有常平廳換納貢物之事

故, 考出價木之數, 一依大同, 詳定斟酌作米, 其數亦似不少, 竝將此等作米, 分置糶糴, 一以爲飢歲賑救之地, 一以爲他日不虞之備, 允合事機, 常平廳則自有主者, 非臣曹所可擅便, 令廟堂, 商量稟處, 且畿甸如振威·水原·果川·竹山·陽智·龍仁等邑, 亦是直路要衝, 似當一體舉行, 而百役價米, 皆入於宣惠廳, 該曹, 不敢容議, 忠原等六邑元會付雜穀作米, 及常平廳貢物作米, 旬管廳作米, 歲幣木作米等, 姑舉其大略之數, 別單書啓, 以備睿覽之意, 敢啓, 傳曰, 依啓, 此數亦少, 更爲料理儲置事, 傳教矣, 本廳堂上李時昉, 受命在外, 待其還朝, 詳查厥數舉行, 何如, 答曰, 允.

<비변사등록 12책, 인조 26년 1648년 12월23일(음)>

경제/교통

沿路 6邑에 유치되어 있는 곡물을 마련하는 방법과 수에 관해 아뢰다

아뢰기를, "호조에서 아뢰기를 '전 현감 여작(呂焯)의 상소에 대한 비변사의 회계에 대하여 전교하시기를 '큰 길가에 곡물을 비축하면 방출에 편리하다고 상소에서 한 말은 진정 소견이 있다. 해조로 하여금 헤아려서 거행하게 하라'고 전교하셨습니다. 호·영(湖嶺) 각읍의 비축은 여유가 있는 듯하나 힘이 부족하여 돌아볼 겨를이 없습니다. 그러나 은진(恩津)·니산(尼山)·공산(公山) 천안(天安)·직산(稷山) 등은 호서와 호남의 큰 길에 해당하고, 충원현(忠原縣)은 영남의 첫 길에 해당합니다. 만약 위급한 일이 있어 지원해야 할 경우 다른 여타의 읍에 비하여 긴요함과 그렇지 아니함이 현격히 달라 식량의 비축은 진실로 매우 다급한 사무입니다.

신들이 엮드려 하교를 받든 이후 반복하여 여러가지로 헤아려 보았습니다. 결포(結布)와 서량(西糧)을 경감시킨 이후, 해조에서 관리하고 징수하는 것은 전세(田稅)와 삼수량(三手糧) 뿐으로 이는 늘 대기 어려운 근심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에서 덜어내어 남겨둘 수 없으므로 달리 손 댈 곳도 없습니다. 다만 구관청(旬管廳)이 위에서 말한 읍 등지에서 징수하여 쌀로 바꾼 것과 기축조(己丑條)의 세폐에 관한 차목(次木:차수별(次數別) 무명) 등의 물건이 있으니, 이를 시장의 형편에 따라 쌀로 바꿔 구관미(旬管米)와 같이 해당 읍에 두면, 본 읍에서는 상납하는 폐단에서 벗어날 수 있어 공사간에 모두 편리합니다. 이 밖에 또 상평청에서 공물을 바꾸어 바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목(價木)의 수를 계산하여 대동법(大同法)과 상정법(詳定法)에 의하여 참작하여 쌀로 바꾼 그 수도 적지 않을 듯합니다. 아울러 이들 쌀로 바꾼 것을 나누어 두고 조적(糶糴)함으로써, 한편으로는 흉년이 든 해에 구호용으로 사용하고 한편으로는 후일 뜻밖의 재난에 대비하는 것이 일의 형편상 타당합니다. 하오나 상평청은 주관하는 자가 따로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조(臣曹)에서 마음대로 할 수 없으니, 묘당으로 하여금 헤아려 아뢰어 처리하도록 하소서.

또 경기의 진위(振威)·수원(水原)·과천(果川)·죽산(竹山)·양지(陽智)·용인(龍仁) 등의 읍도 역시 직로(直路)의 요충지입니다. 그러므로 다함께 거행하는 것이 타당할 듯 하오나, 모든 역(役)의 가미(價米)가 모두 선혜청을 들어가므로 해조에서는 감히 논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충원 등 6읍의 원회부(元會付)에 관한 잡곡 외의 쌀 및 상평청의 공물을 쌀로 바꾼 것과 구관청의 바꾼 쌀 및 세폐목(歲幣木)을 쌀로 바꾼 것 등을 우선 그 대략의 수만을 들어 별단으로 써서 아뢰어 임금님께서 보시는데 대비하였음을 감히 아뢰었더니, 전교하시기를 「아뢰는 대로 하되, 이 수량도 적으니 다시 헤아려서 비축하라」고 전교하셨습니다. 이에 「본청의 당상 이시방이 명을 받아 지방에 있으니, 그가 돌아오기를 기다려 그 수를 자세히 조사하여 거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하니, 답하기를 윤택하다고 전교하셨습니다.

그 후 상평청 당상 이 시방에게 묻고 상의하였더니, 충원 등 6읍의 공물가(貢物價)를 환산한 수는 쌀이 5백 85석이고 무명이 44동 8필이라 하였습니다. 이는 마땅히 각읍에 두어야 합니다. 이 밖에 본청의 곡물로써 현재 본도에 있는 것은 1만 4천 9백여석 중 큰 길가 6읍에 비축한 쌀이 이미 3천 9백여 석에 달합니다. 그리고 벽지 읍에 있는 것도 그 가까운 곳에 따라 출하(出荷)하여 옮겨 보내 본읍에 두고, 한편으로는 흉년에 대비하는 자료로 삼고 한편으로는 불시의 수요품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공물을 쌀과 베로 바꾸는 것은 곧 진흥 구호하고 남아 달리 쓰려는 물건이니, 오로지 서울의 기근에 대비하는 자료로 삼아야 합니다. 헤아려 수습하는 때를 맞이하여 그 근본을 잃는 것은 진정 염려스런 일입니다. 쌀로 바꾸는 읍에서는 작년 가을 이미 선소(船所)에 거두어 들여 현재 상납하려 하고 있으니, 다른 고을의 예에 따라 경창(京倉)으로 수송하여 수납하게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전부터 경창에 비축이 없었으므로, 기근으로 인한 진출을 맞이할 때마다 벼슬을 파는 구차스런 일에서 벗어날 수 없었으니, 청(廳)을 설치하고 곡물을 비축하는 것은 그 뜻하는 바가 있었습시다. 연로 6읍에 유치되어 있는 곡물의 수는 위와 같습니다. 이번에 교역하는 쌀과 베를 본청으로 보내게 하여 서울의 기근에 대비하는 자료로 삼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답하기를 '알았다. 헤아려서 더 유치하여 부족한 일이 없게 하라'고 전교하셨습니다. 상평청의 구관당상으로 하여금 헤아려서 더 유치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답하였다.

啓曰, 戶曹啓曰, 以前縣監呂焯上疏備邊司回啓, 傳曰, 疏中所謂大路儲穀, 以便放糧之說, 誠有所見, 令該曹, 料理舉行事, 傳教矣, 湖嶺各邑, 所儲, 以優, 力且不贍, 無暇顧念, 而恩津·尼山·公山·天安·稷山等處則當兩湖大路, 忠原縣則當嶺南初程, 脫有緩急, 凡干策應, 視諸他邑, 緊歇懸殊, 儲峙糧餉, 誠爲切急之務也, 臣等, 伏承下教以來, 反覆料理, 非不至矣, 一自結布西糧蠲減之後, 該曹照管所捧, 只田稅三手糧, 而此則常患難繼, 不可除出留置, 更無下手之地, 但於右邑等處, 有句管廳, 應捧作米及己丑條歲幣次木等物, 以此從市直作米, 與其句管米, 而仍留該邑則本邑, 得免上納之弊, 公私, 實爲兩便, 此外, 又有常平廳, 換納貢物之事故, 考出價木之數, 一依大同, 詳定斟酌作米, 其數, 亦似不少, 竝將此等作米, 分置糶糴, 一以爲飢歲賑救之地, 一以爲他日不虞之備, 允合事機, 常平廳則自有主者, 非臣等所可擅便, 令廟堂商量稟處, 且畿甸, 如振威·水原·果川·竹山·陽智·龍仁等邑, 亦是直路要衝, 似當一體舉行, 而百役價米, 皆入於宣惠廳, 該曹, 不敢容議, 忠原, 等六邑, 元會付雜穀外米, 及常平廳貢物作米, 句管廳作米, 歲弊木作米等, 姑舉其大略之數, 別單書啓, 以備睿覽之意, 敢啓, 傳曰, 依啓, 此數亦小, 更爲料理儲置事, 傳教矣, 本廳堂上李時昉, 受命在外, 待其還朝, 詳查厥數, 舉行何如, 答曰, 允事傳教矣, 問諸常平廳堂上李時昉, 與之相議, 則忠原等六邑貢物價相換之數, 米五百八十五石, 零木四十四同八匹云, 當爲留置各邑矣, 此外本廳穀物, 時在本道者, 一萬四千九百餘石內, 大路六邑所置米租, 已至三千九百餘石, 而僻邑所在者, 亦可隨其便近, 分糶移置, 以此仍留本邑, 一以爲備荒之資, 一以爲不時之需, 而今此貢物, 換作米布則乃是賑餘轉辦之物, 專爲京中備荒之地, 方當料理收拾之初, 經失其本, 誠爲可慮, 至於作米之邑則上年秋, 已捧於船所, 方將上納, 依他官例, 輸捧京倉, 宜當, 自前, 以京倉無儲之故, 每當賑餓, 未免賣爵苟且之舉, 設廳儲穀, 其意有在, 沿路六邑, 曾所留置之穀, 其數如右, 今番懋遷米布, 則使之輸致本廳, 以爲京中備荒之資, 何如答曰, 知道, 量加留置, 俾無不足之患事, 傳教矣, 令常平廳句管堂上, 料理, 加置, 何如答曰, 依啓.

<비변사등록 13책, 인조 27년 1649년 02월01일(음)>

경제/교통

江華留守 閔鎮遠 등이 鎭江牧場을 폐지하지 않고 옮겨 설치하는 문제에 대해 논의하다

지난달 29일 대신과 비국 당상을 인견하여 입시하였을 때에, 강화유수 민진원(閔鎭遠)이 아뢰기를, "무자년 겨울에 신이 비국 당상으로 입시하였을 때에, 박권(朴權)이 진강목장(鎭江牧場)의 폐지문제를 아뢰어 윤허를 받은 바 있으나 그 후 사복시의 낭청이 명을 받들고 적간(摘奸)하러 나갔다가 목장을 폐지해서는 불가하다는 뜻으로 품계하였으며, 박권(朴權)이 또 장계를 올려 그 불가함을 역설하였으나 비국에서 아직도 회계(回啓)하지 못하였습니다. 이 문제가 수년 동안 미결(未決)로 되어 있으므로 본부에는 장애되는 일이 많습니다. 오늘 대신에게 하문하여 처리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진강목장 문제를 박권(朴權)이 경연의 자리에서 폐지를 요청하여 윤허하였었다. 그러나 그 후 사복시의 낭청이 품계하였기 때문에 지금까지 미결로 되어 있다. 이 문제를 어찌해야 하겠는가?"하였다.

영의정 이여(李畬)가 아뢰기를, "그 장계는 아직도 있는데, 일은 모름지기 상의한 뒤에야 결정할 수 있으므로 아직 품정(稟定)하지 못하였습니다. 사복시 낭청의 적간 서계(摘奸書啓)에는 목장의 폐지가 매우 중난하다고 말하였습니다. 신도 일찍이 사복시 제조를 지냈는데 본시(本寺)에서 그 목장을 가장 중하게 여기는 것은 대체로 당초의 설립이 효묘조(孝廟朝)에 있었고, 뜻하는 바가 있어 다른 목장의 경우와 다르므로 가벼이 폐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강도(江都)를 위급에 임하여 의귀(依歸)하는 곳으로 삼았으니 만약 이 진강(鎭江)으로서 보장(保障)에 힘이 될 수 있다면 존망(存亡)과 관계되는 바가 이 보다 어느 것이 더 크겠습니까? 강도의 수비(守備)에 대한 허와 실이 과연 진강의 목장을 폐지하느냐의 여부에 달렸는지는 신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목장을 들어서 말씀하면 비록 진강(鎭江)을 폐지한다 하더라도 양마(良馬)는 본래 그 종자가 있고 토지에는 관계가 없습니다. 만약 수초(水草)가 풍요한 곳을 가려서 옮겨 놓으면 그 말의 종자는 어느 곳이라 하여 양마가 생산되지 않겠습니까? 또 강도에는 목마(牧馬)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뛰쳐나와 해를 빚어, 농민들이 견디지 못한다 하니 이것도 한 폐단입니다. 진강목장의 말을 앞서의 결정에 의하여 다른 섬에 옮겨놓는 것이 불가할 것이 없을 듯싶습니다."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당초, 보음도(浦音島)에 옮겨 놓으려고 하였다."하였다.

우의정 김창집(金昌集)이 아뢰기를, "국가에서 강도(江都)를 보장의 중요한 곳으로 정하였으니 목장이 강도에 해가 있다면 폐지하는 것이 의당합니다. 그러나 대체로 효묘(孝廟)께서 이곳에 <목장을> 설치한 것은 이는 실로 대계(大計)에서 나왔으므로 바깥 논의는 폐지를 중난(重難)하게 여기는 바입니다. 다만 목장 가까이에 민전(民田)이 매우 많고, 말떼가 뛰쳐나와 화곡(禾穀)을 짓밟습니다. 비록 방책(防柵)을 더 설치하더라도 금지시키지 못하니 이것이 백성의 해가 되는 까닭인 것입니다. 또 말의 방책을 수축하는 역사(役事)도 민폐가 매우 적지 않습니다. 지금 만약 이 목장을 내어준다면 입주(入住)하는 인민은 반드시 많을 것이니 어찌 강도에 큰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당초 위에서 내어주라고 명하셨으나 그 후 사복시의 적간으로 인하여 낭청의 한 장 품목(稟目)으로 성명(成命)을 도로 중지시키는 일의 체통에 있어 정상이 아닙니다."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사복시 낭청이 보음도와 진강목장 두 곳을 적간한 뒤에 계품한 것으로서 보음도는 말을 방목(放牧)하기에 불편하다 하였다."하자, 병조참판 박권(朴權)이 아뢰기를, "앞서 목장을 폐지하라는 명이 내린 뒤에 이인엽(李寅燁)이 목장을 보음도에 옮기도록 요청하였습니다. 신은 강도의 어산(魚產)을 오로지 섬에 의지하고 있으니, 이 섬을 잃는다면 본부는 유지하기 어렵다는 뜻으로 아뢰었습니

다. 그후 정옥선(鄭勗先)이 역시 목장으로 적합하지 않다는 뜻으로 품계하였습니다."하였다.

이여(李畬)가 아뢰기를, "보음도가 목장에 적합하지 않다고 하는 것은 물과 풀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백성의 가옥·분묘·전답이 이 섬에 많이 있으므로 백성들이 이를 고민한다고 한다."하였다.

민진원(閔鎭遠)이 아뢰기를, "옛날에는 보음도 주민이 꽤 번성하였는데 근래에는 피폐해져 수십 호에 지나지 않습니다. 만약 목장을 설치하고 그 분묘를 뭉개고 경작을 못하게 하면 백성들은 반드시 안주(安住)할 수 없을 것입니다. 목장의 폐지는 대체로 백성을 모으기 위한 것인데 도리어 백성에게 해가 되면 어찌 우려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하였으며, 박권(朴權)은 아뢰기를, "신이 앞서의 장계에 아뢴 바가 있으나 보음도가 이러하다면 사복시의 폐지된 목장도 많이 있습니다. 말떼를 비록 일시에 모두 옮기기는 어려우나 그 가운데 병든 말 및 새끼를 낳지 못하는 것을 서울로 올려 보내고, 그 나머지 양마(良馬)를 폐지된 목장 중 한 곳에 보내는 것이 어찌 어렵겠습니까?"하였고, 이여(李畬)는 아뢰기를, "삼남에 비록 폐지된 목장은 많으나 멀리 옮기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수원(水原)·남양(南陽) 등 강화(江華) 가까운 곳에 어찌 옮길 만한 곳이 없겠습니까?"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낭청의 품목(稟目) 가운데 '소와 말이 어찌 위급에 힘이 되지 않겠습니까?'라는 말도 있다."하였다.

형조판서 유득일(兪得一)이 아뢰기를, "당초 목장을 옮기도록 윤허하신 성의(聖意)는 대체로 보장 지역을 중하게 여기신 데에서 나왔습니다. 신이 사명(使命)을 받들고 강도에 갔을 때에 본즉 진강목장의 말이 화곡(禾穀)을 짓밟고 뜯어 먹어 민폐 역시 많았습니다. 다만 사복시제조(司僕寺提調)의 말을 들은즉 말을 다른 섬에 옮기려면 다치거나 죽는 일이 많다고 하였으니, 그러하다면 이것도 아까운 일입니다. 그리고 바깥 논의는 모두 '효종대왕(孝宗大王)께서 큰 뜻이 있어 이 목장을 설치하셨다.'라고 하니, 비록 이 목장의 말이 과연 모두 양마인지는 알 수 없으나 갑자기 옮기고 폐지하기가 매우 어렵다면 신의 생각은 지금 높이 목책(木柵)을 설치하고 방책을 높여서 말이 뛰쳐나와 민전(民田)을 짓밟지 못하게 하면 좋을 듯싶습니다. “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당초 인견하였을 때에 하교하였다. 용비어천가(龍飛御天歌)에 이런 말이 있다. '태조대왕께서 타시던 8준마(駿馬) 가운데 한 말은 곧 진강(鎭江)에서 산출된 것으로서 말 종자가 아주 좋았다.'고 하였으니, 폐지하기가 매우 중난하였다. 그러나 강도를 보장 지역으로 삼았으므로 당초 특별히 폐지하라고 한 것이다. 그 후 품목을 본즉 말도 힘이 될 수 있다는 말이 있었으므로 지금까지 결정치 못한 것이다. 이 목장이 강도에 있어 목장의 말이 유리한가? 백성을 모으는 것이 유리한가? 지금 그 경중을 참작하여 결정해야 한다."하였다.

김창집(金昌集)이 아뢰기를, "성상(聖上)께서 목장 말과 백성을 모으는 것 가운데 어느 것이 유리한가 하고 하교하셨으니, 이해를 들어서 말씀하면 백성을 모으는 것이 어찌 목장 말보다 낫지 않겠습니까? 이로써 논한다면 그 폐지 여부는 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하였고, 행사직 이언강(李彦綱)은 아뢰기를, "말을 옮기는 일이 비록 매우 어렵긴 하나 만약 보장 지역에 유리하다면 사복시에 폐지된 목장이 많으니 어찌 옮길 만한 곳이 없겠습니까? 당초의 내어준은 타당했던 일인 듯싶습니다. 어찌 당해 시(寺)의 한 낭청의 말로 인하여 그 편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겠습니까?"

하였으며, 유득일(兪得一)은 아뢰기를, "강도의 손익(損益)이 목장을 폐지하느냐의 여부에

달렸다면 폐지하는 것이 실로 옳습니다. 그러나 이 목장의 설치는 그 내려온 지가 역시 오래이고, 성조(聖祖)의 큰 뜻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사람마다 모두 지금까지 통한스럽게 여깁니다. 마정(馬政)은 비록 작은 일이나 옮기고 폐지함은 아마도 매우 어려운 일인 듯싶습니다."

하였고, 이여(李畬)는 아뢰기를, "강도의 보장으로서 말한다면 목장 말과 백성 모으는 일의 이해(利害)가 어찌 분명하지 않겠습니까?"하였으며, 박권은 아뢰기를, "말떼가 뛰쳐나오는 폐단을 백성들이 견디지 못하니 백성의 해를 제거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목장을> 폐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백성들에게 입주하도록 허용한다면 수백 호를 수용할 수 있으니 어찌 크게 보장에 유익하지 않겠습니까?"

하였고, 민진원(閔鎭遠)은 아뢰기를, "목장 말과 백성을 모으는 일은 그 이해가 현격합니다. 신이 종전에 유수로 있을 때에 이를 몰랐던 것은 아니나 이 목장을 국가에서 소중하게 여기므로 감히 폐지를 요청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무자년의 하문(下問) 때에 비로소 폐지해야 한다고 아뢰었었습니다. 다만 바깥 논의는 대부분 효묘(孝廟)께서 큰 뜻이 있어 마정(馬政)을 진흥시키려고 이를 설치하셨으니, 복수(復讎)와 설치(雪恥)는 지금 비록 바라기 어려우나 이 목장을 보존하면 뒷사람은 오히려 당시의 큰 뜻이 깃들어 있음을 알 것이지요, 실로 예(禮)를 아껴 고삭(告朔)의 양(羊)을 그대로 둔 뜻에 맞습니다. 이는 의리(義理)가 삼엄하여 사소한 이해로 말하여서는 옳지 않으나 이해를 들어서 말씀하면 어찌 현격한 구별이 안 되겠습니까?"

하였으며, 박권(朴權)은 아뢰기를, "효묘조(孝廟朝)에서 뜻한 바 있어 목장을 설치하였으므로 지금 폐지하기 어렵다는 말은 실로 옳습니다. 그러나 진강목장은 효묘의 조치 가운데 한 가지 일에 불과합니다. 영장(營將)과 금군(禁軍)을 설치한 문제 등에서도 성조(聖祖)의 복수·설치의 큰 뜻을 알 수 있으니, 어찌 한 개 목장으로 예를 아껴서 고삭의 양을 그대로 둔 일에 비기겠습니까?"

하였고, 이여(李畬)는 아뢰기를, "인심은 늘 성조의 큰 뜻이 이루어지지 못함으로써 통한으로 여깁니다. 그러므로 이 목장을 폐지해서는 불가하다고 말하지마는 뜻을 잇고 일을 계승(繼述)하는 것은 그 방법이 있고, 굳이 한 목장을 폐지하느냐의 여부에는 있지 않습니다. 또 비록 그 목장은 옮기더라도 그 말을 그대로 둔다면 무엇이 나쁘겠습니까?"하였으며, 김창집(金昌集)은 아뢰기를, "사복시에 폐지한 목장이 많으니 마땅히 가까운 목장에 옮기되 새 말과 묵은 말을 한 곳에 섞어 놓으면 말떼가 많이 손상된다 하니, 묵은 말의 수가 적은 경우 다른 목장으로 옮긴 뒤에 진강의 말을 비로소 보내는 것이 타당할 듯싶습니다."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당초의 결정에 의하여 목장을 옮겨 설치하고, 백성을 모아 경작하여 먹게 할 것을 분부하라."하였다.

민진원(閔鎭遠)이 아뢰기를, "사복시에서 먼저 그 장소를 결정한 뒤에야 거행할 수 있습니다."하였고, 이여(李畬)는 아뢰기를, "목장 말 옮길 만한 곳을 사복시로 하여금 다시 살펴서 여쭙어 처리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하니, 임금이 아뢴 대로 하라고 하였다.

今六月二十九日, 大臣·備局堂上引見入侍時, 江華留守閔鎭遠所啓, 戊子冬臣以備局堂上入侍時, 朴權以罷鎭江場事, 陳達蒙允. 其後司僕郎廳承命摘奸, 以不可罷場之意稟目, 朴權, 又爲狀啓, 力辨其不可, 而自備局尙未回啓, 此事數年未決, 故本府多有窒礙之端, 今日下詢大臣而處之, 何如, 上曰, 鎭江場事, 朴權於筵中請罷, 旣已許之, 而其後以司僕郎廳稟目之故, 至今未決, 此事何如, 領議政李曰, 其狀啓尙有之, 而事須商議, 然後可決, 故姑未稟定矣, 司僕郎廳摘奸書啓, 以罷場重難爲言, 臣亦曾經司僕提調本寺, 最重其場, 蓋當初設立, 在於孝廟朝,

而意有所在，與他牧場有別，故不可輕罷，然既以江都爲緩急依歸之所，而若以此可以得力於保障，則存亡所關，孰有大於此事者乎，江都守備虛實，果係於鎮江罷場與否，則臣未能的知，而以馬場言之，則雖罷鎮江，良馬自有其種，非係土地，若擇水草豐饒處，移置其馬種，則何處不可產良馬乎，且江都多牧馬，故放逸作害，農民不能支堪云，此亦一弊也，鎮江場馬，依前定奪，移置他島，似無不可矣，上曰，當初欲移置于甫音島矣，右議政金曰，國家以江都爲保障重地，馬場若有害於江都，則罷之固宜，而蓋孝廟之設此，實出於大計，故外議所以難其罷也，但馬場近處民田甚多，而馬群逸出，蹂躪禾穀，雖加防閑，亦不能禁，此所以爲民害也，且馬防修築之役，民弊亦甚不貲，今若出給此場，則人民入居者必多，豈非江都之一大助乎，當初自上，既命出給，而其後因司僕摘奸，以郎廳一張稟目，還寢成命，事體則殊常矣，上曰，司僕郎廳，摘奸甫音島鎮江場兩處後稟目，而甫音島則放馬不便云矣，兵曹參判朴權曰，前日罷場命下之後，李寅燁請移牧場於甫音島，臣以江都魚產，專靠於此島，若失此島，則本府難支之意，仰達矣，其後鄭勛先，亦以不合牧場爲稟目矣，李曰，甫音島之不合於牧場云者，以水草之不足乎，上曰，民之廬舍·墳墓·田畝，多在此島，故民以是爲悶云矣，閔鎮遠曰，昔日則甫音島居民頗盛矣，近來凋弊，不過數十戶，若設牧場，夷其墳墓廢其耕作，則民必不能奠居，牧場之罷，蓋爲聚民，而反以害民，則豈不可慮乎，朴權曰，臣之前日狀啓中，有所陳達，而甫音島既如此，則司僕廢牧場，亦多有之，馬群雖難一時盡移，其中病馬及不能孳長者，上來京中，其餘良馬，移送於廢場中一處，何難乎，李曰，三南雖多廢場，有難遠移，水原南陽等江華近處，豈無可移處乎，上曰，郎廳稟目中，亦有牛馬，豈不得力於緩急一款語矣，刑曹判書俞得一曰，當初許移牧場者，聖意蓋出於重保障之地也，臣於奉使江都時見之，鎮江場馬躪齧禾穀，民弊亦多，而但聞太僕提舉之言，移馬他島，則多有傷斃之患云，若爾則此亦可惜，而外議皆以爲孝宗大王有大志，設此牧場云，雖未知此場之馬，果皆良馬，而深以猝然移罷爲重難，臣意今若高設木柵，峻其防閑，俾不得逸出蹂躪於民田，則似好矣，上曰，當初引見時下教矣，龍飛御天歌有此語，太祖大王所御八駿中，一馬卽鎮江之產，馬種至佳，罷之重難，而江都爲保障之地，故當初特爲罷之矣，其後見稟目，有馬可得力之語，故至今不能決定矣，此場之於江都牧場馬爲利乎，募民爲利乎，今當參酌其輕重而決之矣，金曰，聖上以牧馬與募民，誰可爲利爲教，以利害言之，則募民豈不有愈於牧馬乎，以此論之，其罷否可決矣，行司直李彥綱曰，移馬雖重難，若有益於保障地，則司僕固多廢場，豈無可移之處乎，當初出給，似爲得宜，何可以該寺一郎廳之言，定其便否乎，俞得一曰，江都損益必係於牧場之罷不罷，則罷之固可，而此場之設，其來亦久，聖祖大志之未成，人皆至今恨痛，馬政雖是小事，移罷恐似重難矣，李曰，以江都保障言之，則牧馬與聚民，利害豈不較然乎，朴權曰，馬群放逸之弊，民不支堪，其在除民害之道，不可不罷，且若許民入居，則可容數百戶，豈不大益於保障乎，閔鎮遠曰，牧馬募民，利害懸絕，臣之曾前在任時，非不知此，而以此場爲國家所重，故不敢請罷矣，及至戊子下詢時，始以宜罷陳達矣，但外議多以爲孝廟，既有大志，欲修明馬政，有此設置，則復讐雪恥，今雖難望，而此場若存，則後人猶知當時大志之所寓，實合於愛禮存羊之義，此則義理森嚴，不可以區區利害言之，而若以利害言之，則豈不懸別乎，朴權曰，孝廟朝，既已有意設場，則今難罷之云者，誠是矣，而鎮江場，不過孝廟措置中一事耳，如設置營將禁旅等事，亦可見聖祖復雪之大志，奚必以一牧場，爲愛禮存羊之比乎，李曰，人心每以聖祖大志之不成，爲痛恨，故謂此場不可罷，然繼志述事，自有其道，不必在於一牧場之罷不罷，且雖移其場，若存其馬，則有何所傷乎，金曰，司僕多有廢場，當取近場移之，而混置新舊馬於一處，則馬群多傷云，舊馬數少，則移置他場後，鎮江馬，始爲移送，似或得宜矣，上曰，依當初定奪，牧場移設募民耕食事分付，閔鎮遠曰，司僕先定其處所，然後可以舉行矣，李曰，牧馬可移處，令司僕更審稟處何如，上曰，依爲之。

<비변사등록 60책, 숙종 36년 1710년 07월02일(음)>

경제/교통

鎭江牧場의 폐지 문제에 있어서 말을 분산함으로써 유지시킬 것을 청하는 司僕寺 官員의 계사복시 관원이 제조의 뜻으로 아뢰기를, "지난 6월 29일 대신과 비국 당상을 인견하여 입시하였을 때에 강화유수 민진원(閔鎭遠)이 아뢰기를, '무자년 겨울에 신이 비국당상으로 입시하였을 때에 박권(朴權)이 진강목장(鎭江牧場)의 폐지문제를 아뢰어 윤희를 받았습니다. 그 후 사복시 낭청이 명을 받들어 적간(摘奸)하고 목장을 폐지해서는 옳지 않다는 뜻으로 품계하였는데, 박권(朴權)이 또 장계를 올려 그 불가함을 역설하였으나 비국에서 아직도 회계치 못하여 이 문제는 수년을 미결로 되어 있으므로 본부(本府)에 장애되는 일이 많습니다. 오늘 대신에게 하문하여 처리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진강목장 문제를 박권(朴權)이 경연(經筵)의 자리에서 폐지를 요청하여 이미 윤희하였으나 그 후 사복시 낭청의 품목(稟目)으로 인하여 지금까지 미결로 되어 있다. 이 문제를 어찌해야 하겠는가?' 하셨습니다. 영의정 이여(李爾)가 아뢰기를, '그 장계는 아직도 있습니다. 문제는 반드시 상의가 있어야만 결정할 수 있으므로 아직 여쭙어 결정치 못하였습니다. 사복시 낭청이 적간하고 서계(書啓)하여 목장을 폐지함은 매우 어렵다고 말하였습니다. 신도 일찍이 사복시 제조를 지냈는데, 본시(本寺)에서 그 목장을 가장 소중하게 여김은 대체로 당초의 설립이 효묘조(孝廟朝)에 있었고, 뜻하는 바가 있어 다른 목장의 경우와 다릅니다. 그러므로 가벼이 폐지할 수는 없으나, 이미 강도(江都)를 위급한 사태에 의귀(依歸)할 곳으로 삼았으니, 만약 이 <진강(鎭江)>이 보장(保障)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존망(存亡)과 관계되는 바가 이 일보다 큰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강도 수비(守備)의 허와 실이 과연 진강 목장의 폐지 여부에 매여 있는지 신은 정확히 알지 못하나, 목장으로 말하면 비록 진강(鎭江)을 폐지하더라도 양마(良馬)는 그 종자가 있고 토지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만약 수초(水草)가 풍부한 곳을 선택하여 옮겨 놓는다면 그 말의 종자는 어느 곳인들 양마를 생산하지 않겠습니까? 또 강도는 목장 말이 뛰어나와 해를 끼치는 일이 많아 농민이 유지, 감당할 수 없다 하니, 이도 한 폐단입니다. 진강목장의 말을 앞서의 결정에 의하여 다른 섬으로 옮겨 놓는 것이 불가할 것이 없을 듯 싶습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당초 보음도(甫音島)에 옮겨 놓으려 하였었다.' 하셨습니다. 우의정 김창집(金昌集)이 아뢰기를, '국가에서 강도를 보장의 중요한 곳으로 삼았으니, 목장이 강도에 해가 있다면 폐지하는 것이 실로 옳습니다. 그러나 대체로 효묘(孝廟)께서 이 목장을 설치함은 실은 대계(大計)에서 나왔으므로 바깥 논의들은 그 폐지를 어렵게 여기는 까닭인 것입니다. 다만 목장 근처에 민전(民田)이 매우 많은데 말 떼가 뛰어나와 화곡(禾穀)을 짓밟으며 비록 방한(防閑)을 더 하였으나 역시 금할 수 없었으니, 백성에 해가 되는 바이며, 또 목장을 수축하는 역사(役事)로 민폐가 또한 매우 적지 않습니다. 지금 만약 이 목장을 내어주면 입주하는 인민이 반드시 많을 것이니 어찌 강도(江都)에 한 큰 도움이 아니겠습니까? 당초 위에서 내어주라 명하셨으나 그 후 사복시의 적간으로 인하여 낭청의 한 장 품목(稟目)으로 성명(成命)을 도로 거둬온 일의 체통에 있어 거북스럽습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사복시 낭청이 보음도와 진강목장 두 곳을 적간한 뒤 품계에 의하면 보음도는 말을 방목(放牧)하기에 불편하다 하였다.' 하셨습니다. 병조참판 박권(朴權)이 아뢰기를, '앞서 목장을 폐지하라는 명령이 있는 뒤에 이인엽(李寅燁)이 목장은 보음도로 옮길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신의 생각에 강도의 어산(魚產)이 오로지 이 섬에 의지하고 있는데 만약 이 섬을 잃는 경우 본부는 유지하기 어렵다는 뜻으로 아뢰었습니다.

그 후 정옥선(鄭勗先)도 목장에 적합하지 않다고 품계하였습니다.'하였으며, 영의정 이여(李畬)는 아뢰기를, '보음도가 목장에 적합지 않다 함은 수초가 부족해서입니까?'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백성의 집과 분묘·전답이 이 섬에 많이 있으므로 이것이 고민이라 한다.' 하셨습니다. 민진후(閔鎭厚)가 아뢰기를, '과거에는 보음도에 사는 백성이 꽤 번성하였으나 근래 줄어들어 수십 호에 지나지 않습니다. 목장을 설치하고 그 분묘를 뫼개며 그 경작을 폐지하면 백성들은 반드시 안주할 수 없습니다. 목장을 폐지함은 대체로 백성을 모으려는 것인데 도리어 백성에게 해가 되게 하면 어찌 염려할 일이 아니겠습니까?'하였고, 박권(朴權)이 아뢰기를, '신이 앞서의 장계에 아뢴바 있었는데, 보음도가 이미 이러하다면 사복시의 폐지한 목장도 많이 있습니다. 말뚝을 비록 일시에 모두 옮기기는 어려우나, 그 가운데 병든 말 및 새끼를 낳지 못하는 것은 서울로 올려오고 그 나머지 양마를 폐지한 목장 가운데의 한 곳에 옮겨 보낸다면 무엇이 어렵겠습니까?'하였으며, 영의정 이여(李畬)는 아뢰기를, '삼남에 비록 폐지한 목장이 많으나 멀리 옮기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수원(水原)과 남양(南陽) 등 강화(江華) 가까운 곳에 어찌 옮길 만한 곳이 없겠습니까?'하였습니다. 임금이 이르기를, '낭청의 품목 가운데 「소와 말이 어찌 위급한 사태에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라는 한 말도 있었다.'하시니, 형조판서 유득일(兪得一)이 아뢰기를, '당초 목장을 옮기도록 윤허하신 성상의 뜻은 대체로 보장(保障)을 소중하게 여기신 데에서 나왔습니다. 신이 사명을 받들고 강도에 갔을 때에 본즉 진강의 목장 말이 화곡을 밟고 뜯어먹어 민폐가 역시 많았습니다. 다만 사복시 제조의 말을 들은즉 다른 섬에 말을 옮기는 경우 부상하거나 폐사(斃死)하는 일이 많다하니 이러하다면 이도 애석한 일입니다. 그러나 바깥 논의는 모두 효종대왕(孝宗大王)께서 대지(大志)가 있어서 이 목장을 설치하셨다고 하니, 비록 이 목장의 말이 과연 모두 양마인지는 모르나 갑자기 옮기고 폐지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지금 만약 높이 목책(木柵)을 설치하고 그 방한(防閑)을 높여서 뛰쳐나와 민전(民田)을 짓밟지 못하게 하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하였습니다. 임금이 이르기를, '당초 인견했을 때에 하교하였다. 용비어천가(龍飛御天歌)에 이러한 말이 있다. 「태조대왕(太祖大王)께서 타시던 8준마(駿馬) 가운데 한 말은 곧 진강(鎭江)에서 산출된 것으로서 말 종자가 아주 좋았다.」고 하였으니, 폐지하긴 매우 어렵다. 그러나 강도가 보장의 지역으로 되어 있으므로 당초에 특별히 폐지토록 한 것이다. 그 후 품목을 보니 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말이 있었으므로 지금까지 결정하지 못한 것이다. 강도에서 말을 기르는 것이 유리한가, 백성을 모으는 것이 유리한가? 지금 그 경중을 참작하여 결정하라.'하시니, 우의정 김창집(金昌集)이 아뢰기를, '성상께서 말을 기르고 백성을 모으는 일 가운데 어느 것이 유리하느냐고 하교하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하면 백성을 모으는 일이 어찌 말을 기르는 것보다 낫지 않겠습니까? 이로써 논한다면 그 폐지 여부는 결정될 수 있습니다.'하였고, 행사직 이언강(李彦綱)은 아뢰기를, '말을 옮기는 일이 비록 매우 어려우나 보장의 지역에 유익하다면 사복시에 폐지한 목장이 많으니 어찌 옮길 만한 곳이 없겠습니까? 당초에 내어쫓은 타당함을 얻었는데, 어찌 당해 시(寺)의 한 낭청의 말로 인하여 그 편의여부를 결정할 수 있겠습니까?'하였으며, 유득일(兪得一)은 아뢰기를, '강도의 손익(損益)이 반드시 목장을 폐지하느냐, 폐지하지 않느냐에 매여 있다면 폐지하는 것이 사실 옳으나 이 목장의 설치는 그 유래도 오래이고, 성조(聖祖)의 대지(大志)가 이루어지지 않음을 모두 지금까지 한스럽게 여깁니다. 마정(馬政)은 비록 작은 일이나 옮기고 폐지함은 아마도 매우 어려운 듯 싶습니다.'하였고, 영의정 이여(李畬)는 아뢰기를 '강도의 보장(保障)을 들어서 말씀하면 말을 기르는 일보다 백성을 모으는 일이 <나음은> 어찌 분명하지 않겠습니까?'하였으며, 박원은 아뢰기를, '말뚝이 뛰쳐

나오는 폐단은 백성들이 유지, 감당하지 못합니다. 백성의 해를 제거하는 일에 있어 폐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백성들에게 입주를 허용한다면 수백 호를 수용할 수 있으니 어찌 보장에 크게 유익한 일이 아니겠습니까?'하였고, 민진원(閔鎭遠)은 아뢰기를, '말을 기르는 일과 백성을 모으는 것의 이해는 현격히 다릅니다. 신이 전에 유수로 있을 때에 이를 모르는 것이 아니었으나, 이 목장은 국가에서 소중하게 여기므로 감히 폐지를 요청하지 못하였습니다. 무자년의 하문하신 때에 이르러 비로소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아뢰었었습니다. 다만 바깥 논의는 대부분 효묘(孝廟)께서 대지가 있으셔서 마정(馬政)을 밝히려고 여기에 목장 설치한 것이며, 복수와 설치(雪恥)는 지금 비록 바라기 어려우나 이 목장을 그대로 둔다면 뒷 사람들은 그래도 당시의 대지(大志)가 깃들여 있음을 알 것이니, 실로 예(禮)를 아껴서 고삭(告朔)의 양(羊)을 그대로 둔 뜻에 맞습니다. 이는 의리가 삼엄하여 사소한 이해로 말할 일은 아니나 이해를 들어서 말한다면 어찌 현격하지 않겠습니까?'하였으며, 박권(朴權)은 아뢰기를 '효묘조에서 이미 뜻이 있어 목장을 설치하였으므로 지금 폐지하기 어렵다 함은 실로 옳습니다. 그러나 진강목장은 효묘께서 조치하신 것 가운데 한 가지 일에 지나지 않습니다. 영장(營將)과 금군(禁軍)을 설치한 일 등에서도 성조께서 복수하고 설치하려는 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어찌 한 목장으로서는 예를 아껴 고삭의 양을 그대로 둔 일에 비길 수 있겠습니까?'하였고, 영의정 이여(李爾)는 아뢰기를 '인심은 늘 성조의 대지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한스럽게 여깁니다. 그러므로 이 목장을 폐지해서는 불가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뜻과 일을 계술(繼述)함은 스스로 그 방법이 있는 것이요, 굳이 한 목장을 폐지하느냐 않는냐에 있는 것은 아니며 또 비록 그 목장을 옮기더라도 그 말은 그대로 두면 무엇이 손상되겠습니까?'하였으며, 우의정 김창집(金昌集)은 아뢰기를, '사복시에 폐지한 목장이 많이 있으니, 마땅히 가까운 곳의 폐지한 목장에 옮길 것이며, 신구(新舊)의 말을 한 곳에 뒤섞어 두면 말때가 많이 손상된다 하니 구마(舊馬)의 수가 적으면 다른 목장에 옮겨 둔 뒤에 진강목장의 말을 비로소 옮겨 보내는 것이 타당할 듯 싶습니다.'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당초의 결정에 의하여 목장을 옮기고 백성을 모아 경작하여 먹게 할 것을 분부하라.'하였습니다. 민진원(閔鎭遠)이 아뢰기를, '사복시에서 먼저 그 장소를 결정한 뒤에라야만 거행할 수 있습니다.'하였고, 영의정 이여(李爾)가 아뢰기를, '목장의 말을 옮길 만한 곳을 사복시로 하여금 다시 살피게 하여서 여쭈어 처리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하자, 임금이 이르기를, '아된 대로 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진강목장은 이미 보장의 중요한 곳을 위하여 민호(民戶)를 모을 계획으로서 폐지하는 일이 있게 되었으니 다시 감히 논의를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옮겨 설치하기에 적합한 곳을 살핀 뒤에 품정(稟定)하여 그 사이에 이해와 득실을 깊이 헤아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대강 열은 소견을 아뢰고 헤아려 처리하시기를 기다립니다. 진강에 목장을 설치할 당초에는 주위가 40리로서 곧 도적(圖籍)에도 실려 있으나 점점 삭감되어 지금은 20리쯤 됩니다. 길상산(吉祥山) 아래에서 어득천(魚得川)까지를 한계로 삼았으니, 이른바 진강산(鎭江山) 아래의 지난날 말때가 유식(游息)하던 곳은 이미 백성들이 경작하여 먹게한 땅이요, 주위도 20리 쯤 되는데, 그 가운데 전답(田畓)은 대체로 수백석지기입니다. 현재 말때가 있는 곳은 다만 길상산 아래 뿐인데 통칭하여 진강장(鎭江場)이라 합니다. 이른바 길상산은 동남의 바닷가 한 모퉁이에 자리하여 산은 많고 들은 적습니다. 비록 광활하고 평탄하지는 않으나, 수초는 풍족하여 목양(牧養)하기에 적의하고, 산은 높고 골은 깊어서 족히 바람과 추위를 피하고 유식(游息)하기에 편의합니다. 이러므로 방목한 말은 체구가 크고 뼈대가 굵어서 여러 목장에서 으뜸이 됩니다. 지난 선묘조(宣廟朝)의 병신년(丙申年:숙종 29년(1596))에 비로소 폐지하였으나, 본시

의 계사에 이르기를, '길상산에서 양구(良駒)가 산출되어 근일 내·외구(内外廐)에 약간의 양재(良才)가 있는 것은 모두 진강 목장의 말인데 옮겨 방목한 뒤에 잇달아 죽은 것이 1백여 필이 넘습니다. 양마(良馬)의 종자가 끊어지기 전에 본 목장에 도로 방목하도록 하소서.'라고 하니, 진강목장은 마침내 '복설(復設)하라.'고 하교하셨습니다. 인조조(仁祖朝)에 또 폐지하자는 논의가 있었는데, 역시 '이러한 논의는 선조(先祖) 때부터 있었으나, 불가한 경우가 세가지가 있으니 첫째는 마정(馬政)이 소중하고 둘째는 사부(士夫)들의 불법 점유요, 셋째는 관원이 적임이 아니다.'라고 하교하셨습니다. 효묘조(孝廟朝) 무술년간(戊戌年間: 숙종 9년 (1658))에 옛 목장을 복설할 때의 성교(聖敎)에 이르기를, '태조께서 타시던 8준마의 하나도 강화에서 산출된 것이니, 결코 이 목장을 폐지해서는 옳지 않다.'고 하시고, 또 이르기를, '조정에서 폐지토록 한 것은 실로 우연이 아님에도 그 후 수신(守臣)이 대부분 준수하지 않았으니, 특히 당초의 본의를 잃었다. 지금 한 모퉁이를 빌어서 방목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 섬 백성들이 불법 점유하고, 겸병(兼竝)하는 땅을 내어주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라고 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여러 조정의 성교 내용으로 보면, 언제나 진강목장의 마종(馬種)이 가장 우량함을 아껴서 선뜻 목장의 폐지를 어렵게 여기셨으며, 앞뒤에 잠깐 폐지했다가 곧 복설함은 대체로 이에서 나왔습니다. 대략 을축년간(乙丑年間: 숙종 11년 (1685))에 이르러서는 다만 목장을 물려 쌓도록 하였고, 끝내 한 목장을 모두 폐지하도록 허용하지 않았으니 역시 이러하기 때문입니다. 지금에 와서 수신(守臣) 및 묘당의 여러 신하가 아울러서 폐지해야 한다는 아뢰은, 오로지 이 목장을 폐지하고 민호(民戶)를 모아서 보장(保障)을 튼튼하게 해야 한다고 말하였으므로 이점이 성상께서 특별히 윤허하신 바입니다. 그 내장(內場)의 말을 방목하는 평지로서 논을 만들 수 있는 곳은 10여 섬지기에 지나지 않고, 산허리 이하로서 밭을 만들 수 있는 곳은 역시 1백여 섬지기에 불과한데 이는 토질(土質)이 꽤 비옥(肥沃)합니다. 또 산 밖에 60~70 섬지기의 한 들[坪]에 있는데 거의가 자갈밭이며, 외장(外場)의 둔전(屯田)과 둔답(屯畓)에 이르러서는 아울러서 117섬지기인데 거의 목였으니, 그 척박함을 이로써 알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또 목자 60명이 절수(折受)한 전답은 아울러서 217섬지기인데 이를 합하여 계산하면 대략 5백여 섬지기가 됩니다. 이 안에서 이른바 산 밖의 들 60~70섬지기의 자갈 밭과 둔전답 1백여 섬지기의 척박하여 묵은 것은 백성을 모아 경작하여 먹게 하기에는 적합하지 않고, 목자가 절수(折受)한 전답 2백여 섬지기는 목자 60명의 매명(每名)마다 받은 바는 논 30두락(斗落), 밭 23두락으로서 60명이 그 가축과 자손을 합하면 인구의 수는 1백여 명에 밀돌지 않을 듯 싶습니다. 지금 만약 목자(牧子)로 하여금 말이 옳기는 곳으로 따라가게 하고 다른 백성을 모아 들인다면 2백여 섬지기의 땅에 들일 인구는 역시 목자의 수에 지나지 않습니다. 묵은 것을 버리고 새것을 취한다면 폐단이 있으니, 목자를 그대로 두어 위급에 임하여 동원하는 편의만 못하고, 절수(折受)한 전답은 새로이 모집하여 더 모으는 일에 별로 보탬이 되는 바 없습니다. 이로써 논한다면 전답을 만들어서 생업(生業)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은 다만 내장(內場)의 평지와 산허리 이하 1백여 섬지기의 땅 뿐이니, 이에 의하여 백성을 모집한다면 그 수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외방으로부터 그 본토(本土)를 버리고 온 가족이 옮겨 들어온 자는 반드시 부실(富實)한 백성이 아니요, 대부분 가난하고 역(役)을 기피하려는 부류일 것이니, 반드시 넉넉하게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매호(每戶)에 얻은 바는 목자가 받은 50여 두락의 예보다 많아야만 생활이 되어 안주(安住)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이 1백여 섬지기의 전답으로 모을 수 있는 것은 겨우 수십호의 백성입니다. 이것이 어찌 보장에 보탬이 될 수 있겠습니까? 논의하는 자들은 늘 이 목장을 폐지하는 것이 강도(江都)의 급선무라 하여 많은 전답

을 만들고 널리 군정(軍丁)을 모을 수 있는 일처럼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 사이에 이와 같은 실상을 성상께서 진실로 모두 밝게 아시지 못한 것입니다. 당초 주위가 40리인 목장의 절반을 본부(本府)에 떼어 준 뒤에, 나머지 그 절반인 20리의 땅에서 경작하고 백성을 모을 수 있는 것이 이와 같이 영성(零星)한데, 본래 양마(良馬)가 산출된다하여 여러 조정에서 소중히 여긴 목장을 어찌 모두 폐지하고 말겠다는 것입니까? 비록 옮길 곳을 들어서 말하더라도 전일 본시(本寺)의 낭청이 이미 살펴보고 품계하였지만, **보음도(浦音島)**는 민호(民戶)의 입주가 50 여호요, 전답을 개간한 것이 60여 결인데 이 가운데에는 역시 궁가(宮家) 및 향교(鄉校)의 면세전(免稅田)도 있어 그 두락(斗落)의 수효를 계산하면 2백여 섬지기가 되며 송가도(松家島)의 경우는 민호의 주거가 150여호요, 전답은 6~7백 섬지기입니다. 지금 이 두 섬에 말을 옮긴다면 그 주민들을 몰아내고 그 전답을 묵혀야 합니다. 진강(鎭江)의 경작할 수 있는 1백여 섬지기와 새로이 모을 수 십호의 백성을 위하여 50여호와 150여호가 안주하여 생업에 종사하는 백성을 몰아내고, 이미 개간된 2백여 섬지기와 7백여 섬지기의 전답을 묵히면 그 이해는 분명할 뿐만 아니라 물려난 백성은 거주를 잃고 낭패하여 흩어져 다른 곳으로 가거나 진강으로 옮겨 들어가면 저곳에서 잃은 것은 많고 이곳에서 얻은 것은 적습니다. 무릇 강도(江都) 부근의 여러 섬 백성들은 모두 위급에 임하여 동원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 가까운 섬의 백성은 버려두고 한갓 진강에 모아들이는 일만을 무겁게 여깁니까? 그리고 이 두 섬의 지형이 과연 목양(牧養)에 적합하다면 다른 것은 돌볼 것이 없으나 산과 골에 바람과 추위를 피하고 유식(游息)할 곳이 없어 진강에 비길 수 없고, 억지로 말을 옮기면 부상하거나 폐사하기가 쉬우며 먼 곳 다른 섬의 경우 그 옮겨보내기 어려움은 더욱 심합니다. 일찍이 효묘조의 임진년간(壬辰年間)에 진강의 목장을 폐지한 뒤 말을 여러 섬에 옮길 즈음에 원래의 수자 9백 47필 안에서 폐사된 것이 430여 필에 달하였고, 또 경인년에 목장을 폐지하고 매음도(煤音島)로 말을 옮길 때에 거리가 멀지 않았음에도 원래의 수자 1백필 안에서 폐사된 것이 역시 70필에 이르렀습니다. 이는 지난 일의 분명한 증거로서 지금도 반드시 폐단이 없이 옮겨 방목할 수는 없는 일이니 이것이 걱정입니다. 혹 한 때의 변통으로 풀어놓으면 예부터 내려오는 양마의 종자는 이로부터 아주 끊어진 것이니 어찌 애석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강도에 새로이 쌓은 선두포(船頭浦)는 1천 섬지기에 가까운 땅이라 합니다. 이곳을 우선 개간하여 백성을 모으는 것이 무엇이 부족하여 이 목장을 지레 폐지하려 합니까? 대체로 이 내장(內場)의 경작 할 수 있는 1백여 섬지기의 땅은 그 수가 많지 않으나 토질이 모두 비옥합니다. 그러므로 불법점유를 피하는 자들이 모두 침을 흘려 백성을 모아 들이는 것이 편의하다고 평계대고 목장을 폐지하자는 논의를 선동한 지 이미 오래입니다. 인묘(仁廟)께서 '사부(士夫)가 불법점유한다.'는 하교와, 효묘(孝廟)께서 '섬 백성이 불법점유하고 겸병(兼竝)한다.'는 하교 및 앞뒤 성려(聖慮)가 미치신 바는 진실로 지당하십니다. 나라의 기강이 해이되고 인심이 간사하기 오늘날과 같지 않은 옛날에도 오히려 간사한 폐단을 막기 어려워하였습니다. 근년의 일을 들어서 말씀하면 자연도(紫燕島)의 목장 폐지는 비록 백성들에게 경작하여 먹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 모두 사부가(士夫家)에서 가명으로 불법점유한 땅으로 되어 삼분병작(三分竝作)의 예가 되었으니 섬의 가난한 백성은 그 세를 공(公)과 사(私)에 나누어 바치므로 한갓 고생만 할 뿐 생활할 수 없으니, 민정(民丁)을 모아 관방(關防)을 튼튼히 하는 본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이 진강목장의 폐지는 마침내 성조(聖祖)께서 우려하신 바와 같이 될 것이요, 자연도와 같은 형태로 될 것임이 틀림없습니다. 말을 기르는 문제도 국가의 막중한 정책입니다. 폐지해서는 안될 목장을 갑자기 폐지함은 보장(保障)에 별로 실효(實效)는 없고, 마침내 사가(私家)의

장토(庄土)가 될 것이니 실로 올바른 계책이 못됩니다. 근래 각 도 여러 목장의 말은 대부분 덩치가 작아 쓸모가 없습니다. 금번 나누어 기르기 위하여 상납한 것을 보면 전혀 군병의 전마(戰馬)로 적합한 것이 없습니다. 이중에서 금군(禁軍)이 탈 말을 가려서 지급하려 하나 역시 얻을 수 없으니 일이 매우 한심스럽습니다. 오직 진강목장의 말이 가장 몸통이 크고 재능이 있어 그래도 옛 종자를 잃지 않았습니다. 앞뒤로 붙들어 내어 나누어 기르고, 본시(本寺)에 세우거나 군병에게 지급한 것이 많으니 그 관계되는 바가 어떠하겠습니까? 송가도와 매음도의 민호(民戶)·전답과 진강 내장(內場)을 서로 바꾸는 경우, 다소와 득실(得失)의 구분은 이상에서 아된 바와 같으니, 각각 옛날 그대로 두는 것만 못하고, 또한 편의에 따라 조치하는 방법입니다. 이른바 북일장(北一場)은 비록 진강보다는 약간 작으나 목자(牧子) 및 장곶(長串)의 토졸(士卒) 등이 개간한 전답이 거의 1백여 섬지기에 달할 것이며, 이 외에 경작할만 한 땅도 적지 않아 수십호의 백성을 모아들일 수 있으니 진강과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을축년에 이 목장을 폐지하고 강화(江華)에 지급할 것을 결정하여, 분부하였습시다. 그후 본부에서 이와 같은 사정은 헤아리지 않고 토질이 약간 낫다하여 반드시 진강을 얻으려고 끝내 북일장은 취하지 않고 지금까지 이르렀습시다. 만약 을축년의 결정에 의하여 북일장을 폐지하고, 급하여서 백성을 모을 바탕을 삼고, 그 말은 부근의 여러 섬에 나누어 두면 진강을 폐지하지 않고 좋은 종자를 절종시키지 않을 수 있으며, 여러 조정에서 이 목장을 중하게 여긴 뜻에도 어긋나지 않고 강도(江都)의 보장을 튼튼히 하는 계획에도 어긋나지 않아 이쪽이나 저쪽에 편의할 듯 싶습니다. 이 문제의 이해·득실이 대단한 데에 이르지 않는다면 성명(成命)이 된 마당에 신 등이 고집을 부려서는 옳지 않으나, 거듭 생각할 때에 끝내 불편한 바가 있으므로 오래도록 상의하고, 감히 이를 구체적으로 아웁니다. 다시 묘당에 하문하여 좋은 방법에 따라 선처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司僕寺官員，以提調意啓曰，今六月二十九日大臣·備局堂上引見入侍時，江華留守閔鎮遠所啓，戊子冬，臣以備局堂上入侍時，朴權以罷鎮江場事，陳達蒙允。其後司僕郎廳，承命摘奸，以不可罷場之意，稟目，朴權又爲狀啓，力辨其不可，而自備局尙未回啓，此事數年未決，故本府多有窒礙之端，今日下詢大臣而處之，何如，上曰，鎮江場事，朴權於筵中請罷，既已許之，而其後以司僕郎廳稟目之故，至今未決此事何如，領議政李曰，其狀啓尙有之，而事須商議然後可決，故姑未稟定矣，司僕郎廳摘奸書啓，以罷場重難爲言，臣亦曾經司僕提調，本司最重其場，蓋當初設立，在於孝廟朝，而意有所在，與他場有別，故不可輕罷，然既以江都爲緩急依歸之所，而若以此可以得力於保障，則存亡所關，孰有大於此事者乎，江都守備虛實，果係於鎮江罷場與否，則臣未能的知，而以馬場言之，則雖罷鎮江，良馬自有其種，非係土地，若擇水草豐饒處，移置其馬種，則何處不可產良馬乎，且江都多牧馬放逸作害，農民不能支堪云，此亦一弊也，鎮江場馬，依前定奪，移置他島，似無不可矣，上曰，當初欲移置于甫音島矣，右議政金曰，國家以江都爲保障重地，馬場若有害於江都，則罷之固宜，而蓋孝廟之設此場，實出於大計，故外議所以難其罷也，但馬場近處，民田甚多，而馬群逸出，蹂躪禾穀，雖加防閑，亦不能禁，所以爲民害也，且馬場修築之役，民弊亦甚不貲，今若出給此場，則人民入居者必多，豈非江都之一大助乎，當初自上既命出給，而其後因司僕摘奸，以郎廳一張稟目，還寢成命，事體殊常矣，上曰，司僕郎廳，摘奸甫音島鎮江場兩處後稟目，而甫音島則放馬不便云矣，兵曹參判朴權曰，前日罷場命下之後，李寅燁請移牧場於甫音島，臣以江都魚產等，專靠於此島，若失此島，則本府難支之意，仰達矣，其後鄭勛先，亦以不合牧場爲稟目矣，領議政李曰，甫音島之不合於牧場云者，以水草之不足乎，上曰，民之廬舍墳墓田畓，多在此島，故以是爲悶云矣，閔鎮遠曰，昔日則甫音島居民頗盛矣，近來凋弊，不過數十戶，若設牧場，夷其墳墓廢其耕作，則民必不奠居，牧場之罷，

蓋爲聚民，而反以害民，則豈不可慮乎，朴權曰，臣之前日狀啓中，有所陳達，而甫音島旣如此，則司僕廢牧場，亦多有之，馬群雖難一時盡移其中，病馬及不能孳長者，上來京中，其餘良馬，移送於廢場中一處，何難乎，領議政李曰，三南雖多廢場，有難遠移，水原南陽等江華近處，豈無可移處乎，上曰，郎廳稟目中，亦有牛馬，豈不得力於緩急一款語矣，刑曹判書俞得一曰，當初許移牧場者，聖意蓋出於重保障之地也，臣於奉使江都時見之，鎮江場馬躡屹禾穀，民弊亦多，而但聞太僕提調之言，移馬他島，則多有傷斃之患云，若爾則此亦可惜，而外議皆以爲孝宗大王有大志，設此牧場云，雖未知此場之馬，果皆良馬，而深以猝然移罷爲重難矣，今若高設木柵，峻其防閑，俾不得逸出蹂躪於民田，則似好矣，上曰，當初引見時下教矣，龍飛御天歌有此語矣，太祖大王所御八駿中一馬，卽鎮江之產，馬種至佳，罷之重難，而江都爲保障之地，故當初特爲罷之矣，其後見稟目有馬可得力之語，故至今不能決定矣，江都牧馬爲利乎，募民爲利乎，今當參酌其輕重而決之矣，右議政金曰，聖上以牧馬與募民，誰可爲利爲教，以利害言之，則募民豈不有愈於牧馬乎，以此論之，其罷否可決矣，行司直李彥綱曰，移馬雖重難，若有益於保障地，則司僕固多廢場，豈無可移處乎，當初出給似爲得宜，何可以該寺一郎廳之言，定其便否乎，俞得一曰，江都損益，必係於牧場之罷不罷，則罷之固可，而此場之設，其來亦久，聖祖大志之未成，人皆至今恨痛，馬政雖是小事，移罷恐似重難矣，領議政李曰，以江都保障言之，則牧馬與聚民，豈不較然乎，朴權曰，馬群放逸之弊，民不支堪，其在除民害之道，不可不罷，且若許民入居，則可容數百戶，豈不大益於保障乎，閔鎮遠曰，牧馬募民，利害懸絕，臣之曾前在任時，非不知此，而以此場，爲國家所重，故不敢請罷矣，及至戊子下詢時，始以宜罷陳達矣，但外議多以爲孝廟，旣有大志，欲修明馬政，有此設置，則復讐雪恥，今雖難望，而此場若存，則後人猶知當時大志之所寓，實合於愛禮存羊之義，此則義理森嚴，不可以區區利害言之，而若以利害言之，則豈不懸乎，朴權曰，孝廟朝，旣已有意設場，則今難罷之云者，誠是矣，而鎮江場，不過孝廟措置中一事耳，如設置營將禁旅等事，亦可見聖祖復雪之大志，奚必以一牧場爲愛禮存羊之比乎，領議政李曰，人心每以聖祖大志之不成，爲痛恨，故謂此場不可罷，然繼志述事，自有其道，不必在於一牧場之罷不罷，且雖移其場，若存其馬，則有何所傷乎，右議政金曰，司僕多有廢場，當取近場移之，而混置新舊馬於一處，則馬群多傷云，舊馬數少，則移置他場後，鎮江馬始爲移送，似或得宜矣，上曰，依當初定奪，牧場移設募民耕食事，分付，閔鎮遠曰，司僕先定其處所，然後可以舉行矣，領議政李曰，牧馬可移處，令司僕更審稟處何如，上曰，依爲之事，命下矣，鎮江場，旣爲保障重地，募聚民戶之計，而有此革罷之舉，則更不敢容議，惟當審察其可合移設處所後，稟定而其間利害得失，亦有不可不深加商量者，故略陳淺見，以俟裁處焉，鎮江設場，當初周回四十里，乃是圖籍所載，而漸至減削，今爲二十里許，以吉祥山下至魚得川爲限，所謂鎮江山下舊日馬群游息之所，已作許民耕食之地，周回亦至二十里許，其中田畝大略爲果百石落，卽今馬群所在處，只是吉祥山下，而通稱鎮江場，所謂吉祥山，處於東南濱海一隅，山多野少，雖不廣闊平坦，水草則有裕，宜於牧養，山高谷深，足以避風避寒，便於游息，以此所放之馬，體大骨駿，甲於諸場，輿在宣廟朝丙申年間，始雖革置，本寺啓辭中，有曰吉祥山產良駒，近日內外廐，稍有良才者，盡是鎮江場馬，而移放之後，相繼而死者，已過百餘匹，趁良馬未絕種前，還放本場云云，則以鎮江場終當復設爲教，仁祖朝，又有革罷之議，故亦以此論自先朝有之，而有不可者三，一則馬政爲重，二則士夫冒占，三則官員非人爲教，孝廟朝戊戌年間復設舊場時，聖教有曰，太祖所御八駿之一，亦江華之產，決不可廢此場，又曰，朝廷之許罷，實非偶然，而厥後守臣，多不遵守，殊失當初本意，今借一偶未可放牧乎，島民冒占兼竝之地，未可出給乎，以此累朝聖教辭意觀之，每惜鎮江馬種之最良，輒以罷場爲難，前後乍罷旋復者，蓋出於此，而及至當寧乙丑年間，只令退築，而終不許盡罷一場者，亦以此也，到今守臣及廟堂

諸臣，竝陳當罷之意，而專以罷此場募聚民戶，以重保障爲言，故此聖上之特爲勉許者也，第其內場牧馬處，平地可以作畝者，不過十餘石落，山腰以下可以作田者，亦不過百餘石落，此則土品頗饒，又有山外一坪六七十石之地，舉皆磽确，至於外場屯田畝竝一百十七石零，則幾盡陳廢，其爲瘠薄可見，其中又有牧子六十名，折受田畝竝二百七十石零，合以計之，大略爲五百餘石落，內所謂山外坪六七十石之磽确者，屯田畝百餘石之瘠薄陳廢者，不合於募民耕食，牧子折受田畝二百餘石，則牧子六十名，每名所受畝三十斗·田二十三斗，而六十名竝其家屬子枝，則人口之數，似不下百有餘名，今若使牧子隨往移馬之處，而募入他民，則二百餘石之地，所得人口，亦無過於牧子之數，若曰去舊取新，有弊不如仍存牧子，臨急調用之爲便，則折受田畝，別無所補於新募加聚之道，以此論之，則其可以作田作畝爲其生業者，只在於內場平地及山腰以下百餘石之地，就其募民其數幾何，自外處棄其本土學家移入者，必非富實之民，率多窮殘避役之類，必從優劃給，每戶所得，視諸牧子所受五十餘斗之例，有加然後庶可資活安接，則惟此百餘石之田畝所募聚，僅可爲數十戶之民，此何足爲有無輕重於保障乎，議者每以罷此場，爲江都急先務，有若可以多作田畝廣聚軍丁者然，故其間如許實狀，聖鑑固有所未盡俯燭者矣，初以周回四十里之場，折半移屬本府之後，所餘存一半二十里之地，可合起耕募民者，既若是零星，則素稱良馬所產累朝所重之牧場，何必盡罷乃已乎，雖以移設處所言之，前日本寺郎廳，已爲看審臺目，而甫音島則民戶入居者，五十餘戶，田畝起耕者六十餘結，其中亦有宮家及鄉校免稅之田，計其落種當二百餘石，松家島則民居一百五十餘戶，田畝七八百石，今若移馬於此兩島，則勢將驅出其民，陳廢其田矣，爲其鎮江可耕百餘石之地，新募數十戶之民，而驅出五十餘戶與一百五十餘戶安業之民，陳廢二百餘石與七八百石已墾之田畝，其爲利害不啻較然，而被其驅出之民，失所狼狽，或散而之他，或移入鎮江，則失於彼者多，得於此者少，凡係江都附近諸島之民，無非緩急之所可調用，則又何必棄近島之民，而徒以鎮江之募入爲重哉，然此兩島地勢，果合於牧養，則不暇他顧，而無山谷可以避風避寒，游息之所不可比擬於鎮江，則強爲移馬，適足爲損傷殞斃之歸，而遠外他島，則其所移送之難，尤有甚焉，曾在孝廟朝，壬辰年間鎮江罷場後，馬匹移置諸島之際，元數九百四十七匹內致斃者，至於四百三十餘匹，又於庚寅年，罷場移馬煤音島之時，相距不遠，而元數一百匹內致斃者，亦至七十四，此爲已事之明驗，今亦必不能無弊，移放爲是之慮，或一時區處散盡，則自古良馬之種，自此永絕，豈不可惜，江都新築船頭浦，可爲近千石落種之地云，於此爲先起耕募民，何患不足，而必徑罷此場乎，蓋此內場可耕百餘石之地，其數不多，而土品無非膏沃，故欲售冒占之計者，莫不流涎，托以募入之便，煽動罷場之議，其來已久，仁廟士夫冒占之教，孝廟島民冒占兼竝之教，前後聖慮所及，誠爲至當，在昔國綱解弛，人心之巧詐，不至如今日，而猶恐奸弊之難防，試論近事，紫燕島之罷場，雖云許民耕食，皆爲士夫家假名冒占之地，作爲三分竝作之例，島中殘民，分納其稅於公私，徒自勞苦，而無聊生，烏在乎募聚民丁，以重關防之本意哉，今茲鎮江之罷場，畢竟亦名聖祖所慮，而同歸於紫燕之一套必矣，牧馬一款，亦係國家莫重之政，則遽罷不當罷之場，別無實效於保障，而終作私家之莊土，實非得計而近來各道諸場之馬，率皆體少無用，以今番分養上納者見之，絕無可合於軍兵戰馬，以此禁軍所騎，雖欲擇給，亦不可得，事極寒心，惟有鎮江之馬，最爲體大有才，猶不失舊種，前後提出分養，或立本寺，或給軍兵者多矣，其所關係，爲如何哉，松家煤音島民戶田畝，與鎮江內場互相移易，則多少得失之分，如上所陳，不如各仍其舊之爲愈，而亦自有從便處置之道，所謂北一場，雖云差少於鎮江，牧子及長串士卒等起耕田畝，將至百餘石，此外可耕之地，亦不爲少，足以爲募得數十戶之民，與鎮江無甚差別，故乙丑年以此場罷給江華事，定奪分付之後，自本府不量如許事勢，爲土品之差勝，必欲得鎮江，終不取北一場，以至於今矣，若依乙丑定奪，罷給北一場，以爲募民之資，以其馬分置於附近諸島，則鎮江可不罷，良種可不絕，既無違於累

朝重此場之意，亦無失於江都重保障之計，以此以彼，恐合便宜，玆事得失利害，不至大段，則成命之下，臣等不宜爭執，而反覆思惟，終有所不便者，久久商確，敢此備盡論列，更詢廟堂從長善處，何如，答曰，允．

<비변사등록 60책, 숙종 36년 1710년 08월02일(음)>

경제/교통

點馬시 뇌물을 받은 司僕寺의 書吏들을 엄히 처벌하고 點馬官을 罷職할 것을 청하다

비변사에서 아뢰기를, "근래에 외방 백성이 날로 더욱 곤고해진 것은 거개 경각사(京各司)에서 사방으로 나가 침탈함이 꺼리낌이 없는데서 연유하고 있는데 이는 지극한 폐단이 되고 있으니 엄한 법으로 무겁게 다스리는 도리가 있어야 마땅하겠습니다. 요사이 들으니 이번에 점마관(點馬官)이 돌아온 뒤에 점마관을 수행한 사복시의 서리(書吏)와 이마(理馬)·양마(養馬)들에게 뇌물로 바칠 돈과 물품을 각 목장의 목자(牧子)들이 바리에 신고 끊임 없이 서울로 들어온다고 합니다. 이는 대체로 점마(點馬)할 때에 서리 등이 목자한테 돈을 요구하여 사전에 수기(手記:약속어음)를 받아두었기 때문에 그때에 미처 챙겨서 바치지 못한 수량을 이렇듯 추후에 신고 온 것입니다. 기내(畿內) 목장의 목자들의 생활이 지극히 곤란한 것은 감목관(監牧官)이 여러가지 뜯어내기 때문에 살 수 없게 된 것인데 이제는 또 이렇듯 수많은 돈과 물품을 옥박질러서 거두어들이므로 각자가 가산을 저당잡히고 소와 말 심지어 개와 닭까지 팔게 되니 원망하고 울부짖는 소리가 마을에 널렸다 합니다. 본사에서 형조에 분부하여 사복시의 수행 서리 이지화(李枝華)와 양마·이마 등을 우선 엄히 가두게 하고 남양(南陽)의 대부(大阜)와 수원(水原)의 홍원(洪原) 두 목장에서 목자 몇 명이 돈을 신고 서울로 들어오는 자를 모조리 잡아 가두고 추문하게 하니 그들의 납공(納供)에 대부의 목자 등이 바치기로 한 수기의 액수는 5백여 냥이고 홍원의 목자 등이 바치기로 한 수기의 액수는 4백 50여 냥이라 하였는데 이지화 등도 감히 저뢰(抵賴)하거나 숨기지 못하고 모두 자백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약간의 액수는 죽은 말 가죽의 값이니 본사에 납입하여야 하고 또 그 전물(錢物)을 미처 실어오지 못하여 주고 받지 못한 것도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평문(平問:형을 가하지 않고 물음)한 처지에서 납공한 것이니 그 실지 수효를 어떻게 믿겠습니까? 또 경기의 다른 목장은 미처 사핵하지 못하였으나 함부로 토색(討索)한 뇌물의 폐단은 여기에 근거하여 알 수 있습니다. 사복시 소속들은 항상 후한 요미(料米)를 먹어 생활이 넉넉한데도 범람하고 방종하기가 이에 이르렀으니 그 정상을 생각해 보면 지극히 통악스럽습니다. 근일 임금께서 백성의 측은한 사정을 깊이 진념하여 궁차인(宮差人)이 외방에서 작폐(作弊)한 것이나 경외의 정비(情費:잘 봐달라고 얹어주는 돈) 등 폐단을 일체 통금하고 경중에 따라 논죄하라고 누차 엄한 하교가 계셨는데도 이런 일이 터졌으니 의당 무겁게 처리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점마(點馬)의 행사에 각 목장의 목자들이 전물을 거두어 사복시의 아전들에게 뇌물로 준 일은 오래 내려온 적폐(積弊)로서 오늘날에 비롯된 일이 아니므로 우선 참작하여 서리·이마·양마 등은 해조로 하여금 각별히 이차 엄형을 가한 후에 절도(絶島)에 정배하여 징첩(懲戡)할 수 있도록 하게하며, 주었던 전물은 찾아서 본 목장의 목자들에게 일일이 내주고 이 뒤로 점마할 때에 다시 이런 버릇을 답습하면 특별히 중물로 논단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이들 수행 하배(下輩)가 뇌물을 토색하는 일은 의례히 관원의 이목이 미치지 않는 곳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나 당해 점마관은 검찰을 잘못된 실수를 면할 수 없으니 파직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답하기를, "보고대로 하되 토색한 돈이 1천 냥에 이르는데 지금에 처음 있는 일이 아

나라고 돌리고, 율(律)이 도배(島配)에 그친다면 어찌 이러한 이치가 있겠느냐? 불가불 별도로 처단하여야겠으니 다시 상의하여 아뢰라."하였다.

司啓辭, 近日外方民生之日益困苦, 多由於京各司四出侵剝, 無所忌畏, 此爲極弊, 宜有嚴法重處之道矣, 近聞今番點馬官還回之後, 隨行司僕書吏·理馬·養馬等處, 賂給錢物, 各牧場牧子馱載絡續, 入到京中, 蓋在點馬之時, 書吏等牧子處需索錢物, 先受手記, 故其時未及備納之數, 有此追後載來也, 畿內牧場內, 牧子等生理至殘, 因監牧官之徵斂多端, 本不能聊生, 今因此數多錢物之督迫收斂, 各自典賣家產牛馬以至鷄犬, 怨號之聲, 遍於村里云, 自本司分付刑曹, 司僕隨行書吏李枝華養馬·理馬等, 爲先嚴囚, 南陽大阜·水原洪原兩牧場牧子數名, 載錢來京者, 一併捉囚推問, 則其所納供, 以爲大阜牧子等賂錢手記, 爲五百餘兩, 洪原牧子等賂錢手記, 爲四百五十餘兩, 李枝華等不敢抵諱, 竝爲遲晚, 其中若干數, 以遺馬皮價, 當納於本寺, 且其錢物有未及載到, 而未及授受者云, 平問之下, 其所納招, 安保其以實數, 且京畿他牧場, 雖未及查覈, 而其濫索賂物之弊, 據此可知矣, 大僕所屬等, 常食厚料, 生業自足, 而其所濫縱, 至於如此, 究其情狀, 殊極痛駭, 近日自上深軫民隱, 以宮差之作弊外方者, 及京外人情之弊, 一切痛禁, 隨輕重論罪事, 屢有嚴教矣, 此既現發, 所當重處, 而自前點馬之行, 各牧場牧子等收斂錢物, 賂給司僕吏輩, 流來積久之弊, 非今日創有之事, 姑爲斟酌書吏·理馬·養馬等, 令該曹各別嚴刑二次後, 絕島定配, 以爲懲戢之地, 所給錢物, 使之推還於本牧場牧子等處, 一一出給, 日後點馬之時, 復踵此習, 則別用重律, 論斷爲當, 此等隨行下輩討賂之事, 例在於官員耳目之外, 而當該點馬, 難免不能糾檢之失, 罷職何如, 答曰, 依啓, 索賂之錢, 多至千兩, 而諉以非今創有之事, 律止島配, 寧有是理, 不可不別樣處斷, 更爲議啓.

<비변사등록 63책, 숙종 37년 1711년 12월01일(음)>

경제/교통

尹東洙 등의 소식이 없으니 이들이 지나간 店幕등지를 방문하도록 하교하다

10일 이 달 9일 친국(親鞫)에 입시하였을 때, 윤동수(尹東洙)·윤동형(尹東衡)·신유익(愼惟益)이 이산(尼山)으로부터 분문(奔問)하기 위하여 올라 왔다고 하는데 이미 17일이나 지났는데도 끝내 올라 왔다는 소식이 없으니 중도에서 혹 뜻밖의 봉변(逢變)을 당하였을 염려가 없지 않다. 이들이 지나간 점막(店幕) 및 수원(水原)·면천(沔川)·해구(海口)·대진(大津) 등처를 방문하도록 탐전에서 하교하였다.

今四月初九日親鞫入侍時, 尹東洙·尹東衡·愼惟益, 自尼山奔問上來云者, 已十七日, 而終無上來消息, 中路或不無意外逢變之慮, 使之訪問於所經店幕, 及水原·沔川·海口·大津等處事, 榻前下教.

<비변사등록 83책, 영조 4년 1728년 04월 10일(음)>

경제/교통

右議政 鄭存謙이 수원 煤音島로 이송된 江華의 北一牧場의 말을 본래 장소로 옮기자고 하다
○ 같은 날 입시했을 때 우의정 정존겸(鄭存謙)이 아뢰기를, “강화(江華)의 북일목장(北一牧場)은 평소에 일꾼기를 말을 기르기에 적당한 곳으로 마종(馬種:말 종자)이 가장 우량하게 생육될 뿐만 아니라 다른 목장에 비하여 더욱 번식이 잘됩니다. 연전에 내수사(內需司)에서 수원(水原) 궁둔(宮屯:궁에 속한 둔전)으로 수본(手本)을 올려 서로 바꾸고, 본 목장의 말은 매음도(煤音島)로 옮겨 보냈습니다. 한결같이 그 뒤로 말의 생육이 크게 이전과 같지 못하고 해마다 줄어들어 그 마정(馬政)의 득실에 있어서 관계된 것이 적지 않아 그대로

버려둘 수 없으니, 그 바꾼 땅을 이전대로 각각 본래 장소로 되돌리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임금의 그리하라 하였다.

同日入侍時，右議政鄭所啓，江華北一牧場，素稱宜馬之地，非但馬種之最良孳畜，比他場尤蕃息矣，年前內需司，以水原宮屯呈手本相換，本場馬，則移送煤音島，一自其後，馬畜大不如前，逐歲耗縮，其於馬政得失，所關非細，不可一任其拋置，以其相換之地，依前各還本處何如，上曰，依爲之。

<비변사등록 158책, 정조 1년 1777년 02월 26일(음)>

경제/교통

南陽灣에 10리의 성을 쌓기를 청한 南陽府使 姜游의 上疏를 그대로 두기를 청하다

○ 비변사에서 아뢰기를, “상소를 첨부한 비변사의 계목을 계하하셔서 남양부사(南陽府使) 강유(姜游)의 상소를 보니, ‘본부의 지형은 삼면이 바다로 싸여 있어 실로 수로(水路)의 요충인데 관방(關防)을 하나도 설치하지 않았습니니다. 만약 동서 두 산의 등성이에 영(營)에서 흙과 돌을 섞어 10리의 성을 쌓는다면 보장(保障)하는 바가 도리어 강도(江都)보다 낫습니다.’ 라고 말하고 나서 지도를 첨부했습니다. 대체로 남양부는 바로 경기도의 배후 병영으로서, 바다에서는 강도의 옷깃과 띠의 역할을 하고, 육지에서는 수원(水原)을 막고 가리는 역할을 합니다. 당성(唐城)의 앞바다에는 이미 중국에 조회하러 가는 옛길이 있고, 화량(花梁)의 쇠잔한 진(鎭) 또한 적의 침공을 받은 증거가 분명할 뿐만 아니라, 고을 안에 산이 있어 저절로 산등성이를 이루고 있어서 지세의 이로움으로 논하면 가히 하늘이 만들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성을 쌓자는 논의는 실로 어려움을 당하기 전에 미리 대비하자는 계책에서 나온 것이며, 본 대로 조목조목 진달한 것 역시 생각한 점이 있습니다. 다만 생각건대, 그저 성만 가지고는 저절로 막아질 수 없고 반드시 사줄이 있어야 하며, 사줄만 가지고 저절로 수비가 될 수 없고 반드시 쌀과 벼가 있어야 합니다. 설령 지금 청한 대로 몇 년의 기한을 정해 여기에 10리의 성을 쌓고 흙과 벽돌을 번갈아 써서 완전한 금성탕지를 만들더라도 어떤 사줄로 지키고 무슨 쌀과 벼로 대가를 지급하겠습니까? 이 한 가지 일은 아마도 깊이 헤아리지 못한 듯합니다. 대체로 경기의 남쪽은 바다로 둘러 싸인 읍이 5, 6곳인데 유독 교동(喬桐)에만 성을 설치하여 강도의 형세를 껴안게 하였으며, 육지에 이어진 읍이 6, 7곳인데도 유독 독성(禿城)에만 성을 설치하여 수원을 막게 했습니다. 옛 사람이 설치한 뜻을 대체로 알 만하니 지금 별도의 의견을 창출하여 구차하게 곳곳에다 성을 쌓을 필요는 없겠습니다. 또한 올해 경기도의 농사는 흉년을 면했다 하더라도, 춘궁기에 처한 주민의 형편이 점차 어려워지고 있으니 어려운 때에 큰일을 하는 것 역시 염려해야 합니다. 상소의 내용은 그대로 두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계를 올리니, 말 한 바가 사리는 있는 듯하나 따르기는 어려우니 회계한 대로 시행하라고 하였다.

司啓目，粘連啓下是白有亦，觀此南陽府使 姜游上疏，則以爲本府地形，三面環海，實爲水路之要衝，而無一關防之設置，若於東西兩山之脊，營築 土石間十里之城，則其所保障，反勝江都云，而仍爲 附上其地圖矣，蓋此南陽之爲府，卽是畿輔之後營，以海則江都之襟帶，以陸則水原之障蔽，唐城前洋，既有朝天之舊路，花梁殘鎭，又著受鋒之明驗 不喻，中邑有山，自成岡脊，若論地利，可謂天作，今此 築城之議，誠出撤土之策，而條陳疏語，亦有意見是 白乎矣，第念徒城，不能自捍，必待士卒，徒卒不能自 守，必待米布，設令依今所請，定爲幾年之限，築斯十 里之城，交以土甃，宛作金湯是白良置，以何士卒而 守防，以何米布而給代乎，於此一事，恐不深量是白 遣，大抵畿之南，環海而邑者五六，獨設城於喬桐，以 拱江都之勢，連陸而邑者

六七，獨置城於禿城，以塞 水原之衝者，古人設置之意，蓋可知矣，今不必創出 別見，屑屑於隨處築城是白遣，且今年畿農，雖曰免 歉，窮春民勢，轉益艱乏，時詘舉羸，亦所當念，上疏內辭意，置之何如，啓言似有理，事則難從，依回啓 施行爲良如教。

<비변사등록 164책, 정조 6년 1782년 01월 15일(음)>

경제/교통

右議政 蔡濟恭 등이 강화도에서 수원에 이르는 목장에 대해 논의하다

(…) 또 아뢰기를, “지난번에 유학(幼學) 조익(趙翼)의 상소로 인하여 강화(江華) 길상 목장(吉祥牧場)에 경작을 허가할 것인지 여부를 수신(守臣)에게 형편을 자세히 살펴서 이치를 논하여 장문하라는 뜻으로 복계하라고 행회하였습니다. 강화유수 윤승렬(尹承烈)의 장계를 보니 아뢰기를 ‘목장에 직접 가서 형편을 살펴보았더니 본 목장의 주위는 거의 20 리에 이르는데, 논을 뜰 만한 땅이 거의 5, 60섬지기나 되고, 밭을 일굴 만한 땅도 수백 섬지기를 밀돌지 않습니다. 그리고 본 목장의 말이 예전에는 4백여 필(匹)이나 되었으나 지금은 1백 36필에 불과하니 그 점점 줄어드는 점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본 목장의 동쪽은 포구가 평탄하게 되어 만조 때에는 비록 1천척이라도 쉽게 물에 뜰 수 있어서 실로 남쪽에서 오는 배들이 화물을 물으로 내리는 첫 번째 노정(路程)입니다. 또한 인천(仁川)·부평(富平)·남양(南陽)·수원(水原) 사이에서 배를 타고 강도로 올 때에도 역시 이 길을 경유합니다. 그러나 무신년(戊申年)에 난이 일어났을 때 병사를 나누어 노둔(露屯)시킬 때 이 한 쪽을 먼저 한 것에서 이곳이 본부의 관방(關防)에 있어서 가장 요해임을 말할 하지 않아도 알 수 있습니다. 본부 소관의 목장이 있는 매음(煤音)·장봉(長峰)·신도(信島) 등의 섬이 목장 터가 자못 넓고 물과 풀도 풍부하여 마필을 이송하는데 대부분 여유가 있습니다. 각 섬에 분배하는 것과 목자(牧子)를 구처하는 것을 본시(本寺)에서 편리한 대로 거행하게 하고, 해 목장에 특별히 백성을 모집하여 들어가서 경작하도록 허가할 것을 묘당에서 품처하게 하소서.’ 하였습니다. 전후 수신과 태복시(太僕寺)에서 길상 목장의 일로 편리함 여부를 쟁론한 것이 한두 번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좀 전에 함외에서 들으니, 사복시(司僕寺)의 한 제조가 본도에 백성을 허락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으로 유사당상에게 말을 전하기를 ‘대신의 의론이 이미 이와 같으니 더 논의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수신의 장계 내용을 보니 말이 이미 줄어들었고 세 섬에 이송하는 것은 넉넉히 여유가 있으며, 논을 뜨고 밭을 일구면 2, 3백 섬지기를 얻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또 하물며 관방의 요해로서 본 목장만한 것이 없으니 평소에는 양식을 넉넉히 마련할 수 있고 위급한 때는 힘을 얻을 수 있어서 공으로나 사로 어렵게 여길 필요가 없을 듯합니다.’ 하였습니다.”

하니 임금의 이르기를, “남쪽에서 오는 배들이 화물을 물으로 내리는 첫 번째 노정(路程)이고 본부 관방의 가장 요해이며, 말도 5백여 필에서 겨우 1백여 필이 있다고 하니 해시(寺)의 득실에 손익이 없을 듯하다. 하물며 토지를 열고 개간하는 것이 섬 주민의 염원인 점이겠는가! 또 허락한다면 땅의 이익과 백성의 화합이 된다는 것이 바로 이를 두고 한 말이다. 장청대로 시행하여 별다른 장애의 단서가 아니고서는 다시 쟁난(爭難)하지 말도록 해시(該寺)에 말하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

(…) 又所啓，頃因幼學趙翼上疏，江華吉祥牧場許 耕便否，令守臣，審察形便，論理狀聞之意，覆啓 行會矣，卽見江華留守尹承烈狀啓，則以爲躬往 牧場，看審形便，則本場周廻，幾至二十里，可以作畓 者，殆將五六十石落，可以墾田者，不下數百石落，而 本牧場馬，昔爲四百餘匹，今不過一百三十六匹，可 想其漸就耗縮，且本場東面浦口平開潮滿之時，雖 千艘，可以容易乘

水，實爲南來帆檣下陸初程，且多 仁富南水之間，乘舟向江都，則亦由是路，而粵在戊 申警備之日，分兵露屯，先此一面，其爲本府大關防 最要害者，不言可知，本府所管牧場煤音・長峰・信島 等島，場地頗廣，水草亦豐，馬匹移送，多有餘裕，各島 分排及牧子區處，令本寺，從便舉行，該牧場，特許募 民入耕事，請令廟堂，稟處矣，前後守臣，與太僕，以 吉祥牧場事，爭論便否，非止一再，而俄於閤外聞之，則司僕一提調，以本島之不可許民，送言於有司堂 上云，大臣之議，既如此，難以更議，第以守臣狀辭見 之，馬既耗損，移送三島，綽有餘裕，作畝墾田，可得三 數百石落，又況關防要害，無過本場，則時平可以裕 食，警急可以得力，以公以私，恐不必持難矣，上曰，南來帆檣，下陸初程，爲本府大關防最要害，半千馬 匹，餘只百餘，在該寺，得失似無損益，況關土開墾，島 民之情願，又如許，則地利人和，政謂此也，依狀請施 行，除非別般窒礙之端，更勿爭難之意，言于該寺可也.(…)

<비변사등록 174책, 정조 13년 1789년 05월 27일(음)>

경제/교통

暗行御史 柳文養이 行幸 때 잘못 편입된 道路를 주인에게 돌려주는 문제 등을 논의하다

○ 이번 10월 10일 암행어사가 임시하였을 때에 암행어사 유문양(柳文養)이 아뢰기를, “행행(幸行) 때에 도로의 수치(修治)와 교량의 가설 등은 본래부터 전부(田夫)들이 당연히 해야 하는 역(役)인데 이번에는 조정에서 특별히 별례(別例)로 시행하여 쌀과 돈을 넉넉히 주니 1백 리(里) 사이에서 촌정(村丁)과 야부(野夫)들이 너나없이 혼연히 앞을 다투어 부역하고 성은(聖恩)에 감축하였으나 가만히 들으니 전부들이 길을 수치할 때에 길가의 전답이 길속으로 많이 들어갔다고 하고 지금 값을 마련하여 지급하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합니다. 다만 생각컨대 어로(御路)의 넓이는 본래 과수(把數:발 수)가 있기 마련이고 과천(果川)에서 수원(水原)까지는 온천(溫泉) 행행 때의 직로(直路)입니다. 당초 길을 낼 때에 한계가 정해진 바가 있었으나 세월이 오래되고 백성은 법을 두려워하지 않아 점차 범경(犯耕)하여 길이 좁아지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대여(大輿)를 모실 때에도 예전 길을 복구하여 규격에 맞게 닦은 것에 지나지 않는데 어리석은 백성들이 어로가 민전(民田)에 싸잡혀 든 줄은 전연 모르고 되레 민전이 어로에 떼어 붙여졌다고 하고 이렇듯 값을 받겠다는 망상(妄想)을 하게 된 것입니다. 어로를 범경하는 것은 그 율(律)이 가볍지 않습니다. 지금 전주(田主)가 여러 번 바뀐 뒤에 일일이 추심(推尋)하기는 비록 어려우나 또 어떻게 그들 요구에 따라 값을 쳐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연도(沿道)에서 본 바로 말씀드리면 원정(元定)의 6과(把) 외에도 간혹 전토를 범하여 널리 낸 곳이 있는데 사세로 미루어보면 그렇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 이는 의당 구별하여 임시로 낸 길과 새로 낸 길과 아울러 본주(本主)에게 환속(還屬)시켜 전처럼 경작하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대저 백성의 정원(情願)이 이와 같으면 당초에 어로였던 것을 범작한 것이라고 말하여 그들을 결망(缺望)하게 할 수도 없을 듯하고 한편으로 생각하면 행행하실 때의 노폭(路幅)은 정식으로 6과가 되지 않더라도 5기(騎)의 횡렬(橫列)은 수용할만하니 신의 생각으로는 세 고을 수령으로 하여금 이로써 표준을 삼아 한계를 고쳐 정하고 그 밖의 남은 땅은 전민에게 허급(許給)하여 갈아먹게 하는 것이 영실(寧失)의 도리에 방해로움이 없을 것 같기에 감히 양달하옵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거조(擧條)에 내고 경기감사로 하여금 편의하게 조치한 뒤에 형지(形止)를 장문하라고 분부하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

今十月初十日，暗行御史入侍時，暗行御史柳 文養所啓，幸行時道路修治，橋梁造築，自是田夫應行之役，而今番則自朝家，特施別例，優給米錢，百餘里之間，村丁野夫，莫不欣欣然爭先

赴功，感 祝聖恩，而竊聞田夫等，以爲治道時路傍田畝，多 入於其中，方俟價本之磨鍊題給云，第念御路廣 袤，自有把數，自果川至水原，卽溫幸時直路也，當初作路，界限已定，而歲月寢久，民不畏法，漸次犯耕，以至狹窄，今番奉輦時，亦不過復其舊路，準式修治，則愚民輩，全昧御路之混入於民田，反謂民田 之割入於御路，有此受價之妄想，御路犯耕，其律不輕，今於屢易田主之後，雖難一一追究，又豈可 從之以給價哉，然以沿路所見言之，則元定六把外，間或有犯田廣拓之處，推以事勢，不得不然，而此則 宜令區別，竝與權作路新作路處，還屬本主，如前耕墾，而大抵民情既如此，則不可以當初御路之 犯耕爲說，以缺其望，且念幸行時治道，雖不滿六 把之定式，亦可容五騎之成列，臣意則宜令三邑地 方官，以此爲準，改定界限，外此餘地，亦許田民，使之 耕食，不害爲寧失之義，故敢此仰達矣，上曰，出 舉條，令畿伯從便措置後，形止狀聞事，分付可也。

又所啓，今番奉輦時及動駕時，京鄉軍兵，別無大段弊瘼，而果川縣奉輦時，館舍所設甲帳 及環衛軍兵，自鎮撫營・管理營，分半舉行矣，鎮撫營 校卒，爲九十名，管理營校卒，爲五十餘名，而鎮撫營 則每名齎糧資一兩錢，管理營則每名齎送二兩錢，而客地留連，已至十日，不但糧資已竭，百餘浮甲帳 之回還駄價，亦無出處，以此不無彷徨愁歎之色，臣 謂回還駄價及留回糧不足者，特令兩都守臣，一一題給，俾無呼冤之端似好，故敢此仰達矣，上曰，所奏甚好，出舉條舉行後形止，斯速狀聞可也。

<비변사등록 175책, 정조 13년 1789년 10월 12일(음)>

경제/교통

輦路를 닦는 董役의 調發을 소홀히 한 廣州府尹 洪聖淵을 파직할 것을 청하다

비변사에서 아뢰기를, “기읍(畿邑)을 거치는 연로(輦路)를 닦는 역(役)은 미리 동척(董勅)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오늘 비랑(備郎)을 보내 적간(摘奸)하게 했더니 회고해서 아뢰는 안에 ‘과천(果川) 수원(水原) 두 읍의 도로는 비록 우열(優劣)이 판이하게 다름이 있으나 수원(水原)이 최고이고, 과천은 그 다음이니 그 도로를 닦는 일은 가을부터 이미 시작하였으므로 지금 모두 끝났습니다. 광주(廣州)는 가을부터 지금까지 처음부터 착수한 일이 없고 교량(橋梁) 6곳도 또한 모두 내버려 두어 혹은 기울어 무너져가고 있거나 혹은 뚫어져 파손된 곳이 많으며 쌓인 눈을 한 번도 쓸어 치운 일도 없습니다. 일전에 전최(殿最)를 계하(啓下)한 뒤에 부윤이 비로소 내려왔었는데 하루를 자고 즉시 돌아갔으며 부교(府校)를 머물러 두 고서 6면(面)의 민정(民丁)을 조발(調發)하여 6패(牌)로 역을 시작하였는데 부교군(府校軍)이 조금이라도 마음 같지 않으면 태장(笞杖)을 낭자하게 치니 역민(役民) 등이 모두 말하기를 “별이 따뜻할 때에 무슨 일로 백성을 즐겁게 할까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얼 듯한 추위에 백성을 이런 괴로움에 빠뜨리는가?” 하고 원성(怨聲)이 자자하며, 고가(雇價)는 푼돈과 쌀알을 막론하고 처음부터 볼 수가 없었습니다.’ 하였습니다. 연로를 닦는 일은 전후의 칙교(勅敎)가 어떠하였는데 해 부에서 애초에 마음을 쓰지 않은 것이 이미 매우 만만 놀랍습니다. 백성을 부릴 때에 성념(聖念)은 동동(懂懂:애타움)하여 혹 폐를 끼칠까 염려하고 감히 값 없이 사역하지 못하게 하였으나 6면(面)에서 부역(赴役)한 부류는 단지 언 손을 붙여 대는 괴로움만 있고 도무지 입에 풀칠할 도움은 없었는데 그 동역(董役)을 조발(調發)하는 것이 얼마나 긴중한 것이관데 직접 검사할 것은 생각하지도 않고 여러 교리(校吏)들에게 넘겨주어 직임을 놓아두고 저버린 죄는 덮어두고 논하지 않을 수 없으니 당해 부윤(府尹) 홍성연(洪聖淵)을 파직하고 그 죄상을 유사(攸司)로 하여금 중중감처(從重勘處)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답하기를, “윤희한다. 그 후임을 구전으로 즉시 차출하게 하여 하비(下批)를 기다려 당일 내려 보내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司啓曰, 畿邑所經輦路修治之役, 不可不預爲董飭, 故今日發遣備郎摘奸, 則回告內, 以爲果川·水原兩邑道路, 雖有優劣之判異, 水原爲最, 果川次之, 而若其修治之役, 自秋間已爲經始, 今皆了畢, 至於廣州, 自秋至今, 初無着手之事, 橋梁六處, 亦皆拋置, 或致傾圮, 或多穿破, 積雪無一掃開矣, 日前殿最 啓下之後, 府尹始爲下來, 一宿卽還, 而留置府校, 調發六面民丁, 以六牌始役, 府校輩, 少不如意, 則笞杖 狼藉, 役民等舉皆偶語曰, 日暄之時, 緣何事甘眠不省, 當此凍寒, 使民罹此苦也, 怨聲喧騰, 雇價則毋論 分錢粒米, 初不得見云, 輦路修治, 前後飭教何如, 而該府之初不動念, 已極萬萬可駭, 至於役民之際, 聖念憧憧, 或慮貽弊, 使不敢無價使役, 而六面 赴役之類, 只有呵凍之苦, 了無糊口之助, 若其調發董役, 何等緊重, 而不思親檢, 付諸校輩, 其失職孤負之罪, 不可置而不論, 當該府尹洪聖淵罷職, 其罪狀, 令攸司, 從重勘處, 何如. 答曰, 允. 其代, 口傳卽爲差出, 待下批當日下送, 可也.

<비변사등록 177책, 정조 14년 1790년 12월 21일(음)>

경제/교통

暗行御史 鄭東觀이 新作路 닦는 일에 부역한 백성들의 샅이 균등하지 못한 일을 논의하다

이번 1월 19일 과천(果川)·금천(衿川)·수원(水原)·광주(廣州) 등을 암행한 어사가 입시하였을 때에 암행어사 정동관(鄭東觀)이 아뢰기를, “신이 도로를 닦는 읍을 살펴라는 명을 받들어 과천현 노량진(果川縣 露梁津)부터 수원부(水原府)의 새로 만든 길까지 빙 둘러 감행하면서 자세히 사정을 살펴보니, 여러 읍의 수령들 대부분이 임금의 위엄을 두려워하며 거스르지 않고 백성을 보살피는 덕의(德意)를 받들어 행하여 일마다 성의를 기울여서 백성들이 수고로워도 원망은 없었습니다만, 소소한 폐해에 있어서는 한두 가지 거론할 것이 없지 않습니다. 대개 과천현에서 작년 겨울에 새로 길을 만들 때 부역한 백성들에게 각각 10전씩을 지급했는데, 성책(成冊)하고 명단을 기록할 즈음에 누락이 파다하여 혹 여러 날 부역했으나 한 푼도 받지 못한 경우도 있고, 혹 열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도 앉아서 샅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이는 실로 읍리(邑吏)들이 그 안에 손가락을 담그고 관장(官長)을 속인 데서 말미암아 이렇게 균등하지 못하다는 탄식이 있게 된 것입니다. 금천(衿川)은 6개 면의 장정을 20일 동안 사역하고는 뒷박 쌀과 잔술로 한번 책임을 때운 것이 고작이고, 새 길로 편입된 민전(民田) 15부(負)에 대해서도 보상을 거론하지 않아 전임 수령은 이미 체직되었으나 아직까지 원성이 남아있습니다. 감동(監董)을 담당한 장교와 관리가 마을에서 강제로 음식을 구해 먹은 폐단은 곳곳에서 자행되었는데, 그 가운데 금천과 과천이 가장 심하였습니다. 과천은 관청에서 각각 식량거리를 지급하고 더욱더 신칙하고 독려하지 않음이 없었는데도 뿌리 깊은 폐단이 되어 실로 금단하기 어렵게 되어버렸습니다. 광주(廣州)는 옛 길을 수리하여 사역(事役)이 조금 달라 별로 폐해를 끼쳤다고 말할 것이 없습니다. 수원(水原)은 모두 농부들의 부역으로 새로 길을 만들었는데, 이달 10일 무렵 관청미(官廳米) 4섬을 내어 막비(幕裨)와 유향소(留鄉所)에 주어 경계지역으로 짐을 싣고 가 신로(新路)와 구로(舊路)를 막론하고 길이를 비교하여 차등을 두고 시상하였습니다. 그러나 구로의 수리와 신로의 개척은 노고와 편안함이 본래 완전히 다른데도 피차 같은 예로 하여 구분하지 않아 향목평(香木坪)에서 신읍(新邑)의 남리(南里)까지는 쌀이 바닥나 그곳만 누락되니 자못 구석에서 좋은 기회를 만나지 못함을 한탄하고 있으며, 도로에 편입된 민전·답(民田畓)은 작년 겨울에 측량한 뒤 아직 값을 지급하지 않아 백성들이 절실히 기대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 네

읍은 수령의 감독과 신칙에 피차 우열이 없지 않고 민부(民夫)를 부릴 때 간혹 노고와 편안함에 차이가 있기도 하였는데, 이는 역에 크고 작음이 있고 일에 편의의 차이가 있어 똑같이 놓고 논할 수 없겠습니다. 이번에 하문을 받고 민폐에 관계되는 일만 대략 아뢰었습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이 거행조건을 묘당에서 베껴海道(該道)에 통지하게 하라. 아직 값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는 값을 지급하고, 징계할 것은 징계하여 앞으로 실효가 있게 하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今正月十九日果川·衿川·水原·廣州等地, 暗行御使入侍時, 暗行御史鄭東觀所啓, 臣伏奉治道邑廉察之命, 自果川縣露梁津, 至水原府新作路, 周復潛行, 詳探事情, 則諸邑守宰, 舉皆仰畏不違之天威, 奉行若保之德意, 隨事殫誠, 民勞而不怨, 至於小小弊狀, 則不無一二可舉者, 蓋果川縣昨冬新作路時, 赴役之民, 每名各給十錢, 而成冊錄名之際, 疎漏頗多, 或屢日赴役而不得一錢, 或十指不動而坐受役價, 此實由於邑吏輩, 從中染指, 欺蔽官長, 有此不均之歎, 衿川則六面民丁, 二旬使役, 而不過以升米盃酒, 一番塞責而已, 民田十五負之載入新路者, 亦不論償, 故前倖已遞, 而尙有怨聲, 至於監董校吏, 討食閭里之弊, 在在皆然, 而其中衿·果爲甚, 果川則自官各給糧資, 非不另加飭勵, 而便成痼弊, 實難禁斷, 廣州則舊路修治, 事役稍異, 別無貽弊之可言, 水原則新作路, 皆以田夫赴役, 而本月旬間, 以官廳米四石, 出付幕裨及鄉所, 分界駛往, 無論新舊路, 較量把數, 差等施賞, 而大抵舊路修治, 新路開拓, 勞逸本自懸殊, 而彼此一例, 無所分別, 自香木坪, 至新邑南里, 則以米盡之故, 獨爲見漏, 頗有向隅之歎, 而載入之民田畝, 昨冬尺量之後, 姑不給價, 故民情, 舉切企待之意矣, 蓋此四邑之中, 守宰之董飭, 不無彼此之優劣, 民夫之使役, 或有勞逸之差殊, 而此則役有大小, 事有便宜, 不可一概而論, 今承下詢, 只就事係民弊者, 略此仰達矣, 上曰, 以此舉條, 令廟堂謄關, 行會該道, 未及給價者, 給價, 可以懲治者, 懲治, 俾有來頭實效, 可也.

<비변사등록 178책, 정조 15년 1791년 01월 21일(음)>

경제/교통

京畿 各驛의 弊端을 釐正하는 節目

○ 경기 각역 이폐절목(京畿各驛釐弊節目)

1. 영화역(永華驛)의 모든 공역(公役)을 감면한 뒤에 전부터 배치하던 말의 수를 지금 다섯 역에 배분하여 옮겨 정하면 평소 역(役)에 응하는 일에 별로 구차스런 걱정이 없다. 비록 연경(燕京)에 가는 사신 및 도신(道臣)이 순시하는 행차에도 여유가 있어 굳이 거론할 것이 없으나 칙사의 행차 때에 들어가야 할 필수(匹數)에 있어서도 금년 봄에 사용한 것을 논하면 부족할 걱정이 많으니 변통이 없을 수 없다. 그러므로 각종 배치해야 할 것 가운데에서 감축할 만한 것을 알맞게 감축하여 상당하게 하고 감축한 수효를 아래에 기록한다.

1. 금년 봄 칙사를 접대할 때에 칙사 일행 및 우리나라의 크고 작은 사행(使行)과 본역에서 사용해야 할 수에 이르기까지 합하면 2백 10필 안팎이 된다. 그 가운데 영화역의 상등(上等) 말·중등 말로서 배치할 것이 45필이다. 지금 다섯 역의 상등 말·중등 말의 원 수자 2백 1필을 고르게 배치하여 보충하였으나 그래도 부족할 걱정이 있다. 그러므로 각종 명목 가운데 긴요치 않은 것을 일일이 감축하고 이 감축한 수가 부족한 수에 견주면 비록 상당한 것 같으나 각처에 배치할 수를 아울러 계산하면 오히려 부족할 뿐만이 아니라 서울에 머물 말 및 임시 공역(公役)에 쓰일 것을 추가 대비시키지 않을 수 없다. 홍제참(弘濟站)은 곧 관내(管內)로서 칙사를 맞이할 때에 승지(承旨) 일행은 굳이 경기 역에서 배치할 것은 없고

앞으로는 병조의 말로 계속 가고 돌아오며 3도(都) 유수의 교마(轎馬) 좌마(坐馬:관마(官馬))와 인쇄우구마(印載雨具馬)로 배치하던 것을 비록 길이 폐지할 수는 없으나 칙사 행차 때에는 전역 내어 사용하고 파주방어사(坡州防禦使)가 탈 말을 배치하는 경우도 내어 사용한다. 원접사 군관(遠接使軍官)의 말 4필 안에서 2필을 감축하고 하기마(下騎馬) 5필 안에서 2필을 감축하며 도신의 군관 말 3필 안에서 1필을 감축하고 하기마 6필 안에서 2필을 감축한다.

1. 본도의 감사·도사·중군(中軍)의 좌마를 다시 영화역에 내세우라 하지말고 원수자 3필 안에서 각각 1필을 감축하고 다른 역에 있는 2필을 돌려가며 번(番)에 들게 한다. 칙사의 행차 때에는 도사·중군의 좌마 가운데 번에 나간 말을 아울러 내어 사용한다.

1. **영화역**의 말로서 서울에 올라와 역에 응하는 것을 지금 영원히 감면시켰으니 역속(驛屬)으로서 영문(營門)에 역을 서는 경우는 마두(馬頭)이하 긴요하고 그렇지 않음을 물론하고 모두 길이 감축한다. 세패(貫牌)에 있어서는 본래 역속이 아니요, 곧 서울에서 사람을 사 대신 내세우는 자[雇立]이다. 영화역의 세패 15명을 다섯 역에 나누어 소속시켜 전처럼 사역시키되 매월의 요전(料錢)을 복호미(復戶米)와 무명에서 예에 의하여 지출한다. 매년 부족한 돈이 1백 41냥으로서 지금 영화역에 내게 하기는 어렵다. 공역(公役)이 중첩되는 시기가 아니라면 약간 명을 감축하더라도 별로 지장은 없을 것이다. 15명안에서 5명을 우선 감축하여 요전을 상당하게 한다.

1. 칙사의 행차 때 영화역에서 증여하는 은자(銀子) 70냥 및 인부의 별세(別貫)와 송도(松都)에 머무는 식량 등 잡비는 지금 본역에서 담당하게 하기는 어렵다. 아울러 감영에서 좋은 방도도 마련하여 보태어 지출하도록 한다.

1. **화성(華城)**에 행행(幸行)하실 때 역마를 원소참(園所站) 및 본부참(本府站)에 대기시키는 것은 곧 본역의 책무로서 아울러 영화역에서 거행한다.

1. 경기 역이 궁핍해 지는 폐단은 오로지 점점 증가하는 배치와 갖가지 침어(侵魚)에서 말미암으므로 지금 시정을 하지 않을 수 없다. 크고 작은 별성(別星) 및 3도 유수, 각도의 감사·병사·수사 이하 각 행차의 부마(夫馬) 배정에 정해진 규례가 있으나 번번이 지나치게 배정하는 폐단이 없지 않다. 지금부터 옛 법을 거둬 밝히되 혹 지나치게 배정하는 일이 있을 경우에는 당해 역에서 감영에 논하여 보고하여 장문하도록 한다. 역마를 배치할 때에 하속의 주구(誅求)와 정채(情債)는 곧 전례로 이루어졌고 한 역 1년의 경비는 적어도 백여 금(金)이 못되지 않는다. 이 폐단을 엄금치 않으면 궁핍한 역은 실로 유지하기 어렵다. 일체 엄금하되 혹 범하는 자가 있을 경우에는 준 자와 받은 자 모두를 적발하여 중벌에 처한다. 지나친 배정과 주구하는 폐단을 당해 역에서 숨기고 보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찰방(察訪)을 장문하여 죄를 논한다.

1. 크고 작은 별성(別星)은 병조의 역마로 지방역 초참(初站:맨 먼저 맞이하는 역참)에 도착하여 비로소 말을 바꾸는 것이 곧 법례이다. 그런데 근래 번번이 서울로부터 배치하라는 폐단과 하속이 중간에서 주구(誅求)하는 일도 이에서 말미암는다. 거둬 정식을 밝히되 대신 및 연경(燕京)에 가는 사신의 행차 외에 서울에서 배치하라고 하는 경우 일체 엄금해서 조금이나마 폐단이 제거되도록 한다.

1. 3도(都)의 교마(轎馬)와 좌마(座馬)를 평소 늘 내세우는 일은 가장 큰 폐단이다. 막비(幕裨)와 이교(吏校) 등을 빙자해서 합부로 타는 폐단도 엄금치 않을 수 없는 일이다. 앞으로는 당해 부(府)에서 일체 초료(草料)를 지급하지 않는다. 혹 지나치게 타는 자가 있을 경우에는 당해 역의 찰방이 적발, 보고하고 법에 따라 엄벌한다.

1. 본도 감영의 비장(裨將)·집사(執事)·영리(營吏) 등 공사로 인하여 왕래할 때 비록 역마를 타는 예가 있으나 이를 빙자하여 배치토록 하는 일도 그 폐단이 없지 아니하다. 지금부터는 번(番)을 서기 위해 왕래하는 경우 및 공사로 인하여 사명을 띠고 나가는 일 외에 일체 방색하고 감영에서 정식에 따라 시행해서 함부로 범하는 일이 없게 한다.

1. 본도 방어사가 부임하거나 체직되어 돌아올 때에만 예에 의하여 역마를 타고 그 밖의 사삿 걸음에는 일체 말을 지급지 않아 입대(立待)하는 폐단을 제거한다.

1. 칙사의 행차 때 각역 도장(道掌)의 직로 유참마(直路留站馬)는 1~2필에 지나지 않는다. 병조의 말이 초참(初站)에 도착한 경우 혹 말이 없어 참(站)을 건너뛰어야 할 일이 있을 때에는 세(貫)를 징수하는 수가 극히 과다하므로 이 역시 한 폐단이 된다. 앞으로는 이른바 참을 건너 뛴 세의 돈은 10리에 1전을 초과할 수 없고 혹 과외로 지나치게 징수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감영에서 병조와 협의하여 엄하게 다스리고 강력히 금지시킨다.

1. 크고 작은 공무상의 행차는 중화(中火:점심)나 숙소를 막론하고 읍참(邑站)에서 조금 먼 곳은 역촌(驛村)에서 미리 제공하고 그 건가(乾價:음식 값)를 본 고을로부터 받는다. 지출할 때에 오로지 삭감에 힘써 받는 것이 소비한 값의 반에도 미치지 못하여 한갓 왕래하는 노고만을 하게 한다. 그러므로 이러한 일이 역민(驛民)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실마리가 된다. 광주(廣州)의 덕풍(德豐)·봉안(奉安)·경안(慶安)과 양주(楊州)의 녹양(綠楊) 등 여러 역에 모두 이러한 폐단이 있으니 신척치 않을 수 없는 일이고, 녹양역에 있어서는 늘 누원(樓院)에 출참(出站:사람을 내보냄)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는 역촌이 아니므로 타당치 못한 빈곤한 역졸(驛卒)에게 수십리나 되는 곳으로 대신 출참하게 하는 것은 매우 의의가 없고 또 큰 폐단이 된다. 앞으로는 누원의 접대를 본 고을에서 편의에 따라 거행하되 빈곤한 역에 침범하는 일이 없도록 정식을 정하여 시행해서 전과 같은 폐단이 없게 한다.

1. 형조의 죄인을 배소(配所)로 발송할 때에 본조에서 고마청(雇馬廳)에 압송해서 앞의 역참(驛站)에 교부하게 하는 것은 법례가 그러하다. 전부터 본조에서 두 사람을 고립(雇立:사람을 사 대신하게 함)하되 수도역자(首徒驛子)라 하여 조문(曹門)에서 대기하는데 여섯 역에서 고립하는 값을 갖추어 지급하며 1년에 지급하는 것은 합하니 자그마치 1백 80냥이나 된다. 어느 때 시작이 되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궁핍한 역의 폐단을 끼치는 실마리가 되고 또 서울과 지방에 정한 제도의 뜻도 아니다. 지금부터는 길이 폐지하고 죄인을 배소로 발송할 때에 본조에서 하예(下隸)를 정하여 곧바로 고마청에 압송해 교부하고 입직 찰방이 이를 확인하고 발송한다.

1. 지방역의 역졸을 경사(京司)에서 추착(推捉:체포)할 수 없음은 곧 법례이나 근래 서울 각사에서 차인(差人)을 보내 추착함에 있어 조금도 어려워하지 않고 각역의 이졸(吏卒)이 이로하여 소요스러우며 경사의 하예가 이로 인하여 침어(侵漁)하니 일의 놀라움은 이보다 심한 것이 없다. 비록 법사(法司)라 하더라도 이러할 수 없는데 더구나 각사관 말인가? 앞으로는 아무 아문임을 막론하고 혹 역의 이 졸을 추문(推問)할 일이 있을 경우에는 감영에 관문을 보내 조사, 치죄하도록 하되 추착문제는 별달리 엄금한다.

1. 과거 칙사의 행차가 있을 때 삼남 및 동북로(東北路)로부터 올라오는 별성(別星)이 본도의 경계에 도착하여 충청·강원 양도의 역마를 배치받아 행차에 편의하도록 하는 것이 곧 법례이므로 옛법은 거듭 밝히지 않을 수 없다. 앞으로 이에 의하여 따라서 행한다.

1. 본도 다섯 역의 상등·중등마는 합하여 2백 1필이다. 칙사를 맞이할 때마다 많은 배치에 응하는 일에 고르게 배치할 수 없다. 지금 비록 감축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나 구차스런 걱정이 없지 아니하고 각 역의 복마(卜馬)에 있어서는 그 수가 자못 많으나 유명무실하다. 많

은 데에서 덜어 적은 곳에 보태는 정책에 있어 변통하는 방도가 있어야 한다. 그 가운데 평구역(平邱驛) 10필, 경안역(慶安驛) 6필, 연서역(延曙驛) 5필, 중림역(重林驛) 3필, 도원역(桃原驛) 5필 합하여 30필을 중등마로 바꾸어 세우되 지금 이 바꾸어 세우는 말 값 및 앞으로 탈이 있을 때에 바꾸어 세우는 추가된 값을 아울러 감영에서 편의에 따라 마련하여 예에 의하여 지출해서 일체 사용하도록 연석에서 아뢰고, 윤허를 입었다. 이와 같이 영구히 정식으로 정하여 시행한다.

1. 과거 칙사의 행차 때에 순찰사의 행차에 비장(裨將) 장교(將校) 이서(吏胥) 등 대동하는 데에는 비록 원래 정한 수가 있으나 금번 객사(客使)의 행차에 신칙하는 하교를 받들어 원액수 가운데에서 그 수를 감하여 정하였고 수 외에 수행(隨行)치 않을 수 없는 자는 사삿말을 갖게 한다. 앞으로 칙사의 행차에 말에 어려움이 있는 때에는 이에 비추어 예로 삼고, 역마를 전처럼 내세우지 못한다.

京畿各驛釐弊節目

一, 迎華驛諸般公役除減之後, 自前入把馬匹之數, 今以五驛分排移定, 則常時應役, 別無苟艱之慮, 雖如赴燕使行及道臣巡審之行, 亦自有裕, 不必舉論, 而至於勅行時應入匹數, 以今春所用論之, 多有不足之患, 不可無變通, 故就各樣入把中, 可以除減者, 量宜除減, 俾得相當, 而除減數爰, 開錄于下是白齊.

一, 今春支勅時, 勅使一行及我國大小使行, 以至本驛應用之數, 合爲二百十四匹內外, 而其中迎華驛上·中等馬入把者, 爲四十五匹是白乎所, 今以五驛上·中等馬元數二百一匹排比充補, 而猶有不足之患乙仍于, 就各樣名色中不緊者, 一一除減是白如乎, 以此除減之數, 比諸不足, 則雖若相當, 而竝計各處立待之數, 則猶爲不足岔除良, 留京馬匹及臨時公役所用者, 不可不加數備待是白如乎, 弘濟站既是部字內, 則迎勅時, 承旨一行不必以畿驛入把, 此後則以兵曹馬仍爲往還爲白乎所, 三都留守驕馬·座馬·印載雨具馬之立待者, 雖不得永罷, 而勅行時, 則全數出用爲白乎所, 坡州防禦使騎馬之立待者, 亦爲出用, 遠接使軍官馬四匹內, 減二匹, 下騎馬五匹內, 減二匹, 道臣軍官馬三匹內, 減一匹, 下騎馬六匹內, 減二匹爲白齊.

一, 本道監司·都事·中軍座馬, 更勿責立於迎華, 而元數三匹內, 各減一匹, 以他驛所在二匹, 輪回入番爲白乎矣, 勅行時, 則都事·中軍座馬中, 出番馬一併出用爲白齊.

一, 迎華驛馬之上京應役者, 今既永減, 則驛屬之立役營門者, 自馬頭以下, 無論繁漫, 一併永減, 而至於貫牌, 則本非驛屬, 乃是自京雇立者是白如乎, 迎華貫牌十五名, 分屬五驛, 如前使役, 而每朔料錢, 以復戶米木, 依例上下爲白乎矣, 每年不足錢一百四十一兩零, 今難責出於迎華, 而若非公役稠疊之時, 則略干名除減, 別無掣礙乙仍于, 十五名內五名段, 姑爲減額, 以爲料錢相當之地爲白齊.

一, 勅行時, 迎華贈給銀子七十兩及人夫別貫·松都留糧等雜費段, 今難使本驛擔當是白如乎, 竝自監營從長拮据, 以爲添補上下之爲白齊.

一, 華城幸行教是時, 驛馬之待令於園所站及本府站者, 既是本驛掌內, 竝自迎華驛舉行爲白齊.

一, 畿驛凋殘之弊, 專由於入把之漸加, 侵漁之多端, 及今釐正在所不已是白如乎, 大小別星及三都留守, 各道監·兵·水使以下, 各行之夫馬入把, 自有定例, 而每不無濫把之弊, 自今申明舊典, 或有濫把者, 則自該驛論報監營, 以爲狀聞之地爲白乎所, 凡於驛馬入把之時, 下屬之誅求情債, 便成前例, 一驛一年之所費, 少不下百餘金, 此弊若不痛禁, 則殘驛實難支保, 一體嚴飭, 或有犯者, 則與者·受者竝摘發重繩爲白乎矣, 凡濫把及誅求之弊, 若自該驛掩匿不報, 則當該察訪, 狀聞論勘爲白齊.

一，凡大小別星以兵曹驛馬，到外驛初站，始爲替把，自是法例，而近來每有自京入把之弊，下屬之從 間誅求，亦由於此是白如乎，申明定式，如大臣及 赴燕使臣行外，自京入把者，一切嚴禁，以爲一分 蘇弊之道爲白齊。

一，三都轎馬·座馬之常時立待，最是大弊，而幕裨吏 校輩，憑藉濫騎之弊，亦不可不嚴禁，此後則自該 府切勿成給草料爲白乎矣，或有濫騎者，則該驛 察訪，摘發論報，照法嚴勘爲白齊。

一，本道監營裨將·執事·營吏等，因公往來時，雖有騎 驛之例，而憑藉責把，亦不無其弊，自今以後，番次 往來及因公出使外，一切防塞，自監營定式施行，俾無冒犯之弊爲白齊。

一，本道防禦使只於赴任·遞來時，依例騎驛，而其外 私行則切勿給馬，以除立待之弊爲白齊。

一，勅行時各驛道掌，直路留站，馬不過一二匹是白 如乎，兵曹馬之到初站者，如或值其無馬有越站 之事，則徵貫之數極爲過多，此亦爲弊之一端，此 後段，所謂越站貫錢每十里無過一錢，或有科外 濫徵者，則自監營往復兵曹，嚴治痛禁爲白齊。

一，大小公行，無論中火·宿所，凡於邑站稍遠處，自驛 村先爲支供，受其乾價於本邑，而上下之際，專事 減削，所受不能當所費之半，徒爲往來之勞，故此 爲驛民呼冤之端，如廣州之德豐·奉安·慶安·楊州 之綠楊等諸驛，皆有此弊，不可不申飭，而至於綠 楊驛，則每令出站於樓院，此非驛村，則使不當之 疲殘驛卒，替當出站於數十里之地者，極涉無義，且爲大弊，此後則樓院支供，自本官從便舉行，更 勿侵責殘驛事，定式施行，俾無如前之弊爲白齊。

一，刑曹罪人發配之時，自本曹押送於雇馬廳，使之 交付前站，法例卽然，而自前本曹雇立二人，稱以 首徒·驛子長，待曹門自六驛備給雇價，而一年所 給合爲一百八十兩之多，雖未知創自何時，而既 爲殘驛貽弊之端，且非京外定制之意，自今以後，永爲革罷，罪人發配時，自本曹定下隸，直爲押付 於雇馬廳，入直察訪，照檢發送爲白齊。

一，外驛驛卒之自京司無得推捉，乃是法例，而近來 京各司，發差推捉不少爲難，各驛吏卒以是騷擾，京司下隸因此侵漁，事之可駭莫此爲甚，雖法司 猶不可如此，況各司乎，此後則無論某衙門，或有 驛吏卒推問之事，則移關監營，以爲查治之地，而 推捉一款，另加嚴禁爲白齊。

一，在前勅行時，自三南及東·北路上來別星，到本道 界，以忠清·江原兩道驛馬，仍把便行，自是法例是 白如乎，不可不申明舊典，此後依此遵行爲白齊。

一，本道五驛上·中等馬合爲二百一匹，而每當勅使 之時，數多應把無以排比，今雖不得不有所除減 者，而猶不無苟艱之慮，至於各驛卜馬，厥數頗多，而有名無實，其在衰益之政，宜有變通之道乙仍 于，就其中平邱十一匹·慶安六匹·延曙五匹·重林三 匹·桃源五匹，合三十四匹換立中等馬爲白去乎，今 此換立馬價及此後有頃時，改立添價，竝自監營 從便拮据，依例上下，使之一體使用，已爲筵稟 蒙允是白如乎，以此永久定式施行爲白齊。

一，在前勅行時，巡察使行裨校吏等帶去，雖有元定 之數，今番客使之行，奉承飭教，元額中減定其 數，而數外不得不隨行者，使之私持馬，此後勅行 若值馬匹苟艱之時，照此爲例無得，以驛馬依前 責立爲白齊。

<미변사등록 189책, 정조 23년 1799년 12월29일(음)>

경제/교통

輦路를 닦을 때 침범한 백성들의 논에 대해 給復하는 일 등에 관해 아뢰다

○ 1월 6일 대신과 비국당상을 인견하여 입시하였을 때에 영의정 심환지가 아뢰기를, “지난번 수원부 암행어사(水原府暗行御史) 신현(申絢)의 별단(別單)으로 인하여, 사근평(肆觀坪)에서 위로 노량(鰲梁)에 이르는 연로(輦路)를 닦을 때 민답(民畓)을 침범하여 들어간 곳은 값을 쳐서 주는 것의 편부(便否)를 도신(道臣)과 수신(守臣)에게 장문(狀聞)하게 한 후

에 품쳐하겠다고 복계(覆啓)하고 행회(行會)하였습니다. 방금 경기감사 서정수(徐鼎修)의 장계를 보니, 과천현감(果川縣監) 김강(金綱)과 시흥현령(始興縣令) 이황(李璜)의 첩정(牒呈)을 낱알이 들어 말하기를, ‘밭을 침범하여 길을 낼 때에 일을 마치고서 본 백성에게 되돌리고 응당 보수(步數)를 계산하여 급복(給復)해주는 일에도 역시 장애가 많습니다. 밭은 비록 예전대로 갈아 먹을 수 있겠으나, 논은 본래 낮고 우묵하게 들어가 물이 고여 있는 곳 이어서 지금 다시 개간하게 된다면 소비되는 공력이 그 본가(本價)를 넘어서거나 본가가 됩니다. 그러므로 밭의 주인은 도로 경작하기를 원하고 논인 주인은 값을 받기를 원하고 있으나, 도로에는 실제로 광협(廣狹)이 똑같지 못한 탄식이 있고 눈을 쓸어내는 데에도 계군(契軍)이 감당하는 노역이 없으니, 논밭을 물론하고 모두 출급하여 갈아 먹게 하는 것이 옳겠습니다.’ 하였고, 광주부유수(廣州府留守) 김사목(金思穆)의 장계에서는 본부 판관(判官) 김이유(金履裕)의 첩정을 낱알이 들어 말하기를, ‘길을 닦을 때 길 위의 보축(補築)을 견고하고 두텁게 하고, 길 아래의 굴해(掘垓:고랑을 판 곳)는 깊고 넓게 하였으나 깊고 넓은 것은 채워 넣고 견고하고 두터운 것은 깎아낼 때에 공력과 비용이 적지 않고 들어가는 역량(役糧)도 매번 원래의 토지 값을 넘어서게 됩니다. 침범하여 들어간 전답은 25부(負) 영(零)으로서, 지금 다시 개간하는 것을 그들이 하는 대로 맡겨 둔다면, 땅이 기름지고 힘이 있는 자는 도로 개간할 것이고 땅이 척박하고 힘이 없는 자는 개간하지 않을 것이며, 개간한 곳은 길이 좁아지고 개간하지 않은 곳은 길이 넓어질 것이므로 들쭉날쭉하고 고르지 않게 되어, 여러 사람의 눈에 거슬리게 될 터이니 이참에 값을 쳐주고 그 모양새를 온전하게 하는 것이 공사간(公私間)에 모두 편의한 방도라고 하겠습니다. 아울러 묘당에서 품쳐하기를 청합니다.’ 하였습니다. 어로(御路)의 광협(廣狹)은 본래 척도(尺度)가 있고 허다한 전답이 침범되어 들어간 것을 굳이 공력이 조금 든다고 해서 모두 묵혀버릴 수는 없습니다. 기백(畿伯)이 논한 바가 사리에 합당하니, 논밭을 물론하고 모두 출급하여 힘닿는 대로 경작하게 하고, **화성(華城)** 경내도 이에 의하여 시행하라고 다 같이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그리하라 하였다. (…)

今正月初六日大臣備局堂上引見入侍時，領議政沈所啓，頃因水原府暗行御史申絢別單，肆覲坪以上至于鷺梁輦路修治時，民畝犯入處折價以給便否，令道守臣狀聞後稟處之意，覆啓行會矣，即見京畿監司徐鼎修狀啓，則枚舉果川縣監金綱・始興縣令李潢牒呈，以爲犯田作路，事過還本民之應行計步給復，亦多掣礙，而旱田，雖可依舊耕食，水田，本是低陷渟水處，今若復墾則所費功力，或過其本價，或爲其本價，故田主則願其還起，畝主則願其受價，而道路實有廣狹不齊之歎，掃雪亦無契軍堪當之勞，無論田畝，一位出給，使之耕食爲宜云，廣州府留守金思穆狀啓，則枚舉本府判官金履裕牒呈，以爲治道時，路上之補築堅厚，路下之掘垓深闊，而深闊者填實，堅厚者剝削之際，功費不些，所入役糧，每過原土之價，而犯入田畝二十五負零，今若還墾，任其所爲，則土腴而力贍者還起，土薄而力綿者不墾，墾處路狹，不墾處路闊，參差不齊，有礙觀瞻，趁此給價，全其體勢，可謂公私兩便之道，竝請令廟堂稟處矣，御路廣狹，自有尺度，許多田畝之犯入者，不必以功力之稍費，竝作陳棄，畿伯所論，允合事宜，無論田畝，一位出給，使之隨力耕墾，**華城**境內，亦爲依此施行事，一體分付何如，上曰，依爲之。

又所啓，此全羅監司金達淳狀啓也，枚舉高敞縣監吳亨喆牒呈，以爲本縣量田，在於二去己亥，今已年久，經界紊錯，結役不均，一境民情，咸願改量，先從小邑而經紀，不害爲可試之道，高敞縣改量，趁今舉行，如有他邑鱗次請報處，一邊馳啓，一邊設行事，竝請令廟堂稟旨分付矣，諸道田政之紊亂，湖南爲最，改量之政，實是不可已之事，而事役既巨，利害難審，先從小邑而試之，以觀來效，如有繼此他邑之請量者，詳察事勢，使之從便許施，亦足爲正經界之政，依所

請許施何如，上曰，依爲之.(…)

<비변사등록 192책, 순조 1년 1801년 01월 07일(음)>

경제/교통

水原府留守 趙鎮寬이 신설된 迎華驛의 弊端을 없애는 문제에 대해 논의하다

○ 2월 19일 수원유수와 수원판관이 입시하였을 때에 수원부유수 조진관(趙鎭寬)이 아뢰기를, “영화역(迎華驛)은 새로이 설치한 것이므로 선조(先朝)에서 깊이 진념하시어 본 역참의 사역(使役) 외에 경역(京役)은 사용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또 특별히 기내(畿內) 다섯 역참의 혹 치우친 고통을 마침내 재감(裁減)하라고 명하였는데, 그 각 항목의 사역(事役)은 본 역참의 수고를 더는 것일 뿐만 아니라 다른 역에 짐고를 옮기는 것을 면하게 하려는 것으로, 절목을 만들어 시행한 지 여러 해가 되었습니다. 계해년(癸亥年:순조3, 1803)에 칙사를 맞을 때에 기영(畿營:경기감영)에서 역마가 부족하여 본 역의 말을 내어 쓰기를 청하여 윤험을 받았는데, 이는 일시 급박한 일에 부응하여 나온 것이지만, 이후 다른 역과 함께 모두 경역(京役)에 얹혀서 지금 당해 역참은 조잔한 폐단으로 모양을 이루지 못합니다. 대체로 칙사를 영접할 때에 사세가 급박하고 마역(馬役)도 매우 많아 본 역참이 비록 조잔하더라도 감히 사양하지 못하지만, 그 외의 경역은 일체 기미년(己未年:정조23, 1799)의 절목에 따라 시행하면, 영화 한 역은 거의 폐단을 없앨 가망이 있을 것이기에 감히 앙달합니다.” 하니, 임금이 그리하라 하였다.

또 아뢰기를, “안의현(安義縣)에 있는 장수사(長水寺)는 바로 신의 부(府)에 속해 있는데, 봉상시(奉常寺)에서 매년 수세하여 공용에 보충하는 곳이라 그 사체(事體)가 가볍지 않습니다. 본 사찰은 수백 칸으로 이루어진 천년고찰로서 불행히도 작년 겨울에 참혹한 화재를 입었는데, 화상을 당한 승도들이 개건(改建)할 수 없으므로 마땅히 신의 부에서 돌보아야 할 형편이나 달리 구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전에 조포사(造泡寺)나 혹 명산고찰의 수리 때에 공명첩을 발급하도록 허락한 일이 많이 있었으니, 지금 역시 이 예에 따라 공명첩 2백 장을 묘당에서 본도에 하송하여 건축의 비용으로 삼도록 하면 지나치지 않을 듯하기에 감히 앙달합니다.” 하니, 임금이 그리하라 하였다.

今二月十九日水原留守·判官入侍時，水原府留守趙鎭寬所啓，迎華驛自是新設，故先朝時深加軫念，俾於本郵使役外，京役則無得使用，又特念畿內五郵之或至偏苦，遂命裁減，其各項事役，非徒息肩於本郵，亦免移疾於他驛，仍成節目，行之有年矣，癸亥迎勅時，自畿營以驛馬之不足，請出用本驛馬而蒙允，此似出於一時副急，而伊後一竝與他郵，竝編京役，見今該郵凋弊，不成貌樣，大抵迎勅時，則事勢急遽，馬役數多，本郵雖殘，所不敢辭，而其外京役，則一切依己未節目施行，則迎華一驛，庶有蘇弊之望，敢此仰達矣，上曰，依爲之。

又所啓，安義縣之長水寺，卽屬於臣府之分，奉常寺每年收稅，以補公用，其事面不輕，而本刹，以屢百間千年古寺，不幸於昨冬，慘罹回祿，焦爛縋徒，無以改建，勢當自臣府爲之顧念，而他無拯救之策，在前造泡寺，或名山古刹之修葺時，多有空名帖許給之事，今亦依此例，以空名帖二百張，令廟堂下送本道，以爲營造之資，則恐非爲過，茲敢仰達矣，上曰，依爲之。

<비변사등록 197책, 순조 6년 1806년 02월 24일(음)>

경제/교통

弊端을 조목조목 열거한 忠淸左道暗行御史 金益容의 別單과 그에 대한 대책을 보고하다

비변사의 계사에, “충청좌도 암행어사 김익용(金益容)의 별단을 보니, (…)

라(耽羅)의 공마(貢馬)를 호송(護送)할 때 평택(平澤)에서 하던 것을 진위(振威)에서 교부하는 것으로 법식을 삼는 일입니다. 이 일은 그대로 두느냐 혁파하느냐의 문제로 논의한 것이 어제오늘이 아닙니다. 사리(事理)로 말하자면 평택에서는 진위와 화성(華城) 두 지역을 넘어야 하는데 두 지역에는 응접(應接)하는 곳이 없다고 하니 참으로 그 까닭을 모르겠습니다. 사복시(司僕寺)에서 관문으로 경기감사에게 물은 다음 공평하게 변통할 방법을 모색하도록 하소서. (….) 하니, 윤택한다고 답하였다.

司啓曰，卽見忠淸左道暗行御史金益容別單，則 (….) 其一，酖津貢馬護送時，自平澤交付振威，著爲令式事也，此事仍革間可否之論，匪今斯今，而以事理言之，平澤之越振威·華城兩境，而兩境之無所應接，殊未曉其所以然矣，令司僕關問畿伯後，圖所變通平均之道，(….) 答曰，允。

<비변사등록 245책, 철종 9년 1858년 01월04일(음)>

경제/교통

藥房都提調 金左根이 牙山倉의 一石主人 名色을 革罷하는 문제 등에 대해 논의하다

○ 4월 5일 약방의 입진에 입시할 때 도제조 김좌근(金左根)이 아뢰기를 (….) 또 아뢰기를 “호서(湖西)의 아산(牙山)과 평택(平澤)은 경기의 수원(水原)과 경계를 접하고 있는데 작은 항구 하나가 경계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물길이 바뀌어 이쪽에서 흙이 떨어져나가 저쪽에 새로 땅이 생기고 하여 아산과 평택 두 고을의 옛 강토가 지금은 수원에 속하게 된 것이 밭걸음으로 재어 헤아릴 수가 있는 정도가 아닙니다. 양안(量案)이 원래 있어 명백하게 근거를 댈 수 있는데도 우(虞) 나라와 예(芮) 나라와 같이 경계를 다투는 지가 오래되었고, 게다가 커다란 부(府)와 작은 현(縣)의 강약(強弱)이 현격하게 다르기 때문에 나날이 위축될 우려를 면치 못하고 있으나 나라의 전결(田結)은 지극히 중대하기 때문에 하천에서 흙이 떨어져나간 것을 재탈(災頤)로 처리하지 못하고 억지로 불모지에서 세금을 내게 하여 마침내 뼈에 사무치는 폐막이 되었습니다. 경계를 바르게 정하고 세금을 균등하게 매기는 의의에 있어 사실을 밝히고 비위(非違)를 규찰하는 거조가 있어야 마땅합니다. 당해 도신 및 수신(守臣:유수)에게 분부하여 사관(査官)을 따로 정하고, 편비(編裨)를 보내 두 고을의 수령이 입회한 가운데 일체 전안(田案)의 척량(尺量)에 준거하고 의거할 만한 문적을 상호 참작하여 물길로 제한하지 말고 단지 옛 경계에 따라 구별을 한 뒤에 계문하여 품처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그리하라 하였다. (….)

今四月初五日藥房入診入侍時，都提調金所啓，(….) 又所啓，湖西之牙山·平澤，與京畿水原接壤，而有一小港爲界矣，挽近水道變遷，此邊浦落，彼邊泥生，牙澤兩邑舊疆之今屬水原者，不可但以步武計也，量案自在，班班可據，而虞芮之爭，厥惟久矣，特以雄府小縣，強弱相懸，未免有日蹙之憂，而國結至重，川浦未頤，強責不毛之稅，遂成切骨之瘼，其在正界均賦之義，合有核實糾違之舉，分付該道臣及守臣，別定査官，發遣編裨，眼同兩邑守宰，一準田案尺量，參互可據文蹟，勿以水道爲限，只從舊界區別，啓聞稟處，上曰，依爲之.(….)

<비변사등록 246책, 철종 10년 1859년 04월 05일(음)>

(4) 농수산업

경제/농수산업

領議政 許積 등이 京畿監司가 狀啓에서 蒙利라고만 쓴 것에 대해 조사하자고 청하다

지난 11월 23일 대신·비국당상을 인견하여 입시할 때에 영의정 허적(許積)이 아뢰기를, "경기감사의 장계에 '풍덕(豐德) 땅에 호조 장부에 들어 있는 승천부제언(昇天府堤堰)은 곧 옛 여지승람(輿地勝覽)에 실려 있는 2중 제언으로서 독 안은 30여 섬지기에 지나지 않으나 독 아래 몽리(蒙利) 구역은 넓은 들로서 거의 수천 섬지기에 달합니다. 지난 광해(光海) 말년에 이현궁(梨峴宮)에서 절수하였고, 계해 반정(反正)초기에 폐지하고 도로 지급하여 몽리(蒙利)하였습니다. 그 후 무인년에는 또 명례궁(明禮宮)에서 절수하였고, 갑오년에는 숙휘공주방(淑徽公主房)에서 절수하였으며 병신년에는 또 명례궁에서 절수하였고 임인년에는 숭선군방(崇善君房)에서 절수하였는데 모두 본도의 장계로 인하여 호조에서 복계하여 도로 지급한 것입니다. 지금 명례궁에서 어의구제(於義舊堤)라고 잘못 말하고 다시 절수하였으니, 백성들의 호소를 빚게 되었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반정 이후, 여러 차례 도로 지급해야 하나 다만 과연 물을 가두었다가 몽리하는 곳이라면 각도의 제언이 어찌 한정이 있겠습니까마는 궁가에서 앞뒤로 절수한 것이 이 제언에만 있어야 하는 일입니까? 이에는 곡절이 있는 듯합니다. 수원(水原)이 본래 부족하여 물을 막을 수 없는 곳이라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장계에 막연히 몽리라 하고 물을 막은 여부는 말하지 않았으니 본도로 하여금 별도로 차사원을 보내어 자세히 사정을 살피게 하고 보고하여 여쭙어 처리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하니, 상이 아뢴대로 하라고 하였다.

去十一月二十三日大臣·備局堂上引見入侍時，領議政許所啓，京畿監司狀啓，豐德地戶曹案付昇天府堤堰，卽古輿地勝覽所載重防堤堰，而堤內則不過三十餘石落種之地，堤下蒙利處，則平原曠野，幾至數千餘石落種之地，往在光海末年，爲梨峴宮之折受，癸亥反正之初，革罷還給蒙利矣，厥後戊寅年，又爲明禮宮之折受，甲午年，爲淑徽公主房之折受，丙申年，又爲明禮宮之折受，壬寅年，爲崇善君房之折受，而皆因本道狀啓，自戶曹覆啓還給者也，今者明禮宮，誤稱於義舊堤，更爲折受，以致民人等之呼冤云，反正以後，累次還給之堤堰，到今更爲折受，事甚不當，所當依前還給，而但果是貯水蒙利之處，則各道之堤堰，何限而宮家之前後折受，必在於此堰乎，其間似有曲折，無乃水根，本來不足，不能貯水之處耶，狀啓中泛稱蒙利，而不言貯水與否，使本道別定差使員詳察形勢，啓聞稟處何如，上曰，依爲之。

<비변사등록 34책, 숙종 4년 1678년 12월08일(음)>

경제/농수산업

수원 등지의 경지를 활용해 기민 구제를 논하다.

(...) 이조판서 이유가 아뢰기를, "봄에 이인엽(李寅燁)이 남하한 유민들을 구제할 것을 진달하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신이 병조에 있을 때 각처에서 부린 기민 5~6백 명이 구제되어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놓아 보낸 뒤에는 의지할 일이 없게 되었습니다. 또 지금 영서와 해서의 유민들이 명년 봄이면 반드시 도성에 모이는 자가 많을 것이니 미리 대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약 넓고 노는 땅을 얻어 머물며 농사짓도록 한다면 실효가 있을 것 같습니다. 들으니 호서와 수원(水原) 등지에 경작할 만한 목장이 있다고 하므로 현재 변통하여 처리하려고 하나 미처 하지 못하였습니다. 유리하는 기민에 있어서는 본 고을에서

숫자를 알아 문서를 만들게 하고, 삼남에 유리하는 자들도 각기 고을에서 숫자를 알아 문서로 만들어 진휼청에 보고케 한 뒤 편의에 따라 처치하는 것이 의당하겠습니다. 먼저 이로써 분부하는 것이 옳을 듯합니다."

하였으며, 유득일은 아뢰기를, "건장한 기민들은 식량을 주어 일을 시키면 그들의 근력이 펴이게 되어 오히려 죽는 근심이 없게 될 것이니 참으로 알맞은 일입니다. 또한 외방은 도성과는 다르니 비록 한 곳에 모였더라도 본토로 돌아갈 만한 자들은 각 고을로 하여금 양식을 주어 돌려 보내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본토로 돌아갈 생각이 없는 자는 그들이 있는 곳에 따라 토지가 있고 부유한 자들로 하여금 먹이고 농사짓도록 하는 것도 옳을 것입니다. 이렇게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하니, 임금이 그렇게 하라고 하였다. (…)

(…) 吏曹判書李滉曰, 春, 李寅燁以南下流民賑濟事, 陳達行關矣, 臣於待罪兵曹時, 各處所役飢民五六百名, 雖得救活蘇健, 而及其末稍放送之後, 無所依賴之道, 且今嶺西海西流移之民, 明春則必多紛集於都, 而不可不預爲之所, 若得閑曠之地, 留着農作則似有實效, 聞湖西及水原等處, 有牧場可耕者, 方欲變通處之, 而姑未及焉, 至於飢民之離散者, 自其本邑, 知數成冊, 其流三南者, 亦自各其邑, 知數成冊, 報賑廳後, 從便處置宜當, 爲先以此分付似可矣, 得一曰, 飢民之壯實者, 給糧使役, 則舒其筋力, 俾無顛斃之患, 誠爲得宜, 而外方則異於都下, 雖聚一處, 可還本土者, 則令各邑, 給糧還送, 無意還土者, 則隨其所在, 使有田土富實之民, 饋養耕作亦可矣, 以此分付何如, 上曰, 依爲之又所啓 (…)

<비변사등록 53책, 숙종 29년 1703년 11월22일(음)>

경제/농수산업

松都 등에 春耕을 기한으로 소의 도살을 금지하도록 할 것을 청하다

비변사의 달사(達辭)에, “경기감사 이철보(李喆輔)가 상서하여 송도(松都)·강도(江都) 및 광주(廣州)·수원(水原)에서 농우 도살을 정지하자고 간청하였는데, 비답하기를 그대로 시행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양도(兩都:송도·강도)와 양읍(兩邑:광주·수원)의 도사(屠肆:도살장)는 모두 봄갈이를 할 때까지 잠시 정지하여 폐기하고 사적으로 도살하는 것을 각별히 엄금하도록 일체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그리하라 답하였다.

司達辭, 京畿監司李喆輔上書, 請停松都·江都·及廣州·水原屠牛, 而批答有依施之令矣, 兩都兩邑屠肆, 並限春耕, 姑爲停罷, 私屠, 各別嚴禁之意, 一體分付, 何如, 答曰, 依.

<비변사등록 120책, 영조 25년 1749년 12월 17일(음)>

경제/농수산업

領議政 洪鳳漢 등이 京畿道 각 邑의 農形 및 그 조치에 대해 논의하다

이번 10월 19일 대신과 비국당상을 인견하여 입시하였을 때에 영의정 홍봉한(洪鳳漢)이 아뢰기를, “이는 경기감사 심성진(沈星鎭)의 분등(分等) 장계입니다. 양천(陽川), 양주 등 6개 읍을 우심에 두고, 가평(加平) 등 17개 읍을 지차에 두었으며, 양주(楊州) 등 14개 읍을 초실에 두고, 이어 구환자(舊還上)·구군향(舊軍餉)·구증미(舊拯米)·노비신공(奴婢身貢)·구미수(舊未收)는 우심·지차·초실을 논하지 말고 내년 가을까지 정퇴하고, 패선(敗船)의 증곡(拯穀)은 신구를 논하지 말고 내년 가을에 가서 징봉(徵捧)하며, 선인(船人)이 소비하여 원적관(原籍官)에 옮겨 보낸 것은 모두 정퇴하고, 남한(南漢)·북한(北漢)·평창(平倉)·강도(江都)·대흥(大興)의 군향(軍餉)은 우심·지차읍을 논하지 말고 본읍에 수봉하여 유치(留置)했다가 내년 가을에 가서 실어다 바치며, 작년에 분수(分數)하여 정퇴한 환

자는 우심과 지차읍은 특별히 정퇴하게 하고, 추노(推奴)와 징채(徵債)는 내년 가을까지 정퇴할 것을 아울러 묘당에서 품처하기를 청하였습니다. 분등은 장청에 의해 시행하고, 각종 구포(舊逋)는 우심읍에서 3분의 2를 정퇴하고, 지차읍은 절반을 정퇴하고, 초실읍은 3분의 1을 정퇴하며, 패선의 증곡은 우심읍은 전량을 정퇴하고, 지차읍은 절반을 정퇴하고, 선인이 소비하여 원적관에 옮겨 보낸 것은 장청에 의해 시행해야 하겠습니까. 각처의 군향은 지금처럼 조금 풍년이 든 해에 어찌 그 수봉, 유지 여부를 논의할 수 있습니까? 이는 모두 본처(本處)로 실어다 바쳐 군향을 실하게 하고, 작년에 정퇴한 환자로서, 남양(南陽)·수원(水原)·양천(陽川) 3개 읍은 4분의 1을 정봉하고 그 나머지는 아울러 수에 맞추어 수봉하며, 추노와 징채는 내년 가을까지 특별히 방색(防塞)하여 일분(一分)이나마 민폐를 덜어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그리하라 하였다.

今十月十九日, 大臣·備局堂上引見入侍時, 領議政洪所啓, 此京畿監司沈星鎭分等狀 啓也, 陽川等六邑, 置之尤甚, 加平等十七邑, 置之之次, 楊州等十四邑, 置之稍實, 仍以爲舊還上·舊軍餉·舊拯米·奴婢身貢·舊未收, 母論尤甚·之次·稍實, 限明秋停退, 敗船拯穀, 母論新舊, 待明秋徵捧, 船人無面移送原籍官者, 一併停退, 南北漢平倉·江都·大興軍餉, 母論尤甚·之次邑, 捧留本邑, 待明秋輸納, 昨年分數停退還上, 尤甚·之次邑, 特令停退, 推奴徵債, 限明秋停退事, 竝請令廟堂稟處矣, 分等, 依狀請施行, 各樣舊逋, 尤甚邑三分二停退, 之次邑折半停退, 稍實邑三分一停捧, 敗船拯穀, 尤甚邑全數停退, 之次邑折半停退, 船人無面移送原籍官事, 依狀請施行, 各處軍餉, 如今稍豐之年, 何可議其捧留與否耶, 此則, 一併輸納本處, 以實軍餉, 昨年停退之還, 南陽·水原·陽川三邑, 則四分一停捧, 其餘竝令準捧, 推奴徵債, 限明秋特爲防塞, 以除一分民弊何如, 上曰, 依爲之.

<비변사등록 144책, 영조 39년 1763년 10월 20일(음)>

경제/농수산업

京畿監司 金致仁 등이 振威에서의 改量을 가을에 거행할 것을 청하다

또 아뢰기를, “수원(水原)·장단(長湍)·진위(振威)는 모두 다시 측량하는 읍으로서 수원과 장단의 측량은 거의 끝나게 되었으나 진위는 전 현령의 전최(殿最)에서 하(下)를 받음으로 하여 시작하였다가 중단이 되었습니다. 새 현령이 막 내려갔으나 바로 농사철을 맞아 우선 그대로 정지하게 하였다가 가을에 가서 거행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그리하라 하였다.

又所啓, 水原·長湍·振威, 皆是改量之邑, 而水原·長湍量役, 幾至垂畢, 振威則因前縣令之殿最點下, 既始而中撤矣, 新縣令雖纔下去, 正值農節, 姑令仍停, 待秋舉行何如, 上曰, 依爲之.

<비변사등록 136책, 영조 35년 1759년 04월 01일(음)>

경제/농수산업

左議政 申晩 등이 水原府使 金孝大를 仍任하여 改量의 일을 끝내자고 하다

또 아뢰기를, “옛것제 돈녕부 보첩(譜牒)의 일로 수원부사 김효대(金孝大)를 도정(都正)으로 옮겨 제수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면 수원을 다시 측량하는 일을 아직 마치지 못하였는데 지금 손에 선 사람에게 맡겨서는 옳지 않고, 또 그 임기는 7월이어서 미리 임기를 통보함은 『속전(續典)』에 위반됩니다. 신의 생각에는 임기 전에 교체하지 말고 일을 마치기를 기다려 내직(內職)으로 옮기게 하는 것이 옳겠으므로 감히 아뢰입니다.”

하니, 형조참판 김치인(金致仁)이 말하기를, “7월 전에 역시 마치기 어렵다고 합니다.” 하니, 우의정 이후가 말하기를, “보첩의 일은 시일이 급한 것은 없으나 수원을 다시 측량하는 일은 민사에 관계되는바 가볍지 않습니다. 손에 선 사람에게 잊게 하여 혹 잘 수습하지 못한다면 후일 어찌 조가의 걱정하는 바가 되지 않겠습니까? 김효대를 우선 유임시켜 일을 마친 뒤에 다시 내직에 임명하게 해도 좋을 듯싶습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김효대를 수원부사에 유임시키되 일을 마친 뒤에 다시 임명하라고 분부하라.” 하였다.

又所啓, 日昨以敦府譜牒事, 有水原府使金孝大, 移除都正之舉矣, 第欲水原改量事, 姑未訖役, 今不可付諸生手, 且其瓜期, 在於七月云, 先期報瓜, 有違續典, 臣意則瓜限前, 姑令勿遞, 待其竣事, 內移爲宜, 故敢達, 刑曹參判金致仁曰, 七月前亦難了當云矣, 右議政李曰, 譜牒事既無時日之急, 而水原改量, 則民事所關不輕, 若使生手繼之, 而或不能善爲收拾, 則日後豈不爲朝家憂念之端乎, 金孝大姑令仍任竣事後, 使之更擬內職似好矣, 上曰, 金孝大水原府使仍任竣事後, 更擬事分付.

<비변사등록 136책, 영조 35년 1759년 06월 14일(음)>

경제/농수산업

備堂 元仁孫이 水原에 가서 量田의 전후가 다른 곳을 府使와 함께 看審한 후 아뢰다

이번 3월 5일 호조판서와 오부(五部)의 관원, 비국 당상이 입시하였을 때에 전교하기를, “맹자(孟子)가 말하기를 ‘인정(仁政)은 반드시 경계(經界)에서부터 비롯한다.’ 하였다. 몇 해를 문란했던 전정(田政)이니만큼 양전(量田)할 때에 어찌 남고 모자람이 없겠는가마는 지금 들으니 다시 사정(查正)한다고 한다. 넓히고 좁히고 하는 사이에 과연 민폐가 없을까? 막중한 전정에 마음을 어떻게 늦출 수 있는가? 특별히 비국 당상 원인손(元仁孫)을 시켜 즉시 수원(水原)으로 달려가서 양전 전과 양전 후가 다른 한두 곳을 부사와 함께 살펴본 뒤에 올라와서 아뢰게 하라.” 하였다.

今三月初五日, 戶判·五部官員·備堂入侍時, 傳曰, 孟子曰, 仁政必有(自)經界始, 幾年紊亂田政, 量田之際, 何無贏縮, 今聞更爲查整云, 其闊其狹, 果無民弊, 莫重田政, 心奚弛乎, 特令備堂元仁孫, 既爲馳往水原, 前後異者一二處, 與府使看審後來奏.

<비변사등록 138책, 영조 36년 1760년 03월 05일(음)>

경제/농수산업

水原의 量田과 관련하여 查正만 하고 升等은 하지 말라고 전교하다

○ 3월 12일 친국이 파한 뒤에 적간한 비국 당상이 입시하였을 때에 전교하기를, “위에서 떨어져 아래에 더해줌[損上益下]이 익(益: 『주역』 패명)이오, 아래에서 떨어져 위에 보태줌[損下益上]이 손(損: 위와 같음)이니, 이는 정히 유약(有若: 공자 제자)이 이른바 ‘백성이 족하면 임금이 누구와 함께 부족할 건가[百姓足 君誰與不足]’ 와 같은 말이다. 당초 수원(水原)의 양전(量田)은 오로지 백지(白地: 세원(稅源)이 없음을 뜻함)에서 세를 거둔 데서 연유한 것이니 이는 익하(益下)의 정사(政事)이다. 양전을 끝낸 도신과 부사가 서로 겨루어 지금까지 지체하고 있으나 나의 생각은 ‘경비가 비록 줄더라도 백성을 위한 정사에서 무엇하러 서로 겨루느냐?’ 이것이다. 처음의 양안(量案)을 받으라고 하려다가 대신의 소청으로 새 부사로 하여금 추생(抽姓: 제비를 뽑음)하여 다시 살펴보게 한 후에 양안을 마감하게 하였는데 뜻은 비록 바름에 있었으나 귀추(歸趨)를 보니 이는 익상(益上)이다. 들으니 2백여 결을 더 얻었다고 하니 과연 감축된 것을 다시 실은 것이라 하더라도 나의 마음은 측연하

다. 만일 앞에선 경(輕)했던 것을 지나치게 사핵하여 더 얻지 않아야 할 것은 더 얻었다면 이는 왕정(王政)에서 차마 하지 못할 일이기에 특별히 비국 당상을 보내서 살펴보게 하였으니 이는 혹 줄어든 것을 살펴라고 한 것이 아니라 혹 지나치게 사득(查得)했을까 해서이다. 지금 비국 당상이 아뢴 바를 들으니 추생하여 살펴본 곳에는 착오(差誤)가 없었다고 한다. 이 밖에 살펴보지 않은 곳도 모두 이러하다면 아마 나의 백성을 저버리지 않음이 되겠으나 이로 인하여 알리노니 이번에 다시 전결(田結)을 조사한 것은 나의 당초의 뜻이 아니었을 뿐 아니라 이는 말세(末世)의 부득이한 정사였다. 비록 그렇더라도 이는 이제는 거의 이정(釐正)이 되었다고 하나 이 밖에 또 등급을 올린 일이 있다고 한다. 이는 당초의 영(令)이 아니다. 아, 전결을 사핵하는 일은 오직 혹시라도 민폐가 있을까 두려운 것인데 하물며 영외(令外)에 등급을 올림에 있어서라. 이와 같다면 착오가 있는 곳을 사정(查正)한 것뿐만이 아니라 겹쳐서 등급을 올리게 한 것이 되니 이 어찌 나의 뜻이겠느냐? 이 어찌 나의 뜻이겠느냐? 비국 당상을 보낸 일이 없었더라면 어떻게 이를 알았으랴. 기왕 들은 뒤에 하교를 하지 않는다면 아, 백성들이 어떻게 나의 뜻을 알겠느냐? 다만 사정만 하고 등급은 올리지 말라고 마감하기 전에 즉시 분부하여 전 부민(府民)으로 하여금 조금이라도 나의 뜻을 알게 하고 즉시 마무리를 짓게 하라.” 하였다.

今三月十二日親鞫罷後，摘奸備堂入侍時，傳曰，益下損上，益，損下益上，損，此正有若所謂，百姓足，君誰與不足者也，當初水原量田，專由於白地徵稅而然，蓋益下之政，畢量之道臣與府使相持，尚今遲滯，予意則經費雖縮，爲民之政，其何相持乎，欲令捧初量案，而因大臣之請，令新府使抽牒更審後，磨勘量案，意雖在於矯正，觀其使則益上也，聞加得二百餘結云，果縮者復錄，予心則惻也，若或前之輕者，過爲綜核，不當加而加，則此王政之所不忍，故特遣備堂看審，此非察其或縮也，恐或過爲查得也，今聞備堂所奏，抽牒看審之處，其無差誤云，此外不審之處，其皆若此，庶不負吾民，而因此以聞，今者更查結，非徒予之初意，末世不獲已之政也，雖然，此則今幾釐正云，而此外又有升等之事云，此非初令矣，噫，查結之事，惟恐或有民弊，況令外升等乎，若此非特差誤處查正，又重之以升等此豈予意，此豈予意，若無遣備堂之事，何以知此，既聞之後，若不下教，吁嗟元元，亦何以知予意，只爲查正，勿爲升等事，磨勘之前，卽爲分付，使一府之民，少知予意焉，其令卽爲了當．

<비변사등록 138책, 영조 36년 1760년 03월 12일(음)>

경제/농수산업

領議政 金尙魯 등이 水原府의 금년 結錢을 參量하여 區劃하는 문제에 대해 논의하다

이번 6월 3일 대신과 비국 당상을 인견하여 입시하였을 때에 영의정 김상로(金尙魯)가 아뢰기를, “이는 경기감사 윤급(尹汲)의 장계입니다. 수원부사(水原府使) 윤동승(尹東昇)의 첩보(牒報)를 날날이 들어 말하기를 ‘수원부의 양전(量田)은 지금 이정(釐正)하고 있으나 허다한 감사(監寫:감관(監官)과 사자원(寫字員)의 뜻인 듯)의 식량과 양안(量案)을 수정할 때의 물력을 본부(本府)에서 단독으로 책응하게 하는 것은 사세가 참으로 어려우니 근례(近例)대로 본부의 당년 결전(結錢)을 참작해서 획급하는 일을 청컨대 묘당으로 하여금 품처하게 하소서.’ 하였습니다. 이번의 해부(該府)의 양정(量政)은 이름은 비록 이정(釐正)이지만 실제로는 개량(改量)과 다름이 없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허다한 물력을 해부의 형세로는 관출(辦出)할 길이 없을 터이니 결국은 백성한테서 책출(責出)하게 될 것입니다. 조정의 소민(小民)은 진념하는 도리에서도 변통이 없을 수 없으니 균역청으로 하여금 근례대로 해부의 결전을 적당히 획급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균역청 당

상이 지금 입시해 있으니 진달하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호조판서 홍봉한(洪鳳漢)이 말하기를, “작년에 수원에서 개량할 때에 이미 결전을 주었고, 장단(長湍)도 이 예를 원용(援用)하였으니 이 뒤로 개량하는 고을에서는 냉큼 또 이 예를 원인(援引)할 것입니다. 이번에 수원에서 답험(踏驗)할 때의 물력은 달리는 나을 곳이 없으므로 결전을 원례(援例)하여 얻으려 한 것은 이상할 일이 아니고 조정에서도 전혀 방색하기는 어렵겠습니다. 그러나 이는 온 고을을 들어 개량하는 것과는 다르니 본부에서 낸 결전 1천 2백 냥만 획급하는 것이 마땅할 듯합니다.” 하니, 임금의 그리하라 하였다.

今六月初三日，大臣·備局堂上引見入侍時，領議政金所啓，此京畿監司尹汲狀本也，枚舉 **水原府使**尹東昇牒報，以爲本府量田，今方釐正，而 許多監寫等糧資及正案時物力，獨責本府，其勢誠難，依近例，本府當年結錢，參量區劃事，請令廟堂 稟處矣，今番該邑量政，名雖釐正，實則與改量同，所入許多物力，以該邑形勢，既無辦出之道，則其將責出於民矣，在朝家軫念小民之道，不可無變通，令均廳，依近例，以該邑結錢，量宜劃給何如，上曰，均堂方入侍，陳達可也，戶曹判書洪鳳漢曰，昨年水原改量時，既給結錢，長湍亦用此規，此後改量邑，便將引例，今番**水原**踏驗時，物力無他出處，結錢之援例請得，不是異事，朝家亦難全塞，此與舉一邑改量有異，本府所納結錢一千二百兩劃給，似爲便當矣，上曰，依爲之。

<비변사등록 138책, 영조 36년 1760년 06월 04일(음)>

경제/농수산업

戶曹判書 金相福 등이 振威에서 改量하는 문제를 논의하다

○ 같은 날 입시하였을 때에 호조판서 김상복(金相福)이 아뢰기를, “이제 말이 나왔으므로 진달하겠습니다. 근년 **수원(水原)**을 다시 측량할 때 진위(振威)에도 측량하라는 명이 계셨으나 연이은 흉년으로 거행하지 못하였는데 측량하라는 명이 계심으로 하여 낮게 되었고 진전(陳田)의 조사와 아울러 하지 못했습니다. 금년의 농사가 조금 낮게 되었고 수령이 부지런하니 이때 측량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하니, 임금의 말하기를, “일체 진전을 조사하는 것인가?” 하였다.

영의정 홍봉한이 말하기를, “진전을 조사하는 정사를 고을마다 할 수는 없습니다. 진위는 측량하기로 정할했고, 또 측량할 때에는 으레 당년의 결전(結錢)을 지급하므로 크게 백성을 소요하게 할 일은 없을 듯합니다. 진의 성명(成命)에 의하여 즉시 측량하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니, 임금의 그리하라 하였다.

同日入侍時，戶曹判書金相福所啓，今因言 端陳達矣，頃年**水原**改量時，振威亦有改量之命，而因連凶，不得舉行，而以其改量有命之故，竝與查陳，而不得爲之矣，今年年事稍登，守令且勤幹，趁此量改似好矣，上曰，當一體查陳耶，領議政洪 曰，查陳之政，不可邑邑爲之，振威既有改量之定奪，且改量之時，例給當年結錢，似無大段擾民之端，依前成命，使之趁即改量好矣，上曰，依爲之。

<비변사등록 140책, 영조 37년 1761년 10월 22일(음)>

경제/농수산업

京畿監司 洪啓禧 등이 富平에서 改量할 때 物力을 劃給하는 문제에 대해 논의하다

또 아뢰기를, “지난 겨울 입시하였을 때에 진위현(振威縣)을 개량하라는 명이 계셨고, 또 다른 고을 중에 개량할 수 있는 고을이 있으면 도신이 장문하여 진청(陳請)하라고 하교하셨습니다. 신이 여러 수령과 상의하여 겨우 부평(富平) 한 고을을 얻었습니다.” 하니, 임금의

말하기를, “부사는 누구인가?” 하였다.

홍계희가 말하기를, “안상楫(安商楫)인데 부임하는 곳마다 잘 처리했습니다. 양전(量田)할 때의 물력을 지금 백성으로부터 거둘 수 없어 수원(水原) 개량 때의 예에 의해 본 읍 결전(結錢)에서 획급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태반이 부족할 염려가 있어 다시 더 상량하여 수를 정해 장문하여 청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임금의 그리하라 하였다.

又所啓, 前冬入侍時, 有振威縣改量之命, 又以他邑中如有可以改量處, 則道臣狀聞陳請 爲教, 臣與諸守令相議, 僅得富平一邑矣, 上曰, 府 使爲誰, 啓禮曰, 安商楫, 而到處善治矣, 量田時物力, 今不可斂民, 依水原改量時例, 劃給本邑結錢, 而以 此有太半不足之慮, 更加商量, 定數狀聞以請, 何 如, 上曰, 依爲之.

<비변사등록 141책, 영조 38년 1762년 02월 14일(음)>

경제/농수산업

御史 洪樂純 등이 振威 田地의 等級을 陞級하는 문제에 대해 논의하다

이번 5월 20일 대신과 비변사 유사당상·경기감사·어사·전 수원부사 윤동승(尹東昇)·비변사 낭관이 함께 입시하였을 때에 임금이 말하기를, “수원(水原)의 등급을 올린 것과 이번 진위(振威)의 등급을 올린 것은 그 공심(公心)은 같다.” 하였다.

어사 홍낙순(洪樂純)이 말하기를, “가대(家垓)는 으레 등급을 올립니다. 그러나 이번에 미처 등급을 올리지 못한 곳이 있으므로 신이 그 토품(土品)의 비옥함에 따라 농부의 공론을 취하여 등급을 올린 곳이 약간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 그들의 공론에 따라 하였기 때문에 원성은 없을 듯합니다. 양정(量政: 농지를 측량하는 사무)은 최득대(崔得大)가 주관하여 매우 정밀하게 심사하였습니다. 지금 거의 마쳤으나 공교롭게 최득대가 호조의 일로 인하여 상경하였으므로 본현(本縣)의 감서(監書) 무리가 역사를 중단하고 그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최득대를 다시 보내어 이정(釐正)을 마감하고 정안(正案)을 만들게 하면 좋겠습니다.”

하니, 영의정 홍봉한(洪鳳漢)이 말하기를, “당초 수원의 등급을 올린 것은 민원에 따른 것입니다. 등급을 도로 내린 것은 국가의 체통을 손상하여 신이 지금까지 한스럽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개량(改量)을 마친 이후에 있는 처분입니다. 지금 이 진위는 개량이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 앞으로 올려야 하고 내려야 할 것이 또 얼마나 될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이번에 이 등급을 올린 일을 성상께서 특별히 상달(上達)로 인해 황급히 도로 내리도록 명하시면 이 밖에 어긋나고 잘못된 곳을 장차 어찌 하겠습니까? 모두 어사의 주달에 따라 시행하고 그 나머지 민원이 있는 곳이 있으면 일일이 시정하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였고, 우의정 윤동도(尹東度)는 말하기를, “신이 며칠 전 진위를 지날 적에 민정(民情)을 들었습니다. 어사가 등급을 올린 곳은 모두 농민의 공론에 따른 것이어서 조금도 억울함을 호소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자세히 살펴 균형하게 하는 것은 덕의(德意)를 봉승(奉承)한 것이고 잘못된 것을 시정하는 것도 역시 수의(繡衣: 어사)의 체통입니다. 그 아뢴 바에 의해 시행하게 하는 것이 옳을 듯합니다.”

하였으며, 예조판서 신회(申晦)는 말하기를, “어사와 도신의 말로 보더라도 아직 이정을 마감하지 않았으니 앞으로 집복(執卜: 현지 답사하여 구실을 매김)할 즈음에 올리고 내려야 할 곳이 없지 않을 듯합니다. 그러나 이는 어사가 당초 곳곳마다 답사하여 조사한 것이 아니고 모두 민정에 따라 등급을 올린 것이므로 수원 개량 때에 올렸다가 도로 내린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전정은 국가의 중대사입니다. 이들 가대(家垓)와 전답의 기름진 곳을 척

박한 땅에 비교하면 어찌 차등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신의 뜻은 어사의 주달에 의해 시행하는 것이 옳다고 여겨집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기백(畿伯)은 주인이다. 경의 생각은 어떠한가?” 하였다.

경기감사 홍계희(洪啓禧)가 말하기를, “진위의 양역(量役: 토지를 측량하는 일)은 측량은 이미 끝났으나 타산하여 양안(量案)을 작성하는 일은 아직 멀었습니다. 그러므로 신이 다시 적간(摘奸)하여 등급을 올리거나 내리게 하려고 하였는데 미처 시행하기 전에 어사가 명을 받들고 내려왔습니다. 어사가 제비를 뽑아[抽姓] 〈등급을〉 올리고 내린 것도 신의 뜻과 같습니다. 신은 앞으로 성안(成案)하기 전에 다시 올리거나 내려 시정하여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사가 이번에 등급을 올린 것은 수원의 일과 다소 차이가 있으니 굳이 수원의 예를 사용할 것은 없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여러 사람의 의견이 모두 같으니 어사의 주달대로 하라.” 하였다.

今五月二十日, 大臣·備局有司堂上·畿伯·御史·前水原府使尹東昇·備邊郎, 同爲入侍時, 上曰, 水原陞等, 與今番振威陞等, 其公心則同矣, 御史洪樂 純曰, 家垵例爲陞等, 而今番或有未及陞等者, 故臣 隨其土品之膏沃, 採其田夫之公論, 略有陞等處, 而 一從渠輩公論爲之, 故似無怨言矣, 量政則崔得大 主張, 頗爲精審, 今幾了當, 而得大, 適因戶曹事上京, 故本縣監書輩停役, 以待其還, 若更送得大, 使之磨勘釐正, 修成正案則好矣, 領議政洪曰, 當水原所陞之等, 既從民願, 則還爲降等, 有傷國體, 臣至今恨 之, 然此則處分在於改量了當之後, 今此振威改量, 姑未收殺, 前頭可陞可降, 又不知幾何, 今此陞等之 事, 特因天聽之上達, 遽命還降, 則此外差錯處, 其 將何以爲之乎, 一從御史所奏施行, 其餘如有民怨 處, 則使之一一釐正好矣, 右議政尹曰, 臣於日前 經過振威, 得聞民情, 則御史陞等處, 一從農民公論 而爲之, 少無稱冤之事, 審察均平, 所以奉承德意 也, 而釐正過差, 亦是繡衣之體, 依其所奏許施, 似爲 得宜矣, 禮曹判書申晦曰, 雖以御史·道臣之言見 之, 姑未及磨勘釐正, 則此後執卜之際, 似必有可陞可降, 而此則御史初非逐庫踏驗, 一從民情, 而陞等 者, 既與水原改量時陞而還降者, 有所差異, 田政, 國之所重, 此等垵田膏沃之處, 比諸瘠薄之地, 豈可 無差等乎, 臣意依御史所奏, 而施行爲宜矣, 上曰, 畿伯, 主人也, 卿意何如, 京畿監司洪啓禧曰, 振威量 役, 尺量則已畢, 而打算成案, 則尙遠, 故臣欲更令摘 奸, 降等或陞等矣, 未及爲而御史承命下去, 御史 之抽姓陞降, 亦與臣意同, 臣則謂雖於此後未及成 案之前, 又爲陞降釐正亦無妨, 御史之今番陞等, 與水原事少異, 不必用水原之例矣, 上曰, 詢謀僉同, 依御史所奏.

<비변사등록 141책, 영조 38년 1762년 05월 23일(음)>

경제/농수산업

水原 留守 趙心泰의 狀啓에서 청한대로 事目 외에 劃給을 더하여 줄 것을 청하다

비변사가 아뢰기를, “수원유수(水原留守) 조심태(趙心泰)의 장계를 보니 ‘금년의 농사일은 산과 연변과 골짜기와 들판을 따질 것 없이 거개가 풍년이 들어서 별로 말할 만한 재결과 실결이 없고 옛 재결의 명색이 매우 많아 냇둑이 터져 모래에 덮쳐 그대로 묵어 버려진 것이 합하여 3백 14결인데 해조가 획급해준 20결 외에 부족재 294결 21부 8속을 특별히 더 획급해 줄 것을 청하건대 묘당으로 하여금 품지하여 분부하게 하소서 하였습니다. 금년은 대동의 풍년인데 화성(華城)이 최고로 풍년이 들어 산과 연변과 골짜기와 들판이 거개가 풍년이어서 애당초 말할 만한 재결의 이름이 없습니다. 4천결논의 총결에서 300여결을 재결로 잡는 것은 타로(他路)에 비하여 지나친 듯합니다. 옛날 묵은 땅을 탈로 잡지 못한 것과 냇둑이 터져서 모래에 덮여 묵어 버린 것을 해마다 그해의 재결[今災]로 획급해 줄 것을 청한

다’ 고 하는데, 각 년에 나눠주던 것으로 상고해 보니 비록 계축년의 풍년으로도 또한 300여석 이상을 내려가지 않았으니 임금께 보고한 것이 사실에 근거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키고 보호하는 중요한 자리는 사체가 스스로 별다른 것인데 여간한 결(結)과 부(負)는 아끼는데까지 이르지 않으니 사목(事目) 20결 외에 249결 21부 8속을 더 청한 것에 따라 획급을 허락해서 일일이 고르게 나누어 주는 자리로 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답하기를, “윤희한다. 본부(本府)의 체모(體貌)는 보장(保障)과 탕목(湯沐)을 겸한 것인데 어찌 1년의 견감을 더해 주기를 논하겠는가? 또한 가을에 왕세(王稅)가 없는 것이 마땅하니 구조불(舊初不) 200결은 해마다 있었던 것인데 새로 개간하여 더 나타나기 전에 사목(事目)이 곧바로 20결을 해조(該曹)에 분배(分排)한 일은 살피지 못한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수신(守臣)에게 분부하여 비어있는 토지에는 의지를 가지고 경작을 권하고 해조(該曹)에 분부하여 구조불(舊初不)에 대해서는 아직 거론하지 말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司啓曰, 卽見水原留守趙心泰狀啓, 則以爲, 今年穡事, 無論山沿洞野, 舉皆登稔, 別無災實之可言, 而舊災名色, 數甚夥然, 竝川浦沙之仍爲陳棄者, 合爲三百十四結零, 該曹劃下二十結外, 不足災二百九十四結二十一負八束, 特許加劃事, 請令廟堂稟旨分付矣, 今年大同之豐, 華城居最, 山沿洞野, 舉皆登稔, 初無災名之可言, 則四千結畚摠, 三百餘結執災, 比他路宜若過濫, 而舊陳之未頃者, 川浦沙之陳棄者, 年年以今災請劃云, 而取考各年俵給, 則雖以癸丑之豐, 亦不下三百餘石以上, 則登聞之據實可知, 守護重地, 事體自別, 如干結負, 不必靳持, 事目二十結外, 二百九十四結二十一負八束, 依加請許劃, 以爲一一均俵之地何如, 答曰, 允, 本府體貌, 以保障兼湯沐, 何論加蠲一年亦宜秋無王稅, 則舊初不二百結, 年年有之, 新起加現之前, 事目之直以二十結分排, 該曹事, 難免不審, 分付守臣, 曠土則着意勸耕, 而分付該曹, 舊初不則此後, 姑勿舉論可也.

<비변사등록 184책, 정조 20년 1796년 10월19일(음)>

경제/농수산업

柳川과 泥浦사이의 황무지를 개간하고 植木을 할 것을 華城外使에게 別諭하다

화성외사(華城外使)에 별유(別諭)하기를, “오행(五行)이 번갈아 운행함에 토공(土功)이 크고, 팔괘(八卦)가 차서를 나눔에 있어 감궁(坎宮)이 선(先)에 거(居)하고 있으므로 주 문왕(周文王)이 기산(岐山)을 다스릴 때 토를 맡은 법을 세웠고, 한 고제(漢高帝)가 관중(關中)을 평정함에 조부(租賦)의 제도(制度)를 세웠다. 조가(朝家)가 화성(華城) 보기를 주나라의 기산과 같이 여기고 한나라의 관중과 같이 보고 있다면 백성하나하나에 근본을 중히 여기는 정책을 조금도 늦출 수가 없다. 만석의 물이 흐를 도랑을 성북(城北)에 파고, 구인(九仞)의 보[埭]를 성서(城西)에 막아 서쪽에서 남쪽으로 하여 마침내 일경(一境)에 미쳤고, 일경에 서부터 멀리 팔로(八路)에 두루 이르게 하면 이롭게 여기는 것을 이롭게 여기지 않는 것이 없으니, 어찌 깊고 넓지 않겠는가? 팔달문(八達門) 밖으로 부터 유천이포(柳川泥浦) 사이에 이르기까지 그 전토(田土)가 넓게 개척이 되었으나 쟁기가 미치지 않은 것은 경기의 백성들이 농사일에 게으름을 부려 애써 농사를 지으려 하지 않기 때문인데 이는 대개 그들의 마음과 힘이 미치지 못해서이다. 한나라 유신[儒臣]이 말하기를 ‘그 마음을 다하지 못하면 그 힘을 다할 수 없으며, 그 힘을 다하지 못하면 그 공을 이룰 수가 없다’ 고 한 것은, 바로 이러하기 때문인데 비록 마음과 힘이 있어서 황무지를 개척할 수 있으나 재력(財力)이 없으면 할 수가 없다. 비록 재력이 있어서 황무지를 개간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관의 힘이 없으

면 이를 수가 없다. 더구나 지대가 높아 메마른 땅으로 물을 끌어올리기 어려운데다가 들에
연한 백성이 서로 밭갈이 하는 법에 어둔 것이겠는가? 비록 밭의 형상이 이미 갖춰져서 중
자만 뿌려 가꾸면 즉시 먹을 수 있는 땅에다가 영(令)을 걸고 무리들에게 호령하기를 ‘백
성이 경작하여 먹도록 맡겨두고 관에서 세금을 걷지 않는다.’ 고하더라도 지금의 인심(人
心)으로는 오히려 용감스럽게 앞으로 나설 사람이 없을 것인데, 지금은 넓고 끝없는 모래
밭일뿐, 비록 십년동안은 세금을 면제해 준다고 하더라도 누가 응모하여 나와서 아침에 갈
고 저녁에 씨 뿌려 준비하게 수확하는 아름다움이 있을 수 있겠는가? 한(漢) 나라의 조과
(趙過)같은 여러 사람들이 백성에게 경작을 권면하기 위하여 농기구와 농우(農牛)를 모두
관비(官費)로 마련해 주었고 장리(長吏) 된 자가 몸소 삼태기를 들고 거름을 나르며 밭두둑
을 밟으며 밭을 거름며 잡초를 제거하여 기름지고 비옥한 전답으로 만들어서 놓고먹는 사람
들을 농부(農夫)로 만들었는데, 이는 이른바 백성과 더불어 즐겁게 이룬 자라고 할 만한 것
이다. 일에 있어 옛사람의 경험을 스승으로 삼지 않고서 어떻게 공효를 먹을 수 있겠는가?
지금 계획한 것이 둘이 있다. 하나는 영둔(營屯)의 경작인(耕作人)을 모집하는 규정에 따라
본부(本府)로부터 재용을 출연(出捐)하여 개간을 하고 개간의 일이 끝나기를 기다려 밭의
경계(經界)를 정하여 나눠주고 관용(官用)을 보충하게하며 백성이 먹을 식량의 자본을 넉넉
하게 만드는 것이고, 하나는 곡식을 바치고 벼슬을 제수 받는 법에 따라 농토를 개간한 것
이 며칠 같이가 되는 자에게는 당(唐) 나라의 공명고신(空名告身:공명첩(空名帖))과 송(宋)
나라의 적공(迪功)이하의 품계(品階)는 향품(鄉品)의 향임(鄉任)으로 삼고 교리(校吏)는 향
임(鄉任)의 자리로 만들어서 일체 그들의 청원을 따라 만약 한 달 같이가 넘어서 100석의
이익을 거둘 수 있는 자거나, 이보다 넘어서 두 달 같이 또는 두 달 석 달 가리로 2~300석
이 되는 자에게는 중추(中樞)의 관함(官銜)인 변장(邊將)을 주되 공로를 계산하여 차임을
매운다면 거의 날로 개간되는 효력이 있을 것이다. ‘수구(水口)가 비고 넓어 백성이 요부
(饒富)하지 못하다’ 고 하는 데 대해, 혹자는 ‘그렇다’ 고 하는 말이 있는데, 한마디로 말
하여 ‘불경(不經:법답지 못한 말)한 말이며 떳떳하지 못한 말이다.’ 먼저 수구의 논리를
보니 도읍에 있지 않고 감여(堪輿)에 구하는 것이 좌계(左契)와 같다. 만약 성 밖에 산을
만든다면 형세가 장차 굽어보게[俯瞰]되고 만약 물 밖에다 방죽을 쌓는다면 순리가 문득 가
로막혀서 앞으로 경유함에 있어 빙 둘러 누대[樓櫓]의 의를 상실하게 되고 뒤로 말미암음에
있어 맑디맑은 명당(明堂)의 경계에 어긋나니 명석(名碩)들의 평모(宏謀)로 참작해보면 평
양(平壤)에 성을 설치하고 강우(江右)에 긴 수림[長林]을 기르고 선산(善山)의 군치(郡治)
가 완성되자 큰 늪을 계우(溪右)에 설치하였다. 고어(古語)에 말하지 않았던가? 백가(百家)
의 부락[聚]과 십실(十室)의 시장[市]도 또한 반드시 산을 등지고 시내 물을 띠어야 한다
[依山帶溪]는 것이 이 것이다. 먼저 금년부터 수목(樹木)을 심되 버드나무[楊]·위성유
[檉]·뽕나무[桑]·개금나무[榛]·밤나무[栗]를 논할 것 없이 널리 심고 숲을 이루어서 울
창하게 경관(京官)을 새롭게 하는 성태함이 있게 하는 것도 또한 선무(先務)할 일에 속한
것이고 부치(府治)와 역촌(驛村), 호호마다 나무를 심는 일에 있어서는 전에 이미 신칙하였
는데 집둘레에 뽕나무를 심지 않으면 세금을 받았던 것은 바로 주관(周官)에서 성헌(成憲)
으로 삼은 것이니 경은 모름지기 편의대로 일을 하여 조정에서 화성(華城)백성을 위하여 밤낮으로
동동(憧憧)거리는 지극한 뜻을 저버리지 말라. 개간을 하는 한 가지 조목은 여러 사람의 의
견을 널리 캐물어[採訪]서 논리(論理)한 별단을 등문(登聞)한 뒤에 회계를 기다려 시행하
라.” 하였다.

別諭華城外使：五行迭運，土功爲大，八卦分序，坎宮居先，故周文王治岐而建任土之法，漢高

帝定關而立租賦之制，朝家之視華城，有如周之岐·漢之關，則元元重本之政，不可以少緩，萬石之渠，開於城北，九仞之埭，築於城西，自西而南，遂及於一境，自一境而遠遍至於八路，則不無所利之利，豈不淵乎博哉，自八達門外，至柳川·泥浦之間，厥土廣斥，耕犁不及者，畿民懶於農，不欲啓作，蓋其心力不能及也，漢儒之言曰，不能盡其心，則不能盡其力，不能盡其力，則不能成其功云者，政爲此也，雖有心力，足以闢荒，而無財力，則不能焉，雖有財力，足以墾土，而無官力，則不遂焉，況高燥之地，難於引水，沿野之民，昧於結耦乎，雖以田形已具，布種卽食之土，揭令而號於衆曰，任民耕食，而縣官不收稅，以今人心，尚不欲勇前，今者茫然風沙，雖以十年免稅，有誰應募而出，朝耕暮耕，獲有如櫛如比之美乎，自漢之趙過諸人，爲民勸耕，田器·農牛皆由官備，爲長吏者，插畚鍤履畝，污萊爲膏沃，游手爲農夫，此所謂可與樂成者也，事不師古，曷云食效，今之爲計有二，一則依營屯募耕之規，而自本府捐財起墾，待其告功，限田分授，以爲補官用，裕民食資，一則依入粟拜官之式，而墾土爲幾日耕者，如唐之空名告身，宋之迪功以下之階，鄉品之爲鄉任，校吏爲任窠，一循其願，而若過一朔之耕，可以收百石之利者，及過於此，而爲二朔三朔二百三百石者，樞銜·邊將，計勞填差，則庶有日闢之效矣，水口虛廣，民不饒富，或者云然之說，而蔽一言曰，不經也，匪彝也，先看水口之論，不在都邑，求之堪輿如左契，若造山於城外，則勢將俯瞰，若設堰於水下，則理便橫遮，由前而失於周遭樓櫓之義，由後而違於澄清明堂之戒，以名碩之宏謨參之，則平壤之城設，而養長林於江右，善山之治完而置巨藪於溪右，古語不云乎，百家之聚，十室之市，亦必依山帶溪者，是也，先從今年，種以樹木，無論楊·檉·桑·榛·栗，廣植而成林，俾有蔚然改觀之盛，亦屬先務，若府治驛村，逐戶種樹，前已屢飭，而宅不毛則有征，自是周官成憲，而卿須便宜從事，毋負朝家爲華民夙夜憧憧之至意，起墾一款，博採衆見，論理別單登聞後，待回下施行。

<비변사등록 190책, 정조 24년 1800년 04월 22일(음)>

경제/농수산업

水原留守 徐有隣의 보고대로 360일 갈이의 면적을 개간한 判官 金思義에게 포상하다

권장하여 개간한 전답 중 관경(官耕)·민경(民耕)·모경(募耕)의 결수(結數)·두수(斗數)·경수(耕數)를 구별하여 뒤쪽에 기록한 수원유수(水原留守) 서유린(徐有隣)의 장계에 대해 판부(判付)하기를, “농업을 중시하는 정책에서 어찌 개간을 장려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있겠는가? 본부(本府)는 다른 지방의 본보기가 되었으며, 전답 3백 60여 일경(日耕: 하루갈이)을 별유(別諭)가 있는 뒤에 개간한 것은 극히 가상한 일이다. 먼저 당사자부터 시작한다 [先從隗始]는 도리로 볼 때 장려하는 조치가 없을 수 없으니 판관(判官) 김사희(金思義)에게 내하(內下)한 녹피(鹿皮) 1령(令)을 내려주라. 관경(官耕) 외에 또 30여 일경(日耕)을 스스로 개간한 한 사람이 있다 하니 더욱 가상하다. 해조(該曹)에서 내일 정사(政事)에서 가선(嘉善) 품계의 위장(衛將)에 붙이게 하라. 이러한 뜻을 묘당에서 모든 도에 분부하여 이것을 보고 앞 다투어 공을 세우게 하되, 특출하게 권장할만한 사람이 있으면 실적을 조사하여 장문(狀聞)하게 하라.” 고 하였다.

以水原留守徐有隣狀啓，勸闢田畝，官耕民耕，募耕結數，斗數耕數，區別後錄事判付內，重農之政，豈有過於勸闢，本府爲諸路之所取則，而田畝三百六十餘日耕之起墾於別諭之後者，極爲可嘉，其在先從隗始之道，不可無獎勸之舉，判官金思義，內下鹿皮一令賜給，官耕外又有自墾三十餘日耕者一人，尤爲嘉尚，令該曹明日政，付嘉善衛將，將此意令廟堂分付諸道，視此競相趨功，如有超異之可合勸獎者，考其實績，狀聞爲良如教。

<비변사등록 191책, 정조 24년 1800년 06월 01일(음)>

경제/농수산업

勸農綸音

○ 「임금은 말한다. 농자(農者)는 천하의大本(大本)이다. 내가 듣건대, 왕이 농사를 명포(命布)하면 전사(田舍)와 동교(東郊)에 명하여 구릉(丘陵), 관험(阪險), 원습(原隰)을 잘 살펴 그 토지에 오곡 중 어떤 것을 심어야 알맞은가를 도민(道民)에게 가르친다고 한다. 나라에서 백성을 소중히 여기고 백성들이 농사에 의지하는 바가 여기에서 말미암으니, 어찌 크다고 하지 않겠는가. 사시(四時)의 차례는 봄이 첫 머리이니, 봄에 농사를 밝히려만 마침내 가을의 수확이 있게 되므로, 조정에서는 순탁(循鐸: 목탁을 치고 거리를 돛)을 하고 들에서는 쟁기질을 한다. 우리의 전답에 이미 저장(貯藏)이 있으면 농부들의 경사이다. 천 섬 만 섬의 먹을 수 있는 아름다운 곡식이 다 갖추어져 백성들로 하여금 먹고 살게 한 연후에야 나라에서는 윗사람을 친히 여겨 복종하고 수고하는 도리를 알게 되고, 집안에서는 어른을 섬겨 충신(忠信)하는 의리를 알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이른바 천하의 근본이 농사라는 것인데, 근본이 확립되어야만 태평(太平)을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아! 나 소자(小子)가 왕위(王位)를 이어받아 두렵고 조심스러워 일찍이 근원을 근원으로 삼고 근본을 근본으로 여기는 도리에 감히 해이한 적이 없었다. 아, 구중궁궐 깊은 곳에서 많은 백성들을 살펴 그 질고(疾苦)를 전부 알고 싶었지만 형세가 어려웠다. 슬프다, 백성들이여.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방백(方伯)과 수령(守令)들이 아끼고 어루만져주고 보호하여 구휼해 주지 않으면 어떻게 살아가겠는가. 우리러 천기(天氣)를 살펴서 그 때를 잘 헤아리고 주현(州縣)에 밝게 유지해 농사일에 전념하게 하는 바이다. 전야(田野)가 황폐해지면 수치(修治)할 것을 생각하고, 수령이 태만하면 내칠 것을 생각한다. 다스리기를 잘하여 쓸 만한 자는 올려 주고, 공사(公事)에 부지런하여 임용할 만한 자는 발탁한다면, 한 사람을 내쳐 사람들이 모두 조용해지고, 한 사람을 올려 주어 사람들이 모두 밝아진다. 나라 일을 집안일처럼 보아야 하는 것이 방백(方伯)의 임무이다. 몸소 밭이랑에 다니면서 힘을 모으고 땀 흘려진 자들을 안집(安集)시켜 농상(農桑)에 전념하게 하며, 양식이 모자란 자에게는 양식을 주고, 게으른 자는 경계하면서 한 농부가 경작하지 않으면 굶주리는 백성이 있을 것을 생각하고, 한 여인이 길쌈을 하지 않으면 추위에 떠는 백성이 있음을 생각해야 한다. 항상 1백 리의 분우(分憂)를 생각하여 나라에서 바라는 바에 보답하는 것이 수재(守宰)의 책임이다. 만약 이와 반대로 권하는 자가 경작만을 독촉하고, 경계하는 자가 단지 수확만을 독촉하거나 문밖에는 오직 아전이 날마다 와서 세금을 징수하고 다시 돈을 요구하면서 복을 올려 모아들이고 목탁을 쳐서 불러들인다면 남자는 경작을 하고 여자는 길쌈을 하더라도 손발이 감당해 내기가 어려운 것이다. 이러한 때에 밭에서 부지런히 일하더라도 어떻게 쓰는 데 이로울 것이며 힘써 밭 갈고 김매더라도 어떻게 삶을 풍요롭게 할 수 있겠는가. 봄에 경작하고 가을에 추수하더라도 조석으로 피로할 단서만 되고 시절이 좋아 풍년이 들더라도 흉년이 든 때와 다를 게 없어서 비록 우리러 부모를 섬기고자 해도 힘이 부족할 것인데 또 처자를 기르며 종신토록 배불리 먹고 싶더라도 어느 겨를에 하겠는가. 이는 전혀 내가 팔도의 방백과 사도(四都)의 수신(守臣) 및 3백 60여 주(州)의 수재(守宰)에게 바라는 바가 아니다. 삼가 생각건대, 우리 열성(列聖)께서 서로 계승하면서 성덕(聖德)과 지선(至善)이 팔도에 넘실넘실 넘쳐서 어린아이와 노인들까지도 생성(生成)해 주는 은택을 입지 않음이 없었으니, 아, 훌륭하다 하겠다. 그리고 풍년이 자주 들어 태사(太史)는 큰 풍년이 들었다고 사책(史策)에 쓰고, 백성들은 서로 들판에서 경하하였었다. 그런데 소자가 자리에 오른 지 10여 년 동안에는 성패(星季),

수재(水災), 화재(火災), 우뢰의 재이(災異)가 없는 해가 없었다. 작년에 이르러서는 농사가 더욱 크게 흉작이 되어 몇 만 명의 백성들이 마치 물이 새는 배 가운데 들어 있는 것과 같았는데, 첫째도 나의 부덕(否德)한 탓이요, 둘째도 나의 부덕한 탓이다. 내가 매양 밥을 대하면 굶주린 백성들이 생각나서 그 맛을 알지 못하고, 밤이 되면 추위에 떨 백성들이 생각나서 잠자는 것을 잊곤 하는데 조용히 생각하면 내 마음이 매우 근심스럽다. 또 호읍(湖邑) 수재(守宰)의 소본(疏本)을 통해 굶어 죽는 형상과 고생(苦生)하는 우환에 대해 들어보지 못한 것까지 들었는데, 참혹하여 말하기 어려울 정도였다. 바야흐로 화창한 봄을 맞아 초목(草木)과 모든 생물이 다 저마다 즐거워하고 있는데, 오직 우리 백성들은 막 흉년을 겪어 걱정하고 괴로워하느라 봄날이 좋은 줄을 모르고 근심과 탄식으로 초목보다도 즐겁게 살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도 내가 스스로 위로로 삼는 것은 오직 마음을 다해 진흥하는 것에 있을 뿐이다. 모르겠다만 죽음을 구제하기에도 여유가 없는 백성들이 스스로 새 봄을 맞아 뻘뻘 마를 근심이 없으며, 항아리에는 아직까지 종자로 쓸 곡식을 저장하고 있으며, 부황(浮黃)이 든 끝에 아직 농사지를 힘이나 있느냐? 내가 백성들을 근심하는 바는 비록 평년에 있어서도 오히려 게을리 하지 못하는데, 하물며 흉년을 막 겪었음에랴! 방백과 수재에게 바라는 바가 마땅히 어떻겠는가. 새해에 농사를 권장하는 것이 마치 문구(文具)처럼 되고 말았으나, 역시 열조(列朝)에서 이미 행한 일이니, 내가 어떻게 감히 문식(文飾)에 가깝다 하여 행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이제 윤음(綸音)을 내리는 중에 보훈(保恤)의 방도를 겸하여 유지하니, 이런 뜻을 본받아 잘 대양(對揚)하여, 떠도는 백성들을 발이랑에서 편안히 일하게 하면 과인(寡人) 역시 밤낮으로 근심하는 것이 없을 것이니, 이것이 바로 새봄의 소망이다. 그러니 방백과 수재가 비록 소홀히 하고자 한들 그럴 수 있겠는가. 아, 그대들 경기(京畿), 호서(湖西), 호남(湖南), 해서(海西), 관동(關東), 관서(關西), 북관(北關), 영남(嶺南), **화성(華城)**, 심도(沁都), 송도(松都), 광주(廣州)의 도신과 수신으로부터 열읍(列邑)의 목사(牧使), 부사(府使), 군수(郡守), 현령(縣令)에 이르기까지 농사를 권장하고 부세를 고르게 하는 방도에 힘쓰고, 더욱 편안히 안정시키고 구제하는 책임에 힘쓰라. 만약 정백(精白)한 일심(一心)으로 하지 않는다면 그 죄가 어디에 해당하겠는가. 아울러 이런 내용을 잘 알도록 정원에서 팔도와 사도에 하유(下諭)하라.」

王若曰，農者，天下之本也，曰予聞之，王命布農事，命田舍東郊，善相丘陵阪險原濕，土地所宜五穀所殖，以教道民，國之所重於民，民之所恃於農者，由斯而豈不大哉，四時之序，春爲之首，春而明農，乃亦有秋，朝而絢鐸，野而于耜，我田既臧，農夫之慶，千箱萬箱，嘉穀可食之物莫不畢具，使民食之而生也，然後，於國知親上服勞之道，於家知事長忠信之義，是所謂天下之爲本者，農也，本立然後，太平可議也，嗚呼予小子，嗣大歷服，凜凜乎兢兢乎，未嘗敢弛於元元本本之方，噫以九重之深，察兆民之衆，而雖欲盡知其疾苦，其勢難矣，哀哉元元，其何以生，非方伯·守宰之字撫保恤，其何以生，仰候天氣，以審其時，明諭州縣，專意農功，田野荒廢，思所以修之，守宰怠慢，思所以黜之，善於治而可用者，陟之，勤於公而可任者，擢之，一黜而人皆幽焉，一陟而人皆明焉，視國事爲家務者，方伯之任也，躬行畎畝，以率其力，安集流亡，專意農桑，糧乏者給之，懶惰者警之，一農不耕，思民之有飢者，一女不織，慮民之有寒者，常念百里之分憂，以答國家之期望，守宰之責也，若反於此，勸之者徒促其耕，戒之者只督其穫，門外惟有吏，日來徵租更索錢，鳴鼓而聚之，擊木而召之，男耕女織，手足難當，於此之時，服勤畎畝，何足以利用，懋力耕耨，何足以厚生，春作秋成，但爲朝疲夕勞之端，時和歲豐，無異年凶歲荒之時，雖欲仰育父母，而力不足，又欲育妻子，而終身飽，奚暇爲之哉，此則大非予之所望於八道方伯·四都守臣暨三百六十餘州之守宰者，恭惟我列聖相承，盛德至

善洋溢八域，戴髻垂白之類，莫不被生之澤，猗歟盛哉，且年穀屢豐，太史書大有於策，黎民相慶賀於野，小子叨位十焉其載，星索水火雷異之災，無年不有，逮至昨年穡事，尤爲大歉，幾萬生靈，如在漏船之中，一則否德，二則否德，予每對食，則思民之飢，而忘其味，遇夜則思民之寒，而忘其寢，靜言以思，我心忡忡，又因湖邑守宰之疏本，餓莩之狀，顛連之患，益聞其所不聞，慘矣難言，方春和時，草木群生皆有以自樂，而惟我赤子，纔經歉歲，憂苦而不知方春之好，愁嘆而不如草木之樂，予猶以自慰者，其惟在於賑賙之盡心而已，未知救死不贍之民，自當新春，能無捐瘠之患，而瓶罍之貯，尚有可種之穀，頤顛之餘，尚有民作之力乎，予之所憂於民者，雖在常年，猶不能弛，況歉荒之才經，所望於方伯·守宰者，當如何哉，歲首勸農，便成文具，亦列朝已行之事也，予豈敢曰，近於文而不爲行之哉，今因綸音之中，兼諭保恤之道，能體此意而對揚，使流民安于畎畝之間，寡人亦無宵旰之憂，卽新春之所望也，方伯·守宰雖欲放忽，其可得乎，咨爾京畿·湖西·湖南·海西·關東·關西·北關·嶺南·**華城**·沁都·松都·廣州道守臣，以至列邑牧·府·郡縣守令，勉勉於勸農均賦之方，益勵於奠安接濟之責，而若不精白一心，其罪何居，竝以此知悉事，政院下諭八道·四都。

<비변사등록 200책, 순조 10년 1810년 01월 02일(음) >

경제/농수산업

全羅左道 暗行御史 沈英錫이 捧稅하는 기준을 분명히 할 것 등을 청하다

비변사에서 아뢰기를, “전라좌도암행어사 심영석(沈英錫)의 별단을 보면 그 하나는, 부세(賦稅)를 거두는 것은 본래 정해진 법이 있는데, 군현(郡縣)에서 계판(計版)에 있는 것이라 하면서 자질구레한 조목을 만들어 1결(結)당 거두는 것이 거의 1백 두(斗)에 이르고, 또 방납(防納)이란 명색을 내세워 그 율(率)이 계판보다 높은데 거둔 것은 다 아전의 주머니로 들어가며, 하등(下等)의 부세를 지나치게 거두고 한전(旱田)의 수세(收稅)를 혼동하여 쌀을 요구하고 있으니, 속히 묘당에서 각 읍 사용의 3, 4년 계판을 모두 모아 올려 보내도록 하여, 존속할 것인지 혁파할 것인지를 상의하여 혹시라도 지나친 일이 없도록 하는 일입니다. 세금을 거둘 때에 난잡스런 폐단은 이미 전라우도어사의 별단으로 인하여 복계(覆啓)하여 금단하도록 신칙하였습니다. 계판을 사사로이 율을 내고 명색이 원부(元賦)보다 배가 되고, 방납이 해마다 일상이 되었으며 실결(實結)이 모두 아전의 주머니로 흘러 들어가고, 하등이 모두 6두를 바치며 한전에 혼동하여 쌀을 거두는 등의 허다한 횡령(橫斂)을 단지 지나치게 거둔다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부세를 거두는 것은 나라의 크나큰 정사로서 백성에게 취하는 데에도 일정 제도가 있는데, 하찮은 하리(下吏)가 마음대로 하도록 맡겨두어 백성들이 고통을 받고 나라 경제는 애통스러우니, 이는 법이 없는 나라로서 호남 일대가 거의 토붕와해(土崩瓦解)되지 않은 것입니까. 도를 안렴(按廉)하는 신하에게 각 고을의 이른바 계판을 거두어 모아 친히 잡고 검토하여, 규례를 정하고 쓸데없이 지나친 것은 제거하여 바꿀 수 없는 일정한 제도로 만들어 균일하게 되도록 힘을 쏟고 올리거나 낮추는 일이 없게 하여 백성들로 하여금 꼭 내야 할 수를 분명히 알게 하고, 이어 부세 담당 아문에 보고하여 경외에서 빙고(憑考)할 자료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그 하나는, 외읍(外邑) 계방(契坊)의 폐단은 근래에 더욱 심합니다. 한 고을 내에 부유한 마을은 모두 계방을 조직하여 해마다 뇌물을 거두어 아전들에게 바치고 부세를 면제해 달라고 하며, 심지어 영계(營契)·관계(官契)·호계(戶契)의 폐단이 생기는 데까지 이르렀으니 엄히 신칙하여 혁파하게 하는 일입니다. 이 나라 어디에도 왕의 신하 아닌 자가 없는데 분할하여 읍속(邑屬)의 사유(私有)로 만들어 장정(壯丁)의 선발에서 빠지기를 도모할 뿐만이 아니라 제반 응역(應役)에 아예 상관하지 않

고, 심지어 영읍(營邑)의 계방까지 만든다는 말이 있을 지경이니 영읍을 다스리는 자가 금단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따라서 본받기까지 하니, 이러한 법과 기강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영(令)이 나오면 시행하라는 방도는 오직 도신에게 맡겨집니다. 이와 같이 관문으로 신칙하여 철저히 혁파하게 한 뒤에 전말을 등문(登聞)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뒤에도 다시 계방 두 글자가 조정에 들려올 때에는 먼저 도신부터 무겁게 감처(勘處)하겠다고 분부하겠습니다. 이 폐단은 여러 도가 다 그러하니 일체 신칙하겠습니다. 그 하나는, 민고(民庫)에서 받아들이고 내어 주는 데에는 본래 절목이 있는데, 근래에는 부당한 명색과 새로 만든 절목으로 과외(科外)로 지나치게 거두므로 백성들이 살아갈 수가 없으니, 묘당에서 열읍의 절목과 현재 행해지는 조례(條例)를 거두어 올려 보내 살살이 조사한 다음, 한결같이 규례대로 준행하는 일입니다. 호남의 민고는 서로(西路)와는 다릅니다. 바로 각 고을이 사사로이 설치한 것에 지나지 않는데 처음에는 방역(防役)을 편의하게 하려는 계책에서 나왔으나, 마침내는 가혹하게 이익을 끌어 모으려는 일이 되었습니다. 이미 이 같은 것을 조정에서 몰랐으니 지금은 단지 혁파할 뿐인데, 어찌 억지로 예로 정할 것을 의논하여 체모를 손상할 수 있습니까. 도신에게 속히 변통할 방책을 생각하여 거두어들이는 길을 끊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그 하나는, 뇌물을 받고 호적(戶籍)을 가호(家戶)에 파는 것이 근자에 고질적인 폐단으로 되었습니다. 호구(戶口)에 증감(增減)이 있을 때에 간사한 아전이 농간을 부려 잔악한 백성이 해를 입습니다. 도신에게 총괄하게 하여 각 고을 호총(戶總)의 다과와 그 연돌(烟埃)을 따져서 큰 것은 1가(家)에 1호(戶)를, 그 다음은 2가에 1호를, 그 다음은 3~4가에 1호를 세워 결원이 있을 경우 본 마을에서 대신 세우도록 법령을 만드는 일입니다. 호적법이 엄중하지 않으므로 군정(軍丁)의 허액(虛額)과 환곡 장부의 문란과 요역(徭役)의 불균과 무상한 이동(移動)은 모든 이에서 말미암습니다. 어사의 서계 가운데 수년 경영해나가는 논의는 진정 요령을 터득한 것입니다. 도신에게 분부하여 미리 생각하여 규칙으로 만들어 식년(式年)이 되거든 준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하나는, 기년(己年)과 갑년(甲年) 이래로 땅이 묶어 황무지가 된 것이 많은데, 백성들은 부당한 세금을 우려하여 오히려 개간을 하지 않습니다. 연한을 정하여 세금을 정지하고, 백성을 모집하여 들어가 경작하게 하며, 또 지금 은결(隱結)이 해마다 달마다 늘어나는데 그대로 덮어두고 있습니다. 도신에게 진결(陳結)과 은결을 조사하게 하여 피차 서로 대체하게 하는 일입니다. 진결을 조사하는 일은 이미 전라우도어사의 장계로 인하여 품쳐한 것이 있으므로 굳이 다시 논할 필요가 없습니다만 은결을 열읍에 나누어서 자수(自首)를 받는 일에 있어서는 사체에 손상이 있으니 결코 의논하기가 어렵습니다. 만약 진결을 조사할 때에 사실대로 구별해나간다면 은결과 누결(漏結)은 절로 찾아낼 방도가 있을 것이니 이와 같이 분부하겠습니다. 그 하나는, 근래 가류(加留)하는 법은 더욱 환곡의 폐단 중에서도 악습이 되고 있습니다. 봄에 환곡을 나누어 줄 때에 아전들이 모두 받아먹고 가을에 거두어들일 때에는 백성들이 실로 대신 납부해야 하니, 묘당에서 그 바로잡을 방도를 의논하게 하는 일입니다. 가류의 설치 없는 폐단이 없다고 하겠는데 폐단이 이 지경에 달했으니 참으로 어찌할 수 없습니다. 조사하여 율을 적용하지 않을 수 없는데, 그런 뒤에야 아마도 그 악습이 더 자라지 않을 것입니다. 도신에게 각 고을에서 가장 교활한 몇 사람을 조사해내어 격식을 갖추어 계문(啓聞)하도록 하고, 그 나머지는 범한 정도에 따라 각별히 형신하고 멀리 정배(定配)해야 하겠습니다. 그 하나는, 호남의 군현은 대부분 규모가 작는데 아전의 인원은 너무 많으니, 묘당에서 열읍을 총괄하여 전결의 총수를 따져 매 2천 결(結)에 아전 10인을 두고, 전지는 적는데 호구가 많은 경우에는 매 2천 호(戶)에 아전 10인을 두며, 공로(孔路)의 도회지는 적당하게 더 정하고, 전

지와 호구가 모두 2천을 넘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것이 편할지를 의논하여 크게 잔 폐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매년 차인(差人)을 파견하는 법은 반드시 혁파하여 오래 맡아서 효과를 보도록 하면 삼가 스스로를 잘 지켜 폐단을 바로잡는 일입니다. 아전의 인원수는 본래 각 도마다 정해진 규식이 있는데, 저번에 여러 번 신칙하였지만 아직도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은 전적으로 영읍에서 고식적으로 처리한 소치입니다. 다시 행회하여 각기 정해진 규례에 따라서 조사하여 태거(汰去)하도록 하겠습니다. 번갈아 차인을 보내는 것이 비록 폐단이 된다고 하지만 오래 맡기는 것도 어려운 일이니 내버려두도록 하겠습니다. 그 하나는, 영주인(營主人)의 폐단이 근래 더욱 심합니다. 영하(營下)의 권세 있는 이서(吏胥)가 영주인의 일을 하면서 거두는 역가(役價)는 점점 늘어나, 백성에게서 거두는 것에 한계가 없습니다. 지금부터는 다른 도의 예에 의하여 군뢰(軍牢)나 사령(使令)들에게 자리를 사서 그 역을 하도록 하되, 새로 늘어난 역가는 모두 깎아 없애는 일입니다. 이미 전 도신이 바로잡은 것이 있다고 합니다. 다시 엄히 신칙하여 오래 준행하도록 분부하겠습니다. 이서나 노령(奴令:지방 관아의 관노(官奴)와 사령(使令))을 막론하고 능히 조절을 하면서 폐단을 끼치지 않게 하는 것은 참으로 좋은 방법이니, 굳이 변통까지 할 것이야 있겠습니까. 내버려 두겠습니다. 그 하나는, 도신이 순력(巡歷)할 때에 접대하는 음식과 마부(馬夫)와 말에게 공급하는 것이 매우 사치스러워 하나의 큰 폐단이 되고 있습니다. 묘당에서 줄일 방도를 의논하게 하고, 감사가 새로 도임(到任)한 뒤에 수령이 연명(延命:수령이 감사를 처음 가서 보는 의식)할 때에 민폐가 역시 많으니, 지금부터는 더욱 옛 법을 밝혀 본 고을에 앉아 순시하러 올 때까지 기다리게 하는 일입니다. 관할지역을 순시할 때에 대접하는 여러 절차에 대해 도신이 진정 폐단의 제거에 마음을 둔다면, 어찌 법을 벗어나 거창하게 차리는 일이 있겠습니까. 이는 신칙할 것도 없이 각자 권면해야 할 일이며, 수령이 연명을 함에 있어 혹은 감영에 혹은 고을에서 하는 것은 사세에 따라 편의대로 할 따름인데, 굳이 법례(法例)를 정할 필요는 없으니 내버려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 하나는, 당하관(堂下官)인 수령이 함부로 옥교자(屋轎子:위를 꾸민 가마)를 타는 것과 초교(草轎:삿갓가마)의 휘장을 높게 걸어 올리는 것은 법으로 엄히 금하는 것이니 묘당에서 신칙하고, 역마를 함부로 타는 폐단이 근자에 더욱 심하니 지금부터는 감영·병영·수영의 액내 군관(額內軍官)이 일일이 병조에 보고하고, 병조에서는 관문으로 각 역에 신칙하여 명단이 보고되지 않은 자에게는 말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하는 일입니다. 당하관이 옥교를 타는 문제는, 비단 수령도 함부로 타지 못할 뿐만 아니라 비록 사신이라 해도 역시 품계가 있는데, 근래에는 전혀 제한이 없어 미관말직(微官末職)도 서로 잘못된 것을 본받기를 일삼은 것처럼 여기니, 이는 실로 등급(等級)과 위계(位階)가 분명하지 않은 소치이고, 마정(馬政)이 피폐해진 것도 다 이 때문이니, 도신에게 신칙하여 함부로 타는 폐단을 일체 금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함부로 타는 폐단을 어사가 논한 것이 그 극심한 것은 없앨 수 있을 것이므로, 병조에 분부하여 이에 의하여 시행하게 하되 이후에는 하나 같이 원사무(元事目)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장(裨將)인 자가 공무(公務)가 아니면 본도 안이라 하더라도 말을 줄 수 없도록 거듭 밝혀 알게 하고, 이어 즉시 여러 도에 행회하여 일체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하나는, 각 고을에서 보솔(保率)을 사사로이 더 뽑고는 그 신포(身布)를 거두는 일이 한정이 없습니다. 각종 보솔의 문안(文案)을 모두 본도에서 거두어 모아 올려 보내게 하고 상의하여 바로잡는 일입니다. 이미 전라우도어사의 장계로 인하여 복계하여 신칙할 것을 여쭙었으니 다시 논의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하나는, 수영(水營)의 전선(戰船)이 모래바닥에 딱 박혀 있는데, 예기치 못한 일이 생길 경우 하나도 쓸 수가 없으니, 하나 같이 선조(先朝)의 하교에 따라 조운선

(漕運船)과 통용하게 하고, 거북선과 해골선(海鰐船)을 예전처럼 만들어두는 일입니다. 각도의 전선이 딱 박혀 움직이지 않고 만드는 대로 썩으니, 만일의 사태에 대한 대비가 소홀하기 이와 같을 수 있습니까. 해마다 수선하는 것이 부질없이 송전(松田)을 민둥산으로 만들 뿐이니, 몇 년이 안 되어 수리하고 싶어도 재목을 얻어 사용할 수가 없을 것이니 어찌 하겠습니까. 전선과 조운선을 통용하자는 논의는 결코 편리하고 전혀 장애가 없다는 것은 알면서도, 미적거리며 결정하지 못하는 것이 실로 식자(識者)의 탄식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널리 의견을 물어 변통해야 하니 먼저 전선 소재지의 각 도 도신과 수신(帥臣)에게 의견을 갖추어 논리하여 장문하도록 한 뒤에, 호조와 선혜청당상 및 여러 장신(將臣)들에게 수의(收議)하여 품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하나는, 어장(漁場)과 소금가마가 수도 없이 생겼다가 없어지고, 황폐한 진전(陳田)에 백징(白徵)하고 새로 기경(起耕)하였으니 은닉하는 폐단이 매우 많으니, 상세히 조사하여 바로잡도록 당해 관사에서 품처하게 하는 일입니다. 당해청에서 하나 같이 사목(事目)에 따라 상세히 조사하여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그 하나는, 완도(莞島)와 절이도(折爾島)는 바로 송전(松田) 가운데서 큰 것인데 지금은 모두 민둥이 되었습니다. 매년 가을에 산택사(山澤司)의 낭관을 보내어 살펴서 논죄하는 일입니다. 송전을 적간하는 일을 오랫동안 폐하고 시행하지 않았으니, 결국에 품지하여 차출해서 보내야 하겠으나 우선 선갑(先甲:법의 시행에 앞서 그 뜻을 널리 알리는 일)의 뜻으로 관문으로 도신과 수신에게 신칙하여 마음을 다하여 금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하나는, 병영(兵營)의 진상할 값의 쌀 미 3백 25석 영(零)을 대동미(大同米)로 민결(民結)에서 거두고, 대동의 흠(虧欠)난 것을 환미(還米)로 보충하기 때문에 쌀의 품질이 떨어져 매 석에 더 넣어야 할 것이 거의 반 석(石)이나 되므로, 해마다 백징하는 것이 백성들에게는 사무치는 폐막이 되고 있습니다. 대동으로 상납하는 것 가운데 3백 25석을 저치미(儲置米)의 예로 본현(本縣)에 제급(除給)하도록 해사에서 본도에 행회하게 하는 일입니다. 당해청에 분부하여 좋은 쪽으로 조치하겠습니다. 그 하나는, 흥양현(興陽縣)에는 대[竹]가 나는 섬이 세 곳이 있습니다. 그 죽전(竹田)은 수영(水營) 소속인데 매년 채벌하여 지금은 황무지가 되어 있지만, 근자에 본 현에 대를 납부하게 하므로 해마다 3백여 냥씩을 민결에서 백징하여 대 값을 메우고 있으니, 왼쪽 연안(沿岸) 6~7개 고을에 이 역(役)을 고루 나누어 백성들의 힘을 덜어주는 일입니다. 불모지에 이러한 백징이 있으니 도신에게 분부하여 참작하여 변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하나는, 수영(水營)의 환미(還米)를 모조(牟租)로 바꾸어 백성들에게 큰 폐단이 되고 있으니 모두 도로 작미(作米)하고, 9개 면의 백성들이 고을의 환곡을 받고 또 영(營)의 환곡을 받아 독축을 받는 일이 배나 심합니다. 고을 근처의 4개 면은 고을의 환곡을 받아야 하고 영 근처의 5개 면은 영의 환곡을 받아야 하니, 참작하여 알리도록 본도에 분부하는 일입니다. 향미(餉米)를 본색(本色)으로 환작하는 것은 실로 조적법(糶糴法)에 부합하는 일이고, 환곡을 받을 때 각각 가까운 곳에서 하는 것은 백성의 폐단을 제거할 수 있는 일이니, 도신에게 좋은 쪽으로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하나는, 청주(淸州) 및 기내(畿內) 여러 고을과 광주(廣州)·**화성(華城)** 등지에 우금(牛禁)이 해이해졌으니 엄히 신칙하여 금단하는 일입니다. 이는 반인(洋人)들이 간사한 백성과 부화뇌동(附和雷同)해서 그런 것이니, 도신과 수신(守臣)에게 각별히 징치(懲治)하여 기어이 금단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그 하나는, 남원(南原)의 유학(幼學) 최갑효(崔甲孝)과 창평(昌平)의 유학 정재면(鄭在勉)은 경서(經書)의 연구에 뜻을 두고 몸가짐이 신중하니 거두어 서용(敍用)하는 일이 있어야 한다는 일입니다. 그 하나는, 효자인 순창(淳昌)의 고 사인(故士人) 김광준(金光僞)·김광원(金光源) 형제와 장흥(長興)의 고 사인 윤주현(尹周顯), 곡성(谷城)의 고 사인 안효천(安孝天)

등 위 여러 사람의 특출한 행위는 정려(旌閭)하고 증직(贈職)하는 은전을 시행하기에 합당 하니 해조에서 품처하게 하는 일입니다. 모두 각 해조에서 품처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희한다고 답하였다.

司啓曰，卽見全羅左道暗行御史沈英錫別單，則其一，稅斂本有恒典，而郡縣謂以計版，添出猥瑣條目，一結所收，殆至百斗，又出防納名色，其率高於計版，而所斂悉歸吏橐，下等之稅，濫捧六斗，旱田之收，混同責米，亟令廟堂各邑所用三四年計版，都聚上送，商議存革，毋或踰越事也，捧稅濫雜之弊，已因右道繡衣別單，有所覆啓禁飭者，而計版之私自出率，而名色倍於元賦，防納之歲以爲常，而實結皆歸吏橐，下等之皆納六斗，旱田之混同收米，許多橫斂，不可但以濫捧言，供賦國之大政，而取於民有制，則一任么麼下吏之橫恣，使民生殷屎，國計哀痛者，是無法之國，而湖南一路，幾何不土崩而瓦解乎，使按道之臣，收聚各邑所謂計版者，親執查檢，定其規例，汰其冗濫，成出不刊之定制，務歸均一，毋得低仰，使民瞭然知當納之數，仍卽修報於掌賦衙門，以作京外憑準之資，其一，外邑契坊，弊近益甚，一邑之內，饒實之村，悉爲契坊，歲以收賂，使免賦斂，甚至有營契·官契·戶契之弊，嚴飭革罷事也，率土莫非王臣，而割爲邑屬之私有，非但簽丁之圖免，諸般應役，初不相干，甚至有營邑作契之說，爲營邑者不惟不能禁，乃從以效之，寧有如詐法紀乎，令出惟行之道，惟當一付之道臣，以此關飭，使之到底革罷後，形止登聞，如是之後，復有契坊二字之入聞於朝家，則先從道臣重勘之意分付，此弊諸路皆然，一體申飭，其一，民庫捧下，本有節目，而近以不當名色，新創節目，科外濫斂，民難支保，令廟堂列邑節目，及時行條例，收聚上送，爬櫛盤覈，劃一遵行事也，湖南民庫與西路有異，卽不過各邑之所私設，而始出於便宜防役之計，終歸於剝割罔利之科，既是朝家之所不知，則到今只當使之革罷而已，何可強議其定例，以損事面乎，令道臣亟思變通之策，以絕徵斂之路，其一，戶籍之受賂賣戶，近成痼弊，增減之際，奸吏舞弄，殘民受害，令道臣通執各邑戶摠之多寡，計其烟埃大者，家立一戶，次者二家一戶，次者三四家一戶，而有闕則令本里立代，著爲令甲事也，籍法不嚴，故軍丁之虛頤也，還簿之紊亂也，徭役之不均也，遷徙之無常也，皆由於此繡啓中，數年經理之論，儘得要領，分付道臣，預加商確，著爲令式，以爲待式年遵行之地，其一，己·甲以來陳荒居多，而民慮冒稅，尙不墾闢，許令限年停稅，募民入耕，且今隱結，歲增月衍，而仍爲掩覆，令道臣查陳覈隱，彼此相代事也，查陳一款，已因右道繡啓，有所稟處者，不必更論，而至於隱結之分排列邑，受其自首，有傷事面，決難議到，若於查陳之際，從實區別，則自有隱漏覈得之方，以此分付，其一，近來加留之法，尤爲還弊中惡習，方其春糶，吏皆受食，及至秋捧，民實替納，令廟堂議其釐革事也，加留之設，可謂無弊不有，而弊至於斯，誠末如何矣，不可不覈得用律，然後庶不至長其惡習，令道臣查出各邑中最猾者幾人，具格啓聞，其餘隨其所犯多寡，各別刑訊遠配，其一，湖南郡縣概多編小，而吏額則太多，自廟堂通執列邑，計其田摠，每二千結置吏十人，田少而戶多處，每二千戶置吏十人，孔路都會之地，量宜加定，田與戶俱未滿二千者，議其便宜，俾無太殘，每年派差之法，必爲革罷，永任責效，則謹愼自守，庶可矯弊事也，吏額本有各道定例，而前此屢飭，迄無實效，專由於營邑姑息之致，更爲行會，俾各依定例查汰，輪差雖曰有弊，久任亦必難便，置之，其一，營主人之弊，近益尤甚，營下之權吏豪胥，乃爲此役，而役價漸增，民斂無節，自今依他道例，令軍牢使令輩，買窠立役，而新增役價，竝行刪汰事也，既有前道臣所釐正者云，更加申嚴，俾爲永遵之意分付，無論吏胥奴令，苟能操切，不令貽弊，則固善矣，何必變通乃已乎，置之，其一，道臣巡歷時茶啖夫馬，極其汰侈，成一巨瘼，令廟堂議其裁省，監司新到後守令延命時，民弊亦多，自今申明舊法，使於本邑坐待巡到事也，行部時廚傳等節，道臣苟能存心除弊，則豈有法外張大之舉乎，此則不待提飭而宜各自勉，至於守令延命之或營或邑，隨其

事勢之便順而已，何必硬定法例乎，置之，其一，堂下守令之濫乘屋輜，草輜之翼帳高褰，在所嚴禁，令廟堂申飭，驛馬濫乘，弊近尤甚，自今監·兵·水營額內軍官，枚報兵曹，自兵曹關飭各驛，名不在報者，毋得給馬事也，堂下屋輜，非但守令之不可濫乘，雖使星亦有階品，而近來則全無防限，微官末職，各相效尤，視以爲常，此實等威不明之致，而馬政疲頓，職由於此，申飭道臣，使之一切禁斷濫騎之弊，繡啓所論，足可以祛其太甚，分付兵曹，依此施行，而此後則一依元事目，凡幕裨爲名者，非公幹雖本道內，毋得給馬之意，申明知委，仍卽行會諸道，一體舉行，其一，各邑保率之私自增簽，收其身布者，靡有限節，各樣保率之案，竝令本道收聚上送，商確釐正事也，已因右道繡啓，有所覆奏申飭者，不必更論，其一，水營戰船，膠粘沙泥，脫有不虞，一無可用，一遵先朝下教，以爲與漕船通用之地，惟龜·鵲等船，仍舊造置事也，各道戰船，膠粘不動，隨造隨腐，焉有陰雨之備，而疎虞若是者乎，年年修改，徒致松田之童濯，不出幾年，雖欲修改，而其如材不可得用何哉，戰漕通用之論，決知其有便而無礙，而因循未決，實爲識者之竊歎，今宜博採而變通，先令戰船所在各道道帥臣，具意見論理狀聞後，仍爲收議於戶·惠堂及諸將臣處，以爲稟處之地，其一，漁場鹽盆，興廢無常，而陳廢白徵，新起隱匿，爲弊極多，詳覈釐正事，令該司稟處事也，令該廳一從事目，詳覈釐正，其一，莞島折爾島，卽松田中大者，而今皆童濯，每年秋，發遣山澤司郎官，廉察論罪事也，松田摘奸，久廢不行，從當稟旨差遣，而爲先以先甲之意，關飭道帥臣處，使之惕念申禁，其一，兵營進上價米三百二十五石零，以大同米收捧於民結，而大同虧欠者，以還米充報，故米品粗劣，每石加入，恰爲半石，年年白徵，爲民切瘼，大同上納中三百二十五石，以儲置米例，除給本縣之意，令該司行會本道事也，分付該廳，從長措處，其一興陽縣，有竹島等三處，竹田隸于水營，每年伐去，今成荒田，而近令本縣來納，故每年三百餘兩，白徵民結，以防竹價，以左沿六七邑均敷，此役俾爲紓力事也，不毛之地，有此白徵，分付道臣，酌量變通，其一，水營還米，變爲牟租，多爲民弊，竝還作米，而九面民人，既受邑還，又受營還，被督倍甚，近邑四面，宜受邑還，近營五面，宜受營還，酌量知委之意，分付本道事也，餉米之還作本色，實合糴法，受還之各從附近，可除民弊，令道臣從長知委，其一，清州及畿內諸邑與廣州·華城等地，牛禁解弛，嚴飭禁斷事也，此是泮人符同奸民而然，令道臣守臣各別懲治，期於禁斷，其一，南原幼學崔甲孝·昌平幼學鄭在勉，有志窮經，持身謹飭，合有收用之道事也，其一，孝子淳昌故士人金光儒·金光源兄弟，長興故士人尹周顯，谷城故士人安孝天，上項諸人卓異之行，合施旌贈之典，令該曹稟處事也，竝令各該曹稟處何如，答曰，允。

<비변사등록 210책, 순조 22년 1822년 11월02일(음)>

경제/농수산업

水原府 校吏 등의 詢瘼 別單에 대해 방도를 稟處하게 하고 班戶의 耕作을 禁斷하라고 하다
○ 수원부 교리(水原府校吏) 등에게 폐단을 묻은 별단(別單)에 대하여, 영(令)하기를, “화성부(華城府)는 우리 선대왕(先大王)께서 경영하신 시작한 곳으로서 지난날 보살피고 애호한 바가 과연 어떠하였는가? 이 별단은 묘당에서 좋은 쪽으로 품쳐하여 실효가 있게 하라. 서북에 둔전에 있어서는 경영하신 바가 화성부의 양식을 넉넉하게 하는 도리를 위해서였는데, 양반의 가호(家戶)에서 널리 차지하여 폐단을 일으킨 것은 진실로 매우 놀랍고 한탄스럽다. 지금 이후로는 양반의 가호는 일체 금지하고 오직 상민(常民)과 장리(將吏)·졸예(卒隸)에게 경작을 허락하는 뜻을 절목을 만들어 시행하도록 화성유수(華城留守)에게 분부하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以水原府校吏等詢瘼別單，令曰，華城一府，卽我先大王經始之地，而昔日之顧恤愛護，果何

如，此別單，自廟堂從長稟處，俾有實效，至於西北屯設 始，卽爲一府裕食之道，則班戶之廣占作弊者，誠極 駭惋，從今以後，班戶則一切禁斷，惟以常民與將吏 卒隸，許其耕作之意，成節目施行事，分付華城留守 處可也.

<비변사등록 216책, 순조 28년 1828년 03월12일(음)>

경제/농수산업

水原府 校吏 등의 詢癘에 대해 回啓하다

비변사에서 달(達)하기를, “수원부 교리(水原府校吏) 등에게 폐막을 물은 별단(別單)에 대한 관부(判付) 내에, ‘화성부(華城府)는 우리 선대왕(先大王)께서 경영하신 곳인데 지난날 보살피고 애호한 바가 과연 어떠하였는가? 이 별단은 묘당에서 좋은 방향으로 품처하여 실효가 있게 하라. 서북에 둔전을 설치한 것은 화성부의 양식을 넉넉하게 하려는 뜻에서였는데, 양반의 가호(家戶)에서 널리 차지하여 폐단을 일으키는 것은 진실로 매우 놀랍고 한탄스럽다. 지금 이후로는 양반의 가호는 일체 금지하고 오직 상민과 장리(將吏)·졸예(卒隸)에게만 경작을 허락하는 뜻으로 절목을 만들어 시행하도록 화성유수(華城留守)에게 분부하는 것이 좋겠다.’ 고 영을 내리셨습니다. 그 별단을 보니, 그 하나는, 평신진(平薪鎭)의 군전(軍錢)과 토세(土稅)는 본부(本府)의 첨사(僉使)에게 소속되었으니, 각도(各道)와 각영(各營)의 사례에 따라 본부에서 자백(自辟)하도록 하는 일입니다. 해진(該鎭)이 본부에 소속되었다고 하여 자백으로 하는 것은 비단 일이 관방(官方)에 관계될 뿐 아니라 이곳은 호서의 독진(獨鎭)이므로 사체가 줄지에 의논할 수 없으니, 덮어두어야 하겠습니다. 그 하나는, 풍도(楓島)는 인민(人民)은 본래부터 본부에 소속되었고 토세는 남양(南陽)의 대부 목관(大阜牧官)이 거두어들였는데, 세금 납부는 증가하고 섬의 백성들은 점점 흩어져서 조선(漕船)과 세선(稅船)을 호송해야 할 곳이 장차 텅 비게 될 우려가 있으니, 지금부터 본 섬의 토세도 본부에 소속시켜서 섬의 백성들을 정착시키도록 하는 일입니다. 그 섬의 토세를 애초에 정한 것은 피곡(皮穀) 5~6석 이라고 하였는데, 나중에는 첨가되어 그 수량이 몇 곱절이 되었다고 합니다. 5~6석에서 몇 곱절이 되었다고 해도, 모두 합한 수량은 10여 석 안팎에 지나지 않으니, 섬의 백성들이 점차 흩어지게 된 것이 말이 혹 실상을 지나친 듯하고 또 수량도 매우 적으니 역시 덮어두어야 하겠습니다. 그 하나는, 건보고(鑷補庫)의 돈 2천냥을 을사년(乙巳年:정조9, 1785)부터 빚으로 놓아 장리(將吏)에게서 이식(利殖)을 취하였는데, 40여 년 사이에 사람이 흩어지거나 죽은 것이 많아 귀록(鬼錄:허위 기록)이 되어 이웃과 친족에게 침징하였는데 폐단이 굳어 고치기가 어려우니, 위 항목의 본전(本錢)은 신사년(辛巳年:순조21, 1821)의 사례에 따라 탕감하고, 이식조도 좋은 방편으로 급대(給代)해달라는 일입니다. 본고(本庫)의 식리(殖利)는 전에 빌려준 것은 이미 귀록이 되었고, 마땅히 거두어들여야 할 것은 매번 침징을 하니 아전과 백성이 지탱하기 어려울 것은 사세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빚을 탕감하고 급대하는 것도 가볍게 논의할 바가 아니니, 수신(守臣)에게 좋은 방향으로 논보하게 하여 다시 품처해야 하겠습니다. 그 하나는, 본부(本府)에 각전(各廳)을 설치한 것은 주민들을 위하는 성덕(盛德)에서 나온 것이나 만근에는 쇠잔하여 전포는 비고 사람은 흩어져서 안도하게 할 대책이 없기 때문에 바야흐로 생저(生苴:생모시)를 사들여 표백(漂白)을 하여 경전(京塵)과 난전(亂塵)에 팔고 있는데 특별히 금지하지 않음으로써 화성 백성들의 생업에 일조가 되게 해달라는 일입니다. 생저를 표백하는 일은 본래 경전 백성들의 생계 수단이었는데, 여기에서 뺏아서 저기에 주는 것은 비단 일의 체모에 장애가 될 뿐 아니라 일시(一視:똑같이 대함)의 정사(政事)로서도 가볍게 허락할 수

없으니, 덮어두어야 하겠습니다. 서북의 둔전에서 양반의 가호(家戶)가 폐단을 일으키는 일에 대해서는 관하(判下)하신 영지(永旨)가 엄중할 뿐 아니라, 이미 본사에서 해부(該府)에 관문(關文)을 보냈습니다. 절목(節目)을 만들어 거행한 다음에 상황을 곧바로 장달하라는 뜻으로 수신에게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그리하라고 답하였다.

司達曰，水原府校吏等詢癘別單，判付內，華城一府，卽我先大王經始之地，而昔日之顧恤愛護，果何如，此別單，自廟堂從長稟處，俾有實效，至於西北屯設始，卽爲一府裕食之道，則班戶之廣占作弊者，誠極駭惋，從今以後，班戶則一切禁斷，惟以常民與將吏卒隸，許其耕作之意，成節目施行事，分付華城留守處可也事令下矣，取見其別單，則其一，平薪鎮軍錢土稅，旣屬本府僉使，亦依各道各營例，許令本府自辟事也，該鎮之屬之本府，作爲自辟，非但事係官方，且是湖西獨鎮，則事體不可遽議置之，其一，楓島人民，則自來屬之本府，土稅則自南陽大阜牧官收捧，而稅納增加，島民漸散，漕稅船護送之地，將有空虛之慮，自今本島土稅，亦屬本府，以爲島民奠接之地事也，該島土稅之當初定稅，謂之皮穀五六石，而末乃添加，厥數倍蓰云，倍蓰於五六石，則都數不過爲十餘石內外，島民之漸至渙散者，言或過實，且數爻極其零星，亦爲置之，其一，蠲補庫錢二千兩，自乙巳放債，取殖於將吏，而四十餘年之間，人多散亡，便成鬼錄，侵隣侵族，弊痼難醫，上項本錢，依辛巳年例蕩減，利條亦爲從長給代事也，本庫殖利前貸，已成鬼錄，當捧每患侵徵，吏民難支，勢所使然，而至於蕩債給代，亦非輕議，令守臣從長論報，更爲稟處，其一，本府各廬設始，蓋出於爲居民之盛德，而挽近凋殘，廬空人散，奠接沒策，方營貿取生苧曝白，以賣京廬亂廬，特許勿禁，以爲華民生利之一助事也，生苧曝白事，自是京廬民聊賴之資，則奪此與彼，非但有礙事面，一視之政，不可輕許置之，至於西北屯之班戶作弊，判下令旨，不啻嚴重，已自本司行關該府矣，成節目舉行後，形止，卽爲狀達之意，分付守臣處何如，答曰，依。

<비변사등록 216책, 순조 28년 1828년 03월18일(음)>

(5) 건설

경제/건설

振威와 水原에 涼房을 짓게 분부할 것을 청하다

아뢰기를, "방금 경기감사 김수흥(金壽興)이 급히 아뢴 사연(辭緣)을 보니 진위(振威)와 수원(水原)의 관사(官舍)가 환궁(還宮)하실 때 그대로 거처하시기엔 불편하므로 양방(涼房)을 더 짓겠다고 하였습니다. 이른바 양방이란 그 양식이 어떻게 된 것인지 자세히 알 수는 없으나 기왕 거처하시기엔 불편하다면 사소한 민폐(民弊)는 돌보지 않을 수도 있으니 장계대로 환궁하시기 전에 주선하여 만들라고 분부함이 어떻겠습니까?"하였다.

啓曰，即接京畿監司金壽興馳啓之辭，則以振威水原館宇還宮時，不便仍御之，故料理添造涼房云，所謂涼房，雖未詳知其制度之如何，既不便於臨御，則些少民弊，有不可顧，依狀啓，趨還宮前，料理添造之意，分付舉行，何如。

<비변사등록 25책, 현종 6년 1665년 04월21일(음)>

경제/건설

水原과 振威의 客舍에 涼房을 덧붙이는 일을 청하다

정원에서 아뢰기를, "경기감사 장계에 수원(水原)과 진위(振威) 두 고을 객사(客舍)에 양방(涼房)을 덧붙여 만드는 일로써 비국(備局)에서 초기(草記)로 아뢰어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데 전지(傳旨)를 내리시지 않았습시다."하니, 전교하기를, "더 만드는 일은 절대 할 수 없다. 장막으로 막을 곳을 칸막이로 가리면 된다."하였다.

政院啓曰，以京畿監司狀啓，水原振威兩邑客舍涼房添造事，備局草記，未下取稟，傳曰，添造，切不可爲，以帳障，蔽處障子爲之可也。

<비변사등록 25책, 현종 6년 1665년 04월24일(음)>

경제/건설

京畿監司 徐有防이 彌勒堂에 院을 설치할 것을 건의하다

○ 이번 7월 13일 경기감사가 입시하였을 때에 경기감사 서유방(徐有防)이 아뢰기를, “원소(園所)를 이미 수원(水原)에다 정하였습니다. 이 뒤로 행행하실 때에 주정소(晝停所)는 의당 미륵당참(彌勒堂站)에다 하여야 할 것입니다. 신이 삼가 경기 읍지(京畿邑誌)를 상고해 보니 여주(驪州) 영릉(寧陵:효종과 왕비 장씨(張氏)의 능침)을 천봉(薦奉)한 뒤에 행궁(行宮)을 따로 이천 읍중(利川邑中)에다 두었는데 바로 우사관(于斯館)이 그것입니다. 지금도 이 예대로 미륵당의 빈자리에다 하나의 원(院)을 설치하는 것이 사의(事宜)에 합당하겠기에 감히 양달하옵니다.” 하니, 임금이 그리하라 하였다.

今七月十三日京畿監司入侍時，京畿監司徐有防所啓，園所已定於水原矣，此後幸行時，晝停所當於彌勒堂站爲之矣，臣謹考畿營邑誌，則驪州寧陵遷奉後，伊時別置行宮於利川邑中，卽于斯館是也，今亦依此例，就彌勒堂空曠處，設置一院，恐合事宜，故敢此仰達矣，上曰，依爲之。

<비변사등록 175책, 정조 13년 1789년 07월 16일(음)>

경제/건설

京畿監司 徐有防이 水原府 客舍의 설립에 필요한 木手 등을 調發하는 문제에 대해 논의하다

○ 이번 7월 25일 좌승지와 경기감사 서유방(徐有防)이 아뢰기를, “수원(水原)의 새로 읍

긴 읍치(邑治)에 새로 지은 관해(館廨)는 일후 행행하실 때에 주필(駐蹕)하실 곳이니 사체가 자별하나 본부(本府)에는 공장(工匠)이 적을 뿐더러 기내(畿內)에서도 끌어다가 쓰기가 어려우므로 영건하는 일을 제때에 대지 못하겠습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양도(兩道)와 호서(湖西)의 본부와 접경(接境)한 고을의 목수(木手)나 석수(石手)를 다과(多寡)는 막론하고 조발(調發)하는 대로 색리(色吏)를 차정(差定)하여 성화같이 데리고 와서 본부에 인계하여 조속히 일을 마치게 하는 것이 좋겠기에 감히 앙달하옵니다.” 하니, 임금의 그리하라 하였다.

今七月二十五日, 左承旨與京畿監司入侍時京畿監司徐有防所 啓, 水原移邑之新建館廨, 係是日後行幸時駐蹕 之地, 則事體自別, 而本府既旣匠工, 畿內又難推移, 修繕之役, 無以及時, 臣意則兩都及湖西接界邑木 手石手, 無論多少, 隨其起送, 定色吏, 星火領付於本 府, 使之趁卽竣役似好, 故敢此仰達矣, 上曰, 依 爲之.

<비변사등록 175책, 정조 13년 1789년 07월 25일(음)>

경제/건설

園所에 植木하는 등의 役事에 드는 物力을 園官의 差員과 지방관에게 區劃하게 하다

전교하기를, “이번 원소(園所)에 식목(植木)하는 역사(役事)에 들어가는 물력을 먼저 원관(園官)의 차원(差員)과 지방관에게 구획하게 하지 않을 수 없으니 본부(府) 혹은 인근의 읍에서 선혜청에 당연히 내어야 할 돈 중에서 1천 냥에 한하고, 쌀 1천 석에 한하여 제(際)해서 본부에 머물러 둔 것은 본 부사로 하여금 알맞은 것을 헤아려 역소(役所)에 나눠주고, 부족하면 별단으로 아뢰고 나머지 또한 이것에 준하며, 열읍(列邑)의 식목은 절대로 민간에 폐를 끼치지 말고, 사역하는 관예(官隸)는 수원부사(水原府使)가 그 명수(名數)를 보고 주어야 할 양식이면 양식을 주어 각각 해 읍의 공곡(公穀)을 회감(會減)하여 작년 겨울 식목할 때에 비록 민폐를 없게 했으나 오히려 또 있었는데 금년에 어찌 조금이라도 느슨하지 않을 것이라고 알겠는가? 묘당에서 조사(措辭)하여 해 도백과 해 부사에게 엄히 신칙하게 하고, 해 부사는 도차사원(都差使員)과 다름이 없으니 열읍에 폐를 끼치는지 여부를 각별하게 살펴서 크면 장문하고 작으면 스스로 판단해서 과치(科治)하며, 식목한 곳에 기표(記標)도 또한 작년의 예대로 하여 근만(勤慢)을 살피는 바탕을 삼게 하라. 아울러 내년 봄에 행행(行幸)할 때에 친심(親審)하고자 하니 이 뜻을 알고 벽돌을 정리해서 깔고 벽토(壁土)도 수습(修葺)하며, 갈현(葛峴)에 흙을 메우고 사토(莎土)를 보충하는 것도 모두 이것으로 구획하며, 전곡(錢穀)을 우선 분배하여 가져다 쓰라고 원관이 알게 하고, 이 전교를 가지고 정원(政院)에서도 또한 즉시 해 부사에게 유지를 만들어 보내고, 이어 또 원관에게도 베껴 보내라.” 하였다.

傳曰, 今番園所植木等役事所入物力, 不可不 先爲區劃於園官差員及地方官處, 以本府或隣 近邑, 惠廳當納錢中, 限一千兩, 米限一千石, 除留本府, 令本府使, 量宜分劃役所, 不足則以別單陳聞, 餘 亦準此, 列邑植木, 切勿貽弊民間, 而使役用官隸, 水原府使觀其名數, 當給糧者給糧, 以各該邑公穀會 減, 昨冬植木, 雖除民弊, 猶且有之, 今年安知不稍弛, 令廟堂, 措辭嚴飭該道伯及該府使處, 該府使無異 都差使員, 列邑貽弊與否, 各別審察, 大則狀聞, 小則 自斷科治, 植木處記標, 亦依昨年例, 以爲考勤慢之 地, 兼欲親審於開春行幸時, 此意知悉, 磚石整鋪, 壁 土修葺, 葛峴填土補莎, 皆以此區劃, 錢穀先爲分排 取用事, 與園官知悉, 此傳教, 自政院, 亦卽成送有 旨於該府使, 仍又謄送園官處.

<비변사등록 177책, 정조 14년 1790년 10월 04일(음)>

경제/건설

도로를 조금만 닦고 山城의 도로를 예비조로 닦는 일은 절대 하지 말라고 전교하다

○ 전교하기를, “이번에는 도로를 조금씩 닦으라. 산성의 도로를 혹 예비조(豫備條)로 닦는 일은 절대 하지 말라고 분부하라. 과천(果川)과 수원(水原) 행궁의 수리는 모두 정례와 연한이 있으니 아무리 종이 한 장이라도 새로 바르는 일이 있으면 지방관은 중벌을 면치 못할 것이다. 이를 속히 엄중 신칙하라고 경기감영에 분부하라. 또 지의(地衣) 등에 대해 들으니 역시 새로 준비한다는 말이 있는데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조금이라도 정례를 어기면 도백도 아울러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니 모두 엄중 신칙하라. 호조와 경궁(京貢) 물품을 막론하고 정례 외에 예비조로 가지고 가는 일이 있으면 별도로 사람을 보내 적간하여 드러나는 대로 엄중히 다스리겠다고 묘당에서 각별히 엄중 신칙하게 하라.” 하였다.

傳曰, 今番治道, 略略爲之, 至於山城道路, 則或以 預備條修治, 切勿爲之事分付, 果川·水原行宮修理, 皆有定例, 年限雖一張紙有新塗之事, 則地方官, 難免重勘, 此意星火嚴飭事, 分付畿營, 且聞地衣等事, 亦有新備之說, 無論巨細, 若有一毫違越於定例, 竝與道伯, 難免其責, 一體嚴飭, 無論戶曹與京貢進排 物種, 若有定例外, 以預備條持去之事, 則別遣摘奸, 隨現重繩, 令廟堂各別嚴飭.

<비변사등록 178책, 정조 15년 1791년 01월 07(음)>

경제/건설

水原府使 金思穆의 狀請대로 시행할 것을 廟堂에서 즉시 行會하라고 전교하다

수원 부사 김사목(金思穆)의 장계에 원소(園所)에 심을 나무와 흙을 보충하며 건축하는 등의 공사에 들어가는 물력을 본부(本府)의 대동미(大同米)에서 획급할 것을 묘당에게 품처하도록 할 것에 대하여 전교하기를, “장청대로 시행할 것을 묘당에서 즉시 행회(行會)하도록 하라.” 하였다.

以水原府使金思穆狀啓, 園所植木, 補土營建等役事物力, 以本府大同米許劃, 令廟堂稟處事, 傳曰, 依狀請施行事, 令廟堂卽爲行會.

<비변사등록 178책, 정조 15년 1791년 03월 21일(음)>

경제/건설

訓練大將 趙心泰가 植木의 일로 자리를 비우니 그 職任을 摠察하는 문제에 대해 논의하다

이번 2월 17일 우승지가 입시하였을 때에 우승지 이만수(李晩秀)가 아뢰기를, “훈련대장 조심태(趙心泰)가 식목(植木)을 검칙(檢飭)하는 일로 수원(水原)으로 떠납니다. 차고 있는 명소(命召) 및 겸대우변포도대장(兼帶右邊捕盜大將)의 명소대장패(命召大將牌)·전령패(傳令牌)를 어찌 해야 하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대로 차고 왕래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이만수가 말하기를, “군대를 거느리는 직임은 총찰(總察)하는 사람이 없어서는 안 되니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도제조가 총찰하고 종사관(從使官)에게 발패(發牌)하여 전교를 듣게 하라. 포장(捕將)은 타변(他邊) 대장을 패초하여 겸찰(兼察)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今二月十七日右承旨入侍時, 右承旨李晩秀所啓, 訓練大將趙心泰, 植木檢飭事, 水原進去矣, 所佩命召及兼帶右邊捕盜大將, 命召大將牌·傳令牌, 何以爲之乎, 上曰, 仍佩往來可也, 晩秀

曰, 將兵之任, 不可無摠察之人, 何以爲之乎, 上曰, 都提調摠察, 從事官發牌聽傳教, 捕將則他邊大將, 牌招兼察可也.

<비변사등록 180책, 정조 16년 1792년 02월 17일(음)>

경제/건설

전 水原府使 趙心泰가 園所에 나무를 심고 흙을 보충하는 문제 등을 논의하다

○ 2월 17일 승지가 입시하고 전 수원부사가 함께 입시하였을 때 전 수원부사 조심태(趙心泰)가 아뢰기를, “원소(園所) 식목(植木)에 8읍의 민정(民丁)에게 이수(里數)를 한하여 사역케 하라고 비로소 성명(成命)이 있었습니다. 신이 본 읍에 근무하면서 2년 동안 거행하면서 각 읍 수령들이 모두 거느리고 나아와서 반드시 몸소 신칙하여 힘을 다하지 않는 자가 없었습니다. 다만 감색(監色)이 나무 심는 법에 어두웠고 백성들이 미봉책에 버릇이 되어 혹은 유명무실한 한탄이 없지 않았습니니다. 이번에는 경영(京營)의 장교 중에서 나무 심기에 익숙한 자들을 큰 읍은 2명, 작은 읍은 1명씩 골라 8읍으로 나누어 보내고 지역 담당을 나누어 주어 감독하게 할 것입니다. 수목(樹木)을 채납하는 중에 잡목이 뿌리가 상한 것과 소나무에 흙이 붙지 않은 것은 일일이 조사하여 가장 애쓰지 않은 자는 차사원에게 잡아 보내어 경중에 따라 징치(懲治)해야 할 것입니다. 또 혹은 여러 날 다수 인원이 부역하여 어지러이 심으면 한두 명의 경교(京校)가 두루 살펴 다 검사하기에 어려움이 있을까 우려되니 매일 역정(役丁)들을 많거나 적지 않게 하여 적절함을 헤아려 분배하고, 해당 읍 수령과 경교가 해당 읍 감색과 아울러 거의 심은 그루마다 직접 신칙한 후에 실제 효과를 책임지게 할 수 있을 것이고, 이와 같이 한 뒤에야 나무 심기를 마치게 될 것입니다. 만일 말라 파손되는 것이 많이 있으면 동척한 경교, 당해 읍 감색을 무거운 죄를 따라 다스린다는 뜻을 지역 담당을 나누어 주는 날에 차사원 및 각 당해 수령에게 면전에서 신칙하고 과조를 엄히 세워야 일에 적의하게 될 것입니다. 변장(邊將)과 차원(差員)에 있어서는 전부터 고군(雇軍)으로 나무를 심었으니 지금 역시 이 규례에 의하여 국내(局內)의 긴요한 곳은 따질 것 없이 새 종자를 보태 심되 그들에게 편한 대로 거행하게 하고, 들어가는 고가(雇價)는 어느 항목의 전(錢) 중에서 들어가는 대로 지급한 이후에 전체 수효를 회감할 것을 현임 부사에게 알게 하십시오. 원관(園官)은 소속 원군(園軍)으로 역시 지역을 나누어 주어 심게 하여 실제 부역을 하게 하고, 역군의 양식은 매일 2되씩 화소(火巢) 안의 도지조(賭地條)로 날을 헤아려 지급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화소를 홍범산(洪範山)의 잔디가 많이 벗겨진 곳에 더 정하고 혹은 기장을 파종하며 혹은 풀 종류를 파종하여 덮는 방도로 할 것은 늦출 수 없습니다. 기장을 심는 것은 기백(畿伯)과 상의하여 들어가는 대로 취해 쓰고 풀 종류는 현임 부사에게 경내에서 후한 값으로 사서 쓰게 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또 회목(檜木)을 벌채하여 운반하는 것으로 말하면 지금 삼군문(三軍門)에서 장줄을 택정하여 벌채를 감독하며 운반을 감독하고 운반해 간 뒤에 차사원 등이 그 심을 지역을 헤아려 당해 장교와 합동으로 일일이 심는 것을 감독하는 것이 또한 방편이 되겠습니다. 독산산성(禿山山城)에 있어서는 이 금양(禁養)한 외에 아직도 한 그루 나무도 배양한 것이 없습니다. 이와 같이 연기되면 어느 때에 모양을 이루게 될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산성에 부친 일면(一面)의 민정(民丁)을 중군(中軍)에게 획급하여 그에게 심는 것을 전념하게 하고 노력하여 거행하게 하는 것은 그 만들 수 없을 듯합니다. 흙을 보충한 곳은 지난여름 이후로 대략 집탈(執頻:탈을 잡음)한 것이 있어서 형세가 이번 봄에 완전히 보수해야 하는데 들어가는 공석(空石)이 반드시 적지 않을 것이니 기영(畿營)에서 들어가는 대로 진배(進排)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이어서

생각건대 식목한 이후에 각 분담 지역에 따라 패목(牌木)을 나누어 세워 당해 수령 및 감동(監董) 장교와 관리 성명을 나열해 써서 뒷날 근만을 살피게 하는 것이 이미 근례(近例)가 되어서 지금 역시 이에 의거하여 거행할 것입니다. 다만 상실(橡實)·송자(松子)는 전후로 파종할 때에 엄히 신칙하지 않은 것은 아니나 늘 성급하게 요당(了當:종결)하는 버릇이 있어 반드시 정밀하지 못하여 잡스러운 폐단이 있을 것이어서 진실로 안타깝거늘 더구나 송자의 파종은 매우 다름이 있는 것이겠습니까? 금번은 날씨가 혹은 오래 걸리더라도 반드시 정밀함으로 위주로 하여 각각 경계를 나누어주고 파종한 뒤에 패를 꽃아 표지하고 묘목의 다과를 따라 능한지 여부와 상벌을 살필 자료로 하면 반드시 각자 노력하여 이를 효과를 책임지울 수 있습니다. 위 항목의 여러 조목은 한꺼번에 거조(舉條)를 내어 신칙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그리하라. 묘당에서 즉시 제도에 분부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今二月十七日承旨入侍, 前水原府使同爲入侍時, 前水原府使趙心泰所啓, 園所植木, 八邑民丁, 限里使役事, 纔有成命矣, 臣待罪本邑, 兩年舉行, 而各邑守令, 俱爲領赴, 必也躬飭, 靡不用極, 但監色, 昧於種法, 民人狃於彌縫, 或不無有名無實之歎, 今番則京營將校中, 慣於種植者, 大邑二名, 小邑一名, 另擇分送於八邑, 分授地界, 使之董飭, 樹木採納中雜木之傷根蒂者, 松木之不戴土者, 一一照檢, 最所不勤之類, 捉送差使員, 以爲從輕重懲治之地, 而且或慮曠日, 多數付役, 雜亂種植, 則一二京校, 有難遍察摠檢, 每日役丁, 無濫無略, 量宜分排, 該邑守令及京校, 竝該邑監色, 幾乎逐株躬飭, 然後庶責實效, 而如是之後, 畢竟樹木, 若有枯損之居多, 則董飭京校, 該邑監色, 從重勘繩之意, 定界分授之日, 差使員及各該守令, 面面申飭, 嚴立科條, 恐合事宜, 至於邊將差員, 自前雇軍種植矣, 今亦依此例, 局內緊要處, 無論補植新種, 使之從便舉行, 而所入雇價, 某樣錢中, 隨所入上下後, 都數會減事, 知委於時府使, 而園官則以所屬園軍, 亦當分授種植實役, 役軍糧米, 每日二升式, 以火巢內賭地條, 計日上下似好, 加定火巢洪範山, 多有莎脫處, 而或播稷, 或播草種, 以爲掩覆之道者, 不可緩矣, 稷種, 與畿伯相議, 隨所入取用, 草種使時府使, 就境內厚價買用, 爲宜, 且以檜木採運言之, 今方自三軍門, 擇定將卒, 監採監運, 而及其運去之後, 差使員等, 量其可種地界, 眼同該校, 一一監植, 亦涉方便, 至於禿山山城, 自是外禁養, 而尙無一枝木培養者, 如是延拖, 未知何時成樣, 山城所付一面民丁, 劃給中軍, 使之全意種植, 着力舉行, 恐不可已矣, 補土處昨夏以後, 略有執頃者, 勢將趁今春完補, 而所入空石, 必將不些, 自畿營從所入進排爲宜矣, 仍伏念植木之後, 各隨地界分植牌木, 列書該守令及監董校吏姓名, 俾考日後勤慢者, 已成近例, 今亦依此舉行, 而但橡實·松子, 前後播種之時, 非不嚴飭, 而每有卒卒了當之習, 必致不精雜亂之弊, 固已悚悶, 況松子播種, 大有異焉, 今番則雖或曠費日字, 必也以精爲主, 各分經界播種後, 插牌標識, 隨立苗多寡, 以爲考能否賞罰之地, 則必當各自努力, 可責成效, 上項諸條, 一做出舉條申飭何如, 上曰, 依爲之, 令廟堂卽爲分付該道可也.

<비변사등록 180책, 정조 16년 1792년 02월 17일(음)>

경제/건설

訓練大將 趙心泰는 水原의 植木을 살피러 내려갈 때 牌를 그대로 차고 왕래하라고 전교하다
○ 전교하기를, “훈련대장 조심태(趙心泰)가 수원(水原)에 식목(植木)을 살피볼 일로 내려갈 때에 그대로 패(牌)를 차고 왕래하게 하고, 훈국은 도제조가 총찰하고 포장(捕將)은 타변(他邊) 대장이 겸찰(兼察)하게 하라.” 하였다.

傳曰, 訓練大將趙心泰, 水原植木看審次下去時, 仍佩往來, 訓局則都提調摠察, 捕將則他邊大

將兼.

<비변사등록 180책, 정조 16년 1792년 03월 08일(음)>

경제/건설

水原府使의 장계대로 園所 石橋 공사의 監董裨將은 加資하고 읍교 등에게 施賞하라고 하다 수원부사 이경무(李敬懋)의 장계에 원소(園所) 석교(石橋:돌다리) 공사를 준공한 일에 대하여 전교하기를, “감동 비장(監董裨將) 전 부사 윤수묵(尹守默)은 가자하고 차사원 등은 논상을 서둘러라. 읍교(邑校)를 물론하고 가선대부 이원영(李元榮)·황계청(黃啓淸), 절충장군 황치욱(黃致郁)·문세준(文世俊)은 상을 더하고, 훈국 장교 김흥택(金興澤)은 당해 아문에게 승차(陞差)하여 수용하도록 하고, 석공(石工) 10명은 판하(判下)에 의하여 호조에게 시상하도록 하라. 이것으로 기백(畿伯) 및 본 부사에게 하유하도록 하라. 들어가는 물력(物力)은 본부(本府)에 납부하는 결전(結錢) 중에서 지급할 것을 묘당에서 행회하도록 하라.” 하였다.

以水原府使李敬懋狀啓, 園所石橋工役告成事, 傳曰, 監董裨將前府使尹守默加資, 差使員等論賞屬耳, 勿論邑校, 嘉善李元榮·黃啓淸, 折衝黃致郁·文世俊賞加, 訓局將校金興澤, 令該衙門陞差收用, 石工十名, 依判下令戶曹施賞, 以此下諭于畿伯及本府使處, 所入物力, 以本府納結錢中上下事, 令廟堂行會.

<비변사등록 180책, 정조 16년 1792년 04월 11일(음)>

경제/건설

水原府에 闕里社를 짓는데 드는 物力을 變通해 줄 것을 청하다

비변사에서 아뢰기를, “곧 수원유수(水源留守) 채제공(蔡濟恭)의 장계를 보니 말하기를 ‘궐리사(闕里祠)를 영건(營建)한 고유를 마쳤는데 들어간 물력은 경기 감영에서 구획이 없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신의 영(營)에서 제반 상납할 전미(錢米)를 옮겨서 용하(用下)하여 돈이 1천 8백 40냥이고 쌀이 12석 영이 되어 유사(攸司)에게 처리하게 하소서.’ 하였습니다. 본부(本府)는 창설된 초기이어서 이러한 물력을 마련해 낼 길이 없어 형세가 장차 다른 데서 구쳐해야 합니다. 이미 경상납조(京上納條)를 우선 취용하였으니 빨리 마련한 뒤에야 장애가 될 단서가 없을 것입니다. 영남의 모작조(耗作條) 중에 2천 냡을 한정하여 획급하여 대신 보충하도록 하고, 나머지가 있으면 회록(會錄)해서 모작전(耗作錢)을 일전에 도계(道啓)로 인하여 가을을 기다려 상납하도록 허락하였습니다. 우선 진휼청 창고에 남은 돈을 이 수효대로 본부에 수송하고 영남의 돈은 가을을 기다려 당해 청(廳)에 직접 납부하도록 당해 청과 당해 도에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답하였다.

司啓曰, 卽見水原留守蔡狀啓, 則以爲, 闕里祠營建告訖, 而所入物力, 自畿營無區劃之事, 故不得已以臣營諸般上納錢米推移用下, 而錢爲一千八百四十兩, 米爲十二石零, 令攸司區處爲辭矣, 本府係是草創, 此等物力措辦無路, 勢將從他區處, 而既以京上納條先爲取用, 則趁卽拮据然後, 可無掣礙之端, 嶺南耗作條中, 限二千兩許劃, 以爲充代之地, 如有零餘, 使之會錄, 而耗作錢頃因道啓, 許令待秋上納矣, 先以賑廳留庫錢, 依此數輸送本府, 嶺南錢則待秋直納該廳事, 分付該廳及該道何如, 答曰, 允.

<비변사등록 181책, 정조 17년 1793년 05월 12일(음)>

경제/건설

華城 築城에 백성을 使役하는 일에 右議政 李秉模 등이 견해를 아뢰다

○ 비변사 계사에 우의정 이병모(李秉模)가 아뢰기를 **화성성역(華城城役)**도 의례 백성을 사역 하는 일로 비지(批旨)안에, “이 사리를 역시 어찌 모르겠는가. 무릇 성왕(聖王)의 정사란 사람을 사랑하면서 백성을 활용할 뿐인데 사랑한다고 해서 노역을 하지 않을 수 있겠나?. 부리는데 적절한 시기면 옳은 것이다. 하물며 지금 은혜를 다하고 아끼기도 극진한데 세속의 폐단과 완악한 습성이 오늘의 양상에 말미암았으니 현재를 교정함은, 이 역사에 백성을 사역하는 것을 하필 미루는 것은 일찍이 조심한 바는 대민(大民). 소민(小民)으로 하여금 먼저 조심스럽게 여긴 본의(本意)를 알게 하고져 함이었다. 경이 누누이 역청(力請)한 것을 비변사에서 넓이 물어서 초기함이 옳다는 것을 명하였습니다. 하교에 의해 대신과 여러 재상들에게 물었더니 영중추부사 **채제공(蔡濟恭)**은 말하기를,

“나라에 큰 역사가 있으면 반드시 백성을 활용하는데, 다만 많은 인력이 아니면 역사를 완수할 수 없고, 또한 백성으로 하여금 사소한 것에서 근본에 이르고, 부모를 섬기는 것에서 충성으로 옮기는 뜻을 알게 하고자 함입니다. 신이 지난날 경연중(經筵中)에 **화성** 성역을 그만 둘 수 없으므로 백성을 활용하고자 진언한 것도 이것이 어찌 단지 경비를 근심해서 나온 것이겠습니까? 다만 축성역사를 시작하는 초기에 먼저 백성을 활용하는 절목을 마련해 제도에 반포하고, 차제에 조발해 부역케 한다면 백성들 또한 당연히 여겨 원근(遠近)을 논할 것 없이 반드시 스스로 달려오기에 겨를이 없으리라 생각했는데, 지금은 역사를 시작한 지 마침 반년이 되었고, 조정에서 품삯을 주어 활용하고 있는데, 조정에서 품삯을 주어 활용하는 것은 귀가 있는 자, 듣지 못한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이제 장차 1년이 되어가는 마당에 다시 백성을 활용하는 것으로 반령(頒令)해서 멀지 않는 도의 백성들이 양식을 싸가지고 부역하게 되면 서로를 결눈질 하며 놀라워하지 않는다고 어찌 알겠습니까?

신의 생각으로는 백성을 사역시키는 것은 굳이 그만둘 수 없는 정사이지만 만약 이것이 먼 도에까지 미치면 비록 열읍 수령이 모두 강명해서 가가호호의 장정을 상실(喪失)하게 핵실하고 이졸들의 간폐를 엄하게 막더라도 장정된 사람은 왕래에 소요되는 양식과 머무르는 비용이 진실로 적지 않을 것입니다. 하물며 수령이 모두 강명치 못하고 호정(戶丁)의 존발(存拔)과 이졸들의 농간치는 것을 모두 구찰(鉤察)하지 못한다면 양식을 마련하는 비용 외에도 폐단이 되는 근원이 또 장차 얼마나 되겠습니까?

생각이 여기에 미치니 먼 도의 장정은 한결같이 부역에 징발하는 것이 어려울 듯 합니다. 오직 기내(畿內)는 **화성**과 더불어 같은 도이고 도리(道里)로 말하면 그 가장 먼 곳도 이틀이면 당도하는데 불과하니 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가난한 집은 불가불 돌보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국가의 체통과 백성을 거의 한쪽만을 버리는 데에 이르지 않을 듯 합니다. 여러 차례 하문하신 터라 감히 잠자코 있을 수 없어 어리석은 견해를 모두 아뢰었으니 바라건대 임금께서 결단 하십시오.” 하였다.

행 중추부사 박종악(朴宗岳)은 말하기를, “나라에 큰 역사가 있으면 백성의 노력을 번거롭게 하지 않으려는 것이 성상의 고심하고 지극히 어진 마음에서 나오는 것으로, 구구하게 어리석은 견해로는 다만 사체가 끝내 구차한 곳에 빠질 뿐 아니라, 또한 백성들이 스스로 와서 부역한다는 의의를 욕되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심지어 역정(役丁)의 많고 적음과 경외에 분배하는 것은 일을 맡은 신하가 묘당과 왕래하며 상의해서 편의하도록 힘쓸 뿐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대한 역사인데 지난날 신이 우매해서 잠깐 사이에 어찌 능히 헤아려서 감히 역측으로 대답하였겠습니까? 황공한 마음으로 감히 아뢰입니다.” 하였다.

좌의정(左議政) 김이소(金履素)는 말하기를, ‘신은 병들어 있는 가운데 정신과 생각이 혼

미해서 우러러 대답할 바를 모르겠으나 재 상들의 백성을 사역시키는 의론은 곧 이것이 고금을 통한 대경대법(大經大法)이니 다시 논의할 것이 없습니다. 심지어 장정을 사역하는데 많고 적음에 있어서는 우선 적확(的確)한 수효를 정함이 없이 다만 대동법(大同法)과 같이 피차를 취사하지 말고 8로와 양도(兩都) 및 서울의 호수(戶數)에서 한 사람의 장정을 내도록 하는 것이 아마도 편의에 합당할 듯 합니다.” 하였다.

행 관중추부사 김희(金憲)는 말하기를, “**화성축성역**은 곧 거국적인 대동의 역이니 같은 백성으로 어떤 사람은 하고 어떤 사람은 하지 않는 것은 아마도 한결같이 균평하게 한다는 정사에 흠결이 되는 듯 합니다. 신의 어리석은 견해로는 양계(兩界)외의 6도 백성은 불가불 함께 부역해야 하는데, 도리의 원근이 이미 현격하니 양남(兩南)의 먼 곳은 왕래하는 노력과 양식의 비용이 갑절이 될 뿐만이 아니고 가까운 도와 비교하면 한쪽은 고통스럽고 한쪽은 쉽고 혈한 탄식이 있으니 이것은 균평하게 하는 정사가 아닙니다. 균평하게 하는 도리는 아마도 그 입역(入役)하는 일수의 다소를 헤아려 정하는 것만 같지 못한데 댓가를 수봉해서 품삯을 주어 입역하면 아마도 백성과 국가가 편할 도리일듯한데, 다만 조정에서 바로 이런 뜻으로 명령을 내리면 그 사체가 어떻다 하겠습니까. 만약 도신, 읍재들이 민정을 자세히 살펴서 가까운 곳의 백성은 몸으로 입역하고 먼 곳의 백성은 품삯으로 해서 한결같이 원하는 대로 따라 하기를 허락해 시행한다면 거의 고통스럽고 혈한 것이 현격하게 다른 근심이 없을 것입니다. 입역하는 일수에 이르러서는 신은 기왕에 성역의 전말을 자세히 알지 못하니 앞으로의 인력의 다과를 요량할 수 없어 감히 억측으로 말할 수 없지만 6도민호의 개략의 대수(大數)가 1백2십여만이니 그 상변군과 환과고독을 제외하면 1백만은 밀돌지 않을듯 하니 이 총수를 갖고 사역하는 곳을 헤아려 일수를 정하고, 반드시 사역과 백성이 상당토록 하면 아마 편의에 부합될 듯합니다. 그 품삯을 정하는 것과 농간을 방색하는 것 같은 것은 오직 일을 담당하는 신하가 정성껏 봉행토록 해서 터럭만큼의 폐단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하였다.

행 예조판서 정창순(鄭昌順)은 말하기를, “나라가 있으면 사역이 없을 수 없고, 역사가 있으면 백성을 부리지 않을 수 없는 것이 본래부터 백성과 나라의 떳떳한 법으로 고금의 통의입니다. 다만 부리는데 도리가 있고 농사지을 시기를 빼앗지 않아야 할 뿐입니다. 경전이나 사첩에 기록된 먼 옛날을 이제 끌어 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비록 국초에 도성을 쌓은 기왕의 예가 있으니 살펴 참고함이 옳을 것입니다. 축성하기는 병자년 봄에 비롯해 다음해 겨울에 역사를 마쳤는데 여러 도의 역부가 불과 2십 만 명에 그쳤습니다. 그 뒤 주읍에서 성을 쌓는 것이 수십 번도 안 되는데 지금 이 **화성축성**의 역은 침원(寢園)과 호위하는 곳은 서울 도성의 번폐(藩蔽)와는 사체가 엄격하고 중해 서울과 다를 바가 없는데 터가 몇 리이고 웅대한 치첩은 몇보인지 신이 기왕에 몸소 그 일을 동독하지도 않았고 그 곳을 몸소 밟아 보지도 않았으니 이제 억측으로 요량할 수 없으나 도성과 견준다면 4.5분지 1에 불과할 듯 하고 투입될 역정도 4.5만 명에서 벗어나지 않을듯하니 비록 근도의 백성으로도 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근도의 백성만이 홀로 노력하는 것이 곤란하다면 대략 도성을 축성할 때의 예를 본떠 역정을 조발해 활용하되 도에는 원근이 있고 백성도 다과가 있으니 서북의 변색(邊塞)같은 곳은 거론하기 부당합니다. 이것은 일을 감동하는 신하가 원근을 요량하고 다과를 헤아려 징발해 조용하되 한결같이 옛 사람이 백성을 활용하는데 3일을 넘기는 일이 없도록 하는 법의를 따르도록 하고, 그 중에서도 도가 먼 지방의 부역하지 못하는 백성은 그 원에 따라 베를 받는 방법을 취해 부역하는 백성에게 옮겨 지급하면 또한 노역을 고르게 하는 도리가 될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절목의 고사(故事)이니 오직 일을 맡은 제신이 요량해서

행하는데 달려 있습니다. 바라건대 임금의 재결을 바랍니다.” 하다.

행사직 홍양호(洪良浩)는 말하기를, “선왕께서는 백성을 지극히 사랑했고 가르치는데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 백성을 부리 되 시기로 하는 것은, 백성을 부리되 때가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고, 백성을 병드는데 이르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이른바 기쁜 마음으로 백성을 부려서 백성도 그 노고를 망각한 다는 것입니다. 선유(先儒)의 말에 임금이 백성에게 자퇴하는 것은 그 힘을 취하는 것이고, 백성이 그 임금에게 보답하는 것은 힘으로 갚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임금과 백성이 서로 의지함이 이와 같기 때문에 춘추(春秋)나 사전(史傳)을 두루 살펴봐도 축성한 사실을 써놓은 것이 어찌 한이 있겠습니까마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무리를 조발해 사역하는 것도 옳지만 단지 계속해서 할 도리는 아니고, 국체를 존중하고 백성을 가르치는 의의는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지금 이 **화성**의 역사는 기왕에 백성을 보호하고 국가를 호위하면서도 이에 소중한 바가 있으니 백성으로 하여금 알도록 하는 것은 실로 위아래가 서로 의지하는 뜻이 아닙니다. 성교(聖敎)로 유시한바 은혜를 다하고 사랑을 극진히 하였다는 것은 참으로 지당한 것으로, 어렵게 여기고 조심했다는 성의(盛意)에 이르러서는 군하(群下)가 어느 누구인들 우리러 본 받고 보지 않겠습니까. 승려와 평민이 상술(相率)해 부역에 임하기를 소원하니 민정을 크게 볼 수 있으니 여러 사람의 마음을 간파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였다.

“대신이 사리에 근거해 청한 것은 실로 국가의 경법(經法)에 덧붙여 나온 것으로 그 어찌 다른 의론이 있겠습니까마는 제도에 분배하는 한 가지 절목은 필수적으로 충분히 헤아려 삼가 국초의 도성축성역을 상고하고, 8로의 백성을 통 털어 조발해 부역시키는 것은 어렵고, 이번 역사는 도성에 견주어 또한 경중과 대소의 구별이 있으니 먼저 서울의 공경(公卿)집안과 5부의 백성으로 부터 분배해 조발 부역케 하고, 그 원근을 계교해 어느 방면 몇 보를 어디에 귀속할 것인가를 헤아려야 할 것입니다.” 하였다.

司啓辭, 右議政李所啓, **華城城役**依例役民事, 批旨內, 此箇事理亦豈不知, 大抵聖王之政不過曰愛人而使民而已, 愛之能勿勞乎, 使之以時則可, 況今恩竭而愛克, 俗弊而習頑, 由今之樣, 矯今之宜, 是役是用, 何必斬許, 而曾所難愼者, 欲使大民·小民, 先知所以難愼之本意也, 卿其縷縷力請, 自本司博詢草記可也事, 命下矣, 依下敎, 詢問于大臣諸宰, 則領中樞府事蔡以爲, 國有大役, 必也使民, 不特非衆力, 役不可完, 亦可以使民知向上移事之義也, 臣於向日筵中, 以**華城城役**之不可不, 用民爲陳者, 此豈出於只恤經費而然乎, 但念築城始役之初, 先以用民爲節目, 頒示諸道, 次第調赴, 則民亦以爲當然, 無論遠近, 必當子來之不暇, 而今則始役恰爲半年, 自朝家雇民以用, 有朝家雇民以用, 有耳者莫不聽聞, 乃於將爲一年之際, 復以用民頒令, 使遠道之民齎糧赴役, 則安知不睨睨相顧而驚乎, 臣意則使民, 固是不可已之政, 而若以是遍及遠道, 則雖使列邑守令, 一齊剛明, 詳覈戶丁, 嚴戢吏奸, 爲丁夫者, 其往來資糧留連費用, 固應不些, 況守令未必皆剛明, 戶丁之存拔, 吏奸之舞弄, 未必皆鉤察, 則資糧費用之外, 爲弊之濫觴又將爲幾許也, 念之及此, 遠道丁夫似難一例徵赴, 惟畿內一路與**華城**爲同道, 以道里言之, 其最遠者, 亦不過費二日乃至, 斯可以用之, 然其中殘傷戶, 似不可不別施顧念, 若然則國體與民庶不至偏廢, 屢詢之下, 不敢泯默, 畢陳愚見, 伏惟上裁云, 行判中樞府事朴以爲, 國有大役, 不煩民力, 亶出於我聖上苦心至仁, 而區區愚見, 非但事面終涉苟艱, 亦非所以導民子來之義, 至於役丁之多寡, 京外之分排, 惟在任事之臣與廟堂往復商確, 務從便宜而已, 此何等重大之役, 而以臣愚昧, 猝乍之間, 何能遙度, 而何敢臆對之乎, 惶恐敢達云, 左議政金以爲, 臣於病伏中, 神思昏務(督), (脫?)日不知所以仰對, 而僚相役民之論乃是通古今大經大法, 無容更議, 至於用丁之多少, 則姑無以的定, 而第念如有大同之役, 不可彼此取舍, 通八路·兩都及京城戶出

一丁，恐合便宜云，行判中樞府事金以爲，華城之役乃是舉國大同之役，則同是國民，而或役或否，恐有欠於一視平均之政，以臣愚見，兩界外六道之民不可不同役，而道里之遠近既殊，則兩南地遠處，往來之勞資糧之費不啻倍蓰，較諸近道，有偏苦偏歇之歎，此非平均之政，平均之道恐莫如量其立役日數，定其雇價多少，而收捧雇立，則庶爲民國兩便之道，而第自朝家，直以此出令，則其在事體亦涉如何，若令道臣·邑宰，詳察民情，近者以力立役，遠者替以雇價，一從民願而許施，則庶無苦歇顯殊之患矣，至於立役日數，則臣既未詳其城役形止，前頭人力之多寡，無以懸度，有不敢臆對說，而六道民戶概舉其大數，則爲一百二十餘萬，除其上番軍及鰥寡孤獨，則似不下百萬，以此摠數，量其役處，定其日數，必令役與民相當，則恐合便宜，若其雇價之裁酌，奸竇之防塞，惟有司之臣惕念奉行，俾無毫分濫觴之弊云，行禮曹判書鄭昌順以爲，有國則不可無事役，有役則不可不使民，自是民國之常經，古今之通誼，但使之之有道，不奪其時而已，經傳史牒所載，今不必遠引，雖以國初都城之已例，可按而考也，始築於丙子之春，迄役於翌年之冬，諸道役夫僅爲二十萬而止，其後州邑之設城殆不可縷十，今此華城築斯之役，寢園衛護之所，京都藩蔽之地，事體嚴重，無異京城，而基址之當爲幾里，雄堞之當爲幾步，臣既不得躬董其事，身履其地，則今不可懸度臆料，比諸都城，則似不過四五分之一，役丁所入亦不出四五萬人，雖以近道民人亦可爲之，若以近民之獨勞爲難，則略倣都城築城時例，調用役丁，而道有遠近，民有多寡，如西·北邊塞等地亦不當舉論，此在董事之臣，量遠近計多寡，徵發調用，而一依古人用民無過三日之法意，則取其中，道遠地方不可赴役之民，從願收布，移給役民，亦當爲均勞之道，此則只是節目古事，惟在任事諸臣量度而行之，伏惟上裁云，行司直洪良浩以爲，先王之於民，愛之至而教之有方，其曰使民以時者，可見用民有時，而不至於病民，所謂悅以使民，民忘其勞也，先儒有言，君之資於民者，資其力也，民之報其君者，報以力也，君民之相須如此，故歷觀春秋史傳，書築城者何限，而或曰發徒之役可，但非可繼之道，非所以尊國體而教民義也，今此華城之役，既爲保民衛國，而況有所重在焉，則取使民知，實非上下相須之義也，聖教所諭，恩竭愛克者，誠爲至當，至於難慎之盛意，群下孰不仰體而觀乎，緇徒與平民相率願赴，則民情大可見，衆心不可遏也，大臣據理之請，實出謀國之經法，夫豈有異議，而至於分排諸道一節，必須十分商度，謹稽國初都城之役，八路之民通融調赴，而今茲之役，比諸都城，亦有輕重大小之別，先自京城公卿之家五部之民分排調赴，次及本邑與隣邑百里之內，量其廣袤，計其遠近，某方幾步屬諸某。

<비변사등록 182책, 정조 18년 1794년 07월01일(음)>

경제/건설

名分과 義理를 세우는 등의 조목과 華城 城役의 거리를 고려하여 부역하게 할 것을 아뢰다

○ 비변사계사에 시원임대신이 청대한 계사의 비지에, “경등은 물러가 6조판서와 비국제신과 묘당에 모여 충분히 상의하여 보고하라는 명이있었습니다. 우리 전하께서는 10여일을 조섭하는 가운데 달포가 넘는 모진 가뭄의 재변을 만나 걱정스러운 생각이 밤낮으로 안정되지 않아 폐백으로 여러 곳에 기우제를 지내며 하늘을 공경하는 정성을 더욱 돈독히 하시고 수라상을 특별히 감선하라 하시며 계속 수성하는 전교를 내렸습니다. 이 때문에 증후가 악화되었으나 진찰하는 자리도 규례를 갖추지 않으시고 재해를 홀을 계책을 묘당에 물으시니 신들은 머리를 모아 읽고 감격하고 흠양함을 견딜 수 없습니다. 무릇 시정에 관계되어 백성에게 폐막이 되는 것을 신 등의 보잘 것 없는 견해가 실로 성화(聖化)에 비익됨이 업겠지만 하문하셨으니 감히 입 다물고 있을 수 없어 삼가 몇 조목을 아뢰겠습니다.

“첫째, 명분과 의리를 세우는 일입니다. 근래 명분과 의리가 완전히 없어짐에 따라 흉악한

역적들이 횡행하고, 삼강은 무너지고 구법(九法)은 풀어지고 말았으니 나라가 어떻게 나라다우며 사람이 어떻게 사람답겠습니까? 이렇게 풍속이 잘못 굴러 수습할 수 없게 된 터에 전하께서 비록 명분과 의리를 부각시켜 온 세상 사람들을 연마시킨다 해도 오히려 바른 풍속으로 갑자기 돌이키기가 어려울 터인데, 도리어 역적을 토벌하는데 관계된 말이면 반드시 꺾어버리고 사라지게 하니 실오라기 같이 겨우 끊어지지 않은 의리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말을 해야 할 것인데도 말을 하지 않아 처음에는 부끄러움이 있는 듯 하였으나 죄를 면하여 구차하게 용납되기만 하면 끝내는 편안하게 아무 일도 없는 사람처럼 됩니다. 그러니 거기서 흐르는 폐단은 심지어 염치를 던져버리고 의리를 팽개쳐 세상에 명분과 의리란 말이 있는 줄도 모르고 있습니다. 풍속은 박해지기 날로 심하고 조정의 관료들은 우유부단한데 빠져 더럽고 속된 일만을 숭상하며 학교에서는 방종을 즐기고 단속하는 일을 천하게 여깁니다. 전하께서는 비록 쥔 안에서 엄려하고 계시지만 퇴폐풍조는 의를 숭상하는 것을 떨치지 못하게 하니 눈앞에 가장 걱정스럽고 급한 일로 이 보다 더한 것은 없습니다, 만일 바로잡아 구체할 방도를 논한다면 숨김없이 바른 말을 할 수 있도록 문을 열고 절의를 숭상하는 사람을 등용하는데 있으니 그 말이 명분과 의리에 관계된다면, 혹 과격할지라도 반드시 용서하여 용납하고 그 자취가 비위나 맞추는 데로 돌아간다면 혹 미봉한 것이라도 시비를 밝게 분변하여 통렬히 배척해서 곧은 사람은 맞아 주고 굽은 사람은 버려 착한 사람을 좋아하고 악한 사람은 싫어함을 분명하게 보이면 사람들은 착한 일을 권하고 악한 일을 경계하는 방법을 알게 되어 세상에는 못된 버릇이 없어져서 명분과 의리가 장려함을 기다리지 않고서도 세도가 저절로 크게 변할 것입니다.

둘째, 기강을 진작시키고 가다듬은 일입니다. 근래에는 기강이 해이해져서 마루와 섬돌의 한계가 엄격하지 못합니다. 법연(法筵)에서도 엄숙하고 공경스러운 행동을 볼 수 없고 동료 관료들 사이에서도 잡스러운 일이 많으니 이것이 한심합니다. 옷의 문양과 색깔은 귀천을 표시하는 것인데, 의복이 참람하고 분수에 넘어도 절제가 없으며, 명분은 상하를 구별함인데 등급이 무너짐이 날로 심해집니다. 법이란 화기에 관계돼 노고를 잊고 일에 나가기를 즐겨야 하는데 다만 역에 나가 그 역을 담당하는 척 하는데 이르렀습니다.

목하 **화성성역**은 곧 국가의 막중 막대한 역사로 8역을 통 털어 생을 누리는 윤상(倫常)을 지닌 백성들은 누구도 역사에 동원돼 공효를 이루기를 원치 않는 사람이 없고, 기필코 큰 역사를 완수하려 하는데 역사가 시작된지 이미 오래되었는데도 아직도 역사하겠다는 한 사람도 듣지 못했으니 아마도 대성인이 기쁜 마음으로 사역시키려는 뜻에 어긋난 듯 합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역정을 들여 쓰는데 인원수를 참작해 8로에 분배하되 함경북도 외는 원근을 차등 있게 마련해 정해서 즉시 역사에 나오도록 하는 것이 아마도 사의에 합당하리라 여깁니다.” 하였다.

전참의 윤행건(尹行愼)은 말하기를, “수십 년 내에 백성들은 국가에 역사가 있다는 것을 모르고 지내 왔습니다. **화성** 축성역이 있다는 것을 듣고 백성들이 스스로 와서 역사에 종사한다는 말을 듣기에 이르러 서는 민정을 또한 엿볼 수 있습니다. 하물며 이 역사의 소중함이 어떤 것인데 아직도 한사람의 장정이 부역하는 자가 없으니 아마도 선왕의 십순(十旬)의 제도가 아닌 것입니다. 대신이 아뢴바가 참으로 본받을 만하니 먼저 한성부에서 5부에 알리고 가호에 따라역부를 내도록 해서 부역하게 하고 경기에서 호서까지, 관동에서 해서까지 한결같이 분배해서 부역에 나오게 하되 능력이 어떤지를 보고 이 밖의 제도는 점차로 취용하는 것 이 마땅할 것입니다.” 하였다.

신 홍낙성(洪樂性)이 아뢰기를, “요상(僚相)들이 아뢴바가 이미 경법(經法)이니 제신의 헌

의도 다른 말이 없습니다. 비록 신으로 하여금 힘써 진언하고 논의를 극진히 한다 할지라도 또한 이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조정에서 부역의 명을 아끼는 것은 성역(城役)으로 민력을 수고롭게 하고 싶지 않는 것으로 신등이 번갈아 가며 아뢰는 참으로 국체를 돌아보고 여러 백성의 뜻에 답하고자 함입니다. 어찌 나라에 역사가 있음을 당해 백성의 힘을 활용하지 않는 때가 있겠습니까? 민정(民丁)을 활용하는 여부를 이제 다시 번거롭게 청할 필요는 없고 단지 마땅히 도리(道里)의 원근을 헤아려 백성이 농사짓고 한가할 때 역사에 투입할 곳에 비로소 4방에 표준을 정하고, 또 도하의 백성으로 기왕 농사철이 어떻다고 말할 수 없는 자는 3, 4월, 7, 8월이면 모두 방해됨이 없고, 제도에 이르러서는 마땅히 가까운 도에서 먼저하고 경기, 강화, 개성, 충청, 강원, 황해 등 도는 먼저 부역케 하고 그 나머지 4도 역시 마땅히 점차로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뜻으로 화성유수 및 한성부당상과 제도도신, 양도유수처에 분부해서 상의해 좋은 쪽으로 조발하고, 부역할 때는 9, 10월, 1, 2월로 정하면 농사를 방해하는 염려는 없을 듯 하고 백성을 부리는 도리에도 합당합니다. 경외를 물론하고 다만 장정이 없는 단독으로 보잘 것 없는 가호는 제외하고 반천대소호(班賤大小戶)에 각기 1정(丁)을 내며 역사에 부응하는 날자는 3일로 하는 뜻으로 역시 정예(定例)를 삼아 미리 알려져 조정에서 백성을 아끼면서 부리는 성덕과 지극한 뜻을 알도록 해 기어이 스스로 와서 즐거운 마음으로 부역하는 아름다움이 있도록 하는 것이 사의에 실로 합당할 것입니다. 임금께서 재결하심이 어떻겠습니까?” 하였다.

司啓辭，因時原任大臣請對啓辭，批旨，有卿等退與六卿之長・籌司諸臣，會于廟堂爛講以聞之命矣，伏惟我聖上乃於浹旬靜攝之中，值此跨月亢旱之災，憧憧一念，夙宵兢惕，珪璧編舉，益篤對越之誠，常膳特減，連下修省之教，症候由是越添，而診筵亦不備例，消弭之策，詢及廟堂，臣等聚首奉讀，竊不勝感激欽仰之至，凡係關時政而爲民瘼者，以臣等膚淺之見，實無以仰裨聖化，而詢芻之下，不敢泯默，謹以數條仰陳，一曰，扶植名義，近因名義之掃地，以致凶逆之滔天，三綱隳矣，九法斁矣，國何以爲國，而人何以爲人乎，似此風氣之駸駸然莫可收拾，殿下雖扶之植之，砥礪一世，尙患其猝難轉回，乃反言涉懲討，則必摧折之鉗制之，使此氣節之漸就委靡者，益復消磨，義理之不絕如綫者，益復湮晦，當言而不言，則始焉若有羞愧，免罪而苟容，則末乃恬然無事，其流之弊甚至於放倒廉隅，弁髦義理，不識世間有名義二字，習俗澆漓，日甚一日，朝著之上，沒模稜而尙鄙俚，庠序之間，樂放縱而賤拘檢，聖念縱勤於中朝，頽風莫振於尙義，目下之最可憂最急務，莫過於此，若論矯揉之道，則惟在於廣開不諱之門，獎用尙節之人，如其言之涉於名義，則雖或過激，必假借而優容，如其跡之歸於容悅，則雖或彌縫，必明辨而痛斥，舉直措枉，昭示好惡，則人知勸懲之方，世無骯髒之習，名義不期扶植，而世道自底丕變矣，二曰，振礪紀綱，近因紀綱之解紐，以致堂陛之不嚴，法筵之上，未見肅敬之儀，班聯之間，率多雜沓之事，此已寒心矣，文章所以表貴賤，而衣服之僭踰無節，名分所以別上下，而等級之隳乖日甚，金石關和，忘其勞樂於赴事者，亶出於役於當役之致矣，目今華城之役卽國家莫重莫大之役也，環八域含生秉彝之民莫不欲趨赴功，期完大役，而始役已久，迄未聞役一夫使一民者，恐有違於大聖人悅以使民之意也，臣意則役丁容入，酌量分排於八路，而咸鏡之北道外，定其遠近差等磨鍊，俾卽趨役，恐合事（宜）云，前參議尹行恁以爲，數十年來，民不知國有役矣，及聞華城之肇役，有欲子來而趨工者，民情於亦可見矣，況此役所重何如，而尙無一丁之許赴，恐非先王旬用之制，大臣所奏，誠爲得體，先令亦京兆知委五部，從實戶出丁，以爲赴役之地，自畿而湖，自關東，而至海西，一體均排許赴，而觀其事力之如何，外此諸道鱗次取用爲宜云矣，臣洪以爲，僚相所奏，既得經法，諸臣獻議且無異辭，雖使臣力陳竭論，亦不外此，朝家之靳許者，不欲以爲城役而勞民力也，臣等之迭奏者，誠欲以顧國體而答群情也，曷嘗有國有役，而不

用民力之時乎，民丁之使用與否，今不必更事煩請，只當量其道里之遠近，民時之閑劇，以爲入役之地，始以作四方之標準，且都下之民既無農時之可言，則三四月・七八月俱無所妨，至於諸道，則當先自近道爲始，以京畿兩都・忠清・江原・黃海等道，先令赴役，而其餘四道亦當次第使用，以此意分付華城留守及京兆堂上諸道道臣・兩都留守處，以爲相議從長調用赴役之時，則以九十月・正二月爲定，似無妨農之慮，可合用民之道，勿論京外，只除無率丁單獨殘戶，班賤大少戶各出一丁，應役三日之意，亦爲定例，預爲知委，俾知朝家愛民使民之盛德至意，期有子來樂赴之美，實合事宜，上裁何如。

<비변사등록 182책, 정조 18년 1794년 07월01일(음)>

경제/건설

水原留守 趙心泰의 장계대로 城役의 일을 시행할 것을 回諭하다

수원유수 조심태(趙心泰)가 장계한 성역사에 전교하기를 장계에 의거해 시행할 것을 회유하라 하였다.

以水原留守趙心泰狀啓，城役事，傳曰，依此爲之事回諭。

<비변사등록 182책, 정조 18년 1794년 07월 08일(음)>

경제/건설

水原留守 趙心泰에게 有旨의 뜻을 잘못 전달한 承旨를 遞差하고 回諭는 다시 보내다

수원유수 조심태가 장계한 성역에 관한 일로 유지(有旨)를 지수한 일에 전교하기를, “무릇 회유하는 유지를 꾸며 보내기에는 승정원에서 장사(狀辭)의 개략을 들어내 두사(頭辭)로 삼는데 이 지수장계를 보니, 경이 장인을 모집하는 등의 일은 더위로 인해 정역(停役)이 필요치 않다고 치계하는 말로 삼았으니 그 내린 바, 이에 의해 하라는 뜻으로 회유 운운한 것과 이 어찌 동문서답이 아닌가? 근래 한발이 하도 심해서 아침, 저녁으로 마음을 쓰고 있다. 또 더위가 극렬해서 성역에 관한 한 가지 생각으로 마음이 편치 못하다. 흠뻑 쏟아지는 공효도 비록 방촌의 기도가 미치지 못해 축성을 우선 서늘한 바람이 일기를 기다리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므로 몇 일전에 과연 우선은 정지할 것을 명하였다. 수신(守臣)의 장본에 모군배(募軍輩)들이 그 가속을 이끌고 있음을 갖추어 아뢰면서 진퇴유곡의 정상을 말했다. 이어 청하기를 드러난 곳에서 사역하는 것은 비록 지금은 정지했지만 아침저녁으로 서늘해 돌덩이를 수습해 납부하면 지난날의 품삯을 헤아려 지급 한다는데 사정이 그럴 것 같다. 회유 중 여기에 의해 운운한 교시는 대략 역사는 비록 우선 정지했지만 품삯은 헤아려 지급하라. 내려준 비지로 볼라치면 장차 이어서 동독하리니 어찌 본의와 상반되지 않겠는가? 당해 유지를 꾸며 보낸 승지는 체차하고 이 장계는 도로 내려 주라. 회유도 역시 다시 써서 보내라.” 하였다.

以水原留守趙心泰狀啓，城役事，有旨祇受事，傳曰，凡回諭有旨成送也，自政院枚舉狀辭之概略爲頭辭，而觀此祇受狀啓，以卿以匠募等不必因暑停役事，馳啓爲辭，其下以依此爲之之意回諭云云者，此豈非問東答西乎，近以鋤旱之太甚，夙宵用心，又以劇熱，城役一念耿耿，霈霑之效雖未格方寸之禱，而力役之姑待涼生，不是難事，數昨果有姑停之命矣，守臣狀本，備陳募軍輩挈其家屬者，進退維谷之狀，仍請露處事役，雖令姑停，晨夜乘涼，拾納石塊，量給伊日之雇價，事情似然，回諭中依此云云之教，概指役雖姑停，價則量給也，以所下有旨觀之，其將仍爲董督，豈不與本意相反乎，當該有旨成送承旨遞差，此狀啓還下送，回諭亦爲更爲書送。

<비변사등록 182책, 정조 18년 1794년 07월 09일(음)>

경제/건설

화성성역의 재목이 표실될 때 사람을 구한 金五成의 일을 留守에게 下諭하게 하다

○ 경기감사 서용보(徐龍輔)가 장계를 올려 화성(華城)의 성역(城役)에 쓸 재목이 남양(南陽)에 이르러 바람을 만나 표실(漂失)했는데, 동임(洞任) 김오성(金五成)이 물에 빠진 사람의 목숨을 살린 일을 아뢰는 것에 대해, 전교하기를, “지극히 가당한 일이다. 남양 사람 김오성의 일에 대해 유수에게 하유하여 사실에 의거하여 장계로 보고하게 하라.” 하였다.

以京畿監司徐龍輔狀啓，華城城役所用材木，到南陽逢風漂失，洞任金五成拯活人命事，傳曰，極爲可嘉，南陽人金五成事，下諭于留守處，使之據實狀聞。

<비변사등록 182책, 정조 18년 1794년 09월10일(음)>

경제/건설

領中樞府事 蔡濟恭이 華城 城役의 城堞 築造에 대해 논의하다

이달 1일에 대신과 비국당상을 인견하여 입시하였을 때, 영부사(領府事) 채제공(蔡濟恭)이 아뢰기를, “지금 화성(華城)의 성역(城役)에 대하여 윤음(綸音)이 내렸고 하교하신 내용도 정녕스러우므로 신은 일찍이 받들어 따랐을 뿐이고 감히 다시 다른 말을 진술하지 못하였습니다. 다만 생각하니 남·북의 문루(門樓)가 이미 창건(創建)되었고 양쪽 곁의 평지(平地)에는 성첩(城堞)이 거의 모두 이루어져 가기는 하나, 이들은 산위에 둘러쳐 만나게 하는 일과 달라서 불가불 다 축조(築造)를 하여야 됩니다. 그러나 듣자니 지금 재력(財力)이 거의 떨어져 손쓸 수가 없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7-8만 냥[兩]을 한도로 지금 당장에 구획(區劃)해 주어야 중간에 그만두는 것을 면할 수 있습니다. 평안감영(平安監營)에 전래(流來)되어 오는 구포조(舊逋條)에 대하여 지징무처(指徵無處)인 신해년(정조 15, 1791) 봄부터 해영(該營)에게 한 달에 4백여 수량씩을 채우도록 하여 한 해에 5천의 수량이 채워졌습니다. 그 상태[形止]를 다달이 비국(備局)에 보고하게 한 것이 지금 4년이 되니, 그 수효는 마땅히 2만 냥이 될 것인데, 우선 이 2만 냥을 가지고 이달 안으로 역소(役所)에 수납(收納)하게 하고 또 4년을 한도로 물린 뒤에 앞서 한 것과 같이 보충하게 하십시오. 이렇게 비국에 보고하라는 뜻으로 수신(帥臣)에게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그리하라 하였다.

또 아뢰기를, “화성 성역소(城役所)에 돈이 군박한 상황은 지금 이미 양달하였으나 미변(米邊)을 책용(策用)하기는 그 형편이 더욱 어렵습니다. 지금 금위군과 어영청의 양영(兩營)에 향군(鄉軍)을 정번(停番)하도록 한 데 대하여서는 이미 연교(筵敎)가 있었으니, 맥추(麥秋)까지 6-7달 사이에 향군의 요미(料米)로 저축된 것이 장차 수천 석(石)이 될 것입니다. 양영에서 각자 1천석(石) 씩을 역소(役所)에서 가져다가 쓰게 하는 것이 좋을 듯하기에 감히 이와 같이 양달합니다.” 하니, 임금이 그리하라 하였다.

今十一月初一日大臣備局堂上引見入侍時，領府事蔡所啓，今以華城城役，綸音誕降，指教丁寧，臣嘗將順而已，不敢更陳他說，而第南·北門樓既已創建，兩傍平地，城堞既皆就緒，此則與山上周遭之役有異，不可不畢築，而聞今財力垂乏，將無以措手云，無論某樣，限七八萬兩及今區劃然後，可免中撤，平安監營流來舊逋條之指徵無處者，自辛亥春，使該營月備四百餘，歲準五千之數，以其形止逐朔報備局者，今爲四年，則其數當爲二萬兩，爲先以此二萬兩，今月內使之輸納於役所，又退四年之限，如前充補，這這報于備局之意，分付帥臣何如，上曰，依爲之。

又所啓，華城城役所錢條拮据，纔已仰達，而米邊策用，其勢尤難矣，今以禁·御兩營鄉軍停番

事, 已有筵教, 則限麥秋六七朔之間, 鄉軍料米之留儲者, 將爲數千石, 兩營各限一千石, 自役所取用似好, 故敢此仰達矣, 上曰, 依爲之.

<비변사등록 182책, 정조 18년 1794년 11월02일(음)>

경제/건설

華城 城役에서 董工하는 諸臣들에게 下諭한 綸音

○ 화성(華城)의 성역(城役)에 공사를 감독하는 여러 신하에게 하유(下諭)한 윤음(綸音)

“화성의 성역도 소중한 것이지만 성역을 정지(停止)하는 것도 소중한 것이다. 지난 날 원침(園寢)을 편히 모신 뒤로부터 유수부(留守府)로 승격하여 체모를 높였고, 행궁(行宮)을 설치하여 우리러 의지하는 마음을 붙이도록 하였다. 성지(城池)를 설치한 것은 기호(畿湖)의 요충지(要衝地)가 되기 때문도 아니고, 5천 명의 병마(兵馬)가 많아서도 아니다. 여기 이것을 계획하는 데는 경사(卿士)에게 물어보지도 않았고, 재정(財政)에 대하여서도 지출과 수입을 물어보지 않은 채 계획하고 경영하였다. 여기에 성을 쌓고, 여기에 해자를 파서 남북의 망루(望樓)가 장차 완공되려고 하는데, 진실로 흉년이 들지 않고 백성이 굶주리지 않게 되었다면 앞으로 나아가기는 하지만 뒤로 물러가지는 않았을 것이다. 지금 돌아보건대 삼남(三南)과 기진(畿甸)에 가을부터 백성이 굶주려 쓰러지고, 서북의 변군(邊郡)들도 식량의 어려움을 호소하였다. 자전궁(慈殿宮)에 어공(御供)을 바치는 것도 오히려 자교(慈教)를 받들어 정면(停免)하였으니 성역이 아무리 중하다고 하더라도 스스로 층절(層節)이 있는 것인데, 이쪽을 정면하고 저쪽은 정면하지 않는다면 식자(識者)들이 그 불가(不可)함을 알게 될 것이다. 하물며 이 어공으로 바치는 데 드는 비용이 많아야 백 보자기[百包]요 천 꾸러미[千緡]에 불과하지만 특별히 투료(投膠: 동고동락함)하는 의리를 따라 지출하는 계획을 절약하여 백성의 것으로 백성을 도우려고 하는 것임에랴. 그런데 하물며 성역과 같이 매우 많이 드는 비용이겠는가? ‘성역에 쓰는 비용은 장차 없어지게 되려 하면 굶주린 자를 구제하는 정치에 수용(需用)하는 것은 창고를 열어 곡식을 진휼하므로 마치 두 가지 갈래로 구분되어 각각 상관이 없다.’ 라고 하지 말라. 한 국가의 재화(財貨)는 다만 이만큼의 수량만 있어서 위에 있지 않으면 아래에 있고, 바깥에 있지 않으면 안에 있는 것이다. 만일 농사짓는 백성이 한 해를 이어갈 양식이 없다면 또한 곧바로 백성을 진휼하여 입에 풀칠할 바탕을 만들어 주어야 하는데 농사를 짓지 않으면 어디서 양식을 얻을 것이며 진휼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살리겠는가? 그런데 지금 말하기를 ‘너희가 밭가는 일과 너희에게 진휼하는 일을 잠시 그만 두고, 다만 내가 운영하는 성역을 따르라.’ 고 한다면, 인화(人和)와 지리(地利)가 분리될 것이니 이렇게 하는 것은 부당할 듯하다.

내년은 다른 해와 달라서 경사(慶事)를 함께 하는 마음으로 널리 베푸는데 힘쓰고, 세금과 받아들이는 환자를 상년(常年)의 거의 반으로 줄일 것이다. 한편으로는 가볍게 하고 면제해 주어 그 힘을 펴주고, 한편으로는 알뜰히 조사하고 찾아내어 그 이익을 찾는다면 비록 관중(管仲: 춘추시대 제나라의 재상) 같은 재상으로 재화(財貨)를 통용하게 하고, 유안(劉晏: 당나라의 재상) 같은 재상으로 부세(賦稅)를 다루라고 하더라도 백성을 괴롭히지 않을 자가 거의 적을 것이다. 이것이 어찌 자전(慈殿)의 마음으로 나의 마음을 삼는 도리이겠는가? 설령 돈과 곡식을 특별히 마련해 내어 주간(主幹)하는 일을 며칠 안에 완전히 이룰 수 있다고 하더라도 백성이 구렁텅이에 쓰러져 죽으려고 하는 근심이 바야흐로 온 나라에 급한데, 어영차 어영차 하고 부르짖는 소리가 한 부(府: 유수부)에 끊이지 않는다면 오직 저 흘려보며 아이를 업으며 안고 있는 낮은 서민들은 ‘우리 왕이 어찌 성을 쌓는 마음으로 백성을 보호

하는 데에 베풀지 않으며, 성을 쌓는 법칙을 백성에게 옮겨 살리지 않는가.’ 하고 말하지 않겠는가? 또 ‘궁궐 안의 밝은 총명이 헐벗고 여윈 백성에게 비추지 않고, 분칠한 누각과 성가퀴에만 비추어 주는가.’ 하지 않겠는가? 또 ‘성은 가령 금년에 쌓든지 명년에 쌓든지 십년까지도 늦출 수 있지만 백성은 하루나 이틀도 굶어서는 아니 되는데 한 달까지 참으라고 할 수 있는가.’ 하고 말하지 않겠는가? 여기에 이르러 내가 비록 소중한 것을 가지고 대응하려 하더라도, 어찌 감히 과거의 백성들을 아끼고 돌보기 위하여 연로(輦路)에 화맥(禾麥:벼와 보리)을 밟지 못하도록 한 덕의(德意)를 우러러 본받지 않을 것인가?

의논하는 자는 ‘홍년에 공사(工事)를 일으키는 것은 실로 주휙(賙恤)하는 일을 겸하게 되니, 주부자(朱夫子:주자)의 남강고사(南康故事:남강에 토목공사를 실시함)와 범중엄(范仲淹:송나라 명신)의 절서이적(浙西已跡:바다에 독을 만들음)을 상고하여 되풀이할 수 있다.’ 하고 말할 것이다. 이는 특히 한 사람의 수령이나 한 사람의 장수가 한 군(郡)이나 한 진(鎭)에서 실행할 수 있는 행정이다. 지금 내가 일국(一國)의 군주로서 일국의 백성들에게 임하여 가까이하는 왕도(王都)와 전복(甸服)에서 멀리는 명발(溟渤:바다)과 새막(塞漠:사막)까지의 노치(老稚:노인과 어린이)·부유(婦孺:아낙네와 어린이)·과벽(跛躄:질름발이)·암롱(暗聾:소경과 먹추)들이 모두 나의 적자(赤子)가 아닌 자가 없다. 기왕에 저 백 천 만 함함(顛顛:굴주려 부황이 둥)의 무리들이 농사나 장사도 하지 못한 채 고향을 떠났을 때, 보자기를 싸가지고 모여서 성을 쌓는 역사(役事)에 고용되어 먹는 것을 찾는다고 해도 여기에 이르러 생활할 수 있는 자가 과연 몇 사람이나 되겠는가? ‘부역을 일으키지도 말고 제사(祭祀)에는 하등(下等)의 희생(犧牲)을 쓰라.’ 고 한 것을 나는 예(禮)에서 들었다. ‘누대(樓臺)에 단청도 칠하지 않고 길도 닦지 않는다.’ 고 하는 것을 나는 전(傳)에서 보았다. 작고 큰 것을 경영하는데 있어서 상경(常經)과 권도(權道)를 경우에 따라 달리 사용하는 것이 이와 같음이 있다. 지금에 하여야 할 도리는, 홍년을 구제하는 행정 한 가지 일에 정신을 모으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다. 비록 돌피 같은 쌀이나 한 치쯤 되는 명주 같은 작은 옷감이라도 면제해 줄 것은 면제해 주고 받아낼 것은 받아 내어, 간혹 농사짓는 밭천을 만들고, 간혹 진흙하는 데로 돌려서 재앙에 상처받은 백성을 다 세워 일으켜야 잠자리가 상쾌하고 편안할 것이다. 그리고 하늘이 또 태평한 세월을 내려 주어 기장이나 찰벼 같은 곡식을 많이 거두게 되면 노(魯)나라 교외인 삼수(三遂:교외)에 백성이 저절로 모여들 듯할 것이고 주(周)나라 벌판에 많은 집을 짓는 공사를 다 일으키듯 할 터이니, 그러면 역부(役夫)들은 기쁘고 기뻐하며 건물은 높고 높이 솟아오를 것이다. 그리하여 조치하는 일이 편리해지고 기상이 확 퍼져서 대중의 마음이 향하는 바가 성(城)과 함께 튼튼해질 것이다. 하필 아침에 백 척의 수레를 운전하고 저녁에 백 마리의 소에 짐을 실어 날씨의 추위와 더위도 관계하지 않고 재정(財政)의 여유와 결핍도 돌아보지 않은 채 민력(民力)을 다하고 민재(民財)를 소모하며 독려하고 서둘기를 못 미쳐 가듯이 해서 되겠는가?

어공(御供)을 정지시킨 일은 나의 전궁(殿宮)을 위하여 은혜를 베푸는 것이고, 성역을 정지시킨 것은 우리 원침(園寢)을 위하여 은혜를 베푸는 것이다. 성인(聖人)이 다시 태어나도 결코 나의 말을 바꾸지 않을 것을 알겠다. 그런데 본부(本府:유수부)의 구황(救荒)하는 정책을 나 역시 요량한 바가 있다. 저 성(城)의 뒷받침은 마치 나무가 뿌리를 깊이 박아 들어가듯이 집이 터를 다지듯이 견고하며 두텁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분명하다. 내년 봄 지맥(地脈)에 얼음이 풀리는 즈음을 기다려 북성(北城) 밖 가까운 지점의 척박(斥鹵)한 땅에 그 깊이를 살피어 한 길이나 혹은 반 길의 깊이로 파내고 대략 백곡(百斛)의 곡식을 뿌릴 땅의 경계를 만든 뒤에 거기서 파낸 흙은 성을 쌓는데 써서 다섯 마리의 말과 두 척의 수레가 너

너희 다닐 수 있도록 할 것이며, 그 땅에는 중형과 동남으로 이랑을 만든 뒤에 깊이 갈아 쉽게 김매게 하면 척박한 것이 비옥하여지고 자갈밭이 기름져서 정국(鄭國) 경수(溇水)와 사기(史起)의 업전(鄴田)과 같이 몇 천 두락을 넉넉히 얻을 것이다. 이렇게 성을 등지고 있는 좋은 밭에는 1-2년 안에 삽(鍤)을 울러 맨 사람들이 구름처럼 모여 비가 내리면 도랑을 터놓는 미풍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성역을 할 때는 고용의 품삯을 일수(日數)로 하지 않고 짐수[負數]로 할 것이며, 표(表)를 세워 멀고 가까운 거리를 따져 차등을 둘 것이니, 힘센 사람은 넉넉히 1백 전(錢)도 받을 것이며 약한 사람도 자기 한 사람은 충분히 보호할 정도로 받을 것이니 이것이 어찌 부민(府民)만 위한 것이겠는가? 남북동서(南北東西)로 가 보아도 적당히 살 자리를 찾지 못하고, 고용살이로 생활의 밑천을 삼는 사람은 모두 풍문을 듣고 다투어 달려올 것이다. 그리고 혹은 움막을 치고 혹은 점포를 내어 술도 마시고 밥도 먹으며, 있는 것을 가지고 없는 것과 바꾸게 하는 것도 흠아비 흠어미의 이익이 될 것이다. 대개 이와 같이 된다면 성(城)은 만대에 안정되는 난공불락의 기반이 될 것이고 백성은 만가(萬家)가 기름진 땅을 얻고 창고는 1만 사람이 충분히 먹을 양식을 저축할 터이니, 한 가지 일로 여러 가지 좋은 것이 구비되는 것이다. 어찌 참으로 아름답고 또한 좋은 것이 아니냐? 아하, 너희 **화성(華城)**의 성역에 공사를 독려하는 신하들이여, 이 유시(諭示)를 조용히 듣고 모두에게 알리도록 하라!”

諭**華城城役**董工諸臣綸音

華城城役，爲所重也，而其停亦爲所重也，粵自妥奉園寢，陞留府以尊體貌，置行宮以寓瞻依，城池之設非爲畿湖要衝之地，非爲五千兵馬之衆也，於是謀不及卿士，財不問出入，經之營之，築斯鑿斯，南·北樓櫓行將告功，苟使歲不荒民不饑，是役也有進無退而已，顧今三南·畿甸方秋顛連，西·北邊郡亦奏艱食矣，殿宮獻御，猶且奉慈教而停免，則城役雖重，自有層節，此停而彼不停，不待識者而知其不可矣，況茲獻御之用，恰不過百包千緡，特循投醪之義，撙節支計，以民補民，何況城役物力之以萬萬計者乎，莫曰城役所費，將無作有，荒政所需，發倉振廩，判若兩岐，各無相關，一國財貨只有此數，不在上則在下，不在外則在內，若非耕民嗣歲之糧，卽且賑民糊口之資，不耕胡獲，不賑胡活，而今乃曰姑舍汝耕賑，只從我城役云爾，則人和地利之分，恐不當若是，明年異於他年，同慶之心，務欲博施，稅糴之減，幾半常年矣，一邊輕之蠲之，以紓其力，一邊擲之剔之，以求其益，雖使管仲通貨，劉晏治賦，其不厲民者幾希，此豈予以慈心爲心之道乎，設令錢穀特地辦出，楨榦不日完美，丘壑之憂方急於八路，呼耶之聲不撤於一府，則惟彼盼盼然保抱瑣尾之民，其不曰，吾何不以築城之心，施之保民，築城之則，移之活民云乎，又其不曰，九重光明之燭不照於鵲衣鵲形，而偏照乎粉樓雉堞云乎，又其不曰，城可使今年築明年築，拖至十年，民不可使一日飢二日飢，忍及三旬云乎，到此予雖欲以所重應之，亦曷敢不仰體昔年愛恤元元，勿踐輦路禾麥之德意乎，議者以爲，歉年興作，實兼調恤，朱夫子南康故事，范仲淹浙西已跡，可按而復也，此特一守一帥求得一郡一鎮之政耳，今予以一國之君，臨一國之民，邇而王都·甸服，遐而溟渤·塞漠，考（老）穉婦孺，跛躄喑聵，莫非予赤子，旣不能使彼百千萬領頤之類，不農不商離土離鄉，襁至盆集，受傭仰食於一城之役，則所至而所活者，當爲幾箇人口，役力不興，祀以下牲，予聞於禮，臺榭不塗，道途不除，予見於傳，小大經權之間，隨處異用有若是矣，爲今之道，莫如聚會精神於荒政一事，雖稊米寸帛之微，可蠲者蠲，可取者取，或資於耕，或歸之賑，瘡痍畢起，衽席快安，而天又降康，多黍多稌，魯郊之三遂自至，周原之百堵皆作，役夫欣欣，崇墉屹屹，使倣措便當，氣象舒泰，衆心所向，與城俱固，何必朝運百車，暮輸百牛，不問寒暑，不顧饒乏，竭民力耗民財，督之迫之有若不及也哉，獻御之停，爲

我殿宮而敷惠也，城役之停，爲我園寢而敷惠也，聖人復起，決知其不易予言，然本府救荒之策，予亦有料量者存，夫城之有後托，猶木之蟠根，屋之築址，不可不堅且厚也明矣，容待來春地脈融解之際，若於北城外咫尺斥鹵之壤，相其淺深，鑿得一丈或半長，量定約播百斛之經界然後，收其土粘付城身，俾容五馬兩軌，卽其地橫縱東南之畝，深耕而易耨，則瘠可使肥，磽可使沃，而贏得如鄭涇史鄴之幾千頃，負郭良田不出一二年，將見荷鋤成雲，決渠降雨之美，而方其役也，雇直不以日而負，立表計遠近而差等，則强者優取百錢，弱者足庇一身，此豈特府民往南·北·東·西之不適有居，傭保資生者，皆可以聞風爭趨，而或窖或肆爲酒爲食，以其所有，易其所無，亦矜寡之利，夫如是，則城則奠萬世不拔之基，民則獲萬家如膏之地，倉則貯萬人足食之糧，一舉而衆美具，豈不誠休且美哉，咨爾華城城役董工之臣，靜聽此諭，咸須諦悉。

<비변사등록 182책, 정조 18년 1794년 11월 18일(음)>

경제/건설

水原留守 趙心泰의 장계대로 役所의 일은 植木差使員이 전담하여 看檢하도록 下諭하다

수원유수(水原留守) 조심태(趙心泰)가 외남산(外南山) 봉조봉(鳳鳥峯) 아래 잔디가 떨어져 나가 보축(補築)한 곳에 자신이 나무를 심을 아홉 고을 수령과 회동, 상의하여 정한 경계를 나누어 주었고 내달 초순을 기다려 역사를 시작하겠다고 올린 장계에 전교하기를,

“근일에 바람이 차고 경 등이 또 나를 위하여 대신 수고한다. 경 등의 수고는 아직 그만 두더라도 아홉 고을 백성의 노력에 대하여 어찌 일각이라도 마음이 느슨할 수 있겠는가. 연교(筵敎)에 따라 역사 이틀 먼저 부근 면(面)에서 내어 쓰되 날짜를 계산해 식량을 주고 식목하는 예에 따른다. 잔호(殘戶)·독호(獨戶) 및 당발(當拔)의 호(戶)는 역시 다 조사하여 뽑아 정성을 다해 대양(對揚)하는 뜻을 기하라. 본부 유수 및 광주유수와 경기 감사 처에 하유하여 역사를 시작하고 역사를 마치는 일자를 본부에서 주관하여 등문(登聞)하라. 그리고 광주유수와 경기 감사도 역시 이어 진문하고 이런 뜻을 아울러 알려 주도록 하라. 역소(役所)의 모든 일은 식목차사원(植木差使員)이 전담 간검(看檢)하도록 일체 하유하라.” 하였다.

以水原留守趙心泰狀啓，外南山鳳鳥峯下被莎補築處，臣與植木九邑守令，會同商確，定界分授，待來月初旬始役事，傳曰，近日風寒，卿等又爲予代勞矣，卿等之勞姑置之，九邑民人之勞力，何可一刻弛心，依筵敎，役二日先從附近面出用，計日給糧，依植木例，而殘獨戶及應在當拔之戶，亦皆查拔，期於竭誠對揚之意，本府留守及廣州留守·京畿監司處，下諭始役，完役日字，本府主管登聞，而廣留·畿伯，亦當隨續陳聞，此意竝令知悉，役所凡事植木差使員專當看檢事，一體下諭。

<비변사등록 183책, 정조 20년 1796년 02월 01일(음)>

경제/건설

華城 城役에 依例 백성을 부리는 일로 올린 草記에 대해 비답하다

○ 화성(華城) 성역(城役)에 예에 따라 백성을 부리는 일로 올린 초기(草記)에 답하기를, “이와 같이 막중한 역사에 백성을 부리지 않으면 도리어 백성을 보기를 자식처럼 여기는 뜻이 아니다. 그러나 내영에 있는 70만금으로 먼저 내려주고 그 대신 팔도 번상(番上)의 군사로 그 숫자를 헤아려 번(番)을 없애고 채워 주면 비록 군사와 백성을 함께 부린다고 하더라도 또한 좋을 것이고 어리석은 자들이 마땅히 자식이 아버지의 일에 나아가는 몇몇한 의리를 알게 될 것이다. 원소(園所)에 화소(火巢)와 외남산(外南山)에 잔디를 심는 일에 대하여

금년에 이미 먼저 기내 열 고을 민정(民丁)을 쓰도록 하였으며 지금 여러 사람의 의론이 베풀어 주기를 좋아하는데 있으니 이런 뜻으로 알려 주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以華城城役依例役民事草記, 答曰, 如此莫重之役, 不爲役民, 反非視民如子之意, 然七十萬金以內營所在先下, 其代以八道番上之軍, 量數除番以充之, 雖謂之並役軍民亦可, 蚩蚩者當知子趨父事之常義, 而園所火巢外南山鋪莎之役, 今年已令先用畿內十邑民丁, 今則僉議自在肯施之中, 此意知悉可也.

<비변사등록 183책, 정조 20년 1796년 02월07일(음)>

경제/건설

司諫 吳鼎源이 華城의 土木役事を 우선 停止할 것을 아뢰다

○ 이번 3월 22일 대신과 비국 당상을 인견하여 입시하였을 때에 사간(司諫) 오정원(吳鼎源)이 소회(所懷)하기를, “근년 이래 농사가 거둑 흉작이어서 백성이 곤경에 처하고 국용(國用)이 탕갈된 것이 거의 여지가 없게 되었습니다. 목하의 걱정으로는 화성(華城)의 대역(大役)보다 더한 것이 없는데 여러 해를 지냈는데도 아직껏 마치지 못했습니다. 우리 성상께서 중히 여기는 먼 앞날을 위해 경영하는 계획을 신이 비록 우미(愚迷)하지만 어찌 우리러 본받지 않겠습니까? 다만 생각하건대 나라의 큰 역사여서 실로 재용을 소모하고 민력(民力)을 고갈시키는 한 단서가 됩니다. 더군다나 지금 천심(天心)이 편치 못해서 작년 겨울 이래로 이미 삼백(三白: 세 차례의 눈이 내리는 일)의 조짐이 없고 삼춘(三春)의 기후가 또 어그러지는 때가 많아 꽃이 피지 않아 보리농사가 되지 않을 것을 미루어 알 수 있는 것이 참으로 성교(聖敎)와 같습니다. 근래에 들건대 양남(兩南)의 보리농사는 비록 조금 낮게 될 조짐이 있으나 경기와 호서의 추맥(秋麥)은 이미 큰 흉작으로 결판이 났다고 합니다. 신의 생각에 화성의 토목 역사를 우선 정지했다가 보리농사가 잘되고 가을 농사가 풍작이기를 기다려 다시 시작해도 늦지 않다고 여깁니다. 삼가 원하옵건대 묘당에 물으시어 우선 정지해서 국용을 비축해 뜻밖의 변을 대비하고 백성의 힘을 늦추어 주어 농사에 전념하게 해야 마땅할 듯합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그대의 말이 매우 옳다. 요컨대 금년 가을 농사가 잘 될 것 같다고 하는데, 중한 바가 있어서 사람들이 감히 말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대가 숨김없이 품은 뜻을 말하였으니, 일을 감동(監董)하는 신하에게 이런 뜻을 잘 알게 하라.” 하였다.

또 소회하기를, “사학(邪學)이 치성하여 만연된 것이 실로 목하의 절급한 근심인데 전후 여러 신하들의 장주(章奏)에 자세히 언급되어 지금 중첩해서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생각하건대 지금 세상을 당해 정학(正學)이 황폐하고 사설(邪說)이 횡류(橫流)하여 온 세상이 장차 점차 모조리 이적(夷狄) 금수(禽獸)가 되고 말 근심이 있으니 어찌 크게 두렵지 않겠습니까? 이 무리들이 어리석은 백성을 선동하여 화색(貨色)의 이욕(利慾)으로 유혹하고 힘으로 몰아서 기꺼이 빠져들게 합니다. 전후의 처분이 지엄하지 않은 것이 아니나 서울 도성에서는 아직 절종(絶種)되지 않았고 호남과 영남 사이에서는 갈수록 더욱 번져서 황건적(黃巾賊)·백련교(白蓮敎) 같은 근심이 장차 반드시 이를 형세입니다. 이를 엄히 수색하여 적발해서 엄히 처벌하지 않으면 장차 발본색원(拔本塞源)하여 후환을 영원히 끊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삼가 원하옵건대 성의(聖意)에 깊이 유념하시어 묘당에 물어 빨리 엄격히 제거해 영원히 막는 방도를 도모하기를 그만두어서는 안 될 듯싶습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그 금지하는 방법을 마땅히 극도로 하지 않음이 없어야 한다.” 하였다.

今三月二十二日大臣備局堂上引見入侍時, 司諫吳鼎源所懷, 近年以來穡事荐歉, 民生之困瘁,

國用之蕩竭，殆無餘地，目下憂悶，無過於華城大役，屢經年歲，尚未告歇訖，我聖上爲所重經遠之謨，臣雖愚迷，豈不仰體，而第伏念國中大役，實爲耗財用竭民力之一端，況今天心不豫，昨冬以來既無三白之兆，三春日候又多乖沴之象，無花之可推無麥，誠如聖教，近聞兩南牟麥，雖有差勝之漸，而畿·湖秋牟已判大歉云，臣以爲華城土木之役姑爲停止，以待牟麥登場，秋農得稔，更始未晚，伏願下詢廟堂，姑令停止，以爲儲國用以備不虞，紓民力以專農業，似爲得宜矣，上曰，言甚是矣，要之今秋可以告成云，而以其有所重，人莫敢言，爾能有懷無隱，其令董事之臣知此意。又所懷，邪學之熾蔓，實是目下切急之憂，前後諸臣章奏，陳之備悉，今不必架疊，第伏念當今之時，正學荒蕪，邪說橫流，舉一世將有駸然盡爲夷狄禽獸之憂，豈不大可懼哉，此類之煽惑愚民，以貨色之利慾誘之，以力鉅之甘樂驅之，前後處分非不至嚴，而京輦之下未始絕種，湖嶺之間轉益滋蔓，黃巾·白蓮之憂將爲必至之勢，此不嚴搜而摘發之辟而嚴處之，則將無以拔本塞源，永絕後患，伏願深留聖意，下詢廟堂，亟圖嚴鋤永杜之方，恐不可已矣，上曰，其所禁止之方，當靡不用極矣。

<비변사등록 183책, 정조 20년 1796년 03월 28일(음)>

경제/건설

總理大臣으로 하여금 華城留守에게 예전대로 임무를 살필 것을 분부하라고 전교하다

○ 전교하기를, “공사가 장차 완성되려고 하는데 해곤(海闊)의 장계를 보니 또한 마음이 해이해진 것을 알 수 있다. 한 자나 한 치 정도 썩은 것은 마땅히 용서할 바가 있다. 예전대로 임무를 살피도록 총리대신(總理大臣)으로 하여금 화성유수에게 분부하게 하라.”

하였다.傳曰，功役行將告成，觀於海闊狀啓，亦覺弛心，尺寸之朽，在所當恕，依前察任之意，令總理大臣，分付 華城留守。

<비변사등록 183책, 정조 20년 1796년 07월12일(음)>

경제/건설

완성되는 華城 城役의 완공 때에 承旨를 파견 하는 등 제반 업무에 관해 전교하다

○ 이번 8월 17일 도승지가 입시하였을 때 전교하기를, “화성(華城)의 성역(城役)이 이번 19일에 완성된다고 한다. 그 날 승지를 파견하여 호궐(犒饋)한 후 석공(石工)을 위문하고 각기 바로 돌아가도록 하고, 감동 당상(監董堂上) 이하는 그 공역(工役)을 정돈하고 문부(文簿)가 수정되기를 기다려 다음 달 20일 전후에 들어와서 복명할 것을 분부하고 오라.” 하였다.

今八月十七日都承旨入侍時，傳曰，華城城役，聞於今月十九日告成，其日遣承旨犒饋後，石工勞問，各令卽爲還歸，監董堂上以下，待其整頓工役及修正文簿，使之來月念前後，入來復命事，分付以來。

<비변사등록 184책, 정조 20년 1796년 08월17일(음)>

경제/건설

華城 體城을 18일 築城을 마치겠다는 監董 堂上 趙心泰의 아뢰바를 전하다

○ 비변사의 낭청(郎廳)이 화성성역의 총리대신의 뜻으로 아뢰기를, “지금 화성 성역의 감동 당상(監董堂上)인 조심태(趙心泰)가 아뢴 바를 접하니, ‘체성(體城)이 4천 4백 5보를 이 달 18일에 축성을 마치도록 하겠다.’ 하니 감히 아뢰입니다.” 하니, 알았다고 답하였다.

備邊司郎廳，以華城城役總理大臣意，啓曰，卽接華城城役監董堂上趙心泰所報，則體城四千四

百五步，今月十八日畢築之意，敢啓，答曰，知道。
<비변사등록 184책, 정조 20년 1796년 08월18일(음)>

경제/건설

華城 城役의 완성에 수고한 工匠, 匠手를 위문하고 시상하라고 전교하다

○ 전교하기를, “화성 성역의 완성에 공장(工匠)들이 해를 지나 사역(使役)하였으니, 그 노고가 심히 크다. 봉명승지(奉命承旨)는 호쾌한 후 일일이 불러 위문하고, 외방의 장수(匠手)는 회량미(回糧米)와 돈을 별도로 더 지급하라. 이어 각기 그 도백과 수신(守臣)에게 장수(匠手)가 되돌아오기를 기다려서 작년에 장수를 먼저 방송(放送)한 예에 따라 시상한 후 장계로 아될 것을 정리의 궤청(整理儀軌廳)으로 하여금 글을 작성해 알리도록 하라. 경공(京工)은 감동당상에게 구별하여 보고하게 한 후 그들이 올라오기를 기다려 각기 아문에 등록시켜 등급을 나누어 시상하고 초기할 일을 분부한다. 모두 총리대신에게 알게 하라.” 하였다.

傳曰, 華城城役告完, 工匠之經歲使役, 其勞甚鉅, 奉命承旨犒饋後, 一一招致勞問, 外方匠手, 則回糧米錢, 別爲加給, 仍令各其道伯·守臣, 待其回還, 依昨年先放匠手例, 施賞後, 狀聞事令整理儀軌廳, 措辭行會, 京工, 令監董堂上區別報來後, 待其上來, 各令案付衙門, 分等施賞, 草記事分付, 竝令總理大臣知悉.

<비변사등록 184책, 정조 20년 1796년 08월19일(음)>

경제/건설

華城 築城에 수고한 雜物策應都廳中軍 金燾 등에게 官職을 제수하고 시상하라고 전교하다

○ 전교하기를, “3년간 경영하는 사이에 둘레[周遭]가 만타(萬垛)나 되는 성첩(城堞)이 그 성공(成功)을 알리니 신의 도움이 있는 듯하다. 감독한 제신(諸臣)들이 오늘 모두 복명(復命)하였으니 상을 논하여 수고를 위로해 주어야 하는데 총리대신과 감동당상도청(監董堂上都廳)은 작년 봄에 자친[慈駕]을 모시고 화성에 왔을 때에 먼저 상[賞典]을 주었으니 물건이 비록 공로에 맞지는 않으나 거듭 받는 것에 가까우니 아울러 의논 하지 말고 그 후 새로 차임된 자와 처음 맡은 자 및 작년 날이 얼마 안 된 자에게 이미 별도로 서계(書啓)를 하게 했으니 책응도청수원부판관(策應都廳水原府判官) 홍원섭(洪元燮)은 이미 목사(牧使)를 지냈고 또 내삼품(內三品)을 승전(承傳)함이 있었으나 아직 수용(收用)하지 않고 있으니 그 일을 중히 여기는 방법에 있어 또 어찌 헛된 제수가 있겠는가? 금일 정사 안에 준직(準職)에 조용(調用)을 하고 잡물책응도청중군(雜物策應都廳中軍) 김후(金燾)는 그 노고가 매우 크니 책응의 노고뿐만 아니니 좀 규율이 서기를 기다려 병조판서[兵闕]에 올려 제수하라. 감동급제(監董及第) 김처한(金處漢)은 일찍이 선전관(宣傳官)에 승전(承傳)했던 예에 따라 승서(陞敍)한다는 승전을 하였다. 들으니 전첨사(前僉使) 정호남(丁好南)이죄명(罪名)이 탕척(蕩澈)되었다 하니 외직(外職)에 뽑아 쓰라. 전병사(前兵使) 조학심(曹學臣)와 죄명이 분간(分揀)된 전부사(前府社) 김혁(金赫)·조운상(趙雲祥), 전오위장(前五衛將) 윤예기(尹芮基), 전영장(前營將) 김기승(金箕升), 현령(縣令) 정우태(鄭遇泰)를 아울러 승서(陞敍)하라. 전도사(前都事) 최명건(崔命健)은 훈련부정(訓練副正)의 자리가 나기를 기다려 조용(調用)하고 선공감봉사(繕工監奉事) 황정언(黃井彦)은 6품으로 옮겨 주고 그 나머지 감동은 관하(判下)된 마첩(馬帖)에 따라 등급을 나누어 상을 주고 별간역(別看役) 및 간역(看役)·비장(裨將)·패장(牌將)·원역(員役)·공장(工匠)등에게도 또한 별단판하(別單判下)에 따라

등급을 나누어 상을 주되 하비(下批) 할 수 있는 자에게는 오늘 정사에서 하비하도록 하라.” 하였다.

傳曰，經營三載之間，周遭萬堞之堞，告厥成功，若有神助，監董諸臣，今日皆復命，可以論賞酬勞，而總理大臣及監董堂上都廳，昨春陪慈駕臨華城也，先施賞典，物雖不稱勞，近於疊受，竝勿論其後新差與初當，及昨日淺者，已令別爲書啓矣，策應都廳水原府判官洪元燮，既經牧使，且有承傳內三品，尙不收用，其在重其事之道，又豈可虛除乎，今日政內準職調用，雜物策應都廳中軍金煒，其勞甚鉅，不但策應之勞，差待立規，陞授兵闕，監董及第金處漢，曾有依承傳宣傳官例，陞敘之承傳，而聞有罪名蕩滌，前僉使丁好南，外職甄用，前兵使曹學臣，罪名分揀，前府使金赫·趙雲祥，前五衛將尹芮基，前營將金箕升，縣令丁遇泰，竝陞敘，前都事崔命健，訓練副正待窠調用，繕工奉事黃井彥，六品遷轉，其餘監董，依判下馬帖，分等施賞，別看役及看役·裨將·牌將·員役·工匠等，亦依別單判下，分等施賞，可以下批者，竝令今日政下批。

<비변사등록 184책, 정조 20년 1796년 09월 10일(음)>

경제/건설

水原留守 趙心泰가 東城 및 棲鳳山 間烽을 설치하자고 청한 것에 따라 시행하도록 전교하다
수원유수(水原留守) 조심태(調心泰)가 장계한 동성(東城) 및 서봉산(棲鳳山)에 간봉(間烽)을 설치하자는 일에 대해 전교하기를, “수륙(水陸)에 간봉을 두는 것은 바로 당연한 것이다. 장계로 청한 것에 따라 시행할 것을 묘당으로 하여금 행회(行會)하게 하라.” 하였다.

以水原留守趙心泰狀啓，東城及棲鳳山設置間烽事，傳曰，水陸間烽，係是當然，依狀請施行事，令廟堂行會。

<비변사등록 184책, 정조 20년 1796년 09월 21일(음)>

경제/건설

水原留守가 華城 富戶의 가옥건축용 재목을 마련과 外營 親軍衛의 都試를 연기를 아뢰다

○ 같은 날 입시하였을 때 수원 유수 조심태(趙心泰)가 아뢰기를, “모용(帽宐)과 미삼(尾蔘) 두 조항을 화성(華城)에 허획(許劃)한 이후에 경향의 부호(富戶)들이 지금 응모하는데 살고 있는 집을 옮겨 또한 장차 차례로 성안에 지으려 하는데 근래 재목과 서까래가 매우 곤궁합니다. 옮길 부호들이 몇 십호인지 알지 못하나 그 방편의 길을 허락한 뒤에 일에 착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컨대 경기 경내에서 물가에 사적으로 나무를 기르는 산으로 덕적도(德積島) 소재 송전(松田)에 비국에서 공문을 성급(成給)하여 그들에게 들어가는 것에 따라 벌목을 허락하는 것이 일에 마땅할 듯하여 감히 이를 양달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일은 자세하며 신중함이 귀하다. 덕적진(德積鎭)은 경기 경내의 변장(邊將) 중에서 일을 아는 사람을 차정하여 형지(形止)를 적간해 오게 한 후에 다시 품지하여 물가에 사적으로 나무를 기르는 산에 벌목을 허락할 것이다. 이에 앞서 사대부 분산(墳山)에 폐단이 된 것이 매우 많아 지금 즉시 허락하기는 어렵다. 만일 분명히 팔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구별하여 배정한 뒤에 다시 거조를 내어 공문을 성급하여 벌목해 쓰게 하여 전과 같이 공무를 빙자하여 악행을 행하는 폐단이 없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또 아뢰기를, “외영(外營) 친군위(親軍衛)의 춘등(春等) 도시(都試)를 이달 25일에 설행할 뜻을 이미 장문하였습시다. 그러나 신은 지금 부호(富戶)를 옮기는 절목의 일로 하루나 이틀 이내에 내려가기가 어려워서 이달과 다음 달을 논하지 말고 다시 날짜를 택하여 물려 행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그리하라 하였다.

同日入侍時，水原留守趙心泰所啓，帽蓼兩條，許劃華城之後，京鄉富戶，今方應募，遷徙所居家舍，亦將次第營建於城內，而近來材椽，已極苟艱，當遷之戶，未知幾十，則許其方便之道，然後庶可趁卽就緒，如畿內水上私養山，德積島所在松田，自備局成給公文，使之隨所入許斫，恐合事宜，敢此仰達矣，上曰，事貴審慎，德積鎮則畿內邊將中，差定解事人，摘奸形止以來後，更爲稟旨，許斫水上私養山事，前此爲弊於士夫墳山，已多矣，今難卽許，如有分明願賣人，區別酌定後，更爲出舉條成給公文斫用，俾無如前憑公行惡之弊可也。

又所啓，外營親軍衛春等都試，以今月二十五日設行之意，纔已狀聞，而臣今以遷徙富戶節目事，一兩日內，有難下去，無論今月來月，更爲擇日退行何如，上曰，依爲之。

<비변사등록 185책, 정조 21년 1797년 02월 22일(음)>

경제/건설

德積島의 松田 재목을 水原의 민가 건축에 쓰게 하자고 청하다

○ 비변사에서 아뢰기를, “지난번 수원유수 조심태(趙心泰)가 아뢰는 것으로 인하여 화성부(華城府)에 인가(人家)를 모아 집을 건축하는 일은, 경기 덕적도(德積島)에 있는 송전(松田) 재목이 모두 벌채에 합당한지의 여부를 별도로 화랑 첨사(花梁僉使) 이해수(李海受)를 정하여 그에게 적간(摘奸)하여 오게 하였습니다. 그 회고(回告)를 들어보니, 본도의 재목은 본래 뽕뽕해서 대들보와 서까래에 취용하기에 합당한 것이 매우 많고, 백성들의 실정도 역시 자르는 것을 모두 원한다고 합니다. 부호(富戶)들을 모아 자리 잡게 하는 것은 폐지되었으나, 수원부 안에 민호를 마련할 즈음에 재목을 들여다 쓸 곳이 절로 많다고 합니다. 농사일이 한창되기 전에 그들에게 들어가는 대로 베어 쓰도록 본부의 유수와 당해 도의 도신에게 즉시 분부하고 재목을 잘라 운송하는 즈음에 그 일을 잘 아는 사람으로 그 일을 주관하게 하지 않아서는 안 됩니다. 화랑 첨사 이해수와 덕적 첨사(德積僉使) 오흥덕(吳興德)을 해조에게 구전(口傳)으로 서로 교체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답하기를, “윤택하다. 농철기가 멀지 않으니, 그들에게 조정에 하직 인사를 생략하고 바빠 부임하게 하여 만에 하나라도 농사에 방해가 되면 잠시 역사(役事)를 정지했다가 가을이 되거든 거행하라. 그 수목이 우거진 것을 민정(民情)에 모두 잘라 제거하기를 원한다고 하므로 비록 시행을 허락할지라도 만약 포구(浦口)로 내보내는 즈음에 민원이 있게 되면 당해 진장(鎭將)을 곧 그 땅에 정배(定配)하는 것을 결단코 그만 둘 수 없으니, 이 뜻을 엄중히 신칙하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司啓曰，頃因水原留守趙心泰所啓，以華城府募接人家舍營建事，京畿德積島所在松田材木合斫與否，別定花梁僉使李海受，使之摘奸以來矣，聞其回告，則本島材木，本自鬱密，棟樑椽木之可合取用者甚多，而民情亦皆願斫云，富戶募接，今雖寢罷，府內民戶拮据之際，自多材木之入用處云，趁農作方殷之前，使之隨所入斫用之意，本府留守及該道道臣處，卽爲分付，而材木斫運之際，不可不以解事者，主管其事，花梁僉使李海受，德積僉使吳興德，令該曹，口傳相換何如，答曰，允。農節不遠，使之除朝辭，星火赴任，萬一妨農，姑爲停役，待秋舉行，而以其樹木之翳翳，民情皆願斫除云，故雖爲許施，若於出浦之際，致有民怨，當該鎭將，卽其地定配，斷不可已，此意嚴飭可也。

<비변사등록 185책, 정조 21년 1797년 03월 23일(음)>

경제/건설

輦路를 닦을 때 백성들의 눈을 침범한 일에 대해 給復하는 일 등에 관해 아뢰다

○ 1월 6일 대신과 비국당상을 인견하여 입시하였을 때에 영의정 심환지가 아뢰기를, “지난번 수원부암행어사(水原府暗行御史) 신현(申絢)의 별단(別單)으로 인하여, 사근평(肆覲坪)에서 위로 노량(鷺梁)에 이르는 연로(輦路)를 닦을 때 민답(民畓)을 침범하여 들어간 곳은 값을 쳐서 주는 것의 편부(便否)를 도신(道臣)과 수신(守臣)에게 장문(狀聞)하게 한 후에 품처하겠다고 복계(覆啓)하고 행회(行會)하였습니다. 방금 경기감사 서정수(徐鼎修)의 장계를 보니, 과천현감(果川縣監) 김강(金綱)과 시흥현령(始興縣令) 이황(李璜)의 첩정(牒呈)을 낱낱이 들어 말하기를, ‘밭을 침범하여 길을 낼 때에 일을 마치고서 본 백성에게 되돌리고 응당 보수(步數)를 계산하여 給復해주는 일에도 역시 장애가 많습니다. 밭은 비록 예전대로 갈아 먹을 수 있겠으나, 논은 본래 낮고 우묵하게 들어가 물이 고여 있는 곳 이어서 지금 다시 개간하게 된다면 소비되는 공력이 그 본가(本價)를 넘어서거나 본가가 됩니다. 그러므로 밭의 주인은 도로 경작하기를 원하고 논은 주인은 값을 받기를 원하고 있으나, 도로에는 실제로 광협(廣狹)이 똑같지 못한 탄식이 있고 논을 쓸어내는 데에도 계군(契軍)이 감당하는 노역이 없으니, 논밭을 물론하고 모두 출급하여 갈아 먹게 하는 것이 옳겠습니다.’ 하였고, 광주부유수(廣州府留守) 김사목(金思穆)의 장계에서는 본부 판관(判官) 김이유(金履裕)의 첩정을 낱낱이 들어 말하기를, ‘길을 닦을 때 길 위의 보축(補築)을 견고하고 두텁게 하고, 길 아래의 굴해(掘垓:고랑을 판 곳)는 깊고 넓게 하였으나 깊고 넓은 것은 채워 넣고 견고하고 두터운 것은 깎아낼 때에 공력과 비용이 적지 않고 들어가는 역량(役糧)도 매번 원래의 토지 값을 넘어서게 됩니다. 침범하여 들어간 전답은 25부(負) 영(零)으로서, 지금 다시 개간하는 것을 그들이 하는 대로 맡겨 둔다면, 땅이 기름지고 힘이 있는 자는 도로 개간할 것이고 땅이 척박하고 힘이 없는 자는 개간하지 않을 것이며, 개간한 곳은 길이 좁아지고 개간하지 않은 곳은 길이 넓어질 것이므로 들쭉날쭉하고 고르지 않게 되어, 여러 사람의 눈에 거슬리게 될 터이니 이참에 값을 쳐주고 그 모양새를 온전하게 하는 것이 공사간(公私間)에 모두 편익한 방도라고 하겠습니다. 아울러 묘당에서 품처하기를 청합니다.’ 하였습니다. 어로(御路)의 광협(廣狹)은 본래 척도(尺度)가 있고 허다한 전답이 침범되어 들어간 것을 굳이 공력이 조금 든다고 해서 모두 묵혀버릴 수는 없습니다. 기백(畿伯)이 논한 바가 사리에 합당하니, 논밭을 물론하고 모두 출급하여 힘닿는 대로 경작하게 하고, 화성(華城) 경내도 이에 의하여 시행하라고 다 같이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그리하라 하였다.

또 아뢰기를, “이는 전라감사 김달순(金達淳)의 장계입니다. 고창현감(高敞縣監) 오형철(吳亨喆)의 첩정을 낱낱이 들어 말하기를, ‘본현의 양전(量田:토지의 측량)이 두 번 지난 기해년(己亥年:숙종45, 1719)에 있었는데, 지금 이미 헛수가 오래되어 경계가 문란하고 결역(結役)이 고르지 않아 온 경내의 민정(民情)이 모두 다시 양전(量田)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먼저 작은 고을부터 경영하게 되면 시험 삼아 하는 방도에 해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고창현을 다시 양전하는 것은 지금 거행하고, 다른 고을들이 잇달아 청하는 곳이 있게 되면 한편으로는 치계(馳啓)하고 한편으로는 시행하도록 모두 묘당에서 품지(稟旨)하여 분부하게 하소서.’ 하였습니다. 여러 도의 전정(田政)의 문란은 호남(湖南)이 가장 심하니, 다시 양전하는 정사(政事)는 실로 그만둘 수 없는 일입니다만, 일이 크고 이해(利害)를 살피기 어렵습니다. 먼저 작은 고을부터 시험하여 앞으로의 효과를 살펴보고, 이후 계속하여 양전하기를 청하는 다른 고을이 있으면 일의 형세를 상세히 살펴 편의에 따라서 시행하게 하는 것도 족히 경계를 바르게 하는 정사가 되겠습니다. 청한 바대로 시행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그리하라 하였다.

니까?” 하니, 임금이 그리하라 하였다.

또 아뢰기를, “지난번 함경감사의 장계로 인하여 대동(大同)이 부족한 폐단을 다시 별반으로 해야려서 추후 등문(登聞)하게 한 후에 품처하겠다고 복주(覆奏)하고 행회하였습니다. 지금 당해 감사 이병정(李秉鼎)의 장계를 보니, ‘영진곡(營賑穀)의 현재 총수는 27만여 석(石)인데 매년 소용되는 바는 7백여 석에 불과하니 해마다 모곡(耗穀)이 더해져 도리어 환곡이 많은 폐단을 더하므로 양청(仰請)한 바가 있었던 것은 이 때문입니다. 영진곡의 절미(折米) 2만석을, 금년부터 시작하여 옮겨서 대동곡으로 만들어 작전(作錢)하지 말고 다만 그 모곡만 취하여 상정가(詳定價)에 의준하여 여러 고을의 경비에 보태 쓰게 하면, 곡식의 저장에는 조금도 감축될 염려가 없고 대동에는 급한 것을 구제하는 효과가 있어서, 바로잡는 계책으로는 다시 다른 방도가 없을 것이니 묘당에서 품지하여 분부하게 하소서.’ 하였습니다. 영진곡과 대동곡은 명색이 달라서 부득이 변통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아니면 실로 쉽게 환작(換作)하기 어려운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북도에서는 영진곡에 매년 모곡이 더해져서 점차 환곡이 많아지는 폐단이 늘어나고 있으므로, 대동곡으로 환록(換錄)하여 모곡을 받게 하면 공비(公費)에 보탬이 될 수 있으니, 옮겨서 피차를 구제하는 것이 변통하는 방도에 해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장청(狀請)한 대로 시행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그리하라 하였다.

今正月初六日大臣備局堂上引見入侍時，領議政沈所啓，頃因水原府暗行御史申絢別單，肆觀坪以上至于鷺梁輦路修治時，民畚犯入處折價以給便否，令道守臣狀聞後稟處之意，覆啓行會矣，即見京畿監司徐鼎修狀啓，則枚舉果川縣監金鋼·始興縣令李潢牒呈，以爲犯田作路，事過還本民之應行計步給復，亦多掣礙，而旱田，雖可依舊耕食，水田，本是低陷渟水處，今若復壅則所費功力，或過其本價，或爲其本價，故田主則願其還起，畚主則願其受價，而道路實有廣狹不齊之歎，掃雪亦無契軍堪當之勞，無論田畚，一俎出給，使之耕食爲宜云，廣州府留守金思穆狀啓，則枚舉本府判官金履裕牒呈，以爲治道時，路上之補築堅厚，路下之掘垓深闊，而深闊者填實，堅厚者剗削之際，功費不些，所入役糧，每過原土之價，而犯入田畚二十五負零，今若還壅，任其所爲，則土腴而力贍者還起，土薄而力綿者不壅，壅處路狹，不壅處路闊，參差不齊，有礙觀瞻，趁此給價，全其體勢，可謂公私兩便之道，竝請令廟堂稟處矣，御路廣狹，自有尺度，許多田畚之犯入者，不必以功力之稍費，竝作陳棄，畿伯所論，允合事宜，無論田畚，一俎出給，使之隨力耕壅，華城境內，亦爲依此施行事，一體分付何如，上曰，依爲之。

又所啓，此全羅監司金達淳狀啓也，枚舉高敞縣監吳亨喆牒呈，以爲本縣量田，在於二去己亥，今已年久，經界紊錯，結役不均，一境民情，咸願改量，先從小邑而經紀，不害爲可試之道，高敞縣改量，趁今舉行，如有他邑鱗次請報處，一邊馳啓，一邊設行事，竝請令廟堂稟旨分付矣，諸道田政之紊亂，湖南爲最，改量之政，實是不可已之事，而事役既巨，利害難審，先從小邑而試之，以觀來效，如有繼此他邑之請量者，詳察事勢，使之從便許施，亦足爲正經界之政，依所請許施何如，上曰，依爲之。

又所啓，頃因咸鏡監司狀啓，大同不足之弊，更爲別般商度，從後登聞後稟處之意，覆奏行會矣，即見該監司李秉鼎狀啓，則以爲營賑穀見今都數爲二十七萬餘石，而每年所用，不過七百餘石，年年加耗，反添還多之弊，故有所仰請者此也，營賑穀折米二萬石，自今年爲始，移作大同穀，勿爲作錢，只取其耗，依詳定價，添補於列邑用下，則在穀儲，無少縮之患，於大同，有救急之效，而矯揉之策，更無他道，請令廟堂稟旨分付矣，營賑大同穀之名色，既殊，苟非不得區處，則有難輕易換作，而今此北道則營賑穀之每年添耗，漸增還多之弊，大同穀之換錄取耗，庶補公費之資，使之移作，彼此矯揉，不害爲通變之方，依狀請許施何如，上曰，依爲之。

<비변사등록 192책, 순조 1년 1801년 01월 07일(음)>

경제/건설

守陵官 李彦植의 狀啓에 대해, 廟堂에서 華城留守에게 택일해서 거행하라고 전교하다

수릉관(守陵官) 이언식(李彦植)의 장계에서, ‘본릉에 나무를 심는 일이 미진한 곳에 곧 일을 시작해야 하겠는데 장용영(壯勇營)이 철폐되었으니 어떻게 거행해야 할까요?’ 한 데에 대해, 전교하기를, “묘당에서 화성유수(華城留守)에게 분부하여 택일해서 거행하게 하되, 서울 각영의 교졸(校卒)을 전대로 내려 보내어 착실히 흠어서 심어 조금이라도 미진한 탄식이 없게 하고 때때로 낭청을 보내서 근만(勤慢)을 살피는 일도 성심껏 봉행하게 하라.” 하였다.

以守陵官李彦植狀啓, 本陵植木未盡處, 將 爲始役, 而壯勇營撤罷, 何以舉行事, 傳曰, 令廟堂分付華城留守, 擇日舉行, 而京各營校卒, 依前下送, 着實播植, 無或一毫未盡之歎, 時遣 (?) 察勤慢之行, 俾 令誠心舉行.

<비변사등록 193책, 순조 2년 1802년 02월07일(음)>

경제/건설

前承旨 李海愚가 華城과 京校에 나무를 심는 비용을 區劃하는 문제에 대해 논의하다

2월 28일 봉심 승지(奉審承旨:능소를 살피러 갔던 승지)가 입시하였을 때에 전 승지 이해우(李海愚)가 아뢰기를, “봉심하는 걸음에 나무 심은 것도 적간(摘奸)하라는 하교를 받들고 국내(局內)의 여러 곳을 두루 살펴보았는데, 각읍과 경영교졸(京營校卒)을 막론하고 지금 한창 착실히 거행하고 있고 묘목을 사서 두는 것과 군정(軍丁)의 고용(雇用)을 한결같이 비국(備局)의 지시에 따라 모두가 정성을 다해서 조금이라도 폐단이 되는 일이 없었습니다. 안산(安山) 등 네 고을은 이미 역사(役事)를 끝마쳤고 용인(龍仁)도 3~4일 내에 끝마치겠으나 다만 화성(華城)과 경영교졸이 심은 곳은 바로 용호(龍虎:풍수설에서 뿔자리의 왼쪽과 오른쪽의 지형을 이르는 말) 내외와 만년제(萬年堤)의 아래 위여서 관계된 바가 매우 긴중하고 폭원(幅圓)은 더욱 지극히 넓으며 나무를 심을 땅이 대부분 습지가 되어, 인력이 배가 더 들어가니 빨리 끝마칠 수 없겠습니다. 신은 본부의 판관(判官)과 경영의 교졸에게 특별히 신칙하여 명심하고 거행하여 조금도 소홀하지 않게 하고 들어가는 물력(物力)은 저치미(儲置米)에서 회감(會減)하며 나무를 사고 군정을 고용하는 것은 모두 돈으로 나누어 주게 하였습니다. 저치미를 돈으로 만드는 규정은 상정가(詳定價)로 매 석당 5냥(兩)인데 금년은 쌀값이 너무 싸서 3냥 1~2전을 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로써 계산하면 부족한 수량이 많게 되는데, 당초 샅군을 쓰고 나무를 산 것은 기왕 민력(民力)을 펴는 것을 소중하게 여긴 데에서 나왔으니, 이 부족한 수를 여섯 고을에서 나누어 징수하는 것도 매우 구차합니다. 이는 구획하는 도리가 있어야 하겠기에 감히 이처럼 우러러 아웁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부족한 수는 외탕고(外帑庫)와 외별고(外別庫)에 비축한 것 가운데에서 가져다 쓰고 혹 조금이라도 민읍(民邑)에 폐가 되지 않게 하며, 이번에 나무를 심는 일은 성심껏 하고 또한 미진한 곳이 없게 하도록 묘당에서 수릉관(守陵官)과 유수(留守)에게 엄히 신칙하게 하라.” 하였다.

또 아뢰기를, “능소(陵所)의 청룡(靑龍) 밖의 물은 홍살문 밖의 골짜기 어귀에서 합류하여 만년제로 들어가는데, 만약 큰 비를 만나게 되면 그 흐름이 매우 급해져서 매년 나무다리를 놓는 데에 드는 비용이 적지 않습니다. 작년에 정자각(丁字閣)의 월대(月臺)를 고쳤을 때

물린 돌이 70여 덩이가 되니, 그것으로 돌다리를 만들려고 골짜기 어귀 물가에 줄지어 놓고 미처 설치하지 못하였습니다. 나무 심는 일이 끝난 후에 이 물린 돌을 가지고 이어서 다리를 쌓게 하면 비용은 줄고 공은 배가 되어 일이 매우 편하고 좋겠습니다. 유수(留守)와 수릉관(守陵官)으로 하여금 형편을 상세히 살펴서 지금에 조성하는 것이 좋을 듯하기에 감히 이처럼 우러러 아웁니다.”

하니, 임금의 이르기를, “그리하라. 들어가는 물력은 또 외탕(外帑) 각고(各庫)에 비축된 것 가운데에서 가져다 쓰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今二月二十八日奉審承旨入侍時, 前承旨李 海愚所啓, 奉審之行, 伏奉植木摘奸之教, 遍審 局內諸處, 則無論各邑與京校, 今方着意舉行, 樹木 之買置, 軍丁之雇用, 一依備局知委, 舉皆殫誠, 無一 毫爲弊之端, 安山等四邑, 已爲訖役, 龍仁亦當於三 四日內告畢, 而但華城及京校所植處, 乃是龍虎內 外萬年堤上下, 關係既甚繁重, 幅圓尤極闊大, 種植 之地, 多在沮洳, 人力倍入, 不可草草了當, 臣另飭本 府判官及京營校卒, 使之惕念舉行, 無或放忽, 而所 入物力, 以儲置米會減, 買樹雇軍, 俱以錢分給矣, 儲 置米作錢之規, 詳定價每石爲五兩, 而今年則米價至歇, 無過三兩一二錢云矣, 以此計之, 則不足之數, 自當夥然, 當初雇軍買樹, 既出於爲所重紓民力之 意, 則以此不足之數, 分徵於六邑, 亦甚苟艱, 此則似 有區劃之道, 故敢此仰達矣, 上曰, 不足之數, 以 外帑庫·外別庫留儲中取用, 無或一毫爲弊於民邑, 今番植木, 誠心爲之, 亦無未盡處事, 令廟堂嚴飭 守陵官及留守處.

又所啓, 陵所青龍邊山外之水, 合流於紅箭 門外洞口, 入於萬年堤, 若值潦雨, 則其流甚急, 每年 修治木橋, 其費不少, 昨年丁字閣月臺修改時, 退 石七十餘塊, 爲設石橋, 列置洞口水邊, 未及設始矣, 植木畢役後, 用此退石, 仍爲築橋, 則費省功倍, 事甚 便好, 令留守與守陵官, 詳審形便後, 及此時造成 似好, 故敢此仰達矣, 上曰, 依爲之, 所入物力, 亦 以外帑各庫留儲中取用, 可也.

<비변사등록 193책, 순조 2년 1802년 02월 28일(음)>

경제/건설

水原留守 鄭大容이 健陵 齋室 앞길의 돌다리 공사와 식목 비용의 區劃을 청하다

○ 같은 날 입시하였을 때에 수원유수 정대용(鄭大容)이 아뢰기를, “**건릉(健陵)**의 재실(齋室) 앞 길 돌다리 공사에 들어가는 물력(物力)은 외탕고(外帑庫)에서 지급하라고 전에 이미 성명(成命:임금이 결정하여 내린 명령)이 계셨으나, 본 창고에 남아 있는 것이 다 없어져 지급하지 못하고 능소(陵所)에 나무를 심을 때 들어가는 물력을 각 고을에서는 으레 저치미(儲置米)로 회감(會減)하였으나 본부에서는 저치미로 원래 구획한 것이 5백 석인데 더 지급한 것이 이미 많아서 나무를 심을 때 들어간 것을 쌀로 회감하는 것은 형세가 그리할 수 없습니다. 돌다리에 들어가는 돈 1천 7백 70냥 영(零)과 나무를 심는 데 들어가는 돈 4천 3백 18냥 영을 합한 돈 6천 1백 9냥 영을 저치고(貯置庫)에 있는 것으로 우선 구획해 주어야 하겠는데, 저치고의 전화(錢貨)는 감히 아래에서 마음대로 할 수 없으니, 대신에게 하문하여 처리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대신의 뜻은 어떠한가?” 하였다. 영의정 심환지가 아뢰기를 “능소에 돌다리를 쌓는 것과 나무를 심는 데 드는 물력을 해부(該府)에서 이미 창고에 저장된 것이 없다면, 사세가 변통하여 획부(劃付)해야 하겠습니다. 신 등이 물러가서 요상(僚相)과 함께 좋은 쪽으로 강구하여 삼가 복계(覆啓)하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그리하라 하였다.

同日入侍時, 水原留守鄭大容所啓, 健陵齋室前路石橋之役, 所入物力, 以外帑庫上下事, 前有

成命，而本庫遺在告盡，不得上下，陵所植木時，所入物力，各邑，例以儲置米會減，而本府則儲置米元畫五百石，加下已多，植木所入之以米會減，其勢末由，石橋所入錢一千七百七十兩零，植木所入錢四千三百三十八兩零，合錢六千一百九兩零，以貯置庫所在，姑先區畫，而貯置庫錢貨，有不敢自下擅便，下詢大臣處之何如，上曰，大臣之意何如，領議政沈曰，陵所築橋，及植木物力，該府既無庫儲，則事勢當推移畫付，臣等退與僚相，從長講確，謹爲覆啓矣，上曰，依爲之。

<비변사등록 193책, 순조 2년 1802년 06월 10일(음)>

경제/건설

수원의 山城이나 廩宇를 수선하는 등의 큰 역사를 敦寧府에서 照管하기를 건의하다

○ 10월 9일 영돈녕부사(領敦寧府事)가 입시하였을 때에 영돈녕부사 김조순(金祖淳)이 아뢰기를, “신(臣)은 이번에 동역(董役)으로 연이어 독성산성(禿城山城)에 머물렀습니다. 대개 이 산성의 형세는 삼남(三南)의 요충을 장악하고 있어, 예전에 권율(權慄)이 왜적(倭賊)과 항거하면서부터 성(城)을 쌓고 진(鎭)을 설치하여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만에 하나 완급(緩急) 뜻하지 않은 사대(事代)이 있으면, 수원(水原)은 성이 광활(廣闊)하고 지대(地帶)가 낮아 험지(險地)가 없으므로 형세가 장차 독성을 거점(據點)으로 하여 지켜야 할 터이니, 그 보장(保障)이 되는 것이 대흥산성(大興山城)이 송경(松京:개성)에 있어서와 같을 뿐만이 아닌데, 더구나 능원(陵園)을 이곳에 모신 이래로는 이 땅의 긴중함은 더욱 자별함이 있습니다. 전에 수원이 부사(府使)였을 때에는 중군 겸 별장(中軍兼別將)이 산성(山城)에 항상 머물렀는데, 한번 유수(留守)로 승격된 뒤로부터는 마침내 단진별장(單鎭別將)으로 낮게 되었고 진보의 상황도 지극히 잔박(殘薄)하여져서 성첩(城堞)·누로(樓櫓:망루)·해우(廩宇)·기계(器械)등을 수선하고 준비하는 것은 애당초 논의할 엄도 못 내는데, 만일 또 경외(京外)의 구근(久勤) 자리에 속하게 되면 그 지망(地望:지위와 명망)은 또 군병과 백성의 마음을 진압할 수가 없습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시임 별장이 임기가 찬 뒤에는 구근으로 후임을 차촉하지 말고, 전대로 해부(該府)의 중군이 별장의 직임을 겸관하여 오고가며 머물러 있으면서 전념하고 통轄(統轄:모두 거느려 다스림)하며, 만약 성을 수리하고 해우를 수선하는 큰 일을 당하면 본부에서 조관(照管:맡아 관리함)하여 힘을 보태는 것이 사실 상두[桑土]의 뜻에 맞을 듯하오나 일이 관제(官制)에 관계되므로 묘당에 하순(下詢)하여 처리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그리하라 하였다.

今十月初九日領敦寧入侍時，領敦寧金祖淳所啓，臣於今番董役，連住禿城山城矣，蓋此山城形勝，控扼三南衝要，昔自權慄（慄）拒倭，築城設鎭，以至於今，而脫有緩急，水原城闊而地庫，無險可恃，勢將以禿城爲守，則其爲保障，不啻如大興之於松京，而況南陵園以來，此地之繁重，尤有別焉，在前水原之爲府使時，則中軍兼別將常住山城，一自陞留之後，遂爲單鎭別將，而鎭況至爲殘薄，其於城堞樓櫓廩宇器械之繕葺措備，初非擬議，如又屬於京外久勤之窠，則其地望，亦不足以鎭係鎭民之心，臣意則時別將準瓜之後，勿以久勤差代，依前以該府中軍兼管別將之任，使之往來留住，專意統轄，若當繕城葺廩之大役，則自本府，亦爲照管助力，實合桑土之義，而事係官制，下詢廟堂處之，何如，上曰，依爲之。

<비변사등록 196책, 순조 5년 1805년 10월 10일(음)>

경제/건설

水原留守 金履翼이 보고한 대로 迪瞻峴에 輦路를 修築하라고 전교하다

수원유수 김이익(金履益)의 유첨현(迪瞻峴) 연로(輦路)의 수축에 관한 장계에 전교하기를, “아뢰 바가 매우 좋다. 민폐를 끼치지 말고 이에 의해 거행하도록 회유(回諭)하라.” 하였다.

以水原留守金履翼狀啓, 迪瞻峴輦路修築事, 傳曰, 所奏甚好, 無貽民弊, 依此舉行事回諭.

<비변사등록 199책, 순조 9년 1809년 02월 11일(음)>

경제/건설

水原留守 金履翼의 장계대로 台峰의 산사태가 난 곳을 修築하는 일을 초기하도록 하다

○ 수원유수(水原留守) 김이익(金履翼) 장계의 태봉(台峰)의 사태 난 곳을 수축하는 일에 대해 전교하기를, “지금 경이 등문(登聞)한 바로 인해 본부(本府)의 사세가 매우 안타까운 상황이라는 것을 알았다. 막중한 능역(陵役)에 공저(公儲)가 모두 비었다고 하니 참으로 한심스럽다. 그러나 반드시 구획하는 일이 있는 뒤에라야 능역에 들어가는 비용이 넉넉하게 될 것이다. 이는 상의하지 않을 수 없으니 묘당에서 논리를 갖추 초기하게 하라.” 하였다.

以水原留守金履翼狀啓, 台峰汰落處修築事, 傳曰, 本府事勢, 今因卿之登聞, 已知切悶之狀, 而莫重陵役, 謂之公儲俱枵, 誠爲寒心, 然必有區劃之舉 然後, 陵役所入, 當爲有裕, 此不可不商議, 令廟堂論理草記.

<비변사등록 200책, 순조 10년 1810년 01월 29일(음)>

경제/건설

台峰의 산사태가 난 곳을 修築하는 비용은 貯置庫에 남은 것을 사용하게 할 것을 청하다

변사에서 아뢰기를, “수원유수(水原留守) 김이익(金履翼)이 장계에서, 본부의 태봉(台峰)은 바로 원소(園所)와 서로 바라다 보이는 곳인데 장마를 겪어 떨어져 나갔으니 수축하는 물력에 대해 삼가 처분을 기다린다고 한 일에 대해, ‘본부의 사세는 지금 경이 등문한 것을 통해 매우 안타까운 상황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러나 막중한 능역(陵役)에 공저(公儲)가 모두 비었다고 하니 참으로 한심스럽다. 반드시 구획하는 일이 있는 뒤에라야 능역에 들어가는 비용이 넉넉하게 될 것이다. 이는 상의하지 않을 수 없으니 묘당에서 논리를 갖추 초기하게 하라.’는 명을 내리셨습니다. 지금 수신(守臣)이 아뢰바 태봉의 떨어져나간 곳이 이처럼 넓다면 지금 당장 수축하여 조금도 늦출 수 없으나 들어가는 재력을 현재 달리는 구획할 방도가 없습니다. 본부의 저치고(貯置庫)에 남아 있는 것이 아직 1만 5천여 냥이 되는데 역처(役處)에 들어가는 비용을 미리 헤아리기는 참으로 어려우나, 이것에서 적절하게 가져다 쓰되 해동(解凍)이 되거든 즉시 일을 시작하도록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답하였다.

司啓曰, 水原留守金履翼狀啓, 本府台峰卽 園所相望之處, 而經潦脫落, 修築物力, 恭俟處分事, 傳曰, 本府事勢, 今因卿之登聞, 已知切悶之狀, 而莫重陵役, 謂之公儲俱枵, 誠爲寒心, 然必有區劃之舉然後, 陵役所入, 當爲有裕, 此不可不商議, 令廟堂論理草記事, 命下矣, 見今守臣所啓, 台峰 脫落處, 若是浩大, 及今修築, 不容少緩, 而所入財力, 見無從他區劃之道, 本府貯置庫遺在, 尙爲一萬五 千餘兩之數, 役處容入, 固難預度, 以此量宜取用, 待 解凍卽爲始役之意, 分付何如, 答曰, 允.

<비변사등록 200책, 순조 10년 1810년 02월 01일(음)>

경제/건설

水原留守 金履翼에게 待罪하지 말라고 回諭하라고 전교하다

수원유수 김이익(金履翼)의 장계에서, ‘**태봉(台峰)**의 탈락(脫落)된 곳을 보축(補築)하는 역사를 시작한 지 10일 만에 끝냈습니다. 당초 역사를 시작할 적에 청한 것은 단지 베껴놓은 전례에만 근거하여 청허(請許)한 물력(物力)이 자못 부풀려져 지금에 와서는 이처럼 서로 어긋나므로 황공한 마음으로 대죄(待罪)합니다.’ 라고 한 일에 대해 전교하기를, “대죄하지 말라고 회유(回諭)하라.” 하였다.

以**水原留守**金履翼狀啓, 台峰脫落處, 補築之役, 經始十日告訖, 當初始役之仰請也, 只憑前例之 騰置, 所計物力, 殆涉鋪張, 到今若是相左, 惶恐待罪 事, 傳曰, 勿待罪事回諭.

<비변사등록 200책, 순조 10년 1810년 03월 16일(음)>

경제/건설

水原留守 李益運 등이 水原府의 梅香橋를 石橋로 改築하는 문제에 대해 논의하다

○ 같은 날 입시하였을 때에 **수원유수(水原留守)** 이익운(李益運)이 아뢰기를, “**수원부(水原府)** 성내의 **매향교(梅香橋)**는 바로 **동장대(東將臺)**에 거둥하실 때의 어로(御路)입니다. 해마다 목교(木橋)를 조성(造成)하였는데 바닥에 큰 돌이 걸쳐져 있어서 주목(柱木)을 깊이 박지 못하기 때문에 물살이 세차고 매우 빨라서 교량(橋梁)이 지탱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하여 한번 큰 비가 내릴 때마다 번번이 다리가 통째로 무너지고, 다리가 무너지는 데에 그칠 뿐만 아니라 토목(土木)이 흘러내려 수문이 막혀 필경엔 성첩(城堞)과 수문에 이르게 됩니다. 이로 인해 무너지고 부서져서 성첩을 수리하는 일이 곧 해마다 하는 일이 되었고 성을 수리하는 일이 쌓임에 따라서 모곡(耗穀)이 줄어들어 10년이 못가서 강화부(江華府)의 공화(公貨)가 필시 텅 비게 된 뒤에야 그치게 될 것입니다. 이를 생각하면 참으로 작은 염려가 아니니, 돌아보건대 지금 폐단을 바로잡는 방법으로는 석교(石橋)를 짓는 것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사역(事役)이 이미 커졌고 또 새로 만드는 것에 관계되므로 신이 마음대로 할 수 없어 감히 이렇게 진달합니다. 대신에게 하문(下問)하여 처리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임금의 대답하기를, “대신의 의견은 어떠한가?” 하였다.

영의정 김재찬이 아뢰기를, “목교를 석교로 바꾸면 외관상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실로 성첩을 수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신이 이에 대해 어찌 이견(異見)이 있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그리하라 하였다.

同日入侍時, **水原留守**李益運所啓, **水原府**城內梅香橋卽駕臨東將臺御路也, 每歲造成木橋, 而頑石盤據, 柱木無以深植, 悍湍迅急, 橋梁無以支吾, 每經一番大雨, 輒致全橋圯潰, 非但橋圯而止, 土木流下, 水門湮塞, 畢竟至於城堞水門, 因此壞破, 繕堞之役, 便成歲課, 修城之儲, 從而耗縮, 不出十年, 華府公貨, 必將枵然而後已, 言念及此, 誠非細慮, 顧今揀弊之方, 無出於營造石橋, 而事役既鉅, 又係新創, 臣不敢擅便, 敢此仰達, 下詢大臣處之何如, 上曰, 大臣之意何如, 領議政金曰, 木橋改爲石橋, 則不但觀瞻之爲美, 實爲守護城堞之一助, 臣於此, 豈有異見, 上曰, 依爲之.

<비변사등록 204책, 순조 14년 1814년 02월 10일(윤)>

경제/건설

수원유수 李益運이 보고한 御路의 石橋 수축 문제 등에 대해 논의하다

(…) 또 아뢰기를, “**수원유수(水原留守)** 이익운(李益運)이 보고한 것을 보니, ‘본부(本府)의 동장대(東將臺)의 어로(御路)인 석교(石橋)를 수축하는 데 드는 물력(物力)을 별달리

변통하지 않을 수 없으니, 공명첩(空名帖) 4백 장(張)을 전례 대로 계품(啓稟)해서 획하(劃下)하여 주소서.’ 하였습니다. 이전에 안변(安邊)·안동(安東)·강화(江華)의 선수(繕修)하는 역사에서 또한 공명첩을 만들어 주는 것을 허락하였습니다. 이번 본부의 교역(橋役)은 더욱 소중한 일인데, 재력(財力)이 과연 넉넉하지 못하므로 공명첩 3백 장을 청한 대로 만들어 보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그리하라 하였다. (…)

(…) 又所啓，卽見水原留守李益運所報，則以爲，本府東將臺御路石橋修築物力，不可不別般變通，空名帖限四百張，依已例啓稟劃下爲辭矣，前於安邊·安東·江華繕修之役，亦許空名帖成給，今此本府橋役，尤有所重，而財力果爲不敷，空名帖三百張，依所請成送何如，上曰，依爲之。(…)

<비변사등록 204책, 순조 14년 1814년 04월 25일(음)>

경제/건설

水原 梅香橋의 개축공사에 2천냥을 기부한 李漢良을 邊將에 調用할 것을 청하다

비변사에서 아뢰기를, “수원유수(水原留守) 이익운(李益運)의 장계를 보니, ‘본부의 매향교(梅香橋)를 개축(改築)하는 역사(役事)에 있어서 임피(臨陂)에 사는 가선대부(嘉善大夫) 이한량(李漢良)이 2천 냥(兩)을 원납(願納)하여 이처럼 거대한 역사를 잘 마치게 한 일은 매우 가상하니 포상(褒賞)하는 도리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묘당에서 품처하게 해 주소서.’ 하였습니다. 백성들의 힘을 수고롭게 하지 않고 공화(公貨)도 들이지 않고서 여가가 지나가는 석교(石橋)의 역사를 지금 이미 완성하였는데, 원납인이 재물을 바쳐서 역사를 도운 것은 더욱 가당한 일입니다. 일전에 강화성(江華城) 역사 때의 원납인(願納人)에게도 후한 상을 주었는데 지금은 먼 도의 사람으로 수량이 이미 배나 많고 역사하는 곳도 중하여 다른 역사에 비해 자별(自別)합니다. 가선대부 이한량에게 특별히 변장(邊將)에 조용(調用)하는 은전을 베푸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답하였다.

司啓曰，卽見水原留守李益運狀啓，則以爲，本府梅香橋改築之役，臨陂居嘉善李漢良願納二千兩，使此鉅役善成，極爲可尙，合有褒賞之道，請令廟堂稟處矣，不勞民力，無煩公貨，蹕路石橋之役，今已告成，而願納人之納財補役，尤爲嘉尙，日前江華城役時，願納人亦許顯賞，今則以遠道之人，數既倍多，役處所重，比他自別，嘉善李漢良特施邊將 調用之典何如，答曰，允。

<비변사등록 204책, 순조 14년 1814년 06월 14일(음)>

경제/건설

摠護使 洪奭周가 火巢 근처의 民家를 철거하는 문제 등에 대해 논의하다

○ 같은 날 입시하였을 때에 총호사(摠護使) 홍석주(洪奭周)가 아뢰기를, “새로 정한 능소(陵所)가 장릉(長陵:인조와 원비(元妃) 인열왕후의 능) 왼쪽 기슭의 주안(主案) 용호(龍虎)의 안에 있는데, 모두 예전의 화소(火巢)이므로 내룡(來龍) 동쪽과 청룡(靑龍) 바깥에 매우 가까운 땅에 더 화소를 개척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전에 화소의 경계를 정한 뒤에 기백(畿伯:경기감사)의 말을 들으니 인가(人家)가 더 개척한 안에 들어간 것이 있는데 1백 2호(戶)나 된다고 하고, 그 가운데 42호는 매우 가까운 데에 있어서 훼손(毀撤)하지 않을 수 없으며, 그 밖의 60호는 내룡 지각(枝脚)의 사이에 있어 거리가 비록 조금 멀지만 이미 화소의 안이어서 또한 그대로 남겨 둘 수 없는데, 동칠릉(東七陵)의 화소 중에 있는 갈매리(葛梅里), 화성(華城) 능원(陵園)의 화소 중에 있는 안녕리(安寧里)는 사체(事體)가 중대하여 감히 쉽게 전례를 끌어올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감히 이렇게 양달합니다.”

하니, 대왕대비 전에서 답하기를, “화소와 인가가 매우 가까운 곳이 아니고 만약 조금 멀다면 덮어두는 것이 무방(無妨)하다. 또 옛날에 백성에게 폐단을 끼치지 않게 하려는 성의(聖意)를 우러러 본받기 위해서도 멀고 가까움과 완급(緩急)의 휘철하는 선후(先後)를 도신(道臣)과 산릉도감당상(山陵都監堂上)이 알아서 거행하라.” 하였다.

또 아뢰기를, “삼도(三度) 습의(習儀:예식 연습)할 때에 대여(大輦)가 으레 모화관(慕華館) 길 제소(祭所)에서 도로 들어가는데 그대로 반우(返虞) 습의를 행하였습니다. 추모현(追慕峴)은 평소 험준하다고 하니 대여를 모시고 가면서 별도로 더 신중하지 않을 수 없는데, 이전에 반우 습의할 때에도 모화관에서 도로 들어가고 대여는 그대로 여사대장(輦士大將)으로 하여금 모시고 추모현을 넘도록 먼저 시험한 것은 일찍이 전례가 있으니 지금도 이렇게 거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대왕대비 전에서 그리하라 답하였다.

同日入侍時，摠護使洪所啓，新定陵所，在於長陵左麓主案龍虎之內，皆是舊火巢，而來 龍東邊與青龍外至近之地，則不可不加拓火巢矣，日前火巢定界之後，聞畿伯言，則人家之入於加拓之內者，爲一百二戶之多，其中四十二戶，則處在切近，不可不毀撤，其外六十戶，在來龍枝脚之間，相距雖稍 遠，而既是火巢內，亦不容仍留，東七陵火巢中，有葛梅里，**華城**陵園火巢中，有安寧里，而事體重大，有 不敢容易援例，故敢此仰達矣，大王大妃殿答曰，火巢人家，非至近之處，而若稍遠，則不但置之無妨，且爲仰體昔日不爲貽弊於百姓之聖意，遠近緩 急之毀撤先後，道臣與山陵堂上，知悉舉行。

又所啓，三度習儀時大輦，例至慕華館路祭 所還入，而仍行返虞習儀矣，追慕峴素稱險峻，大輦陪奉，不容不另加愼重，在前返虞習儀，自慕 華館還入，而大輦則仍令輦士大將，陪踰追慕峴，以爲先試之地，曾有已例，今亦依此舉行何如，大王大 妃殿答曰，依爲之。

<비변사등록 223책, 현종 1년 1835년 04월03일(음)>

경제/건설

水原留守 徐有渠가 健陵의 소소한 修理를 筦千庫에서 거행하는 문제에 대해 아뢰다

○ 같은 날 입시하였을 때에 **수원부유수** 서유구(徐有渠)가 아뢰기를, “**현릉원(顯隆園)**을 천봉(遷奉)한 뒤에 화소(火巢) 안의 민전(民田)을 값을 주고 사서 해마다 세입(歲入)을 **관천고(筦千庫)**에 저축해 두고, 정자각(丁字閣) 이하를 보수하는 일을 오로지 맡아 거행하라고 써서 영식(令式)으로 드러내어 지금까지 행하였으나, **건릉(健陵)**의 수개(修改)는 오히려 다른 능침(陵寢)의 예에 따라 탁지(度支)에서 거행하는데 매번 공역(功役)을 시작할 때에 왔다 갔다 하며 세월을 허비하여 끝내는 해고(該庫)에서 아침에 명령하고 저녁에 고치는 것만 못합니다. 또 한 지역 안의 능원(陵園)은 예를 달리할 수 없으니 지금부터 제릉(齊陵)·후릉(厚陵)의 수개는 개성부에서 거행하고, 현릉(獻陵)의 수개는 광주부에서 거행하는 예에 따라 건릉을 수리하며, 도감을 설치하는 커다란 역사(役事) 외에 소소하게 수리하는 역사는 일체 해고에서 거행한다면 사세가 이미 편하고 정리(情理)에도 맞습니다. 그러나 사체가 막중하니 대신에게 물어서 처리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여, 대왕대비 전에서 이르기를, “대신의 뜻은 어떠한가?”

하니, 우의정 박종훈(朴宗薰)이 말하기를, “**관천고**는 본래 원침(園寢)을 수개할 때에 들어가는 비용을 위한 것이나, 능원을 설치함은 사체가 다름이 없어야 하고 또 끌어올 만한 선례가 있으니, **화류(華留)**가 아뢴 대로 시행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하여, 대왕대비 전에서 그리하라고 답하였다.

또 아뢰기를, “본부의 **팔달문(八達門)** 밖의 어로(御路)는 바로 기유년(己酉年:정조13,

1789)에 읍을 옮긴 처음에 척량(尺量)하여 실시(設施)한 것으로서 상류천(上柳川)에서 벽산보(碧山淤)를 지나서 하류천(下柳川)을 거쳐서 대황교(大皇橋)를 만들었습니다. 을유년간(乙酉年間: 순조25, 1825)에 벽산보에 남둔(南屯)을 설치하였을 때 동쪽으로 치우친 비탈 언덕 위에 길을 옮기고 얼마 있다가 남둔 수문(水門)에 탈이 있어서 처음에는 물을 저장하지 않았으나, 오가는 행인이 신작로(新作路)가 조금 돌아간다고 여겨 다시 옛길을 따라서 곁에 길을 만들었는데 금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10여 년이 되어 큰길이 되었으나, 신작로는 건너는 사람이 거의 드물어 풀들이 무성하여 봄, 가을로 길을 닦지만 백성의 힘만 그냥 허비됩니다. 지금 만약 다시 옛길을 통하게 하고 약간 더 수리하여 행행(行幸) 때의 연로(輦路)를 준비하고, 신작로는 백성이 개간하여 경작하라고 허락하여 해마다 세입을 관천고에 준다면 일이 매우 편하고 좋겠습니다. 크고 작은 백성들이 한 목소리로 이것을 원하나, 당초에 길을 옮김은 이미 장문하여 거행한 일이므로 감히 마음대로 편히 할 수 없습니다. 감히 이렇게 양달합니다.”

하니, 대왕대비 전에서 답하기를, “옛길로 하라.” 하였다.

同日入侍時，水原府留守徐有渠所啓，顯隆園遷奉後火巢內民田，給價買取，每年稅入，儲置筦千庫，丁字閣以下修補之節，專縮舉行，著爲令式，行之至今，而健陵修改，猶循他陵寢例，自度支舉行，每當功役之作，往復費日，終不如該庫之朝令而夕備，且於一局之內陵園，不宜異例，自今依齊厚陵修改之自開城府舉行，獻陵修改之自廣州府舉行之例，健陵修理，除設都監，大役外小小修葺之役，一體自該庫舉行，則事勢旣便，情理亦叶，而事體莫重，下詢大臣處之，何如，大王大妃殿曰，大臣之意，何如，右議政朴曰，筦千庫，本爲園寢修改所需，而設陵園，事體宜無異同，且有可援之已例，依華留所奏施行，似好矣，大王大妃殿答曰，依爲之。

又所啓，本府八達門外御路，卽己酉移邑之初尺量設施者也，自上柳川，過碧山淤，歷下柳川，以建大皇橋矣，乙酉年間，設施南屯於碧山淤時，移路於東偏陂垞之上，旣而南屯水門有頤，初不得貯水，而往來行人，以新作路之稍覺迂迴，復從舊路側作路禁之不得，于今十餘年，仍成大路，而新作路則跋涉旣罕，草蕨茂盛春秋修治，徒費民力，今若復通舊路，略加葺治，以備幸行時輦路，而新作路則許民耕墾，每年稅入，付之筦千庫，則事甚便宜，大小民人，一辭願此，而當初移路，旣是狀聞，舉行之事，有不敢擅便，敢此仰達矣，大王大妃殿答曰，以舊路爲之。

<비변사등록 225책, 헌종 3년 1837년 04월 11일(음)>

경제/건설

領議政 金左根이 화성의 북둔의 보축 문제 등에 대해 논의하다

○ 1월 20일 대신과 비국당상을 인견하여 입시하였을 때에 영의정 김좌근(金左根)이 아뢰기를, (….) 또 아뢰기를, “화성(華城) 북둔(北屯)은 정묘 조(正廟朝) 을묘년(乙卯年: 정조19, 1795)에 판 큰 방죽[陂池]입니다. 본부(本府)에 이미 서둔(西屯)이 있었는데 또 이 북둔을 설치하였으니, 이것은 대성인께서 붙이신 정의(精義)가 낙읍(洛邑)이 진수(灋水)의 동쪽과 간수(澗水)의 서쪽에 있어 길한 것과 같은 뜻입니다. 양쪽 둔의 민전에 물을 대서 이에 힘입어 가뭄의 재난을 면한 것이 이제 60년입니다. 세월이 오래되어 수리하고 방비하는 것이 점차 소홀해져서 신이 분사(分司)를 맡고 있을 당시 이미 토사로 덮이고 진흙으로 짊 막혀 옛 모습을 하고 있지 못하였는데, 근래에 들으니 그 반 이상이 메워 폐기되어 땅이 되었다고 합니다. 무릇 제언을 둔 곳은 깨끗이 준설하고 보축(補築)하는 것이 나라의 법입니다. 더구나 이 지역과 이 둔전을 어찌 그대로 파묻혀 있는 채로 내버려 두어 다시 오랑캐의 땅이 되게 하겠습니까? 본부의 재력은 스스로 단속하기에 충분하지 않아 소결(疏決)하고 준설

하는 것을 전부 감당하도록 책임지우기가 어렵습니다. 1만 냥을 호조와 선혜청 및 훈련도감·금위영·어영청의 삼영에 분배(分排)하여 내려 보내고, 올봄 얼어붙은 땅이 녹기를 기다렸다가 역사를 시작한다면 사태(沙汰)를 막고 물길을 끌어 오는 영구적인 방도가 될 것입니다. 본부의 영읍(營邑)에게 좋은 쪽으로 강구하게 하소서. 서둔이 북둔보다 조금 낮고 형지(形址)가 북둔에 비하여 몇 갑절이나 광활하니, 미리 준비하여 방어하는 계획 또한 소홀해서는 안 됩니다. 일체 좋은 쪽으로 계획하여 처리하도록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그리하라 하였다. (…)

今正月二十日大臣備局堂上引見入侍時，領議政金所啓，(…) 又所啓，**華城北屯**，正廟乙卯，疏鑿之大陂池，而本府既有西屯，又設此北屯，卽大聖人精義所寓，若洛邑瀍東澗西之意也，而兩屯民田灌溉，賴免旱乾之災者，今六十年矣，歲年既久，修防漸忽，自臣待罪分司時，已見其汰覆淤塞，不成舊觀，比聞其所填廢，過半成陸云，夫有堤堰處，濬滌補築，卽國典也，伏況此地此屯，何可一任其堙而復夷乎，本府財力，自來不敷，有難責之全當疏浚，限萬兩分排於戶惠廳及訓禁御三營，下送待今春，土脈融解後始役，凡防汰引流，期於久遠之方，使本府營邑，從長講究，西屯稍勝於北屯，而形址之廣闊，比北屯爲倍蓰，則備禦捍防之策，亦不可疎忽，一體從長經紀之意，分付何如，上曰，依爲之。(…)

<비변사등록 241책, 철종 5년 1854년 01월20일(음) >

경제/건설

水原 行宮과 行閣을 改建하는 物力을 區劃하도록 청하다

비변사의 계사에, “**수원유수(水原留守)** 김병교(金炳喬)의 보고를 보니 ‘본부(本府)의 행궁(行宮) 자내(字內)의 화재가 난 **유여택(維與宅)의 행각(行閣)**을 지금 곧 개건(改建)해야 하겠는데 비축이 텅 비어 경영할 수 없으니 그 소용으로 돈 3천 냥을 획하(劃下)해 주소서.’ 하였습니다. 청한 물력이 많지 않을뿐더러 개건하는 칸수[間數] 또한 그다지 크지 않으니, 호서(湖西)에 있는 병신별무미(丙申別買米) 7백 석을 획급하여 가져다가 쓰게 하되, 집전(執錢)하자면 역사(役事)의 쓰임에 대지 못할 것이니 이는 본부에서 형편대로 추이(推移)하여 제때에 일을 완공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답하였다.

司啓曰，卽見**水原留守**金炳喬所報，則以爲，本府行宮字內，維與宅行閣失火處，及今改建，而所儲枵然，末由經紀，物力錢三千兩劃下，爲辭矣，所請物力，數雖無多，改建間架，亦不浩大，以湖西所在丙申別買米中七百石劃給，使之取用，而其所執錢，似未趁於役用，此則自本府，從便推移，以爲及時完役之地，何如，答曰，允。

<비변사등록 247책, 철종 11년 1860년 03월 16일(윤) >

경제/건설

左議政 李最應이 수해를 당한 곳을 救恤하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다

○ 7월 29일 대신과 정부당상을 인견하여 입시하였을 때에 좌의정 이최응(李最應)이 아뢰기 (…) 또 아뢰기를, “**수원유수(水原留守)** 송근수(宋近洙)의 장계를 보니, ‘**서둔(西屯)**에 제방을 쌓는 공사가 지금 막 끝났습니다. 여기에 들어간 물력(物力)은 이미 지방조(支放條)에 들어가 있으니, 가장 먼저 갚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행궁(行宮) 이하의 여러 곳을 수리하는 일도 한시가 급한데, 창고가 텅 비어 있습니다. 그러니 특별히 모양전(某樣錢)을 떼어 주라고 묘당에서 품처하게 해 주소서.’ 하였습니다. 이 수원부는 중요한 지역인 만큼 수리하는 일을 신속히 하여 늦추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의 사세(事勢)로는

이를 떼어 줄 만한 재정이 없으니, 본영(本營)에 있는 청전(淸錢) 가운데서 2만 냥을 한정해서 변통해 들여다 쓰게 하여 공사를 시작하는 밀천으로 삼으라고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그리하라 하였다. (…)

今七月二十九日大臣政府堂上引見入侍時，左議政李所啓，(…) 又所啓，卽見水原留守宋近洙狀啓，則西屯堤垆之役，今纔告竣，所入物力，既是支放條，則不可不急先報下，且今行宮以下諸處修繕，時日爲急，庫儲枵然，特以其樣錢劃下事，請令廟堂稟處矣，是府，重地也，修繕之節，宜亟勿徐，而以今事勢，無財可劃，就本營所在淸錢中，限二萬兩變通入用，以爲始役之地事，分付何如，上曰，依爲之。(…)

<비변사등록 256책, 고종 12년 1875년 07월 29일(음)>

경제/건설

水原의 남은 淸錢 3만 냥을 華城城廩를 修繕하는 데 사용하게 할 것을 청하다

○ 의정부에서 아뢰기를, “지난번에 화성(華城)의 성곽과 관청 건물을 수리할 때 들어갈 물력(物力)으로 본영(本營)에 있는 청전(淸錢) 가운데 2만 냥을 떼어 주었습니다. 방금 화성유수 송근수(宋近洙)가 보고한 것을 보니, ‘이전에 떼어 준 것은 지금 다 써버려서 공사가 이로 인해 중단되었으니, 특별히 더 떼어 주어 공사를 완성시킬 수 있도록 해 주소서.’ 하였습니다. 공사가 이제 막 시작되었는데 공사비용은 벌써 고갈되어버렸으니, 사세가 급하게 된 점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해영(該營)에 남아 있는 청전 3만 냥을 공사비에 들어가는 대로 떼어 쓰라고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답하였다.

府啓曰，向以華城城廩修繕物力，以本營所在，淸錢中二萬兩劃給矣，卽見該留守宋近洙所報，則前劃今爲盡用，工役因此中撤，特許更劃，以爲完役之地爲辭矣，力役纔始，工費已罄，事勢之悶急，有不可不念，以該營餘在淸錢三萬兩，隨所入劃用事分付何如，答曰，允。

<비변사등록 256책, 고종 12년 1875년 09월 18일(음)>

경제/건설

領議政 李最應이 수원 용주사의 보수 물력의 획급을 요청하다

○ 오늘 11월 15일 약방의 입진에 대신과 의정부 당상을 인견하여 입시하였을 때에, 영의정 이최응(李最應)이 아뢰기를 (…) 또 아뢰기를, “내수사(內需司)에서 보고한 것을 보니, ‘수원(水原)에 용주사(龍珠寺)를 설치한 것은 일의 체모가 다른 곳과 차이가 있는데, 지금 수백 칸의 집과 방이 곳곳이 무너졌으니 전례대로 보수할 물력을 편의에 따라 획급하도록 하십시오.’ 하였습니다. 이 절은 이미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있어서 설치하였으니, 수리하는 방도는 참으로 돌보아 주어야 하고 또 이는 이미 시행한 전례가 있으니, 공명첩(空名帖)을 3백 장을 한도로 만들어 주어 재물을 모아 일을 시작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그리하라 하였다. (…)

今十一月十五日，藥房入診，大臣·政府堂上引見入侍時，領議政李所啓，(…) 又所啓，卽見內需司所報，則以爲水原龍珠寺設寘，事體與他有異，而見今數百間屋宇，隨處頽圯，依已例，修補物力，從便劃給，爲辭矣，此寺旣爲所重而設，則修葺之方，實合顧念，且有已施之例，空名帖限三百張成給，以爲鳩財始役之地，何如，上曰，依爲之。(…)

<비변사등록 260책, 고종 16년 1879년 11월 15일(음)>

3. 사회(社會)

(1) 윤리 · 풍속

사회/윤리 · 풍속

江都의 미곡과 콩을 京畿道 沿海 고을에 나누어 주어 救恤하기 청하다

아뢰기를, "전날 탐전(榻前)에서 아뢴 바에 따라 강도(江都)의 미곡 4·5천 석과 남한산성의 미곡 1천 5백 석을 경기의 면해 고을과 산간 고을에 나누어 주는 일을 즉시 복계(覆啓)하고 알렸습니다. 그래서 남한산성의 미곡 1천 5백 석은 벌써 산간 고을에 나누어 주었습니다만 금년의 기근은 연해 고을이 더욱 참혹합니다. 비록 전에 약간의 미곡을 나누어 주었으나 매 읍마다 불과 50여 석씩이었으니, 어찌 많은 굶주린 백성에게 두루 미칠 수 있었겠습니까? 봄철이 벌써 지나고 보리가 아직 익지 않았으니 먹을 식량이나 종자 등의 필요가 더욱 급한 때이며, 더구나 이번에 연해 고을의 백성들을 징발하여 치우치게 고통을 받았으니 불가불 산간지대 고을의 예와 마찬가지로 곡식을 나누어 주어서 예상(翳桑)처럼 다급함을 구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강도에서 군량으로 보내온 미곡 5백 석과 콩 70석을 그대로 수원(水原) 등 3읍에 이미 주도록 하였으며, 또 3천 5백 석을 부평(富平) 등 18읍에 더 주도록 하여, 4천 석의 수량을 경기의 각 읍에 나누어 실어다 주어 끝까지 구제하는 혜택을 고루 받게하여 농사에 시기를 잃는 걱정을 면하게 함이 어떻겠습니까?"하니 윤허한다고 답하였다.

啓曰, 前日因榻前啓稟, 江都米四五千石及南漢米一千五百石, 分糶於畿甸沿海及山郡事即爲覆啓行會, 南漢米一千五百石, 則已先分給於山郡矣, 今年飢饉, 沿海尤爲慘酷, 在前雖有若干分糶之數, 每邑不過五十餘石, 何能遍及於許多望哺之民乎, 春節已過, 麥秋未登, 口食耕種之資此時尤急, 況今番徵發沿海之民, 偏受其苦, 不可不依山郡例, 一體分糶, 以救翳桑之急, 江都米軍前所送五百石・太七十石, 已令仍給於水原等三邑, 而又以三千五百石加給於富平等十八邑, 以準四千之數, 分運分給畿邑之民, 均蒙終始賑救之惠, 得免耕作失時之患何如, 答曰, 允.

<비변사등록 10책, 인조 24년 1646년 04월08일(음)>

사회/윤리 · 풍속

재해가 극심한 水原의 面에 身役을 감면해주는 일에 대해 보고하다

아뢰기를, "작년에는 수원(水原)의 재해가 극심한 곳에 사는 각종 군병의 신역(身役)을 특별히 감면해 주었습니다. 지금 수원부사 강유(姜瑜)의 보고를 보니, 금년에도 재해가 극심한 면(面)에 신역을 가진 잡색(雜色) 군병이 40명이나 있는데 가포(價布)를 바칠 길이 없습니다. 작년대로 면제해 줌이 어떻겠습니까?"하니, 윤허한다고 답하였다.

啓曰, 上年水原被災最甚處, 居生諸色軍身役, 特爲蠲減矣, 今見水原府使姜瑜所報, 今年尤甚被災面, 有身役雜色軍四十名, 而價布無路備納云, 依上年蠲減何如, 答曰, 允.

<비변사등록 21책, 현종 2년 1661년 09월03일(음)>

사회/윤리 · 풍속

沿海邑의 還上穀을 감하여 받는 일에 대해 보고하다

아뢰기를, "이달 19일 옥당에서 뵈기를 청하여 입시하였을 때 부응교 이민적(李敏迪)이 아뢰기를, '경기(京畿)는 나라의 근본이니 너그럽게 보살펴야 마땅합니다. 금년에 연해읍(沿

海邑)의 기항(飢荒)은 삼남(三南)과 다를 바가 없는데 환자곡[還上穀]의 상납을 독촉하여 떠돌아다니는 백성이 많다 합니다. 군향(軍餉)이 매우 중요하나 백성의 이산(離散)도 생각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지금까지 받지 못한 것은 이제 다시 독촉한다 해도 혈벗은 처지에 결코 상납할 힘이 없으니 변통하는 조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니, 상께서 '묘당으로 하여금 참작해서 처리하게 하라' 하셨습니다. 얼마 전 경기감사 정지화(鄭知和)의 장계로 말미암아 본사에서는 연해의 피해는 더욱 심하고 민력(民力)은 강도(江都)의 이전미(移轉米)를 실어다 바치느라 이미 탕진(蕩盡)하여 상평청(常平廳)이나 호조의 회록(會錄)에 붙여질 각종 곡물은 원 수량대로 받기 어려울 것이라 여겨, 피해가 더 심한 김포(金浦), 통진(通津), 교하(交河), 양천(陽川), 부평(富平), 인천(仁川), 교동(喬桐)등 7읍은 3분의 1로, 기타 수원(水原), 남양(南陽), 고양(高陽), 풍덕(豐德) 등은 피해가 더 심한 면(面)만 3분의 2로 감하여 받기로 이미 복계(覆啓)하여 윤허를 받들어 감사에게 분부하였습니다. 감히 아웁니다."하니, 알았다고 답하였다.

啓曰, 今十一月十九日玉堂請對入侍時, 副應教李敏迪所啓, 京畿國之根本, 理宜優恤, 今年沿海之邑飢荒, 無異於三南, 而督捧還上, 民多流離云, 軍餉固重, 赤子之失所, 亦不可不念, 且到今不得捧者, 則今雖更催赤立之餘, 決無備納之勢, 合有變通之道矣, 上曰, 令廟堂參酌稟處事命下矣, 頃因京畿監司鄭和和狀啓, 本司以沿海被災尤甚, 而民力已竭, 於江都移轉之輸納常平廳戶曹會付各穀, 勢難准捧, 尤甚被災金浦, 通津·交河·陽川·當平·仁川·喬桐等七邑則三分之一, 其餘水原·南陽·高陽·豐德等邑則尤甚被災面, 三分之二減數收捧之意, 已爲覆啓蒙允, 分付于道臣矣, 敢啓, 答曰, 知道.

<비변사등록 21책, 현종 2년 1661년 11월23일(음)>

사회/윤리 · 풍속

吏曹判書 閔黻 등이 安眠串의 田庄과 水原의 春秋 牟種子 등에 대해 보고하다

(…) 지중추부사 오정위(吳挺緯)가 아뢰기를, "금년의 농사는 호서지방이 더욱 염려스럽습니다. 본도 감사 이덕주(李德周)의 장계 내에 봄, 가을의 보리 종자 각 5~6백 석을 이전시켜 주기를 청하였습니다. 이에 비변사에서는 진휼청으로 하여금 각별히 주선하여 이전시켜 주도록 할 뜻으로 회계하여 윤허가 내렸습니다. 아주 심하게 재난을 당한 직산(稷山)·천안(天安)·평택(平澤)등 대여섯 고을은 모두 경기의 연해 고을과 접경하여 있습니다. 그런데 수원부(水原府)의 봄, 가을 보리로서 진휼청의 원회부(元會付)에 모두 6천여 석을 받아 둔 것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수원부도 역시 재난을 당한 고을로서 의당 곡식을 이전시켜 구제해야 할 것이나 진휼 자료는 다른 곡식으로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수원의 봄, 가을 보리 1천 석을 호서지방에 내어 주도록 하고, 그 대신은 진휼청에서 다른 곡식으로 적당하게 계산해 준다면 양쪽이 매우 편리하겠습니다. 이대로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하니, 상이 아뢴 대로 하라고 하였다.

좌의정 권대운이 아뢰기를, "빈청에서 좌기(坐起)할 때에는 비국의 당상으로서 대단한 사고가 있지 않으면, 참석해야 하는 것이 옛부터의 규례입니다. 오늘 빈청의 좌기에 당상은 3명만이 참석하였는데 질병이나 사고 내용이 어떠한 지는 비록 알 수 없으나 사체에 있어 매우 온당치 못합니다. 까닭없이 참석하지 않은 인원은 모두 추고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하니, 상이 아뢴 대로 하라고 하였다.

(…) 知中樞府事吳挺緯所啓, 今年農事, 湖西尤甚可慮, 本道監司李德周狀啓內, 春秋牟種子各五六百石, 請爲移轉備局, 令賑恤廳拮据移轉之意, 回啓允下矣, 尤甚被災稷山·天安·平澤等

五六邑，皆與畿甸海邑接壤，而水原府春秋牟，賑恤廳元會付竝六千餘石奉留云，水原亦是災邑，當爲移轉救活，而賑資則他穀亦可爲之，水原春秋牟竝一千石，使之出給湖西，其代則以賑廳他穀，推移劃給，事甚兩便，以此分付，何如，上曰，依爲之，左議政權所啓，賓廳坐起時，備局堂上，若非有大端事故，不得不來參，乃古規也，今日賓廳之坐，堂上只三員來參，雖未知疾病事故之如何，而其在事體，殊甚未安，無故不參之員，竝推考，何如，上曰，依爲之。

<비변사등록 33책, 숙종 3년 1677년 08월04일(음)>

사회/윤리 · 풍속

領議政 許積 등이 경기의 役 감면문제와 메밀의 재해 인정에 대해 논의하다

이달 초3일 대신·비국당상을 인견하여 입시할 때에 영의정 허적(許積)이 아뢰기를, "경기의 <재해가> 그 다음으로 심한 읍 및 약간 나은 읍 가운데 재해가 더욱 심한 면에 대한 역 감면문제에 관한 간원의 계사에, 묘당으로 하여금 논의하여 처리하게 하라는 하교가 계셨습니다. 간원의 뜻은 경기 각 읍의 심하게 재해를 입은 면도 모두 역을 감면시키는 데에 포함시키려는 것이었으나 이는 함께 시행할 수 없습니다. 진위(振威)는 수원(水原)·양성(陽城)에 끼여 있어 재해 입은 곳이 매우 많고, 교하(交河)와 통진(通津)은 바닷가 읍으로서 역시 재해를 입은 곳이 많으나 역을 감면하는 혜택을 입지 못하였으니 반드시 억울해 하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교하 3면, 통진 3면, 진위 5면을 광주와 양성의 예에 의하여 다같이 역을 감면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하니, 상이 아뢴대로 하라고 하였다. (…)

今十二月初三日大臣·備局堂上引見入侍時，領議政許所啓，以諫院啓辭，畿內之次邑及稍實邑尤甚面蠲役事，有令廟堂議處之教矣，諫院之意，則欲令畿內各邑尤甚被災之面，皆入於蠲役之中，而此則不可竝施，至於振威，則介於水原·陽城之間，被災處甚多，交河·通津，則以濱海之邑，亦多被災處，而不得蒙蠲役之惠，則必有冤抑之患，交河三面通津三面振威五面，依廣州·陽城例一體蠲役何如，上曰，依爲之，(…)

<비변사등록 34책, 숙종 4년 1678년 12월04일(음)>

사회/윤리 · 풍속

右副承旨 柳命堅이 水原을 즉시 구휼하여 군병을 보존케 할 것을 청하다

이달 초2일 소대(召對)가 있어 입시하였을 때에 우부승지 유명견(柳命堅)이 아뢰기를, "신이 연전에 수원(水原)을 맡은 일이 있는데 그 때에도 연달아 흉년을 만났습니다. 얼핏 듣자니 적지(赤地)가 된 참상은 금년이 그 때보다 심하여 연해(沿海)의 28개면 백성들은 떠돌이 신세를 면치 못하게 되었다 합니다. 군과 민을 똑같이 구휼해야 한다는 데에는 이론(異論)이 없을 줄 아오나 수원은 군액(軍額)의 수효가 훈련도감보다도 많고 위급한 일이 있을 때 의탁하려고 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조정에서 제 때에 진휼하지 않아 조직된 군병이 하루아침에 흩어진다면 더구나 염려스러운 일입니다. 전하께서 특별히 총융사에게 하유하셔서 비국의 여러 대신들과 상의하고 별도로 조치하여 즉시 구휼함으로써 대오에 편성된 군병을 보존케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경기의 남양(南陽) 등 연해 군읍도 피해가 없는 것은 아니나 신이 듣기로는 수원이 더욱 심하다 하기에 감히 이렇게 아뢰는 바입니다."

하니, 우찬성 윤휴(尹鑰)가 아뢰기를, "신의 생각은 유명견(柳命堅)과는 다릅니다. 옛 사람은 곡물이나 백성을 옮기는 것을 왕정(王政)의 발단이라 하였으나 우선은 곡물을 옮겨 당장 흩어지려는 위급을 구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이런 일들은 임금께서 별도로 전교하셔서 조정의 덕의(德意)를 보이심이 마땅합니다. 군병을 맡은 사람에게 주관하도록 할 필요가 있겠

습니까? 또 수원만 따로 할 것이 아니라 경기의 극심한 고을은 모두 우선적으로 진구(賑救)해야만 비로소 왕자(王者)의 일시(一視:다같이 보살핌)라는 정사에 합당할 것입니다."

하니, 답하기를, "금년에도 경기 지방에 흉년이 들었으나 수원이 더욱 심하여 편성된 군병이 흩어지려 한다 하니 어떤 곡식으로라도 우선 구휼하고 기타 아주 심한 고을도 경중을 가려 진구하도록 똑같이 강구하는 것이 좋겠다."하였다.

今十月初二日召對入侍時，右副承旨柳命堅所啓，臣於年前待罪水原，連值凶歉，而仄聞今歲赤地之慘，甚於往年，沿海二十八面之民，將未免流離云，軍民一體賑恤之策，似無異同，然水原軍額之數不下於訓局，卽緩急所恃之地，朝家若不及時軫恤，團束之軍一朝流散，則尤極可慮，自上特諭摠戎使，使與備局諸大臣相議，別樣區劃，趁卽賑救，使編伍之軍，得以保存宜當，畿內南陽等沿海之邑，不無被災，而臣之所聞水原尤甚云，故敢此仰達，右贊成尹鐸曰，臣意則與柳命堅異矣，古人以移粟移民爲王政之末，而第宜姑先移粟以救，卽今流散之急，而此等事自上別爲傳教，以示朝廷德意宜當，何必使主兵之人句管乎，且不獨水原爲別，畿內尤甚之邑，竝爲急先賑救，然後方可合於王者一視之政矣，上曰，今年畿甸失稔，而水原尤甚，團束之軍，將至流散云，以某樣穀物，急先賑救，其他尤甚邑，亦爲分輕重賑救事，一體講究可也。

<비변사등록 35책, 숙종 5년 1679년 10월03일(음)>

사회/윤리 · 풍속

右議政 吳始壽 등이 水原府에 잡곡 5천석을 넘겨주는 일 등에 대해 논의하다

이달 13일 대신과 비국 당상을 인견, 입시하였을 때에 우의정 오시수(吳始壽)가 아뢰기를 "얼마 전 등대하였을 때에 수원부(水原府)에 빌려 준 호조의 목면 30동은 상쇄시키지 말고 그 대신 관향곡(管餉穀)으로 넘겨주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목면 30동의 값은 얼마 되지 않아 조정에서 각별히 구휼했다는 의의가 별로 없습니다. 또 얼마 전 강화유수의 장계로 인하여 통영(統營)의 껌질을 벗겨낸 잡곡 5천석을 강화부에 주었습니다. 이번에 수원부에도 강화도의 예대로 5천석을 넘겨주는 것이 마땅할 듯합니다. 다만 강화도에 준 것은 그저 준 것이 아닙니다. 근래에 군향(軍餉)이 줄었기 때문에 명년 가을에 이자를 제외한 전량을 쌀로 내게 하여 군향의 부족을 메꾸도록 하였으니 이번에도 전량을 그저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수원은 연달아 흉년을 만나 해마다 나눠 준 나라 곡식만도 매우 많으니 받아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 3천석은 그저 주어 진휼케 하고 2천석은 환상으로 나눠 주는 것이 실로 편하고 좋을 듯합니다."

하니, 좌의정 민희(閔熙)가 아뢰기를, "껌질 벗긴 곡식 3천석을 쌀로 환산하면 1천석에 불과합니다. 수량도 많지 않고 받는다 해도 받기가 매우 어려우니 이 3천석은 그저 주고 2천석은 환상으로 주는 것이 마땅합니다."하니, 그렇게 하라고 답하였다.

또 아뢰기를 "이번에 어사가 제주에서 시험 보여 뽑을 때에 무예의 경우에는 두 종목으로 보여 뽑도록 결정하였습니다. 두 종목으로 합격한 자들은 상께서 의당 처분이 계시겠으나 한 종목만으로 우등한 무리는 합격이 안 되었어도 연전에는 가지고 갈 무명으로 어사가 그 자리에서 시상한 전례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면포 10동을 주어 전과 같이 시상하여 도민(島民)들을 위로하고 즐겁게 해주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답하기를, "전라감영에 비축된 목면을 주어 보내되 10동은 적어서 고루 미치지 못할 것 같으니 20동을 주어 보내는 것이 좋겠다."하였다.

행부호군 오정위(吳挺緯)가 아뢰기를 "경기도 내의 재실(災實)은 본도의 장계가 올라와봐야 알겠지만 우선 들은대로 말하면 수원(水原) · 인천(仁川) · 남양(南陽) · 부평(富平) · 안산(安

山)·풍덕(豐德)·김포(金浦)·통진(通津) 고을 등이 재해를 아주 심하게 입어 유랑하는 백성이 줄을 잇는다 하니 듣기에도 참혹합니다. 나라의 근본이 되는 곳은 의당 넉넉하게 구휼해야 할 텐데 이 8읍의 전세(田稅)와 수미(收米)를 작년의 전결(田結)로 계산하면 세미(稅米)는 1천 1백 20여석, 콩은 2천여 석, 수미는 4천 7백여 석이고, 수미 중에서 영수(營需)와 관수(官需) 및 저축해 두는 쌀 합 1천 7백여 석을 제하면 상납할 쌀은 2천 9백 70여석입니다. 콩은 호조의 비축이 여유가 있으니 우선은 받지 않아도 지탱할 수 있지만 세미는 경비로도 항상 부족합니다. 그러나 1천이란 숫자가 아주 적은 수량이어서 손해를 본다 해도 많지는 않습니다. 명년 봄에 양남(兩南)의 전세가 올라오기를 기다려 수요의 완급(緩急)을 알아서 진휼청에서 연차로 갚아주게 하며 수미는 영수와 관수, 저축미만 받아 각 고을에서 쓰도록 하고 춘추 양 분기에 실제로 상납해야 할 2천 9백 70여석과 세미, 콩은 모두 당감하여 근본이 되는 고장의 백성을 위로하고 기쁘게 하며 대신 진휼청에서 돈과 벼로 선혜청에 계산해 주도록 해야 합니다. 재해가 두 번째로 혹심한 고을은 작년의 아주 심한 고을의 예대로 봄철의 수미 6두는 전량 감면하고 가을철은 각기 그 고을에서 받아서 보관하였다가 진휼의 밀천으로 쓰고 역시 본청에서 돈과 벼로 갚아 주게 하면 선혜청은 손해가 없고 백성들은 큰 혜택을 입게 될 것입니다. 이 밖에 각종 신역의 감면은 묘당에 물어서 처리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좌의정 민희(閔熙)가 아뢰기를, "이처럼 해마다 흉년이 들어 백성들이 모두 이리 저리 유랑하는 때에는 주관하는 사람이 잘 주선해야 합니다. 본청의 돈과 벼를 내다가 선혜청의 수요를 잊게 하고 전세와 수미를 감면해 주면 이는 경기의 전고에 없는 큰 혜택이 되는 것이니 그대로 시행하는 것이 마땅할 듯합니다."하니, 답하기를 "본도의 재실 장계를 기다려서 그대로 시행하라."하였다.

今十月十三日大臣·備局堂上引見入侍時，右議政吳所啓，頃日登對時，水原府所貸戶曹木綿三十同，則勿爲會減，其代以管餉屯穀移給事，既以定奪，而第木綿三十同之價，其數零星，殊無自朝家各別賑救之意也，頃緣江華留守狀啓，亦給統營皮雜穀五千石，今此水原府，亦依江都例，移給五千石似當，而江都所給則非白給也，以近來軍餉減縮之故，使之待明秋除耗作米以補軍餉之缺，則此亦不可盡爲白給，而水原連值凶荒，年年分給之國穀，其數甚多，捧之未易，三千石則白給賑救，二千石則以還上分給，實爲便好矣，左議政閔曰，三千石皮穀以米計之，則不過一千餘石也，數既不多，且雖欲捧之，捧之甚難，此則白給，二千石則以還上給之宜矣，上曰，依爲之。

又所啓，今此濟州御史試取時，武藝既以取二技定奪，二技入格之類，自上當有處分，而一技優等之類，雖未入格，年前齋有去木同，御史直爲施賞之規，今亦給送綿布十同，以爲依前施賞，慰悅島民之地何如，上曰，以全羅監營所儲木綿給送，而十同似少，難以周給，二十同給送可也，行副護軍吳挺緯所啓，畿內災實，待本道狀啓可知，而姑以所聞者言之，水原·仁川·南陽·富平·安山·豐德·金浦·通津等邑，將未免尤甚邑矣，流離相屬，所聞慘酷，根本之地，理宜優恤，八邑田稅收米，以上年結計之，稅米一千一百二十餘石，太二千餘石，收米四千七百餘石內，除營需·官需，儲置米一千七百餘石，則上納米二千九百七十餘石，則稅太則戶曹所儲有裕，雖姑勿捧，可以聊賴，稅米則經費常患不足，而一千之數零星，所損不多，姑待明春兩南田稅上來，知其需用緩急，自賑廳待年償報收米，則只令捧營官需儲置米，以爲各其官需用之地，兩等實上納二千九百七十餘石，及稅米太，竝爲全減，慰悅根本之民，其代自賑廳以錢布計給惠廳之，次邑則依上年尤甚邑例，春等收米六斗則全減，秋等則捧留各其邑，以爲賑資，其捧留之代，則亦自本廳，以錢布償報，則惠廳無所損，民蒙大惠矣，此外諸般身役之裁減，問于廳堂處之何如，

左議政閔曰，當此年年凶荒，民皆流離之日，旬管之臣，善爲料理，出本廳錢布，以繼惠廳之需用，蠲減田稅收米，則此乃畿內無前之大惠，似當依此施行，上曰，待本道災實狀啓，依此施行。
<비변사등록 35책, 숙종 5년 1679년 10월14일(음)>

사회/윤리 · 풍속

戶曹判書 吳始復이 水原등 8읍의 재해를 인정함을 아뢰다

호조판서 오시복(吳始復)이 아뢰기를, "지난번 병조참판 이봉징(李鳳徵)의 상소로 수원(水原)등 8읍에 재해를 인정해 주는 일을 본조에 내리셨습니다. 이는 본도 전 감사 목창명(睦昌明)이 일찍이 치계하여 분재(分災)해 주기를 청한 고을이기도 합니다. 추가로 재해를 인정해 주는 일은 호조에서 독단하기 어려운 바가 있기에 묘당과 상의하여 해읍 수령으로 하여금 일일이 직접 피재지를 살피고 실상을 구별하여 정책을 올려보내라는 뜻으로 복계하고 본도에도 분부하였었는데 8읍의 정책이 이제야 도착하였습니다. 그 정책을 상고해 보니 재결(災結)의 총계가 6백 90여 결에 불과하였는데 금년의 경기지방 농사가 한강이남의 몇 몇 고을이 더욱 심하였습니다. 임금께서 진휼하시는 도리로 보아 특별히 은혜를 베푸는 거조가 없을 수 없겠습니다. 이러한 뜻으로 대신과는 이미 상의하였기에 감히 양달하옵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이 8개 읍에서 보고한 재결은 특별히 재해를 인정해 주는 것이 좋겠다."하였다.

戶曹判書吳始復所啓，頃因兵曹參判李鳳徵上疏，水原等八邑別爲給災事，啓下本曹，此亦本道前監司睦昌明，曾所馳啓，請給分災之邑也，追給災結，戶曹有難獨斷，故就議于廟堂，令該邑守令，一一親審災處，區別成冊上送之意，覆啓，分付本道矣，八邑成冊，纔已來到，取考其成冊，則災結都數，不過六百九十餘結，而今年畿甸農事，漢南若干邑，尤爲不實，其在自上軫恤之道，不可無特爲施惠之舉，此意已議于大臣，故敢此仰達，上曰，此八邑所報災結，特爲給災可也.

<비변사등록 44책, 숙종 16년 1690년 12월04일(음)>

사회/윤리 · 풍속

공조판서 趙泰采가 수원의 흉작에 대해 아뢰다

(…) 공조판서 조태채(趙泰采)가 아뢰기를, "금년 경기의 흉작은 수원(水原)과 남양(南陽) 같은 곳이 우심하여 받아들인 환자가 겨우 3분의 1에 이를 뿐입니다. 이같은 고을은 비록 군량이라도 절반만 받아들이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금천(衿川)에서는 경리청의 환자를 다 거둬들였다고 하니 다른 고을도 힘에 따라 받아들이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하였고, 이 만성은 아뢰기를, "만약 여러 고을로 하여금 힘에 따라 받아들이게 하고 한계를 정해서 분부하지 않는다면 수령들이 봉행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하였다.

우의정 이이명이 아뢰기를, "소신이 요전에 한 장의 상소를 올려 경기의 [재해가] 우심한 고을의 환자는 반으로 감하고 그 다음[之次] 고을은 3분의 1을 감해야 하며, 현재의 형편으로는 아무리 군량이라도 다 받아들일 길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군량을 줄여 받는다는 것은 곤란할 듯하나 병란과 흉년은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만약 병란이 생겼다면 장래 흉년을 대비해야 한다고 하여 비용을 아끼고 미곡을 쓰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강화나 북한산성을 막론하고 우심한 고을엔 절반만 거둬들이고 그 다음 고을엔 3분의 1을 감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일정하게 결정하여 분부한 뒤라야 수령들이 봉행할 바를 알 것입니다. 경기 해변의 피해는 한도가 없고 삼남의 해변도 참혹하다고 합니다. 먼 곳은 자세히 듣지 못하였으나 경

기에 관해서는 자세히 들었습니다. 해변의 피해 고을엔 아무리 다 받아들이고 싶어도 결코 다 받을 길이 없을 것입니다."

하였고, 좌의정 김창집은 아뢰기를, "군량의 중대함으로 다 받아들이라는 명령이 있었으나 현재 민간의 형편이 이와 같으니 다 받아들이기는 어려울 듯합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군량도 다른 환자의 규례대로 우심한 고을은 반을 감하고 그 다음 고을은 3분의 1을 감할 것을 분부하는 것이 좋겠다."하였다.

(…) 工曹判書趙泰采曰, 今年畿甸凶荒, 如水原南陽尤甚還穀之捧, 僅至三分之一, 如此之邑, 則雖軍餉, 折半收捧, 宜矣, 至於衿川經理還上, 已盡收捧云, 他邑, 亦使隨力捧之, 何如, 晚成曰, 若使諸邑, 隨力捧之不爲定限分付, 則, 守令難於奉行矣, 右議政李曰, 小臣頃上一疏, 畿甸尤甚邑, 還上半減而之次邑, 減三分之一, 卽今形勢雖軍餉, 無盡捧之路矣, 軍餉減捧, 雖似重難, 兵·荒無異, 若有兵革, 則以將來凶年之備, 惜費而不用米穀乎, 今宜勿論江都·北漢, 尤甚邑則折半收捧, 之次邑則減三分之一, 定奪分付, 然後守令, 知所奉行矣, 畿內海邊被災, 罔有紀極, 三南海邊亦慘云, 而遠未詳聞, 至於畿內則所聞易詳矣, 海邊災邑, 則雖欲盡捧, 決無盡捧之路矣, 左議政金曰, 以軍餉之重, 雖有準捧之令, 卽今民間事勢如此, 似難準捧矣, 上曰, 軍餉依他還上例, 尤甚邑半減, 之次邑減三分之一事, 分付, 可也.

<비변사등록 69책, 숙종 42년 1716년 11월22일(음)>

사회/윤리·풍속

賑恤을 위해 첩지를 판 水原府使 李喬岳을 교체할 것 등을 청하다

비변사에서 아뢰기를, "수원부사(水原府使) 이교악(李喬岳)이 직임을 맡은 이후로 진휼하는 일에 마음을 다하여 성과를 올린 바가 많아 본부의 군민(軍民)으로 유산(流散)하였던 자들이 안집(安集)하는 일이 매우 많았습니다. 그런데 진곡(賑穀)을 모으기 위하여 잘못된 전례를 답습하여 기패관(旗牌官) 등의 첩지 50~60장을 팔아 수백 석의 곡물을 거두어 들었는데 총융청에서 장교의 숫자가 많으면 향오(行伍)가 착실하지 못하며 값을 받고 승보(陞補)하는 것은 일찍이 금령(禁令)이 있었다 하고 값을 되돌려 주고 첩지를 환수하라고 독촉하면서 논책이 매우 엄중하였습니다. 이 때문에 이교악이 이미 상사(上司)의 논책을 받았으니 도의상 그대로 있을 수도 없고 곡물을 되돌려 주면 진휼할 밀천을 이어서 쓸 수 없기 때문에 일을 폐하고 재삼 본사에 사면을 청하였습니다. 대체로 흉년에 곡식을 모으는 일은 본래 구차한 점이 많아 매작(賣爵) 면천(免賤) 등 그 방편이 한 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설사 이교악이 조정에서 일찍이 금령을 반포한 것을 모르고 임의로 장교의 첩지를 팔았다 하더라도 그 뜻이 백성을 구휼하자는 데에 있었으니 용서할만한 점이 있고, 총융사가 그 일을 중지시킨 것 역시 폐단을 염려하고 금령을 신칙하자는 뜻에서 나온 것인 만큼 둘 다 타당한 바가 있습니다. 그 때문에 묘당에서 양쪽을 조정하려고 반복해서 개유하였으나 무장은 기율을 중히 여겨 기어코 그 명령을 행하려 하고, 문리(文吏)는 진휼을 중히 여겨 그 일을 변경하려 하지 않아 지금은 서로 용납될 수 없는 형세에 이르렀습니다. 수원은 중병(重兵)이 있는 곳인데 기황이 극심하니 이럴 때에 하나의 양리(良吏)를 잃는다는 것은 실로 애석한 일이나 사정이 이와 같으니 변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수원부사 이교악을 우선 교체하고 새 부사를 차출한 뒤에 곧바로 부임하게 하고 수원부에서 모아 놓은 곡물은 진휼의 밀천에 보태 쓰게 하며, 해조(該曹)로 하여금 공명(空名)의 통정첩(通政帖)과 가선첩(嘉善帖) 각 30장과 절충첩(折衝帖)과 호군첩(護軍帖) 각 20장을 즉시 만들어 보내게하고 본부로 하여금 팔게하여 받아들이는 값을 장교에게 되돌려 주고 임의로 판 첩지를 거두어들이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까?"하니 그렇게 하라고 답하였다.

司啓辭，水原府使李喬岳，受任以來，盡心賑事，多所拮据，本府軍民之流散者，頗有妥集之望矣，爲聚賑穀，因襲謬例，許賣旗牌官等帖文五六十張，募得數百石穀物，則摠戎廳，以爲將校數多，則行伍不實，納價陞補，曾有禁令，督使還價收帖，而論責頗重，故喬岳，以爲既被上司之責，廉隅不可仍在還給穀物，則賑資無他可繼，因此廢事，再三控免於本司，蓋荒歲聚穀之政，本多苟簡賣爵免賤等事，不一其道，設使喬岳，不知朝家曾有禁令，擅賣將校之帖，意在救民，容有可恕，摠戎使之還寢其事，亦出於慮弊申禁之意，則不害其兩行，故廟堂，欲調柔兩辟，反覆開釋，而武將主紀律，必欲行其令，文吏重賑貸，不肯變其事，今則勢不可相容矣，水原，重兵所在，飢荒孔棘，此時失一良吏，實爲可惜，而事勢如此，不可不變通，水原府使李喬岳，今姑改遞，新府使差出後，卽令不多日內赴任，水原府所募穀物，使之補用賑資，令該曹，空名通嘉善帖各三十張，折衝護軍帖各二十張，卽爲成送，令本府發賣，還給納價，將校收還擅賣之帖，何如，答曰，依爲之。

<비변사등록 70책, 숙종 43년 1717년 01월15일(음)>

사회/윤리 · 풍속

威鏡監司 宋眞明이 水原에서 江都의 쌀을 얻어 民戶를 구제하는 문제에 대해 논의하다

또 아뢰기를, “수원의 환자는 본미(本米)의 숫자가 적는데 봄철에 군량으로 500석을 잃어 50개 면(面)의 수만 민호(民戶)를 구제해 살릴 수가 없습니다. 강도(江都)의 쌀 500석을 얻어 옮겨서 곤궁함을 구제해야 하며, 난리를 겪어 탕진하여 쇠잔해진 백성이 또 큰 흉년을 만났으니, 가을에 결코 환자를 다 받아들일 이치가 없습니다. 두 번의 왕래하는 비용을 1년 내에 금년의 수원 백성에게 재차 징수하게 되어 결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또 본부의 환자를 이렇게 잃게 되어 내년에 또 더 청하게 될 터이니 한갓 왕래하기만 번거로울 것이 매우 염려됩니다. 강화에서 옮겨온 것을 매양 다시 바치지 않는 폐단이 있지만 수원의 형편은 다른 곳과 다릅니다. 삼가 원하옵건대 임금께서는 특별히 진념(軫念)하시어 이번 이 500석의 쌀을 금년을 한정하여 봉류(捧留)하는 것은 단연코 불가합니다. 분명하게 하교하여 미리 알리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봉류하는 일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허락하지 않은 적이 많았다. 수원은 다른 고을과 다르니 묘당으로 하여금 아뢰어 시행해야 한다.” 하였다.

又所啓，水原還上本米數少，春間軍餉又失半千石，五十面數萬民戶無以救活，江都米五百石，請得運來，以救其涸轍之急，經亂蕩殘之民，又值大侵，秋來決無準捧還償之理，往來兩次之浮費，一年內再徵於今年水原之民，則決非所堪，且本府還上失此，則明年又將加請，徒煩往來，亦甚可慮，江都移轉之每不還納，雖是弊風，水原事勢，與他自別，伏願聖上，特加軫念，今此五百石米，限今年捧留，斷不可已也，明白下教，預爲知委，何如，上曰，捧留之事甚難，故多不許矣，水原則異於他邑，令廟堂稟施，可也。

<비변사등록 84책, 영조 4년 1728년 08월 21일(음)>

사회/윤리 · 풍속

京畿監司 尹陽來 등이 摠戎廳의 軍需米를 水原의 賑資로 보충하는 문제를 논의하다

또 아뢰기를, “수원(水原)은 만여 호(萬餘戶)로 큰 고을입니다. 이 고을이 금년에 더욱 심한 고을에 해당되어 허다한 진자(賑資)에 대하여 계책을 세울 수 없습니다. 대개 듣건대, 본부 소재 충융청의 군수미(軍需米)가 2천 여 석이 되는 바, 부사 윤섭(尹涉)이 지난해 진

정(賑政)때 5백 석을 얻어 두고서 진자로 보충하였고, 금년에 만약 또 이를 얻게 되면 점차 주선할 수 있다고 하였기 때문에 감히 진달합니다.” 하니, 임금 이 이르기, “대신의 뜻은 어떠한가.”

하였다. 우의정 서명균이 아뢰기를, “충용청의 군수미가 기읍(圻邑)에 있는 것 중 수원에 가장 많습니다. 만약 불시에 용도가 있게 되면 문득 그 물자를 취해 쓰는데 이는 충용청의 창고인 것입니다. 무신(영조 4, 1728)년 송진명이 부사가 되어 이 쌀을 유치하여 군량으로 삼았고 이 쌀은 완급할 때 이와 같이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의 유진(留賑)은 금년에 또 만약 여지(餘地)가 있으면 허락하여도 무방할 것입니다. 다만 그 숫자를 작성할 수 없어서 본청에 물어 본 뒤 그 사세를 헤아려 허락하는 것이 적의할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

“그대로 하라.” 하였다.

又所啓, 水原以萬餘戶之大邑, 今年入於尤甚, 許多賑資, 無爲策, 而概聞本府所在摠戎廳軍需米爲二千餘石, 府使尹涉上年賑政時, 請得五百石, 留補賑資, 今年若又得此, 則稍可周旋云, 故敢達, 上曰, 大臣之意何如, 右議政徐曰, 摠戎廳需米之在畿邑者, 水原爲最多, 如有不時之用, 輒爲取資, 便是摠廳府庫也, 戊申年宋眞明爲府使, 留置此米, 以爲軍糧, 其於緩急, 所賴如是矣, 然上年既已留賑, 今年又若有餘地, 則許之無妨, 而不可酌定其數, 問于本廳後, 量勢許之爲宜矣, 上曰, 依爲之.

<비변사등록 92책, 영조 8년 1732년 10월 07일(음)>

사회/윤리 · 풍속

右議政 趙顯命 등이 수원의 水災와 환곡의 문제에 대해 논의하다

(…) 조현명이 말하기를, “신의 병정(病情)은 깊어 비록 일에 따라 등대하여 여쭙 수는 없으나 민사에 절급한 일이 있어 감히 이를 아뢰입니다. 이는 곧 경기감사 이기진(李箕鎭)의 장계입니다. 수원(水原) 등 고을의 환곡을 모두 절반을 민간에 나누어 주었습니다. 금번 큰물이 저 전답이 모두 무너지고 떠내려갔으니 수축을 하지 않는다면 씨를 뿌려 경작할 수 없습니다. 지금 민간에는 이 춘궁(春窮)을 맞이해서 거꾸로 매달린 듯한 급박함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관에서 곡물을 방출하는 일이 없으면 쉽사리 농토를 묵히게 되니 절반 유고(留庫)한 것 가운데에서 특별히 더 지급하기를 청하였습니다. 절반의 법은 비록 엄격하나 민사의 절급이 이러하니 생각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절반 유고한 것 가운데 다시 절반을 나누어 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행부사직 정석오(鄭錫五)가 말하기를, “앞날의 보리농사가 어찌될지 알 수 없습니다. 만약 절반이라면 유고한 수가 적을 것 같습니다.”

하였고, 영성군(靈城君) 박문수(朴文秀)는 말하기를, “경기 고을의 환상은 매우 적어 절반으로 하지 않고 분수(分數)로 감한다면 환상으로 나누어 주는 수는 혹 민간이 말곡식을 받을 우려가 있습니다. 만약 그러하다면 주지 않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비변사에서 경기 안 각 고을의 환곡수를 살펴서 그 다소를 헤아려 나누어 주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였다. 조현명이 말하기를, “그러면 참작해서 나누어 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이르기, “다시 헤아려서 품처하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 趙曰, 臣病情轉苦, 雖不能隨事登稟, 而有民事切急者, 敢此仰達矣, 此乃京畿監司李箕鎭狀啓, 而以水原等邑還穀, 皆以折米, 散給民間, 而今番雨水大漲, 田畝盡爲潰破, 若非修築, 則無以播種耕作, 卽今民間, 當此春窮, 有倒懸之急, 而非有自官給糴之事, 則易至陳廢, 至請折米留庫中, 特許加給矣, 折米之法雖嚴, 而民事之切急如此, 不可不念, 折米留庫中更爲折半

分給何如，行副司直鄭錫五曰，前頭麥事，有未可知，若折半則留庫之數似零星矣，靈城君朴文秀曰，畿邑還上甚少，若不折半而以分數減之，則還分之數，或有民受斗升之慮，若然則與不給無異，自備局，考見畿內各邑還穀數，詳量其多少，而使之分給則好矣，趙曰，然則參酌分給何如，上曰，更爲詳量稟處可也。

<비변사등록 113책, 영조 21년 1745년 04월 27일(음)>

사회/윤리 · 풍속

京畿監司 李命坤 등이 京畿에 京賑米 發賣를 중지하는 문제에 대해 논의하다

○ 같은 날 입시하였을 때에 경기감사 이명곤(李命坤)이 아뢰기를, “도내의 농사형편과 해일의 실태는 언거푸 장문을 하였으니 이제 다시 진술할 필요는 없겠으나 민정(民情)은 시급히 품정하지 않을 수 없는 바가 있기에 감히 이렇게 청대(請對)하였습니다. 경진청미(京賑廳米)를 발매(發賣)하는 일에 대하여 신이 순행할 때에 국가의 덕의(德意)를 알렸더니 각 읍의 백성들이 기뻐서 송축하지 않는 자가 없었으나 당초 획급관문(劃給關文) 중에 ‘가을에는 본창(本倉)에 도로 저장한다.’는 말이 있었기 때문에 각 읍에서는 내년 가을에 값을 받는 것으로 오인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가격을 납부한 뒤에 내어준다는 영(令)을 듣고부터는 백성들은 모두 실망하여 받아가기를 원하지 않았으며 수령들이 와서 신을 만나서는 민정의 절박함을 갖추어 진술하였습니다. 1석의 값이 2냥 6전으로 정하여졌으니 아침저녁으로 진휼을 기다리는 백성들이 무엇으로 그 값을 챙겨내겠습니까? 일이 이미 이와 같이 되었으니 신도 강제로 받아오게 할 수 없습니다. 수령들은 비록 한두 가지의 변통을 청하는 자가 있었으나 이런 것은 신으로서 감히 양달하지 못하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 일은 난처하다. 기왕 먹으라고 하였다가 지금 또 가져가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다시 도로 정지하겠느냐?” 하였다.

좌의정 조현명이 말하기를,

“당초 건의할 때에 정우량(鄭羽良)이 말하기를, 도신(道臣)이 가져가려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신이 조정에서 이미 덕의(德意)를 보였으니 가져가는 여부는 도신이 하는 대로 일임하자는 뜻으로 말씀을 올렸는데 지금 이미 원치 않는다고 하니 그만둔들 무슨 방해될 것이 있겠습니까?” 하여, 임금이 말하기를, “나의 생각으로는 처음에는 혹 가져가지 않을 사람이 있을 것이나 역시 가져갈 사람도 반드시 있을 것으로 여겼는데 지금은 전부 가져가지 않는다고 하느냐?”

하니, 이명곤이 말하기를, “민간에서 이 발매미(發賣米)를 실어온다는 말을 듣고 바야흐로 술을 씻어 놓고 고대하다가 일의 형편이 잘못 되어서 끝내 도로 정지가 될 지경에 이른다면 민정이 억울해할 뿐만 아니라 국가에서 백성을 보살피려는 지극한 뜻도 아래에 미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남양(南陽)과 수원(水原) 등에서는 지금 이미 기민(飢民)을 가려내서 겨울이 오기 전에 설진(設賑)을 하려 한다고 하는데 신의 생각으로는 발매의 일이 만약 도로 정지가 된다면 도내에 있는 영진곡(營賑穀)을 넉넉하게 획급하여 지금 나누어주어서 곧 흠어지려는 백성을 접제(接濟)하게 하는 것이 사의(事宜)에 합당할 것 같습니다.”

하였다. 조현명이 말하기를, “영진곡을 획급한다 하더라도 봄이 되기 전에는 조정에서 설진(設賑)을 허가할 수 없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형세가 이와 같으니 발매의 일은 우선 보류하여 명년 봄을 기다리고 영진곡은 묘당에서 품처하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同日入侍時，京畿監司李命坤所啓，道內農形及海溢形止，連已狀聞，今不必更陳，而民情有不可不急時稟定者，敢此求對矣，京賑米發賣事，臣發巡時傳布朝家德意，則各邑民人莫不歡欣頌

祝，而當初割給關文中，有待秋還儲本倉之語，故各邑誤認以明秋捧價矣，及聞卽今納價後受出之令，民皆失望不願受出，守令之來見臣者，備陳民情之切迫矣，一石之價定以二兩六錢，則朝夕待賑之民，何以辦出其價耶，事勢既如此，臣亦不得強令受出，守令雖有一二變通之請，而此則臣不敢仰達矣，上曰，此事難矣，既令食之，而今又以不願持去，更爲還寢耶，左議政趙曰，當初建白時鄭羽良言，道臣不肯持去云，故臣以朝廷既示德意，持去與否一任道臣所爲之意仰達，今既不願，置之何妨乎，上曰，予意則初以爲或有不持去者，而亦必有持去者矣，今則全數不爲持去耶，命坤曰，民間聞此發賣米不可運來之說，方洗鼎苦待，而若以事勢之難便，終至還寢之境，則非但民情之抑鬱，朝家恤民之至意，無以下究，且南陽水原等邑，今已抄飢，趁冬前欲爲設賑云，臣意以爲發賣事若至還寢，道內所在營賑穀，從優割給，及今分俵，使之接濟將散之民，似爲得宜矣，趙曰，營賑穀雖可割給，而春前則朝家不許設賑矣，上曰，形勢如此，發賣事姑留之，以待明春，營賑穀則令廟堂稟處可也。

<비변사등록 118책, 영조 23년 1747년 10월 28일(음)>

사회/윤리 · 풍속

左議政 金尙魯 등이 宋時烈의 묘를 이장할 때 擔輿軍 등을 후하게 도와주도록 하다

또 달하기를, “선정신(先正臣) 송시열(宋時烈)의 묘가 경기의 수원(水原) 땅에 있는데 들으면 묘 자리가 불길하여 지금 청주 땅으로 이장한다고 합니다. 종전 대신의 천장(遷葬)할 때에는 조가에서 돕는 예가 있습니다. 문묘(文廟)에 종사(從祀)된 선현(先賢)은 일의 체통이 크게 다릅니다. 예로 대접하는 도리에 있어 다른 대신의 예를 인용하여 같게 하여서는 안 됩니다. 또 선정(先正)의 집은 본래 청한(淸寒)하고 후손들은 미약하여 천장의 모든 일이 모양을 이루기 어려운 듯합니다. 담군(擔軍)·조묘군(造墓軍) 및 장제(葬祭)의 비용을 각별히 후하게 도와주도록 두 도의 도신에게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그리하라고 영하였다.

又所達，先正臣宋時烈之墓，在於京畿水原地，而聞以宅兆不吉，今方移葬於湖西清州地云，從前大臣遷葬時，朝家有顧助之例，而從祀文廟之先賢，事體迥別，其在禮待之道，不可與他大臣引例而同之，且先正家本來淸寒，後孫零替，遷厝凡百，似難成樣，擔軍·造墓軍及葬祭之需，各別從厚助給事，分付兩道道臣，何如，令曰，依爲之。

<비변사등록 133책, 영조 33년 1757년 08월 12일(음)>

사회/윤리 · 풍속

左議政 洪鳳漢 등이 京畿 각읍에 給災를 더하는 문제에 대해 논의하다

이번 11월 2일 좌상과 우상, 예조판서·평안 전 감사가 함께 입시하였을 때에 좌의정 홍봉한(洪鳳漢)이 아뢰기를, “이는 경기감사 김기대(金器大)의 장계인데 말하기를, ‘각 읍의 재보(災報)가 이제 다 도착하였는데 조정에서 전후하여 급재(給災)한 것을 통틀어 계산해도 부족한 수량이 매우 많아서 다시 더 주는 일을 묘당에서 품처하게 해 주소서.’ 하였습니 다. 경기는 남양(南陽)과 수원(水原) 두 고을 이외에도 우심읍이 있기는 하지만 그 재해를 입은 바가 삼남의 더 없이 참혹함에는 이르지 않았고 견문한 바로 헤아려 보아도 역시 참작할 바가 있는데 도신이 또 이처럼 장창하였습니다. 그러나 전연 그대로 둘 수는 없으니 전의 급재 외에 8백 결을 더 주어 분배하여 마감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임금 이르기를, “1천 결을 채워서 가급하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今十一月初二日，左·右相·禮曹判書·平安前道臣，同爲入侍時，左議政洪所啓，此京畿監司

金 器大狀啓也，以爲各邑災報，今已齊到，以朝家 前後所給之災，通共計之，則其不足之數甚多，更爲 加給事，令廟堂稟處矣，京畿南水兩邑外，雖有尤 甚之邑，其所被災，不至於三南之孔慘，參以聞見，亦 有可以商量者，道臣又此陳請，亦不可全然置之，前 給災外，加給八百結，使之分排磨勘，何如，上曰，準 千結加給可也。

<비변사등록 142책, 영조 38년 1762년 11월 06일(음)>

사회/윤리 · 풍속

領議政 申晩 등이 재해의 정도에 따라 均廳의 身布 給代를 減하는 문제를 논의하다

(…) 홍봉한이 말하기를, “이렇게 분등하여 재감하고 우선 제도에 신칙하여 제때에 거행하여 실제의 혜택이 아래에 미치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였다. 윤동도가 말하기를, “이번의 견감은 특은에서 나온 것이니 이후 작은 흉년에는 이 예를 원용(援用)하여 균역청의 재물을 손상해서는 안 됩니다.” 하니, 홍봉한이 말하기를, “경기는 삼남에 비해 조금 덜하지만 남양(南陽)과 수원(水原) 두 고을에 있어서는 재황이 삼남의 우심읍과 다름이 없습니다. 이 두 고을은 일체로 시행해야 마땅할 듯합니다.” 하였다.

신만이 말하기를, “기전(畿甸)의 남양과 수원 두 고을은 호남의 예대로 시행하는 것이 마땅할 듯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리하라. 경기안집사(京畿安集使)가 이미 돌아왔으니 남양과 수원 역시 호남의 예대로 거행하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 洪曰，京畿則比諸三南稍緩，而至於南陽·水原兩邑，災荒 無異三南，尤甚此兩邑，似當一體施行矣，申 曰，畿甸之南陽·水原兩邑，亦依湖南例施行，似宜矣，上曰，依爲之，京畿安集使，既已回還，南陽·水原，亦依 湖南例，舉行可也。

<비변사등록 142책, 영조 38년 1762년 11월 12일(음)>

사회/윤리 · 풍속

畿伯이 아뢴 말에 의거하여 給災를 더 내리도록 하라고 전교하다

○ 이번 11월 27일 약방의 입진에 경기감사가 입시하였을 때에 전교하기를,

“지금 기백(畿伯)이 아뢴 바를 들으니 광주(廣州)에 더 준 30결(結)은 분표(分俵)한 이외의 것이라 한다. 아, 기왕에 어사더러 간심(看審)하라고 명하고서 어떻게 백성을 속이겠느냐? 특별히 더 주어라. 대신이 아뢴 바를 다시 듣건대 이밖에도 수원(水原)·남양(南陽)·교동(喬桐)·양천(陽川)·김포(金浦)·안산(安山)·부평(富平) 등은 분표하기에 부족하여 아직껏 작부(作夫)¹⁾ 작부(作夫):결세(結稅)를 거둬들이는 방법의 한 가지. 즉 1백 부(負)를 1결로 삼고 8결을 1부(夫)로 하여 결세를 매겼다. 단기 하지 못하고 있다 한다. 아, 기전(畿甸)은 근본의 땅인데 백수(白首)의 복정(復政)에 어떻게 차마 보고만 있겠느냐? 옛날 인종황제(仁宗皇帝:북송(北宋)의 제4대 황제)는 유사(有司)에게 묻지도 않았는데 목금 유사(木金)의 신하도 견지(堅持)하지 않는 것을 더군다나 임금에 있어서이랴? 광주에 허시한 것과 일체로 5백 결을 더 주어 도신으로 하여금 상세히 분표하여 내가 백성을 위한 뜻을 보이게 하라. 또 요청한 진곡(賑穀)은 내일 저녁 입시에 대신과 유사당상이 함께 등대(登對)하여 품처하고, 청한 바는 거조(舉條)에 내라.” 하였다.

今十一月二十七日藥房入診，京畿監司入 侍時，傳曰，今聞畿伯所奏，廣州加許三十結，既在分俵外云，噫，既命御史看審，豈期民哉，特爲加給，大 臣所奏更聞，此外水原·南陽·喬桐·陽川·金浦·安山·富 平，以分俵不足，尙未作夫云，噫，畿甸根本之地，白首 復政，豈忍恕視，昔仁宗皇帝不問有司，而自今有 司之臣，亦不堅持，況爲人君者乎，與廣州所許者，一 體

加給五百結，令道臣詳細分俵，以示予爲民之意，所請賑穀，明日夕入侍，大臣有司堂上，同爲登對稟處，所請舉條啓下。

<비변사등록 142책, 영조 38년 1762년 11월 27일(음)>

사회/윤리 · 풍속

領議政 申晩 등이 漢北 當年 耗穀 中 5천石을 漢南 賑邑에 移轉하는 문제를 논의하다

○ 이번 1월 4일 대신과 비국 당상을 인견하여 입시하였을 때에 영의정 신만(申晩)이 아뢰기를, “이것은 경기감사 김기대(金器大)의 장계(狀啓)입니다. 이르기를, ‘진휼곡(賑恤穀) 1만 석을 비록 획급(劃給)해 주기는 하였으나 이 1만 석의 곡식으로는 실로 나누어 줄 가망이 없으니 어떤 명목의 것이든 다른 곳의 정실(情實)한 곡식으로 수량을 늘려서 획급하고, 본도의 환자[還上]는 본래 부족하므로 다른 도의 조환(租還)을 3만 석 한하고 이전(移轉)하여 그대로 회부(會付)하여 조적(糶糶:환자의 수납과 방출)하게 하며, 한강 이북의 초실읍(稍實邑)과 한강 이남 초실면(稍實面)의 구환(舊還)을 독촉하여 징수하는 일은 마치 거북의 등에서 털을 긁어모으는 것과 같습니다. 광주(廣州)의 군향(軍餉)은 특교(特敎)로 인하여 정봉(停捧)하였으나 수원(水原)의 피재(被災)는 광주보다 더 참혹한데도 일시(一視)의 은택을 입지 못하였으므로 마땅히 정봉하는 혜택이 있어야 하니 아울러 묘당(廟堂)에게 품처(稟處)하게 하기를 요청합니다.’ 하였습니다.

당초 진휼곡을 획급할 때에 분배한 뒤에 다시 청하라는 뜻으로 분부하였습니다. 이제는 봄이 되어 진휼을 개시하였고, 1만 석의 곡식은 적지 않으니 우선 기민이 얼마나 되는지를 계산하여 적당하게 나누어주고 과연 모자랄 염려가 있으면 다시 논청(論請)하게 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진휼을 시행하는 고을의 환곡(還穀)이 부족한 것은 참으로 도신의 장계 사연과 같으나 이러한 때에 다른 도의 곡물을 이전하는 것은 어찌 어렵지 않겠습니까. 신의 생각으로는 한강 이북 여러 고을 환자[還上]는 이미 모두 목표한대로 받았으니, 당년의 모곡(耗穀:환곡 수납 때 숙조(縮條)로 받은 곡식) 중에서 5천 석 한하여 한강 이남의 진휼읍에 이전하여 나누어 주도록 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구환과 수원의 군향은 지금은 이미 해가 바뀌었으므로 정봉하는 사항은 따로 논할 것이 없으니 덮어 두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그리하라 하였다.

今正月初四日，大臣·備局堂上引見入侍，領議政申所啓，此京畿監司金器大狀啓也，以爲賑穀一萬石，雖蒙劃給，以此萬石之穀，實無分給之望，他處正實其樣穀，加數劃給，本道還上，本來不足，他道租還，限三萬石移劃，仍作會付糶糶，漢北稍實邑，漢南稍實面舊還徵督，殆同龜背括毛，廣州軍餉，因特敎停捧，而水原之被災，比廣州孔慘，未蒙一視之澤，宜有停捧之惠，令廟堂稟處，爲請矣，當初賑資劃給時，以分俵後，更請之意，分付矣，今已開春始賑，而一萬石穀，亦自不貲，姑爲計饑口之多少，而量宜分給，如果有乏絕之患，則使之更爲狀請爲宜，賑邑還穀之不足，誠如道臣狀辭，而此時他道穀物之移劃，豈不難乎，臣意，則漢北諸邑還上，皆已準捧，就其當年耗，限五千石移轉於漢南賑邑，以爲分給之地，似好，舊還及水原軍餉，今已歲飢，停捧一款，別無可論，置之何如，上曰，依爲之。

<비변사등록 143책, 영조 39년 1763년 01월 06일(음)>

사회/윤리 · 풍속

領議政 金致仁 등이 경기도의 給災를 劃給하는 문제에 대해 논의하다

(...) 또 아뢰기를, “이는 경기감사 남태제(南泰齊)의 장계입니다. 본도(本道)의 올해 농사

는 한강 북쪽이 한강 남쪽보다 낮고 밭농사가 논농사보다 낮습니다. 그러나 줄기가 나오긴 했으나 이삭이 부실합니다. 이양(移秧)을 못하여 급재(給災)해야 할 것이 3천 5백 56결 95 부이고, 수원(水原) 등 12고을에 유래하는 탈(頃)로 해야 할 것을 탈로 하지 못한 것이 역시 1천 4백 29결입니다. 이번에 획급한 3천 결 외에 부족한 수효 1천 9백 86결을 더 획급하도록 묘당에서 품처하게 하기를 청하였습니다. 올해 경기(京畿)의 농사가 생각한 바에 어긋나고 한강 남쪽 일대에 이양하지 못한 것이 지나치게 많아 해조(該曹)의 급재(給災)로는 과연 부족할 듯하고, 도신이 더 청한 것 역시 너무 지나친 것은 아니니 1천 5백 결을 특별히 더 획급하되, 분표(分俵)할 때에 반드시 직접 거행하게 하여 기필코 재민들이 골고루 실혜(實惠)를 입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그리하라. 그 근본을 물으면 골고루 분표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일체 엄중 신칙하라.” 하였다.

(…) 又所啓, 此京畿監司南泰齊狀啓也, 以爲, 本 道今年農形, 漠北勝於漠南, 田農優於畚農, 而莖枯 雖茁, 穎穀不實, 未移秧應給之災, 爲三千五百五十 六結九十五負, 水原等十二邑流來應頃而未頃者, 亦爲一千四百二十九結矣, 今此劃給三千結外, 不 足數一千九百八十六結加劃事, 請令廟堂稟處 矣, 今年畿農有違所料, 而漠南一帶未移偏多, 該曹 給災, 果似不足, 道臣加請, 亦不太濫, 一千五百結特 爲加劃, 而分俵之際, 必令親執舉行, 期於災民均被 實惠何如, 上曰, 依爲之, 問其本, 則平均分俵也, 以 此一體嚴飭.

<비변사등록 150책, 영조 43년 1767년 09월 29일(음)>

사회/윤리 · 풍속

領議政 金致仁이 경기도의 災實分等狀啓의 처리에 대해 논의하다

이번 10월 5일 대신과 비변사당상을 인견 입시켰을 때, 영의정 김치인(金致仁)이 아뢰기를, “이는 경기감사 남태제(南泰齊)의 재실(災實)을 분등(分等)한 장계입니다. 수원(水原) 등 10 고을은 우심(尤甚)에 두었고, 부평(富平) 등 11 고을은 지차(之次)에 두었으며, 양주(楊州) 등 16 고을은 초실(稍實)에 두었습니다. 이어 민사(民事)에 관해 나열하여 양청하였는데, 그 하나는 구군향(舊軍餉) 환자[還上]로서 최근 갑신년조에 우심 고을은 정퇴(停退)하고, 지차 고을은 3분의 1을, 초실 고을은 절반을 수봉(收捧)하는 일이고, 그 하나는 오래된 증미(拯米)를 특별히 정퇴하여 내년 가을까지 기다리는 일이며, 그 하나는 올해 목맥(木麥: 메밀)이 흉년임은 화곡(禾穀)보다 심하니 벼와 메밀을 콩으로 대신 받되, 우심 고을은 절반을, 지차 고을은 3분의 1을, 초실 고을은 4분의 1을 대신 받도록 하는 일이며, 그 하나는 평창(平倉)과 북한산성의 향곡(餉穀)을 한강 이남의 여러 고을에서 거리를 계산하여 50리 밖에 한해서는 우선 본관(本官)에 수봉해 두게 하는 일이고, 그 하나는 각 군문의 보미(保米)와 수어·총융 두 영(營)의 수보미(需保米)는 우심·지차·초실을 막론하고 모두 돈으로 대신 바치게 하는 일이며, 그 하나는 노비의 추쇄와 징채(徵債)를 내년 가을까지 못하게 하는 일로서, 모두 묘당에서 품지하여 분부하게 하기를 청하였습니다. 분등은 장청(狀請)에 의해 시행하고, 올해 경기의 농사는 처음 생각한 것과 크게 어긋나 각종 구환(舊還)을 사실 일시에 독려해 징수하기 어려우니 우심 고을은 아울러 정퇴하도록 하고 지차 고을과 초실 고을은 최근 양년조(兩年條)의 절반을 정봉하도록 하며, 환곡(還穀)의 대봉(代捧)은 아무리 폐단이 있다고는 하나 이러한 해에는 의당 더 진휼해야 하니 우심 고을은 절반을, 지차 고을은 3분의 1을 콩으로 받아들이도록 하였다가 내년 가을에 본색(本色)으로 바꾸도록 하고, 초실 고을은 논하지 말게 하며, 평창과 북한산성의 환곡과 군향은 체통이 중하니 다만 우심

고을에만 본관에 수봉하여 두게 하고, 오래된 증미를 퇴봉하는 일과, 각 군문의 보미와 수어·총융 두 영(營)의 수보미(需保米)를 돈으로 대납하게 하는 일과, 노비의 추쇄와 징채를 내년 가을까지 못하게 하는 일은 모두 청한 대로 시행하여 조금이나마 민폐를 덜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임금의 이르기를, “아된 것 가운데 구환(舊還)은 지차 고을은 3분의 1을 수봉하게 하고 나머지 일은 그대로 하라.” 하였다. (…)

今十月初五日大臣·備局堂上引見入侍時,領議政金所啓,此京畿監司南泰齊災·實分等 狀啓也,水原等十邑置之尤甚,富平等十一邑,置之之次,楊州等十六邑,置之稍實,而仍有民事之條 列仰請者,其一舊軍餉·還上,最近甲申條,尤甚邑停退,之次邑三分一,稍實邑折半收捧事也,其一,舊拯米 特許停退,以待明秋事也,其一,今年木麥失稔,甚於 禾穀,租與木麥,以太代捧,而尤甚邑折半,之次邑三 分一,稍實邑四分一,許令代捧事也,其一,平倉·北漢 餉穀,漢南諸邑,計其程道,限以五十里外,姑令捧留 本官事也,其一,各軍門保米及守·摠兩 營需保米,勿 論尤甚·之次·稍實,一併以錢代納事也,其一,推奴徵 債,限明秋防塞事也,而竝請令廟堂稟旨分付矣,分等依狀請施行,今年畿農,大違始料,各樣舊還,誠 難一時徵督,尤甚邑竝許停退,之次邑·稍實邑,就最 近兩年條折半停捧,還穀代捧,雖有弊端,如此之年,宜加軫恤,尤甚邑折半,之次邑三分一,以太許捧,待 明秋還作本色,稍實邑勿論,平倉·北漢 還穀·軍餉體 重,只令尤甚邑捧留本官,舊拯米退捧事,各軍門保 米·守·摠兩營需保米,以 錢代納事,推奴徵債,限明秋 防塞事,竝依請施行,以除一分民弊何如,上曰,所 奏中,舊還,之次邑三分之一許捧,其餘事依爲之 (…)

<비변사등록 150책, 영조 43년 1767년 10월 07일(음)>

사회/윤리·풍속

領議政 申晦가 京畿監司의 災實分等狀啓와 御營大將 尹泰淵의 휴가 등에 대해 논의하다

이번 10월4일 대신과 비국당상을 인견하여 입시하였을 때에 영의정 신晦(申晦)가 아뢰기를, “이는 경기 감사 김재순(金載順)의 재실분등장계(災實分等狀啓)입니다. 수원(水原) 등 11읍을 지차(之次)에, 광주(光州) 등 26읍을 초실(稍實)에 두었으며 연해(沿海)에서 재해를 입은 상황을 상세히 아뢰고 이어 호조의 급재(給災) 1천2백 결로는 사실 분배할 도리가 없으니 1천 6백 80결을 더 주고 각영문(各營門)의 군보미(軍保米)와 수어·총융 양영(兩營)의 보수미(保需米)는 규정대로 초실과 지차를 가리지 말고 아울러 돈으로 대납(代納)하도록 묘당에서 품지하여 분부하기를 청하였습니다. 분등은 장청한대로 시행하고 금년에 경기의 연해읍은 가장 혹심하게 재해를 입었으나 호조에서 급제한 수량은 부족함을 면치 못하니 1천 2백 결을 특별히 가급하여 일일이 고루 나눠주게 하고, 3군문의 군보미는 일찍이 정해진 식례가 있으니 백성의 소원에 따라 받으며, 수어·총융 양영의 보수미는 양영의 경비를 오로지 여기에 의탁하고 있기 때문에 대흉이 든 해가 아니면 허시한 일이 없으니 이는 덮어두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임금의 그리하라 하였다.

또 아뢰기를, “어영대장 윤태연(尹泰淵)의 부모묘소가 동쪽 교외(郊外)의 멀지 않은 곳에 있는데 지금 일이 있어 간절히 가서 살펴보고 싶으나 무장(武將)의 말미를 청하는것은 사체에 온당치 못하므로 누차 신 등에게 말하였습니다. 종전에는 무장도 혹 대신이 앙품하여 말미를 허급한 일이 있습니다. 가고 오고 하루 이틀 밖에 걸리지 않는다고 하니 지극한 정리를 펴게 하는것이 좋겠기에 감히 진달 하옵니다.” 하니 임금의 그리하라 하였다.

今十月初四日大臣·備局堂上引見入侍時，領議政申所啓，此卽京畿監司金載順災·實分 等狀啓也，水原等十一邑，置之之次，廣州等二十 六邑，置之稍實，而備陳沿海被災之狀，仍以爲，地部 給災一千二百結，實無分排之路，一千六百八十結，特許準劃，各營門軍保米及守·摠兩營保需米，依定 式毋論稍實·之次邑，並許以錢代納事，請令廟堂 稟旨分付矣，分等，依請施行，而今年畿甸沿邑，被災 最甚，而該曹給災之數，未免不足，一千二百結，特許 加給，使之一一均俵，三軍門保米，則曾有定式，從民 願收納，守·摠兩營保需米，兩營需用，專靠於此，故如非大歉之歲，則亦無許施之事，此則置之何如，上 曰，依爲之。又所啓，御營大將尹泰淵父母墳山，在於東郊 不遠之地，方有事切欲往省，而武將請由，事體未安，故累言於臣等，曾前將臣，或因大臣仰稟，而許由 矣，往返不過一兩日云，俾伸至情似好，故敢達，上曰，依爲之。

<비변사등록 156책, 영조 50년 1774년 10월 04일(음)>

사회/윤리·풍속

京畿監司 尹蓍東이 災害를 당한 廣州 등의 高을에 接濟하는 문제에 대해 논의하다

○ 같은 날 입시했을 때 경기감사 윤시동(尹蓍東)이 아뢰기를, “어사가 모두 산골 근처 제읍(諸邑) 중 재해가 우심(尤甚)한 곳에는 내년 봄에 진구(賑救)할 방도를 논의해야 한다고 청했는데 지금 좌도(左道)의 어사 이덕사(李德師)의 서계에는 또 광주(廣州)·수원(水原)·남양(南陽)·안산(安山) 등 바닷가의 재해를 당한 곳을 접제(接濟)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신의 감영에서 당부(當否)를 구별하여 그 고을 수령에게 신칙하여 각별히 정하게 가리게 하여 내년 봄에 작량(酌量)하여 거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그리하라 하였다.

윤시동이 말하기를, “접제할 곡물은 묘당과 의논하여 추후 장문(狀聞)하겠습니다. 감히 아웁니다.” 하니, 임금이 그리하라 하였다.

同日入侍時，京畿監司尹蓍東所啓，前後御史皆 以近峽諸邑，被災尤甚處，明春當議賑救之道，爲請 今此左道御史李德師書啓，亦以廣州·水原·南陽·安山濱海被災處，宜有接濟爲言，自臣營區別當否，申飭該邑守令，使之各別精抄，待明春商量舉行，何 如，上曰，依爲之，蓍東曰，接濟穀物，則就議廟堂，追後狀聞之意，敢此仰達，上曰，依爲之。

<비변사등록 157책, 영조 51년 1775년 10월 28일(음)>

사회/윤리·풍속

刑曹判書 鄭昌聖이 南陽과 水原 두 고을의 流民을 안정시키는 문제를 논의하다

○ 같은 날 입시하였을 때에, 형조 판서 정창성(鄭昌聖)이 아뢰기를, “신이 현재 경기구관(京畿句管)을 맡고 있습니다. 올해 기전은 가장 흉년이 든 가운데 남양(南陽)과 수원(水原) 두 읍이 더욱 심하여 소민(小民)들이 이미 사방으로 흩어진 자가 있는데 모두 가을 농사는 가망이 없고 동북 지방은 크게 풍년이 들었으므로 먹거리를 취할 계획으로 바가지를 들고 간다고 합니다. 지금 경상이 이러하니 앞으로 닥칠 일을 알 만합니다. 이미 흩어진 뒤에 불러 모으는 것보다 어찌 떠나가기 전에 다독거리는 것만 하겠습니까. 신의 생각에는 도신 및 당해 읍의 수령에게 특별히 신칙하여 각별히 효유하고 임금의 덕의를 선포하여 도로 모여 안도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여깁니다. 유민(流民)을 위로하여 안정시키기 위한 방도로는 역시 성심으로 해야 합니다. 전에 동북 지방의 유민을 안심하고 모이게 할 때 수령이 혹 이교(吏校)를 별달리 정하여 공문을 보내 데려오니 흡사 추격하여 체포하는 것과 같아 소요스런 폐단을 면치 못하였으니, 감싸 보살펴 주려고 하는 성상의 뜻에 어긋났습니다. 이번에는

절대로 기간을 정하여 독촉하거나 억박지르지 말게 하고 되도록 잘 처리할 것을 생각한 신칙하는 실상의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이러한 내용으로 말을 만들어 행회(行會)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리하라. 경이 주달한 내용은 실로 눈앞의 절급한 일이다. 묘당에서는 이러한 내용으로 말을 만들어서 당해 도신을 각별히 엄하게 신칙하라. 성심을 다하여 안주시키지 않다가 뒤에 적발이 되는 일이 있을 경우 도백에서부터 수재(守宰)에 이르기까지 별다른 조치가 있을 것이다. 남양·수원 두읍은 비록 가장 우심한 까닭에 이러한 소문이 들리는 것이지만 이 밖에 도내 여러 읍들은 태반이 우심한 지역이다. 유민이 사망으로 흩어지는 일로 다른 경우를 들어 알 수 있다. 일체 엄하게 신칙하여 행회하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同日入侍時，刑曹判書鄭昌聖所啓，臣方待 罪京畿旬管，而今年畿甸，最爲失稔之中，南水兩邑尤甚，小民已有流散者，皆以爲秋事既無可望，東北 方爲大登，故乃以取食之計，作此持瓢之行云，卽景 如此，來頭可知，與其招集於既散之後，曷若懷綏於 未去之前乎，臣謂另飭道臣及該邑守令，各別曉諭，宣布德意，俾卽還集安堵之地，至於勞徠之道，亦 須誠心爲之，向來東北流民安集之時，爲守令者，或 別定吏校，移文推捉，殆同追捕者然，不免騷擾之弊端，殊乖懷保之聖意，今番切勿定限督迫，宜思某 條善處，然後方有申飭之實效，竝以此意，措辭行會 何如，上曰，依爲之，卿之所奏，實爲目下切急之務，自廟堂以此意措辭，各別嚴飭該道臣處，如不悉心 安集，致有從後現發之舉，自道伯以至守宰，當別樣 有處分，南·水兩邑，雖以最尤甚之故，有此傳說之入 耳，外此道內諸邑，太半是尤甚，流民之散四，亦足反 隅，一體嚴飭之意，行會可也.

<비변사등록 165책, 정조 6년 1782년 08월 10일(음)>

사회/윤리 · 풍속

左議政 金履素가 京畿 36邑 暗行御史의 別單에 대해 논의하다

이달 16일에 약방(藥房)과 시·원임대신과 각신(閣臣)이 문안[承候] 차 입시하였는데, 이·병조판서와 유사당상과 어사가 함께 입시하였을 때, 좌의정 김이소(金履素)가 아뢰기를, “지금 경기(京畿) 36읍(邑) 암행어사(暗行御史)들이 쓴 별단(別單)을 보니, 금천(衿川) 등 4읍 어사 유사모(柳師模)의 서계(書啓) 중에 ‘인천(仁川)과 안산(安山) 사이의 언답(堰畓: 수리답)이 화성(華城)에 소속된 것들만 특히 고상(枯傷: 말라 손상됨)을 입었는데 그 지방에 있는 관원이 임의대로 급재(給災)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한 일에 대하여, 이는 화성유수(華城留守)에게 분부하여 실제대로 집행(執卜)하게 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각읍의 흉년 보고는 비록 차등이 있으나 지금 황급하게 진대(賑貸)하는 일은 논할 것도 없이 세전이나 세후에 진휼할 곳을 골라 뽑는 일도 도신에게 붙여주되 백성들의 형편에 완급을 살펴 편리한 대로 구휼하게 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인천 지방의 총융청(摠戎廳) 둔감(屯監)이 세곡(稅穀)을 남징(濫徵)하였습니다.’ 라고 한 일에 대하여서는 해청(該廳)에 분부하여 각별히 엄단하게 하고 당해 둔감은 조사 심문한 뒤에 해청에서 법사(法司)로 이송하여 조율(照律)하게 하고, 신칙하지 못한 장신(將臣)과 검찰하지 못한 도신은 종종추고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그리하라 하였다. 김이소가 아뢰기를, “양천(陽川) 등 4읍 어사 채홍원(蔡弘遠)의 서계 중에 ‘양천에서 백지징세(白地徵稅) 한 30결에 대하여 변통하는 일을 시행하여야 합당합니다.’ 라고 한데 대하여, 도신이 청한 바 재결(災結)을 이미 기준으로 시행하도

록 허락하였으니 도내(道內)에는 백지징세의 폐단이 없어야 마땅한데, 수의어사(繡衣御史)의 서계가 이미 이러하니, 혹시 집재(執災:재결을 잡아 매김)와 표재(俵災:재결에 조세를 감함)를 할 즈음에 알뜰하고 고르게 하지 못한 소치에서 연유한 것일 터이니, 다시 도신에게 상세히 조사하여 골고루 감하여 주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덕포진(德浦鎭)의 향곡(餉穀)의 일에 대하여서는 수신(帥臣)에게 돈이든지 쌀이든지를 막론하고 편리한 대로 받아들이게 하여 민폐를 제거하도록 하십시오. ‘교하(交河)에 대동미태(大同米太)의 보급(補給)을 먼저 내려 주십시오.’ 라고 한 일에 대하여서는 도신에게 분부하여 그 곡절을 조사하여 시정한 뒤에 장문(狀聞)하게 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부평부사(富平府使) 강명길(姜命吉)에 대하여 의논한바 여러 조항들은 불법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재결(災結)을 투식(偷食)하고 면세(免稅)를 방납(防納)하고, 저치곡(儲置穀)을 옮겨 보충하고, 환곡(換穀)을 지나치게 받고, 군보미(軍保米)를 규정 이외로 더 받아들이는 등 허다한 죄상은 모두 용서하기 어려운 것들에 연관되어 있으니, 우선 파직하고 해부(該府)에서 법에 따라 처벌하게 하되 그가 투식한 수량을 낱알이 징수하여 민간에 돌려주게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리하라. 강명길, 그[渠]는 비록 사대부(士大夫)와는 신분이 다르더라도 처지(處地)가 어떠한 곳인데 이러한 죄과(罪科)를 범하였으니 매우 통탄스럽고 해괴하다. 해부에게 엄격히 조사하게 하여 실정을 알아낸 뒤에 법에 따라 중하게 처벌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김이소가 아뢰기를, “통진전부사(通津前府使) 김이용(金履容)은 증미(拯米:물에 빠졌던 쌀)를 돈으로 해아려 판매하는데 값을 정하여 억지로 징수하였고, 환자 쌀에 조세를 매겨 이익을 남기면서 소두(小斗)로 나누어 주었으며, 칙사의 수용(需用)을 범용(犯用)하였으며, 선인(船人)에게는 더 징수하였고, 후평(後坪)에는 백지(白地)에 세금을 더 매겼으며, 환곡(還穀)을 키로 까불러 불에 태운 사실을 알리지도 않았으니 일마다 통탄스럽고 놀랍습니다. 이와 같이 탐욕스러운 불법의 무리를 이미 체직(遞職)되었다고 논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역시 해부에게 나문(拿問)하고 끝까지 조사하여 해당 법률로 처벌하게 하되 사용(私用)으로 이미 들어가 버린 것은 역시 부평의 예에 따라 민간에게 찾아 돌려주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리하라. 저와 같이 탐욕스러운 버릇은 그냥 무상(無狀)하다는 말로 의논해서는 안 된다. 해부에서는 각별하고 엄중히 신문하여 사정을 기필코 알아낸 뒤에 법에 따라 매우 엄하게 처벌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김이소가 아뢰기를, “양근(陽根) 등 두 고을의 어사 정만석(鄭晩錫)의 서계 중에 ‘가평(加平)의 환포(還布)는 다시 우심(尤甚)과 지차(之次) 가운데서 차차 골라내어 분수(分數)를 매겨 정회하여 달라고 한 일’에 대하여서는, 도신에게 더욱 자세히 살펴 편리한대로 거행하게 하십시오. ‘양근(陽根)의 서종면(西終面)에 있는 바의 상방(尙方)의 시장(柴場)에 지나치게 많은 세금을 거두어들이는 일’과 ‘남종면(南終面)에 있는 분원(分院:분사용원(分司養院))의 세미(稅米)와 본읍(本邑:양근읍)의 호역(戶役)에 대한 일’에 대하여서는 각각 당해 아문(衙門)에 분부하여 도백(道伯)과 더불어 상의하게 하되, 이어서 또 당해 군(郡)에 관문(關文)을 보내어 물어 보고 폐해를 끼칠 단서가 없도록 하십시오. ‘양근·가평 양읍의 포보(砲保)와 금위영(禁衛營)·어영청(御營廳)의 보(保)에 인정(人情)으로 쓰는 돈이 다과(多寡)가 균등하지 않은 일’에 대하여서는, 인정(人情)이나 잡비(雜費)가 절목(節目)에 정식(定式)으로 되어 있는 것이니, 절목에 따라 시행하게 하고 혹시라도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내지 못하도록 하는 뜻으로 각 영문(營門)에 분부하십시오. ‘양근에 소재(所在)한

수어청(守禦廳) 노아병(奴牙兵)의 신미(身米)로 1두(斗)를 더 바치는 일’은 해청(該廳)에게 즉시 시정하도록 하여 치우친 고통을 받는 폐단이 없게 하십시오. ‘양근에서 납부하는 도토리[橡實]와 생취[生葛] 등을 값으로 징수하는 일’에 대하여서는, 연전(年前)에 기내(畿內)의 당해 고을들에게 이런 일들을 금하도록 신칙한 것이 매우 엄중한 것뿐만이 아니었는데, 신칙하였던 문서의 먹물이 마르기도 전에 또 이런 일이 나타났으니 매우 놀랍습니다. 도신에게 분부하여 각별히 엄중하게 조사하고 일일이 찾아내어 돌려주게 한 뒤에 당해 수령은 지발죄(指發罪)로 처벌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그리하라. 도토리와 생취에 대하여서는 이보다 앞서 금지하도록 신칙한 것이 어떠하였으며, 또한 게다가 소중하게 하여 반드시 그 값을 후하게 주어 백성들이 폐해를 입지 않도록 하려고 한 것이었으니 다만 양근만 그러한 것이 아니라 관동(關東)의 모모읍(某某邑)과 양남(兩南)의 병·수영(兵水營) 소관(所管)도 모두 이와 같이 하라고 일렀었다. 양근은 우선 도신에게 조사 탐문하여 장문(狀聞)하게 하고, 삼도(三道)에는 본사(本司)에서 따로 관문(關文)을 내어 행회(行會)하게 하되, 폐해가 된 곡절[委折]을 조정에서 이미 익히 알고 있으니 감히 숨기고 속임이 없도록 할 것이며, 동백(東伯)과 양도(兩道) 수신(帥臣)은 사실에 근거하여 장문(狀聞)하게 하라. 지금은 식목(植木)을 거의 다 하였으니, 다시는 도토리와 솔방울을 해도(該道)에 구하지 말도록 관문으로 신칙하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김이소(金履素)가 아뢰기를, “과주(坡州) 등 4읍(邑) 어사(御史) 홍낙유(洪樂游)의 서계 가운데 ‘과주에서 화세(火稅:火田稅)를 매결(每結)에 1백 말[斗]를 더 받는데, 만일 혹시라도 기한을 넘기면 봄에 받을 환자에 이록(移錄)하였다가 모곡(耗穀)과 함께 받는다고 한 일’에 대하여서는, 이는 법에 크게 벗어나는 것이니 듣고 나서 매우 놀라웠습니다. 도신에게 다시 더 자세히 조사하게 하여 각별히 엄격하게 방지하게 하고, 해읍(該邑)의 감색(監色)은 감영에서 엄한 형벌로 징계하도록 일체(一體) 분부하십시오. ‘봉일장(奉日場:봉일천장)의 감고(監考)는 기로소(耆老所)에서 차출(差出)한 바이나 수세(收稅)가 너무 많으므로 다른 시장의 예에 따라 수세해야 한다는 일’에 대하여서는 외읍(外邑)이나 경사(京司)를 막론하고 장시(場市)의 수세는 묘당에서 정식(定式)할 수 있는 바가 아니므로 해도(該道)와 해소(該所:기로소)에게 편리한 대로 시정하게 하여 세금을 지나치게 거두는 폐해가 없도록 하십시오. ‘도회소(都會所)는 장관(長官)을 돌려가며 하도록 하라는 일’에 대하여서는 큰 변통(變通)에 관계되는 일이므로 도신에게 분부하여 이치를 따져 장문(狀聞)하게 한 뒤에 품처하게 하십시오. ‘훈국(訓局)과 총융청(摠戎廳)에서 둔곡(屯穀)을 지나치게 징수한다고 한 일’에 대하여서는 인천(仁川)의 예에 따르도록 분부하십시오. ‘풍덕(豐德)에서 금위영과 어영청 군영(軍營)이 받아들이는 환향(還餉)을 변통하여야 된다는 일’에 대하여, 이미 보관해 두는 군향(軍餉)을 받았는데 또 읍의 환자까지 받는다면 과연 지탱하기 어려운 폐해가 됩니다. 도신에게 분부하여 적당하게 수량을 감하여 다른 고을의 백성들과 균일한 처지가 되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연경사(衍慶寺)의 잡역(雜役)이 폐단이 된다는 일’에 대하여, 이는 능침(陵寢)을 수호하는데 관계가 되는 것이므로 그곳을 진휼(軫恤)하는 바는 다른 곳과 자별하니, 도신에게 분부하여 감해 줄 것은 감하고 금할 것은 금하여, 일일이 시정한 뒤에 장문(狀聞)하게 함으로써 실효가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그리하라. 장세(場稅)는 비록 묘당의 관할이 아니더라도 민폐에 관계되는 일이니 우천(牛喘)을 묻는 것과 다를 바가 있겠는가? 도신을 시켜 즉시 시정하도록 하고 풍덕의 군향(軍餉) 폐해와 연경사의 폐단은 즉시 도백(道伯)을 시켜 혹은 조사하여

처리하고, 혹은 사실을 알아내어 모두 장문(狀聞)하게 함으로써 수의(繡衣)를 보내어 폐단을 묻게 한 조치에 기필코 실효가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김이소가 아뢰기를, “적성(積城) 등 4읍 어사 정약용(丁若鏞)의 서계 중에 ‘연천전현감(漣川前縣監) 김양직(金養直)은 환곡을 제멋대로 나누고 모곡(耗穀) 조항은 사사로 사용한 뒤에 미봉(未捧)으로 허류(虛留:장부에만 있음)하고, 문서(文書)를 거짓으로 보고하였으며, 심하기는 5십여 재결(災結)을 투식(偷食)하고, 7백 명분을 가류(加留:실제보다 더 많이 유치함)한 모곡(耗穀)을 취하였다고 한 것’에 대하여서는, 모두 장오(贓汚)에 해당되니 도신에게 특별히 엄히 조사하게 하여 법에 따라 처벌하게 하십시오. 이른바 가류한 것을 이배(吏輩)에게 나누어 징수한 것은 살살이 조사하여 시정하게 하고, 팔아먹은 것은 수량을 계산하여 징출(徵出)하게 하고, 지적하여 징출할 곳이 없는 것은 수량을 나누어 정퇴(停退)하게 하여, 수의어사의 서계대로 시행하도록 하고, 김양직은 해부(該府)에게 나문(拿問)한 뒤에 법에 따라 처단할 것이며, 적발하지 못하였던 도신은 종종추고 하도록 하소서. ‘삭령전군수(朔寧前郡守) 강명길(康命吉)의 죄상(罪狀)’에 대하여는 지금 부평(富平)의 현임(見任)으로서 엄중히 처벌해야 된다고 양청하는 중에 있으나 이 또한 도신에게 분부하여 엄격히 조사하여 등문(登聞)한 뒤에 문목(問目)을 더하여 취초(取招)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리하라. 김양직을 당초에 차견(差遣)할 때 직무를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모르지는 않았지마는 오로지 명령에 수응하는 소중함을 위한 것이었다. 그 뒤 치적(治績)도 모른 것은 아니나 처음 금년의 고적(考績)으로 낙점을 내린 것도 또한 혹은 깊이 헤아리지 않아 그러하였겠는가? 대개 그가 감당하지 못할 줄 알면서 차견하였으니, 곧 조정의 책임이다. 어찌 도신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고 하겠는가? 도백은 추고하지 말라. 그러나 법은 굽힐 수가 없으니 해부에게 잡아다가 가두고 엄히 물은 뒤에 보고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김이소(金履素)가 아뢰기를, “영평(永平) 등 양읍(兩邑) 어사 정이수(鄭履綏)의 서계 중에 ‘포천(抱川)의 정대(停代)할 호(戶)를 뽑아 읍에서 5백여 호를 보고하였는데 영문(營門)에서 삭감(削減)하여 2백여 호로 만들었다는 일’에 대하여 영문이 삭감한 바는 반드시 곡절이 있을 터이니, 도신에게 다시 자세히 조사하도록 하여 만일 더 뽑지 않아서는 안 될 곳이 있으면 참량하여 더 뽑게 하십시오. ‘포천의 교환(校還:향교 환곡) 1말[斗]은 좁쌀[小米] 3되로 대납(代納)하도록 하여 달라는 일’에 대하여서는 대봉(代捧)하라는 특령(特令)이 이미 있었으니, 도신에게 분부하여 백성의 실정을 자세히 염탐하고 한결같이 절가(折價)에 맞게 대봉하게 하십시오. ‘포천에 있는 수어청(守禦廳) 소재 둔전(屯田)을 혼동하여 둔전 외(外)의 원장부(元帳簿)에 있는 땅을 거둬 징수하고, 금년의 수세(收稅)를 상년(常年)보다 1전(錢) 4푼(分) 더 받았다는 일’에 대하여서는, 둔전이 아닌 원장부에 거둬 징수하는 것은 이미 법을 외면한 것이고, 흉년[荒年]에 세금 거두는 일을 상년보다 갑절을 더 했다는 것도 또한 민폐에 관계되는 것이니,海道(該道)와 해청(該廳)에 분부하여 즉시 빠르게 시정하게 할 것이며, 당해 둔감(屯監)도 역시 법에 따라 처벌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그리하라 하였다. 김이소가 아뢰기를, “양지(陽智) 등 2읍의 어사 정동관(鄭東觀)의 서계 가운데 ‘칙수미조(勅需米租)를 이미 받은 것 외에는 이번 환자[還上]의 예에 따라 분수(分數)대로 정되하고, 혹은 돈으로 대신 받게 하였다가 내년 가을을 기다려 본색(本色)으로 만들도록 하자고 한 일’에 대하여 수의(繡衣)가 아무리 백성의 실정을 위하여 한 말이지마는 칙수(勅需)를 설치한 법의(法意)가 지엄(至嚴)한데 한번 융통[闊狹]하게 되

면 뒷날의 폐해를 말로 하기 어려우니 이일은 그대로 두도록 하십시오. ‘양지현의 수·총양영(守摠兩營)의 둔곡(屯穀)을 가승(加升)하는 폐해에 대한 일’은 기왕에 답습한 잘못이라고 일렀으니 각각의 해영(該營)에 분부하여 둔교(屯校)를 엄중히 다스려 각별히 금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용인현(龍仁縣)의 양향둔(糧餉屯:양향둔전)의 남세(濫稅)에 대한 일’에 대하여서도 기왕에 본읍(本邑)에 붙여 수세(收稅)하여 상납(上納)하도록 하였으니 지나치게 징수하는 폐해는 본읍에 책임이 있으므로 본읍에 엄중히 신칙하여 실제대로 수봉(收奉)하라는 뜻으로 도신에게 분부하십시오. ‘군보미(軍保米)를 대전(代錢)으로 1전(錢) 또는 2전씩을 더 징수하였다는 일’에 대하여서는, 잡비(雜費)와 아울러 1말 값이 4전(錢)으로 한 것이 바로 정식(定式)인데, 규정 이외로 더 거두는 것은 매우 해괴합니다. 도신에게 분부하여 엄격히 조사하게 하여 도로 징수하거든 보민(保民)에 지급하고, 이어서 백성들에게 분명히 알려서 더 받는 폐해가 없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답하기를, “그리하라. 용인(龍仁)에서 보전(保錢)을 더 받은 일에 대하여서는 실로 이러한 폐단이 있었다. 그러한 수령들에 대해서 작게는 영문(營門)에서 결장(決杖)을 하고, 크게는 나과(拿罷)하라. 어찌 감히 죄를 면할 수 있겠는가? 그 자세한 연유를 도신에게 실제대로 조사하여 장문(狀聞)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김이소가 아뢰기를, “과천(果川) 등의 3읍 어사 이조원(李肇源)의 서계 중에 ‘과천·용인(龍仁)·진위(振威)의 환자 쌀을 콩[太]으로 대봉(代奉)했다는 일’에 대하여, 견휜(鑊恤)하는 조건(條件) 중에 최초로 반하(頒下)한 것은 영읍(營邑)에서 스스로 적당히 헤아려 자세히 알아 거행할 것이니, 이것은 그냥 두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그리하라고 답하였다. 우의정 이병모(李秉模)가 아뢰기를, “어사 정이수(鄭履綏)의 서계에 환곡(還穀)을 ‘석대(石代)로 받는다.’고 이른 것은 단대(單代)를 지적하는 것 같은데 준절(準折:값을 따져 매김)의 법이 법전(法典)에 분명히 실려 있거늘 수의(繡衣)가 법을 집행하는 임무를 가졌는데 이와 같이 법을 외면하는 의논을 가졌으니 작은 실수가 아닌 듯합니다. 파직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묻기를, “다른 대신의 의견은 어떠한가?” 하였다.

영부사 채제공(蔡濟恭)이 아뢰기를, “수의(繡衣)의 체통(體統)도 중하니, 비록 문비(問備)를 시행하더라도 그 죄명이 가볍지 않습니다.” 하자, 판부사 김희(金熹)가 아뢰기를, “신의 생각도 그러합니다.” 하고, 김이소(金履素)가 아뢰기를, “아무리 당면한 민원(民願)에서 나왔다고 하더라도 환곡(還穀)에 관한 법의(法意)가 매우 중한 것이니 우상(右相)께서 파직을 청한 것은 지나친 것이 아닌 듯합니다.” 하자, 임금이 말하기를,

“우상의 말이 역시 옳다. 그러나 봉서(封書) 중에 이미 조목조목 진술한 것이 있었는데, 이미 시행한 것 외에 더 시행하자고 한 일에 대하여 수의의 서계가 설사 생소(生疎)한 실수가 있었더라도 용서할 만한 점이 있다. 영부사의 말이 좋다. 우선 종중추고하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이조판서 이치중(李致中)이 아뢰기를, “금천현감(衿川縣監) 홍경후(洪景厚)는 재정(災政)을 모두 향소(鄉所)에 맡기어 호구(戶口)를 추려내는 데에 역시 고르지 못함이 많으며, 길을 닦는 데에 역가(役價)는 간혹 중간에서 사라지는 경우가 있고, 첩문(帖文)을 가지고 끊임없이 오고가니 실로 가난한 백성들에게 폐해가 된다고 합니다. 우선 파직하고 해부(該府)에서 나문(拿問)한 뒤에 처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다스리는 데에는 밝지 못한 데 이르지는 않았다고 할 것이다. 사소한 착오는 모르지 않으나, 이러한 때 이 읍은 서툰 솜씨[生手]에게 맡기기 어렵다. 잠시

논죄하지 말았다가 앞으로 근만(勤慢)에 처치(處置)하는 방법으로 삼도록 하겠으나, 다시 혹은 소홀한 일을 저지르면 어떻게 돌보아 주겠는가? 마땅히 가배(加倍)의 법으로 다스릴 터이니 이렇게 엄중히 신칙하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이치중이 아뢰기를, “안산군수(安山郡守) 조진택(趙鎭宅)은 읍에서 신칙해야 할 일들이 많이 정체(停滯)되어 백성의 실정이 막혀 있으므로 한 군내에 원통함을 만드는 것은 이것이 큰 원인이 됩니다. 재정(災政)에 있어서는 진휼(賑恤)이 부족하고, 세납(稅納)에 있어서는 백지징세를 면하지 못하여, 안산 백성에 있어서는 군수가 없는 것만 못하다고 원성이 널리 퍼져 이웃 고을의 경계에서 대신 안타까워한다고 합니다. 우선 파직하고 해부에게 나문(拿問)한 뒤 처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관아를 비워둔 것은 그의 죄가 아니다. 이 또한 논죄하지 말았다가 앞으로의 효과에 따라 문책하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이치중이 아뢰기를, “부평부사(富平府使) 강명길(康命吉), 통진전부사(通津前府使) 김이용(金履容), 연천전현감(漣川前縣監) 김양직(金養直), 삭녕전군수(朔寧前郡守) 강명길(康命吉)의 불법을 저지른 죄는 대신(大臣)이 이미 논열(論列)하여 엄히 처치하라는 명령이 있었으므로 신이 맡은 조(曹:이조)에서는 다시 회계(回啓)할 필요가 없습니다. 파주전목사(坡州前牧使) 조택진(趙宅鎭)은 호구(戶口)를 골라 뽑는 데에 사사로움을 따르고, 관수(官需)에 원망을 샀으니 견파(譴罷)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하고, 장단부사(長湍府使) 이진익(李鎭翼)은 아전들의 간교한 일을 살피지 못하여 백성의 소송이 막혀있고, 호구(戶口)를 고르는 데는 모두 이향(吏鄕:아전과 향소)에 맡겨 두어 표재(倭災)를 하게 되면 허위를 면하지 못하니, 쇠로(衰老)한 정치와 혼계(昏愊)한 치적(治績)을 가지고, 재세(災歲)에 있어서 수목(守牧)의 임무를 맡기 어렵다고 합니다. 이 두 고을의 수령(守令)은 모두 파출하고, 해부(該府)에게 나처(拿處)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그리하라. 달리 다시 물을 것도 없이 나처(拿處)할 것은 말할 것도 없다. 그러나 조택진은 왕실의 먼 인척(姻戚)으로 비방을 받으니 더욱 놀라운 일이다. 서용하지 않는 법을 시행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이치중(李致中)이 아뢰기를, “양성현감(陽城縣監) 권순정(權綬政)은 기왕에 연약한 사람으로서 다그치고 단속하지 못하여, 수개(修改)하기 위하여 돈을 거두는데 있어서 크게 민원(民怨)을 사고, 표재(倭災)하기 위한 호구를 가리는 데에도 원망하는 말이 길에 깔렸으며, 은혜로운 윤음(綸音)도 알리지 않아 온 지역의 백성들이 정대(停代:기한을 물리거나 대납케 함)하는 특은(特恩)도 알지 못하고 있으며, 백성을 다스리는 일을 전연 일삼지 않아서 곳곳이 혼란하니 견파(譴罷)하는 벌을 시행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합니다. 우선 파직하고 해부에게 나처(拿處)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그리하라고 답하였다. 이치중이 아뢰기를, “과천현감(果川縣監) 김이유(金履裕)는 백성을 다스리는 일이 끝내 힘을 떨치지 못하고 간혹 병 때문에 일이 방해를 입는데다가 조적(糶糴)을 받는데 있어서도 간소한 폐단이 없지 않으며, 대전(代錢)으로 이전(移轉)하는데도 잘 살피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우선 파직하고 해부에게 나처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여기도 금천(衿川)과 다름이 없어 서툰 솜씨에게 맡기기 어려우니 지금은 잠시 논죄하지 말았다가 다시 앞으로의 효과를 보고 문책하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이치중이 아뢰기를, “양근군수(陽根郡守) 윤순(尹醇)은 연약함이 너무 지나치고 간소한 무리들이 농간하여 표재(倭災)를 할 즈음에는 당해 아전이 손을 쓴다고 합니다. 먼

저 파출(罷黜)하고 해부에게 나쳐(拿處)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연약한 사람에게 전결하여 처리하도록 책임지우기는 어려우나 이러한 때에 읍쉴(邑倅:고을 수령)을 영송(迎送)하는 것도 민망한 일이다. 그가 만일 착실히 고쳐서 도모하게 되면 어찌 새로 임무를 맡는 서툰 솜씨보다 낫지 않겠는가? 지금은 잠시 논죄하지 말라. 수의(繡衣)의 서계에 나타난 제반(諸般) 조건은 다시 도신에게 자세히 조사하여 장문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이치중(李致中)이 아뢰기를, “안성군수(安城郡守) 조윤식(曹允植)은 교활한 군교(軍校)를 시켜 용사(用事)하므로 백성이 그 폐해를 받고, 윤음(綸音)도 늦게 반포하였으며, 환자를 함부로 받아들이고, 재결(災結)을 지나치게 깎아내린다고 하니, 해부(該府)로 하여금 나문하고 처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이도 또한 말아 하는 일이 소중하니 앞으로의 근만(勤慢)을 다시 보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윤음을 늦게 반포한 일도 그가 공연히 관직을 비워둔 것이 아니다. 지금 잠시 논죄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이치중이 아뢰기를, “인천부사 이형필(李衡弼), 남양부사(南陽府使) 이익진(李翼晉), 양천현감(陽川縣監) 심공엽(沈公燁), 교하군수(交河郡守) 정재운(丁載運), 풍덕부사(豐德府使) 이문혁(李文赫), 양주목사(楊州牧使) 한광근(韓光近), 죽산부사(竹山府使) 유인철(柳仁喆), 광주부윤(廣州府尹) 서미수(徐美修), 수원판관(水原判官) 정동협(鄭東協), 진위현감(振威縣監) 오재두(吳在斗), 용인현감(龍仁縣監) 서이수(徐理修), 가평군수(加平郡守) 유득공(柳得恭), 영평현령(永平縣令) 박규순(朴奎淳), 포천현감(抱川縣監) 조중진(趙重鎭), 여주목사(驪州牧使) 유강(柳綱), 이천부사(利川府使) 남인로(南仁老), 음죽현감(陰竹縣監) 윤명기(尹命基), 양지현감(陽智縣監) 홍옥호(洪旭浩) 등은, 혹은 치적을 낸다는 소문이 있기는 하나 특별히 우수한 치적은 없고, 혹은 잘못된 정치를 했다고 하나 또한 드러난 죄는 없습니다. 김포전군수(金浦前郡守) 유한준(柳漢雋)은 전에 이미 처벌을 받았으니 아울러 그냥 두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그리하라. 서미수(徐美修)가 자기의 집을 관아처럼 삼은 것은 병 때문에 관아를 비우고 싶지 않아서 그러하였겠지마는 실로 조심하였다면 어찌 이렇게야 했겠는가? 우선 중중추고하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이치중(李致中)이 아뢰기를, “고양군수(高陽郡守) 왕도상(王道常)에 대하여, 어사 정약용(丁若鏞)이 말하기를 ‘아전들은 싫어하지만 백성들은 그리워하여 행로(行路)에서 칭송한다.’ 고 하고, 홍낙유(洪樂游)는 말하기를 ‘호구를 뽑기를 사실대로 하여 표재(俵災)한 것에 원망이 없다.’ 고 하고, 채홍원(蔡弘遠)은 말하기를 ‘뜻과 소원을 다하여 조적(糶糴)하는 데에 칭찬하는 소문이 있다.’ 고 하여 3번이나 올라온 수의(繡衣)의 서계(書啓)에 순수한 칭찬만이 있습니다. 포상(褒賞)을 내리는 것이 합당하니 승서(陞敘)하는 은전을 시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그리하라 하였다. 병조판서 구상(具庠)이 아뢰기를, “평구찰방(平丘察訪) 지일빈(池日賓)은 역공(驛貢)을 정퇴(停退)하지 않아 조령(朝令)을 어겼다고 합니다. 사실을 조사하여 논죄하는 것이 마땅하니, 해부(該府)에서 나문하여 처치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그리하라고 답하였다.

행좌승지 심진현(沈晉賢)이 아뢰기를, “어사의 서계(書啓)는 스스로 격례가 있는 것인데 어사 정내백(鄭來百)의 서계는 종이 모양도 정상적인 격식과 다르고, 직명(職名)도 써넣지 않았으며, 또한 오자(誤字)가 많아 매우 온당치 못합니다. 추고(推考)하여 경책(警責)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그리하라고 답하였다.

좌의정 김이소(金履素)가 아뢰기를, “지금 교동(喬桐)의 표재적간사관(俵災摘奸史官) 조석중(曹錫中)의 서계를 보니 ‘교동전부사(喬桐前府使) 허근(許漧)은 떠난 후에 추하다는 비방과 함께 오히려 비웃고 손가락질 하는 일이 많으며, 아객(衙客:관아에 묵는 손)이 부자인 상놈[富漢] 집을 강압하여 장가갔으며, 총애를 받는 아전이 어상(魚商)을 마구 침해하여 선재(船材)를 판 5백 냥을 사사로운 용도로 썼으며, 빌린다고 일컫고 비장(裨將)과 향임(鄕任)의 직첩을 판 4백 냥을 썼으며, 둔세(屯稅)와 군전(軍錢)을 모두 없애버려 허다한 범죄를 저질렀으니 매우 통탄스럽습니다. 이와 같이 탐욕스럽고 법을 따르지 않는 무리들을 그냥 예사 일로 여겨 처리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해부를 시켜서 엄중히 조사하여 합당한 법률로 다스리게 하고, 그가 쓴 물자의 수량을 일일이 거두어들이도록 하여 회록(會錄)에 올릴 것은 회록하게 하고, 출급(出給)해 줄 것은 출급하게 하십시오. 교동에 지난 해 정퇴(停退)한 대동미(大同米) 3백여 석(石)을 그대로 정퇴해 달라고 한 일에 대하여서는 유정지공(惟正之供)에 관계되므로 하급 관청에서 융통할 수가 없는데 이미 경기도신의 장계로 인하여 방색(防塞)되었으니 이것은 그대로 두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그리하라. 허근의 일은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영변(寧邊)에서 돌아온 이후 다시 어찌 감히 일을 확장시키었다는 말인가? 적당한 사람이 모자라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낙점(落點)을 하였는데, 그도 사람의 마음을 가진 자라면 어찌 차마 지난해 교동에서 또 탐욕과 불법으로 죄를 저질렀다는 말인가? 이런 무리들을 만일 엄중히 처벌하지 않으면 어떻게 그들을 그치게 하겠는가? 우선 해부(該府)에게 잡아와서 엄중히 가두고, 구술(口述) 조사(招辭)를 받아 보고하도록 하라. 본읍(本邑:교동)의 작년 대동미에 대하여서는 맥추(麥秋)까지 정퇴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김이소가 아뢰기를, “주진(賙賑)에 대하여서는 도신(道臣)과 수신(帥臣)이 반드시 헤아리는 바가 있을 터이니, 한편으로 더 신칙하여 한 사람의 백성이라도 살 곳을 잃어버리는 한탄이 없게 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각영(各營)에 신·보미(身保米)를 대전(代錢)으로 남봉(濫捧)한 일에 대하여서는 3말을 돈으로 대납하는 것이 실제로 1냥 2전(錢)인데, 이 밖에 이른바 정채(情債)니 뒷돈[後錢]이니 하는 등의 명색으로 더 받지 않을 수 없는 것에 대하여 사관(史官)이 자세히 살피지 못한 듯합니다. 비록 강도(江都)의 유향미(留餉米)라도 대전(代錢)으로 남봉한 것도 색락(色落) 조항과 같이 하였을 듯합니다. 이르고저러고 말할 것 없이 다시 엄중히 신칙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하니, 임금이 그리하라 하였다.

김이소(金履素)가 아뢰기를, “지금 양주(楊州)와 광주(廣州)의 표결적간사관(俵結摘奸史官) 구득로(具得魯)의 서계를 보니 ‘북한성(北漢城) 안에 거주하는 백성들이 떠나고 흩어진다.’ 라고 한데 대하여, 돌부리가 험한 땅에서 먹고 살기를 바라는 바는 바로 성향(城餉)을 받아들일 때 약간 매매(賣買)할 수 있는 자료인데, 금년에는 본읍(本邑:양주)에서 받아들이게 되니 매매의 길이 이미 막혀버렸습니다. 사방(四方)으로 흩어져 가는 것은 그 형세로 보아 실로 그러하니 경기(京畿) 백성의 예에 따라 받은 환자를 분수(分數)로 나누어 정퇴하고, 각읍의 봉류(捧留) 모곡(耗穀) 조항도 해당(該廳)에게 적당히 헤아려 환자로 나누어 주어, 접제(接濟)하도록 하십시오. ‘양주전군수(楊州前郡守) 이충좌(李忠佐)의 일’에 대하여서는, 향곡(鄕曲)을 무단(武斷)한 것은 매우 놀랍고 통탄스럽습니다. 해부에게 나문(拿問)하고 처벌하게 하십시오. ‘사릉전참봉(思陵前參奉:단종비 정순왕후 능) 정운기(鄭運耆)가 나무를 베어 팔고, 군인을 뽑을 때 뇌물을 받았다.’ 고 하니, 비루하고 못된 버릇을 징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역시 해부에게 나문하게 한 뒤 죄를 정하게 하십시오. ‘광주

산성(廣州山城)의 사찰(寺刹)에 허다한 폐단을 끼쳤다는 일’에 대하여서는 듣기에 매우 놀랍습니다. 나라를 방어하는 중요한 땅에 총섭(總攝)을 설치하고, 군기(軍器)를 쌓아두며, 중들을 통할(統轄)하게 하는 법의(法意)가 얼마나 엄중한 것인데, 관부(官府)의 이서(吏胥)들이 이와 같이 침해하여 점점 조잔(凋殘)하게 만들었으니 이것이 어찌 말이 됩니까? 해도(該道)와 수어청(守禦廳)에 일절 금하도록 엄중히 신칙하여 소생시키고 개혁하는 실효가 있도록 하고, 이와 같이 신칙한 후에도 만일 이전 버릇을 그대로 따르는 일이 있거든 당해 부윤(府尹)을 각별히 엄하게 처벌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분원(分院)의 세미(稅米)에 대한 일’은 서준보(徐俊輔)의 서계 가운데 이미 논열(論列)하였으니 다시 품처(稟處)할 필요가 없고, ‘갑번(匣燔:왕실에 쓰는 특제 도자기)을 없앤 뒤에 장인(匠人)들이 이익을 잃었다고 한 일’에 대하여서는 당초 금한 원인은 대체로 사치스러운 생활을 버리게 하기 위한 성의(聖意)에서 나온 것이니 지금 다시 설치해서는 아니 됩니다. 또한 게다가 갑번이라는 명색(名色)이 나온 것은 수십 년에 불과한 것인데 갑번에 종사하던 전장인(前匠人)들도 그동안 여기에 힘입어 살았었는데 지금에 어찌 감히 이것으로 칭원(稱冤)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그대로 두십시오. ‘목물(木物)의 수세(收稅)에 대한 일’은 실로 사관(史官)의 말과 같다면 대소의 재물을 막론하고 분원(分院)에서 일일이 수세(收稅)하여 도자기를 굽는데 쓰게 한 법의(法意)가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이것들을 다 받아서 소모시키고, 근처의 사산(私山)까지도 모두 작벌(斫伐)한다고 하니 어찌 이러한 도리가 있습니까? 해원(該院)에 엄중히 신칙하여 못된 버릇을 전과 같이 못하도록 엄중히 신칙하고, 그런 뒤에도 이와 같은 폐단이 있게 되거든 당해 관원(官員)을 각별히 처벌[論勘]하되 원역(員役)은 형배(刑配)의 법을 적용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환자를 인족(隣族)에게 받아내는 일’에 대해서는, 이는 과연 평민(平民)들에게 있어서 뼈에 사무치는 폐막입니다. 만일 간혹 지적하여 징수할 곳이 없고, 누적된 포흠(逋欠)을 다 받아들이지 못한 것에 대하여 역시 똑같은 예로 방색(防塞)할 수는 없으나, 면임(面任)이 많은 수량을 받아들이게 하는데 이르러서는 촌민(村民)들에게 폐해를 끼치므로 각별히 엄히 신칙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는 도신에게 분부하여 각 고을에 엄중히 신칙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그리하라. 그 중 분원의 갑번 일에 대하여서는 애초에 금지를 설정한 조령(朝令)이 없는데 지금 금지를 설정했다고 말한 것은 무슨 까닭인지 해원(該院:당해 분원)에 물어보라. 만일 지난여름 연교(筵敎)에 갑번이 사치스럽다고 언급한데 대하여 금지를 설정했다고 인식한다면 이는 그러한 것이 아니다. 갑번이나 예번(例燔:보통 도자기)을 막론하고 다만 사치스러운 것은 금하게 한 것으로 공력(功力)을 덜게 하려고 한 것뿐이었다. 이 뜻으로 해원(該院)의 도제거(都提舉)에게 알리도록 하라. 그러나 본사(本司)에서 기왕에 상문(上聞)하였으니 마땅히 일정한 규칙을 만들어야 하겠다. 이다음부터는 기이하고 교묘한 모양을 만드는 일은 일절 엄금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김이소(金履素)가 아뢰기를, “지금 양주(楊州)와 광주(廣州)의 표결적간사관(倭結摘奸史官) 서준보(徐俊輔)의 서계를 보니 ‘양주의 호구를 뽑은 것은 간략한 것을 위주로 하다가 보니 각 면(面)의 대소와 재해(災害)의 천심(淺深)에 따라 정해놓고, 그 중에 가장 불쌍한 자를 뽑아 수량을 더하여 보태 넣게 하였다는 일’에 대하여, 2십여 면에 호구를 뽑을 적에 한두 군데 누락되는 일이 없다고는 못할 것입니다. 도신에게 분부하여 다시 실제대로 조사해 보아 더 뽑아 넣지 않아서는 안 될 자를 헤아려 더 뽑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각 능침(陵寢)을 수개(修改)할 때 양주의 회암(檜巖)과 고주내(古州內) 등 면(面)의 백성의 실정을 보면, 먼저 1냥 5전(錢)을 수전(收錢)하고 회감(會減)한 저치미(儲置米)로 환급

(還給)하는데 이른바 환급(還給)이라는 것이 중간에 녹아 없어져서 마치 백성들에게 댄 것 같이 하여 환급해 주지 않기도 하니, 이다음부터는 저치미를 취용(取用)하는데 있어서 먼저 돈을 거두는 폐단을 영구히 금하게 하여야 된다고 한 일’에 대하여, 막중한 능침의 역사(役事)에 있어서 기왕에 저치미로 회감한다고 하였으니, 민결(民結)을 거두어 쓰는 것도 이미 매우 구차스러운 것인데 필경에 가서 또 돌려 갚지도 않는다고 하는 것은 더욱 놀라운 일입니다. 도신에게 분부하여 돈을 거두는 한 가지 조항은 엄중하게 금하도록 신칙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능행(陵幸)할 때 나누어 장만하는 잡물(雜物)에 있어서 호구마다 돈을 거두는데, 도신이 순심(巡審)할 때도 이와 같은 폐해가 있다는 일’에 대하여 행행(幸行)할 때 나누어 장만하는 잡물은 비록 미세한 물건이라도 모두 저치미에서 회감하게 하였으니, 양주에서 민호(民戶)에 돈을 거두는 일은 매우 놀라운 일입니다. 도신이 순심할 때의 잘못된 전례도 더욱 엄금하지 않으면 아니 되겠습니다. 도신에게 분부하여 즉시 바로 잡도록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양주의 구음(龜音)과 독음(禿音) 두 면에 있는 마위전답(馬位田畓)은 도지(賭地)의 수량을 줄여주지 않아서 아직까지 수확을 하지 않았으니 병조에서 적당량을 헤아려 감해주고 이다음부터는 한결같이 연사(年事)에 따라 실제대로 집복(執卜:답사하여 구실을 매김)하도록 하여 달라고 한 일’에 대하여, 흥년든 해에 수세(收稅)하는데 있어서는 유정지공(惟正之貢)도 오히려 재량하여 감하는데, 마위(馬位)가 아무리 중하다고 하더라도 꼭 전과 같이 수세하려고 한다면 이는 실행할 수 없는 정치가 될 것입니다. 해조(該曹)에 분부하여 적당량을 감해 주도록 하여 즉시 수확하도록 하고, 이 이후로는 한결같이 연사에 따라 실제대로 집복하게 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평구(平丘)와 쌍수(雙水) 두 역(驛)의 병조마(兵曹馬)를 그대로 사용하는 세(貰)가 고질적 폐단이 되었으니 이 뒤로는 규칙대로 교체(交替)하도록 하고, 혹 부득이 그대로 사용할 때에는 셋돈을 적당히 헤아려 작성할 것이며, 쌍수의 역리(驛吏)는 말 2필(匹)을 세우기를 원하고 평구역의 첨사(僉使)는 쌍수에 1필만 세워서 평구와 나누어 담당하도록 하여 달라고 원한 일’에 대하여 병조의 말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과 두 역에서 말을 세워달라고 원하는 일이 혹은 있고 혹은 없는 것이 모두 폐단이 됩니다. 도신에게 분부하여 편리한 대로 시정하여 폐해가 되는 단서를 막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양주에서 도독을 그치게 하는 행정(行政)은 교졸(校卒)이 끼치는 폐해를 염려하여 기형(譏訶)을 하면 바로 철거하고, 도독을 잡으면 전문적으로 징치(懲治)하지 않으니 특별히 금칙(禁飭)을 더하여 달라고 한 일’에 대하여, 백성을 동요시키는 것도 금하여야 되지만 도독을 막는 행정도 한쪽을 폐기할 수 없습니다. 도신에게 분부하여 다시 더 신칙하되 교졸을 엄격히 단속하고, 주의를 기울여 형찰하며, 민간 마을을 침어(侵魚)하는 폐단에 대하여서도 살피도록 신칙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광주(廣州)의 분원(分院)에서 차지(次知)하는 6면(面)의 화전(火田) 세총(稅摠)을 지나치게 징수한다는 일’에 대하여, 이미 수세(收稅)한 곳은 비록 일일이 환급(還給)해주기는 어려우나 수세하지 않은 곳은 해원(該院:분원)에 분부하여 실제대로 감급(減給)해 주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광주에는 이포(吏逋:아전의 유용)가 가장 큰 고질적 폐단인데 창고 가운데 있는 것을 분석(分石:1석을 2석으로 만듦)하는 일이 더욱 통탄스럽고 놀라운 일이니 기한을 정하여 징봉(徵捧)하게 하고, 법에 따라 엄중히 다스릴 것이며, 이 뒤로는 말[斗]로 분급(分給)해 주어 분석하는 폐해를 막도록 하라는 일’에 대하여, 포리(逋吏)를 다스리는 법은 법전(法典)에

실려 있으니 도신에게 분부하여 엄히 신칙하여 징봉하게 하며 법에 따라 처벌하게 하고, 환자를 나누어 주는데 있어서 말로 하든지 석(石)으로 하든지, 전례가 오래되었거나 가까이 되었거나 폐단의 유무는 확실히 알기 어려우니 역시 도신에게 시키어 자세히 조사하게 하여 좋은 점을 따라 시정하게 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훈국(訓局)의 소속인 용진창(龍津倉)에 둔민(屯民)이 환자로 받아간 소두(小豆:팥)는 거기에 상당하는 곡식으로 준절(準折)하여 대봉(代捧)하도록 해 달라는 일’에 대하여서는, 원하는 대로 대봉하라고 기왕에 조령(朝令)이 있으니 해읍(該邑)에 분부하여 외읍(外邑)의 환자[還上] 예에 따라 민원(民願)대로 준봉(準捧)하게 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분원(分院)의 화전(火田)이 있는 퇴촌(退村) 등 6면(面)의 땔나무를 베는 값으로 가호(家戶)마다 쌀을 되는 두곡(斗斛)이 너무 큰데다가 곡(斛) 위에 높이 올려 쌓아서 1곡에 들어가는 양이 거의 1석(石)하고도 반(半)이 되며, 곤궁하고 쇠잔하여 도망간 집들은 그 이웃이나 친족에게 징수하게 되므로 원통함을 호소하는 일이 낭자(狼藉)하니, 매년 바칠 수 있는 실제 호수를 지방관에게 책(冊)으로 만들어 본사(本司:비변사)에 보고하도록 하고, 분원에서 받는 두곡도 본읍(本邑)의 예에 따르도록 시정해 달라고 한 일’에 대하여, 빈 집에는 이웃에 징수하는 것과 대곡(大斛:규정보다 큰 섬)으로 함부로 수봉하는 것은 모두 백성의 고통에 관계되는 것이니 도신에게 분부하여 해원(該院:분원)에 왕복 논의하며 빨리 시정하게 하고 그대로 정식(定式)을 만드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수어청(守禦廳)의 장관(將官)을 차태(差汰:차임과 파면)하는 일이 너무 잦아 폐해가 되는 것이 너무 많으니, 사강(射講:활쏘기 강습)에 전최(殿最)를 매겨 거하(居下)한 자를 곧바로 파면시키지 말고, 경읍(京邑)의 예에 따라 다시 연습을 하도록 하여 달라고 한 일’에 대하여, 사강에서 전최를 매겨 거하가 된 사람을 파직시키는 일은 바로 법전(法典)이니 중간에 폐해의 단서가 되는 것은 수신(帥臣)이 스스로 살피도록 신칙하고 이일은 그대로 두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광주(廣州)에 군보(軍保)를 허락하면서 황구(黃口)와 노인을 제외시키는 일에 한 사람도 탈(頃)로 인정받지 못하였으니 보장(保障)을 중히 여기는 도리에 있어서 도신이 정원을 줄여주어야 한다고 한 일’에 대하여, 어린 아이가 탈에 해당하는지 탈로 되지 않은 지에 대해 조정의 금령(禁令)이 지극히 엄중하지마는, 나라를 방어하는 중요한 곳에 군액(軍額)을 감하는 것은 가벼이 의논할 수 없으니 도신에게 분부하여 고을 수령들을 엄중히 신칙하여 탈에 해당되는 무리를 일일이 조사하여 대정(代定)함으로써 앞서와 같이 되지 말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경안(慶安)의 역참(驛站)은 큰길에서 조금 떨어져 있다고 하여 사신[使星]의 행차가 역참에 들어오지 않고 점사(店舍)로 들어가서는 본역(本驛)에게 출참(出站)하게 하니 폐단이 많아서 점호(店戶)가 점점 위축되므로, 크고 작은 사신들을 모두 의례히 본역에 들게 하여 출참하는 폐단을 영구히 금하게 하여달라는 일’에 대하여, 출참하는 것의 폐단은 우선 그만 두고라도 사신의 행차가 역참에 들지 않고 점사에 드는 것은 사체(事體)가 매우 온당치 못하니, 도신에게 분부하여 거듭 구제(舊制)를 밝히게 하고, 크고 작은 특별 사신들은 모두 역참에 들어 숙박하게 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송파참(松坡站)에서 수어청(守禦廳) 창고의 곡물(穀物)을 백성들에게 조적(糶糴)한 무리들이 간혹 수어청 창고의 장영곡(壯營穀)이라고 일컫는데, 연전에 양주(楊州)와 지평(砥平)의 둔곡(屯穀)을 가지고 급대(給代)해 주고 산성곡(山城穀)으로 획급(劃給)하여 수세(收稅)하였으니 처음부터 장영(壯營)에서 조금도 간섭을 하지 않기 때문에 창속(倉屬)들이 공공연

히 빙자하게 되고 감색(監色)들이 금지할 수 없게 되어 매우 놀라운 일이고, 두곡(斗斛)의 색락(色落)을 지나치게 더 많이 받아들인다는 말도 들었다는 일’에 대하여, 타영(他營)을 빙자하여 사실을 변환(變幻)시킨다든지 어리석은 백성을 속이고 협박하여 지나치게 징봉(徵捧)하는 것들은 그 소행을 찾아보면 매우 통탄스럽습니다. 곤장으로 쳐서 다스릴 뿐이 아니라 당해 신규감색(新舊監色) 모두 유사(攸司)에서 데려오게 하여 엄중히 형벌하여 정배(定配)하게 하고, 도신에게 분부하여 다시 환곡을 납부한 백성들이 있는 곳에 거듭 분명히 효유(曉諭)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니다.

‘송과창(松坡倉)의 환곡을 나누어서 가까운 곳의 큰 면(面)에 저치(儲置)하게 되어 있는데, 수백 리 밖에서 억지로 바꾸게 하니, 내년부터는 멀고 가까운 것을 논할 것 없이 평균하여 근처의 창고에 분급(分給)하였다가 그대로 본창(本倉:송과창)에 납부하게 하고, 먼 면은 산성(山城)에 납부하게 하며, 두곡(斗斛)의 색락(色落)은 한결같이 산성의 예에 따르도록 하여 달라고 한 일’에 대하여, 가까운 면을 버리고 먼 면에 주게 되면 조적(糶糴)이 왕복하는 즈음에 폐해가 반드시 많을 것이니 수신(帥臣)에게 분부하여 원근(遠近)을 헤아려 옮기는 일을 균배(均排)하도록 함으로써 이 폐해를 제거하게 하고, 색락의 두곡도 역시 사관(史官)의 말대로 시행하라고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그리하라고 답하였다. 김이소(金履素)가 아뢰기를, “지금 금천(衿川)·광주(廣州)·수원(水原)의 치도적간사관(治道摘奸史官) 정문시(鄭文始)의 서계를 보니 ‘금천에서 획급한 재결(災結)이 1백 51결(結)인데 본현(本縣)에서 재결을 보고한 것 가운데는 전래해 오는 재결이 90결 영이고, 그 가운데 18결은 이향(吏鄉)이 몰래 투식(偷食)한다는 일’에 대하여, 재결은 법의(法意)가 얼마나 엄중한 것인데 이향들이 투식하기를 이와 같이 낭자하게 하는데도 고을 수령이 어리석어 살피지 못한다면 실로 놀라운 일입니다. 지금 막 해현(該縣) 어사의 서계로 인하여 해조(該曹)에서 회계(回啓)로 논감(論勘)하였는데, 당해 현감(縣監)의 논죄(論罪) 한 가지 조항은 지금 잠시 그냥 두고, 당해 재결을 투식한 향색(鄉色) 등을 도신에게 분부하여 법에 따라 엄히 처벌한 뒤에 투식한 재결 18결은 도로 회록하게 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니다. ‘금천현에 유고(留庫)한 기장[稷]을 마음대로 더 나누어 주고 명색을 바꾸어 조(租)로 만들었다는 일’에 대하여, 환곡을 마음대로 더 나누어주고 조로 만든 것은 실로 매우 놀랍습니다. 도신을 시켜 자세히 조사하여 시정하게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금천현에서는 면세(免稅) 조항인 1백 32냥을 더 받고, 칙수미(勅需米)를 매년 5전씩 돈으로 만들어 나이(那移:유용(流用))하거나 대용(貸用)한 일’에 대하여, 면세 조항을 더 받는다거나 칙수미를 유용하는 것은 크게 법을 외면한 것이니, 모두 도신에게 엄격히 조사하여 다시 장문(狀聞)하게 한 뒤에 품처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당해 현감을 처음에는 논의하지 말게 하려 하였으나 사관(史官)의 서계 가운데 표결(倂結) 한 가지를 형벌로 논죄한 뒤에는 불찰(不察) 여부를 막론하고 국법에 있어서 문죄하지 않을 수 없다. 해부(該府)에게 나문(拿問)하여 사실을 조사하게 하여 처벌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今十一月十六日藥房，時原任大臣·閣臣承候入侍，吏·兵判·有司堂上·御史同爲入侍時，左議政金所啓，即見京畿三十六邑暗行御史書別單，則衿川等四邑御史柳師模書啓中，仁川·安山之間，堰畓之屬華城者，偏受枯傷，而土在之官不得任意給災事，此則分付華城留守，從實執卜爲宜，各邑告歉雖有差等，以今遑急，賑貸無論，歲前後抄賑事，付之道臣，審察民勢緩急，從便救恤爲宜，仁川地摠廳·屯監濫徵稅穀事，分付該廳，各別嚴禁，該屯監查問，該廳移法司照律，不飭之將臣·不察之道臣從重推考何如，上曰，依爲之，金曰，陽川等四邑御史蔡弘遠書啓

中，陽川白地徵稅三十結合施變通事，道臣所請災結，既許準施，則道內宜無白徵之弊，而繡啓既如此，或由於執災·俵災之際，不能精均之致，更令道臣詳查均俵爲宜，德浦鎮餉穀事，令帥臣毋論錢與米，使之從便捧上，俾除民弊，交河大同米太補給先下事，分付道臣，詳查委折，以爲釐正後狀聞爲宜，富平府使康命吉所論諸條無非不法，而災結偷食·免稅防納，儲置之移補，還穀之濫捧，軍保米之科外添徵許多罪狀，俱係難貫，爲先罷黜，令該府照法勘斷，其所偷食之數一一徵出，還給民間爲宜矣，上曰，依爲之，康命吉渠雖與士夫有異，處地何如，則有此犯科，萬萬痛駭，令該府嚴查得情，以爲照法重繩之地可也，金曰，通津前府使金履容拯米錢之料販，而定價勒徵，還米租之取剩，而小斗分給，勅需之犯用，船人之加徵，後坪白地之加稅，還穀簸揚之燒火，事未於聞，事事痛駭，似此貪婪不法之類，不可以已遞而不論，亦令該府拿問窮覈，施以當律，私用入己者，亦依富平例，推給民間爲宜矣，上曰，依爲之，如許貪虐之習不可但以無壯（狀）論，令該府各別嚴問，期於得情，以爲照法痛繩之地可也，金曰，楊根等兩邑御史鄭晚錫書啓中，加平還布，更於尤甚·之次中，次次抄上，分數停退事，令道臣更加詳察，從便舉行，楊根西終面所在尙方柴場收稅太過事，南終面分院稅米與本邑戶役事，分付各該衙門，與道伯相議，仍又關問該郡，俾無貽弊之端，楊·加兩邑砲保禁·御營保情錢多寡不均事，人情雜費自有節目定式，依節目施行，無或濫觴之意，分付各營門，楊根所在守·禦廳奴牙兵身米加捧一斗事，令該廳卽爲釐正，俾無偏苦之弊，楊根所納橡實·生葛等徵價事，年前畿內該邑，以此飭禁不啻申嚴，則飭墨未乾，又此現發極爲駭然，分付道臣各別嚴覈，一一推給後，當該守令摘發論罪何如，上曰，依爲之，橡實·生葛事，前此飭禁何如，且況爲所重，必欲厚給其價，民不受弊，則不但楊根爲然，關東某某邑·兩南兵·水營所管皆若此云，楊根則爲先令道臣查問狀聞，三道則自本司別關行會，爲弊委折，朝家已稔知，無敢欺隱，令東伯及兩道帥臣苟（首）實狀聞，今則橡木幾皆爲之，更勿以橡實·松子求請於該道事，關飭華留可也，金曰，坡州等四邑御史洪樂游書啓中，坡州火稅每結加捧百斗，而若或愆期，移錄春還，竝耗捧上事，大是法外，聞極驚駭，令道臣更加詳查各別嚴防，該邑監色，自監營嚴刑徵勸事，一體分付，奉日場監考，自耆老所差出，收稅太監依他場市例收稅事，無論外邑與京司，場市收稅非廟堂所可定式之事，令該道·該所，從便釐正，俾無濫稅之弊，都會所以長官輪回事，事係大變通，分付道臣論理狀聞後稟處，訓局·摠廳屯穀濫徵事，依仁川例分付，豐德禁·御軍所受還餉變通事，既受留餉，又受邑還，果爲難支之弊，分付道臣量宜減數，俾與他邑民均一之地爲宜，衍慶寺雜役弊廢事，係是陵寢守護之地，其所軫恤與他自別，分付道臣，可減者減，可禁者禁，一一釐正後狀聞，俾有實效何如，上曰，依爲之，場稅雖非廟堂之所關，係是民弊，何異牛喘，令道臣卽爲釐革，豐德餉弊·衍慶寺弊卽令道伯或查處或查實，竝以狀聞，使繡衣詢癘之舉，期有實效可也，金曰，積城等四邑御史丁若鏞書啓中，漣川前縣監金養直還穀擔分，而耗條則私用，未捧虛留，而文書則瞞報，甚至五十餘災結之偷食·七百名加留之取耗，俱係贓污，令道臣另加嚴覈，如法勘處，所謂加留之分徵吏輩者，使之查櫛釐正，其所賣食者，計數徵出，指徵無處者，分數停退，依繡啓施行，金養直令該府拿問，照法勘斷，不能摘發之道臣從重推考，朔寧前郡守康命吉罪狀，方以見任富平事，仰請嚴勘，此亦分付道臣，嚴查登聞後，添問日取招何如，上曰，依爲之，金養直當初差遣，非不知不能勘任，專爲酬命之所重，而伊後治績亦非不知，始於今年考績點下者，亦豈無深量而然乎，大抵知其不勘而差遣，卽朝廷之責，何可專責道伯，道伯勿推，然法不可屈，令該府拿囚嚴問以聞可也，金曰，永平等兩邑御史鄭履綏書啓中，抱川停代抄戶，邑報五百餘戶，而營門減削爲二百餘戶事，營門所減必有委折，令道臣更加詳查，如有不可不加抄者，量宜加抄，抱川校還一斗，以小米三升代納事，代捧玩（既）有特令，分付道臣，詳探民情，一依準折代捧，抱川守禦廳所在屯田混同疊徵於屯田外元帳付之地，今年收稅比常年加爲一錢四分事，非屯田疊

徵於元帳付，已是法外，荒年收稅之加倍於常稅亦係民弊，分付該道·該廳，卽速釐正，該屯監亦令照法勘處何如，上曰，依爲之，金曰，陽智等兩邑御史鄭東觀書啓中，勅需米租已捧者外，依他還上例，分數停退，或以錢代捧，待明秋還作本色事，繡衣雖以民情爲言，勅需設置法意至嚴，一有闕狹，後弊難言，此則置之，陽智縣守·摠兩營屯穀加升之弊事，既云襲謬，分付各該營，嚴治屯校，各別禁斷爲宜，龍仁縣糧餉屯濫稅事，既付本邑收稅上納，則濫徵之弊，責在本邑，嚴飭本邑，從實收捧之意，分付道臣，軍保米代錢之一錢二錢加徵事，竝雜費一斗價之爲四錢乃是定式，則科外加斂，極爲驚駭，分付道臣，嚴查還徵，分給保民，仍又曉諭民間，俾無加納之弊何如，上曰，依爲之，龍仁保錢加捧事，誠有是弊，如許守令，小則營門決杖，大則拿罷，焉敢道乎，其委折令道臣查實狀聞可也，金曰，果川等三邑御史李肇源書啓中，果川·龍仁·振威還米以太代捧事，蠲恤條件中，最初頒下者，營邑自當量宜詳悉舉行，此則置之何如，上曰，依爲之，右議政李曰，御史鄭履綏書啓，還穀石代云云，似指單代，而準折之法昭載法典，繡衣以按法之任，有此法外之論，恐非小失，罷職何如，上曰，他大臣之意何如，領府事蔡曰，繡衣體重，雖施問備，其罪名不輕矣，判府事金曰，臣意亦然矣，金曰，雖出於目下民願，而還穀法意甚重，右相請罷，恐不爲過矣，上曰，右相之言亦然，而封書中，既有條陳，已施外加施之事，繡啓，設有生疎之失，容有可恕，領府之言好矣，爲先從重推考可也，吏曹判書李致中曰，衿川縣監洪景厚災政，專委鄉所，抄戶亦多不均，治道役價或有中間消融，將帖絡續，實爲貧民之弊爲辭，爲先罷職，令該府拿問處之何如，上曰，爲治則不至未瑩云，些少錯誤非不知之，此則（則此）時此邑難付生手，姑爲勿論，以待來頭勤慢處置之地，而更或汎忽，又何願（願）藉，當施加倍之律，以此嚴飭可也，致中曰，安山郡守趙鎮宅邑務多滯，民情阻隔，一郡之致怨此爲大頭榴（腦），以災政不足，軫恤稅納不免白地，至以安山之民，不如無倖，怨聲流播，隣境代悶爲辭，爲先罷職，令該府拿問處之何如，上曰，曠官非渠之罪，此亦勿論，以責來效可也，致中曰，富平府使康命吉·通津前府使金履容·漣川前縣監金養直·朔寧前郡守康命吉不法之罪，大臣既已論列，已有嚴處之命，臣曹不必更爲回啓，坡州前牧使趙宅鎮抄戶循私，官需取怨，合施譴罷爲辭，長湍府使李鎮翼吏奸莫察，民訟輒滯，抄戶則專委吏鄉，倭災則未免乾沒，衰老之政，昏憤之治，終難責之以災歲守牧之任爲辭，兩邑守令竝罷黜，令該府拿處何如，上曰，依爲之，別無更問之事，拿處則勿論，而趙宅鎮之瑣姻招謗，尤爲可駭，施以不敘之典可也，致中曰，陽城縣監權洵政既柔善，不能束濕，修改斂錢，大取民怨，倭災·抄戶，怨咨載路，恩綸未頒，一境之民，莫知停代之特恩，全不事事觸處憤憤，合施譴罷爲辭，爲先罷職，令該府拿處何如，上曰，依爲之，致中曰，果川縣監金履裕治務終欠振勸，而病或妨事，捧糴不無奸弊，移轉代錢不能察飭爲辭，爲先罷職，令該府拿處何如，上曰，此亦與衿川無異，難付生手，今姑勿論，更責來效可也，致中曰，楊根郡守尹醇柔善太過，奸細舞弄，倭災之際，該吏用手爲辭，爲先罷黜，令該府拿處何如，上曰，柔善雖難責之於剗理，此時邑倖迎送可悶，渠若着欲改圖，豈不愈於新叨生手乎，今姑勿論，繡啓諸般條件，更令道臣詳查狀聞可也，致中曰，安城郡守曹允植以猾校用私，民受其害，綸音晚頒，還上濫捧，執災過削爲辭，令該府拿問處之何如，上曰，此亦有所幹之所重，更觀來頭勤慢爲可，至於綸音之晚頒亦非渠公然曠官，今姑勿論可也，致中曰，仁川府使李衡弼·南陽府使李翼晉·陽川縣監沈公燁·交河郡守丁載運·豐德府使李文赫·楊州牧使韓光近·竹山府使柳仁喆·廣州府尹徐美修·**水原判官**鄭東協·振威縣監吳在斗·龍仁縣監徐理修·加平郡守柳得恭·永平縣令朴奎淳·抱川縣監趙重鎮·驪州牧使柳炯·利川府使南寅老·陰竹縣監尹命基·陽智縣監洪旭浩等或有治聲，別無優異之績，或有疵政，而亦無顯著之罪，金浦前郡守俞漢雋，則前已被勘，竝置之何如，上曰，依爲之，徐美修之以家爲官，不欲瘞曠，苟能小心，寧或若是，爲先從重推考可也，致中曰，高陽郡守王道常，御史丁若鏞以爲，吏憚民懷，

行路稱誦，洪樂游以爲，抄戶從實，俵災無怨，蔡弘遠以爲，志欲殫竭，糴有譽聲，三度繡啓俱是純褒，合有褒賞之舉，施以陞敘之典何如，上曰，依爲之，兵曹判書具庠曰，平丘察訪池日賓以驛貢不停，有違朝令爲言矣，事當查實論罪，令該府拿問處之何如，上曰，依爲之，行左承旨沈晉賢曰，御史書啓，自有格例，而御史鄭來百書啓，紙樣既異常格，職名亦不書填，且多誤字，殊涉未安，推考警責何如，上曰，依爲之，左議政金曰，卽見喬桐俵災摘奸史官曹錫中書啓，則喬桐前府使許沂去後醜謗，尙多嗤點，衙客之勒娶富漢，寵吏之橫侵魚商，船材發賣五百兩之歸於私用，裨鄉賣帖四百兩之稱以貸用，屯稅·軍錢之盡爲消灑許多罪犯，萬萬痛惡，以此貪婪不法之類，不可尋常處之，令該府各別嚴覈，施以當律，其所入己之數一一徵捧，可以會錄者會錄，可以出給者出給，喬桐去年停退大同米三百餘石仍停事，事係惟面（正）之供，有難自下闊狹，已因畿狀而防塞，此則置之何如，上曰，依爲之，許沂事可謂罔赦，寧邊之後，更何敢張，蓋臨民而因其乏人，不得不點下，則渠亦有人心，寧忍於昨年喬桐，爲貪饕不法之罪乎，此等之類若不嚴處，何以戢他，爲先令該府拿來嚴囚，捧口招以聞，本邑昨大同事，限麥秋停退可也，金曰，賑賑事，道臣·帥臣必有料量，第加申飭，俾無一民失所之歎爲宜，各營身保米代錢濫捧事，三斗代納果爲一兩二錢，而此外所謂情債·後錢等名色不可不添捧，史官恐未審察，而雖江都留餉米代錢之濫捧，亦似爲色落條，而無論如此如彼，更爲嚴飭爲好矣，上曰，依爲之，金曰，卽見楊州·廣州俵結摘奸史官具得魯書啓，則北漢城內居民流散事，石角之地所仰哺者，卽城餉收捧時如干賣買之資，而今年則捧留本邑，此路已塞，散而之四，其勢誠然，依畿民例，所受還上分數停退，各邑捧留耗條，令該廳量宜分還，以爲接濟之地，楊州前郡守李忠佐事，武斷鄉曲萬萬駭痛，令該府拿問勘律，思陵前參奉鄭運者斫木發賣，簽軍受賂，鄙屑之習，不可無懲，亦令該府拿問定罪，廣州山城寺刹許多弊瘼事，聞極可駭，保障重地，設置摠攝，積峙軍器，統轄緇髡，法意何等嚴重，則官府吏胥之如是侵漁，漸至凋殘，是豈成說乎，嚴飭該道及守禦廳，一切禁斷，俾有蘇革之實效，而如是申飭之後，若有復循前習之舉，則該府尹各別嚴勘爲宜，分院稅米事，徐俊輔所啓中，已爲論列，不必更爲稟處，而匣燔罷後，匠人失利事，當初禁防蓋出於祛奢儉（侈）之聖意，則今不可更設，且匣燔名色之出，不過數三十年，則匣燔之前匠人亦爲聊賴，今何敢以此稱冤乎，此則置之，木物收稅事，誠如史官之言，無論大小材木，自分院一一收稅，以爲燔造所用法意卽然，此則歸於消灑，而近處私山一併斫伐，寧有如許道理，嚴飭該院，俾無敢如前襲謬，而此後若有似此弊端，則該官員各別論勘，員役施以刑配之典爲宜，還上隣族徵事，果爲平民切骨之瘼，若或指徵無處，積逋未了者，亦不可一例防塞，而至於面任之多數受還，貽弊村民，不可不各別嚴飭，此則分付道臣，使之嚴飭各邑何如，上曰，依爲之，其中分院匣燔事，初無設禁之朝令，則今稱設禁云者，抑何委折，問于該院，若以去夏筵教之話及甲燔之侈靡，認爲設禁，則此則不然，無論甲燔·例燔，但當禁於其侈靡，省其功力而已，以此意令該院都提舉知悉，而本事既上聞之後，宜有一定之式，此後奇巧之制一切嚴禁可也，金曰，卽見楊州·廣州俵結摘奸史官徐俊輔書啓，則楊州抄戶以簡爲主，隨其面之大小，災之淺深，抄其最可矜者，加數添入事，二十餘面抄戶之際，難保其一二無漏，分付道臣，更加查實，不得不加抄者，量宜加抄爲宜，各陵寢修改時，楊州檜巖·古州內等面民情，先收錢一兩五錢，以會減儲置米還給，而所謂還給從中消灑，便同民貸，且不還給，此後以儲置米取用，先爲斂錢之弊，永爲禁斷事，莫重陵役玩（既）以儲置會減，則斂用民結，已極苟且，畢竟又不還報，事尤可駭，分付道臣，斂錢一款嚴加禁飭爲宜，陵行時分辦雜物，逐戶斂錢，道臣巡審亦有此弊事，幸行時分辦雜物，雖微細之物，皆以儲置米會減，則楊州之斂錢民戶固極可駭，道臣巡審時謬例，尤不可不嚴禁，分付道臣卽爲矯革爲宜，楊州龜音·禿音兩面所在馬位田畝，因賭·賭·地之不爲減數，尙未收穫，自兵曹量宜減給，此後則一從年事，從實執卜事，荒年收稅，惟正之貢尙且裁減，馬位雖

重，必欲依前收稅，實是行不得之政，分付該曹量宜減給，俾即收穫，此後則一從年事，從實執卜爲宜，平丘·雙水兩驛兵曹馬仍把之貫，轉成痼弊，此後如或交贊（替），或有不得已仍把之時，則貫價量宜酌定，雙水驛吏願立爲二匹，而平丘驛僉使願立雙水一匹，使平丘分當事，兵曹馬之仍把，兩驛願立之或有或無，俱爲弊端，分付道臣從便釐正，俾杜爲弊之端爲宜，楊州戢盜之政，爲慮校卒之弊，譏訶則便即撤去，捉賊則專不懲治，別加禁飭事，擾民之禁，戢盜之政不可偏廢，分付道臣，更加申飭，嚴束校卒，着意調察，閭里侵擾之弊亦爲察飭爲宜，廣州分院·次知六面火田稅摠過徵事，已收稅處，雖難一一還給，未收稅處，分付該院，從實減給爲宜，廣州吏逋最爲痼弊，倉中分石尤極痛駭，刻期徵捧照法嚴繩，此後以斗分給，以防分石之弊事，逋吏之律載在法典，分付道臣，嚴飭徵捧，如律勘處，至於分還之以斗·以石，例之久近，弊之有無，有難的知，亦令道臣詳查從長，釐正爲宜，訓局屬龍津倉屯民受還小豆，以相當穀準折代捧事，從願代捧，既有朝令，分付該邑，依外邑還上例，從民願準捧爲宜，分院火田所在退村等六面刈柴價，家戶米斗斛過大，斛上高峻，一斛所納幾至一石又半，窮殘逃躲之戶，徵隣徵族，呼冤狼藉，每歲當捧實戶，令地方官修成冊，報于分院，所捧斗斛，亦依本邑例釐正事，虛戶徵隣，大斛濫捧，俱係民隱，分付道臣，往復該院，即速釐正，仍爲定式爲宜，守禦廳將官差汰頻數，爲弊甚多，殿最射講，居不者，勿即輒汰，依京邑例，更令肄習事，殿最射講居不人之汰任，乃是法典，中間爲弊之端，帥臣自當察飭，此則置之爲宜，廣州許軍保黃口老除之類，無一得頃，其在重保障之道，（道脫？）臣有減額事，黃口之當頃未頃，朝禁至嚴，保障重地，軍額減數不可輕議，分付道臣，嚴飭邑倅，當頃之類，一一查頃代定，俾勿如前爲宜，慶安驛站，以其稍迂大路，使星之行，不入驛站，而入店舍，使本驛出站，爲弊多端，店戶漸縮，大小使星，竝令依例直入本驛，出站之弊永爲禁斷事，出站之爲弊，姑無論，使星之行，不入驛而入店，事體誠極未安，分付道臣，申明舊制，大小別星皆令入接於驛站爲宜，松坡站守廳倉穀物糴民人輩，或稱守廳倉壯營穀，年前楊州·砥平屯穀給代，以山城穀割給收稅，則初無毫干涉於壯營，而倉屬之公然憑藉，監色之不能禁止，萬萬可駭，斗斛色落過濫之說，亦有所及聞事，憑藉他營，變幻事實，欺脅愚民，過濫徵捧，究厥所爲，萬萬痛駭，不可棍治而止，當該新舊監色竝令收司持來，嚴刑定配，分付道臣，更爲申明曉諭於納糴民人等處爲宜，松坡倉分還，置近地大面，而勒換於數而（十）里外，自明年無論遠近，平均分給近倉處，仍納本倉，遠面則納于山城，斗斛色落一依山城例爲之事，捨近面而授遠面，糴糴往來之際，爲弊必多，分付帥臣，量其遠近，均排移分，俾除此弊，色落斗斛亦依史官言施行事，分付何如，上曰，依爲之，金曰，即見衿川·廣州·水原治道摘奸史官鄭文始書啓，則衿川所劃災爲一百五十一結，而本縣災報中，流來災爲九十結零，而其中十八結，吏鄉潛自偷食事，災結法意何等嚴重，而吏鄉之偷食若是狼藉，邑倅之矇不致察，誠爲可駭，而纔因該縣御史書啓，自該曹回啓論勘，該縣監論罪一款，今姑置之，當該災結偷食鄉色等，分付道臣，照法嚴繩，偷食災結十八結，使之還錄爲宜，衿川縣留庫稷之擅自加分，換名作租事，還穀之擅自加分作租，誠極駭然，令道臣詳查釐正爲宜，衿川縣免稅條一百三十二兩加捧，勅需米每年五錢式執錢那移貸用事，免稅條之加捧，勅需米之那移，大是法外，竝令道臣嚴加查究，更爲狀聞後，稟處何如，上曰，該縣監初則欲爲勿論，史官書啓中，依結一事，論列之後，無論不察與否，其在國法，不可勿問，令該府拿問查實，以爲勘處之地可也。

<미변사등록 182책, 정조 18년 1794년 11월 18일(음)>

사회/윤리 · 풍속

水原留守가 救恤 상황과 누락자의 명단을 보고하니 추가 조사를 전교하다

수원유수 조심태(趙心泰)의 장계에 병들며 늙고 곤궁하며 외로운 이와 아약자(兒弱者) 33인

에게 각각 미곡(米穀)·장류(醬類)·감곽(甘藷:미역)을 주고 연초에 도와주어야 하는데 누락된 노인 3인의 성명·나이·거주지를 후록(後錄)하여 치계(馳啓)한 일에 대하여 전교하기를,

“이와 같은 장계를 어찌 눈에 댈 것이라! 다시 내려 보내라. 도와주어야 하는데 누락된 노인이 전에는 없다고 했던 것이 지금에 3인이 된 것에 있어서는 또 다시 조사하게 되면 2배, 5배가 될 것이고 3번 조사, 4번 조사하게 되면 또 몇 십 인이 될지 알지 못하겠다. 다시 수신(守臣)에게 사실을 조사하도록 하여 십 수 인이 되기 전에는 장문하지 말게 하라. 십 수 인으로 고정하여 한계를 할 필요가 없는 자는 성심으로 찾을 것이다. 그 땅의 넓이에 반드시 그 수에 밀들지 않을 것이다. 수신이 더 등문하려 하지 않으면 사관(史官)·선전관을 면(面)마다 나누어 파견하여 수신과 통판(通判)의 애쓰는 마음을 나누게 하라. 이 뜻을 묘당에게 엄히 신칙하게 하되 조금 먼 면은 잠시 그대로 두라. 추후 보고한 3인은 부저(府底)에 거주하는 사람이 있으니, 당초에 거행함의 소홀한 것은 이것에서 더욱 그 죄를 도피하지 못하는 것이다. 더욱 어찌 놀랍지 않은가! 이 뜻을 일체 엄히 신칙하라.” 하였다.

以水原留守趙心泰狀啓，癯老·窮獨·兒弱三十三人，各給米醬藷，歲首應資遺漏老人三人姓名年歲居住後錄馳啓事，傳曰，似此狀啓，豈可掛眼，還下送，至於應資老人之前云無乎者，今爲三人，又令更查，當爲倍蓰，三查四查，又不知爲幾十人，更令守臣查實，未滿十數之前，勿爲狀聞，未必以十數硬定爲限者，誠心求覓，以其幅圓，必不下此數，守臣如不欲加登聞，分遣史官·宣傳官於每面，俾分守臣與通判之勞心，此意令廟堂嚴飭，稍遠之面姑舍是，追報三人，有府底居住人，當初舉行之疎忽，卽此益無所逃其罪，尤豈不駭然乎，此意一體嚴飭。

<비변사등록 185책, 정조 21년 1797년 01월 12일(음)>

사회/윤리·풍속

京畿監司 李冕膺가 救恤에 태만하다고 지적하고 장계를 화성유수에게 보게 하다

○ 경기 감사 이면응(李冕膺)의 장계에 파주 목사(坡州牧使) 김희(金熾), 고양 군수(高陽郡守) 왕도상(王道常)은 몸이 면임(面任)이 되어서 경내의 촌리에서 찾아 일일이 두루 지급한 뒤에 와서 보고할 뜻으로 엄히 신칙한 연유를 치계한 일에 대하여 전교하기를, “부모를 사랑하는 이는 남을 무시하지 않는다고 성경(聖經)에 밝게 기재되어 있다. 윤음(綸音)에 인용한 것이 같은가, 다른가! 이들 장계를 어찌 눈에 댈 것이라! 다시 보낼 것이다. 이것은 도백이 만(慢)자에 연좌된 것이다. 이 안에 현판(懸板)은 오늘 인쇄해 올리는데 화성(華城)에서 인쇄해 올리는 것이 오히려 이보다 늦다. 도백 및 광류(廣留:광주 유수)의 이 장계를 다시 내려 보낼 것이지만 화류(華留:화성유수)에게 보도록 하라.” 하였다.

以京畿監司李冕膺狀啓，坡州牧使金熾，高陽郡守王道常，身作面任，搜覓境內村里，一一周給後來告之意，嚴加申飭緣由馳啓事，傳曰，愛親者，不敢慢於人，昭載聖經，引用綸音，同乎，否乎，此等狀啓，何可掛眼，還送，而此道伯坐在慢字，這裏者懸板，今日猶印進，而華印進，尙後於此，道伯及廣留此狀啓，雖是還下送者，使華留見之。

<비변사등록 185책, 정조 21년 1797년 01월 13일(음)>

사회/윤리·풍속

水原留守 徐有隣의 狀啓에 따라 災結의 加劃과 新還의 代捧은 일체 시행할 것을 청하다

○ 비변사에서 아뢰기를, “수원유수 서유린(徐有隣)의 재실 장계를 보니, ‘본부의 금년

재탈(災顛)이 합 3백 39결 33부 9속이니, 원획의 재결 20결 외에 3백 19결 33부 9속을 더 획급하도록 특별히 허락해 주십시오. 논농사는 흉년이 들고 밭작물은 조금 나은 해에 미조(米租) 1만여 섬의 신환을 아울러 본색으로 납부하도록 요구하면 결코 마련하기 어려우므로 재해가 가장 심한 곳은 4분의 1에 한해, 나머지는 5분의 1을 상당한 정곡(正穀)으로 준절하여 대봉했다가 내년 가을에 도로 본색으로 바꾸게 하고, 추노와 징채를 내년 가을까지 못하게 하도록 아울러 묘당에서 품지하여 분부하게 하소서.’ 하였습니다. 수원부의 구재(舊災) 명색은 작년에 특별 전교로 인해 탈을 주었으니 이번에 청한 바는 당년의 재해를 말할 터이고, 답총과 비교해서 지나치지 않은 듯하여 원획 이외에 3백 19결 33부 9속을 특별히 더 획급하고, 미조 신환을 다른 곡물로 대봉하는 일은 수원부의 민정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으니 역시 청한 분수에 따라 상당한 곡물로 준절하여 대봉했다가 내년에 도로 본색으로 바꾸게 하며, 추노와 징채를 막는 문제는 모두 그대로 시행하도록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답하였다.

司啓曰，卽見水原留守徐有隣，災實狀啓，則以爲本府今年災顛，合爲三百三十九結三十三負九束，元劃災二十結外，三百十九結三十三負九束特許加劃，當此畚農失稔，田穀差勝之歲，萬餘石米租新還，竝以本色責納，則決致難辦，被災最甚處，限四分一，其餘限五分一相當正穀，準折代捧，待明秋還作本色，推奴徵債，限明秋防塞事，竝請令廟堂稟旨分付矣，本府舊災名色，昨年因特教頗給，則今此所請，卽是當年災，而較之畚摠，似不爲過，元劃外三百十九結三十三負九束，特爲加劃，米租新還代捧事，本府民情，不可不念，亦爲依所請之分數，以相當穀準折代捧，待明年還作本色，推奴徵債防塞事，一體依施之意，分付，何如，答曰，允。

<비변사등록 186책, 정조 21년 1797년 10월 04일(음)>

사회/윤리 · 풍속

湖西 句管堂上 趙鎮寬이 흉년의 실상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은 湖西 道臣의 처벌을 청하다
이번 9월 21일 도승지가 입시하고 화성유수(華城留守) · 선혜청 당상(宣惠廳堂上) · 비변사 당상(備邊司堂上) · 유사당상(有司堂上) · 호서 구관당상(湖西句管堂上) · 호서 봉명승지(湖西奉命承旨)가 입시하였을 때에 호서 구관당상 조진관(趙鎭寬)이 아뢰기를, “호서의 흉년은 예사로운 일이 아니어서 밤이 늦도록 오직 한 생각으로 이처럼 걱정하고 애쓰시는 만큼, 이번 봉명 승선이 돌아올 적에 감사가 이미 함께 상의를 하였으면 마땅히 사정을 자세히 진술하고 그 편의를 조목조목 진렬(陳列)하여야 함에도 덧붙여 아뢴 여러 조항들이 어물어물함을 면치 못하여 성상의 염려를 끼치게 하였으니, 임금의 걱정애 신하가 노고를 하여야 하는 의리에 어긋나서 사체(事體)로 볼 때 참으로 너무 미안합니다. 해당 도신을 중중추고(從重推考)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상이 그리하라고 하였다.

今九月二十一日都承旨入侍，華城留守 · 宣惠 廳堂上 · 備局堂上 · 有司堂上 · 湖西句管堂上 · 湖西奉 命承旨入侍時，湖西句管堂上趙鎭寬所啓，湖 西告歉，非比尋常，宵旰一念，若是憂勤，今番奉命 承宣之還也，道臣既與之相議，則所當詳陳事情，條 列便宜，而附奏諸條，未免模糊，致勤聖慮，有乖臣 勞之義，事體所在，誠極未安，該道臣從重推考，何如，上曰，依爲之。

<비변사등록 188책, 정조 22년 1798년 09월 22일(음)>

사회/윤리 · 풍속

水原留守 徐有隣이 災實 分等 狀啓에서 청한 내용들의 처리에 관해 아뢰다

비변사에서 아뢰기를, “지금 수원유수(水原留守) 서유린(徐有隣)의 재실 분등장계를 본즉,

본 고을에 금년에 아직 모를 이양(移秧)하지 못한 논이 4백 84결(結) 15부(負)가 되고, 늦게 이양해 조세를 부과하지 못할 논이, 4백 83결 2부가 되고, 대파(代播)하여 조세를 건감(蠲減)할 것이 밭이 8결 5부가 되고, 논이 14결 42부가 되어, 금년의 재결이 도합 9백 89결 64부로, 호조(戶曹)에서 획하(劃下)한 2백결과 비교할 때 7백 89결 64부가 모자라서 특별히 더 획하하고 정리곡(整理穀)으로는 환곡(還穀)을 수봉(收捧)할 적에 일체 본색(本色)으로 책납(責納)하기는 그 형편이 참으로 어려우므로, 대곡(代穀)의 수량을 나누는 일은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이제 한 고을의 48면(面)을 3등으로 구획(區劃)한다면 우심(尤甚)의 곳이 14면이 되고, 지차(之次)의 곳이 17면이 되고, 초실(稍實)의 곳이 17면이 되는데, 우심의 면은 3분의 1까지를, 지차의 면은 4분의 1까지를, 초실의 면은 5분의 1까지를 그에 상당한 곡물로 준절(準折)하여 대봉(代捧)하도록 특별히 허락하여 주어 명년 가을에 가서 본색으로 환작(換作)하되, 이를테면 3등의 면 내에서도 우심의 리(里), 호(戶)를 자세히 구별한 다음, 차례로 돌아가며 건감할 생각이고 추노(推奴)와 징채(徵債)를 명년 가을까지 방금(防禁)하는 것 역시 사의(事宜)에 맞다고 하며, 모두 함께 묘당(廟堂)에게 품지(稟旨)하여 분부하도록 하라고 장청(狀請)하였습니다.

이번에 더 진청(陳請)한 재결이 원래의 총수로 따져 볼 때 비록 조금 벗어나는 듯하기는 하나, 전하여 들은 것과 참작하여 보면 그리 많이 벗어나는 것이 아니고 또 백성에게 고통을 주기보다는 차리 손실을 보는 의리를 생각하여서라도 더욱이 본 고을은 더 배려를 하여 진청한 대로 정리곡(整理穀)을 특별히 더 획하하여야 하며, 대봉(代捧)도 함부로 논의하기는 어려우나, 이처럼 밭은 풍년이고 논은 흉년이 해일수록 융통성을 두어서 준절하여 대봉하도록 하는 것이 편의에 맞을 듯하며, 수량을 나누는 것과 리, 호별로 돌아가며 건감하자는 논의 역시 정당한 듯하므로, 추노와 징채를 방금하는 일과 함께 그대로 시행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답하였다.

司啓曰，卽見水原留守徐有隣災實分等狀啓，則以爲本府今年未移，爲四百八十四結十五負，晚移之不能當種稅者，爲四百八十三結二負，代播蠲稅，田爲八結五負，畝爲十四結四十二負，合今災，爲九百八十九結六十四負，較量地部劃下二百結，不足爲七百八十九結六十四負，特許加劃整理穀，捧糴時，一切以本色責納，其勢誠難，分數代穀，在所不已，今以一府四十八面，區劃三等，則尤甚爲十四面，之次爲十七面，稍實爲十七面，尤甚面限三分一，之次面限四分一，稍實面限五分之一，特許相當穀準折代捧，待明秋還作本色，若其三等面內尤甚里戶，細加區別，次第遞減計料，推奴徵債，限明秋防塞，亦合事宜，竝請令廟堂稟旨分付矣，今此加請之災，揆諸元摠，雖似稍過，參以傳聞，不至太濫，且念寧失之義，尤當倍軫於本府，特爲依所請，加劃整理穀，代捧有難輕議，而以此田登畝歉之歲，闊狹準捧，恐合便宜，其所分數，與里戶遞減之論，亦似稱停，竝與推奴徵債防塞事，依施何如，答曰，允。

<비변사등록 188책, 정조 22년 1798년 09월 29일(음)>

사회/윤리 · 풍속

水原留守 徐有隣의 災實分等狀啓에 대해 回啓하다

○ 비변사에서 아뢰기를, “수원유수(水原留守) 서유린(徐有隣)의 재실(災實)에 대한 장계를 보면 본부의 색사(穡事:농사)를 통틀어 논하면 넉넉히 잡아 중간쯤 되는 풍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해에 다만 사목재(事目災)만으로 알맞게 배정해야 합니다. 가뭄으로 모를 내지 못한 것도 있고 보를 막은 논이 바닷물에 녹아 거두어들인 것이 없는 경우도 있으며 또 가장 늦게 모를 내어 목[穗]이 나오지 않은 부류 등 합하여 계산하면 1백 40결이나 됩니

다. 그런데 지부(地部)에서 획급한 20결 외에 1백 20결을 특별히 더 획급하도록 묘당에서 뜻을 여쭙어 분부하기를 청하였습니다. 본부는 물가 들에 전토가 많습니다. 늦게 낸 경우가 좀 많음은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사세입니다. 내려오는 구탈(舊頃)은 전에도 비록 감면하였으나 금년에 재결(災結)을 더 청하는 것도 지나치다고 할 수 없으니 소청에 의하여 시행해서 일일이 고르게 배분토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그리하라고 답하였다.

司啓曰，卽見水原留守徐有隣災實狀啓，則以爲，本府穡事，摠以論之，則優可謂之中熟，如此之歲，只當以事目災，量宜分俵，而秧苗被旱枯損，不得移插者有之，堰畝因鹹消融，不得刈取者有之，又有最晚移未發穗之類，合而計之則恰爲一百四十結，地部劃下二十結外，一百二十結特許加劃事，請令廟堂稟旨分付矣，本府地多沿野，晚移之稍夥，事勢固然，流來舊頃，前雖蠲減，今災加請，亦不爲過，依所請施行，以爲一一均俵之地何如，答曰，允。

<비변사등록 189책, 정조 23년 1799년 10월 12일(음)>

사회/윤리 · 풍속

災結加劃을 요청한 水原留守 徐有隣의 災實狀啓에 대해 그대로 허락할 것을 청하다

○ 비변사에서 아뢰기를, “수원유수(水原留守) 서유린(徐有隣)의 재실에 관한 장계를 보니, 본부(本府)의 농사가 흉년은 면했다고 죽히 말할 만하지만 모가 부족해서 모내기를 하지 못한 경우와 소금기로 인한 손상, 침수(沈水)·복사(覆沙) 등의 재해를 입은 수가 2백 95결로, 호조에서 떼어준 20결과 비교하면 2백75결이 부족하니 특별히 더 떼어주도록 묘당에서 품지하여 분부하게 해달라고 청하였습니다. 올해는 일찍 가물어 모내기에 손해가 많았고, 바닷가의 늦은 장마 역시 재해로 보고되었으니, 다행히 농사가 흉년은 면했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탈이 조금 많은 것은 궤이하지 않습니다. 더구나 또 본부(本府)의 사체는 다른 곳과는 자별하니 이런 때 돌보고 도와주는 일에 더욱 더 유의하여야 하므로 청한 대로 시행하여 일일이 나누어 주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답하였다.

司啓曰，卽見水原留守徐有隣災實狀啓，則以爲本府穡事，足可謂之免歉，而秧不足未移及鹹損·水沈·覆沙等災，爲二百九十五結，較諸地部劃下二十結，不足爲二百七十五結，特許加劃事，請令廟堂稟旨分付矣．今年旱旱，秧苗多損，濱海晚霖，亦既告災，則雖幸穡事之免歉，無怪諸頃之稍多，且況本府事體，與他自別，此時顧恤，尤當加意，依所請施行，以爲一分俵之地，何如．答曰，允．

<비변사등록 191책, 순조즉위년 1800년 10월 07일(음)>

사회/윤리 · 풍속

水原留守의 災實 狀啓에 대해 救恤하고 특별히 더 劃給해 줄 것을 청하다

○ 비변사에서 아뢰기를, “수원유수 한용구(韓用龜)의 재실(災實)에 대한 장계를 보니, 이처럼 고르게 풍년이 든 해에는 별달리 말할 만한 재상(災傷)이 없을 듯하나 본부는 본래 척로(斥鹵:소금기가 많아 곡물을 재배할 수 없는 땅)한 땅이 많아서 소금기로 손실을 입고 모내기를 하지 못한 것이 적지 않으므로, 지부(地部:호조)에서 획급한 10결(結) 이외에 부족재(不足災) 1백 87결 67부를 특별히 더 획급하도록 묘당에서 품지하여 분부하기를 청한다. 하였습니다. 금년 농사가 비록 요행히 풍년이 들었다고는 하지만 바닷가는 소금기의 손실로 넓은 들에 모내기를 하지 못하여 재상의 총수가 많은 것은 그러한 것이 궤이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본부에서 돌보고 구휼하는 도리는 다른 곳에 비해 더욱 자별하니, 부족재 1백 87결 67부를 청한 바에 의해 특별히 더 획급하도록 하여 일일이 균등하게 나누어 주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희한다고 답하였다.

司啓曰, 卽見水原留守韓用龜災實狀啓, 則以爲似此均豐之歲, 別無災傷之可言, 而本府素多斥鹵, 鹹損未移, 不爲不多, 地部劃下十結外, 不足災一百八十七結六十七負, 特許加劃事, 請令廟堂稟旨分付矣, 今年穡事雖幸登稔, 濱海之鹹損, 廣野之未移, 災摠之多, 無怪其然, 而本府顧恤之道, 視他尤爲自別, 不足災一百八十七結六十七負, 依所請特許加劃, 俾爲一一均俵之地何如, 答曰, 允.

<비변사등록 192책, 순조 1년 1801년 10월 02일(음)>

사회/윤리 · 풍속

水原留守 鄭大容의 狀請대로 給災를 加劃해 주도록 청하다

○ 비변사에서 아뢰기를, “지금 수원유수(水原留守) 정대용(鄭大容)의 재실 장계(災實狀啓)를 보니 이르기를, ‘금년 본부의 농사는 한 지경을 총론하면 곧 구메농사[穴農]인데, 이양하지 못했거나 소금기로 손상되었거나 물에 잠기는 등 급재(給災)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도합 1백 98결 63부 7속입니다. 호조에서 획하(劃下)한 20결 이외에 부족재(不足災)가 1백 78결 63부 7속이니, 특별히 더 획급하여 고루 분표(分俵: 흉년의 해를 입은 논밭의 구실을 덜어 주던 일)하도록 묘당에 품지하여 분부하게 하소서.’ 하였습니다. 본부의 결총(結摠)이 본래 적지 않고 금년의 농작물 피해 또한 많다고 하는데 지금 이처럼 더 획급해줄 것을 청한 수효는 그다지 지나치지 않으므로, 특별히 장계의 말대로 시행하게 하고 분표할 때에는 각별히 신척해서 실제 혜택이 아래에까지 미치게 하도록 일체로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희한다고 답하였다.

司啓曰, 卽見水原留守鄭大容災實狀啓, 則以爲, 今年本府穡事, 摠論一境, 便是穴農, 而未移鹹損水沉等不得不給災者, 合爲一百九十八結六十三負七束, 地部劃下二十結外, 不足災一百七十八結六十三負七束, 特許加劃, 以爲均俵事, 請令廟堂稟旨分付矣, 本府結摠, 本自不少, 今年災傷, 亦云夥多, 而今此所請加劃之數, 不甚過濫, 特依狀辭施行, 分俵之際, 各別申飭, 俾實惠下究之意, 一體分付何如, 答曰, 允.

<비변사등록 193책, 순조 2년 1802년 10월 05일(음)>

사회/윤리 · 풍속

水原府가 흉년이니 災結의 수효를 더 劃給해 주고 還餉을 代捧하게 할 것 등을 청하다

비변사의 계사에, “수원유수(水原留守) 조운대(曹允大)의 재실장계(災實狀啓) 장계를 보니 이르기를, ‘금년 본부(本府)의 농사는 통틀어서 논하면 비록 큰 흉년은 아니지만 검세(儉歲: 흉년)를 면치 못하였고, 물에 잠겨 모[秧]가 부족하여 옮기지 못하였거나 늦게 옮겨서 전연 낫을 들고 갈 것이 없는 것이 합하여 4백 결 76부(負) 5속(束)이 되니 지부(地部: 호조)에서 획급한 1백 결(結) 외에 부족한 재(災) 3백 결 76부 5속을 특별히 더 획급하고, 재해가 우심(尤甚)한 곳은 3분의 1, 지차(之次)는 4분의 1, 초실(稍實)은 5분의 1에 한하여 상당하는 정곡(正穀: 벼)으로 준절(準浙)하여 대봉(代捧)하였다가 내년 가을에 본색(本色)으로 다시 만들며, 추노(推奴)와 징채(徵債)는 내년 가을까지 방색(防塞)하도록 아울러 묘당에서 품지하여 분부하게 하소서’ 하였습니다. 본부는 땅이 넓은 개펄이어서 홍수와 가뭄으로 매년 쉽게 재해를 입는데 금년 농사도 고르게 잘 익지 못하였고 청한 재결(災結)이 지나

치지 않으니 특별히 수에 준해서 획급하여 하나하나 고르게 나눠주게 하며 환향(還餉)을 흥년에는 대봉하는 것이 참으로 가난한 백성의 힘을 펴게 해주는 방도가 되는데 분수(分數)하여 작량한 것도 매우 정확하니 추노와 징채를 방색하는 일과 함께 일체로 허시(許施)하되, 장계 가운데에 환향 두 글자는 거론하지 않고 얼버무려 상당(相當)하는 곡식으로 대봉을 청한 것은 주어문자(奏御文字: 임금께 올리는 글)의 사체(事體)에 매우 소홀한 데가 있으니 당해 유수 조운대를 주고(推考)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택하다고 답하였다.

司啓辭，卽見水原留守曹允大災實狀啓，則以爲，今年本府穡事，統以論之，雖非大歉，不免儉歲，而水沈秧不足，未移，晚移，全不掛鎌，合爲四百七十六負五束，地部劃下一百結外，不足災三百結七十六負五束，特許加劃，被災尤甚處，限三分一，之次限四分一，稍實限五分之一，以相當正穀準折代捧，待明秋還作本邑，推奴徵債，限明秋防塞事，竝請令廟堂稟旨分付矣，本府地是廣斥，水旱每易爲災，而今年穡事，亦未均熟，所請災結，不至過濫，特爲準數劃下，一一均俵，還餉之儉歲代捧，固爲窮民紓力之道，分數酌量，亦頗稱停，與推奴徵債防塞事，一體許施，狀啓中不舉還餉二字，而臣請相當穀代捧，奏御文字，事體殊涉疎忽，該留守曹允大，推考何如，答曰，允.

<비변사등록 194책, 순조 3년 1803년 09월 26일(음)>

사회/윤리 · 풍속

京畿道の 災實 分等은 狀啓대로 시행하고 災害가 극심한 喬桐의 구휼 등을 청하다

비변사의 계사에, “경기감사 서영보(徐榮輔)의 재실 분등 장계를 보니 교동(喬桐) 등 9읍(邑)을 우심(尤甚)에, 부평(富平) 등 11읍을 지차(之次)에, 여주(驪州) 등 15읍진(邑鎭)을 초실(稍實)에 두고, 이어 사목재(事目災) 1천 1백 80결(結) 외에 부족재(不足災) 4천 70결 81부(負) 3속(束)을 특별히 더 획급하고 후록한 여러 조항을 모두 묘당에서 품지하여 분부하게 하기를 청하고 북한산성(北漢山城)의 평창(平倉)에서 금년에 각읍(各邑)과 각역(各驛)에서 이전한 향곡(餉穀)을 전례대로 실어 바치는 것은 민정(民情)이 매우 괴로워하고 있으나 사목(事目)이 매우 엄해서 감히 순례(循例)로 진청(陳請)하지는 못하지만 본 고을에 봉류(捧留)하는 것은 이례(已例)가 많이 있으므로 사실을 들어 등문(登聞)하지 않을 수 없다 하고 교동 등읍(等邑)의 의지가 없는 절급(切急)한 백성을 가려서 진휼에 안배하는 것은 그만둘 수 없는 사정이 있으니 인구(人口)와 곡식의 수량을 추후하여 등문할 요량이라 하였습니다. 그 하나는 교동은 재해를 입은 것이 극심하여 민정이 황급(惶汲)하니 도내(道內)에서 곡부(穀簿)에 조금 여유가 있는 곳의 유고(留庫) 중에서 모(牟)·조(租)·태(太) 3천 2백 석을 형편대로 구획(區劃)하여 얼음이 얼기 전에 들여보낼 계획이니 본부(本府)의 구환(舊還)은 하나같이 내년 가을까지 한하여 정퇴(停退)하고, 신환향(新還餉)은 우심과 지차면리(面里)를 막론하고 절반(折半)을 정퇴하고 절반은 대봉(代捧: 다른 곡식으로 대신 받음)하는 일입니다. 그 하나는 우심읍(尤甚邑)의 신포(身布)와 환향(還餉)은 받을 길이 없으니 우심읍의 우심 면리는 절반에 한하고 우심읍의 지차 면리와 지차읍(之次邑)의 의우심 면리는 3분의 1을, 우심읍의 초실 면리와 지차읍의 지차 면리는 4분의 1을 정퇴하는 일입니다. 그 하나는 신환향을 본색으로 책납(責納)하는 것은 사세상 할 수 없으니 우심읍은 절반, 지차읍은 3분의 1, 초실읍의 우심 면리는 4분의 1을 대신 받는 일입니다. 그 하나는 도내의 구환은 삼등읍(三等邑: 우심·지차·초실의 세 등분)을 막론하고 내년 가을까지 정퇴하는 일입니다. 그 하나는 북한산성 평창의 향곡 외에 임진(臨津)·장산(長山)·대흥(大興)에서 이전한 쌀을 본소(本所)에 실어다 바치는 것도 재해를 입은 해의 괴로운 폐막(弊瘼)이니 삼등

읍을 막론하고 아울러 본 고을에 봉류하였다가 내년 가을에 본소에 다시 납부하고, 모조(耗條)는 근례대로 매 1석에 5냥씩 대전(代錢)으로 실어다 주되, 만일 본소 부근의 백성이 자원(自願)하여 가까운 곳을 취하여서 본소에 직접 내고자 하는 자는 시행하게 하는 일입니다. 그 하나는 금위(禁衛)·어영(御營) 양영(兩營)의 강도(江都)의 유향(留餉) 미태(米太)를 받는 군인(軍人)은 모두 멀고 가까운 각 고을에 있기 때문에 운반해 바치는 데에 폐단이 있으니 근례대로 돈으로 대납하되 쌀은 매 1석에 5냥, 콩은 매 1석에 2냥으로 절가(折價)하여 실어다 바치는 일입니다. 그 하나는 본도(本道) 각 고을의 강도미(江都米) 모조(耗條)는 유향미(留餉米)의 예대로 매 1석에 5냥씩 돈으로 대봉하는 일입니다. 그 하나는 장단(長湍)·풍덕(豐德)·파주(坡州)·교하(交河) 등 읍의 금년 전·대동(田大同)으로 바칠 대미(大米:쌀)을 근례대로 소미(小米:좁쌀)로 대봉하는 일입니다. 그 하나는 수어(守禦)·총융(摠戎) 양영의 수첩군관(守摠軍官)·장초아병(壯抄牙兵)·별파진(別破陣)의 신미(身米)를 근례대로 매 1두(斗)에 4전씩 대전(代錢)을 허락하고, 이 밖에 아무 아문(衙門)과 아무 군문(軍門)에서 전부터 쌀로 납부하던 것도 일체로 시행하는 일입니다. 그 하나는 우심읍은 배소(配所)를 정하지 않는 일입니다. 그 하나는 추노(推奴)와 징채(徵債)는 내년 가을까지 방색(防塞)하는 일입니다. 기내(畿內)의 농사가 가장 처음으로 실패한 것은 오로지 가뭄으로 말미암아서이지만 바람·서리·벌레·우박의 농사에 피해를 주는 모든 부류가 거의 갖추어지지 않은 것이 없었는데 우연(右沿)의 흉황이 가장 심하고, 한 도(道)의 재해 형편은 제로(諸路)에서 으뜸입니다. 분등(分等)은 장계에서 청한 대로 시행하고 재결(災結)을 더 청한 것은 이례(已例)를 참조하면 과람하지는 않은 듯 하니 이것도 청한 대로 획급하여 고르게 나눠주어 아래에까지 미치는 실효(實效)가 있게 해야 하겠습니다. 교동에 있어서는 재해 입은 흑심함을 전해들은 것과 참조하면 참으로 가엾고 불쌍한데 접제(接濟)하는 방법을 오로지 구휼해만 의지하기는 어려움이 있지만 진무(鎭撫)하는 방도는 또한 돌보아 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다만 생각컨대 계축년(癸丑年:정조17, 1793)의 특은(特恩)을 아래에서 감히 예로 원인(援引)할 수는 없지만 눈앞의 민정은 불에 타고 물에 빠진 것과 다름이 없으니 구제해주는 것을 조금도 늦출 수 없습니다. 구휼할 밀천 3천 2백 석을 이미 본도에서 구획하였고, 구환(舊還)도 한 도를 통틀어서 이미 정봉(停捧)하기로 하였으니 지금은 논할 것이 없겠으나 대동(大同)은 내년 가을까지 정퇴하고 신환향은 하나같이 아울러 절반은 정퇴하고 절반은 대봉하며 군보(軍保)는 절반을 탕감하고 절반은 정퇴하여 삼가 계축년의 이례대로 시행하고 여러 가지 응봉조(應捧條)도 모두 정퇴나 급대(給代)로 돌리면 비단 영용(營用)이 모자랄 뿐만 아니라 장사(將士)의 지방(支放)도 나올 곳이 없겠기에 영수(營需)·관수(官需)·아록(衙祿) 등의 쌀은 다른 고을의 대동(大同)으로 형편대로 이미 구획하였으니 장리(將吏:군관의 통칭)와 수군(水軍)의 지방(支放) 수용(需用)은 기읍(畿邑)의 상진곡(常賑穀)과 균역청의 돈으로 역시 계축년에 예대로 수에 준하여 획급하되, 그 가운데 계축년의 호남(湖南) 우수영(右水營)의 휴번전(休番錢)으로 구획한 것은 현재 해곤(該關)의 유저(留儲)가 극히 구차하니 화성(華城) 둔세전(屯稅錢)을 마침 수봉(收捧)한 것이 있으므로 이것으로 우선 급대하고, 정퇴한 군전(軍錢)을 수봉하기를 기다려 균역청의 돈과 아울러 즉시 갚아주게 해야 하겠습니다. 이 밖에 제읍역(諸邑驛)에서 북한산성 평창의 향곡(餉穀)을 본읍에 봉류하는 일은 사목이 지엄하여 참으로 쉽게 논의하기 어려우나 이와 같은 흉년에는 혹 이미 행한 전례가 있으니 특별히 허시(許施)하고 우심·지차읍의 신포(身布)와 환향(還餉)을 분수(分數)하여 정퇴하고 분수하여 대봉하며, 초실읍의 우심 면리의 신환향을 4분의 1을 대신 받는 일과 그 나머지의 후록(後錄)한 여러 조항은 이미 이례(已體)가 많고,

또한 황정(荒政: 흉년에 백성을 구하는 정치)에 관계되니 아울러서 청한 대로 허시하되 환향
을 정회하고 대봉하는 것은 법의가 매우 중한데 비록 민정이 황급하여 이렇게 융통하는 일
이 있지만 준절하여 대봉하였다가 그 이듬 해에 다시 본색으로 만드는 일을 마침내 법대로
준행하지 못한다면 곡부가 어지러워지는 폐단은 본도가 가장 심하게 될 것이니 도신에게 엄
히 신칙하여, 준절하고 환작(換作)하는 일을 하나같이 정식(定式)대로 하여 혹시라도 어기
는 일이 없게 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희한다고 답하였다.

司啓辭，卽見京畿監司徐榮輔災實分等狀 啓，則喬桐等九邑，置之尤甚，富平等十一邑，置之
次，驪州等十五邑鎮，置之稍實，仍以爲事目災一千一百八十結外，不足災四千七十結八十一負
三束，特許加劃，後錄諸條，竝請令廟堂稟旨分付，北漢 平倉今年，各邑各驛移轉餉穀之如例輸
納，民情切 苦，而事日至嚴，雖不敢循例陳請，捧留本邑，多有已 例，亦不敢不據實登聞，喬
桐等邑無依切急之民，精 抄賑排，在所不已，人口穀數，退（追?）于登聞計料爲辭矣，其一，
喬桐被災孔酷，民情遑汲，以道內穀簿稍裕處，留庫半·租·太三千二百石，從便區劃，趁未凍
前入送 計料，本府舊還，一竝限明秋停退，新還餉，無論尤甚 之次面里，折半停退，折半代捧
事也，其一，尤甚邑身 布還餉，徵捧無路，尤甚邑尤甚面里，限折半，尤甚邑 之次面里，及之
次邑尤甚面里，三分一，尤甚邑稍實 面里，及之次邑之次面里，四分一停退事也，其一，新 還
餉之本邑責納，其勢末由，尤甚邑折半，之次邑三 分一，稍實邑尤甚面里，四分一，代捧事也，
其一，道內 舊還，無論三等邑，限明秋停退事也，其一，北漢平倉 餉穀外，臨津·長山·大興
移轉米之輸納本所，亦是災 年苦瘼，無論三等邑，竝捧留本邑，待明秋還納本所，耗條，依近例
每石以五兩代錢輸納，而如有本所附 近之民，自願取近直納本所者，亦許施行事也，其一，禁御
兩營江都留餉米太所受，軍人，皆在遠近各邑，運納有弊，依近例代錢，而米每石五兩，太每石
二兩，折定輸納事也，其一，本道各邑江都米耗條，依留餉 米例，每石五兩以錢代捧事也，其
一，長湍·豐德·坡州· 交河等邑今年田大同所納大米，依近例以小米代 捧事也，其一，守摠
兩營守堞軍官·壯抄牙兵·別破陣 等身米，依近例每斗四錢式許令代錢，此外某衙門 某軍門自
前納米者，一體施行事也，其一，尤甚邑勿 定配所事也，其一，推奴徵債限明秋防塞事也，畿內
年事之最初失手，專由於旱乾，而風霜蟲雹之凡屬 痒稼者，殆無不備，右沿之被歉爲甚，而一道
災形，甲 於諸路，分等依狀請施行，加請災結，參互已例，似不 至過濫，亦爲依請許劃，使之
分排均俵，俾有下究之 實效，至於喬桐一府被災之酷，參以傳聞，誠甚矜悶，接濟之策，有難專
恃於調賑，而鎮安之方，蓋亦莫要 於蠲恤，第念癸丑特恩，雖非自下之所敢援例，而 目下民情，
無異焚溺，其所拯拯，不容少緩，賑資三千 二百石，既自本道已爲區劃，舊還，通一道亦已停
捧，今無可論，而大同，限明秋停退，新還餉，一竝折半停 退，折半代捧，軍保，折半蕩減，折
半停退，謹依癸丑已 例施行，而諸般應捧，皆歸停代，則非但營用匱乏，將 士支放，亦無出處，
營需·官需·衙祿等米，以他邑大同 從便已劃，將吏水軍支放之需，以畿邑常賑穀及均 廳錢，
亦依癸丑例，準數劃給，而其中癸丑之以湖南 右水營休番錢區劃者，目今該闕留儲，極爲苟艱，
華 城屯稅錢，適有收捧者，以此姑先給代，待停退軍錢 收捧，竝與均廳錢，卽爲還報，外此諸
邑驛，北漢平倉餉 穀捧留本邑事，事日至嚴，固難容易議到，而似此歉 年，或有已行之規，特
爲許施，尤甚之次邑身布還餉，分數停退，分數代捧，稍實邑尤甚面里新還餉，四分 一代捧事，
及其餘後錄諸條，既多已例，亦關荒政，竝 依請許施，而還餉停代，法意甚重，雖緣民情之遑
汲，有此活狹之舉，而代捧準折，翌年還作，終不能如法 遵行，穀簿淆亂之弊，本道爲甚，嚴飭
道臣，準折與還 作，一依定式，毋或違越之地何如，答曰，允。

<비변사등록 194책, 순조 3년 1803년 09월27일(음)>

사회/윤리 · 풍속

水原留守 金文淳의 狀請대로 災實分等を 시행 할 것을 청하다

○ 비변사에서 아뢰기를, “수원유수(水原留守) 김문순(金文淳)의 재실장계(災實狀啓)를 보니, 본부(本府)의 금년 농사는 대체로 논하면 재해는 극비(極備:너무 지나침)의 탄식이 없고 농사에는 고루 풍년이 든 기쁨이 있으나, 간혹 모래에 덮이고 모를 내지 못하거나 아주 목허버린 재해가 있으니 사목재(事目災) 40결(結) 외에 부족한 재결(災結) 1백 7결 37부(負) 3속(束)을 특별히 더 획급(劃給)하도록 묘당에서 품지하여 분부하게 하기를 청하였습니 다. 본부는 넓은 갯벌이 많은 곳이어서 쉽게 가뭄과 수재를 당하곤 하는데, 금년에는 비 록 고르게 풍년이 들었다 하지만 또한 소소한 재상(災傷)이 어찌 없겠습니까? 더 획급하기 를 청한 1백 7결 영(零)은 과람(過濫)한 데에는 이르지 않았으니 장계에서 청한 대로 허시 하여 하나하나 고루 나눠주어 실제 혜택이 아래에까지 미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 니, 윤허한다고 답하였다.

司啓曰, 卽見水原留守金文淳災實狀啓, 則以爲, 本府今年穡事, 統而論之, 災無極備之歎, 農有均登之喜, 而或有沙覆·未移·全棄之災, 事目災四十結外, 不足災一百七結三十七負三束, 特許加劃事, 請令廟堂稟旨分付矣, 本府以廣斥之地, 易致水旱之爲災, 則今年雖曰均豐, 亦豈無小小災傷乎, 所請加劃之一百七結零, 不至過濫, 依狀請施行, 使之一一均俵, 俾實惠下究何如, 答曰, 允.

<비변사등록 195책, 순조 4년 1804년 10월 05일(음)>

사회/윤리 · 풍속

水原留守 金文淳의 狀請대로 부족한 災結을 準劃할 것을 청하다

○ 비변사에서 아뢰기를, “수원유수(水原留守) 김문순(金文淳)의 재실장계(災實狀啓)를 보 니, 본부(本府)의 금년 농사는 비록 전에 없는 풍년이라 하지만, 물에 잠기고서 내를 이루 고 바다가 넘치고 소금의 해를 입는 등의 재결(災結)의 합계가 1백 11결(結) 70부(負) 3속 (束)이니, 사목재(事目災) 15결 외에 부족한 재결 96결 70부 3속을 특별히 더 획급(劃給)하 도록 묘당에서 품지하여 분부하게 하기를 청하였습니 다. 기내(畿內)의 농사 형편이 가는 곳 마다 풍년이어서 애초에 재해를 논할 것이 없었으나, 본부는 바다와 접한 땅으로서 지방(地 方)이 조금 넓으니 약간의 재해를 입는 것은 꼭 없다고 단언하기 어렵고, 백성을 돌보는 정 사(政事)에 있어서 굳이 지난할 것이 없으니, 더 청한 재결 96결 영을 장계에서 청한 대로 특별히 다 주어 고르게 나눠주어 덕의(德意)가 아래에까지 미치게 하라고 수신(守臣)에게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답하였다.

司啓曰, 卽見水原留守金文淳災實狀啓, 則以爲本府今年穡事, 雖謂之無前大有, 而水沈成川及海溢鹹損等災, 合爲一百一十一結七十負三束, 事目災十五結外, 不足災九十六結七十負三束, 特許加劃事, 請令廟堂, 稟旨分付矣, 畿內農形, 在在登熟, 初無災形之可論, 而本府以濱海之地, 地方稍廣, 若而被損, 難保必無, 其在恤民之政, 不必靳持, 加請災九十六結零, 依狀請特許準劃, 使之另加均俵, 俾德意下究事, 分付守臣, 何如, 答曰, 允.

<비변사등록 196책, 순조 5년 1805년 09월 20일(음)>

사회/윤리 · 풍속

水原의 각 향의 災實 중 不足災 1百 31結 6束을 狀請대로 加劃해 줄 것을 청하다

비변사에서 아뢰기를, “수원유수 조진관(趙鎭寬)의 재실(災實) 장계를 보니, 아뢰기를

‘본부 금년 농사를 통틀어 논하자면 끝내 큰 풍년에는 못 미칩니다. 각 항목의 재해 명목은 도합 1백 46결 6속인데, 사목재 15결 외에 부족재 1백 31결 6속을 특별히 더 획급하도록 묘당에서 품지하여 분부하게 하소서.’ 하였습니다. 비록 고르게 풍년이 든 해라 하더라도 약간의 재탈(災顛)은 면하기 어려운 형세입니다. 1백여 결을 더 청한 것이 과다한 것은 아니며, 본부의 민정을 더욱 불쌍히 여겨야 하니, 청한 대로 획급하여 한결같이 균등하게 나누어주어 근거 없이 징수하는 폐단이 없도록 하라고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답하였다.

司啓曰，卽見水原留守趙鎮寬災實狀啓，則以爲，本府今年穡事，統以論之，終遜大登，各項災名，合爲一百四十六結六束，事目災十五結外，不足災一百三十一結六束，特許加劃事，請令廟堂稟旨分付矣，雖是均登之歲，如干災顛，勢所難免，百餘結加請，未爲過多，本府民情，尤宜加恤，依所請許劃，使之逐一均俵，期無白徵之弊事，分付何如，答曰，允．

<비변사등록 197책, 순조 6년 1806년 10월 14일(음)>

사회/윤리 · 풍속

水原留守 洪明浩의 狀啓대로 溺死한 사람에게는 身布와 還布를 蕩滅해 주라고 전교하다

○ 인물이 익사했다고 보고한 **수원유수** 홍명호(洪明浩)의 장계에 대해 전교하기를, “다섯 명이 익사하고 7살 난 어린아이가 물에 떠내려가 죽었다고 하니 모두 놀랍고 불쌍하며, 전답이 무너져 뭉개지고 집이 내려앉았으니 더더욱 가련하다. 생전의 신역과 환자를 모두 탕감하고, 별다른 홀전을 더하여 역시 도와주라. 선전관에게 일체 적간해 오게 하라.” 하였다.

以水原留守洪明浩狀啓，人物滄死事，傳曰，五名人物之滄歿，七歲稚兒之漂死，俱極驚惻，田畝之潰缺，民戶之頽壓，尤爲惻然，生前身還，竝爲蕩滅，別恤加典，亦爲助給，令宣傳官一體摘奸以來．

<비변사등록 198책, 순조 7년 1807년 03월 01일(음)>

사회/윤리 · 풍속

水原留守 洪明浩의 災實分等狀啓에 대해 回啓하다

○ 비변사에서 아뢰기를, “**수원유수** 홍명호(洪明浩)의 재실장계를 보니, ‘**수원부**의 올해 농사가 잘된 곳은 최상으로 잘 되고 못된 곳은 치우치게 못되어 재해로 집계된 것을 통틀어 계산하면 해일 및 소금기의 손실 그리고 침수와 복사(覆沙) 등 재해 입은 수가 모두 4백 44결 27부 5속입니다. 사목에 책정된 30결 외에 4백 14결 27부 5속을 특별히 더 획급하도록 하고 해일이 발생한 20개 면의 농사를 버린 부류에게 순차로 분급한 환곡을 준봉(準奉)할 길이 전혀 없는데다, 그 중 재해민에게 별달리 분급한 각 곡물 4백 23섬 영(零)은 전혀 함께 독촉할 형편이 아니므로 특별히 전수를 정퇴하도록 하며 면·리에 순차로 분급한 원곡을, 우심 호는 3분의 1에 한해, 지차 호는 4분의 1을, 초실 호는 5분의 1을 정퇴했다가 내년 가을에 모두 준적(準糶)하도록 묘당에서 품지하여 분부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였습니다. 수원부의 여러 면은 거의 절반이 바닷가에 있어 올봄 해일로 인한 피해는 호서의 연해읍과 다름이 없는데 농사가 안된 곳은 유난히 안 될 수밖에 없는 형세입니다. 게다가 수원부의 사체는 자별하기 때문에 전후로 청한 재결이 혹 조금 과하더라도 수를 줄인 적이 없으니 사목 외에 4백 14결 27부 5속을 특별히 그대로 획급해서 조정에서 특별히 돌본다는 뜻을 보여야겠습니다. 별달리 분급한 곡물은 바로 재해민의 급한 처지를 구하는 재원인 만큼

정수하기 어렵다고 해서 괴이할 것은 없으므로 역시 장계에서 청한 대로 정퇴해야겠습니다. 그런데 수신(守臣)의 장계에 잘된 곳은 최상으로 잘 되었다고 했으니 지차호와 초실호의 환곡을 정퇴하자고 청한 것은 미처 헤아리지 못한 듯하므로 우심호에 3분의 1만 내년 가을까지 정퇴하도록 하라고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희한다고 답하였다.

司啓曰，卽見水原留守洪明浩災實狀啓則以爲，本府今年穡事，優處最優，遜處偏遜，通計執災，則海溢・鹹損・水沈・覆沙等災，合爲四百四十四結二十七負五束，事目災三十結外，四百十四結二十七負五束，特許加劃，海溢二十面失農之類，巡分還穀，萬無準捧之路，而其中被災民別分各穀，四百二十三石零，奈無竝督之勢，特令全數停退，面里巡分元還，尤甚戶限三分一，之次戶四分一，稍實戶五分之一，停退，待明秋一竝準糴事，竝請令廟堂稟旨分付矣，本府諸面，幾半濱海，今春被溢，無異於湖沿諸邑，遜處偏遜，其勢固然，且本府事體自別之故，前後請災，雖或稍過，未嘗減數，事目外四百十四結二十七負五束，特許準劃，以示朝家別加顧恤之意，別分之穀，乃是災民救急之需，無怪其難徵，亦爲依狀請停退，而守臣之啓，既曰優處最優，則之次稍實戶巡還停退，似未斟量，只許尤甚戶三分一，限明秋停退事，分付何如，答曰，允。

<비변사등록 198책, 순조 7년 1807년 10월 10일(음)>

사회/윤리 · 풍속

水原留守 金履翼의 災實分等狀啓에 대해 비변사가 回啓하다

○ 비변사에서 아뢰기를, “수원유수(水原留守) 김이익(金履翼)의 재실분등 장계를 보니 흥년으로 판가름 난 상황을 상세히 아뢰고 이어서 우심(尤甚) 25면(面), 지차(之次) 13면, 초실(稍實) 5면 가운데서 가장 빈궁하고 가장 의지할 데 없는 사람의 숫자를 추려 곡식으로 진휼을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익히 헤아려서 등문하했으며, 사목재(事目災) 1백 50결 외에 부족재(不足災) 3천 2백 25결 14부 5속을 특별히 가획하고 정묘년(丁卯年:순조7, 1807)에 정퇴한 각곡을 탕감한 후 남아있는 것 8백 25석 영(零)과 무진년(戊辰年:순조8, 1808)에 정퇴한 각곡 1천 6백 97석 영을 모두 그대로 정퇴하며, 금년 당봉조(當捧條)는 우심면 우심호의 환향(還餉)과 신포(身布)는 4분의 3, 우심면 지차호와 지차면 우심호는 절반, 지차면 지차호와 초실면 우심호는 3분의 1을 정퇴하고, 신포의 정퇴 외에 봉납해야 할 것은 돈으로 대납하도록 하고, 환향(還餉)은 백성이 본색을 마련해 납부할 길이 없으니 3분의 1에 한하여 상당한 곡식으로 준절(準折)하여 대봉(代捧)하되 명년 가을에 가서 본색으로 환작(還作)하고, 추노(推奴:도망간 노비를 찾아내는 일)와 징채(徵債)를 막는 일을 묘당에서 품지하여 분부해 달라고 하였습니다. 한강 남쪽의 여러 읍은 대부분 곡식이 익지 않았는데 본부가 가장 심한 재해를 입어 전체 40면이 모두 들 아니면 연해이고, 연해에는 논밭이 더욱 혹심한 재해를 당한데다 연해의 여러 면은 한번 해일이 덮친 뒤로 해마다 실농하고 있어 땅은 대부분 완전히 버려지고 백성은 먹을 것이 남지 않았습니다. 금년의 혹심한 가뭄은 근래에 없는 것이라 지금 백성의 사정이 다른 읍에 비해 더 황급합니다. 수신이 청한 여러 조항은 실정에 지나친 말은 아니지만 재해에 관한 정사에 있어 마땅히 갑인년(甲寅年:정조18, 1794)을 비충(比摠)으로 삼아야 합니다. 갑인년은 재해가 가장 심한 해로서 획하(劃下)한 것은 1천 2백 94결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설사 올해의 흥년이 최근에 없는 것이라 해도 재결을 갑인년에 비해 3분의 2나 더하는 것은 결국 지나치게 많은 것입니다. 그러나 본부 백성의 일은 더욱 생각해주지 않을 수 없으니 사목재 1백 50결 외에 2천결을 가획(加劃)하고 2천 1백 50결의 수에 맞추어 조정에서 별달리 돌보는 뜻을 보이고 환향과 신포의 경우, 우심면의 우심호는 절반을 정퇴하고 우심면의 지차호와 지차면의 우심호는 모두 3분의 1을 정퇴하며 지차

면의 지차호는 4분의 1을 정퇴하고 초실면의 우심호는 5분의 1을 정퇴하며, 신포는 모두 돈으로 대신 납부하는 것으로 하고 환향의 당봉조에 있어서는 논농사가 다른 곡식보다 가장 흉년이 들었으니 본색으로 실은 수에 맞추어 봉납하기가 어렵습니다. 우심면은 4분의 1을 대봉하고 지차면은 5분의 1을 대봉하되 각기 준절하여 정하게 납부하였다가 명년 가을에 가서 본색으로 환작하며, 구환의 경우 신환도 정퇴하는 이때에 다 같이 봉납을 독촉할 수는 없으니 정퇴하도록 하고, 추노와 징채는 장계에서 청한대로 막으라고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희한다고 답하였다.

司啓曰，卽見水原留守金履翼災實分等狀 啓，則盛陳判歎之狀，仍以爲尤甚二十五面・之次十三面・稍實五面，而若其最貧窮最無依者，不可不抄 其數賑以穀，故爛加商確，從當登聞，事目災一百 五十結外，不足災三千二百二十五結十四負五束，特爲加劃，丁卯停退各穀之蕩減後，餘在條八百二 十五石零及戊辰停退之各穀一千六百九十七石 零，竝爲仍停，今年當捧條，則尤甚面之尤甚戶還餉 身布，四分之三，尤甚面之之次戶及之次面之尤甚 戶折半，之次面之之次戶及稍實面之尤甚戶，三分 一停退，身布之停退外當捧者，許令以錢代納，而還 餉則民無本色辦納之路，限三分一以相當穀，準折 代捧，待明秋還作本色，推奴徵債防塞事，竝請令廟堂 稟旨分付矣，漢南諸邑，舉皆失稔，而本府最被災荒，全一境四十面之內，非野則沿，而沿農野畝，受災尤 酷，況又沿海諸面，一自海溢之後，連年失農，地多全 棄，民無遺食，至於今年亢旱，殆近所無，目今民情，比 他邑尤爲遑急，守臣所請諸條，不爲過實之語，而至於災政，則當以甲寅爲摠，蓋甲寅爲最災之歲，而所 劃下不過爲一千二百九十四結，藉使今年歉荒，挽 近所無，而災結之比甲寅，更加三分之二者，終涉過 多，然本府民事，不可不加意軫念，事目災一百五十結外，加劃二千結，以準二千一百五十結之數，特示 朝家別加優恤之意，還餉身布，尤甚面之尤甚戶，折 半停退，尤甚面之之次戶・之次面之尤甚戶，竝三分 一停退，之次面之之次戶四分一停退，稍實面之尤 甚戶，五分一停退，而身布則竝許代錢，至若還餉當 捧條，畝農最歎於他穀，本色實難以準捧，尤甚面則 四分一代捧，之次面則五分一代捧，各以準折精納，待明秋還作本色，舊還則當此新還亦停之時，不可 一例督捧，許令停退，推奴徵債，依狀請防塞之意，分 付何如，答曰，允．

<비변사등록 199책, 순조 9년 1809년 09월 08일(음)>

사회/윤리 · 풍속

水原에 災結 225結을 추가로 劃給할 것을 청하다

비변사에서 아뢰기를, “수원유수 김이익(金履翼)의 장계를 보면 말하기를, ‘올해 흉년은 연해와 들까지 모두 퍼져서 별달리 구휼하지 않으면 지금 상황은 실로 훗날 큰 근심거리가 될 것입니다. 삭감한 재결 1천 2백 25결과 환곡 신포의 정퇴를 전에 장계에서 청한대로 숫자에 맞추어 내어주도록 묘당에서 품지하고 분부하게 하소서.’ 하였습니다. 한 고을이 전부 흉년을 고하여 전에 없는 흉년이요, 2천 결의 재결을 지급한 것 역시 전에 없는 성대한 은전입니다. 더구나 원결이 4천에 차지 않는데 재결을 청한 것은 3천이 넘으니 이는 한 고을 전체가 재해를 당한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본부의 농사는 전부가 참담한 흉작이라 지금 백성의 형편은 절박하지 않음이 없습니다. 그러나 한 고 전체에 모두 재결을 지급한다면 분수에 지나침이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도의 전례에 비교할 때 큰 흉년이 든 해라 하더라도 특별히 최고의 은전을 베푸는 것은 온 고을에 재결을 지급한 예는 없습니다. 수신이 처음 청한 것은 비록 짐작이 있는데에서 나왔고 본사의 복주(覆奏)도 소상하지만 또 이와 같이 더 청한 것은 이전에 청한 숫자를 채우려는 것으로서 부득이한 일이라고 이해가 되나, 일의

체면상 끝내 굳이 그렇지 않은 것이 있으니 실로 일일이 시행하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여러 차례 이와 같이 청하는 것을 보면 백성의 사정을 알 만합니다. 2백 25결을 더 획급하여 도합 2천 3백 75결로 하면 충분히 절약하여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환곡과 신포의 정퇴에 있어서 대략 재량하여 감한 것은 역시 익히 헤아린 바가 있으니 이제 또 활협(闊狹)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이에 따라 거행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답하였다.

司啓曰，卽見水原留守金履翼狀啓則以爲，今年歉荒，沿野俱陳，若不別般優恤，目下光景，實多日後之憂虞，減削災結一千二百二十五結，還布停退，依前狀請準下事，請令廟堂稟旨分付矣，全一境告歉，既爲無前之荒年，二千結給災，亦是無前之曠典，況元結不滿四千，請災恰過三千，則此無異於舉一邑全災也，本府穡事，非不慘歉，卽今民勢，非不悶急，而至於舉一邑給全災，不但有過分數，較之他道已例，雖值大無之歲，另施極層之典，未嘗有闔境給災之例矣，守臣初請，雖出斟酌，本司覆奏，亦費消詳，而又此加請，必欲準前請之數者，諒是不得已者，而在事面，終有所未必然者，實無以一一許施，而蓋其屢請至此，民事可知，以二百二十五結加劃，合爲二千三百七十五結，則足可以節約排俵矣，至於還布停退之略有裁減，亦有所十分稱量者，今不得又爲闊狹，使之依此舉行何如，答曰，允．

<비변사등록 199책, 순조 9년 1809년 09월 16일(음)>

사회/윤리 · 풍속

水原留守 金履翼의 上疏에 대해 진홀에 필요한 물자는 조정에서 구획하겠다고 하다

수원유수(水原留守) 김이익(金履翼)의 소에 답하기를, “소를 살펴보고 잘 알았다. 진홀에 필요한 물자는 조정에서 구획할 것이다. 공가(貢價)를 먼저 내린다는 것은 어찌 구차함이 심하지 않겠는가? 재결(災結)의 일은 묘당에서 품처하게 하겠다.” 하였다.

答水原留守金履翼疏曰，省疏具悉，賑資朝家之所區劃，貢價先下，豈不苟且之甚乎，災結事，令廟堂稟處．

<비변사등록 199책, 순조 9년 1809년 10월 02일(음)>

사회/윤리 · 풍속

水原에 災結 300結을 추가로 劃給할 것을 청하다

비변사에서 아뢰기를, “수원유수 김이익(金履翼)의 상소에 대한 비지(批旨)에 재결의 일은 묘당에서 품처하게 하라는 명이 계셨습니다. 그 소본(疏本)을 보니 이르기를, ‘묘당에서 재차 획급한 것이 도합 2천 3백 75결인데 신이 장청한 수보다 1천 결 영(零)이 감삭되었습니다. 본부의 원장(元帳)에 붙어있는 5천여 결 가운데 잡탈을 제하면 실결(實結)은 3천 5백 34결 영입니다. 이제 이 3천 여 결의요 청은 결으로 보면 전재(全災)라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닙니다. 무토면세(無土免稅)와 복호(復戶) 7백 43결을 통계하면 총수는 4천 2백 77결 영입니다. 이로 미루어보면 청한 재(災)는 겨우 4분의 3이고 그 부족한 수는 장차 근거 없이 징수해야 합니다. 묘당에서 청한 바대로 맞춰 획급해 주소서.’ 하였습니다. 수신이 한번 청하고 두 번 청하고 상소로 청하기까지 하였으니 그 절박한 사정을 알만 합니다. 청한대로 허용하는 것도 실은 불가할 것이 없습니다만, 묘당에서 한번 획급하고 두 번 획급했는데 결국 다 획급하지 못한 것은 역시 어찌 요량이 없어서 그랬겠습니까? 근년의 극심한 재해는 임인년(壬寅年:정조6, 1782)보다는 심하지 않은데 이 소청은 임인년보다 넘칩니다. 공가(公

家)의 구획은 자연 등급과 절차가 있습니다. 애초부터 인색함을 견지한 것은 실로 근거로 한 바가 없지 않습니다. 소청이 이제 또 세 번째로 이르렀으니 3백 결에 한하여 더 획급하면 임인년에 비해 오히려 2백 결 가까이 더 주는 것입니다. 이에 의해 골고루 배분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희한다고 답하였다.

司啓曰，水原留守金履翼上疏，批旨內災結 事，令廟堂稟處事命下矣，取見其疏本，則以爲廟堂之再次劃給，合爲二千三百七十五結，比臣狀請 之數，減削爲一千結零矣，本府元帳付五千餘結之 內，除其雜頃，則實結爲三千五百三十四結零，今此 三千餘結之請，以外面驟看，雖謂之全災，未爲過語，若與無土免稅及復戶七百四十三結，統以計之，則 其總爲四千二百七十七結零，以此推之，所請之災，只是四分之三，其不足之數，勢將白地而徵，令廟堂 依所請，準給爲辭矣，守臣之一請再請，至於疏請，可 見其切悶之勢，依請準許，固無不可，而廟堂之一劃 再劃，終不得盡劃，亦豈無料量而然也，近年極災，無 過壬寅，而今此所請，有浮於壬寅，公家區劃，自有 等節，自初靳持，誠不無所據矣，所請今又至三，限三 百結加劃，則比壬寅，尙有近二百結之加矣，使之依 此分俵何如，答曰，允．

<비변사등록 199책, 순조 9년 1809년 10월 03일(음)>

사회/윤리 · 풍속

湖南 등에 常賑穀 등을 劃給해 줄 것을 청하다

비변사에서 아뢰기를, “전교하시기를 이제 겨울이 이미 깊었는데, 기근에 시달리는 저 불쌍한 백성이 쓰러져 나뒹구는 근심이 없을 수 있겠는가? 밤낮으로 깊이 걱정이 되는 마음 끝이 없다. 진자(賑資)의 구획을 굶주리는 입을 추린 후에 하면 필시 때늦은 탄식이 있을 것이다. 더구나 양호의 구황은 조금도 소홀히 할 수 없다. 양호의 도신도 진휼할 방도를 미리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묘당에서 양호에는 굶주리는 입을 추리기를 기다리지 말고 올라오는 진자(賑資)를 먼저 알맞게 헤아려 구획하게 하라. 각도의 진자도 알맞게 헤아려 구획하여 내려 보내도록 초기하고 거행하라는 명이 계셨습니다. 제도(諸道)의 굶주리는 입이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금년에 입은 재해가 어느 정도인지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진자를 먼저 알맞게 헤아려 구획하는 것은 실로 백성을 위해 예비하는 방도입니다. 호남은 상진곡(常賑穀) 가운데 쌀 2천 석, 벼 5만 석, 콩 3천 석, 각곡 1만 5천 석, 사비곡(私備穀) 가운데 콩 1만 석, 벼 1만 석, 군작미(軍作米) 가운데 2천 석, 보환미(補還米) 가운데 3천 석, 선저치미(船儲置米) 가운데 3만 석 등 쌀과 각곡 도합 12만 5천 석과 공명첩 1천 장, 호서는 영진곡(營賑穀) 가운데 벼 5천 석, 각곡 7천 석, 북곡(北穀) 가운데 쌀 2천 석, 콩 5천 석, 벼 1만 석, 각곡 5백 석, 영남곡(嶺南穀) 가운데 쌀 1천 석, 벼 5천 석, 보환곡(補還穀) 가운데 쌀 1천 석, 콩 1천 석, 벼 2천 석, 군역청의 군작미 가운데 2천 석 등 쌀과 각곡 도합 4만 1천 5백 석과 공명첩 7백 장, 경기는 상진곡 가운데 쌀 1천 석, 소미 1천 2백 석, 콩 8백 석, 각곡 1천 석, 영진곡 가운데 쌀 2백 석, 소미 2백 석, 벼 3천 석, 별회곡(別會穀) 가운데 벼 1만 석, 각곡 1만 석, 임술곡(壬戌穀) 가운데 벼 1만 5천 석, 쌀과 각곡 도합 4만 2천 4백 석과 공명첩 7백 장을 모두 획급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성(華城)은 소미 2백 석, 벼 1만 석과 공명첩 2백 장을 경기영에 획급한 것 가운데서 이획하되 이번 진자(賑資)는 각기 본도에 있는 곡식을 취하여 쓰고 명년 봄 나누어 줄 환자가 아마도 줄어들 형편이요 농사 때 종자와 양식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으니 북도의 교제곡(交濟穀)으로 오래 유치해둔 것 가운데 5만 석, 산재곡(散在穀) 가운데 2만 석을 영남에 획급하고 영남의

곡식 가운데 5만 석을 호남에 획급하여 환자에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호서에 있어서는 달리 획급할 곡식이 없으나 결국에는 구처할 방도가 있을 것입니다. 진자로 획급한 후에 원곡이 줄어든 것은 혹 전부 나누거나 혹은 3분의 1을 남기고 3분의 2를 나누면 환자의 순차가 끊어지는 것을 면할 수 있고 원곡의 감축을 보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역시 이러한 내용으로 말을 만들어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답하기를, “윤택한다. 호남이 더욱 심하니 아무 곡식 가운데 2만 석 한하여 더 획급하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司啓曰，傳曰，今則冬節已深矣，哀彼飢饉之民，能無顛連之患乎，宵旰深憂，憧憧不已，賑資區劃，若於抄飢後爲之，則必有不及之歎，況兩湖之救荒，尤不可少忽，兩湖道臣，亦宜預爲商量於賑恤之方乎，令廟堂，兩湖則不待抄飢，而上來賑資，先爲量宜區劃，至於各道，賑資亦爲量宜區劃下送，而以草記舉行事命下矣，諸道抄飢，雖未知多寡，今年被災，既知其淺深，賑穀之先爲量宜區劃，實是爲民備豫之道，湖南則常賑穀中米二千石・租五萬石・太三千石・各穀一萬五千石・私備穀中太一萬石・租一萬石・軍作米中二千石・補還米中三千石・船儲置米中三萬石・米各穀合十二萬五千石・空名帖一千張，湖西則營賑穀中租五千石・各穀七千石・北穀中米二千石・太五千石・租一萬石・各穀五百石・嶺南穀中米一千石・租五千石・補還穀中米一千石・太一千石・租二千石・均廳軍作米中二千石・合米各穀四萬一千五百石・空名帖七百張，京畿則常賑穀中米一千石・小米一千二百石・太八百石・各穀一千石・營賑穀中米二百石・小米二百石・租三千石・別會穀中租一萬石・各穀一萬石・壬戌穀中租一萬五千石・米各穀合四萬二千四百石・空名帖七百張，茲許劃，華城則小米二百石・租一萬石・空名帖二百張，就畿營所劃中移劃，而今此賑資，各以本道所在穀取用，明春分還，勢必耗縮，農時種糧，亦不可不念，北道交濟久置穀中五萬石・散在穀中二萬石，劃給嶺南，嶺南穀中五萬石，劃給湖南，使之添還，至於湖西，則他無可劃之穀，從當有區處之道，劃賑以後，元穀之見縮者，或盡分或一留二分，可以免還巡之乏絕，可以補元穀之減縮，亦以此意，措辭分付何如，答曰，允，湖南尤甚焉，某樣穀中限二萬石加劃可也。

<비변사등록 199책, 순조 9년 1809년 11월 21일(음) >

사회/윤리 · 풍속

兩湖와 京畿와 華城의 백성에게 내린 諭書

○ 「임금은 말한다. 아아, 너희 경기·호남·호서와 화성(華城) 백성은 내가 하는 말을 받게 들으라. 오직 나 소자는 부덕하고 어리석은 몸으로 외람되이 대위(大位)를 이어 임어(臨御)한 지 9년이 되었으나 은택을 입은 백성이 하나도 없고 은혜를 끼친 일이 하나도 없다. 그런데도 너희가 쓰러져 나뉘는 괴로움을 면한 것은 무엇 때문인가? 실로 우리 조종의 덕택이 민생에 스며들었기 때문인 것이다. 이 때문에 황천(皇天)이 우리 동방을 돌보아 9년 동안 농사가 연달아 풍년이 들었다. 이제 여러 도의 연분(年分)에 대한 장문(狀聞)을 당하여 늘 속으로 말하기를 ‘내가 불민하여 덕이 이전의 왕보다 못하여 실로 위로 천심(天心)을 감응케 하지 못하였는데 하늘이 복을 성대히 내려주셨고, 은택이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없었는데도 백성이 돌보아 나를 사랑하고 받들었으니 어찌 나 소자가 두려워하고 부끄러워 할 일이 아니겠는가!’ 하였다. 비바람이 순조로운 것은 얻기 어려운 성대한 일이라서 내 마음에 근심하고 두려워 한 것이 실로 수재나 한재를 당한 때와 다름이 없었다. 그런데 어찌하여 봄부터 여름까지 비올 기미가 보이지 않고 해가 짙짙 내려쬘인단 말인가? 규벽(圭璧)을 교야(郊野)와 종묘에 누차 올려 기우제를 지내 늦여름에 비가 내렸으나 오직 저

경기·호남·호서·**화성**은 신령이 응하기를 끝내 머뭇거리 모낼 시기가 이미 지나가 농사는 결국 흉년으로 판가름 났다. 금년의 한재는 각 도가 다름이 있으나 한마디로 겸황(歉荒)이다. 조금 풍년이 든 해서(海西)는 최근 비의 피해로 인해 또 흉년든 해와 다름이 없으니 불쌍한 저 소민이 무엇에 의지하여 살아갈 것인가! 아아, 한 사내라도 제 자리를 얻지 못하면 옛 현명한 군주는 오히려 부끄럽게 여겼는데 하물며 이 수만 생령이 기근을 면치 못하고 떠돌게 되었음은 내가 덕이 없어 하늘의 노여움을 사 무고한 백성이 다 죽게 되었다. 이로부터 밤낮으로 두려워하여 먹어도 맛을 모르고 누워도 잠들 수가 없어서 불을 밝히고 밤새도록 며칠이고 깊이 생각하였다. 백성이란 나라의 근본인데 나라에 백성이 없으면 어떻게 나라가 되겠으며 먹을 것은 백성의 목숨인데 백성에게 먹을 것이 없으면 어떻게 목숨을 잇겠는가! 옛날 우리 선조(先朝) 갑인년(甲寅年:정조18, 1794)에 흉년이 들어 백성이 곤궁하였으나 오늘보다 더 급박하지는 않았고, 내가 상한 듯 갓난아이를 돌보듯 하는 정사와 불쌍히 여김이 지극히 간절하여 백성을 구휼하는 대정(大政)이 팔역(八域)의 역조 중생에게 넘겼으니 우리 동방의 하늘을 이고 사는 신하와 백성이 누가 감격하여 보답하고자 하지 않았으며 잊지 못하는 생각을 지니지 않은 사람이 있었겠는가! 아아, 대성인의 백성을 위하는 성스런 마음이 지극하고 극진하였다. 올해 본도는 갑인년보다 심할 것이다. 굳이 백성에게 이롭다면 내가 무엇을 아끼겠는가! 더구나 그것이 선조의 뜻을 잇는 크나 큰 일이 아니겠는가! 이에 내탕전(內帑錢) 2만 냥, 후추 1천 두(斗), 단목(丹木) 5천 근을 내어 호남에는 돈 1만 냥, 후추 4백 두, 단목 2천 근, 호서에는 돈 5천 냥, 후추 3백 두, 단목 1천 근, 경기에는 돈 3천 냥, 후추 2백 두, 단목 1천 근, **화성**에는 돈 2천 냥, 후추 1백 두, 단목 1천 근을 내리고, 호남의 진상(進上)을 정되한 값의 쌀을 3등읍을 물론하고 제류(除留)하고 내려 보내고, 호서의 진상 값의 쌀을 우심읍은 역시 제류하게 하고 내려 보낸다. 너희들은 나의 부덕을 탓하지 말고 구중(九重)이 멀다고 하지 말고 각기 그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가벼이 마을을 떠나지 말고 서로 근심하고 원망하는데 동요되지 말고 친척과 이웃이 서로 권면하고 서로 도와 사는 곳을 편히 여기라. 몸에 힘든 일이 있거든 수령에게 말하고 도신에게 상의하면 도신과 수령이 역시 마음을 다하여 돕고 구해주어 필시 너희들을 구령에 나뉘는 근심이 있게 하지는 않을 것이다. 너희는 각기 이를 믿고 다음해에 풍년이 들기를 기다리라. 하늘은 지극히 어지시니 역시 어찌 우리에게 많은 곡식을 주시지 않겠는가! 너희는 나의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말을 밝게 들으라. 이로부터 생각건대, 도적이 날뛰 근심이 이런 때에 많이 있으니 도백은 이런 사실을 알아 영장(營將)과 열읍(列邑)에 신칙하여 토포(討捕)할 방책을 다하되 감히 그 마음이 나태하지 않게 하고 감히 평민을 침해하지 못하게 하라. 조정에서도 별반으로 엄찰하는 방도가 어찌 없겠는가! 이 역시 흉년에 백성을 위하는 하나의 방도이니 모두 모름지기 알아야 할 것이다。」

王若曰，嗟爾京畿·湖南·湖西·暨**華城**民人，明聽予一人誥，惟予小子，以否德寡昧，叨承大位，臨御九載，無一物視澤，無一事視恩，而惟爾等，猶免顛連之苦者，此何故也，實是我祖宗德澤，浹洽於民生者也，是故，皇天眷顧我東方，九年之間，穡事連登，今當諸道年分之狀聞也，每語于中曰，以予不敏，德昧前王，誠未能上格天心，而天之降福穰穰，澤未能下感民情，而民之愛戴眷眷，豈非予小子所當慙惕自愧之事哉，雨順風調，此是難得之盛事，而予心憂懼，實無異於水旱爲災之時，奈之何自春徂夏，雨意漠然，杲杲日出，圭壁屢舉於郊廟，雨澤雖得於晚夏，惟彼京畿·湖南·湖西·**華城**，靈應終慳，秧節已過，年遂判歉，夫今年旱災，雖有各道之不同，而蔽一言曰歉荒，而至於稍登之海西，近因雨水之災，又無異於荒歲，哀彼小民，何以賴生，嗚呼一夫不得其所，古昔明辟，猶嘗恥之，況此幾萬生靈，不免饑饉而流離乎，由予否

德，致天之怒，無辜之民，其將盡劉，自是以來，夙夜 恐懼，食而忘其味，寢而不成寐，明燭達夜，連日靜思，民者國之本也，國而無民，何以爲國，食者民之命也，民而無食，何以爲命，昔我先朝甲寅，歲歉民困，不 至於今日之尤急，而如傷若保之政，惻怛至懇，恤民 大政，洋溢於八域兆衆，凡我海東，戴天臣民，孰不感 激，欲報有不忘之思，猗歟大聖人，爲民聖念，至 矣盡矣，今年本道，將甚於甲寅，苟利於民，予何所惜，況又繼述之大者乎，茲發內帑錢二萬兩・胡椒一千 斗・丹木五千斤・湖南錢一萬兩・胡椒四百斗・丹木二 千斤・湖西錢五千兩・胡椒三百斗丹木一千斤・京畿 錢三千兩・胡椒二百斗・丹木一千斤・**華城**錢二千兩・ 胡椒一百斗・丹木一千斤・湖南進上停退價米，無論 三等邑，除留下送，湖西進上價米，尤甚邑亦令除留 下送，爾等勿以否德爲咎，勿以九重爲遠，各盡其心，各盡其力，無輕離鄉井，無胥動愁怨，親戚隣里，互相 勉戒，互相救助，以安其居，有苦于身者，言于守宰，議 于道臣，道臣守宰，亦當殫心拯濟，必不使爾等，有顛 壑之患，爾等各信之，以俟來歲之豐登，上天至仁，亦 豈不貽我來牟多秣多黍乎，爾等明聽我心腹之誥，因此思之，竊發之患，多出於此時，道伯知此意，申飭 營將及列邑，俾盡討捕之責，無敢懈怠其心，無敢侵 害平民，朝家亦豈無別般廉察之道乎，此亦荒年爲民之一道，竝須知之。

<비변사등록 199책, 순조 9년 1809년 11월 26일(음) >

사회/윤리・풍속

水原에 外帑庫의 쌀 700石을 劃給할 것을 청하다

비변사에서 아뢰기를, “**수원유수** 김이익(金履翼)의 장계를 보면 본부의 농사가 흉년으로 관가름 나서 백성의 먹을 것이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사소하게 수봉할 것으로 저 수많은 응하(應下) 할 것을 비교하면 축난 쌀이 거의 3천이고 전조(錢條)도 2천이나 됩니다. 장사(將士)의 지방(支放)은 실로 그만 둘 수 없는 일이니 외탕고(外帑庫)의 쌀에서 7백 석과 저치(貯置)한 돈에서 1만 5천 냥을 전례에 따라 급대하여 특별히 획하하면 돈을 쌀로 계산하여 배정해 쓰도록 하겠으니 묘당에서 품지하여 분부하기를 청한다 하였습니다. 본부의 지방은 전부 결세(結稅)에서 나오는데 금년에는 결세가 전에 비해 크게 줄어서 지방(支放)을 마련할 수 없는 형편임은 본디 그러하니 별달리 급대의 경비를 획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본도와 본부에는 모두 달리 변통할 자원이 없으므로 오늘에 이르러 일의 형편이 실로 절박합니다. 수신이(守臣) 소청한 탕고의 쌀과 저치한 돈은 본래 뜻하지 않은 일에 대비하려는 뜻에서 나온 것이므로 이것을 취하여 쓰는 것이 실로 편리하고 마땅합니다. 외탕고의 쌀 7백 석을 장계에서 청한대로 특별히 획부하도록 해야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쌀과 돈의 부족은 이 큰 숫자만 들어서 계산하면 쌀이 2천 3백 석, 돈이 2천 냥입니다. 이를 다른 급대의 예에 따라 저치한 돈 가운데 1만 6백 25냥을 역시 획하하여 한편으로는 지방에 배용(排用)하는 경비로 삼고 한편으로는 옛 것을 쓰고 새 것을 저축하는 바탕으로 삼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답하였다.

司啓曰，卽見水原留守金履翼狀啓，則以爲 本府穡事判歉，民食告罄，計此些少當捧，較彼許多應下，則見縮之米，恰滿三千，錢條亦爲二千，而將士 支放，實係無已，外帑庫米七百石，貯置錢一萬五千 兩，依例給代，特爲劃下，則謹當以錢，計米排用，請令 廟堂稟旨分付矣，本府支放，全出結稅，而今年結 稅，比前大縮，支放之無麪不飢，其勢固然，不可不另 劃給代之需，而本道本府，俱無他區處之資，到今事 勢，誠爲切悶，守臣所請帑庫米貯置錢，本出於備不虞之意，以此取用，實爲便宜，外帑庫米七百石，依狀 請特爲劃付，如此則錢米不足，雖以此舉大數者計 之，米爲二千三百石，錢爲二千兩，此則一依他給代 例，貯置錢中一萬六百二十五兩，

亦爲劃下，一以爲 支放排用之需，一以爲用舊蓄新之地何如，答曰，允。

<비변사등록 199책, 순조 9년 1809년 12월 01일(음)>

사회/윤리 · 풍속

水原留守 金履翼이 청한 대로 留庫穀 중 1만 5080석을 加分하도록 할 것을 청하다

비변사에서 아뢰기를, “수원유수 김이익(金履翼)의 장계를 보니, ‘본부는 거둬 흉년이 들어 민식(民食)이 매우 어렵고 곡창(穀摠)은 크게 줄어들었으며 환호(還戶)는 날로 점점 증가하는데 분곡(分穀)은 지금 거의 탕진되었습니다. 농사철을 당하여 도와주고 보리칠까지 접제(接濟)하려면 실로 안배(按排)할 가망이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가분(加分)해야 할 수가 그래도 1만 5천 8십 석 영(零)이나 되니 유고(留庫)의 각곡(各穀) 중에서 위의 수량대로 가분해 주도록 묘당에서 품지하여 분부해 주소서.’ 하였습니다. 한 고을의 가분이 거의 1만 5천 석을 넘은 것은 실로 과다한 것이지만 본부는 백성 형편이 평년과 매우 달라 농량(農糧)과 구식(口食)을 오로지 환곡에만 의지하고 있고 수신(守臣)이 청한 예에는 응당 해야 할 바가 있을 것이니 유고의 각곡 1만 5천 8십 석 영을 가분해 주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답하였다.

司啓曰，卽見水原留守金履翼狀啓，則以爲，本府頻年荐歉，民食極艱，穀摠大縮，還戶日漸增加，分穀今幾蕩盡，當農助給，限麥接濟，實無排比之望，不得不加分之數，猶爲一萬五千八十石零，留庫各 穀中準數加分事，請令廟堂稟旨分付矣，一邑加 分殆過一萬五千石者，實爲過多，而本府民情，絕異 於常年，農糧口食專恃還穀，守臣所請，當有商量，留 庫各穀一萬五千八十石零，許令加分何如，答曰，允。

<비변사등록 200책, 순조 10년 1810년 03월 19일(음)>

사회/윤리 · 풍속

左議政 金載瓚이 公忠監司 金蕃根의 災實分等狀啓 등에 대해 논의하다

10월 10일 대신과 비국당상을 인견하여 입시하였을 때에 좌의정 김재찬(金載瓚)이 아뢰기를 (….) 또 아뢰기를, “방금 전에 강화유수(江華留守) 윤치성(尹致誠)의 장계를 보니, ‘첨향 무미조(添餉買米條: 향곡(餉穀)에 보태기 위하여 매입하는 쌀)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 3천 3백 50석 영(零)이 되는데 농사는 손상을 입었고 백성들의 실정은 황급합니다. 원향(元餉)은 감히 융통성을 발휘해 주도록 청하지는 못하지만 첨향조(添餉條) 무미(買米)의 경우에 있어서는 본래 대전(代錢)으로 나누어 지급한 것이고 게다가 수십 년 동안 한 번도 정해진 수량대로 받아들이지 않은 해가 없었으며 많은 경우 순전으로 대봉한 예가 있으니, 올해의 유미조(留米條)는 순전으로 봉상하였다가 내년 가을에 가서 본색으로 만들도록 묘당에서 품지하여 분부하게 해 주소서.’ 하였습니다. 본부(本府)는 바다로 둘러싸인 지역으로 재해를 받은 것이 치우치게 많아 수확할 때에 이르러서는 처음의 기대를 많이 상실하였으니, 수신(守臣)이 진달한 바는 과연 짐작했던 바와 같습니다. 백성들의 형세는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 공과금을 재촉하기가 매우 걱정이 되니, 첨향무미조 3천 3백 50여 석은 가까운 예대로 순전으로 대납하게 하고 작년 원향의 정퇴조(停退條)는 수신이 감히 청하지 못하지만 백성들 사정이 받기 어려움은 실로 매우 걱정이 됩니다. 화성(華城)과 남한(南漢)에서는 각각 4분의 1을 정퇴하였는데 본부의 농사도 양도(兩都)와 차이가 없으니, 일체로 4분의 1을 그대로 정퇴하였다가 내년 가을에 정해진 수량대로 다 받아들이라고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임금의 그리하라 하였다.

또 아뢰기를, “방금 수원유수(水原留守) 김이익(金履翼)의 재실 장계(災實狀啓)를 보니, ‘본부의 올해 농사는 재탈(災頽)이 본래 많은데 가장 우심하게 빈궁한 경우는 형세상 진흙을 베풀고 나서 추후에 등문하겠으나 각양(各樣)의 재명(災名)은 이양하지 못한 것이 7백 96결 80부 4속이고 해일(海溢)이 3백 23결 93부 5속이며, 복사(覆沙)가 84결 57부가 되는데 호조에서 획하(劃下)한 50결로 따져보면 부족한 재결이 1천 1백 55결 30부 9속이 되니, 특별히 더 획급해 주고, 작년 연말에 거두어들이지 못한 각곡(各穀)과 올해의 환곡은 일체를 기한에 맞춰 거두어들이되 그 밖의 정묘년(丁卯年:순조7, 1807) 무진년(戊辰年:순조8, 1808) 기사년(己巳年:순조9, 1809)에 정퇴한 각곡은 모두 계속 정퇴하고, 노비를 추쇄하고 빚을 징수하는 일은 내년 가을까지 방색하도록 아울러 묘당에서 품지하여 분부하게 해 주소서.’ 하였습니다. 본부는 작년에 대흉이 든 고을로 또 흉작을 면치 못하였고 연해(沿海)의 각면(各面)은 거의 작년과 다를 게 없으니, 재결이 어찌 많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다만 온 경내가 전부 흉작은 아니어서 절장보단(折長補短)하면 작년과 비교하여 조금 나을 뿐만이 아닌데 지금 한 고을의 땅에서 재결이 1천 2백여 결이나 된다는 것은 아무래도 지나치게 많아 그대로 허락해 주기 어려운 점이 있으니, 5백 50결에다 사목재(事目災) 50결을 합하여 도합 6백 결을 획급해야 하겠습니다. 신구(新舊)의 정퇴조를 전부 계속 정퇴하는 것은 백성들의 사정이 매우 걱정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향곡의 체모 또한 매우 중요하고, 더구나 이듬해의 걱정도 더욱 생각해야 하는데 이처럼 청한 것은 참으로 매우 온당치 못하니, 수신을 추고하고, 향환(餉還)의 정묘조는 그대로 정퇴하게 하고, 무진조는 3분의 1을, 작년조는 4분의 1을 정봉(停捧)하게 하며 노비를 추쇄하고 빚을 징수하는 것을 방색하는 것은 그대로 허시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임금의 그리하라 하였다. (…)

今十月初十日大臣備局堂上引見入侍時, 左議政金所啓, 卽見公忠監司金著根分等狀啓, (…) 又所啓, 卽見江華留守尹致誠狀啓, 則以爲, 添餉質米條當捧爲三千三百五十石零, 而穡事傷損, 民情遑急, 元餉則不敢仰請闊狹, 而至如添餉質米, 本以代 錢分給者, 且數十年之間, 一無以米準捧之歲, 多有純錢代捧之 例, 今年質米條純錢捧上, 待明秋還作本色事, 請令廟 堂稟旨分付矣, 本府以環海之地, 受災偏多, 及到 收穫, 大失始望, 守臣所陳, 果合所料, 民勢轉艱, 催課 切悶, 添餉質米條三千三百五十餘石依近例, 許令純錢代納, 昨年元餉停退條, 守臣不敢仰請, 而 民勢難捧, 實爲切悶, 華城·南城各以四分一許停矣, 本府穡事, 與兩都無異, 一體以四分一仍停, 待明秋 準捧之意, 分付何如, 上曰, 依爲之.

又所啓, 卽見水原留守金履翼災實狀啓, 則以爲, 本府今年穡事, 災頽自多, 最尤甚貧窮者, 勢將設賑, 從後登聞, 而各樣災名, 則未移爲七百九 十六結八十負四束, 海溢爲三百二十三結九十三 負五束, 覆沙爲八十四結五十七負, 較量地部劃下 五十結, 則不足爲一千一百五十五結三十負九束, 特爲加劃, 昨臘未捧各穀及今年還穀, 一體趁限收 捧, 而其外丁卯·戊辰·己巳停退各穀竝爲仍停, 推奴 徵債限明秋防塞事, 竝請令廟堂稟旨分付矣, 本府以昨年大無之邑, 又不免失稔, 而沿海各面殆無 異於昨年, 則災結之多, 安得不然, 第既非舉一境全 歉, 而折長補短, 則較昨年, 不啻稍勝, 今以一邑之地 災爲一千二百餘結者, 終涉過多, 有難準許, 以五百 五十結竝事目災五十結合爲六百結許劃, 至於新 舊停退條之全數仍退, 民情非不切悶, 餉體亦係至 重, 況嗣歲之慮, 尤所當念, 而如是爲請, 誠甚未安守 臣推考, 餉還丁卯條仍停, 戊辰條三分一·昨年條四 分一許令停捧, 推徵防塞, 亦爲依施何如, 上曰, 依爲之.(…)

<비변사등록 200책, 순조 10년 1810년 10월11일(음) >

사회/윤리 · 풍속

水原留守 金履翼이 청한 災結은 추후에 다시 의논하는 것이 합당하겠다고 아뢰다

○ 비변사에서 아뢰기를, “방금 수원유수(水原留守) 김이익(金履翼)의 장계를 보니, ‘본부(本府)의 수하(水下: 물 아래) 12개 면(面)은 작년 가을에 대흉을 겪었는데 이번에도 흉년이 들었으므로 구환(舊還)을 거두어들이는 것은 더욱 마치 거북의 등에서 털을 뽑으려는 것과 같은 것이니, 3년 동안 정봉했던 것을 계속 정되하여 일시나마 힘을 펴게 하고 앞으로의 진휼에 대비하여 누차 조사하여 가려보니, 호(戶)는 9백 영(零)이고 구(口)는 1천 9백 남짓이므로 쌀은 1천 영 석이 들어가야 하겠으니 기읍(畿邑)에 있는 대미(大米) 5백 석과 정조(正租) 1천 석을 수량을 채워 획급해 주고, 공명첩(空名帖) 70장도 반하(頒下)해 주도록 묘당에서 품지하여 분부하게 해 주소서.’ 하였습니다. 본부의 연해 제면(諸面)은 치우치게 재해의 손상을 입었는데 해를 연이어 흉년이 들었으니 지금 백성들의 실정은 진실로 별도로 진휼해 주어야 할 형편인데 수신(守臣)이 호구를 가리고 곡식을 헤아린 것은 실로 급선무에 해당한다 하겠으나 다만 공진(公賑)과 사진(私賑)을 논할 것 없이 해가 지난 뒤에 베풀어야 할 일입니다. 그리고 청한 곡물은 기왕 이속(移粟)하는 일인데 우심(尤甚)한 다른 고을은 아직 진휼을 논의하지 않았으므로 곡물의 총량을 미리 배정(排定)할 수는 없으니, 다시 각 읍의 보고를 기다려 서서히 의논하여 결정하는 것이 마땅할 듯합니다. 구환의 전체 수량을 정되하게 해 달라고 청한 것에 있어서는 비록 목전에 백성의 힘을 펴주는 정사가 되기는 하겠으나 본부의 곡부는 본래 지극히 조잔한데 이미 한 해 전부터 진휼을 설행할 때부터 동쪽과 서쪽에서 추이(推移) 차대(借貸)함을 면치 못하였는데 지금 또 여러 해 묵은 환곡을 몽땅 정되한다면 이듬해 뜻하지 않은 비용은 다시 어느 곡식에 의지한단 말입니까. 전차의 회계(回啓)에서 분수(分數)하여 정되하게 한 것에는 실로 깊이 헤아린 바가 있었으니, 이전에 보낸 관문에 따라 시행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답하였다.

司啓曰, 卽見水原留守金履翼狀啓, 則以爲, 本府水下十二面昨秋大無, 又此告歉, 至於舊還之收捧, 尤是括毛於龜, 仍停三年之未捧, 俾爲一時之 敍力, 來頭賑賑, 屢查抄口, 則戶爲九百零, 口爲一千 九百餘, 米當入一千零石矣, 畿邑所在大米五百石・正租一千石準數許劃, 空名帖七十張, 亦爲頒下 事, 請令廟堂稟旨分付矣, 本府海堰諸面偏被災 損, 連歲告歉, 到今民情, 固當別加賑救, 而守臣之抄 口量穀, 實是急先之務, 但無論公賑與私賑, 當自歲 後設施, 且所請穀物, 既是移粟之舉, 則尤甚他邑, 姑 未議賑穀總數, 無以先事排定, 更待各邑形止, 從徐議定, 恐爲得宜, 至於舊還全停之請, 雖爲目前 紓民之政, 而本府穀簿, 本自極艱, 已自一年設賑, 不 免東西移貸, 而今又以屢年宿糴, 一齊全退, 則嗣歲 不虞之用, 更靠於何穀乎, 前此回啓之分數許停, 實有所深量, 使之依前關施行何如, 答曰, 允.

<비변사등록 200책, 순조 10년 1810년 11월 14일(음)>

사회/윤리 · 풍속

水原留守 朴崙壽가 청한대로 海倉의 租 1000石 등을 사용하도록 할 것을 청하다

○ 비변사에서 아뢰기를, “수원유수 박윤수(朴崙壽)의 장계를 보니, ‘연해(沿海)의 제면(諸面)에 가장 빈궁한 자가 5백 62호(戶)나 됩니다. 진휼의 개시를 비록 갑자기 의논할 수는 없으나 구급(救急)은 조금도 늦춰서는 안 되니, 조(租) 1천 석과 태(太) 4백 석을 본부(本府) 해창(海倉)의 유고곡(留庫穀) 중에서 우선 가져다 썼다가 가을걷이를 기다려 되도록 전곡(錢穀) 중에서 채워 보충하게 하려고 하니, 묘당에서 품지하여 분부하도록 해 주소

서.’ 하였습니다. 연해 각면(各面)에 진휼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뜻으로 이전의 수신(守臣)이 이미 등문을 하였고, 이번에 청한 곡물도 적절히 나누어 배정할 수 있을 것이며, 또 부근의 창고 곡식을 형편에 따라 가져다 썼다가 가을을 기다려 도로 갚게 한다면 더욱 편리하고 합당할 것이니, 장계에서 청한 대로 시행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희한다고 답하였다.

司啓曰，卽見水原留守朴崙壽狀啓，則以爲 沿海諸面最貧窮者，爲五百六十二戶，開賑雖不遽議，救急不容少緩，租一千石太四百石，以本府海倉 留庫中，姑先取用，待秋成某樣錢穀中充報計料事，請令廟堂稟旨分付矣，沿海各面不可不賑救之 意，前守臣已爲登聞，而今此所請穀物，必有所適 當分排者，且以附近倉穀，從便取用，待秋還報，則尤 爲便當，依狀請許施，何如，答曰允．

<비변사등록 201책, 순조 11년 1811년 01월 09일(음)>

사회/윤리 · 풍속

水原留守 朴崙壽가 청한 대로 還餉 6523석 등을 加分하도록 할 것을 청하다

비변사에서 아뢰기를, “수원유수 박윤수(朴崙壽)의 장계를 보니, 농사일이 한창인데 종자와 양식이 고갈되어 가니, 본부(本府)의 환향(還餉) 유고(留庫) 중에서 미(米)와 각곡(各穀) 6천 5백 23석과 소속된 5개 읍에 있는 향조(餉租) 6천 4백 59석 영(零)을 아울러 가분(加分)하도록 묘당에서 품지하여 분부하기를 청한다 하였습니다. 순환(巡還)이 장차 다하게 되고 보리농사 또한 흉작이니 별순(別巡)으로 구급(救急)함은 그 형세 실로 그러합니다. 본부의 유고 각곡 6천 5백 23석과 소속된 5개 읍의 향조 6천 4백 59석 영을 장계에서 청한 대로 가분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희한다고 답하였다.

司啓曰，卽見水原留守朴崙壽狀啓，則以爲 農務方殷，種糧垂乏，本府還餉留庫中，米各穀六千五百二十三石，屬五邑所在餉租六千四百五十九 石零，竝許加分事，請令廟堂，稟旨分付矣，巡還將 盡，麥農又歉，別巡救急，其勢固然，本府留庫各穀六 千五百二十三石，所屬五邑餉租六千四百五十九 石零，依狀請，許令加分，何如，答曰，允．

<비변사등록 201책, 순조 11년 1811년 05월 01일(음)>

사회/윤리 · 풍속

水原留守 金履도가 청한 대로 還穀 1만 400여 석을 加分하도록 할 것을 청하다

비변사에서 아뢰기를, “수원유수 김이도(金履度)의 장계를 보면 본부(本府)는 거둬 흉년이 든 나머지 보리를 수확하지 못하였고 양식은 이미 텅 비어 있어 많은 백성의 사정이 곳곳마다 갈급(渴急)합니다. 본부의 유고(留庫)된 환자곡 가운데 쌀·벼·콩 도합 5천 2백 6석과 안산(安山) 등 다섯 고을의 향조(餉租) 도합 5천 3백 82석 영을 숫자에 맞추어 더 나누어 주도록 묘당에서 품지하여 분부하기를 청한다 하였습니다. 본부의 원환(元還)은 매년 계순(繼巡)하기가 어려워 보리가 익기 전에 더 나누어 주는 일이 연례(年例)로 되었습니다. 소속 다섯 고을의 백성들이 먹을 것이 어려운 것은 본부와 다름이 없습니다. 본부와 다섯 고을의 유고된 곡식 도합 1만 4백 여석 영을 청한 바에 의하여 더 나누어 주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희한다고 답하였다.

司啓曰，卽見水原留守金履度狀啓，則以爲 本府荐歉之餘，麥未登場，糧已告罄，許多民情，在在 渴急，本府還留庫中米租太合五千二百六石，安山 等五邑餉租合五千三百八十二石零，準數加分事，請令廟堂，稟旨分付矣，本府元還，每難繼巡，麥前 加分，便成年例，五屬邑民食之

艱，與本府無異，本府 及五邑留庫穀，合一萬四百餘石零，依所請，許令加 分何如，答曰，允。
<비변사등록 202책, 순조 12년 1812년 04월 26일(음)>

사회/윤리 · 풍속

水原留守 金履도가 청한 대로 會付穀 2천 석을 加分하도록 할 것을 청하다

○ 비변사에서 아뢰기를, “수원유수 김이도(金履度)의 장계를 보면 이양(移秧)할 때를 당하여 농사의 식량이 떨어졌습니다. 다시 나누어주기를 청하는 일은 이미 선례가 있습니다. 본부(本府) 회부곡(會付穀)의 유고조(留庫條)에서 조(租) 2천 석에 한하여 특별히 가분(加分)하도록 묘당에서 품지하여 분부하기를 청한다 하였습니다. 여름 농번기를 당하여 먹을 것을 오로지 환곡(還穀)에 의지하고 있는데 첫 차례의 가분에도 다음 차례를 이을 수 없습니다. 유고조(留庫租) 2천 석을 장청에 의하여 시행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답하였다.

司啓曰，卽見水原留守金履度狀啓，則以爲 時當秧節，役糧已罄，陳請再糴，曾有已例，本府會付穀 留條中租限二千石，特許加分事，請令廟堂，稟旨 分付矣，當夏劇農之時，口食專靠還穀，而初次加分，既不足以繼巡，留庫租二千石，依狀請，許施何如，答曰，允。

<비변사등록 202책, 순조 12년 1812년 05월 26일(음)>

사회/윤리 · 풍속

水原府로 하여금 面을 나누어 米布를 題給하게 하라고 전교하다

○ 경내(境內) 사민(士民)으로서 61세 된 사람을 개록(開錄) 한다는 수원유수(水原留守) 김이도(金履度)의 장계에 전교하기를, “해부에서 면(面)을 나누어 쌀과 베를 지급하게 하라.” 하였다.

以水原留守金履度狀啓，境內士民六十一歲 人開錄事，傳曰，令該府，分面米布題給。

<비변사등록 202책, 순조 12년 1812년 09월 24일(음)>

사회/윤리 · 풍속

水原留守 金履度の 災實分等狀啓에 대해 回啓하다

비변사에서 아뢰기를, “재실분등(災實分等)에 대한 수원유수 김이도(金履度)의 장계를 보면 올해 농사는 수상(水上)은 비록 참혹한 흉년을 면했지만 수하(水下)는 참혹하게 가뭄의 재해를 입어 모를 내지 못하고 소금기의 손실 등 재해로 도합 6백 95결(結) 65부(負) 2속(束)입니다. 지부(地部)에서 획급한 30결 외에 부족한 재결이 6백 65결 65부 2속을 특별히 더 획급하도록 하고 환향(還餉)으로서 정묘년(丁卯年)에 정퇴할 것을 경오년(庚午年)의 예에 의하여 전액을 그대로 정퇴하고 무진년(戊辰年)에 정퇴한 연해(沿海) 14면(面)은 그대로 정퇴하며 수상(水上) 각 면은 3분의 1을 그대로 정퇴하고, 기사년(己巳年)에 정퇴한 것 및 이어서 수봉하지 못한 연해 14면은 그대로 정퇴하고, 나머지 각 면은 3분의 1에 한하여 그대로 정퇴하며, 새 환향(還餉)은 우심면의 최우심호는 3분의 1을, 우심호는 4분의 1을, 지차의 호 및 지차면의 우심호는 5분의 1을 정퇴하여 내년 가을에 가서 수봉할 환자와 신역(身役)에 준하여 우심면의 최우심호는 3분의 1을, 우심호는 4분의 1을, 지차호 및 지차면의 우심호는 5분의 1을 정퇴하고 당봉조(當捧條)는 돈으로 대신하도록 하며 노비를 추쇄하고 부채를 징수하는 일은 전처럼 막도록 묘당에서 품지하여 분부하기를 청한다 하였습니다. 연해의 여러 들판은 거듭된 흉년이지만 물에 따른 각 면은 모두 순등(純登)이고 경오년(庚午

年)·신미년(辛未年)의 흉년에 획급한 재결(災結)은 5백결 영의 수를 넘지 않습니다. 이번
에 이 6백 60여 결을 더 청한 것은 그대로 허용할 수가 없고 특별히 4백 70 결을 획급하
도록 하고 새 환곡의 정되는 여러 도(道)에 허용하지 않았으니 지금 가벼이 의론할 수가 없습
니다. 각년의 묵은 환곡은 장계 가운데 나눈 등급에 의해 노비를 추쇄하고 부채를 징수하는
일을 막는 일과 아울러 일체 시행하도록 하고 신역을 정퇴하고 대신하는 일에 있어서는 큰
흉년이든 해와는 다르고 또 우심읍이 아니므로 본색으로 수에 맞추어 봉납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답하였다.

司啓曰，卽見水原留守金履度災實分等狀 啓，則以爲今年穡事水上，雖免慘歉，水下酷被旱災，
未移鹹損等災，合爲六百九十五結六十五負二束，地部劃下三十結外，不足災六百六十五結六十
五 負二束，特許加劃，還餉丁卯停退，依庚午例，全數 仍停，戊辰停退沿海十四面仍停，水上
各面三分一 仍停，己巳停退及仍未捧沿海十四面仍停，餘外各 面限三分一仍停，新還餉尤甚面
最尤甚戶三分一，尤甚戶四分一，之次戶及之次面尤甚戶，五分一停 退，待明秋準糴身役，尤甚
面最尤甚戶三分一，尤甚 戶四分一，之次戶及之次面尤甚戶五分一，停退當 捧條，許令代錢，
推奴徵債，依前防塞事，竝請令廟堂 稟旨分付矣，沿海諸坪，雖是荐歉，從陸各面，俱爲 純登，
而庚午·辛未之歉劃災，則無過五百結零數，今 此六百六十餘結加請，不可準許，特以四百七十
結 許劃，新還停退，既不許於諸道，今不可輕議，各年舊 還，依啓中分等，竝與推徵防塞，一
體許施，至於身 役之停代，既異全歉之歲，且非尤甚之邑，使之本色 準納，何如，答曰，允。

<비변사등록 202책, 순조 12년 1812년 10월 04일(음)>

사회/윤리·풍속

水原留守 李益運이 狀啓대로 本府와 屬邑에 있는 各穀 1萬 2360石을 加分할 것을 청하다

○ 비변사에서 아뢰기를, “수원유수 이익운(李益運)의 장계를 보니, 본부(本府)는 흉년이
거듭된 끝에 보리가 수확되기도 전에 농사의 양식이 거의 떨어져 백성들의 정황이 다급하니
본부 환곡의 유고미(留庫米) 가운데 쌀, 조, 콩 도합 7천 1백 60 석과 시흥 등 4읍의 군향
조(軍餉租) 5천 2백 석을 특별히 가분(加分)하도록 묘당에서 품지하여 분부하기를 청한다
하였습니다. 본부의 원환곡은 본래 넉넉하지 못하여 순번에 따라 배정하기 어려워 매번 이
때를 당할 때마다 가분을 청하여 얻는 것이 바로 전례가 되었고 속읍(屬邑)이 먹기 어려운
근심도 본부와 다를 것이 없으니 본부와 속읍에 있는 곡식 가운데 각곡(各穀) 1만 2천 3백
60 석을 청한 바대로 가분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답하였다.

司啓曰，卽見水原留守李益運狀啓，則以爲本府荐歉之餘，麥未登場，農糧垂乏，民情遑汲，本
府 還留庫中米租太合七千一百六十石，始興等四邑 餉租五千二百石特許加分事，請令廟堂稟旨
分 付矣，本府元還，自來不敷，排巡爲難，每當此時，請得加分，便成已例，屬邑艱食之患，亦
與本府無異，本府及屬邑所在穀中各穀一萬二千三百六十石，依所 請許令加分何如，答曰，允。

<비변사등록 203책, 순조 13년 1813년 05월 05일(음)>

사회/윤리·풍속

水原留守 李益運의 災實分等狀啓에 대해 回啓하다

○ 비변사에서 아뢰기를, “수원유수 이익운(李益運)의 재실(災實) 장계를 보니, 농사의 재
실(災實) 상황을 갖추 아뢰고 이어 모를 내지 못하고 늦게 내고 복사(覆沙)가 되는 등 합하
여 재결이 8백 89결 47부 4속인데 사목(事目)의 재결 25결 외에 부족한 재결 8백 64결 영을
특별히 준획하게 하고 정묘년(丁卯年:순조7, 1807)에 정퇴한 각 곡식을 전례에 의해 그대로

정퇴하며, 무진년(戊辰年:순조8년, 1808)·기사년(己巳年:순조9, 1809)에 정퇴하고 거두지 못한 각 곡식을 3분의 2에 한정하여 그대로 정퇴하고 3분의 1의 당봉조(當捧條)는 상당한 곡식을 준절하여 대봉하고 내년 가을에 도로 본색으로 만들며, 노비를 추쇄하고 빚을 징수하는 일을 내년 가을까지 막도록 묘당에서 품지하여 분부하기를 청한다 하였습니다. 금년 농사는 처음에는 풍년을 바랄 수 있으나 결국에 병통이 생겼음은 한강 이남이 모두 그러하며 본읍은 바다 근처 염기가 많은 땅으로 피해를 치우치게 많이 받았습니다. 지부(地部)에서 획급한 재결은 재해 입은 각 면에 고루 나누기가 매우 어려워 8백 여 결을 더 청하기까지 한 것은 정밀하고 간략하지 못한 흠이 있으니 사목의 재결 외에 6백 결을 더 획급하고 환곡과 군향미의 법의는 매우 엄중한데 정묘년 이후 정퇴하고 거두어들이지 못한 각 곡식이 1만 3천 여 석에 이릅니다. 거듭 흉년이 들어 백성들의 실정이 매우 딱하기 때문이긴 하나 흉년이 든 해가 아니니 적당히 헤아려 분수해서 점차 수봉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정묘년 것은 청한 바대로 그대로 정퇴하고, 무진년·기사년에 정퇴하여 거두어들이지 못한 것을 3분의 2를 정퇴하기를 청한 것은 지나치게 많으니 절반에 한정하여 그대로 정퇴하고, 절반의 당봉조는 상당한 곡식으로 준절하여 대봉하되 내년 가을에 도로 본색으로 만들며, 노비를 추쇄하고 빚의 징수를 막는 일은 그대로 시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답하였다.

司啓曰，卽見水原留守李益運災實狀啓，則 備陳穡事災損之狀，仍以爲未移·晚移·覆沙等災，合 爲八百八十九結四十七負四束，事目災二十五結 外，不足災八百六十四結零，特許準劃，丁卯停退各 穀，依已例仍停，戊辰·己巳停退未捧各穀，限三分二 仍停，三分一當捧條，以相當穀準折代捧，待明秋還 作本色，推奴徵債限明秋防禁事，竝請令廟堂稟 旨分付矣，今年穡事之始豐卒瘁，漢南皆然，而本府 以近海鹹鹵之地，受損偏多，地部所劃之結，固難均 俵於被災各面，而至於八百餘結之加請，有欠精約，事目災外六百結，特爲加劃，還餉法意甚嚴，而丁卯 以後停退與未捧各穀，多至一萬三千餘石，雖緣海 值歉荒，民情切悶，而如非大無之年，則量宜分數，漸 次收捧，在所不已，丁卯條則依所請仍停，戊辰·己巳 停退未捧條之三分二請停，未免過多，限折半仍停，折半當捧條，以相當穀許令準折代捧，待明秋還作 本色，推奴徵債防禁事，依施何如，答曰，允.

<비변사등록 203책, 순조 13년 1813년 10월 23일(음)>

사회/윤리 · 풍속

水原留守 李益運이 還穀이 부족하여 租 1만 1천석 등의 加分을 청하다

비변사에서 아뢰기를, “수원유수(水原留守) 이익운(李益運)의 장계를 보니, ‘본부(本府)는 거듭된 흉년 뒤에 백성들의 형세가 극도로 궁핍해졌습니다. 이러한 때에 백성들이 받아 먹을 수 있는 것은 환곡으로 분급하는 것 뿐인데 환향(還餉)이 매우 적으니 순차를 안배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본부와 본부에 속한 5개 읍(邑)의 유고곡(留庫穀) 중에서 조(租) 1만 1천 석, 미(米) 5백 60석, 태(太) 9백 석을 특별히 가분하도록 묘당에서 품지하여 분부하게 해 주소서.’ 하였습니다. 수량이 적은 환향은 순차를 안배할 수 없고 농번기의 민정(民情)은 이와 같이 염려스러우니 제도(諸道)에 이미 시행한 예(例)를 형세상 거부하기 어렵습니다. 장계에서 청한 대로 본부와 5개 속읍의 유고곡 중에서 조 1만 1천 석, 미 5백 60석, 태 9백 석을 특별히 가분하도록 허락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답하였다.

司啓曰，卽見水原留守李益運狀啓，則以爲，本府荐歉之餘，民勢赤立，此時仰哺惟是還分，而

還 餉零星，排比極艱，本府與屬五邑留庫中，租一萬一千石，米五百六十石，太九百石特許加分事，請令廟堂稟旨分付矣，數少還餉，排巡不得，方農民情，若是渴悶，諸道已施之例，勢難靳持，依狀請，本府與屬五邑留庫中，租一萬一千石，米五百六十石，太九百石特許加分何如，答曰，允。

<비변사등록 204책, 순조 14년 1814년 04월 18일(음)>

사회/윤리 · 풍속

水原留守 李益運의 요청대로 嶺西穀 2천석을 移送해주다

○ 비변사에서 아뢰기를, “수원유수(水原留守) 이익운(李益運)의 장계를 보니, ‘금년 농사는 풍년을 기대할 수 없으니, 앞으로 구제할 것은 환곡(還穀)과 진곡(賑穀)보다 나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흉년이 든 끝인지라 환민(還民)이 필시 상년(常年)에 비해 배가 될 것이므로, 얼마 안 되는 곡창(穀摠)으로는 순차(巡次)를 이을 길이 없습니다. 관동(關東)과 해서(海西) 중에서 대미(大米)·소미(小米)·피잡곡(皮雜穀)을 막론하고 1만 석을 특별히 이척(移割)하도록 허락하고, 도로 갚는 방도로 말하면 다시 충분히 상의하여 처리해야 할 것이니, 묘당에서 품지하여 분부하게 해 주소서.’ 하였습니다. 농사가 지금 이미 흉년으로 관가를 났고 곡창이 근자에 점차 줄었으니 진휼을 시작해서 환곡을 배정할 때 의당 다른 도에 있는 곡물을 이전해 달라고 청해야 합니다만, 다만 한 고을의 민사(民事)를 가지고 1만 석의 곡물을 청하기까지 한 것은 지나치게 많은 것입니다. 또 지금의 해서는 가을걷이가 처음 기대했던 것에 크게 어르러졌을 뿐만이 아닌데, 방금 서울에서 쌀 수 만 석을 오로지 해도에 위임하였으니, 민읍(民邑)의 폐단은 이미 말할 것도 없습니다. 다시 이전할 수 없는 일을 또 해도에 요구하였으니, 이에 대해서는 다른 쪽으로 처리하는 방도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먼저 관동의 영서 각 곡물 2천 석을 이송하도록 해도와 해부(該府)에 관문(關文)을 보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답하였다.

司啓曰，卽見水原留守李益運狀啓，則以爲，今年穡事，望斷有秋，來頭接濟，無過還賑，而歉餘還民，必倍常年，零瑣穀摠，無以繼巡，就關東·海西中，無論大小米皮雜穀，限一萬石特許移割，而若其還報之方，更當商確區處，請令廟堂稟旨分付矣，穡事 今已判歉，穀摠近漸見縮，開賑排還，宜有他道穀移轉之請，第以一邑民事，至請萬石穀物，已涉過多，且今海西，則不但秋事之大違始望，方以京貿累萬石，專委該道，民邑之弊，已無可言，更不可以移轉之舉，又責該道，此則當有從他區處之方，先以關東之嶺西各穀，限二千石移送之意，行關該道·該府何如，答曰，允。

<비변사등록 204책, 순조 14년 1814년 08월 24일(음)>

사회/윤리 · 풍속

戶曹와 均廳에서 各 2만냥을 湖南에 보낼 것과 戶曹와 均廳米는 關西貿米와 海西折米로 代割할 것을 청하다

비변사에서 아뢰기를, “경외(京外)의 각영(各營)과 각 아문(衙門)에 유치해 놓은 돈으로 양서(兩西)의 각양(各樣) 모곡(耗穀)을 절가(折價) 무역해서 재해를 입은 제도(諸道)에 이전하여 구제하도록 지난번에 이미 초기(草記)하여 윤허를 받아 양서에 행회하였습니다. 호남은 도신이 방금 본사(本司)에 낱날이 보고해 온 것이 있는데, 말하기를 ‘본도에서 무관(貿販)을 편리하게 할 방도가 있으니, 본전(本錢)으로 받아 가게 해 주소서.’ 하였습니다. 사정(事情)이 과연 보고한 내용과 같다면 돈으로 무관하는 것이 곡물로 운송하는 것보다 비

교적 편리할 것이니, 보고한 대로 이무(移貿)한 본전 중에서 호조와 균역청에 각각 2만 냥을 배정하여 호남에 획송(劃送)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절가 무역할 각 곡물의 총 수량 중에서 이 4만 냥으로 사와야 할 수량을 제한하면, 절가 무역할 각 곡물의 남은 수량은 5만 5천 석 영이 됩니다. 현재 가을 농사가 이미 판가를 났으니, 호남 외 세 도의 재해를 입은 형편도 그 대강을 파악할 수 있으니, 내년 추수까지 해를 이을 백성들의 양식은 이전하여 구제하는 거조가 없어서는 안 되는데 진실로 이전하여 구제하려고 한다면 지금 구획하지 않을 수 없으니, 형편에 따라 운송하여 시기를 넘겼다는 탄식이 없게 해야 할 것입니다. 기전(畿甸)에는 관서(關西)의 각 곡물 1만 8천 석 영과 해서(海西)의 각 곡물 9천 석을 이획하고, 호서(湖西)의 각 곡물 1만 5천 석, 강화(江華)의 각 곡물 2천 석, 화성(華城)의 각 곡물 1천 석은 모두 해서에서 이무해 온 것으로 획급하고, 나머지 수량은 우선 해도(該道)에 유치해 두었다가 다시 통지를 기다리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호조와 균역청의 당년 작전한 모미(耗米)는 이미 해서에서 이무해 온 것에 포함되었고, 이미 유저전조(留儲錢條)로 서울에서 호남으로 획급했다면 이미 이무한 것은 비록 취소할 수 없으나 중첩해서 지불하는 것이니, 급대(給代)하는 정사가 있어야 합니다. 균역청의 미 5천 6백 53석은 관서에 있는 어영청에서 임신년(壬申年: 순조12, 1812)에 사들인 미(米) 5천 5백 석과 해서의 창원곡(倉元穀) 절미 1백 53석으로 대신 획급하고, 호조의 미 1천 7백 75석은 해서의 자비곡(自備穀)과 창원곡 등 절미를 이 수량대로 대신 획급해야 할 것입니다. 이어 이러한 뜻으로 해조(該曹)와 해청(該廳) 및 각 해도(該道)의 도신에게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운허한다고 답하였다.

司啓曰, 以京外各營·衙門留錢折貿兩西各樣 耗穀, 以爲移濟被災諸道之地事, 向已草記蒙允行會於兩西矣, 湖南則道臣纔有枚報本司者, 而以 爲, 自本道有從便貿販之方, 請以本錢受去, 事情果 如報辭, 則以錢貿販, 較便於以穀運輸, 依所報, 以移 貿本錢中, 排定於戶曹·均廳者各二萬兩, 劃送湖南, 若於折貿各穀都數中, 除此四萬兩當貿之數, 則折 貿各穀餘數爲五萬五千石零, 見今秋事已判, 湖南 外三路災形, 有可以領略其大概者, 嗣歲民食, 不可 無移濟之舉, 而苟欲移濟, 則不可及今區劃, 使之從 便運輸, 俾免愆時之歎, 畿甸則以關西各穀一萬八 千石零, 海西各穀九千石, 移劃, 湖西各穀一萬五千 石, 江華各穀二千石, 華城各穀一千石, 竝以海西移 貿者劃給, 餘數則姑爲留置於該道, 以爲更待知委 之地, 戶曹·均廳當年作錢耗米, 已入於海西移貿之 中, 而既以留儲錢條, 自京劃給於湖南, 則已爲移貿 者, 雖不可還寢, 係是疊下, 宜有給代之政, 均廳米五千 六百五十三石, 以關西所在御營廳壬申貿米五千五 百石及海西倉元穀折米一百五十三石代劃, 戶曹 米一千七百七十五石, 以海西自備倉元等穀折米, 依此數代劃, 而仍以此意, 分付於該曹·該廳及各該 道臣何如, 答曰, 允.

<비변사등록 204책, 순조 14년 1814년 09월 21일(음)>

사회/윤리 · 풍속

水原留守 李益運의 災實分等狀啓에 대해 回啓하다

○ 비변사에서 아뢰기를, “지금 수원유수(水原留守) 이익운(李益運)의 재실장계(災實狀啓)를 보니, ‘본부(本府)의 농사가 흉년으로 판가를 났으니, 우심(尤甚)이 22개 면(面)이고, 지차(之次)가 14개 면이고, 초실(稍實)이 4개 면인데, 지부(地部)에서 획하(劃下)한 재결 1백 50결 외에 부족한 재결 2천 8백 73결 95부(負) 3속(束)을 특별히 가획(加劃)해야 할 것입니다. 정묘년(丁卯年: 순조7, 1807)·무진년(戊辰年: 순조8, 1808)·기사년(己巳年: 순조9, 1809)에 정되하거나 미봉(未捧)한 환향(還餉)의 각 곡물 도합 1만 4천 53석 영을 모두 계속

정퇴하고, 금년의 환향과 신포(身布)를 우심면의 우심호(尤甚戶)는 4분의 3을, 우심면의 지차호(之次戶)와 지차면의 우심호는 절반을, 지차면의 지차호와 초실면의 우심호는 3분의 1을 모두 정퇴하되, 신포 중에 당봉조(當捧條)는 돈으로 대납(代納)하도록 허락하고, 환향 중에 당봉조는 3분의 1을 상당곡(相當穀)으로 준절하여 대봉하였다가 내년 가을에 도로 본색으로 만들게 하며, 노비를 추쇄하고 빚을 징수하는 것을 일체 막게 해 달라는 일은 모두 묘당에서 품처하게 해 주소서. 그리고 궁핍한 백성들을 진휼할 방도는 이후에 등문(登聞)하겠습니다.’ 하였습니다. 기전(畿甸)의 흉년은 한남(漢南:한강 이남의 땅)이 심한데, 본부는 한남에서도 가장 심합니다. 3개월 동안의 가뭄으로 연읍의 농사를 완전히 망쳤고 몇 척(尺)의 비로 야(野)와 면이 모두 침수되었는데 거기다 서리까지 너무 일찍 내려 남은 곡물 중에 여문 것이 없게 되었습니다. 빈해(濱海)는 흉년이 잘 드는 지역으로서 해를 이어 거듭된 흉재(凶災)를 만나 백성들의 곤궁하고 다급한 형세가 정히 위급한 상황에 놓여 있는데, 셋으로 분등한 면리(面里)를 이렇게 조목조목 진달한 것은 수신(守臣)이 헤아려 각각 마땅한 바가 있을 것이니 이대로 시행하게 하소서. 재결을 더 청한 것으로 말하면 전에 이와 같은 일이 있었을 때에 이미 지부에서 나누어 준 것으로는 그대로 분배(分排)할 수 없었기에 매번 추후에 더 청함을 면치 못하였던 것인데, 지금 이렇게 3천여 결을 청한 것은 바로 온 경내가 완전히 재해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재정(災政)이 지극히 중한데 어찌 이와 같이 할 수 있겠습니까. 본부를 이설(移設)한 후에 가장 흉년이 든 해로 말하면 전에는 갑인년(甲寅年:정조18, 1794)이고, 후에는 기사년인데, 갑인년의 재결은 기껏해야 1천 2백여 결에 불과하였고 기사년의 재결도 단지 2천 6백여 결이었습니다. 그러나 전후로 없었던 결총(結總)은 기사년뿐인데, 지금 기사년의 결총을 더 초과한 것이 4백 결이 넘습니다. 본부는 풍패(豐沛)처럼 탕목읍(湯沐邑)이고 하동(河東)처럼 고평군(股肱郡)을 겸하였으니 조정에서 위로하고 보살펴 준 것이 과연 어떠하였습니까. 정부(正賦)를 가감(加減)하는 것으로 말하면 본래 등급에 따라 제한한 것이 있어서 융통성을 부릴 수 없으므로 실로 청한 대로 맞추어 시행할 수 없습니다. 사목에 획하(劃下)한 것 이외에 1천 8백 50결을 가획하면 비록 기사년보다 못하지만 그래도 갑인년보다 넉넉할 것이므로 이 수량을 고르게 나눠 주도록 하소서. 각 연도의 구환(舊還)은 형세상 신환(新還)과 함께 모두 징수하기 어려우니 지금은 우선 계속 정퇴하게 하소서. 신환포(新還布) 중에 당봉조를 우심면의 우심호는 절반을, 우심면의 지차호와 지차면의 우심호는 3분의 1을, 지차면의 지차호와 초실면의 우심호는 4분의 1을 정퇴하되, 대봉은 모두 3분의 1을 상당곡으로 준절하여 대봉하는 일과 신포를 대전(代錢)하는 일, 노비를 추쇄하고 빚을 징수하는 것을 막게 하는 일을 일체 시행하도록 허락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답하였다.

司啓曰, 卽見水原留守李益運災實分等狀啓, 則以爲, 本府穡事判歉, 尤甚爲二十二面, 之次爲十四面, 稍實爲四面, 而地部劃下災一百五十結外, 不足 災二千八百七十三結九十五負三束, 特爲加劃, 丁卯·戊辰·己巳停退未捧還餉各穀, 合一萬四千五十三石零竝仍停, 今年還餉身布, 尤甚面·尤甚戶四分三, 尤甚面·之次戶及之次面·尤甚戶折半, 之次面·之次戶及稍實面·尤甚戶, 三分一竝停退, 而身布之當捧者, 許令以錢代納, 還餉之當捧者, 限三分一以相當穀準折代捧, 待明秋還作本色, 推奴徵債一切防塞事, 竝請令廟堂稟處, 而窮民賑濟之方, 從後登聞爲辭矣, 畿甸之歉, 漢南爲甚, 而本府又是漢南之最, 三朔之旱, 沿農全失, 數尺之雨, 野面都浸, 加以霜降太早, 餘穀無實, 以濱海善歉之地, 值連年荐凶之災, 民勢窮急, 政在竿頭, 而三分面里, 有此條陳, 守臣商量, 各有攸當, 依此施行, 至於災結加請, 在前如此之時, 既不得以地部所頒, 依樣分排, 則每不免追後加請, 然而今此三千餘結請得, 卽是舉一境全災也,

災政至重，豈容如是，本府自移設以後，最歉之年，前則甲寅，後爲己巳，而甲寅災極不過一千二百餘結，己巳災亦只爲二千六百餘結，而前後所無之摠，惟己巳是已，今則更過於己巳之摠者，爲四百結有餘矣，本府以豐面湯沐之邑，兼河東股肱之郡，朝家之慰拊顧護，果爲何如，而至若正賦加減，自有所等限，有不可闊狹，果無以依請準施，事目劃下外一千八百五十結加劃，則雖遜於己巳，尙優於甲寅，使之以此數均俵，各年舊還，勢難與新還並徵，今姑仍停，新還布當捧條，尤甚面·尤甚戶折半，尤甚面·之次戶，之次面·尤甚戶，三分一，之次面·之次戶，稍實面尤甚戶，四分一停退，而代捧並三分一，以相當穀準折代捧，身布代錢，推徵防塞，一體許施何如，答曰，允。

<비변사등록 204책, 순조 14년 1814년 10월 02일(음)>

사회/윤리·풍속

水原留守 李益運의 요청대로 災結을 추가해주고 還布停退는 回啓대로 할 것을 청하다

○ 비변사에서 아뢰기를, “지금 수원유수(水原留守) 이익운(李益運)의 장계를 보니, ‘당초에 청한 재결과 환포(還布)에 대해 정퇴를 청한 수량은 실제로 백성들의 형편을 헤아린 것이어서 가감할 수 없는 것인데, 지난번에 획하한 1천 8백 50결 외에 부족한 재결 1천 23결 영과 환포에 대해 정퇴를 청한 것에 각각 1등(等)을 감한 것을 모두 전에 청한 대로 준허(準許)하라고 묘당에서 품지하여 분부하게 해 주소서.’ 하였습니다. 본부의 전세(田稅)는 본부의 경상비용만 삼을 수 있어서 지부(地部)의 원부(原賦)와 차이가 있는데, 정공(正供)인 만큼 증산(增刪)이 지극히 중요하므로 청한 대로 준획할 수 없기에 약간 줄인 적이 있었는데, 지금 또 더 청하여 이처럼 거듭 말하고 있습니다. 재상(災狀)과 민정(民情)에 대해 실로 생각해 주어야 하니, 전에 획급한 1천 8백 50결 외에 다시 4백 결을 더 지급하고, 환포 중에 4분의 3을 정퇴한 것은 아무래도 너무 많은 듯하므로 전에 회계(回啓)한 대로 시행하도록 행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답하였다.

司啓曰，卽見水原留守李益運狀啓，則以爲，當初請災與還布請停之數，實是商度民勢，加減不得者，頃劃下一千八百五十結外，不足災一千二十三結零還布停退之比所請各減一等者，並依前請，準許事，請令廟堂稟旨分付矣，本府田稅，只爲本府經用，有異地部原賦，而惟正之供，增刪至重，不可依所請準劃，略有所剋減，而今又加請，若是申複，災狀民情，實所當念，前劃一千八百五十結外，更以四百結加給，還布之四分三停退，終涉過多，依前回啓施行之意，行會何如，答曰，允。

<비변사등록 204책, 순조 14년 1814년 10월 12일(음)>

사회/윤리·풍속

水原留守 李益運의 狀啓대로 某樣穀을 挪用과 空名帖 3백장을 보내줄 것을 청하다

○ 비변사에서 아뢰기를, “지금 수원유수(水原留守) 이익운(李益運)의 장계를 보니, ‘본부의 곤궁한 백성들을 초봄부터 구휼해야 하는데 진휼해야 할 호구(戶口)가 2만 1천 9백 77구(口)이고, 들어갈 미(米)가 8천 4백여 석이 됩니다. 관동(關東)과 해서(海西)의 곡물 4천 석은 비록 이미 획하하였더라도 오히려 환곡으로 분급하는 데에 넉넉하게 보낼 수 없으므로 어떤 명목의 대미(大米)나 소미(小米)를 막론하고 6천 석을 특별히 가획하고, 공명첩(空名帖) 5백 장(張)도 반하(頒下)하라고 묘당에서 품지하여 분부하게 해 주소서.’ 하였습니다. 수신이 곡물을 청한 것은 지금 기사년의 특례 때문인데, 기사년에는 반드시 도내에 있는 곡물 중에서 편리할 대로 전용(轉用)해서 썼었는데, 지금은 본부에서는 애초에 1포(包)의 속

(粟)도 마련한 것이 없고 완전히 먼 도의 곡물을 수량에 맞추어 청해서 얻고 있으니, 실로 행할 수 없는 일입니다. 더구나 4천의 각 곡물을 1부(府)에 분획(分劃)하고 다른 도에 분배(分排)한 것은 과연 이미 넉넉하고도 후하게 한 것인데, 이것 외에 6천 석의 대미와 소미를 장차 어디에서 더 조처할 수 있겠습니까. 본부의 곡총(穀總)이 지금 비록 점차 줄어들고 있지만 어떤 명목의 곡물을 막론하고 때에 따라 융통한 뒤에 상황을 장문(狀聞)하도록 분부하고, 공명첩 3백 장을 만들어 보내어 환곡과 진휼곡의 경비에 보태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답하였다.

司啓曰，卽見水原留守李益運狀啓，則以爲，本府窮民，當自春初賑救，而應賑之口，爲二萬一千九百七十七，口米容入爲八千四百餘石矣，關東·海西穀四千石雖已劃下，猶不優補於還分，無論某樣大小米，限六千石特爲加劃，空名帖限五百張，亦爲頒下事，請令廟堂稟旨分付矣，守臣請穀，今以己已援例，而己已則必於道內所在之穀，從便移施以用，而今則自本府，初無一包粟拮据，全以遠道穀準數請得，實是行不得者也，況四千各穀之分劃一府，比他道所分排，果爲既優且厚，則此外六千石大小米，將何處更爲措處乎，本府穀總，今雖漸縮，而無論某樣穀，隨時挪用後，形止狀聞之意分付，空名帖三百張成送，俾爲添補還賑之需何如，答曰，允。
<비변사등록 204책, 순조 14년 1814년 10월 21일(음)>

사회/윤리 · 풍속

水原留守 李益運이 요청한 賑資의 사용은 허락하고 外帑庫와 修城庫의 木은 불허하다

비변사에서 아뢰기를, “지난번에 수원유수(水原留守) 이익운(李益運)의 장계로 인하여 해부(該府)의 진곡(賑穀)을 해부의 곡물로 가져다 쓰도록 복계하여 행회하였습니다. 그 장계를 보니, ‘본부에 속한 5개 읍에 있는 남한산성의 향조(餉租) 중에 3천 석과 과천(果川)에 있는 별치미(別置米) 중에 7백 석을 옮겨다 진자(賑資)에 사용하는 것이 합당하니, 모두 획하(劃下)한 외에 탕고(帑庫)의 목(木) 20여 동(同)과 수성고(修城庫)의 목 10여 동은 세월이 오래되어 부패하였으니, 또한 발매(發賣)하여 진자에 보태도록 하였다가 때를 기다려 환작(還作)하도록 묘당에서 품처하게 해 주소서. 그리고 이 밖에 부족한 수량은 모양(某樣)의 공화(公貨)를 막론하고 실제 들어가는 수량에 따라 가져다 쓰게 하고 진휼을 마친 뒤에 등문(登聞)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하였습니다. 5개 읍에 유고해 놓은 향곡은 이미 본부에서 관리하는 것이니 청한 대로 가져다 쓰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두 창고에 유고해 놓은 목은 곧 탕장(帑藏)이고 본래 중요한 것이니, 진휼에 보탬 재원으로 가벼이 의논할 수 없으므로 그대로 두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답하였다.

司啓曰，頃因水原留守李益運狀啓，該府賑穀，以該府穀取用之意，覆啓行會矣，卽見其狀啓，則以爲，本府屬五邑所在南漢餉租中三千石，果川所在別置米中七百石，可合移用於賑資，並爲劃下，外帑庫木二十餘同，修城庫木十餘同，年久腐傷，亦許發賣補賑，待時還作事，請令廟堂稟處，而外此不足之數，無論某樣公貨，從實入取用，待畢賑登聞爲辭矣，五邑留餉，既是本府所管，依所請許令取用，至於兩庫留木，乃是帑藏，自有所重，不可輕議於補賑之需，置之何如，答曰，允。

<비변사등록 204책, 순조 14년 1814년 11월 24일(음)>

사회/윤리 · 풍속

水原의 賑穀에 許劃한 5읍은 尤甚邑이므로 餉租1천석 등으로 減할 것을 청하다

비변사에서 아뢰기를, “방금 수원유수(水原留守)의 장청(狀請)으로 인하여 해부(該府)의 진곡(賑穀)을 해부에 속한 5개 읍에 있는 남한산성의 향조(餉租) 3천 석과 과천(果川)에 있는 별치미(別置米) 7백 석으로 복계하여 획급하도록 하였습니다. 지금 경기감사 박종훈(朴宗薰)의 장계를 보니, ‘수원에 속한 5개 읍은 모두 우심(尤甚)한 본읍(本邑)을 구휼하기에도 오히려 부족할까 염려되는데, 수송은 애초에 의논할 만한 것이 아니므로 수원에 획급할 곡물을 특별히 정지하도록 묘당에서 품지하여 분부하게 해 주소서.’ 하였습니다. 한 부(府)를 진휼할 재원을 위해 5개 읍에 비축해 둔 향곡(餉穀)을 기울이는 것은 이미 근심스러운데, 수원의 환곡과 진곡을 전후로 구획한 바가 간략하게 순차(巡次)를 안배할 수 있을 듯하고, 또 5개 읍의 백성들의 형편은 근 4천 석의 곡물 전 수량을 수원에 이송한다면 각 해읍의 봄이 지난 뒤의 사세는 더욱 달리 변통할 방도가 없게 될 것입니다. 5개 읍의 향조 1천 석과 과천의 별치미 2백 석을 수원에 분획(分劃)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답하였다.

司啓曰，纔因水原留守狀請，該府賑穀，以該府 屬五邑所在南漢餉租三千石，果川所在別置米七百石，覆啓許劃矣，卽見京畿監司朴宗薰狀啓，則以爲，水原屬五邑，俱以尤甚本邑賑救，猶患不足，至於轉輸，初非可議，水原所劃穀，特許還寢事，請令 廟堂稟旨分付矣，爲一府賑救之資，傾五邑儲留 之餉，已涉可悶，而水原還賑之前後所區劃，似可以 從略排比，且五邑民勢，若以近四千石之穀，全數移 送於水原，則各該邑春後事勢，更無從他塗抹之道，以五邑餉租一千石，果川別置米二百石，分劃水原 何如，答曰，允。

<비변사등록 204책, 순조 14년 1814년 11월 27일(음)>

사회/윤리 · 풍속

內下한 銀子와 丹木, 胡椒를 수송의 폐단을 고려하여 돈으로 보낼 것을 청하다

비변사에서 아뢰기를, “전교하기를 ‘진휼을 설행할 제도(諸道)에 대내(大內)에서 은자(銀子) 5천 냥, 단목(丹木) 8천 근(斤), 후추[胡椒] 5백 두(斗)를 내려주어서 진자(賑資)에 보태 쓰도록 묘당에서 잘 알아 거행하게 하라.’ 고 명하셨습니다. 방금 별도로 관문(關文)으로 행회하고 분배(分排)하여 획송(劃送)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진휼을 설행할 제도는 아직 기구(飢口)를 다 뽑지 못하여 많고 적은 수량을 비록 억지로 나누기 어렵겠지만 만약 그 재해를 만난 정도는 또한 파악한 것이 없지 않아, 기사년(己巳年: 순조9, 1809)과 신미년(辛未年: 순조11, 1811)의 전례를 참고하여 대략 등차(等差)하였습니다. 영남(嶺南)은 은자 1천 2백 냥, 단목 1천 7백 근, 후추 1백 두를, 호남(湖南)은 은자 1천 2백 냥, 단목 1천 7백 근, 후추 90두를, 경기(京畿)는 은자 1천 냥, 단목 1천 7백 근, 후추 90두를, 호서(湖西)는 은자 8백 냥, 단목 1천 2백 근, 후추 80두를, 북관(北關)은 은자 2백 냥, 단목 4백 근, 후추 30두를, 관동(關東)은 은자 2백 냥, 단목 4백 근, 후추 30두를, 수원(水原)은 은자 1백 냥, 단목 2백 50근, 후추 20두를, 광주(廣州)는 은자 1백 냥, 단목 2백 50근, 후추 20두를, 강화(江華)는 은자 1백 냥, 단목 2백 50근, 후추 20두를, 송도(松都)는 은자 1백 냥 단목 1백 50근, 후추 20두를 지금 내려 보내야 하는데, 다만 수송하는 것이 폐단이 되고 환무(換買) 또한 어렵습니다. 전에 각 도에서 진휼을 설행할 때에 후추와 단목을 내려 보내라는 명이 있으면 번번이 호조에서 본가(本價)로 절가해서 편리할 대로 나누어 보냈습니다. 이번에도 이 전례에 따라 가전(價錢)으로 수량에 비추어 마련하고 은자도 후추나 단목의 예에 따라 일체 돈으로 환무하여 제때에 내려 보내도록 하고, 이어 이러한 뜻으로 해조에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답하였다.

司啓曰，傳曰，設賑諸道，當內下銀子五千兩，丹木八千斤，胡椒五百斗，俾爲補賑之資，令廟堂知悉舉行事命下矣，今方別關行會，分排劃送，而第今設賑諸道，未盡抄飢，多寡之數雖難強分，而若其遇災淺深，則亦不無領略者，參考己巳·辛未已例，略存等差，嶺南，銀子一千二百兩，丹木一千七百斤，胡椒一百斗，湖南，銀子一千二百兩，丹木一千七百斤，胡椒九十斗，京畿，銀子一千兩，丹木一千七百斤，胡椒九十斗，湖西，銀子八百兩，丹木一千二百斤，胡椒八十斗，北關，銀子二百兩，丹木四百斤，胡椒三十斗，關東，銀子二百兩，丹木四百斤，胡椒三十斗，水原，銀子一百兩，丹木二百五十斤，胡椒二十斗，廣州，銀子一百兩，丹木二百五十斤，胡椒二十斗，江華，銀子一百兩，丹木二百五十斤，胡椒二十斗，松都，銀子一百兩，丹木一百五十斤，胡椒二十斗，今當下送，而但轉輸爲弊，換質亦難，在前各道設賑時，若有椒·木下送之命，則輒自戶曹，折本價從便分送矣，今亦依此例，以價錢照數磨鍊，銀子亦依椒木例，一體以錢換質，以爲及時下送之地，仍以此意，分付該曹何如，答曰，允。

<비변사등록 204책, 순조 14년 1814년 12월 21일(음)>

사회/윤리 · 풍속

水原府의 災結 수량 및 還餉穀의 收捧 方法에 對해 아뢰다

○ 비변사에서 아뢰기를, “수원유수 서영보(徐榮輔)의 재실장계(災實狀啓)를 보니, 농사가 재해를 입은 상황을 갖추어 진달하고, 이어 말하기를, ‘지부(地部: 호조)에서 획급한 재(災) 30결(結) 외에 부족한 재 6백 23결 62부(負) 4속(束)을 특별히 더 획급하고, 신환(新還)과 구환(舊還)을 한꺼번에 모두 독촉하는 것은 백성을 품어 보호해 주는 방도가 아니므로 정묘년(丁卯年: 순조7, 1807), 무진년(戊辰年: 순조8, 1808), 기사년(己巳年: 순조9, 1809)에 정퇴(停退)한 각곡(各穀)과 기사년에 잉미봉(仍未捧)한 각곡은 모두 잉정(仍停)하고, 갑술년에 정퇴한 것과 잉미봉한 각곡은 모두 3분의 2를 잉정하며, 노비를 추쇄하고 빚을 징수하는 것을 내년 가을까지 방색하도록 묘당에서 품지하여 분부하게 해 주소서.’ 하였습니다. 본부는 바닷가에 위치하여 편파하게 해일의 재해를 많이 입었습니다. 호조에서 떼어 준 재결이 비록 각 면(面)에 고르게 나눠 주기 어려우나 이번에 청한 재결은 아무래도 지나치게 많은 듯하니, 사목(事目) 외에 5백 23결 영을 특별히 더 획급해야 하겠습니다. 환향(還餉)은 법의(法意)가 매우 엄한데 정묘년 이후로 정퇴하고 미봉한 수량이 너무 많아 해마다 수습할 수 없는 형세가 있습니다. 작년과 금년에 다행히도 연이어 풍년이 들어 각 연도의 구환을 점차 수봉(收捧)할 수 있게 되었으나 한꺼번에 모두 독촉하는 것은 백성 사정에 필시 어렵게 여길 것이니, 정묘년과 무진년에 정퇴하고 미봉한 각곡은 청한 대로 잉정하고, 기사년에 정퇴하고 미봉한 것은 연조(年條)가 조금 가깝고 곡물 수량이 가장 많으니 3분의 1을 수봉하게 하며, 갑술년에 정퇴하고 미봉한 것은 절반을 수봉하게 하고, 노비의 추쇄와 빚의 징수를 방색하는 일은 그대로 시행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답하였다.

司啓曰，卽見水原留守徐榮輔災實狀啓，則備陳穡事災損之狀，仍以爲，地部劃下災三十結外，不足災六百二十三結六十二負四束，特許加劃，新舊還之一時竝督，非所以懷保之道，丁卯·戊辰·己巳停退各穀，及己巳仍未捧各穀，竝爲仍停，甲戌停退與仍未捧各穀，竝三分二仍停，推奴徵債，限明秋防塞事，請令廟堂稟旨分付矣，本府以濱海之地，偏被浸溢之災，地部所劃之結，雖難均俵於各面，今此所請災結，終涉過多，事目外五百二十三結零，特爲加劃，還餉法意甚嚴，而丁卯以後停退未捧，厥數太多，年年有莫可收拾之勢，昨今兩年，幸值連登，各年舊還，可以漸次收捧，而一時竝督，民情必以爲難，丁卯·戊辰停退未捧各穀，依所請仍停，己

已停退未捧，則年條稍近，穀數最多，三分一收捧，甲戌停退未捧，折半收捧，推徵防塞，依施何如，答曰，允.

<비변사등록 205책, 순조 16년 1816년 10월 10일(음)>

사회/윤리 · 풍속

水原 本府 等 還餉의 加分을 청하다

○ 비변사에서 아뢰기를, “수원유수(水原留守) 임한호(林漢浩)의 장계를 보니, ‘본부(本府)의 환향(還餉)은 본래 매우 적은데다 또 대부분 잉정(仍停)하여 원충(元摠)이 감축되었으니, 이번 농사철에는 순차(巡次)를 이어 분급(分給)하기 어려울 듯합니다. 본부의 유고곡(留庫穀) 중에 조(租)·미(米)·태(太)를 합한 2천 88석과 속읍(屬邑)인 안산(安山)·시흥(始興)·과천(果川)의 향조(餉租) 1천 9백 83석을 특별히 가분(加分)하도록 묘당에서 품지(稟旨)하여 분부하게 해 주소서.’ 하였습니다. 본부에서 연래(年來)로 환충(還摠)이 감소된 것은 참으로 장계의 내용대로입니다. 지금 농사철을 만나 궁핍한 백성들이 경작할 재원이라고는 오로지 관(官)의 환곡만 믿고 있는데, 곡물이 적어 순차를 안배하여 분급하는 것을 계속하지 못한다면 백성들의 힘을 풀어주며 농사를 권장할 수 없는데 사정이 이와 같으니 변통이 없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본부 및 속읍의 환향을 모두 장계에서 청한 수효대로 가분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답하였다.

司啓曰，卽見水原留守林漢浩狀啓，則以爲 本府還餉，自來尠少，且多仍停，元摠減縮，當此農節，巡分難繼，本府留庫中，租米太合二千八十八石，屬 邑安山·始興·果川餉租一千九百八十三石，特許加 分事，請令廟堂稟旨分付矣，本府年來還摠減少，誠如狀辭，今值農節，窮民耕耘之資，專仰官糶，而若 患數少，排巡不繼，則無以紓民力而勸農務，事情如此，不可無闊狹，本府及屬邑還餉，竝依狀請數爰，許 令加分，何如，答曰，允.

<비변사등록 206책, 순조 17년 1817년 04월 20일(음)>

사회/윤리 · 풍속

水原府의 災結을 加劃하는 일 등에 대해 아뢰다

비변사에서 아뢰기를, “수원유수(水原留守) 임한호(林漢浩)의 재실장계(災實狀啓)를 보니, 농사가 재해로 인해 손실을 본 상황을 갖추어 진달하고, 이어 말하기를, ‘지부(地部:호조)에서 떼어 준 채결 30결(結) 외에 부족한 채결 7백 60결 34부(負) 5속(束)을 특별히 더 떼어 주도록 하고, 각 연도의 구환(舊還)은 모두 독촉하기 어려운 점이 있으니 정묘년(丁卯年:순조7, 1807), 무진년(戊辰年:순조8, 1808), 기사년(己巳年:순조9, 1809), 갑술년(甲戌年:순조14, 1814)의 정퇴(停退) 및 기사년에 그대로 미봉(未捧)한 각 곡물을 모두 잉정(仍停)하고, 갑술년에 그대로 미봉한 각 곡물의 3분의 2를 잉정하며, 노비를 추쇄하고 빚을 징수하는 일은 내년 가을까지 막아주도록 묘당(廟堂)에서 품지(稟旨)하여 분부하게 해 주소서.’ 하였습니다. 본부(本府)는 바닷가 지역으로서 대부분 재해로 인한 피해를 입었으니, 지부에서 떼어 준 것을 비록 고르게 나누어주기 어려우나 이번에 청한 것은 아무래도 지나치게 많은 듯하므로 사목(事目) 외에 5백 결을 특별히 더 떼어 주어야겠습니다. 환향(還餉)은 법의(法意)가 매우 엄한데, 정묘년 이후로 정퇴하고서 미봉한 각 곡물을 지금까지 전부 거두어 결말짓지 못한 것은 적정(糶政)을 생각하면 매우 걱정스럽습니다. 금년 농사는 겨우 점차 수봉(收捧)할 정도인데 한꺼번에 모두 독촉하는 것은 민력(民力)을 생각해야 하니, 정

묘년에서 기사년까지 각 연도의 정퇴하고서 미봉한 것은 모두 우선 인정하고, 갑술년의 정퇴조는 절반을 수봉하게 하고, 갑술년에 그대로 미봉한 것은 조령(朝令)으로 인하여 정퇴한 것과는 차이가 있으니 모두 전 수량을 수봉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노비를 추쇄하고 빚을 징수하는 것을 막는 일은 그대로 시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희한다고 답하였다.

司啓曰，卽見水原留守林漢浩災實狀啓，則 備陳穡事災損之狀，仍以爲地部劃下災三十結外，不足災七百六十結三十四負五束，特許加劃，各年 舊還，有難竝督，丁卯·戊辰·己巳·甲戌停退及己巳仍 未捧各穀，竝爲仍停，甲戌仍未捧各穀三分二仍停，推奴徵債，限明秋防塞事，請令廟堂稟旨分付矣，本府以濱海之地，多被災損，地部所劃，雖難均依，今 此所請，終涉過多，事目外五百結，特爲加劃，還餉法 意甚嚴，而丁卯以後停·未捧各穀，至于今未盡收殺 者，言念糴政，極爲悶然，今年穡事，僅可以漸次收捧，而一時竝督，民力宜念，丁卯至己巳各年停退未捧，竝姑仍停，甲戌停退條，使之折半收捧，甲戌仍未捧，此與因朝令停退有異，竝令全數收捧，推徵防塞，依施何如，答曰，允。

<비변사등록 206책, 순조 17년 1817년 10월 04일(음)>

사회/윤리 · 풍속

水原留守 林漢浩의 狀啓대로 春窮期에 특별히 加分하여 줄 것을 청하다

○ 비변사의 계사에, “수원유수(水原留守) 임한호(林漢浩)의 장계를 보니, 회부(會付)된 환곡의 총 수량으로는 배순(排巡:배정하여 돌림)할 수 없습니다. 보릿고개에 백성의 실정은 바로 황급하고 민망하니 본부의 환향(還餉) 유고(留庫) 가운데에서 벼와 쌀·콩 합계 2천 8백 84석과 읍에 속한 향조(餉租)의 합계 2천 6백 75석 영(零)을 특별히 가분(加分)하도록 묘당에서 품지하여 분부하기를 청하였습니다. 흉년이 겹친 나머지 보리가 익기에는 여전히 더디니, 이때의 농량(農糧)은 마땅히 관조(官糶)에 의뢰해야 합니다. 그리고 신청한 수량도 과다하지 않으니 장계에서 청한 대로 가분하라고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희한다고 답하였다.

司啓辭，卽見水原留守林漢浩狀啓，則以爲 會付還摠，無以排巡，麥嶺民情，政在遑悶，本府還餉 留庫中，粗米太合二千八百八十四石，屬邑餉組合 二千六百七十五石零，特許加分事，請令廟堂，稟旨分付矣，荐歉之餘，麥熟尙遲，此時農糧，宜藉官 糶，而所請之數，亦不過多，依狀請加分之意，分付何 如，答曰允。

<비변사등록 207책, 순조 18년 1818년 05월 01일(음)>

사회/윤리 · 풍속

水原留守의 요청대로 災結 5백결을 더 劃給해 주고 甲戌年 舊還은 절반을 징수하게 하다

○ 비변사의 계사에, “수원유수(水原留守) 한치응(韓致應)의 재실(災實)에 관한 장계를 보면, 농사의 재해 상황을 갖추 설명하고, 이어서 호조에서 획하(劃下)한 재결 20결 외에 부족한 재결이 7백 19결 96부 7속이니 특별히 더 획급하도록 하고, 각 해의 묵은 환자를 아울러 독촉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으니 정묘년(丁卯年)·무술년(戊戌年)·기사년(己巳年)에 정퇴한 것과 기사년에 그대로 수봉치 못한 각종 곡물을 아울러 전액 정퇴하며 갑술년에 정퇴한 것 및 그대로 수봉치 못한 각종 곡식을 아울러 3분의 2를 그대로 정퇴하고, 노예를 추쇄(推刷)하고 채무(債務)를 받는 일을 내년 가을을 기한으로 방지하도록 묘당에서 품지하여 분부하기를 청한다 하였습니다. 본부(本府)의 농사는 처음에는 한 달에 걸친 가뭄과 늦게는

열흘이 넘는 장마가 이어졌기 때문에 이양(移秧)이 조금 늦어졌고 물에 잠긴 곳이 많았습니다. 이어 7월 이후 부터는 가을 햇볕이 연이어 내리 쏘이고 서리가 조금 늦어져 비록 고르게 익을 수는 없었지만 역시 조금 풍년이 들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재결을 청한 것은 자못 과다하다고 하겠으니 원래 획급한 것 외에 5백결을 특별히 더 획급하고 묵은 환자의 경우 조금 풍년이 되었다고 하였으니 일례로 정퇴를 청하는 것은 환곡과 향곡(餉穀)을 중히 여기는 뜻이 아닙니다. 수봉치 못한 것은 더욱 정퇴와는 다르니 기사년과 갑술년에 수봉치 못한 것을 전액 징수하게 하겠습니다. 묵은 환자 각 해에 나누어 수봉하면 한갓 곡부(穀簿)만을 문란하게 할 뿐이니, 먼저 근년 것부터 차례차례 바치도록 하면 백성들은 포흠을 마칠 수 있어 점차 힘을 펼 수 있는 방도가 있을 것입니다. 갑술년에 정퇴한 것은 절반을 징수하고 그 나머지 각 해의 것은 우선 그대로 정퇴하며 추노와 징채의 정지는 다른 예에 의거하여 시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답하였다.

司啓辭，卽見水原留守韓致應，災實狀啓，則 備陳穡事災損之狀，仍以爲地部劃下災二十結外，不足災七百十九結九十六負七束，特許加劃，各年 舊還，有難竝督，丁卯戊戌己巳停退及己巳仍未捧 各穀，竝全數仍停，甲戌停退及仍未捧各穀，竝三分 二仍停，推奴徵債限明秋防塞事，請令廟堂，稟 旨分付矣，本府穡事，始因跨朔之旱，晚有浹旬之澇，秧役差進(遲)，水沈間多，乃自七月以後，秋陽連曝，霜信 差退，雖不得均熟，亦可謂稍登，今此請災，殊涉過多，元劃外五百結，特爲加劃，至於舊還，則既云稍登，一 例請停，有非重還餉之意，未捧尤與停退有異，己巳 甲戌未捧，使之全數收捧，舊還則分排各年而捧之，徒致穀簿之紊亂，先自近年條而次次責納，民可以 了逋，而漸有紓力之道，甲戌停退，折半收捧，其餘各 年條，姑爲仍停，推徵防塞，依他例施行，何如，答曰 允.

<비변사등록 207책, 순조 18년 1818년 10월 11일(음)>

사회/윤리 · 풍속

水原留守 韓致應의 요청대로 還餉 부족으로 留庫穀과 南漢餉穀의 加分을 허락하다

비변사에서 아뢰기를, “수원유수 한치응(韓致應)의 장계를 보니, 본부(本府)의 환곡과 향곡은 원래부터 적은데다 또 보리 흉작을 맞이해서 종자와 양식이 곤란하니, 본부의 환곡과 향곡의 유고(留庫) 가운데에서 벼·쌀·콩 합계 4천 6백 48석 영(零)과 속읍(屬邑)에 있는 남한(南漢)의 향곡으로서 벼 2천 4백 11석 영(零)을 특별히 가분하도록 묘당에서 품지하여 분부하기를 청한다 하였습니다. 환곡을 순차에 따라 나누어 줄 수 없어 농사에 양식을 이어갈 수 없으니 백성들의 사정은 급박합니다. 분급과 유고는 일정한 법이긴 하나 형세 상 무턱대고 지키기 어렵습니다. 본부(本府)의 환곡과 향곡 및 속읍의 향곡인 벼를 장계에서 청한 수요대로 가분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답하였다.

司啓曰，卽見水原留守韓致應狀啓，則以爲 本府還餉，自來尠少，且值麥荒，種糧艱乏，本府還餉 留庫條中，租·米·太合四千六百四十八石零，屬邑所 在南漢餉租二千四百十一石零，特許加分事，請令 廟堂稟旨分付矣，還未排巡，農不繼糧，民情政在 渴悶，分留常法，勢難膠守，本府還餉，屬邑餉租，依狀 請數爰，許令加分何如，答曰，允.

<비변사등록 208책, 순조 19년 1819년 04월 14일(음)>

사회/윤리 · 풍속

水原留守 韓致應의 요청대로 부족한 穀食 2650石 加分을 허락하다

○ 비변사에서 아뢰기를, “수원유수 한치응(韓致應)의 장계를 보면, 가뭄이 오래 계속되어 보리가 흉작이어서 백성들의 정서가 황급(惶汲)한데다 비가 온 뒤 이양(移秧)을 하고 있으나 양식을 이을 대책이 없습니다. 유고(留庫)된 것 가운데에서 벼·쌀·콩 합계 2천 6백 50 석을 다시 가분하도록 묘당에서 품처하기를 청한다 하였습니다. 분급과 유고에 관한 법의 뜻이 비록 중요하지만 한창 이양을 할 때에 백성들의 정서가 이와 같으니 평상 규례를 고집하기는 어렵습니다. 장계에서 청한 대로 시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답하였다.

司啓曰，卽見水原留守韓致應狀啓，則以爲 旱久麥歉，民情惶汲，雨餘移秧，繼糧沒策，留庫條中，粗米太合二千六百五十石，更許加分事，請令廟堂 稟處矣，分留法意雖重，當此移秧方張之時，民情既 如此，則有難膠守常例，依狀請施行何如，答曰，允。

<비변사등록 208책, 순조 19년 1819년 05월 20일(음)>

사회/윤리 · 풍속

水原留守 韓致應의 災實狀啓에 대해 回啓하다

○ 비변사에서 아뢰기를, “수원유수 한치응(韓致應)의 재실장계(災實狀啓)를 보면 농사에 입은 재해의 손실 상태를 갖추 진달하고 이어 호조에서 획급한 재결(災結) 40결 외에 부족한 재결 9백 47결 71부를 특별히 추가로 획급하도록 하고 기사년(己巳年:순조9, 1808)과 갑술년(甲戌年:순조14, 1814)에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한[仍未捧] 각 곡식의 합계가 3천 1백 56석 영(零)이 되는데, 이와 같은 백성들의 형세에 신환(新還)도 징수하기가 어려운데 묵은 환자를 아울러 징수할 길이 없으니 특별히 그대로 정퇴하도록 하며 노비(奴婢)를 추쇄하고 밭 받는 것을 내년 가을까지 기한으로 막는 일도 아울러 묘당에서 품지하여 분부하기를 청한다 하였습니다. 본부(本府)의 농사는 처음에는 이른 가뭄이 한 달이 넘게 끝났기 때문에 모내기가 조금 늦어졌고 마지막에는 장마가 열흘씩이나 끌어 물에 침수된 곳이 많은데, 8월 이후에는 날씨가 자못 순조롭고 서리도 조금 늦어져 비록 고르게 익지는 않았지만 역시 흉년은 면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재결을 청한 것은 자못 과다하니 원래 획급한 것 외에 5백결을 특별히 추가로 주고 구환(舊還)에 있어서는 지난번의 탕감이 전에 없는 혜택에서 나왔으며 받아들이지 못한 것은 또 정퇴와 다른데, 어려움 없이 위에 보고하고 전액 정퇴를 청한 것은 법의(法意)를 생각해 보면 참으로 극히 온당하지 못하니 당해 수신(守臣)을 추고해야겠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형세가 마련하기 어려움을 알았으니 조정하는 정사(政事)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기사년에 받아들이지 못한 것은 우선 그대로 정퇴(停退)하고, 갑술년의 것은 전량을 수봉하도록 하며 노비(奴婢)를 추쇄하고 밭 받는 것을 막는 일은 이미 전례가 많으니 허시(許施)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답하였다.

司啓曰卽見水原留守韓致應災實狀啓，則 備陳穡事災損之狀，仍以爲地部劃下災四十結外，不足災九百四十七結七十一負特許加劃，己巳甲戌仍未捧各穀，合爲三千一百五十六石零，而以若民勢，新還尙難，辦納舊條，無以竝徵，特許仍停，推奴 徵債，限明秋防塞事，竝請令廟堂稟旨分付矣，本 府穡事，始因早早之跨朔，秧役差遲，終有晚潦之浹 旬，水沈間多，而八月以後，日候頗調，霜信稍退，雖不 得均熟，亦可謂免歉，今此請災，殊涉過多，元劃外五 百結，特爲加劃，至於舊還，則向來蕩減，旣出曠絕之 惠澤，而未捧，又與停退有異，則無難登聞，盡數請停者，揆以法意，誠極未安，該守臣推考，旣知民勢之 難辦，則宜有闊狹之政，己巳未捧條，姑爲仍停，甲戌 條使之全數收捧，推徵防塞，旣多已例，許施何如，答曰，允。

<비변사등록 208책, 순조 19년 1819년 09월 16일(음)>

사회/윤리 · 풍속

水原留守가 各道穀 見縮條의 代劃을 청하니 海西 元賑穀 등을 劃給해 줄 것을 청하다

○ 비변사에서 아뢰기를, “수원유수 한치응(韓致應)의 보고를 보면, 본부에서 관리하는 각도의 곡식이 줄어든 것을 획급하도록 청하는 것은 연례가 되었습니다. 금년에 부족한 모조 1천 2백 59석 영(零)을 수량에 맞추어 대신 획급하여 때에 맞게 배정하여 사용하도록 청한다 하였습니다. 본부의 수용(需用)은 항상 부족한 것이 걱정이요, 매년 대신 획급하는 것이 전례가 되었습니다. 해서(海西)의 원진(元賑)·사진(私賑)·자비(自備)로 스스로 비축한 것 등 곡식 가운데에서 쌀로 환산하여 1천 2백 59석 영(零)을 획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답하였다.

司啓曰, 卽見水原留守韓致應所報, 則以爲本 府旬管各道穀見縮條請劃, 便成年例, 今年不足耗一千二百五十九石零, 準數代劃, 及時排用爲辭矣, 本府需用, 常患不足, 每年代劃, 便成已例, 以海西元 賑·私賑自備等穀中, 折米一千二百五十九石零劃 給何如, 答曰, 允.

<비변사등록 208책, 순조 19년 1819년 09월 24일(음)>

사회/윤리 · 풍속

種穀과 糧穀이 부족한 水原府에 還穀을 加分해 줄 것을 청하다

비변사에서 아뢰기를, “수원유수 한치응(韓致應)의 장계를 보니, ‘회부(會付)한 환곡의 총량이 본래부터 넉넉하지 않은데다, 농사일이 바야흐로 한창인데, 종자와 양식이 다 떨어저가므로 백성들의 사정이 황급하나 배순(排巡)을 잇달 길이 없으니 본부 환곡의 유고조(留庫條) 가운데 벼와 쌀과 콩을 합쳐 4천 8백 94석과 속읍에 있는 남한산성의 향곡(餉穀)인 벼 3천 7백 37석 영(零)을 특별히 가분(加分)해 주도록 묘당에서 품지하여 분부하게 하소서.’ 하였습니다. 곡식장부가 본래부터 넉넉하지 않고 가분(加分)은 이미 연례가 되다시피 하였으니, 장계에서 청한 대로 허시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답하였다.

司啓曰, 卽見水原留守韓致應狀啓則以爲, 會付還摠, 自來不敷, 而見今農務方殷, 種糧垂乏, 民 情遑汲, 繼巡無路, 本府還穀留庫條中租米太合四 千八百九十四石及屬邑所在南漢餉租三千七百 三十七石零, 特許加分事, 請令廟堂稟旨分付矣, 穀簿本自不敷, 加分已成年例, 依狀請許施何如, 答曰, 允.

<비변사등록 209책, 순조 20년 1820년 04월 26일(음)>

사회/윤리 · 풍속

右議政 南公轍이 全羅道 左水營 등지의 皮牟와 米牟를 作租하는 문제 등을 아뢰다

○ 9월 15일 약방의 입진에 대신과 비국 당상을 인견하여 입시하였을 때에 우의정 남공철(南公轍)이 아뢰기를 (….) 또 아뢰기를, “광주 전 유수(廣州前留守) 정만석(鄭晩錫)과 수원유수(水原留守) 김시근(金蓍根)이 보고한 것을 보니, ‘광주에서 구관하는 관서와 호서곡의 축이 난 것과 기묘년(己卯年:순조19, 1819)의 부족한 모(耗) 쌀로 3백 20석 영(零)과 수원에서 구관하는 각도 곡식의 축이 난 것과 금년의 부족한 모 1천 2백 59석 영(零)을 수량에 맞추어 대신 획급하여 때에 맞추어 분배해 쓰도록 해주십시오.’ 하였습니다. 두 영(營)의 지방(支放)이 줄어든 것은 급대하지 않을 수 없고 또 연례가 되었으니, 호남의 사비곡(私備穀)과 영남곡 및 을해년(乙亥年:순조15, 1815)의 진여곡(賑餘穀) 가운데에서 도신더러 형편대로 분배하여 두 영에 획급하도록 해도에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그리하라 하였다. (…)

今九月十五日藥房入診，大臣備局堂上引見 入侍時，右議政南所啓 (…) 又所啓，即見廣州前留守鄭晚錫·水原留守金 蒼根所報則以爲，廣州句管關西·湖西穀見縮條，己卯不足耗米三百二十石零，水原句管各道穀見縮條，今年不足耗一千二百五十九石零，準數代劃，及 時排用爲辭矣，兩營支放之減縮者，不可不給代，且 成年例，就湖南私備穀嶺南穀及乙亥賑餘穀中，令 道臣從便分排，劃給兩營之意，分付該道何如，上 曰，依爲之。(…)

<비변사등록 209책, 순조 20년 1820년 09월 15일(음)>

사회/윤리·풍속

水原留守 金蒼根의 災實 分等 狀啓에 대한 보고와 대책을 논의하다

○ 비변사에서 아뢰기를, “수원유수(水原留守) 김시근(金蒼根)의 재실장계를 보니, ‘호조에서 획급한 재결 20결 외에 부족한 재결 5백 66결 30부를 특별히 더 획급하고, 기사년과 갑술년에 연속 받지 못한 각종 곡식을 지금의 백성 형편으로는 아울러 독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니, 기사년의 것은 전량을 인정하고 갑술년 것은 3분의 2를 정퇴하며, 노비를 추쇄하고 빚을 받는 것을 내년 가을까지 막는 일을 모두 묘당에서 품지하여 분부하게 하소서.’ 하였습니다. 본부(本府)는 바닷가로 땅이 넓기 때문에 유래한 재탈(災顛)이 없지 않으나 금년의 농사 상황은 대체로 기내(畿內)의 여러 고을과 함께 골고루 크게 풍작인데 요청한 재결은 근래의 흉년과 서로 대등한 것은 조금 많다는 혐의가 없지 않으니, 원래 획급한 것 이외에 2백 50결을 특별히 더 획급하며 구환을 매년 인정을 청하는 것은 재해를 입은 백성들을 위한 부득이 한 일이나, 지금 다행히 농사가 풍작이니 이럴 때에 받아들이는 것은 포흠을 끝내고 형편을 펴주는 도리에 방해롭지 않고, 더구나 미봉은 정퇴와는 다르며 전체 수량도 그리 많지 않으니, 기사년과 갑술년 두 해에 받지 못한 것은 전량을 받아들이게 하고, 노비를 추쇄하고 빚을 받는 것을 막는 일은 다른 예에 따라 허시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답하였다.

司啓曰，即見水原留守金蒼根，災實狀啓則 以爲，地部劃下災二十結外，不足災五百六十六結三十負，特許加劃，己巳·甲戌仍未捧各穀，以今民勢，有難竝督，己巳條全數仍停，甲戌條三分二停退，推 奴徵債，限明秋防塞事，並請令廟堂稟旨分付矣，本府以濱海土曠之故，不無流來災顛，而今年農形，概與畿內諸邑，均爲大登，則所請災結之與近來歉 歲相等者，不無稍多之嫌，元劃外二百五十結，特爲 加劃，舊還之每請仍停，乃是爲災民不得已之舉，今 幸年事豐稔，迨此收捧，不害爲了逋紓力之道，況未 捧異於停退，都數亦不過多，己巳·甲戌兩年未捧條，使之全數收捧，推徵防塞，依他例許施何如，答 曰，允。

<비변사등록 209책, 순조 20년 1820년 10월 13일(음)>

사회/윤리·풍속

水原留守 李憲琦의 上疏에 대해 비답하다

수원부유수 이헌기(李憲琦)의 소(疏)에 답하기를, “소를 보고 모두 잘 알았다.情理(情理)가 이와 같으니 특별히 체차토록 하겠다.” 하였다.

答水原留守李憲琦疏曰，省疏具悉，情理如此，特 爲許遞。

<비변사등록 210책, 순조 22년 1822년 11월 24일(음)>

사회/윤리·풍속

留庫穀을 水原府에 加分할 것을 청하다

○ 비변사에서 아뢰기를, “수원유수(水原留守) 김시근(金蓍根)의 장계를 보면, 이 농사철을 당하여 순차로 나누어주는 것을 계속하기 어려우니, 본부(本府) 환향(還餉)의 유고(留庫) 가운데 벼·쌀·콩 3천 8백 41석 및 속읍(屬邑)에 소재한 남한산성(南漢山城)의 성향(城餉) 벼 4천 26석을 특별히 가분하도록 묘당에서 품지하여 분부하기를 청한다 하였습니다. 본부 및 속읍에 가분(加分)하기를 청한 것은 이미 해마다 반복되는 이례(已例)인데, 보릿고개에 식량이 어려운 것이 이제 또 매우 급박하니 청한 대로 시행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답하였다.

司啓曰, 卽見水原留守金蓍根狀啓, 則以爲 當此農節, 巡分難繼, 本府還餉留庫中租米太三千八百四十一石及屬邑所在南漢餉租四千二十六 石特許加分事, 請令廟堂稟旨分付矣, 本府及屬邑加分之請, 已成年復年已例, 而麥嶺艱食, 今又切 急, 依所請許施何如, 答曰, 允.

<비변사등록 210책, 순조 22년 1822년 05월 11일(음)>

사회/윤리·풍속

入診에 領議政 金載瓚이 湖南과 水原의 租還 문제를 논의하다

(…) 또 아뢰기를, “전라감사 홍식주(洪奭周)의 장계를 보면, 광주(光州) 등 10개 고을의 보리농사가 이미 흉작이고, 조환(租還)이 본래 넉넉지 않으니 적당하게 환작(換作)하는 것이 실로 양쪽이 다 편합니다. 상진곡(常賑穀) 및 을해년(乙亥年:순조15, 1815)의 진휼 뒤에 남은 피모(皮牟) 1만 5천 석을 특별히 작조(作租)하게 하여 올 가을에 가서 모곡을 아울러 봉상(捧上)하게 하기를 바란다 하였습니다. 수원유수(水原留守) 김시근(金蓍根)의 장계에, 본부(本府)의 모환(牟還) 2천 4백 여 석을 양맥(兩麥:밀과 보리, 혹은 가을보리와 봄보리)이 익지 않아 준봉(準捧)하기 어려우니 3분의 1 한하여 작조하게 하여 가을 뒤에 수봉하기를 청한다 하였습니다. 호남 및 수원의 모농(牟農:보리농사)이 이제 과연 흉작이 들어 백성들의 형세로는 변통이 있어야 하겠는데,海道(該道)와 해부(該府)의 조환은 원래 넉넉지 못하니 조(租)로 바꾸어 가을에 거두는 것이 공과 사에 실은 모두 편의하니, 아울러 장계에서 청한 대로 시행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그리하라 하였다. (…)

(…) 又所啓, 卽見全羅監司洪奭周狀啓, 則以爲 光州等十邑麥農, 既已失稔, 租還本自不敷, 量宜換 作, 實爲兩便, 以常賑及乙亥賑餘皮牟一萬五千石, 特許作租, 待今秋竝耗捧上, 水原留守金蓍根狀 啓, 本府牟還二千四百餘石, 兩麥未登, 有難准捧, 限 三分一許令作租, 秋後收捧爲請矣, 湖南及水原牟 農, 今果失稔, 民勢合有通變, 而該道該府租還, 元自 不敷, 換租秋捧, 公私實爲兩便, 竝依狀請許施何如, 上曰, 依爲之.(…)

<비변사등록 210책, 순조 22년 1822년 05월 25일(음)>

사회/윤리·풍속

水原留守 李憲琦의 災實狀啓에 따라 올해 尤甚邑의 還餉을 停退할 것 등을 청하다

○ 비변사에서 아뢰기를, “수원유수(水原留守) 이헌기(李憲琦)의 재실 장계를 보면, 우심(尤甚)이 19개 면이고, 지차(之次)가 16개 면이고 초실(稍實)이 5개 면입니다. 호조에서 획정한 재결 20결 외에 1천 8백 67결 14부 6속이 부족하니 특별히 추가로 획급하고, 수봉해야 할 환향 중에서 우심면의 우심호(戶)는 3분의 2를, 우심면의 지차호와 지차면의 우심호는 절반을, 지차면의 지차호와 초실면의 우심호는 3분의 1을 정퇴하고, 신포(身布)는 절반을

대전(代錢)하고, 정퇴한 것 외의 수봉해야 할 환향은 상당곡(相當穀)으로 3분의 1은 준절하여 대봉하되, 내년 가을에 본색으로 환작(換作)하고 노비의 추쇄(推刷)와 징채(徵債)를 정지하도록 아울러 묘당에서 품지하여 분부하기를 청한다 하였습니다. 경기(京畿) 지역의 흉년든 상황을 보면 연읍(沿邑)이 심하고 본부가 또 연로 중에 가장 심합니다. 면과 리를 세 등급으로 분류하여 이와 같이 조목별로 설명한 수신(守臣)의 해아림은 모두 타당한 점이 있으니, 그대로 시행하겠습니다. 재실(災實)의 형편이 이와 같다면 청한 결수(結數)가 이와 같이 많은 것도 당연한 형세이므로 지금 억지로 더 삭감할 필요는 없으니, 사목 외에 1천 8백 67결 영(零)을 청한 대로 획급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이 같은 백성들의 형편으로는 환향을 본색(本色)으로 준봉(準奉)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정사이니, 조금이나마 정퇴(停退)나 대납(代納)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심 면·리는 절반을, 지차 면·리는 3분의 1을 특별히 정퇴하도록 하고, 수봉해야 할 분량 중에서 역시 청한 분수(分數)에 의해 준절하여 대봉하게 하며, 신포의 대전과 추노와 징채의 정지도 일체 시행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답하였다.

司啓曰，卽見水原留守李憲琦災實狀啓，則 尤甚爲十九面，之次爲十六面，稍實爲五面，地部劃下災二十結外，不足爲一千八百六十七結十四負 六束，特許加劃，還餉當捧中，尤甚面之尤甚戶三分 二，尤甚面之之次戶之次面之尤甚戶折半之次面 之之次戶稍實面之尤甚戶三分一停退，身布則折 半代錢，而還餉之停退外當捧者，以相當穀三分一 準折代捧，待明秋還作本色，推奴徵債防塞事竝請 令廟堂稟旨分付矣，畿甸之歉，沿邑爲甚，而本府 又是沿路之最，三分面里，有此條陳，守臣商量，儘有 攸當，依此施行，災形既如此，則所請結數之至於此 多，其勢固然，今不必强加剋削，事目外一千八百六 十七結零，依請許劃，以若民勢，還餉之本色準捧，亦是行不得之政，不可不略有停代，尤甚面里折半，之次面里三分一，特許停退，當捧中亦依所請分數，許令準折代捧，身布代錢推徵防塞，一體許施何如，答曰，允．

<비변사등록 210책, 순조 22년 1822년 09월 30일(음)>

사회/윤리·풍속

水原留守 李義甲의 요청대로 留庫條 중 各穀 8633석과 南漢餉條 5699석의 加分을 청하다

○ 비변사에서 아뢰기를, “수원유수 이희갑(李義甲)의 장계를 보면, 회부(會付)된 원향곡(元餉穀)의 수가 본래 넉넉지 않고 농사 일이 한창인데 배순(排巡)을 계속할 길이 없습니다. 본부의 유고조(留庫條) 중에서 벼·콩·쌀을 합하여 8천 6백 33석 영(零) 및 소속 고을에 있는 남한 향곡(南漢餉穀)의 벼 5천 6백 99석 영(零)을 특별히 가분하도록 묘당에서 품지하여 분부하기를 청한다 하였습니다. 본부(本府)의 가분은 이미 연례가 되었고 농사철에 이어 배순하는 일도 생각해야 합니다. 장계에서 청한 수대로 가분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답하였다.

司啓曰，卽見水原留守李義甲狀啓，則以爲 會付還餉，數本不敷，農務方殷，繼巡無路，本府留庫 條中，租米太合八千六百三十三石零，及屬邑所在 南漢餉租五千六百九十九石零，特許加分事，請令 廟堂，稟旨分付矣，本府加分，已成年例，農節繼巡，在所當念，依狀請石數，許令加分，何如，答曰，允．

<비변사등록 211책, 순조 23년 1823년 04월 28일(음)>

사회/윤리·풍속

水原留守 李義甲의 分等狀啓에 대해 回啓하다

비변사에서 아뢰기를, “수원유수(水原留守) 이희갑(李義甲)의 재실 장계를 보면 ‘호조에
서 획하(劃下)한 재결(災結) 20결 외에 부족한 분량이 7백 14결 92부 8속이니 특별히 가획
(加劃)토록 하고, 작년에 정퇴한 환향(還餉)으로서 올해 받아들여야 하는 수량 중에서 3분
의 1은 우선 계속 정퇴시키고 추노(推奴:노비 추쇄)와 징채(徵債:빚을 독촉함)는 내년 가을
까지 중지하도록 묘당에서 품지하여 분부하게 하소서.’ 하였습니다. 올해 경기의 농사는
연해(沿海) 고을에는 약간의 손실이 있는데 본부(本府:수원부)도 해안에 가까우므로 이런
손실이 없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요청한 재결이 조금 과다함을 면할 수 없으니 원래 획하
한 것 이외에 4백결을 특별히 가획하고 임오년(壬午年:순조22, 1822)의 정퇴곡(停退穀)은
신환(新還)과 다름이 없으니 준봉(準捧)해야 하지만 받아들여야 할 식수가 많아 전량을 독
촉하기는 어려우니, 4분의 1은 잉정(仍停)하도록 하고, 추노와 징채를 중지하는 일은 요청
대로 시행토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답하였다.

司啓曰, 卽見水原留守李義甲災實狀啓, 則 以爲地部劃下災二十結外, 不足爲七百十四結九 十
二負八束, 特許加劃, 昨年停退還餉, 當捧中三分 一, 姑令仍停, 推奴徵債, 限明秋防塞事, 請
令廟堂, 稟旨分付矣, 今年畿農, 沿邑稍遜, 本府, 亦以近海之 故, 不無若爾傷損, 而所請災結
則未免稍過, 元劃外 四百結, 特爲加劃, 壬午停退穀, 與新還無異, 固令準 捧, 而石數既多,
竝督爲難, 許令四分一仍停, 推徵防 塞, 依請許施, 何如, 答曰, 允.

<비변사등록 211책, 순조 23년 1823년 10월 11일(음)>

사회/윤리 · 풍속

水原府에 다시 災結 200결을 더 劃給할 것을 청하다

○ 비변사에서 아뢰기를, “얼마 전 수원의 연분(年分) 장계로 인하여 요청한 재결 가운데
4백결을 가획하고 작년에 정퇴한 환향은 4분의 1을 잉정(仍停)하도록 복제하고 행회(行會:
공문을 보냄)하였습니다. 당해 유수 이희갑(李義甲)의 장계를 보면 농사의 재해 정황을 자
세히 설명하고 이어 ‘감축된 재결 3백 14결 영(零)을 획급하고 정퇴한 환향은 3분의 1을
잉정하도록 묘당에서 품쳐하여 분부하게 하소서.’ 하였습니다. 본부(本府)의 결총(結總)이
호조의 세입(歲入)과 다르다하나 특히 중요한 정세(正稅)를 신중을 기하지 않을 수 없지만,
신청이 이러하니 다시 어찌 주저하겠습니까? 앞서 획하한 것 외에 2백결을 가획하고 구환
(舊還)의 정퇴를 청한 것은 조금이나마 민력을 펴게 하려는 것이니 4분의 1이든 3분의 1이
든 계교할 것이 없습니다. 요청대로 시행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
고 답하였다.

司啓曰, 頃因水原年分狀啓, 所請災結中, 四 百結加劃, 昨年停退還餉, 四分一仍停事, 覆啓行
會矣, 卽見該留守李義甲狀啓, 則備陳穡事災損 之狀, 仍以爲見減災三百十四結零, 準劃停退,
還餉 三分一仍停事, 請令廟堂稟處矣, 本府結摠, 雖與 大農歲入有異, 特以正稅所重, 不得不
有難愼, 申請 如此, 更何靳施, 前劃外以二百結加劃, 舊還請停, 既 欲少紓民力, 則四分三分
之間, 不足較計, 依請許施, 何如, 答曰, 允.

<비변사등록 211책, 순조 23년 1823년 10월 18일(음)>

사회/윤리 · 풍속

水原留守 李義甲의 장계대로 불이 난 民家에 원래의 恤典 외에 더 보살펴 주라는 전교하다

○ 민가에서 실화(失火)한 일에 관한 수원유수 이희갑(李義甲)의 장계에 대해 전교하기를,

“들으니 매우 불쌍하고 측은하다. 원래의 흉전(恤典) 외에 따로 더 돌보아주도록 묘당에 분부하라.” 하였다.

以水原留守李義甲狀啓，民家失火事，傳曰，聞其矜惻，元恤典外，別加顧助事，廟堂分付．

<비변사등록 212책, 순조 24년 1824년 02월 12일(음)>

사회/윤리 · 풍속

水原留守 李義甲의 災實 狀啓에 대해 보고하고 그 대책을 논의하다

비변사에서 아뢰기를, “수원유수 이희갑(李義甲)의 재실 장계(災實狀啓)를 보면, 호조에서 획하(劃下)한 재결(災結) 20결 외에 부족한 것이 5백 63결 36부 3속이니 특별히 더 획하하도록 하고, 임오년(壬午年: 순조 22, 1822)에 정퇴(停退)한 환향(還餉)의 각곡(各穀) 가운데 아직 받아들이지 못하고 남아있는 것을 새로 수봉할 각곡과 아울러 일체 준봉(準奉)하며, 추노(推奴)와 징채(徵債)를 내년 가을까지 중지하도록 묘당에서 품지하여 분부하기를 청한다 하였습니다. 본부는 지경(地境)이 매우 넓고 산과 바다가 들쪽날쪽하여 기갑(己甲)년 이후 버려진 땅이 많으며, 여름에서 가을로 바뀔 즈음에 수재(水災)를 면치 못하여 구조불(舊初不) 외에 각항의 재탈(災頽)이 갖가지 있습니다. 이번에 더 청한 것은 각 년의 재총(災摠)에 비하여 가장 정밀하고 간략하니, 장계의 내용대로 준획(準劃)하여 고르게 나누어주어 은혜가 백성에게 미치게 하고 임오년에 정퇴하고 남은 각곡은 것이 실은 수신(守臣)의 말처럼 허류(虛留)가 될까 염려되니 금년에는 신환(新還)과 함께 준봉하고, 추노와 징채를 중지하는 것 역시 시행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답하였다.

司啓曰，卽見水原留守李義甲災實狀啓則 以爲，地部劃下災二十結外，不足爲五百六十三結 三十六負三束，特許加劃，壬午停退還餉各穀，未奉 餘在條，竝與新奉各穀，一體準奉，推奴徵債，限明秋 防塞事，請令廟堂稟旨分付矣，本府幅圓甚闊，山 海互錯，己甲之後，多有棄地，夏秋之交，未免被水，舊 初不外，各項災頽，種種有之，今此加請，較挈於各年 災摠，則最爲精約，依狀辭準劃，使之均俵究惠，壬午 停退餘條，虛留可悶，誠如守臣之言，今年則與新還同爲準奉，推徵防塞，亦爲許施何如，答曰，允．

<비변사등록 212책, 순조 24년 1824년 09월 23일(음)>

사회/윤리 · 풍속

불에 타 죽은 水原府의 사람들에게 원래의 恤典 외에 더 보살펴 주라는 전교하다

○ 본부(本府)에서 인명이 불에 타 죽었다는 수원유수 김이양(金履陽)의 장계에 대해 전교하기를, “들으니 매우 불쌍하고 측은하다. 원흉전 외에 따로 더 돌보아주고, 생전의 신역과 환자와 군포를 탕감하도록 분부하라.” 하였다.

以水原留守金履陽狀啓，本府人命燒死事，傳曰，聞甚矜惻，元恤典外，別加顧助，生前身還布，蕩 減事分付．

<비변사등록 212책, 순조 24년 1824년 11월 24일(음)>

사회/윤리 · 풍속

水原府의 곡물이 부족하므로 海西의 元賑穀과 私賑穀 중에서 劃給할 것을 청하다

비변사에서 아뢰기를, “지금 수원유수 홍희신(洪義臣)이 아뢴 바를 보니, 본부(本府)에서 구관하는 각도(各道) 곡식의 금년에 부족한 모조(耗條) 1천 2백 25석 영(零) 및 빚을 탕감해 준 급대조(給代條) 6백 석을 지금 구획해 달라고 하였습니다. 본영의 각도 곡식의 모조

부족분 및 빚을 탕감해 준 급대조는 연례로 이획하는 것이니, 해서(海西)의 원진곡(元賑穀)과 사진곡(私賑穀) 가운데에서 수신(守臣)이 청한 수효대로 획급하여 쓰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답하였다.

司啓曰，卽見水原留守洪義臣所報，則本府句 管各道穀今年不足耗條一千二百二十五石零及 蕩債給代條六百石，及今區劃爲辭矣，本營各道穀 耗不足及蕩債給代條，係是年例移劃者，就海西元 賑私賑穀中，依守臣報請數爰劃給，使之取用，何如，答曰，允。

<비변사등록 213책, 순조 25년 1825년 09월 01일(음)>

사회/윤리 · 풍속

흉년이 든 水原府에 畿營에서 빌려간 關東의 곡물을 移劃하게 할 것을 청하다

○ 비변사에서 아뢰기를, “지금 수원유수 홍희신(洪義臣)이 아뢴 바를 보니, 농사 형편의 재손(災損)과 백성들의 사정이 황급한 상황을 갖추어 아뢰고 이어서 이르기를, ‘구제할 방도를 미리 강구하지 않을 수 없으니, 갑술년(甲戌年:순조14, 1814)의 전례에 따라 관동과 해서 가운데 대미(大米:쌀)와 소미(小米:좁쌀)를 막론하고 6천 석에 한하여 특별히 이획하게 하소서.’ 하였습니니다. 금년 재해의 형편은 기호(畿湖)의 연해에 편중되어 있어서 서로 돕는 방도로 얼마 전에 서(西)와 남(南)의 도신(道臣)에게 알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본부는 경기와 호서 지방이 교차된 곳에 있어서 바다에 면한 부분이 많아 재해를 입은 것이 심한데, 창고의 곡식이 고갈되어 환곡의 진홀에 배비(排比)하기에도 어려움이 있으니 이듬해의 사정은 참으로 수신(守臣)이 보고한 바와 같습니다. 고르게 돌보아 주는 정사에 있어서 옮겨서 구제하는 일이 없을 수 없겠으나 배를 띄우는 것은 큰 일이어서 서남 지방에 거둬 요구할 수도 없는데, 이밖에 가까운 도는 오직 관동이 있을 뿐입니다. 관동에서 구관하는 별회곡(別會穀)과 별군향곡(別軍餉穀) 가운데에서 의논해서 구획해 주어야 하겠는데, 연전에 경기 감영에서 본사에 보고하고 빌려다 쓴 본부의 쌀 1천 90여 석이 있으나 본도의 환곡 총수가 넉넉하지 못하여 아직도 도로 갚지 못하고 있으니, 만약 지금 획송하는 것을 이 수량에 준하여 준절(準折)해서 각곡(各穀)으로 만들어 기영에서 전에 빌려간 곡식을 옮겨 갚게 한다면, 기영에는 진홀(賑恤)에 모자람이 없게 되고 본부에는 구제가 실제로 적용되어서 양쪽에 모두 마땅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각 해도(各該道)의 도신과 수신(守臣)에게 분부하고, 운반하는 절차는 왕복하여 형편대로 정하여 시기에 미쳐 가져다 쓰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답하였다.

司啓曰，卽見水原留守洪義臣所報，則備陳農 形災損，民情遑汲之狀，仍以爲接濟之方，不可不預 先經紀，依甲戌已例，就關東海西中，無論大小米，限 六千石，特許移劃爲辭矣，今年災形，偏在於畿湖沿 海，互資之方，纔有知委於西南道臣者，而本府處畿 湖之交，多沿海之面，被災爲甚，而倉簿耗竭，有難排 比於還賑，嗣歲事情，誠有如守臣所報者，其在均視 之政，亦不可無移濟之舉，然，汎舟巨役也，既不可疊 責於西南，則外此近道，惟有關東而已，就關東本司句 管 別會及別軍餉穀中，當議區劃，而年前自畿營，有報 司貸用本府米一千九十餘石者，因本道糴摠之不 敷，尙未還報矣，若以今此劃送者，準此數準折作各 穀，移報畿營前貸之穀，則畿營之無欠賑，本府之濟 實用，兩皆便宜，以此分付於各該道守臣處，而轉輸 之節，仍令往復從便，以爲及期取用之地，何如，答 曰，允。

<비변사등록 213책, 순조 25년 1825년 09월 01일(음)>

사회/윤리 · 풍속

水原留守 洪義臣이 청한 災結은 추가로 劃給하고 還穀의 停退는 전례대로 할 것을 청하다

○ 비변사에서 아뢰기를, “지금 수원유수 홍희신(洪義臣)의 장계를 보니, 농사 형편이 참 답답하게 흉년이 든 상황을 다시 아뢰고 이어서 이르기를, ‘삭감당한 재결 7백 14결 영(零)을 특별히 획급해주고 환곡을 정퇴(停退)한 분수(分數)는 전에 요청한 대로 시행하도록 묘당에서 품지하여 분부하게 하소서.’ 하였습니다. 본부의 전세(田稅)가 호조의 원래 부세(賦稅)와는 달랐고 또 정공(正供)의 법의(法意)를 생각해서 일찍이 줄여서 획급하도록 품복(稟覆)한 적이 있기는 하였으나 재해의 형세와 백성들의 사정이 갈수록 절급하고 수신(守臣)이 청한 바도 이처럼 거듭되니, 일체로 지난하기도 어려우므로 전에 획급한 1천 5백 결 이외에 다시 5백결을 더 주되, 환곡의 정퇴를 절반 이상을 더 청한 것은 아무래도 과다하니, 전에 복계한 대로 시행하라고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답하였다.

司啓曰, 卽見水原留守洪義臣狀啓, 則復陳 農形慘歉之狀, 仍以爲見減災七百十四結零, 特許準劃, 還穀之停退分數, 依前請施行事, 竝請令廟堂 稟旨分付矣, 本府田稅, 雖異於度支元賦, 爲念正供 之法意, 曾有減劃之稟覆, 而災形民情, 轉益悶急, 守臣所請, 又此申複, 亦難一切靳持, 前劃一千五百 結外, 更以五百結加劃, 停還之折半外加請, 終涉過多, 依前啓施行之意, 分付何如, 答曰, 允.

<비변사등록 213책, 순조 25년 1825년 09월 26일(음)>

사회/윤리 · 풍속

左議政 李相璜이 淸風 등지의 田稅 大同 및 軍保米의 純錢 代納 문제 등을 아뢰다

○ 12월 10일 약방의 입진에 대신과 비국당상을 인견하여 입시하였을 때에 좌의정 이상환(李相璜)이 아뢰기를, (….) 또 아뢰기를, “지금 경기감사 박종기(朴宗琦)의 장계를 보니, ‘본도의 진휼할 양자(糧資)로 비용으로 양서(兩西)의 곡식을 획하하여 지금 차례대로 운반하여 도착하고 있는데, 공명첩(空名帖)을 1천 2백 장에 한하여 미리 내려 주어서 연말 이전에 곡식으로 만들어 쓸 수 있도록 묘당에서 품지하여 분부하게 하소서.’ 하였습니다. 공명첩을 청해 얻어서 진휼에 보충하는 것은 재해를 입은 해에 전례가 많이 있고, 이제 막 호서와 화성(華城)에도 허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청한 바가 조금 과다한 듯하니, 7백 장을 만들어 보내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그리하라 하였다. (….)

今十二月初十日藥房入診, 大臣備局堂上引 見入侍時, 左議政李所啓, (….) 又所啓, 卽見京畿監司朴宗琦狀啓, 則以爲 本道賑資, 劃下兩西穀, 今方次第運到, 而空名帖限 一千二百張, 預爲劃下, 俾爲趁歲前, 作穀需用事, 請令廟堂稟旨分付矣, 空名帖請得補賑, 多有災年 已例, 纔亦許施於湖西·華城者, 然, 所請稍過, 七百張 許令成送, 何如, 上曰, 依爲之. (….)

<비변사등록 213책, 순조 25년 1825년 12월 10일(음)>

사회/윤리 · 풍속

京畿 등의 被災 수준에 따라 銀子 등을 분배하고 錢으로 換折하여 내려 보낼 것을 청하다

비변사에서 아뢰기를, “전교하시기를 ‘초막집의 곤궁은 어느 해인들 그렇지 않겠는가마는, 지금은 작년 가을에 큰 흉년이 든 뒤이니 슬프게도 우리 기전과 호서의 백성이 무엇으로 살아가겠는가? 들어가 보면 집집마다 텅 비어 있고 나가 보면 마을마다 연기가 끊어졌으니, 그 울며 호소하고 엎드려지며 서로 껴안고 구렁에 떨어지는 것을 면할 자가 거의 없을 것이다. 고인(古人)은 필부(匹夫)와 필부(匹婦)가 제자리를 얻지 못하는 것도 오히려 부끄

러움으로 여겼는데, 하물며 나는 백성의 부모가 되어 팔도의 백성들로 하여금 항상 배부르게 먹고 배를 두드리는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게 하고, 흉년에는 한갓 몇 만의 생령(生靈)으로 하여금 떠돌아다니고 넘어져 쓰러지는 근심이 있게 하면서도 구제하지 못하니, 그러고도 무슨 마음으로 옥식(玉食)과 금의(錦衣)가 편안하고 아름답다고 하겠는가? 그들의 남루한 옷과 부황이 든 모습을 생각하면 나도 모르게 마음에 부끄럽고 눈물이 뒤를 잇는다. 곡식을 옮기고 진휼을 설행하는 일은 이제 막 성명(成命)이 있었으니, 방백(方伯)과 수신(守臣)과 읍재(邑宰)가 의당 마음과 힘을 다해서 나의 남은 백성을 살릴 것이지만 돌아보건대 나의 안절부절 못하고 애타는 마음은 사실 일각(一刻)의 잠시라도 잊을 수가 없으니 부족함만 있고 즐거움은 없다. 이에 내탕고(內帑庫)의 은(銀) 1천 냥, 전(錢) 5천 냥, 단목(丹木) 3천 근(斤), 백반(白礬) 1천 근을 내려 경기(京畿)·호서(湖西)·사도(四都)의 진휼 밀천에 보태게 하니 묘당에서 굶주린 인구의 많고 적음을 헤아려 각영(各營)에 획급하여 원정(原定) 외의 별설(別設)로 삼아 나의 부끄러워하며 감히 잊지 못해 하는 마음을 보이게 하라. 이웃에 효유(曉諭)하여 서로 빌려주게 하고, 밭 갈고 씨 뿌리는 것을 권장하여 때에 맞추게 하고, 굶주린 사람을 가려내는 데에 누락되거나 부당하게 끼이는 것이 없게 하고 먹여주는 것을 정실(精實)하게 하는 여부 등에 있어서는 읍재의 어질고 어질지 못하는 것에 달려있으니, 마땅히 진휼을 마치기를 기다려 별도로 상벌(賞罰)을 시행하며 또한 별도로 수의(繡衣)를 보내 안렴(按廉)하도록 하겠다. 이 전고를 묘당에서 조사(措辭)하여 경기·호서·사도의 방백과 수신에게 알려 각자 척념(惕念)하고 대양(對揚)하게 하라.’ 고 명(命)하셨습니다. 사도(四都)와 제도(諸道)에서 당초에 진휼곡을 획급하기를 청한 것은 비록 적정(的定)한 수치(數値)는 아니지만 역시 그 재해 형편의 등차(等差)를 대강은 알 수 있으니, 경기(京畿)는 은자(銀子) 4백 30냥, 전(錢) 2천 2백 냥, 단목(丹木) 1천 3백 근(斤), 백반(白礬) 4백 30근을, 호서(湖西)는 은자 3백 40냥, 전 1천 7백 냥, 단목 9백 50근, 백반 3백 40근을, 수원(水原)은 은자 70냥, 전 3백 50냥, 단목 2백 60근, 백반 70근을, 광주(廣州)는 은자 70냥, 전 3백 냥, 단목 2백 40근, 백반 70근을, 강화(江華)는 은자 50냥, 전 2백 50냥, 단목 1백 30근, 백반 50근을, 송도(松都)는 은자 40냥, 전 2백 냥, 단목 1백 20근, 백반 40근을 지금 마련하여 내려 보내겠습니다. 그러나 전에 각도(各道)에서 진휼을 베풀 때에 만약 내하(內下:대궐에서 내려 줌)하는 진휼 물자가 있으면 은목(銀木)을 논할 것 없이 호조(戶曹)에서 본가(本價)로 준절(準折)하여 편한 대로 나눠 보냈는데 전례는 그러합니다. 이번에도 이대로 해조에 분부하여 백반까지 아울러 돈으로 준절하여 즉시 내려 보내서 때에 맞춰 구제하는 데에 쓰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택한다고 답하였다.

司啓曰, 傳曰, 郿屋春窮, 何歲不然, 而今當前 秋大無之餘, 哀我畿甸·湖西之民, 何以爲生, 入則室 室懸磬, 出則村村絕烟, 其得免啼呼, 顛連相抱而委 壑者幾希, 古人以匹夫匹婦之不獲, 尙爲其恥, 況予 爲民父母, 不能使八方黎庶, 常享含哺鼓腹之樂, 而 凶年饑歲, 徒致幾萬生靈, 流亡顛仆之患, 而莫之救, 尙何心玉食錦衣之安且美乎, 念彼鵜鶘頤顛之狀, 不覺忸怩于中, 而繼之以涕也, 移粟設賑之舉, 纔有 成命, 爲方伯守臣邑宰者, 固當竭其心力, 活我餘遺, 顧予憧憧耿耿之懷, 實未敢一時暫忘, 有不足而無 自校, 玆下帑銀一千兩錢五千兩丹木三千斤白礬 一千斤, 以補畿·湖·四都賑資, 廟堂量其饑口多少, 劃付各營, 使之原定外別設, 以示予忸怩不敢忘之 意, 至於隣里之曉諭相貸, 耕種之勸課及時, 抄饑之 漏濫, 饋給之精否, 在於邑宰之賢不肖, 當待畢賑, 另 行賞罰, 而亦當別遣繡衣, 以爲按廉之地, 此傳教 令廟堂措辭, 知委于京畿·湖西·四都方伯·守臣, 俾 各惕念對揚事命下矣, 兩都諸都, 當初賑穀請劃, 雖非的定之數, 而亦有可以領略其災形等差者, 京 畿銀子四百三十兩·錢二千二百兩·丹木一千三百 斤·

白礪四百三十斤，湖西銀子三百四十兩・錢一千七百兩・丹木九百五十斤・白礪三百四十斤，水原銀子七十兩・錢三百五十兩・丹木二百六十斤・白礪七十斤，廣州銀子七十兩・錢三百兩・丹木二百四十斤・白礪七十斤，江華銀子五十兩・錢二百五十兩・丹木一百三十斤白礪五十斤，松都銀子四十兩・錢二百兩・丹木一百二十斤・白礪四十斤，今當磨鍊下送，而在前各道設賑時，若有內下賑資，則無論銀木，自戶曹折本價從便分送，已例即然，今亦依此分付於該曹，竝與白礪而以錢換折，卽爲下送，俾爲及時濟用之地何如，答曰，允。

<비변사등록 214책, 순조 26년 1826년 01월 18일(음)>

사회/윤리・풍속

水原府 土庶人 중 70세 이상의 窮獨한 자에게 쌀을 하사하라고 전교하다

○ 전교하기를, “**본부(本府:수원부)**는 한창 진휼(賑恤)을 실행하고 있는데 행행(行幸)이 마침 이때에 있게 되었다. 지경 안의 사서인(士庶人) 중에 나이 70이상으로 가장 가난하고 외로운 자를 본부에서 가려내어 신풍루(新豐樓) 앞에 와서 기다리게 하라. 친림(親臨)하여 쌀을 내리겠으니 우선 이러한 뜻으로 **수원유수(水原留守)**에게 분부하라.” 하였다.

傳曰，本府方張設賑，而幸行適在此時，境內土庶人中年七十以上最窮獨者，令本府抄出，使之來待于新豐樓前，當親臨賜米，先以此意分付于水原留守。

<비변사등록 214책, 순조 26년 1826년 02월 20일(음)>

사회/윤리・풍속

水原에 災結을 加劃할 것 등을 청하다

비변사에서 아뢰기를, “**수원유수(水原留守)** 김상휴(金相休)의 재실 장계(災實狀啓)를 보니, ‘호조에서 획급해준 재결(災結) 15결(結) 외에 부족한 재결 5백 82결 71부(負) 2속(束)을 특별히 더 획급하고, 작년에 정퇴(停退)한 각곡(各穀)과 신환향(新還餉)을 일체로 다 받을지의 영부와 추노(推奴)와 징채(徵債)를 방색(防塞)하는 여부는 지휘(指揮)를 기다려 거행하겠으니 묘당에서 품지하여 분부하게 하소서.’ 하였습니다. 금년의 신재(新災)가 비록 구재(舊災)의 절반(折半)에 지나지 않으나 신재와 구재를 합산하여 수신(守臣)이 청한 대로 다 들어주려고 한다면, 기전(畿甸) 한 도(道)를 통틀어 2천 3백 결인 것과 비교하여 급재(給災)가 거의 4분의 1을 넘습니다. 본부(本府)가 지금 비록 유수영(留守營)으로 승격되었기는 하나 너비와 길이는 한두 주현(州縣)의 크기와 별로 다른 것이 없는데, 어떻게 한 도를 통틀어 재결을 획급한 것과 조금의 차이만 두고 논하겠습니까? 사목(事目) 외에 5백 결만 특별히 더 획급해야 하겠습니다. 작년에 정퇴한 환곡은 그 수(數)가 적지 않은데 신구(新舊)를 아울러 독촉하면 어찌 어렵지 않겠습니까마는 수신이 청한 바는 앞으로의 폐단을 염려하여 이렇듯 조금 풍년이 들었을 때를 타서 기어코 준봉(準捧) 하려고 한 것이니 참으로 원대(遠大)한 사려(思慮)가 있다 하겠고 깊이 일의 요령을 터득했다 하겠으니 장계의 내용대로 시행하게 해야 하겠습니다. 추노와 징채를 방색하는 것은 흉년이 아니면 항상 실시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만 진휼(賑恤)하고 난 뒤의 경기(京畿) 백성은 돌보아 줘야 하겠기에 이미 도백(道伯)의 장계에 예(例)대로 허시(許施)하게 하였으므로 한 도(道) 안에서 들쭉날쭉하기 어려우니 내년 가을까지 일체로 방색하라고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답하였다.

司啓曰，卽見水原留守金相休災實狀啓則 以爲，地部劃下災十五結外，不足災五百八十二結 七十一負二束，特許加劃，昨年停退各穀，與新還餉 一體準捧，推奴徵債防塞與否，待指揮舉行

事，請令 廟堂稟旨分付矣，今年新災，雖不過舊災之折半，而摠計新舊災，欲依守臣所請而準許，則較看於畿 甸之通一道二千三百結，給災殆過四分之一，本府 今雖陞爲留營，而幅圓延袤，則無甚懸遠於一二州 縣之大，豈至與通一道之劃災者，纔隔一二等而論 之哉，事目外以五百結，特許加劃，昨年停還，厥數不 少，新舊竝督，豈云非難，而守臣所請，爲念來頭之弊，迨此少康，期欲準捧者，誠存長慮，深得便宜，使之依 狀辭施行，推徵防塞，如非歉年，不必恒施，而賑餘畿 民，合有軫恤，故已於道伯所啓，依例許施，一路之 內，難於斑駁，限明秋一體防塞之意，分付何如，答 曰，允。

<비변사등록 214책, 순조 26년 1826년 10월 06일(음)>

사회/윤리 · 풍속

水原留守 金迪根의 災實狀達에 대해 回達하다

비변사에서 달하기를, “수원유수(水原留守) 김유근(金迪根)의 재실 장달(災實狀達)을 보니, 본부의 농사 형편이 재해로 인해 손상을 입은 실상을 갖추어 진달하고, 이어 사목재(事目災) 30결 이외에 부족재(不足災) 5백 62결 63부 4속을 특별히 추가로 획급하고, 노비의 추쇄와 빚의 징수를 내년 가을까지 막아 주도록 묘당에서 품령하여 분부하게 하기를 청하였습니다. 본부는 바닷가에 있는 흉년이 잘 드는 지역인데 올 여름에 내린 비로 재해까지 입었으므로 각종 곡식이 제대로 여물지 못하였으니 백성들의 실정을 염려해 주어야 하고 또 수신(守臣)이 청한 바가 근례를 참작하여 매우 정약(精約)하니, 재결(災結)을 그 수량대로 획급하고, 노비의 추쇄와 빚의 징수를 내년 가을까지 막는 일도 허시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그리하라고 답하였다.

司達曰，卽見水原留守金迪根災實狀達，則 備陳本府農形災損之狀，仍以爲事目災三十結外，不足災五百六十二結六十三負四束，特許加劃，推 奴徵債，限明秋防塞事，請令廟堂稟令分付矣，本 府以濱海善歉之地，兼今夏雨水之災，各穀未免失 稔，民情果所當念，且守臣所請，參以近例，既甚精約，災結準數許劃，推奴徵債之限明秋防塞，亦爲許施 何如，答曰，依。

<비변사등록 215책, 순조 27년 1827년 10월 04일(음)>

사회/윤리 · 풍속

水原留守 朴周壽의 災實 狀達에 대해 보고하고 그 대책을 문의하다

○ 비변사에서 달(達)하기를, “방금 수원유수(水原留守) 박주수(朴周壽)의 재실 장달(災實狀達)을 보니, 본부(本府) 농사의 형편과 재해로 손상된 상황을 갖추어 진달하고, 이어서 호조에서 획하한 재결 20결 이외에 부족한 재결 8백 7결 26부 4속을 특별히 추가로 획급하도록 하고, 노비의 추쇄와 빚을 받는 것을 내년 가을까지 막도록 묘당에서 품령(稟令)하여 분부하게 하기를 청하였습니다. 본부의 답총(畝摠)은 비록 경기 내에서 가장 많기는 하나 재결을 추가로 요청한 것은 분수(分數)에 조금 지나침을 면할 수 없으니, 사목(事目) 외에 6백 7결 영(零)을 특별히 획급하여 고르게 나누어주게 하고, 노비를 추쇄하고 빚을 받는 것을 막는 일도 일체로 시행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그리하라고 답하였다.

司達曰，卽見水原留守朴周壽災實狀達，則 備陳本府農形災損之狀，仍以爲地部劃下災二十 結外，不足災八百七結二十六負四束，特許加劃，推 奴徵債，限明秋防塞事，請令廟堂稟令分付矣，本 府畝摠，雖或最多於畿內，加請災結，未免稍過於分 數，事目外六百七結零，特爲許劃，使之均俵，推徵防 塞，一體許施何如，答曰，依。

<비변사등록 216책, 순조 28년 1828년 10월 06일(음)>

사회/윤리 · 풍속

水原留守 朴周壽의 災實 狀達에 대해 보고하고 그 대책을 문의하다

○ 비변사에서 달하기를, “지금 수원유수 박주수(朴周壽)의 재실 장달(災實狀達)을 보니, 본부의 농사 형편과 재해로 손상된 상황을 갖추어 아뢰고 이어서 이르기, ‘호조에서 획급해 준 재결(災結) 15결 이외에 부족재(不足災) 8백 15결 58부 4속을 더 획급하도록 특별히 허락하고, 노비를 추쇄하고 빚을 징수하는 것을 내년 가을까지 막아 주도록 묘당에서 품령(稟令)하여 분부하도록 하소서.’ 하였습니다. 본부는 토지의 대부분이 바닷가의 염분이 많은 곳으로서 걸핏하면 고르게 풍년이 들 때가 적어서 재결이 많아도 수확을 정상적인 것으로 여기는데, 지금 이처럼 더 청한 것 가운데 전해져온 구탈(舊頃)을 제외하고 금년에 나누어 주어야 할 것을 지적해내면, 비록 세밀하다고 말하기에는 부족하지만 또한 지나칠 정도는 아니니, 숫자에 준하여 획급해서 실제 혜택이 미치도록 하소서. 노비를 추쇄하고 빚을 징수하는 것은 백성들을 소요하게 하니, 또한 내년 가을까지 막아 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그리하라고 답하였다.

司達曰, 卽見水原留守朴周壽災實狀達, 則 備陳本府農形災損之狀, 仍以爲地部劃下災十五 結外, 不足災八百十五結五十八負四束, 特許加劃, 推奴徵債, 限明秋防塞事, 請令廟堂稟令分付矣, 本 府地多濱, 海斥鹵之處, 輒少均登之時, 災結夥然, 歲 以爲常, 則今此加請中除却流來舊頃, 拈出今年應 依, 雖不足謂精約, 亦不至於過濫, 依數準劃, 俾究實 惠, 推奴徵債, 既係擾民, 亦令限明秋防塞何如, 答 曰, 依.

<비변사등록 217책, 순조 29년 1829년 11월 10일(음)>

사회/윤리 · 풍속

水原留守 洪義俊의 災實分等狀啓에 대해 回啓하다

비변사에서 아뢰기를, “수원유수(水原留守) 홍희준(洪義俊)의 재실 장계(災實狀啓)를 보니, 본부 농사의 재산(災損) 상황을 갖추 진술하고 이어서 이르기, 지부(地部:호조)의 급재(給災) 15결 외에 부족재(不足災)가 7백 24결 49부 8속이니 특별히 더 주고, 노비를 추쇄(推刷)하고 빚을 징수하는 것을 내년 가을까지 막도록 아울러 묘당에서 품지하여 분부하기를 청한다 하였습니다. 본부는 땅이 넓으나 바닷가여서 염분과 자갈이 사이사이 섞여 있어 풍년이 든 해에도 매년 재탈(災頃)이 있었습니다. 더구나 목은 재탈을 올해에 옮겨 기록한 것이 숫자가 적지 않으니, 이번에 청한 바는 지나친 것은 아닙니다. 합하여 재결 7백 39결 영을 특별히 떼어주도록 하고, 노비를 추쇄하고 빚을 징수하는 일은 백성들을 소요스럽게 하는 것이므로 역시 내년 가을까지 막도록 하며, 금년 호조의 사목(事目)에 원래 본부의 급재(給災)가 없는데, 장계 내용에 호조의 급재가 15결이라고 한 것은 주어문자(奏御文字)로 헤아리거나 재정(災政)에 관계된 것을 모두 살피지 않은 일에 해당합니다. 당해 수신(守臣)을 추고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답하였다.

司啓曰, 卽見水原留守洪義俊災實狀啓, 則 備陳本府農形災損之狀, 仍以爲地部劃下災十五 結外, 不足災七百二十四結四十九負八束, 特許加 劃, 推奴徵債, 限明秋防塞事, 竝請令廟堂稟旨分 付矣, 本府地廣而濱海, 斥鹵磽确, 又互錯其間, 豐歲 每有災頃, 且況舊災之移錄當年, 數既不少, 則今此 所請, 不至過濫, 合災七百三十九結零, 特爲許劃, 推 奴徵債, 係是擾民, 亦許限明秋防塞, 而第今年地部 事目, 元無本府給災, 而狀辭中, 謂以地部劃下災十 五結者, 揆以奏御文字, 災政所關, 俱係不審, 該守臣 推考何如, 答曰, 允.

<비변사등록 218책, 순조 30년 1830년 10월 08일(음)>

사회/윤리 · 풍속

水原留守 朴綺壽의 災實狀啓대로 오래된 舊災의 許劃을 허락할 것을 청하다

○ 비변사에서 아뢰기를, “수원유수 박기수(朴綺壽)의 재실 장계(災實狀啓)를 보면, 본부에 내려오는 아직 탈(頃)을 인정받지 못한 구재(舊災) 5백 41결 10부 7속을 특별히 획하도록 묘당에서 품지하여 분부하기를 하기를 청한다 하였습니다. 이번에 획하를 청한 것은 금년의 재탈(災頃)이 아니라 구재를 매년 이록(移錄)되어 매년 연분에 아되는 것에 불과하니 장계에서 청한 대로 시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답하였다.

司啓曰, 卽見水原留守朴綺壽災實狀啓, 則 本府流來, 未蒙頃舊災五百四十一結十負七束, 特許劃下事, 請令廟堂稟旨分付矣, 今此請劃, 非今年災頃, 而卽不過舊災移錄之逐年條陳於年分啓請者, 依狀請許施何如, 答曰, 允.

<비변사등록 219책, 순조 31년 1831년 09월 29일(음)>

사회/윤리 · 풍속

廣州留守 李錫奎의 災實狀啓에 대해 回啓하다

비변사에서 아뢰기를, “광주유수 이석규(李錫奎)의 재실 장계를 보면, 본부에 내려오는 구재(舊災) 및 신재(新災)가 도합 1백 19결 2부 9속인데 특별히 수효대로 획급하고 각년의 배봉조(排捧條)를 우선 그대로 정되하였다가 점차 마련하도록 하기를 청하였습니다. 올해 고루 풍년이 들어 말할 만한 재상(災傷)이 없는데 이번에 획급을 청한 것은 곧 구재를 당년(當年)에 이록(移錄)한 것으로서 방금 수원(水原)에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역시 요청에 의해 또한 청한 대로 시행하게 한 것이나 해마다 거두기로 한 포곡(逋穀)을 또 번거롭게 정되를 청한 것은 비록 백성의 형세를 생각해서 그런 것이기는 하지만, 처음에 수봉(收捧)하기 어렵다고 하여 여러 해 나누어 내도록 한 것이 이미 조정의 특별한 은혜였는데, 만약 또 여러 해로 나누어 내는 것이 어렵다 하여 풍년이나 흉년에 상관없이 우선 정되를 청하는 것은 군향(軍餉)이 중하다는 법의(法意)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계유년(癸酉年:순조13, 1813)과 경진년(庚辰年:순조20, 1820)의 오래된 것은 아울러 독촉하기 어려우니 우선 그대로 정되하도록하고 정해년(丁亥年:순조27, 1827)에 배정한 포함은 연조가 가장 가깝고 수효 역시 많지 않으니 수봉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답하였다.

司啓曰, 卽見廣州留守李錫奎災實狀啓, 則本 府流來舊災及新災, 合一百十九結二負九束, 特爲準劃, 各年排捧條, 姑許仍停, 漸次拮据事, 請令廟堂 稟處矣, 歲既均稔, 宜無災傷之可言, 而今此請劃, 卽 舊災之逐年移錄於當年者, 而才已許施於水原矣, 此亦依所請許施, 至於排年逋穀之又煩請停, 雖緣 民勢之當念, 然始以難捧而許令排年, 已是朝家 之特恩, 若又以排年之爲難, 而不拘豐歉, 輒請姑停, 則軍餉之重, 法意安在, 癸酉·庚辰久遠條, 則有難竝 督, 姑許仍停, 丁亥排逋, 則年條最近, 數亦無多, 使之 收捧何如, 答曰, 允.

<비변사등록 219책, 순조 31년 1831년 10월 09일(음)>

사회/윤리 · 풍속

水原留守 徐俊輔의 보고에 대해 賑穀米 1천석 등과 外帑庫錢, 空名帖 등을 청하다

○ 비변사의 계사에, “수원유수 서준보(徐俊輔)의 장계를 보니, 아뢰기를 ‘수원부 내에서 가장 궁핍한 호구(戶口)는 봄이 시작될 때 진휼을 실시해야 마땅하니, 어떤 곡식이 되었던

지 간에 대미(大米)와 소미(小米)를 3천 석에 한하여 특별히 옮겨서 주도록 하고, 공명첩도 2백 장에 한하여 내려 주어서 진휼하는 밀천으로 삼게 하소서. 금년에 재해로 감소된 것이 이미 많아 세(稅)로 들어오는 것이 크게 축나서 지방(支放)이 부족하니, 달리 변통할 길이 없습니다. 본영 외탕고(外帑庫)의 봉부동(封不動) 전(錢)을 수입을 헤아려 편한 대로 곡식을 사서 전례대로 방출하도록 묘당에서 품지하여 분부하게 하소서.’ 하였습니다. 진휼할 비용을 달라고 청한 것이어서 미룰 수는 없으나, 현재 삼도에서 옮겨 운반한 곡식을 경기·공충도·황해도의 여러 곳에 분배하였는데도 아직 태반이 부족한 근심이 있어서 다시 마련할 수 없습니다. 본부에서는 이미 창고에 비축한 전곡(錢穀)을 또한 가져다 쓸 수 있으니, 본부에 있는 진곡미(賑穀米) 1천 석, 태(太) 3백 석, 외탕고의 봉부동 전 2천 냥을 주도록 허락하고, 다시 영남의 대미 5백 석을 첨가해 주며, 공명첩도 1백 50장을 만들어 보내어서 진휼하는 일을 처리하게 하소서. 세를 감하고 급대(給代)하는 것은 이미 미변(米邊)이 부족하지만 돈으로 줄 필요는 없고, 유고(留庫)한 향미(餉米) 가운데에서 들어가는 대로 비용을 내어 주도록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답하였다.

司啓辭，卽見水原留守徐俊輔狀啓，則以爲 府內最窮之戶，當於開春設賑，就某樣穀中大小米限三千石，特許移劃，空名帖限二百張，亦爲頒下，以爲濟賑之資，而今年災減既多，稅入大縮，支放不足，他無變通，本營外帑庫封不動錢，量其所入，從便 質穀，如例放下事，竝請令廟堂稟旨分付矣，賑 資請劃，不宜勤持，而見今三道移運之穀，分排於畿 輔·錦·海諸處，尙有太半不足之患，更無可以措辦，而 本府則既有留庫錢穀，亦可取用，以府在賑穀米一 千石，太三百石外，帑庫封不動錢二千兩許劃，更以 嶺南大米五百石添劃，空名帖一百五十張，亦爲成 送，使之經紀賑事，至於減稅給代，既係米邊不足，不 必以錢劃下，就留庫餉米中，從所入用下事，分付何 如，答曰，允．

<비변사등록 220책, 순조 32년 1832년 09월 27일(윤)>

사회/윤리 · 풍속

質穀을 防塞하거나 執留하는 폐단이 없도록 各道와 3都에 嚴飭할 것을 청하다

○ 비변사에서 아뢰기를, “삼가 하교(下敎)에 의하여 강상(江商)과 시장 백성들을 본사(本司)에 불러 유사당상(有司堂上)과 평시서제조(平市署提調)·한성부당상(漢城府堂上)이 전후하여 비지(批旨) 안의 내용을 상세히 효유(曉諭)해서, 각기 조정의 법례(法例)는 원래 곡식을 무역하는 일이 죄가 되지 않는다는 본래의 뜻을 환히 알도록 하고, 다시 각기 생업에 안주해서 혹시라도 놀라고 겁먹어 배로 곡식을 무역하는 일을 관망하면서 진행시키지 않거나 시장의 판매가 막혀 통하지 않는 일이 없도록 하면, 거의 모두가 기뻐하며 돌보아 어루만져 주시는 덕의(德意)를 칭송할 것입니다. 생각하건대, 근래 도성의 곡물이 품귀한 것은 오로지 각 도에서 막고 중도에서 잡아 두는 데에서 연유하는 폐단이라고 합니다. 일찍이 이 일로 초기(草記)하고 행회(行會)하여 제칙(提飭)하기가 엄중하였습니다. 영읍(營邑)의 신하가 조정의 명령을 엄중하게 여겼다면 어찌 쓸모없는 것으로 내버려 털끝만큼이라도 용납하였겠습니까. 다시 말을 만들어 엄하게 신칙하되 여러 도의 도신(道臣) 및 화성(華城)·강화(江華)·개성(開城) 유수(留守)에게 삼현령(三懸鈴)으로 알리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답하였다.

司啓曰，謹依下敎，招致江商市民等於本司，有司堂上與平市提調京兆堂上，將前後，批旨內 事意，詳細曉諭，俾各洞然知朝家法例，元無以質穀 爲罪之本意，更令各安其業，毋或驚怯，以致

船貨之 觀望不進，市賣之壅闕不通，則舉皆歡欣攢祝，莫不 頌軫恤撫摩之德意，而惟以近日都下穀物之 踊貴，專由於各道之防塞，中路之執留爲弊云，曾以 此事草記行會，提飭申嚴矣，營邑之臣，若以朝令 爲重，則寧容弁髦乃爾，更爲措辭嚴飭，三懸鈴知委 於諸道道臣及華城·江華·開城留守處，何如，答曰，允。

<비변사등록 221책, 순조 33년 1833년 03월 19일(음)>

사회/윤리 · 풍속

各道 補賑人에 대해 褒賞을 청하는 보고 및 補賑人 別單

비변사에서 아뢰기를, “여러 도에서 진휼을 도운 사람에게 상을 청하는 보고가 차례로 도착하였고, 진휼하는 일이 거의 끝나가므로 이에 조목별로 열거하여 별단(別單)에 써서 들입니다. 그 가운데 유원첨사(柔遠僉使) 배화봉(裴化鳳)이 의연(義捐)하여 진휼을 도운 것이 1만 냥이나 되는데, 이번에 이미 시행한 은전(恩典)을 논한다면 수령으로 특별히 제수하는 일이 있어야 하겠으나, 지난번 이조판서가 연석(筵席)에서 수령은 반드시 이력(履歷)을 보아야 한다고 아뢰었으므로 단지 변장(邊將)을 지낸 사람을 의의(擬議)할 수는 없습니다. 임기가 만료되기를 기다려 즉시 중군(中軍)에 자리를 만들어 차송(差送)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전 참봉(前參奉) 김화국(金華國)·유학(幼學) 김영걸(金永杰) 등은 의연을 납부한 것이 넉넉하고 또 전례도 있으니, 모두 6품직에 자리가 나기를 기다려서 임용하도록 하고, 가선대부(嘉善大夫) 이문규(李文奎)는 곡식과 돈을 기부하여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매우 남다르니 상당한 중군직에 자리가 나기를 기다려서 차송하도록 하겠으며, 전 오위장(前五衛將) 황호성(黃浩聖)·가선대부 손복영(孫復榮)·전 동지사(前同知事) 김춘복(金春復)·가선대부 최경신(崔擎臣)·가선대부 김규석(金圭錫)·전 오위장 권희(權熾)는 모두 임기가 가까운 변장에 자리를 만들어 차송하고, 자리가 만약 부족하다면 자리가 나는 대로 차송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향품(鄉品) 서계업(徐繼業)·가선대부 이동휘(李東輝) 역시 변장으로 자리가 나기를 기다려 차송하도록 하고, 사인(士人) 함응규(咸應奎)는 다른 예에 의해 먼저 사용(司勇)에 붙었다가 삭수(朔數)를 헤아려 올려서 천직(遷職)시키게 하며, 가선대부 김기하(金箕河) 등 21인은 바친 바에 비록 많고 적음이 있지만 일일이 등급을 나눌 만큼 말할 만한 것이 별달리 없으니, 모두 오위장의 실직(實職)에 시행하도록 하고, 그 나머지는 본도(本道)에서 원하는 바에 따라 처리할 수 있는 것은 관문(關文)을 보내 알려서 누락이 되었다는 탄식이 없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답하였다.

진휼을 도운 사람의 별단(補賑人別單) (…)

평양 가선대부 김상민(金尙敏) 수원(水原)에 돈 1천 5백 냥을 바침

중화(中和) 가선대부 문두환(文斗桓) 수원(水原)에 돈 1천 5백 냥을 바침

강화(江華) 가선대부 김진렴(金鎭濂) 본부에 돈 1천 2백 냥을 바침

강화 가선대부 유봉서(劉鳳舒) 본부에 돈 1천 2백 냥을 바침

강화 가선대부 문성빈(文聖彬) 본부에 돈 1천 2백 냥을 바침

강화 가선대부 주동량(朱東良) 본부에 돈 1천 2백 냥을 바침

의주(義州) 가선대부 백진호(白珍浩) 진위(振威)에 돈 1천 2백 냥을 바침

서흥(瑞興) 가선대부 홍석윤(洪錫胤) 부평(富平)에 돈 1천 2백 냥을 바침

의주 가선대부 최경천(崔慶天) 파주(坡州)에 돈 1천 2백 냥을 바침

의주 가선대부 곽창근(郭昌根) 수원(水原)에 돈 1천 2백 냥을 바침

배천(白川) 가선대부 김형수(金亨洙) 수원(水原)에 돈 1천 2백 냥을 바침

은진 전 위장 조광진(曹光振) 본읍에 돈 1천 2백 냥을 바침

홍원(洪原) 가선대부 최규원(崔奎遠) 수원(水原)에 돈 1천 냥을 바침(…)

司啓曰, 諸道補賑人請賞之報, 次第來到, 而賑 事垂畢, 茲又條列, 別單書入, 而其中柔院僉使 裴化 鳳, 出義補賑, 至滿萬數, 若論今番已施之典, 合有守 令特除之舉, 而向者吏判筵奏, 守 令則必觀履 歷爲辭, 不可以只經邊將者擬議矣, 待準瓜卽以中 軍作窠差送, 前參奉金華國·幼 學金永杰等, 捐納既 優, 亦有已例, 竝六品職待窠調用, 嘉善李文奎, 以穀 以錢, 較他絕異, 相當中軍, 待窠差送, 前五衛將黃浩 聖·嘉善孫復榮·前同知金春復·嘉善崔擎臣·嘉善金 圭 錫·前五衛將權燦, 竝瓜近邊將, 作窠差送, 窠如不 足, 隨窠隨差, 鄉品徐繼業·嘉善李東輝, 亦以邊將, 待 窠差送, 士人咸應奎, 依他例先付司勇, 計朔陞遷, 嘉 善金基河等二十一人, 所 納雖有多寡, 別無一一分 等之可言, 竝以五衛將實職施行, 其餘自本道可以 從願區處者, 行關 知委, 俾無遺漏之歎何如, 答曰, 允.

補賑人別單 (…)

平壤居嘉善金尙敏, 水原納錢一千五百兩.

中和居嘉善文斗桓, 水原納錢一千五百兩.

江華居嘉善金鎮濂, 本府納錢一千二百兩.

江華居嘉善劉鳳舒, 本府納錢一千二百兩.

江華居嘉善文聖彬, 本府納錢一千二百兩.

江華居嘉善朱東良, 本府納錢一千二百兩.

義州居嘉善白珍浩, 振威納錢一千二百兩.

瑞興居嘉善洪錫胤, 富平納錢一千二百兩.

義州居嘉善崔慶天, 坡州納錢一千二百兩.

義州居嘉善郭昌根, 水原納錢一千二百兩.

白川居嘉善金亨洙, 水原納錢一千二百兩.

恩津居前衛將曹光振, 本邑納錢一千二百兩.

洪原居嘉善崔奎遠, 水原納錢一千兩. (…)

<비변사등록 221책, 순조 33년 1833년 04월 12일(음)>

사회/윤리·풍속

水原留守 鄭元容의 災實分等狀啓에 대해 回啓하다

○ 비변사에서 아뢰기를, “수원유수(水原留守) 정원용(鄭元容)의 재실 분등 장계(災實分等 狀啓)를 보니 초실이 4면이고, 지차가 17면이고 우심이 15면이며, 사목재(事目災) 80결 이 외에 부족재 1천 4백 81결 71부 4속을 특별히 수에 맞추어 떼어주고, 작년에 정퇴한 환향 (還餉) 6천 1백 33석 영(零)을 내년까지 그대로 정퇴하며, 군보(軍保)가 쌀로 납부해야 할 것을 절반에 한하여 돈으로 대신 거두며, 노비를 추쇄(推刷)하고 빛의 징수를 막는 일을 모 두 묘당에서 품지하여 분부하기를 청한다 하였습니다. 경기 지방에 거듭 흉년이 든 것은 대 체로 공통된 근심인데, 그 사이에 우열을 논한다면 화성(華城) 한 부는 또한 전혀 손해만 입은 것은 아닌데, 지금 재충(災摠)을 더 청한 것은 좀 분수(分數)에 지나친 일이니 1천 결 을 더 주어 균등하게 나누어 주도록 하고, 작년에 환향을 정퇴한 것은 기내(畿內) 지차읍의 예에 의해 3분의 2에 한해서 정퇴하고, 군보를 돈으로 대신하는 것과 노비를 추쇄하고 빛의 징수를 막는 것은 모두 장계에서 청한 대로 시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 고 답하였다.

司啓曰，卽見水原留守鄭元容災實分等狀 啓，則稍實爲七面，之次爲十七面，尤甚爲十五面，而事目災八十結外，不足災一千四百八十一結七十 一負四束，特許準劃事，及昨年停退還餉六千一百 三十三石零，限明年仍停，軍保之以米當納者，限折 半以錢代捧，推奴徵債防塞事，竝請令廟堂稟旨 分付矣，畿輔荐歉，大抵通患，而若論優劣於其間，華 城一府，亦不至於全然被損，則今此加請災摠，未免 稍過分數，以一千結加劃，使之均俵，昨年餉還停退，依畿內之次邑例，限三分二仍停，軍保代錢，推徵防 塞，竝依狀請施行，何如，答曰，允．

<비변사등록 221책, 순조 33년 1833년 10월 01일(음)>

사회/윤리 · 풍속

京畿 暗行御史 李是遠의 別單에 대해 回啓하다

○ 비변사의 계사에, “경기 암행어사 이시원(李是遠)의 별단(別單)을 보면 (….) 그 하나는 사사로이 진휼한 사람인 양천(陽川)의 장오복(張五福), 수원(水原)의 조의원(曹儀元), 적성(積城)의 김영(金泳)은 재산을 기부한 것은 바람을 가지고 굶주림을 구호한 것은 아니고 오로지 의로움을 일으키도록 장려하고 권하는 정사에서 말미암았으니 마땅히 먼저 이들을 내세워야 하니 해조에서 속히 상을 주어야 한다는 일입니다. 재산을 기울여 의로움을 발휘하여 굶주린 백성을 구제한 것은 사실 가상한 일입니다. 도신에게 다시 그 실상을 탐지하게 하여 시상하여 권장하도록 하겠습니다. (….)

司啓辭，卽見京畿暗行御史李是遠別單，則 (….) 其一，私賑人陽川張五福·水原曹儀元·積城金泳捐財，非出於진출자覲救饑，專由於起義獎勸 之政，宜先此輩，令該曹從速酬賞事也，傾產出義，救 濟飢民，實爲嘉尙，令道臣更探其實狀以爲，施賞酬 勸之地. (….)

<비변사등록 222책, 순조 34년 1834년 02월 02일(음)>

사회/윤리 · 풍속

領議政 沈象奎가 水原에서 진휼을 보던 曹萬振을 五衛將에 差除할 것을 논의하다

○ 7월 25일 약방의 입진에 입시하였을 때에 영의정 심상규(沈象奎)가 아뢰기를, “이번 수원(水原)의 진휼에 보조한 사람 조만진(曹萬振)은 변장(邊將)의 자리를 만들어 차출해 보내라는 승전(承傳)을 입고 해조에서 산산첨사(蒜山僉使)에 의차(擬差)하였습니다. 들으면 그 아버지의 병으로 부임할 수 없어 이어 체직을 청하였다고 합니다. 해조에 분부하여 훗날의 정사에서 오위장(五衛將)에 차제(差除)하여 조정에서 보답하여 수용하는 뜻을 보이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감히 아뢰입니다.” 하니, 임금이 그리하라 하였다.

今七月二十五日藥房入診入侍時，領議政 沈所啓，今番水原補賑人曹萬振，已蒙邊將作 窠，差送承傳該曹，擬差蒜山僉使矣，聞以其親病，無以赴任，仍爲呈遞云，分付該曹，後日政五衛將差 除，以示朝家酬用之意爲好，故敢達矣，上曰，依爲之．

<비변사등록 222책, 순조 34년 1834년 07월 25일(음)>

사회/윤리 · 풍속

領議政 沈象奎 등이 李光文의 災實狀啓에 대해 논의하다

○ 9월 29일 약방의 입진에 대신과 비국당상을 인견하여 입시하였을 때에 영의정 심상규(沈象奎)가 아뢰기를 (….) 또 아뢰기를, “이것은 수원유수(水原留守) 이광문(李光文)의 재실장계인데 사목재(事目災) 15결(結) 외에 부족재(不足災) 6백 49결 28부(負) 7속(束)을 특별히 더 획급해주고, 임진년(壬辰年:순조32, 1832)에 정퇴한 환향(還餉)은 기어코 전량을 마

감하겠으니 추노(推奴)와 징채(徵債)를 맥추(麥秋)까지 방색(防塞)하도록 아울러 묘당에서 품지하여 분부하게 하기를 청하였습니다. 금년의 농사 형편은 기왕 7~8분(分) 풍년이라고 하고서 청한바 재결(災結)은 원총(元摠)에 견주어 거의 4분의 1이 되니 아무래도 조금 지나 침을 면치 못하니 사목재까지 아울러 5백 결을 특별히 획급하여 고르게 나눠주게 하며, 임진년에 정퇴한 환향은 금년에 당연히 받아야 할 것인데 무엇 때문에 번거롭게 아뢰었습니까? 추노와 징채를 맥추까지 방색하는 일은 청한 대로 시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그리하라 하였다. (…)

今九月二十九日藥房入診，大臣備局堂上引 見入侍時，領議政沈所啓，(…)又所啓，此水原留守李光文災實狀啓也，以 爲事目災十五結外，不足災六百四十九結二十八 負七束，特許加劃，壬辰停退還餉，期於準勘，而推奴 徵債，限麥秋防塞事，竝請令廟堂稟旨分付矣，今 年農形，既云七八分登稔，而所請災結，則諸元摠幾 爲四分之一，終不免稍過，竝事目以五百結，特爲劃下，使之均俵，壬辰停退還保，是今年當捧，何用煩陳，推徵之限麥秋防塞，依請施行何如，上曰，依爲之。 (…)

<비변사등록 222책, 순조 34년 1834년 09월 29일(음)>

사회/윤리 · 풍속

水原留守 李光文이 壬辰 舊還餉米 各穀 785石을 3년 동안 排捧하게 할 것 등을 청하다

비변사의 계사에, “수원유수(水原留守) 이광문(李光文)의 계본을 보니, ‘본부(本府)의 임진년(壬辰年:순조32, 1832)의 구 환향(舊還餉)으로 받지 못한 각곡(各穀)이 7백 85석 영(零)인데 3년에 한하여 배봉(排捧)하여 백성의 힘을 펴주게 하라고 묘당에서 품치하게 하소서.’ 하였습니다. 연분(年分) 때를 제외하고 정퇴(停退)를 양청(仰請)하는 것은 추후에 융통할 수 없는 법의(法意)가 원래 엄중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렇게 배봉하자는 청이 비록 사세(事勢)가 그러한 데서 나왔지만 적규(糴規)로 논하자면 후일의 폐단과 관계가 있으니 당해 수신(守臣)을 추고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이것은 신 환곡(新還穀)과는 이미 차이가 있고, 게다가 조정(朝廷)에서 화성(華城) 백성을 진휼(軫恤)하는 것이 다른 데에 비교하여 더욱이 별다르니 어찌 특례로 하는 정사(政事)가 없을 수 있겠습니까? 특별히 청한 대로 시행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답하였다.

司啓辭，即見水原留守李光文啓本，則以爲 本府壬辰舊還餉未捧各穀七百八十五石零，限三年排捧，俾紓民力事，請令廟堂稟處矣，除非年分 時，仰請停退，則無得追後闊狹，法意自來嚴重，而今 此排捧之請，雖出於事勢之然，論以糴規，有關後弊，該守臣推考，第念此與新還，既有間焉，而況朝家 之軫恤華民，視他尤別，則何可無拔例之政，特依所 請許施何如，答曰，允。
<비변사등록 223책, 헌종 1년 1835년 05월 11일(음)>

사회/윤리 · 풍속

대왕대비가 水害를 입은 水原의 民戶에 恤典을 내리라고 전교하다

○ 대왕대비 전에서 전교하기를, “화성유수(華城留守)의 장계를 보니, 그날 풍우(風雨)로 본부(本府)의 공사간(公私間)의 전답(田畓)이 재해를 입고 민호(民戶)가 무너지고 깔린 것이 또 이와 같이 많다. 각처(各處)의 민정(民情)을 생각하면 먹고 자는 것이 편치 않으니 견휼(蠲恤)하는 은전과 편안히 살게 할 방도를 각별하게 강구하여 하나의 백성도 살 곳을 잃는 근심이 없게 하라고 묘당에 분부하라.” 하였다.

大王大妃殿傳曰，即見華留狀啓，伊日風雨，本府公私田畓之被災，民戶之顛壓，又如是夥然，

言念各處民情，寢食不安，蠲恤之典，奠接之方，各別講究，俾無一民失所之患事，分付廟堂。
<비변사등록 223책, 헌종 1년 1835년 06월 30일(음)>

사회/윤리 · 풍속

水原留守 徐能輔의 災實 狀啓에 대해 보고하고 그 대책을 묻다

○ 비변사의 계사에, “수원유수(水原留守) 서능보(徐能輔)의 재실(災實) 장계를 보니 ‘지부(地部:호조)에서 획급해 내려주는 재결(災結) 30결 외에 신구(新舊)의 재결이 합하여 1천 1백 21결 7부 2속이니 특별히 더 획급하라고 허락하여 금년의 환곡(還穀)과 향곡(餉穀)의 받아야 할 것 중에서 소금기에 젖어 전부 버린 면(面)은 3분의 1을, 물에 잠겨 내가 된 면은 4분의 1을 정퇴하고, 이 밖에 서리가 일찍 내리고 바람에 상한 곳의 분등(分等)은 구별하고 준절(準折)하여 곡식을 대봉(代捧)하며, 추노(推奴)와 징채(徵債)는 일체로 방색(防塞)하라고 아울러 묘당에서 품지하여 분부하게 하소서. 그리고 신포(身布)를 알맞게 헤아려 대봉하고 춘궁기에 형편대로 급한 불을 끄는 것은 나중에 등문(登聞)하겠습니다.’ 하였습니 다. 금년의 경기(京畿)의 농사는 처음 생각했던 것과 많이 다르고 본부(本府)의 바다에 인접한 땅은 또한 물에 잠기는 재해를 많이 입어 민정(民情)을 생각하면 참으로 걱정스럽습 니다. 재결을 더 청한 수효는 현재 기경(起耕)하는 답총(畓摠)과 참고하여 헤아리면 끝내 분수(分數)를 조금 넘는 것을 면치 못했으니 사목(事目)에서 원래 획급한 외에 다시 1천 결 을 더 획급하여 양을 헤아려서 고루 나눠주게 하고, 환곡과 향곡을 정퇴하는 것은 참으로 어렵고도 신중한 바이나 원래 장계에서 청한 바가 단지 바닷가와 내를 이룬 면에 있어서 지 나친 데에 이르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으니 아울러 추노와 징채를 방색하는 것과 함께 장계의 사연대로 시행을 허락하고, 준절하여 곡식을 대봉하는 것은 단지 분등을 구별할 것 만 말하고 처음에 분수를 개록(開錄)하여 등문하겠다는 것이 없었으니 소홀함을 면치 못하 였으므로 하나로 지적하여 다시 아뢰게 한 뒤에 품처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답하였다.

司啓辭，卽見水原留守徐能輔災實狀啓，則 以爲地部劃下災三十結外，新舊災合一千一百二十一結七負二束，特許加劃，今年還餉當捧中鹹損 全棄之面三分一，水沈成川之面四分一停退，外此 霜早風損，分等區別，準折代穀，推奴徵債一切防塞 事，竝請令廟堂稟旨分付，而身布之量宜代捧，窮 春之從便救急，追後登聞爲辭矣，今年畿農，多違 始料，而本府沿海之地，亦多沈墊之災，言念民情，誠 爲悶然，而災結加請之數，參互於時起畓摠，終未免 稍過分數，事目元劃外，更以一千結加劃，使之酌量 均俵，還餉停退，固所難愼，而原啓所請，只在於濱 海與成川之面，可知其不至過濫，竝與推徵防塞，而 依狀辭許施，準折代穀，只言分等區別，而初無分數 之開錄登聞者，未免疎忽，使之指一更啓後，稟處何如，答曰，允.

<비변사등록 223책, 헌종 1년 1835년 10월 03일(음)>

사회/윤리 · 풍속

水原에 災結 9백70결을 더 劃給할 것 등을 청하다

○ 비변사의 계사에, “수원유수(水原留守) 서유구(徐有渠)의 재실장계(災實狀啓)를 보니 호조에서 획급해준 재(災) 30결 외에 신구(新舊)의 재 도합 1천 1백 83결 85부 9속을 특별히 더 획급해주고, 작년에 정퇴한 환향(還餉)의 각곡 6천 9백 77석을 명년까지 그대로 정퇴하며, 추노(推奴)와 징채(徵債)를 일체 방색하도록 아울러 묘당에서 품지하여 분부하게 하기를 청하였습니다. 금년 경기(京畿)의 농사는 족히 흉년을 면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본부

(本府)는 기전(畿甸:경기)에서 비록 조금 못하다 하겠지만, 온 경내를 통틀어 논하면 역시 전실(全失)은 아닌데 재결(災結)을 더 한 것이 도리어 작년보다 많으니 분수(分數)에 지나침이 있음을 면치 못하므로, 원래 획급한 외에 9백 70결을 더 획급하여 1천 결의 수를 채워 주면 아마도 백징(白徵)할 염려는 없을 듯하니 이것으로 고루 나눠주게 하고, 환향의 신구(新舊)를 아울러 독촉하는 것은 사세가 과연 어려우니 우선 그대로 정되하였다가 내년 가을에 가서 준봉(準捧)하게 하고, 추노와 징채를 방색함 역시 허시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희한다고 답하였다.

司啓辭，卽見水原留守徐有渠災實狀啓，則以爲地部劃下災三十結外，新舊災合一千一百八十三結八十五負九束，特許加劃，昨年停退還餉各穀六千九百七十七石，限明年仍停，推奴徵債一切防塞事，竝請令廟堂稟旨分付矣，今歲畿農，足稱免歉，本府在畿甸，雖居稍遜，而統論一境，亦非全損，災結加請之反多於昨年，未免有過於分數，元劃外以九百七十結加劃，俾滿千結之數，亦庶無白徵之患，使之以此均俵，還餉之新舊并督，事勢果難，姑許仍停，待明年準捧，推徵防塞，亦爲許施，何如，答曰，允．

<비변사등록 224책, 헌종 2년 1836년 09월 29일(음)>

사회/윤리 · 풍속

水原留守 徐有渠의 災實狀啓에 대해 稟旨하다

비변사에서 아뢰기를, “수원유수 서유구(徐有渠)의 재실장계(災實狀啓)를 보니 ‘지부(地部)의 획하재(劃下災) 15결 외에 부족재 9백 62결 57부 2속을 특별히 더 획급하도록 허락하소서. 을미년(乙未年:헌종1, 1835)에 정되한 환향 각 곡 6천 9백 77석은 내년까지 그대로 정지하고, 추노와 징채를 일체 방색하도록 아울러 묘당에서 품지하여 분부하게 하소서.’ 하였습니다. 본부의 농사 형편이 처음에는 비록 가물었으나, 여름에 장마가 지고 가을에 햇볕이 나는 것이 모두 순조로웠습니다. 지금 흉년이라고 하면 참으로 지나치다고 하겠으나, 바닷가의 각 면은 설사 손해가 난 것이 있더라도 한 지역으로 묶어서 논하면 조금 잘못된 데에 지나지 않습니다. 청한 바 재결(災結)은 원래의 총수에 비하면 너무 많음을 면치 못하였으니, 사목으로 획급해준 것 외에 5백 결을 더 획급하여 고루 나눠주게 하소서. 을미년에 정되한 것은 바로 금년에 받아야 하는데, 매년 그대로 정지하면 끝내 후일의 폐단이 될 것을 염려해야 하니 절미(折米)하여 수봉(收捧)하도록 분부하고, 추노를 방색하는 것은 장계에서 청한 대로 시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희한다고 답하였다.

司啓曰，卽見水原留守徐有渠災實狀啓，則以爲地部劃下災十五結外，不足災九百六十二結五十七負二束，特許加劃，乙未停退還餉各穀六千九百七十七石，限明年仍停，推奴徵債一切防塞事，竝請令廟堂，稟旨分付矣，本府農形，始雖旱乾，夏霈秋曝，俱獲調適，今若謂之失稔，則誠屬過當，濱海各面，縱有所損，統論一境，不過尺朽，所請災結，參互元摠，未免太多，事目劃下外，五百結加劃，使之均俵，乙未停退，卽是今年當捧，每每仍停，終成後弊，在所當念，以折米收捧之意，分付，推徵防塞事，依狀請施行，何如，答曰，允．

<비변사등록 225책, 헌종 3년 1837년 09월 28일(음)>

사회/윤리 · 풍속

水原에 事目 외에 災結 1천 60결을 특별히 더 劃給할 것 등을 청하다

○ 비변사에서 아뢰기를, “수원유수(水原留守) 이기연(李紀淵)의 재실장계(災實狀啓)를 보니, ‘호조에서 획급해준 재(災) 80결 외에 신구(新舊)의 재를 합하여 2천 6백 27결 80부 9

속을 특별히 더 획급해 주고, 금년의 환곡과 향곡으로 꼭 받아야 할 것 중에서 3분의 1은 본색(本色)으로, 3분의 1은 다른 곡식으로, 3분의 1은 돈으로 대봉(代捧)하였다가 내년 가을에 가서 다시 본색으로 만들고, 신미(身米)는 아울러 순전(純錢)으로 대봉하며, 을미년(乙未年:헌종1, 1835)에 정퇴한 환곡과 향곡의 각곡 6천 9백 77석은 내년까지 그대로 정퇴하고, 추노(推奴)와 징채(徵債)는 방색하도록 아울러 묘당에서 품지하여 분부하게 하소서.’ 하였습니다. **본부(本府)**는 지역이 넓고 갯벌이 많은데 갖가지 재앙을 겪었으므로 흉년의 참혹한 형세로는 의당 재충(災摠:급재의 총수)이 많을 것이나, 청한 결수(結數)는 조금 지나침을 면치 못하니 사목(事目) 외에 1천 6백 결을 특별히 더 획급하여 고루 나눠주게 하고, 신환·향(新還餉)의 대곡(代穀)과 정퇴 조(停退條)는 그대로 정퇴하며, 군·신미(軍身米)를 돈으로 대봉하는 것은 모두 재민(災民)의 힘을 펴주는 방도에 관계되니 추노와 징채를 방색하는 일과 함께 일체로 허시(許施)하되, 환곡과 향곡을 돈으로 대봉하는 것은 경법(經法)에 어긋남이 있으니 덮어두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답하였다.

司啓曰，即見水原留守李紀淵災實狀啓，則以爲地部劃下災八十結外，新舊災合二千六百二十七結八十負九束，特許加劃，今年還餉當捧中三分一，本色三分一，代穀三分一代錢，待明秋還作本色，身米並純錢代捧，乙未停還餉各穀六千九百七十七石，限明年仍停，推奴徵債防塞事，並請令廟堂，稟旨分付矣，本府地既廣斥，備經胥損歉形之慘，宜其災摠之多，而所請結數，未免稍過，事目外一千六百結，特爲加劃，使之均俵，新還餉代穀停退條仍停，軍身米代錢，俱係災民紓力之方，與推徵防塞，一體許施，還餉代錢，有違經法，置之何如，答曰，允。

<비변사등록 226책, 헌종 4년 1838년 09월 28일(음)>

사회/윤리 · 풍속

水原留守 李紀淵이 청한 災結을 더 劃給할 것을 청하다

비변사에서 아뢰기를, “지난번 **수원유수(水原留守)**의 연분장계(年分狀啓)로 인하여 사목제 80결 외에 신·구재(新舊災) 합 1천 6백 결을 복계(覆啓)하고 더 획급하였습니다. 지금 당해 유수 이기연(李紀淵)의 장계를 보니 재해의 형지와 백성의 형세를 다시 아뢰고, 감축된 재 1천 27결 80부 9속을 이전에 청한 대로 채워주도록 묘당에서 품지하여 분부하게 하기를 청하였습니다. 전번에 더 획급한 것이 넉넉하고 후하지 않은 것이 아니나, 수신(守臣)이 장계 사연에서 또 이와 같이 거듭 반복하였고 조정(朝廷)에서 **화성(華城)** 백성을 진휼(軫恤)하여 특례(特例)를 많이 사용하였으며, 또 손익(損益)의 사이에서 경비(經費)와는 무관하고 재해의 참혹함은 의당 영실(寧失)의 뜻에 붙여야 하니, 청한 바 재결을 특별히 채워서 주어 실제 혜택이 아래에까지 미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답하였다.

司啓曰，頃因水原年分狀啓，事目災八十結外，新舊災合一千六百結，覆啓加劃矣，即見該留守李紀淵狀啓，則復陳災形民勢，仍請見減災一千二十七結八十負九束，依前請準劃事，令廟堂稟旨分付矣，前此加劃，非不優厚，而守臣狀辭，又若是申復，朝家之軫恤華民，多用特例，且損益之際，無關於經費，災形之慘，宜付諸寧失，所請災結，特許準劃，俾爲實惠下究之地，何如，答曰，允。

<비변사등록 226책, 헌종 4년 1838년 10월 09일(음)>

사회/윤리 · 풍속

右議政 李止淵이 광주유수의 연분장계와 관련한 문제 등에 대해 논의함

○ 10월 15일 대신과 비국당상을 인견하여 입시하였을 때에 우의정 이지연(李止淵)이 아뢰

기를, (...) 또 아뢰기를, “지난번 광주유수(廣州留守)의 연분장계(年分狀啓)로 인하여 사목재(事目災) 외에 부족한 재(災) 4백 50결을 복계(覆啓)하고 더 획급하였는데, 지금 당해 유수 서희순(徐憲淳)의 장계를 보니 농사 형편과 재해로 손실이 난 상황을 다시 아뢰고, 감축된 재 2백 83결 94부를 특별히 준획(準劃)하도록 묘당에서 다시 품지하여 분부하게 하기를 청하였습니다. 본부(本府)의 세율(稅率)은 화성(華城:수원)과 같고 지금의 농사 형편도 백중(伯仲)의 사이인데, 화성에는 이미 준하여 시행하였으므로 본부 또한 똑같이 대해 주어야 하니 청한 바 재결(災結)을 특별히 준획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대왕대비전에서 그리하라고 답하였다. (...)

今十月十五日, 大臣備局堂上引見入侍時, 右議政李所啓, (...) 又所啓, 頃因廣州年分狀啓, 事目外不足災四百五十結, 覆啓加劃矣, 卽見該留守徐憲淳狀啓, 則復陳年形災損之狀, 仍請見減災二百八十三結九十四負, 特許準劃事, 更令廟堂, 稟旨分付矣, 本府稅率, 與華城相同, 見今年形, 又是伯仲之間, 華城既已準施, 本府亦宜一視, 所請災結, 特許準劃, 何如, 大王大妃殿答曰, 依爲之.(...)

<비변사등록 226책, 헌종 4년 1838년 10월 15일(음)>

사회/윤리 · 풍속

畿湖의 兩道 및 四都에서 賑恤을 보탠 사람들에게 각각 論賞하도록 청하다

○ 비변사의 계사에, “경기와 호서 양도(兩道) 및 사도(四都)의 진휼을 마친 장계가 지금 일제히 도착했습니다. 해청(該廳)에서 품처할 만한 것은 규례에 따라 거행해야 하겠으나 진휼곡을 보조한 각 사람들을 특별로 논상(論賞)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삼가 임진년(壬辰年: 순조32, 1832)의 전례에 따라 비변사에서 별단을 써서 들입니다. 그런데 홍대봉(洪大朋)과 백대현(白大顯)은 보조한 것이 가장 많으니 격려하고 권장하는 방도에 있어서 자격에 구애되어서는 안 되므로 모두 가설(加設)된 6품직에 우선 붙이고 수령의 자리가 나기를 기다려 차임하며, 김영걸(金永杰)·김봉주(金鳳柱)·김성응(金聲應)·한익언(韓翼彦)·김인신(金仁臣)·전원룡(田元龍)이 납부한 것은 비록 차등은 있으나 계제(階梯)가 모두 똑같이 보는 것이 합당하므로 아울러 수령으로 차송하고, 안경혁(安景赫)은 우선 오위장(五衛將)으로 차정하고 후에 본도의 중군(中軍)에 자리가 나면 차송하며, 한용준(韓用濬)·이인격(李麟格)·박규서(朴奎瑞)는 모두 가설 6품직에 조용(調用)하고, 유익원(劉益源)은 수는 비록 좀 못하나 초사(初仕)의 경력이 있으니 역시 가설 6품직에 조용하되 아울러 자리가 나는 대로 천전(遷轉)하며, 서위보(徐瑋輔)·이유달(李有達)·김치하(金致夏)는 모두 본도의 중군에 자리가 나는 대로 차송(差送)하며, 채시복(蔡時福)은 변장(邊將)의 자리가 나기를 기다려 차출해 보내고, 천우대(千禹大)·이양손(李良遜)은 아울러 본도의 첨사(僉使)로 차출해 보내며, 김일려(金一麗)는 전 사용(前司勇)이니 7품 실직(實職)에 가설로 단부(單付)하고, 이유성(李裕成) 등 6인은 모두 변장의 자리가 나는 대로 차송하며, 이달근(李達根) 등 5인은 아울러 오위장에 제수하고, 이재윤(李再允) 등 6인은 본도에서 자원에 따라 구처(區處:구분하여 처리함)하라고 해조 및 해도에 분부하겠습니다. 각처의 진휼하고 남은 전곡(錢穀)에 대해서는 송영(松營:송도유영(松都留營))에서 태안창(泰安倉)에 이록(移錄)한 것이므로 곧 전례에 따라 환곡으로 만든 것이니 장계의 내용대로 시행하게 하겠습니다. 그 밖에 지방(支放)의 급대(給代) 및 수선(修繕)에 첨보(添補)한 것은 모두 실용(實用)에 관계되는 것이니 모두 그 보고에 따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京畿)에서 진휼하고 남은 것을 환곡에 보태는 일이 도리어 혹 불편할 수도 있고, 폐단을 막는 일에 아마도 아주 긴요하므로 본도에서 각

읍의 사세를 자세히 살펴 편의에 따라 조처한 뒤에 보고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희한다고 답하였다.

진휼곡을 보조한 사람의 별단(別單) (…)

영암(靈岩) 거주 전 참사 김인신(金仁臣) 수원(水原) 납전 1만냥 (…)

평양 거주 전 참봉(前參奉) 유익원(劉益源) 수원 납전 5천냥 (…)

토산(兔山) 거주 전 오위장 김치하(金致夏) 수원 납전 3천냥 (…)

철산(鐵山) 거주 유학 이재운(李再允) 수원 납전 1천냥

강우문(姜遇文) 수원 납전 1천냥

최동일(崔東日) 수원 납전 1천냥

김윤옥(金潤玉) 수원 납전 1천냥

안봉상(安鳳祥) 수원 납전 1천냥

평양 거주 유학 김취흥(金就興) 수원 납전 7백냥

司啓辭，畿湖兩道及四都畢賑狀啓，今已齊到自該廳可以稟處者，當爲依例舉行，而至於補賑各人，不可不拔例論賞，謹依壬辰已例，自本司別單書入，而洪大朋·白大顯，捐助最多，其在激勸之道，不可拘於資格，竝先付加設六品職，守令待窠差擬，金永杰·金鳳柱·金聲應·韓翼彦·金仁臣·田元龍，所納雖有差等，階梯俱合一視，竝守令差送，安景赫先差五衛將，後本道中軍作窠差送，韓用濬·李獐格·朴奎瑞，竝加設六品職調用，劉益源，數雖稍□，既有初仕履歷，亦爲加設六品職調用，竝隨窠遷轉，徐瑋輔·李有達·金致夏，竝本道中軍隨窠差送，蔡時福，邊將待窠差送，千禹大·李良遜，竝本道僉使差送，金一麗，既是前司勇，七品實職加設單付，李裕成等六人，竝邊將隨窠差送，李達根等五人，竝五衛將除授，李再允等六人，令本道，從自願區處之意，分付該曹及該道，各處賑餘錢穀則松營之移錄泰安倉，便是循例作還者，許令依狀辭施行，其外支放給代及修繕添補，俱係實用，竝隨其所報許施，京畿賑餘條，添還反或難便，防弊必多關緊，令本道，詳察各邑事勢，從便措處後，報來，何如，答曰，允。

補賑人別單 (…)

靈岩居前僉使金仁臣水原納錢一萬兩(…)

平壤居前參奉劉益源水原納錢五千兩 (…)

兔山居前五衛將金致夏水原納錢三千兩 (…)

鐵山居幼學李再允水原納錢一千兩

姜遇文水原納錢一千兩

崔東日水原納錢一千兩

金潤玉水原納錢一千兩

安鳳祥水原納錢一千兩

平壤居幼學金就興水原納錢七百兩

<비변사등록 227책, 헌종 5년 1839년 06월 02일(음)>

사회/윤리 · 풍속

水原留守 沈能岳의 災實狀啓와 그에 대한 대책을 보고하다

비변사에서 아뢰기를, “수원유수(水原留守) 심능악(沈能岳)의 재실장계(災實狀啓)를 보니, 지부(地部)에서 획급한 재결(災結) 3천결 외에 부족한 재결 1천 4백 79결 79부 9속을 특별히 더 획급하고, 을미년(乙未年:헌종1, 1836)에 정되한 환향(還餉) 각곡 6천 9백 77석을 내년까지 그대로 정되하며, 노비를 추쇄하고 빚을 징수하는 일을 아울러 묘당에서 품지하여

분부하기를 청한다 하였습니다. 경기의 농사형편이 모두 처음 예상과는 좀 어긋났습니다. 그러나 본부는 저와 같은 넓은 면적에 비록 각종 재탈(災頽)이 있다 하더라도 이번에 추가로 요청한 수량이 과다함을 면할 수 없습니다. 사목(事目) 외에 9백 79결 영을 특별히 더 획급하여 고루 나누어 주게 하고, 을미년에 정되한 것은 이러한 해에 참으로 신환(新還)과 구환(舊還)을 모두 독촉하기 어려우니 우선 이전대로 그대로 정되하게 하며, 노비를 추쇄하고 빚을 징수하는 것도 역시 막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답하였다. 司啓曰, 卽見水原留守沈能岳災實狀啓, 則以爲地部劃下災三十結外, 不足災一千四百七十九結七十九負九束, 特許加劃, 乙未停退還餉各穀六千九百七十七石, 限明年仍停, 推奴徵債防塞事, 竝請令廟堂, 稟旨分付矣, 畿甸年形, 均之爲稍違始料, 而本府以若幅圓之廣, 雖有各樣災頽, 今此加請之數, 猶未免夥多, 事目外九百七十九結零, 特爲加劃, 使之均俵, 乙未停退則似此之歲, 果難新舊竝督, 姑令依前仍停, 推奴徵債, 亦許防塞, 何如, 答曰, 允.

<비변사등록 227책, 현종 5년 1839년 09월 28일(음)>

사회/윤리 · 풍속

水原에 災結 6백 50결을 특별히 劃給할 것 등을 청하다

비변사에서 아뢰기를, “수원유수(水原留守) 이익회(李翊會)의 재실장계(災實狀啓)를 보니, 신·구(新舊) 재결 8백 98결 99부 5속을 특별히 획급하도록 하고 을미년(乙未年:현종1, 1835)에 정되한 환곡과 향곡(餉穀) 6천 9백 77석을 우선 그대로 정되하도록 아울러 묘당에서 품지하여 분부하기를 청한다 하였습니다. 획급하기를 청한 신재결이 원충(元摠)과 비교하면 거의 10분의 1이 됩니다. 이와 같은 농사 형편으로는 극히 과다합니다만, 일이 본부(本府)에 관계되므로 곡진히 생각해야 하겠습니다. 6백 50결을 특별히 획급하여 고루 표재(俵災)하도록 하겠습니다. 을미년 정되조는 오래되어 거두기 어려운 것이 아니니 전체 수를 그대로 정되하는 것은 불가하므로 절반에 한하여 거두어들이도록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답하였다.

司啓曰, 卽見水原留守李翊會災實狀啓, 則以爲新舊災八百九十八結九十九負五束, 特許劃下, 乙未停退還餉六千九百七十七石, 姑許仍停事, 竝請令廟堂, 稟旨分付矣, 新災請劃, 較諸元摠, 幾爲十分之一, 以若年形, 極涉夥多, 而事係本府, 合示曲念, 六百五十結, 特爲劃給, 使之均俵, 乙未停退條, 此非久遠難捧, 則有不可全數仍停, 限折米收捧之意, 分付, 何如, 答曰, 允. <비변사등록 228책, 현종 6년 1840년 10월 28일(음)>

사회/윤리 · 풍속

水原留守 李翊會의 災實 狀啓와 그에 대한 대책을 보고하다

○ 비변사의 계사에, “수원유수(水原留守) 이익회(李翊會)의 재실장계(災實狀啓)를 보니, 신재(新災)와 구재(舊災) 도합 6백 64결 29부 5속을 특별히 획하(劃下)하도록 묘당에서 품지하여 분부하게 해 달라고 청하였습니다. 이처럼 크게 풍년이 든 해에는 재탈(災頽)이 있어서는 안 되는데 이번에 청한 바가 매우 과다합니다. 그러나 전부터 이어져 내려온 진황지(陳荒地)를 미처 다 개간하지 못한 것은 괴이하게 여길 것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수신(守臣)이 올린 장계의 내용도 이처럼 간절하고 지성스러우니, 6백 결을 특별히 획급하여 본부(本府)를 곡진히 생각하고 넉넉하게 구휼하는 뜻을 보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답하였다.

司啓辭, 卽見水原留守李翊會災實狀啓, 則新舊災合六百六十四結二十九負五束, 特許劃下事,

請令廟堂稟旨分付矣，似此大穰之年，不宜有災頤，今其所請，殊涉過多，而流來陳荒之未及盡
 舉，容或無怪，守臣狀辭，若是懇摯，六百結特爲劃給，以示爲本府曲念優恤之意何如，答曰，
 允。

<비변사등록 229책, 헌종 7년 1841년 10월 22일(음)>

사회/윤리 · 풍속

右議政 權敦仁이 세력가들의 민폐에 대해 논의하다

○ 8월 2일 대신과 비국당상을 인견하여 입시하였을 때에 우의정 권돈인(權敦仁)이 아뢰기
 를, (….) 또 아뢰기를, “신이 지난번의 연석에서 사단(事端)으로 인하여 세력 있는 사람들
 이 백성들을 괴롭히는 폐단에 대해 대략 진술하고, 이어 법사(法司)에 엄히 신칙하기를 청
 하였습니다. 도성과 가까운 곳에서 법을 무시하고 방자하게 행동한 것이니, 너무도 놀랍기
 그지없습니다. 지금 수원유수가 아뢴 내용으로 보건대, 근기(近畿)나 원도(遠道)에서 조관
 (朝官)의 위엄을 빙자하기도 하고 반족(班族)의 위세를 무릅쓰기도 하면서, 무단으로 침학
 하는 것을 행세하는 것으로 삼고 재물을 탈취하는 것을 스스로 살아가는 계책으로 삼고 있
 습니다. 그리고 잡기배(雜歧輩)와 무뢰배(無賴輩)를 데려다가 도당(徒黨)을 돕게 하는 포학
 한 관속(官屬)으로 만들기 때문에 금지하고자 하면 교졸(校卒)을 구타하니, 어떤 사람도 통
 제를 못하고 있습니다. 관장(官長)은 애당초 손을 대지도 않고 영문(營門)에서는 태연히 아
 무것도 들은 것이 없는 듯한 태도를 취합니다. 이에 폐해는 날로 불어나고 법은 이 때문에
 행해질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은데 향곡(鄉曲)의 백성들이 어떻게 목숨을 보전할 수가 있
 겠습니까. 고을마다 모두 그런 상황이고 도마다 다를 게 없습니다. 근일에 들은 바로는 화
 성(華城)의 일개 최립(崔笠)만 그럴 뿐만이 아니므로 우선 군이 전해들은 것을 지적해서 우
 러러 아뢴 필요는 없겠지만, 이는 법을 엄하게 해서 철저히 금하지 않는다면 장차 고할 데
 없는 부류가 이들 무리의 손에 다 죽어갈 것입니다. 이에 우선 이런 내용으로 각도에 관문
 을 보내 각별히 염탐하게 해서 적발하는 대로 형장을 치고 정배를 하여 기어이 뿌리 뽑도록
 하되, 수령이 금하지 못하면 영문에서 수령을 처벌하고 영문에서 금하지 못하여 또 묘당에
 까지 소문이 들리면 해당 도신을 결단코 무겁게 논책해야 합니다. 아울러 이런 내용으로 엄
 히 통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그리하라 하였다.

今八月初二日大臣·備局堂上引見入侍時，右議政權所啓，(…) 又所啓，臣於向筵，因事端，略
 陳強禦厲民之弊，仍請嚴飭法司矣，輦轂咫尺，蔑法恣橫，已不勝萬萬駭惋，今以華留所奏而觀
 之，近畿遠道，或藉朝官之威，或冒班族之勢，武斷侵虐，以爲行世攘奪財貨，自作生計，以雜
 技無賴之類爲徒黨，相助之虐，官欲禁止，則驅打校卒，人莫誰何，官長初不下手，營門恬若無
 聞，弊日滋甚，法無以行，如是而鄉曲民生，將何以保命乎，邑邑皆然，道道無異，近日所聞，
 非但華城之一崔笠而已，姑不必以傳聞，指的仰奏，而此若不嚴法痛禁，則將使無告之類，盡劉
 於此輩之手，爲先以此意，發關各道，使之各別廉探，隨其現發，以刑以配，期於鋤治乃已，而
 守令不禁，則營門罪守令，營門不禁，而又有及聞於廟堂，則該道臣，斷當從重論責，竝以此嚴
 加知委何如，上曰，依爲之。

<비변사등록 230책, 헌종 9년 1843년 01월 11일(음)>

사회/윤리 · 풍속

水原留守 徐熹淳의 災實狀啓에 대해 稟旨하다

○ 비변사에서 아뢰기를, “수원유수 서희순(徐熹淳)의 재실장계를 보니, ‘사목재 15결 이

외에 부족한 재결 9백 23결 75부 7속을 특별히 더 획급하고, 노비를 추쇄하고 빚을 징수하는 일은 전례대로 막도록 묘당에서 품지하여 분부하게 해 주소서.’ 하였습니다. 본부의 농사 형편을 보면 소강이라고 할 수 있으니, 청한 재결은 결국 과다한 경우에 해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전부터 본부에 대해 돌봐준 것이 다른 곳과는 차이가 있었으니, 사목재 이외에 8백 결을 특별히 더 획급하소서. 노비의 추쇄와 빚의 징수는 막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답하였다.

司啓曰，卽見水原留守徐憲淳災實狀啓，則事目災十五結外，不足災九百二十三結七十五負七束，特許加劃，推奴徵債，依前防塞事，請令廟堂稟旨分付矣，本府年形，旣曰少康，則所請災結，終涉夥多，而自前軫恤本府，與他有異，事目外八百結，特爲加劃，推徵，許令防塞何如，答曰，允

<비변사등록 230책, 헌종 9년 1843년 10월 25일(음)>

사회/윤리 · 풍속

水原留守 李光正의 災實狀啓에 대해 보고하고 그 대책을 진달하다

○ 비변사에서 아뢰기를, “수원유수(水原留守) 이광정(李光正)의 재실장계(災實狀啓)를 보니, 사목재(事目災) 15결 이외에 부족한 재결 6백 27결 98부 5속을 특별히 추가로 획급하고, 노비의 추쇄와 빚의 징수를 내년 가을까지 막도록 묘당에서 품지하여 분부하기를 청한다 하였습니다. 본부(本府)의 농사는 비와 햇볕이 순조로웠으니 고르게 풍작임을 증험할 수가 있고, 바람과 우박으로 인한 손상도 약간에 에 불과한데도 청한 재결이 많은 편에 속하니, 사목재 이외에 4백 50결을 특별히 추가로 획급하고, 노비의 추쇄와 빚의 징수 역시 막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답하였다.

司啓曰，卽見水原留守李光正災實狀啓，則事目災十五結外，不足災六百二十七結九十八負五束，特許加劃，推奴徵債，限明秋防塞事，請令廟堂稟旨分付矣，本府穡事，雨暘調順，可驗均熟，風雹傷損，不過點瑕，而所請災結，殊涉稍多，事目外四百五十結，時爲加劃，推徵亦許防塞何如，答曰，允.

<비변사등록 231책, 헌종 10년 1844년 11월 02일(음)>

사회/윤리 · 풍속

水原에 事目 외에 災結 4백 70결을 더 劃給할 것을 청하다

○ 비변사에서 아뢰기를, “수원유수(水原留守) 이광정(李光正)의 재실 장계를 보니, ‘사목재 30결 이외에 부족한 재결 7백 9결 82부 5속에 대해 특별히 더 획급하게 하고, 노비를 추쇄하고 빚을 징수하는 일을 내년 가을까지 막아 주도록 묘당에서 품지하여 분부하게 해 주소서.’ 하였습니다. 올해 경기의 농사는 고른 풍작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본부(本府)의 농사에도 어찌 차이가 나겠습니까. 일찍 선선한 바람이 부는 바람에 손상을 입은 것이 있었다고 말할 수 있더라도 늦게 햇볕을 쬌는 바람에 거의 모두 결실을 이루었으므로 청한 재결은 조금 많은 편에 해당하니, 사목재 이외에 4백 70결을 특별히 더 획급하고, 노비를 추쇄하고 빚을 징수하는 일도 막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답하였다.

司啓曰，卽見水原留守李光正災實狀啓，則事目災三十結外，不足災七百九結八十二負五束，特許加劃，推奴徵債限明秋防塞事，請令廟堂稟旨分付矣，今年畿農，可謂均登，本府穡事，寧有異同，早涼雖云有損，晚曝幾皆成實，所請災結，殊涉稍多，事目外四百七十結，特爲加劃，推徵亦許防塞，何如，答曰，允.

<비변사등록 232책, 헌종 11년 1845년 10월 23일(음)>

사회/윤리 · 풍속

水原留守 李若愚의 狀啓에 대해 떠내려간 民家에 원래의 恤典 외에 더 보살피 주라는 傳敎 수원유수(水原留守) 이약우(李若愚)의 장계에 민가가 떠내려가고 깔렸다는 일로 전교하기를, “이렇게 농사가 한창인 때에 허다한 민호(民戶)가 떠내려가고 깔렸다니, 듣기에 매우 가엾다. 원래의 홀전 외에도 별반으로 더 돌보고 도와주며, 집을 지어 편안하게 살아가게 할 방도를 묘당에서 말을 만들어 분부하라.” 하였다.

以水原留守李若愚狀啓, 民家漂壓事, 傳曰, 當此農殷之時, 許多民戶之漂壓, 聞甚矜惻, 元恤典外, 別加顧助, 結構奠接之方, 廟堂措辭分付.

<비변사등록 233책, 헌종 12년 1846년 06월 16일(음)>

사회/윤리 · 풍속

水原의 南門 등을 修繕할 物力으로 水原府의 賑濟穀 쌀1천섬 등을 劃給할 것을 청하다

비변사에서 아뢰기를, “수원유수(水原留守) 이약우(李若愚)가 보고한 바를 보니, ‘본부(本府)의 남북(南北) 수문(水門)과 문루(門樓), 매향교(梅香橋)가 무너진 곳을 방금 수리하였으나 본부의 각고(各庫)는 모두 텅 비어 커다란 역사를 이루기가 전혀 그 방법이 없으니, 본부의 진제곡(賑濟穀)인 미(米) 2천 석, 태(太) 1천 석과 호남(湖南)에 있는 본부의 곡식 중에서 미 2천 석을 즉시 구획하게 하소서.’ 하였습니다. 공사가 이미 커다란 데에 관계되고 사력(事力)도 모자란다고 하니, 물력(物力)을 조획(措劃)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그 들어가는 것은 오직 아끼는 데에 있으니 본부의 진제곡인 미 1천 석, 태 5백 석과 호남에 있는 곡식 중에서 미 2천 석을 획급하게 하되, 이는 원래 곡식으로 배어 주어 그대로 모축(耗縮)에 돌아가서는 안 되니 해를 헤아려 더 보탠 것은 도로 본래 총수(總數)에 채우라고 또한 신칙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답하였다.

司啓曰, 卽見水原留守李若愚所報, 則以爲本府南北水門及門樓梅香橋頽圯處, 今方修繕, 而本府各庫, 俱爲枵然, 成就巨役, 萬無其路, 就本府賑濟穀米二千石, 太一千石, 湖南所在本府穀中米二千石, 請卽區劃矣, 工役既係浩大, 事力亦云窘絀, 不可無物力措劃, 而其所容入, 惟在撙節, 本府賑濟穀米一千石, 太五百石, 湖南所在穀中米二千石, 許令劃給, 此是元穀割付, 則不宜仍歸耗縮, 計年添補, 還充本摠之意, 亦爲申飭, 何如, 答曰, 允.

<비변사등록 233책, 헌종 12년 1846년 09월 07일(음)>

사회/윤리 · 풍속

水原에 事目 외 災結 4백 50결을 더 劃給할 것을 청하다

비변사에서 아뢰기를, “수원유수(水原留守) 이약우(李若愚)의 재실장계(災實狀啓)를 보니, ‘지부(地部:호조)에서 획급해준 재(災) 30결(結) 외에 부족한 재 7백 60결 53부를 특별히 더 획급하고, 추노(推奴)와 징채(徵債)는 내년 가을에 한하여 방색하라고 아울러 묘당에서 품지하여 분부하게 하소서.’ 하였습니다. 본부(本府)의 지형은 개펄이 많은데다가 한 달이 넘는 비로 비록 약간의 손실이 없지 않았으나 필경에는 성취가 있어서 넉넉히 평년 수준은 되는데, 청한 바의 재결이 조금 분수(分數)를 넘었으니 사목(事目) 외에 4백 50결을 더 획급하여 고루 나눠주게 하고, 추노와 징채를 방색하는 것은 백성을 편하게 하는 정사(政事)에 관계되니, 또한 허시(許施)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답하였다.

司啓曰，卽見水原留守李若愚災實狀啓，則以爲地部劃下災三十結外，不足災七百六十結五十三負，特許加劃，推奴徵債，限明秋防塞事，竝請令廟堂，稟旨分付矣，本府地形，斥鹵居多，跨朔之雨，雖不無略干所損，畢竟成就，優爲少康，則所請災結，稍過分數，事目外四百五十結加劃，使之均俵，推徵防塞，係是便民之政，亦爲許施，何如，答曰，允。

<비변사등록 233책, 헌종 12년 1846년 09월 29일(음)>

사회/윤리 · 풍속

水原府에 災結 8백결을 더 劃給할 것을 청하다

○ 비변사에서 아뢰기를, “수원유수 김좌근(金左根)의 재실(災實) 장계를 보니 지부(地部)에서 획하한 재실 30결 이외에 부족한 재결 1천 92결 90부 4속을 특별히 더 획급하게 하고 노비를 추쇄하고 부채를 징수하는 것을 내년 가을까지 막도록 묘당에서 품지하여 분부하게 하기를 청하였습니다. 올해 기전(畿甸)의 재결은 연읍(沿邑)이 가장 심하고 본부 또한 빈해(濱海)라서 염분이 많은 갯벌이 많아 손해가 없지 않지만 늦게라도 성취하여 흉년에 이르지 않았으니 사목 이외에 천여 결을 청한 것은 다소 많으니 특별히 8백 결을 더 획급하게 하고 노비를 추쇄하고 부채를 징수하는 것을 막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답하였다.

司啓曰，卽見水原留守金左根災實狀啓則以爲，地部劃下災三十結外，不足災一千九十二結九十負四束，特許加劃，推奴徵債，限明秋防塞事，竝請令廟堂稟旨分付矣，今年畿甸之災，沿邑爲最，而本府又是濱海，斥鹵居多，非無所損，晚後成就，不至失稔，則事目外千餘結之請，稍涉過多，特以八百結加劃，推徵，許令防塞何如，答曰，允。

<비변사등록 234책, 헌종 13년 1847년 10월 07일(음)>

사회/윤리 · 풍속

水原의 事目 외 災結 8백결을 더 劃給할 것 등을 청하다

○ 비변사에서 아뢰기를, “수원유수의 재실 장계로 인하여 사목 재결 3천 결 이외의 부족한 재결 8백결을 복계(覆啓)하여 더 획급했습니다. 해당 유수 김좌근(金左根)의 장계를 보니 농사 형편에서 손해를 입은 실상을 다시 아뢰며 건감된 재결 2백 92결 90부 4속을 특별히 준획(準劃)하도록 다시 묘당에서 품지하여 분부하게 하기를 청하였습니다. 빈해(濱海)에서 손실을 입은 것이 유독 심해도 올해 재해가 고르게 피해를 입은 것이 아니어서 천결이 넘는 총수는 다소 많지만 지금 백성의 사정이 갈급하고 또 이렇게 거듭 청하는 데에는 해아린 바가 있을 것이니 장청대로 준획하여 고르게 나누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답하였다.

司啓曰，頃因水原災實狀啓，事目災三千結外，不足災八百結，覆啓加劃矣，卽見該留守金左根狀啓，則復陳農形受損之狀，仍請見減災二百九十二結九十負四束，特許準劃事，更令廟堂稟旨分付矣，濱海受損，雖或偏甚，今年災傷，既非均被，則過千災摠，殊涉夥多，而今以民情之如渴，又此申請，必有斟量而然，依狀辭準劃，使之均俵何如，答曰，允。

<비변사등록 234책, 헌종 13년 1847년 10월 20일(음)>

사회/윤리 · 풍속

水原의 城堞을 수축하기 위해 水原府에 있는 賑濟米 1천섬을 劃給할 것 등을 청하다

비변사에서 아뢰기를, “수원유수 김좌근(金左根)이 보고한 바를 보니 본부(本府)의 성첩

(城堞)과 문루(門樓)를 수축하는 일이 매우 커서 이전에 획급해준 물력(物力)으로는 오히려 부족하니 다시 돈 2만 냥을 즉시 구획하기를 청하였습니다. 작년에 획급해준 수량도 적지 않으나 공사할 곳이 방대하여 기왕부족하다는 탄식이 있으니 다소간 더 획급해 주지 않을 수 없으므로 본부에 있는 진제미(賑濟米) 1천 석을 취용하게 하고, 본부 성첩 등의 노역에 공명첩(空名帖)을 지급하여 보충하게 한 전례가 많이 있으니 공명첩 5백 장을 특별히 만들어 주어 보태서 일을 끝마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답하였다.

司啓曰，卽見水原留守金左根所報則以爲，本府城堞門樓等修築之役，極其浩大，前劃物力，猶患不足，更以錢二萬兩，請卽區劃矣，昨年許劃，數亦不些，而役處浩大，既有不足之歎，則不得不約綽加劃，本府所在賑濟米一千石，使之取用，本府城堞等役，許給空名帖補用，多有已例空名帖五百張，特爲成給，俾爲添補竣役之地何如，答曰，允。

<비변사등록 235책, 헌종 14년 1848년 01월 17일(음)>

사회/윤리 · 풍속

水原에 事目 외 災結 9백결을 더 劃給할 것을 청하다

○ 비변사에서 아뢰기를, “수원유수 김좌근(金左根)의 재실장계(災實狀啓)를 보니 사목재(事目災) 30결 이외에 부족한 재결(災結) 1천 3백 50결 74부 4속을 특별히 더 획급해주고, 노비를 추쇄하고 부채를 징수하는 일을 내년 가을까지 막도록 묘당에서 품지하여 분부하게 하기를 청하였습니다. 본부의 농사는 비록 혈농(穴農)이라고 하지만 각면(各面)의 농사 형편은 고르게 풍년이 들었으며 가뭄과 장마가 서로 어긋지지 않았고 가을별도 잘 익게 하였으므로 청한 재결(災結)은 다소 많은 것 같으니 사목재 외에 9백 결을 특별히 더 획급하여 영실(寧失)의 뜻에 보치고 고르게 나누어주게 하며, 노비를 추쇄하고 부채를 징수하는 일을 막는 것은 장정한 대로 시행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답하였다.

司啓曰，卽見水原留守金左根，災實狀啓，則事目災三十結外，不足災一千三百五十結七十四負四束，特許加劃，推奴徵債，限明秋防塞事，請令廟堂稟旨分付矣，本府穡事，藉謂穴農，各面年形，均之爲登，旱澇不無相錯，秋暄幾皆成熟，所謂災結，似涉稍多，事目外九百結，特爲加劃，以付寧失之義，俾爲均俵之地，推徵防塞，依狀請施行，何如，答曰，允。

<비변사등록 235책, 헌종 14년 1848년 10월 02일(음)>

사회/윤리 · 풍속

水原留守 金左根의 狀啓에 대해 무너진 民家에 恤典 외에 더 보살펴 주라고 전교하다

민가가 무너져 내렸다는 수원유수 김좌근(金左根)의 장계에 전교하기를, “들으니 매우 불쌍하고 측은하다. 원홀전 외에 더 보살펴 도와주고 즉시 집을 지어 입주시키는 방도로 묘당에서 말을 만들어 분부하라.” 하였다.

以水原留寸金左根狀啓，民家頽壓事，傳曰，聞甚矜惻，元恤典外，別加顧助，卽爲結構奠接之方，廟堂措辭分付。

<비변사등록 235책, 헌종 14년 1848년 11월 08일(음)>

사회/윤리 · 풍속

水原留守 金蘭淳이 청한 대로 災結 6백결을 특별히 劃給할 것을 청하다

비변사에서 아뢰기를, “수원유수 김난순(金蘭淳)의 재실장계를 보니 신·구재(新舊災) 6백 18결 71부를 특별히 획급하게 하고 노비 추쇄와 부채 징수를 내년 가을까지 방색하도록 묘

당에서 품지하여 분부하게 하기를 청하였습시다. 때로 비가 오고 때로 벌이 쪼어 평야의 농사일이 다행히 8, 9분(分) 성취하였지만 척로(斥鹵)의 재해 형편이 1백 90결충을 면치 못하였으니 묵은 옛 땅과 함께 응당 고르게 은혜를 강구하는 방도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청한 대로 6백 결을 특별히 획급해 주고 노비 추쇄와 부채 징수를 방색하는 것은 백성의 편의와 관련된 정사이므로 역시 시행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희한다고 답하였다.

司啓曰，卽見水原留守金蘭淳災實狀啓，則新舊災六百十八結七十一負特許劃下，推奴徵債，限明秋防塞事，請令廟堂稟旨分付矣，時雨時暘，實發實秀，坪野稼功，幸占八九分成就，斥鹵災形，未免百九十結摠，竝與舊陳之地，宜均究惠之道，依所請六百結特爲劃給，推徵防塞，係是便民之政，亦爲許施何如，答曰，允．

<비변사등록 236책, 철종 즉위년 1849년 10월 04일(음)>

사회/윤리 · 풍속

水原留守 金蘭淳의 狀啓에 대해 漂失되거나 무너진 民家에 恤典을 거행하라고 전교하다

민가가 물에 떠내려가고 무너졌다는 수원유수 김난순(金蘭淳)의 장계에 전교하기를, “비가 거듭되는 중에 해조(海潮)가 범람하여서 일경(一境) 안의 전토(田土)가 무너져 나가고 집들이 떠내려가거나 무너진 것이 매우 적지 않으니 그 슬프고 참혹한 것을 어찌 말로 다하겠는가. 앞으로 농사일이 어떠한지를 예측할 수 없으나 지금 많은 백성이 처소를 잃고 울부짖는 참상이 더욱더 근심스러우니 원恤典(原恤典) 이외에 공곡(公穀)을 신경 써서 지급하고 즉시 집을 지어 안정되게 살 수 있도록 묘당에서 조사(措辭)하여 행회(行會)하라.” 하였다.

以水原留守金蘭淳狀啓民家漂頽事，傳曰，積雨之中，加之以海潮汎濫，一境之內，田土之潰決，屋廬之漂壓，數甚不少，則其所愁慘，曷可勝言，來頭穡事之如何，姑未可預料，而目今多民之失所號呼之狀，尤爲矜悶，原恤典外，以公穀加意題給，趁卽結構奠居之事，廟堂措辭行會．

<비변사등록 237책, 철종 1년 1850년 07월 13일(음)>

사회/윤리 · 풍속

水原留守 金蘭淳의 災實分等狀啓에 대해 보고하고 그 대책을 진달하다

○ 비변사에서 아뢰기를, “수원유수 김난순(金蘭淳)의 재실 장계를 보니 사목 재결 30결 이외에 부족한 재결 9백 68결 81부 5속을 준획하게 하고 노비의 추쇄와 부채 징수를 내년 가을까지 막도록 묘당에서 품지하여 분부하기를 청한다 하였습니다. 경기에서 재해를 입은 연읍(沿邑)이 가장 심한데 본부는 빈해(濱海)의 땅으로 소금기 있는 땅이 대부분이어서 흉년이든 탄식이 없지 않습니다. 지금 이 재결의 요청은 아마도 짐작한 바가 있을 것이니 사목 이외에 청한 재결을 특별히 준획하게 하여 고르게 나누게 하고 노비의 추쇄와 부채 징수를 막는 일을 장청에 따라 시행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희한다고 답하였다.

司啓曰，卽見水原留守金蘭淳災實狀啓，則事目災三十結外，不足災九百六十八結八十一負五束，特令準劃，推奴徵債，限明秋防塞事，請令廟堂稟旨分付矣，畿甸被災，沿邑爲最，而本府，以濱海之地，斥鹵居多，殊不無失稔之歎，今此災請，必有斟量，事目外所請災結，特許準劃，俾爲均依，推徵防塞，依狀請施行何如，答曰，允．

<비변사등록 237책, 철종 1년 1850년 11월 04일(음)>

사회/윤리 · 풍속

水原留守 趙秉駿의 狀啓에 대해 무너지고 깔린 民家에 恤典을 거행하라고 전교하다

수원유수(水原留守) 조병준(趙秉駿)이 장계하여 민가가 무너져 내렸다고 아뢰는 데 대해 전교하기를, “많은 민호(民戶)가 한꺼번에 무너져 내렸더니 매우 놀랍고 참담하다. 원홀전 외에 각별히 더 보살피 주고, 물에 빠져 죽은 사람이 만일 생전의 신역(身役)·환곡(還穀)·군포(軍布)가 있거든 모두 탕감해 주며, 즉시 집을 지어 안주하게 함으로써 한 명의 백성이라도 살 곳을 잃고 방황하는 폐단이 없도록 묘당에서 각별히 말을 만들어 관문(關文)을 보내 신칙하라.” 하였다.

以水原留守趙秉駿狀啓，民家頽壓事，傳曰，許多民戶之一時頽壓，極爲驚慘，元恤典外，別加顧助，淪死人如有生前身還布，並蕩減，卽爲結構奠接，俾無一民失所棲遑之弊事，廟堂各別措辭關飭。

<비변사등록 238책, 철종 2년 1851년 08월 22일(음)>

사회/윤리 · 풍속

水原留守 趙秉駿의 狀啓에 대해 頽戶와 壓戶의 還餉과 身布를 代錢하도록 허락하다

비변사에서 아뢰기를, “수원유수(水原留守) 조병준(趙秉駿)의 재실장계(災實狀啓)를 보니, ‘사목재(事目災) 50결(結) 외에 부족재(不足災) 1천 3백 20결 2부(負) 6속(束)을 특별히 더 획급하고, 당봉(當捧)할 환향(還餉) 중에 해일면(海湓面)의 우심호(尤甚戶)는 3분의 2를, 지차호(之次戶)는 절반을, 초실호(稍實戶)는 3분의 1을 대전(代錢)하며, 그 외의 각면(各面)은 4분의 1을 대전하였다가 내년 가을에 도로 본색(本色)으로 만들고, 해일면의 신포(身布) 및 퇴호(頽戶)와 압호(壓戶)의 환향과 신포는 전 수량을 대전하게 하며, 노비의 추쇄와 빚의 징수를 방색하는 일을 모두 묘당에서 품지하여 분부하게 하소서.’ 하였습니다. 땅은 이미 갯벌이 되었고 재앙은 가뭄과 장마가 고루 갖추어져 항년(恒年)에 비교하면 흉년 아닌 것이 없으나, 재결을 청한 수량은 원총(元摠)과 대조하면 아무래도 과다한 듯합니다. 그러니 사목재 외에 1천 결을 특별히 더 주어 고르게 나누어 주게 하고, 환향을 대전하게 해 달라는 청은 비록 재해를 입은 백성들의 힘을 덜어 주려는 뜻에서 나온 것이지만 적법(糴法)에는 소중함이 있으므로 가볍게 허락할 수 없으니, 상당곡으로 준절하여 대봉하였다가 내년 가을에 도로 본색으로 만들게 하며 해일면 및 퇴호와 압호의 신포를 대전하게 하는 일과 노비의 추쇄와 빚의 징수를 방색하는 일은 모두 청한 대로 시행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답하였다.

司啓曰，卽見水原留守趙秉駿災實狀啓，則事目災五十結外，不足災一千三百二十結二負六束，特許加劃，還餉當捧中海湓面尤甚戶三分二，之次戶折半，稍實戶三分一代錢，外他各面四分一代錢，待明秋還作本色，身布之海湓面，米邊當納，折半代錢，頽壓戶還餉身布，全數代錢，推奴徵債防塞事，並請令廟堂稟旨分付矣，地既斥鹵，災備旱澇，較之恒年，未嘗非歉，而災結所請之數，參以元摠，終涉過多，事目外一千結，特爲加劃，使之均俵，還餉代錢之請，雖出於災民紓力之意，而糴法有重，不可輕許，以相當穀準折代捧，使之待明秋還作本色，海湓面及頽壓戶身布代錢，推徵防塞，並依請許施，何如，答曰，允。

<비변사등록 238책, 철종 2년 1851년 09월 26일(음)>

사회/윤리 · 풍속

水原留守 徐英淳의 陳弊 狀啓에 대해 回啓하다

○ 비변사에서 아뢰기를, “수원유수(水原留守) 서영순(徐英淳)이 폐막을 진달한 장계를 보

니, 아뢰기를 ‘구재(舊災)와 진재(陳災) 4백 28결 54부 4속을 특별히 영탈(永頤)을 허락하도록 묘당에서 품치하게 하소서.’ 하였습니다. 결(結)에는 원래 정한 총수가 있고, 재(災)에는 신구(新舊)의 구별이 있는데, 구재는 천반(川反)과 포락(浦落) 같은 것을 재명(災名)으로 삼고, 니생(泥生)은 당연히 도로 수확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진재와 구재의 일로 번번이 영탈하게 해 달라고 청한다면 환기(還起)는 조사해서 보탬 약이 없고, 국결(國結)은 해마다 부족할 우려가 있습니다. 각별히 조사해서 환국의 총수를 철저히 하도록 신칙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답하였다.

司啓曰，卽見水原留守徐英淳陳弊狀啓則以爲，舊陳災四百二十八結五十四負四束，特許永頤事，請令廟堂稟處矣，結有元定之摠，災有新舊之別，而舊災之如川浦爲名者，泥生則自當還實，若以陳舊之故，輒許永頤之請，則還起無查補之期，國結有歲虧之慮，以另加查得，到底還摠之意，申飭，何如，答曰，允．

<비변사등록 239책, 철종 3년 1852년 07월 14일(음)>

사회/윤리 · 풍속

水原留守 徐英淳의 災實狀啓에 대해 回啓하다

○ 비변사에서 아뢰기를, “수원유수 서영순(徐英淳)의 재실장계를 보니, ‘신재와 구재 1천 3백 86결(結) 76부(負) 4속(束)을 특별히 떼어 주고, 노비 추쇄와 징채를 이전대로 막아 주도록 묘당에서 품지하여 분부하게 해 주소서.’ 하였습니다. 본부의 농사 형편은 바닷가의 소금기가 많은 곳에 비록 약간의 손실이 있었으나, 실제로는 낙세(樂歲)에도 항상 있는 일입니다. 가을별이 적당하고 벌레도 그다지 심한 재해가 되지 않았으니, 청한 재결(災結)은 아무래도 과다한 듯합니다. 그러니 특별히 9백 결을 더 떼어 주어 고르게 나눠 주게 하고, 노비 추쇄와 징채를 막는 일은 백성들을 편하게 하는 정사와 관계되니, 장계에서 청한 대로 시행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답하였다.

司啓曰，卽見水原留守徐英淳災實狀啓，則新舊災一千三百八十六結七十六負四束，特許劃下，推奴徵債，依前防塞事，請令廟堂稟旨分付矣，本府農形，濱海斥鹵之處，縱有如干所損，實是樂歲恒有，而秋曝調適，蟲不甚災，則所請災結，終涉過多，特以九百結加劃，使之均俵，推徵防塞，係是便民之政，依狀請許施，何如，答曰，允．

<비변사등록 239책, 철종 3년 1852년 09월 25일(음)>

사회/윤리 · 풍속

水原留守 徐英淳의 災實狀啓에 대해 回啓하다

○ 비변사에서 아뢰기를, “수원유수 서영순(徐英淳)의 재실장계(災實狀啓)를 보니, 사목재(事目災) 10결(結) 외에 부족재(不足災) 1천 3백 32결 3부(負) 4속(束)을 특별히 떼어 주도록 하고, 노비를 추쇄(推刷)하고 빗을 징수하는 일은 이전대로 막아 주도록 모두 묘당에서 품지하여 분부하기를 청한다 하였습니다. 본부(本府)의 농사 형편이 처음에는 혹 가뭄을 걱정하기도 하였으나, 서리가 늦게 내리고 가을 햇살이 좋아서 늦게 이앙(移秧)한 곡식도 차례로 익었으니, 충분히 강년(康年)이라고 할 만 합니다. 그러니 청한바 재결(災結)은 매우 합당하다 할 수 없으니, 3백 결을 떼어 주어 고루 나누어 주게 하고, 노비를 추쇄하고 빗을 징수하는 것을 막는 일은 백성을 편안하게 해 주는 정사에 관계되는 만큼 장계에서 청한 대로 시행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답하였다.

司啓曰， 卽見水原留守徐英淳災實狀啓， 則事目災十結外， 不足災一千三百三十二結三負四束， 特許劃下， 推奴徵債， 依前防塞事， 竝請令廟堂稟旨分付矣， 本府農形， 始或憫旱， 而及夫霜退秋暄， 晚移之穀， 次第成熟， 則足可謂康年矣， 所請災結， 殊欠稱停， 以三百結劃給， 俾爲均俵， 推徵防塞， 係是便民之政， 依狀請施行， 何如， 答曰， 允。

<비변사등록 240책, 철종 4년 1853년 09월 24일(음)>

사회/윤리 · 풍속

水原의 災結을 加劃하기를 청하다

비변사에서 아뢰기를, “지난번 수원(水原)의 연분장계(年分狀啓)로 인하여 사목재(事目災) 10결(結) 외에 부족재(不足災) 3백 결을 복계(覆啓)하고 추가로 떼어 주었습니다. 방금 당해 유수(留守) 서영순(徐英淳)의 장계를 보니, 재해로 인한 손실 상황을 다시 진달하고, 이어 견감재결(見減災結)을 이전 장계에서 청한 대로 준하(準下)하도록 묘당에서 품지하여 분부하기를 청한다 하였습니다. 사목 외에 추가로 지급하는 것은 금년의 농사 형편에 비교하여 해아린 것이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본부(本府)에는 이미 전해 내려온 구재(舊災)가 있으니, 매년 으레 나누어 주는 것을 제하면 이번의 재해에 지급할 수 있는 것은 참으로 부족한 염려가 없지 않습니다. 다시 2백 결을 떼어 주어 실제 혜택이 백성들에게 미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답하였다.

司啓曰， 頃因水原年分狀啓， 事目災十結外， 不足災三百結， 覆啓加劃矣， 卽見該留守徐英淳狀啓， 則復陳災傷之狀， 仍請見減災結， 依前狀請準下事， 令廟堂稟旨分付矣， 事目外加給， 不無較量於今年農形， 然本府既有流來舊災， 除却每年例俵， 則以今災可給者， 誠不無不足之患， 更以二百結劃下， 俾爲實惠下究之地， 何如， 答曰， 允。

<비변사등록 240책, 철종 4년 1853년 10월 01일(음)>

사회/윤리 · 풍속

水原留守 李鶴秀의 狀啓에 대해 漂失되거나 무너진 民家에 恤典을 거행하라고 전교하다

민가가 무너지고 깔렸다는 일로 올린 수원유수 이학수(李鶴秀)의 장계에 대해 전교하기를, “민가가 무너지고 깔린 것이 이와 같이 많다니, 매우 불쌍하고 가엾다. 원래의 홀전 외에 따로 더 돌보아 주고, 즉시 집을 지어 편히 살게 하여 한 사람의 백성도 살 곳을 잃고 방황하는 폐해가 없도록 묘당에서 말을 만들어 분부하도록 하라.” 하였다.

以水原留守李鶴秀狀啓， 民家漂頽事， 傳曰， 民家之漂頽， 若是夥多， 聞甚矜惻， 元恤典外， 別加顧助， 卽爲結構奠接， 俾無一民失所棲遑之弊事， 廟堂措辭分付。

<비변사등록 241책, 철종 5년 1854년 07월 08일(윤)>

사회/윤리 · 풍속

水原留守 李鶴秀의 災實狀啓에 대해 回啓하다

○ 비변사에서 아뢰기를, “수원유수 이학수(李鶴秀)의 재실장계(災實狀啓)를 보니, 사목재(事目災) 10결 외에 부족재(不足災) 1천 3백 89결 53부 9속을 특별히 가획하고, 추노(推奴)와 징채(徵債)를 전과 같이 막도록 묘당에서 품지하여 분부하게 하기를 청하였습니다. 본부의 지형이 척박한 곳이 비록 많기는 하나 올해 경기 지역의 농사가 고르게 소강(小康)하다고 하겠는데, 재결을 청한 것이 너무 많습니다. 사목재 외에 6백 결을 가획하여 고르게 배

분하게 하고, 도망간 추노와 징채는 장계에서 청한 대로 시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희한다고 답하였다.

司啓曰，卽見水原留守李鶴秀災實狀啓，則事目災十結外，不足災一千三百八十九結五十三負九束，特許加劃，推奴徵債，依前防塞事，竝請令廟堂稟旨分付矣，本府地形，斥鹵雖多，今年畿農，均謂少康，則所請災結，終涉夥多，事目外六百結加劃，俾爲均俵之地，推徵防塞，依狀請施行，何如，答曰，允．

<비변사등록 241책, 철종 5년 1854년 09월 25일(음)>

사회/윤리 · 풍속

水原에 災結 6백 18결 71부를 劃下할 것을 청하다

비변사에서 아뢰기를, “수원유수 김도희(金道喜)의 재실 장계(災實狀啓)를 보니, 새 재결과 묵은 재결 6백 18결 71부를 특별히 획하하도록 하고, 노비(奴婢)를 추쇄(推刷)하고 채무(債務)를 받는 일을 내년 가을까지 방지하도록 묘당에서 품지하여 분부하기를 청한다 하였습니다. 비와 햇별이 조절되어 산과 들의 농사가 골고루 풍작이 아님이 없지만, 본부에는 척로(斥鹵)가 많이 차지하고 있어 전래해온 묵은 재결을 제거하면, 요청한 새 재결은 수량이 매우 정밀하고 간략합니다. 장계 내용에 따라 수량에 맞추어 획하하고, 노비의 추쇄와 채무를 받는 일을 방지하는 것 역시 시행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희한다고 답하였다.

司啓曰，卽見水原留守金災實狀啓，則新舊災六百十八結七十一負，特許劃下，推奴徵債限明秋防塞事，請令廟堂稟旨分付矣，雨暘之調，山耕野種，無不均登，而本府以斥鹵居多，除却流來舊災，則所請新災，數甚精約，依狀辭準劃，推徵防塞，亦爲許施，何如，答曰，允．

<비변사등록 242책, 철종 6년 1855년 10월 03일(음)>

사회/윤리 · 풍속

水原留守 洪在龍이 청한 대로 事目 외에 재결 1천 77결을 더 劃給할 것을 청하다

비변사에서 아뢰기를, “수원부유수(水原府留守) 홍재룡(洪在龍)의 재실 장계(災實狀啓)를 보니, ‘사목(事目)의 재결(災結) 20결 외에 부족한 재결 1천 77결 84부 2속을 특별히 추가로 획급하고, 노비를 추쇄하고 채무를 받는 것을 내년 가을까지 막는 일을 모두 묘당에서 품지하여 분부하도록 하십시오.’ 하였습니다. 금년에 경기도의 농사는 여러 도(道)보다 가장 우수한데 경기도의 농사 가운데 본부(本府)는 바닷가의 소금기가 있는 땅이라서 가을 수확이 조금 못한 한탄이 없지 않고, 요청한 재결은 반드시 수량을 참작해서 그리하였을 것이니, 특별히 수량에 맞추어 획급하여 골고루 나누어 주도록 하고, 노비를 추쇄하고 채무를 받는 것을 막는 일도 일체로 시행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희한다고 답하였다.

司啓曰，卽見水原府留守洪在龍災實狀啓，則事目災二十結外，不足災一千七十七結八十四負二束，特許加劃，推奴徵債，限明秋防塞事，竝請令廟堂稟旨分付矣，今年畿農，最優於諸道，而畿農之中，本府以濱海鹹鹵之地，秋穫不無少損之數，所請災結，必有斟酌而然，特爲準劃，俾爲均俵，推徵防塞，一體許施何如，答曰，允．

<비변사등록 243책, 철종 7년 1856년 09월 23일(음)>

사회/윤리 · 풍속

水原留守 洪在龍의 狀啓에 대해 무너진 民家에 원래의 恤典 외에 더 보살피 주라고 전교하다

○ 민가가 무너졌다는 수원유수(水原留守) 홍재룡(洪在龍)의 장계에 전교하기를, “민가가 무너진 것이 이렇게 많으니, 듣기에 매우 놀랍고 처참하다. 원래의 홀전 이외에 별달리 보살피 주고, 곧 집을 지어 안정되게 살도록 하여 한 사람의 백성이라도 살 곳을 잃고 방황하는 폐단이 없도록 묘당에서 각별히 말을 만들어 분부하라.” 하였다.

以水原留守洪在龍狀啓, 民家頽壓事, 傳曰, 民家頽壓若是夥多, 聞甚驚慘, 元恤典外別加顧助, 趁卽結構奠接, 俾無一民失所棲遑之弊事, 廟堂各別措辭分付.

<비변사등록 244책, 철종 8년 1857년 06월 30일(음)>

사회/윤리 · 풍속

水原留守 洪在龍이 청한 대로 事目 외 災結 7백 73결을 劃給할 것을 청하다

비변사에서 아뢰기를, “수원유수(水原留守) 홍재룡(洪在龍)의 재실장계(災實狀啓)를 보니, 사목(事目)의 재결 20결 이외에 부족한 재결 7백 73결 63부 4속을 특별히 획급하도록 하고, 노비를 추쇄(推刷)하고 채무를 받는 것을 내년 가을까지 막는 일을 모두 묘당에서 품지하여 분부하기를 청한다 하였습니다. 금년 경기 지방의 농사는 다른 도(道)보다 가장 잘 되었으나, 가을에 접어든 뒤 장마가 지나간 다음에는 애당초 피차의 구별이 없어졌습니다. 본부(本府)의 바닷가 소금기가 있는 땅은 얼마간의 손상이 없지 않을 것이므로 요청한 재결(災結)은 아마도 짐작이 있어 그러한 것이니 특별히 수대로 획급하여 골고루 나누어 주도록 하고, 노비를 추쇄(推刷)하고 채무를 받는 것을 막는 일도 일체 시행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답하였다.

司啓曰, 卽見水原留守洪在龍災實狀啓, 則事目結二十結外, 不足災七百七十三結六十三負四束特許劃下, 推奴徵債限明秋防塞事, 竝請令廟堂稟旨分付矣, 今年畿農最優於諸道, 而若其秋後潦漲所過後, 初無彼此之別矣, 以本府濱海鹹鹵之地, 宜不無多少痒損, 所請災結必有斟量而然, 特爲準劃, 俾令均俵, 推徵防塞, 一體許施, 何如, 答曰, 允.

<비변사등록 244책, 철종 8년 1857년 09월 23일(음)>

사회/윤리 · 풍속

水原府에 事目 외 災結 8백결을 劃給할 것을 청하다

비변사에서 아뢰기를, “방금 수원유수 서유훈(徐有薰)의 재실장계(災實狀啓)를 보니, 아뢰기를 ‘사목재(事目災) 10결 이외에 부족재(不足災) 1천 27결 83부 2속을 특별히 획급하도록 허락하고, 추노(推奴)와 징채(徵債)를 내년 가을까지 막아주도록 묘당에서 품처하여 분부하게 하소서.’ 한 일입니다. 경기의 농사가 가장 잘 되었다고 일컬어지는데 신구(新舊) 재결이 1천여 결인 것은 너무 지나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아랫사람을 이롭게 하는 의리로 심하게 감할 수는 없으니 8백 결을 획급하여 고르게 나누어 주게 하고, 추노 등의 절목은 내년 가을까지 막아주라고 행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답하였다.

司啓曰, 卽見水原留守徐有薰災實狀啓, 則事目災十結外, 不足災一千二十七結八十三負二束, 特許劃下, 推奴徵債限明秋防塞事, 竝請令廟堂稟旨分付矣, 畿農最稱登熟, 新舊災之千有餘結, 得不太過乎, 第以益下之義, 不宜剋減, 八百結劃給, 俾令均俵, 推奴等節, 限明秋防塞事, 行

會，何如，答曰，允.

<비변사등록 245책, 철종 9년 1858년 09월 23일(음)>

사회/윤리 · 풍속

水原留守 任百經이 청한 대로 舊災 7백 91결을 劃下할 것을 청하다

○ 비변사에서 아뢰기를, “수원유수 임백경(任百經)의 재실 장계(災實狀啓)를 보니, 신구재(新舊災) 7백 91결 96부 7속을 특별히 획하(劃下)하며, 노비를 추쇄하고 빚을 받아내는 일을 내년 가을까지 금지하도록 묘당에서 품지하여 분부하게 하기를 청하였습니다. 비가 오고 날이 개는 것이 고루 적절하여서 농사가 잘 이루어졌으며, 낮은 지역의 땅과 높고 건조한 땅이 비록 손실을 입었다고는 하나 통틀어 말하면 풍년이라 할 만합니다. 호조의 사목(事目)에서 애당초 재결을 획급하지 않은 것이 어찌 참작하여 해야 할 바가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보장(保障)의 고장이라 영실(寧失)의 의의를 깊이 간직해야 하니, 구재(舊災) 외에 또 올해의 재를 더 청한 것은 특별히 청한 대로 획하하여 고루 나누어 주게 하고, 노비를 추쇄하고 빚을 받아내는 일을 방색하는 것은 이례(已例)가 되다시피 하였으니, 아뢴대로 시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답하였다.

司啓曰，卽見水原留守任百經災實狀啓，則新舊災七百九十一結九十六負七束，特許劃下，推奴徵債，限明秋防塞事，竝請令廟堂稟旨分付矣，雨暘調均，穡功善就，汚下高燥，雖曰有損，而統稱爲康年，地部事目之初不劃災，豈無斟酌，然而保釐之地，深存寧失之義，舊災外又有今災之加請者，特爲準請劃下，以爲均俵之地，推徵係是已例，依施何如，答曰，允.

<비변사등록 246책, 철종 10년 1859년 09월 24일(음)>

사회/윤리 · 풍속

화성유수 남병철이 진홀미를 청하다

○ 정월 15일 약방의 입진에 대신과 비국당상을 인견(引見)하여 입시하였을 때에, 영의정 정원용(鄭元容)이 아뢰기를, (….) 또 아뢰기를, “화성유수(華城留守) 남병철(南秉哲)의 보고를 보니, 영속(營屬)의 요조(料條)를 조처하기 위해 본부(本府)의 진제미(賑濟米) 1천 5백 석을 대하(貸下)해 달라고 청하였습니다. 요조는 당초에 마련하는 것이 있는데 나이(挪移)하고 포흠 해 놓고 또 공곡을 획급해달라고 청하는 것은 사체(事體)에 있어서 결단코 시행하도록 허락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늬료로 줄 몫이 이미 텅 비었고, 조달할 방법이 없어서 장차 흠어지게 될 염려가 있다고 하니, 현재의 사세 또한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진홀미를 청한 대로 대하해주고 기한에 맞춰 되갚은 뒤에 보고하라는 내용으로 지시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그리하라 하였다. (….)

今正月十五日藥房入診，大臣·備局堂上引見入侍時，領議政鄭所啓，(…) 又所啓，卽見華城留守南秉哲所報，則爲營屬料條措處事，請本府賑濟米一千五百石貸下矣，料條自有當初磨鍊，則挪移虛欠，又請公穀劃給者，事面所在，決不當許施，第今餽料已罄，支調無術，將有渙散之慮云，目今事勢，亦不可不念，賑米依所請貸下，趁限還報後報來之意，知委，何如，上曰，依爲之.(….)

<비변사등록 247책, 철종 11년 1860년 01월15일(음)>

사회/윤리 · 풍속

水原의 年分에 대해 아뢰다

비변사에서 아뢰기를, “방금 수원유수 김병교(金炳喬)의 재실 장계를 보니, ‘사목재(事目災) 50결 이외에 부족재(不足災) 1천 2백 99결 50부(負) 6속(束)을 특별히 획급해 주고, 추노(推奴)와 징채(徵債)를 내년 가을까지 방색하는 일을 아울러 묘당으로 하여금 품지하여 분부하게 하소서.’ 하였습니다. 각곡(各穀)이 모두 흉작은 면했지만, 밭농사가 조금 못해서 연해(沿海)와 산간(山間) 사이에 작황의 차이가 있게 되었습니다. 사목재 외에 9백결을 특별히 획급하여 고르게 나누어 주게 하고, 추노와 징채의 방색은 그대로 시행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답하였다.

司啓曰, 卽見水原留守金炳喬, 災實狀啓, 則事目災五十結外, 不足災一千二百九十九結五十負六束, 特許劃下, 推奴徵債, 限明秋防塞事, 竝請令廟堂, 稟旨分付矣, 各穀非不免歉, 而惟田種稍遜, 沿峽之間, 致此占成之差殊矣, 事目災外九百結特劃, 使之均俵, 推徵防塞, 依施, 何如, 答曰, 允.

<비변사등록 247책, 철종 11년 1860년 09월 29일(음)>

사회/윤리 · 풍속

水原의 年分에 대해 아뢰다

○ 비변사에서 아뢰기를, “수원유수 김병교(金炳喬)의 재실 장계를 보니 신·구(新舊) 재결 6백 50결 70부를 특별히 획하하고 노비 추쇄와 부채 징수를 내년 가을까지 막도록 묘당에서 품지하여 분부하게 하기를 청하였습니다. 땅의 형편과 인력(人力)이 고르지 못하지만 가뭄과 홍수를 무릅쓰고 씨를 뿌린 것은 모두 약간의 풍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재결 2백 결이 어찌 지나치게 많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아울러 옛 탈과 함께 청한 바대로 준획(準劃)하고 노비 추쇄와 부채 징수를 막는 것 역시 시행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답하였다.

司啓曰, 卽見水原留守金炳喬災實狀啓, 則新舊災六百五十結七十一負, 特許劃下, 推奴徵債限明秋防塞事, 竝請令廟堂稟旨分付矣, 地形與人力, 雖或有不齊, 旱播與水種, 俱可謂稍稔, 新災二百, 豈云過濫, 竝與舊頃而依所請準劃, 推徵防塞, 亦爲許施, 何如, 答曰, 允.

<비변사등록 248책, 철종 12년 1861년 10월 06일(음)>

사회/윤리 · 풍속

水原留守 金泳根의 장계대로 不足災結을 劃下하고 推奴 徵債의 금지를 청하다

○ 비변사에서 아뢰기를, “수원유수 김영근(金泳根)의 재실장계(災實狀啓)를 보니, ‘사목(事目)의 재결 30결 이외에 부족한 재결 9백 6결 65부를 특별히 획급하도록 허락하며, 노비를 추쇄(推刷)하고 채무를 받는 것을 내년 가을을 기한으로 막는 일을 함께 묘당에서 품지하여 분부하도록 하십시오.’ 하였습니다. 경기 지방의 농사가 풍작이 아닌 것은 아니지만, 일부분이 잘못되는 것은 종종 있는 일이니, 사목의 재결 이외에 7백 결을 특별히 획급하고, 노비를 추쇄하고 채무를 받는 것을 내년 가을을 기한으로 막는 것과 같은 일도 장계의 내용에 따라 시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답하였다.

司啓曰, 卽見水原留守金泳根災實狀啓, 則事目災三十結外, 不足災九百六結六十五負, 特許劃下, 推奴徵債, 限明秋防塞事, 竝請令廟堂稟旨分付矣, 畿農非不成稔, 而尺寸之朽, 則往往有之, 事目災外七百結, 特劃徵推等事, 依施何如, 答曰, 允.

<비변사등록 249책, 철종 13년 1862년 09월 23일(음)>

사회/윤리 · 풍속

水原留守 南秉吉의 災實分等狀啓에 대해 回啓하다

비변사의 계사에, “방금 수원유수 남병길(南秉吉)의 재실분등 장계를 보니, 사목재 10결 이외에 부족한 재결 9백 39결 72부 4속을 특별히 더 획급해 주고, 추노와 징채를 내년 가을까지 막아 줄 것을 묘당에서 품지하여 분부하게 해 달라고 청하였습니다. 일찍 경작한 것은 수확하였으니 여기서 모자라는 것을 저기서 보충하기에 충분합니다. 비록 몇 파(把) 몇 속(束)의 작은 양이라 해도 마땅히 참작하여 헤아려야 합니다. 한 지역의 재결 총수가 분수를 조금 지나쳤으니 6백 결을 획급하여 고르게 나누어 주게 하고, 추노와 징채를 막아 달라고 한 것은 그대로 시행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답하였다.

司啓曰, 卽見水原留守南秉吉災實狀啓, 則事目災十結外, 不足災九百三十九結七十二負四束, 特許加劃, 推奴徵債, 限明秋防塞事, 請令廟堂稟旨分付矣, 早耕收穫, 足以失此補彼, 則雖把束之微, 尤宜斟酌, 而一境災摠, 稍過分數, 六百結劃下, 使之精俵, 推徵防塞, 依施何如, 答曰, 允.

<비변사등록 250책, 철종 14년 1863년 09월 26일(음)>

사회/윤리 · 풍속

華城留守를 재촉하여 수일 내로 辭朝하게 하기를 청하다

의정부에서 아뢰기를, “행행(幸行)의 명이 이미 내려져 거행할 일들이 여러 가지인데 진휼[賑恤]하는 일도 긴급합니다. 이러한 시기에 교체해 바꾸어 오랫동안 자리를 비게 만들었으니 매우 민망합니다. 새로 임명된 화성유수(華城留守)로 하여금 빠른 시일 안에 하직 인사를 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답하였다.

府啓曰, 幸行成命已下, 舉行多端, 賑恤之事, 又復緊急, 而此時遞易, 以致久曠, 極爲可悶, 新除授華城留守, 使之不日辭朝, 何如, 答曰, 允.

<비변사등록 251책, 고종 3년 1866년 01월 04일(음)>

사회/윤리 · 풍속

水原留守 趙獻永의 災實狀啓에 대해 回啓하다

의정부에서 아뢰기를, “지금 수원유수 조헌영(趙獻永)의 재실(災實) 장계를 보니, 신·구(新舊) 재결 8백 2결 53부 3속을 특별히 획급하게 하고, 노비 추쇄와 부채 징수를 내년 가을까지 막도록 묘당에서 품지하여 분부하게 하기를 청하였습니다. 본부의 농사 형편은 크게 풍년이 든 해여서 비록 약간의 손실된 곳이 있다 하더라도 재상(災傷)으로 논해서는 안 됩니다. 청한 결수가 너무 많으니, 5백 결을 재결로 획급하여 고루 나누어 주게 하고, 노비 추쇄와 부채 징수를 막는 것을 전례에 따라 시행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답하였다.

府啓曰, 卽見水原留守趙獻永災實狀啓, 則新舊災八百二結五十三負三束, 特許劃下, 推奴徵債, 限明秋防塞事, 請令廟堂, 稟旨分付矣, 本府農形, 優爲大穰之年, 而雖有如干所損, 不當以災傷論矣, 所請結摠, 殆涉夥多, 以五百結劃下, 使之均俵, 推徵防塞, 依已例許施, 何如, 答曰, 允.

<비변사등록 251책, 고종 3년 1866년 10월 08일(음)>

사회/윤리 · 풍속

水原留守 李載元이 청한 대로 舊陳을 개간하는 대로 復摠하고 推徵은 못하게 하다

의정부에서 아뢰기를, “수원유수 이재원(李載元)이 재실(災實) 장계를 보니, 올해 새로운 재결(災結) 1백 89결 31부 9속을 작년 전례에 따라 새로 집계된 결수(結數) 가운데 충당하여 획하(劃下)하고 전해 내려와 여러 해 묵어 사괄(查括)하지 못하고 남은 99결 46부 6속도 개간했는지를 조사하여 계산하는 숫자에 모두 넣고, 노비를 추쇄하고 부채를 징수하는 일을 내년 가을까지 막도록 묘당에서 품지하여 분부하게 하기를 청하였습니다. 날씨와 농사의 공력이 모두 좋아 다행히 곡식이 모두 잘 익어 들판에 풍년이 들었고 백성도 좋아 하니 실로 다행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소소한 득실은 하찮은 결점에 그칠 뿐입니다. 새로 재해를 입은 숫자가 많지 않으니 새로운 전결로 충당하고, 나머지 오래된 묵은 땅은 즉시 조사하여 개간하게 해서 하나하나 총 결수에 회복시키며, 노비를 추쇄하고 부채를 징수하는 일을 막게 하도록 청한 바에 따라 시행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답하였다. 府啓曰, 卽見水原留守李載元災實狀啓, 則今年新災一百八十九結三十一負九束, 依昨年例, 就新執結中, 充補劃下, 流來舊陳未查括餘在九十九結四十六負六束, 亦將查起, 期於盡充計料, 而推奴徵債, 限明秋防塞事, 竝請令廟堂稟旨分付矣, 天時農功大同, 逢吉百穀咸遂, 四野豐登, 樂歲民事, 誠爲之萬幸, 而小小得失, 寸朽尺瑕而止矣, 新災數既不多, 新結充補依施, 餘在舊陳, 繼卽查起, 一一復摠, 推徵防塞, 依所請許施, 何如, 答曰, 允.

<비변사등록 252책, 고종 7년 1870년 10월 16일(음)>

사회/윤리 · 풍속

水原留守 申錫禧가 청한 災結은 劃給하지 말고 舊陳을 查括하게 할 것 등을 청하다

○ 의정부에서 아뢰기를, “수원유수 신석희(申錫禧)가 올린 재실 분등 장계를 보니, ‘묵은 재결과 새로 재해를 입은 전지 2백 97결 4부 3속을 특별히 재결로 획급해 주고, 노비 추쇄와 빚 독촉을 내년 가을까지 막는 일을 묘당에서 품지하여 분부하게 해 주소서.’ 하였습니다. 기우제를 지내자마자 곧바로 비가 내려 삼농(三農)이 실마리를 찾게 되었고, 가을이 되어 추수를 하는 지역에 온갖 곡식이 무르익었습니다. 실로 사람들과 더불어 들판에서 일하여크게 풍년을 거둔 것이며, 바닷물이 넘쳐 올라 소금기가 배어든 것은 옥의 티라고 하겠습니다. 요청한 재결은 그냥 두고, 묵혀둔 전지를 모두 조사해 내어 원종으로 회복시키게 하소서. 노비 추쇄와 빚 독촉을 막는 일은 그대로 시행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답하였다.

府啓曰, 卽見水原留守申錫禧, 災實狀啓, 則新舊災二百九十七結四負三束, 特許劃下, 推奴徵債, 限明秋防塞事, 竝請令廟堂稟旨分付矣, 圭璧捷應, 三農就緒, 桑榆所收, 百穀用成, 是誠同人于野, 大有之年, 隨溢透醴, 比玉有瑕, 所請災結置之, 舊陳期於查括, 以復元摠, 推徵防塞, 依施, 何如, 答曰, 允.

<비변사등록 253책, 고종 8년 1871년 10월 17일(음)>

사회/윤리 · 풍속

水原의 舊陳을 즉시 查起하여 復摠하게 할 것 등을 청하다

○ 의정부에서 아뢰기를, “수원유수 신석희(申錫禧)의 재실 장계를 보니, 신재(新災) 한 조항은 거론하지 않고, ‘전해 내려오는 구재(舊災)로서 현재 남아 있는 99결 46부 6속도

농사까지 지었는지 조사하여 다 채울 것인데, 노비 추쇄와 빚 독촉을 내년 가을까지 막는 일과 함께 모두 묘당에서 품지하여 분부하게 해 주소서.’ 하였습니다. 산골의 물과 기름진 땅은 곡식을 기르기에 알맞은 고을이고, 산골의 비와 바다의 바람도 이미 순조로운 징후를 보였습니다. 구름과 무지개를 바라봄에 문득 농민의 마음을 위로하였고, 늦게 내린 서리에 농사일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전묘(田畝)에 쌓아둔 곡식으로 기장과 찰벼가 가득하고, 수확을 다 끝내고 모아놓은 곡식으로 담룽에 가득 차고 수레에 가득 찼으니, 이와 같은 길상(吉祥)을 만난 때에는 재결을 집계하는 정사가 없는 것이 마땅합니다. 전해 내려오는 구제에 대해 계속하여 농사를 지었는지 조사하여 충수를 회복하겠다는 것과 노비 추쇄와 빚 독촉을 막는 것은 청한 대로 시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답하였다.

府啓曰，卽見水原留守申錫禧，災實狀啓，則新災一款，不爲舉論，流來舊災餘在九十九結四十六負六束，亦將查起，期於盡充計料，而推奴徵債限明秋防塞事，竝請令廟堂稟旨分付矣，石水斗泥，自是宜穀之鄉，山雨海風，亦既順軌之候，望雲霓而輒慰農情，退晚霜而克成穡事，棲畝則多黍多稌，登場焉滿篝滿車，似此逢吉之祥，宜無執災之政，若乃流來舊陳，繼卽查起，期於復摠，推徵防塞之節，依所請許施，何如，答曰，允。

<비변사등록 254책, 고종 9년 1872년 10월 17일(음)>

사회/윤리 · 풍속

水原에 新災 60結을 특별히 劃給할 것 등을 청하다

○ 의정부에서 아뢰기를, “수원유수 민치상(閔致庠)의 재실장계를 보니, ‘신재 60결 24부 2속을 특별히 준획해 주고, 누적된 구제로 남아 있는 99결 46부 6속도 장차 기전(起田)을 조사하여 기어이 다 보충할 생각입니다. 노비 추쇄와 징채를 내년 가을까지 막아 주도록 모두 묘당에서 품지하여 분부하게 해 주소서.’ 하였습니다. 가뭄의 근심은 바닷가가 더욱 심하여 이앙(移秧)을 못한 곳이 많은 결과 흉년을 면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신재 60결 영을 특별히 준획하여 백성들의 힘이 퍼지도록 하소서. 구제는 기전을 조사한 것을 거론하지 않았으니, 이 어찌 나라의 전결을 중히 여기는 도리이겠습니까. 내년부터는 엄히 신칙하여 집총(執摠)하도록 하소서. 노비 추쇄와 징채를 막는 일은 백성을 편안하게 해 주는 정사에 관계되니, 장계에서 청한 대로 시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답하였다.

<비변사등록 255책, 고종 10년 1873년 10월 19일(음)>

사회/윤리 · 풍속

水原의 舊災를 기어이 查括하여 復摠하게 할 것 등을 청하다

○ 의정부에서 아뢰기를, “수원유수(水原留守) 송근수(宋近洙)의 연분장계(年分狀啓)를 보니, ‘신재(新災) 한 조항에 대해서는 거론하지 않고, 유래되어 온 구제(舊災)로 남아 있는 99결(結) 46부(負) 6속(束)에 대해서도 장차 기경(起耕)한 것을 조사해서 기어이 다 채우게 할 생각이라 하였으며, 노비를 추쇄하고, 빚을 징수하는 것은 내년 가을까지 막도록 묘당에서 품지하여 분부하게 해 주소서.’ 하였습니다. 비와 햇볕이 때에 잘 맞아서 갈고 씨뿌리기를 모두 제 절기에 하였으며, 서늘하고 더운 것이 또 적당해서 비옥한 땅과 척박한 땅에서 모두 풍년이 들었으니, 이와 같은 풍년에는 재결(災結)을 조사하는 정사도 없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래 묵은 진전(陳田)을 조사하여 찾아내는 일은 한결같이 전후(前後)의 조칙(朝飭)에 따라 하여 기어이 결총(結摠)을 회복하게 하고, 노비를 추쇄하고, 빚을 징수하는 것을 막는 일은 그대로 시행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답하였다.

府啓曰，卽見水原留守宋近洙年分狀啓，則新災一款，不爲舉論，流來舊災餘在九十九結四十六負六束，亦將查起，期於盡充計料，推奴徵債，限明秋防塞事，請令廟堂稟旨分付矣，雨暘時若，耕播皆得趁節，涼曝且適，沃瘠莫不告登，似此大有之歲，宜無檢災之政，而至若舊陳之查括，一遵前後朝飭，期於復摠，推徵防塞，依施何如，答曰，允。

<비변사등록 256책, 고종 12년 1875년 10월 05일(음)>

사회/윤리 · 풍속

水原留守 朴珪壽가 청한 대로 事目 외 災結 3천 4백결을 劃給할 것 등을 아뢰다

○ 의정부에서 아뢰기를, “수원유수(水原留守) 박규수(朴珪壽)의 재실 장계(災實狀啓)를 보니, ‘사목재(事目災) 1백결 이외에 부족한 재결(災結) 3천 4백 13결 83부(負) 6속(束)에 대해 특별히 더 획급해 주고, 노비를 추쇄하고 빚을 징수하는 일은 내년 가을까지 막아 주도록 묘당에서 품지하여 분부하게 해 주소서.’ 하였습니다. 봄과 여름으로 비가 거의 내리지 않아 기우제(祈雨祭)를 두 차례 지냈는데도 산읍(山邑)과 연읍(沿邑)의 밭갈이와 파종이 모두 어그러져 부담농(負擔籠)과 수레가 마침내 텅 비었습니다. 이번 재결(災結)의 수가 원총(元摠)의 반을 넘는 데에 이르렀으니 온 경내가 흉년임을 미루어 알 수 있습니다. 더구나 대료(大僚:의정)가 진달한 것은 사체가 가볍지 않으니 노비의 추쇄와 빚의 징수를 막아 주는 것과 함께 장계에서 청한 대로 시행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답하였다.

府啓曰，卽見水原留守朴災實狀啓，則事目災一百結外，不足災三千四百十三結八十三負六束，特爲加劃，推奴徵債，限明秋防塞事，請令廟堂稟旨分付矣，春夏之膏澤甚闕，圭璧屢薦，山沿之耕播俱愆，籌車遂空，今此災結之數，至過元摠之半，一境之歉荒，可以推知，而且況大僚所陳，事體不輕，竝與推徵防塞，而依狀請施行何如，答曰，允。

<비변사등록 257책, 고종 13년 1876년 09월 29일(음)>

사회/윤리 · 풍속

賑資를 義捐한 瑞興의 進士 李就榮 등에게 시상할 것을 청하다

○ 의정부에서 아뢰기를, “수원(水原)의 보진인(補賑人)으로 서흥(瑞興)에 사는 진사(進士) 이취영(李就榮)은 전(錢) 2만 냇을 헌납하였고, 광주(廣州)의 보진인으로 안변(安邊)에 사는 유학(幼學) 김기윤(金器胤)은 전 1만 냇을 헌납하였으니 격려하고 권면하는 도리에 있어서 이들에게 시상해 주는 일이 있어야 한다는 것으로 두 유수영(留守營)에서 계문을 올려 본부에 보고하였습니다. 백성들이 굶주림에 빠져 진휼이 시급할 때에 이 두 사람이 분연히 의기를 내어 재물을 출연(出捐)하여 보조하기를 자원하였으니 매우 가상합니다. 이전의 예에 따라 이취영에게는 우선 가설(加設) 6품직에 단부하였다가 수령의 자리가 나는 대로 차임하여 보내며 김기윤에게는 6품직 가설에 조용(調用)하게 함으로써 조정에서 격려하는 뜻을 보이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府啓曰，水原補賑人瑞興居進士李就榮，納錢二萬兩，廣州補賑人安邊居幼學金器胤，納錢一萬兩，其在激勵之道，合有施賞事，自兩留營俱有修啓報府者矣，生靈告飢，賑救是急，而兩人之慨然出義，捐貲願補，極庸嘉尙，依已例李就榮，先付加設六品職，守令待窠差送，金器胤，六品職加設調用，以示朝家激獎之意何如，答曰，允。

<비변사등록 257책, 고종 13년 1876년 12월 26일(음)>

사회/윤리 · 풍속

水原留守 金炳地の 災實 狀啓에 대해 보고하고 그 대책을 논의하다

의정부에서 아뢰기를, “수원유수 김병지(金炳地)의 재실장계(災實狀啓)를 보니, ‘신재(新災) 163결 86부 2속을 특별히 수량에 맞추어 획급해 주소서. 전부터 내려온 묵은 진전(陳田)에 대해 미처 보충하지 못한 99결 46부 6속은 기어이 기경전(起耕田)을 조사해서 죄다 보충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노비 추쇄와 징채를 내년 가을까지 막아 주도록 아울러 묘당에서 품지하여 분부하게 해 주소서.’ 하였습니다. 산에 의지하고 바닷가에 자리 잡아 지형이 특수하지만 봄부터 가을까지 천시(天時)에 어긋나는 것이 없었으므로 경내(境內)의 농사가 잘 되고 흉년 끝에 백성의 근심을 펼 수 있었습니다. 신재를 수량에 맞추어 획급하고 묵은 진전을 조사하여 보충하는 것은 장계에서 청한 대로 시행하고, 노비 추쇄와 징채를 막아주는 일 또한 시행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답하였다.

府啓曰、卽見水原留守金炳地災實狀啓、則新災一百六十三結八十六負二束、特許準劃、流來舊陳未及充補之九十九結四十六負六束、期於查起、盡充計料、而推奴徵債、限明秋防塞事、並請令廟堂稟旨分付矣、依山而濱海、地形有殊、自春而徂秋、天時無愆、境內之穡事告登、歉餘之民憂獲紓、新災之準劃、舊陳之查充、依狀辭施行、推徵防塞、亦爲許施、何如、答曰、允。

<비변사등록 258책, 고종 14년 1877년 10월 07일(음)>

사회/윤리 · 풍속

水原留守 金炳地の 災實 狀啓에 대해 보고하고 그 대책을 논의하다

○ 의정부에서 아뢰기를, “수원유수(水原留守) 김병지(金炳地)의 재실장계(災實狀啓)를 보니, ‘새로운 재결 48결 78부 7속을 특별히 획하(劃下)해 주소서. 전해 내려온 예전 재결의 묵은 전토로서 아직 보충되지 않은 99결 46부 6속을 조사하여 경작을 다시 일으키도록 하여 모두 보충하고, 노비를 추쇄하고 채무를 받는 것을 내년 가을까지 막는 일을 묘당에서 품지하여 분부하게 해 주소서.’ 하였습니다. 바닷가의 염분이 많은 땅에 비록 가을별이 부족하였다 하더라도 통틀어 말하면 풍년에 가깝다고 해야 할 것이니, 어찌 재결을 집계하는 정사(政事)를 논할 것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수신(守臣)이 이미 백성의 고통에 관계되는 것으로 사실에 의거하여 진달하여 아뢰었으니, 요청한 재결은 특별히 그대로 획하하고, 예전 재결의 묵은 전토로 아직 보충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기어이 조사하여 단속해서 원총(元摠)을 회복하도록 하소서. 노비를 추쇄하고 채무를 받는 것을 막아 달라는 일은 그대로 시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답하였다.

府啓曰、卽見水原留守金炳地災實狀啓、則新災四十八結七十八負七束、持令劃下、流來舊陳未及充補之九十九結四十六負六束、期於查起、盡充計料、而推奴徵債、限明秋防塞事、請令廟堂稟旨分付矣、濱海鹹鹵之地、縱有秋嘆之痒損、統以言之、則宜稱降康之歲、奚論執災之政、而守臣旣以民隱攸關、據實陳啓矣、所請災結、特爲準劃、至若舊陳之未及充補者、期於查櫛、以復元摠、推徵防塞、依施何如、答曰、允。

<비변사등록 259책, 고종 15년 1878년 10월 16일(음)>

사회/윤리 · 풍속

水原에 집이 무너진 사람들에게 원래의 恤典 외에 더 보살피 주라는 전교하다

본부(本府)의 민가가 무너져 내린 일에 대한 수원유수(水原留守) 김세균(金世均)의 장계에,

전교하기를, “이와 같이 궁핍한 해에 민가가 떠내려가고 무너진 것이 이와 같이 많다는 것을 들으니 매우 놀랍고 참혹하다. 원래의 흉전 외에 별도로 도와주고 집을 지어서 살게 해주어 한 사람의 백성이라도 살 곳을 잃고 방황하는 폐단이 없게 하도록 하는 일을 묘당에서 글을 지어 관문(關文)으로 신칙하라.” 하였다.

以水原留守金世均狀啓，民家頗壓事，傳曰，當此窮菑，民家之漂飢，若是夥多，聞甚驚慘，元恤典外，別加顧助，結構奠接，俾無一民失所棲遑之弊事，廟堂措辭關飭。

<비변사등록 260책, 고종 16년 1879년 07월 13일(음)>

사회/윤리 · 풍속

水原留守 鄭基世의 災實 狀啓에 대해 보고하고 그 대책을 논의하다

○ 의정부에서 아뢰기를, “수원유수(水原留守) 정기세(鄭基世)의 재실 장계를 보니, 새로운 재결 1백 72결 34부 6속을 특별히 획급하여 내려 주기를 바라며, 전부터 내려오는 오래 묵은 재결 가운데 미처 보충하지 못한 99결 46부 6속은 반드시 새로 경작을 일으킨 것을 살펴내어 모두 보충할 생각이며, 노비를 추쇄하고 채무를 받는 것을 내년 가을까지 거론하지 말도록 하는 일을 묘당에서 품지하여 분부하도록 해 달라고 하였습니다. 석 달 동안의 장마는 참으로 근년에 보기 드문 것이었는데, 다행히 늦게 날씨가 고르고 알맞아 마침내 농사가 조금 나올 수 있었으나, 요청한 재결은 수신(守臣)이 반드시 해야 할 것이 있어서 그랬을 것이니, 특별히 숫자에 맞추어 획급하고, 오래 묵은 재결을 조사하여 보충하는 일과 노비를 추쇄하고 채무를 받는 것을 막는 일은 모두 장계로 요청한 대로 시행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답하였다.

府啓曰，卽見水原留守鄭基世，災實狀啓，則新災一百七十二結三十四負六束，特令劃下，流來舊陳，未及充補之九十九結四十六負六束，期於查起，盡充計料，而推奴徵債，限明秋勿爲舉論事，請令廟堂稟旨分付矣，三朔浸霽，誠近年罕覩也，幸賴晚候之均適，竟獲穡事之稍勝，而所請災結，守臣必有裁度，而然特爲準劃，舊陳之查充，推徵之防禁，竝依狀請施行，何如，答曰，允。

<비변사등록 260책, 고종 16년 1879년 10월 03일(음)>

사회/윤리 · 풍속

전 水原留守 閔泳緯가 청한 대로 災結 2천93결을 劃給할 것을 청하다

의정부에서 아뢰기를, “수원 전 유수(水原前留守) 민영위(閔泳緯)의 재실장계(災實狀啓)를 보면 신재(新災) 2천 93결(結) 36부(負) 8속(束)을 특별히 획급해 주고, 전해 온 구진(舊陳:오래 묵은 논밭)으로 아직 채워 보태지 못한 것은 99결 46부 6속은 조사해내기를 기다려다 채울 계획이고, 추노(推奴)와 징채(徵債)는 내년 가을까지 방색(防塞)하라고 묘당에서 품지하여 분부하게 하기를 청하였습니다. 금년의 농사 형편(形止)는 흉년을 면치 못하였는데 바로 혹심한 가뭄으로 인하여 이양하지 못한 것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이른바 재결(災結)은 지켜 다스리는 지역에서 반드시 백성의 고통을 깊이 살펴서 그런 것이 있는 것이니 특별히 준획(準劃)을 허락하며, 구진을 조사해 채우고 추노와 징채의 방색은 아울러 장계의 사연대로 시행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답하였다.

府啓曰，卽見水原前留守閔泳緯災實狀啓，則新災二千九十三結三十六負八束，特令劃下，流來舊陳未及充補之九十九結四十六負六束，期於查括，盡充計料，而推奴徵債，限明秋防塞事，請

令廟堂稟旨分付矣，今年年形之未免歉荒，即因嘆乾孔酷，未移居多故也，所請災結，保釐之地，必有深察民隱而然，特許準劃，舊陳之查充，推徵之防塞，竝依狀辭施行，何如，答曰，允。

<비변사등록 263책, 고종 19년 1882년 10월 11일(음)>

사회/윤리 · 풍속

水原留守 洪祐昌의 災實 狀啓에 대해 보고하고 그 대책을 논의하다

○ 의정부에서 아뢰기를, “수원유수 홍우창(洪祐昌)의 재실장계를 보니 신재 5백 86결 8부 3속을 특별히 획급해 주고, 유래한 구진(舊陳)으로서 미처 채워 보태지 못한 99결 46부 6속은 조사하여 다 채울 요량이며, 추노와 징채는 내년 가을까지 방색하도록 묘당에서 품지하여 분부하게 하기를 청하였습니다. 지형(地形)은 산과 바다가 서로 접해 있고 농사는 가뭄과 홍수가 서로 기승이었습니다. 그러나 가을이 따뜻하여 서리가 늦어져서 마침내는 몇 분의 성취가 있었으니 또한 처음 예상에 차는 것은 아닙니다. 청한 바의 재충(災摠)은 반드시 해아린 바가 있을 것이니 특별히 준획(準劃)하도록 허락하고, 추노와 징채의 방색은 그대로 시행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답하였다.

府啓曰，即見水原留守洪祐昌災實狀啓，則 新災五百八十六結八負三束，特令劃下，流來舊陳未及充補之九十九結四十六負六束，期於查括盡 充計料，而推奴徵債，限明秋防塞事，請令廟堂稟 旨分付矣，地形則山海交錯，穡事則嘆澇互乘，然其 秋暖霜晚，竟獲幾分成就者，亦非始料之攸及也，所 請災摠，必有酌量，特許準劃，推徵防塞，依施何如，答曰，允。

<비변사등록 264책, 고종 20년 1883년 10월 14일(음)>

사회/윤리 · 풍속

水原留守 洪祐昌의 分等狀啓에 대해 回啓하다

○ 의정부에서 아뢰기를, “수원유수(水原留守) 홍우창(洪祐昌)의 연분 장계(年分狀啓)를 보니, 신재(新災) 한 조항은 거론하지 않았고, 계속 내려온 구재(舊災) 99결(結) 46부(負) 6속(束)을 조사하여 모두 보충하기를 기약하고 노비를 추쇄하고 부채를 징수하는 것을 내년 가을까지 막도록 묘당에서 품지하여 분부하게 하기를 청하였습니다. 긴 장마가 지났는데도 조그마한 해도 입지 않았고 서리가 늦게 내려서 마침내는 크게 풍년이 들었습니다. 지금 재결을 조사했는데 재결이 잡히지 않은 것을 보니 온 지역이 같은 상황이라는 것을 징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진(舊陳)을 조사해서 충당하는 일은 본래 조정의 신칙이 있었습니다. 노비를 추쇄하고 부채를 징수하는 것을 막는 일은 연례적인 일이 되었으니, 아울러 장계의 말에 따라 시행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답하였다.

府啓曰，即見水原留守洪祐昌年分狀啓，則 新災一款，不爲舉論，流來舊災九十九結四十六負六束，期於查括盡充，推奴徵債，限明秋防塞事，請令 廟堂稟旨分付矣，積澇過，而既無少瘳，肅霜退而 終獲大登，今觀檢災之不執，可驗環境之攸同，舊陳 之查充，自有朝飭，推徵之防塞，便成年例，竝依狀 辭施行，何如，答曰，允。

<비변사등록 265책, 고종 21년 1884년 10월 09일(음)>

사회/윤리 · 풍속

水原留守 李憲植의 災實分等狀啓에 대해 回啓하다

○ 의정부에서 아뢰기를, “수원유수(水原留守) 이헌식(李憲植)의 연분 장계를 보니, 신재(新災) 3백 33결 21부 2속은 특별히 내려 주고, 전해 내려온 구진(舊陳)의 아직 보충하지

못한 99결 46부 6속을 기어이 기경(起耕)을 조사하여 다 보충할 계획이지만, 노비를 추쇄(推刷)하는 것과 빗을 받는 것을 내년 가을까지 막도록 묘당에서 품지하여 분부하게 해달라고 청하였습니다. 가뭄과 장마가 같이 와서 연안과 들판이 모두 병들었으니, 비록 온 지경안이 전부 흉년은 아니라 해도 본래 재해의 충수를 나눈 바가 있을 것입니다. 청한 바는 특별히 기준대로 허락하여 자세한 실정에 따라 나눠 주게 하고, 노비를 추쇄하는 것과 빗을 받는 것을 내년 가을까지 막는 일은 모두 그대로 시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답하였다.

府啓曰，卽見水原留守李憲植年分狀啓，則新災三百三十三結二十一負二束，特令劃下，流來舊陳未及充補之九十九結四十六負六束，期於查起盡充計料，而推奴徵債限明秋防塞事，請令廟堂稟旨分付矣，旱澇互乘，沿野俱病，縱非闔境之全歉，自有災摠之當俵，所請特爲準許，使之精實派給，推徵防塞，依施何如，答曰，允。

<비변사등록 266책, 고종 22년 1885년 10월 17일(음)>

사회/윤리 · 풍속

水原留守 李憲植의 災實分等狀啓에 대해 回啓하다

○ 의정부에서 아뢰기를, “수원유수(水原留守) 이헌직(李憲植)이 올린 연분 장계(年分狀啓)를 보니, 신재(新災) 한 조항은 거론하지 않았고, 오래 전부터 내려온 구재(舊災) 99결 46부 6속을 조사해서 모두 채우도록 기하며, 노비를 추쇄(推刷)하고 빗을 거두어들이는 것을 내년 가을까지 막도록 묘당에서 품지하여 분부하게 해달라고 청하였습니다. 비 내리고 별 나는 것이 시기에 맞아서 풍년이 들 조짐을 미리 점칠 수 있고, 토양이 비옥하든 척박하든 고르게 여물어 풍년을 맞으리라는 것을 더욱 증험할 수 있으니, 구진(舊陳)을 조사하여 채우는 것은 연달아 더 사실을 조사해서 충수에 준하도록 기하고, 노비를 추쇄하고 빗을 거두어들이는 것을 막는 일은 그대로 시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답하였다.

府啓曰，卽見水原留守李憲植，年分狀啓，則新災一款，不爲舉論，流來舊災九十九結四十六負六束，期於查括盡充，推奴徵債限明秋防塞事，請令廟堂稟旨分付矣，雨暘時若，先占降康之兆，肥磽均稔，尤驗逢吉之年，至若舊陳之查充，連加檢飭，期於準摠，推徵防塞，依施，何如，答曰，允。

<비변사등록 267책, 고종 23년 1886년 10월 21일(음)>

사회/윤리 · 풍속

水原留守 尹滋惠의 災實分等狀啓에 대해 回啓하다

○ 의정부에서 아뢰기를, “수원부유수(水原府留守) 윤자덕(尹滋惠)의 연분 장계(年分狀啓)를 보니, ‘신재(新災) 4백 40결(結) 25부(負)를 특별히 떼어 주고, 전부터 내려온 묵은 진전(陳田) 가운데 미처 채워 넣지 못한 99결 46부 6속에 대해서는 기필코 다시 경작한 것을 조사해서 모두 보충할 생각이며, 노비를 추쇄(推刷)하고 빗을 징수하는 일을 내년 가을까지 막아 주도록 묘당에서 품지(稟旨)하여 분부하게 해 주소서.’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비를 기다리는 심정이 간절하였는데, 마침내 비가 충분히 내렸습니다. 그 덕에 올벼나 늦벼가 비록 매우 무성하게 자라기는 하였지만, 땅이 기름지거나 척박함에 따라 자연히 풍흉의 차이는 있게 마련입니다. 요청한 재결(災結)의 총액은 특별히 그대로 떼어 주고, 묵은 진전을 조사하여 보충하는 것과 노비를 추쇄하고 빗을 징수하는 일을 막는 것도 모두 장계에서 청

한 대로 시행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희한다고 답하였다.

府啓曰，卽見水原留守尹滋惠年分狀啓，則新災四百四十四結二十五負，特許劃下，流來舊陳未及充，補之九十九結四十六負六束，期於查起盡充，推奴徵債，限明秋防塞事，請令廟堂稟旨分付矣，始切望寬之歎，終獲興雲之澤，早晏之種，雖就碩茂，沃瘠之地，自致勝遜，所請災摠特許準劃，舊陳之查充，推徵之防塞，竝依狀請，施行何如，答曰，允。

<비변사등록 268책, 고종 24년 1887년 10월 10일(음)>

사회/윤리 · 풍속

水原留守 尹滋惠의 災實分等狀啓에 대해 回啓하다

○ 의정부에서 아뢰기를, “수원유수(水原留守) 윤자덕(尹滋惠)의 연분장계(年分狀啓)를 보니, ‘새로 재해를 입은 49결(結) 19부(負)를 특별히 재결(災結)로 획급해 주고, 오래된 진결(陳結)로 아직 보충하지 못한 99결 46부 6속(束)은 기어이 기경전(起耕田)을 조사하여 다 보충할 계획이지만, 노비를 추쇄(推刷)하고 빚을 징수하는 것은 내년 가을까지 막도록 묘당에서 품지하여 분부하게 해 주소서.’ 하였습니다. 오래도록 비를 그리는 민정이 절실하여 기우제를 지내기까지 하였습니다. 고르게 내린 단비는 그 영향이 빨라 마른 벼가 왕성하게 자란 것을 기뻐할 만하니, 온 경내를 통틀어 논하건대 소강(少康)이라고 칭하기에 충분합니다. 이에 청한 재결은 특별히 획급하고, 노비를 추쇄하고 빚을 징수하는 것을 막는 일도 그 대로 시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희한다고 답하였다.

府啓曰，卽見水原留守尹滋惠年分狀啓，則新災四十九結十九負，特令劃下，流來舊陳未及充補之九十九結四十六負六束，期於查起盡充，推奴徵債，限明秋防塞事，請令廟堂稟旨分付矣，久切望霓之情至有薦璧之舉，甘霖之均洽斯捷，枯苗之勃興可喜，統論一境，足稱少康，所請災結，特許準劃推徵防塞，依施何如，答曰，允。

<비변사등록 269책, 고종 25년 1888년 10월 17일(음)>

사회/윤리 · 풍속

水原留守 金勳洞의 災實 狀啓에 대해 보고하고 그 대책을 논의하다

○ 의정부에서 아뢰기를, “수원유수(水原留守) 김훈동(金勳洞)의 재실 장계(災實狀啓)를 보니, ‘사목(事目)의 재결 20결 외에 부족한 재결 1백 34결 86부 8속을 특별히 추가로 획급하고, 노비를 추쇄하고 채무를 받는 것을 내년 가을까지 막아 금지하는 일을 묘당에서 품지하여 분부하도록 하십시오.’ 하였습니다. 산과 바다가 서로 섞이고 비옥한 땅과 척박한 땅이 각기 다르며, 바람과 서리가 지나간 곳에 넉넉하고 모자람이 가지런하지 않지만, 구역내의 전체를 총괄적으로 논하면 소강(小康)이라고 일컬을 만합니다. 대신(大臣)이 진달한 것은 일의 체모가 특별하니 재결은 숫자에 맞추어 획급하고 노비를 추쇄하고 채무를 받는 것을 막아 금지하는 일도 아울러 장계에서 요청한 대로 시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희한다고 답하였다.

府啓曰，卽見水原留守金勳洞災實狀啓，則事目災二十結外，不足災一百三十四結八十六負八束，特爲加劃，推奴徵債限明秋防塞事，請令廟堂稟旨分付矣，山海互錯，沃瘠各殊，風霜所經，優遜不侔，統論闔境，足稱少康，大寮所陳，事體自別，災結之準劃，推徵之防塞，竝依狀請施行何如，答曰，允。

<비변사등록 270책, 고종 26년 1889년 10월 26일(음)>

사회/윤리 · 풍속

水原前留守 金勳洞의 年分 狀啓에 대해 보고하고 그 대책을 논의하다

의정부에서 아뢰기를, “수원 전 유수 김홍집(金弘集)의 연분 장계를 보니, ‘신재 62결 41부 5속을 특별히 떼어 주고, 그전부터 내려오는 옛 진전으로 미처 채워 넣지 못한 99결 46부 6속에 대해 기필코 새로 경작한 토지를 조사하여 다 진결을 채우며, 노비를 추쇄하고 밭을 징수하는 것은 내년 가을까지 막아 주도록 묘당에서 품지하여 분부하게 해 주소서.’ 라고 하였습니다. 단비가 마침 오랜 가뭄 끝에 내렸고 된서리까지도 늦은 가을 뒤로 늦추어졌습니다. 그러나 약간은 병이 들고 손상이 되었으나 이 또한 풍년에 늘 있는 일입니다. 대신들이 진달한 것은 사체가 가볍지 않으니, 모두 장계에서 청한 대로 시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답하였다.

府啓曰, 卽見水原前留守金勳洞 年分狀啓, 則新災六十二結四十一負五束, 特許劃下, 流來舊陳未及充補之九十九結四十六負六束, 期於查起盡充, 推奴徵債限明秋防塞事, 請令廟堂稟旨分付矣, 甘澍適降於久旱之餘, 肅霜且退於晚節之後, 第其些少之痒損, 卽亦樂歲之常有, 大僚所陳, 事體不輕, 竝依狀請施行, 何如, 答曰允.

<비변사등록 271책, 고종 27년 1890년 10월 11일(음)>

사회/윤리 · 풍속

永原留守 閔泳商의 年分 狀啓에 대해 보고하고 그 대책을 논의하다

의정부의 계사에, “방금 수원유수(水原留守) 민영상(閔泳商)의 연분 장계(年分狀啓)를 보니, ‘금년의 미처 옮겨 등재하지 못한 신재(新災)는 1백 99결(結) 57부(負) 4속(束)이니 특별히 떼어주고, 전부터 내려오던 구진(舊陳)으로 아직 채워지지 않은 99결 46부 6속은 기경(起耕)하는 곳을 조사해내어 기어이 다 채우도록 하며, 노비를 추쇄(推刷)하고 밭을 징수하는 것은 내년 가을까지 막도록 묘당에서 상의 뜻을 여쭙어 분부하게 해 주소서. 하였습니다. 가뭄이 이미 여러 달째 계속되어 비가 제때에 내리지 않고 있으니, 이것은 인력이 미치지 못하는 바로 농사가 많이 어그러졌습니다. 그리하여 미처 옮겨 등재하지 못한 재결(災結)이 2백 결 가까이 되었으니, 특별히 그 수량대로 떼어주는 것을 윤허하여 재결을 고르게 나누어주도록 하고, 구진을 조사하여 채우는 것과 노비를 추쇄하고 밭을 징수하는 것을 막는 일도 장계의 내용대로 시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답하였다.

府啓曰, 卽見水原留守閔泳商年分狀啓, 則今年未移新災爲一百九十九結五十七負四束, 特令劃下, 流來舊陳未及充補之九十九結四十六負六束, 期於查起盡充, 推奴徵債, 限明秋防塞事, 請令廟堂稟旨分付矣, 旱既閱月, 雨且晚時, 人力不逮, 穡事多愆, 所以有未移之爲近二百結矣, 特許準劃使之均俵, 舊陳之查充, 推徵之防塞, 亦依狀辭施行, 何如, 答曰, 允.

<비변사등록 273책, 고종 29년 1892년 10월 11일(음)>

4. 문화(文化)

(1) 사상

문화/사상

右議政 李止淵이 龍珠寺의 폐단에 대하여 논의하다

(…) 또 아뢰기를, “수원유수(水原留守) 심능악(沈能岳)의 장계를 보니, 본부 용주사(龍珠寺)의 설치의 일의 체통이 자별한데 근년에 와 흉년으로 위토(位土)의 과반이 목어 절의 모양이 날로 궁핍합니다. 공명첩(空名帖) 3백장에 한하여 특별히 획급해서 폐단을 구제할 수 있도록 묘당에서 품지하여 분부하기를 청한다 하였습니다. 이 절의 폐단을 구제하는 것은 곧 말 수 없는 일입니다. 공명첩을 특별히 내려준 신사년(辛巳年:순조21, 1821)의 전례가 있으니 지금도 시행하도록 하되 요청한 수가 지나치게 많으니 승첩(僧帖) 1백장을 작성해 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대왕대비전에서 그리하라고 답하였다. (…)

(…) 又所啓, 卽見水原留守沈能岳狀啓, 則以爲本府龍珠寺設施, 事體自別, 而比年歉荒, 位土過半陳棄, 寺樣日就凋殘, 空名帖限三百張, 特許劃下, 俾得揀弊事, 請令廟堂, 稟旨分付矣, 本寺揀弊, 乃是不可已之事, 空名帖別下, 既有辛巳已例, 今亦許施, 而所請之數, 未免太多, 以僧帖一百張, 成給, 何如, 大王大妃殿答曰, 依爲之.(…)

<비변사등록 227책, 헌종 5년 1839년 03월 20일(음)>

문화/사상

廣州 및 水原의 試才御史를 속히 辭朝하게 하고 新府尹도 빨리 내려가게 할 것을 청하다

○ 비변사에서 아뢰기를, “광주(廣州)와 수원(水原)에서 시재(試才)를 하는 일은 반드시 깊은 겨울이 되기 전에 설행하도록 앞서 이미 하명하였으므로 일기가 점차 차갑기 전에 지금 시행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시재할 날은 이번 달 15일이나 18일 또는 19일로 정하면 일이 너무 시급하므로 시재어사(試才御史)가 즉시 조정을 떠나도록 승정원에서 경고하여야 할 것입니다. 광주는 지금 자리가 비어 있어 모든 일을 시행할 사람이 없으니 매우 걱정입니다. 새로 부임한 부윤이 비답을 기다린 후 별도로 재촉하여 1~2일 내에 부임하도록 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자, 윤희한다고 답하였다.

司啓辭, 廣州·水原試才, 必於冬節未深前設行, 前既有成命矣, 寒事漸繁, 不可不趁今舉行, 故試才期日, 擇定於今十五日·十八日·十九日, 事甚急迫, 試才御史, 卽速辭朝事, 令政院申飭, 廣州方爲空官, 凡干舉行無人, 事甚可慮, 新府尹待下批, 別爲催促, 必令一兩日內赴任何如, 答曰, 允.

<비변사등록 107책, 영조 16년 1740년 10월 09일(음)>

문화/사상

水原留守 朴崙壽의 狀啓에 대해 邪學이 없는 지를 더욱 잘 살펴보라고 전교하다

○ 사학(邪學)이 없다는 수원유수 박운수(朴崙壽)의 장계에 전교하기를, “사학의 금단(禁斷)에 대해서 전부터 매우 엄격하게 하였지만 시행한 지 여러 해가 되었으니, 과연 법이 오래되면 해이해지기 쉬운 우려가 없겠는가. 이에 본부의 장계로 인하여 더 신칙하는 뜻을 보이니 형찰(詞察)의 방도에 더욱 힘쓰라고 팔도와 삼도(三都)에 분부하라.” 하였다.

以水原留守朴崙壽狀啓, 邪學無乎事, 傳曰, 邪學禁斷, 自前深嚴, 而行之屢歲, 果無法久易懈

之 慮乎，茲因本府狀啓，示之加飭，益勉調察之方事，分 付八道三都。

<비변사등록 201책, 순조 11년 1811년 03월 03일(음)>

문화/사상

左議政 李相璜이 水原府의 儒生 公都會 등을 정지하는 일과 흉년의 상황에 대해 논의하다

9월 20일 약방의 입진에 대신과 비국당상을 인견하여 입시하였을 때에 좌의정 이상황(李相璜)이 아뢰기를, “지금 수원유수 홍희신(洪羲臣)의 장계를 보니, ‘금년조 본부 유생의 공도회(公都會) 및 올해 춘·추등(春秋等), 내년 춘등의 별효사열교(別驍士列校) 도시(都試)를 시행해야 하나, 이렇게 재해를 입은 해를 맞아 폐단이 적지 않으니, 내년 가을에 함해서 설행하고 취점(聚點)에 군병이 양식을 싸가지고 등대하는 것은 실로 유념해야 하니, 관문(官門)에서의 취점(聚點) 또한 우선 정지하도록 묘당에서 품지하여 분부하게 하소서.’ 하였습니다. 공도회와 도시 및 관문에서의 취점(聚點)을 재해를 입은 해에는 정지하게 한 것도 전례가 많으니, 장계에서 청한 대로 모두 내년 가을로 물려서 설행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임금의 그리하라 하였다.

또 아뢰기를, “지금 수원유수 홍희신의 재실 분등 장계(災實分等狀啓)를 보니, 우심(尤甚)이 18면(面)이고 지차(之次)가 12면이고 초실(稍實)이 10면인데, 이어서 이르기를, ‘호조에서 획하한 재(災) 1백 결 이외에 각종 부족재가 2천 2백 14결 96부 5속을 특별히 더 획해 주시고, 신환향(新還餉)은 우심면의 우심호(尤甚戶)는 3분의 2, 우심면의 지차호와 지차면의 우심호는 절반, 지차면의 지차호와 초실면의 우심호는 3분의 1을 정퇴(停退)하고, 당봉조(當捧條:정퇴한 이외의 받아야 할 것)는 모두 3분의 1에 한하여 그에 상당하는 곡식으로 준절(準折)해서 대봉(代捧)하였다가 내년 가을에 본색(本色)으로 도로 바꾸며, 신포(身布)를 쌀로 바치기로 한 것은 돈으로 대신 바치게 하고, 노비를 추쇄하고 빚을 징수하는 것을 방색하도록 묘당에서 품지하여 분부하게 하소서.’ 하였습니다. 경기 내의 농사 형편은 연해에서 치우치게 흉년이 들었는데, 본부도 우심한 곳이 되었습니다. 3등으로 나눈 것은 이대로 시행해야겠습니다. 재결(災結)을 더 청한 것에 있어서는 기묘년(己卯年:순조19, 1819)과 갑신년(甲申年:순조24, 1824)의 두 해에 가장 재결 총수가 많았는데, 올해에 비록 흉년이 들었다 하나 어찌 기묘년·갑신년과 차이가 없겠습니까마는, 청한 분수(分數)는 두 해보다 현저히 줄어든 것이 없으니 소중함에 있어서, 어떻게 이룰 수 있겠습니까. 과연 이에 준해서 시행할 수는 없으니 사목(事目)에서 획하(劃下)한 것 이외에 다시 1천 5백 결을 더 획급하여 이것을 가지고 고르게 나누어 주게 해야 하겠습니다. 가을이 되어 환곡을 거두어들인 것은 장차 이듬해의 수요에 대비하게 하려는 것이므로 갑자기 융통을 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재해를 입은 백성들의 형편이 좋지 않아 실제로 수량에 준해서 납부하도록 재촉할 수는 없으니, 신환(新還)은우심면의 우심호는 절반, 우심면의 지차호와 지차면의 우심호는 3분의 1, 지차면의 지차호와 초실면의 우심호는 4분의 1을 정퇴하고, 당봉조는 분수하여 대봉하며 신포는 대전하고 노비를 추쇄하고 빚을 징수하는 방색하는 일 등은 청한 바에 따라 시행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임금의 그리하라 하였다. (…)

今九月二十日藥房入診，大臣備局堂上引見 入侍時，左議政李所啓，卽見水原留守洪羲 臣狀啓，則今年條本府儒生公都會及今春秋等 明年春等別驍士列校都試，當爲設行，而當此災歲，爲弊不少，待明秋合設聚點，軍兵之裹糧等待，實所 當念，官門聚點，亦姑停止事，請令廟堂，稟旨分付 矣，都會都試及官門聚點，災歲許停，亦多已例，依狀 請，竝令退行於明秋，何如，上曰，依爲之。

又所啓，卽見水原留守洪義臣災實分等狀 啓，則尤甚爲十八面，之次爲十二面，稍實爲十面，仍以爲地部劃下災一百結外，各樣不足災，二千二百 十四結九十六負五束，特爲加劃，新還餉尤甚面之 尤甚戶三分二，尤甚面之之次戶，之次面之尤甚戶，折半，之次面之之次戶，稍實面之尤甚戶，三分一停 退，而當捧條，竝限三分一，以相當穀準折代捧，待明 秋還作本色，身逋之米邊當納者，以錢代捧，推奴徵 債防塞事，竝請令廟堂稟旨分付矣，畿內農形，偏 失於沿海，而本府亦爲尤甚之處，三等分劑，依此施 行，至於災結加請，己甲兩年，最爲多摠，今歲雖歉，豈不有間於己甲，而所請分數，未見懸減於兩年正賦 之重，豈容如是，果無以準施，事目劃下外，更以一千 五百結加劃，使之以此均依，當秋收糴，將以備嗣歲 之需，有難遽加闊狹，然災民力絀，實無以準數責納，新 還當捧條，尤甚面尤甚戶折半，尤甚面之次戶，之次 面尤甚戶，三分一，之次面之次戶，稍實面尤甚戶，四 分一停退，而代穀分數，與身布代錢，推徵防塞，依所請許施何如，上曰，依爲之.(…)

<비변사등록 213책, 순조 25년 1825년 09월 21일(음)>

문화/사상

水原留守 徐俊輔가 公都會와 都試의 연기 및 官門聚點의 중지를 청한대로 허락하다

○ 비변사에서 아뢰기를, “수원유수 서준보(徐俊輔)의 장계를 보니, 아뢰기를, ‘본부의 농사는 이미 큰 흉년으로 판명되었으니, 금년도 유생의 공도회 및 이번 추등(秋等)과 내년 춘등(春等)의 무사 도시를 내년 가을에 가서 합하여 시행하고, 관문 취점도 정지를 허락하여 백성들의 힘을 펼 수 있도록 묘당에서 품지하여 분부하게 하소서.’ 하였습니다. 시험을 정지하는 것은 이미 경기·호서·해서에서 시행을 허락한 바가 있으므로 본부의 공도회와 도시를 내년 가을로 물려서 시행하도록 허락하며, 취점의 정지는 군정(軍政)을 생각해 보면 소홀하다는 탄식이 없을 수 없으나, 이미 재해를 입은 백성들이 기다리는 것도 폐단이 많다고 하므로 진휼하는 정사에 있어서 융통성 있게 시행하는 것이 마땅하니, 아울러 장계에서 청한 대로 정지를 허락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답하였다.

司啓曰，卽見水原留守徐俊輔狀啓，則以爲 本府穡事，已判大無，今年條儒生公都會及今秋等明年春等武士都試，待明秋合設，而官門聚點，亦許 停止，俾紓民力事，請請令廟堂稟旨分付矣，停試 則已有所許施於畿·湖·海西者，本府都會都試，許令 明秋退行，至於聚點停免，揆以戎政，不無疎虞之歎，而既云災民，等待亦多爲弊，則其在軫恤之政，合 有闊狹之舉，竝依狀請特許停免何如，答曰，允.

<비변사등록 220책, 순조 32년 1832년 09월 25일(음)>

문화/사상

水原과 松都의 公都會를 모두 뒤로 미루어 내년 가을에 合設할 것을 청하는 備邊司의 啓

비변사에서 아뢰기를, “수원부유수 서희순(徐憲淳)과 개성부유수 조용화(趙容和)의 장계를 보니, ‘수원의 공도회는 내년으로 물려서 행하고, 개성부의 공도회와 승보시(陞補試)는 내년 가을로 물려 설행하도록 아울러 묘당에서 품처하게 해 주소서.’ 하였습니다. 세제(歲除)가 지금 며칠 남지 않았으니 기한 내에 마감하기는 어려울 듯합니다. 모두 장계의 내용대로 내년이 되거든 설행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답하였다.

司啓曰，卽見水原留守徐憲淳·開城留守趙容和狀啓，則水原公都會，退行明年，開城府公都會，陞補退行明秋事，竝請令廟堂稟處矣，歲除今無多日，限內似難磨勘，竝依狀辭，待明年設行何如，答曰，允.

<비변사등록 230책, 현종 9년 1843년 12월 23일(음)>

문화/사상

水原留守 趙秉駿의 狀啓에 대해 江陵과 堤川의 影幀을 闕里祠로 移奉하라고 전교하다

○ 수원유수(水原留守) 조병준(趙秉駿)이, 궐리사(闕里祠)의 영정(影幀)이 세월이 오래 되어 빛이 바래고 낡았으니, 강릉(江陵)과 제천(堤川)에 봉안(奉安)한 두 본(本)을 본사(本祠)로 옮겨 봉안해야 하겠는데 사체상 신중히 해야 할 일이므로 묘당에서 품처하게 해달라는 일로 전교하기를, “이 부(府：수원부) 이 땅에 부자(夫子：공자)의 영정(影幀)을 걸게 된 것은 바로 우리 정종대왕(正宗大王：정조)께서 천성(千聖)을 잇고 백왕(百王)의 으뜸이 된 정의(精義)와 대체(大諦)이시다. 이밖에 조령(朝令)을 무시하고 사사로이 봉안하는 것은 설만(褻慢)한 것이다. 지금 이 초본(綃本)이 세월이 오래되어 빛이 바래고 낡았다고 하니 다시 모사(摸寫)라도 하지 않을 수 없는데, 관동(關東)과 호서(湖西)에 봉안된 것을 옮겨 봉안하는 것은 사체로 헤아려 볼 때 참으로 마땅할 듯하다. 각각 그 고을의 수령이 법식(法式)을 살펴서 각기 그 고을 경상(境上)에 배진(陪進)하고, 궐리사에 옮겨 봉안하는 날에는 유수가 달려가서 봉심(奉審)하며, 구본(舊本)을 궤(櫃)에 보관하는 것이 편리한 지의 여부를 자세히 살펴 거행한 후 계문(啓聞)하라. 이 일을 인하여 생각하건대 근래에 법을 어기면서 사사로이 서원(書院)을 세우는 것은 마땅히 한 번 거듭 밝혀두어야 하겠는데 선현(先賢)의 영정을 까닭 없이 모사해 내거나 까닭 없이 사우(祠宇)를 세우는 것은 비록 덕을 사모하는 일이라고는 하지만, 법을 어기는 일을 하는 것은 그 덕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다. 더구나 향리(鄉里)에서 반목하고 분요(紛擾)를 일으키는 폐단은 습속이 날로 흐려지는 근심이 되기에 알맞은 일에 있어서라! 이번에 이렇게 신칙한 뒤에 혹 들리는 것이 있으면 주장한 사자(士子) 외에 살피지 못한 도신(道臣)과 수령(守令) 역시 엄히 감처(勘處)하겠으니, 이 전교(傳敎)로써 낱날이 효유(曉諭)하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以水原留守趙秉駿狀啓，闕里祠影幀，年久渝弊，江陵·堤川所奉二本，將移奉于本祠，而事體慎重，令廟堂稟處事，傳曰，是府是地之揭虔夫子影幀，卽我正宗大王，接千聖冠百王之精義大諦也，外此而不有朝令，私自奉安，是慢也褻也，今此綃本年久告渝，重摸之尙懼不得，而關東·湖西所奉之移奉，揆以事體，誠爲得宜，各其邑守令，按式陪進於各其境上，闕里移奉之日，留守馳詣，奉審舊本，櫬藏便否，詳審舉行後啓聞，因此思之，近來書院之法外私建，宜有一番申明，而先賢影幀之無端摸出，無端建祠者，雖曰慕德之舉，而法外之舉，非所以慕其德也，況鄉里睚眦閥閹之弊，適足爲俗習日渝之憂乎，今此提飭之後，如或有所入聞，則主張士子之外，不察之道臣·守令，亦當嚴處，以此傳敎，一一曉諭，哉也。

<비변사등록 238책, 철종 2년 1851년 08월 25일(음)>

문화/사상

水原의 公都會를 내년 가을로 미루어 행할 것을 청하다

비변사에서 아뢰기를, “수원유수 서영순(徐英淳)의 장계를 보니, 아뢰기를 ‘유생의 공도회를 설행해야 하는데, 농사 형편이 흉년이 들어 백성들의 실정이 먹고 살기 어렵고 많은 무사들이 식량을 싸가지고 머무르는 것 역시 염려해 주어야 하니, 특별히 정퇴를 허락하여 내년에 설행하도록 묘당에서 품지하여 분부하게 해 주소서.’ 하였습니다. 공도회는 바로 해마다 설행해야 하는 일인데, 약간의 폐단을 끼칠 것을 염려하여 날짜를 늦추어 설행할 것을 청하기까지 한 것은 오히려 권장하고 장려하는 뜻에 흠이 되지만, 장계의 내용이 이미

이와 같고 또한 이미 다른 도회(都會)도 허락한 것이 있으니, 청한 대로 늦추어 설행하도록 허락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희한다고 답하였다.

司啓曰，卽見水原留守徐英淳狀啓則以爲，儒生公都會，當爲設行，而年形失稔，民情艱食，多士之齋糧留滯，亦係當念，特許停退，待明年設行事，請令廟堂稟旨分付矣，公都會卽課歲應行之事，而爲念些少貽弊，至請退設，殊欠於勸獎之義，然狀辭旣如此，亦有已許於他都者，依所請許令退行，何如，答曰，允。

<비변사등록 239책, 철종 3년 1852년 11월 01일(음)>

문화/사상

水原의 公都會을 미뤄 내년에 合設하게 하기를 청하다

○ 비변사에서 아뢰기를, “수원유수(水原留守) 이학수(李鶴秀)의 장계를 보니, 유생(儒生)의 공도회(公都會)를 설행(設行)해야 하는데, 마침 신병(身病)이 있어 기한 안에 거행할 수 없으니 내년에 합설(合設)하도록 묘당에서 품지하여 분부하기를 청한다 하였습니다. 도회를 물려서 거행한 전례가 많이 있으니, 장계의 내용대로 시행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희한다고 답하였다.

司啓曰，卽見水原留守李鶴秀狀啓則以爲，儒生公都會，當爲設行，而適有身病，限內不得舉行，待明年合設事，請令廟堂稟旨分付矣，都會退行，多有其例，依狀辭施行，何如，答曰，允。

<비변사등록 240책, 철종 4년 1853년 12월 24일(음)>

문화/사상

水原 등의 公都會를 내년에 退行할 것을 청하다

비변사에서 아뢰기를, “수원(水原)·광주(廣州)의 공도회(公都會)와 송도(松都)의 공도회·승보시(陞補試)를 졸곡(卒哭) 뒤에 시행해야 하는데, 모두 선달그믐과 며칠 사이여서 시험을 치르기 어려운 형세입니다. 아울러 내년으로 물려 시행하도록 묘당에서 품지하여 분부하기를 청하였습니다. 선달그믐이 얼마 남지 않았고 칙사에 관련된 업무가 한창이니, 전례에 따라 내년 가을에 합하여 시행하라고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희한다고 답하였다.

司啓曰，水原廣州公都會與松都公都會陞補，卒哭後當爲設行，而俱以歲除隔日，勢難試取，竝請退行於明年事，令廟堂稟旨分付矣，歲除只隔，勅務方張，依已例待明秋合設之意，分付，何如，答曰，允。

<비변사등록 244책, 철종 8년 1857년 12월 27일(음)>

문화/사상

水原府의 公都會와 都試를 退行하게 할 것을 청하다

비변사에서 아뢰기를, “수원유수 남병철(南秉哲)의 장계를 보니, 공도회(公都會)와 도시(都試)를 물려서 행하는 일을 아울러 묘당에서 품처(稟處)하게 하기를 청하였습니다. 유사(儒士)와 무사(武士)의 시취(試取)를 연고가 있어서 뒤로 물려서 거행한 것은 전례가 많이 있으니, 이번에도 장계에서 청한 대로 시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희한다고 답하였다.

司啓曰，卽見水原留守南秉哲狀啓，則以公都會及都試退行事，竝請令廟堂稟處矣，儒武試取之因事故退行，多有已例，今亦依狀請施行，何如，答曰，允。

<비변사등록 246책, 철종 10년 1859년 12월 26일(음)>

문화/사상

水原府의 都會를 退行하기를 청하다

비변사에서 아뢰기를, “수원유수(水原留守) 김영근(金泳根)의 장계를 보니, ‘본부(本府)의 공도회(公都會)를 마땅히 연내(年內)에 시행해야 하지만, 마침 신병이 있어 거행할 수 없으니 내년에 합쳐서 실시하는 일을 묘당에서 품지하여 분부하도록 하십시오.’ 하였습니다. 시험 기간은 지금 시한을 넘었고 물려서 시행하는 것도 본래 전례가 많으니, 장계에서 요청한 대로 내년에 합쳐서 실시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답하였다.

司啓曰, 卽見水原留守金泳根狀啓, 則以爲本府公都會, 當於歲前設行, 而適有身病, 未得舉行, 待明年合設事, 請令廟堂稟旨分付矣, 試期今爲過限, 退行自多已例, 依狀請使之待明年合設, 何如, 答曰, 允.

<비변사등록 249책, 철종 13년 1862년 12월 13일(음)>

문화/사상

水原의 都試를 내년 봄으로 退行하기를 청하다

○ 의정부에서 아뢰기를, “방금 수원유수 이정하(李景夏)의 장계를 보니, 본영의 올해 가을 도시(都試)를 마땅히 설행해야 되는데 연이어 사고가 겹쳐서 거행하지 못하였으니, 내년 봄에 가서 합하여 거행하도록 묘당에서 품지하여 분부하게 하기를 청하였습니다. 상황이 이러하니, 정계에서 청한 대로 물려 시행하도록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답하였다.

府啓曰, 卽見水原留守李景夏狀啓, 則本營今年秋等都試, 當爲設行, 而連值事故, 不得舉行, 待明春合設事, 請令廟堂, 稟旨分付矣, 事勢既如此, 依狀請退行事, 分付何如, 答曰, 允.

<비변사등록 251책, 고종 3년 1866년 12월 30일(음)>

문화/사상

水原의 公都會를 退行하게 할 것을 청하다

○ 의정부에서 아뢰기를, “수원유수 이재원의 장계를 보니, 본영의 별효사(別驍士) 및 열교(列校)에 대한 올해 가을의 도시(都試)를 규례에 따라 설행해야 하지만 잇달아 사고를 당하였으므로 우선 정지하고 내년 봄에 합하여 설행하도록 묘당에서 품지하여 분부하게 하기를 청하였습니다. 한 해가 끝나가므로 기일에 맞춰 설행할 수 없으니, 장계의 말에 따라 물려 시행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답하였다.

府啓曰, 卽見水原留守李載元狀啓, 則本營別驍士及列校, 今秋等都試, 當依例設行, 而連值事故, 姑爲停止, 待明春合設事, 請令廟堂稟旨分付矣, 行且歲暮, 其無以趁期設行, 依狀辭許令退行, 何如, 答曰, 允.

<비변사등록 252책, 고종 7년 1870년 12월 23일(음)>

문화/사상

水原의 公都會를 退行하게 할 것을 청하다

○ 의정부에서 아뢰기를, “수원유수 신석회(申錫禧)의 장계를 보니, ‘본부의 공도회(公都會)를 설행해야 하는데, 연달아 사고가 생겨서 기한 내에 설행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니

내년에 합설하도록 묘당에서 품지하여 분부하게 해 주소서.’ 하였습니다. 사고로 인해 연기한 전례는 이미 많이 있었으니, 청한 대로 내년에 합설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답하였다.

府啓曰，卽見水原留守申錫禧狀啓，則本府公都會，當爲設行，而連值事故，限內不得舉行，待明年合設事，請令廟堂稟旨分付矣，既有事故，退多已例，依狀請，使之待明年合設，何如，答曰，允.

<비변사등록 253책, 고종 8년 1871년 10월 25일(음)>

문화/사상

水原의 公都會를 退行하게 할 것을 청하다

○ 의정부에서 아뢰기를, “수원유수 민치상(閔致庠)의 장계를 보니, ‘본부의 공도회를 실행해야 하는데, 잇달아 사고를 만나 거행할 수가 없습니다. 우선 정지하였다가 내년에 합설하도록 묘당에서 품지하여 분부하게 해 주소서.’ 하였습니다. 제석이 이미 임박하였으니, 물려 달라고 청한 것도 괴이할 것이 없습니다. 장계에서 청한 대로 시행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답하였다.

府啓曰，卽見水原留守閔庠致狀啓，則本府公都會，當爲設行，而連值事故，不得舉行，姑爲停止，待明年合設事，請令廟堂稟旨分付矣，除夕已迫，請退無怪，依狀請施行何如，答曰，允.

<비변사등록 255책, 고종 10년 1873년 12월 30일(음)>

문화/사상

水原의 公都會를 내년에 合設하게 할 것을 청하다

○ 의정부에서 아뢰기를, “지금 수원유수 김병지(金炳地)의 장계를 보니, ‘본영의 공도회를 새해가 되기 전에 실행해야 하는데, 연달아 사고를 당하여 거행하지 못하였으니, 우선 정지하고 내년 봄을 기다려 합하여 실행하도록 묘당에서 품지하여 분부하게 해 주소서.’ 하였습니다. 사세가 이미 이러하니, 장계의 내용대로 시행하라고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답하였다.

府啓曰，卽見水原留守金炳地狀啓，則本府公都會，當於歲前設行，而連值事故，不得舉行，待明年合設事，請令廟堂稟旨分付矣，事勢既如此，依狀辭施行之意，分付何如，答曰，允.

<비변사등록 258책, 고종 14년 1877년 12월 24일(음)>

문화/사상

領議政 李最應이 광주의 공도회의 해액 문제 등에 대해 논의하다

○ 오늘 8월 27일 대신과 의정부당상을 인견하여 입시하였을 때에, 영의정 이최응(李最應) 아뢰기를, (….) 또 아뢰기를, “광주유수 김보현(金輔鉉)의 장계를 보니, ‘본부(本府)의 공도회(公都會)의 해액(解額)이 1년에 3명에 불과한데, 수원(水原)과 개성(開城)은 매년 뽑는 인원이 8명이니, 그 문운(文運)의 흥기를 격려하는 정사(政事)에 있어서 의당 피차간의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수원과 개성의 사례에 따라 한결같이 여기는 은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일을 묘당에서 품처하도록 하소서.’ 하였습니다. 이 관부(官府)는 중요한 곳으로 모든 제도나 설치가 화성(華城)이나 개성에 비하여 아무런 손색이 없는데도, 다만 공도회의 정액(定額)에 있어서만은 양부(兩府)의 반이 못 되니, 온 고을의 선비들이 억울해

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길 게 없습니다. 특별히 수신(守臣)의 진청(陳請)을 허락하여 이제부터는 양도(兩都)의 사례에 따라 8명을 시취(試取)하는 내용을 정식화(定式化)하여 시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임금의 그리하라 하였다. (…)

今八月二十七日，大臣政府堂上引見入侍時，領議政李所啓，(…) 又所啓，即見廣州留守金輔鉉狀啓，則以爲本府公都會解額，歲不過三人，而水原·開城每年取額爲八人，則其在揆文之政，宜無彼此之異同，依水原·開城例，冀蒙一視之澤事，請令廟堂稟處矣，是府，重地也，凡厥制實，固無遜乎華城開城，而第惟都會之額，未居兩府之半，闔境多士之齋苑，亦無怪其然矣，特許守臣所陳，從今以往，依兩都例，試取入額之意，著式施行何如，上曰，依爲之。(…)

<비변사등록 259책, 고종 15년 1878년 08월27일(음)>

문화/사상

華城의 公都會를 兼留守가 考試하여 登聞하게 할 것을 청하다

의정부에서 아뢰기를, “화성(華城)의 공도회(公都會)를 설행해야 하는데, 새로 제수된 수신(守臣)이 현재 북쪽 변방에 있어서 아직 임무 교대를 하지 못했습니다. 만약 올라오기를 기다려서 시취(試取)한다면 식년시와 복시(覆試) 이전에 시행하지 못할 우려가 있으니, 겸유수(兼留守)에게 시험을 관장하고 보고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답하였다.

府啓曰，華城公都會，當爲設行，而新除守臣，見在北藩，尙未交龜矣，若待上來而試取，則式科覆試之前，恐有未及之慮，令兼留守考試登聞，何如，答曰，允。

<비변사등록 260책, 고종 16년 1879년 01월 17일(음)>

문화/사상

前 咸鏡監司 金世均이 수원 등의 고을의 과거 합격자 수에 대해 논의하다

오늘 2월 28일 일차(日次)로 유생(儒生)의 전강(殿講)에, 전 함경감사(前咸鏡監司)가 함께 입시하였을 때에, 전 함경감사 김세균(金世均)이 아뢰기를 (…)

또 아뢰기를, “본도는 국가의 근본이 되는 지역으로 오백 년간 인재를 배양하고 이루어 왕왕 경학이 있고 행실이 있는 선비가 있었으며, 과거시험 공부의 경우도 훌륭해서 볼 만합니다. 다만 여러 과거에서 취하는 액수가 너무 적어서 공도회(公都會) 때 남북관(南北關)이 모두 시부(詩賦)에서 각 1인, 강(講)에서 1인을 취할 뿐입니다. 수원(水原), 개성(開城), 광주(廣州)는 한 고을일지라도 각각 8인을 취하는데, 커다란 한 성(省)으로서 이렇듯이 수가 적으니 선비들이 서운해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올 겨울부터 남북관 공도회에서 시부에 각각 한 사람을 더 취하여 조정에서 돌보아 주는 뜻을 보여 주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이에 감히 우러러 진달하니, 묘당에서 품처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임금의 그리하라 하였다. (…)

今二月二十八日日次儒生殿講，前咸鏡監司同爲入侍時，前咸鏡監司金世均所啓，(…) 又所啓，本道，國家根本之地，五百年培養作成，往往有經學謹飭之士，至於功令之業，亦彬彬可觀焉，而惟諸科取額最少，公都會南北關，俱是詩賦各一人，講一人而已，水原·開城·廣州雖一州，各取八人，而以一省之大，若是數少，宜其多士之齋苑，今冬爲始，南北關公都會，詩賦各加一人，以示朝家眷念之意，恐好，故敢此仰達，令廟堂稟處，何如，上曰，依爲之。(…)

<비변사등록 260책, 고종 16년 1879년 02월 29일(음)>

문화/사상

領議政 李最應이 수원의 과거 합격자 수 등을 回啓하다

○ 오늘 3월 26일 약방의 입진에 대신과 의정부 당상을 인견하여 입시하였을 때에, 영의정이최응(李最應)이 아뢰기를, “함경 전 감사(咸鏡前監司) 김세균(金世均)이 아뢴 여러 조목들을 묘당에서 품처하도록 하라고 하명하셨습니다. (….) 그 하나는, ‘남관(南關), 북관(北關)의 공도회시(公都會試)에서 선발하는 인원은 시부(詩賦)에 각 1명, 강서(講書)에 1명뿐입니다. 수원(水原), 개성(開城), 광주(廣州)는 한 고을일지라도 각각 8인을 취하는데, 커다란 한 성(省)으로서 이렇듯이 수가 적으니 선비들이 서운해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올 겨울부터 시부에서 각각 1명씩 더 뽑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하였습니다. 본도가 비록 서울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라고는 하지만 예로부터 문학이 훌륭한데 볼 만하였으니, 공도회시에서 선발 인원을 늘리는 것은 이를 장려하고 위로하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번 겨울부터 청한 내용에 따라 인원을 더 선발하여 아뢰게 하는 것으로 규정을 정하여 시행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

今三月二十五日, 藥房入診, 大臣·政府堂上引見入侍時, 領議政李所啓, 咸鏡前監司金世均, 所奏諸條, 令廟堂稟處事, 命下矣, (….) 其一南北關公都會取額, 詩賦各一人講一人而已, 水原開城·廣州雖一州, 各取八人, 而以一省之大, 若是數少, 宜其多士之齎鬱, 今冬爲始, 詩賦各加一人人事也, 本道雖云遼遠, 文學之彬彬可觀, 自昔伊然, 第其都會之增額, 寔由於興獎慰悅之意也, 自今冬, 依所請許令加取修啓, 以爲著式遵行之地, (….)

<비변사등록 260책, 고종 16년 1879년 03월 25일(음)>

문화/사상

京畿와 水原의 公都會를 뒤로 미룰 것을 청하다

○ 의정부에서 아뢰기를, “작년 겨울에 경기 공도회(公都會) 및 수원 공도회, 도시(都試)를 미루도록 청하는 일로 도신(道臣)과 수신(守臣)이 모두 아뢴 적이 있습니다. 도회와 도시를 연고가 있어 정지하거나 미루는 일은 전례가 많이 있으니, 아울러 장계에서 청한 대로 시행하도록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府啓曰, 昨冬以京畿公都會及水原公都會都試請退事, 俱有道守臣稟啓矣, 都會都試之有故停退, 多有其例, 竝依狀請施行事, 分付何如, 答曰, 允.

<비변사등록 261책, 고종 17년 1880년 01월 20일(음)>

문화/사상

강화유수가 강화도 공도회의 정원을 수원, 광주, 개성에 따라 늘려달라고 하다

○ 9월 27일 대신과 의정부당상, 경리당상을 인견하여 입시하였을 때에 좌의정 김병국(金炳國)이 아뢰기를 (….) 또 아뢰기를, “강화유수 이재원(李載元)의 장계(狀啓)를 보니, ‘본부의 유생 공도회의 해액(解額)은 네 명에 불과하나 수원(水原)·광주(廣州)·개성(開城)은 각각 여덟 명이나 되어 삼도(三都)에 비해 이처럼 현저하게 차이가 나므로 온 경내가 억울하게 여기니, 삼도의 여덟 명이라는 인원수의 예대로 시행하도록 묘당에서 품처하게 하소서.’ 하였습니다. 본부에 대한 모든 조치는 본래 삼도보다 못하지 않은데, 공도회에서 뽑은 인원수가 삼도에 비해 치우치게 적은 것은 실로 억울하다는 한탄이 있으니, 올가을부터 특별히 여덟 명의 인원수로 시취(試取)하도록 정식을 만들어 시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그리하라 하였다. (….)

今九月二十七日大臣·政府堂上·經理堂上引見入侍時, 左議政金所啓, (….) 又所啓, 卽見江華

留守李載元狀啓，則本府儒生公都會解額不過四人，水原・廣州・開城則各至八人，而比諸三都，若是懸殊，闔境齋菹，依三都八額例施行事，請令廟堂稟處矣，本府之凡百制實，固不讓於三都，則都會取額之較三都偏少者，實有抑菹之歎，自今秋爲始，特以八額試取事，著式施行何如，上曰，依爲之.(…)

<비변사등록 262책, 고종 18년 1881년 09월 27일(음)>

문화/사상

水原의 公都會를 退行하게 할 것을 청하다

의정부에서 아뢰기를, “수원유수(水原留守) 홍우창(洪祐昌)의 장계를 보니 본부(本府)의 공도회(公都會)는 올해 안에 설행하여야 하나 연이어 사고가 있어서 거행하지 못했는데 우선 정지하게 하고 내년에 가서 합설하라고 묘당에서 품지하여 분부하게 하기를 청하였습니다. 지금은 세모(歲暮)라서 눈이 쌓이고 언 길을 여러 선비가 응시하러 감은 염려해야 할 바가 있으니 장계에서 청한 대로 물려서 행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답하였다.

府啓曰，卽見水原留守洪祐昌狀啓，則本府公都會，當於歲前設行，而連值事故，不得舉行，姑爲停止，待明年合設事，請令廟堂稟旨分付矣，今當歲暮，雪深冰程，多士赴試，在所當念，依狀請退行，何如，答曰，允.

<비변사등록 263책, 고종 19년 1882년 12월 28일(음)>

문화/사상

水原留守 李憲植이 청한 대로 儒生의 公都會를 내년에 合設하게 할 것을 청하다

의정부에서 아뢰기를, “수원유수 이헌직(李憲植)의 장계를 보니, ‘본부 유생(儒生)의 공도회(公都會)를 시행해야 마땅한데, 연이어 사고를 만나 서울에 있으면서 돌아가지 못하였으니, 우선 정지하였다가 내년에 가서 합하여 시행하도록 묘당에서 품지하여 분부하게 해주소서.’ 하였습니다. 현재 날씨가 매우 추워 시취(試取)하기 어려운 형세이니, 장계에서 요청한 대로 시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답하였다.

府啓曰，卽見水原留守李憲植狀啓，則本府儒生公都會，當爲設行，而連值事故，在京未還，姑爲停止，待明年合設事，請令廟堂稟旨分付矣，時當窮沍，勢難試取，依狀請施行何如，答曰，允.

<비변사등록 266책, 고종 22년 1885년 12월 27일(음)>

문화/사상

水原留守 尹滋惠이 청한 대로 公都會를 내년에 合해 設行하게 할 것을 청하다

○ 의정부에서 아뢰기를, “수원유수 윤자덕(尹滋惠)의 장계를 보니, ‘공도회(公都會)를 마땅히 설행해야 하는데, 계속 사고를 만나 서울에서 돌아가지 못하고 있으니, 내년이 되거든 합쳐서 설행하도록 묘당에서 품지하여 분부하게 해 주소서.’ 하였습니다. 일의 형편상 구애되는 바가 있고 또 연말도 다 되었으니, 장계에서 청한 대로 시행하도록 허락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답하였다.

府啓曰，卽見水原留守尹滋惠狀啓，則公都會當爲設行，而連值事故，在京未還，待明年合設事，請令廟堂稟旨分付矣，事勢攸拘，歲除且近，許令依狀請施行，何如，答曰，允.

<비변사등록 269책, 고종 25년 1888년 12월 26일(음)>

문화/사상

水原 本府의 公都會를 내년에 合設하게 할 것을 청하다

의정부에서 아뢰기를, “수원유수 김홍집(金弘集)의 장계를 보니, 본부의 공도회(公都會)를 설행해야 하는데 연달아 일이 생겨 서울에 있으면서 아직 돌아가지 못하였으니, 내년에 합하여 설행(設行)하는 것에 대해 묘당에서 품지하여 분부하도록 해달라고 청하였습니다. 한해가 저물어가는 때이므로 일의 형편상 장애가 있으니 장계에서 청한 대로 시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답하였다.

府啓曰, 卽見水原留守金狀啓, 則本府公都會當爲設行, 而連值事故, 在京未還待明年合設事, 請令廟堂稟旨分付矣, 歲色垂暮, 事勢有礙, 依狀請施行何如, 答曰, 允.

<비변사등록 270책, 고종 26년 1889년 12월 25일(음)>

문화/사상

水原留守 閔泳商이 청한 대로 公都會를 내년에 合設하게 할 것을 청하다

○ 의정부에서 아뢰기를, “수원유수 민영상(閔泳商)의 장계를 보니, ‘본부의 공도회를 세전(歲前)에 설행해야 하는데, 연이어 일이 있어서 거행하지 못하였습니다. 우선 정지하였다가 내년에 합설하도록 묘당에서 품지하여 분부하게 하소서.’ 하였습니다. 사세가 이미 이와 같으니, 장계의 내용대로 뒤로 물러서 행하도록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답하였다.

府啓曰, 卽見水原留守閔泳商狀啓, 則本府公都會, 當於歲前設行, 而連值事故, 不得舉行, 姑爲停止, 待明年合設事, 請令廟堂稟旨分付矣, 事勢既如此, 依狀辭退行之意, 分付何如, 答曰, 允.

<비변사등록 272책, 고종 28년 1891년 12월 29일(음)>

(2) 과학

문화/과학

벌레가 嘉穀과 園寢의 桑梓를 손상시키니 잡아서 驅浦에 던지라고 전교하다

전교하기를, “벌레가 가곡(嘉穀)과 재수(宰樹:墓木)를 손상시키고 있는데 어떻게 잡아서 제거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경사(經史)를 상고하면 옛 부터 그러하였으니 주관(周官)의 서씨(庶氏)·전씨(剪氏)의 직은 다 이를 위하여 설치한 것이다. 곡식의 싹을 먹는 것은 명충(螟蟲)이고 곡식의 잎을 먹는 것은 특충(蝻蟲)이며 곡식의 뿌리를 먹는 것은 모충(蠹蟲)이고 곡식의 마디를 먹는 것은 적충(賊蟲)인데 잡아서 불에 던져 달라고 전조(田祖)의 신(神)에게 빌었다. 구덩이를 파고 불을 놓아 파묻는 것은 당(唐)나라 때의 요숭(姚崇)에게서 시작되어 역대(歷代)에서 따라하여 마침내 성헌(成憲)이 되었으나 모두 민력(民力)을 이용하였다. 자양(紫陽:송나라 주희(朱熹)의 호)의 훈(訓)에 이르기를 ‘어찌 사람을 부리지 않고 앉아서 공을 이룰 수 있겠는가? 다만 식견있는 사람이 이해(利害)의 실상을 터득하여 나를 수고롭게 하는 것이 바로 나를 편안하게 하는 것임을 알게 하면 자연히 원망하지 않게 된다’ 하였다. 근래에 원침(園寢)의 상재(桑梓)에 벌레가 손상을 입히는 피해를 당하여 나무를 심었던 10읍의 수재(守宰)로 하여금 관례(官隸)를 거느리고 벌레를 잡아서 잠깐의 수고로움으로써 영구히 편안함을 얻을 수 있는 뜻을 붙였으나 관례도 또한 백성이다. 그들이 뜨거운 피약벌에서 사역(使役)하는 것을 생각하면 자못 잠과 입맛을 잃어버릴 지경이다. 그래서 구양수(歐陽修)의 ‘관전 이십 냥으로 벌레 한 말을 샀더니 경각간에 풍년 들어 곳곳이 노적이네([官錢二十買一斗, 頃刻露積如京坻])’ 라는 시구를 인용하여 특별히 벌레를 사들이는 영을 처음으로 발하여 다행히 공력보다 성과가 갑절 많았으나 내 마음에는 오히려 스스로 편안하지 않은 바가 있다. 이 벌레가 비록 벌과 누에와 같은 공은 없고 모기와 등애의 독보다도 더 심하나 이것도 꾸물꾸물 준동하는 생물이다. 성인(聖人)의 ‘그 공은 기록하고 그 독은 밝힌다.’ 는 뜻에 따라 의당 잡아서 제거해야 하지만 제거할 즈음에도 필시 좋은 방도가 있을 것이니 마땅히 영하기를 ‘살리는 덕을 그 사이에 아울러 행하라’ 고 해야지 ‘해가 된다.’ 고만 말해서는 안되겠다. 그 생김생김에 따라 크고 작음이 각기 다르지만 몰아서 부서리에 내치는 것이 뜨거운 불에 태우는 것보다는 낫겠다. 더구나 ‘잡아서 불에 던진다(秉畀炎火:소아(小雅)대전(大田))’ 는 시는 탁사(托辭:가탁하여 한 말)이고 불에 태워 파묻는 일은 실사(實事)이니 상고(上古)와 후세의 차이를 엿볼 수 있다. 일찍이 들으니 벌레들이 어지럽게 바다로 들어가 고기와 새우가 되었다고 하는데 이는 복파장군(伏波將軍:한나라 마원(馬援)을 말함)이 무릉(武陵)을 다스릴 때의 명험(明驗)으로 아직도 전해지고 있다. 여러 날 잠심하고 생각하여 뜻을 굳히고 영으로 내리니 이 뒤로는 벌레를 잡아서 구포(鷗浦)에 던져라. 해구포(海口浦)는 나무를 심은 곳에서 거리가 멀지 않아 겨우 20리가 될 뿐이다.

돈으로 벌레를 사서 인력을 줄이고 벌레를 바다에 던진 고사(故事)를 말한 것이 의(義)에 무엇이 어긋나겠는가? 수신(守臣)을 불러보고 직접 이 뜻으로 타이르겠으나 또 여강(驪江)의 능수(陵樹)도 벌레에 손상을 입었다고 하니 돈으로 벌레를 사는 것과 물에 던지는 일을 모두 화성(華城)에서 새로 반포한 식령(式令)에 따라 해도 결코 털끝만큼도 안 될 것이 없겠다. 계속하여 도백(道伯)의 장계를 보니 ‘벌레를 다 잡기는 아직 아득하다’ 고 하였는데, 이때 백성을 사역시키는 것은 농정(農政)에 방해가 있을 것이므로 못내 걱정스러워 촛불을 밝히고 글을 써서 내리니 즉시 묘당으로 하여금 성화같이 해도(該道)에 알리게 하고

이 뒤로는 나머지도 모두 준례로 삼도록 예조와 한성부에 분부하라.” 하였다.

傳曰，蟲損嘉禾宰樹，安得不捕而除之，考之經史，自昔伊然，周官庶氏・剪氏之職皆爲是而設耳，食苗者螟，食葉者蝻，食根者蠹，食節者賊，秉畀炎火，祝于田祖之神，掘坑焚瘞始於唐時姚崇，歷代因之，遂爲成憲，皆用民力，紫陽之訓有云，豈能不役人徒，而坐致成功，但有見識人，見得利害之實，知其勞我者，乃所以逸我，自不怨耳，近者園寢桑梓有蟲損之害，使植木十邑守宰，率官隸捕除之，以寓暫勞永逸之意，而官隸亦民也，念其烈陽使役，殆忘寢食，乃引歐陽脩詩，官錢二十買一斗，頃刻露積如京坻之句，特創買蟲之式，幸得事半而功倍，於予心猶有不自安者，是蟲也，雖蔑蜂蠶之功，較甚蚊蠅之毒，然且卽亦蠢動之生物也，遵聖人錄其功・明其毒之義，固可捕而除之，除之之際，亦應有方便之方，宜令曰，生之德竝行於其間，莫曰爲害，隨其爲物，而有巨細之各異，驅而放菹，勝於烈而焚之，況秉畀之詠，托辭也，焚瘞之舉，實事也，邃古・後世之別，亦足可觀，嘗聞蟲亂入海，化爲魚蝦，伏波之治武陵，明驗尙傳，多日潛究，決意著令，此後拾投鷗浦・海口浦之距植木所不遠，而近爲二十里，買蟲省人力，投海述故事，於義有何悖乎，召見守臣面諭此意，而又於驪江陵樹，亦云蟲損，買蟲與投水，一依華城新頒式令用之，決知其毫無不可，續見道伯之狀語，畢拾姑杳然，此時役民有妨農政，不勝耿耿，呼燭書下，卽令廟堂星火知委該道，而今後餘皆以爲例事，分付禮曹・漢城府。

<비변사등록 187책, 정조 22년 1798년 04월25일(음)>

5. 화성(華城)

(1) 시설

화성/시설

華城의 북문, 남문, 八達山 將臺 등의 上樑文을 짓을 사람을 선정하라고 전교하다

전교하기를, “화성(華城)의 북문루의 상량문은 대제학 홍양호가 글을 짓고 글씨를 써서 들고, 남문의 상량은 25일 사이에 있다고 한다. 판부사 이명식(李命植)이 기왕에 유수를 지냈으니 글을 짓고 이어 대제학으로 쓰도록 하고, 팔달산장대(八達山將臺)의 상량문은 체모가 있으니 당연히 대신으로 일찍 유수를 지낸 사람이 지어야겠으니 영부사 채제공(蔡濟恭)이 짓고 쓸 것임을 검서관(檢書官)이 전유토록 하라. 날자는 유수에게 물어 보아 기일에 맞추어 써 들이도록 하라. 동문과 서문의 상량문도 그 때에 맞춰 내각 문임 중에서 지어 받힐 일을 보고토록 하는 것을 내각 및 유수는 알도록 하라.” 하였다.

傳曰, 華城比(北)門樓上樑文, 大提學洪良浩製進書進, 而南門上樑在於念五日間云, 判府事李命植既經留守, 使之製進, 仍令大提學書之, 八達山將臺上樑文, 則體貌所在, 當令大臣之曾經留相者製之, 蔡領府事製進書進事, 令檢書官傳諭日字, 則問于留守趁期書入, 東門·西門上樑文, 亦令留守臨時報于內閣文任中製進事, 令內閣及留守知悉.

<비변사등록 182책, 정조 18년 1794년 08월20일(음)>

화성/시설

水原留守 李益運 등이 水原府의 梅香橋를 石橋로 改築하는 문제에 대해 논의하다

○ 같은 날 입시하였을 때에 수원유수(水原留守) 이익운(李益運)이 아뢰기를, “수원부(水原府) 성내의 매향교(梅香橋)는 바로 동장대(東將臺)에 거둥하실 때의 어로(御路)입니다. 해마다 목교(木橋)를 조성(造成)하였는데 바닥에 큰 돌이 걸쳐져 있어서 주목(柱木)을 깊이 박지 못하기 때문에 물살이 세차고 매우 빨라서 교량(橋梁)이 지탱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하여 한번 큰 비가 내릴 때마다 번번이 다리가 통째로 무너지고, 다리가 무너지는 데에 그칠 뿐만 아니라 토목(土木)이 흘러내려 수문이 막혀 필경엔 성첩(城堞)과 수문에 이르게 됩니다. 이로 인해 무너지고 부서져서 성첩을 수리하는 일이 곧 해마다 하는 일이 되었고 성을 수리하는 일이 쌓임에 따라서 모곡(耗穀)이 줄어들어 10년이 못가서 강화부(江華府)의 공화(公貨)가 필시 텅 비게 된 뒤에야 그치게 될 것입니다. 이를 생각하면 참으로 작은 염려가 아니니, 돌아보건대 지금 폐단을 바로잡는 방법으로는 석교(石橋)를 짓는 것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사역(事役)이 이미 커졌고 또 새로 만드는 것에 관계되므로 신이 마음대로 할 수 없어 감히 이렇게 진달합니다. 대신에게 하문(下問)하여 처리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대신의 의견은 어떠한가?” 하였다.

영의정 김재찬이 아뢰기를, “목교를 석교로 바꾸면 외관상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실로 성첩을 수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신이 이에 대해 어찌 이견(異見)이 있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그리하라 하였다.

同日入侍時, 水原留守李益運所啓, 水原府 城內梅香橋即駕臨東將臺御路也, 每歲造成 木橋, 而頑石盤據, 柱木無以深植, 悍湍迅急, 橋梁無以支吾, 每經一番大雨, 輒致全橋圯潰, 非但橋圯而止, 土木流下, 水門湮塞, 畢竟至於城堞水門, 因此壞破, 繕堞之役, 便成歲課, 修城之儲, 從而耗縮, 不出十年, 華府公貨, 必將枵然而後已, 言念及此, 誠非細慮, 顧今掄弊之方, 無出於營造石橋, 而事役既鉅, 又係新創, 臣不敢擅便, 敢此仰達, 下詢大臣處之何如, 上曰,

大臣之意何如，領議政金曰，木橋改爲石橋，則不但觀瞻之爲美，實爲守護城堞之一助，臣於此，豈有異見，上曰，依爲之。

<비변사등록 204책, 순조 14년 1814년 02월 10일(윤)>

화성/시설

領議政 金載贊이 수원유수 李益運이 보고한 御路의 石橋 수축 문제 등을 논의하다

(…) 또 아뢰기를, “수원유수(水原留守) 이익운(李益運)이 보고한 것을 보니, ‘본부(本府)의 동장대(東將臺)의 어로(御路)인 석교(石橋)를 수축하는 데 드는 물력(物力)을 별달리 변통하지 않을 수 없으니, 공명첩(空名帖) 4백 장(張)을 전례 대로 계품(啓稟)해서 획하(劃下)하여 주소서.’ 하였습니다. 이전에 안변(安邊)·안동(安東)·강화(江華)의 선수(繕修)하는 역사에서 또한 공명첩을 만들어 주는 것을 허락하였습니다. 이번 본부의 교역(橋役)은 더욱 소중한 일인데, 재력(財力)이 과연 넉넉하지 못하므로 공명첩 3백 장을 청한 대로만 들어 보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그리하라 하였다. (…)

(…) 又所啓，卽見水原留守李益運所報，則以爲，本府東將臺御路石橋修築物力，不可不別般變通，空名帖限四百張，依已例啓稟劃下爲辭矣，前於安邊·安東·江華繕修之役，亦許空名帖成給，今此本府橋役，尤有所重，而財力果爲不敷，空名帖三百張，依所請成送何如，上曰，依爲之。(…)

<비변사등록 204책, 순조 14년 1814년 04월 25일(음)>

(2) 행궁

화성/행궁

京畿監司 徐有防이 水原의 行宮에 講武堂 등을 건립하는 문제 등에 대해 논의하다

○ 같은 날 입시하였을 때에 경기감사 서유방(徐有防)이 아뢰기를, “수원(水原) 행궁(行宮)은 대체로는 비록 끝이 났다 하겠으나 강무당(講武堂)과 기타의 공해(公廩)로서 불가불 영건해야 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청득(請得)한 것으로는 태반이 부족하여 지금 역사(役事)를 중단해야 할 처지에 있습니다. 다른 각 읍(邑)에서 고을을 옮길 때에는 재목을 획급한 전례가 있습니다. 하물며 행궁의 사체는 더욱 자별함에 있어서 이겠습니까? 안면도(安眠島)의 풍락송(風落松:바람에 쓰러진 나무) 중에서 1백 30주(株)에 한하고 특별히 더 획급하여 속히 필역(畢役)하게 하는 것이 사의(事宜:일 처리의 타당성)에 합당할 것 같아 감히 앙달합니다.” 하니, 임금의 그리하라 하였다. (…)

同日入侍時, 京畿監司徐有防所啓, 水原行宮大體則雖爲了畢, 而講武堂及其他公廩之不可不營建者多, 而向來所請得, 太半不足, 見方有停役之歎, 他各邑移邑時材木劃給, 已有前例, 況行宮事體, 尤有自別乎, 安眠島風落松中, 限一百三十株, 特爲加給, 以爲趁即完役之地, 恐合事宜, 故敢此仰達矣, 上曰, 依爲之.(…)

<비변사등록 175책, 정조 13년 1789년 11월 04일(음)>

화성/행궁

左議政 金道喜가 화령전 수문장의 출륙에 대해 논의하다

○ 오늘 10월 15일 대신과 비국 당상을 인견하여 입시하였을 때에 좌의정 김도희(金道喜)가 아뢰기를 (…)
○ 또 아뢰기를, “화령전(華寧殿)의 수문장(守門將)은 본래 개월 수에 맞추어 출륙(出六) 하는 자리인데, 매번 능행(陵幸)을 맞을 때에 번번이 상전(賞典)으로 승륙(陞六)을 내려서, 이렇게 허사과(虛司果)가 적체된 때를 맞아, 전조(銓曹)에서는 곧바로 6품으로 승급하는 것은 원래 근무일수로 하는 것과 달라서 내버려두어 묻지 않고 검의(檢擬)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계묘년(癸卯年:헌종9, 1843)부터 지금까지 14년 동안 상전(賞典)으로 인해 승륙한 자가 6명이나 되도록 많은데, 아직 한 사람에게도 직무를 맡긴 자가 없는 것은 조정의 상전의 본래 뜻이 아니며, 저들이 도리어 불행하다고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도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상전에 들어간 사람은 그 오래됨과 가까움을 비교하여 이미 원래 근무일수를 채우는 것에 따라 차례대로 임명하여, 답답함을 소통하도록 하는 것이 일의 마땅함에 부합할 것 같으니, 이러한 내용을 전조(銓曹)에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임금의 그리하라 하였다. (…)

今十月十五日大臣備局堂上引見入侍時, 左議政金所啓, (…)
○ 又所啓, 華寧殿守門將, 本係準朔出六之窠, 而每當陵幸時, 輒下賞典陞六, 當此虛司果積滯之時, 銓曹謂其徑六, 異於原仕而置之不問, 不爲檢擬, 則自癸卯至今十四年之間, 因賞典陞六者, 至六人之多而尙未有一人付職者, 有非朝家賞典之本意, 而渠輩之反以不幸號冤, 其情無怪矣, 入於賞典中人, 較其久近, 從其已滿原仕, 第次而差擬, 俾得疏鬱之地, 恐合事宜, 以此意分付銓曹何如, 上曰, 依爲之.(…)

<비변사등록 243책, 철종 7년 1856년 10월 15일(음)>

(3) 원행

화성/원행

水原暗行御史 申絪이 莎草軍에게 돈을 받은 吏校 및 遲遲臺의 碑石修築 등 방안을 보고하다 비변사에서 아뢰기를, “수원부(水原府) 암행어사 신현(申絪)의 별단(別單)을 보니, 하나는, ‘때를 입히고 보토하는 군사가 객지에서 부역(赴役)하는 것을 꺼려 서울에서는 직접 당해 장리(掌吏)들에게 돈으로 대신 내지만 역소(役所)의 원역 무리는 1냥의 예로 대신 내는데, 많은 경우는 1냥5전으로까지 대신 내며, 서울의 군사가 올라간 뒤에 당해 관리가 이 돈으로 사토(沙土)를 사 가는데, 1명이 납부하는 수가 50문(文)밖에 안 들고, 60문이 들면 더욱더 충분하므로 당해 관리는 남은 것을 욕심내어 필히 돈으로 대신 받고자 하고, 당해 당상과 낭청은 양쪽이 편하다고 하여 내버려 두고 금하지 않아 잃는 바가 작지 않으므로 처벌을 면하기 어려우며, 당해 관리의 농간 수법을 엄중히 징계하지 않을 수 없으니 유사(攸司)로 하여금 중중과치(從重科治)하게 하는 문제입니다. 사초군(莎草軍)에게서 돈을 받은 폐단은 지난 번 자교(慈敎)로 인해 당해 당상을 감봉하라는 명을 내리셨는데도 이번엔 어사의 계로 인해 살피지 못한 책임이 더욱 드러났으니 그냥 둘 수 없습니다. 당해 당상을 아울러 파직하고 당해 낭청은 해부(該府:의금부)에서 나문(拿問)하여 처벌하게 하되, 농간을 부린 이교(吏校)는 유사(攸司)에게 내주어 법에 비추어 엄중히 처벌해야 합니다. 하나는, 인산(因山)의 대역(大役) 역시 고군(雇軍)을 써서 한 명당 품삯이 돈으로는 2전이고 쌀로는 3되로서 후하다고 할 수 있는데, 이른바 모군(募軍)이란 30명을 1패(牌)로 정합니다만, 그 중에는 역시 교묘하게 일을 피하는 자가 있고 패장(牌將)은 점수에 어두워 멍하니 알아차리지 못해 품삯만 허비하게 되고 사역은 부실하게 되며, 서울 밖의 군사 중 품삯의 이익을 노리고 부역하기를 원하는 자들이 한꺼번에 몰려들어 모두 다 부칠 수 없게 되면, 간역(看役)을 담당하는 자는 부릴 곳을 헤아려 혹 남기거나 혹 보내야 하는데, 지금 공평하고 균등하게 한다고 칭하면서 돌아가며 역에 부쳐 나오고 들어가게 하니, 저렇게 많은 군인이 오늘은 부역에 나가 삯을 받고 내일은 한가하게 놀아 밥을 먹기가 어렵게 되니 끝내는 피차 모두 괴로움을 면치 못하고, 원역(員役)이 연줄을 타고 농간을 부리는 것은 오로지 모군(募軍)의 입락(立落)을 기록한 장부를 가감하는 틈에서 벌어지는데, 가령 오늘 역에 부친 수가 1패였다면 2패를 역에 부친 것처럼 거짓으로 쓰고, 오늘부터 내일까지 10패를 역에 부친다면 어제부터 내일까지 10패가 부역하는 것처럼 꾸며서 기록하며, 역사를 마칠 때는 더욱 많은 농간을 부려 다른 사람이 순간 장부를 살펴서는 알 수 없으니 묘당에서 각 당해 당상과 낭청에게 신칙하여 직접 장부를 가지고 더욱 자세히 추쇄(推刷)하게 한다면, 당상과 낭청이 혹 바쁜 와중에 미처 살피지 못했더라도 일이 끝난 후에 필히 마음을 다해 바로잡고 단속하여 거짓으로 쓰고 꾸며 기록한 수법을 모두 자세히 조사하여 원래대로 기록하는 문제입니다. 돌아가며 역에 부치는 것과 점수를 살피지 못한 일은 당초 잘못이지만, 지금 이미 일이 지난 뒤에 규명하기는 어렵고, 원역의 농간과 입락(立落)의 가감을 자세히 살피지 않을 수 없음은 실로 어사가 계에서 논한 바와 같으니 당해 당상과 낭청에게 장부를 살펴 자세히 점검하여 허위로 기록한 경우가 있으면 하나하나 바로잡고 나서 허위로 기록한 죄를 처벌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는, 신이 갔다 오는 동안 모군(募軍)이 점차 파해서 돌아가고 있었는데, 1전이라도 갖고 돌아가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고 들었습니다. 까닭을 물어보니 역을 시작할 때부터 이 날까지 투전놀이라고 하는 것이 설치되지 않은 곳이 없고 하지 않는 날이 없었으므로 품삯이 적지 않았음에도 나머지만 가지고 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빚을

지고 구절을 할 염려도 있으니 관장(官長)으로 하여금 한번 금지하게 하면 법령을 내는 즉시 그치겠지만, 지금 간여할 일이 아니라고 간주하여 마음대로 허비하도록 돌아보지 않는 것은 참으로 심히 개탄스러우니 금하지 않은 당상과 낭청을 마땅히 경계하고 꾸짖어야 한다는 일입니다. 역소(役所)에서 잡스런 놀이가 낭자하도록 내버려 둔 것은 참으로 살피지 못한 잘못이지만, 방금 막 광경(廣京:광주)의 다른 일로 처벌했으니 그만두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는, 이번에 닦는 도로는 사근평(肆觀坪) 이상 노량진(鷺梁津)까지는 전에 비해 연로(輦路)가 몇 뼘 더해져 민간의 전답을 침범해 들어간 곳 역시 많습시다만, 민간에서 하는 말을 들으면 밭이었던 곳은 다시 경작할 수 있다 하더라도 논이었던 곳은 다시 갈기 어렵다고 하는데, 농부의 입장에서 말하면, 처음에는 전답을 도로로 만들 때 부역했다가 재차 도로를 전답으로 만들 때 힘을 소비하게 되므로, 공력과 비용을 계산하면 전답이 침범해 들어간 곳에 필적할 만하니, 모두 전례에 의해 값을 정해 주고 다시 개간하지 말게 하여 연로의 넓은 경계를 잃지 않게 하자는 문제입니다. 연로를 닦는 것은 때에 따라 넓기도 하고 좁기도 한데, 이는 농부가 당연히 해야 할 역(役)이지만, 어사가 계에서 논한 바 역시 생각한 점이 있으므로 도신과 수령에게 분부하여 많고 적음과 편리함의 여부를 자세히 살고 따져서 장문(狀聞)한 뒤 품처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는, 시흥(始興)에서 닦는 도로는 광주(廣州)·과천(果川)보다 더 넓고 길어 뚫어서 통하게 하거나 평평하게 메우는 곳이 다른 읍에 비해 많아 온 읍의 백성이 8월부터 지금까지 치우치게 고생하고 있으니 별달리 진흥하는 정책이 있어야 하고, 산릉을 마주보는 땅의 산성 안팎으로 거주하는 백성 40여 가구가 방금 철거하고 이주하였는데, 1간마다 지급한 값이 몇 냥은 되지만, 이렇게 추운 계절에 집 없이 떠돌아다니는 모습이 극히 가련하므로 의당 다시 더 넉넉히 도와주는 방도가 있어야 하니 도신과 머물러 있는 신하에게 분부하여 견감하고 도와줄 방도를 적절하게 헤아려 처리하게 하자는 문제입니다. 시흥의 도로를 닦는 역이 조금 넓다고는 하나 이는 연로(沿路)에서 응당 해야 할 일이고, 산성의 민가를 철거하고 이주시킬 무렵이면 심히 걱정스럽긴 하지만, 이미 넉넉한 값과 후하게 돌보는 은혜를 베풀었으니 견감하는 특별한 은혜는 다시 논할 필요가 없으므로 그만 두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는, 사근평(肆觀坪)의 거주민이 시장을 옮겨 설치한 뒤로는 살아갈 방법이 없는데, 창사(倉舍)를 새로 건축한 뒤로 곡식을 내주고 받는 것이 편중되어 있고 역인(驛人)의 요구는 그치지 않으며 발장(撥將)의 침해가 파다하여 마을의 쇠락이 실로 걱정스러우니 시장을 종전대로 다시 설치하고, 곡식을 내주고 받는 것을 편할 대로 구처(區處)하되, 역인의 요구와 발장의 침해는 모두 금지하고 엄중히 더 징계해 다스려 거주민이 안심하고 살면서 기꺼이 생업에 종사하여 번성하게 되도록 머물러 있는 신하에게 분부하는 문제입니다. 시장을 돌아가며 설치하는 것은 본래 모든 백성을 똑같이 대하는 데서 나왔고, 창사를 새로 지은 것 역시 의지하며 살아갈 바탕을 열었으니 한때의 원망으로 인해 갑자기 변경하기 어렵고, 역속(驛屬)의 요구와 발장의 침해는 살피고 신칙해야 할 책임이 오로지 수신(守臣)에게 있으니 다시 더 엄중 신칙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는, 이번에 일을 맡은 군인의 막사를 설치하고 밥을 주는 일은, 신이 역참마다 유심히 살펴보니 각 영문의 거행이 몸과 마음을 다해 받들지 않음이 없어, 철저히 몸을 가릴 곳이 있고 곳곳마다 배불리 먹는 기쁨이 있었습시다만, 각 영문의 군병이 때때로 민가에 거주하여 장독을 깨거나 벽을 훼손할 염려가 있어 군병의 습성이 엄정하지 않음을 볼 수 있었으니, 이와 같은 폐단을 금지하도록 엄중히 더 신칙하라고 당해 영문에 분부하여 각별히 조사해 다스리게 하자는 문제입니다. 하나는, 광주(廣州)와 화성(華城)의 경계에 작은 고개가 있어 원침(園寢)의 봉우리를 이루고 있는데, 이 재를 넘으면 다시는 시야에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옛날 원침에 행행하고

환궁할 때 이 고개에 당도할 때면 수레를 멈추고 추모하셔서 머뭇머뭇 출발하지 못하였으므로, 작은 대(臺)를 지어 그곳을 표시하고 고개의 이름을 지지(遲遲)라 부르고 대의 이름을 지지대(遲遲臺)라고 불렀습니다만, 지금은 그 작은 대의 섬돌과 계단이 기울고 풀에 덮여 손상되고 떨어져 나갔으니 다시 수리해 짓고 비를 세워 기념하라고 명하여 추모하는 마음을 존중해 받드는 문제입니다. 이 고개에 올라 이 대를 지나는 사람이면 예전에 눈물을 닦으며 울음을 삼키시던 일을 추모하지 않은 사람이 없으니, 어사의 계에 의해 즉시 수신(守臣)으로 하여금 다시 수리해 짓고 비를 세워 이름을 새긴 뒤 상황을 장문(狀聞)하게 하여야 하겠습니다. 하나는, 지금 화성민은 외롭고 의지할 곳이 없어 먹이를 잃은 어린아이와 다름없는 데, 옛날에는 원침을 보호하던 고을이고 지금은 산릉을 받들어 모시는 곳이니만큼 체모를 존중함이 전보다 더욱 각별해야 하고 혜택의 두터움은 지금 더 융숭해야 하므로 이번에 허다한 국역(國役)을 거행하면서 본부(本府:수원)의 백성은 한 사람의 힘도 번거롭게 하지 않은 것은 실로 지극하고 깊은 은택이지만, 이 밖에도 돌보는 은택과 품어 보호하는 도리로 별도로 방편을 궁구하고, 하나하나 더 건감하고 도와주어 선왕께서 항상 염려하시던 성의(聖意)를 좇아 지금 울타리를 잃은 민정을 위로하는 문제입니다. 화성부민의 일은 모두 예전에 후하게 돌보던 것으로, 지금 산릉을 받든 뒤이니 전보다 배나 더 걱정해야 하므로 수신(守臣)이 도와주고 돌보는 방도를 일에 따라 곳에 따라 더더욱 강구하되, 작은 일은 편할 대로 처리하고 큰일은 아뢰어 변통하게 하라고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답하기를, “윤허한다. 몇 달 동안 부지런히 수고하여 지금 이미 일을 마치고 왔으니 당낭(堂郎)의 과직과 나문은 모두 용서하라. 지지대의 비에 새길 문자는 지문 제술관(誌文製述官)이 지어 올리게 하라.” 하였다.

司啓曰, 卽見水原府暗行御史申絢別單, 則其 一, 莎草補土之軍, 憚於客地赴役, 自京直以錢防給 於該掌吏輩, 而役所員役輩, 以一兩例防給, 多者至 以一兩五錢防給, 而京軍上去之後, 該吏以此錢, 貿 取莎土, 而一名所納之數, 不過費五十文, 苟費六十 文, 則尤爲周足, 該吏則利其所贏, 必欲以錢代捧, 當 該堂郎, 則謂是兩便, 任其爲而不禁, 所失非細, 難免 勘責, 該吏之弄奸手法, 不可不嚴懲, 令攸司從重科 治事也. 以莎草軍捧錢之弊, 向因慈教, 有該堂越 俸之命, 而今於繡啓, 益著其不察之責, 不可置之, 當該堂上竝罷職, 當該郎廳, 令該府拿問勘處, 作奸 吏校, 出付攸司, 照律嚴繩. 其一, 因山大役, 亦用雇 軍, 而每名雇價, 爲錢二錢米三升, 則可謂優厚矣, 所 謂募軍, 以三十名定爲一牌, 而其中亦有巧於避事 者, 牌將眩於點數, 朦不覺察, 以致雇價之徒費, 事役 之不實, 而京外軍人之利於雇價, 願來赴役者, 一時 萃集, 難以盡付, 則看役者, 事當量其役處, 或留或送 可也, 今乃稱以平均, 付役輪回, 而進退之, 使彼多數 之軍人, 今日赴役而得價, 明日閒遊而艱食, 終未免 彼此俱病, 員役之資緣作奸, 專在於募軍立落文簿 加減之間, 假如今日付役爲一牌, 則以二牌付役樣 偷書, 自今日至明日, 十牌付役, 則以自昨日至明日, 十牌赴役樣幻錄, 以至役事垂畢之時, 益售其許多 閃弄, 而有非他人驀地按簿而知得者, 令廟堂申飭 各該堂郎, 親執文簿, 細加推刷, 則堂郎雖或未及致 察於倥偬之中, 必當盡心釐檢於事過之後, 其偷書 幻錄之類, 一切詳查還錄事也. 輪回付役, 點數不察, 當初固有其失, 而今已事過, 有難推究, 至於員役作 奸, 立落加減, 不可不詳查, 誠如繡啓所論, 令該堂 郎, 按簿細檢, 如有幻錄, 一一釐正, 仍勘其幻錄之罪. 其一, 臣於去來之際, 得聞募軍, 稍稍罷歸, 而無一人 持一錢歸者云, 問其故則以爲自始役, 以此日, 所 謂鬪錢之戲, 無處不設, 無日不爲, 故雇價不爲不多, 而不但無贏餘之可以持歸, 反有負債行乞之患, 若使 官長, 一番禁斷, 則可發令而卽止, 今乃看作不干之 事, 任渠糜費, 莫之念恤, 誠甚慨恨, 不禁之堂郎, 合有警責事也. 役所雜戲, 任其狼藉, 誠有不察之失, 而纔 以廣京他事論勘, 置之. 其一, 今番道路

修治，肆觀坪 以上至于鷺梁，則比前輦路，更加數把之廣，民田民 畝之犯入處亦多，而聞民間之言曰，田處則雖可復 耕，畝處則難於再舉云，而以田夫言之，初次赴役於 以田畝作道路之時，再次費力於以道路作田畝之 際，計其功費，可敵田畝之本價，臣意則田畝犯入處，竝依已例，決價以給，勿許更墾，使輦路，不失其廣闊之界事也。輦路 修治，隨時廣狹，自是田夫應行之役，而繡啓所論，亦有意見，分付道臣・守臣，詳察其多少便否，論理狀 聞後稟處。其一，始興道路之修治，視廣州・果川，更 爲闊遠，鑿通夷塞，比他邑爲多，通邑之民，自八月至 于今偏苦，合有別般軫恤之政，山陵案對之地，山城內外居民四十餘戶，今方撤移，每間給價，不下 數兩，而當此寒節，棲屑靡家之狀，極爲矜愍，宜有更加優恤之道，分付道伯及居留之臣，蠲減助給之方，量宜區處事也。始興道路修治之役，雖曰稍闊，係是 沿路應爲之事，山城民家撤移之際，雖甚可悶，已有 厚價優恤之典，蠲減特恩，更不必論，置之。其一，肆 觀坪居民，場市移設之後，聊活無策，倉舍新建之後，糶糴偏重，驛人徵索不已，撥將侵害頗多，村落之凋 弊，誠爲可悶，場市依前還設，糶糴從便區處，而驛人 之徵索，撥將之侵害，一切禁斷，嚴加徵治，以爲居民安生樂業，稍致繁庶之意，分付居留之臣事也。場市 輪設，本出一視之意，倉舍新建，亦開聊賴之資，有難 以一時稱冤，遽議變改，而至於驛屬之徵索，撥將之 侵害，其所察飭，專在守臣，更加各別嚴飭。其一，今番 輦土軍設幕給飯事，臣於每站，着意覘察，則各營門 舉行，莫不殫竭奉承，到底有庇身之所，隨處有飽飯 之喜，而各營軍兵，往往居接民家，不無破甕毀壁之 患，可見軍習之不整，此等之弊，嚴加禁飭之意，分付各營將臣事也。各營軍兵之居接民家，至於破甕毀壁之弊，誠極可駭，分付 當該營門，各別查治。其一，廣州・華城之界有小峴，園寢峯巒，踰此峴則不復入望，故昔日園幸回鑾 之時，每臨此峴，駐輦輿慕，遲遲不發，築小臺以識 其處，而名其峴曰遲遲，名其臺曰遲遲，今其小臺，砌 級傾歪，莎被損脫，宜命更加修築，立石爲記，以爲 尊奉追感之地事也。登是峴而過是臺者，無不追惟，昔日掩涕吞聲，依繡啓，卽令守臣，更加修築，立石 標名後，形止狀聞。其一，方今華民之熒熒若靡依，則尤無異於失哺之赤子矣，昔爲寢園拱護之鄉，今作山陵奉陪之所，體貌之尊重，比前尤別，惠 澤之優渥，在今宜隆，今番許多國役，不煩本府一民 之力，固爲至恩深澤，而外此顧護之典，懷保之方，另 究方便，曲加蠲恤，追先朝恒軫之聖意，慰此日 隕廓之民情事也。華城一府民事，皆是昔年優恤者 也，今於奉山陵之後，其所軫念，尤倍於前，令守臣 顧恤懷保之方，隨事隨處，另加講究，小則從便區處，大則陳聞變通事，分付何如。答曰，允。屢朔勤勞，今 既竣事而還，堂郎罷拿竝分揀，遲遲臺標石文字，令 誌文製述官撰進。

<비변사등록 191책, 순조즉위년 1800년 11월13일(음)>

연구진

연구책임	● 최성환 / 수원학연구센터 연구위원
연구원	● 이동인 / 수원학연구센터 연구원
연구보조원	● 양지선 / 단국대학교 강사
연구보조원	● 나영훈 /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수료
연구보조원	● 최문수 /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과정
연구보조원	● 최덕환 /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과정
연구보조원	● 이진걸 / 수원시정연구원 연구원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 개인의 견해로서
수원시의 정책과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전근대 수원 자료집

발행인	손혁재
발행일	2015년 3월 6일
발행처	수원시정연구원 (443-810)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매영로 345번길111 전화 031-220-8001 팩스 031-220-8000

비매품 ISBN 979-11-85686-32-5

본 출판물의 판권은 수원시정연구원에 속합니다.